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1572-01

조선왕조 궁중음식 고문헌 아카이브 구축

조선왕조 궁중음식 고문헌 자료집 18
조선왕조실록 기사자료집 (8)

2012. 9.

- 목 차 -

1. 성종실록 <5> 기사자료집 : 성종 24년 5월 ~ 성종 25년 12월 1
2. 연산군일기 기사자료집 373

1. 성종실록 <5> 기사자료집

성종실록 <5> 기사자료집 : 성종 24년 5월 ~ 성종 25년 12월

날 짜	내 용	원 문
성종 277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5월 1일 (갑자) 2번째기사	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기를, “영돈녕(領敦寧) 윤호(尹壕)에게 쌀과 콩을 아울러 60석(碩)을 내려 주라.” 하였는데, 중궁(中宮)이 장차 그 집에 가서 헌수(獻壽)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傳旨戶曹。 賜領敦寧尹壕米、豆并六十碩，以中宮將獻壽于其第也。
성종 277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5월 4일 (정묘) 1번째기사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고서, 대사헌(大司憲) 이세좌(李世佐)가 아뢰기를, “총관(摠管)들의 일은 반복하여 생각하여도 풍속(風俗)에 관계가 있으니, 단연코 추국(推鞠)하지 않아서는 안되겠습니다.” 하고, 사간(司諫) 정석건(鄭錫堅)이 아뢰기를, “정성근(鄭誠謹)은 시위(侍衛)하는 군사가 급할 때에는 힘입을 만한데 역가(役價)를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므로 아뢰는 것입니다. 또 선상(選上)25587) 에 관한 법이 《대전(大典)》 25588) 에 실려 있는데, 〈선상노(選上奴)는〉 한 달에 받을 면포(綿布)가 두 필(匹)이고 수령(守令)의 진성(陳省)25589) 에도 다 여섯 달에 열 두 필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정성근이 참으로 〈선상노를〉 대립(代立)시켰더라도 사후(伺候)25590) 에게서 역가를 받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데 총관(摠管)들이 이것을 지적하여 아뢰었으니, 어찌 뜻이 없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총관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나서 임광재(任光載)의 말이라고만 아뢰어 기미만 보이고 말하지 않았는데, 임광재가 지	○丁卯/御經筵。 講訖，大司憲李世佐啓曰：“摠管等事，反覆思之，有關風俗，斷不可不鞠。” 司諫鄭錫堅啓曰：“鄭誠謹，以侍衛軍士緩急可賴，而不宜納價，故啓之耳。 且選上之法載在《大典》，一月應受緜布二匹，守令陳省亦皆以六朔十二匹載錄矣。 誠謹雖實令代立，非伺候收價之比也，而摠管等以此斥啓，烏得無情？摠管等已會議而只啓爲任光載之言，引而不發，以光載位高駙馬，故使之啓達，是爲報復之計明矣。 誠謹若啓摠管等所不爲事，則但當自明，如其所爲則下問時亦當直啓矣。 反斥誠謹之失啓達，而旋即諱

	<p>위 높은 부마(駙馬)이기 때문에 그를 시켜서 아뢰게 한 것이니, 이것은 보복할 생각임이 분명합니다. 정성근이 총관들이 하지 않은 일을 아뢰었다면 스스로 변명만 하였어야 마땅할 것이고, 도리어 정성근의 잘못을 지적하여 아뢰고서, 곧 숨겨서 말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친척이나 벗 사이에도 이러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 더구나 성상 앞에서 이러하였으니, 그 불경(不敬)이 큰데, 어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좌우(左右)에게 고문(顧問)하였다. 영사(領事) 윤호(尹壕)가 대답하기를,</p> <p>“대간(臺諫)의 말이 매우 마땅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경(卿)들은 정성근(鄭誠謹)의 성품이 곧은데 죄를 입었으므로 그렇게 아뢰는 것이다. 정성근이 처음에 아뢰는 뜻은 오로지 정병(正兵)의 가포(價布)를 사사로이 받고 놓아 보내는 것을 가리킨 것이었는데, 그 뒤로 국문(鞫問)할 때에는 범연히 아뢰었을 뿐이라 하고 지적한 사람이 없었다. 이와 같은 탐욕에 관한 일은 작더라도 자기가 하지 않은 것이라면 스스로 변명하려 할 것인데, 더구나 지위가 높은 재상(宰相)이겠는가? 이 때문에 총관(總管)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이러한 일을 하였는가?’ 하여 상의할 때에 임광재가 의심스러운 말을 하였으므로 아뢰었을 뿐이다. 가령 총관에게 참으로 이 일이 있었더라도 형신(刑訊)25591) 하기 어렵다.”</p> <p>하였다. 정석견(鄭錫堅)이 아뢰기를,</p> <p>“누가 말하고 누가 들었다고 분명히 말하면 보복이 더욱이 현저할 것이므로 곧이 아뢰기 어려웠을 뿐입니다.”</p> <p>하고, 이세좌(李世佐)가 아뢰기를,</p> <p>“요전(澆奠)25592) 따위 일을 까닭 없이 발언한 것은 오로지 보복을 위한 것입니다. 성상께서는 정성근(鄭誠謹)을 곧지 않다고 여기시나, 총관의 잘못은</p>	<p>之曰不言不聞也，雖親戚交友間不當如是，況於上前如是，其不敬大矣。豈可容貸?” 上顧問左右。領事尹壕對曰：“臺諫之言甚當。” 上曰：“卿等以誠謹性直被罪，故若是啓耳。誠謹初啓之意，專指私納正兵價布放送者也，其後鞫問時，則曰泛然啓達而已，無指摘之人，如此貪婪事，雖微者，如己所不爲，則當欲自明，況位高宰相乎? 以此總管等相謂曰：‘誰爲如此事乎?’ 商議之際，光載有疑言，故啓之耳。假使總管實有此事，亦難刑訊。” 錫堅曰：“若明言某言之而某聽之，則報復尤顯，故難於直啓耳。” 世佐曰：“澆奠等事，無緣而發，專爲報復也。上雖以誠謹爲不直，然總管之過甚於誠謹，欺罔莫甚，凡臺諫所論，或有過情之言，然此則非情外事也，又非以誠謹被罪而言也，且反壓之語，必有根源矣。” 上曰：“反壓之語，其時已分揀，歸於虛妄矣。” 錫堅曰：“酒味澆奠等事，無緣竝啓，非報復而何?” 上曰：“安可以此探宰相之意，悉令治罪乎?” 錫堅曰：“事若隱微，則固不可臆料而鞫之，今事迹已著，鞫而罪之，何不可</p>
--	---	--

	<p>정성근보다 심하여 기망(欺罔)함이 막심합니다. 무릇 대간(臺諫)이 논한 데에 혹 실정보다 지나친 말이 있으나, 이것은 실정 밖의 일이 아니며, 정성근이 죄를 입었다 하여 말한 것도 아닙니다. 또 반압(反壓)25593)이라는 말에는 반드시 근원이 있을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반압(反壓)이라는 말은 그 때에 이미 분간(分揀)하여 허망한 것으로 돌아갔다.”</p> <p>하였다. 정석견이 아뢰기를, “주미(酒味)·요전(澆奠) 따위 일을 까닭 없이 아울러 아뢰었으니, 보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이 때문에 재상의 뜻을 알아 내어 죄다 죄를 다스리게 할 수 있겠는가?”</p> <p>하였다. 정석견이 아뢰기를, “일이 은미(隱微)하다면 워낙 억측하여 국문할 수 없겠으나, 이제 일의 자취가 이미 나타났으니, 국문하여 죄준들 무슨 안될 것이 있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헌부(憲府)에서 아뢰는 것과 같다면 총관(總管)들이 과연 그러겠으나, 형세가 궁하여 말하였을 뿐이다. 어찌 원한을 갚느라고 그렇게 하였겠는가?”</p> <p>하였다. 정석견이 아뢰기를, “보복한 것이 분명하니, 형신(刑訊)할 수는 없더라도 악한 뜻을 문책하여 죄를 다스리지 않아서는 안되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신하로서 임금을 업신여겼으면 그 마음을 문책하는 것이 옳겠으나, 어찌 총관(總管)들이 정성근(鄭誠謹)의 일을 말하였다 하여 마음을 문책하여 죄줄 수</p>	<p>之有?” 上曰：“若如憲府所啓，則總管等果非矣。然勢窮言之耳，豈報怨而然乎?” 錫堅曰：“報復明矣。雖不可刑訊，亦不可不誅意而治罪。” 上曰：“臣而無君則誅其心可矣，安可以總管等言誠謹事而誅心罪之乎?” 世佐曰：“聞總管等來啓之時，亦有止之者矣。” 上曰：“其召光載等問之。”</p>
--	---	---

	<p>있겠는가?” 하였다. 이세좌가 아뢰기를, “총관들이 와서 아뢴 때에도 말린 자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임광재(任光載) 등을 불러서 물으라.” 하였다.</p>	
<p>성종 277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5월 5일 (무진) 3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 명하여 병조(兵曹)·홍문관(弘文館)과 입번(入番)한 제장(諸將)을 남빈청(南賓廳)에 모아 선운(宣醞)25600) 을 내리게 하고, 이어서 단오(端午)라는 글제로 칠언 율시(七言律詩)를 각각 지어 바치라고 명하였다.</p>	<p>○命承政院、兵曹、弘文館及入番諸將，會于南賓廳，賜宣醞，仍命各製端午七言律詩以進。</p>
<p>성종 277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5월 10일 (계유) 4번째기사</p>	<p>형조(刑曹)에서 아뢰기를, “이제 전교(傳敎)를 받건대, ‘ 문소전(文昭殿) 25630) 의 잡물(雜物)과 제향(祭享)을 쓸 물선(物膳)을 많이 훔쳐 내어갔는데 적발할 길이 없다. 이 뒤로는 문을 지키는 갑사(甲士) 중에 잡은 자가 있으면 한편으로 형조(刑曹)에 알리고 한편으로 정원(政院)에 알리라. 포고(捕告)25631) 한 군사를 논상(論賞)하는 절목(節目)을 의논하여 아뢰라.’ 하셨습니다. 신(臣)들이 율문(律文)을 상고하건대 ‘무릇 대사(大祀)의 신기(神祇)에게 진배(進排)한 제기(祭器)와 유장(帷帳) 따위 물건을 훔치거나 제사에 바친 옥백(玉帛)·희생(犧牲)·찬구(饌具) 따위를 훔친 자는 다 참형(斬刑)에 처하고, 신어(神御)25632) 에 바치기 전이거나 영조(營造)가 끝나기 전의 물건 또는 이미 제사를 받들고 난 물건과 그 밖의 관물(官物)을 훔친 자는 다 장(杖) 1백, 도(徒) 3년에 처한다.’ 하였습니다. 사죄(死罪)를 범한 자를 포고(捕告)하거든 주장한 자에게 별사(別仕)25633) 를 주면 30일로 하고 면포(綿布)를 주면 10필(匹)로 하고 수종(隨從)한 자에게는 별사를 주면 20일로 하고 면포를 주면 7필로 하며, 장(杖) 1백, 도(徒) 3년을 범한 자를 포고(捕告)하거든 주장한 자에게는 별사(別仕)를 주면 20일로 하고 면포를 주면 7필로 하고 수종(隨從)한 자에게는 별사(別仕)</p>	<p>○刑曹啓：“今承傳敎：‘文昭殿雜物及祭享物饈，數多偷出，摘發無由。今後把門甲士有捕捉者，一以報刑曹，一以告政院，其捕告軍士論賞節目議啓。’ 臣等參議律文：‘凡盜大祀神祇御用祭器帷帳等物及盜饗薦玉帛牲牢饌具之屬者，皆斬。其未進神御及營造未成若已奉祭訖之物及其餘官物，皆杖一百、徒三年。’ 其捕告犯死罪者，爲首給別仕則三十，綿布則十四，隨從別仕則二十，綿布則七匹。捕告犯杖一百、徒三年者，爲首給別仕則二十，綿布則七匹，隨從別仕則十五，綿布則五匹，從願論賞何如？” 傳于承政院曰：“犯杖一百、徒三年者，捕告人論賞則當矣。其犯死罪者捕告人論賞，無乃</p>

	<p>를 주면 15일로 하고 면포를 주면 5필로 하되, 바라는 대로 논상(論賞)하는 것이 어떠 하겠습니까?”</p> <p>하니,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장(杖) 1백, 도(徒) 3년을 범한 자를 포고(捕告)한 사람에게 대한 논상(論賞)은 마땅하나, 사죄(死罪)를 범한 자를 포고한 사람에게 대한 논상은 너무 가볍지 않은가?”</p> <p>하였다. 승지(承旨)들이 첨계(僉啓)하기를, “성상께서 하교하신 것이 마땅합니다.”</p> <p>하고, 곧 《대전(大典)》의 강도(強盜)를 포고(捕告)한 사람을 논상하는 조항에 표(標)를 붙여서 아뢰니, 전교하기를, “신어(神御)에 관한 물건을 훔친 자는 강도에 견주면 그 죄가 더욱 무겁다. 《대전(大典)》의 강도를 포고(捕告)한 사람을 논상하는 조항과 형조(刑曹)에서 아뢴 절목(節目)을 정원(政院)에서 첨의(僉議)하여 절충해서 아뢰라.”</p> <p>하였다. 첨계(僉啓)하기를, “《대전(大典)》에는, 절도(竊盜)를 잡은 자에게 면포 10필을 도급(都給)하고 강도를 잡은 자에게 면포 50필을 도급한다 하였고, 주장하여 포고(捕告)한 자에게는 상직(賞職)이 있으나 절도를 잡은 자에게는 상직이 없습니다. 이제 절목(節目)을 보건대 포고한 자가 많아서 10인이 되더라도 각각 면포를 준다 하였으니 《대전(大典)》의 논상(論賞)에 관한 조항보다 넉넉한 듯하고, 도(徒) 3년을 범한 자를 잡은 자까지도 별사(別士)를 얻게 되어 있으니, 이것은 반드시 《대전》에 의거하여 짐작하지 않고서 아뢰었을 것입니다. 《대전》의 강도·절도를 잡은 자에게 논상하는 예에 따르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 “전에 대간(臺諫)이 작은 법이라도 험사리 세워서는 안된다고 하였거니와, 이것은 제향(祭享)에 관계되는 중대한 일이니, 반드시 그 포고(捕告)한 자에게</p>	<p>太輕乎?” 承旨等僉啓曰：“上教允當。”乃於《大典》，強盜捕告人論賞條，貼標以啓。傳曰：“盜神御物者，比強盜則其罪尤重矣。《大典》強盜捕告人論賞條，及刑曹所啓節目，政院僉議折中以啓。”僉啓曰：“《大典》云，捕竊盜者，都給綿布十匹，捕強盜者都給綿布五十匹，爲首捕告者有賞職，而捕竊盜者則無賞職。今觀節目，雖捕告者多至十人，各給綿布，則似優於《大典》論賞之條，而至於捕犯徒三年者，亦得別仕，則是必不據《大典》而斟酌以啓也。請依《大典》捕強竊盜論賞之例。”傳曰：“前者，臺諫云，雖小法，不可輕易立之，此關於祭享重事，必厚賞其捕告者，然後盜竊者畏於被捉而不得肆矣。以《大典》及刑曹節目，議于領敦寧以上及議政府。”尹弼商、盧思愼、尹壕、許琮、李鐵堅、鄭文炯、柳輕議：“捕死罪者，依《大典》捕強盜例，捕徒罪者，依《大典》捕竊盜例論賞爲便。”命從群議施行。</p>
--	--	--

	<p>후하게 상주어야 흠치는 자가 잡히는 것을 두려워하여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 《대전》과 형조의 절목을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에 의논하라.”</p> <p>하였다. 윤필상(尹弼商)·노사신(盧思愼)·윤호(尹壕)·허중(許琮)·이철건(李鐵堅)·정문형(鄭文炯)·유지(柳輕)가 의논하기를,</p> <p>“사죄(死罪)를 범한 자를 잡으면 《대전(大典)》의 강도를 잡은 예(例)에 따르고, 도죄(徒罪)25634) 를 범한 자를 잡으면 《대전》의 절도를 잡은 예에 따라 논상하는 것이 온편(穩便)하겠습니다.”</p> <p>하니, 중의(衆意)를 따라 시행하라고 명하였다.</p>	
<p>성종 277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5월 11일 (갑술) 3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p> <p>“용산강(龍山江)의 독서당(讀書堂)이 낙성되었으므로 그 편액(扁額)과 기(記)를 내일 안에 걸어야 하겠으니, 홍문관(弘文館)의 관원이 죄다 그 곳에 모이게 하라. 내가 주악(酒樂)을 내리겠다.”</p> <p>하였다.</p>	<p>○傳于承政院曰：“龍山江讀書堂已成，其扁(類) [額] 及記，宜及明日懸掛，令弘文館員盡會于彼，予將賜酒樂。”</p>
<p>성종 277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5월 12일 (을해) 2번째기사</p>	<p>홍문관 직제학(弘文館直提學) 송질(宋軼) 등이 와서 아뢰기를,</p> <p>“오늘 신들에게 명하여 독서당(讀書堂)에 모이게 하여 특별히 주악(酒樂)을 내리시는 것은 성상의 은혜가 지극히 중합니다마는, 이 당(堂)은 10리 밖의 강호(江湖) 사이에 있으므로 풍악을 울리며 잔치하여 술을 마시기가 미안(未安)합니다.”</p> <p>하니, 전교(傳敎)하기를,</p> <p>“내가 장권(獎勸)하는 것인데, 무슨 미안할 것이 있겠는가?”</p> <p>하였다.</p>	<p>○弘文館直提學宋軼等來啓曰：“今日命臣等會讀書堂，特賜酒樂，上恩至重，但此堂在十里外江湖之間，動樂宴飲未安。”傳曰：“予獎勸耳，何未安之有?”</p>
<p>성종 277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5월 12일 (을해) 4번째기사</p>	<p>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홍한(洪瀚)이 와서 아뢰기를,</p> <p>“듣건대 독서당(讀書堂)에 술을 내리신다 하나, 주악(酒樂)은 글을 읽는 곳에 맞지 않고 또 바야흐로 날이 가무니, 멈추시고 민간(民間)에서 술을 쓰는 것도 금하소서.”</p>	<p>○司憲府持平洪瀚來啓曰：“聞賜酒于讀書堂，酒樂不合於讀書之處，又方天旱，請停之，且禁民間用酒。”傳曰：“聞平安道雨澤周足，下三道旱亦不甚，</p>

	<p>하니, 전교하기를, “듣건대 평안도(平安道)는 비가 넉넉하고 하삼도(下三道)25637) 의 가뭄도 심하지 않다 하는데, 술을 금하면 작은 백성에게만 폐해를 끼칠 뿐이니, 우선 10여 일 동안 기다려서 금하는 것이 옳겠다. 또 독서당(讀書堂)은 본디 절[寺刹]이었는데, 이제 글을 읽는 곳이 되었으므로, 특별히 주악(酒樂)을 내려서 권장하는 것이다.” 하였다. 흥한이 또 아뢰기를, “조종(祖宗) 때에 집현전(集賢殿)과 당(唐)·송(宋) 때의 학사원(學士院)은 다 후하게 대우하였으나, 주악을 내려서 강호(江湖)에서 욕심을 방자하게 하였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대저 인정(人情)은 삼가기를 꺼리고 편히 즐기기를 좋아하는데, 이제 독서당에 술을 내려 뜻대로 놓고 즐기게 하면 아마도 풍속(風俗)에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강좌(江左)25638) 의 폐풍(弊風)은 성감(聖鑑)이 환히 아시는 바이거니와, 무릇 강호에서 기악(伎樂)을 거느리고 모여 술을 마시는 조사(朝士)는 법사(法司)에서 매우 금할 뿐더러, 전하께서도 반드시 단죄(斷罪)하여 용서하지 않으셔야 할 것인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금령(禁令)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전하께서 어떻게 처치하시겠습니까? 임금은 말 한 마디나 한 가지 행동도 가벼이 할 수 없으니, 한때의 은혜를 베풀지 마시고 뒷날을 위하여 멀리 염려하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 말은 과연 옳으나, 주악(酒樂)을 내리는 것이 글을 읽는 데에 맞지는 않더라도 권장하기 위한 것이니, 그 장래의 폐단이 강좌(江左)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였다. 흥한이 아뢰기를, “강좌(江左)의 폐풍이 문득 오늘에 일어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래의 폐단이 그렇게까지 될세라 염려하는 것입니다. 전일 강을 따라 사정</p>	<p>若禁酒則徒貽弊小民耳。 姑待十餘日禁之可也。 且讀書堂本寺刹也， 今爲讀書處， 故特賜酒樂以勸獎耳。” 瀚又啓曰：“祖宗朝集賢殿， 唐、宋時學士院， 皆重待而未聞賜酒樂縱慾江湖者。 大抵人情憚戒愼而好逸樂， 今賜酒于讀書堂， 使之縱意游樂， 恐有關於風俗。 江左弊風， 聖鑑所洞照。 凡朝士率妓樂會飲江湖者， 非但法司痛禁， 殿下亦必斷罪不饒也。 今如是， 而後有犯禁者， 殿下何以處之？ 人主一言一動， 不可以輕， 勿爲一時之恩， 爲後日長遠慮幸甚。” 傳曰：“爾言果是， 賜酒樂雖不合於讀書， 乃所以勸獎之也。 其流之弊， 必不至如江左也。” 瀚啓曰：“非以爲江左弊風便生於今日， 恐其流之弊， 至於如此耳。 前日沿江構私亭者， 盡令撤去， 此必恐朝士流蕩， 將如江左也。 今若如此， 則殿下所爲， 無奈前後有異乎？ 酒肉則皆已備辦， 當饋之矣， 請收賜樂之命。” 傳曰：“前者， 右議政爲接伴使， 與天使董越等遊江上， 天使問曰：‘此處何無樓閣乎？’ 右議政答曰：‘舊有樓閣， 殿下盡令撤去。’ 天使曰：‘此非獨便於一時， 可無</p>
--	--	--

	<p>(私亭)을 꾸민 것을 죄다 철거시켰으니, 이것은 반드시 조사(朝士)가 방탕하여 장차 강좌와 같아질 것을 염려한 것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하신다면 전하께서 하신 일이 전후(前後)에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술과 고기는 다 이미 장만 하였으므로 먹어야 하겠으나, 풍악을 내리라는 명은 거두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p> <p>“전에 우의정(右議政)이 접반사(接伴使)가 되어 중국 사신 동월(董越) 등과 함께 강(江)에서 놀 때, 중국 사신이 이 곳에서 어찌하여 누각(樓閣)이 없느냐고 물으매, 우의정이 예전에는 누각이 있었으나 전하가 죄다 철거시켰다고 대답 하니, 중국 사신이 그것은 한때에만 온편(穩便)한 것일 뿐 아니라 만세에도 폐단을 없앨 수 있는 일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학문을 권장하고 또 홍문관(弘文館)을 우대(優待)하기 위한 것이요, 강호(江湖)의 흥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내가 처음에는 이 당(堂)이 강호 사이에 있는 줄 몰랐다.”</p> <p>하였다.</p>	<p>弊於萬世矣。’然此則爲勸學，亦以優待弘文館，非爲江湖之與也。予初不知此堂之在江湖間也。”</p>
<p>성종 277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5월 12일 (을해) 5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p> <p>“무릇 조사(朝士) 중에서 5품(品) 이하의 관원은 반드시 서경(署經)25639) 하여 출사(出謝)25640) 한 뒤에야 녹봉(祿俸)을 받는데, 대간(臺諫)이 혹 유고(有故)하여 나오지 않으면 여러 날 동안 늦추어지고 서경을 받지 못하니,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의 조사(朝士)는 오로지 녹봉에 의지하고, 8품이나 9품으로 말하면 받는 것이 겨우 2석(碩)이나 3석인데, 과후(科後)25641) 에 녹봉을 받는 자는 호조(戶曹)에서 다 오래 묵은 곡식으로 제급(題給)25642) 하므로 충신(忠信)하고 녹봉을 중히 여기는 뜻이 아주 없으니, 이 뒤로는 그렇게 하지 말게 하소서.”</p> <p>하니, 전교(傳敎)하기를,</p> <p>“묵은 것을 쓰고 새것을 저축한다고는 하나, 2, 3년 사이의 곡식만을 가져다가 옮겨 쓰는 것인데,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호조에 물으라.”</p>	<p>○承政院啓曰：“凡朝士五品以下官，必署經出謝，然後受祿。臺諫或有故不坐，則遷延累日，不得署經，非以有罪也。我國朝士，專仰祿俸，而至於八、九品，所受僅二、三碩，而科後受祿者，戶曹皆以久陳穀題給，殊無忠信重祿之意。請今後勿令如是。”傳曰：“雖曰用舊蓄新，但取二、三年之間之穀，推移用之耳。豈可如是？其問于戶曹。”</p>

<p>성종 277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5월 14일 (정축) 2번째기사</p>	<p>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 전교(傳敎)하기를, “이제 의금부(義禁府)의 추안(推案)을 보건대 안승인(安崇仁)이 죽은 것은 오로지 감찰(監察)들이 주육(酒肉)을 요구하여 번거롭히고 혹 서넛이 때지어 잇달아 와서 개개는데 가난하여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하니, 이것은 감찰이 죽인 것이다. 어찌 이러한 풍습이 있는가? 내가 이 풍습을 없애려 하니, 안승인의 거래붙이를 끝내 따져 물어서 아뢰라. 그 첩(妾)은 우선 놓아 보내어 상(喪)을 치르게 하라.” 하였다.</p>	<p>○傳于承政院曰： “今觀義禁府推案，安崇仁之死， 專由監察等徵酒肉煩苛，或三、四成群， 連續來侵， 貧不能當故也。 是監察殺之也， 安有如此之風乎？ 予欲革此風， 其窮問崇仁族親以啓， 其妾姑放送， 使之護喪。”</p>
<p>성종 277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5월 15일 (무인) 1번째기사</p>	<p>중궁(中宮)이 영돈녕(領敦寧) 윤호(尹壕)의 집에 거둥하여 현수연(獻壽宴)을 행하고, 윤호에게 아청사 단령(鴉靑紗團領)·남사 답호(藍紗搭胡)·홍사 철릭(紅紗帖裏) 각각 1령(領)을, 윤탄(尹坦)에게 황사 답호(黃紗搭胡)·백사 철릭(白紗帖裏) 각각 1령을, 윤과(尹坡)에게 백초 철릭(白綃帖裏)·남초 답호(藍綃搭胡) 각각 1령을, 윤은로(尹殷老)에게 황사 답호·백사 철릭 1령을, 윤탕로(尹湯老)에게 백초 철릭·남초 답호 각각 1령을 내렸고, 임금이 명하여 수가(隨駕)한 종재(宗宰)25652)에게 주악(酒樂)을 내리고, 또 윤호에게 호초(胡椒) 5두(斗)와 소목(蘇木) 20근(斤)과 선자(扇子) 20명(柄)과 노구(鑪口) 1부(部)와 백녹비(白鹿皮) 1장(張)을, 윤은로·윤탕로에게 각각 호초 2두와 소목 10근과 선자 5명을, 그밖의 족친(族親)과 수가한 종재(宗宰)·제장(諸將) 중 1품(品)에게 각각 호초 3두와 선자 5명을, 2품에게 각각 호초 2두와 선자 4명을, 3품 당상(堂上)에게 각각 호초 1두(斗) 5승(升)과 선자 3명을, 당하관(堂下官)에게 호초 1두와 선자 2명을, 제사(諸司)의 관원과 종사관(從事官)·부장(部將)·내금위(內禁衛)·겸 사복(兼司僕)·우림위(羽林衛) 등에게 각각 선자 2명을 내렸다.</p>	<p>○戊寅/中宮幸領敦寧尹壕第， 行獻壽宴。 賜尹壕鴉靑紗團領、藍紗搭胡、紅紗帖裏各一領；尹坦黃紗搭胡、白紗帖裏各一領；尹坡白綃帖裏、藍綃搭胡各一領；尹殷老黃紗搭胡、白紗帖裏各一領；尹湯老白綃帖裏、藍綃搭胡各一領。 上命賜酒樂于隨駕宗宰， 又賜壕胡椒五斗、蘇木二十斤、扇子二十柄、鑪口一部、白鹿皮一張；殷老、湯老各各胡椒二斗、蘇木十斤、扇子五柄， 他餘族親及隨駕宗宰、諸將， 一品各賜胡椒三斗、扇子五柄， 二品各胡椒二斗、扇子四柄， 三品堂上各胡椒一斗五升、扇子三柄， 堂下官胡椒一斗、扇子二柄， 諸司官員及從事官、部將、內禁衛、兼司僕、羽林衛等， 各扇子二柄。</p>

<p>성종 277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5월 15일 (무인) 2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 전교(傳敎)하기를, “영돈녕(領敦寧)의 집은 본디 넉넉하지 못한데 오늘 재물을 썼으니, 쌀과 콩 을 아울러 50석(碩)을 내리라.” 하였다.</p>	<p>○傳于承政院曰：“領敦寧家，本不能 富饒，而今日費財，其賜米、豆并五十 碩。”</p>
<p>성종 277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5월 16일 (기묘) 2번째기사</p>	<p>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윤장(尹璋)이 와서 아뢰기를, “이제 망종(芒種)이 이미 지났는데 가뭄이 매우 심하니, 술을 금하여 하늘의 경계를 삼가소서.”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올해에는 절기가 늦어서 가을보리는 바야흐로 거두어들여거니와, 봄보리는 혹 영글지 않은 곳이 있기는 하나 날씨가 가물 뿐더러 땅도 기름지고 메마른 곳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은 과연 가물었으나, 어찌 한 도나 한 고을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하여 문득 술을 금할 수 있겠는가? 제도(諸道)에 치서(馳書)하 여 다 그러한지를 안 뒤에 술을 금하여야 할 것이다.” 하였다.</p>	<p>○司憲府持平尹璋來啓曰：“今芒種已 過，而旱氣太甚，請禁酒以謹天戒。” 傳曰：“今年節晚，秋麩時方收穫，春 麩雖間有不實處，非但天旱，地有肥瘠 故也。京師果旱矣，然豈可以一道一 邑之不雨，遽禁酒乎？當馳書諸道，知 皆不雨，然後禁酒。”</p>
<p>성종 277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5월 17일 (경진) 1번째기사</p>	<p>의정부(議政府)에 전지(傳旨)하기를, “이 농사철을 당하여 풍우(風雨)가 불순하므로 파종(播種)이 기를 잃고 보리 도 가을걷이를 바랄 수 없으니, 우리 백성을 생각하면 어찌 우려를 견디겠는 가? 재앙은 함부로 일어나지 않으니, 사람이 실로 부른 것이다. 가만히 그 까 닭을 생각하면 할 바를 모르겠다. 온갖 유사(有司)는 내 지극한 마음을 본받 아 각각 그 직무를 삼가서 흉년을 변하여 풍년이 되게 하고 재앙을 옮겨서 상서가 되게 하라.” 하였다.</p>	<p>○庚辰/傳旨議政府曰：“今當農月，風 雨不若，播種愆時，麥亦失秋，念我民 生，曷勝憂慮？災無妄作，人實召之， 潛思厥由，罔知攸爲。凡百有司，體 予至懷，各警乃職，移歉爲豐，轉災爲 祥。”</p>
<p>성종 277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5월 18일 (신사) 1번째기사</p>	<p>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 한한(韓僞)이 와서 아뢰기를, “병조(兵曹)에서 본부(本部)의 성안에 사는 자는 다 공상(工商)의 무리이므로 경중(京中)과 다를 것이 없다 하여, 군적(軍籍)을 3월 그믐날까지 끝내라고 독촉합니다. 그러나 부내(府內)의 전지(田地)의 총계가 4천여 결(結)이므로 농</p>	<p>○辛巳/開城府留守韓僞來啓曰：“兵曹 以本府城內者皆工商之徒，與京中無 異，軍籍限三月晦日督畢。然府內田 總四千餘結，業農者頗多，豈盡工商</p>

	<p>사를 업으로 하는 자가 자못 많은데, 어찌 죄다 공상이겠습니까? 이제 만약에 이 일을 거행한다면, 죽은 자는 그만이었으나, 도망한 자는 반드시 이웃이나 겨레붙이를 가두어 나타나기를 독촉할 것입니다. 이제 농사철을 당하여 폐단이 있을는지 모르니, 경기(京畿)의 예(例)에 따라 가을 곡식이 성숙하거든 성적(成籍)하소서.”</p> <p>하니, 전교(傳敎)하기를, “과연 아된 바와 같다. 이 일을 빨리 이루려 하면 착오(錯誤)가 있거나 폐농(廢農)할는지 모르니, 경기의 예에 따라 기한을 물리라.”</p> <p>하였다.</p>	<p>哉? 今若舉此事, 物故者則已矣, 逃亡者必囚隣里族親督現矣。 今當農月, 恐或有弊, 請依京畿例, 待秋成籍。”</p> <p>傳曰: “果如所啓, 此事若要速成, 恐有錯誤, 亦或廢農也。 依京畿例退限。”</p>
<p>성종 277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5월 18일 (신사) 3번째기사</p>	<p>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홍한(洪瀚)이 와서 아뢰기를, “요즈음 날씨를 보면 비가 내릴 조짐이 아주 없으니, 술을 금하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 “술을 금하면, 거세고 가멸한 자는 날마다 취하여도 면할 수 있고, 가난하고 약한 자는 혹 병을 고치거나 어버이에게 헌수(獻壽)하여도 죄망(罪網)에 걸릴 것이니, 또한 하늘의 경계를 삼가는 방도가 아니다. 더구나 이제 가뭄이 지극히 심하지 않으니, 제도(諸道)에서 우택(雨澤)을 아뢰기를 기다린 뒤에 술을 금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다.”</p> <p>하였다. 홍한이 아뢰기를, “무릇 화곡(禾穀)의 생성(生成)은 6월에 이르러 그치고, 7월 이후에는 영글어야 할 것인데, 이제 농사철이 거의 다하여도 오히려 모[苗]를 세우지 못하였으니, 가을에 거둘 것이 없는 것은 알 만합니다. 술은 금하는 데에 작은 폐단이 있기는 하나, 작은 백성은 멀리 생각하는 것이 없이 낭비하기를 좋아하니, 금지하여 하늘의 경계를 삼가야 하겠습니까.”</p> <p>하니, 전교하기를, “중외(中外)에 널리 하유(下諭)하여 어리석은 지아비와 지어미들이 낭비하지</p>	<p>○司憲府持平洪瀚來啓曰: “近觀氣候, 頓無雨徵, 請禁酒。” 傳曰: “禁酒則豪富者日醉而得免, 貧弱者或治病或壽親, 罹於罪網, 亦非所以謹天戒也。 況今旱不至甚, 待諸道啓雨澤, 然後禁酒未晚也。” 瀚啓曰: “凡禾穀生成, 至六月而止, 七月以後則當稔矣。 今農月幾盡, 猶不立苗, 其不有秋可知。 禁酒雖有小弊, 小民無遠慮好糜費, 請須禁止, 以謹天戒。” 傳曰: “當廣諭中外, 使愚夫愚婦, 毋得糜費。”</p>

	<p>못하게 하겠다.” 하였다.</p>	
<p>성종 277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5월 21일 (갑신)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고서, 대사간(大司諫) 이덕승(李德崇)·지평(持平) 홍한(洪瀚)이 아뢰기를, “지난번 가뭄이 심하지 않아도 술을 금한 것은 하늘의 경계를 삼가고 낭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가뭄이 심하니, 주금(酒禁)을 시행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이덕승 등이 또 아뢰기를, “제군(諸君)의 집을 짓는 일을 그치지 않는데, 올해에는 우박이 내리고 지진(地震)이 일어나는 재이(災異)가 자주 나타나는데다가 가뭄의 재앙까지 더하므로, 토목일을 사람들이 매우 괴로와하니, 어찌 원망을 일으켜 화기(和氣)를 상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이덕승이 또 아뢰기를, “제천정(濟川亭)을 수리하는 데에 드는 것을 위하여 국가에서 이미 어전(魚箭)25655) 을 주었는데, 또 귀후서(歸厚署)25656) 에서 받아들이는 신당(神堂)의 퇴미(退米)를 주므로, 이 때문에 관곽(棺槨)의 재목이 모자라니, 도로 귀후서에 주소서.”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고문(顧問)하였다. 영사(領事) 윤필상(尹弼商)이 대답하기를, “국가에서 귀후서(歸厚署)를 설치하고 태백산(太白山)·계룡산(鷄龍山) 등지의 신(神)에게 바쳤다가 물린 물건을 주어 재목을 사는 데에 쓰게 한 것은 위로 대부(大夫)에서 아래로 사서인(士庶人)까지 다 관곽(棺槨)을 얻어서 상용(喪</p>	<p>○御經筵。講訖，大司諫李德崇、持平洪瀚啓曰：“曩者，旱不甚猶禁酒，所以謹天戒節糜費也。今旱甚，請行酒禁。”上曰：“可。”德崇等又啓曰：“諸君家營造不輟，今年雨雹地震，災異屢見，加以旱災，土木之役，人甚苦之，豈無起怨咨傷和氣乎？”上曰：“然。”德崇又啓曰：“濟川亭修理所需，國家既給魚箭，而又給歸厚署所納神堂退米。因此棺槨材木不足，請還給歸厚署。”上顧問左右。領事尹弼商對曰：“國家設歸厚署，給太白山、雞龍山等處神前退物，以爲質材之需者。上自大夫，下至士庶人，皆得棺槨以供喪用也。今者移給濟川亭，重修僧人，歸厚署不能質棺，故引鉅軍三十名皆遊手矣。”德崇啓曰：“中朝使臣來觀漢江樓者，必以此樓爲遊觀之所，今但當修理耳，不必大張。”特進官李克增啓曰：“聞今造家者，或有質歸厚署板子者，其於爲喪葬設立之意何？”弼商曰：“昔者，歸厚署造棺槨，官員親監納諸庫內，有欲買者，隨其價</p>

	<p>用)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제 제천정을 중수(重修)하는 중들에게 옮겨 주었으니, 귀후에서는 관곽의 재목을 사지 못하므로 인거군(引鉅軍)25657) 30명이 다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p> <p>하고, 이덕승이 아뢰기를, “중국 사신이 와서 한강루(漢江樓)라는 것을 보면, 반드시 이 누(樓)를 유관(遊觀)하는 곳으로 여길 것이니, 이제 수리만 해야 하고 크게 확장할 것 없습니다.”</p> <p>하고, 특진관(特進官) 이극증(李克增)이 아뢰기를, “듣건대 지금 집을 짓는 자 중에는 혹 귀후서(歸厚署)의 널빤지를 사는 자가 있다 하니, 상장(喪葬)을 위하여 설립한 뜻에는 어떠하겠습니까?”</p> <p>하고, 윤필상이 아뢰기를, “예전에는 귀후서(歸厚署)에서 관곽을 만들 때에 관원(官員)이 친히 감독하여 창고 안에 넣었다가, 사려는 자가 있으면 그 값에 따라서 주었는데, 이제는 관곽을 만들어 하전(下典)25658)의 집에 두고서 팔게 하므로, 상을 당한 자가 갑자기 사려면 관 하나의 값이 비싸서 <포(布)로> 10여 필(匹)이나 되는데, 하전(下典)이 값을 받아 반을 관가에 바치고 나머지는 다 스스로 쓴다 하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반드시 법(法)이 있어도 관리(官吏)가 봉행(奉行)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p> <p>하였다. 이덕승이 또 아뢰기를, “이제 서연(書筵)에서 《상서(尙書)》·《춘추(春秋)》· 《통감(通鑑)》 25659)의 세 책을 강독(講讀)하는데, 세자(世子)는 바야흐로 처음 배우는 처지이니, 한 책에 전념하지 못할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而給之。 今聞造棺槨， 置諸下典家， 使賣之， 喪者倉卒求買， 一棺之價多至十餘匹， 下典受價， 分半納官， 餘皆自用， 甚不可也。” 上曰：“此必有法， 官吏不能奉行耳。” 德崇又啓曰：“今書筵講《尙書》、《春秋》、《通鑑》三書， 世子方在初學， 恐不得專意一書。” 上曰：“此欲世子博覽而通文理也。” 瀚曰：“《通鑑》與《春秋》皆史學， 既講《春秋》則《通鑑》可易解也。 世子年少， 綱目雖未進講，《少微》不可廢也。” 德崇又啓曰：“外方盜賊盛行，《大典》境內有強盜， 則罪及守令， 故匿不以聞， 請弛《大典》之法而行捕捉之術。” 上曰：“若不罪守令， 則難以弭盜。 《大典》之法亦不可廢也。” 德崇曰：“令諸道觀察使多方措置， 使盜賊不得橫行爲便。” 上曰：“可。” 德崇又啓曰：“前者平安道送綿布貿穀備軍需， 遂禁行商之興販者。 近日禁令廢弛， 興利者盆集， 盡鬻民間之穀， 船輸于京， 恐軍需將自此不敷矣。” 弼商曰：“果如此言， 平安道綿布稀貴， 米價賤， 且通水路， 輸轉易， 故興販者多往焉， 不可不禁。</p>
--	--	---

	<p>“이것은 세자(世子)가 널리 보아서 문리(文理)를 통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매, 흥한이 아뢰기를, “《통감》과 《춘추》는 다 사학(史學)인데, 이미 《춘추》를 강독하였다면 《통감》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자는 나이가 적으므로, 《강목(綱目)》 25660)은 아직 진강(進講)하지 못하더라도, 《소미(少微)》 25661)는 그만둘 수 없습니다.” 하였다. 이덕숭이 또 아뢰기를, “외방(外方)에 도둑이 성행하는데, 《대전(大典)》에 ‘경내(境內)에 강도(強盜)가 있으면 죄가 수령(守令)에게도 미친다.’ 하였으므로, 숨기고 아뢰지 않으니, 《대전(大典)》의 법을 늦추어서 잡을 방법을 행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수령(守令)을 죄주지 않으면 도둑을 그치게 할 수 없을 것이고, 《대전(大典)》의 법도 폐기할 수 없다.” 하매, 이덕숭이 아뢰기를, “제도(諸道)의 관찰사(觀察使)를 시켜 여러가지로 조치하여 도둑이 횡행(橫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온편(穩便)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이덕숭이 또 아뢰기를, “전에 평안도(平安道)에는 면포(綿布)를 보내어 곡식을 사서 군수(軍需)에 갖추게 하고 드디어 행상(行商)이 장사하는 것을 금하였는데, 근일에는 금령(禁令)이 해이하여 장사하는 자가 모여들어 민간의 곡식을 죄다 사서 배로 서울에 나르니, 아마도 군수가 이 때문에 모자라게 될 것입니다.” 하고, 윤필상이 아뢰기를, “과연 그 말과 같이 평안도는 면포가 비싸고 쌀 값이 싸며, 또 수로(水路)를</p>	<p>世祖朝平壤、安州、寧邊等邑多儲穀，軍資有餘，近來匱乏，惟寧邊稍有所儲。”上曰：“興利人禁止可也。”特進官成健啓曰：“辛巳年受教，勿論山谷平地，陳荒田一皆免稅，若山腰瘠薄田，以陳免稅宜矣，平地田亦用此法，甚不可。如是則惰農無所懲而國家收稅過歎矣。”上顧問左右。弼商對曰：“國家既見欺於民，奸吏又從而用術，收稅之數果少矣。”克增曰：“續田雖一年陳必免稅，正田則雖每年陳不免稅者，所以懲惰農也。若平地諸郡用此法，使之免稅，則惰農無所懲矣。坡州等郡土地，雖曰險阻瘠薄，豈如江原道乎？臣往見江原道，其山田皆以正田施行，百姓訴悶，臣擇其山上險阻礮薄，牛不得耕，人所難行之處，以續田施行，雖續田，若土厚必起耕，況於平地，何用陳荒免稅之法乎？”弼商曰：“我國收稅輕歎，有似貊道，陳荒免稅之法，不可行於平地郡縣矣。古人云：‘治世以大德，不以小惠。’行貢法可矣。”</p>
--	--	---

통하여 나르기가 쉬우므로 장사하는 자가 많이 가니,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조(世祖) 때에는 평양(平壤)·안주(安州)·영변(寧邊) 등의 고을에 곡식을 많이 저축하여 군자(軍資)에 여유가 있었으나, 근래는 모자라는데 영변만이 조금 저축이 있습니다.”

하니, 임금(金)이 말하기를,
 “장사하는 사람은 금지하도록 하라.”

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성건(成健)이 아뢰기를,
 “신사년(2566)의 수교(受敎)에 ‘산곡(山谷)·평지(平地)를 물론하고 묵은 전지는 모두 면세(免稅)하라.’ 하였습니다. 산허리의 메마른 전지는 묵었다 하여 면세하는 것이 마땅하나, 평지의 전지도 이 법을 쓰는 것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농사를 게을리하여도 징계될 것이 없고 국가에서 세(稅)를 거두는 것이 지나치게 적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金)이 좌우(左右)에게 고문(顧問)하였다. 윤필상(尹弼相)이 대답하기를,
 “국가는 이미 백성에게 속고 감사한 관리는 또 따라서 술수를 쓰니, 세를 거두는 수량이 과연 적습니다.”

하고, 이극중(李克忠)이 아뢰기를,
 “속전(續田)은 한 해만 묵더라도 반드시 면세(免稅)하나 정전(正田)은 해마다 묵더라도 면세하지 않는 까닭은 농사를 게을리하는 것을 징계하기 위한 것인데, 만약에 평지의 여러 고을에도 이 법을 써서 면세시킨다면 농사를 게을리하여도 징계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파주(坡州) 등의 고을은 토지(土地)가 험하고 메마르다고는 하나 어찌 강원도(江原道)만 하겠습니까? 신이 강원도에 가서 보니, 산밭[山田]도 다 정전(正田)으로 시행하므로 백성이 억울함을 호소하기에, 신이 산 위의 험하고 메말라서 소가 갈지 못하고 사람이 가기 어려운 곳을 가려서 속전(續田)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속전이라도 흠이 두터우면 반드시 일구어야 할 것인데 더구나 평지에 어찌하여 묵으면 면세하는 법을

	<p>쓰겠습니까?” 하고, 윤필상이 아뢰기를, “우리 나라는 수세(收稅)가 가벼운 것이 맥도(狹道)25663) 와 비슷한 데가 있으니, 묵으면 면세하는 법을 평지의 고을에 시행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세상을 다스리는 데에는 큰 덕을 쓰고, 작은 은혜를 쓰지 않는다.’ 하였으니, 공법(貢法)25664) 을 시행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였다.</p>	
<p>성종 277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5월 24일 (정해) 2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 진교하기를, “술을 금하는 본의(本意)는 하늘의 경계를 삼갈 뿐더러 백성의 낭비를 막으려는 것인데, 사헌부(司憲府)의 금람(禁濫)25671) 하는 이졸(吏卒)이 국법을 지키지 않고 뇌물만을 생각하므로, 거세고 가멸한 자는 함부로 마시고 제 뜻대로 하더라도 현고(現告)하지 않고, 가난하고 약한 자는 병술[壺酒]을 지니더라도 문득 무고(誣告)하니, 어찌 국가의 금령(禁令)을 간사한 이졸의 주머니를 불리는 것이 되게 할 수 있겠는가? 이 뒤로 금리(禁吏)는 적발하는 대로 곧 그 마을에 알려져 뒷날의 증험(證驗)으로 삼으라. 죄 없는 사람을 무고하여 범람한 짓을 마음대로 행하는 일이 있으면, 피고자(被告者)가 진소(陳訴)하도록 허가하고 의금부(義禁府)에서 분간(分揀)하여, 진소한 것이 과연 사실이거든 그 이졸을 전례에 따라 전가 사변(全家徙邊)25672) 하고, 사실이 아니거든 또한 반좌(反坐)25673) 시키라. 이 법의 뜻으로 통가(通街)에 방(榜)을 걸어, 사헌부의 아전(衙前)과 마을의 작은 백성이 모두 두루 알게 하라.” 하였다.</p>	<p>○傳于承政院曰：“禁酒本意，非徒謹天戒，欲禁民糜費，而司憲府禁濫吏卒，不遵國法，惟賂是視，豪富者雖縱飲自恣而不現告，貧殘者雖持壺酒而輒誣告，安有以國家之禁令，爲奸吏之囊橐乎？今後禁吏，隨所摘即以告所在里，以爲他日證驗，如有誣非罪之人，恣行泛濫，則許令被告者陳訴，義禁府分揀所訴，果實則其吏卒依前例全家徙邊，如有不實則亦令反坐，以此法意，掛榜通街，使憲府衙前及里巷小民，無不周知。”</p>
<p>성종 277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5월 24일 (정해) 3번째기사</p>	<p>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세좌(李世佐) 등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이덕숭(李德崇) 등이 와서 아뢰기를, “근일 가벼운 죄인을 용서한 것은 오로지 가뭄이 심하기 때문에 작은 백성의 억울한 일이 있을까 염려한 것입니다마는, 도총관(都摠管) 등도 물론(勿論)하는 줄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신(大臣)의 고범(故犯)25674) 한 죄이므로</p>	<p>○司憲府大司憲李世佐等、司諫院大司諫李德崇等來啓曰：“近日原免輕係，專爲旱甚，慮有小民之冤枉也。但都摠管等，亦在勿論之列，此則大臣故犯之罪，尤關於謹天戒，不宜輕棄。今</p>

하늘의 경계를 삼가는 데에 더욱이 관계되니, 가벼이 버려두어서는 안됩니다. 올해의 단오날에 가멸한 상인(商人)과 시정(市井)의 무리가 종루(鐘樓)뒤에 그네를 매고 남북으로 나누어 승부를 겨루었는데, 그 사치를 극진히 한 것이 채봉(彩棚)25675) 과 다를 것이 없었고, 서울 안의 사녀(士女)가 구름처럼 모여 들고 부녀자 두 사람은 가마를 타고 그 곁에 있는 기녀(妓女)의 집에 가서 몸 붙여 있으면서 구경하였으니, 이것은 놀이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실로 아름다운 계집을 모아서 음란한 짓을 드러낸 것입니다. 풍속에 관계가 있는 것이 큰데도 물론(勿論)하는 줄에 들어 있으니, 국문(鞫文)을 끝내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이세좌 등이 또 아뢰기를,
“도총관(都摠管)의 일은 다른 잡범(雜犯)과 같은 것이 아니라 실로 고범(故犯)이므로 국가의 대체(大體)에 관계되며, 그 일의 수미(首尾)는 성감(聖鑑)이 환히 아시는 바입니다. 신(臣)들이 명을 받아 추국(推鞫)하였으나 속인 일이 많았고, 또 요전(澆奠) 따위 일도 사실대로 아뢰지 않았으니, 임금을 속인 죄가 이보다 클 수 없는데, 추안(推案)을 보신다면 속인 정상은 숨길 데가 없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요전(澆奠)의 일은 그것이 진실하지 않은지를 어떻게 아는가?”

하매, 이세좌 등이 대답하기를,
“총관(摠管)이 이 일을 성상 앞에서 아뢰었는데도 끝내 단서가 없고 다만 ‘이 말은 부총관(副摠管) 이하에서 나왔다.’ 하기에, 다시 물었더니 또 조간(曹幹)에게 미루었는데, 조간도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않았다.’ 하였으므로, 신들이 사실대로 끝이 아뢰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임금이 대신(大臣)에게 물었는데 끝이 아뢰지 않았으면 과연 옳지 않겠으나, 내가 듣기로는 조간(曹幹)이 전후(前後)를 잊어서 말하고도 말하지 않았다 하

年端午，富商市井之徒，鐘樓後結鞦韆，分南北爭勝負，極其奢侈，與彩棚無異，都中士女，全集如雲，有婦女二人，亦乘轎往寓其旁妓家以觀之。此非爲遊戲之資，實欲聚美女宣淫也。其有關於風俗大矣，而亦在勿論之列，請畢鞫。”不聽。世佐等又啓曰：“都摠管之事，非他雜犯之比，實是故犯，關國家大體，其事之首尾，聖鑑所洞照，臣等承命推鞫事多詐譎，且如澆奠等事，亦不以實啓之，欺罔之罪，莫大於此，若賜覽推案，則詐譎情狀，無所遁矣。”傳曰：“澆奠事，何以知其不實乎？”世佐等對曰：“摠管以此事啓於上前，而終無端倪，只曰此言發於副摠管以下，更問則又推諸曹幹，幹亦曰不聞不言，故臣等以爲不以實直啓也。”傳曰：“君上有問於大臣，而不以直啓，果不是矣。然予聞幹前忘後失，言之而曰不言，不言而曰言之也。假使幹實發是言，而忘不記憶，則何以爲之？小民之罪，尚皆有免，況大臣乎？”世佐等又啓曰：“凡人臣於君上之前，懷私報復欺罔等事，所不忍爲，而當國大臣所爲，當爲若是，大關事體，斷不可

	<p>고 말하지 않고도 말하였다 하니, 조간이 참으로 이 말을 냈더라도 잊어서 기억(記憶)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작은 백성의 죄도 오히려 다 용서하였는데, 더구나 대신이겠는가?”</p> <p>하였다. 이세좌 등이 또 아뢰기를,</p> <p>“무릇 신하가 임금 앞에서 사사로운 뜻을 품고서 보복하고 속이는 따위 일은 차마 할 수 없는 것이고, 나라의 일을 맡은 대신이 하는 일을 이리하여야 마땅하므로 일의 체모에 크게 관계되니, 단연코 버려둘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교활한 백성이 죄를 범하여 유사(有司)가 바야흐로 국문하는데, 교활한 백성이 ‘유사(有司)가 이제 나를 국문할지라도 내가 또한 장차 중상(中傷)할 수 있다.’ 한다면, 전하께서는 또한 그 죄를 다스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한 집안의 일로 말한다면, 그 주인이 그 종에게 물었는데 종이 곧이 대답하지 않으면 장차 그 종을 다스리지 않겠습니까? 임금이 법을 시행하는 것은 귀근(貴近)부터 비롯하여야 마땅하니, 전하께서는 권귀(權貴)라 하여 부정하게 용서하지 마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p> <p>“내가 추안(推案)을 보고 처치하겠다.”</p> <p>하였다.</p>	<p>棄。假使猾民犯罪，有司方鞫之，猾民曰：‘有司今雖鞫我，我亦將有以中之。’則殿下亦將不治其罪乎？且以一家之事言之，其主有問於其奴，而奴不直對，則將不治其奴之罪乎？人主行法，當自貴近始，願殿下勿以權貴而曲貫之。”傳曰：“予將覽推案以處之。”</p>
<p>성종 277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5월 25일 (무자) 3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기를,</p> <p>“중미(中米) 1백 석(碩)을 대비전(大妃殿)에 바치라.”</p> <p>하였다.</p>	<p>○傳旨戶曹，進中米一百碩于大妃殿。</p>
<p>성종 277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5월 27일 (경인) 1번째기사</p>	<p>호조 판서(戶曹判書) 정승조(鄭崇祖)가 와서 아뢰기를,</p> <p>“지금 예빈시(禮賓寺)의 공궤처(供饋處)는 모두 마흔 한 곳인데, 한정 있는 노비(奴婢)를 마흔 한 곳에 나누어 일시키므로 어쩔 수 없이 서너 사람을 두세 곳에 아울러 정하기 때문에 한 끼니 때에 여기저기 분주하며 공궤(供饋)하느라 노고(勞苦)가 막심합니다. 또 근래 음식(飲食)은 사치를 숭상하여 조금만</p>	<p>○庚寅/戶曹判書鄭崇祖來啓曰：“今禮賓寺供饋處摠四十一，以有限奴婢分役于四十一處，不得已以三、四人并定二三處，一食時之間，奔走供饋于彼此，勞苦莫甚，且近來飲食尚侈，少不稱</p>

	<p>뜻에 맞지 않으면 매를 치거나 가동(家僮)을 가두기도 하므로, 올해에 도망한 노비가 15명이나 되니, 이렇게 하여 마지않으면 몇 해 안 가서 죄다 달아날 것입니다. 신이 보건대 근래의 날씨는 이미 가물 조짐이 있고, 유구국(琉球國)의 사신(使臣)은 근일에 서울에 올 것인데, 그 지응(支應) 따위 일은 오로지 예빈시(禮賓寺)에 맡겨서 미리 갖추지 않을 수 없으니, 부득이 공궤(供饋) 하여야 할 곳은 어쩔 수 없겠으나, 그 나머지 긴요하지 않은 곳은 다 멈추고 노비가 있는 곳은 각사(各司)를 시켜 공궤하게 하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p> <p>하였다.</p>	<p>意，或加鞭撻，或囚家僮。今年奴婢逃亡者至十五名，若此不已，則不多年間將盡逃散矣。臣觀近來氣候已有旱徵，而琉球國使臣，近當到京，其支應等事，專委禮賓，不可不預爲之備，不得已供饋處則已矣，其餘不緊處，請皆停罷。有奴婢處，令各司供饋。”傳曰：“可。”</p>
<p>성종 278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윤5월 1일(갑오) 3번째기사</p>	<p>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이덕숭(李德崇) 등이 와서 아뢰기를, “신들이 여러 번 임광재(任光載) 등의 일을 아뢰었고, 전교하시기를, ‘총관(摠管)들이 과연 대체(大體)를 잃었다.’ 하셨으니, 임광재 등의 간사하게 속인 정상(情狀)이 이미 성감(聖鑑)에 분명하고, 물론(物論)이 다 성장계서 용서하지 않고 죄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버려두라고 명하시어 처음에 전교하신 것과 서로 어긋나니 신들은 서운합니다. 임광재가 공함(公緘)25701)에 답한 것은 여섯 가지가 다 총관들이 말한 것이라 하였는데, 총관들에게 물었더니 다들 말하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였다 하고, 임광재에게 물었더니 말한 자를 기억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총관들은 참으로 모르는 것인데 임광재와 이철견(李鐵堅)이 본부(本府)에 같이 입직(入直)하였을 때에 정성근(鄭誠謹)의 잘못을 주워 모아서 넌지시 물어보시기를 청한 것입니다. 간사하게 속일 생각이 현저하였으니, 죄를 용서할 수 없겠습니다.”</p> <p>하였다. 그때 마침 윤필상(尹弼商)·허종(許琮)·한치형(韓致亨)이 일이 있어서 빈청(賓廳)에 나아가니, 전교하기를, “내가 총관의 추안(推案)을 보니 폐부(肺腑)니 정족(鼎足)이니 하는 등의 말이</p>	<p>○司諫院大司諫李德崇等來啓曰：“臣等屢請任光載等事，而傳教曰：‘摠管等果失大體。’光載等譎詐情狀，已瞭於聖鑑，物論皆知聖上不饒抵罪，今命棄之，與初傳教相反，臣等缺望。光載答公緘，以爲六條皆諸摠管所言，而問諸摠管，則皆云不言不聞，質諸光載則云未能記發言者，以此觀之，則諸摠管等實所不知，而光載、鐵堅同直本府，捃摭誠謹過失，隱然請問，譎詐之計著矣，罪不可貸。”時適尹弼商、許琮、韓致亨，以事詣賓廳，傳曰：“予觀摠管推案，有肺腑鼎足等語，欲問情由，宰相等皆曰可，獨許政丞云：‘事涉戚里，不宜問之。’故摠管及憲府竝棄</p>

있으므로 사유를 물으려 하였는데, 재상(宰相)들이 다 옳다고 하였으나 허 정승(許政丞) 25702) 만은 척리(戚里)에 관계된 일이므로 묻지 않아야 한다고 하므로, 총관과 헌부(憲府)를 모두 버려두었다. 이제 대사헌(大司憲)이 아된 것은, 반드시 내가 정성근이 왕자군(王子君)의 집의 일을 말한 것을 미워하여 죄주었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으나, 내가 어찌 그가 일을 말하였다 하여 혐의를 품겠는가? 또한 세상에서 같이 살 수 없는 원수라면 목은 혐의라 하여도 좋겠지만, 이철건의 장전(莊田)의 일을 어찌 목은 혐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헌부의 잘못이다. 함께 폐부의 권세를 믿고 함께 정족의 형세를 이루었다 한 것은, 헌부의 생각으로 반드시 내가 총관들에게 속았다는 것이겠으나, 내가 어질지는 못하더라도 속은 일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헌부는 또 임금에게 의심받는다 하여 사직(辭職)을 청하였는데, 모두 다 개차(改差)하여야 할 것인가? 또 간원(諫院)에서 아된 바에 정성근의 잘못을 주워 모았다는 등의 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 대저 대간(臺諫)이 추안을 보려고 요구하는 것은 으레 있는 일인데, 이제 간원에서는 헌부의 추안을 보려고 요구하지 않으니, 또한 무슨 뜻인가?”

하였다. 윤필상 등이 아뢰기를,
 “형세를 보건대, 헌부는 곧 취직하지 않을 듯하니, 개차(改差)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이세좌(李世佐)가 아된 뜻은 알 수 없으나, 신들의 생각으로는 전교(傳敎)에 ‘정성근을 감싼다.’고 하셨으므로 아마도 성상께서 정성근과 서로 안 지가 오래 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여, 스스로 마음에 거리끼는 바가 있어 두려워 아뢰었을 것입니다.”

하고, 허종이 아뢰기를,
 “간원에서 주워 모았다는 등의 말을 써서 아된 것은 임광재가 아된 요전(澆奠)25703) 등의 일을 가리킨 것입니다. 추안을 보려고 요구하지 않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게 추문(推問)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之。今大司憲所啓，必以予爲惡誠謹言王子君第舍之而加以罪也。然予豈以其言事而懷嫌哉？且如不共戴天之讎，則謂之宿嫌可也。鐵堅莊田事，豈可言宿嫌乎？此憲府之失也。共恃肺腑之權，共成鼎足之勢云者，憲府之意，必以爲我見欺於摠管等也。予雖不諒，自料無見欺之事也。憲府又以爲見疑於人主，請辭職，皆可改差乎？且諫院所啓有摠摠誠謹過失等語，是何意耶？大抵臺諫求見推案例事也。今諫院不求見憲府推案，亦何意耶？”

弼商等啓曰：“以勢觀之，憲府似不卽就職矣，改差似可。世佐所啓之意，未可知也，臣等以爲，傳敎云庇護誠謹，故恐上以爲與誠謹相知已久，故自嫌於心，畏而啓之耳。”

許琮啓曰：“諫院書啓摠摠等語，必指光載所啓澆奠等事也。其不求見推案者，無乃有不公推問之處故然歟？”

傳曰：“誠謹初於經筵啓摠管事，至曰臣下之心不同，及憲府推問時，只曰大凡啓達耳，所言不直，故旣坐罪謫外矣。予於經筵但曰：‘誠謹被罪之後，請鞫摠管，無乃不可乎？’不言大司憲庇護誠謹也。且大司憲所

하니, 전교하기를,
 “정성근이 당초 경연(經筵)에서 총관(摠管)의 일을 아릴 때에는 ‘신하의 마음이 같지 않다.’고까지 말하였는데, 헌부에서 추문할 때에는 단지 ‘대범하게 아뢰었을 뿐이다.’ 하였다. 말한 것이 곧지 않으므로 이미 죄받아 외방(外方)으로 귀양갔다. 나는 경연에서 ‘정성근이 죄받은 뒤에 총관을 추국(推鞠)하기를 청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하였을 뿐이고, 대사헌이 정성근을 감싼다고 말하지 않았다. 또 대사헌이 아뢴 정성근이 법을 준수하였다는 등의 일은 내가 무심히 들었으므로 잊고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성근이 법을 준수하였다고는 하지만 해주 목사(海州牧使)로 있을 때 부당하게 형벌을 가하여 사람을 죽인 일이 있으니, 어찌 법을 잘 준수하였다고 할 수 있겠는가? 신하가 임금 앞에서 일을 논한 뒤에 ‘어느 일을 아뢰었다 하여 이 때문에 나를 허물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하는 것이 어찌 옳겠는가? 임금과 신하 사이는 마땅히 물고기와 물이 서로 반기는 것과 같아야 하는 것이니, 어찌 임금이 신하를 의심하고 신하가 임금을 의심할 리가 있는가? 대헌(大憲) 이하를 다 환차(換差)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대사헌에게는 사유를 물으려 하는데 어떠한가?”
 하였다. 윤필상 등이 아뢰기를,
 “상교(上敎)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니, 이세좌에게 전교하기를,
 “한 세상에서 같이 살 수 없는 원수라면 목은 혐의라 해도 좋을 것이나, 월성군(月城君) 25704) 이 어찌 장전(莊田)의 작은 일로 혐의를 품겠는가? ‘목은 혐의가 있다.’고 한 것은 불가(不可)하지 않겠는가? 또 수령(守令)의 헌부(賢否)를 내가 낱알이 알 수 없으므로 재상(宰相)이 알아서 천거한다면 내가 오히려 기뻐할 것인데, 어찌 이 때문에 경(卿)을 의심하겠는가? 또 함께 폐부(肺腑)의 권세를 믿는다는 등의 말은 임금이 약하고 신하가 강한 때의 일인

啓誠謹守法等事，予無心聽之，故忘不記焉。誠謹雖曰守法，牧海州時，枉刑殺人，豈可謂之能守法乎？人臣於君前論事後，乃言曰以某事啓達，無乃以是過我，其可乎？君臣之間，當如魚水相歡，安有君疑臣、臣疑君之理乎？大憲以下，皆可換差，大司憲則欲問情由，何如？” 弼商等啓曰：“上敎允當。” 傳于世佐曰：“如不共戴天之讎，則謂之宿嫌可也。月城君豈以莊田小事懷嫌哉？其曰有宿嫌，無乃不可乎？且守令賢否，予未得一知之，宰相知薦之，則予猶爲喜，豈以此而疑卿哉？且同恃肺腑之權等語，似君弱臣強時事也。然光載駙馬也，鐵堅、壽永皆戚屬也，若出入吏、兵曹，操弄權柄，則言之如此可也，都摠管則但於入直摠兵而已，今言之至此，無乃不可乎？” 世佐啓曰：“臣以無狀，偏蒙上恩，長在侍從之列，罄竭心力，思報聖恩之萬一，雖不能稱職，安敢有情於公事間以負聖恩乎？今都摠管推覈之際，再聞右助誠謹之教，無以曝白心懷，敢以前日論啓誠謹事，妄料自嫌，曝白無情耳，豈有他意？假使臣有右助誠謹之心，執

듯하다. 그러나 임광재(任光載)는 부마(駙馬)이고 이철건(李鐵堅)·구수영(具壽永)은 다 척족(戚族)이나 이조(吏曹)·병조(兵曹)에 출입하여 권병(權柄)을 잡고 농단하였다면 이렇게 말하여도 좋겠지만, 도총관(都總管)은 입직(入直)하여 군사를 총관(總管)할 뿐인데, 이제 이렇게까지 말하니, 불가(不可)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이세좌가 아뢰기를,

“신(臣)은 변변치 못한 자질로서 성상의 은총을 치우치게 받아 시종(侍從)의 반열(班列)에 오랫동안 있었으므로 마음과 힘을 다하여 성은(聖恩)의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려 생각하였습니다. 비록 직분을 제대로 다하지는 못할지라도 어찌 감히 공사(公事)에 사정(私情)을 두어 성은을 저버리겠습니까? 이제 도총관을 추핵(推覈)할 때에, 정성근(鄭誠謹)을 편들어 돕는다는 말씀을 두 번 들었는데, 마음을 드러내어 밝힐 길이 없었으므로, 감히 전일 정성근의 일을 논계(論啓)한 것을 망령되게 스스로 혐의스럽게 생각하여 사정이 없었음을 드러내어 밝혔을 따름입니다.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신이 정성근을 편들어 도울 마음을 가졌더라도 집의(執義) 이하 대장(臺長)²⁵⁷⁰⁵ 들이 어찌 신의 말을 들어주려 하겠으며, 집의 이하에게 편파한 일이 있더라도 신이 또한 어찌 감히 그 하는 일을 받아들였겠습니까? 신이 만약에 전하께서 정성근이 왕자군(王子君)의 집에 관한 일을 말한 것을 미워하여 혐의를 품고 죄주셨다고 생각하였다면 신의 죄는 죽어 마땅하겠으나, 그런 마음은 만무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은 ‘신은 정성근과 평소에 교분이 없습니다.’ 하였으나, 무릇 조사(朝士)로서 홍문관(弘文館)이나 사헌부(司憲府)와 교분이 없는 자가 있겠는가? 그러나 일을 논할 때를 당하면 그 교분이 있고 없는 것을 헤아리지 않는다. 더구나 추문(推問)할 때를 당하여 임금이 어찌 감히 누구는 누구와 교분이 있느냐는 것을 따지겠는가? 나는 경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물었을 따름이다.”

義以下臺長，豈肯聽臣之言？執義以下，雖有阿私，臣亦安敢聽其所爲乎？臣若以殿下爲惡誠謹，言王子君第舍事，懷嫌加罪，則臣罪當死矣，然萬無是心。”傳曰：“卿云臣與誠謹素無交分，凡朝士與弘文館、司憲府，孰無交分？然當論事，則不如計其交分之有無也。況當推問時，人君豈敢問某也與某也有交分乎？予未解卿意，故問之耳。”

<p>성종 278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윤5월 2 일(을미) 6번째기사</p>	<p>하였다.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강귀손(姜龜孫) 등이 차자(劄子)를 올려 아뢰기를, “대관(臺官)이 총관(摠管)을 규핵(糾劾)한 것은 참으로 공의(公義)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총관들은 정성근(鄭誠謹)이 자기들의 숨은 일을 드러낸 것을 매우 원망하여 마음속으로 보복할 생각을 품고 기묘한 계책으로 중상하려고 걸으려는 피혐(避嫌)하는 말을 하는 체하여 성상께서 문기를 기다려서 발설하였으니, 음모의 몫시 간사함을 저들이 어떻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또 그 반압(反壓)한다는 말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다가 입밖에 냈는데, 성상의 물음에 대답하게 되어서는 도로 숨기고 사실대로 아뢰지 않았으니, 그 보복한 정상과 기망한 죄는 참으로 성감(聖鑑)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저 원한이 있어 반드시 보복하는 것은 잔단 용부(庸夫)도 부끄러워하는데, 더구나 식육(食肉)하는 자(25711) 이겠습니까? 전대(前代)를 두루 보건대 간사한 소인이 어리석은 임금을 만나서 몰래 남을 중상하는 일은 있었으나, 성명(聖明)한 세상에서 머정이 모함하여 꺼리는 바가 없는 것이 이토록 지극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대관(臺官)이 반복하여 계청(啓請)하여 반드시 죄주려는 것이 어찌 공론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 시비와 사정(邪正)이 분명한데도 전하께서는 총관을 놓아 주고 말한 자를 가셨으니, 신들은 이제부터 조정(朝廷)에서 서로 양보하는 풍습이 사라지고 서로 반목하는 버릇이 자라나며, 대간(臺諫)의 간쟁(諫諍)하는 길이 막히고 간사한 자의 교묘한 계책이 득의할까 염려스럽습니다. 바라건대 빨리 성명(成命)25712) 을 거두어 대관을 갈지 마소서. 그러면 공도(公道)가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어서(御書)로 이르기를, “이미 내 뜻을 유시(諭示)하였는데, 다시 무슨 말을 하는가?” 하였다.</p>	<p>○弘文館副提學姜龜孫等上劄子曰： 臺官之糾劾摠管，實愜公議，摠管等深銜誠謹發己之私，心懷報復，欲奇計中之，陽爲避嫌之辭，以待上問而發，謀之孔譎，彼焉瘦哉？且其反壓之言，蓄於心而發於口，及對上問，回互掩諱，不以實啓，其報復之狀，欺罔之罪，固難逃於聖鑑矣。夫有怨必報，瑣瑣庸夫，尙且恥之，況肉食者乎？歷觀前代，儉邪傾儉之小人，值暗主而陰中傷人則有之矣，未聞有處聖明之世，而公然傾軋，無所忌憚，至於此極也。臺官之反覆啓請，必欲抵罪，豈不快於公論？其是非偏正判矣，而殿下釋摠管、遞言者，臣等恐自此朝廷相讓之風消，而相軋之習長，臺諍之路塞而姦巧之計得矣。伏願亟收成命，勿遞臺官，公道幸甚。 御書：“已諭予意，更有何說？” 【史臣曰：“李世佐爲大司憲，不深劾摠管根隨正兵收價，何者？以其壻鄭洪孫爲都摠府經歷故也。且世佐與光載父士洪同里閭，雖迫於公議，或有陰助之意。”】</p>
--	---	---

	<p>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이세좌(李世佐)가 대사헌(大司憲)이었을 때 총관들이 근수(根隨)25713)·정병(正兵)에게서 값을 거둔 일을 극력 탄핵하지 않은 것은 그 사위 정홍손(鄭洪孫)이 도총부 경력(都摠府經歷)이었기 때문이었다. 또 이세좌는 임광재(任光載)의 아버지 임사홍(任士洪)과 한 동리 사람이었으므로, 비록 공론에 몰리더라도 더러는 몰래 돕는 뜻이 있었다.” 하였다.</p>	
<p>성종 278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윤5월 2일(을미) 7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 전교(傳敎)하기를, “가뭇이 매우 심하니, 대전(大殿)과 중궁(中宮)·왕세자궁(王世子宮)에 모두 감선(減膳)하여 아홉 그릇만을 올리라.” 하였다.</p>	<p>○傳于承政院曰: “旱乾已甚, 大殿及中宮、王世子宮竝減膳, 只進九器。”</p>
<p>성종 278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윤5월 3일(병신) 3번째기사</p>	<p>형조 판서(刑曹判書) 김여석(金礪石)이 졸(卒)하였는데, 철조(輟朝)하고 사부(賜賻)·조제(弔祭)를 상례(常例)대로 하였다. 김여석의 자(字)는 은경(殷卿)이고 광산(光山)이 본관이며, 강화 부사(江華府使) 김수(金洙)의 아들이다. 성화(成化) 을유년(25715) 에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였다. 그해 가을에 세조가 친히 책사(策士)25716) 하였을 때 김여석이 지은 대책(對策)이 두번째를 차지하였는데, 임금이 대책을 보고는 내전(內殿)으로 불러서 보고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였으며, 방방(放榜)25717) 하던 날에는 임금이 시(詩) 한 장(章)을 지어 화답하여 바치게 하였다. 처음에 성균 학유(成均學諭)에 제배(除拜)되고 예문관 검열(藝文館檢閱)을 겸대(兼帶)하였다. 정해년(25718) 에 김여석이 경연(經筵)에 입시(入侍)하였을 때 세조가 분부하기를, ‘술은 사람을 미치게 하니, 그대는 즐기지 말라. 뽀내는 것은 사람을 거만하게 하니, 너는 뽀내지 말라. 욕심이 자라게 해서 안되니, 너는 참으라. 사람이 자신을 보전하는 것은 이 몇 가지에 지나지 않으니, 너는 내 말을 체득(體得)해야 한다.’ 하고, 이어서 영성군(寧城君) 최항(崔恒)에게 명하여 ‘술을 즐기지 말고 뽀내지 말고 욕심부리지 말라[毋嗜飲毋驕矜毋嗜欲].’ 하는 아홉 자를 쓰게 하고 어압(御押)하여 내렸다. 무자년(25719) 에 군자 주부(軍資主簿)에 올랐다. 기축년(25720) 에 병조 좌랑(兵曹佐郎)에 제배되었는데, 사</p>	<p>○刑曹判書金礪石卒。輟朝賜賻, 弔祭如例。礪石字殷卿, 光山人, 江華府使洙之子。成化乙酉中進士, 其秋世祖親策士, 礪石所對策居第二, 上覽之, 召見于內殿, 命進酒。放榜日, 上製詩一章, 令和進。初拜成均學諭, 兼帶藝文館檢閱。丁亥, 礪石入侍經筵, 世祖敎曰: “酒令人狂, 爾其勿嗜; 驕使人慢, 爾其勿驕; 欲不可滋, 爾其忍之。人之保身, 莫過此數者, 爾宜體予之言。” 仍命寧城君崔恒書 ‘毋嗜飲, 毋驕矜, 毋嗜欲’ 九字, 御押以賜之。戊子陞軍資主簿, 己丑拜兵曹佐郎, 以事罷, 尋授兵曹佐郎, 壬辰陞正郎, 癸巳遷議政府檢詳, 丙申陞(金) [舍] 人, 戊戌轉司憲府執義, 己亥以事左授成均司藝。時帝命攻建州衛,</p>

고 때문에 파직되었다가 곧 병조 좌랑에 제수되고, 임진년(25721)에 정랑(正郎)에 올랐다. 계사년(25722)에 의정부 검상(議政府檢詳)으로 옮기고, 병신년(25723)에 사인(舍人)에 올랐다. 무술년(25724)에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로 옮겼는데, 기해년(25725)에 사고 때문에 좌천되어 성균 사예(成均司藝)에 제수되었다. 그 때 황제가 건주위(建州衛)를 공격하라 명하였는데, 원수(元帥) 윤필상(尹弼商)이 불러 종사관(從事官)으로 삼았다. 신축년(25726)에 사간원 사간(司諫院司諫)에 제배되고, 임인년(25727)에 사복시 정(司僕寺正)에 올랐다가, 발탁되어 승정원 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에 제배되고, 계묘년(25728)에 우부승지(右副承旨)를 거쳐 우승지(右承旨)에 오르고, 얼마 안되어 초탁(超擢)되어 도승지(都承旨)에 제배되었다. 어머니의 상(喪)을 당하였는데, 특별히 명하여 부증(賻贈) 25729) 하였고, 삼년상을 마치자 이조 참의(吏曹參議)에 제수되었다. 정미년(25730)에 외직(外職)으로 나가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가 되었고, 얼마 안되어 특별히 가선 대부(嘉善大夫)에 가자(加資)되었다. 무신년(25731)에 갈려서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가 되고 또 판결사(判決事)를 겸직하였다가, 곧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가 되었다. 경술년(25732)에 호조 참판(戶曹參判)에 제배되었다가, 병조 참판(兵曹參判)으로 옮겼고, 특별히 가정 대부(嘉靖大夫)에 가자되고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가 되었다. 신해년(25733)에 동지중추부사에 제수되었다가, 대사헌(大司憲)으로 옮겼다. 임자년(25734)에 예조 참판(禮曹參判)에 제배되고, 계축년(25735)에 특별히 자헌 대부(資憲大夫)에 가자되고 형조 판서(刑曹判書)가 되었다. 이때에 이르러 졸(卒)하니, 나이는 마흔 아홉이다. 시호(諡號)를 공목(恭繆)이라 하였는데, 게을리하지 않고 지위를 구한 것을 공(恭)이라 하고, 이름이 실속과 다른 것을 목(繆)이라 한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김여석은 젊어서부터 총혜(聰慧)하여 사후(伺候) 25736)를 잘하고 청탁하기를 좋아하였으며, 세상의 명예를 곡진히 피하

元帥尹弼商辟爲從事，辛丑拜司諫院司諫，壬寅陞司僕寺正，擢拜承政院同副承旨，癸卯由右副承旨陞右承旨，未幾超拜都承旨，丁內憂，特命賻贈。服闋除吏曹參議，丁未出爲忠淸道觀察使，未幾特加嘉善，戊申遞爲同知中樞府事，又兼判決事，尋爲慶尙道觀察使。庚戌拜戶曹參判，轉兵曹參判，特加嘉靖爲江原道觀察使，辛亥授同知中樞府事，遷大司憲，壬子拜禮曹參判，癸丑特加資憲刑曹判書，至是卒。年四十九。諡曰恭繆，不懈于位，恭；名與實爽，繆。

【史臣曰：“礪石，少聰慧善伺候，喜干謁，曲營世譽，不宿然諾，嘗爲兵曹佐郎，務徇人意，無不響應，軍士翕然稱之，遂有能名。歷華要驟登高顯，性貪鄙邪諂，能揣知上意，俯仰遷就，以希恩遇。常作簡牘，奮筆如飛，頃刻數十紙，以營私利，遇人疾病喪弔，必皆親造，趨附者衆，凡有要求於人，不應輒嗔。家世寒素，而暴致富饒，平居車馬填街，及卒門無弔客。”】

	<p>여 승낙한 일의 시행을 지체하지 않았다. 일찍이 병조 좌랑(兵曹佐郎)이었을 때에는 남의 뜻을 따르기를 힘써 얼른 들어주지 않는 일이 없었으므로, 군사들이 모두 칭찬하였다. 드디어 재능이 있다는 이름이 있어, 화요(華要)한 벼슬을 지내고 고현(高顯)한 지위에 갑자기 올랐다. 성품이 탐욕스럽고 비루하며 간사하고 아첨을 잘하였으며, 임금의 뜻을 잘 헤아려 알아서 이리저리 잘 적응하여 은우(恩遇)를 바랐다. 늘 서간을 쓰되 나는 듯이 붓을 휘둘러 잠시 사이에 수십 장을 써서 사리(私利)를 피하였다. 남의 질병이나 상조(喪弔)를 당하면 반드시 다 친히 갔으므로, 붙좃는 자가 많았다. 무릇 남에게 요구하매 응하지 않으면 곧 화를 냈다. 집이 대대로 가난하고 검소하였으나, 갑자기 부유(富裕)해졌다. 평소에는 거마(車馬)가 거리를 메웠으나, 졸(卒)하자 문에 조객(弔客)이 없었다.” 하였다.</p>	
<p>성종 278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윤5월 6일(기해) 5번째기사</p>	<p>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이덕숭(李德崇) 등이 와서 아뢰기를, “전교(傳敎)에 ‘총관(總管)의 일은 형적이 없어서 죄주기 어렵다.’ 하셨으나, 임광재(任光載)·이철건(李鐵堅) 등이 같이 총부(摠府)에 입직(入直)하여 비밀리에 의논하고 함께 정원(政院)에 가서 이철건이 먼저 ‘임광재가 말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아뢰어 기미만을 보이고 말하지 않고서 임광재에게 하문(下問)하시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임광재가 서로 어울려서 입계(入啓)하였는데, 총관들에게 질문하였을 때에는 다들 듣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니, 그 속인 계책이 매우 분명하여 형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헌부(憲府)에서 문비(問備)하였을 때에 임광재는 누군가가 말하였다는 여섯 가지를 총관들의 말이라 하였으나, 총관들은 말하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였다고 대답하고, 다시 임광재에게 힐문하였더니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였으니, 이것도 간사한 계책임이 매우 분명하여 또한 형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요전상(澆奠床)을 청하였다가 얻지 못하여 수령(守令)을 힐뜯었다는 일과 거동 때에 나쁜 술을 바쳤다는 등의 말은 임광재가 곧바로 아뢰었으니, 또한 형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p>	<p>○司諫院大司諫李德崇等來啓曰：“傳敎云：‘摠管事，無形難罪。’光載、鐵堅等，同直摠府，秘議後俱詣政院，鐵堅先啓云：‘光載有言，引而不發，請問光載。’光載相應入啓，質諸摠管，則皆曰不聞，其詐計明甚，非無形也。憲府問備時，光載以或說六條爲諸摠管之言，而諸摠管則以不言不聞答之，反詰光載，則以不記憶爲辭，此亦譎計明甚，亦非無形也。請澆奠床不得，非毀守令事，及行幸時進惡酒等語，則光載直啓，亦非無形也。如此事狀非一，罪不容貸，請罷免。”不聽。德崇等更啓曰：“臣等雖承上諭，心知不可，</p>

	<p>이러한 사상(事狀)이 한둘이 아니니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파면하소서.”</p> <p>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이덕송 등이 다시 아뢰기를,</p> <p>“신(臣)들이 비록 성상께서 이르신 말씀을 들었으나, 마음속으로 옳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더욱 분격합니다. 당초 헌부의 소(疏)를 대신(大臣)에게 의논하라 하셨을 때 대신들이 혹은 ‘논한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하기도 하고, ‘논한 것이 지극히 옳습니다.’ 하기도 하였으니, 이것은 공론이 있는 것이므로 폐기할 수 없습니다. 또 헌부의 소의 말미에 어서(御書)로 ‘총관이 한 일은 과연 대체(大體)를 잃은 것이다.’ 하셨고, 그 뒤로 정원(政院)에서 불러서 물었을 때에 여러 총관들이 아뢰는 것이 한결같지 않으므로 헌부에 명하여 하나로 귀결(歸結)되게 추고(推考)하라고 하셨으니, 이는 모두 성상께서 공론이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아시고서 죄를 다스리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척리(戚里)와 귀근(貴近)25745) 이기 때문에 죄주지도 않고 또 파면하지도 않으십니다. 이는 성상의 명이 서로 어긋나는 것이니, 외간에서 성상의 뜻의 깊고 얕음을 엿볼까 두렵습니다. 청컨대 파면하시고 용서하지 마소서.”</p> <p>하니, 전교(傳敎)하기를,</p> <p>“경(卿)들은 내가 어긋났다 하나, 나에게서는 어긋난 것이 없다. 이제 만약에 국문(鞫問)한다면 열 총관을 다 형신(刑訊)해야 할 것이니, 어찌 옳겠는가?”</p> <p>하였다. 이덕송 등이 또 아뢰기를,</p> <p>“유경(柳垞)의 일은 실정이 없는 것이라 하여 취직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전일 유경이 성상 앞에서 제사(諸司)의 제조(提調)·장관(長官)이 구사(丘史)를 많이 거느린 일을 아뢰고, ‘헌부에서 혹 알더라도 검거(檢舉)하지 않습니다.’ 하였는데, 그때의 장령(掌令) 권경희(權景禧)가 아뢰기를, ‘신들이 어찌 알고도 검거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니, 유경이 곧 아뢰기를, ‘신이 아뢰는 것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하였습니다. 이는 권경희가 발명(發明)한 말에 겁을 낸</p>	<p>尤切憤激，初以憲府疏議于大臣，大臣或云所論甚當，或云所論極是，此公論所在，不可廢也。又於憲府疏末，御書：‘總管所爲，果失大體。’其後政院招問時，諸總管所啓不一，命憲府歸一推考，此皆上深悉公論所在而欲治罪也。今則以戚里貴近之故，既不抵罪，又不罷免，是上命終始抵牾，恐外間窺上意淺深。請罷免不饒。”傳曰：“卿等雖以予爲抵牾，予無抵牾也。今若鞫之，十總管皆刑訊，其可乎？”德崇等又啓曰：“柳垞事，以爲無情，令就職。前日垞於上前啓諸司提調、長官丘史多率事曰：‘憲府雖或知之，亦不檢舉。’其時掌令權景禧啓曰：‘臣等安有知而不檢舉之理乎？’垞卽啓曰：‘臣之所啓，不如是也。’是則刳於景禧發明之說也，退而語同僚，匿其變辭之狀，故合司避嫌。垞之爲人，不合臺諫，於此可知。”傳曰：“其時換差，只以臺諫相駁不相容故耳。垞別有不合臺諫之事乎？”德崇等啓曰：“不可的指爲某事不合也，但觀垞於朝行間，行止舉動而知其不合也。”傳曰：“卿等所啓，似涉不公。”德崇等啓曰：“垞，</p>
--	--	--

	<p>것인데, 물러가서 동료에게 말할 때에는 그 말을 바꾼 정상을 숨겼으므로, 합사(合司)하여 피혐(避嫌)하였으나, 유경의 사람됨이 대간(臺諫)에 맞지 않는 것을 이에서 알 수 있습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그때 환차(換差)한 것은 다만 대간이 서로 논박하여 서로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유경에게 대간에 맞지 않는 다른 일이 있는가?”</p> <p>하였다. 이덕숭 등이 아뢰기를,</p> <p>“어떤 일이 맞지 않는다고 확실히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유경이 조정(朝廷)의 반열(班列) 사이에서 행동하는 것을 보아서 그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경들이 아뢴 것은 공정하지 않은 듯하다.”</p> <p>하였다. 이덕숭 등이 아뢰기를,</p> <p>“유경은 사람들이 다 성질과 도량이 합당하지 않다고 하며, 또 성상 앞에서 겁을 내어 말을 바꾸었으므로, 감히 아뢰었습니다.”</p> <p>하니,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p> <p>“유경의 일은 간원(諫院)에서 처음에는 말을 바꾼 것을 아뢰었으나, 《일기(日記)》를 살펴보니 그렇지 않았으므로 취직하라고 명하였는데, 다음에는 조정의 반열에서 행동하는 것을 보면 맞지 않는 듯하다고 아뢰고, 또 성질과 도량이 합당하지 않고 겁이 있어 지키는 것이 없다고 아뢰니, 반드시 들어주어야 그만두려고 기약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인물의 진퇴에 있어서 어떠하겠는가? 또 유경의 심술(心術)이 어떠한지 알지 못하겠으니, 그것을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에 물어 보라.”</p> <p>하였다.</p>	<p>人皆云性度不中，又於上前畏劫變辭，故敢啓耳。”傳于承政院曰：“垆之事，諫院初以變辭啓之，考日記則不然，故命就職，次啓以朝行間行止舉動觀之，似不合，又啓以性度不中劫懦無所守，期於必聽後而已。若是則於人物進退何如？且未知垆之心術何如，其問于領敦寧以上及議政府。”</p>
성종 278권, 24년	광원군(廣原君) 이극돈(李克墩)이 와서 아뢰기를,	○廣原君李克墩來啓曰：“臣以慶尙道

<p>(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윤5월 8 일(신축) 3번째기사</p>	<p>“신(臣)이 경상도 감사(慶尙道監司)로 있을 때에 목격한 일을 조열(朝列)하여 아뢰겠습니다.</p> <p>1. 국왕(國王)25752) 의 사신이 왔을 때에 경중(京中)과 일로(一路)의 지용(支用)을 제외하고 본포(本浦)에서 쓰는 것이 대개 쌀 1천여 석(碩)입니다. 그러한 까닭은 사신이 포소(浦所)에 처음 닿으면 포소에 머무르는 동안의 양료(糧料)를 많이 받으려고 핑계를 대고 즉시 떠나지 않으며, 포소로 돌아온 뒤에도 주인 왜호(主人倭戶)와 본포의 향통사(鄉通事)가 부동하여 혹 배를 치장한다고 핑계하거나 물건을 점퇴(點退)25753) 하기 때문에 대여섯 달 지체하므로 포소에 머무르는 동안의 양료가 5백여 석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 향통사와 주인왜(主人倭)가 이익을 나누는 계책이니, 장래의 폐단을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금방 절목(禁防節目)을 해사(該司)가 의논하여 시행하고 오랜 세월 동안 일을 맡아서 외람된 것이 더욱 심한 향통사는 다른 포소로 바꾸어 보내소서.</p> <p>1. 근년에는 객인(客人)25754) 이 나오는 수가 전보다 조금 줄었으나, 경술년(25755) ·신해년(25756) ·임자년(25757) 세 해 동안에 삼포(三浦)25758) 에서 쓴 수를 살펴보면 대개 4만 5백여 석(石)이니, 만약에 흉년이 든다면 국가에서는 장차 어떻게 대접하겠습니까? 그 객인이 먹는 것과 응당 주어야 할 물건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를테면 포소에 머무르는 동안의 양료를 지나치게 받는 것과 배를 쥔 때에 중선(中船)을 대선(大船)이라 하고 소선(小船)을 중선이라 하여 외람되게 양료를 받는 것은 다 향통사와 주인왜가 도모한 것입니다.</p> <p>1. 《대전(大典)》에 ‘고초도(孤草島)에서 고기를 낚는 왜선(倭船)은 대선이면 2백 미(尾), 중선이면 1백 50미, 소선이면 1백 미를 수세(收稅)하여 베[布]로 바꾼다.’ 하였고, 《해동제국기(海東諸國紀)》에 실려 있는 금약(禁約)에는 ‘고기를 낚는 대마도(對馬島) 사람은 도주(島主)의 삼착 도서(三着圖書)25759)</p>	<p>監司時目擊事條陳之。一，國王使臣之來，除京中及一路支用外，本浦所費，大概米一千餘碩，所以然者，使臣初到浦，欲多受留浦糧，托故不即發行，還浦後亦與主人倭戶及本浦鄉通事符同，或稱裝船，或因物點退，遷延五、六朔，留浦糧料，乃至五百餘碩。是皆鄉通事主倭分利之計，將來之弊，不可勝言。其禁防節目，令該司擬議施行。鄉通事年久任事，泛濫尤甚者，換定他浦。一，近年客人出來之數，比前日少減。然考庚戌、辛亥、壬子三年，三浦所費之數，則大概四萬五百餘石，若有凶歉，國家將何以待之？其客人所食及應給之物則已矣，如留浦糧濫受及量船時，以中爲大，以小爲中，冒濫受料者，皆鄉通事主倭之謀。一，《大典》內：‘孤草島釣魚，倭船收稅，大船二百尾，中船一百五十尾，小船一百尾。’ 質布，《海東諸國紀》禁約：‘對馬島人釣魚者，受島主三着圖書文引到知世浦，改給文引，孤草島定處外，勿許橫行，釣畢納稅魚。若無文引者，托言不勝風浪，潛持兵器橫行邊島者，以賊論。’ 故前日倭人例受島主</p>
---	---	--

의 문인(文引)25760) 을 받아 지세포(知世浦)에 이르면 문인을 다시 발급해주고 고초도의 일정한 곳 밖에는 함부로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낚시질이 끝나면 세어(稅魚)를 받되, 만약에 문인이 없는 자나 풍랑에 휩쓸려 왔다고 핑계하고 몰래 병기(兵器)를 가지고 변방의 섬을 횡행(橫行)하는 자는 도둑으로 논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전일에는 왜인(倭人)이 으레 도주의 문인을 받아서 고기를 낚고 세를 바쳤으며 감히 약조(約條)를 저버리지 못하였는데, 신이 내려가서 지세포에 이르러 그 문서를 살펴보았더니, 을사년(25761) 에 왜의 소선 11수(艘)가 세를 바쳤을 뿐이고, 그 뒤 각년(各年)에는 한 사람도 문인을 받아 오지 않았으며, 마음대로 바다를 왕래하는 자는 수를 모를 만큼 많았습니다. 그리고 변장(邊將)은 날마다 후망(候望)하기는 하지만 ‘왜선 몇 수(艘)가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고 감사(監司)와 절도사(節度使)에게 치보(馳報)할 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후망하는 자가 예사로 여기고 듣는 자도 예사로 여기니, 저 왜인들은 이 때문에 몰래 작은 섬에 들어가 있다가 틈을 타서 몰래 나와 혹은 물에 내려 변방을 침범하기도 하고 혹은 해물(海物) 채취선을 약탈하여, 그 약조를 저버리고 법을 어기는 일을 거리낌없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이 뜻으로 도주를 계칙(戒勅)하고 또 변장을 시켜 기회를 타서 잡게 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1. 제포(薺浦)에서 항거(恒居)하는 왜인들이 타는 배가 80여 수이고 부산포(釜山浦)는 30여 수이고 염포(鹽浦)는 15수인데, 부산포와 염포에서 항거하는 왜인은 그 수가 많지 않고 우도(右道)의 적로(賊路)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으니, 제포는 사람이 많고도 가멸진데다 진로에서도 가장 가까우니, 변경(邊境)에서 도둑질하는 것은 반드시 이들이 범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 땅에 의탁하여 나라의 후한 은혜를 받았는데도 감히 이렇게 하니, 장래의 화(禍)를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文引, 釣魚納稅, 不敢負約。 臣下界到知世浦, 考其文案, 則乙巳年倭小船十一艘納稅而已。 其後各年, 則無一人受文引而到, 任意往來海中者, 不知其數, 邊將逐日候望, 倭船幾艘自某邊向某邊, 不知去向云云, 馳報監司、節度使相續, 以此候望者以爲常, 聽之者亦以爲常。 彼倭則因此潛投小島, 乘間竊發, 或下陵犯邊, 或掠採海船, 其負約違法, 恣行無忌者, 不可勝言。 宜將此意, 戒勅島主, 又令邊將乘機捕捉。 一, 薺浦恒居倭人所乘船八十餘艘, 釜山浦三十餘艘, 鹽浦十五艘, 而釜山浦、鹽浦恒居倭, 則其數不多, 距右道賊路遠。 薺浦則人多且富, 距賊路最近, 作耗邊境者, 未必非此輩所犯, 此輩托我土地, 受國厚恩, 敢爾如此, 將來之禍, 不可勝言, 亦令邊將設策生擒, 通諭島主, 兼示本浦酋長, 則彼必無辭自服, 邊警從此自止。 議者, 若曰如此, 則必生釁, 不如且已。 臣意以謂, 我不犯彼, 而彼來犯我, 則我之擒獲, 何有構釁之理? 若爲我擒則彼必愧, 謝之不暇, 何敢怨我乎? 所可慮者, 邊將貪功, 輕舉追逐於大洋, 以取

변장을 시켜 계책을 세워 사로잡게 하여 도주에게 통유(通諭)하고 아울러 본포(本浦)의 주장(酋長)에게 보이면, 저들이 반드시 말이 없이 스스로 승복할 것이고, 변방의 경급(警急)이 이로부터 절로 그쳐질 것입니다. 의논하는 자는 혹 ‘이렇게 하면 반드시 혼단(釁端)을 일으킬 것이니 그만두는 것만 못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은, ‘우리가 저들을 침범하지 않았는데 저들이 와서 우리를 침범하였다면 우리가 사로잡은들 무슨 혼단을 맺을 리가 있겠으며, 만약 우리에게 잡힌다면 저들이 반드시 부끄럽게 여기고 빌기에 겨를이 없을 것인데 어찌하여 감히 우리를 원망할 것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염려할 것은 변장이 공을 탐내서 경솔하게 군사를 일으켜 큰바다까지 쫓아가서 스스로 실패하는 것일 뿐입니다.

1. 신이 처음 본도(本道)에 이르러 보니, 왜인의 물건 값으로 주는 포화(布貨)의 승수(升數)가 지나치게 고와서 백성이 매우 괴로와하므로, 이 뜻을 치계(馳啓)하였는데, 호조(戶曹)·예조(禮曹)에 내려 함께 의논하게 하시어 5승(升)의 면포(綿布)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호조에서 보낸 공천(公賤)의 공포(貢布)의 견양(見樣)은 6승이니, 경중(京中)과 외방에서 쓰는 것이 각각 다르면 객인이 반드시 기꺼이 받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천의 잔폐(殘廢)는 지금에 와서 더욱 심한데 경중에 바치는 것일지라도 모두 5승의 면포이니, 지나치게 고운 것을 바치게 하여 잔폐한 백성에게 폐단을 끼칠 것은 없겠습니다.

1. 제포·부산포에 객인이 가져온 동철(銅鐵)을 전에는 수로(水路)를 거쳐 성주(星州) 임내(任內)25762) 의 화원현(花園縣)으로 옮겨 두고, 경상(京商)25763) 이 경중에서 값을 바치고 가서 받게 하였으나, 정미년(25764) 이후로는 각각 본포(本浦)에 두고 경상이 가서 바꾸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경상이 왜인과 서로 통하여 금령(禁令)을 무릅쓰고 흥판(興販)하여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폐단이 적지 않으니, 청컨대 전례에 따라 화원현에

自敗而已。一，臣初到本道，見倭物價布貨，升數過細，民甚苦之，故將此意馳啓，下戶曹、禮曹，同議定以五升綿布。今考戶曹所送公賤貢布見樣，乃六升也。京外所用各異，客人必不肯受，公賤殘弊，到今尤甚，雖納京中者，皆是五升布，不必過細，貽弊殘民。一，齊浦、釜山浦客人持來銅鐵，前此由水路，移置星州任內花園縣，令京商納價于京而往受之。自丁未年以後，各藏本浦，令京商往買，因此京商與倭相通，冒禁興販，無所不爲，其弊不貲。請依前例，移置花園縣貿易，以杜其弊。鹽浦則己亥年以前，倭人不賚銅鐵而來，其後所賚亦不多，然水路阻隔，移轉爲難，仍置蔚山除貿易，以備國用。一，右道則海中多有小島，賊之隱泊甚易。其要害處近海居者，距海五里內移置，則彼難於剽掠，雖或下陸，邊將亦可及救矣。”克墩又進碑銘印本三幅，仍啓曰：“此雖佛家之事，但其筆迹必王右軍，且法帖有《證道歌》、《圓覺經》，故敢獻之。”傳曰：“所啓之事，當詳觀而處之。”已而命召領敦寧以上及議政府、六曹、

	<p>옮겨 두고 사가게 하여 그 폐단을 막으소서. 그리고 염포는 기해년(25765) 이전에는 왜인이 동철을 가져오지 않았고 그 뒤에 가져오는 것도 많지 않으나, 수로가 멀어져 옮기기 어려우니, 그대로 울산(蔚山)에 두고 매매하지 말게 하여 국용(國用)에 대비하게 하소서.</p> <p>1. 우도(右道)는 바다에 작은 섬이 많아서 도둑이 몰래 배를 대기가 매우 쉬우니, 그 요해처(要害處)의 바다 가까이 사는 자를 바다에서 5리 이상 안으로 옮겨 두면, 저들이 약탈하기 어렵고 비록 물에 내려오더라도 변장(邊將)이 또한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p> <p>하였다. 이극돈이 또 비명(碑銘)의 인본(印本) 세 폭(幅)을 바치고 아뢰기를, “이것이 불가(佛家)의 일이지는 합니 다만, 그 필적(筆迹)은 반드시 왕우군(王右軍) 25766) 의 것이며, 또 법첩(法帖)에 《증도가(證道歌)》·《원각경(圓覺經)》이 있으므로, 감히 바칩니다.”</p> <p>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아된 일은 상세히 보고 처치하겠다.”</p> <p>하고, 이극고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한성부(漢城府)를 명소(命召)하여 의논하게 하고, 또 이극돈에게 명하여 의논에 참여하게 하였다. 윤필상(尹弼商)·윤호(尹壕)·허중(許琮)·이철건(李鐵堅)·정문형(鄭文炯)은 의논하기를, “이극돈이 아된 것은 이치가 있는 듯하니, 해사(該司)를 시켜 구법(舊法)을 참고해서 의논하여 아뢰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소서.”</p> <p>하고, 정승조(鄭崇祖)·여자신(呂自新)·홍귀달(洪貴達)·윤효손(尹孝孫)은 의논하기를, “이극돈이 아된 것은 다 시행할 만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법을 어기고 도둑질하는 왜인을 변장(邊將)이 기회를 타서 잡게 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인데, 만약 변장으로 마땅한 사람을 얻어 처치함에 적절함을 잃지 않아 저들로 하여</p>	<p>漢城府議之。 又命克墩參議。 尹弼商、尹壕、許琮、李鐵堅、鄭文炯議：“克墩所啓似有理， 令該司參考舊法議啓後更議施行。” 鄭崇祖、呂自新、洪貴達、尹孝孫議：“克墩所啓， 皆可施行， 其中違法作耗倭人， 令邊將乘機捕獲事， 最是大段， 若邊將得其人處置， 不失機宜， 使彼懼吾威而欲避則善矣， 若輕舉失利， 徒生弊端， 則其害反有不可勝言者矣。 要在邊將得人， 而朝廷處置得其算耳。 其餘條， 令該司參考舊章， 酌其可否， 啓聞後更議施行。” 盧公弼、李叔斌議：“克墩所啓， 皆目擊其弊， 似可施行。 但其中或有舊立條件， 或更有設施之方， 未可容易議定。 令該司參酌利害議啓。” 朴樾議：“克墩所啓， 目擊身履， 深知其弊。 其第一條、二條、五條、六條， 令該司商議施行。 但第三條釣魚倭人作耗者， 移書島主， 待其回報， 更議捕獲之舉。 第四條薺浦倭人竊發事， 於倭人釣魚船， 定射官禁戢姦細， 已有成法， 而鎮將不能檢舉， 使侵害邊氓， 若遵守法令， 豈有侵犯？ 素不嚴禁， 而一朝卒然生擒， 則恐生弊端。” 金自貞、</p>
--	---	--

금 우리의 위세를 두려워하여 피하려 하게 한다면 좋겠으나, 만약에 경솔히 군사를 일으켜 이(利)를 잃고 단지 혼란만 일으킨다면 그 해(害)는 도리어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는 변장으로 마땅한 사람을 얻는 데 있고, 조정(朝廷)의 처치가 좋은 계책을 얻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그 나머지 조목은 해사를 시켜 구법을 참고하고 가부를 참작하여 아뢰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노공필(盧公弼)·이숙감(李叔臧)은 의논하기를,
 “이극돈이 아뢰는 것은 모두 그 폐단을 목격(目擊)한 것이므로 시행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전에 조건(條件)을 세운 것이 있거나 설치(設施)할 방도가 다시 있는 것은 쉽게 의논하여 정할 수 없으니, 해사를 시켜 이해(利害)를 참작하여 의논해 아뢰게 하소서.”

하고, 박건(朴健)은 의논하기를,
 “이극돈이 아뢰는 것은 눈으로 보고 자신이 겪어서 그 폐단을 깊이 아는 것이니, 그 제1조·제2조·제5조·제6조는 해사를 시켜 상의하게 하여 시행하소서. 다만 제3조의 고기를 낚는 왜인이 도둑질을 하는 것은, 도주(島主)에게 글을 보내고 그 회보(回報)를 기다려서 잡는 일을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제4조의 제포(齊浦)의 왜인이 몰래 일어나는 일은, 왜인의 고기를 낚는 배에 사관(射官)25767)을 배정하여 간사한 짓을 금지하는 성법(成法)이 이미 있는데도 진장(鎭將)이 검거(檢擧)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방의 백성을 침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법령(法令)을 준수한다면 어찌 침범이 있겠습니까? 평소에 엄하게 금하지 않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사로잡는다면 아마도 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하고, 김자정(金自貞)·이육(李陸)·신종호(申從濩)·김극유(金克兪)·김수손(金首孫)·조숙기(曹淑沂)·김우신(金友臣)은 의논하기를,
 “제1조의 왜인이 포소(浦所)에 머무르는 폐단은, 참으로 아뢰는 것과 같이 다

李陸、申從濩、金克兪、金首孫、曹淑沂、金友臣議：“第一條倭人留浦之弊，誠如所啓，皆鄉通事所爲，不可不痛懲，他浦換定，似乎輕歇。臣等意，令所在邑守令、僉使，摘發其中泛濫尤甚者，全家徙邊，以警其餘。第二條倭船尺量冒濫之弊，誠如所啓，前此倭船之來，照點人口給糧，一船人幾至百餘，其費不貲，故世祖朝與島主約束，立量船之法，彼人利於多占糧料，皆潛借三浦倭人大船代點，邊將非不知之，或甘於利誘，或怯於構怨，不能糾舉，以至於此。議者以爲三浦倭船，皆烙印爲標，以防姦僞，如此則激成邊隙，不可輕易舉行。臣等意謂，對馬島及諸島使船，各有定額，而無船艘大小之約，故有此尺量之弊。今後對馬島歲約船五十內，三分其數，一分大船，一分中船，一分小船，其他諸島之船，各因其數，依上項分等，歲遣一船者，則今年大船，明年中船，又明年小船，以此定約，則庶無尺量冒濫之弊。第三條對馬島人不受島主文引，橫行諸島者勦捕事，前此島主處累次下諭，依所啓施行。第四條齊浦居倭作耗者，令邊

향통사(鄉通事)가 하는 것이니, 매우 징계하지 않아서는 안될 것이나 다른 포 소로 바꾸어 보내는 것은 가벼운 듯합니다. 신(臣)들의 생각으로는, 그 고을 수령(守令)과 첨사(僉使)를 시켜 적발하게 하고 그 가운데에서 범람한 것이 더욱 심한 자는 전가 사변(全家徙邊)25768) 시켜 그 나머지 사람들을 경계하소서. 제2조의 왜선(倭船)의 크기를 재는 것이 모람(冒濫)된 폐단은 참으로 아된 것과 같습니다. 이에 앞서도 왜선이 오면 사람의 수를 점검하여 양료(糧料)를 주었는데, 한 배에 타고 온 사람이 거의 1백여 인이나 되므로 그 비용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조(世祖) 때에 도주(島主)와 약속하고 배를 재는 법을 세웠으나, 저들이 양료를 많이 차지하는 것을 이롭게 여겨 다들 몰래 삼포(三浦)의 왜인의 대선(大船)을 빌어서 대신 점고(點考)받는데, 변장이 이를 모르지는 않지만 혹 이익으로 피는 것을 달갑게 여기거나 원한을 사는 것을 겁내어 규거(糾擧)하지 못하여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의논하는 자는 삼포의 왜선에 다 낙인(烙印)을 찍어 표를 해서 간사하게 속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하나, 이렇게 하면 변방에서 말썽을 몹시 일으킬 것이니, 쉽사리 거행할 수 없겠습니다. 신들은 대마도(對馬島)와 제도(諸島)의 사선(使船)에 각각 정한 액수가 있으나 배의 크기에 대한 약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짚 때의 폐단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뒤로는 대마도에서 해마다 보내기로 약속한 배 50척 중에서 그 수를 셋으로 나누어 3분의 1은 대선(大船)으로 하고 3분의 1은 중선(中船)으로 하고 3분의 1은 소선(小船)으로 하며, 그 밖의 제도(諸島)의 배는 각각 그 수에 따라 위와 같이 등급을 나누되, 해마다 배 1척을 보내는 것은 올해에는 대선을 보내고 내년에는 중선을 보내고 그 이듬해에는 소선을 보내도록, 이렇게 약조를 정하면, 배를 재는 것이 모람된 폐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제3조의 대마도 사람으로서 도주(島主)의 문인(文引)을 받지 않고 여러 섬을 횡행(橫行)하는 자를 잡는 일은 전에 도주에게 여러 번 하유(下諭)하셨으니, 아된 대로 시행하소서. 제4조의 체포(薺浦)에 사

將設策擒獲事，依所啓施行。第五條奴婢身貢綿布升數過細事，今考戶曹啓目，則所謂諸道下送見樣，乃田稅正布，非身貢綿布也。若貢布過細，則不無民弊，其升數麤細，適中酌定，以除民弊。第六條三浦銅鐵不許興販事，及花園移置事，已有成法，不必更立科條。但蔚山銅鐵除貿易，以備國用事，依所啓施行。”從弼商議。克墩啓曰：“近來客人，無禮莫甚，濟用監、司贍寺官員，齎給回賜物件，如不稱意，輒拒而不受。然京中則猶有所畏懼，至於三浦，則無所不至。守令多般誘之，猶不聽從，使無辜之民，多受其弊，彼必以爲我國畏怯而誘之，恣行其欲，非獨對馬島，至於深處倭人，不關於我者，亦皆如此。以堂堂我國，受辱至此，臣實痛甚。請自今，嚴其待之之禮，使彼不得施其術。議者云，恐生弊端，然依禮待之，則彼安得以此而構弊端哉？”傳曰：“卿所啓果當。但日本卽國王所在，而對馬島主卽其臣也。今若厚待對馬島而薄待深處倭人，則是薄其君而厚其臣也。祖宗以來，畏其鼠竊，待之如是耳。”

는 왜인으로서 도둑질하는 자를 변장(邊將)이 계책을 세워서 잡게 하는 일은 아뢰 대로 시행하소서. 제5조의 노비(奴婢)가 신공(身貢)으로 바치는 면포(綿布)의 승수(升數)가 지나치게 곱다는 일은, 이제 호조(戶曹)의 계목(啓目)을 살펴보니, 제도(諸道)에 내려보낸 견양(見樣)이라는 것은 전세(田稅)의 정포(正布)이고 신공의 면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신공의 면포가 지나치게 곱다면 백성의 폐해가 없지 않을 것이니, 그 승수의 거칠고 고운 것을 알맞게 짐작하여 정해 백성의 폐해를 없애소서. 제6조의 삼포의 동철(銅鐵)을 흥판(興販)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 일과 화원현(花園縣)에 옮겨 두는 일은 이미 성법(成法)이 있으므로 다시 과조(科條)를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울산(蔚山)의 동철을 매매하지 말고 국용(國用)에 대비하는 일은 아뢰 대로 시행하소서.”

하니, 윤필상의 의논을 따랐다. 이극돈(李克墩)이 아뢰기를,
 “근래 객인(客人)이 무례가 막심하여, 제용감(濟用監)·사섭시(司瞻寺)의 관원이 갖다 주는 회사(回賜)하는 물건이 뜻에 맞지 않으면 문득 물리치고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중(京中)에서는 오히려 두려워하고 꺼리는 것이 있는데, 삼포에서는 못하는 것이 없으므로 수령(守令)이 여러가지로 피어도 따르지 않아 죄 없는 백성이 그 폐해를 많이 받습니다. 저들은 반드시 우리 나라에서 두려워서 편다고 생각하여 마음대로 제 욕심을 부리는 것이겠는데, 비단 대마도뿐이 아니라 우리 나라와 관계가 없는 심처(深處)의 왜인까지도 다 이러합니다. 당당한 우리 나라가 모욕받는 것이 이렇게까지 되었으니, 신은 참으로 매우 통분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대접하는 예(禮)를 엄하게 하여 저들이 술수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의논하는 자는 혼단을 일으킬까 염려스럽다 하나, 예에 따라 대접하면, 저들이 어떻게 이 때문에 혼단을 맺겠습니까?”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경(卿)이 아뢰 것은 과연 마땅하다. 그러나 일본은 국왕(國王)이 있는 곳이고

	대마 도주(對馬島主)는 그 신하인데, 이제 만약 대마도를 후대(厚待)하고 심치의 왜인을 박대(薄待)한다면, 이것은 그 임금을 박대하고 그 신하를 후대하는 것이다. 조종(祖宗) 이래로 그 줌도독질을 꺼려서 이렇게 대접한 것일 뿐이다.” 하였다.	
성종 278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윤5월 10 일(계묘) 2번째기사	정원(政院)에 전교(傳敎)하기를, “우택(雨澤)이 흙속하니, 후원(後苑)에 비를 비는 일을 과하라.” 하고, 이어서 행향사(行香使) 이극증(李克增)에게 숙마(熟馬) 1필을, 감찰(監察) 홍이성(洪以成)에게 아마(兒馬) 1필을, 아동(兒童)들에게 각각 쌀 1두(斗)를 내렸다.	○傳于政院曰：“雨澤周洽，其罷後苑祈雨，仍賜行香使李克增熟馬一匹，監察洪以成兒馬一匹，兒童等各米一斗。”
성종 278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윤5월 11 일(갑진) 2번째기사	승정원(承政院)에 전교(傳敎)하기를, “재능을 시험하여 으뜸을 차지한 종친(宗親)에게 잔치를 내리는 것은 국가의 은수(恩數)이고 또 포장(褒獎)하는 도리에 관계되는데, 이제 술을 금하기는 하나 이미 비를 얻었으니, 잔치를 내리는 것이 어떠한가? 또 문과(文科)·무과(武科)의 방방(放榜) 때에 주금(酒禁)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하였는지, 전례를 살펴서 아뢰라.” 하니, 승지(承旨)들이 아뢰기를, “전에는 문과·무과의 방방(放榜)이 비록 주금(酒禁)을 당하더라도 사흘 동안 특별히 금령(禁令)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을사년(25771)의 별시(別試) 때에는 가뭄 때문에 유가(遊街)(25772)를 멈추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전례에 따라 잔치를 내리라.” 하였다.	○傳于承政院曰：“試藝居首宗親親賜宴，是國家恩數，又關褒獎之道，今雖禁酒，既已得雨，賜宴何如？且文武科放榜時，若當酒禁，則何以爲之？其考例以啓。”承旨等啓曰：“前此文武科放榜，雖當禁酒，三日特弛禁，但乙巳年別試，以旱停遊街。”傳曰：“依前例賜宴。”
성종 278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윤5월 12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이굉(李滋)이 와서 아뢰기를, “듣건대 재주를 시험한 데서 으뜸을 차지한 비안수(庇安守) 이유(李諭)의 집에 잔치를 내리신다 합니다. 이것은 비록 《속전(續典)》에 실려 있는 것이기	○司憲府持平李滋來啓曰：“聞試藝居首庇安守諭家賜宴，此雖《續典》所載，今方禁酒，請停之。”傳曰：“此

<p>일(을사) 3번째기사</p>	<p>는 하나, 이제 바야흐로 술을 금하고 있으니, 청컨대 그만두게 하소서.”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이 일은 권려(勸勵)에 관계되니, 말하지 말라.” 하였다.</p>	<p>事關於勸勵，其勿言。”</p>
<p>성종 278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윤5월 13 일(병오) 1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독(講讀)이 《논어(論語)》의 ‘인인(仁人)이라야 남 을 좋아할 수 있고 남을 미워할 수 있다.’ 한 데에 이르러, 시강관(侍講官) 송질(宋軼)이 아뢰기를, “ 유씨(遊氏) 25777) 의 주(註)에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고 미 워하는 데에 있어서 번번이 올바름을 잃는 까닭은 마음에 매인 것이 있기 때 문이다.’하였는데, 이것은 참으로 격언(格言)입니다.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은 사람에게 없을 수 없는 것이지만, 임금은 더욱 마땅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대학(大學)》에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을 논하여 평천하장(平天下章)에 ‘오직 인인(仁人)이라야 악인을 귀양보내어 사방의 오랑캐 지방으로 내쳐 중국에 함 께 있지 못하게 할 수 있다.’ 하였는데, 이것은 지극히 공정하여 편사(偏私)가 없으므로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이 바른 도리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어진 사람 을 보고도 쓰지 못하고 어질지 않은 사람을 보고도 내치지 못한다면, 이것은 사랑하고 미워할 것을 알되 사랑하고 미워하는 도리를 다하지 못하여 마음에 매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하께서는 체념(體念)하셔야 합니다.” 하였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지평(持平) 이평(李滄)이 아뢰기를, “성상께서 대신(大臣)을 존중하기 때문에 총관(摠管)들을 죄주하지 않으셨습 니다. 그러나 원수로 여겨 보복하는 것은 시정배(市井輩)들이나 할 것이고 대 신의 일은 아니니, 청컨대 반드시 죄주시기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뜻을 이미 일렀으니, 다시 말할 것이 없다.” 하였다. 정언(正言) 민수겸(閔壽謙)과 송질도 반복하여 논계(論啓)하였</p>	<p>○丙午/御經筵。講至《論語》‘唯仁人，能好人、能惡人’侍講官宋軼啓曰：“游氏註云：‘常人於好惡，每失其正者，心有所繫故也。’此誠格言也。好惡，人所不能無者，而人主尤當省察。《大學》論好惡，而於平天下章：‘唯仁人，放流之，進諸四夷，不與同中國。’此至公無私，故能得好惡之正。見賢而不能用，見不賢而不能去，此知所愛惡矣，而夫能盡愛惡之道，心有所繫也。殿下當體念。”講訖，持平李滄啓曰：“上以重大臣而不罪摠管等，然讎嫌報復，乃市井人所爲，非大臣之事，請須抵罪。”上曰：“已諭予意，更無所言。”正言閔壽謙及宋軼亦反覆論啓，皆不聽。滄又啓曰：“以庇安守試藝居首，將賜宴，此雖勸勵之事，今當禁酒，闕內猶不用酒，請姑停，待開禁後行之。”上曰：“文武科慶賀，雖當禁酒亦不廢，今依其例行之耳。”特進官尹孝孫啓曰：“時方謹天戒，賜</p>

	<p>으나, 다 들어주지 않았다. 이평이 또 아뢰기를, “비안수(庇安守)가 재주를 시험하는 데서 으뜸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잔치를 내리시려 하는데, 이것이 권려하는 일이기는 하나 지금은 술을 금하는 때이고 궐내에서도 술을 쓰지 않으니, 청컨대 우선 그만두었다가 금령(禁令)을 풀거든 시행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문관(文科)·무과(武科)의 경하(慶賀)는 술을 금하는 때라 하더라도 그만두지 않으니, 지금도 그 규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윤효손(尹孝孫)이 아뢰기를, “바야흐로 하늘의 경계에 삼가고 있으니 잔치를 내리시는 것은 미편합니다.” 하고, 영사(領事) 윤호(尹壕)가 아뢰기를, “술의 금령을 파한 뒤에 시행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하였다.</p>	<p>宴未便。”領事尹壕啓曰：“罷酒禁後，行之未晚。”上曰：“可。”</p>
<p>성종 278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윤5월 13 일(병오) 3번째기사</p>	<p>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 황사효(黃事孝)에게 하서(下書)하기를, “황주(黃州) 등지에서 벌레가 곡식을 해친다 하는데, 어찌하여 이제까지 아뢰지 않는가? 빨리 살펴서 아뢰라.” 하였다.</p>	<p>○下書黃海道觀察使黃事孝曰：“聞黃州等處，蟲害稼，何至今不啓乎？斯速審啓。”</p>
<p>성종 278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윤5월 16 일(기유) 3번째기사</p>	<p>요동 도지휘사사(遼東都指揮使司)에서 이자(移咨)하기를, “경력사(經歷司)의 정문(呈文)에, ‘뽕아 베껴 보내어 받은 순안 산동 감찰 어사(巡安山東監察御史)의 안험(案驗)에 의하면, 도찰원(都察院)의 순찰 요동(巡察遼東) 2583호 감합(勘合)에, 「전의 일이다. 사유를 갖추어 본사(本司)에 행문(行文)25785) 하여 곧 적당한 관원(官員)을 차출하여 본사에서 서쪽 일대(一帶)로부터 산해관(山海關)까지의 소재 관사(所在官司)와 참چه 아문(站遞衙門)에 보내어 그 관할 관사를 시켜 당초에 보낸 짐을 날날이 검사하고 장</p>	<p>○遼東都指揮使司移咨曰：“據經歷司呈抄，蒙巡按山東監察御史案驗奉都察院，巡察遼東二千五百八十三號，勘合前事備行本司，卽委的當官員，自本司以西一帶，直抵山海關止，所在官司站遞衙門著落。該管官司，逐一檢究，原發裝載與示人夫到官追出原盜綿紬</p>

	<p>래 인부(裝載人夫)를 적발하여 관사에 불러 면주(綿紬)를 훔치는데 연관된 사람을 찾아내어 함께 모두 본원(本院)으로 보내게 하고 반송인(伴送人) 곽인(郭仁) 등은 사문(查問)하여 사건이 마무리 되거든 회환(回還)토록 하되, 포박하여 보내게 하여 신문한 뒤에, 이제 위관(委官) 동녕위 지휘(東寧衛指揮) 유영검(劉寧檢)이 해주위(海州衛)의 체운소(遞運所)에서 면주를 훔친 범인 왕선(王宣) 등을 벌여 적어 보낸 정문(明文)이 본원에 왔으니, 율문(律文)에 따라 죄를 의논하여 결정하여야 마땅하다。」 하였습니다.</p> <p>바라건대, 안힘을 베껴서 당상(堂上)에게 신보(申報)하고 안힘 안의 사리(事理)에 따라 지금 보내는 심문이 끝난 범인 진진(陳振) 등은 해주 비어 도지휘(海州備禦都指揮) 왕(王)에게 보내어 배소(配所)에서 노역(勞役)시키되 각각 도형(徒刑) 기한에 맞추어 순초(巡哨)시키고, 오선(吳宣) 등은 그 위(衛)에 보내어 속죄미 대곡(贖罪米代穀)을 거두어 들여 예비고(預備庫)에 보내어 바치게 하여 각각 끝나는 날에 소방(疏放)25786) 하고, 곽인 등은 거주지에서 노역시키고, 장은(贓銀)은 창고에 보내어 저장하고, 차량(車輛)은 그 체운소에 보내어 공용(公用)하되, 각각 통관고(通關庫)의 수령장(收領狀)과 수관(收管)25787) 을 받아서 완결하고, 안힘을 베껴 간 관리는 의준(依准)을 갖추어 바쳐 오라 하였으므로, 사유를 갖추어 적어 바칩니다.’한 것이 본사에 왔으므로 그 본국(本國)에서 진공(進貢)하는 것을 훔친 면주 15필(匹)을 순안 산동 감찰 어사 이경(李徑)이 즉시 인봉(印封)하여 사람을 시켜 가져보내고 사유를 갖추어 제주(題奏)할 뿐더러, 이자(移咨)하여 보내니, 알아서 시행하기 바랍니다.”</p> <p>하였다.</p>	<p>連人，一并解院，及查伴送郭仁等，事完回還，提解問理去後，今據委官東寧衛指揮劉寧檢，將海州衛遞運所偷盜綿紬犯人王宣等，開呈到院，擬合依律，議擬發落。 爲此除外仰抄案呈堂，照依案驗內事理，卽將發去，問完犯人陳振等，送海州備禦都指揮王處，著役聽撥，各照徒年限。 巡哨吳宣等，發該衛監追贖罪米折穀，送預備倉，上納各完，滿日疎放，與郭仁等各著役隨住贓銀發庫，收貯車輛，發本遞運所公用，各取通關庫收領狀收管， 繳照抄案官吏，具依准呈來。 蒙此備呈到司，看得追出原盜， 本國進貢綿紬一十五匹，據巡按山東監察御史李徑，自印封差人賫捧具題外，合行移咨，前去煩爲知會施行。”</p>
<p>성종 278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윤5월 17</p>	<p>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승지(承旨)·주서(注書)와 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의 관원에게 육화탕(六和湯)·향유탕(香鬻湯)을 차등을 두어 내렸다.</p>	<p>○賜六和湯、香鬻湯于領敦寧以上、承旨、注書、弘文館、藝文館員有差。</p>

일(경술) 3번째기사	<p>육조(六曹)에서 아뢰어, 어전세(魚箭稅)를 거두어 제약(劑藥)의 비용으로 할 것을 청하니,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에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윤필상(尹弼商)·윤호(尹壕)·허종(許琮)·이철견(李鐵堅)·정문형(鄭文炯)·유지(柳輕)는 의논하기를,</p> <p>“육조에서 아뢴 대로 어전을 주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p> <p>“육조에서는 어전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납약(臘藥)25800) 을 지어 온 지 오래 되었습니다. 또 의정부·종친부(宗親府)·충훈부(忠勳府)에서 이를 본떠 청하는 자가 어지러이 많아지면 막기 어려울 것이니, 예전대로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니, 또 승정원(承政院)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였다. 조위(曹偉)는 의논하기를,</p> <p>“약을 짓는 것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제 육조에서 약을 짓는 것은 단지 육조의 당상(堂上)·낭청(郎廳)의 병만을 치료할 뿐만이 아닙니다. 지은 것이 많으면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도 또한 많은 것입니다. 육조의 납약 값은 삼베[麻布] 15필일 뿐인데 당약(唐藥)25801) 값은 비싸 무역하기 어려우니, 아뢴 대로 어전을 적당히 주어서 그 비용에 보태게 하고 사람을 구제하는 길을 넓히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고, 김응기(金應箕)·권경우(權景祐)는 의논하기를,</p> <p>“육조의 제약은 예조(禮曹)에서 맡고 있는데, 약값이 나올 데가 없으니, 의정부(議政府)·충훈부(忠勳府)와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또 전에 정한 배의 수는 15필뿐인데 육조의 당상·낭청은 원수(員數)는 매우 많아서 구급(救急)하는 약이 모자라는 것을 번번이 걱정하니, 아뢴 대로 어전을 주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辛亥/六曹啓請，收魚箭稅，以資劑藥之費，命議于領敦寧以上及議政府。尹弼商、尹壕、許琮、李鐵堅、鄭文炯、柳輕議：“依六曹所啓，給魚箭何如？”克培議：“六曹雖不資魚箭，劑臘藥久矣，且議政府、宗親府、忠勳府，効此請之者，紛紜難防，仍舊何如？”又令承政院議之。曹偉議：“藥餌之劑，利益於人甚多。今六曹劑藥，非徒療濟六曹堂上、郎廳之疾而已，所劑多則施及於人亦必廣矣。六曹臘藥之價，只麻布十五匹，唐藥價踊貴，難以貿易，依所啓，量給魚箭，以資其用，以廣濟人之路何如？”金應箕、權景祐議：“六曹劑藥，禮曹掌之，藥價出處無由，非議政府、忠勳府之比，且前定布子之數只十五匹，六曹堂上、郎廳，員數甚多，救急之藥，每患不敷，依所啓給魚箭何如？”尹倬議：“六曹劑藥，其來已久，豈劑藥所需有餘於昔時而不足於今時乎？魚箭之請，似爲不可。”傳曰：“國家於小民之病，猶皆給藥療治之，況六卿乎？但魚箭則自祖宗朝所不給也，其令該曹加給價布。”</p>
-------------	--	--

	<p>하고, 윤숙(尹俶)은 의논하기를, “육조의 제약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 되었는데, 어찌 제약에 드는 것이 전에는 남음이 있었고 지금은 모자란단 말입니까? 어전을 청한 것은 옳지 않은 듯합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국가에서는 소민(小民)의 병에도 도리어 약을 주어 치료하는데, 하물며 육경(六卿)이겠는가? 다만 어전은 조종(祖宗) 때부터 주지 않던 것이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가포(價布)를 더 주게 하라.” 하였다.</p>	
<p>성종 278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윤5월 19일(임자) 2번째기사</p>	<p>정원(政院)에 전교(傳敎)하기를, “어세겸(魚世謙)의 병증(病證)이 이제는 어떠하며, 계속 육즙을 먹고 있는가?” 하니, 동부승지(同副承旨) 권경우(權景祐)가 아뢰기를, “대개 덜해져 갑니다만, 기운이 허약하며 잠이 들면 곧 무서운 꿈을 꾸니, 육즙을 먹지 않으면 하루도 보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권경우는 어세겸의 사위이다.</p>	<p>○傳于政院曰：“魚世謙病證今何如？且連食肉汁乎？”同副承旨權景祐啓曰：“大概向歇。但氣虛，睡輒成魘，若不食肉汁，不得保一日也。”景祐，世謙之壻也。</p>
<p>성종 278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윤5월 20일(계축) 1번째기사</p>	<p>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부경(赴京)하기에 합당한 2품의 문신(文臣)인 재상(宰相)은 일곱 사람인데, 자신이 병이 났거나 아버지가 연로합니다. 다만 성현(成俔)만이 사고가 없으나, 용모가 매우 쇠(衰)하였으니, 어떻게 처치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니, 승정원(承政院)에 전교(傳敎)하기를, “간원(諫院)과 이조에서 아뢰는 것을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에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부경하는 데는 반드시 문신(文臣)이라야 할 것은 아닙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전례에 따라 문무(文武)의 재상 가운데서 가려 보내고, 또 사고가 있으면 임시로 3품 당상관(堂上官)을 가함(假銜)하여 차견(差遣)해도 무방할 듯합니다.”</p>	<p>○癸丑/吏曹啓：“文臣二品宰相當赴京者七人，而或身病或親老，唯成俔獨無故，而容貌甚衰，何以處之？”傳于承政院曰：“其以諫院及吏曹所啓，議于領敦寧以上及議政府。”李克培議：“赴京不必文臣，臣意依前例文武宰相中揀擇遣之，且有故則臨時三品堂上，假銜差遣亦無妨。”盧思慎議：“入朝使須擇人而遣，或云有病或云親老，人皆憚行，國家何以使人？臣意以謂，雖曰老親，老有衰壯之異；雖曰有病，病</p>

	<p>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입조(入朝)하는 사신은 모름지기 사람을 가려서 보내야 하는데, 혹은 병이 있다 하고 혹은 아버지가 연로하다 하여 사람들이 모두들 가기를 꺼리니, 국가에서 어떻게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늙은 아버지라 하더라도 늙은 데에는 쇠약하고 장건(壯健)한 차이가 있고, 병이 있다 하더라도 병에는 깊고 얇은 차이가 있으니, 그 가운데에서 덜한 자를 가려서 보내도록 명하시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p> <p>하고, 윤호(尹壕)·허종(許琮)은 의논하기를, “통정 대부(通政大夫)인 당상관(堂上官)을 가함(假銜)하여 보내는 것은 조종(祖宗) 때부터 시행한 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전(大典)》에 ‘2품인 재상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있을 때 가함하여 보내는 것은 또한 한때의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무슨 방해될 것이 있겠습니까?”</p> <p>하고, 이철건(李鐵堅)은 의논하기를, “문신으로 종2품(從二品)은 그 수가 많지 않으니, 늙은 아버지가 있더라도 노쇠하지는 않고 또 동생(同生)이 있다면 차견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고, 정문형(鄭文炯)은 의논하기를, “부경하는 사신은 반드시 세 사람을 가려서 의망(擬望)하여야 하는데 이조에서 간택(揀擇)한 것이 혹 공정한 데에서 나오지 못할 수도 있으니, 전례에 따라 수대로 죄다 써서 아된다면, 수많은 재상 중에 어찌 보낼 만한 자가 없겠습니까? 자신이 병이 들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늙은 아버지가 있다고 말하는 자 중에는 혹 나이를 속이는 자도 있으니, 나이가 일흔에 찼더라도 약시중할 동복(同腹)이 있는 자라면, 너댓 달에 지나지 않는 행차이니, 그 사양함을 허락하지 말고 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고, 유지(柳輕)는 의논하기를, “2품 이상을 차견하는 것이 《대전》에 실려 있기는 하나, 수에 한정이 있는</p>	<p>有深淺之殊， 擇其中歎者， 命遣爲當。” 尹壕、許琮議：“通政堂上假銜而遣， 自祖宗朝行之已久。 《大典》雖曰遣二品宰相， 若有故則假銜而遣， 亦一時不得已事， 有何妨乎？” 李鐵堅議：“文臣從二品， 其數不多， 雖有老親， 不至衰老， 且有同生， 則差遣何如？” 鄭文炯議：“赴京使臣， 必擇三人擬望， 吏曹之揀擇， 或未出於公正， 依前例盡數書啓， 則數多宰相， 豈無可遣者乎？ 身病則已矣， 其稱有老親， 或有冒年者， 雖年滿七十， 而有侍藥同腹者， 則不過四、五朔之行， 勿許其辭， 遣之何如？” 柳輕議：“二品以上差遣， 雖載《大典》， 然有數宰相或有故， 則事宜變通。” 傳曰：“今無可遣者， 都承旨親年幾許？ 同生幾人？” 曹偉啓曰：“臣母之年六十七， 不至衰耗， 但今病右臂， 晝則付膏， 夜則熨艾， 而臣無兄弟與妹， 以此爲念耳。” 傳曰：“其令吏曹， 盡書通政堂上并承旨以啓。”</p>
--	--	--

	<p>재상에게 사고가 있으면 변통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보낼 만한 자가 없다. 그런데 도승지(都承旨)는 아버지의 나이가 몇이 며 동생은 몇 사람인가?” 하였다. 조위(曹偉)가 아뢰기를, “신의 어미의 나이는 예순 일곱이고 노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 른 팔을 앓아 낮에는 고약을 붙이고 밤에는 쪽으로 뜨는데, 신에게는 형제와 누이가 없으니, 이것이 염려스러울 뿐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조로 하여금 통정 대부인 당상과 승지를 모두 써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p>	
<p>성종 278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윤5월 26 일(기미) 1번째기사</p>	<p>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이제 유구국(琉球國)의 사신을 제천정(濟川亭)에서 영위(迎慰)하라고 명하셨 습니다. 이것이 한때의 특은(特恩)이기는 하나, 그 사신 야차랑(也次郎) 등은 앞서도 우리 나라에 두번 사신으로 왔던 자입니다. 그러나 모두 영위가 없었 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유구 본국의 사람이 아니고 다들 도서(圖書)를 빌어 서 왔습니다. 그 도서의 진위(眞僞)도 또한 확실히 알 수 없으니, 청컨대 영 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윤필상(尹弼商)·윤호(尹 壕)·허종(虛琮)은 의논하기를, “예조에서 아뢴 대로 시행하소서.” 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이보다 전에도 유구 국왕의 사신이 서울에 들어왔을 때 영위하는 예(禮)가 간혹 있었으니, 제천정에서 선운(宣醞)을 내려 예를 행한들 무엇이 해롭겠습 니까?”</p>	<p>○己未/禮曹啓曰：“今命迎慰琉球國使 臣于濟川亭，此雖一時特恩，然其使臣 也次郎等，前此再使我國者也，皆無迎 慰，且此人等非琉球本國人，皆假圖書 而來，其圖書眞僞，亦未灼知，請勿迎 慰。”命議于領敦寧以上。尹弼商、 尹壕、許琮議：“依禮曹所啓施行。” 李克培議：“前此，琉球國王使臣入京 時，迎慰之禮或有之。濟川亭上宣醞 行禮何妨？”從弼商等議。</p>

<p>성종 278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윤5월 27 일(경신) 1번째기사</p>	<p>하니, 윤필상 등의 의논을 따랐다. 의정부 영의정(議政府領議政) 윤필상(尹弼商) 등이 와서 아뢰기를, “이제 우택(雨澤)이 흠족하여 농사가 풍성하니, 청컨대 복선(復善)하소서.”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아뢴 대로 하겠다.” 하였다. 윤필상 등이 또 아뢰기를, “2품(品) 이상의 첩자손(妾子孫)은 관상감(觀象監)에 소속되는 것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명과학(命課學)·지리학(地理學)이라면 몰라도, 천문학(天文學)은 그 임무가 가볍지 않아 정통한 자는 청요(淸要)한 벼슬이라도 서용(敍用)을 허가 하니, 예전대로 소속시키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p>	<p>○庚申/議政府領議政尹弼商等來啓曰： “今雨澤周足，農事豐茂，請復膳。” 傳曰：“當依所啓。” 弼商等又啓曰： “二品以上妾子孫許屬於觀象監，如命 課學、地理學則已矣，至於天文學，則 其任匪輕，精通者雖淸要之職，亦許敍 用。 依舊勿屬何如?” 傳曰：“可。”</p>
<p>성종 279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6월 2일 (갑자) 1번째기사</p>	<p>상참(常參)25817) 을 받고 정사(政事)를 보았다. 집의(執義) 이균(李均)이 아 뢰기를, “ 《대전(大典)》 25818) 외에 조례(條例)와 교령(敎令)이 번잡하여 또 《속록(續錄)》 25819) 을 편찬하여 이미 반포하였는데 이제 다 시 수교(受敎)가 있으니, 법이 쇠털[牛毛]같이 많습니다. 만약 부득이 고쳐야 하고 세워야 할 법이 있다면 해조(該曹)는 예조(禮曹)에 보고하고, 예조는 의 정부(議政府)에 보고하여, 상세하게 의논하여서 법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성 부원군(河城府院君) 정현조(鄭顯祖)가 아뢰기를, “조례와 교령이 번잡하여 아침저녁으로 바뀌므로 백성들이 법을 알지 못해서 따를 바가 적당하지 않으니, 이 말이 옳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반포한 《속록(續錄)》이 세밀한데 어찌 다시 법을 세울 일이 있겠는</p>	<p>○甲子/受常參，視事。 執義李均啓曰： “《大典》之外，條敎紛紜，又撰 《續錄》既頒，而今更有受敎，法如牛 毛，如不得已有可改可立之法，該曹報 禮曹，禮曹報議政府，詳論立法何如?” 河城府院君鄭顯祖啓曰：“條敎紛紜， 朝更夕變，民不知法，莫適所從，此言 是也。” 上曰：“今頒《續錄》詳密， 豈復有立法事乎? 脫有可改之事，當如 執義而啓。” 均又啓曰：“近者，諸司 文案，分授朝官，使之親啓，雖職卑如 參奉亦與焉，甚不可。” 上曰：“公事 繁多，色承旨不能趁時啓判，故慮其遲</p>

	<p>가? 만약 고칠 만한 일이 있으면 마땅히 집의(執義)가 아뢰 바대로 하라.” 하였다. 이균이 또 말하기를, “요즈음 여러 관사(官司)의 문안(文案)을 조관(朝官)들에게 나누어 주고서 직접 아뢰게 하는데, 비록 참봉(參奉)처럼 낮은 직책이라도 참여하게 하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공사(公事)가 번다(繁多)하여 색승지(色承旨)25820) 가 제때에 아뢰고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지체될까 염려하여 나누어 주었을 뿐이다.”</p> <p>하자, 이균이 말하기를, “이보다 앞서는 더러 홍문관(弘文館)의 관원에게 나누어 주고서 아뢰게 하였었는데, 지금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서 나누어 주므로 일에 경험이 없는 자는 혹은 부형(父兄)에게 묻기도 하고 혹은 소송한 자와 서로 통하기도 하니, 이는 매우 옳지 않습니다. 형방 승지(刑房承旨)가 만약 감당할 수 없으면, 이방 승지(吏房承旨)나 공방 승지(工房承旨)가 일이 없을 경우 또한 나누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p> <p>하였다. 이균이 또 아뢰기를, “지금 타량 경차관(打量敬差官)25821) 에는 서리(書吏)로서 거관(去官)25822) 한 사람과 갑사(甲士)25823) ·정병(正兵)이 모두 참여합니다. 경차관은 봉명 사신(奉命使臣)25824) 인데, 어찌 이같은 무리를 임명해서 보낼 수 있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수가 너무 많아 이조(吏曹)에서 그 사람들을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다.”</p> <p>하자, 정언(正言) 민수겸(閔壽謙)이 아뢰기를, “지금 양전(量田)을 한때에 같이 시행하므로 경차관의 수가 많은데, 어찌 하</p>	<p>滯分授耳。” 均曰：“前此或分授弘文館員啓之，今不擇人而授之，其不更事者，或問諸父兄，或與訟者相通，此甚不可。 刑房承旨若不能當，則吏房、工房承旨無事，亦可分授。” 均又啓曰：“今打量敬差官，書吏去官人及甲士、正兵皆預焉。 敬差官乃奉命使臣也，豈可以如此輩差遣乎？” 上曰：“厥數甚多，吏曹不能盡知其人，故如此耳。” 正言閔壽謙啓曰：“今量田一時竝舉，敬差官數多，安能一一得人？ 臣意以謂，一年量一道，則事不煩，而敬差官亦可以擇人矣。” 上問左右。 右贊成鄭文炯啓曰：“國家或因多事，或因歲凶，量田年限已過，若今年不爲，則安知明年又如是乎？ 不可不一時竝舉也。 雖分兩年爲之，許多敬差官，豈能盡得人乎？” 武靈君柳子光啓曰：“國家爲一官擇人，猶患不得其人，況今敬差官，幾至二百，安能一一得人？ 且敬差官雖賢，臨時審量田品高下，豈能如守令之備知？ 臣意以爲，使守令量田成籍，而巡察使往審其當否，如有誤錯，以制書有違律論之，則庶幾量田精而無弊矣。” 顯祖、文炯啓曰：“守令</p>
--	---	---

나하나 적당한 사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1년에 한 도(道)를 측량한다면 일이 번거롭지 않고 경차관도 적합한 사람을 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좌우(左右)에 물으니, 우찬성(右贊成) 정문형(鄭文炯)이 아뢰기를,

“나라에 혹은 일이 많기도 하고 혹은 흉년이 들기도 하여 양전(量田)의 연한(年限)이 이미 지났는데, 만약 금년에 하지 않는다면 내년에 또 이와 같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한때에 모두 시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두 해에 나누어서 한다 하더라도 수많은 경차관(敬差官)을 어찌 모두 적당한 사람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무령군(武靈君) 유자광(柳子光)은 아뢰기를,

“나라에서 한 관직(官職)을 위하여 사람을 택하는 데도 오히려 적당한 사람을 얻지 못할까 염려하는데, 향차 지금 경차관이 거의 2백 명에 이르니 어찌 하나하나 적당한 사람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경차관이 비록 현명하다 하더라도 그때에 임박하여 전지(田地) 품등(品等)의 고하(高下)를 살펴서 측량하는데, 어찌 수령(守令)처럼 두루 알 수 있겠습니까? 신은, 수령으로 하여금 전지를 측량하여 전적(田籍)을 만들게 하고 순찰사(巡察使)가 가서 그것이 마땅한지의 여부를 살피되, 만약 착오가 있을 때는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25825) 로 논한다면 양전(量田)이 거의 정밀해지고 폐단이 없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자, 정현조와 정문형이 아뢰기를,

“수령은 일이 많은데, 어느 여가에 겸하여 다스리겠습니까?”

하였다. 민수겸이 또 아뢰기를,

“응사(鷹師)25826) 는 체아직(遞兒職)25827) 으로, 《대전(大典)》에 기록되지 않았고 《속록(續錄)》에도 기록되지 않았는데, 이제 다시 수교(受敎)로 제

多事，何假兼治?” 壽謙又啓曰：“鷹師遞兒職，《大典》不錄，《續錄》又不錄，今更受敎除授。 臣意以謂，內鷹師則已矣， 外鷹師， 雖不設遞兒可矣。” 上曰：“設鷹師， 非爲遊戲， 爲薦新及兩殿進上獵禽耳。”

	<p>수(除授)하셨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내응사(內鷹師)25828) 는 그대로 둔다고 하더라도, 외응사(外鷹師)는 체아(遞兒)를 두지 않아도 좋을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응사(鷹師)를 두는 것은 유희(遊戱)를 위한 것이 아니고 친신(薦新)25829)과 양전(兩殿)의 진상(進上)을 위하여 짐승을 잡기 때문이다.”</p> <p>하였다.</p>	
<p>성종 279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6월 3일 (을축) 1번째기사</p>	<p>도승지(都承旨) 조위(曹偉)가 아뢰기를, “어제 신이 연은전(延恩殿) 25831) 에 나아가 반찬과 장(醬)의 종류를 검사하였는데 싱겁거나 너무 짜기 때문에 국의 맛이 매우 나빴습니다. 또 쓰이는 그릇 가운데 햇수가 오래 되었거나 더럽고 깨진 것을 해사(該司)에서 즉시 고치거나 버리지 않았으니, 청컨대 추문(推問)하도록 하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 “장의 맛이 어찌 짜고 나쁘게 되었는가? 가지고 오게 하라. 내가 장차 맛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해사의 관리를 불러서 그 이유를 묻도록 하라.”</p> <p>하였다.</p>	<p>○乙丑/都承旨曹偉啓曰：“昨日臣詣延恩殿監膳，醬色淡而過鹹，故羹味甚惡。且所用器皿，年久污毀者，該司不卽改排，請推問。”傳曰：“醬味何至鹹惡？其令取來，予且嘗之。且招該司官吏，問其由。”</p>
<p>성종 279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6월 5일 (정묘) 2번째기사</p>	<p>충청도 경차관(忠淸道敬差官) 정숙지(鄭叔墀)가 와서 복명(復命)하였다. 인하여 아뢰기를, “지난 기유년(25844) 에 신과 봉상시 주부(奉常寺主簿) 노모(盧瑁)가 함께 경상도(慶尙道)에 가게 되었는데, 노모가 신보다 앞서 밀양(密陽)에 갔다가 얼마 안되어 병사(病死)하였습니다. 신이 근래에 청주(淸州)에 도착하여 도사(都事) 정윤(鄭綸)과 서로 이야기하다가 노모가 죽은 데에 말이 미치자, 정윤이 말하기를, ‘그 때 노모가 술에 취하여 기생과 같이 누웠는데,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노모의 음경(陰莖)을 베어 죽였습니다. 밀양 부사(密陽府使) 허혼(許混)이 듣고 면화(綿花)를 써서 시체를 두겹게 싸 피가 밖으로 보이지 않게 하고는, 노모가 데리고 간 봉상시 서리(奉常寺書吏)와 그 중에게 뇌물을 후하게 주어 탄로내지 말도록 주의하였다고 합니다.’ 하였습니</p>	<p>○忠淸道敬差官鄭叔墀來復命，仍啓曰：“去己酉年，臣與奉常主簿盧瑁，偕往慶尙道，瑁先臣往密陽，未幾病死，臣近日到淸州，與都事鄭綸相話，語及瑁死，綸云：‘其時瑁醉，與妓臥，不知其人割瑁陰莖致死，密陽府使許混聞之，令用綿花厚裹屍，使血不外見，厚賂瑁帶去奉常書吏及其奴，戒勿露。’臣問曰：‘此言何從聞之？’綸曰：‘聞諸連原道察訪權光弼。’光弼乃瑁四寸兄也。臣又見忠州教授金秀賢問</p>

다. 신이 묻기를, ‘이 말은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하니, 정윤이 말하기를, ‘연원도 찰방(連原道察訪) 권광필(權光弼)에게서 들었는데, 권광필은 바로 노모의 사촌형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또 충주 교수(忠州教授) 김수현(金秀賢)을 보고 물었더니, 정윤이 말한 바와 같았습니다.”

하니,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노모는 봉명 사신(奉命使臣)으로서 원통함이 이와 같았으니, 비록 사유(赦宥)를 지났다 하더라도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 승정원에서는 즉시 국문(鞫問)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에 봉상시(奉常寺)의 종[奴] 고음금(古音金)을 붙잡아다가 물으니, 고음금이 공초(供招)하기를,
“지난 기유년(25845) 7월에 노모가 본시(本寺)의 주부(主簿)로 있을 때 신주목 작별 경차관(神主木斫伐敬差官)으로 경상도에 가게 되었는데 종이 수행하였었습니다. 본도(本道)에 이르자 예천 기관(醴泉記官) 이세균(李世均)·풍기(豐基)의 일수(日守)25846) 백산(白山)도 노모의 행차를 따랐습니다. 11월에 밀양부(密陽府)에 도착하여 7,8일 동안 머물렀는데, 노모가 상지관(相地官)25847) 손영(孫榮)과 울림(栗林)에 가자, 부사(府使) 허혼(許混)이 와서 술자리를 베풀고 종일토록 마셨습니다. 밤 2고(鼓)에 파하자 기생을 데리고 걸어가서 동쪽 상방(上房)에 이르렀는데, 부사가 다시 술자리를 베풀고자 하니, 노모가 몸이 불편하다고 말하고서 기생과 함께 방안에 들어왔으므로, 종은 잠자리를 펴고 물러나왔습니다. 다음날 장차 다른 고을로 향하려고 종이 전대를 차려 가지고 먼저 떠났는데, 겨우 5리(里)를 가자 어떤 역자(驛子)가 돌아오도록 불렀습니다. 종이 돌아와 노모를 뵈니, 노모가 두통(頭痛)이 있다고 하면서 방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병세가 점차 심해져 코에서 피가 나와 그치지 않다가 7,8일이 되어 죽었습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之，如鄭綸所言。” 傳于承政院曰：“瑁，奉命使臣，冤酷如此，雖經赦宥，不可不治。承政院其卽鞫問之。” 乃拿致奉常寺奴古音金問之。古音金供云：“去己酉年七月，瑁爲本寺主簿，以神主木斫伐敬差官往慶尙道，奴隨行，到本道醴泉，記官李世均、豐基日守白山亦隨瑁行，十一月到密陽府，留七、八日，瑁與相地官孫榮往栗林，府使許混來設酌，飲終日，夜二鼓而罷，携妓步行，至東上房，府使欲更設酌，瑁稱身不平，與妓入房中，奴設衾枕而退，翌日將向他邑，奴持裝囊先行，纔及五里，有驛子招還，奴還謁瑁，瑁稱頭痛臥房中，病勢漸苦，鼻出血不止，積七、八日而死。” 傳曰：“觀此招辭，與叔擘所啓頓殊，其下義禁府鞫之。”

	<p>“이 초사(招辭)를 보건대, 정숙지(鄭叔墀)가 말한 바와 상당히 틀리니, 의금부(義禁府)에 회부하여 국문하도록 하라.” 하였다.</p>	
<p>성종 279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6월 6일 (무진) 1번째기사</p>	<p>유구 국왕(琉球國王) 상원(尙圓)이 범경(梵慶)을 보내어 내빙(來聘)하였는데, 그 서계(書契)25848) 에 이르기를, “유구 국왕 상원(尙圓)은 조선 국왕 전하(朝鮮國王殿下)께 엿드려 아뢰입니다. 삼가 우리 작은 부용(附傭)25849) 의 나라를 큰 섬이라고 여겼었는데, 근래에 일본(日本)의 갑병(甲兵)이 와서 빼앗고자 하므로, 이로 인하여 전사(戰死)한 자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렇기는 해도 싸울 때마다 이긴 것이 십중팔구여서 천리(千里)에서 적의 예봉(銳鋒)을 꺾었습니다. 삼가 살펴보건대, 우리 나라는 다섯 산에 명찰(名刹)을 세워 모두 장전(藏殿)25850) 을 두고, 매일 중의 무리에게 명하여 번전(繙轉)25851) 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황가(皇家)의 만세(萬歲)를 기도하여 올리게 하였더니, 그 기이한 상서(祥瑞)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이는 진진(眞詮)의 제부(諸部)에서 가호한 바라고 설명되지만, 또한 황가의 후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지극히 빌고 또 빕니다. 그러므로 장전(藏殿)의 복된 터를 거듭 정하고자 하는데, 대개 우리 작은 나라는 쓸 만한 좋은 재목이 부족합니다. 귀국(貴國)의 훌륭한 물건을 내려 주시어 창건하기를 삼가 원하므로, 사선(使船)을 보내는 것입니다. 면포(綿布) 약간 필(匹), 백저포(白苧布) 1천 필, 호피(虎皮)·표피(豹皮) 2백 장(張), 이러한 은사(恩賜)를 받게 되면, 사선(使船)을 남만(南蠻)에 보내어 자단(紫檀)25852) 과 화리(花梨)로 대들보를 만들고 연와(鉛瓦)로 지붕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방물(方物)의 조목은 별폭(別幅)을 갖추었습니다. 후추[胡椒] 5백 근(斤), 대도(大刀) 1백 파(把), 복단향(樸段香) 2백 근, 정향(丁香) 1백 근, 오매(烏梅) 3백 근입니다. 상인들의 매물(買物)은 동철(銅鐵)·사어피(沙魚皮)·주홍(朱紅)입니다. 이 매물들은, 우리 작은 나라에 무너진 절이 있어 이름을 천</p>	<p>○戊辰/琉球國王尙圓遣梵慶來聘。其書契曰：“琉球國王尙圓拜覆朝鮮國王殿下。 宓以吾陋邦， 附傭曰大島， 近來日本甲兵來欲奪之， 由是戰死者甚多， 雖然每戰勝之者十八九， 折衝於千里。 竊按吾邦建立五山名刹， 并安藏殿， 每日命僧衆繙轉無怠， 而奉祈朝皇家之萬歲。 厥奇祥異瑞， 不可勝計， 是真詮諸部所加護， 不亦皇家之厚恩乎？ 至祝至禱。 然則重欲安藏殿之福基， 蓋陋邦， 乏良材之用， 宓願賜貴國尤物， 以造創焉， 故遣使船者也。 緜布若干匹、白苧布一千匹、虎皮豹皮二百張， 蒙此恩賜， 遣使船於南蠻， 以紫檀花梨爲棟梁， 以鉛瓦爲苔蓋者也。 仍方物件件， 具於別幅， 胡椒五百斤、大刀一百把、樸段香二百斤、丁香一百斤、烏梅參百斤， 商買物銅鐵、沙魚皮、朱紅， 彼買物者， 吾陋邦有敗毀寺， 名曰天龍寺， 今爲興所渡之者兩三種， 願如先例賜許容者幸甚。” 又遣也次郎來聘。 書契曰：“夫惟上邦佳政，</p>

	<p>룡사(天龍寺)라고 하는데, 지금 이를 일으키기 위해 가지고 건너가는 것 두세 가지입니다. 원하건대, 선례(先例)대로 내려 주시기를 허용하신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p> <p>하였다. 또 야차랑(也次郎)을 보내어 내빙(來聘)하였는데, 서계(書契)에 이르기를,</p> <p>“대저 생각건대, 상방(上邦)의 선정(善政)은 인자함이 안에서 넘쳐 화이(華夷)가 그 교화(教化)에 모두 복종하고, 은택(恩澤)이 외방에 퍼져 사해(四海)가 그 덕(德)을 우러러봅니다. 그러므로 귀국은 우리 고을과 비록 만리(萬里)의 바다에 떨어져 있지만, 제 마음은 항상 못별이 북극성을 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하여 수차 사선(使船)을 보내어 평안하신지 여쭙었으며, 또 중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특별히 올해에는 《대장경(大藏經)》을 내려 주셨으므로, 즉시 안국선사(安國禪寺)에 두고 만세토록 국가의 진기한 보물로 삼을 것이니, 손뼉치며 즐거워함이 지극하고 말로써 이루 미칠 수 없어 매우 다행하고 다행합니다. 삼가 만분의 일의 예(禮)라도 펴고자 하여 대궐 아래에서 엎드려 배례(拜禮)를 바치도록 하는 것이니, 살피고 살피 주십시오. 헌납(獻納)할 방물(方物)은 별폭(別幅)에 갖추었습니다. 단목(丹木) 3백 근, 후추 2백 근, 정향(丁香) 1백 근, 오매(烏梅) 2백 근, 납철(鑛鐵) 1백 근입니다. 상인의 매물(買物)은 황금(黃金)·동철(銅鐵)·목향(木香)·주홍(朱紅)입니다. 저 상인의 매물은 선례(先例)에 맡겨 허용하신다면 다행하겠습니다.”</p> <p>하였다. 두 사신은 같은 날 서울에 들어왔다.</p>	<p>慈仁溢內，華夷盡服其化；恩澤布外，四海威仰厥德，以是貴國與吾弊邑，雖阻鯨海於萬里，我心常不異衆星拱北辰，因而數遣使船，奉報平安，且蒙惠意之重，特今歲忝賜《大藏經》，卽寄置安國禪寺，以萬世爲國家珍寶也。歡抃之至，言端以不能及，幸甚幸甚，謹欲伸萬一之禮，伏令納拜於闕下者也。諒察諒察。奉獻納方物，備別幅。丹木三百斤、胡椒二百斤、丁香一百斤、烏梅二百斤、鑛鐵一百斤，商買物黃金、銅鐵、木香、朱紅，彼商買物，任先例許容者多幸。”兩使同日入京。</p>
<p>성종 279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6월 12일 (갑술) 2번째기사</p>	<p>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이덕숭(李德崇) 등이 차자(筭子)를 올려 말하기를,</p> <p>“신 등이 삼가 생각하건대, 정승조(鄭崇祖)는 본래 일개 간사하고 이익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단지 공훈(功勳)있는 재상(宰相)의 아들이고 부마(駙馬)의 아우라 하여 나이가 채 서른도 안되어 외람되게 무사(臚仕)25867)에 올랐으</p>	<p>○司諫院大司諫李德崇等上筭子曰：臣等竊惟，鄭崇祖本一儉邪喻利之人，只以勳相之子、駙馬之弟，年未三十，濫登臚仕，其爲人大略，朝廷所共知、聖上所洞照，故封君置閑者久矣。往</p>

니, 그 사람됨의 대략은 조정(朝廷)에서 함께 아는 바이며 성상(聖上)께서도 환히 알고 계시는 바이기 때문에, 군(君)에 봉(封)하여 한직(閑職)에 둔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마침 경상도(慶尙道)를 순행(巡行)하며 안찰(按察)하게 되자, 여러 고을의 수장(守長)들이 가볍게 여기지 못하였습니다. 기한이 차서 호조 판서(戶曹判書)에 제수되자, 부상 대고(富商大賈)로서 평소에 서로 통하던 자들이 기뻐 날뛰면서 공문(公門)과 사제(私第) 앞에 다투어 몰려들었으니, 대개 이익이 있으면 부상 대고라는 자들은 반드시 뜻을 굽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외거 노비(外居奴婢)25868)의 공포(貢布)는 사삼시(司贍寺)에 바치고, 그 포를 왜인(倭人)과 야인(野人)에게 답사(答賜)한 뒤에 장사꾼들이 면주(綿紬)와 면포(綿布)를 가지고 이 포(布)와 모두 바꾸는 것이 예사입니다. 연전에 이극돈(李克墩)이 경상 감사(慶尙監司)가 되었을 때, 사삼시와 동래(東萊)·웅천(熊川) 등 고을의 관리가 공포(貢布)의 승수(升數)25869)를 너무 촘촘하게 하여 바치도록 독촉하니 백성들이 매우 고통스럽게 여겼으므로, 사유를 갖추어 계문(啓聞)하니, 예조(禮曹)와 호조(戶曹)에 명하여 함께 의논하게 하여서, 길이·너비·승수(升數)를 상세히 정하여 제한을 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올해 3월에 호조(戶曹)에서 베[布子]의 견양(見樣)25870)을 고쳤는데, 그 승수(升數)를 보면 전의 견양보다 지나치게 촘촘하니, 이는 장사꾼들에게 이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금년 3월에 정한 견양대로 지난해의 신공(身貢)을 바치도록 독촉하므로, 먼 도(道)의 백성으로 이미 서울에 운반하여 도착한 자는 모두 바치지 못하고 몰려갔으니, 명령은 게을리하고 기한은 다그쳐서 백성의 원망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국가에서 충주(忠州)의 가흥창(可興倉), 곧 충청도(忠淸道)·경상도(慶尙道) 두 도의 전세(田稅)를 수납(收納)하는 곳에 창고(倉庫)를 설치하고자 하니, 안동부(安東府)에서 군사 1백 명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역사(役

年偶出按慶尙，列郡守長，莫不輕賤之，及其期滿拜戶曹判書，富商大賈之平昔所交通者，欣忭雀躍，公門私第，輻輳波奔，凡有利益，商賈者必曲意爲之，外居奴婢貢布，納于司贍寺，以其布答賜倭、野人後，商賈之徒，將綿紬、綿布，盡易此布例事也。年前李克墩爲慶尙監司時，以司(贍)[贍]寺及東萊、熊川等邑官吏，責納貢布，升數過細，民甚苦之，具由啓聞，命禮曹、戶曹同議，詳定長廣升數，勿令踰制。今年三月，戶曹乃改布子見樣，觀其升數過細於前樣，此非利益商賈者乎？且以今年三月所定見樣，責納去年身貢，遠道之民，已輸運到京者，皆未納而退，其慢令致期，民之愁怨，不可勝云。往者，國家於忠州可興倉，忠淸、慶尙兩道田稅收納之處，欲設倉庫，安東府當出軍百名，其掌役之吏，每一名收縣布一匹、米一斗，通算綿布一百匹、米一百斗，收給忠州居私奴某，約質正瓦二千張，未幾有人獻議停罷。安東之民，狀告于官，欲還受米布，前項私奴某聞之，馳赴于京，狀告戶曹曰：“可興倉庫造成，今已停寢，

事)를 맡은 관리가 1명마다 면포(綿布) 1필과 쌀 1두(斗)씩을 거두었고, 통틀어 면포 1백 필, 쌀 1백 두를 충주에 사는 사노(私奴) 아무개에게 주고는 정와(正瓦) 2천 장(張)과 바꾸기로 약속하였는데, 얼마 안되어 어떤 사람이 의견을 올려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안동의 백성들이 관아에 장(狀)을 올려 고하여 쌀과 베를 돌려받고자 하니, 위의 사노(私奴) 아무개가 듣고 서울에 달려가 호조(戶曹)에 장(狀)을 올려 고하기를, ‘가흥창의 창고 조성(造成)이 이제 이미 정지되었으니, 제가 값을 받고 준비한 안동의 기와 2천 장을 관아에 받아들여주시기를 청합니다.’ 하였습니다. 정승조(鄭崇祖)가 값의 다소(多少)를 불문하고 안동(安東)에 묻지도 않고서 즉시 충청 감사(忠淸監司)에게 이문(移文)25871) 하여, 기와의 시가(時價)에 따라 곡식과 바꾸어서 군자(軍資)에 보충하게 하였습니다. 얼마 있다가 이극돈(李克墩)이 안동의 보고에 의거하여 돌려받고자 하는 쌀과 베를 회계(會計)에 기록하고, 위의 부(府)25872) 로 하여금 기와의 주인인 사노(私奴) 아무개를 붙잡아다가 사유를 추문(推問)하게 하니 그가 바친 기와의 값인 쌀과 베는 한결같이 전의 수와 같았습니다. 이극돈이 호조에 이문(移文)하자, 정승조는 이미 충주(忠州)의 군자(軍資)에 보충하였다고 말을 돌려대었으며, 이극돈이 재차 왕복하였으나 정승조는 끝내 누우치지 않았습니다. 대개 경외(京外)의 기와 1천 장의 값은 면포(綿布)로 5,6 필에 지나지 않는데, 2천 장을 곡식과 바꾸어 관아에 들고 앉아서 1백 필, 1백 두의 이익을 취함이 옳겠습니까? 들으니 사노(私奴) 아무개는 정승조의 충주 전장(田庄)을 맡고 있는 종[奴子]이라고 합니다. 비록 혹 자기의 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경영한 바가 이에 이르렀으니, 그 이익을 도모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미루어보면, 안동뿐만 아니라 그 때 백성에게서 받은 쌀과 베를 가흥창에 주고 원래 거주하던 장사꾼 무리들과 목재와 기와로 바꿀 것을 약속한 것은, 두 도(道)의 다른 군(郡)에서도 모두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통하여 숨기고는 관아에 들이지 않고서 끝내 장사꾼들의

吾受價所備安東瓦二千張，請納于官。”崇祖不問價之多少，不質安東，劃即移文忠淸監司，令隨瓦時直質穀，以補軍資。俄而克墩據安東之報，欲取還米布，錄于會計，令右府捉致瓦主私奴某，推問事由，其所供瓦價米布，一如前數。克墩移文戶曹，崇祖以已補忠州軍資爲辭，克墩再次往復，崇祖終不改悔。凡京外瓦一千張之價，綿布不過五、六匹，則以二千張質穀入官，而坐取百匹、百斗之利，可乎？聞私奴某，乃崇祖幹忠州田庄奴子也。雖或非己之奴，其所經營，乃至於此，其爲利可知。推此則非但安東，其時收民米布，給付可興元居商賈之徒，約質材瓦者，兩道他郡皆然，其交通掩匿，不入於官，而終爲商賈之利者，亦必居多，不可不追究檢括也。京倉之貨，專爲國用，而倭、野人答賜亦甚繁夥，故於司僕納馬之價，不輕以與之。其在庚戌年受教，則御乘馬價外，一應馬價，皆以外官所在給之。今年四月受教，則雖內立差備馬，而必才品優等，將來御乘可當馬，然後方許以京倉布貨給之，而私奴栢同、石乙山、苐叱

이익이 된 것이 또한 반드시 많을 것이니, 추구하여 조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창(京倉)의 포화(布貨)는 오로지 국용(國用)을 위한 것이고, 왜인(倭人)과 야인(野人)에게 답사(答賜)하는 것 또한 매우 번다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사복시(司僕寺)에 바치는 말[馬]의 값은 가볍게 줄 수가 없습니다. 경술년(25873)의 수교(受敎)에는 어승마(御乘馬)이외의 일체의 말의 값은 모두 외관(外官)이 있는 곳에서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4월의 수교(受敎)에는, 비록 궐내(闕內)에서 준비한 차비마(差備馬) 25874 라도 반드시 재품(才品)이 우수하여 장래 어승(御乘)에 마땅한 말이라야만 경창(京倉)의 포화(布貨)를 주도록 허용하였는데, 사노(私奴) 백동(栢同)·석을산(石乙山)·잉질달(苻叱達)·두허미(豆虛未)·귀봉(貴奉)·두가이(豆加伊)와 역자(驛子) 김성동(金成同)·흥산(興山) 등이 바친 말의 값을 정승조가 사섬시(司贍寺)로 하여금 주게 하였습니다. 본시(本寺)의 관원은 이에 그 법에 의거하여 마땅히 줄 수 없다고 회품(回稟)하였는데, 정승조가 억지로 주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금년에 준 바인데, 연전의 문부(文簿)를 상고해 보면 이같은 종류가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대개 이같은 일의 경영은 법을 무너뜨리고 자기를 이롭게 하는 도모가 아님이 없으니, 비록 미관(微官)·소리(小吏)라도 차마 할 수 없는 바입니다. 민부(民部)는 예전의 지관(地官) 25875 벼슬로, 국가의 명맥(命脈)과 백성의 휴척(休戚) 25876 이 관계된 바가 지극히 중한데, 어찌 간사하고 이익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오랫동안 맡겨서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괴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정승조의 방자하고 거리낌 없는 죄를 다스리시어 조정과 민간에서 바라는 바를 통쾌하게 하여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정승조의 한 바가 실로 이에 이르렀다면 그대들의 아뢰는 바가 진실로 옳다. 사헌부(司憲府)로 하여금 국문(鞫問)하도록 하겠다.”

達、豆虛未、貴奉、豆加伊、驛子金成同、興山等所納馬價，〔宗祖〕〔崇祖〕令司贍寺題給。本寺員乃據其法，以不當給回稟，崇祖勒令題給，此則今年所給耳，考年前文簿則必多如是之類。凡此營爲，無非毀法利己之謀，雖微官小吏，所不忍爲。民部，古之地官卿，國家命脈、生民休戚，所係至重，豈可久委儉邪喻利之人，使蠹國、病民乎？請治崇祖縱恣無忌之罪，以快朝野之望。

傳曰：“崇祖所爲，實至於此，則爾等所啓誠善矣。令憲府鞫之。”

<p>성종 279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6월 12일 (갑술) 3번째기사</p>	<p>하였다.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경외(京外) 군자창(軍資倉)의 오래 묵은 곡식은 별창(別倉)의 예(例)에 의거하여 종자(種子)이외에는 일체 지용(支用)25877) 하되, 모두 가장 오래 된 잡곡(雜穀)을 우선 주도록 하여, 옛것을 쓰고 새것을 쌓아 두게 하소서.” 하니,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에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윤필상(尹弼商)·이극배(李克培)·윤호(尹壕)·정문형(鄭文炯)은 의논하기를, “아뢴 바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군자창(軍資倉)의 묵은 곡식을 별창(別倉)의 새 곡식으로 바꾸어 쌓는 일은 《대전(大典)》에 실려 있으나, 다만 지금 검찰(檢察)하는 관리가 봉행하지 않을 따름이니, 이 법을 또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였으며, 허종(許琮)은 의논하기를, “옛것을 쓰고 새것을 쌓는 일은 진실로 좋은 법이지만, 다만 거두고 나누어줄 때에 관아에는 유리하나 백성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더구나 힘써 농사짓고서 배불리 먹기를 기다릴 때를 당하여 오래 묵어서 먹을 수 없는 곡식으로 굶주림을 구제할 수는 없습니다. 신은 아마도 이 법은 시행할 수 없을 듯합니다.” 하고, 이철건(李鐵堅)은 의논하기를, “이미 군자창(軍資倉)을 설치하고 또 별창(別倉)을 둔 것은 반드시 그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군자(軍資)는 중대하니, 임의로 거두고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하였으며, 유지(柳攄)는 의논하기를, “호조(戶曹)에서 아뢴 바 옛것을 쓰고 새것을 쌓아 두자는 뜻은 옳습니다. 다만 군자(軍資)는 관찰사(觀察使)가 마음대로 출납(出納)할 수 없는데, 지금 호</p>	<p>○戶曹啓：“京外軍資倉久陳穀，依別倉例，種子外一應支用，竝以最久雜穀爲先題給，用舊蓄新。”命議于領敦寧以上及議政府。尹弼商、李克培、尹壕、鄭文炯議：“依所啓施行。”盧思愼議：“軍資倉陳穀，以別倉新穀換蓄事，載在《大典》。但今檢察官吏不奉行而已，不須又立此法。”許琮議：“用舊蓄新，誠爲美法。但斂〔散〕之際，有利於官而貽害於民，況當力農待哺之時，不可以久陳不食之穀，濟飢也。臣恐此法不可行也。”李鐵堅議：“既設軍資倉，又置別倉，必有其意，軍資重大，不可任意斂散。”柳攄議：“戶曹所啓，用舊蓄新之意則可矣。但軍資，觀察使不得擅便出納，今依戶曹所啓，則是擅自發倉，恐不可開端也。令諸道觀察使，軍資倉腐朽可換之穀，每歲具數啓聞後，許換新穀。”從柳攄議。</p>
--	--	---

	<p>조에서 아된 바에 의거한다면 이는 마음대로 창고를 여는 것이니, 단서를 열 어줄 수 없습니다. 여러 도(道)의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군자창(軍資倉)의 부패하여 바꾸어야 할 곡식을 해마다 숫자를 갖추어 계문(啓聞)하게 한 후에 새 곡식과 바꾸도록 허락 하소서.”</p> <p>하니, 유지의 의견에 따랐다.</p>	
<p>성종 279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6월 13일 (을해) 2번째기사</p>	<p>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김사원(金士元)이 와서 아뢰기를, “근일에 보현(寶玄)이 아된 바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왜(倭)와 흥판(興販)한 일을 의금부(義禁府)로 하여금 국문하게 한 것은, 외국(外國)과 사사로이 서로 매매(賣買)하였기 때문입니다. 듣건대, 예조 판서(禮曹判書) 노공필(盧公弼)이 제포 첨사(濟浦僉使)에게 청탁하는 서신을 보냈다가 일이 발각되자 특별히 내버려두도록 명하셨다 합니다. 노공필은 이익을 늘리는 일에 편지를 보냈으므로 대신(大臣)의 도리가 없으니, 국문하기를 청합니다. 전세(田稅)를 조운(漕運)할 때 사선(私船)의 값은 군자창(軍資倉)의 오래 묵은 쌀로 주는 것이 예(例)인데도 정승조(鄭崇祖)는 금년에 받아들인 새 곡식으로 주었으니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청컨대, 아울러 국문하도록 하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 “노공필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늘려주고자 한 것이 아니고 우연히 다른 사람 때문에 편지를 부쳤을 뿐이니, 국문할 수 없다. 그리고 호조(戶曹)에서 계품(啓稟)하기를, ‘새 곡식을 주게 되면 거가(車價) 50여 석(碩)을 줄일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따른 것이니, 이는 그대들이 잘못 듣고서 아된 것이다.”</p> <p>하였다. 김사원이 다시 아뢰기를, “웅천(熊川)·제포(濟浦) 등지에서 장사아치들을 일체 금지하는 것은 외국과 사사로이 통할까 염려해서입니다. 저가 만약 아무것도 한 바가 없다면 편지를 받을 필요가 없었을 터인데 노공필이 그릇되게 편지를 보내었으니, 국문하지</p>	<p>○司諫院正言金士元來啓曰：“近日寶玄所告，富居人等與倭興販事，令義禁府鞠之者，以與外國私相買賣也。聞禮曹判書盧公弼送請簡于濟浦僉使事露，特命棄之，公弼於興利事通書簡，無大臣之道，請鞠之。田稅漕運時私船價，給以軍資倉久陳之米例也，而鄭崇祖用今年所納新穀給之，必有情由，請并鞠之。”傳曰：“公弼非欲使人興利也，偶因人寄書耳，不可鞠也。戶曹啓稟曰：‘給新穀，則可省車價五十餘碩。’故從之，此則爾等誤聞而啓之也。”士元更啓曰：“熊川、濟浦等處，一禁商賈者，畏其私通外國也。彼若無所爲，則不必受簡，而公弼曲通書信，不可不鞠。”傳曰：“公弼之簡，干於興利，未可的知，不宜遽爾推問也。但取其簡來，予將覽焉。”</p>

	<p>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노공필의 편지가 이익을 늘리는 데에 관계된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없으니, 갑자기 추문(推問)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다만 그 편지를 가져다가 내가 장차 보도록 하겠다.” 하였다.</p>	
<p>성종 279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6월 14일 (병자) 3번째기사</p>	<p>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김사원(金士元)이 와서 아뢰기를, “무릇 나라를 위하여 도모하는 자는 마땅히 옛것을 쓰고 새것을 쌓아 두어야 합니다. 지금 선가(船價)는 1천여 석(碩)이고 거가(車價)는 단지 50석인데, 정승조(鄭崇祖)는 작은 이익을 중하게 여기고 큰 비용을 가볍게 여겨, 이에 새 곡식을 써서 선가를 주도록 계청(啓請)하였으니, 이는 필시 두 강(江)과 충주(忠州) 강변에 사는 사람들과 결탁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행위는 마치 나라를 위한 것 같지만 마음은 실제로 사리(私利)를 경영한 것입니다. 또 노공필(盧公弼)의 첩부(妾父) 김귀산(金貴山)은 본래 부상 대고(富商大賈)로서 왜물(倭物)의 무역을 생업(生業)으로 삼고 있었는데 김귀산은 이미 죽었고, 그 아들 김파회(金波回)가 또한 그 생업을 이은 자인데, 노공필은 대신(大臣)으로서 청탁하는 편지를 써서 부탁하였으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청컨대, 모두 국문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정승조의 일은 국문하는 것이 옳으나, 노공필의 일은 어찌 억측하여 추국(推鞠)하는 것이 옳겠는가?” 하였다.</p>	<p>○司諫院正言金士元來啓曰：“凡爲國計者，當用舊蓄新。今船價則千餘碩，而車價則只五十碩，鄭崇祖重小利而輕大費，乃啓請用新穀給船價，此必交結兩江及忠州水邊居人故耳。迹似爲國，而心實營私也。且盧公弼妾父金貴山，本富商大賈，以倭物貿易爲業，貴山已死，其子波回亦繼其業者也，而公弼大臣，修請簡付之，甚不可。請竝鞠之。”傳曰：“崇祖事鞠之可也，公弼事，豈可臆度而推鞠乎？”</p>
<p>성종 279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6월 15일 (정축) 4번째기사</p>	<p>사헌부(司憲府)에 전지(傳旨)하기를, “호조 판서(戶曹判書) 정승조(鄭崇祖)는, 연전(年前)에 이극돈(李克墩)이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가 되었을 때 사십시(司贍寺)와 동래(東萊)·웅천(熊川) 등 고을의 관리가 공포(貢布)의 승수(升數)를 지나치게 촘촘하게 하여</p>	<p>○傳旨司憲府曰：“戶曹判書鄭崇祖，於年前李克墩爲慶尙道觀察使時，司贍寺及東萊、熊川等邑官吏，責納貢布，升數過細，民甚苦之事，具由啓聞，禮</p>

서 받아들이도록 독촉하여 백성들이 매우 괴로와한다는 일로 사유를 갖추어 계문(啓聞)하였으므로, 예조(禮曹)와 호조(戶曹)에서 함께 의논하여 베[布子]의 길이와 너비, 승수(升數)를 상세히 정하였었는데, 금년 3월에 정승조가 그 승수를 높게 하고 견양(見樣)을 마음대로 고쳐서 받아들이도록 독촉하였다. 그러므로 지난해의 공포(貢布)를 이미 실어 와 서울에 도착한 자는 모두 바칠 수 없어 백성들의 원망이 막심하였다. 지난번 충청도(忠淸道)와 경상도(慶尙道) 두 도의 전세(田稅) 수납(收納)을 위해 충주(忠州) 가흥리(可興里)에다 국가에서 장차 창고를 설치하려고 군부(軍夫)를 뽑았다. 그래서 안동부(安東府)에서 군부 1백 명을 내었는데, 역사(役事)를 맡은 관리가 1명마다 면포(綿布) 1필(匹), 쌀[米] 1두(斗)씩을 거두어서 통틀어 면포 1백 필, 쌀 1백 두를 충주에 사는 정승조의 종에게 주고 정와(正瓦) 2천 장(張)과 바꾸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마침 가흥창(可興倉)의 역사를 정지하게 되자, 안동에 사는 백성들이 쌀을 돌려받고자 본고을에 장(狀)을 올려 고하였다. 정승조의 종은 호조(戶曹)에 호소하기를, ‘중은 약속대로 이미 정와(正瓦)를 준비하였으니, 창고의 역사가 비록 정지되었더라도 숫자대로 관아에 받아들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정승조가 값의 다소(多少)를 불문하고 정와의 시가(時價)에 따라 곡식과 바꾸어서 군자(軍資)에 보충할 일을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에게 이문(移文)하였는데, 이극돈이 쌀과 베를 돌려 받고자 안동 부사(安東府使)로 하여금 와주(瓦主)를 붙잡아다가 추문(推問)하게 하였더니, 기와 값의 쌀과 베는 한결같이 전의 수와 같았다. 이극돈이 호조(戶曹)에 이문(移文)하여 물으니, 정승조는 이미 충주의 군자(軍資)에 보충하였다고 회보(回報)하였다. 이극돈이 재차 왕복하였으나, 정승조는 끝내 뉘우치지 않았다. 이로써 미루어보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정승조는 가흥창(可興倉)에 원래 살던 사람들과 서로 통하여, 두 도의 군읍(郡邑)에서 함부로 쌀과 베를 거두어 상인들에게 준 것이 또한 반드시 많이 있을 것이다. 사복시(司僕寺)에서 거두는 말값

曹、戶曹同議詳定布子長廣升數，而今年三月崇祖高其升數，擅改見樣而責納焉。故去年貢布，已輸到京者，皆未得納，民怨莫甚矣。往者，忠淸道、慶尙兩道田稅，收納忠州可興里，國家將設倉庫，抄發軍夫，安東府出軍一百名，掌役之吏，每一名收綿布一匹、米一斗，摠計綿布一百匹、米一百斗，給與忠州居鄭崇祖奴子，約買正瓦二千張，而適停可興倉之役，安東居民等，欲還受米，有狀告本邑，崇祖之奴訴于戶曹曰：‘奴如約已備正瓦，倉役雖停，請依數納官。’崇祖不問價之多少，隨瓦時直買穀補軍資事，移文于忠淸道觀察使，而李克墩欲取還米布，令安東府使捉致瓦主推問，則瓦價米布，一如前數，克墩移文戶曹問之，崇祖以已補忠州軍資回報，克墩再度往復，而崇祖終不改悟。以此推之，則非但此也，崇祖交通可興倉元居人，兩道郡邑，濫收米布，給付商賈者，亦必多有之。司僕納馬價，御乘馬外竝以諸邑所有綿布充給，例也，而崇祖於私奴栢同、石乙山、苐叱達、豆虛未、貴奉、豆加伊、驛子金成同、興山等所納馬價，擅令司

	<p>[馬價]은 어승마(御乘馬) 이외에는 모두 여러 고을에서 가지고 있는 면포(綿布)로 채워 주는 것이 예(例)이다. 그런데 정승조는 사노(私奴) 백동(栢同)·석을산(石乙山)·잉질달(荳叱達)·두허미(豆虛未)·귀봉(貴奉)·두가이(豆加伊), 역자(驛子) 김성동(金成同)·흥산(興山) 등이 바친 말의 값을 마음대로 사섬시(司贍寺)로 하여금 주게 하였더니, 사섬시의 관원이 법에 의거하여 다시 아뢰었으나, 정승조는 그래도 마음을 돌이지 않고 억지로 주게 하였다. 옛것을 쓰고 새것을 쌓아 둬는 《대전(大典)》에 실려 있는데도 금년에 조운(漕運)한 사선(私船)의 값을 예전의 묵은 쌀로 하지 않고 새 쌀로 주도록 외람되게 계청(啓請)하였다. 정승조는 해조(該曹)의 판서(判書)로서 이처럼 불법(不法)한 일을 많이 행하였으니, 국가에서 대신(大臣)에게 위임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 분간(分揀)하여 추국(推鞠)해서 아뢰도록 하라.”</p> <p>하였다.</p>	<p>贍寺題給。寺員據法更稟，而崇祖猶不回心，勒令題給；用舊蓄新，載在《大典》，而今年漕運私船價，不以舊陳米以新米題給，罔冒啓請。崇祖以該曹判書，多行不法如此，國家委任大臣之意安在？其分揀推鞠以啓。”</p>
<p>성종 279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6월 25일 (정해) 1번째기사</p>	<p>국기일(國忌日)이었다. 도총부(都摠府)에서 아뢰기를, “전에는 입직(入直)한 군사(軍士)가 체직(遞直) 및 식대(食代)25934 할 때 남소(南所)의 부장(部將)이 본부(本府)에 와서 고한 후에 패(牌)를 내어 돌려가면서 보이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전지(傳旨) 안에 부장(部將)·수문장(守門將) 등은 반드시 표신(標信)이 있어야만 불러 올 수 있게 하였으니, 체직·식대 할 때 부장이 본부에 와서 고하는 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전에 전지(傳旨)한 까닭은 도총부에서 긴요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마음대로 수문장·부장 등을 부르기 때문이었다. 만약 응당 시행해야 할 공사(公事)가 있으면, 부장·수문장은 스스로 마땅히 나아가서 고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우승지(右承旨) 한사문(韓斯文)이 아뢰기를, “군사의 체직·식대 등의 패(牌)는 위장소(衛將所)에 있으므로, 체직·식대할 때가 되면 부장이 먼저 도총부에 고한 후에 위장(衛將)에게 고하고서 패를 내어</p>	<p>○丁亥/國忌。都摠府啓曰：“在前入直軍士遞直及食代時，南所部將來告本府後出牌回示。今傳旨內，部將、守門將等，必有標信，然後招致，則遞直、食代時，部將來告本府事，何以處之？”傳曰：“前所以傳旨者，都摠府以不緊小事，擅招守門將、部將等故也。若有應行公事，則部將、守門將，自當進告也。”右承旨韓斯文啓曰：“軍士遞直、食代等牌，在衛將所，當遞直、食代時，部將先告于都摠府，然後告衛將，出牌回示例也。且問此牌根因，則曰其來已久，不知所自然，亦非國家</p>

돌려 가면서 보이는 것이 예(例)입니다. 또 이 패를 쓰게 된 원인을 묻자 그 유래가 이미 오래 되었다고 말하였으나, 유래한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가에서 만들어준 것이 아니고 바로 도총부에서 사사로이 만든 것이며, 또 전문(篆文)이 아니고 다만 그 한 면에 ‘아무 곳[某所]’이라 쓰고 한 면에는 ‘식대(食代)·체직(遞直)’이라고 썼을 뿐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전에 내린 전지(傳旨)는 금위(禁衛)와 수문(守門)을 중하게 여기는 것인데, 이제 다시 전교(傳敎)하기를, ‘만약 공사(公事)가 있으면 부장·수문장이 스스로 마땅히 도총부에 나아가 고해야 한다.’고 한다면, 수문과 금위가 도리어 허술해져서 전지에 어긋남이 있을 듯합니다. 또 수문장·부장이 공사(公事)를 빙자하고서 사사로이 멋대로 행동하게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부장은 25명인데 사소(四所)25935)의 입직(入直)은 다만 각기 1명씩이고 나머지는 모두 본청(本廳)에 근무하고 있으니, 만약 공사가 있으면 본청에 있는 자가 나아가 고할 수 있습니다. 또 체직·식대는 법에 본래 정해진 때가 있으니, 그 때가 되면 비록 패를 돌리지 않더라도 군사로 하여금 스스로 나가게 해도 좋을 것입니다. 만약 이 패는 그 유래가 이미 오래 되어 폐지할 수 없다고 한다면, 위장(衛將)이 녹사(錄事)로 하여금 도총부에 고하게 한 후에 이 패를 돌려가면서 보이고, 체직·식대하게 하며, 부장(部將) 등은 직소(直所)를 떠나지 않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수문장은 다른 임무가 없고 오로지 수문(守門)을 맡고 있어 그 장소를 떠날 수 없다. 만약 부장이 퇴식(退食)·체직(遞直)을 도총부에 고하게 되면 잠시의 일은 예전대로 시행하고, 만약 응당 시행해야 할 공사(公事)라면 본청(本廳)에 있는 자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도총부는 존엄(尊嚴)한 곳이니, 위장(衛將)이 녹사(錄事)를 시켜서 고할 수는 없다.”

하였다.

造給也，乃都摠府私造，而又非篆文，但其一面書某所，一面書食代、遞直而已。臣意，前降傳旨，所以重禁衛與守門也，而今更傳敎曰：‘若有公事，則部將、守門將，自當進告都摠府。’然則守門、禁衛，反似虛疎，而有違於傳旨，且恐守門將、部將，依憑公事，而私自橫行也。部將二十五員，而四所入直但各一人，餘皆仕本廳，如有公事，則其在本廳者可進告矣。且遞直、食代，於法自有定時，當其時則雖不回牌，使軍士自出可矣，若以爲此牌，其來已久，不可廢焉，則衛將使錄事告都摠府後，回示此牌，令遞直、食代，而部將等不離直所何如？”傳曰：“守門將無他務，專委守門，不可離所，若部將告退食、遞直于摠府，則暫時事，依舊施行，若應行公事，則在本廳者可以當矣。摠府尊嚴之地，衛將不可使錄事告之也。”

<p>성종 279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6월 25일 (정해) 4번째기사</p>	<p>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남울(南慄)이 와서 아뢰기를, “신 등이 듣건대, 제용감(濟用監)의 모물(毛物)을 호조(戶曹)에서 털이 모지라 졌다고 핑계하여 화매(和賣)하였다고 하기에, 그 문부(文簿)를 가져다가 살펴 보니 과연 그러하였습니다. 본감(本監)에 온돌이 있는데, 모물(毛物)이 불붙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털이 모지라졌 다면 마땅히 그 관사의 관리를 죄주도록 청하고 취품(取稟)25938) 하여 구처 (區處)했어야 하는데, 이제 호조에서는 마음대로 화매하게 하여 창고에 남아 있는 수는 적고 화매한 수는 많습니다. 이는 반드시 상인들과 서로 통하여 자 신들에게 이익을 돌린 것이니, 청컨대, 호조의 해당 관리를 국문하도록 하소 서.” 하니, 전교하기를, “당상관(堂上官)에게 물은 후에 처리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호조(戶曹)의 판서(判書) 정승조(鄭崇祖)·참판(參判) 김자정 (金自貞)·참의(參議) 김우신(金友臣)을 명소(命召)하여 물으니, 정승조 등이 아뢰기를, “제용감에서 첩보(牒報)하기를, 모물(毛物)이 해충(害蟲)의 손상으로 모두 모 지라져서 장차 쓸모없게 되었다고 하기에, 본조(本曹)에서 가져다가 보니 과 연 혹은 반만 모지라지기도 하고 혹은 모두 모지라져 국가에서 장차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화매(和賣)하여 밀천이라도 남기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례(前例)를 물으니, 제용감의 치자(梔子)·삼보초(三甫草), 군자감(軍 資監)의 식염(食鹽), 선공감(繕工監)의 초완(草蓺)25939) 등의 물건은 그 수가 매우 많아서 모두 취품하여 화매하지는 않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 관사와 외 방 여러 고을의 물건은 해조(該曹)에서 그 있고 없음을 헤아려 더러 화매(和 賣)하기도 하고 더러 수매(收買)하기도 하면서 때에 따라 가감하여 국용(國 用)에 대비하는 것이 예(例)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물(毛物)도 본감(本</p>	<p>○司憲府持平南慄來啓曰：“臣等聞， 濟用監毛物，戶曹託以毛禿和賣，取其 文簿考之，則果然矣。本監有溫埃， 毛物當點火，不使至此，假如毛禿，當 請其司官吏罪，取稟區處，而今戶曹擅 令和賣，留庫數少，而和賣數多，此必 與商賈人交通，以利於己也。請鞫戶 曹當該官吏。”傳曰：“問堂上後處 之。”命召戶曹判書鄭崇祖、參判金 自貞、參議金友臣問之。崇祖等啓曰： “濟用監牒報，毛物蟲損盡禿，將至無 用，本曹取來見之，則果然或半禿或盡 禿，國家將無所用，故欲和賣存本，問 前例則如濟用監梔子、三甫草，軍資監 食鹽，繕工監草蓺等物，其數甚多，而 皆無取稟和賣，非(持)〔特〕此也，諸 司及外方諸邑之物，該曹量其有無，或 和賣或收買，隨時損益，以備國用例 也。故毛物亦令本監及平市署，從市 準請監察和賣，安有容私於其間哉？” 傳曰：“濟用監毛物，戶曹盡取來見之 乎？平市署亦盡見而市準乎？”崇祖等 啓曰：“毛物分中下二等，臣等就其中 各見三、四張，平市署則同監察一一審 視而市準矣。”傳曰：“此不可鞫也。”</p>
--	---	--

	<p>監)과 평시서(平市署)25940) 로 하여금 시준(市準)25941) 에 따라서 감찰(監察)하여 화매하기를 청한 것인데, 어찌 그 사이에 사사로움이 용납됨이 있었겠습니까?”</p> <p>하였다. 전교하기를,</p> <p>“제용감의 모물을 호조에서 모두 가져다 보았으며, 평시서에서도 모두 보고서 시가(市價)에 따랐는가?”</p> <p>하니, 정승조 등이 아뢰기를,</p> <p>“모물은 중(中)·하(下) 두 등급으로 나누어 신 등이 그 중 각기 3,4장(張)씩을 보았으며, 평시서에서는 함께 감찰하여 일일이 살펴보고서 시가에 준하였습니다.”</p> <p>하자, 전교하기를,</p> <p>“이것은 국문할 수 없다.”</p> <p>하였다.</p>	
<p>성종 280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7월 5일 (정유) 2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p> <p>“추절(秋節)이 이미 들었고 시절이 흉년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주금(酒禁)을 파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p> <p>하니, 모두 아뢰기를,</p> <p>“금주는 천계(天戒)를 삼가는 것인데 이제 비가 두루 흠족하게 내렸으니, 상교(上教)가 진실로 마땅합니다.”</p> <p>하자. 주금을 파하도록 명하였다.</p>	<p>○傳于承政院曰：“秋節已入，歲不至凶歉，罷酒禁何如？”僉啓曰：“禁酒所以謹天戒也，今雨澤周足，上教允當。”命罷酒禁。</p>
<p>성종 280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7월 6일 (무술) 1번째기사</p>	<p>중사(中使)를 보내어 술과 안주를 독서당(讀書堂)에 내려 주었다. 이조 정랑(吏曹正郎) 신용개(申用漑) 등이 전(箋)을 올려 사례하기를,</p> <p>“ 제(齊)나라 뜰에서 피리[竽]를 불면서 오랜 동안 참된 악공(樂工)과 섞여 있다는 꾸짖음을 무릅썼고26005) 초(楚)나라 주연(酒宴)에 단술[醴]을 마련하였으니,26006) 외람되게 분수에 넘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부복(俯伏)하여 기뻐하면서 절을 하니, 감격하고 두려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삼</p>	<p>○戊戌/遣中使，賜酒肴于讀書堂。吏曹正郎申用漑等上箋，謝曰：“齊庭吹竽，久冒混眞之誚，楚筵設醴，濫叨踰分之恩，俯伏拜嘉，感兢失措。伏念臣等，螢雪末業，鉛槧孱材，幼而學壯而行徒，尚古人之志，醉以酒飽以德，</p>

	<p>가 생각하건대, 신 등은 형설(螢雪)26007) 의 보잘것없는 학업이며 연참(鉛槧)26008) 의 작은 재주입니다. 어려서 배우는 것은 자라서 행하려는 것이니 한갓 옛사람의 뜻만 숭상하였고, 술로써 취하고 덕(德)으로써 배불렀으니 어찌 오늘날의 영광을 도모하였겠습니까? 성택(聖澤)26009) 의 넓고 깊음에 목욕하고 진환(塵寰)26010) 의 보고 들음을 권장하게 하셨습니다. 삼가 주상 전하를 만나서 교화는 고무(鼓舞)함이 높고 가르침은 작성(作成)26011) 을 먼저 하시어 이미 좋은 곳을 골라서 당(堂)을 짓고 또 음료를 풍족하게 하여 선비를 기르시니 큰 집의 기둥과 들보감을 만들면서 두공[樞樞]감도 함께 거두었으며, 큰 언덕의 중간에다 쑥[菁莪]26012) 을 기르면서 사초[菅蒯]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노둔한 재주로 하여금 큰 은혜를 입게 하였으니, 신 등은 감히 처음 먹은 마음을 갈고 닦으며 본래의 절개를 격양(激昂)26013)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몸은 초목(草木)처럼 미천하여 비록 천지(天地)같은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더라도 뜻은 조금이라도 성과를 거두어 산과 바다처럼 높고 깊은 덕(德)에 모두 돕기를 바랍니다.” 하였다.</p>	<p>豈圖今日之榮，沐聖澤之汪洋，聳塵寰之觀聽，伏遇主上殿下，化隆鼓舞，教先作成，既選勝而構堂，又豐廩以儲士，構大廈之棟樑，俱收樽榼，育中阿之菁莪，不遺管蒯〔菅蒯〕，遂令鴛蹇，獲彼鴻私，臣等敢不砥礪初心，激昂素節，身微草木，雖未答施於乾坤，志效涓埃，庶幾輸補於海岳。”</p>
<p>성종 280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7월 7일 (기해) 1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여, 월산 대군(月山大君)의 부인 박씨(朴氏)에게 쌀 1백 석(碩), 면포(綿布) 2백 필(匹), 정포(正布) 50필을 내려 주게 하였다.</p>	<p>○己亥/傳旨戶曹，賜月山大君夫人朴氏米一百碩、綿布二百匹、正布五十匹。</p>
<p>성종 280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7월 8일 (경자) 1번째기사</p>	<p>홍문관 저작(弘文館著作) 이과(李穎)가 상소하기를, “삼가 생각하건대, 신의 아버지 이창신(李昌臣)이 예전에 경악(經幄)에 있을 적에 나라가 있는 것만 알고 몸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 일을 만나면 과감히 말하므로 강관(絳灌)이 기뻐하지 아니하였고,26050) 여러 번 천권(天眷)26051) 을 입으므로 동진자(同進者)가 꺼렸는데 한 번 실수를 엿보아서 우물에 밀어넣고 돌을 내리 던지려고 하는 자가 진실로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번 이윤(李掄)의 일은 천감(天鑑)26052) 으로 환하게 아시는 바이며, 세월</p>	<p>○庚子/弘文館著作李穎上疏曰：“伏以臣父昌臣，昔在經幄，知有國不知有身，遇事敢言，絳灌不悅，累紆天眷，同進者忌，伺其一跌，擠之井而欲下石者，固非一人。頃者李掄之事，天鑑所洞照，歲月已久，猶留震念，遇有言者，輒恕臣父之心。臣父每聞天語，</p>

이 이미 오래 되었는데 오히려 신념(宸念)26053)에 두시고 말하는 자가 있으면 번번이 신의 아버지 마음을 용서하시니, 신의 아버지가 매양 천어(天語)26054)를 듣고는 감격하여 울먹이면서 말하기를, ‘죽어도 눈을 감겠다.’고 하였습니다. 요즈음 신의 아버지를 종부시 정(宗簿寺正)으로 삼자, 말하는 자가 전의 허물을 들어서야 아마도 밀어서 떨어뜨리지 못할 듯하므로 감히 근거없는 말로써 천청(天聽)을 움직이려고 하여 이에 말하기를, ‘이창신이 일찍이 홍문관(弘文館)에 있으면서 한재(旱災)로 인하여 수상(首相) 윤필상(尹弼商)을 아울러 논박하였는데, 바로 그날 저녁에 그 집에 가서 말하며 아침하여, ‘책망을 면하였다.’라고 하였으니, 참혹합니다. 이 말이여! 아침에 정승을 파면하도록 주청하고 저녁에 그 집에 가서 <아침하는 것은> 병풍자(病風者)26055)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또 전번에 유진(兪鎭)이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으로서 사람을 논박(論駁)하고 즉시 저녁에 돌아가서 그 사람에게 말하였다가 그 때문에 파면되었으니, 실수한 사례가 유진에게 있는데, 차마 이를 행하였겠습니까? 과연 그 사람의 말과 같다면 윤필상의 마음이 또한 신의 아버지를 어떻다고 여기겠습니까? 전교(傳敎)하시기를, ‘그 일을 세어서 꾸짖는 것은 잘하는 것이 많은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전후 언관(言官)이 신의 아버지를 논하는 자가 매양 이윤의 한 가지 일을 들어서 말하니, 일이 진실로 애매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성상의 밝으심이 계시는데도 이미 그 말을 완수하지 못하여 근거없는 말이 또 여기에 이르렀으니, 만약 드러내어 밝히지 아니하면 신의 아버지의 평생 교양한 바를 누가 있어 알겠습니까? 윤필상이 정승 자리에 있으니 신의 아버지의 억울함을 즉시로 분변할 수 있으며, 말이 누설된 바가 있었으면 대간의 논박이 진실로 마땅합니다. 만약 미워하는 자가 있어서 이 말을 교묘히 꾸며서 사람에게 선전하고 대간(臺諫)의 귀에 들어가서 이 비방(誹謗)이 있었으면 어찌 성조(聖朝)의 큰 누(累)가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근거없는 말에 걸려들어 실지로 재화를 받으면 그 억울함이 어떠하겠습

感激號泣曰：‘死當瞑目。’日者，除臣父爲宗簿寺正，言者追舉前愆，恐不能擠之，敢以不根之說，要動天聽，乃曰：‘昌臣嘗在弘文館，因旱災竝論首相尹弼商，卽夕歸語其家，阿媚免諍’云云，慘矣斯言也。朝請免相，夕造其門，非病風者不能爲也。且曩者，兪鎭以弘文副提學，論駁人物，卽夕歸語其人坐罷，覆轍在鎭，其忍蹈之乎？果若人言，弼商之心亦謂臣父爲何如？傳曰：‘數其事而責之者，其所善者多也’，前後言官論臣父者，每舉李掄一事，事誠曖昧，自有聖鑑，既不遂其說，則不根之言又至於此，若未曝白，則臣父平生所養，有誰知之？弼商在位，民父之冤，可以立辨，有所漏言，臺諫之駁，固其宜也，設有疾之者，巧飾斯言，以宣於人，流入於臺諫之耳，有是謗也，則豈不爲聖朝之大累乎？坐飛語獲實禍，則其冤幾何？”傳曰：“實非昌臣所爲，而臺諫欲陷昌臣敢言之，則臺諫非也，若已實所爲，而強欲發明，則昌臣非也。此事甚大，不可不分揀，然令臺諫分揀則此乃臺諫所言之事也，令禁府分(棟) [揀]，則臺諫亦當囚鞫，何

	<p>니까?”</p> <p>하였는데, 전교하기를,</p> <p>“참으로 이창신이 한 바가 아닌데 대간이 이창신을 빠뜨리려고 하여 감히 말하였으면 대간이 잘못이고, 만약 자기가 진실로 한 것인데 억지로 변명하려고 하면 이창신이 잘못이다. 이 일이 심히 크니, 분간(分揀)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대간으로 하여금 분간하게 하면 이는 바로 대간이 말한 일이며, 의금부(義禁府)로 하여금 분간하게 하면 대간을 또한 마땅히 가두어서 국문(鞫問)해야 할 것이니,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겠는가?”</p> <p>하니, 동부승지(同副承旨) 권경우(權景祐)가 아뢰기를,</p> <p>“옳고 그르고간에 대간이 어찌 보고 들은 바가 없으면서 이를 아뢰겠습니까? 만약 대간에게 물으면 언근(言根)이 저절로 드러날 것입니다.”</p> <p>하였다. 조금 있다가 대사헌(大司憲) 성현(成俔) 등과 대사간(大司諫) 이덕숭(李德崇) 등이 덧붙여 아뢰기를,</p> <p>“어제 전교에 이르시기를, ‘윤은로(尹殷老)를 중궁(中宮)의 지친(至親)이 되기 때문에 말함이 이에 이르렀느냐?’고 하셨는데, 신 등은 진실로 전하께서 윤은로가 중궁의 지친(至親)으로써 그 합당하지 못함을 아시면서도 억지로 기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감히 아뢰는 것입니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공도(公道)를 써서 개정(改正)하시고, 아울러 이조(吏曹)에서 의망(擬望)한 죄를 다스리소서. 이창신(李昌臣)은 대신에게 아부한 형적이 있으니, 또한 체임(遞任)시키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경 등은 비록 윤은로의 일을 논함이 이에 이르렀으나, 윤은로는 단지 호초(胡椒)를 주어 보낸 까닭으로써 논박을 입은 것뿐이다. 근래에 대간(臺諫)은 말한 만한 것이 있는데 말하지 아니하는 일이 있고, 또 말하지 아니할 만한 것이 있는데 말하는 것이 있다. 또는 이조 당상(吏曹堂上)이 한둘이 아닌데</p>	<p>以處之?” 同副承旨權景祐啓曰: “是非間臺諫豈無所聞見而啓之? 若問諸臺諫, 則言根自當露矣。” 俄而大司憲成俔等、大司諫李德崇等附啓曰: “昨傳教云: ‘爾等以殷老爲中宮至親, 故言之至此乎?’ 臣等固以爲殿下以殷老中宮至親, 知其不合而強用, 故敢啓耳。願殿下用公道改正, 并治吏曹擬望之罪。李昌臣有阿附大臣立跡, 亦不可不遞也。” 傳曰: “卿等雖論殷老事至此, 然殷老只以胡椒贈送被論耳, 近來臺諫有可言而不可言之事, 又有不可言而言之者, 且吏曹堂上非一二, 注擬之際, 豈不顧朝廷物議乎? 且李昌臣首排弼商, 卽夕往語弼商事, 卿等何以知之?” 臺諫啓曰: “昌臣前在弘文館, 人物論啓時, 以尹弼商爲殖貨唱議排之, 其日卽往語弼商事, 臣等聞之, 若問弼商則可知情狀。” 傳曰: “何從而聞之乎?” 臺諫啓曰: “李德崇、鄭錫堅、金崙, 去六月間會坐司諫院茅亭閑話, 錫堅云: ‘凡臺諫密議事, 自古有漏洩之弊甚不可也。非但臺諫, 去乙巳年間, 弘文館承命評論人物, 以領議政爲殖貨唱議啓達後, 卽日往語領議政者有之,</p>
--	--	--

주의(注擬)하는 즘음에 어찌 조정의 물의(物議)를 돌아보지 아니하였겠는가?
또 이창신은 맨먼저 윤필상을 배척하고는 바로 그날 저녁에 가서 윤필상에게
말한 일을 경 등은 어떻게 알았는가?”

하자, 대간이 아뢰기를,

“이창신이 전에 홍문관(弘文館)에 있으면서 인물(人物)을 논계(論啓)할 때에
윤필상이 재물을 늘인다고 맨먼저 의논하여 배척하였는데, 그날 즉시 윤필상
에게 가서 말한 일을 신 등이 들었습니다. 만약 윤필상에게 물으면 정상(情
狀)을 알 수 있을것입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어디에서 그것을 들었는가?”

하니, 대간이 아뢰기를,

“이덕숭(李德崇)·정석견(鄭錫堅)·김봉(金崙)이 지난 6월 사이에 사간원(司諫院)
이 모정(茅亭)에서 모여앉아 한가롭게 이야기하였는데, 정석견이 이르기를,
‘대저 대간이 비밀히 의논한 일이 옛부터 누설되는 폐단이 있으니 매우 옳지
못하다. 대간뿐만 아니라 지난 을사년(乙巳年)26056) 사이에 홍문관(弘文館)
에서 명령을 받들고 인물을 평론하는데, 영의정(領議政)을 식화(殖貨)한다고
맨먼저 의논하여 계달한 뒤에 바로 그날 가서 영의정에게 말한 자가 있었으
니, 이 풍습이 매우 나쁘다.’고 하자, 이덕숭이 말하기를, ‘그 때 족장(族長)
【윤필상은 이덕숭의 삼촌 숙모(三寸叔母)의 부(夫)이다.】 이 이르기를, 「이
창신(李昌臣)이 와서 말하였는데 나도 그에게 속았다.’고 했다.’고 하였는데,
김봉이 놀라며 말하기를, ‘만약 그렇다면 이창신이 크게 잘못하였다.’라고 하
였습니다.”

하고, 집의(執義) 이균(李均)은 아뢰기를,

“전번에 홍문관에서 윤필상을 논박할 때에 신이 수찬(修撰)으로 있었는데, 일
시에 동료(同僚)들이 떠들며 퍼뜨리기를, ‘사중(司中)에서 논계(論啓)한 일을

此風甚惡。” 德崇曰：“其時族長云，
【弼商乃德崇三寸叔母夫也。】 李昌
臣來言，吾亦見欺於彼。” 金崙驚曰：
“若然則昌臣大非矣。” 執義李均啓曰：
“曩者弘文館論駁弼商時， 臣爲修撰，
一時同僚喧播曰：‘司中論啓事， 有一
上官唱議者， 洩於領議政， 欲免怨怒’，
然未能的知爲何人， 故其時未啓耳。”
傳于承政院曰：“言人所不爲之事則臺
諫非也， 若已實爲之， 而強欲明辨， 則
昌臣非也。 其分揀以啓。” 同副承旨
權景祐啓曰：“其跡已露， 他無可問之
事， 不過招弼商問之耳。 若有所聞，
容有隱諱乎？” 傳曰：“可。”

	<p>상관(上官)이면서 앞장서서 의논한 어느 한 사람이 영의정(領議政)에게 누설하여 원망과 노여움을 면하려고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 인지를 확실히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때에 아뢰지 못하였습니다.”</p> <p>하였는데,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남이 하지 아니한 일을 말하였으면 대간(臺諫)이 잘못이고, 만약 자기가 참으로 하였으면서 억지로 변명하려고 하면 이창신이 잘못이다. 이를 분간(分揀)하여 아뢰라.”</p> <p>하니, 동부승지(同副承旨) 권경우(權景祐)가 아뢰기를, “그 형적이 이미 드러났으니 다른 것은 물을 만한 일이 없고, 윤필상을 불러서 묻는 것에 불과합니다. 만약 들은 바가 있으면 숨길 수 있겠습니까?”</p> <p>하였는데, 전교하기를, “가하다.”</p> <p>하였다.</p>	
<p>성종 280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7월 9일 (신축) 1번째기사</p>	<p>영의정(領議政) 윤필상(尹弼商)이 부름을 받고 예궐(詣闕)하자, 명하여 대간(臺諫)이 아뢰 이창신(李昌臣)의 일을 보이게 하니, 윤필상이 아뢰기를, “이 일은 해가 오래 되어 월일(月日)은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 때 이창신의 삼촌숙(三寸叔) 조지주(趙之周)가 신의 집에 와서 말하기를, ‘이창신이 이르기 를, 「영의정을 논계(論啓)한 일은 내가 주창한 것이 아니고, 또 면대(面對)할 때에도 별로 해롭게 한 말은 없었으니, 행여 서로 만나 보거든 이 뜻을 알리소서.’라고 했습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창신이 결코 신의 집에 오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그해 가을에 이창신이 충주 목사(忠州牧使) 경준(慶俊)을 추고(推考)하는 경차관(敬差官)으로 와서 사조(辭朝)할 때에 신이 술을 먹여 보냈을 뿐입니다. 신이 이덕승(李德崇)과 더불어 이 일을 말한 절차는 신이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단지 아마도 이덕승이 조지주의 말을 듣고서 잘못 말한 것인 듯합니다.”</p>	<p>○辛丑/領議政尹弼商承召詣闕，命以臺諫所啓昌臣事示之，弼商啓曰：“此事年久，日月不可記也，其時李昌臣三寸叔趙之周到臣家言曰：‘昌臣云，領議政論啓事，我非首唱，且面對時別無有害之語，幸相見告白此意。’然昌臣絕不到臣家，其年秋節，昌臣以忠州牧使慶俊推考敬差官來辭，臣饋酒以送而已。臣與德崇言此事節次，臣不能記憶，但恐德崇聞趙之周之言而誤言之耳。”傳曰：“吾亦見欺於彼等之語，政丞語諸德崇乎？”弼商啓曰：“昌臣絕</p>

	<p>하였는데, 전교하기를, “나도 그에게 속았다.’는 말은 정승이 이덕송에게 말하였는가?” 하니, 윤필상이 아뢰기를, “이창신이 절대로 신의 집에 오지 아니하였는데 신이 무슨 인연으로 이같은 말을 이덕송에게 하였겠습니까? 다만 신이 조지주의 말을 이덕송에게 말하였는데 이덕송이 조지주의 말을 가지고 잘못 이창신이 신의 집에 와서 말하였다고 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신이 조지주의 말을 이덕송에게 말한 절차는 역시 오래되어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조지주가 면대하였다는 말을 겸해서 말하였는데, 그 때 홍문관(弘文館)에서 상소한 지 여러 날 후에 면대하였으니, 대간(臺諫)이 아된 바, ‘바로 그날 돌아가서 신에게 말하였다.’고 하는 말은 아마도 거짓인 듯합니다.” 하였다. 명하여 이균(李均)을 불러서 전교하기를, “그대가 말하기를, ‘어떤 한 상관(上官)이 윤필상을 논박한 뒤에 곧바로 그 일을 누설하였다고 동료(同僚)들이 전파(傳播)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른바 전파하였다는 자는 누구인가?” 하니, 이균이 아뢰기를, “세월이 이미 오래 되어 어떤 사람이 말하였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 때 상소한 사람을 상고하여 물으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영의정이 말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덕송이 이로써 말하였으면 이덕송이 잘못이고, 이창신이 말하였으면서 숨기면 이창신이 잘못이다. 이덕송과 이창신을 불러서 물어 보도록 하라.” 하였다. 이덕송 등이 부름을 받고 오자, 이덕송에게 전교하기를, “그대가 정승(政丞)에게 들은 것은 어떤 말들인가? 또 ‘그에게 속았다.’는 말을 그대도 들었는가?”</p>	<p>不來臣家， 臣何緣以此等言語諸德崇乎？ 但無乃臣以趙之周之言語德崇， 而德崇以之周之言誤以爲昌臣來語臣家耶？ 然臣以之周之言語德崇節次， 亦日久未能記憶， 但之周兼言面對之辭， 而其時弘文館上疏累日後面對， 則臺諫所啓即日歸語於臣之言， 恐爲虛也。” 命召李均， 傳曰：“汝言有一上官論駁弼商後， 旋即漏洩於彼事， 同僚傳播， 所謂喧播者誰耶？” 均啓曰：“日月已久， 未能的知某人言之， 考其時上疏人下問則可知矣。” 傳曰：“領議政不言， 而德崇以此言之， 則德崇非矣。 昌臣言之而諱焉， 則昌臣非矣。 其召德崇、 昌臣問之。” 德崇等承召而來， 傳于德崇曰：“爾之所聞於政丞者何等語耶？ 且見欺於彼之言， 汝亦聞之耶？” 德崇啓曰：“乙巳年間， 臣往弼商家， 弼商語臣曰： ‘弘文館以我爲殖貨論駁後， 李昌臣言： 「政丞待我甚厚， 今者論駁， 予雖不首唱， 心甚不平」 然其後面對之日， 則「予無別啓」云云， 但未知其時弼商以他人之言言之歟？ 以昌臣來說之言言之歟？ 歲月已久， 臣未細記其見欺之語， 則昌臣唱議論駁， 而云</p>
--	--	---

	<p>하니, 이덕승이 아뢰기를, “을사년(乙巳年)26061) 사이에 신이 윤필상의 집에 가니, 윤필상이 신에게 말하기를, ‘홍문관에서 내가, 재물을 늘인다는 일로써 논박한 뒤에 이창신이 말하기를, 「정승이 나를 대접하기를, 매우 후하게 하는데, 지금 논박한 일은 내가 비록 먼저 앞장선 것은 아니지만, 마음이 매우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뒤 면대하던 날에는 내가 별로 아뢰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그 때 윤필상이 다른 사람의 한 말을 가지고 말한 것인지 이창신이 와서 말한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인지는 세월이 이미 오래 되어 신이 자세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속았다.’는 말은 이창신이 논박하기를 주창하여 의논하였으면서 주창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또 ‘면대할 때에 별로 아뢰는 것이 없다.’고 하였으니, 신이 생각하건대, 윤필상이 이창신에게 속임을 당한 것인데 동료와 더불어 한담하는 사이에 이 말이 나온 것인 듯합니다.” 하였다.</p>	<p>不首唱, 又云面對時無別啓, 臣意弼商見欺於昌臣也。 與同僚閒話間發此語耳。”</p>
<p>성종 280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7월 9일 (신축) 4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대간(臺諫)이 예궐(詣闕)할 때에 밥을 대접하는가?” 하니, 승지(承旨)들이 아뢰기를, “않습니다. 대간이 일을 아뢰는 뒤에 전교를 듣지 못하면 더러 종일도록 물러가서 먹지 못합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이 뒤로는 대간이 예궐하여 오래 머물 때에는 으레 술과 밥을 대접하도록 하라.” 하였다.</p>	<p>○傳于承政院曰: “臺諫詣闕時饋飯乎?” 承旨等啓曰: “無矣。 臺諫啓事後, 未聞傳教, 則或終日不得退食。” 傳曰: “今後臺諫詣闕久留時, 例饋酒飯。”</p>
<p>성종 280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7월 12일 (갑진) 2번째기사</p>	<p>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성현(成俔) 등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이덕승(李德崇) 등이 상소하기를, “신 등이 합사(合司)26074) 해서 예궐(詣闕)하여 윤은로(尹殷老)의 탐욕스럽고 비루한 일을 아침부터 저물도록 논계(論啓)하기를 그치지 아니한 것이 벌</p>	<p>○司憲府大司憲成俔等、司諫院大司諫李德崇等上疏曰: “臣等合司詣闕, 彈尹殷老貪鄙之事, 從朝至昏, 論啓不已者, 今已浹旬。</p>

썬 열흘이 되었는데, 신 등의 청하는 바를 윤희를 얻으려고 기하였으나 전하
 께서 마침내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니, 신 등만 결망(缺望)될 뿐 아니라 조정과
 사림(士林)도 모두 마음속으로 분하게 여기며 가슴이 답답해 합니다. 한때 세
 상의 여론이 옳다 그르다고 한 것은 진실로 만세(萬世)의 공의(公議)입니다.
 사사로운 인정으로 논하면 왕비의 지친(至親)이고, 공의(公議)로 논하면 명문
 과 의리의 죄인인데, 사은(私恩)으로 공도(公道)를 폐하면 사람들이 무엇이라
 고 이르겠습니까? 나라에서 관(官)을 설치하는 데에는 경중(輕重)의 차례가
 있고 사람의 재기(材器)26075)는 현우(賢愚)가 같지 아니하여 큰 것은 받을
 만하되 작은 것은 받을 수 없는 것이 있고, 작은 것은 받을 만하되 큰 것은
 받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작은 것을 받아야 할 재주로써 큰 일을 주면 이는
 마치 서툰[拙] 목수가 바퀴[輪]를 다듬는 것과 같아서 손을 다치지 아니하는
 자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전하께서 의뢰함이 중한 것은 의정부와 육조(六曹)
 가 있고 경조(京兆)26076)가 그 다음인데, 경조는 일이 많고 사무가 복잡하
 여 보통 재주로서는 능히 있을 곳이 아닙니다. 더구나 윤은로의 탐욕스럽고
 비루하며 무능함으로써는 결단코 하루라도 있을 수 없습니다. 관작(官爵)이
 귀한 바는 사람이 우러러보고 영화롭게 여기는 것인데, 윤은로의 사람됨은 사
 람들이 모두 비루하게 여기고, 탄핵받은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윤은로가 만일 지식이 있다면 의물(儀物)을 갖추고 도로(道路)에서 호창(呼
 창)26077)한 것이 부끄러워서 땀이 이마에 나지 아니하겠습니까? 자기가 밝
 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사송(詞訟)26078)을 분변하겠으며, 어떻게 부(府)의
 서도(胥徒)를 검거(檢擧)하겠습니까? 만일 비난을 무릅쓰고 오히려 부끄러움
 을 알지 못하면, 이는 물고기이고 짐승인데 어디에 쓰겠습니까? 지금 현명함
 과 능력이 윤은로보다 뛰어나고 문무(文武)의 재주가 윤은로보다 뛰어나고 있
 으면서 이름은 재추(宰樞)라 하더라도 현직(顯職)을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많습니다. 윤은로는 지친인 까닭으로써 나이 아직 40이 못되어서 벼슬이 2품

臣等期於得請，而殿下終不聽納，非惟
 臣等缺望，朝廷士林亦皆憤鬱，一時物
 論之是非，實萬世之公議也。論私情
 則王妃之至親也，論公義則名義之罪人
 也，以私恩廢公道，人謂之何？國之設
 官，輕重有序，人之材器，賢愚不同，
 有可大受而不可小受，有可小受而不可
 大受，以小受之才而授之大事，則是猶
 拙匠之斲輪，不傷手者幾希。殿下所
 賴重者，有政府、六曹，而京兆次之。
 京兆，事叢務繁，非尋常庸材所能處，
 而況殷老之貪鄙無能，決不可一日居
 也。所貴乎官爵者，人仰而榮之也。
 殷老之爲人，人皆鄙之，被彈之事，人
 無不知之，殷老如有知識，則備儀物行
 呼唱於道路，其不愧泚於類乎？己則不
 明，其何以辨人之辭訟？其何以檢舉府
 之胥徒？如其冒譏而猶不知恥，則是魚
 耳獸耳，何所用哉？今有賢能過於殷
 老，文武之材過於殷老，雖名宰樞猶不
 得顯職者尙多，殷老以至親之故，年未
 四十，官至二品，以同知中樞兼副摠
 管，又有提調之任，何必爲京兆左尹然
 後始飽其欲哉？如殷老者，厚其祿可
 也，小受猶可也，大受不可也。夫國

에 이르고,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서 부총관(副總管)을 겸하고, 또 제조(提調)의 임무를 가졌는데, 어찌하여 반드시 경조 좌윤(京兆左尹)이 된 연후에야 그 욕심에 만족해하겠습니까? 윤은로와 같은 자는 그 녹(祿)을 후하게 함은 가하며, 작은 벼슬을 받는 것은 오히려 가하지만, 큰 것을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대저 국가가 실패하는 것은 관리로서 지켜야 할 일을 지키지 않는 데서 말미암습니다. 관리로서 지켜야 할 일을 지키지 못하면 총록(寵祿)이 지나친 것이며, 사랑하기를 크게 지나치게 하면 은혜를 입는 데 익숙하고 사랑을 믿어서 하지 아니하는 바가 없음은 형세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으면 마땅히 의(義)로써 가르쳐서 사도(邪道)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며, 임금의 사랑하는 신하가 있으면 마땅히 정도(正道)로써 대접하여 참람함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간사하고 참람한 근원을 막지 아니하여 마침내 실패함에 이르면 그 사랑하는 바가 바로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전교에 이르시기를, ‘전일에 시추(時推)로 조율(照律)하였거니와 정적(情跡)도 드러나지 아니하였다.’고 하셨는데, 신 등은 그렇지 않다고 여깁니다. 전일에 일의 형상[事狀]이 이미 드러났고, 문안(文案)이 이미 이루어져서 그 단서가 하나만이 아닌데, 더구나 호초(胡椒)를 주어 보냈으니 청탁한 것이 매우 명백하여 숨기기 어려웠으나, 마침 성상의 은혜를 입어서 그쳤습니다. 만약 그 일을 끝까지 추궁하였으면 그 방납(防納)한 바가 어찌 선척(船隻) 한 가지 일뿐이겠습니까? 만일 죄가 없었다면 그 때를 당하여 전하께서 반드시 죄를 정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죄를 정하여 벼슬을 파면하고 품계를 낮추었으니, 성상의 밝으심이 이미 실정을 밝게 아신 것입니다. 전교에 이르시기를, ‘관직을 어찌 경중(輕重)으로 구별할 것인가? 도총부(都摠府)도 병권(兵權)을 맡은 곳인데 윤은로가 이미 이를 하였으니 만약 이 임명을 바꾸면 차라리 파직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신 등은 중추부(中樞府)가 비록 높다 하더라도 어찌 의정부(議政府)와 어깨를 같이 하겠으며, 도총부가 아

家之敗，由官邪也。官邪，寵祿過也。寵之太過，則狎恩恃愛，而無所不爲，勢所然也。父有愛子，當教之以義，而不納於邪，君有嬖臣，當待之以道，而不陷於僭，不防邪僭之源，而竟至於敗，則其所以寵之者，乃所以害之也。教曰：‘前日以時推照律，情跡未露。’臣等以爲不然。前日事狀已露，文案已成，其端非一，而況贈送胡椒，請托明甚，事難掩覆，適蒙上恩而止。若究竟其事，則其所爲防納，豈獨船隻一事而已乎？如其無罪，則當其時殿下必不定罪矣。定罪而罷官貶秩，則聖鑑已洞照情實也。教曰：‘官職豈可以輕重而區別之？都摠府亦掌兵權之地也，而殷老已爲之，若遞此任，則寧爲罷職。’臣等以爲，樞府雖尊，豈肩於政府，都摠府雖有兵權，只得侍衛而已，點檢闕內軍士而已，其勢不如兵曹，其務不如京兆，雜流猶得而居之，不可比擬於東班之職。今遞左尹之任而還授閑官，則儀章猶在，俸祿猶厚，豈有防於殷老之仕途乎？教曰：‘內親除職，汝等必先彈之’，臣尤甚驚惑。臣等適見有罪者而論之，非有嫌於殷老

무리 병권이 있다 하더라도 단지 시위(侍衛)만 할 뿐이고 궐내(闕內)의 군사를 점검할 뿐이며, 그 세(勢)가 병조(兵曹)와 같지 아니하고 그 일이 경조(京兆)와 같지 아니하므로, 잡류(雜流)라도 오히려 있을 수 있으니, 동반(東班)의 직무에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제 좌윤(左尹)의 임명을 바꾸어 도로 한관(閑官)을 제수하면 의장(儀章)은 그대로 있고 봉록(俸祿)이 오히려 후한데 어찌 윤은로의 벼슬길을 막음이 있겠습니까? 전교에 이르시기를, ‘내친(內親)26079)의 제직(除職)에는 그대들이 반드시 먼저 이를 탄핵한다.’고 하셨으니, 신 등은 더욱 몹시 놀랍고 의혹스럽습니다. 신 등은 마침 죄가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논박한 것이고, 윤은로에게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니며, 지친(至親)을 탄핵할 마음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신 등이 탄핵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신 등이 어리석고 용렬한 소치이고 생각이 미치지 못한 것이지, 마음에 두고서 고의로 침묵하고 말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 등은 위로는 천감(天鑑)을 두려워 하고, 아래로는 조정의 대체를 돌아보는데 어찌 감히 일호라도 그 사이에 사사로운 뜻이 있겠습니까? 오직 직분의 마땅히 할 바를 다할 뿐입니다. 또 듣건대, 임금이 말을 들어주고 간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충신(忠臣)은 차라리 머리가 부서져도 한(恨)이 없으며, 임금이 잘못을 옳다고 꾸미고 간하는 말을 거절하면 사람들이 모두 의위(依違)26080) 하고 전인(渙忍)26081) 하여 죄책을 면하기를 꾀한다고 하였으니, 누가 용린(龍鱗)26082)을 거스릴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왕위에 계신 지 이제 24년인데, 간하는 말에 따르시기를 물 흐르듯 하시고, 처음에서 끝까지 쇠퇴하지 아니하시며, 비록 어긋나는 말이 있다 하더라도 온순하게 타일러서 더욱 힘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비들이 모두 명예와 행실을 같고 닦아서 말을 다하고 간함을 극진히 하여 사람마다 바른 말을 하는 강직(強直)한 기풍이 있으니, 전하께서 용납해 받아들이는 겸손하신 덕은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신 등의 구구(區區)한 정성이 우러러 뇌정(雷霆)26083)을 무릅쓰고 청하였으나, 오히

也, 非有心彈斥至親也, 臣等所不得彈者, 是臣等愚庸所致, 而計慮之未及, 非有心故爲含默而不言也。 臣等上畏天鑑, 下顧朝廷大體, 豈敢有一毫私意於其間? 惟盡職分之所當爲而已。 且聞人君聽言納諫, 則忠臣寧碎首而不恨, 人君文非拒諫, 則人皆依違渙忍, 謀免罪責, 誰能上批龍鱗哉? 殿下在位, 于今二十有四年矣。 從諫如流, 終始不替, 雖有戾言, 濫諭敦勉, 是故士皆砥礪名行, 盡言極諫, 人人有諤諤騫直之風。 殿下容受巽順之德, 豈可量已? 獨臣等區區之誠, 仰冒雷霆, 而猶未能回天, 是殿下有納諫之名而無從諫之實, 漸不如初之失, 恐未免後世之議也。 臣等情激于中, 不知所裁, 輒陳狂瞽, 伏待斧鉞。 仍啓曰: “李昌臣雖曰不親往語, 若說與之周, 使之傳告, 則與親往何異。” 且昌臣云: “於面對之日, 則別無有害之言。” 昌臣首唱排之, 而於上前以權貴之故獨不彈論, 則小人之尤者也。 請改正。 且尹湯老以未經守令, 法不得授仕加, 故令其母上言, 特許加。 《大典》載非經守令者, 不得陞四品以

려 천의(天意)를 돌이키지 못합니다. 이는 전하(殿下)께서 간(諫)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이름만 있고, 간하는 말에 따르는 실상(實相)이 없어서 점점 처음과 같지 않은 실수가 아마도 후세의 논의를 면치 못할 듯합니다. 신 등은 정(情)이 가슴 속에 격동하여 제재할 바를 알지 못해서 문득 광고(狂瞽)26084) 가 하는 말을 진술하여 삼가 부월(斧鉞)26085) 을 기다립니다.”

하고, 인하여 아뢰기를,
 “이창신(李昌臣)는 비록 가서 말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만약 조지주(趙之周)에게 말하여 전해 고하게 하였으면 친히 간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또 이창신이 말하기를, ‘면대(面對)하던 날에 별로 해로운 말은 없었다.’고 하였으니, 이창신이 앞장서서 배척하였으면서 성상의 앞에서는 권귀(權貴)인 까닭으로 홀로 탄핵해 논박하지 않았으면 소인(小人)의 더욱 심한 자입니다. 청컨대, 개정(改正)하소서. 또 윤탕로(尹湯老)는 수령(守令)을 지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으로는 사가(仕加)26086) 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미로 하여금 상언(上言)하게 하여 특별히 사가를 허락하였습니다. 《대전(大典)》에 실려 있기를, ‘수령을 지내지 아니한 자는 4품 이상의 품계에 오르지 못한다.’라고 하였는데, 이제 윤탕로에게 주면 신은 그욕이 두렵건대, 국법이 이로부터 허물어질 듯합니다. 청컨대, 개정하소서.”

하였다.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김심(金諶) 등이 차자(劄字)를 올리기를,
 “삼가 듣건대, 요즈음 영돈녕(領敦寧) 윤호(尹壕)의 아내 전씨(田氏)의 상언(上言)으로써 그 아들 윤탕로(尹湯老)의 벼슬을 2계급을 더하였다고 하니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신 등은 듣건대, 구후(舅后)26087) 의 집은 다만 은혜로써 양육(養育)하는 것은 마땅하고 권세를 빌려 주는 것은 마땅치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윤호는 자신이 국구(國舅)26088) 의 높음을 누렸으며, 맏아들 윤은로(尹殷老)는 배운 것이 없어 용렬하고 비루한데 위(位)가

上階，而今授湯老，則臣等竊恐國法從此而毀也。請改正。” 弘文館副提學金諶等上劄字曰：
 伏聞，近以領敦寧尹壕妻田氏上言，特許其子湯老全加二階，不勝驚駭。臣等聞，舅后之家，但當養育以恩，不當假借以權。今壕身享國舅之尊，長子殷老不學庸鄙，位至二品，次子湯老，筮仕未幾，驟陞三品，恩眷已隆，猶不知足，又爲其子躁進之謀，假托其妻，公然上言，執法干恩，其驕縱自恣，無所忌憚甚矣。非經守令者，不得陞四品以上階，國有定法，雖賢者、能者拘於此法，當不得陞階，況以私而毀之乎？” 壕知此法之不可毀而敢爲此者，恃恩寵耳。殿下知此法之不可毀，而黽勉從之者，私后家耳。臣等竊恐，以私滅公，而毀法亂紀，自湯老父子始也。且殷老貪黷無厭，不宜權要之任，誠如臺諫所論，伏望亟收殷老兄弟成命，又治壕不恪之罪。” 傳于臺諫弘文館曰：“今觀疏意，以殷老戚聯於予，故有情而不聽也。然人有一失，其可終身不用乎？昌臣事，領議政之言雖如彼，政丞皆云之周之爲人多權謀者也。

2품에 이르렀고, 다음 아들 윤탕로(尹湯老)는 벼슬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는데 갑자기 3품에 올랐으니, 은혜와 사랑이 이미 높은데도 오히려 만족함을 알지 못하여, 또 그 아들을 조금하게 승진하기를 꾀하여 그 아내를 가탁하여 공공연히 상언(上言)하여 법을 굽히고 은혜를 요구하였으니, 그 교만하고 방자하여 기탄하는 바가 없음이 심합니다. 수령을 지내지 아니한 자는 4품 이상의 계급에 오를 수 없는 것은 나라에 정한 법이 있으니, 비록 어질고 능력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이 법에 구애되어 오히려 품계가 오를 수 없는데, 하물며 사사로운 것으로써 허물어뜨리겠습니까? 윤호가 이 법을 허물어뜨릴 수 없음을 알면서 감히 이를 하는 것은 은총(恩寵)을 믿는 것이며, 전하께서 이 법을 허물어뜨릴 수 없음을 아시면서 힘써 따르시는 것은 왕후의 집안이라 하여 사사로이 하시는 것입니다. 신 등은 그욕이 두렵건대, 사(私)로써 공(公)을 멸하고 법을 무너뜨리고 기강(紀綱)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 윤탕로 부자(父子)로부터 비롯될 듯합니다. 또 윤은로는 탐독(貪黷)26089) 이 끝이 없으니 권요(權要)의 임무에 마땅하지 아니함은 진실로 대간(臺諫)의 논한 바와 같습니다. 앞드려 원하건대, 윤은로 형제의 성명(成命)을 빨리 거두시고 또 윤호의 삼가지 못하는 죄를 다스리소서.”

하였는데, 대간(臺諫)과 홍문관(弘文館)에 전교하기를,

“이제 상소의 뜻을 보건대, ‘윤은로가 나에게 인척(姻戚)의 관련이 있는 까닭으로써 사정이 있어서 들어주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사람이 한 번 실수가 있으면 종신토록 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창신(李昌臣)의 일은 영의정(領議政)의 말은 비록 저와 같다고 하더라도 정승들이 모두 말하기를, ‘조지주(趙之周)의 사람됨이 권모(權謀)가 많은 자라’고 하니 그렇다면 이창신이 말하지 아니한 바를 스스로 가서 말할 이치가 없지는 아니하다. 더구나 조지주가 이미 죽었으니 진실로 면질(面質)26090) 하기가 어렵다. 윤탕로(尹湯老)의 부모가 늙은 것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부모가 죽으면 그만이지

然則不無以昌臣所不言，而私自往語之理。況之周已死，固難面質。湯老父母之老，人無不知之，其父母死則已矣，未死之前，則不得爲守令，而終不得仕加，故特許之。”仍傳于承政院曰：“若從臺諫之言，則殷老當罷黜，不然則當用之，其問于領敦寧以上及政府。”

	<p>만 죽기 전에는 수령이 될 수 없어서 마침내 사가(仕加)를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를 허락한 것이다.”</p> <p>하였다. 인하여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만약 대간(臺諫)의 말에 따르면 윤은로를 마땅히 파출(罷黜)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면 마땅히 기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에 묻도록 하라.”</p> <p>하였다.</p>	
<p>성종 280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7월 14일 (병오) 1번째기사</p>	<p>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이덕숭(李德崇) 등과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 이균(李均) 등이 와서 아뢰기를, “신 등이 대신(大臣)들의 의논을 보건대, 모두 이르기를, ‘윤은로(尹殷老)는 반드시 이미 허물을 고쳤을 것인데 어찌 파면해 버릴 수 있겠느냐?’고 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성상께서 윤은로를 서용(敍用)할 것과 버릴 것을 하문(下問)하셨으므로 그 의논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신 등이 상소한 뜻은 윤은로가 탐욕스럽고 비루하여 경조(京兆)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이고, 파면하여 버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이 의논에 의거하여 그대로 그 직(職)에 임명할 수 있겠습니까? 윤은로는 첨정(僉正)에서 뛰어 올라서 승지(承旨)에 임명되고 여러 번 옮겨서 이조 참판(吏曹參判)에 이르렀으니, 진실로 마땅히 명예와 행동을 같이 닦아서 성상의 특별한 은혜를 저버림이 없어야 할 것인데, 공선(公船)을 방납(防納)하여 이(利)만 보고 의(義)는 버리니 마침내 마음을 고치고 깨닫지 않았다는 것을 단정코 알 수 있습니다. 집안에 부형(父兄)이 있어서 가르치고 명령하기를 엄하게 하면 자제(子弟)가 잘못을 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윤호(尹壕)는 윤탕로(尹湯老)를 위하여 벼슬을 더하도록 허락해 주기를 청한 것으로써 보면, 그 본래 가르치고 명령함이 없음을 알 만합니다. 또 윤탕로의 조금하게 승진하려는 마음을 일찍 방지하지 아니하면 마침내 반드시 그 형처럼 탐욕스럽고 비루하게 될 것이니, 윤은로의 직(職)과 윤탕로의 자급(資</p>	<p>○丙午/司諫院大司諫李德崇等、司憲府執義李均等來啓曰：“臣等見大臣議，皆云殷老必已改過，豈可罷棄，此必上以殷老用捨下問，而其議如是也。 臣等疏忽，則殷老貪鄙，不合京兆，非欲罷棄之也。 豈可據此議，仍授其職？殷老由僉正，超拜承旨，累遷至吏曹參判，固當砥礪名行，以無負聖上不次之恩也。 防納公船，見利忘義，終不改悟，斷可知矣。 家有父兄教詔之嚴，則子弟不得爲非。 今以尹壕爲湯老請許仕加觀之，其素無教詔可知。 且湯老躁進之心不防之於早，則終必爲厥兄之貪鄙矣。 殷老之職、湯老之資，不可不改正。 《大典》，政府、政曹、臺諫、史官、知製教、宗簿寺等官，皆考己身痕咎署經， 故前者昌臣授知製教，法司以貪取財利彈劾，上重其法而</p>

級)을 개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전(大典)》에 의정부(議政府)·정조(政曹)26102) ·대간(臺諫)·사관(史官)·지제교(知製敎)·종부시(宗簿寺) 등의 관원은 모두 자신의 흔구(痕咎)26103) 를 상고하여 서경(署經)26104) 하도록 한 때문에 전번에 이창신(李昌臣)이 지제교에 제수되자, 법사(法司)에서 재리(財利)를 탐취(貪取)한 일로써 탄핵하니 성상께서 그 법을 중하게 여기시어 곧 개정하셨는데, 지금 종정(宗正)26105) 은 지제교의 허함(虛銜)보다 중하며, 아첨하여 꾸짖음을 면하려는 것은 재리를 탐취하는 것보다 심한데도 이를 개정하지 아니하시니, 신 등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성상께서 이창신의 허물을 덮고자 하시는 것은 조지주(趙之周)의 말한 바를 믿을 수 없다고 하시는 것인데, 만약 이창신이 조지주로 하여금 윤필상(尹弼商)에게 가서 말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면 조지주가 어찌하여 그 논박하는 데에 앞장서지 아니하고 면대할 때에 해로운 말이 없었다는 말을 알겠습니까? 정적(情跡)이 매우 명백하니, 청컨대, 그 직을 개정하소서.”

하였는데, 어서(御書)에 이르기를,
 “윤은로가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있을 때에 호초(胡椒)를 수령에게 준 일로써 방납(防納)의 이름을 이루었는데, 그 때에 죄를 받았으니 이는 내가 사사로이 하지 아니한 증거이다. 그러나 단지 호초를 보낸 이름만 있고 자기가 받아들인 누(累)가 없는데, 어찌 하나의 실수로써 끝내 버릴 수 있겠는가? 또 윤탕로의 일은 말을 하면 법에 어긋나고 용서하면 인정에 합한다. 경 등은 한갓 나라의 법만 지키고 부자(父子)의 정을 헤아리지 아니하는 것이 가하겠는가? 또 내가 이창신에게 무슨 사사로움이 있겠는가? 만약 분변할 만한 것이 있으면 어찌 대간(臺諫)을 꺼려서 분변하지 못하겠는가? 이창신의 강개(慷慨)함은 사림(士林)이 아는 바인데, 비록 함정(陷阱)을 밟고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어찌 땅을 딛고서 올라감이 없겠는가? 일의 옳고 그름은 스스로 공의(公義)가 있는데 어찌 한 사람 조지주(趙之周)의 망령된 말로써 경악(經坼)의 옛 신바

即改之，今宗正重於知製敎虛銜，阿諂免誚，甚於貪取財利而不改之，臣等未知其由。上欲蓋昌臣之愆，以趙之周所言爲不可信。若昌臣不使之周往語弼商，則之周何以知其論駁不首唱、面對無害語哉？情跡明甚，請改正其職。” 御書曰：“殷老爲吏曹參判時，以贈胡椒於守令事，成防納之名，而其時受罪，是予所不私之驗也。然只有送椒之名而無納己之累，安可以一失終棄之乎？且湯老之事，言之則違於法，恕之則合乎情。卿等徒守邦國之法，而不度父子之情，可乎？且我於昌臣有何私乎？苟有可辨，豈憚臺諫而不辨乎？昌臣之慷慨，士林所知，雖以蹈坑而墜，豈無登地而升？事之是非，自有公議，豈可以一之周之妄語，輕黜經坼之舊臣乎？” 臺諫啓曰：“聖諭雖切，當今士風，節義掃地，廉恥道喪，殷老之貪鄙、湯老之躁進、昌臣之阿諂，其汚穢士風莫甚，若不改正，何以勸廉恥崇節義乎？” 御書曰：“諭之已盡，復有何言？”

	<p>를 가볍게 내치겠는가?” 하였다. 대간(臺諫)이 아뢰기를, “성상의 유시(諭示)가 비록 간절하실지라도 지금 사풍(土風)과 절의(節義)가 땅에 떨어지고 염치(廉恥)의 도(道)가 없어졌는데, 윤은로의 탐욕스럽고 비루한 것과 윤탕로의 조급히 승진하려는 것과 이창신의 아첨하는 것은 사풍을 더럽힘이 더할 수 없이 심합니다. 만약 개정하지 아니하면 무엇으로 염치를 장려하고 절의를 숭상하겠습니까?” 하니, 어서(御書)에 이르기를, “이미 극진하게 유시하였는데, 다시 무슨 말이 있겠는가?” 하였다.</p>	
<p>성종 280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7월 15일 (정미) 3번째기사</p>	<p>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이덕숭(李德崇) 등과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 이균(李均) 등이 와서 아뢰기를, “신 등이 삼가 어서(御書)를 보건대, ‘윤은로(尹殷老)가 수령(守令)에게 호초(胡椒)를 보낸 일로써 방납(防納)의 이름을 이루었고, 자기가 받아들인 누(累)는 없다.’고 하셨는데, 신 등은 먼저 이미 방납을 하고서 호초를 본래 서로 알지 못하는 수령(守令)에게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추안(推案)26114)을 상고해 보면 그 가물(價物)을 거두고 포화(布貨)를 계산해 받아들인 일은 정상(情狀)을 엄폐하기 어려우니, 이는 방납한 사실이 있는데 어찌하여 ‘방납한 이름을 이루었다.’고 하십니까? 자기가 받아들인 재물이 있는데, 어찌하여, ‘자기가 받아들인 누(累)가 없다’고 하십니까? 《대전》에, ‘공물(貢物)을 대납(代納)한 자는 장(杖) 80대, 도(徒) 2년에 영구히 서용(敍用)하지 아니하고, 청종(聽從)한 수령은 제서 유위율(制書有違律)26115)로 논한다.’고 하였으니, 그 때 성상께서 윤은로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국문(鞫問)을 마쳤으면 마땅히 이 죄를 받을 것인데 특별히 시추(時推)로써 처단하였으니 사사로움이 아니고 무엇입니까?”</p>	<p>○司諫院大司諫李德崇等、司憲府執義李均等來啓曰：“臣等伏觀御書：‘殷老以送胡椒於守令，成防納之名，而無有納己之累。’臣等意，先已防納，而贈胡椒於素未相知之守令，且考諸推案，則收其價物計納布貨之事，情狀難掩，此則有防納之實，何以云成防納之名？有入己之貨，何以云無納己之累？《大典》，代納貢物者杖八十、徒二年，永不敍用，聽從守令，以制書有違律論。其時上不貸殷老而畢鞫，則當坐此罪，特以時推斷之，非私而何？又御書：‘湯老之事，言之則違於法，恕之則合乎情，卿等徒守邦國之法，不度父子之情。’臣等意，祖宗緣情設法，非</p>

또, 어서(御書)에, ‘윤탕로의 일은 말을 하면 법에 어긋나고 용서하면 정(情)에 합하는데, 경 등은 한갓 나라의 법만 지키고 부자(父子)의 정은 생각하지 아니한다.’고 하셨는데, 신 등이 생각하건대, 조종(祖宗)께서 정(情)을 인연하여 법을 마련한 것은 도법(徒法)26116) 이 아니므로, 후사(後嗣)26117) 에 있어서는 마땅히 성헌(成憲)을 준수하기를 금석(金石)처럼 굳게 해야 할 것인데, 어찌 한때 신민(臣民)의 부자 사이의 사정으로써 조종(祖宗)의 만세의 법을 굽힐 수 있겠습니까? 법이 한 번 흔들리면 윤탕로와 같은 자가 반드시 잇달아 서로 바라보면서 전례(前例)를 끌어 청할 것인데, 곧 장차 사람마다 이를 들어주겠습니까? 정은 법에 붙은 것인데 법 밖에 어찌 용서할 만한 정이 있겠습니까? 윤호(尹壕)부자가 은총을 믿고 법을 무시한 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또 어서(御書)에 이르시기를, ‘이창신(李昌臣)의 강개(慷慨)함은 사림(士林)이 아는 바인데, 어찌 한 사람 조지주(趙之周)의 망령된 말로써 경약(經幄)의 옛 신하를 가볍게 내칠 수 있겠는가?’라고 하셨는데, 신 등이 생각하건대, 전번에 의정부(議政府) 대신이 의논해 아뢰기를, ‘이창신은 그 소유가 아니면서 취하였으니, 도둑질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고 하였고, 또 이번 동지(冬至)날에 사간원(司諫院)과 홍문관(弘文館)에 하문(下問)하시기를, ‘이 날은 군자(君子)26118) 와 소인(小人)26119) 이 소장(消長)하는 날인데, 이창신(李昌臣)은 군자인가? 소인인가?’라고 하시자, 모두 소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홍문관 관원(官員)에 있어서는 모두 그 동료(同僚)로서 심술이 온오(蘊奧)함을 더욱 자세히 아는 법인데 그 말이 이와 같으니, 사림은 단지 그 간사함만 알고 그 강개(慷慨)함은 알지 못합니다. 또 조지주(趙之周)는 홍문관의 논박한 일을 조금도 참여해 들은 자가 아닌데 만약 이창신이 조지주로 하여금 윤필상(尹弼商)에게 가서 사과하게 아니하였으면 ‘처음 의논할 때에 앞장서서 하지 아니하였고, 면대(面對)할 때에 해롭게 한 말이 없었다.’는 말을 조지주가 어디에서 들어 알았겠습니까? 윤필상은 바로 들은 바로써 아뢰었는데 어찌

徒法也。 在後嗣當遵守成憲，堅如金石，安可以一時臣民父子間私情，而撓祖宗萬世之法乎？法一撓，則如湯老者必項背相望，援例以請之矣。 卽將人人而聽之乎？情寓於法，法外安有可恕之情？尹壕父子恃恩蔑法之罪，不可恕也。 又御書云：‘昌臣之慷慨，士林之所知，安有以一之周妄語，輕黜經幄之舊臣乎？’ 臣等意，前者政府大臣議啓曰：‘昌臣非其有而取之，何異爲盜？’ 又於今冬至日，下問于司諫院、弘文館曰：‘此君子、小人消長之日也，李昌臣君子乎？ 小人乎？’ 皆以小人目之，至如弘文之員，則皆其僚友，心術蘊奧，尤所詳知，而其言若是，士林只知其爲邪，不知其爲慷慨也。 且趙之周於弘文館論駁，略不預聞者，若昌臣不使之周往謝弼商，則初議時不首唱，面對時無害辭之言，之周何從而知之？ 弼商直以所聞而啓之，安可以之周之語爲妄乎？ 以聖上之明，豈不知昌臣之邪，只愛惜區區之才耳，才不可廢，則他司他監，皆有其正，何必授糾摘宗姓之官乎？ 伏望不拘私恩，大開公道，竝速改正。” 傳曰：“殷老事，大概朝士被鞠，

조지주의 말을 망령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상의 밝으심으로써 어찌 이창신의 간사함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단지 그 자잘구레한 재주를 아끼는 것뿐입니다. 재주를 폐할 수 없다고 한다면 다른 사(司)나 다른 감(監)에도 모두 정(正)이 있는데, 어찌 반드시 종성(宗姓)26120) 을 규적(糾摘)하는 관직에 임명하여야 하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사사로운 은혜에 구애되지 마시고 공도(公道)를 크게 여시어, 함께 빨리 개정하소서.”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윤은로(尹殷老)의 일은 대개 조사(朝士)26121) 는 국문(鞫問)을 당하여 형신(刑訊)에 이르면 전례(前例)로 시추(時推)로써 조율(照律)하는데 어찌 모두 친하다고 하여 그러한 것이겠는가? 윤탕로(尹湯老)의 일은 사만(仕滿)26122) 이 되었으나 아버지가 늙은 까닭으로 수령(守令)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부자(父子)사이에 특별히 인정과 법을 보아서 임명한 것인데, 말이 이에 이르는 것은 마땅치 못하다. 이창신(李昌臣)의 일은 대신들이 모두 조지주(趙之周)는 부랑(浮浪)하여 말을 꾸며 만들만하다고 말하니, 그 말을 믿을 수 없다.”

하였다. 대간(臺諫)이 아뢰기를,

“사헌부(司憲府)에서 추국(推鞫)하던 처음에 윤은로의 간사노(幹事奴)26123) 의 공초(供招)에 방납(防納)한 포물(布物)을 계산해 들인 일을 일컬었는데, 윤은로가 면하지 못할 것을 알고 그 종을 숨기고 허물을 돌려 상언(上言)하자, 금부(禁府)로 옮겼습니다. 사대부(士大夫)의 방납한 죄는 영구히 서용(敍用)하지 아니하는 데 관계되므로 끝까지 추국하여 죄에 이르게 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성상께서는 옹호하려고 하시어 바로 시추(時推)로써 죄를 정하시고 예사(例事)라고 하시니, 신 등은 외간(外間)에서 이로써 성상의 천심(淺深)을 엿볼까 두렵습니다. 또 윤은로 부자의 계략은 자급이 높으면 당상(堂上)에 오를 수 있고 어미로써 대신 호소하게 하면 청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니, 한갓 사사로운 은혜를 믿을 수 있는 것만 알고 벼슬을 탐하는 것이 부끄러울

至刑訊則例以時推照律，豈皆以親而然乎？湯老事，仕滿而以親老，未得爲守令，故父子之間特觀情法而授之，不宜言之至此也。 昌臣事，大臣等皆曰：‘之周浮浪，可以造語，其言不可信也。’ 臺諫啓曰：“憲府推鞫之初，殷老幹事奴供稱防納布物計入事，而殷老知不免，容匿其奴，歸咎上言，移于禁府，士大夫防納，罪干永不敍用，不可不窮推抵罪，上欲庇之，徑以時推定罪，而曰：‘例事也’。 臣等恐，外間以此窺上之淺深也，且湯老父子之計，以爲資高，則可陞堂上，以母代訴，則可以得請，徒知恩私之爲可怙，不知貪爵之爲可醜，而只以后戚之故，貫貪黷之罪，長躁競之心，毀祖宗之法，此臣等所痛憤也。 昌臣唱議論駁，以鈞剛直之名，旋使之周慰解求免怨怒，阿諂大臣，無狀如此，請改正。” 竝不聽。

	<p>만한 것임을 알지 못하는데, 단지 후척(后戚)인 까닭으로써 탐독(貪黷)한 죄를 용서하고 조경(躁競)26124) 하는 마음을 키워서 조종(祖宗)의 법을 허물어뜨리니, 이것이 신 등의 통분(痛憤)해 하는 바입니다. 이창신(李昌臣)은 논박하기를 앞장서서 의논하여 강직(剛直)하다는 이름을 취하고 돌아서서는 조지주(趙之周)로 하여금 위로해 풀게 하여 원노(怨怒)를 면하기를 요구하며 대신에게 아첨하여 무상(無狀)함이 이와 같으니, 청컨대, 개정하소서.”</p> <p>하였으나, 모두 들어주지 아니하였다.</p>	
<p>성종 280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7월 18일 (경술) 2번째기사</p>	<p>장령(掌令) 황계옥(黃啓沃)이 차자(筭子)를 올리기를,</p> <p>“신이 요즈음 명을 받들고 순행하여 경기(京畿) 지면(地面)에 이르니 모든 이민(吏民)과 수령(守令)이 수군(水軍)의 노고(勞苦)하는 상황을 말하지 아니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 폐단이 커서 강구(講究)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들어서 삼가 아래와 같이 조목으로 진술합니다.</p> <p>1. 삼가 《대전(大典)》을 상고하건대, 무릇 군사는 대부분 3,4번으로 서로 교대하므로 공(公)에 있는 날이 적고 집에서 생업을 다스리는 날이 많은데, 오직 수군만은 2번으로 나누어 한 달마다 서로 교대하니, 한 해 가운데 공무에 있는 것이 반이 넘어 이미 고통스럽습니다. 그 가운데 먼 지방인 강원도(江原道)·충청도(忠淸道) 백성은 양식을 싸가지고 경기(京畿)의 여러 진(鎭)에 번상(番上)하니 왕래(往來)하는 길에서 머무는 날과 진에 머무는 날을 빼면 한 해 가운데 집에 있는 것이 더욱 적습니다. 소민(小民)의 생활은 비록 한 해를 마치도록 부지런히 활동하더라도 오히려 죽음을 구제하기에도 넉넉하지 못한데, 더구나 수군 번상(水軍番上)의 고통이 이와 같으니, 어느 겨를에 생업(生業)을 다스리겠습니까? 이제 크고 작은 영선(營繕)에 모두 수군을 사역(使役)하여 영독(領督)을 몹시 급하게 하니, 배겨낼 수 없어서 이에 사람을 고용(雇用)하여 대신 보내는데, 면포(綿布) 6,7필로써 한 달의 역(役)을 보상하는 데 이르며, 1년 동안 이와 같이 역을 보상하는 자가 하나만이 아니므로</p>	<p>○掌令黃啓沃上筭子曰：“臣近者承命巡到京畿地面，凡吏民與守令，無不以水軍勞苦之狀言之者，今舉其弊之大而不可不講究者，謹條陳如左。一，謹按《大典》，凡軍士率皆三四番相遞，在公之日少而在家治生之日爲多，惟水軍則分二番，每一朔相遞，一歲之中，在公者過半，已爲苦矣。其中遠地如江原、忠淸之民，贏糧番上于京畿諸鎭，除往來在途日及留鎭日，一歲之中，在家者益少。小民之生，雖終歲勤動，猶曰救死不贍，況水軍番上之苦如此，何暇治生乎？今者大小營繕，皆役水軍，領督甚急，不能支勝，於是雇人代替，至以綿布六七匹償一朔之役，一歲之中如此償役者不一，宜其窮困之極，鬻田賣屋而後已，流散躲避而後已。近來役處尤多，或使水軍引番役</p>

의당 그 궁곤함이 지극하여 땅을 팔거나 집을 판 뒤에야 그칠 것이며 떠나거나 흩어져서 몸을 도피한 뒤에야 그칠 것입니다. 근래에 사역하는 곳이 더욱 많아서 간혹 수군으로 하여금 인번(引番)하여 사역시키기도 합니다. 이른바 인번이란 것은 이를테면 이달에 당번(當番)한 자는 다음달에 하번(下番)하는 것인데, 불시(不時)에 전지(傳旨)를 내려서 경기 감사(京畿監司)가 군사를 징집하여 부역(赴役)하게 하면, 제진(諸鎭)의 당번 수군으로 여러 곳에 부역하는 수를 제하고, 유방(留防)하는 액수가 적어서 새로이 징집하는 수에 차지 못하면 반드시 하번 군사를 함께 불러 이에 응하게 하는 것을 인번(引番)이라고 하는데, 몇 달을 연하여 공무로 있게 되니, 그 노고 또한 심함이 있습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무릇 영선(營繕)에 인력(人力)을 사역하는 일은 그 완급(緩急)을 살피고, 그 대소(大小)를 참작하여 늦출 만한 것은 늦추고 줄일 만한 것은 줄여서 인번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여, 그 힘을 조금 펴게 하는 것이 가하다고 여깁니다.

1. 경기(京畿) 6포(浦)에서 진상(進上)하는 어물(魚物)은 한 달 안에 보름 전 후에 한 차례[度], 대일차(大日次) 한 차례, 소일차(少日次) 4,5차례이고, 또 연달아서 별도로 바치는 물건이 있으니 군읍(郡邑)과 다름이 없습니다. 6포의 군사는 모두 여러 곳에 응역(應役)하고, 실제로 유방(留防)하는 자는 겨우 10분의 1,2이므로, 해착(海錯)26127) 을 채취하는 데에 힘이 스스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해산물의 생산은 곳에 따라 다름이 있으니, 백하(白蝦)26128) 같은 것은 강화(江華)에서는 천하고 남양(南陽)에서는 귀하며, 생합(生蛤)은 인천(仁川)에는 나고 안산(安山)에는 없으며, 수어(秀魚)는 비록 있다고 하더라도 길이 멀어서 상하기가 쉬우므로, 반드시 경강(京江)에서 사는데 한 필의 베[布]로 한 자의 물고기와 바꾸며 봉진(封進)할 때에 경영고(京營庫)에 간섭을 받고, 사옹원(司饗院)에 저지당하는데, 반드시 인정(人情)을 쓴 뒤에야 바치게 됩니다. 때없이 바치는 주선(晝膳)과 별진(別進)의 물건에 이르러서는 간

之, 所謂引番者, 如今朔當番者, 來朔則下番, 然不時下旨, 京畿監司徵軍赴役, 則諸鎭當番水軍, 除諸處赴役之數, 留防額少, 未滿新徵之數, 則必并致下番之軍而應之, 謂之引番。 連朔在公, 其勞苦又有甚焉。 臣意以謂, 凡營繕力役之舉, 察其緩急, 酌其大小, 可緩者緩之, 可損者損之, 俾無引番之弊, 少紓其力可也。 一, 京畿六浦進上魚物, 一月之內望前後一度, 大日次一度, 小日次四五度, 又有連續別獻之物, 與郡邑無異, 六浦之軍, 皆諸處應役, 實留防者纔十分之一二, 採取海錯, 力自不裕, 且海物之產, 隨地而有異, 如白蝦賤於江華而南陽則貴之, 生蛤出於仁川而安山則無之, 秀魚雖有而路遠易敗, 必質於京江, 以一匹布易一尺魚, 封進之時, 關於京營庫, 阻於司饗院, 必致人情而後納之, 至於無時晝膳別進之物, 或朝令而夕督, 或今日令而明日進之, 期限大迫, 諸邑則有京邸, 足以貸價市易而納之, 諸鎭則深在海角, 多致稽違, 萬戶僉使, 譴責相繼, 於是質魚, 致賂贖罰, 三色之費, 一切取辦於水軍, 加以領船鎭撫之姦猾, 萬

혹 아침에 영(令)을 내려 저녁에 독촉하기도 하고, 혹은 오늘 영을 내려서 내일 진상하도록 하여 기한이 너무 촉박하기도 합니다.

제읍(諸邑)은 경저(京邸)26129)가 있어서 족히 대가(貸價)로써 시장에서 바꾸어 바칠 수 있지만, 제진(諸鎭)은 바다 모퉁이에 깊숙이 있어서 늦거나 어기는 일이 많으므로, 만호(萬戶)와 첨사(僉使)의 견책(譴責)이 잇따르니, 이에 어물을 바꾸고 뇌물을 바치며 벌(罰)을 속(贖)바치게 하는데, 세 가지 비용을 일체 수군에게 취하여 판출(辦出)하며, 거기에 덧붙여서 영선(領船)·진무(鎭撫)의 간활(奸猾)함과 만호·첨사(僉使)의 탐도(貪饕)26130)함이 또 따라서 그들을 괴롭게 합니다. 국가에서 그 폐단이 여기에 이를 줄을 어찌 헤아리겠습니까? 신은 생각하기를, 상공(上供)하는 물건은 혹시라도 빠뜨릴 수 없으나, 다만 물건의 생산이 있고 없음을 살피고, 도로의 멀고 가까움을 참작하여 제진(諸鎭)의 먼 지방에는 무시별선(無時別膳)의 진상(進上)을 면제하고, 비록 간혹 진상한다 하더라도 번거롭고 촉박한 데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며, 또 장선 내관(掌膳內官)으로 하여금 횡용(橫用)을 삼가게 하고, 각처의 사송(賜送)은 그 지나치고 많음을 절약하여 수군의 힘을 쉬게 하는 것이 가할 듯합니다.

1. 국가에 수군(水軍)을 설치한 것은 본래 해적(海賊)을 방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대대로 전하고 또 원패(圓牌)26131)를 주어 그 모형(貌形)과 연적(年籍)을 새겨서 대체(代替)하지 못하게 한 것은 그 업(業)에 전념하도록 하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 무릇 중외(中外)의 인력을 사역하는 일에 반드시 먼저 수군을 사역하는 것은 대개 승평(昇平)한 날이 오래 되어 방어에 매우 긴급하지 아니하고 일반 백성을 가볍게 동원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이에 수군을 모두 몰아다가 부역(赴役)하게 하니, 유방(留防)하는 수(數)는 겨우 10분의 1,2이므로, 제색 차비(諸色差備)에 겨우 채워서 갖추는데, 어느 겨울에 배를 조련(操鍊)하고 칼을

戶僉使之貪饕，又從而病之，國家豈料其弊之至於此哉？ 臣意以謂， 上供之需， 不可或缺， 但察其物產之有無， 酌其道里之遠近， 諸鎭遠地， 免進無時別膳， 雖或有進， 不至煩迫， 又令掌膳內官， 慎於橫用， 各處賜送， 節其濫夥， 以休水軍之力可也。 一， 國家水軍之設， 本爲備海賊也。 父子世傳， 且授圓牌， 刻其貌形年籍而無得代替者， 欲專其業也。 今也， 凡中外力役之舉， 必先役水軍者， 蓋謂昇平日久， 防禦不甚緊關， 齊民不可輕動， 於是盡驅水軍而赴之， 留防之數纔十分之一二， 諸邑差備， 僅足充具， 何暇學操舟鳴劍， 以爲不虞之用哉？ 國家待倭甚厚， 曲從其欲， 然待之翫也， 備必不周， 恩之過也， 怨從易生， 今日之視三浦倭人， 如養大癩， 一抵則潰。 近年當北方無事之日， 孰料一朝有造山之禍哉？ 臣意以爲， 水軍雖或可役， 而留防之數， 勿令數少， 使有餘力， 以習其業， 無失備禦之方可也。 一， 軍士給保之法， 載在《大典》， 自禁衛之兵， 下至雜色之軍， 其類幾於二十， 其數不知幾萬， 而人各有保， 皆以良民充之。 軍卒之中， 水軍

쓰는 것을 배워서 불의의 사변에 쓰도록 하겠습니까? 국가에서 왜(倭)를 대우하기를 매우 후하게 하여 그 하고자 하는 바에 곱혀 따릅니다. 그러나 대우하기를 친근하게 하면 방비하는 데 반드시 주밀하지 못하고, 은혜가 지나치면 원망이 따라서 생기기 쉽습니다. 오늘날의 삼포(三浦) 왜인을 보건대, 큰 종기[大癰]를 기르는 것과 같아서 한 번 부딪치면 터질 것입니다. 근년에 북쪽 지방에 일이 없던 때에는 누가 하루아침에 조산(造山)의 화(禍)가 있을 것을 예측하였겠습니까? 신은 생각하기를, 수군을 혹시 사역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유방(留防)하는 수는 수를 적게 하지 말고 남는 힘이 있도록 하여 그 업(業)을 익혀서 방어하는 방법을 잃음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할 듯합니다.

1. 군사에게 보(保)를 주는 법은 《대전》에 실려 있는데, 금위병(禁衛兵)으로부터 밑으로 잡색 군사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거의 20이며, 그 수(數)가 몇 만(萬)인지를 알지 못하는데, 사람마다 각각 보가 있어서 모두 양민(良民)으로 이를 채웁니다. 군졸 가운데 수군이 가장 괴로워서 더욱 보가 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에서 매양 군적(軍籍)을 닦을 때에 정보(丁保)를 채우지 못해 혹시 헛이름[空名]만 신고 그 실상이 없는 것이 있으니, 그 폐단은 군액(軍額)은 많고 양민이 적은 데 있습니다. 무릇 백성은 천인(賤人)을 싫어하고 양민이 되기를 좋아하는 것은 그 편안함 때문인데, 이제 양민과 천인이 수고롭고 편안함이 상반(相反)되어, 수군은 포(布) 6,7필로써 한 달의 역(役)을 보상하는데, 공천(公賤)의 공포(貢布) 한 필을 바치는 것과 사천(私賤)의 편히 있으면서 생업(生業)을 이루는 것에 비하면 또 어찌 서로 크게 다릅니까? 이에 양민의 집 아들이 천인으로 돌아가기를 좋아하고 혹은 중이 되어 군적(軍籍)에 빠지기도 하니, 정보(丁保)가 날마다 줄어들어 군졸이 더욱 고통스러움은 오로지 이 까닭입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백성은 진실로 나라의 근본이며, 양민이란 것은 또 나라의 조아(爪牙)가 되는데, 그 휴양(休養)·생식(生息)하는 도(道)를 강구하여 미리 염려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성상

最苦，尤不樂爲保，國家每修軍籍，丁保未充，或載空名而無其實者，其弊在於軍額廣而良民少也。凡民惡賤而樂爲良者，以其安佚也。今良民與賤口，勞佚相反，水軍以布六七匹償一朔之役，其視公賤之納貢一匹，私賤之安居遂業者，又何相遠也？於是，良家之子喜歸于賤，或爲僧脫籍，丁保日減，軍卒益苦，職此之由。臣意以爲，民固邦國之本，而良民者又爲邦國之爪牙也，其休養生息之道，不可不講究而預爲之慮也。伏願聖上，無以臣言爲迂，少垂察納。”傳曰：“其令該曹商議以啓。”

	<p>께서는 신의 말을 오활(迂闊)26132) 하다 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살펴서 받아들여 주소서.”</p> <p>하였는데, 전교하기를, “해조(該曹)로 하여금 상의(商議)하여 아뢰게 하라.”</p> <p>하였다.</p>	
<p>성종 280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7월 21일 (계축) 4번째기사</p>	<p>두 대비전(大妃殿)에서 대전(大殿)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인하여 술과 풍악[酒樂]을 종재(宗宰)26134) 1품 이상과 의정부(議政府), 육조 판서(六曹判書),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의빈(儀賓), 입직(入直)한 병조(兵曹)·도총부(都總府)의 당상(堂上)과 낭청(郎廳), 위(衛)의 부장(部長), 홍문관원(弘文館員), 승지(承旨), 주서(注書), 한림(翰林)에게 명정전(明政殿) 뜰에다 내려 주고, 전교하기를, “이달 30일은 바로 대전(大殿)의 탄일(誕日)이다. 오늘 대전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이에 경 등을 대접하니, 취하고 배부르도록 마시는 것이 가하다.”</p> <p>하였다.</p>	<p>○兩大妃殿爲大殿設宴，仍賜酒樂于宗宰一品以上及政府、六曹判書、漢城府判尹、儀賓、入直兵曹、都總府堂上、郎廳、衛部將、弘文館員、承旨、注書、翰林于明政殿庭。傳曰：“本月三十日，乃大殿誕日也。今日爲大殿設宴，乃饗卿等，醉飽可也。”</p>
<p>성종 280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7월 25일 (정사) 1번째기사</p>	<p>황계옥(黃啓沃)을 명소(命召)하여 전교하기를, “그대의 차자(筵子)에 이르기를, ‘아침에 영(令)을 내려서 저녁에 독촉하고 오늘 영을 내려서 내일 진상(進上)하게 하며, 대비전(大妃殿) 낮반찬[晝膳]이 부족하면 경기 감사(京畿監司)로 하여금 공진(供進)하게 합니다. 그러나 5,6일 전기(前期)하여 미리 먼저 효유(曉諭)할 것이며, 아침에 영을 내려 저녁에 독촉하거나 오늘 영을 내려 내일 진상하게 해서 안됩니다.’고 하였는데, 그대가 어디에서 듣고 이 말을 하는가? 또 이르기를, ‘장선 내관(掌膳內官)으로 하여금 횡용(橫用)을 삼가게 하라.’고 하였는데, 내가 혹시 대신(大臣)에게나 혹은 아배(兒輩)들의 처소에 내려보내는 것은 항상 있는 일이 아니다. 이른바, ‘횡용(橫用)’이란 것은 내관(內官)이 사사로이 쓰는 것을 이르는 것인가? 무릇 물선(物膳)은 내관이 사옹원(司饗院) 관원(官員)과 같이 출납(出納)하는데 어찌 횡용할 수 있는가?”</p>	<p>○丁巳/命召黃啓沃，傳曰：“爾筵子云：‘朝令而夕督，今日令而明日進之’，若大妃殿晝膳不足，則令京畿監司供進，然前期五六日預先曉諭，非朝令而夕督，今日令而明日進之也。爾聞諸何處而有此言乎？又云：‘令掌膳內官，慎於橫用’，予或於大臣，或於兒輩處賜送，非常事也。所云橫用者，謂內官私用之乎？凡物膳，內官同司饗院員出納，何得橫用乎？”啓沃啓曰：“朝令夕督之語，臣特言其速耳。仁川、安山等邑守令語臣曰：‘大日次小日次則</p>

하니, 황계옥이 아뢰기를,
 “아침에 영을 내려서 저녁에 독촉한다.’는 것은 특히 그 빠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천(仁川)·안산(安山) 등 고을의 수령이 신에게 말하기를, ‘대일차(大日次)·소일차(小日次)는 기한이 있지만 무시 별진상(無時別進上)은 혹시 미처 준비해 올리지 못하는 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신이 생각하기를, 장선 내관(掌膳內官)이 절약하지 아니하고서 함부로 허비하여 혹시 범람(汎濫)한 폐단이 있을 것을 두려워 한 때문에 이로써 아뢴 것입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황계옥이 다시 아뢰기를,
 “신이 보건대, 각포(各浦)는 현읍(縣邑)과 같이 경저(京邸)가 있고 이민(吏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합지중(烏合之衆)으로써 번(番)을 나누어 입역(立役)하는데, 무릇 진상하는 일은 예방 진무(禮訪鎭撫)가 항상 경영고(京營庫)에 서서 들고 보면서, 만약 불시 진상(不時進上)이 있으면 미처 준비해 올리지 못하여 자주 징속(徵贖)을 당하기 때문에 폐단을 받음이 여러 고을보다 많습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무시 진상’이 있으면 관찰사(觀察使)가 나누어 정할 때에 포소(浦所)는 마땅히 여러 고을보다 가볍게 하여 그 폐단을 없애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의 말이 지극히 옳다. 이 뜻을 관찰사에게 유시(諭示)하도록 하라.”
 하였다. 마침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이세좌(李世佐)가 예궐(詣闕)하였다가 전교를 듣고 곧 아뢰기를,
 “무시 별헌(無時別獻)은 수량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때에 임하여 적당한 대로 나누어 정하여 그 있는 바로써 적당함에 따라 봉진(封進)하는데, 어찌 감히 폐단을 끼치겠습니까? 황계옥이 대개 잘못 듣고 아뢴 것입니다.”

有期矣，無時別進上則或有未及備進之時。’ 且臣意以謂，掌膳內官不撙節橫費，恐或有汎濫之弊，故以此啓之耳。” 傳曰：“知道。” 啓沃更啓曰：“臣觀各浦非如縣邑有京邸有吏民也。以烏合之衆，分番立役，凡進上事，禮房鎭撫，常立京營庫聞見，而如有不時進上，則未及備進，數被徵贖，故受弊多於諸邑。 臣意以謂，如有無時進上，觀察使分定時，浦所則當輕於諸邑，以除其弊何如?” 傳曰：“爾言極是。 此意諭諸觀察使。” 適京畿觀察使李世佐詣闕，聞教即啓曰：“無時別獻，非多數也。 臨時隨宜分定，以其所有，從便封進，何敢貽弊乎? 啓沃蓋誤聞而啓之也。”

<p>성종 280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7월 30일 (임술) 2번째기사</p>	<p>하였다. 술과 풍악[酒樂]을 종친(宗親) 2품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충훈부(忠勳府)·의빈부(儀賓府)·돈녕부(敦寧府)·중추부(中樞府)의 정2품 이상과 육조(六曹)·한성부(漢城府)와 입직(入直)한 제장(諸將), 승정원(承政院)·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 등에게 내려 주었다.</p>	<p>○賜酒樂于宗親二品以上, 議政府、忠勳府、儀賓府、敦寧府、中樞府正二品以上, 六曹、漢城府、入直諸將、承政院、弘文館、藝文館、京畿觀察使、開城府留守等。</p>
<p>성종 281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8월 5일 (정묘) 1번째기사</p>	<p>전(前)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 고태필(高台弼)이 상서(上書)하기를, “신이 조모(祖母)를 따라 제주(濟州)에서 자라나서 본주(本州)의 일을 갖추어 경험하여 압니다. 삼가 양전(量田) 및 국둔 자마(國屯雌馬)를 쇄출(刷出)26254 하는 것의 적당하지 못한 일을 아래에 조목으로 진술하여 우러러 성감(聖鑑)26255 을 번거롭게 합니다. 1. 본주는 천사방성(天駟房星)26256 이 비치는 땅인지라 원(元)나라 세조(世祖)가 목장(牧場)을 만들기를 명하여 달단마(韃靼馬)를 들여보내어 놓았는데 지금에 와서 일컬기를, ‘용매(龍媒)26257 의 소생(所生)이라.’고 하니, 이 까닭으로써 어승마(御乘馬)26258 를 많이 생산하는데, 매년 별초(別抄)26259 하는 삼명일(三名日)26260 의 공헌마(貢獻馬) 외에 ‘국둔 자마는 비시(非時)26261 에 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저 암말은 2,3월에 잉태(孕胎)하여 8,9월 사이에 골격이 이미 이루어지게 되는데 말의 낙태(落胎)가 추절(秋節)에 더욱 심합니다. 목자(牧子)26262 들이 그 낙태를 두려워하는 것은 새끼와 어미 말이 함께 죽으면 따라서 징속(徵贖)26263 하는 때문으로, 물과 풀이 함께 풍족한 곳에 서서히 성질에 순응하여 몰아서 놓고 아들처럼 보호하더라도 오히려 낙태하게 됩니다. 이번 점마(點馬)26264 하러 들어가는 때가 바로 날씨가 춥고 바람이 싸늘한 9,10월 사이인데, 환장(環場)·사장(蛇場)의 협착한 곳에 모두 몰아넣어서 골라잡게 할 때에 암수가 샘[猜妬]하여 스스로 물고 차기를 좋아하므로 낙태하는 것이 반(半)이 넘거니와, 이로 인하여 국마(國馬)가 감손(減損)되니, 신은 감</p>	<p>○丁卯/前開城府留守高台弼上書曰： 臣隨祖母長於濟州， 本州之事耳聞目覩， 備嘗知之。 謹以量田及國屯雌馬刷出未便事， 條陳于後， 仰塵聖鑑。 一， 本州天駟房星照臨之地， 元世祖命作牧場， 以韃靼馬入放， 至于今號稱龍媒所生， 以故多產御乘之馬， 每年別抄三名， 日貢獻馬外， 國屯雌馬， 不令非時刷出也。 夫牝馬二、三月孕胎， 八、九月間骨骼已成， 馬之落胎， 秋節尤甚， 牧子等畏其落胎， 子母俱斃， 從而徵之。 故水草俱足之處， 徐徐順性驅放， 保之如子， 猶且落胎， 今次點馬入去之時， 正當天寒風冷， 九、十月之間， 環場蛇場狹窄之處， 盡令驅入揀捉時， 牝牡猜妬， 喜自踉蹌， 蹴踏落胎者過半矣。 因此國馬減損， 臣不敢不爲之慮也。 如不得已， 來甲寅年三、四月間， 待孕馬畢產後捉出， 則無落胎減損之弊矣。 《大典》內， 自願進上牝</p>

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부득이한 일이라고 하면, 오는 갑인년(甲寅年)26265) 3,4월 사이에 잉태한 말이 생산을 마치기를 기다린 뒤에 잡아내면 낙태로 감손되는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대전(大典)》가운데, 자원하여 암말을 진상(進上)하는 자는 상등(上等)은 대가(代價)의 쌀이 15석이고 중등(中等)은 10석이며 면포(綿布)를 서로 반씩 주게 하였으므로, 일체 서울에 머무르는 자제(子弟)와 상번(上番)하는 군사들이 쌀과 면포를 받아서 서울에 머무는 양식으로 삼게 하였으니, 은혜가 지극히 컸습니다. 지난 을사년(乙巳年)26266)에 흉년으로 인하여 임시로 없었는데 그대로 따라 이제까지 회복되지 아니하여, 본주(本州)의 시위(侍衛)하는 사람들이 계옥(桂玉)의 한탄(26267)을 견디기 어려워서, 이로 인해 자제(子弟)가 서울에 머무는 자가 매우 적습니다. 다행히 지금 여러 해 풍년이 들어서 국가의 저축이 남음이 있으니, 만약 암말을 자원하여 진상하는 법을 회복하면 사람들이 값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여 품질이 좋은 우량한 말[馬]을 아끼지 아니하고 화류 숙상(驪騮驪騮)26268)의 암말을 수년이 아니되는 사이에 다투어서 서로 진상할 것이거니와 곧 육지의 여러 섬에서 모아다 놓으면 자연히 좋은 말이 산출될 것인데, 국屯 빈마(國屯牝馬)를 쇄출(刷出)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파부마(把父馬)26269)는 민간에서 얻기 어려우니, 그 진상하는 암말의 수에 따라서 국屯 파부마(國屯把父馬)로 합당한 만한 숫말[牝馬]을 매년 봄철에 조금씩 쇄출하여 합해서 놓으면, 국가에서 실책이 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법을 준수하는 아름다움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1. 본주(本州)는 다른 육지와 비할 것이 못되어, 사면의 석산(石山)에 흙이 덮였는데, 산 중턱 이상은 지맥(地脈)이 두터우나 국용(國用)에 가장 긴요한 산유자목(山柚子木) 이년목(二年木)·비자목(檉子木)·안식향(安息香) 나무가 많이 생산되므로 일찍이 경차관(敬差官)을 보내어 표(標)를 세워서 벌채를 금하고 경작을 금하게 하였고, 산 중턱 이하의 주위에 열 군데 목장을 설치하였는데

馬者，上等價米十五碩，中等米十石，綿布相半給之，一應留京子弟上番軍士等，受米布以爲留京糧，恩至渥也。頃在乙巳，因歉權除，因循至于今未復，本州侍衛人等，難堪桂玉之歎，因此子弟留京者甚少。幸今累年豐稔，國家蓄積有餘，若復牝馬自願進上之法，人樂受價，品好良馬，不自愛惜，驪騮驪騮之牝，不數年間爭相進上矣。即於陸地諸島合放，則自然良馬產出，國屯牝馬不必刷出矣。惟把父馬，民間難得，隨其進上牝馬之數，國屯把父，可當牝馬，每年春節，稍稍刷出合放，則國家未爲失計，亦有遵守成憲之美矣。一，本州非他陸地之比，四面石山戴土，山腰以上，地脈肥厚，然而國用最繁，山柚子木、二年木、檉子木、安息香木多產焉。曾遣敬差官，立標禁伐禁耕。山腰以下周回設十牧場，一場周回一息半或二息，除此外率皆地脈浮薄，一耕之後須陳五、六、七年，休其地力，乃得耕食。且此土多巖石，多滲漏，二三日不雨，則旱乾先形，付種失時，僅得立苗，易致枯槁，開墾可耕之地，僅十分之一，五穀不

한 목장의 주위가 1식(息) 반(半), 혹은 2식이며, 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지맥이 얽어서 한 번 경작한 뒤에는 모름지기 5,6,7년을 묵혀서 그 지력(地力)을 쉬게 하여야 경작해 먹을 수 있습니다. 또 이 땅은 바위와 돌이 많고 삼루(滲漏)26270)가 많아서 2,3일 비가 오지 아니하면 가뭄이 먼저 드는 형편이라 씨를 붙이는 시기를 잃게 되고, 겨우 싹이 서게 되어도 말라 죽기가 쉽습니다. 개간하여 경작할 만한 땅은 겨우 10분의 1이며 오곡(五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논이 드물어서 세 고을 수령의 공궤(供饋)하는 쌀은 단지 물고기와 미역을 가지고 육지에서 바꾸어야 겨우 채울 수 있으며, 민간에서는 오직 말[馬]을 파는 것으로 생업을 삼고 보리·기장[稷]·산채(山菜)·해채(海菜)로 보충합니다.

또 바다에 폭풍이 갑자기 일어나서 잔 물결이 충격(衝激)하여 사방에 흩어져 떨어지기를 비가 오는 것과 같이 하니, 벼가 타고 곡식이 죽어서 해마다 실농(失農)하여 봄철에 곡식이 다할 때에 이르면 백성들이 굶주려서 얼굴빛이 질게 검어서 사람 모양과 같지 아니하고는 밀·보리가 처음 패자 성숙하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삭을 뽑아다가 죽을 만들어 마시나 얼굴빛은 여전하니, 이는 오로지 토지가 척박(瘠薄)한 소치로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 대개 9등의 공법(貢法)26271)으로 성적(成籍)26272) 하는데, 한 번 성적을 한 뒤에는 백성이 바치는 취영(取盈)26273)의 수(數)는 20년의 기한을 기다리지 아니하므로, 살을 깎고 뼈를 부수어 백성들이 살 수 없어서 사방으로 흩어져 가게 될 것이니, 세 고을이 이로 인해 비어 있게 되면 누구와 더불어 섬을 지키겠습니까? 이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제주 목사(濟州牧使)로 하여금 적당한지 아니한지를 물어서 계문(啓聞)하게 한 뒤에 양전(量田)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해사(該司)에 내리기를 명하고, 인하여 전교하기를,
“고태필(高台弼)이 지금 직임(職任)이 없는가? 어찌하여 오래 보지 못하겠는

成, 水田希罕, 三邑守令供饋之米, 只將魚藿, 陸地質遷, 方能僅足。民間則專以鬻馬爲生, 麥、稷、山海菜補之, 又有海中暴風忽作, 鹹浪衝激, 散落四方, 如雨焦禾殺稼, 年年失農, 至於春節乏穀之時, 黎民餓孍, 面色深黑, 不似人形, 兩麥始出, 不待成熟, 捋穗作粥啜之, 形色如舊, 專是土地瘠薄之致然也。今概以九等貢法成籍, 則一籍之後民納取盈之數, 不待二十年之限, 刻肌推髓, 民不聊生, 散而之四方, 三邑因而空虛, 誰與守島? 此非細故也。令濟州牧使, 訪問便否啓聞後, 量田未晚也。

命下該司, 仍傳曰: “台弼今無職任乎? 何久不見耶?”

	<p>가?” 하였다.</p>	
<p>성종 281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8월 11일 (계유) 1번째기사</p>	<p>일본국(日本國) 대내 대중 대부(大內大中大夫) 좌경조윤 겸 방장풍축 사주 태수(左京兆尹兼防長豐筑四州太守) 다다량 정홍(多多良政弘)이 원숙 서당(元叔西堂)을 보내어 와서 토의(土宜)를 바쳤다. 그 서계(書啓)에 이르기를, “이 먼저 경술년(26340) 겨울에 내려 주신 서계와 아울러 좋은 물품과 요청한 《비로법보전장(毗盧法寶全藏)》을 사승(使僧)이 싸서 싣고 돌아왔으니, 족히 복(僕)26341)의 영광이 됩니다. 이후로 바다가 멀리 막혀서 하례하는 정성을 펼 겨를이 없어서 머뭇거리다가 이에 이른 것이며 거만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신사(信使) 원숙 서당(元叔西堂)을 보내어 삼가 정성을 바치고 서로 우호(友好)하는 예를 닦게 합니다. 복의 적(嫡)26342) 신개(新介)가 군지(鈞旨)26343)를 받들고, 근자에 간웅(奸雄)이 왕기(王畿)26344)를 침범한 것을 정벌하기 위하여 군려(軍旅)를 거느리고 낙(洛)26345)에 올라가는데 양식을 운반하는 길이 멀어서 운조(運漕)26346)의 비용이 많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귀국의 구원을 엿드려 청합니다. 병자(兵資)26347)를 얻기 어려우니, 동전(銅錢) 5천 관(貫)과 목면(木綿) 5천 단(端)을 혜사(惠賜)하여 사졸의 기한(飢寒)을 구휼해 주시면, 중상(重賞)을 주는 밑에 용부(勇夫)가 있어서 반드시 백전 백승(百戰百勝)할 것입니다. 그러면 궁시(弓矢)26348)의 가정(家聲)26349)이 더욱 떨치고 동맹의 우호를 길이 닦을 것이니, 저희 나라의 승평(昇平)을 즐거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귀국의 성수(聖壽)26350)를 빌고 해마다 사직(社稷)26351)의 천추(千秋)를 기원하겠습니다. 인하여 전개(專价)26352)를 명해 보내어 조금이나마 원정(遠情)을 표하고 많지 아니한 토산품을 별도 건목(件目)26353)을 갖추어 감히 전달되기를 빌며 복(僕)의 정성을 펴게 하니, 굽어살피기를 바랍니다.”</p>	<p>○癸酉/日本國大內大中大夫左京兆尹兼防、長、豐、筑四州太守多多良政弘遣元叔西堂來獻土宜。其書契曰：“先是庚戌之冬，所賜書并珍貺及所需毗盧法寶全藏，使僧裊載而回還，足以爲僕之榮。爾來洋海復阻，不遑伸賀忱，因循臻茲，匪慢也。今遣信使元叔西堂，謹述誠款，以修同系好，僕嫡新介，承鈞旨，頃奸雄寇王畿，爲征伐，(卒) [率] 軍旅上洛，糧道遼遠，運漕役費夥矣。繇是伏請貴國之救，兵資難得，銅錢五千貫、木綿五千端佳貺，以贍士卒之飢寒，重賞下，有勇夫必百戰百勝，然弓矢家聲彌震，同譜好永修，不啻吾邦樂昇平，抑又貴國祝聖壽，歲次祈社稷千秋。因命專价，少旌遠情，不腆之產，別備件目，敢乞遞徹，宣布僕懇，頰望照亮。別幅鎧一領、黑皮諸緣具屏風一雙、水墨繪朱柄鏹一十挺、黑鞞大刀十(振) [挺]、朱柄長刀二挺、朱漆菓子盆一百枚、折敷盤大小四十片、摺疊金泥扇子一百把、白練絹五端、白綾紋絹五端。”</p>

	<p>하었는데, 그 별폭(別幅)에는 개(鎧) 1령(領), 흑피 제연구 병풍(黑皮諸緣具屏風) 1쌍(雙), 수묵회(水墨繪), 주병견(朱柄鑊) 10정(挺), 흑초 대도(黑鞘大刀) 10정(挺), 주병 장도(朱柄長刀) 2정(挺), 주칠 과자분(朱漆菓子盆) 1백 매(枚), 절부반(折敷盤) 대소(大小) 40편(片), 섭첩 금니 선자(攝疊金泥扇子) 1백 과(把), 백련초(白練綃) 5단(端), 백릉문초(白綾紋綃) 5단(端)이었다.</p>	
<p>성종 281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8월 14일 (병자) 2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 전교하기를, “졸(卒)한 의성군(誼城君) 이심(李宬)에게 특별히 부의(賻儀)로 미두(米豆) 아울러 80석(石), 종이 1백 50권(卷), 정포(正布) 40필(匹), 백저포(白苧布)·백면포(白綿布) 각각 6필, 석회(石灰) 40석(碩), 납촉(蠟燭) 8병(柄), 유둔(油苧) 2장(張)을 내려 주라.” 하였다.</p>	<p>○傳于戶曹曰：“卒誼城君宬，特賻米、豆并八十石、紙一百五十卷、正布四十匹、白苧布、白綿布各六匹、石灰四十碩、蠟燭八柄、油苧二張。”</p>
<p>성종 281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8월 18일 (경진) 2번째기사</p>	<p>선은(宣醞)26407 을 독서당(讀書堂)에 내려 주고, 인하여 수정배(水精杯)를 하사하였는데, 이조 좌랑(吏曹佐郎) 신용개(申用漑) 등이 전문(箋文)을 올려 은혜를 사례하였다.</p>	<p>○賜宣醞于讀書堂，仍賜水精杯。吏曹佐郎申用漑等上箋謝恩。</p>
<p>성종 281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8월 21일 (계미) 4번째기사</p>	<p>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허침(許琛) 등이 아뢰기를, “왜인(倭人)이 굴목(楡木)을 바치고 유구(琉球) 사자(使者)가 이목(異木)을 바쳤는데, 전하께서 이를 받으셔서 한 번 그 단서를 열어 주면 저들이 이르기를, ‘전하께서 먼 지방 물건을 귀중하게 여기신다.’고 하여 다투어 와서 바칠 것이니, 성덕(聖德)에 누(累)가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청컨대, 변장(邊將)에게 유시(諭示)하여 물리치게 하소서.” 하였다는데, 전교하기를, “저번에 유구(琉球)에서 종목(楡木)을 바쳤는데, 이는 약재(藥材)이므로 올려 보내게 하였으나, 굴목은 우리 나라에도 생산되니 받을 필요가 없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작은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면 마침내 큰 덕을 더럽힌다.’고 하였으니, 경 등의 말이 옳다.”</p>	<p>○司憲府大司憲許琛等啓曰：“倭人獻楡木，琉球使者亦獻異木，若殿下受之，一開其端，則彼謂殿下貴遠物，爭來獻之，無乃有累聖德乎？請諭邊將使却之。”傳曰：“前者琉球獻楡木，此是藥材，令上送，楡木產於我國，不必受也。《書》曰：‘不矜細行，終累大德。’卿等之言是也。”</p>

<p>성종 281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8월 22일 (갑신) 4번째기사</p>	<p>하였다. 병조(兵曹)에서 평안도 절도사(平安道節度使) 조극치(曹克治)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이산 군수(理山郡守) 이주정(李周庭)이 본군(本郡)의 성(城) 밑에 어살[魚箭]을 매고 군사 두 사람을 보내어 고기를 잡게 하였는데, 지난 6월 24일 밤중에 야인(野人)들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절도사(節度使) 조극치(曹克治)와 평사(評事) 권세형(權世衡)은 알지 못함이 아닐 것인데, 이에 7월 20일에 물에 빠져서 떠내려갔다고 하여 사실대로 아뢰지 아니하였고, 우후(虞候) 유호(兪顥)는 이산진(理山鎭)을 지키면서 이주정과 부동(符同)하여 숨기고 아뢰지 아니하였으니, 청컨대, 모두 잡아 와서 추국(推鞠)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대신들에게 의논하기를 명하니,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연변(沿邊)의 여러 진(鎭)과 여러 구자(口子) 26456) 에 방어를 삼가면 사람이 사로잡힐 이치가 만무한데, 이제 이주정(李周庭)이 사람을 위임하여 고기를 잡다가 두 명이 사로잡혔으니, 그 죄가 매우 크므로 징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포해 와서 추국(推鞠)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절도사(節度使)·우후(虞候)·평사(評事)는 이주정의 추국이 끝나기를 기다린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경차관(敬差官) 홍식(洪湜)이 벽단(碧團) 성자(城子)를 감독해 쌓는 일로 본도(本道)에 가 있으니, 홍식으로 하여금 추국하여 계문(啓聞)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만약 이산군(理山郡)에서 사실대로 보고하지 아니하였으면 절도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변경 사이에 소소(小小)한 노략(擄掠)은 예삿일입니다. 절도사는 여러 진(鎭)을 총관(總管)하는데, 어찌 하나하나 그 무사하기를 보장할 수 있</p>	<p>○兵曹據平安道節度使曹克治啓本啓：“理山郡守李周庭，於本郡城下結魚箭，差軍二人捕魚，去六月二十四日夜半，爲野人所擄。節度使曹克治，評事權世衡非不知也，而乃以七月二十日，漂沒於水，不以實聞。虞候兪顥戍理山鎭，與周庭符同，匿不以聞，請竝拿來推鞠。”命議于大臣。尹弼商議：“沿邊諸鎭諸口子，謹慎防禦，則萬無人物被擄之理。今李周庭委人捉魚，二名被擄，其罪甚大，不可不懲，拿來推鞠爲便。節度使、虞候、評事，待周庭畢推後更議何如？”李克培議：“敬差官洪湜監築碧團城子，往在本道，令湜推鞠啓聞何如？”盧思愼議：“若理山郡不以實報，則節度使無由而知，且邊境之間，小小擄掠，尋常事也。節度使摠諸鎭，豈可一一保其無事乎？如此小事而主將輒便拿來，則非徒將帥數易，而得人爲難，必懷苟且不安之心，而邊備尤爲踈虞。臣意，今宜諭以邊民被擄，法當治罪，而特赦不問，後有此事，不容再赦之意，惟兪顥、周庭拿來推鞠，庶得事宜。”尹壕、鄭文炯、柳輕議：</p>
--	---	---

	<p>겠습니까? 이같은 작은 일에 주장(主將)을 문득 나포해 오면 장수(將帥)가 자주 바뀔 뿐만 아니라 사람을 얻기가 어려워져 반드시 구차하고 불안한 마음을 품어서 변경의 방비가 더욱 허술하게 될 것입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지금 마땅히, ‘변경 백성이 사로잡혔으니 법으로는 마땅히 죄를 다스려야 하겠지만, 특별히 용서하고 묻지 아니한다. 이 뒤에 이런 일이 있으면서 다시 용서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으로 유시(諭示)할 것입니다. 오직 유호(兪顥)와 이주정(李周庭)만 나포해 와서 추국하면 거의 사의(事宜)에 합당할 것입니다.”</p> <p>하고, 윤호(尹壕)·정문형(鄭文炯)·유지(柳輕)는 의논하기를, “병조(兵曹)의 아뢰 바에 의하여 시행(施行)하소서.”</p> <p>하고, 허종(許琮)은 의논하기를, “이주정은 나포해 와서 추국하고, 조극치·유호·권세형 등은 우선 그 도(道)의 경차관(敬差官)으로 하여금 추국하게 하소서.”</p> <p>하고, 이철건(李鐵堅)과 윤효손(尹孝孫)은 의논하기를, “병조에서 아뢰 바가 가할 듯하나, 절도사·우후·평사·수령(守令)을 일시에 나포해 오면 도(道)에 주장(主將)이 없어서 방어가 허술해질 것이니, 진실로 염려스럽습니다. 관원을 보내어 추국하여 죄를 과(科)하게 하소서.”</p> <p>하였는데, 노사신의 의논에 따랐다.</p>	<p>“依兵曹所啓施行。” 許琮議：“周庭拿來推鞠，克治、兪顥、世衡等，姑令其道敬差官推鞠。” 李鐵堅、尹孝孫議：“兵曹所啓似可，然節度使、虞候、評事、守令一時拿來，則道無主將，防禦虛疎，誠爲可慮，遣官推鞠科罪。” 從思慎議。</p>
<p>성종 281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8월 22일 (갑신) 5번째기사</p>	<p>평안도 절도사(平安道節度使) 조극치(曹克治)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이제 경의 계달로 인하여 이산(理山) 군인(軍人)이 사로잡힌 일의 상황을 갖추 알았다. 삼위(三衛) 사람들이 비록 귀순하겠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항상 우리를 침해하려는 마음을 품었으니, 진실로 마땅히 제진(諸鎭)에 엄하게 신칙(申飭)하여 적이 문앞에 있는 것처럼 방비하여 저들로 하여금 침범할 틈을 탈 수 없게 하면, 저들이 아무리 흉하고 사납다 하더라도 어찌 그 꾀를 베풀겠는가? 군수(郡守) 이주정(李周庭)이 어살[魚箭]을 매기 위하여 군인으로 하여금 밤을 지내면서 변갈아 수직(守直)하게 하였으니, 이는 오히려 고기를 호랑</p>	<p>○諭平安道節度使曹克治曰：“今因卿啓，具悉理山軍人被擄事狀。三衛人雖曰効順，而常懷噬我之心，固宜嚴飭諸鎭如敵在戶，使彼無可乘之隙，則彼雖兇悍，顧安施其謀哉？郡守李周庭，爲結魚箭，使軍人更宿遞直，是猶以肉投虎也。罪在不赦，故周庭與留防將兪顥，已命禁府拿致推鞠，此雖若周庭</p>

	<p>이에게 던지는 것과 같다. 죄가 용서하지 못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주정과 유방장(留防將) 유호(兪顥)를 이미 의금부(義禁府)에 명하여 나치(拿致)해 추국하게 하였다. 이는 비록 이주정의 잘못인 것 같으나, 경도 또한 변경의 방비를 삼가지 아니하고 호령(號令)이 엄하지 못한 때문이다. 누가 그 허물을 말겠는가? 법으로는 마땅히 나치해 와서 추국할 것이다. 다만 생각하건대, 주장(主將)을 자주 바꾸면 방어가 허술해질 것이고, 또 이주정이 사실대로 보고하지 아니하였으면 경이 혹시 알지 못할 이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용서하고 묻지 아니한다. 뒤에 이와 같은 일이 있으면 어찌 두 번 용서할 수 있겠는가? 이제부터 더욱 근신(謹慎)을 더하여 후회함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p>	<p>之所失， 卿亦不謹邊備而號令不嚴故也。 誰任其咎， 法當拿來推鞫， 第念數換主將， 防禦尤爲踈虞。 且周庭不以實報， 則卿或有不知之理， 故特赦不問， 後有如此， 豈可再赦？ 自今益加謹慎， 俾無後悔。”</p>
<p>성종 281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8월 24일 (병술) 2번째기사</p>	<p>내관(內官) 안중경(安仲敬)을 보내어 성균관(成均館)에 술을 내려 주게 하였다.</p>	<p>○遣內官安仲敬賜酒于成均館。</p>
<p>성종 281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8월 27일 (기축) 1번째기사</p>	<p>장원서(掌苑署)에서 아뢰기를, “금년에 서울 안에는 배[梨]가 열매가 맺지 아니하였으니, 청컨대, 제도(諸道)로 하여금 봉진(封進)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배가 열지 아니하였으면 서울과 외방(外方)이 모두 그러할 것이다. 만약 빈객(賓客)을 접대하는 것과 같은 부득이 써야 할 곳은 그만이지만, 제전(諸殿)26462) 에는 봉진(封進)할 필요가 없다. 이제 없는 물건을 억지로 올리도록 책임지우면 반드시 백성에게 폐단을 끼칠 것이다.” 하고, 들어주지 아니하였다.</p>	<p>○己丑/掌苑署啓曰：“今年京中梨不結實， 請令諸道封。進” 傳曰：“梨不結實， 京外皆然， 若接賓客， 不得已用處則已矣， 諸殿不必進也。 今以所無之物， 強責進之， 則必貽弊於民矣。” 不聽。”</p>
<p>성종 281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8월 27일</p>	<p>명하여 호조 참의(戶曹參議) 신수근(愼守勤)을 불러서 묻기를, “들으니, 그대의 귀 뒤에 종기[瘡]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가?” 하니, 신수근이 아뢰기를,</p>	<p>○命召戶曹參議愼守勤問曰：“聞爾耳後有瘡， 然乎？” 守勤啓曰：“臣年十歲前， 瘡破成穴， 深僅二分， 其孔如針大，</p>

<p>(기축) 3번째기사</p>	<p>“신의 나이 열 살 전에 종기가 터져서 구멍이 났는데, 깊이가 겨우 2푼(分)이고 그 구멍이 바늘 크기와 같은데, 아프지도 가렵지도 아니합니다. 의원의 말을 듣고 뜸질[灸] 뒤에도 구멍은 예전과 같고, 지금도 때때로 흑시 흰 즙(汁)이 나오기도 하고 흑시 누른 즙이 나오기도 하며, 때로는 부어 올라서 평안치 못함이 있으나, 곧 태일고(太一膏)를 붙이면 흰 즙이 나오고 또 흑은 두부찌꺼기 같은 즙이 나오기도 하지만 평화(平和)한 것은 평상시와 같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내약방(內藥房)으로 하여금 진주(晉州)의 약을 신수근에게 주어서 이를 시험하게 하라.” 하였다. 이는 조지서(趙之瑞)가 아뢰어 약(藥)인데, 진주 목사(晉州牧使) 허황(許堇)이 찾아 물어서 계달하기를, “황국사(黃菊沙)·임하부인(林下婦人)·와거경(蒿苴莖), 위의 세 가지 물건을 고운 가루를 만들어 꿀에 타서 창구(瘡口)에 붙이면 효력이 있으며, 황국사는 목정밭[陳田]에 잘 난다고 합니다.” 하였다.</p>	<p>不痛不癢，聽醫言炎之後，穴復如舊，至今時時或出白汁，或出黃汁，有時墳起不平，卽傳太一膏，則出白汁，又或出汁如豆腐滓，則平和如常矣。” 傳曰：“令內藥房，將晉州藥與守勤試之。此趙之瑞所啓藥也。” 晉州牧使許篁訪問以啓曰：“黃菊沙、林下婦人、蒿苴莖，右三物細末和蜜，傳瘡口有效。黃菊沙好生陳田中云。”</p>
<p>성종 282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9월 5일 (병신) 8번째기사</p>	<p>월산 대군(月山大君) 부인(夫人) 박씨(朴氏)에게 쌀 1백 50석을 하사하였다.</p>	<p>○賜月山大君夫人朴氏米一百五十碩。</p>
<p>성종 282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9월 9일 (경자) 3번째기사</p>	<p>승지와 주서(注書), 홍문관(弘文館)의 관원, 입직(入直)한 병조(兵曹)와 도총부(都總府)의 위장(衛將) 등을 북소(北所)26516) 에 모이게 하여 사후(射侯)하도록 명하고, 술과 음악을 하사하였다. 또 털로 만든 자리 1사(事)와 대전(大箭) 2부(部)와 특별히 만든 활 8장(張)을 내어 내기하게 하였다. 그리고 전교하기를, “오늘은 대비의 탄일(誕日)이고 또 명절날이다. 경들은 즐거움을 다해 마시도록 하라.”</p>	<p>○命承旨、注書、弘文館員、入直兵曹、都總府衛將等，會北所射侯，賜酒樂，又出毛坐子一事、大箭二部、別造弓八張，使賭之。 傳曰：“今日大妃誕日，又節日也。卿等其極歡飲。” 大妃亦別賜酒肴。</p>

<p>성종 282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9월 11일 (임인) 1번째기사</p>	<p>하였다. 대비도 또한 술과 안주를 하사하였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한치형(韓致亨)이 와서 아뢰기를, “무릇 부경(赴京)하는 사신이 데리고 가는 군관은 법에 ‘다만 2인이나 만일 사변이 있으면 혹 더 줄 수 있는데 4인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8참(八站) 연로(沿路)에 새로 봉황참(鳳凰站) 등의 참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가히 염려할 만한 도적이 없습니다. 정조사(正朝使)와 부사(副使)에게 각각 4인을 주면 사람마다 쌀 5석(碩)씩을 주어야 합니다. 국가의 재물을 허비하게 되니, 청컨대, 수를 감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현재는 성식(聲息)이 없으니 정사와 부사에게 각각 2인을 주라.” 하였다.</p>	<p>○壬寅/兵曹判書韓致亨來啓曰：“凡赴京使臣帶行軍官，於法只二人，如有事變，則或有加給而不過四人。今八站沿路新設鳳凰等站，無賊可虞，而正朝使、副使各給四人，人賜米五碩，虛費國用，請減數。”傳曰：“時無聲息，使、副使各給二人。”</p>
<p>성종 282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9월 15일 (병오) 2번째기사</p>	<p>우의정(右議政) 허종(許琮)이 와서 아뢰기를, “평안도(平安道) 군사가 합번(合番)하여 부방(赴防)한 것이 이미 여러 해가 되었는데 양식을 싸가지고 가서 수자리를 사니 몹시 어렵고 괴로우며 또 본도(本道)에는 영호송군(迎護送軍)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이 들으니, 강변의 모든 고을에는 날다람쥐가 곡식을 먹어치워 실제 거의 다 없어졌다고 하는데, 군사는 해마다 하는 예를 따라서 합방(合邦)하므로 한갓 양식만 소비하고 이익이 없습니다. 청컨대, 그 실제로 능히 활을 잘 쏘는 자를 가려서 부방하게 하소서. 이제 이미 황형(黃衡)으로 하여금 방비를 돕게 하였는데, 만약 다시 2인을 더 보내어 방비를 돕게 한다면 저들이 조정에서 특별히 장수를 보내어 변방을 방비한다고 듣고 마땅히 스스로 의심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또 황형이 데리고 간 군관은 다만 4인뿐이니, 비록 본도에 별군(別軍) 50인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 자신이 데리고 간 사람만 하겠습니까? 청컨대, 군관을 더 주어서 보내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리와 같은 야심[狼子野心]을 가진 자는 비록 귀순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p>	<p>○右議政許琮來啓曰：“平安道軍士，合番赴坊已累年矣。贏糧往戍，甚爲艱苦，且本道有迎護送軍。臣聞江邊諸郡，鼯鼠食穀實幾盡，軍士從年例合防，徒費糧無益，請擇其有實能射者赴防。今已令黃衡助防，若更加遣二人助防，則彼人聞朝廷特遣將帥備邊，當自疑畏矣。且黃衡帶去軍官只四人，本道雖有別軍五十人，豈若吾率去之人乎？請加給軍官以送。”傳曰：“狼子野心，雖稱歸順，不可保其無虞也。平安道事變，予甚慮之，但不可寇未至而先自困也，故只遣黃衡，而軍官只四人。今又遣助防將，似爲有弊，然國家事無過於此，令兵曹議便否。”</p>

	<p>변이 없을 것이라고는 보장할 수가 없다. 평안도의 사변은 내가 심히 염려하는 것이나, 다만 도적이 이르지도 않았는데, 먼저 스스로 고달프게 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러므로 다만 황형만을 보내고, 군관도 다만 4인으로 하였던 것이다. 이제 또 조방장(助防將)을 보내면 폐단이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국가의 일로서 이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병조(兵曹)로 하여금 편부(便否)를 의논하게 하라.”</p> <p>하였다.</p>	
<p>성종 282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9월 16일 (정미) 2번째기사</p>	<p>병조 판서(兵曹判書) 한치형(韓致亨) 등이 와서 아뢰기를, “금년은 평안도 강변(江邊)이 실농(失農)하여 본도의 내지(內地) 및 황해도(黃海道)의 합방(合防)하는 군사들이 양식을 준비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신들이 폐단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변방의 경보(警報)가 그치지 않고 본도의 군사가 본래 적은데다 적로(賊路)의 파절처(把截處)가 심히 많아서 비록 합방하더라도 여유가 있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합방하는 데 폐단이 있다 하여 다만 본도의 군사만으로 방어하게 한다면, 방어를 돕는 장수와 군관을 더 보내어 여러 진(鎭)에 나누어 방수(防守)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도사(節度使) 및 우후(虞候)·군관(軍官)이 합쳐서 14인이고, 별군관(別軍官) 50인이고, 목책 권관(木柵權管) 및 군관 총 26인이며, 황형이 데리고 간 군관이 4인인데, 연변의 창고가 넉넉하지 못해서 지금 조방장(助防將) 및 군관을 더 보내어 군수품을 허비하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우선 금년에 한해서는 예전대로 합방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兵曹判書韓致亨等來啓曰：“今年平安道江邊失農，本道內地及黃海道合防軍士等，備糧甚難，臣等非不知有弊，然邊警不息，土兵本少，而賊路把截處甚多，雖合防不見有餘。若曰合防有弊，只以土兵防禦，則加遣助防將與軍官，分戍諸鎭，似若可也。然節度使及虞候軍官竝十四人，別軍官五十人，木柵權管及軍官摠二十六人。黃衡帶行軍官四人，沿邊倉廩不敷，今不可加遣，助防將及軍官，使之虛耗軍需也。姑限今年，依舊合防何如？”從之。</p>
<p>성종 282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9월 16일 (정미) 6번째기사</p>	<p>영안도 경차관(永安道敬差官) 김영정(金永貞)이 치계(馳啓)하기를, “신이 경원(慶源)에 있을 때에 남눌 올적합(南訥兀狄哈) 시동개(時童介)가 내알(來謁)하였는데, 신이 부사(府使) 김곤(金坤)과 더불어 잡아간 사람의 이름과 수를 묻고 쇄환(刷還)하도록 타이르니, 시동개가 대답하기를, ‘그 때 한 사람은 쏘아죽였고 한 사람은 사로잡아 갔는데, 만약 잡혀간 사람을 쇄</p>	<p>○永安道敬差官金永貞馳啓曰：“臣在慶源，南訥兀狄哈時童介來謁，臣與府使金坤問擄去人物名數，諭令刷還，時童介答曰：‘其時射殺一人，擄一人而去，如欲刷還被擄人，以牛三十頭、馬</p>

	<p>환하고자 한다면, 소 30두, 말 1필, 갑옷 1, 가마솔 10, 농기구 10부(部), 호미 10개, 도끼 10개, 낫쇠 밥그릇 5개, 낫쇠 병 5개를 나에게 주신다면 마땅히 이로써 사가지고 오겠습니다.’ 하므로, 신들이 반복해서 타일러도 끝내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이는 쇠환하지 않으려는 말이다. 김영정 등은 마땅히 ‘네가 만일 이와 같이 한다면, 나는 곧 조정에 알리고 군사를 일으켜 죄를 물을 것이니 너희들은 살아 남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엄한 언사로 책망함이 옳았을 것인데, 이제 비열한 말로 유인하여 앉아서 나라의 위신을 손상시켰으니, 이 어찌 옳은 일이겠는가?”</p> <p>하였다. 승지(承旨) 등이 아뢰기를,</p> <p>“김영정은 다만 붙잡혀 간 사람을 추문(推問)하기 위하여 간 것이지, 쇠환하도록 타이르는 것은 그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응대(應對)할 때에도 과연 마땅함을 잃었습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김영정의 제멋대로 일을 처리한 죄는 금부(禁府)로 하여금 잡아 와서 국문하게 하고, 김곤은 즉시 개차(改差)하라.”</p> <p>하였다.</p>	<p>一匹、甲一、釜十、田器十部、鋤十、斧十、鋤鉢五、鋤瓶五許我，則當以此買來。’ 臣等反復開諭，時童介終無變辭。” 傳曰：“是不欲刷還之語也。 永貞等當語以：‘汝若如此，則我即啓聞于朝，興師問罪，汝無遺類。’ 嚴辭責之可也。 今以卑辭誘之，坐損國威，是豈可乎？” 承旨等啓曰：“永貞只爲推問被擄人而去，開諭刷還非其任也。 應對之際，果失機宜。” 傳曰：“永貞擅便之罪，令禁府拿來鞫之。 金坤即改差。”</p>
<p>성종 282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9월 17일 (무신) 1번째기사</p>	<p>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p> <p>“금년은 경기(京畿)의 벼농사가 잘 되지 않았으니, 강무(講武)할 때 군사들이 양식을 싸가지고 가기가 반드시 어려울 것입니다. 하물며 성상의 옥체(玉體)의 입술의 부스럼 난 곳이 여전히 아직 낫지 않았으니, 추위를 무릅쓰고 다니는 것은 불가합니다. 청컨대, 강무를 정지하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p> <p>“열무(閱武)는 중요한 일이다. 금년에 농사가 잘 되지 않았다고 정지하고, 명</p>	<p>○戊申/議政府啓曰：“今年京畿禾穀不實，講武時軍士裹糧必難，況上體唇瘡處猶未痊愈，不可冒寒而行，請停講武。” 傳曰：“閱武重事，今年以不稔停之，明年又如是，則慮恐軍情怠弛，器械不鍊，況予唇瘡何至十月不平瘡乎？瘡愈則經筵、常參等事，當依舊爲</p>

	<p>년에도 또 이와 같다면, 군정(軍情)이 해이해지고 기계가 단련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더욱이 내 입술의 부스럼이 어찌 10월에 이르도록 낫지 않겠는가? 부스럼이 나오면 경연(經筵)과 상참(常參) 등의 일을 마땅히 전과 같이 할 것인데, 어찌 하루이틀의 열무를 수고롭게 여기겠는가?” 하였다.</p>	<p>之，豈以一、二日閱武爲勞乎?”</p>
<p>성종 282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9월 17일 (무신) 2번째기사</p>	<p>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양희지(楊熙止)와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유송조(柳崇祖)가 와서 아뢰기를, “전세(前世)를 두루 상고하였으나 의원(醫員)으로서 현관(顯官)이 된 자는 있지 않았습니다. 나라에서 의술을 중히 여기어 내의원(內醫院)과 전의감(典醫監)을 설치하고, 정(正) 이하로부터 참봉(參奉)에 이르기까지 문무의 관원에 준례(準例)해서 벼슬길이 이미 통하여져 있으니, 이로써 권면하고 장려해도 족한데, 어찌하여 반드시 다시 법을 설정해서 현관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전하께서는 무릇 하시고자 하는 바는 곧 조종(祖宗)을 본받으셨는데, 유독 이 일만은 조종을 본받지 않으시니 옳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조종조(祖宗祖)에서 의원으로 가선 대부(嘉善大夫)를 삼은 적이 많았는데, 내가 만일 이것을 본받으면 그대들이 말할 수 있겠는가? 옛말에 이르기를, ‘사람의 자식이 된 자는 의술을 알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나 또한 방서(方書)를 일찍이 섭렵(涉獵)하였던 것인데, 의술은 사람의 사생(死生)에 관계되니 어찌 중요하지 않은가? 또 비록 이 법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어찌 다 현관에 사용하겠는가?” 하였다. 양희지가 또 아뢰기를, “지금 김숙정(金淑貞)이 전주 판관(全州判官)으로 있을 때에 부민(府民)과 서로 혼인한 일 때문에 그 당시의 감사(監司) 및 대간(臺諫)을 국문하라고 명하셨는데, 이는 사전(赦前)에 있었으므로 비록 국문하여도 죄주지 못할 것이니,</p>	<p>○司憲府掌令楊熙止、司諫院正言柳崇祖來啓曰：“歷考前世，未有以醫員爲顯官者。國家重醫術，設內醫院、典醫監，自正以下至於參奉，例於文武官，仕路已通，以此勸勵足矣，何必更設法敘顯官乎？殿下凡所作為，動法祖宗，而獨此事不法祖宗可乎？” 傳曰：“祖宗朝多以醫爲嘉善，予若法此，則爾等其言之乎？古云：‘爲人子者，不可不知醫。’故予於方書亦嘗涉獵，醫術係人死生，豈不重歟？且雖設此法，豈盡用於顯官？” 熙止又啓曰：“今以金淑貞全州判官時，與府民相婚事，命鞫其時監司及臺諫，此在赦前，雖鞫不可罪之，請勿鞫。且京畿禾穀不實，議政府請停講武是矣，不可不從。” 傳曰：“農事雖曰不實，觀察使云非失農，且予之不好田獵，爾等所知，近年軍政解弛，故欲閱武耳。金淑貞事，果如所啓，其棄之。”</p>

	<p>청컨대, 국문하지 마소서. 또 경기의 벼농사가 잘 되지 않았으니, 의정부에서 강무(講武)의 정지를 청한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농사가 비록 잘 되지 않았다고는 하나 관찰사(觀察使)가 실농(失農)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고, 또 내가 사냥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그대들도 아는 바이다. 근년에 군정(軍政)이 해이해졌으므로 열무(閱武)하고자 한 것일 뿐이다. 그리고 김숙정의 일은 과연 아뢰 바와 같으니, 버려두라.”</p> <p>하였다.</p>	
<p>성종 282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9월 21일 (임자) 1번째기사</p>	<p>곡연(曲宴)26528) 을 양 대비전(兩大妃殿)에 올리었다. 의정부(議政府) 및 영돈녕(領敦寧) 이상, 육조(六曹)·한성부(漢城府)·승정원(承政院)·대간(臺諫)·입직제장(入直諸將)·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의 관원에게 명정전(明政殿) 뜰에서 음식을 대접하라고 명하였다.</p>	<p>○壬子/進曲宴于兩大妃殿。 命饋議政府及領敦寧以上、六曹、漢城府、承政院、臺諫、入直諸將、弘文館、藝文館于明政殿庭。</p>
<p>성종 282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9월 24일 (을묘) 2번째기사</p>	<p>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가서 의정부(議政府)와 육조(六曹)의 잔치를 받았다. 이어 대내전(大內殿)의 사송(使送) 원숙 서당(元叔西堂)을 접견하고, 상관인(上官人)과 부관인(副官人)에게 명하여 술잔을 올리게 하였으며, 이어 물품을 차등 있게 내렸다.</p>	<p>○上御仁政殿受議政府、六曹宴，仍接見大內殿使送元叔西堂，命上副官人進爵，仍賜物有差。</p>
<p>성종 282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9월 25일 (병진) 1번째기사</p>	<p>평안도 절도사(平安道節度使) 조극치(曹克治)에게 유시(諭示)하기를, “근자에 본도(本道)에 일이 많아 도원수(都元帥)가 몇 해 계속해서 왕래하여 관과 민이 피폐하고 군량도 충분치 못하므로, 황형(黃衡)의 부임(赴任)에 다만 군관 4인만 데리고 가게 하였더니, 강변을 출입할 때에 다만 쳐다보기에 위엄이 없을 뿐 아니라, 졸지에 큰 적을 만나면 혹 지탱하기가 어려울까 두려우니, 본도의 별군관(別軍官)으로 여러 진(鎭)의 구자(口子)26531) 를 분방(分防)하는 외에는 수를 헤아려서 더주는 것이 좋겠다. 또 군령(軍令)은 마땅히 한 곳에서 나와야 하므로 이미 황형으로 하여금 경의 절도(節度)를 듣게 하였다. 그러나 경과 황형은 각각 먼 곳에 있는 데다 사변이 생각지 않은 데서 생</p>	<p>○丙辰/諭平安道節度使曹克治曰：“比因本道多事，都元帥連年往來，官民疲弊，軍糧不敷，故黃衡之行，只率軍官四人，江邊出入之時，非徒瞻視無威，卒遇大敵，則恐或難支。 本道別軍官，諸鎭口子分防外，量數加給可也。 且軍令當出於一， 故已令黃衡聽卿節度，但卿與黃衡，各在遠處，而事出不虞，則轉轉相報之際，恐或失機，故令衡若</p>

	<p>긴다면 여기저기로 서로 보고하는 때에 혹 기회를 잃을까 두려우므로, 황형으로 하여금 만일 창졸간(倉卒間)의 일을 만나거든 임기 응변하고, 경에게 치보(馳報)하게 하였다.”</p> <p>하였다.</p>	<p>遇倉卒，臨機應變，馳報于卿。”</p>
<p>성종 282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9월 30일 (신유) 6번째기사</p>	<p>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 이칙(李則)과 절도사(節度使) 조극치(曹克治)에게 치서(馳書)하기를,</p> <p>“지금 의논을 드리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근래 본도의 방어하는 일이 긴요함으로 인하여 제색(諸色)의 군사가 해마다 합방(合防)하는데, 부방(赴防)하는 군사들이 거의가 다 포물(布物)을 가지고 가서 강변에 이르러 곡식이나 꼴과 바꾸니, 피차가 함께 곤란합니다. 겨울철에는 말이 사고가 많고 금년은 농사도 충실치 못하니 더욱 염려스럽습니다. 금후로는 합방(合防)하지 말고 본도(本道) 군사로서 무재(武才)가 있는 자를 간택(揀擇)하여 나누어서 방어하게 하고, 절도사·우후(虞候)·조방장(助防將) 및 도내(道內)의 무재가 있고 직질(職秩)이 높은 수령(守令)이 요해지(要害地)를 나누어 방어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니, 그 편부(便否)를 확실하게 헤아려 아뢰고, 강변의 농사가 충실한지 충실하지 못한지도 또한 아울러서 치계(馳啓)하라.”</p> <p>하였다.</p>	<p>○馳書平安道觀察使李則、節度使曹克治曰：“今有獻議者云：‘近因本道防禦事繁，諸色軍士，年年合防，赴防軍士，類皆齎布物到江邊貿穀與草，彼此俱困。’冬節則馬多故失，今年農事不實，尤爲可慮。今後除合防本道軍士之有武才者，揀擇分方，節度使、虞候、助防將及道內有武才秩高守令，分處要害之地，防禦爲便。其便否商確以啓。江邊農事實不實，亦竝馳啓。”</p>
<p>성종 283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10월 1일 (임술) 4번째기사</p>	<p>영흥(永興) 사람 임계춘(林繼春)이 제술(製述)에 수석을 차지하였으므로 부름을 받고 왔는데, 명하여 술과 음식을 내려 주게 하였다. 또 승정원(承政院)으로 하여금 다시 시험하게 하자, 승정원에게 《진교역부(陳橋驛賦)》로써 제목(題目)을 삼아 지어 올리게 하였는데, 전교하기를,</p> <p>“임계춘의 부(賦)한 바가 비록 잘 지은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궁벽한 땅에서 성장하여 이만하면 또한 족하다. 호초(胡椒) 두 말을 내려 주라”</p> <p>하였다.</p>	<p>○永興人林繼春，以製述居魁承召來。命賜酒食，令承政院更試之。政院以陳橋驛賦爲題使製進。傳曰：“繼春所賦，雖非善述，生長僻土，此亦足矣。其賜胡椒二斗。”</p>
<p>성종 283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헌(大司憲) 허침(許琛)이 아뢰기를,</p>	<p>○御經筵。講訖，大司憲許琛啓曰：“曹克治匿不以聞之狀，明甚。請拿來</p>

<p>(弘治) 6년 10월 5일 (병인) 2번째기사</p>	<p>“조극치(曹克治)는 숨기고 아뢰지 아니한 정상이 매우 명백합니다. 청컨대 나치해 와서 국문하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주정(李周庭)이 사실대로 보고하지 아니하였으면 조극치가 어찌 이를 알 수 있겠는가? 만약 알지 못하는 일로써 갑자기 나치해 와서 다른 장수로 대신하게 하면 사체(事體)에 어떠하겠는가? 변장(邊將)은 자주 바꿀 수 없다. 대신(大臣)의 의논도 이와 같다.”</p> <p>하였다. 인하여 좌우에게 물으니, 영사(領事) 이극배(李克培)가 대답하기를, “만약 사로잡힌 것을 알면서 사실을 아뢰지 아니하였으면 진실로 나치해 오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미 글을 내려 이를 물었으니, 회보를 기다려서 조치하여도 늦지 아니합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주정이 익사(溺死)한 것으로 치보(馳報)하였으면 어찌 그 속인 것을 헤아리겠는가?”</p> <p>하였다. 허침이 또 아뢰기를, “우후(虞候) 유호(兪顥)의 조사(招辭)를 보건대, 숨기고 아뢰지 아니한 죄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유호에게 하문(下問)하시면 그 정상(情狀)을 숨기기 어려울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극치가 참으로 알았는지의 여부는 마땅히 유호에게 물을 것이며, 회보를 기다려서 이를 조치하더라도 늦지 아니하다.”</p> <p>하였다. 대사간(大司諫) 허계(許誠)가 아뢰기를, “조극치는 비록 사어(射御)26548) 의 재주는 있다고 하더라도 본디 변장(邊將)에는 합당하지 못합니다. 만약 호령(號令)을 엄하게 하여 아랫사람을 제어</p>	<p>鞫之。” 上曰：“周庭不以實報，則克治安得知之？若以所不知之事，遽爾拿來，代以他將，則於事體何如？邊將不可數易。大臣之議亦如是也。” 仍問左右。領事李克培對曰：“若知被擄而不以實聞，則固當拿來，然已下書問之，待回報處之亦未晚也。” 上曰：“周庭以溺死馳報，豈料其詐也？” 琛又啓曰：“觀虞候兪顥招辭，則匿不以聞之罪可知。更下問兪顥則其情狀難掩。” 上曰：“克治實知與否，當問兪顥，待回報處之未晚也。” 大司諫許誠啓曰：“克治雖有射御之技，本不合邊將。若嚴明號令以御下，則豈有被欺於人，至此乎？何惜一克治不以邊氓爲念也？” 不聽。琛又啓曰：“委身徇國，不避夷險，大臣之義也。朴樾等在平時甘受重祿從仕，及受命赴京，憚於遠行，托疾辭避，豈大臣之義乎？上之優待大臣，雖爲美，法司之言，在所當聽。懲此輩以警其餘，幸甚。” 上顧問左右。克培對曰：“平時則猶可力疾從仕，至於萬里之行，少有身病則不可強也。” 上曰：“豈有無病而窺避之理乎？力疾而行，中道遲滯，不及其期，</p>
--------------------------------------	--	--

	<p>하면 어찌 사람에게 속임을 당함이 이에 이르겠습니까? 어찌 한 사람의 조극치를 아끼고 변경의 백성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p> <p>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허침이 또 아뢰기를,</p> <p>“몸을 버려 나라를 위하여 죽으며 순탄함과 위험을 피하지 아니하는 것이 대신의 도리인데, 박건(朴楨) 등은 평상시에 있어서는 중한 녹(祿)을 달게 받으면서 종사(從仕)하고, 사명(使命)을 받아 북경에 가는 데 미처서는 멀리 떠나는 것을 꺼려서 병을 칭탁하고 사퇴하니, 어찌 대신의 도리이겠습니까? 성상께서 대신을 우대하시는 것은 비록 아름다운 일이라 하더라도 법사(法司)26549)의 말을 마땅히 들어서 이 무리를 징계하여 그 나머지 사람을 깨우치게 하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p> <p>하자,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었다. 이극배(李克培)가 대답하기를,</p> <p>“평상시에 오히려 병을 참고 종사(從仕)할 수 있지만, 만리(萬里)의 행차에 이르러서는 조그마한 신병이 있으면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어찌 병이 없으면서 피하기를 피할 이치가 있겠는가? 병을 참고 가다가 도중에서 지체되어 기한에 미치지 못하면 매우 옳지 못하다.”</p> <p>하였다. 허침이 다시 아뢰기를,</p> <p>“듣건대 박건(朴楨)과 권정(權挺)은 조금 병이 있으나 홍귀달(洪貴達)·박송질(朴崇質) 등은 본래 병이 있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반드시 병이 있는 것인데 재상으로 나이가 많지 아니한 자를 어찌 쉽게 얻겠습니까? 만약 목은 병이 없으면 병으로써 사양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마땅히 참작하여 조치하겠다.”</p> <p>하였다. 허침이 또 아뢰기를,</p> <p>“호조(戶曹)의 관리가 범한 전지(傳旨) 외의 일을, 신 등이 초(抄)하여 기록해</p>	<p>則甚不可也。” 琛更啓曰：“聞朴楨、權挺稍有疾，洪貴達、朴崇質等未聞素有病也。年高則必有病，宰相而年不高者，豈易得哉？若無宿疾則不宜辭以疾也。” 上曰：“當斟酌處之。” 琛又啓曰：“戶曹官吏所犯傳旨外之事，臣等抄書以啓，不可不窮鞫抵罪。瓦價事，鄭崇祖丘史粉同之妻狀告于崇祖曰：‘吾夫因瓦事被囚，而瓦已燔造，請區處速放。’ 崇祖遂移文于忠清道曰：‘瓦二千丈從布直質穀補軍資。’ 又移文于慶尙道曰：‘放粉同。’ 其時豈不知粉同之爲丘史也？ 其後慶尙道觀察使李克墩據安東牒報，瓦價令忠清道還徵事，二月移文戶曹，而至十二月回報曰：‘已令質穀補軍資，不可更徵。’ 其用情明矣。 奴婢身貢事，戶曹以布升過細，升麤見樣受教，而及其行移則八、九升細布次次加升，諫院所啓與商賈符同之言似是矣。 李克墩以布升過細，民甚苦之，啓聞而命議時，崇祖反以克墩爲非，至於詣闕發明云：‘吾非行移而(克壕) [克墩] 自爲之。’ 其欺罔之罪大矣。 毛物事，濟用監市準僅十餘張，而其報和賣則幾至千餘張，戶</p>
--	--	---

아뢰었으니, 끝까지 국문하여 죄를 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와가(瓦價)의 일은 정승조(鄭崇祖)의 구사(丘史)26550) 분동(粉同)의 아내가 정승조에게 장고(狀告)하기를, ‘내 남편이 기와의 일로써 수감을 당하였는데 기와를 이미 구워서 만들었으니, 청컨대 구쳐하여 빨리 석방하도록 하소서.’라고 하자, 정승조가 드디어 충청도(忠淸道)에 이문(移文)26551) 하기를 ‘기와 2천 장을 베[布] 값에 따라 곡식으로 바꾸어서 군자(軍資)에 보충하라.’고 하고, 또 경상도(慶尙道)에 이문하기를, ‘분동(粉同)을 석방하라.’고 하였으니 그때에 어찌 분동이 구사(丘史)가 된 것을 알지 못하였겠습니까? 그 뒤에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이극돈(李克墩)이 안동(安東)의 첩보(牒報)에 의거하여 충청도로 하여금 도로 징수(徵收)하는 일을 2월에 호조(戶曹)에 이문(移文)하였는데, 12월에 이르러 회보(回報)하기를, ‘이미 곡식과 바꾸어서 군자(軍資)에 보충하였으므로 다시 징수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이는 사정을 쓴 것이 분명합니다. 노비 신공(奴婢身貢)의 일은 호조에서 포(布)의 승(升)26552) 이 지나치게 가늘다는 것으로 승이 굵은 견양(見樣)을 수교(受敎)하였는데, 그 행문(行文移牒)하는 데 미쳐서는 8, 9승(升)의 가는 베[細布]로 하여 차차 승(升)을 더하였으니, 사간원(司諫院)에서 아뢴, ‘상고(商賈)와 부동(符同)하였다.’는 말이 옳은 듯합니다. 이극돈은 포(布)의 승(升)이 지나치게 가늘어서 백성들이 몹시 괴로와하는 것을 계문(啓聞)하였는데, 의논하도록 명하였을 때에는 정승조가 도리어 이극돈을 잘못이라고 하였고, 예궐(詣闕)하여 변명하는데 이르러서는 이르기를, ‘내가 행문 이첩한 것이 아니고 이극돈이 스스로 하였다.’고 하였으니, 그 기망한 죄가 큼니다.

모물(毛物)의 일은 재용감(濟用監)의 시준(市准)26553) 은 겨우 10여 장(張)인데, 그 보고한 화매(和賣)는 거의 1천여 장에 이르렀습니다. 호조에서 마땅히 아뢰어야 하는데도 아뢰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재용감 관리와 상인들이 부동하여 모리(謀利)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가(船價)의 일은 호조에서 창고에

曹當啓而不啓，豈非與濟用監官吏及商賈人等符同謀利也？船價事，戶曹以不納倉之穀給之，則剩餘八十餘石有利於國矣。然金海、比安田稅，已納于倉，而亦給之，是豈不有情乎？請鞫之。”

上曰：“傳旨外事，已下禁府鞫之。豈棄憲府所啓之事乎？”琛又啓曰：“臣等以尹殷老、李昌臣事，連旬伏閣，竟未蒙允。近日納諫，漸不如初。”上曰：“凡人被罪後，或有改過之理，若迫論終不得用，則下無全人矣。”琛曰：“臣等非欲迫論而罪，只欲遞其職而已。”上曰：“遞職是亦罪之也。”琛曰：“若聽臺諫之言，則士風可從而正矣。”上曰：“以臺諫之言而一一聽之，則士風雖正，冤抑不得伸矣。”

넣지 아니한 곡식으로써 주면 남는 것이 80여 석이 되므로 나라에 유리합니다. 그러나 김해(金海)·비안(比安)의 전세(田稅)를 이미 창고에 넣었는데도 주었으니, 이는 어찌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청컨대 이를 국문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지(傳旨) 외의 일은 이미 의금부(義禁府)에 내려서 국문하게 하였으니, 어찌 사헌부(司憲府)의 계달한 일을 폐기하겠는가?”

하였다. 허침이 또 아뢰기를,
 “신 등이 윤은로(尹殷老)·이창신(李昌臣)의 일로써 열흘을 연달아 복합(伏閣)26554 하였으나, 마침내 윤희를 얻지 못하였으니, 요즈음 간하는 말을 받아들여시는 것이 점점 처음과 같지 아니하십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저 사람이 죄를 입은 뒤에 혹시 허물을 고치는 이치가 있는데, 만약 추론(追論)하여 끝내 서용(敍用)할 수 없다면 아래로 온전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허침이 아뢰기를,
 “신 등은 추론하여 처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직무를 바꾸게 하려는 것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직무를 바꾸는 것도 처벌하는 것이다.”

하였다. 허침이 아뢰기를,
 “만약 대간의 말을 들어주시면, 사풍(士風)이 따라서 바로잡힐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대간의 말을 낱알이 들어주면, 비록 사풍(士風)은 바로잡힌다 하더라도 억울함은 펴 수 없다.”

하였다.

<p>성종 283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10월 5일 (병인) 4번째기사</p>	<p>주강(晝講)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시강관(侍講官) 성세명(成世明)이 아뢰기를, “신이 선위사(宣慰使)로서 경상도 염포(鹽浦)에 가서 객관(客館)에서 잔치를 베풀고자 하였으나, 객관이 협소하여, 창벽(窓壁)이 부서지고 떨어져서 객인(客人)을 접대할 수 없어서 부득이 성안[城中]에서 베풀었는데, 그 연회 때 쓴 상(床)과 기명(器皿)도 깨어져서 누추함이 심하니, 국가에서 중하게 대접하는 뜻이 너무 없습니다. 또 왜사(倭使)가 혹은 성밖의 불사(佛舍)26556) 에 머물기도 하고, 혹은 항거 왜사(恒居倭舍)26557) 에서 머물기도 하는데, 신이 본 염포가 이와 같으니, 다른 포(浦)도 반드시 이와 같을 것입니다. 청컨대 관찰사(觀察使)에게 글을 내려서 객관을 수리하게 하고 그 연회 때 쓰는 기명도 파손되는 대로 바로 보충하게 하소서.” 하자, 동부승지(同副承旨) 권경우(權景佑)가 아뢰기를, “이는 모두 관찰사가 살피지 아니한 소치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를 관찰사에게 유시(諭示)하라.” 하였다.</p>	<p>○御晝講。 訖， 侍講官成世明啓曰： “臣以宣慰使往慶尙道鹽浦， 欲設宴於客館， 客館狹隘， 窓壁頽破， 不宜接客， 不獲已設於城中。 其宴時所用床及器皿亦破落陋甚， 殊無國家重待之意。 且倭使或止於城外佛舍， 或止於恒居倭舍， 臣所觀鹽浦如此， 他浦亦必類是。 請下書于觀察使， 修理客館， 其宴時所用器皿， 亦令隨毀隨補。” 同副承旨權景祐啓曰： “此皆觀察使不察之所致也。” 上曰： “其諭觀察使。”</p>
<p>성종 283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10월 6일 (정묘) 3번째기사</p>	<p>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시독관(侍讀官) 황계옥(黃啓沃)이 아뢰기를, “수군(水軍)의 고통스러움은 사람마다 모두 아는데, 이제 영선(營繕)의 일로써 이를 몰아다가 부역(赴役)하게 하므로, 포(浦)에 머무는 자가 적습니다. 화량(花梁) 같은 곳은 선군(船軍)의 당령자(當領者)가 1천 2백 명인데, 포에 머무는 자는 겨우 2, 3백 명이고, 다른 포는 본래 2, 3백 명에 차지 아니하여 포에 머무는 자는 겨우 3, 40명입니다. 승평(昇平)할 때에는 족히 근심할 것이 없지만, 그러나 방어하는 지역은 이처럼 허술하게 할 수 없습니다. 또 진상(進上)하는 물선(物膳)은 경기(京畿)의 여러 고을과 여러 포에 일체로 나누어 정하였는데, 기한이 몹시 가까와서 수어(秀魚) 등 물건은 미처 갑자기 준비할</p>	<p>○御晝講。 侍講官黃啓沃啓曰： “水軍之苦， 人人皆知， 今以營繕， 驅之赴役， 留浦者少。 如花梁船軍當領者一千二百名， 而留浦者纔二、三百。 他浦則本不滿二、三百， 而留浦者僅三、四十人。 在昇平時， 顧無足虞， 然防禦之地， 不可如此虛疎也。 且進上物膳， 京畿諸邑、諸浦， 一樣分定， 期限甚迫， 秀魚等物， 未及卒辦， 齎綿布貿京</p>

	<p>수 없으므로, 면포(綿布)를 가지고 서울 시장에 가서 바꿉니다. 그런데 대일차(大日次)와 같은 것은 수어가 30여 미(尾)인데, 한 마리 값이 면포 두 필에 해당하나, 수군으로 하여금 각각 면포를 내어서 그 값을 갖추게 하니, 그 폐단이 작지 아니합니다. 진상(進上)은 반드시 수어로 할 것이 아니고, 잡어(雜魚)로 채워서 쓰더라도 가합니다. 사옹원(司饗院)과 예조(禮曹)로 하여금 경기감사(京畿監司)와 같이 의논하여 참작해서 정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p> <p>하였다.</p>	<p>市。如大日次則秀魚三十餘尾，一尾直綿布二匹，令水軍各出綿布，以備其直，其弊不貲。進上不必秀魚，以雜魚充用亦可。令司饗院與禮曹、京畿監司同議酌定何如？”上曰：“可。”</p>
<p>성종 283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10월 6일 (정묘) 6번째기사</p>	<p>영안도 관찰사(永安道觀察使) 성준(成俊)과 북도 병마 절도사(北道兵馬節度使) 원중거(元仲矩) 등이 야춘(耶春)에 축성(築城)하여 진(鎭)을 옮기는 것이 적당하지 못한 일을 치계(馳啓)하고, 아울러 사목(事目)을 올리기를,</p> <p>“1. 병조(兵曹)에서, ‘경흥(慶興)에 1백 호, 무이(撫夷)·조산(造山) 두 보(堡)에 각각 50호를 뽑아 들여보내는 일은 이미 수교(受教)하였습니다. 무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흥과 조산은 적(賊)의 소굴과 멀리 떨어져서 방어(防禦)가 가장 험(歎)하고, 성내(城內)에 사는 백성이 적지 아니하니, 조산은 뽑아 들여보내지 말고, 경흥은 50호를 감하여 들여보내게 하소서.</p> <p>1. 아오지보(阿吾地堡) 안에 사는 백성은 비록 본디 경원(慶源)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경흥 지역으로 보를 옮겼으니 마땅히 경흥에서 수역(戍役)하게 하소서.</p> <p>1. 경흥 이하 장성(長城)의 구참(溝塹)을 마치지 못한 곳은 내년 봄을 기다려서 지난 봄에 빠뜨려진 군정을 사역(使役)시켜 파기를 마치도록 하소서.</p> <p>1. 보이덕보(甫伊德堡)와 진과보(榛坡堡)를 합보(合堡)하는 것과 영건보(永建堡)를 개축(改築)하는 일은 갑인년(26575) 까지 역사를 마치기를 기약하고, 보</p>	<p>○永安道觀察使成俊、北道兵馬節度使元仲矩等馳啓，耶春築城移鎭不便事，并上事目：“一，兵曹以慶興一百戶，撫夷、造山兩堡各五十戶抄入事，已受教。撫夷則然矣，慶興、造山，賊巢絕遠，防禦最歇，城內居民不少，造山則勿抄入，慶興則五十戶減入。一，阿吾地堡內居民，雖本慶源之人，今移堡于慶興之地，當役于慶興。一，慶興以下長城溝塹未畢處，待來春役去春闕軍畢鑿。一，甫伊德、榛坡合堡及永建堡改築，期以甲寅年畢役。甫伊德、榛坡合堡則當築矣，永建堡則其頽落處新萬戶日日漸築，不甚低微，後年改築爲便。玉蓮堡除古基，於富寧</p>

이덕보와 진파보를 합보하면 마땅히 보를 쌓아야 할 것인데, 영건보는 그 무너진 곳을 새 만호(萬戶)가 날마다 조금씩 쌓아도 몹시 낮지는 않겠지만, 후년(後年)에 고쳐 쌓는 것이 적당합니다. 옥련보(玉蓮堡)는 옛터를 버리고 부령진(富寧鎭) 아래 10여 리(里) 거리의 허통동(虛通洞)으로 옮겨서 설치하게 하소서.

1.운충(雲寵)·혜산(惠山) 남보(南堡)의 성자(城子)는 후년(後年)을 기다려서 물려 쌓을 것이며, 인차외(仁遮外)에서 혜산까지 내왕하는 강변 2, 3리(里) 땅은 모름지기 내년 봄에 장성(長城)을 쌓게 하소서.

1. 도내(道內)에 금년 농사가 잘 되지 못하였는데, 사민(徙民)한 처자(妻子)를 일시에 함께 들어오게 하면 비록 포화(布貨)가 있다고 하더라도 식량을 바꾸기가 어려우니, 금년에는 호수(戶首)만 먼저 들여보내어 전지(田地)를 절급(折給)하게 하고, 인하여 군적(軍籍)에 기록해 넣어서 그 처자는 내년 봄에 모두 들어오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와 변경의 일을 아는 재상(宰相)들을 명소(命召)하여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윤필상(尹弼商)·이극배(李克배)·노사신(盧思愼)·윤호(尹壕)·이철건(李鐵堅)·이극돈(李克墩)·정문형(鄭文炯)·신준(申浚)·이봉(李封)·변종인(卞宗仁)·이계동(李季全)·신주(辛鑄)·이병정(李秉正)·조간(曹幹)·박암(朴巖)이 의논하기를,

“야춘(耶春)에 성을 쌓는 일은 조종조(祖宗朝)에서 처음 육진(六鎭)26576)을 설치할 때 두만강(豆滿江)을 한정하여 장성(長城)을 쌓고, 봉수(烽燧)를 나열시켜 두어서 방비하는 방법이 지극히 정밀하고도 엄하였습니다. 그러나 얼음이 얼거나 물이 얇을 때에는 호인(胡人)이 그래도 틈을 타서 침입하여 약탈하였는데, 이제 장성의 험함을 버리고 오랑캐의 지역에 깊숙이 들어가서 수고롭게 성보(城堡)를 쌓고 사방으로 흩어지는 땅에 군사와 백성을 두면, 이는 바로 고기를 굽주린 호랑이의 입에 던지는 것이니, 계책으로는 훌륭한 것이 아

鎭下十餘里虛通洞移置。一，雲寵、惠山、南堡城子，待後年退築。自仁遮外至惠山來往江邊二、三里之地，須及來春造築長城。一，道內今年農事不實，徙民妻子一時竝入，則雖有布貨貿食爲難。今年則只戶首先入送，折給田地，仍錄軍籍，其妻孥來春畢入。”命召領敦寧以上及議政府與知邊事宰相等議之。尹弼商、李克培、盧思愼、尹壕、李鐵堅、李克墩、鄭文炯、申浚、(李封) [李崙]、卞宗仁、李季全、辛鑄、李秉正、曹幹、朴巖議：“耶春築城事，祖宗朝初置六鎭之時，以豆滿江爲限，築長城列烽燧，隄備之方至密且嚴，然水合水淺之時，胡人猶且乘隙而入寇矣。今棄長城之險，深入狄地，勞築城堡，置軍民於四散之地，正是投肉於餓虎之口，非計之善者。成俊等啓爲得，且其事目，令該曹議啓後更議。”傳曰：“今爲兵曹堂上者，豈盡知永安道之事？古人云，百聞不如一見，今事目內，如徙民等事非一、二也，當議曰某事是也某事非也，而今但議曰令該曹議啓何也？”弼商等啓曰：“此事不可不令該曹議啓

	<p>됩니다. 성준(成俊) 등의 아뢰 바가 옳습니다. 또 그 사목(事目)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의논해서 아뢰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p> <p>“지금 병조 당상(兵曹堂上)이 된 자가 영안도(永安道)의 일을 어찌 다 알겠는가? 옛사람이 이르기를,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고 하였다. 지금 이 사목 가운데 사민(徙民) 등의 일이 한둘이 아니므로, 마땅히 의논하기를, ‘어느 일은 옳고 어느 일을 그르다.’고 해야 할 것인데, 이제 다만 의논하기를, ‘해조(該曹)로 하여금 의논해서 아뢰게 하소서.’ 하였으니, 무엇 때문인가?”</p> <p>하였다. 윤필상 등이 아뢰기를,</p> <p>“이 일은 해조로 하여금 의논해 아뢰게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 뒤에 신 등도 마땅히 그 옳고 그름을 의논하겠습니다.”</p> <p>하자 전교하기를,</p> <p>“가하다.”</p> <p>하였다.</p>	<p>也，然後臣等亦當議其是非。” 傳曰：“可。”</p>
<p>성종 283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10월 6일 (정묘) 9번째기사</p>	<p>영안도 관찰사(永安道觀察使) 성준(成俊)에게 하서(下書)하기를,</p> <p>“본도(本道)는 예로부터 학자(學者)가 적어서 인재(人才)가 적게 나는데 지난 번에 8도(道)의 교생(校生)26577) 으로 하여금 제술(製述)하게 하고, 관(官)에 명하여 차례를 상고하게 하였더니, 영흥(永興) 유생(儒生) 임계춘(林繼春)이 수석을 차지하였으므로, 특별히 의복 한 벌과 면포 10필을 내려 주어 이를 포장(褒獎)하였었다. 그리고 지금 올라오는 것을 인하여 또 부(賦)를 짓게 하였는데, 또한 취할 만한 바가 있어서 식물(食物)과 호초(胡椒)를 내려 주어 친절하게 권면하게 하였다. 이는 진실로 경(卿)이 성심으로 가르치고 양성한 소치이니, 진실로 아름답고 기쁜 일이다. 경은 더욱 권면하고 격려를 더하도록 하라.”</p>	<p>○下書永安道觀察使成俊曰：“本道自古學者鮮少，人才罕出。頃者令進八道校生製述，而命官考第，則永興儒生林繼春居魁，特賜衣一襲、絺布十匹以獎之，今因上來，又使製賦，亦有可取。賜食物與胡椒以敦勸之，此實卿誠心教養所致，良用嘉悅，卿其益加勸勵。”</p>

<p>성종 283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10월 7일 (무진) 5번째기사</p>	<p>하였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무신(武臣)의 무예(武藝) 시험에는 술과 풍악을 내려 주었고, 유생(儒生)의 과시(課試)에도 이미 술을 내려 주었으며, 또 유생에게 음식을 대접하였는데, 오직 문신(文臣)의 과시(課試)에만 술과 풍악을 내려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취품(取稟)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문무(文武)는 일체이니, 문신의 과시에도 무신의 무예 시험의 예(例)에 의하여 술과 풍악을 내려 주도록 하라.” 하였다.</p>	<p>○禮曹啓: “武臣試藝賜酒樂, 儒生課試既賜酒, 又饋儒生, 獨於文臣課試不賜酒樂, 取稟。” 傳曰: “文武一體, 文臣科試依武臣試藝例賜酒樂。”</p>
<p>성종 283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10월 8일 (기사) 4번째기사</p>	<p>병조 판서(兵曹判書) 한치형(韓致亨) 등이 와서 아뢰기를, “평안도 강변 여러 고을에 새앙쥐[鼯鼠]와 곰·멧돼지가 곡식을 거의 다 먹어 버려 이로인해 농사를 실패하여, 초가을에 면포(綿布) 한 필이 쌀 6, 7말[斗]의 값이 되었는데 지금은 쌀 두 말 값이라고 합니다. 합방(合防) 군사가 비록 면포를 가지고 가더라도 백성이 가진 곡식이 없으니, 무엇으로 양식을 준비하겠습니까? 우후(虞候)는 병사(兵使)의 다음인데, 유희(兪顥)는 이미 나치해 왔고, 조극치(曹克治)는 바야흐로 논박(論駁)을 당하였으니, 방어(防禦)하는 모든 일이 혹시 허술해질까 두렵습니다. 마땅히 대신을 보내어 방어하는 형세를 살피게 해야 할 것인데, 만약 대신의 행차가 폐단이 있다고 한다면, 집의(執義) 민효증(閔孝曾)이 여러 해 서쪽 변경을 출입하여 변경 일을 갖추어 아니, 민효증으로 하여금 단기(單騎)로 가서 살피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는데,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p>	<p>○兵曹判書韓致亨等來啓曰: “平安道江邊諸邑, 鼯鼠及熊豕, 食穀殆盡, 因此失稔, 初秋則綿布一匹直田米六、七斗, 今則直米二斗。 合防軍士雖齎布而往, 民無儲穀, 何以備糧? 虞候亞於兵使, 而兪顥已拿來, 且曹克治方被駁, 防禦諸事恐或踈虞, 宜遣大臣察防禦形勢, 若以大臣之行爲有弊, 則執義閔孝曾累年出入西鄙, 備諳邊事, 令孝曾單騎往察何如?” 命議于領敦寧以上。</p>
<p>성종 283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10월 9일</p>	<p>봉상시 주부(奉尙寺主簿) 송천희(宋千喜)가 와서 아뢰기를, “어제 도독이 연은전(延恩殿) 제기고(祭器庫)에 들어가서 창(窓)을 부수고 자물쇠를 깨뜨리고는 과일 그릇 2사(事)를 훔쳐 갔습니다.”</p>	<p>○奉常寺主簿宋千喜來啓曰: “昨日盜入延恩殿祭器庫, 斲窓破鑰, 竊果器二事而去。” 命遣弘文館修撰李希孟往</p>

<p>(경오) 3번째기사</p>	<p>하니, 홍문관 수찬(弘文館修撰) 이희맹(李希孟)을 파견하여 가서 살펴보도록 하였는데, 과연 송천회가 아된 것과 같았으므로, 전교하기를, “이 일이 가볍지 아니하니, 의금부(義禁府)로 하여금 추국(推鞠)하게 하라.” 하였다.</p>	<p>審，果如千喜所啓。傳曰：“此事非輕，其令義禁府推鞠。”</p>
<p>성종 283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10월 14일(을해)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정언(正言) 유송조(柳崇祖)가 아뢰기를, “금년에 벼가 여물지 아니하여 백성들이 흉년을 한탄하고 있는데, 수령(守令)이 빈부(貧富)를 가리지 아니하고 공채(公債)26605)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여, 견감(蠲減)한 것도 공공연히 바치기를 독촉하므로, 지나가는 마을은 열 집에 아홉 집은 비었으니, 진실로 민망스럽습니다.” 하고, 지평(持平) 강형(姜涇)은 아뢰기를, “수령이 된 자가 금년에 다 징수하였는데 명년에 또 징수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척문(尺文)26606)을 주지 아니하여 고험(考驗)할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폐단이 진실로 작지 아니합니다.” 하니, 유송조가 아뢰기를, “수령이 일이 많은 사이에 다 살필 수 없어서 색리(色吏)26607)에게 맡기니, 색리가 관의 세력을 빙자하여 이(利)를 취하고자 하여 척문을 주지 아니하고, 또 수기(受記)에 지우지 아니합니다. 백성은 스스로 모두 바쳤다고 생각하였는데, 명년에 또 바치도록 독촉당하나, 어리석은 백성은 스스로 밝히지 못합니다. 청컨대 제도(諸道)에 하유(下諭)하여 이와 같이 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었다. 특진관(特進官) 이극돈(李克墩)이 대답하기를, “척문(尺文)을 주는 등의 일은 이미 성립된 법이 있으니, 백성이 반드시 척문을 받고, 또 수기(受記)에 지우는 것을 본 뒤에 물러가면 염려스러움이 없을</p>	<p>○御經筵。講訖，正言柳崇祖啓曰：“今年禾穀無實，民有凶歉之歎，守令不分貧富，以爲公債不可不徵，蠲減者亦公然督納，所過閭里，十室九空，良可悶也。”持平姜涇啓曰：“爲守令者，今年盡徵而明年又徵，此無他，不給尺文，無憑考驗故也。此弊誠爲不小。”崇祖曰：“守令多事間不能盡察，付之色吏，色吏依憑官勢，謀欲取利，不給尺文，又不抹去受記，民自以爲盡納，而明年又被催納，愚民不能自明，請下諭諸道，使勿如是。”上顧問左右。特進官李克墩對曰：“給尺文等事，已有成法，民必受尺文，又見抹去受記而後退，似無可慮。但臣聞京畿監司李世佐請勿徵往年還上，臺諫亦言之，此皆爲民生計也。然今年私債亦不禁徵，則公債不可不徵也。大抵還上分給時，守令報監司，監司轉報戶曹，戶曹裁減其數，故分給民間，常患不足，守令之恤民者，當力農時，多給數外之穀，民</p>

듯합니다. 다만 신이 듣건대 경기 감사(京畿監司) 이세좌(李世佐)가 지난해 환상곡(還上穀)26608) 을 거두지 말 것을 청하였고, 대간(臺諫)도 이를 말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모두 민생(民生)을 위한 계책입니다. 그러나 올해에 사채(私債)도 징수하기를 금하지 아니하면 공채(公債)는 징수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저 환상곡을 나누어 줄 때에 수령이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가 호조(戶曹)에 다시 보고하면, 호조에서 그 수량을 재감(裁減)하기 때문에, 민간에 나누어 주는 것은 항상 부족함을 걱정하게 됩니다. 수령이 백성을 구휼하는 것은 농사에 힘쓸 때를 당하여 수량 외의 곡식을 많이 주면 백성들이 진실로 힘입을 것입니다. 군자창(軍資倉)의 곡식은 비록 흉년이라 하더라도 거두지 아니할 수 없으며, 별창(別倉)의 곡식은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쓰는 것이니, 더욱 비축(備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유승조가 아뢰기를,
 “신의 뜻은 환상곡을 거두지 말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빈부(貧富)를 구분하지 아니하면 가난한 자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아뢰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뜻으로서 제도(諸道)에 하서(下書)하라.”

하였다. 유승조가 또 아뢰기를,
 “전라도(全羅道)와 경상도(慶尙道)는 이제 바야흐로 양전(量田)을 하는데, 무릇 소용되는 시탄(柴炭)·등유(燈油) 등의 물건을 모두 민간에서 거두고, 위관(委官)·서원(書員)의 거느리는 도속(徒屬)을 모두 민간에 돌려가며 먹이고 관(官)에서는 관열하지 않으니, 그 폐단이 작지 아니합니다. 지난해 경기(京畿)의 양전(量田) 때에 암행(暗行)을 보내어 적간(摘奸)하게 하였으니, 지금도 전례(前例)에 의하여 적간하게 하소서.”

하자,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었다. 이극돈이 아뢰기를,
 “관찰사(觀察使)가 있고 순찰사(巡察使)가 있으니, 모두 대신(大臣)입니다. 검

實賴焉。軍資倉之穀，雖凶歉不可不徵，別倉穀爲賑民之用，尤不可不蓄也。”崇祖曰：“臣意非欲勿徵還上，若不分貧富，則貧者不得聊生，故啓之耳。”上曰：“其以此意下書諸道。”崇祖又啓曰：“全羅、慶尙道，今方量田，凡所用柴炭燈油等物，盡徵民間，委官、書員所率徒屬，皆轉食於民，而官無與焉，其弊不貲。去年京畿量田時爲遣暗行摘奸，今亦依前例摘奸。”上顧問左右。克墩啓曰：“有觀察使，有巡察使，皆大臣也，而委任檢舉，何必更遣暗行，宜以此意下諭巡察使。”上曰：“可。”崇祖又啓曰：“國家有弘文錄，有師儒錄，必擇人以處之，況輔養世子，尤可慎擇也，而獨侍講院無錄，銓曹注擬雖曰當矣，然不如與衆擇之。”上顧問左右。同知事柳洵對曰：“雖不別選書筵官，以載弘文錄者推移差用何如？”克墩曰：“弘文錄則徒以年少聰敏者擇差，侍講院則銓曹當臨時擬望，擬望而非其人則有政府焉、有臺諫焉，豈不糾改乎？”上曰：“輔養世子，國之大事也。徒取其年少聰明而不問其心術之如何則豈可乎？銓曹擬之，臺

	<p>거(檢擧)하도록 위임할 것이지 어찌 다시 암행(暗行)을 보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뜻을 순찰사에게 하유(下諭)하게 하소서.”</p> <p>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p> <p>하였다. 유승조가 또 아뢰기를, “국가에 홍문록(弘文錄)26609) 과 사유록(師儒錄)이 있으니, 반드시 사람을 골라서 여기에 두었습니다. 더구나 세자(世子)를 보양(輔養)하는 데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골라야 하는데, 오로지 시강원(侍講院)에는 녹(錄)이 없으니, 전조(銓曹)의 주의(注擬)가 비록 마땅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고르는 것만 못합니다.”</p> <p>하자,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면서 물었다. 동지사(同知事) 유순(柳洵)이 대답하기를, “비록 따로 선정(選定)하지 아니하더라도 서연관(書筵官)은 홍문록에 실려 있는 자를 추이(推移)하여 임명해 쓰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고, 이극돈은 아뢰기를, “홍문록은 한갓 나이가 젊고 총민(聰敏)한 자만 골라서 정하고, 시강원(侍講院)은 전조(銓曹)에서 임시에 당하여 의망(擬望)하는데, 의망하여 적당한 사람이 아니면 의정부(議政府)가 있고 대간(臺諫)이 있으니, 어찌 규명하여 고치지 아니하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세자를 보양(輔養)하는 것은 나라의 큰 일인데, 한갓 그 나이가 젊고 총명한 것만 취하고, 그 심술(心術)이 어떠한 것은 묻지 아니하면 어찌 옳겠는가? 전조에서 의망하고 대간이 따라서 논박하면 반드시 옳은 사람을 얻을 것이다.”</p> <p>하였다. 유승조가 아뢰기를, “과연 녹(錄)은 없어도 가합니다. 그러나 심술은 조정에서도 다 알 수 없는</p>	<p>諫從而論駁，則必得人矣。” 崇祖曰：“果可無錄也。然心術則朝廷尙不能盡知之，況銓曹乎？不如與衆共擇之。” 侍講官權柱啓曰：“弘文錄非徒取其年少也。其心術，一時儕輩皆知之，故使弘文館先擇而報于館閣堂上，此輩豈不合於侍講耶？” 上曰：“銓曹用人是非，自有公論，何必有錄？” 克敦又啓曰：“平安道季後衙前，則以無役人充定，軍戶衙前則正兵等諸色軍士欲免雜役者投屬，當番則依他例赴防。今節度使呂自新所啓，乃軍戶衙前也，下諭監司革除可也。季後衙前四百，則已有定數，不可更改也。”</p>
--	--	--

	<p>데, 더구나 전조(銓曹)이겠습니까? 여러 사람과 함께 고르는 것만 못합니다.” 하고, 시강관(侍講官) 권주(權柱)가 아뢰기를, “홍문록은 한갓 나이가 젊은 것만 취한 것이 아니라, 그 심술(心術)은 한때의 제배(儕輩)가 모두 알기 때문에, 홍문관(弘文館)으로 하여금 먼저 골라서 관각당상(館閣堂上)에게 보고하게 하였는데, 이 무리가 어찌 시강(侍講)에 합당하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조에서 사람을 쓰는 옳고 그름은 스스로 공론(公論)이 있는데, 어찌 녹(錄)이 있는 것이 필요하겠는가?” 하였다. 이극돈이 또 아뢰기를, “평안도의 계후 아전(季後衙前)은 역(役)이 없는 사람을 채워 정하였고, 군호 아전(軍戶衙前)은 정병(正兵) 등 제색 군사(諸色軍士)로서 잡역(雜役)을 면하려고 하는 자가 투속(投屬)한 것으로서 당번(當番)이 되면 다른 예(例)에 의하여 부방(赴防)하는데, 지금 절도사(節度使) 여자신(呂自新)이 계달한 바는 곧 군호 아전입니다. 감사(監司)에게 유시(諭示)를 내려서 혁파해 없애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후 아전 4백 명은 이미 정한 수(數)가 있으니, 다시 고칠 수 없습니다.” 하였다.</p>	
<p>성종 283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10월 16일(정축) 5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문소전(文昭殿)의 지붕을 고칠[改蓋] 때에 신위판(神位板)을 앞뒤의 전(殿)에서 서로 옮겨서 모실 것인가, 옛 동궁(東宮)에 옮겨 모실 것인가?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대간(臺諫)·홍문관(弘文館)의 관원을 불러서 이를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신은 처음에 앞뒤의 전(殿)에 서로 옮겨 모시는 것이 가하다고 의논하였는</p>	<p>○傳于承政院曰：“文昭殿改蓋時，神位板於前後殿互相移安乎？當於古東宮移安乎？其召領敦寧以上及議政府、六曹、臺諫、弘文館議之。”尹弼商議：“臣初議可於前後殿互相移安，今無可別議。”盧思愼、許琮、李鐵堅、韓致亨、盧公弼、成倪、柳洵、</p>

<p>데, 이제 다른 의논이 없습니다.”</p> <p>하고, 노사신(盧思愼)·허중(許琮)·이철건(李鐵堅)·한치형(韓致亨)·노공필(盧公弼)·성현(成愼)·유순(柳洵)·송영(宋瑛)·이육(李陸)·윤은로(尹殷老)·신종호(申從濩)·한건(韓健)·이계남(李季男)·정경조(鄭敬祖)·박원종(朴元宗)은 의논하기를, “앞뒤 두 전(殿)이 서로 거리가 가까워서 만약 지붕을 고치면 신어(神御)를 모신 곳에서 역인(役人)이 많이 모여 떠들면 설만(褻慢)함이 막심하고, 상식(上食) 때에 더러움이 서로 미칠 것이니, 더욱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옛 동궁으로 옮겨 모시는 것이 가하다고 의논하였는데, 다시 의논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p> <p>하고, 정문형(鄭文炯)은 의논하기를, “앞뒤 전(殿)의 지붕을 모두 고치면 전(殿) 밖으로 옮겨 모시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신의 생각은 지금 비가 새는 곳은 없고, 다만 기와를 덮은 것이 조금 물러난 곳에 고저(高低)와 굴곡(屈曲)이 있을 뿐인데, 이와 같은 곳을 보수할 따름이면 두 전(殿)에 서로 옮겨 모시더라도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p> <p>하고, 조위(曹偉)는 의논하기를, “앞뒤 전(殿)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한데, 앞의 전이 매우 높아서 뒤의 전을 임압(臨壓)26616) 하고 있습니다. 개와(改瓦)하고 도식(塗飾)하는 즈음에 기계(機械)를 엮어매고 공장(工匠)의 무리가 그 위에서 떠들면 신어(神御)를 경동(驚動)시키는 바가 없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물며 옛 동궁(東宮)은 수백보(步)의 곳에 있고, 일찍이 이미 자세히 조사해서 결정하여 수선(修繕)하였으니, 신은 옛 동궁으로 옮겨 모시는 의논을 단연코 바꿀 수 없다고 여깁니다.”</p> <p>하고, 유지(柳輕)·허침(許琛)·이숙감(李淑臧)·이덕숭(李德崇)·강귀손(姜龜孫)·김무(金賦)·허계(許誡)·표연말(表沿沫)·김심(金諶)·민효증(閔孝曾)·성세명(成世明)·양희지(楊熙止)·강형(姜訶)·김수동(金壽童)·홍한(洪瀚)·유인홍(柳仁洪)·유승조(柳崇祖)·권주(權柱)·이희맹(李希孟)·김감(金勘)·이의손(李懿孫)·이과(李顒)·이관(李</p>	<p>宋瑛、李陸、尹殷老、申從濩、韓健、李季男、鄭敬祖、朴元宗議：“前後兩殿，相距逼近，若改蓋，則神御所在役人群聚，喧鬧褻慢莫甚。上食時，塵穢相及，尤爲不可。故前議可於古東宮移安，無可更議。”鄭文炯議：“前後殿盡數改蓋，則不得已殿外移安矣。臣意，時無雨漏處，只有蓋瓦差退處高低屈曲耳，如此處修補而已，則可以兩殿互相移安而無弊矣。”曹偉議：“前後殿相距不遠，而前殿甚高臨壓，後殿改瓦塗飾之際，結構機械，工匠之類喧鬧其上，不無驚動神御，況古東宮在數百步之地，曾已審定修繕。臣意以謂，移安古東宮之議，斷不可改。”柳輕、許琛、李淑臧、李德崇、姜龜孫、金賦、許誡、表沿沫、金諶、閔孝曾、成世明、楊熙止、姜訶、金壽童、洪瀚、柳仁洪、柳崇祖、權柱、李希孟、金勘、李懿孫、李顒、李寬議：“前後殿相距甚邇，今當改蓋，雖奉移安，役徒繁穎，勢必喧擾，恐違神道尙靜之意。奉移他殿爲便。”傳曰：“今觀鄭二相議云，當勿改蓋，其更問于諸宰。”弼商、思愼、</p>
--	--

	<p>寬)은 의논하기를, “앞뒤 전(殿)이 상거가 매우 가까우니, 이제 지붕을 고치면서 비록 서로 받들어 옮겨 모신다 하더라도 역도(役徒)가 많아서 형세가 반드시 시끄러워 아마도 신도(神道)가 고요함을 숭상하는 뜻에 어긋날 듯합니다. 다른 전(殿)으로 받들어 옮기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정 이상(鄭二相) 26617) 의 의논을 보건대, 지붕을 고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으니, 이를 다시 여러 재상(宰相)들에게 묻도록 하라.” 하였다. 윤필상(尹弼商)·노사신(盧思愼)·허종(許琮)·이철건(李鐵堅)·유지(柳輕)·한치형(韓致亨)·노공필(盧公弼)·성현(成倪)·유순(柳洵)·송영(宋瑛)·이육(李陸)·윤은로(尹殷老)·한건(韓健)·신종호(申從濩)·허침(許琛)·이계남(李季男)·정경조(鄭敬祖)·조위(曹偉)·이덕숭(李德崇)·이숙감(李淑臧)·허계(許誠)·표연말(表沿沫)·민효증(閔孝曾)·강형(姜訶)·권주(權柱)·양희지(楊熙止)·김수동(金壽童)·유인홍(柳仁洪)·이희맹(李希孟)·이의손(李懿孫)·김감(金勘)·이과(李顥)·이관(李寬)은 의논하기를, “지붕을 다시 고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고, 김심(金諶)·강귀손(姜龜孫)·박원종(朴元宗)·김무(金礎)·홍한(洪瀚)·성세명(成世明)·유송조(柳崇祖)는 의논하기를, “지붕을 다시 고치지 않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이는 큰 일이므로 마땅히 참작하고 헤아려서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p>	<p>許琮、鐵堅、柳輕、致亨、公弼、成倪、柳洵、宋瑛、李陸、殷老、韓健、從濩、許琛、季男、敬祖、曹偉、德崇、淑臧、許誠、沿沫、孝曾、姜訶、權柱、熙止、壽童、仁洪、希孟、懿孫、金勘、李顥、李寬議：“改蓋便。” 金諶、龜孫、元宗、金礎、洪瀚、世明、崇祖議：“勿改蓋便。” 傳曰：“此大事也。當酌量爲之。”</p>
<p>성종 283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10월 17</p>	<p>경상도(慶尙道) 경주(慶州)의 유생(儒生) 이번(李藩)이 제술(制述)에 수석을 차지하였다 하여 부름을 받고 왔다. 명하여 반풍부(反風賦)로써 시험하도록 하였는데, 지어 올리니, 임계춘(林繼春)의 예(例)에 의하여 음식물과 호초(胡</p>	<p>○戊寅/慶尙道慶州儒生李藩，以製述居首承召而來。命試以反風賦製進，命依林繼春例賜食物、胡椒。</p>

<p>일(무인) 1번째기사</p> <p>성종 283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10월 20 일(신사) 8번째기사</p>	<p>椒)를 내려 주도록 명하였다.</p> <p>경상우도 절도사(慶尙右道節度使) 조익정(趙益貞)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이제 경(卿)의 계(啓)한 것을 자세히 보았다. 항상 살고 있는 왜인(倭人)들이 내지(內地)에서 그물을 설치하고 고기를 잡으면서 감히 횡역(橫逆)을 저지르며 관차(官差)를 구타하여 상하게 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를 문죄하지 않을 수 없다. 경은 한 지방을 위임받아서 곤외(關外)26648) 를 전제(專制)하니, 진실로 마땅히 임기 응변(臨機應變)으로 처리하여 가두어서 국문(鞫問)하고 치보(馳報)26649) 해야 할 것인데, 먼저 스스로 두려워하고 겁내어 적(敵)이 이미 이른 것처럼 경군관(京軍官)과 하번 군사(下番軍士)를 유방(留防)하도록 청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소동(騷動)하는 데 이르게 하였으니, 장수가 된 도리가 과연 이와 같은가? 항상 거주하는 왜인은 우리 편氓(編氓)과 다름이 없는데, 조금 횡패(橫悖)부리는 것을 만나자 문득 겁내고 나약함이 이에 이르렀으니, 만일 큰 사변을 만나면 경은 장차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방비하는 방법을 비록 조금도 헤이하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이 이르지 아니 하였는데 먼저 스스로 놀라고 소동하여 백성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무엇 때 문인가? 경은 그 사유를 갖추어서 계달하라.” 하였다.</p>	<p>○諭慶尙右道節度使趙益貞曰：“今觀卿啓具悉。 恒居倭人等，於內地設網捕魚，敢肆橫逆，至打傷官差，不容不問。 卿受委一方，專制關外，固宜臨機處置，囚鞫馳報，而先自畏怯，如敵已到，至請京軍官及下番軍士留防，使民騷動，爲將之道果若是乎？ 恒居倭人，與我編氓無異，而少遇橫悖，怯懦至此，如遇大變，則卿將何爲？ 在我備禦之方，雖不可少弛，然寇未至而先自驚動以擾民，何耶？ 卿其具由以啓。”</p>
<p>성종 283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10월 21 일(임오) 5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요즈음 하늘의 재변이 있으니 마땅히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인데, 어찌 모여서 잔치할 수 있겠는가? 동짓날 두 대비전(大妃殿)의 진연(進宴)과 재상(宰相)의 공궤(供饋)를 정지하라.” 하였다.</p>	<p>○傳于承政院曰：“近有天變，固當警懼，豈宜會宴？ 其停冬至日兩大妃殿進宴及宰相供饋。”</p>
<p>성종 283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10월 23 일(갑신) 2번째기사</p>	<p>생원(生員) 박광영(朴光英) 등을 부르도록 명하고 인하여 전교하기를, “이제 그대들의 말한 바에 따라 이문흥(李文興)을 특별히 1자급(資級)을 더하여 이를 포장(褒獎)한다.” 하였다. 인하여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이극균(李克均)에게 하서</p>	<p>○命召生員朴光英等，仍傳曰：“今從爾等所言，李文興特加階褒之。” 仍下書慶尙道觀察使李克均曰：“道內龍宮居李文興，前爲司成，在職匪懈，教人</p>

	<p>(下書)하기를, “도내(道內) 용궁(龍宮)에 사는 이문홍은 전에 사성(司成)으로 있으면서 직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사람을 가르쳐서 사문(斯門)26697)에 공이 있으므로, 특별히 1자급을 더하여 이를 포장하니, 경(卿)은 음식물을 갖추어서 주라.” 하였다.</p>	<p>不倦，有功於斯文，特加一資以褒之，卿其備給食物。”</p>
<p>성종 283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10월 29일(경인) 7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 전교하기를, “경기(京畿)의 교동(喬桐)·강화(江華)·통진(通津)·김포(金浦)·양천(陽川)·부평(富平) 등의 고을은 농사가 매우 잘 되지 못하였고, 인천(仁川)·안산(安山)·남양(南陽)·고양(高陽)·교하(交河)·금천(衿川) 등의 고을은 다음인데, 위의 여러 고을의 공신전(功臣田)·별사전(別賜田)·직전(職田)과 사사전(寺社田)의 세(稅)는 아직 상납(上納)하지 말고, 모두 피곡(皮穀)으로 주창(州倉)에 받아들여서 명년 종자(種子)로 준비하도록 하라.” 하였다.</p>	<p>○傳于戶曹曰：“京畿喬桐、江華、通津、金浦、陽川、富平等邑，農事甚不稔，仁川、安山、南陽、高陽、交河、衿川等邑次之，上項諸邑之功臣、別賜、職田、寺社田稅，姑勿上納，竝以皮穀納州倉，以備明年之種。”</p>
<p>성종 284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11월 2일(계사)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사간(司諫) 표연말(表沿沫)이 아뢰기를, “여러 고을의 수령(守令)들이 공물(貢物)을 봉납(奉納)할 때 불법(不法)한 일을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신이 듣건대, 경상도 감사(慶尙道監司) 이극균(李克均)이 폐단을 알고서 따로 차사원(差使員)26829)을 정하여 봉납(奉納)하는 것을 감독하게 하였다 합니다. 그러나 차사원은 한 고을에 오래 머무를 수가 없기 때문에 기한(期限)을 각박하게 하여 바치도록 하니 폐단이 또한 적지 않습니다. 또 환상(還上)을 수납(收納)할 때 수령들이 거개가 다 <기한을> 각박하게 하고 더 많이 거두기 때문에 백성들이 혹은 전지(田地)를 다 팔아 바친다고 합니다.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여사(御使)를 나누어 보내 적발(摘發)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p>	<p>○御經筵。講訖，司諫表沿沫啓曰：“諸邑守令貢物奉納時，多行不法。臣聞慶尙道監司李克均知此弊，別定差使員監納，然差使員不得久處一邑，刻期納之，弊亦不貲。且還上收納時，守令類皆刻濫，故民或盡賣田地而納之。秋冬間分遣御史，摘發可也。”上曰：“今因量田，民必騷擾，御史不可遣也。”掌令楊熙止啓曰：“臣聞平安道沿邊農事甚不實，綿布一匹，僅易粟米一斗，合防軍士，終難備糧，必至飢困，不得爲實軍矣。且當夏則農民布野，</p>

	<p>“지금은 양전(量田) 때문에 백성들이 반드시 소요스러울 것이니 어사는 보낼 수가 없다.”</p> <p>하였다. 장령(掌令) 양희지(楊熙止)가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평안도(平安道) 연변(沿邊)이 농사가 몹시 부실(不實)하여 면포(綿布) 한 필(匹)로 겨우 속미(粟米) 한 말[斗]과 바꾸기 때문에, 합방(合防)하는 군사(軍士)들이 끝내 양식을 준비하기가 어려워 반드시 굶주리고 피곤한데 이를 것이므로 충실(充實)한 군사가 될 수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 여름에는 농민들이 들판에 널려 있으므로 방어가 가장 긴밀(緊密)하나, 겨울이면 청야(淸野)26830) 하고 첩입(疊入)26831) 하므로 방어가 조금 느슨해집니다. 그러니 청컨대 금년에는 합방(合防)하지 말도록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었다. 영사(領事) 이극배(李克培)가 대답하기를, “겨울철에는 적로(賊路)가 육지(陸地)와 연결되니 더욱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p> <p>하니, 양희지가 말하기를, “비록 혹 육지와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저들이 어찌 성읍(城邑)을 공격하여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청야하고 대비한다면 모욕을 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얼음이 얼어 육지와 연결된데다, 군사가 적고 장수가 태만할 때 적이 뜻하지 않게 공격해 온다면 변성(邊城)을 보전(保全)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몹시 염려스럽다.”</p> <p>하니, 양희지가 말하기를, “군량(軍糧)과 방어 등의 일을 하서(下書)하여 물어보시고, 마땅함을 따라 포치(布置)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防禦最緊，冬則淸野疊入，防禦稍緩矣。今年請勿合防。”上顧問左右。領事李克培對曰：“冬節則賊路連陸，尤可畏也。”熙止曰：“雖或連陸，彼安得攻奪城邑，若淸野以待則可無侮矣。”上曰：“冰合連陸，軍少將怠，而賊之來攻，出於不意，則邊城不可保也。此甚可慮。”熙止曰：“軍糧防禦等事，下書問之，從宜布置何如？”上曰：“可。”沿沫曰：“慶尙、全羅道則已矣，於他道分遣御史何如？”熙止曰：“御史在道，則守令驚懼，御史還來，泛濫如前矣。”特進官李克培啓曰：“今年下三道使命甚繁，御史不須遣也。”上曰：“監司當自布置矣。”</p>
--	--	--

	<p>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하였다. 표연말(表沿沫)이 아뢰기를, “경상도와 전라도는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다른 도(道)에는 어사(御史)를 나누어 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자, 양희지(楊熙止)가 말하기를, “어사가 도에 있으면 수령들이 놀라고 두려워할 것이나, 어사가 돌아오면 전과 같이 범람(泛濫)할 것입니다.” 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이극중(李克墾)이 아뢰기를, “올해 하삼도(下三道)의 사명(使命)26832) 이 몹시 번거로우니, 어사는 보낼 필요가 없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감사(監司)가 마땅히 스스로 포치(布置)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p>	
<p>성종 284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11월 2일 (계사) 5번째기사</p>	<p>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 이척(李則)과 절도사(節度使) 여자신(呂自新)에게 하서(下書)하기를, “본도(本道)는 금년 농사가 부실(不實)한데 연변(沿邊)이 더욱 심하니 방수(防戍)하는 괴로움이 예전보다 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군량(軍糧)이 넉넉하지 못하면 군사와 말이 굶주리고 피곤하여 적을 막기가 실로 어려울 것이다. 진언(進言)하는 자가 말하기를, ‘병졸(兵卒)을 헤아려서 감하고 청야(淸野)하여 대비한다면 변방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 말이 옳은가? 방수(防戍)하는 절목(節目)을 상확(商確)하여 치계(馳啓)하라.” 하였다.</p>	<p>○下書平安道觀察使李則、節度使呂自新曰：“本道今年農事不實，而沿邊尤甚，防戍之苦，倍於昔時，若軍糧不敷，則士馬飢困，禦敵實難矣。進言者有曰：‘量減兵卒，淸野以待，則可以保邊。’此言可乎？防戍節目，商確馳啓。”</p>
<p>성종 284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11월 4일</p>	<p>중재(宗宰)26841) 1품 이상 및 정부(政府)·육조(六曹)의 참판(參判) 이상과 한성부(漢城府)의 당상(堂上)과 승정원(承政院)·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과 입직(入直)한 제장(諸將)들을 명정전(明政殿) 뜰에서 음식을 대접하라고 명하</p>	<p>○命饋宗宰一品以上及政府、六曹參判以上、漢城府堂上、承政院、弘文館、藝文館、入直諸將于明政殿庭。</p>

(을미) 3번째기사	였다.	
<p>성종 284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11월 14일(을사) 1번째기사</p>	<p>호산군(湖山君) 이현(李鉉)이 승정원(承政院)에 와서 승지(承旨)에게 말하기를, “지금 이엄(耳掩)26900) 을 반사(頒賜)하였는데 종친(宗親)은 1품(品) 이상이고, 친공신(親功臣)26901) 은 직품(職品)을 논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신은 종친으로서 비록 2품이나, 친공신의 예로는 마땅히 하사(下賜)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충훈부(忠勳府)에서 유독 신의 이름만 누락시켰으므로 신이 아뢰고자 합니다.” 하자, 승지(承旨)들이 모두 웃고는 이어 현(鉉)의 말로써 취품(取稟)26902)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그것을 만들어 주게 하라.” 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현(鉉)은 양녕 대군(讓寧大君)의 손자인데, 성품이 탐욕스럽고 인색하였으니, 집에 좋은 과일이 있으면 자신이 먹지 않고 반드시 팔아 이익을 취하였다. 그리고 털끝만한 것이라도 반드시 계산하고 몇 되박의 쌀이라도 직접 살펴, 이런 식으로 재물을 쌓고 치부(致富)하니, 때를 틈타 이익을 노림이 장사치들보다 더 심하였다.” 하였다.</p>	<p>○乙巳/湖山君鉉詣承政院， 言于承旨曰：“今頒賜耳掩， 宗親則一品以上， 親功臣則勿論職品。 臣於宗親雖二品， 以親功臣例當受賜， 而忠勳府獨漏臣名， 臣欲啓之。” 承旨等皆笑之， 仍以鉉言取稟。 傳曰：“其令造給。” 【史臣曰：“鉉， 讓寧大君之孫也。 性貪黷吝嗇， 家有美果， 不自食， 必賣以取利， 絲毫必計， 升斗必親， 以此居積致富， 而乘時謀利， 甚於商賈。”】</p>
<p>성종 284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11월 15일(병오) 1번째기사</p>	<p>경상도 경차관(慶尙道敬差官) 정석견(鄭錫堅)이 치계(馳啓)하기를, “신이 제포(薺浦)에 이르러 왜추(倭酋) 사두사야문(沙豆沙也文) 등을 거느리고 동도(東島)에 가서 살펴보니, 화지라사야문(和知羅沙也文)이 막사(幕舍)를 짓고 고기잡이를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이 땅은 비록 너희들이 사는 곳과 더불어 상대(相對)하여 이미 내지(內地)가 되었다고는 하나, 우리 나라의 백성들이 오랫동안 고기잡이를 하던 곳이니 마땅히 빼앗아 점유할 수는 없다. 빨리 철거하고 떠나라.’고 하니, 화지라사야문이 대답하기를, ‘비단 이 곳뿐만이 아닙니다. 여세포(如細浦)와 모랑포(毛郎浦)의 땅도 저희들이 반드시 점유하고자 합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휘하인(麾下人)</p>	<p>○丙午/慶尙道敬差官鄭錫堅馳啓曰：“臣到薺浦， 率倭酋沙豆沙也文等， 往審東島， 則有和知羅沙也文結幕捕魚處， 臣語之曰：‘此地雖與汝等所居相對， 已成內地， 本國居民久遠捕魚之處， 不宜奪占， 其速撤去。’ 和知羅沙也文答曰：‘非特此地， 如細浦、毛郎浦之地， 我等必欲(古) [占] 有之。’ 其麾下人愁戒仇羅毛伊等， 亦以爲不當</p>

인 수계구라(愁戒仇羅)·모이(毛伊) 등도 또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며 대드는 말을 하며 독성을 발하기도 하였습니다. 신이 이 무리들을 보건대, 비록 빼앗아 점유한 것은 잘못하였다고 사과하였으나, 도리어 동도(東島)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것을 금지하지 말 것을 청하여 애걸복걸하기를 그치지 않았 습니다. 그런데 이 섬이 비록 내지(內地)라고는 하나 왜가(倭家)와 상대하는 것이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 어찌 처리하여야겠습니까?”

하니,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에 의논하게 하였다. 윤필상(尹弼商)·이극배(李克培)·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왜인(倭人)들이 불손(不孫)하게 군 정상이 이미 드러났는데도 지금 만약 다 스리지 않는다면 끝내는 제어(制御)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청컨대 속히 도주(島主)에게 통유(通諭)하여 그 처치(處置)하는 것을 보도록 하소서.”

하고, 허중(許琮)은 의논하기를,

“왜인들이 다툰 고기잡이하는 곳은 모두 우리 나라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던 바였는데, 지금 빼앗고자 하여 무리를 지어 구타하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잘못이 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차관(敬差官)이 추문(推問)하였 을 때 대답하는 말이 모두 쾌만(悖慢)하여 조금도 복죄(服罪)하거나 두려워하 는 뜻이 없었습니다. 저들을 대우하는 도리는 반드시 은혜와 위엄을 병행해야 할 것이고, 또 그런 뒤에야 길이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만약 불화의 단 서가 생길 것을 염려하여 고식책(姑息策)에만 힘쓰고 징계하지 않는다면 저들 이 반드시 더욱 우리를 가벼이 보는 마음을 먹을 것이니, 뒤에 가서는 제어하 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신은 수계구라(愁戒仇羅) 등 두세 명을 내지(內地)에 단단히 잡아두고, 이 뜻을 도주(島主)에게 통유(通諭)하여 처치(處置)하게 하는 것이 사의(事宜)에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석견(鄭錫堅)의 뜻 을 보건대, 동도(東島)를 저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나, 이 섬[島]은 본래 저 사람들이 고기잡는 곳이 아닌데 어떻게 준다는 것입니까? 정석견이 저 사람

禁，抗辭發毒。 臣觀此輩，雖以奪占 失次爲謝，而猶以勿禁東島捕魚爲請， 哀(墾) [懇] 不已，此島雖云內地，在 倭家相對不遠之地，何以處之?” 命議 于領敦寧以上及議政府。 尹弼商、李 克培、盧思愼議：“倭人不遜之狀已著， 今若不治，終難制御，請速通諭島主， 以觀其處置。” 許琮議：“倭人等所爭 捕魚之處，本皆我國人所占，而今欲據 奪，至於成群毆打，是曲在於彼，而敬 差官推問時所對之辭皆悖慢，頓無服罪 畏懼之意，待彼之道，必恩威並行，然 後可以長遠無弊。 今若慮生罅隙，務 在姑息，而不懲艾之，彼必益生輕我之 心，後難制矣。 臣意以爲，愁戒仇羅 等二、三人，堅囚於內地，將此意通諭 島主，使之處置，合於事宜。 又觀鄭 錫堅之意，欲以東島給彼人，然此島本 非彼人捕魚之處，豈宜給之? 錫堅至於 率彼人親往審之，此失事體。” 韓致 亨、鄭文炯議：“倭人奪占公私捕魚之 地，以至於打傷官差船主等，其爲縱恣 無忌莫甚，漸不可長。 今不治罪，後 弊難防，今將此輩橫恣無禮之狀，下諭 島主，使之嚴治何如?” 柳輕議：“觀倭

들을 거느리고 친히 가서 살펴보는 데 이르렀지만, 이는 사체(事體)를 잃은 것입니다.”

하고, 한치형(韓致亨)과 정문형(鄭文炯)은 의논하기를,

“왜인(倭人)들이 공사(公私)의 고기잡이하는 곳을 빼앗아 점유하고, 심지어는 관차(官差)26906 와 선주(船主) 등을 구타하여 상하게 하였으니, 그 방자하고 꺼리낌없이 구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심합니다. 그 조짐을 자라나게 할 수 없으니 지금 그 죄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뒷날의 폐단을 막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이 무리들의 방자하고 무례한 정상으로 도주(島主)에게 하유(下諭)하여 엄격히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유지(柳淸)는 의논하기를,

“왜인과 변방의 백성들이 서로 싸운 정상을 보건대, 그 어살을 놓고 고기잡이를 하는 곳이 비록 안팎의 경계가 있기는 하나, 왜인이 원래 사는 곳과 멀지 아니하니 내지(內地)로 깊이 들어온 데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노(倭奴)는 성질이 본래 조급(躁急)하므로 비록 변방의 백성과 화를 내어 다투고 구타하였다고는 하나 그 뜻은 단지 고기잡이를 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데 있었던 것뿐입니다. 하물며 그 초사(招辭)가 자못 겸손하고 대드는 말이 없었던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삼포(三浦)26907 의 왜인들이 점차 불어나게 되면 단지 고기잡이 뿐 아니라 몰래 내지(內地)에서 경작을 하기도 하여 백성들과 이익을 다툴 것이니, 그 폐단을 장차 금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속히 도주에게 통유하여 범인(犯人)을 치죄(治罪)하고 그 뿌리를 근절시키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정석견(鄭錫堅)은 마땅히 먼저 우리 나라 사람을 형신(刑訊)하되 말이 왜인에게 미치면 불러다 국문(鞫問)하고, 또 추장(酋長)을 잡아두어 조정의 처치(處置)를 기다렸어야만 했을 것이다. 그러나 곧 능히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

人與邊氓相鬪之狀，其結箭捕魚處，雖有內外之限，與倭人元居處不遠，則不至深入內地也。倭奴性本躁急，雖與邊氓忿爭毆打，其意只在捕魚謀生耳，況其招辭頗遜無抗語乎？然三浦倭人，漸至滋蔓，非徒捕魚，潛耕內地，與民爭利，弊將難禁，宜速通諭島主，將犯人治罪，以絕根株。”傳于承政院曰：“錫堅當先刑訊我國人，言及倭人，則招來鞫問，且拘留酋長，以待朝廷處置，而乃不能然，反欲許倭人東島之請，委遣之意安在？待其上來，令憲府鞫之。且令承文院爲書通諭島主。”

	<p>고, 도리어 왜인들이 동도(東島)에서 살기를 청한 것을 허락하고자 했으니, 위임해서 보낸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가 올라오기를 기다려 헌부(憲府)로 하여금 국문하게 하고, 또 승문원(承文院)으로 하여금 글을 지어 도주(島主)에게 통유하게 하라.” 하였다.</p>	
<p>성종 284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11월 16 일(정미) 1번째기사</p>	<p>대호군(大護君) 홍흥(洪興)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조카 당양위(唐陽尉) 홍상(洪常)을 보니 부상중(父喪中)에 너무 슬퍼한 나머지 몸이 몹시 수척해졌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어세겸(魚世謙)의 예에 의하여 주서(注書)로 하여금 가서 육즙(肉汁)을 권하게 하라.” 하였다.</p>	<p>○丁未/大護軍洪興來啓曰：“臣見姪唐陽尉洪常，在父喪毀瘠太甚。”傳曰：“依魚世謙例，令注書往勸肉汁。”</p>
<p>성종 284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11월 17 일(무신) 1번째기사</p>	<p>당양위(唐陽尉) 홍상(洪常)이 글로써 아뢰기를, “신에게 요사이 비장(脾臟)이 약간 상한 증상이 있어 음식을 때맞춰 먹지 못하였으므로 몸이 조금 수척해졌으나 지금은 이미 나았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상중(喪中)에 있으면서 병도 없는데 고기를 먹었으니 신은 실로 마음이 아픕니다. 어제 저녁 주서(注書)가 왔을 때 힘써 권하는 말을 이기지 못하였으니 신은 저으기 괴롭습니다. 그리고 어서(御書)에 ‘병이 나아 예전대로 회복되도록 하라.’는 하교가 있었는데, 신은 이미 병이 없으니 지금부터 환소(還素)26909 하여 3년을 마칠까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자식 된 마음은 비록 끝이 없는 것이긴 하나, 병이 있을 때 고기를 먹는 것은 옛날에도 또한 예(禮)가 있었다. 내가 다시 권하게 하고자 하니 이 뜻을 상세히 하라.” 하였다.</p>	<p>○戊申/唐陽尉洪常以書啓曰： 臣近日稍有傷脾之証，飲食不以時，故容色少瘦，今則已愈，居父母之喪，無病而食肉，臣實痛心。昨夕注書之來，強辭未免，臣竊悶焉。御書有疾止復故之教，臣既無病，自今還素，欲終三年。 傳曰：“人子之心雖無窮，有病食肉，古亦有禮，予欲更令勸之，其悉此意。”</p>
<p>성종 284권, 24년</p>	<p>동부승지(同副承旨) 정석견(鄭錫堅)이 치계(馳啓)하기를,</p>	<p>○同副承旨鄭錫堅馳啓曰：“今奉下書</p>

<p>(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11월 22 일(계축) 4번째기사</p>	<p>“지금 받는 하서(下書)에 이르기를, ‘왜주(倭酋) 서너 명을 잡아 가두고 명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저 왜인(倭人)들이 혹은 신당(神堂)에 제사지낸다고 하면서 섬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혹은 고기잡이를 한다고 하면서 도로 나갔으므로 잡아 가둘 수가 없습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정석전은 진실로 잘못된 것이 있다. 애초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을까 염려하였기 때문에 잡아 가두고 명을 기다리라고 한 것인데, 지금 이미 잘못을 저질렀으니 어찌 할 것인가? 속히 올라 오게 하라.”</p> <p>하였다.</p>	<p>云, 倭酋三、四人可拘囚待命, 但彼倭等, 或因祀神堂入島, 或因捕魚還出, 故未能囚之。” 傳曰: “錫堅誠有失矣。 其始慮其如此, 故令拘囚待命, 今既致誤, 爲之奈何? 令速上來。”</p>
<p>성종 284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11월 23 일(갑인) 2번째기사</p>	<p>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김수동(金壽童)이 와서 아뢰기를, “지금 들으니, 정승조 등의 일을 사전(赦前)의 것은 버려두고 사후(赦後)의 것은 시추(時推)로 조율(照律)하라고 하셨다 합니다. 그러나 이 죄는 마땅히 본래의 예(例)에 있지 아니한 것이니 끝까지 다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어찌하여 마땅히 본래의 예에 있지 않다고 하는가?”</p> <p>하였다. 김수동이 아뢰기를, “정승조가 범한 바는 모두 정실(情實)이 없는 일이 아닙니다. 만약 끝까지 국문(鞫問)하여 사실을 캐낸다면 일이 장오(贓汚)에 관계될 것이니, 사전(赦前)의 일이라 하여 버려둠은 마땅하지 않습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만약 끝까지 국문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형신(刑訊)하여야 할 것인데, 이렇게 추운 날 어찌 재상(宰相)에게 형장(刑杖)을 가할 수 있겠는가?”</p> <p>하였다. 김수동이 말하기를, “일이 비록 명백하지 않더라도 만약 중죄(重罪)에 관계된 것이라면 진실로 마땅히 끝까지 국문하여 저죄(抵罪)26919 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정승조</p>	<p>○司憲府掌令金壽童來啓曰: “今聞鄭崇祖等事, 赦前則棄之, 赦後則以時推照律。 然此罪不當在原例, 不可不窮治。” 傳曰: “何以云不當在原例?” 壽童啓曰: “崇祖所犯, 皆非無情之事, 若窮鞫得情, 則事干贓汚, 不宜以赦前而棄之。” 傳曰: “若欲窮鞫, 則須用刑訊, 如此寒日, 豈可刑大臣乎?” 壽童曰: “事雖不明, 若涉重罪, 固當窮鞫抵罪, 況崇祖所犯, 情狀已著, 若以大臣難於刑訊而棄之, 則奸人何所懲乎? 殿下舉一國財賦之權, 付諸崇祖, 而不體委任之隆, 陰爲自利之計, 瘠公肥私, 卽所謂: ‘大夫曰何以利吾家?’ 者也, 請窮鞫抵罪, 懲一警百。” 御書曰: “崇祖之罪已著, 雖不拷問亦難逃</p>

가 범한 바는 정상(情狀)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만약 대신(大臣)이기 때문에 형신(刑訊)하기 어렵다고 하여 버려둔다면 간교(奸狡)한 자들이 어찌 징계될 바가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한 나라의 재부(財賦)를 <담당하는> 권한(權限)을 정승조에게 주셨는데, 위임(委任)한 큰 은혜를 본받지 아니하고 몰래 스스로를 이롭게 할 계책을 꾸며 국가의 재정을 궁핍하게 하고 사익(私益)을 채웠으니, 곧 이른바 ‘대부(大夫)는 말하기를, 「어떻게 하면 나의 집을 이롭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컨대 끝까지 국문하고 저죄(抵罪)하여, 한 사람을 징계함으로써 백 사람을 경계시키도록 하소서.”

하니, 어서(御書)로 이르기를,
 “정승조의 죄는 이미 드러난 것이니, 비록 고문(拷問)하지 않더라도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였다. 김수동이 말하기를,
 “죄상(罪狀)이 이미 드러난 것은 진실로 상교(上教)와 같습니다. 그러나 장오(贓汚)를 범한 바는 사면(赦免)하는 예(例)에 있지 아니하니, 청컨대 사전(赦前)에 범한 바도 아울러서 살피고, 실정을 캐내서 엄하게 징계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장오(贓汚)라고 이르는 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이 준 뇌물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지금 정승조는 다만 착오(錯誤)하였을 뿐이니, 어찌 드러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장오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하였다. 김수동이 아뢰기를,
 “전세(田稅)로 받는 베[布]의 견양(見樣)을 수교하여 행이(行移)할 때, 수교에도 없는 여덟 새·아홉 새·열 새의 면포(綿布)를 차차 승수(升數)를 더하여 짜서 올리라고 하였고, 노비 신공(奴婢身貢)도 또한 견양(見樣)에 의하여 상납(上納)할 일로 같이 기록하여 이문(移文)하였으니, 이는 기망(欺罔)한 것입니다. 인신(人臣)의 죄로서 기망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 정승조는 지위

也。” 壽童曰：“罪狀已著，誠如上教，所犯贓汚，不在赦例，請并按赦前所犯，得情痛懲。” 傳曰：“謂之贓汚者，必受人贈賂也。今崇祖特錯誤耳，豈可以未著之事而謂之贓汚乎？” 壽童曰：“田稅布見樣受教行移時，受教所無八、九、十升綿布，次次加升織造，奴婢身貢亦依見樣上納事，并錄移文，是欺罔也。人臣之罪，莫大於欺罔，而崇祖以位高大臣，甘心故犯，豈無其情？粉同即崇祖之奴也。濫受瓦價緜布一百匹、米一百二十斗，崇祖非不知也，而當安東官囚粉同督徵之時，據粉同妻告狀，佯若不知，或令所燔瓦，從市直質穀，或令爲半生徵，豈無其由而敢如此乎？馬價例給以司贍寺綿布，而乃以濟用監綿布及正布給之，此亦有情，情之所在，或受賂遺，或謀利己，是同歸於贓汚矣。臣等爲此，欲并按赦前而得其情也。” 傳曰：“爾之所啓，大概皆是，然予重待大臣。今當冬寒，豈可刑訊？照律後亦可處之矣。”

	<p>높은 대신으로서 기꺼운 마음으로 고의적으로 범하였으니 어찌 그 정실(情實)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분동(粉同)은 정승조의 종인데 함부로 받은 기와값이 면포(綿布) 1백 필(匹), 쌀 1백 20두(斗)였습니다. 그런데 정승조는 알지 못한 것이 아니었으나 안동(安東)의 관원이 분동을 잡아 가두고 바치기를 독촉할 때를 당하여서는 분동의 처(妻) 〈산비(山非)〉의 고장(告狀)에 의거하여 거짓으로 알지 못하는 체하고, 혹은 구운 기와값을 시가(市價)에 따라 곡식으로 바꿔 주게 하기도 하고, 혹은 반만 생징(生徵)하게 하기도 하였으니, 어찌 아무런 까닭 없이 감히 이와 같이 하였겠습니까? 그리고 말값은 으레 사섬시(司贍寺)의 면포로 주는 것인데도 제용감(濟用監)의 면포와 정포(正布)로 주었으니, 이 또한 정실이 있는 것입니다. 정실이 있는 바에 따라 혹은 너물을 받기도 하고 혹은 자신에게 이익을 남길 것을 꾀하기도 하였으니, 이는 같이 장오(贓汚)로 귀착되는 것입니다. 신 등은 이로써 사전(赦前)의 일을 아울러 살펴서 그 정실을 캐고자 합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그대가 아뢴 바는 대개가 옳다. 그러나 나는 대신을 중하게 대우하고, 지금은 한창 추운 겨울이니 어찌 형신(刑訊)을 가할 수가 있겠는가? 조율(照律)한 뒤에 또한 처치할 수 있을 것이다.”</p> <p>하였다.</p>	
<p>성종 284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11월 24일(을묘) 8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여 대방 부인(帶方夫人) 송씨(宋氏)에게 쌀 40석(碩)을 내려 주게 하였다.</p>	<p>○傳旨戶曹， 賜帶方夫人宋氏米四十碩。</p>
<p>성종 285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12월 3일(계해) 2번째기사</p>	<p>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허침(許琛) 등이 와서 아뢰기를, “정승조(鄭崇祖)가 종의 처(妻)의 고장(告狀)을 알면서도 행문 이첩(行文移牒)26961) 한 죄는 비록 이미 복초(服招)하였다 하더라도 단지 이로써 죄를 정할 수 없는데, 하물며 사유(赦宥) 전으로 논하여 내버려 두는 것이겠습니까?”</p>	<p>○司憲府大司憲許琛等來啓曰：“崇祖知奴妻之狀而行移之罪，雖已服招，不可只以此而定罪，況論以赦前而棄之乎？ 臣等意謂，非但受賂奴主相謀，以</p>

	<p>까? 신 등이 생각하건대, 단지 뇌물(賂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종과 주인이 서로 공모(共謀)하여 와가(瓦價)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장죄(贓罪)의 흔적이 드러났으니, 끝까지 추국(推鞠)하여 실정(實情)을 알아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선가미(船價米)로써 3가(三價)를 제외하면 50여 석이 남아 돌아 나라에 유익(有益)하다고 교묘한 말로 계품(啓稟)하였습니다. 그러나 햅쌀 9백여 석을 훔쳐 주고 오래 묵은 쌀 50석이 남아 도니, 나라에 무슨 이로움이 있겠습니까? 더욱이 또한 이미 창고에 받아 들였던 햅쌀을 주었으니, 이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청탁(請託)을 들어주고, 몽롱하게 계품(啓稟)한 것이 분명합니다. 모물(毛物) 1천여 장을 하루아침에 화매(和賣)하는 데 어떻게 제용감(濟用監)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호조(戶曹)에서 민은(閔崐)으로 하여금 첩보(牒報)하여 화매(和賣)하게 하였으나 민은이 이미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그 후의 관리(官吏)가 품질이 좋은 모물(毛物)을 급급히 화매(和賣)한 것이 반드시 호조(戶曹)의 명령을 듣고 한 것입니다. 세포(稅布)·공포(貢布)의 거칠고 가는 것은 전교(傳敎)를 받아 법(法)을 세웠는데, 정승조(鄭崇祖)가 마음대로 다시 고쳐서 백성들에게 폐해(弊害)를 끼쳤으니, 대저 어떻게 정실이 없다 하겠습니까? 스스로 죄를 면하고자 하여 거짓으로 속이며 자복하지 아니하였으니, 대신(大臣)의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몸소 정원(政院)에 나아가 거짓말을 꾸며대며 발명(發明)하였으니, 이중으로 기망(欺罔)한 것이라 그 죄가 매우 큼니다.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청컨대 아울러 추국(推鞠)하여 조율(照律)하소서.”</p> <p>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대간(臺諫)이 또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p>	<p>瓦價攬歸於己，贓跡已著，不可不窮鞠得情。且以船價米除三價，則剩出五十餘碩，有益於國，巧辭啓稟，然散新米九百餘碩，剩久陳之，米五十餘碩，於國有何益乎？況亦以已納倉，新米給之，此必聽人請托，朦朧啓稟明矣。毛物一千餘張，一朝和賣，豈濟用監所可擅爲，戶曹令閔崐牒報和賣，豈既不從，則其後官吏以品好毛物，急急和賣，必聽戶曹之令而爲之也。稅布貢布麤細受敎立法，而崇祖擅自更改，貽弊於民，夫豈無情？欲免己罪，變詐不服，非大臣之事，況親詣政院，詐飾發明，重爲欺罔，其罪甚大，不可不徵，請并鞠照律。”不聽。臺諫又啓，不聽。</p>
<p>성종 285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12월 7일</p>	<p>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하남군(河南君) 정승조(鄭崇祖)와 전 참판(參判) 김자정(金自貞)은 전임 호조(戶曹)로서 제용감(濟用監)에서 모물(毛物)을 무역(貿易)할 때 단지 31장</p>	<p>○義禁府啓：“河南君鄭崇祖、前參判金自貞，前任戶曹，濟用監毛物貿易時，只市準三十一張耳，其餘一千一百</p>

<p>(정묘) 3번째기사</p>	<p>(張)을 시준(市準)26971) 하였을 뿐이고, 그 나머지 1천 1백 3장은 시준(市準)하지 아니하고 품질이 좋은 모물(毛物)을 함부로 화매(和賣)하였는데, 실정을 알면서도 검거(檢擧)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계품(啓稟)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또 사선가(私船價)는 《대전(大典)》에 의거하여 마땅히 묵은 곡식을 써야 하는데, 새 곡식을 제급(題給)하고 거짓으로 나라에 유익(有益)하다고 아뢰었으니, 죄율(罪律)이 정승조(鄭崇祖)는 수범(首犯)으로 결장(決杖) 1백 대에 도(徒) 3년에 해당되고, 김자정(金自貞)은 수종(隨從)으로 결장 90대에 도 2년 반에 해당되며, 아울러 모두 고신(告身)26972) 을 추탈(追奪)해야 합니다. 김여(金興)는 전임(前任) 제용감 부정(濟用監副正)으로서 관장(管掌)하던 모물(毛物)을 벌레가 먹어 훼손(毀損)되고, 털이 빠졌다고 칭탁하여 호조(戶曹)에 보고하고 화매(和賣)하여, 흥리인(興利人) 권척(權惕)으로부터 웅피 온혜(熊皮溫鞋) 1, 백자(栢子) 3두(斗), 대구어(大口魚) 5미(尾), 구지금(仇之金)으로부터 유반(鑰盤) 2, 호피(狐皮) 10장, 생선(生鮮) 8미(尾), 이대(李大)로부터 유선(鑰鑿) 1, 생선 7미, 이수산(李守山)으로부터 유시(鑰匙) 10개(箇), 생선 5미, 유막지(劉莫知)로부터 아청 단자 감토(鴉靑段子甘吐) 1, 면주(綿紬) 1필(匹), 생선 4미, 중동(仲同)으로부터 여이엄 소제 단자(女耳掩所製段子)·이피(狸皮)·호피(狐皮) 아울러 4백 40장을 받았는데, 값을 헐하게 화매(和賣)한 죄는 계장(贓計)26973) 하면 13관(貫) 10문(文)이 되니, 율(律)이 장(杖) 1백 대와 도(徒) 3년, 그리고 고신(告身)을 모두 추탈(追奪)하고, 장안(贓案)26974) 에 기록하는 데 해당합니다.”</p> <p>하니, 명하여 영둔녕(領敦寧) 이상과 정부(政府)에 보이게 하였다.</p>	<p>三張，不市準，以品好毛物汎濫和賣，而知情不檢擧，又不啓稟，且私船價依大典當用陳穀，而以新穀題給詐啓云，有益於國罪，律該崇祖爲首，決杖一百、徒三年；自貞隨從，決杖九十、徒二年半，竝告身盡行追奪。金興前任濟用監副正，所管毛物，托以蟲損毛禿，報戶曹和賣，而受興利人權惕處熊皮溫鞋一、栢子三斗、大口魚五尾；仇之金處鑰盤二、狐皮十張、生鮮八尾；李大處鑰鑿一、生鮮七尾；李守山處鑰匙十箇、生鮮五尾；劉莫知處鴉靑段子甘吐一、綿紬一匹、生鮮四尾；仲同處女耳掩所製段子，而狸皮、狐皮并四百四十張，價歇和賣罪，計贓十三貫一十文，律該杖一百、徒三年，告身盡行追奪，錄贓案。” 命示領敦寧以上及政府。</p>
<p>성종 285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12월 7일 (정묘) 4번째기사</p>	<p>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허침(許琛) 등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허계(許誡) 등이 와서 아뢰기를, “무릇 옥사(獄事)를 청리(聽理)하는 관리(官吏)가 너무 심각(深刻)한 데 힘써서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은 진실로 공정한 것이 아니</p>	<p>○司憲府大司憲許琛等、司諫院大司諫許誡等來啓曰：“凡聽獄之官，務要深刻，故入人罪，固非公也，陰懷私意，阿縱大罪，亦非直道也。今義禁府推</p>

며, 몰래 사사로운 뜻을 품고 큰 죄[大罪]에 대해 법을 굽히는 것 또한 올바른 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의금부(義禁府)에서 정승조(鄭崇祖)가 선가(船價)를 새 곡식으로 함부로 준 죄를 추국(推鞠)하면서 먼저 선주(船主)에게 묻지 아니하고 갑자기 정승조(鄭崇祖) 등을 형신(刑訊)할 것을 청하였으니,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전하(殿下)께서도 모든 옥사(獄事)를 신중히 심의하여 비록 미천(微賤)한 신하라 할지라도 차마 가볍게 고신(拷訊)을 쓰지 아니하시는데, 더욱이 대신(大臣)으로 불리는 자이겠습니까? 율(律)에 팔의(八議)26975)의 사람을 고신(拷訊)함은 합당하지 못하므로, 여러 사람의 증거에 의거하여 죄를 정한다는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부(禁府)에서 어찌 전하(殿下)의 뜻을 알지 못하고 율문(律文)의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선주(船主)에게 묻지 아니한 까닭은 청탁[請囑]한 실정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서이며, 정승조를 형신할 것을 청한 까닭은 전하의 은명(恩命)이 있을 것을 헤아린 것입니다. 그 사사로움을 품고 법을 굽힌 자취가 이미 드러났으니, 이 한가지 일에 의거하여 나머지를 유추(類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전하의 위임(委任)하신 뜻이 없으니, 청컨대 그들을 추국(推鞠)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전교(傳敎)하기를,

“선가(船價)에 있어서는 일에 관계된 사람이 많으니, 어떻게 모두 청탁[請囑]하였겠는가? 그리고 이와 같이 몹시 추운 때에 모두 형신(刑訊)할 수는 없다. 지금 조율(照律)한 죄를 살펴보건대, 장 1백 대에 도(徒) 3년에 이르렀는데, 비록 서인(庶人)의 죄라 하더라도 어찌 이보다 더하겠는가? 내가 마땅히 짐작하여 조처(措處)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대간(臺諫)이 또 아뢰기를,

“대죄(大罪)를 논단(論斷)함에 있어서 반드시 실정을 밝혀야 하는 것인데, 어찌 일에 관계된 사람을 형신(刑訊)하는 것이 어렵다 하여 끝까지 추국(推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전하께서 정승조(鄭崇祖)를 불쌍히 여기서

鞫鄭崇祖，濫給船價新穀之罪，而不先問船主，遽請刑訊崇祖等，是何意也？殿下欽恤庶獄，雖微臣不忍輕用拷訊，況號爲大臣者乎？律有八議之人不合拷訊者，據衆證定罪之文，禁府豈不知殿下之意、律文之旨乎？其所以不問船主者，恐露請囑之情也；其所以請刑崇祖者，料殿下之有恩命也。其懷私阿縱之迹已著，據此一事，餘可類推，殊無殿下委任之意，請鞫之。”傳曰：“船價事干人多，豈皆請囑？如此沍寒，不可盡行刑訊。今觀照律，罪至於杖一百、徒三年，雖庶人之罪，何以加此？予當斟酌處之。”臺諫又啓曰：“論斷大罪，必須得情，豈可以事干人刑訊爲難而不窮鞫耶？是殿下哀憐崇祖，欲不露罪犯也。何惜罪人而屈法伸恩耶？船主之有罪無罪，不可不辨，且毛物事干，非徒所供各異，閔豈言端已發，窮推則得情不難，如得其情，則崇祖之罪，豈止於詐不以實而已乎？前日申靜差帖僞造事，在赦前而以欺罔天聰，至伏重誅，今崇祖挾私蠹國，罪重於靜，而欺罔之罪，與靜均，乞并照欺罔之律參斷焉。禁府懷私阿縱之罪，

서 범한 죄를 드러나지 않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罪人)을 가엾게 여겨 법(法)을 굽혀가면서 은혜를 베풀겠습니까? 선주(船主)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분변(分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모물(毛物)은 일에 관계된 사람들의 공초(供招)가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민은(閔聃)이 이미 말의 단서[言端]를 발하였으니, 끝까지 추국(推鞠)하면 실정을 밝히기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 실정을 밝힌다면 정승조(鄭崇祖)의 죄가 어찌 사불이실률(詐不以實律)에 그치겠습니까? 전일에 신정(申澣)은 차첩(差帖)26976)을 위조(僞造)하였는데 일이 사유(赦宥) 전에 있었음에도 천총(天聰)을 기망(欺罔)하였다 하여 중벌로 복주(伏誅)되기에 이르렀었습니다. 지금 정승조는 사사로움을 끼고 나라를 좀먹었으니, 죄(罪)가 신정(申澣)보다 무거우며, 기망(欺罔)한 죄는 신정과 똑같습니다. 바라건대 기망(欺罔)의 율(律)에 비추어 상세히 논단(論斷)하소서. 그리고 금부(禁府)에서 사사로움을 품고 법을 굽힌 죄 또한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어서(御書)로 이르기를,
 “대저 신하(臣下)의 임금에 대한 관계와 종[奴]의 주인에 대한 관계는 사체(事體)가 한 가지이다. 종이 그 주인을 속였는데, 주인으로서 노하지 않는 자가 있겠는가? 신하의 임금에 대한 관계 또한 그러한 것이니, 지금 하남군(河南君)이 죄를 지었다면, 내가 어찌 노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인주(人主)는 노하였다고 해서 사람을 해치지 아니하고, 기쁘다고 해서 사람에게 은혜롭게 하지 않는 것이니, 비록 한낱 소민(小民)이라 하더라도 망령되게 죽일 수 없는 데, 하물며 일찍이 대신(大臣)으로 대접하던 사람을 이제 재화(財貨) 때문에 죽이겠는가? 경 등은 신정(申澣)을 〈정승조(鄭崇祖)〉에 비교하지만, 이는 내가 아는 바가 아니다. 지금 사불이실률(詐不以實律)을 참조하건대, 기망(欺罔)한 뜻이 진실로 그 가운데에 있다 하겠는데, 경들이 거듭 그 율(律)을 엄하게 하고자 하니, 장차 사형(死刑)에 두겠는가? 또 금부(禁府)에서 사사로움을 품

亦不可不治。” 御書曰：“大抵臣之於君，奴之於主，事體一也。 奴欺其主，而主有不怒者乎？ 臣之於君亦然。 今河南君之作罪，予何不怒之哉？ 然人主不以怒傷人，不以喜恩人，雖一小民尚不可妄殺，況曾以大臣待之，而今以財貨殺之乎？ 卿等以申澣比之，此非予所知也。 今照詐不以實欺罔之意，實在其中，卿等欲更深其律，將置死刑乎？ 且禁府懷私阿縱之狀，予庸暗而不知歟？ 禁府堂上非一人，豈皆挾私欺我耶？ 今若畏臺諫之論，而務要深刻，恐有後弊。”

	<p>고 법을 굽혔다는 정상을 내가 어리석어 알지 못한다는 것인가? 금부 당상(禁府堂上)은 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모두 사정(私情)을 끼고 나를 속였겠는가? 지금 만약 대간(臺諫)의 논박(論駁)을 두려워하여 너무 각박한 데 힘쓴다면 후일에 폐단(弊端)이 있을까 염려된다.” 하였다.</p>	
<p>성종 285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12월 9일 (기사) 1번째기사</p>	<p>명하여 무신(武臣)으로서 활을 능숙하게 쏘는 자를 가리게 하고, 다섯 편으로 나누어 후원(後苑)에서 사후(射侯)26977) 하게 하였다. 또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 육조(六曹)의 참판(參判) 이상,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입직(入直)한 도총관(都總管), 병조(兵曹)의 여러 장수(將帥), 승정원(承政院)·홍문관(弘文館)에 명하여 활쏘는 장소에 나아가게 하였으며, 술과 음악을 내려 먹이게 하였다. 사후(射侯)하여 1등을 차지한 유담년(柳聘年)에게 숙마(熟馬) 1필, 2등을 차지한 박원종(朴元宗)에게 아다개(阿多介)26978) 1좌(座), 3등을 차지한 이권(李筵)에게 활 1장(張)을 내려 주었다.</p>	<p>○己巳/命擇武臣能射者分五耦，射侯于後苑，又命領敦寧以上、議政府、六曹參判以上、漢城府判尹、入直都總管、兵曹諸將、承政院、弘文館赴射所，賜酒樂饋之。射侯居首柳聘年賜熟馬一匹，次朴元宗阿多介一座，次李筵弓一張。</p>
<p>성종 285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12월 15일(을해) 1번째기사</p>	<p>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술자리를 베풀어 야인(野人) 소우대(所亏大) 등 10인을 먹이고 하교하기를, “너희들이 북정(北征)할 때에 공로(功勞)가 있었으므로,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하고, 인하여 물건을 차등 있게 내려 주었다.</p>	<p>○(己) [乙] 亥/上御宣政殿置酒，饋野人所亏大等十人，教曰：“汝於北征時有功勞，予甚嘉之。”仍賜物有差。</p>
<p>성종 285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12월 19일(기묘)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집의(執義) 이균(李均)이 아뢰기를,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여러 옥사(獄事)와 여러 삼가야 할 일을 문왕(文王)은 감히 알리고 하지 아니하였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임금이 번거롭고 줌스러우면 신하(臣下)들이 게을러져서 만사(萬事)가 실패할 것이다.’ 하였으니, 임금은 마땅히 대강(大綱)을 총괄(總括)할 뿐인데, 만약 임시로 아문(衙門)을 설치하면 비록 자질구레한 지필(紙筆)의 수(數)라 하더라도 반드시 품지(稟旨)하고 써야 할 것이니, 너무 잘단 데에 손상됨이 있을까 두렵습니다.”</p>	<p>○御經筵。講訖，執義李均啓曰：“《書》曰：‘庶獄庶慎，文王罔敢知于茲。’又曰：‘元首叢脞哉，股肱惰哉，萬事墮哉。’爲元首者，當總大綱而已，如權設衙門，則雖瑣屑紙筆之數，必稟旨而用之，恐傷於猥細。”上問左右。領事李克培對曰：“以大體言之則然矣。古今事異，因時制宜耳。”特</p>

	<p>하니, 임금이 좌우에 물었다. 영사(領事) 이극배(李克培)는 대답하기를, “대체(大體)로써 말한다면 그렇지만 고금(古今)의 일은 다르니, 때에 따라 마땅하게 해야 합니다.”</p> <p>하고, 특진관(特進官)26990) 이철건(李鐵堅)은 말하기를, “아주 작은 일도 모두 전교(傳敎)를 받들어야 한다면 잔달게 될 듯합니다.”</p> <p>하고, 이균(李均)은 말하기를, “만약 작은 일에 집착하게 되면, 또한 상청(上聽)을 번거롭게 하니, 대체(大體)에 어떠하겠습니까?”</p> <p>하고, 이극배(李克培)는 말하기를, “횡간(橫看)에 있어서는 아될 필요가 없지만, 임시로 설치한 아문(衙門)에서 시기에 임하여 계품(啓稟)하는 것 또한 부득이(不得已)한 것입니다.”</p> <p>하고, 이철건(李鐵堅)은 말하기를, “비록 임시로 설치한 아문(衙門)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해조(該曹)가 있으니, 상달(上達)할 필요가 없습니다.”</p> <p>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인군(人君)이 자질구레한 일에 일일이 알려고 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다. 그러나 임시로 설치한 관사(官司)는 호조(戶曹) 또한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반드시 아된 후에 시행해야 한다. 또 조종조(祖宗朝)에서는 어떻게 하였는지 알지 못하겠다.”</p> <p>하였는데, 이극배가 말하기를, “조종조(祖宗朝)에서도 그러하였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일에 따라 아되는 것이 어찌 해롭겠는가?”</p> <p>하였다. 정언(正言) 유승조(柳崇祖)가 아뢰기를, “올해는 흉년[凶荒]이 너무 심하게 들어서 백성들이 많이 굶주리는데, 경기</p>	<p>進官李鐵堅曰：“小小事亦皆承傳，似爲細屑。” 均曰：“如膠末升合，亦煩上聽，於大體何如？” 克培曰：“在橫看則不必啓也。 權設衙門，則臨時啓稟，亦不得已也。” 鐵堅曰：“雖權設衙門，自有該曹，不必上達。” 上曰：“人君於細事不宜一一知之。 然權設司，則戶曹亦不得擅必啓而後行之。 且未知祖宗朝何以爲之。” 克培曰：“祖宗朝亦然。” 上曰：“隨事啓之何妨？” 正言柳崇祖啓曰：“今年凶荒太甚， 民多飢餓，京畿爲甚。 臣計以爲，凡祭享供上所差外，其餘租稅，各其邑收納，以備明春賑窮之資。” 上顧問左右。 克培對曰：“今年凶歉，民不聊生，固當預爲賑恤之策。 然田稅國用所需，而收入其邑，不可輕議。” 上曰：“此爲民也，其令戶曹計京倉米穀多寡，然後更議之。” 崇祖又啓曰：“救荒鹽漕運給民，國家厚意，然而轉輸失時，或值水合，不能行舟，則中道而止，遂令諸邑來受之，民皆憚於道途之勤、贏糧之苦， 其所得不能償其所費，故委諸勸農、里正之手，而有終不受去者，然其徵價時，鹽一斗準租二斗，名爲救荒，</p>
--	---	---

(京畿)가 심합니다. 신이 헤아려 생각하건대, 무릇 제향(祭享)·공상(供上)26991) 에 올리는 것 외에 그 나머지 조세(租稅)는 각각 그 고을에서 수납(收納)하여 명년(明年) 봄의 곤궁(困窮)을 진구(賑救)26992) 하는 밑천에 대비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으니, 이극배(李克培)가 대답하기를, “올해는 흉년(凶年)이 들어 백성들이 마음놓고 살 수가 없으니, 진실로 진휼(賑恤)할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세(田稅)는 국용(國用)에 소요되는 것이니, 그 고을에서 거두어 들이는 것은 가볍게 의논할 수가 없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백성을 위한 것이다. 호조(戶曹)로 하여금 경창(京倉)26993) 에 미곡(米穀)이 많은지 적은지 헤아려 본 후에 다시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유송조(柳崇祖)가 또 아뢰기를, “구황염(救荒鹽)을 조운(漕運)하여 백성에게 주는 것은 국가(國家)의 너그러운 뜻입니다. 그러나 운반[轉輸]하는 시기를 잃어 혹 얼음이 얼 때를 당해 배가 가지 못하고 중도(中道)에서 멈추게 되면, 마침내 여러 고을로 하여금 와서 받게 하니, 백성들이 모두 길에서의 수고로움과 양식을 메고 가는 괴로움을 꺼려하며, 그 소득(所得)이 비용(費用)을 충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권농(勸農)·이정(里正)의 손에 위임(委任)하였으나, 끝내 받아 가지 않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값[價]을 징수(徵收)할 때 소금 한 말을 조(粗)26994) 두 말에 준거(準據)하니, 이름은 구황(救荒)이나 백성들은 실제로 폐해(弊害)를 받습니다. 청컨대 신축년(26995) 의 예와 같이 소금 한말에 조(粗) 한 말을 수납(收納)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이극배(李克培)가 말하기를, “특별히 소금뿐만이 아닙니다. 신이 전에 감사(監司)로 보임(補任)되어 백성의

民受實害，請如辛丑年例，鹽一斗準租一斗收納。” 克培曰：“非特鹽也，臣前任監司，備察民瘼，凡諸邑倉庫米穀，猶吏用事濫收，類如是，且給鹽乃爲民救荒也，不必還徵其價。” 上曰：“令戶曹議便否。” 克培又啓曰：“人君當與民同憂樂。今者凶荒荐臻，百姓啼飢，此正憂民憂之時也。會禮宴，君臣同權，安有民有飢色，而君臣同樂之理乎？請停之。” 上曰：“卿言是也。其停之。”

	<p>고통을 두루 살펴보았는데, 무릇 여러 고을 창고(倉庫)의 미곡(米穀)을 교환한 아전[猾吏]들이 용사(用事)26996 하여 외람되게 거두는 짓거리가 이와 같았습니다. 또 소금을 주는 것은 백성을 구황(救荒)하기 위한 것이니, 도로 그 값을 징수(徵收)할 필요가 없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호조(戶曹)로 하여금 편부(便否)를 의논하게 하라.”</p> <p>하였다. 이극배(李克培)가 또 아뢰기를, “인군(人君)은 마땅히 백성과 더불어 근심과 즐거움을 함께 해야 하는데, 지금 흉년[凶荒]이 잇달아 들어 백성(百姓)이 굶주려 울부짖으니, 지금이 바로 백성의 근심을 걱정할 때입니다. 회례연(會禮宴)은 군신(君臣)이 함께 즐거워 해야 하는 것이니, 어찌 백성의 굶주린 낫빛이 있는데 군신(君臣)이 함께 즐거울 리가 있겠습니까? 청컨대 정지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卿)의 말이 옳다. 정지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성종 285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12월 20일(경진) 1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특진관(特進官) 홍흥(洪興)이 아뢰기를, “충청도(忠淸道) 태안군(泰安郡)의 안파사(安波寺)에서 해마다 수륙재(水陸齋)26999) 를 베푸는 것은 조전선(漕轉船)이 항해[利涉]하며 편안히 갈 수 있도록 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미(供米)27000) 를 여러 고을에 나누어 정합니다. 하지만 도내(道內)의 주군(州郡)이 모두 견실(堅實)하지 못하여 왜인(倭人)의 연향(宴享)에 드는 비용도 오히려 갖추어 바칠 수 없는데, 하물며 허황[荒誕]된 일로 백성에게 폐해(弊害)를 끼치는 것이 옳겠습니까? 청컨대 그것을 혁파(革罷)하소서.”</p> <p>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었다. 영사(領事) 윤호(尹壕)가 대답하기</p>	<p>○庚辰/御經筵。講訖，特進官洪興啓曰：“忠淸道泰安郡安波寺，每歲設水陸齋者，祈漕轉船利涉安行梁也。其供米分定于諸邑，道內州郡皆不實，倭人宴享所需，尙不能備納，況以荒誕之事，貽弊於民，可乎？請革之。”上顧問左右。領事尹壕對曰：“革之則果無弊矣。”掌令金壽童啓曰：“其費之大小不足論。然無益之事，革之爲便。”上曰：“漕運時，民多溺死，故設水陸</p>

	<p>를, “폐지하면 과연 폐해(弊害)가 없을 것입니다.” 하자, 장령(掌令) 김수동(金壽童)이 아뢰기를, “그 비용(費用)이 많고 적고는 족히 논할 바가 못됩니다. 그러나 이롭지 못한 일을 폐지하는 것은 옳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조운(漕運)할 때 백성이 많이 익사(溺死)하기 때문에 수륙재(水陸齋)를 베풀어 비는 것이다. 그러나 항해[利涉]는 이에 달려 있지 아니하고, 바로 배를 조종하는 사람이 삼가고 삼가지 않는 것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을 뿐이다. 그런데 수륙재를 베푸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겠다.” 하니, 김수동(金壽童)이 말하기를, “상교(上敎)가 매우 함당합니다. 단지 곡식만 허비(虛費)할 뿐만 아니라 이해(利害)에 관계됨이 없습니다.” 하였다. 홍흥(洪興)이 또 아뢰기를, “신이 감사(監司)로 있을 때 보은현(報恩縣) 속리사(俗離寺)의 중[僧]이 본사(本寺)의 전세(田稅)를 거두면서 함부로 외람된 짓을 행하므로, 신이 장차 형신(刑訊)하고자 하여 사유(事由)를 갖추어 치계(馳啓)하였는데, 도망하여 숨고 나타나지 아니하니, 이 중의 무리가 국법(國法)을 업신여기는 것이 매우 심합니다. 《대전(大典)》의 형전(刑典)에 중을 가두지 말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 무리들이 악행(惡行)을 저지르면서도 뉘우치지 아니하고 이에 이르렀으니, 《대전(大典)》의 이 조문(條文)을 삭제[削除]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하여 속리사(俗離寺)의 주지(住持)를 혁파(革罷)한다면 다른 절의 주지(住持)들 또한 반드시 스스로 근신(謹愼)할 것입니다.” 하였는데, 정언(正言) 이세인(李世仁)이 아뢰기를, “중의 무리를 사대부(士大夫)의 예로 대접할 수는 없으니, 청컨대 감사(監司)</p>	<p>以祈之。然其利涉，不在於此，正在操舟之人謹否如何耳。設水陸，未知始自何時。”壽童曰：“上敎甚當。非徒費穀，無關於利害。”興又啓曰：“臣爲監司時，報恩縣俗利寺僧收本寺田稅時，多行汎濫，臣將欲刑訊，具由馳啓，而逃匿不見，此僧徒輕蔑國法甚矣。《大典》刑典，有僧人勿囚之語，故此輩長惡不悛，以至於此。《大典》此條削去何如？今因此革罷俗利寺住持，則他寺住持亦必自慎矣。”正言李世仁啓曰：“僧徒不可以士大夫之例待之也。請令監司勿啓處置。”上曰：“《大典》不宜輕改，雖啓聞囚禁，有何不及乎？”壽童曰：“《大典》未便處，固宜改正。況《續錄》今方改正乎？俗利寺住持，又非《大典》所載，今因其汎濫，成罪革之，且寺社田漸以屬公何如？”上曰：“痛絕左道，予之大意，然古今所未能盡革也。若有甚者，則監司固宜治罪，然事在赦前，可棄也。”壽童曰：“聖上不崇左道，臣等非不知也，安得盡誅沙門？但因其有罪，以漸而革，則位田亦從此而屬公矣。此扶持正道之一端也。”興曰：</p>
--	---	---

	<p>로 하여금 아뢰지 말고 처치(處置)하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대전(大典)》을 가볍게 고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다. 비록 계문(啓聞)하여 수금(囚禁)한다 하더라도 어찌 미치지 못하겠는가?”</p> <p>하자, 김수동(金壽童)이 말하기를,</p> <p>“《대전(大典)》의 미편(未便)한 곳은 진실로 개정(改正)해야 마땅합니다. 더욱이 《속록(續錄)》을 지금 바야흐로 개정(改正)하는 데 있어서이겠습니까? 속리사(俗離寺)의 주지(住持)는 또 《대전》에 기재된 바가 아니니, 이제 그 함부로 외람된 것을 한 것으로 인하여 죄를 구성하여 혁파(革罷)하고, 또 사사전(寺社田)27001은 점차 속공(屬公)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p> <p>“바르지 못한 도(道)를 엄하게 금하는 것이 나의 큰 뜻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완전히 혁파하지 못하였었다. 만약 심한 자가 있으면 감사(監司)가 죄를 다스리는 것이 진실로 마땅하나, 일이 사유(赦宥) 전에 있었으니, 내버려 두는 것이 옳다.”</p> <p>하니, 김수동(金壽童)이 말하기를,</p> <p>“성상(聖上)께서 바르지 못한 도(道)를 숭상하지 아니하심을 신 등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어떻게 사문(沙門)27002을 모두 주멸(誅滅)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그 유죄(有罪)한 것으로 인하여 점차 혁파한다면, 위전(位田)27003 또한 이에 따라 속공(屬公)하게 될 것이니, 이것은 정도(正道)의 일단(一端)을 부지(扶持)하는 것입니다.”</p> <p>하였다. 홍흥(洪興)이 말하기를,</p> <p>“지금 보건대, 중의 무리들이 하는 일이 불법(不法)한 것이 많은데, 이는 국가(國家)를 기망(欺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도(道)를 위하는 자 또한 마땅히 이와 같아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성상(聖上)께서 비록 숭상하여 받드</p>	<p>“今觀僧徒所爲多不法，此非徒欺罔國家，爲其道者，亦不當如是也。上雖不崇奉，外間之人豈能盡知上意也？且此寺逐年收納鹽數甚多，皆令民輸轉，上豈盡知其弊乎？此寺僧汎濫事，雖在赦前，畢推後在處之如何耳。”上曰：“若畢推取服，則雖宥旨前事，法還俗矣。”壽童曰：“僧徒汎濫者，守令雖欲治罪，不得囚禁，故或致逃匿，未能得情耳。”世仁曰：“《大典》所載，事干國家，則改之誠難，此條無所關焉，削去何如？”上曰：“爲一僧人汎濫者，遽改《大典》，可乎？在奉法者，能盡其道而已。”世仁又啓曰：“經筵講論，利益甚多。近來久廢經筵，臣意以爲不可。”上曰：“爾言當矣。但因身痾耳，非厭倦而然也。”世仁又啓曰：“鄉射之禮，三代所重，賢者則與焉，否則不與焉，鄉人以此爲榮辱，今廢不行，甚不可。請申明行之。”上曰：“可。”特進官成倪啓曰：“世子書筵，《大學集註》亦令進講，臣意以爲，集註汗漫，群議異旨，苟非大通文理者，不能撮其歸趣也。請勿講集註。”上曰：“可。”</p>
--	---	--

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외간(外間)의 사람들이 어떻게 성상의 뜻을 모두 알겠습니까? 또 이 절에서 해마다 수납(收納)하는 소금의 수량이 몹시 많아, 모두 백성들로 하여금 운반하게 하는데, 성상께서 어떻게 그 폐해(弊害)를 다 아시겠습니까? 이 절의 중들이 함부로 외람되게 한 일이 비록 사유(赦宥) 전의 것이라 하더라도 추국(推鞠)을 마친 후에 어떻게 조치(措處)하는가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추국을 마치고 복초(服招)를 얻어내었다면, 비록 유지(有旨) 이전의 일이라 하더라도 법으로는 환속(還俗)시켜야 할 것이다.”

하였다. 김수동(金壽童)이 말하기를,
“중의 무리로 함부로 외람된 짓을 한 자는 수령(守令)이 비록 죄를 다스리고자 하더라도 수금(囚禁)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혹 도망쳐 숨기도 해서 실정을 밝혀 낼 수가 없습니다.”

하였는데, 이세인(李世仁)이 말하기를,
“《대전》에 기재된 바 일이 국가(國家)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고치는 것이 진실로 어렵겠지만, 이 조문(條文)은 관계된 바가 없으니, 삭제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중 하나가 함부로 외람된 짓을 하였다 하여 갑자기 《대전》을 고치는 것이 옳겠는가? 법(法)을 받드는 자가 그 도리를 다하는 데 달려 있을 뿐이다.”

하였다. 이세인이 또 아뢰기를,
“경연(經筵)의 강론(講論)은 이익됨이 매우 많은데, 근래에 오랫동안 경연(經筵)을 폐(廢)하셨으니, 신은 불가(不可)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합당하다. 단지 고질병[身痼]으로 인해서였을 뿐 싫증이 나서

【史臣曰：“洪興，應之弟也。性方嚴正直人，不敢干以私。應嘗置折簡於座，見興來匿之，興所至有不便之事，必祛後已，故衆皆憚之。”】

	<p>그러한 것은 아니었다.” 하였다. 이세인이 또 아뢰기를, “향사례(鄉射禮)는 3대(三代)27004) 에서 소중하게 여긴 것으로서, 어진 자는 참여시키지만, 어질지 못한 자는 참여시키지 아니하였으니, 향인(鄉人)들이 이로써 영욕(榮辱)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폐(廢)하고 거행(舉行)하지 아니하니, 매우 불가(不可)합니다. 청컨대 거듭 밝혀서 거행하소서.”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가(可)하다.” 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성현(成僎)이 아뢰기를, “세자(世子)의 서연(書筵)에서 《대학집주(大學集註)》를 또한 진강(進講)하게 하는데, 신이 생각하건대, 집주(集註)는 한만(汗漫)해서 여러 사람이 의논하는 바 뜻이 다르므로, 진실로 문리(文理)에 크게 통달(通達)한 자가 아니면 그 귀취(歸趣)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집주를 강(講)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可)하다.” 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홍흥(洪興)은 홍응(洪應)의 아우인데, 성품(性品)이 방엄(方嚴)하고 정직(正直)하여 사람들이 감히 사사롭게 범하지 못하였다. 홍응(洪應)이 일찍이 자리에 서간[折簡]을 두었는데, 홍흥이 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감추었다. 홍흥은 이르는 곳마다 불편(不便)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물리친 후에야 그만두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그를 꺼려하였다.” 하였다.</p>	
<p>성종 285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12월 21일(신사) 4번째기사</p>	<p>제도 관찰사(諸道觀察使)에게 하서(下書)하기를, “백성이 굶주리는 것을 자신이 그들을 굶주리게 한 것으로 여기고, 백성으로 하여금 각기 그 생업(生業)을 편안하게 하여 위로 부모(父母)를 섬기는 데 족하고, 아래로 처자(妻子)를 양육하는 데 족하며, 풍년이 들어 평생 동안 배불</p>	<p>○下書諸道觀察使曰：“視民之飢，由己飢之，使百姓各安其業，仰足以事父母，俯足以育妻子，樂歲終身飽，凶年免於死亡，此乃帝王之政也。今年水</p>

	<p>리 먹고, 흉년(凶年)이 들어도 죽는 것을 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제왕(帝王)의 정사(政事)이다. 올해는 장마와 가뭄이 서로 잇달아 곡식[年穀]이 여물지 못하여 흉년(凶年)이 심해서 백성이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 까닭을 추구[推原]해 보면 진실로 나의 소치(所致)이다. 제도(諸道)에서 실농(失農)하였으니, 주군(州郡)에서 흉년에 대비하는 정사(政事)를 진실로 미리 마련해 두었다가, 봄철에 진구(賑救)할 때를 기다려 필부 필부(匹夫匹婦)로 하여금 모두 부양할 수 있어서 굶어 죽는 사람을 없게 한 후에야 내 뜻에 적합할 것이다. 경은 수령(守令)들과 더불어 무릇 황정(荒政)27011)에 관계된 일이라면 마음과 힘을 다하여 힘써 십분 포치(布置)해서, 어느 고을 어느 면(面)의 몇 호(戶)가 실농(失農)하여 지금 이미 먹지 못하고 있으므로 마땅히 먼저 진대(賑貸)해야 하며, 어느 고을 어느 면의 몇 호가 다른 고을에 비해서 조금 낫지만 또한 어느 달 어느 날부터 진대(賑貸)해야 하며, 어느 고을이 비록 실농(失農)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풍년이 들지는 아니하였으므로 마땅히 언제부터 진대해야 하며, 어느어느 고을이 농사가 풍년이 들었으므로 진급(賑給)할 필요가 없으며, 모맥(牟麥)이 성숙(成熟)되기 이전이니 어느어느 고을의 백성들은 마땅히 창고(倉庫)의 곡식 몇 석을 써서 진대해야 하며, 바야흐로 경작[耕稼]하며 농사에 힘써야 할 시기에 먹을 양식은 마땅히 일이 한가한 날보다 배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그 정도를 같이 헤아려 갖추어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p>	<p>旱相仍，年穀不登，凶歉之至，民不堪苦，推原其故，實予所召，諸道失農，州郡備荒之政，固當預爲之舉，待春賑救，使匹夫匹婦，皆得有養，無有道殍，然後可合予意。卿與守令，凡干荒政，務要罄竭心力，十分布置，某邑某某面幾戶失農，今已絕食，當先賑貸，某邑某某面幾戶比他稍稔，然亦當自某月日賑貸，某某邑雖不失農，未至豐登，宜自某時賑貸，某某邑農事豐登，不須賑給，其牟麥未及成熟前，某某邑之民，當用倉穀幾石以賑貸，方耕稼力農之時，口糧當倍於務閒之日，并加計度，開具以啓。”</p>
<p>성종 285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12월 21일(신사) 5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금년에 백성들이 굶주리는 것은 곡식을 저축한 자가 대개 적기 때문이다. 무릇 환상(還上)27012)에 있어서 허약(虛弱)한 자는 관차(官差)에게 위협을 받아 먼저 바치고, 강성(強盛)한 자는 고의적으로 세월(歲月)을 지체하며 행여 건감(蠲減)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올해는 지극한 흉년이 들었으니, 그 건감하는 일을 호조(戶曹)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p>	<p>○傳于承政院曰：“今年民飢，儲穀者蓋寡。凡還上，弱者刦於官差，而先納强者，故淹歲月，幸希蠲減，然今年至凶，其蠲減之事，令戶曹議啓。”承旨等啓曰：“前此減久遠還上而已，無有減當年還上也。”傳曰：“勿論往今</p>

	<p>하였는데, 승지(承旨) 등이 아뢰기를, “이보다 전에는 오래 된 환상(還上)만 견감해 주었을 뿐 그해의 환상을 견감해 준 적은 없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지난해 올해를 논하지 말고, 단지 호조(戶曹)로 하여금 견감해 줄 것을 상의(商議)하도록 하라.” 하였다.</p>	<p>年, 但令戶曹商議蠲減。”</p>
<p>성종 285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12월 22일(임오)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동지사(同知事) 채수(蔡壽)가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영의정(領議政) 이극배(李克培)가 말한 것으로 인하여 회례연(會禮宴)을 정지하도록 하셨다 합니다. 그러나 신이 전라도(全羅道)와 경상도(慶尙道)의 화곡(禾穀)을 보건대, 비록 여물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심한 흉작(凶作)에 이르지 않는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유연(遊宴)에 견줄 것이 아니며, 1년에 한 번씩 있는 일이니, 거행해도 무방(無妨)할 것입니다.” 하자, 윤필상(尹弼商)이 말하기를, “채수(蔡壽)의 말은 대체(大體)로 옳습니다. 단지 흉년(凶年)에는 연락(宴樂)을 검소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인군(人君)은 마땅히 백성의 근심을 걱정하고, 백성의 즐거움을 기뻐해야 하는 것이다. 백성이 굶주리고 있는데 회연(會宴)한다면, 내 마음이 편안하겠는가?” 하였다.</p>	<p>○御經筵。 講訖， 同知事蔡壽啓曰：“臣聞， 以領議政李克培之言停會禮宴， 臣見全羅、 慶尙道禾穀雖不稔， 未至於甚凶， 此非遊宴之比， 一年一度事也， 行之無妨。” 尹弼商曰：“蔡壽之言， 大體則然矣。 但年凶則踈宴樂可也。” 上曰：“人君當憂民之憂， 樂民之樂， 民飢而會宴， 於予心安乎？”</p>
<p>성종 285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12월 23일(계미)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지평(持平) 강형(姜訶)이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사두사야문(沙豆沙也文)은 도주(島主)와 혼인[婚嫁]한 집안이라고 합니다. 비록 조관(朝官)을 보낸다 하더라도 반드시 순종[唯諾]하지 않을</p>	<p>○御經筵。 講訖， 持平姜訶啓曰：“臣聞沙豆沙也文與島主爲婚嫁之家， 雖遣朝官， 必不唯諾， 恐損國威， 莫如姑待特送之來， 付送書契也。” 上顧問左</p>

	<p>것이니, 국위(國威)를 손상(損傷)시킬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우선 특송(特送)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서계(書契)를 부쳐 보내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좌우(左右)를 돌아보고 물었다. 영사(領事) 노사신(盧思愼)이 대답하기를,</p> <p>“만약 특송(特送)이 온다면 서계(書契)를 부쳐 보내는 것이 가(可)합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국가(國家)에서 어량(魚梁)을 만들지 아니하였고, 왜인(倭人)은 본래 내지(內地)에 들어올 수 없는데, 지금 관차(官差)를 상해(傷害)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는 작은 일이 아니다. 만약 내버려두고 다스리지 않는다면, 그 조짐이 장차 우리 백성의 전지(田地)를 빼앗고, 기회를 보아 혼단(釁端)을 만들 것이니, 진실로 염려스러운 것이다. 만약 일이 커지기 전에 막고자 한다면 마땅히 이때를 당하여 조관(朝官)을 보내어 도주(島主)가 어떻게 처치(處置)하는가를 살펴 보아야 할 뿐이다.”</p> <p>하니, 헌납(獻納) 홍한(洪瀚)이 아뢰기를,</p> <p>“상교(上敎)가 윤당(允當)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듣지 않을 것 같으면 국위(國威)를 손상시킬까 두렵습니다.”</p> <p>하자, 임금이 말하기를,</p> <p>“저들이 비록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찌 국위(國威)를 손상시키겠는가? 왜인(倭人)은 우리 나라의 백성[編氓]과 다름이 없으니, 만약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이와 같은 데 이르겠는가?”</p> <p>하였는데, 지사(知事) 노공필(盧公弼)이 말하기를,</p> <p>“도주(島主)와 사야문(沙也文)이 혼인(婚姻)을 맺었으니, 혹 듣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근래에 오랫동안 도주(島主)에게 사신(使臣)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조</p>	<p>右。領事盧思愼對曰：“若有特送之來，書契付送可也。”上曰：“國家非爲魚梁也。倭人本不得入內地，今至於打傷官差，此非小事也。若棄而不治，其漸將奪吾民之田，乘時生釁，實可慮也。如欲防微，當於此時。遣朝官以觀島主處置如何耳。”獻納洪瀚啓曰：“上敎允當。然如或不聽，恐損國威也。”上曰：“彼雖不聽，何損國威？倭人與我編氓不異，若有畏懼之心，何至若是乎？”知事盧公弼曰：“島主與沙也文結爲婚姻，恐或不聽也。”上曰：“邇來久不遣使于島主，今遣朝官，何妨焉？”公弼曰：“島主唯命則善矣，不然則殊無遣使之義也。”上曰：“何以不聽？彼亦當遣問之矣。”特進官宋瑛啓曰：“臣意謂，以書契付特送以諭，不從然後遣朝官，未晚也。”上曰：“予當思之。”瀚又啓曰：“王子君、駙馬第宅，宏壯過制，請減損。”上曰：“減損其制，至再至三，汝欲加損耶？”瀚曰：“臣徒見其侈大，未見其減損也。駙馬、諸君，其麗衆多，恐不能終始如一。”上曰：“今已中制而又改之，則其改之終無極也。”姜訶</p>
--	---	---

	<p>관(朝官)을 보낸다고 해서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였는데, 노공필이 말하기를, “도주(島主)가 명(命)에 응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사신을 보내는 뜻이 없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무엇 때문에 듣지 않겠는가? 저도 마땅히 사인(使人)을 보내어 물어볼 것이다.” 하므로, 특진관(特進官) 송영(宋瑛)이 아뢰기를, “신은 서계(書契)를 특송(特送)에게 부쳐 알리게 하되, 따르지 않은 후에 조관(朝官)을 보내어도 늦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생각해 보겠다.” 하였다. 홍한(洪瀚)이 또 아뢰기를, “왕자군(王子君)과 부마(駙馬)의 저택[第宅]이 크고 장려(壯麗)함이 제도(制度)에 넘으니, 청컨대 감손(減損)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제도(制度)를 감손(減損)한 것이 두세 번에 이르렀는데, 그대는 더 감손시키고자 하는가?” 하자, 홍한이 말하기를, “신은 단지 사치스럽고 큰 것만 보고, 감손(減損)한 것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부마(駙馬)와 여러 군(君)이 그 장려(壯麗)한 것이 수가 몹시 많으니, 시종 여일(始終如一)하게 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이미 제도(制度)에 맞게 하였는데, 또 고친다면 그 고치는 것이 한정이 없을 것이다.”</p>	<p>曰：“臣外祖諠城君家，孝寧大君所居，而其制低微。今諸君、翁主第宅，壯麗過當，量損其制。”上曰：“爾等之言，予非不知，其初有言其高大者，已令改之，今所云又如是，何耶？”瀚又啓曰：“觀火與內農作，皆爲虛務，而弊則實多。觀火則諸事已具，不可停也，內農作時未備，但令略設，勿較勝否何如？”上曰：“例有上中下，當臨時裁之。”</p>
--	--	--

	<p>하였다. 강형(姜誦)이 말하기를, “신의 외조부(外祖父) 의성군(誼城君)의 집은 효령 대군(孝寧大君)이 살았던 곳인데, 그 제도가 낮고 작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군(君)과 옹주(翁主)의 저택[第宅]은 장려(壯麗)함이 정도를 지나치니, 그 제도를 헤아려 감손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이 말하는 바를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애초에 높고 크다는 것을 말하는 자가 있었으므로, 이미 고치게 하였는데, 지금 말하는 바가 또 이와 같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p> <p>하였다. 홍한이 또 아뢰기를, “관화(觀火)27018) 와 내농작(內農作)27019) 은 모두 헛된 일로서, 그 폐단(弊端)이 진실로 많습니다. 관화(觀火)는 여러 일이 이미 갖추어졌으므로, 정지할 수 없지만, 내농작(內農作)은 현재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 단지 간략하게 베풀면서 승부를 겨루지 않게 하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오래 상(上)·중(中)·하(下)가 있었으니, 시기에 임하여 재결(裁決)할 것이다.”</p> <p>하였다.</p>	
<p>성종 285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12월 24일(갑신) 2번째기사</p>	<p>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도망중인 최반(崔潘)은 전임(前任) 김제 군수(金堤郡守)로 있을 때 관(官)에서 저장(貯藏)해 둔 면포(綿布) 1백 8필(匹), 쌀 함께 16석(碩), 깨[荏子] 20두(斗), 겨자[芥子] 2두, 누룩[麴] 50원(圓), 기름[油] 7두 8승 2홉을 훔쳐 본가(本家)로 옮기다가 중로(中路)에서 잡혔는데, 계장(計贓)하면 1백 32관(貫) 1백 20문(文)이니, 율(律)이 뒤쫓아 체포하여 교대시(絞待時)하는 데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도둑질하여 쓴 물건(物件)은 관(官)에서 몰수(沒收)하고, 또 장안(贓案)에 기록하소서.”</p>	<p>○司憲府啓: “在逃崔潘, 前任金堤郡守時, 盜官贓綿布一百八匹、米全十六碩、荏子二十斗、芥子二斗、麴五十圓、油七斗八升二合輸送本家, 中路見捉, 計贓一百三十二貫一百二十文, 律該追捕絞待時, 其盜用物件沒官, 且錄贓案。” 命議于領敦寧以上及議政府。 尹弼商、李克培、盧思慎、尹</p>

하였는데,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에 의논하게 하였다. 윤필상(尹弼商)·이극배(李克培)·노사신(盧思愼)·윤호(尹壕)·한치형(韓致亨)·정문형(鄭文炯)·유지(柳攄)가 의논하기를, “아뢴 바에 의거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최반(崔潘)이 김제 군수(金堤郡守)로 있을 때 탐독(貪黷)함이 한정이 없으니, 백성들이 매우 고통스러워하며 내 아들놈이라고 비아냥거렸다. 최반의 아버지가 이를 듣고 노하여 최반에게 말하기를, ‘너를 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 바로 김제(金堤) 백성의 아들이더구나,’ 하였다. 그후에 아버지가 김제(金堤)의 지경에 이르렀는데, 덜 익은 보리를 베는 백성이 있어 괴이하게 여겨 물으니, 그 백성이 크게 한숨을 쉬며 대답하기를, ‘군수(郡守)가 백성의 고향(膏血)을 짜내는 바람에 백성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서 아침저녁으로 도망하여 흩어지니, 어느 여가에 보리가 익기를 기다리겠습니까? 군수는 그만두고라도, 들으니 그 아버지가 늙었다고 하는데, 어찌 속히 죽어 군수로 하여금 해관(解官)27024) 되게 하여 백성이 소복(蘇復)되게 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므로, 아버지가 통곡하며 갔다.” 하였다.

또 논평하기를, “최반의 형 최전(崔湍)은 탐도(貪饕)하고 포학(暴虐)함이 최반보다 심하였다. 일찍이 제주 목사(濟州牧使)가 되었을 때는 재물(財物)을 배로 수송(輸送)하여 집에 옮기는 것이 잇달았다. 영광 군수(靈光郡守) 기찬(寄禫)과 익산 군수(益山郡守) 이계통(李季通)은 최반과 함께 한 도(道)에 있었는데, 모두 탐독(貪黷)하여 그 때 전라(全羅)의 삼걸(三傑)이라고 불리었다. 민함(閔諫)이 기찬을 대신하였는데, 그 탐독하여 백성을 학대(虐待)하는 것이 기찬과 다름이 없었으며, 교활(狡猾)한 아전을 능히 제압(制壓)하지 못하여 백성을 침탈[侵漁]함이 더욱 심하였다.” 하였다.

또 논평하기를, “기찬이 홍문관 응교(弘文館應敎)가 되어, 강경하고 정직한

壕、韓致亨、鄭文炯、柳攄議：“依所啓施行。”從之。

【史臣曰：“潘爲金堤郡守，貪黷無厭，民甚苦之，詈稱吾子，潘父聞之，怒謂潘曰：‘謂汝是我子，今知汝是金堤百姓之子也。’後父行到金堤境，有民刈麥之未熟者，怪而問之，其民太息而答曰：‘郡守剝民膏血，民不聊生，朝夕逃散，何暇待麥之熟？郡守則已矣，聞其父老，何不速死，令郡守解官，民得復蘇耶？’父痛哭而去。”】

【又曰：“潘兄湍，貪饕暴虐甚於潘，嘗爲濟州牧使，船輸財物，絡繹於家，靈光郡守奇禫、益山郡守李季通與潘同，在一道，皆貪黷，時號全羅三傑，閔諫代禫，其貪黷虐民，無異於禫而不能制猾吏，侵漁益甚。”】

【又曰：“禫爲弘文館應敎，以抗直自許，及爲郡，常誇詫弘文館出身，遠民多不知官制，相與語曰：‘弘文館是何物歟？’”】

	<p>것을 자부[自許]하였는데, 군수(郡守)가 되자 평소 홍문관(弘文館) 출신이라고 자랑하였다. 그러나 먼 지방의 백성들이 관제(官制)를 많이 알지 못하여 서로 말하기를, ‘홍문관이 대체 무슨 물건인가?’ 하였다.” 하였다.</p>	
<p>성종 286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1월 2일 (임진) 2번째기사</p>	<p>내금위(內禁衛) 이순(李珣) 등이 표범을 사로잡아 바치니, 전교하기를, “너희들이 흉악한 짐승을 사로잡았으니, 상주지 않을 수 없다.” 하고, 곧 술을 먹이고, 물건을 차등있게 내려 주었다.</p>	<p>○內禁衛李珣等捕豹以獻，傳曰：“汝等能捕惡獸，不可不賞。” 卽饋酒，賜物有差。</p>
<p>성종 286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1월 3일 (계사) 3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구황염(救荒鹽)과 군자(軍資)에 보충(補充)하는 소금은 다릅니다. 가령 군자(軍資)를 보충하는 소금을 가지고 백성을 진휼(賑恤)하게 되면 그 수량(數量)이 많지 않아서 많은 백성들이 골고루 혜택(惠澤)받기가 어렵고, 혹 값을 감(減)하거나 값을 거두지 아니한다면 나라의 저축[國儲]이 점차 감손(減損)될 것이니, 옛날과 같이 곡식과 베로 바꾸어 군자(軍資)를 보충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흉년(凶年)에는 1두(斗)를 감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승정원(承政院)에 물어 보도록 하라.” 하니, 모두 아뢰기를, “이 소금은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지 못합니다. 호강(豪強)한 자는 그것을 얻으나, 빈궁(貧窮)한 자는 얻지 못하니, 비록 1두(斗)를 감한다 하더라도 백성들은 혜택을 골고루 받지 못합니다. 또 군인(軍人)을 뽑을 때 염간(鹽干)27045) 을 정하여 소금을 굽게 하는 것은 군자(軍資)를 보충하기 위해서이니, 호조(戶曹)에서 아뢴 바에 의거하여 시행하소서.” 하자, 전교하기를, “나의 뜻으로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허중(許琮)이 의논하기를, “모든 물건(物件)은 모두 풍년과 흉년에 따라 그 값이 오르거나 내리는데, 어</p>	<p>○戶曹啓：“救荒鹽與補軍資鹽有異，假令以補軍資鹽賑民，其數不敷，許多人民，均蒙惠澤難矣。 或減價或不收價，則國儲漸損， 依舊換穀布補軍資。” 傳曰：“凶年則減一斗何如？ 問于承政院。” 僉啓曰：“此鹽非均給於民也。 豪強者得之， 貧窮者不得， 雖減一斗， 民不得均被其澤也。 且抄軍人定鹽干以煮之者， 爲補軍資也。 依戶曹所啓施行。” 傳曰：“以予意議于領敦寧以上。” 許琮議：“凡物皆隨豐歉， 高下其直， 鹽價奚獨有定價？ 從時直收價爲便。” 傳曰：“減價可也。”</p>

	<p>땡게 유독 소금값만 값을 정할 수 있겠습니까? 시가(時價)에 따라 값을 거두는 것이 편하겠습니까.”</p> <p>하였는데, 전교하기를, “값을 감(減)하는 것이 가하다.”</p> <p>하였다.</p>	
<p>성종 286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1월 19일 (기유) 2번째기사</p>	<p>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정사서(鄭嗣瑞)가 전임(前任) 전의 현감(全義縣監)으로 있을 때 관청(官廳)안의 생마(生麻)·장피(獐皮)·이피(狸皮)·호피(狐皮)·목면(木綿)·미역[甘藷] 등의 물건을 사사로이 쓴 죄는 율(律)이 장(杖) 80대에 고신(告身) 3등을 빼앗고, 장안(贓案)27102) 에 기록하여 이조(吏曹)·병조(兵曹)·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에 이문(移文)하는 데 해당합니다.”</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義禁府啓: “鄭嗣瑞前任全義縣監時, 官中生麻、獐皮、狸狐皮、木綿、甘藷等物私用罪, 律該杖八十、奪告身三等, 錄案移文吏、兵曹、司憲府、司諫院。” 從之。</p>
<p>성종 286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1월 20일 (경술) 5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기를, “양 대비전(兩大妃殿)과 본궁(本宮)에 각각 백미(白米) 1백 석씩을 진상(進上)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傳旨戶曹, 兩大妃殿本宮進上各白米一百碩。</p>
<p>성종 286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1월 26일 (병진) 1번째기사</p>	<p>이덕숭(李德崇)의 아들 이귀수(李龜壽)를 명소(命召)하여 묻기를, “정사서(鄭嗣瑞)가 언제 전의 현감(全義縣監)에 제수(除授)되었다는 말과 정석견(鄭錫堅)이 김봉(金崙) 등을 책망하였다는 말을 네가 어디에서 듣고 모두 기록(記錄)하였는가?”</p> <p>하였는데, 이귀수가 대답하기를, “신(臣)의 아버지가 옥(獄) 안에서 식기(食器)에 써서 내보냈기 때문에 기록하였습니다.”</p> <p>하자, 좌승지(左承旨) 이종호(李宗顥)에게 전교하기를, “그대가 금부(禁府)에 가서 이덕숭에게 소장(疏章) 가운데 두가지 조목(條目)에 대해 묻기를, ‘이 말이 진실로 그러한가?’ 하고, 다음에 김봉(金崙)과 정석</p>	<p>○丙辰/命召李德崇子龜壽, 問曰: “鄭嗣瑞何時拜全義之語及錫堅責金崙等語, 汝聞諸何處而并錄耶?” 龜壽對曰: “臣父在獄中, 書于食器以出, 故錄之也。” 傳于左承旨李宗顥曰: “汝往禁府問疏內兩條于德崇曰此語誠然乎, 次問金崙與錫堅, 若三人之言相符, 不須更辨, 如有差違, 更窮詰以啓。” 宗顥往禁府問之, 德崇供曰: “當初司諫院議嗣瑞事, 錫堅問曰: ‘嗣瑞拜全義縣</p>

	<p>견(鄭錫堅)에게 물어서 세 사람의 말이 서로 부합(符合)할 것 같으면 다시 분변(分辨)할 필요가 없겠지만, 만약 틀림이 있으면 다시 끝까지 힐문(詰問)하여 아뢰도록 하라.”</p> <p>하였다. 이종호(李宗顥)가 금부(禁府)에 가서 물으니, 이덕숭(李德崇)이 공초(供招)하기를,</p> <p>“당초에 사간원(司諫院)에서 정사서(鄭嗣瑞)의 일을 의논할 때 정석견(鄭錫堅)이 묻기를, ‘정사서(鄭嗣瑞)가 전의 현감(全義縣監)에 제수된 것이 언제인가?’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윤은로(尹殷老)가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있었을 때이다.’하였습니다. 또 전일에 김봉(金封) 등과 면질(面質)할 때 정석견이 김봉을 책망하여 말하기를, ‘내간(內間)과 가신(家臣) 등의 말을 내가 들은 적이 없는데, 어찌 애매하게 이에 이르렀는가?’ 하였는데, 그 처음의 추안(推案)에 신의 이 말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금부 낭청(禁府郎廳)이 말하기를, ‘윤은로가 참판(參判)으로 있을 때 전의 현감을 제수하였다는 일은 전의 추문(推問)에서 이미 복초(服招)하였으므로, 거듭 정석견을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다.’하였기 때문에, 신이 무리하게 말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p> <p>하였다. 정석견과 김봉은 그 말이 한결같았는데, 모두 말하기를, “들어서 안 바가 아닙니다.”</p> <p>하며, 면질(面質)한 말이 전의 초사(招辭)와 덜거나 보탬이 없었다. 이종호(李宗顥)가 이로써 아뢰니, 전교하기를,</p> <p>“지금 세 사람의 초사를 보건대, 자못 어긋난 단서가 있다. 정석견은 즉시 도로 가두도록 하고, 또 이덕숭은 마음을 써서 구료(救療)하되, 병의 증세를 날마다 서계(書啓)하도록 하라. 그리고 이덕숭과 김봉은 형문(刑問)한 일수(日數)를 아울러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라.”</p> <p>하였다.</p>	<p>監，在何時耶?’ 臣答曰：‘尹殷老吏曹參判時也。’ 且前日金封等面質時，錫堅責金封曰：‘內間家臣等語，非吾所聞，何曖昧至是哉?’ 其初推案不錄臣此言者，禁府郎廳云：‘尹殷老參判時授全義事，前推已服招，不必更煩錫堅也。’ 故臣不强言。” 錫堅、金封則其辭如一，皆曰非所聞知也，其面質之辭與前招辭無增減。宗顥以啓，傳曰：“今見三人招辭，頗有違端，錫堅當卽還囚，且德崇用心救療病候，逐日書啓。德崇、金封刑問日數，并考啓。”</p>
성종 287권, 25년	임금이 문소전(文昭殿)·연은전(延恩殿)에 나아가 친히 제사지내고, 양심당(養	○朔庚申/上詣文昭殿、延恩殿親祭。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2월 1일
(경신) 1번째기사

心堂)에 나아가서 향관(享官)들에게 음식을 먹이도록 명하였다. 이어 전교(傳敎)하기를,
 “연은전(延恩殿) 동계(東階) 아래에 단지 한 개의 촛불만 설치하였으므로, 촛불이 희미해서 좌의정(左議政)이 오를 때 실족(失足)할까 염려하여 천천히 걸어 올라왔으니, 묘정(廟庭)에서의 의절을 어찌 이와 같이 해서 되겠는가? 금 후에는 촛불 두 개를 설치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도승지(都承旨) 김응기(金應箕)가 아뢰기를,
 “음복(飲福)할 때 대축(大祝)이 술을 따라 승지(承旨)에게 주고, 승지가 술잔을 드리면 성상께서는 그 술잔을 도로 승지에게 주시며, 승지가 다시 대축에게 주면 대축이 탁자[卓]에 가져다 놓는 것이 상례[例]입니다. 연은전(延恩殿) 대축(大祝) 박시행(朴始行)이 조금도 이에 마음을 쓰지 않고 축문(祝文)을 읽은 뒤에 계단 아래로 내려가 서 있었고, 신이 전악(典樂)을 시켜 불러 온 뒤에야 비로소 술을 따라 올렸으며, 또 다시 잔을 받지 않고 그대로 물러나 자못 예의를 잃었으니, 국문(鞫問)케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옳다.”
 하였다. 그리고 또 전교하기를,
 “세자(世子)가 탄 말이 놀라서 이승건(李承健)의 말을 타고 왔으니, 이는 오로지 내승(內乘)27123) 이 그 혼란을 게을리한 탓이다. 다시 다른 말을 선택하게 할 것이며, 또 내승(內乘) 박임종(朴林宗)·윤탕로(尹湯老)·이계명(李繼命)을 국문케 하라.”
 하였는데, 사복시 제조(司僕寺提調) 노사신(盧思愼)·정괄(鄭恬)이 아뢰기를,
 “신(臣)들이 잘 검사해 살피지 못하여 말이 놀라 달아나게 하였으니, 대죄(待罪)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御養心堂，命饋享官。 傳曰：“延恩殿東階下只設一燭，燭影熹微，左議政升燭時，恐其失足，緩步而上，廟庭之儀，豈如是非乎？今後設兩燭可也。” 都承旨金應箕啓曰：“飲福時大祝酌酒授承旨，承旨進酌，上還授承旨，承旨授大祝，大祝反酌於卓例也。而延恩殿大祝朴始行，略不用心，讀祝後退立階下，臣令典樂招來而後乃酌進，又不受爵而退，頗失禮儀，請鞫之。” 傳曰：“可。” 傳曰：“世子騎馬驚駭，乘李承健之馬而來，專是內乘不勤調習之所致也。更擇他馬，且鞫內乘朴林宗、尹湯老、李繼命。” 司僕寺提調盧思愼、鄭恬啓曰：“臣不能檢舉，致令驚逸，請待罪。” 傳曰：“提調當初擇馬之善惡而已，若其調習則責在內乘，其勿待罪。”

	<p>“제조(提調)는 당초에 말의 좋고 나쁜 것만 가릴 뿐이고, 훈련해 익히는 것은 그 책임이 내승(內乘)에게 있으니, 대죄하지 말라.” 하였다.</p>	
<p>성종 287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弘治) 7년) 2월 11일 (경오) 1번째기사</p>	<p>임금이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지사(知事) 정괄(鄭恬)이 아뢰기를, “평안도(平安道) 별군관(別軍官)·내금위(內禁衛) 40명과, 입공(立功)하여 자속(自贖)하는 자 11명이 지난 여름에 부방(赴防)하였다가 8월에 파하고 돌아왔는데, 신이 들건대 전년에 평안도에는 흉년이 들어서 강변(江邊)에는 말을 먹일 풀도 없다 합니다. 금년에는 합방(合防)이 어려울 것이니, 얼음이 언 뒤에 부방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었다. 영사(領事) 노사신(盧思愼)이 대답해 아뢰기를, “신도 또한 들으니, 평안도의 작년의 실농(失農)이 정괄(鄭恬)이 아뢴 바와 같다고 합니다.” 하자, 특진관(特進官) 정문형(鄭文炯)이 아뢰기를, “조종조(祖宗朝)에서 평안도는 별다른 성식(聲息)이 없어도 <강(江)에> 얼음이 얼면 방수(防戍)하지만 얼음이 풀리면 본도의 군병만으로 방어(防禦)하게 하고 따로 부방하는 일이 없었는데, 근래에는 <야인(野人)들이> 자피선(者皮船)27150 을 타고 들어와서 무시(無時)로 도적질을 해가곤 합니다. 그러나 각 구자(口子)27151 로 하여금 그 방어를 근엄(謹嚴)하게 한다면 뜻하지 않은 우려는 없을 것입니다. 또 저 적(賊)들이 대거(大舉)하여 입구(入寇)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세력이 약하면, 산림(山林)으로 도망해 숨었다가 기회를 엿보아 표략(剽掠)해 가는데, 비록 따로 부방한 군사가 있다한들 어찌 추급(追及)하겠습니까? 이극균(李克均)이 정병(精兵)을 인솔하고 변방을 순찰하는데도 간혹 몰래 들어와 약탈해 가곤 했으니, 비록 별방군(別防軍)이 있다 해도</p>	<p>○庚午/御經筵。 講訖， 知事鄭恬啓曰：“平安道別軍官， 內禁衛四十， 立功自贖者十一， 去夏赴防而八月罷還。 臣聞， 前年平安道凶荒， 江邊無喂馬之草， 今年合防爲難， 合冰後赴防何如？” 上顧問左右。 領事盧思愼對曰：“臣亦聞之。 平安道年前失農， 果如恬之所啓。” 特進官鄭文炯啓曰：“祖宗朝， 平安道則雖無聲息， 合冰則防戍， 解冰則令本道兵防禦， 而無別赴防之事。 近來乘者皮船， 竊發無時， 然令各口子謹嚴防禦， 則可無虞矣。 且彼賊非大舉入寇， 勢弱則逃匿山林， 伺便則剽掠而去， 雖有別赴防軍士， 安能追及乎？ 李克均率精兵巡邊， 而亦或竊發， 雖有別防軍， 恐無益也。” 上曰：“曾聞， 防禦合冰則重， 解冰則歇， 然農民布野時， 或乘間擄掠， 則何以禦之？ 予意， 雖當解冰時不可忽也。 但近無聲息， 可以休息。” 恬曰：“立功人， 皆自食其糧， 他軍士合冰後入送何如？” 上曰：“可。”</p>

	<p>아마 무익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의 이르기를, “일찍이 듣건대 방어(防禦)는 얼음이 얼면 엄중히 하고, 얼음이 풀리면 험하게 한다고 한다. 그러나 농민(農民)이 들에 피져 있을 때 혹 틈을 타고 들어와 노략(擄掠)한다면 어찌 막겠는가? 내 생각에는 해빙기(解氷期)를 당했더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근자에는 별 성식(聲息)이 없으니, 쉬어도 될 것이다.” 하였다. 정괄이 아뢰기를, “입공(立功)하여 <자속(自贖)하는> 사람은 모두 제 식량을 먹지만 다른 군사(軍士)는 얼음이 언 뒤에 들여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옳다.” 하였다.</p>	
<p>성종 287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弘治) 7년) 2월 11일 (경오) 4번째기사</p>	<p>홍문관(弘文館)에 술을 내려 주었다.</p>	<p>○賜酒于弘文館。</p>
<p>성종 287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弘治) 7년) 2월 11일 (경오) 6번째기사</p>	<p>우의정(右議政) 허종(許琮)이 병이 위독하여 정사(呈辭)27152) 하니, 허락하지 않고 이내 전교하기를, “우의정(右議政)의 병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그 자제(子弟)들이 나에게 고(告)하지 않았으니, 비록 직질(職秩)이 낮은 조관(朝官)이라도 이렇게 대할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삼공(三公)의 병이 위독한 지 9일 만에야 내 비로소 알았으니, 이 어찌 옳겠는가?” 하고, 명하여 사탕(沙糖)·감귤(柑橘) 등의 식물(食物)을 내리고, 또 김흥수(金興守)로 하여금 전담하여 치료(治療)하게 하였다.</p>	<p>○右議政許琮病革呈辭，不許，仍傳曰：“右議政之病至於如此，而其子弟不告於予。雖秩卑朝官不可待之如此，況三公病革九日，予始知之，是豈可乎？”命賜沙糖、柑橘等物，且令金興守專委治療。</p>
<p>성종 287권, 25년</p>	<p>전교하기를,</p>	<p>○傳曰：“予有所言之事，其召武臣通</p>

<p>(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2월 13일 (임신) 6번째기사</p>	<p>“내가 말할 일이 있으니, 통정 대부(通政大夫) 이상의 무신(武臣)을 불러라.” 하였는데, 한치례(韓致禮) 등이 부름을 받고 오니, 전교하기를, “우리 나라는 사면(四面)으로 적(敵)을 받으니, 사예(射藝)를 폐(廢)할 수 없다. 그런데 재상(宰相)들이 오로지 음주(飲酒)만을 일삼고 사예를 일삼지 않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젊은 사람까지도 모두 그 과오를 답습하고 있으니, 경들이 금후 모든 회사(會射)를 반드시 아뢰라. 내가 혹시 듣게 되면 혹 중관(中官)27163) 을 보내든가 혹 승지를 보내든가 해서 선은(宣醞)27164) 을 하사케 할 것이니, 이 뜻을 알라.” 하였다.</p>	<p>政以上。” 韓致禮等承召來， 傳曰：“我國四面受敵，射藝不可廢也。 宰相等專事飲酒，不以射爲事，由是年少者亦皆效尤， 卿等今後凡會射， 必以聞予， 或聞之， 則或遣中官， 或遣承旨， 賜以宣醞， 其悉此意。”</p>
<p>성종 287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2월 14일 (계유) 2번째기사</p>	<p>우의정(右議政) 허종(許琮)이 졸(卒)하니, 철조(輟朝)27167) ·사부(賜賻)·조제(弔祭)·예장(禮葬)27168) 을 예(例)와 같이 하였다. 허종의 자(字)는 종경(宗卿)이니, 고려(高麗) 시중(侍中) 허공(許珙)의 후손이다. 그 심지와 기질이 침중(沈重)하고 원대하였으니, 젊어서 벗과 더불어 같이 지내고 있는데, 도둑이 들어 의복과 신을 다 가지고 갔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그 도둑을> 모두 원망했지만, 허종은 기꺼운 양으로 조금도 이에 개의(介意)하지 않았다. 경태(景泰) 병자년(27169) 에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고, 천순(天順) 정축년(27170) 에 문과(文科)에 제 3위로 합격하여 처음에 의영고 직장(義盈庫直長)에 제수되어 세자 우정자(世子右正字)를 겸임하였다. 기묘년(27171) 에 통례문 봉례랑(通禮門奉禮郎)과 지제교(知製敎)에 제수되었다. 세조(世祖)가 일찍이 천문(天文)을 익히도록 명하였는데, 이때 마침 일식(日食)하는 것을 보고 허종이 그 식분(食分)을 추산(推算)하여 올리고, 아울러 소(疏)를 올려 이단(異端)을 배척하고 언로(言路)를 열어 주며, 유전(遊畋)27172) 을 절제하고 경연(經筵)에 <자주> 임어할 것 등의 일을 개진(開陳)하였는데, 그 말이 매우 경직(鯁直)하였다. <세조가> 명하여 불러 들어가</p>	<p>○右議政許琮卒。 輟朝賜賻弔祭禮葬如例。 琮字宗卿， 高麗侍中珙之後， 志氣沈遠， 少與友同棲， 偷兒盡取衣履以去， 諸人咸懷恨， 琮怡然不介意。 景泰丙子中生員試， 天順丁丑中文科第三名， 初授義盈庫直長兼世子右正字， 己卯授通禮門奉禮郎知製敎。 世祖嘗命習天文， 時適見日食， 琮推算食分以進， 并疏斥異端、開言路、節遊畋、御經筵等事， 言甚鯁峭， 命召入， 詰之曰：“十旬不返， 以麩代牲， 予無是失， 而汝以夏康、梁武比予， 何耶？” 佯加威怒， 命摔下杖之。 琮略無懼色， 應對不差。 上曰：“眞壯士也。” 遂命進爵， 進退雍容。 俄授兼宣傳官， 上分授諸名臣， 使讀佛經曰：“琮不喜佛，</p>

매 힐책하기를, ‘십순(十旬)을 돌아가지 않았거나(27173) 면(麪)으로 희생[牲]을 대신하는 따위(27174)의 내 과실이 없거늘, 네가 하(夏)의 태강(太康)과 양(梁)의 무제(武帝)를 나에게 비유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나?’ 하고 거짓 위엄과 노기를 가하면서 상투를 잡고 끌어내리어 곤장을 치도록 명하는데도 허중이 조금도 두려워하는 빛이 없었고, 차착(差錯) 없이 응대(應對)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참 장사(壯士)로다.’ 하고, 드디어 잔을 올리라 명하니, 그 진퇴(進退)하는 동작이 옹용(雍容)하므로, 갑자기 겸선전관(兼宣傳官)을 제수하였으며, 세조가 여러 명신(名臣)에게 나누어 주어 불경을 읽게 하면서 말하기를, ‘허중은 불도를 좋아하지 않으니 주지 말라.’고 한 적도 있었다.

경진년(27175)에 평안도 도절제사 도사(平安道都節制使都事)에 제수되고, 신사년(27176)에 형조 도관 좌랑(刑曹都官佐郎)에 제수되었으며, 임오년(27177)에는 함길도 관찰사 도사(咸吉道觀察使都事)에 제수되었다가 갈리어 정언(正言)이 되었다.

계미년(27178)에 지평(持平)에 제수되었다가 성균 직강(成均直講)으로 옮겨 예문 응교(藝文應教)를 겸임하였고, 갑신년(27179)에 사예(司藝)로 승진되었다. 이때 한명회(韓明澮)가 평안도 순찰사(平安道巡察使)가 되어 허중을 종사관(從事官)으로 삼았는데, 일이 있을 때마다 임금에게 품지(稟旨)를 받아야 했으므로 반드시 허중을 보내곤 했다. 이해 겨울에 승정원 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에 발탁 제수되었다.

성화(成化) 을유년(27180) 가선 대부(嘉善大夫)에 승진 함길도 절도사(咸吉道節度使)에 제수되었고, 병술년(27181) 봄에 부친상(父親喪)을 당하여 강효문(康孝文)으로 대체하였는데, 정해년(27182)에 이시에(李施愛)가 강효문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자(27183) 기복(起復)(27184) 하여 다시 절도사가 되었다. 반적(叛賊)을 평정하고 나서 허중이 종용(從容)히 진정시켜 북방(北方)이 안정을 되찾으매, 정충 출기 포의 적개 공신(精忠出氣布義敵愾功臣)의 칭호를 내

其勿授之。” 庚辰拜平安道都節制使都事, 辛巳拜刑曹都官佐郎, 壬午拜咸吉道觀察使都事, 遞爲正言。 癸未拜持平, 遷成均直講兼藝文應教, 甲申陞司藝。 時韓明澮爲平安道巡察使, 以琮爲從事, 每有事當稟旨, 必遣琮。 是年冬擢授承政院同副承旨, 成化乙酉拜嘉善咸吉道節度使, 丙戌春丁父憂, 康孝文代之, 丁亥李施愛殺孝文以叛, 起復爲節度使, 及賊平, 琮從容鎮定, 北方賴以安。 賜精忠出氣布義敵愾功臣之號, 階加崇政, 封陽川君。 戊子以母病召還, 己丑爲平安道觀察使, 數月徵還, 俄拜大司憲。 有賊張永奇起全羅道, 以琮爲節度使, 賊就擒召還, 未幾拜兵曹判書, 辛卯賜純誠佐理功臣之號, 丁酉拜禮曹判書。 是年建州野人寇遼東, 命琮巡察平安道, 冬拜議政府右參贊, 尋陞左參贊, 戊戌上將廢妃, 人莫敢言, 獨琮引漢光武、宋仁宗之失, 力陳不可, 上意解。 秋丁祖母憂, 庚子起復爲平安道巡察使, 辛丑拜戶曹判書, 壬寅陞議政府右贊成, 癸卯兼世子貳師, 乙巳丁母憂, 丁未秋拜吏曹判書, 戊申翰林侍講董越、給事中

리고 승정 대부(崇政大夫)에 가자(加資)하여 양천군(陽川君)에 봉(封)하였다. 무자년(27185)에 모친(母親)의 병으로 소환(召還)되고, 기축년(27186) 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가 되었다가 몇 달 만에 다시 불러 돌아와서 바로 대사헌(大司憲)이 되었는데, 장영기(張永奇)란 도적이 전라도(全羅道)에서 일어나니, 허종을 절도사로 삼아 적(賊)을 사로잡자, 소환된 지 얼마 안되어 병조 판서(兵曹判書)에 제수되었다.

신묘년(27187)에 순성 좌리 공신(純誠佐理功臣)의 칭호를 내렸고, 정유년(27188)에 예조 판서(禮曹判書)가 되었다. 이 해에 건주 야인(建州野人)이 요동(遼東)을 침범해 들어가니, 허종에게 명하여 평안도를 순찰(巡察)케 하였으며, 겨울에 의정부 우참찬(議政府右參贊)에 제수되어 바로 좌참찬(左參贊)에 승진되었다.

무술년(27189)에 임금이 장차 왕비를 폐하려고 하는데도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하였는데, 유독 허종이 한(漢)나라 광무(光武)와 송(宋)나라 인종(仁宗)의 과실을 들어 그 불가함을 극력 진달하니, 임금의 마음이 풀렸다. 이해 가을에 조모상(祖母喪)을 당하였는데, 경자년(27190)에 <다시> 기복(起復)되어 평안도 순찰사(平安道巡察使)가 되었고, 신축년(27191)에 호조 판서(戶曹判書)에 제수되었다. 임인년(27192)에 의정부 우찬성(議政府右贊成)에 승진되고 계묘년(27193)에 세자 이사(世子貳師)를 겸하였다.

을사년(27194)에 모친상(母親喪)을 당하였고, 정미년(27195) 가을에 이조 판서(吏曹判書)에 제수되었다. 무신년(27196) <명(明)나라> 한림 시강(翰林侍講) 동월(董越)과 급사중(給事中) 왕창(王敞)이 조서(詔書)를 받들고 왔는데, 허종이 원접사(遠接使)가 되어 응대(應對)와 주선(周旋)이 절도에 맞으므로, 두 사신이 존경하고 감복(感服)하였으며, 작별에 임하여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하기를, ‘공(公)이 일찍 북경[京]에 조회하러 와서 중국 조정으로 하여금 해외(海外)에도 이런 인물이 있음을 알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늘 위에는 몰라

(王敞) [王敞] 奉詔來， 琮爲遠接使， 應對周旋中度， 兩使敬服， 臨別至出涕曰：“望公早時朝京， 使中朝知海外有此人也。 所不知者天上， 人間則無雙。” 秋移兵曹判書， 尋加崇祿， 己酉永安道訛言起， 人心不定， 命琮爲觀察使， 進階輔國崇祿， 辛亥秩滿當遷， 將征尼麻車， 故仍之。 命乘遽入覲， 面陳方略， 遂以爲北征都元帥。 琮受命還部署， 諸將抵虜部落， 虜皆畏遁， 遂焚蕩室廬而還。 上遣都承旨鄭敬祖齎宣醢迎勞。 壬子進階大匡輔國崇祿議政府右議政， 至是病篤， 上遣中官安仲敬問後事， 琮已危， 開目喉語曰：“願殿下慎終如始而已。” 享年六十一， 諡忠貞， 事君盡節， 忠； 直道不撓， 貞。

【史臣曰：“琮性寬厚簡重， 姿表秀偉， 鬚髯亦美， 人望之知其爲大人君子， 雖倉卒未嘗疾言遽色， 臨事確然， 不以人主喜怒爲遷就， 博覽書籍， 旁通雜藝， 尤深於性理之學， 平生不治產業， 所居湫陋， 處之泰然。 才兼文武， 望重將相， 以身繫國家輕重， 而北征之舉， 時議惜之。”】

도 인간(人間)에는 둘도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가을에 병조 판서로 옮겨 곧 승록 대부(崇祿大夫)에 가자(加資)되었다.

기유년(27197) 영안도(永安道)에 와언(訛言)이 일어나 인심(人心)이 불안하자, 허종을 명하여 관찰사로 삼고 보국 승록 대부(輔國崇祿大夫)에 승진시켰다. 신해년(27198) 임기가 만료되어 마땅히 체임(遞任)되어야 할 터인데, 장차 니마거(尼麻車)를 정벌하려 하므로 그대로 유임하고 있다가, 역마(驛馬)를 타고 들어와 뵈기를 명하여 임금 면전에서 그 방략(方略)을 진달하매 드디어 북정 도원수(北征都元帥)로 삼았다. 허종이 명을 받고 돌아가 각 부서(部署)에 제장(諸將)을 배치하여 오랑캐의 부락에 다다르니, 오랑캐들이 두려워하여 모두 도망하므로 드디어 그들의 집과 여막을 모조리 불사르고 돌아오니, (27199) 임금이 도승지(都承旨) 정경조(鄭敬祖)를 보내어 선운(宣醜)을 가지고 가서 영접해 위로하게 하였다.

임자년(27200) 에 대광 보국 승록 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 우의정에 진계(進階)되었던 것인데, 이에 이르러 병이 위독함을 듣고 임금이 중관(中官) 안중경(安仲敬)을 보내어 뒷일을 물으니, 허종이 이미 위중하여 눈을 뜨고 목구멍 소리로 말하기를, ‘원컨대 전하께서는 종말을 삼가기를 처음같이 하소서.’ 할 뿐이었다. 향년이 61세였다. 시호(諡號)를 충정(忠貞)이라 하였으니, 임금을 섬기되 신절(臣節)을 다함을 충(忠)이라 하고, 곧은 도(道)를 동요하지 않음을 정(貞)이라 한다.

사신은 논한다. 허종(許琮)은 성품이 관후(寬厚) 간중(簡重)하고 자태와 의표가 빼어나고 위연(偉然)하였으며, 수염 또한 아름다워서 바라보는 자 누구나 그가 대인 군자(大人君子)임을 알았다. 아무리 창졸간이라 해도 조급한 말이나 장황한 안색을 짓지 않았으며, 일에 임하여는 임금의 희로(喜怒)에 의해 끌려가지 않고 확고한 소신대로 하였다. 서적(書籍)을 널리 보았고 잡예(雜藝)에도 통하였으며, 더욱 성리학(性理學)에 조예가 깊었다. 평생 산업(產業)을

	<p>다스리지 않아 거처하는 곳이 좁고 누추한데도 태연하게 지냈다. 문무(文武)의 재능을 겸비하여 장상(將相)으로서 물망이 중하여 그 한 몸이 국가의 경중에 연계되었는데, 북정(北征)의 거조를 당시의 논의가 애석해 하였다.</p>	
<p>성종 287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弘治) 7년) 2월 14일 (계유) 3번째기사</p>	<p>전교하기를, “우의정(右議政)이 졸(卒)하였으니, 소선(素膳)27201) 을 올리도록 하라.” 하였다.</p>	<p>○傳曰：“右議政卒，其進素膳。”</p>
<p>성종 287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弘治) 7년) 2월 15일 (갑술) 1번째기사</p>	<p>사용원 제조(司饗院提調) 유자광(柳子光)이 아뢰기를, “어제 육선(肉膳)의 진어(進御)를 청하였으나 윤희를 받지 못하였는데, 내일은 바로 국기(國忌)의 치재(致齋)입니다. 연일 소선(素膳)은 불가합니다. 청컨대 육선을 진어하소서.” 하고, 승지(承旨)들도 또한 아뢰기를, “성상께서 근일 감기 증세가 있어 소선하신 지 이미 오래 되었으니, 육선을 진어하시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윤희하지 않았다. 이에 유자광이 아뢰기를, “전하(殿下)께서 오랫동안 육선을 정지하시면 양전(兩殿)27202)의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하고, 승지들도 또한 아뢰기를, “원수(元首)27203)와 고굉(股肱)27204)은 한몸입니다. 그러나 옛사람이 이르기를, ‘상제(喪制)에 기년(期年) 이하에는 제후(諸侯)는 절대로 신하를 위하여 예(禮)를 폐(廢)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또 양전(兩殿)의 마음도 편치 않으실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는 것이라, 사람의 힘으로 할 바 아니다. 내가 대신(大臣)에게 누구에겐 후하게 하고 누구에겐 박하게 하라? 그러나 우의정(右議政)이 북정(北征)에서 노고하였고, 찬 기운에 저촉되어 드디어 질병(疾</p>	<p>○甲戌/司饗院提調柳子光啓曰：“昨日請進肉膳，未蒙允，明日乃國忌致齋也，不可連日進素也。請進肉膳。”承旨等亦啓曰：“聖體近有感冒証，而素膳已多時，請進肉膳。”上不許。子光曰：“殿下久輟肉膳，則兩殿之心，其可安耶？”承旨等亦曰：“元首股肱一體，然古云：‘喪制自期以下，諸侯絕不可爲臣而廢禮也。’且兩殿之心亦未安也。”傳曰：“死生在天，非人所爲也。予於大臣，誰厚誰薄？然右議政勞於北征，犯觸寒氣，遂構疾病，其後因任監司，久留寒地，前日之病，至此加發，予甚痛惜。予雖感冒，豈以數日進素而增減乎？”子光曰：“向者大君之卒，兩殿命臣曰：‘主上非肉膳，則不得進膳’。臣未嘗暫忘此教也。請進肉膳。”承旨等曰：“人子以父母之心爲心，則可謂孝矣。殿下連日素膳，</p>

	<p>病)을 얻은 것인데, 그 뒤에 그대로 감사(監司)에 유입되어 오랫동안 추운 지방에 체류하였으므로, 전일의 질병이 이에 이르러 다시 발작한 것이니, 내 몫시 애석해 마지 않는다. 내 비록 감기가 들었더라도 어찌 며칠 소선한다 하여 더하고 덜하겠는가?”</p> <p>하였다. 유자광이 아뢰기를,</p> <p>“지난날 대군(大君)이 졸(卒)하였을 때 양전(兩殿)께서 신에게 명하시기를, ‘주상(主上)께서는 육선이 아니면 진선(進膳)하지 못하신다.’ 하셨습니다. 신은 일찍이 잠시도 이 하교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청컨대 육선을 진어하소서.”</p> <p>하고, 승지들이 아뢰기를,</p> <p>“사람의 아들로써 그 부모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삼는다면, 효도한다고 이를 만하다고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연일 소선하시면 양전께서 비록 육선을 진어하시더라도 반드시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입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양전께서도 명이 있었으므로 애써 따르겠다.”</p> <p>하였다.</p>	<p>則兩殿雖進肉膳，必不安心。” 傳曰：“兩殿亦有命，故勉從之。”</p>
<p>성종 287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弘治) 7년) 2월 19일 (무인) 1번째기사</p>	<p>장지대(將只大)의 처치(處置)에 관한 일을 의논하라 명하니,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p> <p>“장지대가 저지른 범행은 진실로 나라의 위엄을 보여 마땅하나, 저 사람들은 인면 수심(人面獸心)인데 어찌 똑같이 법으로 다스리겠습니까? 아직 수일간 더 수금(囚禁)하여 그 마음을 징계한 뒤에 특별히 내신(內臣)을 보내어 말하기를, ‘네 죄를 엄히 다스리도록 청하나, 나는 생각하기를 너희 무리들이 예의(禮儀)를 알지 못하니, 마땅히 도외(度外)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는 아직 논하지 않겠으니, 금후에는 이같이 하지 말라.’고 하도록 하소서.”</p> <p>하고, 이극배(李克培)·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p> <p>“저 무리는 인면 수심(人面獸心)이라, 족히 계교할 것이 못됩니다. 지금 여러</p>	<p>○戊寅/命議將只大處置事。 尹弼商議：“將只大所犯，固當示威，然彼是人面獸心，安得一繩以法？姑囚數日，以懲其心而後，特遣內臣語之曰：‘汝罪固請痛治，予惟汝輩不識禮義，當置度外，今姑勿論，後勿如是。’” 李克培、盧思愼議：“彼類，人面獸心，不足數也。今累日拘囚，其苦已甚，特命放赦何如？雖有違端，不宜拷訊。” 尹壕議：“類非我族類，難以刑法制之，</p>

날 구류되어 그 고통이 이미 심할 것이니, 특명(特命)으로 사면(赦免)해 석방하심이 어떻겠습니까? 비록 여기는 단서가 있더라도 고신(拷訊)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하고, 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저 무리들은 우리 족류(族類)가 아니라서 형법(刑法)으로 제재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날 수금해 국문(鞫問)하였으니 또한 국가의 위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 석방할 수는 없으니, 가벼운 법을 좇아 시행케 하소서.”

하니, 좌부승지(左副承旨) 권경우(權景祐)에게 전교하기를,

“그대가 의금부(義禁府)에 가서 장지대에게 가르치기를, ‘네가 칼을 빼어 사람을 찌른 것을 감사(監司)가 치계(馳啓)하였는데, 만약 우리 나라 사람이라면 감사가 즉시 법(法)에 의해 죽였을 것이다. 다만 너는 귀순(歸順)해 왔기 때문에, 즉시 죄를 다스리지 않고 올려 보낸 것이다. 그런데 지금 추문(推問)할 때 네 말이 감사가 계달(啓達)한 것과 서로 다른 것은 매우 간사스러운 면이 있다. 너를 살리고 너를 죽이는 것이 실상 우리 나라에 있으나, 다만 네가 귀순해 왔기 때문에 특별히 네 죄를 관대하게 용서하는 바이니, 금후에는 이같이 하지 말라.’ 하고, 이내 술을 먹여 보내라.”

하였다. 권경우가 명을 받고 장지대를 석방하고 와서 아뢰기를,

“신이 의금부 당상(義禁府堂上)과 같이 앉아 장지대를 뜰로 끌어내다가 가뉴(枷杻)를 풀지 않고 전교가 있다고 말하매, 장지대가 다시 무릎꿇고 들었는데, 사면 석방하신다는 하교를 듣고서는 무릎꿇고 절하려는 것같이 하였으나, 갈[枷]이 목에 씌워져 있어 잘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이에 가뉴(枷杻)와 자물쇠[鑰]를 풀게 하였던 바, 장지대가 즉시 흑단령(黑團領)의 옷을 입고 머리를 조아리며 북향하여 다섯 번 절하고 말하기를, ‘이제 이후로는 비록 도보로 서울[京師]에 온다 해도 다시는 이같이 하지 않겠습니다.’ 하였고, 문 밖으로 나갈 때 신이 금부(禁府)의 낭청(郎廳)을 시켜 술을 먹이도록 하였더니, 다시

累日囚鞫，亦知國威，然不可專釋，從輕施行。” 傳于左副承旨權景祐曰：“汝往義禁府，教將只大曰：‘汝之拔刀刺人，監司馳啓，若我國之人，則監司卽當依法殺之，但以汝歸順而來，故不卽治罪上送耳。今推問時，汝之所言與監司所啓相乖，甚爲奸詐，生汝殺汝，實在我國，但以汝歸順而來，故特寬汝罪，後勿如是。’仍饋酒而送。” 景祐承命放將只大，來啓曰：“臣與義禁府堂上共坐，致將只大于庭，不解枷杻，語以有教，將只大更跪以聽，及聞放赦之教，若欲跪拜，而枷在項未能也。臣於是乃令解枷杻及鑰，將只大卽着黑圓領衣，叩頭北向五拜，乃曰：‘自今以後，雖步至京師，無復如是。’及出門外，臣令府郎廳饋酒，又向義禁府三拜以謝曰：‘久煩令公者多矣。自今後，雖步至京師，無復如是。’”

	<p>의금부를 향하여 세 번 절하고 치사하기를, ‘오랫동안 영공(令公)을 번거롭게 한 것이 많았습니다. 금후에는 비록 도보로 서울을 온다 해도 다시는 이같이 하지 않겠습니다.’고 하였습니다.”</p> <p>하였다.</p>	
<p>성종 287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2월 20일 (기묘) 3번째기사</p>	<p>유학(幼學) 이난손(李蘭孫)이 상소(上疏)하였다. 그 소(疏)가 무릇 6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첫째가 군도(君道)요, 둘째가 신도(臣道)요, 셋째가 구현(求賢)이요, 넷째가 무민(撫民)이요, 다섯째가 홀군(恤軍)이요, 여섯째가 벽불도(闕佛道)였는데, 모두 고문(古文)을 모방하였고, 말도 매우 절실하지 않았다. 명하여 호초(胡椒) 4말[斗]을 내리고 소는 해조(該曹)에 내렸다.</p>	<p>○幼學李蘭孫上疏，疏凡六條。一曰君道，二曰臣道，三曰求賢，四曰撫民，五曰恤軍，六曰闕佛道，皆倣古文，語甚不切，命賜胡椒四斗，下疏于該曹。</p>
<p>성종 287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2월 21일 (경진) 2번째기사</p>	<p>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종정 야인(從征野人)27212 토이토(土伊吐) 등 3인을 접견하고 전교하기를,</p> <p>“너희들이 종정한 공로가 있으므로 특별히 음식을 대접하니, 취하도록 마시는 것이 좋다.”</p> <p>하니, 토이토 등이 대답하기를,</p> <p>“저희들이 성상의 은덕을 후하게 입어 이미 취하고 배부르니, 감격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p> <p>하였다. 또 승지(承旨)들에게 명하여 야인(野人)들을 대궐 안으로 불러 특별히 옥배주(玉杯酒)를 내리고 물품을 차등 있게 내려 주었다.</p>	<p>○御宣政殿接見從征野人土伊吐等三人，傳曰：“汝等有從征之功，故特饋之，期在必醉可也。”土伊吐等對曰：“吾等厚蒙上德，既醉既飽，無任感激之至。”又命承旨等招野人等于殿內，特賜玉杯酒，賜物有差。</p>
<p>성종 287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2월 23일 (임오)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장령(掌令) 김수동(金壽童)이 아뢰기를,</p> <p>“조복명(趙復命)의 일을 본부(本府)에서 전에 이미 아뢰었었는데, 전교하시기를, ‘해를 넘기면 서용(敍用)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조복명이 고과(考課)에서 하등에 든 지 얼마 안되었는데, 도로 수령(守令)에 서용하는 것은 너무나 가려서 임용하는 뜻이 없습니다.”</p> <p>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었다. 영사(領事) 윤호(尹壕)는 대답하기를,</p> <p>“하등[殿]에 든 자는 즉시 서용할 수 없습니다. 오래 되면 서용하는 것이 상</p>	<p>○御經筵。講訖，掌令金壽童啓曰：“趙復命事，本府前既啓之，而傳曰：‘經年則可以敍用。’復命居殿未久而還敍守令，殊無選任之意。”上顧問左右。領事尹壕對曰：“居殿者，果不可即敍，久則敍用例也。”特進官韓致禮曰：“臣嘗知其人才器可用者也，若干貪污，則不可敍也。《大典》亦載經</p>

	<p>례입니다.”</p> <p>하고, 특진관(特進官) 한치례(韓致禮)는 아뢰기를, “신이 전부터 그 사람을 아는데, 그 재능과 기국이 쓸 만한 자입니다. 만약 탐오(貪汚)를 범하였다면 서용할 수 없습니다. 《대전(大典)》에도 역시 해가 지나면 도로 서용한다는 법이 실려 있습니다.”</p> <p>하고, 동지사(同知事) 신준(申浚)은 아뢰기를, “전에 수령이 되어 하고(下考)에 들었다면 정말 현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빨리 서용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에는 하고에 들었던 자라도 해를 넘기면 서용하였다. 만일 인물이 용렬하다면 그만이겠지만, 전최(殿最)27215)란 감사(監司)가 일시적으로 평정(評定)하는 것이니, 해를 지나면 서용하는 것이 옳다. 만일 전(殿)에 들었다 해서 빨리 서용하지 않는다면, 《대전(大典)》과 서로 위배되며 폐단도 있을 것이다.”</p> <p>하였다. 김수동이 다시 아뢰기를, “박치 등의 일은 사목(事目)은 그리하나, 당상(堂上)의 자금(資級)을 가볍게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 승정원(承政院)에서도 그것을 말하였었다. 다만 사목에 의거하려는 것이다.”</p> <p>하였다. 김수동이 아뢰기를, “《대전(大典)》 안에 대저 수령(守令)으로 십고 십상(十考十上)한 자는 가자(加資)하고, 자금(資窮)한 자는 그 직질(職秩)에 준(准)한다 하였으며, 목사(牧使)의 논상 절목(論賞節目)은 실려 있지 않습니다. 만약 논상하려 한다면 마땅히 당상(堂上) 품계(品階)가 될 것인데, 이를 실지 않은 것은 당상의 직품을</p>	<p>年還敘之法。” 同知事申浚曰：“曾爲守令居下，則果非賢也。 亟敘未便。” 上曰：“前此，居下者經年則當敘，若人物篤下則已矣， 殿最監司一時之所爲，經年則敘之可也。 若以居殿而不亟敘， 則與《大典》相違， 弊亦有之。” 壽童更啓曰：“朴糴等事，事目則然矣，堂上之資，不宜輕授。” 上曰：“前日承政院亦言之，但欲依事目耳。” 壽童曰：“《大典》內，凡守令十考十上者加資，資窮者準職，而牧使論賞節目不載。 若欲論賞，當階堂上矣，其不載者，以堂上之職重也。 昔唐太宗以選人多詐冒資蔭， 勅令自首，不首者死。 未幾有詐冒事覺，太宗欲殺之，戴胄奏據法非死，太宗曰：‘卿欲守法而使朕失信乎？’ 對曰：‘勅者出於一時，法者所以布大信於天下也。 陛下以選人多詐，故欲殺之，既而知其不可，復斷之以法，此乃存大信也’，太宗從之。 今雖事目如此，而他條論賞何如？” 上顧問左右。 尹壕對曰：“臺諫之言是也。” 致禮曰：“有罰而無賞不可，如欲勸勵，當從事目也。” 特進官卞宗仁曰：“古之築城，不限期日，故</p>
--	---	--

중히 여긴 때문입니다. 옛날 당(唐)나라 태종(太宗)이 ‘사람을 선임(選任)하는데 흔히 음보(蔭補)를 사모(詐冒)한다.’ 하여 칙서[勅]를 내려 자수(自首)하게 하고, ‘자수하지 않는 자는 사형시킨다.’고 하였는데, 얼마 안되어 사모(詐冒)한 사실이 발각되어 태종이 죽이려고 하시자, 대주(戴胄)27216)가 법에 의거하여 사죄(死罪)가 아님을 주달하자, 태종이 이르기를, ‘경(卿)은 법을 지키려고 하여 짐(朕)으로 하여금 신의를 잃게 하려는가?’ 하니, 대주가 대답하기를, ‘칙서란 일시적으로 나오는 것이지만, 법이란 큰 신의를 온 천하에 반포하는 것입니다. 폐하(陛下)께서 사람을 선임하는 데 사모(詐冒)가 많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셨으나, 이미 그 불가함을 아셨으니 다시 법으로 결단하시면, 이는 곧 큰 신의를 보존하는 것이 됩니다.’ 하자, 태종이 그 말에 따랐습니다. 지금 비록 사목은 그와 같더라도 다른 조건으로 논상(論賞)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었다. 윤호(尹壕)는 대답하기를, “대간(臺諫)의 말이 옳습니다.”

하고, 한 치례(韓致禮)는 아뢰기를, “벌(罰)은 있고 상(賞)이 없는 것은 불가합니다. 만약 권려(勸勵)하려 한다면, 마땅히 사목을 따라야 합니다.”

하고, 특진관(特進官) 변종인(卞宗仁)은 아뢰기를, “옛날의 축성(築城)은 기일을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축조가 완전하고 견고하였지만, 지금은 10일을 기한하고 다 쌓게 하므로, 5년을 지나도 무너지지 않으면 이는 견고하게 쌓은 것입니다. 상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목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논상(論賞)할 때 와서야 직질(職秩)이 중대하여 시행할 수 없다니 되겠는가?”

하였다. 헌납(獻納) 남세담(南世聃)이 말하기를,

其築完固。今則期以十日而畢築，過五年不頽，則是堅築者也，不可不賞。”上曰：“事目已成，而當論賞之時乃曰：‘職秩重大，不可行。’可乎？”獻納南世聃曰：“壽童之言果然也。築之堅固，乃人臣職分也，若代加則可也。”壽童曰：“臣見永安道古城，雖築之年久不頽落。今之築城不然，而輒賞堂上之資可乎？”上曰：“所啓則然矣，但凡事既成節目而不行，則人將何勸？遣人審之後更議爲之。”壽童又啓曰：“李德崇發屬上之言，罪固重矣。但此院中僉議也，若於其時即啓，則不過妄啓而已。臺諫若言殿下政事之非，固非一人之私議，以一時所聞，圓議可否，或啓或不啓耳。德崇等所議之事，其時以爲啓之爲難，欲啓而止。今以切害論之，則臣恐自此以後，不諱之言，無由得聞也。”上曰：“爾所謂不諱之言不得聞者何也？若有其失，不諱而言可也，無其失而臺諫私自疑之可乎？如有所疑，當即啓之，而或於自中發言，或聞而疑之，此風不可長也。鄭錫堅猶在近侍，而不以直告，及義禁府訊問之時乃言之，若不窮鞠，

	<p>“김수동(金壽童)의 말이 과연 옳습니다. 견고하게 쌓는 것은 곧 신하로서의 직분입니다. 대가(代加)한다면 가하겠습니다.”</p> <p>하니, 김수동이 말하기를,</p> <p>“신이 영안도(永安道)의 옛 성을 보니, 쌓은 지가 오래 되었어도 퇴락(頽落)하지 않았는데, 오늘날의 축성은 그렇지 않은데도 번번이 당상(堂上)의 자급을 상으로 주는 것이 가하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이르기를,</p> <p>“계달(啓達)한 말은 옳다. 다만 모든 일에 이미 그 절목을 이루어 놓고도 시행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을 장차 어떻게 권장하겠는가? 사람을 보내어 살펴본 뒤에 다시 의논토록 하라.”</p> <p>하였다. 김수동이 또 아뢰기를,</p> <p>“이덕승(李德崇)이 성상에 관계되는 말을 발설하였으니, 그 죄가 진실로 중합니다. 그러나 이는 원중(院中)의 여러 사람들의 논의였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즉시 계달하였다면 경망한 논계(論啓)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대간(臺諫)이 만약 전하의 정사의 과실을 말하였다면 진실로 한 사람의 사의(私議)가 아닙니다. 일시(一時)에 들은 것으로 그 가부(可否)를 원의(圓議)하여 혹은 계달하고 혹은 계달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덕승 등이 논의한 것은 그 당시에 계달하기 어렵다 하여 계달하려다가 중지한 것인데, 이제 이를 절해(切害)한 것으로 논하게 되면 신은 아마도 금후에는 은휘(隱諱)하지 않는 말을 얻어 들을 길이 없을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이 이르기를,</p> <p>“그대가 이르는 은휘하지 않는 말을 들을 길이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 만약 과실이 있다면 은휘하지 않고 말하는 것이 옳지만, 과실도 없는데 대간(臺諫)이 사의(私意)로 의심하는 것이 가하겠는가? 만일 의심하는 바 있으면 마땅히 즉시 계달하여야 하지만, 간혹 그 안에서 발언하거나 듣고서 의심한다면, 이</p>	<p>彼必終不言也。” 壽童曰：“臣非以殿下爲惡直言而罪之也，但外人聞之，恐疑殿下以知而不告之律加罪也。 錫堅不當服此律矣。” 上曰：“錫堅，於初變辭矣。 朝士刑訊，予不忍爲，但人主不意之事，先自疑之，故予欲得情，弘文館言之，故議于大臣，大臣皆曰時推照律可也，且壽謙雖非國家故殺也，然死於杖下，故予慮此而止。” 壽童曰：“律與情相當則可矣。” 上曰：“照律則可知矣。” 壽童曰：“曾照知而不告之律也。” 上曰：“錫堅照律則重，而被罪輕矣。” 壽童反復論啓，上曰：“何律當耶?” 壽童曰：“更考當律爲便。” 世聃啓曰：“金誠童登第未過三年，其守富平亦不過二年，而遽陞嘉善，恐或濫矣。” 上問左右。 壕曰：“臺諫之言然也。” 浚曰：“臣聞，善於治民。” 致禮曰：“臣未知某事賢也，嘉善似過矣。” 上曰：“監司所啓如此，國家重守令之選，嘉善雖重，民蒙實惠，則加資何惜?” 世聃更論啓，不聽。 世聃又啓曰：“民間穀貴，綿布價賤，凡諸營繕量減，并行酒禁。” 上曰：“酒禁有弊，營繕亦出於不得已</p>
--	---	---

	<p>런 풍습은 자라게 할 수 없다. 정석견(鄭錫堅)은 근시(近侍)의 반열(班列)에 있으면서도 즉시 고하지 않고, 의금부(義禁府)에서 신문(訊問)할 때 가서야 비로소 말하였으니, 만약 추궁해 국문하지 않았으면 필시 끝까지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p> <p>하였다. 김수동이 아뢰기를, “신은 전하께서 바른 말을 미워하여 죄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외인(外人)이 들으면 아마도 전하께서 알고도 고하지 않은 율[知而不告之律]로 죄주지 않을까 의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석견을 이 율로 다스리는 것은 부당합니다.”</p> <p>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정석견이 당초부터 말을 바꾸었었다. 조사(朝士)를 형신(刑訊)하는 것은 내가 차마하지 못한다. 다만 인주(人主)가 생각지도 않은 일을 먼저 사의(私意)로 의심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 실정을 얻어 내려고 한 것인데, 홍문관(弘文館)에서 말하기에 대신에게 의논하였던 바, 대신들이 모두 말하기를, ‘시추 조율(時推照律)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또 민수겸(閔壽謙)을 국가에서 고의로 죽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형장 아래 죽었으므로 내가 이를 염려하여 중지하게 한 것이다.”</p> <p>하였다. 김수동이 아뢰기를, “율(律)과 실정이 서로 맞으면 가한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조율(照律)하면 알 것이다.”</p> <p>하였다. 김수동이 아뢰기를, “일찍이 알고도 고하지 않은 율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p> <p>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정석견에게 조율한 것은 중하여도, 죄를 입은 것은 경하다.”</p>	<p>也。凡不急營繕考啓。”壽童曰：“古人所以設酒者爲祭祀也，非崇飲也。如老者、病者、射者，猶可飲也，常人無遠慮，不知財殫，禁酒可也。”上曰：“國家欲省費，而愚民先受害，此亦有弊，禁酒前例節目考啓。”宗仁曰：“我國人知陣法者少。前此選內禁衛、兼司僕稍解文字者，以訓練院習讀官知陣法者，使之教誨，由此而選爲部將者有之。”上曰：“予觀習陣時，多有錯誤，如此則果善矣。”宗仁曰：“宜造小形名，令都摠府、兵曹共會，一朔內三度試之。”上曰：“然。”</p>
--	--	---

하였다. 김수동이 반복해서 논계(論啓)하자, 임금(金)이 이르기를,
“어떤 율(律)이 합당하겠는가?”
하니, 김수동이 말하기를,
“다시 이에 상당한 율(律)을 상고하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하였다. 남세담(南世聃)이 아뢰기를,
“김성동(金誠童)은 등과(登科)한 지 3년 밖에 되지 않았고, 부평 부사(富平府使)가 된 지도 2년 밖에 안되었는데, 갑자기 가선 대부(嘉善大夫)의 품계에 승진시키는 것은 아마도 외람된 듯합니다.”
하니, 임금(金)이 좌우에게 물었다. 윤호(尹壕)가 아뢰기를,
“대간(臺諫)의 말이 옳습니다.”
하자, 신준(申浚)이 아뢰기를,
“신은 그가 백성을 잘 다스린다고 들었습니다.”
하고, 한치례(韓致禮)는 아뢰기를,
“신은 무슨 일을 잘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가선 대부(嘉善大夫)는 지나친 듯합니다.”
하니, 임금(金)이 이르기를,
“감사(監司)의 계달(啓達)한 바가 이와 같고, 국가에서 수령(守令)의 선임을 중하게 여기므로 가선 대부의 <품계가> 비록 중하긴 하나, 백성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입었다면 가자(加資)를 어찌 아끼겠는가?”
하였다. 남세담이 다시 논계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남세담이 또 아뢰기를,
“민간에 곡식은 귀하고 면포(綿布) 값은 천하니, 모든 영선(營繕)을 적절히 줄이고 아울러 주금(酒禁)도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金)이 이르기를,
“술을 금하는 것은 폐단이 있고, 영선도 마지못해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급하지 않은 영선은 고찰해 아뢰도록 하라.”

	<p>하였다. 김수동(金壽童)이 아뢰기를, “옛사람이 술을 만들어 낸 것은 제사에 쓰기 위한 것이었지, 술마시는 것을 숭상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늙은 자와 질병을 앓는 자와 활쏘는 자는 오히려 마실 수 있겠지만, 범상한 사람은 원려(遠慮)가 없어서 재물이 다하는 것을 모르므로 술을 금하는 것이 옳습니다.”</p> <p>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국가에서 경비를 절약하려고 하면, 어리석은 백성들이 먼저 그 해를 받으므로 이 또한 폐단이 있다. 금주(禁酒)한 전례의 절목(節目)을 상고해서 아뢰도록 하라.”</p> <p>하였다. 변종인(卞宗仁)이 아뢰기를, “우리 나라 사람이 진법(陣法)을 아는 자가 적어서 전에는 내금위(內禁衛)와 겸사복(兼司僕)에서 약간 문자(文字)를 해독하는 자를 선발하여 훈련원(訓練院) 습독관(習讀官)으로서 진법을 아는 자를 시켜 이들을 가르치게 하였는데 이를 거쳐서 부장(部將)에 선임된 자도 있습니다.”</p> <p>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습진(習陣)할 때 보니, 착오가 많았는데, 이렇게 한다면 과연 잘하는 것이다.”</p> <p>하였다. 변종인이 아뢰기를, “소형명(小形名)27217 을 만들어서 도총부(都摠府)와 병조(兵曹)로 하여금 같이 모이게 하여 한 달에 세 차례씩 시험하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렇게 하라.”</p> <p>하였다.</p>	
<p>성종 287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p>	<p>전교하기를, “당번(當番)한 제색 군사(諸色軍士) 중에서 능히 글을 해독하는 자를 선택하</p>	<p>○傳曰: “當番諸色軍士中, 選擇能解 文者, 常令肄習陣法, 每一朔用小形</p>

<p>(弘治) 7년 2월 23일 (임오) 3번째기사</p>	<p>여 상시로 진법(陣法)을 연습하게 하되, 한 달마다 소형명(小形名)을 사용하여 세 차례 시험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또 금주(禁酒)한 전례는 헌부(憲府)로 하여금 상고해 아뢰도록 하라. 정석견(鄭錫堅)의 조율(照律)이 과중하다 하니, 그렇다면 어떤 율이 적합하겠는가? 의금부(義禁府)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p>	<p>名，三次試之可也。 且禁酒前例，令憲府考啓。 鄭錫堅照律過重，然則何律可合耶？令義禁府更議以啓。”</p>
<p>성종 287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2월 26일 (을유) 3번째기사</p>	<p>시강원 보덕(侍講院輔德) 이거(李瑠)가 운회 서문[韻會序]을 진강(進講)하였다. 강(講)하기를 마치고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평안도(平安道)에 가서 그 병영(兵營)을 설치한 곳의 형세(形勢)를 관찰한 바 있는데 영변(寧邊)은 바로 병사(兵使)가 그의 처자를 거느리고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사가 본영(本營)에 있는 날은 많고 강변(江邊)을 순찰하는 날은 적었으니, 방어하는 데 있어서는 겨울이나 여름이라 하여 조금도 늦출 수 없는 것입니다. 본영에서 강변까지는 하루 이틀의 노정(路程)이 아니므로, 혹시 사변이 있을 경우 달려가서 구원하기가 참으로 어려우니, 신의 생각으로는 감사(監司)는 내지(內地)를 검찰(檢察)해 단속하게 하고, 병사는 항상 강변을 순찰하게 하며, 그 처자는 대솔(帶率)하지 말도록 하소서. 그 진(鎭)을 옮기는 데 대한 편부(便否)는 신이 감히 독단하여 의논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의 이르기를, “영변에 진(鎭)을 설치한 뜻을 나도 감히 알지 못하겠다. 상고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거가 또 아뢰기를, “평안도의 역로(驛路)가 지극히 잔폐(殘弊)해 있습니다. 서과(西瓜)27233) 등의 물품이 유독 이 도에서만 생산되는 것도 아니고 또 긴요한 물건도 아니니, 진상(進上)하지 말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자, 김응기(金應箕)가 아뢰기를,</p>	<p>○侍講院輔德李瑠進講《韻會》序，講訖，啓曰：“臣曾往平安道，察其置營形勢，寧邊乃節度使率妻子所居也，兵使在本營之日多，巡江邊之日少，防禦不可以冬夏而少弛也，自本營至江邊非一、二日之程，脫有事變，馳往救援誠難。 臣意以謂，令監司檢察內地，令兵使常巡江邊，勿令帶妻孥，其移鎭便否，臣不敢擅議也。” 上曰：“寧邊設鎭之意，予未敢知，當考之。” 瑠又啓曰：“平安驛路，至爲凋殘，只如西瓜等物，非獨產於此道，而又不緊，勿進何如？” 金應箕曰：“臣嘗至江界而返路甚危險，報變絡繹，驛馬之困，倍於他道，若有可除之事，令該司量除爲便。” 上曰：“如西瓜、生梨不緊之物，果可除之。”</p>

	<p>“신이 일찍이 강계(江界)까지 갔다가 돌아왔는데, 길이 매우 험하고 사변을 알리는 <관원이> 연속 부절(不絶)하여 역마(驛馬)의 피곤함이 다른 도보다 갑절이나 더했습니다. 만약 제거할 만한 일이 있으면, 해사(該司)로 하여금 적당히 헤아려 제거토록 하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서과(西瓜)·생리(生梨)와 같은 긴절하지 않은 물건은 제거할 만하다.” 하였다.</p>	
<p>성종 287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2월 27일 (병술) 4번째기사</p>	<p>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송길(宋軼) 등이 차자(笱子)를 올리기를, “그욱이 생각하건대 대마주(對馬州)는 바로 우리 나라의 변신(蕃臣)이므로, 진실로 은덕으로 위로하고 엄위(嚴威)로 대하면서 포상(褒賞)할 일이 있으면 특별히 선위사(宣慰使)를 보냈고, 통유(通諭)할 일 같으면 다만 온 사자(使者)편에 부송(付送)하여 사개(使价)를 번거롭게 하지 않고서도 국가의 체통을 엄히 지켜 온 것은 조종조(祖宗朝)로부터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포(齊浦)의 왜인(倭人)이 우리 백성과 어량(漁梁)을 다투다가 관차(官差)를 구타하였으니, 이는 마땅히 도주(島主)에게 유시하여 그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조관(朝官)을 파견하시니, 그 불가함이 세 가지입니다.</p> <p>큰 나라가 변이(蕃夷)에게 일이 있으면 서신으로 힐문하여 엄중한 위엄을 보여야 하는데, 번번이 사명(使命)을 보내어 적국(敵國)의 예(禮)로 대하고 스스로 낮추어서 우리 말에 따르기를 요구하니, 그 불가함의 첫째이고, 우리 나라가 저들 섬에 서신을 보내어 통유하고, 사절을 보내어 선위(宣慰)한 것은 저절로 구례(舊例)가 있는데, 지금 포상할 일도 없이 다만 통유하기 위하여 사신까지 보내고, 또 예물(禮物)도 보내게 되면, 금후 저들에게 통유할 일이 있을 경우, 저들은 필시 이를 한 전례로 삼아서 그와 같이 하기를 요구할 것이니, 그 불가함의 둘째이고, 지금 법을 범한 왜인이 그 도주(島主)와 혼인한</p>	<p>○弘文館副提學宋軼等上笱子曰： 竊惟對馬州乃我國蕃臣，固當撫之以恩，亦當待之以嚴，有褒賞之事，特遣宣慰，若通諭之事，但就付來使，不煩使价，以嚴國體，自祖宗朝爲然。今者齊浦倭人與我民爭魚梁，毆官差，是宜諭島主以治其罪。然特遣朝官，其不可者有三。大國之於藩夷，有事則折簡以問之，以示威重，若輒發使命，待之如敵國之禮，自卑以求聽其言，一不可也。我國之於彼島，致書以通諭，遣使以宣慰，自有舊例，今無褒賞之事而但以通諭，至遣使臣，又遣禮物，後有通諭於彼，彼必援例以要之，一開其端，末流莫支，二不可也。今犯法之倭，與島主婚媾，勢必相容，雖開諭萬端，彼或不聽，則辱命莫大，辱命之後，不識國家，將何以處之？今不先定廟</p>

처지이니, 형세로 보아 반드시 서로 용납하여 비록 만단(萬端)으로 타이른다 해도, 저들이 듣지 않는다면 왕명을 크게 욱되게 함이 이보다 큼이 없을 것인데, 왕명을 욱되게 한 뒤에 국가가 장차 어떻게 처리하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묘당(廟堂)의 계책도 먼저 정하지 않고서 갑자기 사신을 보내는 것이 세째로 불가한 것입니다.

세조조(世祖朝) 때 부산포(釜山浦)에 거주하던 왜인이 무리를 지어 병기를 가지고 만호(萬戶)를 핍박해 위협하였고, 또 멋대로 공전(公田)을 경작하였으니, 그 죄가 큼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사신을 보내지도 않았거니와 또 도주가 특별히 보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는 다만 보통 왜인으로 조회하러 오는 자를 이용하여 서신을 부송하여 타이르니, 저들이 즉시 사죄(謝罪)하고 명을 따랐으니, 이는 곧 선왕(先王)의 변이(蕃夷)를 대하시는 데 있어 가장 적절한 계책을 얻으신 것입니다.

지금 옛 전례를 어기고 특별히 사신을 보냈다가 혹시 명을 거역하는 사태가 있게 되면, 위엄[威重]을 손상함이 막심할 것입니다.

신 등은 듣건대 제포의 왜인이 처음에는 비록 죄를 범하였으나, 바로 잘못을 뉘우치고 죄를 자복하고는 그 어량을 철거하였다 하는데, 지금 만약 심하게 다스린다면 제왕(帝王)의 큰 도량이 어찌 되겠습니까? 신 등의 망령된 생각으로는 다만 전지(傳旨)를 선포하여 엄중히 경계하고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이 국가 체통을 잃지 않을 것 같으며, 마지못하여 통유(通諭)하여 죄를 다스린다면, 마땅히 선왕조(先王朝)의 구례(舊例)와 같이 오는 사자에게 서신을 부송하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비록 어김이 있더라도 다시 신칙(申飭)을 더하게 되면, 우리도 정당하게 할 말이 있을 것이니 사신을 보냈다가 왕명을 욱되게 하는 데 비해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일을 하려면 먼저 계책을 잘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이 일이 국가 체통에 큰 관계가 있으니, 청컨대 신 등의 이 차자(劄子)를 내리시어 조정에 널리 수의(收議)하게 하소

算, 而遽爾遣使, 三不可也。在世祖朝, 釜山浦居住倭人, 聚黨操兵, 怯逼萬戶, 又擅耕公田, 其罪大矣, 猶不遣使, 亦不須島主特送, 而只用常倭之來朝者, 付書以諭之, 彼即謝罪聽命, 乃先王待藩夷得中之策也。今違舊例, 特遣使价, 脫有拒命, 傷威損重莫甚。臣等聞齊浦倭人初雖犯罪, 旋即悔過服罪, 撤去魚梁, 今若從而深治之, 在帝王大度爲何如? 臣等妄意, 但以宣旨, 嚴以勅之, 寬以宥之, 似未爲失體。無已而通諭治罪, 則當如先王舊例, 付書來使爲便。雖或有違, 更加申飭, 我亦有辭, 比諸遣使辱命, 大有逕庭。古人云: “作事謀始。” 此事大關國體, 請下臣等之劄, 廣議于朝。傳曰: “予之遣使之意非耶? 弘文館所啓非耶? 議于領敦寧以上及議政府、六曹、漢城府、臺諫。” 尹弼商、李克培議: “前日遣朝官事傳教, 臣等已議允當。” 盧思慎議: “弘文館之言有理, 勿遣朝官爲便。” 韓致亨、鄭文炯、申浚、盧公弼、李陸、金克儉、李季男、李諱、安友騫、慎守勤、鄭敬祖、李淑臧議: “倭奴爭魚梁, 此特

	<p>서.”</p> <p>하니, 전교하기를,</p> <p>“나의 사신을 보내려는 생각이 잘못인가, 홍문관(弘文館)의 아뢰는 것이 잘못인가, 영돈녕(領敦寧) 이상 및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한성부(漢城府)·대간(臺諫)에게 의논하도록 하라.”</p> <p>하였다. 윤필상(尹弼商)·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p> <p>“전일 조관(朝官)을 파견하겠다는 전교를 신 등은 이미 온당(允當)한 것으로 의논하였습니다.”</p> <p>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p> <p>“홍문관의 말이 이치가 있습니다. 조관은 파견하지 않는 것이 온당합니다.”</p> <p>하고, 한치형(韓致亨)·정문형(鄭文炯)·신준(申浚)·노공필(盧公弼)·이육(李陸)·김극검(金克儉)·이계남(李季男)·이집(李諱)·안우건(安友騫)·신수근(愼守勤)·정경조(鄭敬祖)·이숙감(李淑臧)은 의논하기를,</p> <p>“왜노(倭奴)들이 어량(魚梁)을 다룬 것은 단지 사소한 일이며, 처음에는 비록 쟁탈하였으나 이미 스스로 그 잘못을 알고 즉시 철거해 가버렸는데, 지금 예물(禮物)을 갖추어서 조관에게 위임(委任)해 보내는 것은 국가 체모에 손실이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저들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장차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이 뒤에 오는 특송인(特送人)에게 통유문을 부송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홍문관의 차자는 내용이 매우 사체(事體)에 부합합니다.”</p> <p>하고, 정괄(鄭恪)·신종호(申從濩)·허계(許誠)·박원종(朴元宗)은 의논하기를,</p> <p>“제포(齊浦)의 왜인이 귀화[投化]한 지 이미 오래인데,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량(魚梁)을 강탈 점거(占據)하고는 관차(官差)까지 구타하였으니, 그 죄가 진실로 큼니다. 그러나 이적(夷狄)이란 짐승과 같습니다. 왕자(王者)의 포용하는 도량으로 보아서는 진실로 다스리지 않아야 하고, 다스리더라도 서로 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구나 저 사람들이 바로 사죄함이겠습니까? 지금</p>	<p>小事，初雖爭奪，已自知其非，旋即撤去。今者修禮物委遣朝官，有損國體，況若彼不順命，則將何以處之？因後來特送人，就付諭之爲便。弘文館劄子辭語，甚合事體。”鄭恪、申從濩、許誠、朴元宗議：“齊浦倭人，投化已久，不畏國法，占奪魚梁，以至毆打官差，罪固大矣。然夷狄禽獸也，在王者包容之量，固當以不治治之，不須與之相較，況彼人旋自謝罪乎？今遠遣朝官，下諭島主，是則以大國之尊，反聽於海島小醜，其虧損大體爲不少矣。凡事不但慮始，當思善後，萬一島夷不遵使旨，則不知施何策可以善後也？臣等意，不遣爲便。若以全釋爲不可，則作一書就付還倭，如此而後，庶全國體。”李克墩、宋瑛、金諶議：“今倭人所犯，自恣無忌，推問之時，不即承服，乃至逃歸，固當示之國法，以戒其後，但遣朝官通諭過重。弘文館所論三條，果合事體，然全釋則必不悔悟。今來日本國王使臣護送船主，別例接待，就付書契，使之通諭何如？”尹愨、李均、李緝、金壽童、姜訶、柳仁洪、南世聃、金四知、孫澍議：“齊</p>
--	---	---

멀리 조관(朝官)을 보내어 도주(島主)에게 유서(諭書)를 내리시게 되면, 이는 존엄한 큰 나라가 도리어 바닷섬의 추한 무리에게 따르는 것으로서 그 대체(大體)를 휴손함이 적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시초만 염려할 것이 아니고 선후책(善後策)도 생각하여야 하는데, 만일 저 섬오랑캐가 유지(諭旨)를 따르지 않는다면, 어떤 계책을 실시하여야 뒤를 잘 마무리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조관을> 보내지 않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 만약 완전히 풀어주는 것이 옳지 않다면 서신을 한 통 만들어서 돌아가는 왜인에게 붙이면 됩니다. 그렇게 한 뒤에야 국가의 체통을 보전할 것입니다.”

하고, 이극돈(李克墩)·송영(宋瑛)·김심(金諶)은 의논하기를,
“지금 왜인의 범행이 방자하고 기탄(忌憚)함이 없어서, 추문(推問)할 때 즉시 승복(承服)하지 않고 도망해 돌아갔으니, 마땅히 국법(國法)을 보여 후인(後人)을 경계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관을 보내어 통유(通諭)하는 것은 과중(過重)하고 홍문관(弘文館)이 논계(論啓)한 3개 조항이 진정 사체(事體)에 합당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풀어 주게 되면 필시 회오(悔悟)하지 않을 것이니, 지금은 일본 국왕(日本國王)의 사신을 호송하는 선주(船主)를 특례로 접대하고 서계(書契)를 그에게 부쳐서 통유(通諭)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민(尹愨)·이균(李均)·이집(李諱)·김수동(金壽童)·강형(姜訶)·유인홍(柳仁洪)·남세담(南世聃)·김사지(金四知)·손주(孫澍)는 의논하기를,
“제포(薺浦)의 왜인(倭人)은 우리 국적을 가진 백성이니 다름이 없지만, 감히 어량(魚梁)을 다투다가 관차(官差)를 구타하기까지 하였으니, 이 조짐을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유를 갖추어서 오는 왜인편에 부송(付送)하여 도주(島主)에게 통유하여 그 죄를 다스리게 할 것이고, 굳이 조관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홍문관(弘文館)에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한 말이다. 지금 군의(群議)를 보니,

浦倭人，與我國編氓無異，而敢爭魚梁，至打官差，漸不可長，當具事由付來倭諭島主，以治其罪，不必委遣朝官。”傳曰：“弘文館不深思而言也。今觀群議，或有欲勿遣者。予意，遣朝官而彼之聽與不聽，何可料哉？彼雖不聽，何損國威？如此則天子亦有致書于凶奴乎？遣朝官可也。”

	<p>혹은 보내지 않으려는 자도 있으나, 내 생각에는 조관을 보내야 하며, 저희들이 듣거나 듣지 않는 것을 어찌 요량하겠는가? 저들이 듣지 않는다 해도 국위(國威)에 무슨 손실이 있겠는가? 이와 같은 일이면 천자(天子)도 흉노(凶奴)에게 서신을 보냈을 것이다. 조관을 보내는 것이 가하다.”</p> <p>하였다.</p>	
<p>성종 287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2월 29일 (무자) 2번째기사</p>	<p>사헌부(司憲府)에 전지(傳旨)하기를, “흉년에 소비[糜費]가 우려되니, 제사(祭祀)와 혼인(婚姻)과 부모(父母)의 헌수(獻壽)와 사후(射侯)27242) 및 병술[瓶酒]을 휴대하는 정도의 것을 제외하고는 일체 금주하도록 하라. 문무관(文武官)의 양반 자제(兩班子弟)가 습사(習射)할 때는 가(可)하여도 시정(市井)의 무뢰배(無賴輩)가 활을 쏜다 핑계하고 한것 음주만 하는 자는 아울러 금단(禁斷)하게 하라.”</p> <p>하였다.</p>	<p>○傳旨司憲府曰：“年歉糜費可慮，祭祀、婚姻、父母獻壽、射侯及持瓶酒外，一切禁酒。若文武官兩班子弟習射時可矣。市井無賴之徒，托以射侯，徒事飲酒者，并禁斷。”</p>
<p>성종 288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3월 1일 (경인) 3번째기사</p>	<p>중부(中部) 민가(民家)에서 실수로 불이 났는데, 명하여 무신년(27258) 예(例)에 의하여 쌀 4, 5두(斗) 씩을 내려 주게 하였다.</p>	<p>○中部民家失火。命依戊申年例賜米四五斗。</p>
<p>성종 288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3월 3일 (임진) 2번째기사</p>	<p>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이세좌(李世佐)가 와서 아뢰기를, “민간(民間)에 비록 굶주린 기색은 없다고 하겠으나 때가 바야흐로 농사철인데 백성들의 식량이 떨어지면 농사에 힘을 쓸 수가 없으니, 청컨대 군자창(軍資倉)의 미곡(米穀)으로 진급(賑給)하게 하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p> <p>하였다.</p>	<p>○京畿觀察使李世佐來啓曰：“民間雖無飢色，然時方農月，民食乏絕，則不能力農。請以軍資倉米穀賑給。”傳曰：“可。”</p>
<p>성종 288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3월 4일</p>	<p>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 조위(曹偉)가 아뢰기를, “여러 고을의 군자창(軍資倉)에 비치하여 둔 상실(橡實)27261) 이 쌓아 둔지 오래 되어 벌레가 생겨서 손실(損失)이 됩니다. 청컨대 민간(民間)에 흩어</p>	<p>○癸巳/忠淸道觀察使曹偉啓：“諸邑軍資倉所置橡實，積久蟲損。請於民間斂散。”命問于政院，政院啓曰：“其</p>

<p>(계사) 1번째기사</p>	<p>주었다가 거두어 들이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정원(政院)에 물어 보도록 하였다. 정원(政院)에서 아뢰기를, “그 처음에 인리(人吏)로 하여금 상실을 구해다 바치도록 한 것은 장차 흉년에 대비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후 그대로 해마다 바치게 하였으므로 인리로서 스스로 주울 수 없는 자는 곡식으로써 바꾸어 바쳤으니, 이 또한 폐단이 있었습니니다. 지금 만약 흠어 주었다가 거둬들이게 되면 반드시 민간에 큰 해가 될 것입니다. 또 이 상실을 여러 해 동안 쌓아 두게 되면 반드시 벌레의 손실이 생기게 되니, 만약 흉년을 만나면 가을에 주워서 바치게 했다가 봄에 백성에게 진휼(賑恤)하되 환납(還納)하지 말게 하는 것이 가하겠습니니다. 이렇게 하면 백성도 폐단을 받지 않고 구황(救荒)하는 정책도 거행(舉行)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는 내가 즉위(卽位)한 뒤의 일이니, 상세히 그 원인을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p>	<p>初令人吏取橡實以納者，將以備荒也。其後因循年年而納，人吏之不能自拾者，以穀質納，此亦有弊。今若斂散，則必爲民間巨害，且此橡實積之年久，則必致蟲損，若遇凶年，秋而拾納，春而賑民，勿令還納可也。如此則民不受弊，而荒政亦可舉矣。”傳曰：“此予卽位以後事也。詳考其源以啓。”</p>
<p>성종 288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3월 4일 (계사) 3번째기사</p>	<p>임금이 후원(後苑)에서 두 대비(大妃)에게 진연(進宴)27263) 하고, 종친(宗親) 1품(品)과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한성부(漢城府)·충훈부(忠勳府)·의빈부(儀賓府)·입직(入直)하는 제장(諸將)과 승정원(承政院)·대간(臺諫)과 입직하는 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 관원을 북소(北所)로 명소(命召)하여 술과 풍악을 내려 주었다.</p>	<p>○上進宴兩大妃于後苑。命召宗親一品領敦寧以上、議政府、六曹、漢城府、忠勳府、儀賓府、入直諸將、承政院、臺諫、入直弘文館、藝文館員于北所，賜酒樂。</p>
<p>성종 288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3월 5일 (갑오) 3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서 상실(橡實)을 주워 바치도록 시작한 연대를 써서 아뢰니, 전교하기를, “마땅히 조위(曹偉)의 말과 같이 민간(民間)에 흠어 주었다가 거두어들이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민간에 흠어 주었다가 거두어들이는 것은 진실로 폐단이 있다고 하겠습니니다. 상실(橡實)은 반드시 산림(山林)에서 생산되는데, 해마다 흠어 주었다가 거두어들이는 것 같으면 산골에 있는 고을의 백성은 그래도 쉽게 굶겠지만, 평야(平</p>	<p>○戶曹書橡實拾納始年以啓。傳曰：“宜如曹偉之言，民間斂散可也。”承政院啓曰：“民間斂散，實爲有弊，橡實必產於山林，若每年斂散，則山郡之民猶可易拾，平野之民何能自得？必質於產處，非徒人吏受弊，平民亦受其害。請令該曹議啓施行。”傳曰：“橡實不須民間斂散也。但令逐年儲之，</p>

	<p>野)의 백성은 어떻게 스스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생산되는 곳에서 무역하여야 할 것이니, 인리(人吏)만 폐단을 받을 뿐 아니라, 일반 백성도 그 침해를 받을 것이니, 청컨대 해조(該曹)로 하여금 의계(議啓)하게 하여 시행(施行)하도록 하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 “상실(橡實)을 민간(民間)에 흠어 주었다가 거두어들이 필요가 없다. 다만 해마다 쌓아 두었다가 만약 흉년을 만나면 진급(賑給)하는 것이 적당하겠다. 내가 듣건대 상실은 비록 여러 해 동안 쌓아 두더라도 좀으로 인한 손실이 심하지는 않다고 하니, 오래 쌓아 두었던 상실은 별도의 창고로 옮겨 쌓아 두었다가 흉년에 대비하는 것이 옳겠다.”</p> <p>하였다.</p>	<p>如遇凶荒，則賑給爲便。予聞橡實雖積之年久，不甚蠱損，其久儲橡實，移積別倉，以備凶荒可也。”</p>
<p>성종 288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弘治) 7년) 3월 8일 (정유)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지평(持平) 강형(姜訶)이 아뢰기를, “역대(歷代) 환시(宦寺)의 일은 성주(聖主)께서도 밝게 아실 것입니다. 마땅히 백관(百官)의 예(例)로 대가(代加)하여도 충분할 것인데 공훈(功勳)이 없는 환관과 의관에게 함부로 더하여 주시니, 신 등은 결망(缺望)이 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나의 뜻을 이야기하였으므로, 그대들도 알았을 것이다.”</p> <p>하였다. 헌납(獻納) 남세담(南世聃)이 아뢰기를, “대간(臺諫)·시종(侍從)이 모두 불가하다고 하고 대신(大臣)도 불가하다고 하는데 성상께서만 굳이 공론(公論)을 거절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대학(大學)》에 이르기를, ‘그 친애(親愛)하는 바에 치우치게 된다.’고 하였으니, 만약 인군(人君)이 마음에 가리운 바가 있으면 그 정당함을 얻지 못하게 되어 대간(臺諫)의 말이 아무리 간절해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옛날 한(漢)나라 고조(高祖)가 사랑하는 것으로 태자(太子)를 바꾸려고 하자(27274)</p>	<p>○御經筵。講訖，持平姜訶啓曰：“歷代宦寺之事，聖主洞照，當如百官之例，代加足矣。獨於無功之宦、醫濫加焉，臣等缺望。”上曰：“既告予意，汝等亦喻矣。”獻納南世聃啓曰：“臺諫、侍從皆曰不可，大臣亦曰不可，而上固拒公論何也？《大學》云：‘之其所親愛而辟焉。’若人君心有所蔽，則不得其正，臺諫之言雖切，不易入也。昔漢高祖以愛易太子，群臣咸諫而不納，賴四皓而止，豈非親愛辟焉之弊也？”上曰：“元孫之生，實宗社臣民之慶，何與於漢高易太子之事乎？宦、醫雖曰無功，然業已爲之，不可追改</p>

, 여러 신하들이 모두 간(諫)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다가 사호(四皓)27275)를 의뢰하여 중지하게 되었으니, 어찌 친애(親愛)에 치우친 폐단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임금께서 이르기를,
 “원손(元孫)의 탄생(誕生)은 진실로 종사(宗社)나 신민(臣民)의 경사인데, 어떻게 한 고조(漢高祖)가 태자를 바꾸던 일에 간여시키는가? 환관과 의관이 비록 공(功)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렇게 하라고 하고서 뒤따라 고칠 수 없다.” 하였다. 참찬관(參贊官) 송질(宋軼)이 아뢰기를,
 “이런 무리에게 함부로 관작을 주는 것은 대체(大體)에 관계됨이 있으니, 청컨대 대간(臺諫)의 말을 따르소서.”

하고, 검토관(檢討官) 강혼(姜渾)이 아뢰기를,
 “비록 작은 행동과 조그마한 허물이라도 대간(臺諫)의 말이면 진실로 마땅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 다소려져 태평하지만 닥쳐오는 조짐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唐)나라 태종(太宗) 때에 중관(中官)의 직질(職秩)이 겨우 4품에 그쳤지만, 마침내 나라를 망하게 하는 화(禍)를 이루었습니다. 이 일은 대간이 말할 뿐만 아니라, 대신(大臣)·시종(侍從)이 모두 불가하다고 하는데 전하(殿下)께서는 후환(後患)을 염려하지 않으시고 공의(公議)를 배격하면서 들어주지 않으시니, 사필(史筆)로 쓰게 되면 어찌 성덕(聖德)에 누(累)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였으며, 지사(知事) 정괄(鄭恬)이 아뢰기를,
 “말류(末流)의 폐단은 알 수는 없으나, 이런 무리에게 일찍이 2품에 제수시킨 것도 이미 그 분수에 지나친 것이며, 이제 또 공훈이 없는데 특별히 높은 직질로 올려주는 것은 지나칩니다. 만약 부득이하면 다른 물품으로 상(賞)을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으나, 모두 들어주지 않았다. 강형(姜詔)이 아뢰기를,

也。”參贊官宋軼啓曰：“此輩濫爵，有關大體，請從臺諫之言。”檢討官姜渾啓曰：“雖細行小過，臺諫之言固當聽納。今雖治平，後來之漸，不可不慮。唐太宗時，中官之職僅止四品，而卒致亡國之禍。此事非但臺諫言之，大臣、侍從僉曰不可，殿下不慮後患，排公議而不聽，書之史筆，豈不爲聖德之累？”知事鄭恬啓曰：“末流之弊未可知也。此輩曾授二品，已踰其分，今又無功而特陞高秩過矣。如不得已，以他物賞之何如？”皆不聽。姜詔啓曰：“昔倭人殺我民，其時將遣高台弼諭之，然非敵國，故只通書契而已。今爭魚梁非大事，不必遣朝官也。彼若不聽，將何以處之？”上曰：“今之遣使，非爲魚梁也。南方不虞之變，唯在島夷，若以此爲小事而不懲，則益肆跳梁，無所畏忌，受侮不少矣。今遣朝官，以觀其勢可也。”世聘曰：“邊將供餉之時，尙且懷疑，必佩刀劍，變詐無常，恐有中間倉卒之變。但以書諭之何如？”領事李克培啓曰：“倭人懷劍，乃是常事無足怪者，不可以生變爲虞也。世祖遣元孝然往對馬島，擇軍

	<p>“옛날 왜인(倭人)이 우리 백성을 죽였는데 그 때 장차 고태필(高台弼)을 보내어 유시(諭示)하려고 하였으나 적국(敵國)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서계(書契)로 통지하였을 뿐입니다. 지금은 어량(魚梁)을 다툰 것으로 큰 일이 아니니, 조관(朝官)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보냈다가> 저들이 만약 들어주지 않으면 장차 어떻게 조치하시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지금 사신을 보내는 것은 어량(魚梁)을 위해서가 아니다. 남방(南方)의 생각하지 않은 변고는 오직 도이(島夷)에게 달려 있으니, 만약 이런 것을 작은 일로 여겨 징계하지 않는다면 더욱 방자하게 날뛰면서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바가 없어 수모를 받는 것이 적지 않을 것이므로, 지금 조관을 보내어 그 형세(形勢)를 살펴보는 것이 옳겠다.”</p> <p>하였다. 남세담(南世聃)이 말하기를,</p> <p>“변장(邊將)이 공향(供餉)할 때에도 오히려 의심을 품고 반드시 도검(刀劍)을 차며 요리조리 속이는 것이 일정함이 없으니, 아마도 중간에 갑작스런 변고가 있을 듯 합니다. 다만 글로써 유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고, 영사(領事) 이극배(李克培)는 아뢰기를,</p> <p>“왜인(倭人)이 칼을 품는 것은 늘 있는 일이니 꾀이하게 여길 것이 없으며, 변고를 일으킨다고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세조(世祖)께서 원효연(元孝然)을 파견하여 대마도(對馬島)에 가게 하면서 군관(軍官)을 뽑아 데리고 가도록 하였는데, 우리 나라 사람들은 모두가 수로(水路)로 다니는 것을 꺼려하여 서로가 왕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 섬[島]의 산천(山川)의 험하고 평탄한 것과 도로(道路)의 굽고 곧은 것을 모두 알 수가 없으니, 끊임없이 왕래하여 역력히 형세(形勢)를 알아 둔다면 가할 터인데, 변고(變故)를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官帶去，我國人皆憚水路，不相往來，故彼島山川險易，道路曲直，皆不得知，令常常往來，歷諳形勢可也。變故何足畏哉？”上曰：“島主歸付我國久矣。前者遣使之時，軍官皆善射，彼人咸服之，今可遣使觀島主歸順之意，不亦可乎？鄭誠謹性狹隘不能從權，故島主怒而致書也。”鄭恬曰：“三浦居倭，其類是繁，國家終必難支矣。”上曰：“向者，江原道之民妄疑倭變，驚怖騷動，如有大變，誰能禦之？此狃於昇平故也。”克培曰：“古無諸浦之防，或有倭船直入東西江。今沿海置鎮，謹嚴防戍，倭變豈足慮哉？”世聃曰：“沿海諸鎮精鍊軍器，增置戍卒，以備不虞何如？”上曰：“如此事，節度使當自處置，若別鍊器械，彼必聞而疑之，將有騷擾之弊，莫若因其自然而處之也。”特進官李陸曰：“臣聞倭船尺量之時，或賄賂或爭鬪，紛擾莫甚，若於五十隻定其常數，則可無尺量之弊。”上曰：“何以言定其人數，不必尺量耶？”克培曰：“五十隻內分大小小船，某船定人數幾許，以此而等殺，則庶無此弊矣。”鄭恬曰：“法不可新立也。”</p>
--	---	---

“도주(島主)가 우리 나라에 귀부(歸付)한 지 오래 되었다. 지난번에 사신을 보낼 때는 군관(軍官)이 모두 활을 잘 쏘았으므로 피인(彼人)들이 모두 복종하였으니, 지금 사신을 보내어 도주(島主)의 귀순(歸順)하는 뜻을 관찰하는 것도 또한 옳지 않겠는가? 정성근(鄭誠謹)의 성품은 협애(狹隘)하여 능히 권도를 좇지 못했기 때문에 도주가 노여워하여 글을 보내 온 것이다.”

하였다. 정괄(鄭佸)이 말하기를,

“삼포(三浦)27276) 에 사는 왜인(倭人)이 그 유(類)가 이렇게 많으니, 국가에서 마침내는 반드시 지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번 강원도(江原道)의 백성들이 허망하게 왜인(倭人)의 변고를 의심하여 놀라고 두려워하며 소동(騷動)을 피웠는데, 만약 큰 변고가 있게 되면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이는 태평한 데 익숙한 까닭이다.”

하였다. 이극배(李克培)가 말하기를,

“예전에는 모든 포(浦)에 방어가 없으므로 간혹 왜선(倭船)이 곧바로 동강(東江)이나 서강(西江)으로 들어오는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연해(沿海)에다 진영(鎭營)을 설치하여 방수(防戍)를 근엄(謹嚴)하게 하고 있으니, 왜인의 변고가 어찌 염려스럽겠습니까?”

하고, 남세담(南世聃)은 이르기를,

“연해(沿海) 모든 진영(鎭營)에 군기(軍器)를 정밀하게 연마(鍊磨)하고 수졸(戍卒)을 증가(增加) 배치(排置)시켜서 불우(不虞)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와 같은 일은 절도사(節度使)가 마땅히 스스로 처치(處置)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유별나게 기계(器械)를 연마한다면, 저들이 반드시 듣고 의심하여 장차 소요(騷擾)스러운 폐단이 있을 것이니, 그 자연스러움을 인하여 처리하

上曰：“然。”姜渾啓曰：“臣見外方捕虎之時，盡出一邑之軍，似爲騷擾。且雖設檻穽，虎不自來，何由得捕？因年前下書，使貢虎皮，節度使督捕，今若起軍，恐妨農。”克培曰：“節使度豈可使起軍捕虎哉？郡縣定檻穽監考，如不能捕，輒徵其贖，民弊亦不貲矣。”上曰：“有虎則捕，無虎則否可也。野人擄我一人，則皆以爲大變，虎害人多矣，而人不之怪，捕虎之法，《大典》所載，不可廢也。然諭諸道，勿使起軍妨農。”

는 것만 못하다.”

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이육(李陸)이 말하기를,

“신(臣)이 듣건대 왜선(倭船)을 척량(尺量)할 때면 혹은 뇌물[賄賂]을 바치거나 혹은 완력으로 다투기도 하여 더할 수 없이 분요(紛擾)스럽다 합니다. 만약 50척(隻)에서 그 일정한 수효만 정한다면 척량하는 데에 폐단은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떻게 그 인원의 수효만 정하면 척량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가?”

하므로, 이극배(李克培)가 말하기를,

“50척(隻) 내에서 대선(大船)·중선(中船)·소선(小船)으로 나누되, 어느 배에는 인원수가 얼마라고 정하며, 이것으로 차등(次等)을 줄인다면, 거의 이런 폐단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정괄(鄭恬)이 말하기를,

“법(法)은 새로 세울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강혼(姜渾)이 아뢰기를,

“신(臣)이 보건대 외방(外方)에서 호랑이를 잡을 때에 한 고을의 군사를 모두 내보내는 것은 소요(騷擾)스러울 듯합니다. 또 비록 함정(檻穽)을 설치해 놓았으나 호랑이가 스스로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잡겠습니까? 연전(年前)에 하서(下書)하여 호랑이 가족을 바치라고 한 것 때문에 절도사(節度使)가 잡으라고 독촉한다 하니, 지금 만약 군사를 일으킨다면 아마도 농사에 방해가 될 듯합니다.”

하고, 이극배(李克培)는 말하기를,

“절도사(節度使)가 어떻게 군사를 일으켜 호랑이를 잡으라고 하겠습니까? 군

	<p>(郡)이나 현(縣)에다 함정 감고(檻筭監考)를 정하여 잡을 수 없을 것 같으면 번번이 그 속전(贖錢)을 징수하니, 민폐(民弊)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호랑이가 있으면 잡고 호랑이가 없으면 못잡는 것은 옳은 것이다. 야인(野人)이 우리 나라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사로잡아가면 모두 큰 변고로 여기면서, 호랑이가 사람을 해치는 것이 많은데도 사람들이 괴이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그리고 호랑이를 잡는 법이 《대전(大典)》에 실려 있으니, 폐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모든 도(道)에 유시(諭示)하여 군사를 일으켜 농사에 방해가 되게는 말도록 하라.”</p> <p>하였다.</p>	
<p>성종 288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3월 12일 (신축) 4번째기사</p>	<p>겸사복(兼司僕) 김경연(金慶衍) 등이 종친(宗親)인 함나수(咸羅守)의 집에 도적이 있다는 것을 듣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수색(搜索)을 하여 장물(贓物)을 매우 많이 얻었다. 그 당시 흉년(凶年)이 들어 쌀값이 뛰어 올랐으므로 도적이 성행하였다.</p>	<p>○兼司僕金慶衍等聞有盜在宗親咸羅守家，率軍搜索，得贓甚多。時年飢，米價騰踴，盜賊多行。</p>
<p>성종 288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3월 13일 (임인) 1번째기사</p>	<p>문신(文臣) 37명을 뽑아 궁전 뜰에 모아 놓고 명하여 《비궁당부(匪躬堂賦)》를 짓게 하였는데, 첨정(僉正) 유경(劉璟)이 수석을 차지하였으므로 호초(胡椒) 1석(碩)을 하사하였다.</p>	<p>○壬寅/選文臣三十七員會殿庭，命製匪躬堂賦，僉正劉璟居首，賜胡椒一碩。</p>
<p>성종 288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3월 17일 (병오) 1번째기사</p>	<p>임금이 문소전(文昭殿)에 나아가 신어(神御)를 받들어 옛 동궁(東宮)에다 옮겨 안치(安置)하고 제사를 지냈는데, 문소전(文昭殿)을 수리[修葺]하기 위해서였다. 전교하기를,</p> <p>“내가 타는 견여(肩輿)는 너무 높고 신어(神御)를 모시는 요여(腰輿)는 너무 낮아서 마음이 진실로 편하지 못하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것은 추구하지 않겠으나 일을 마치고 도로 안치할 때에는 다시 이렇게 하지 말라.”</p> <p>하고, 임금이 또 연은전(延恩殿)에 나아가서 제사를 지내고는 명하여 모든 집사(執事)를 승정원(承政院)에서 대접하게 하고 전교하기를,</p>	<p>○丙午/上詣文昭殿，奉移神御，安于古東宮行祭，爲修葺文昭殿也。傳曰：“予所乘肩輿過高，神御腰輿過卑，心實未安。然既往不追，若事畢還安時，更勿如是。”上又詣延恩殿行祭，命饗諸執事于承政院，傳曰：“今日清和，祀事孔明，予心載寧，令諸執事其各劇飲。”</p>

	<p>“오늘은 맑고 화창하여 제사 일도 잘 갖추어졌으니, 내 마음도 곧 편안하다. 모든 집사(執事)로 하여금 제각기 많이 마시도록 하라.” 하였다.</p>	
<p>성종 288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弘治) 7년) 3월 18일 (정미) 1번째기사</p>	<p>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이극균(李克均)이 아뢰기를, “부산포 첨절제사(釜山浦僉節制使) 문준(文俊)이 말하기를, ‘본포(本浦)의 우두머리 왜인[頭倭] 이라다라(而羅多羅)가 장차 대마도(對馬島)에 돌아간다면 서 나를 보고 이르기를, 「도주(島主)가 나를 부르는 것은 무슨 일 때문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하였으며, 전일(前日)에 제포(濟浦)의 우두머리 왜인 사두사야문(沙頭沙也文)도 대마도에 갔다가 돌아와서 이르기를, 「우리 도주(島主)가 말하기를, 지금 듣건대 조정(朝廷)에서 우리 무리를 대우하는 것이 점차 처음만 못하다. 이 앞서 우리 섬의 사왜(使倭)가 포(浦)에 이르면 10일분의 요(料)를 주었는데, 이제는 5일분을 감(減)하였고, 객인(客人)이 왕래할 때에 연로(沿路)의 모든 읍(邑)에서도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고 억지로 떠나보내게 하여 병든 사람은 가끔 죽는다고 한다. 그러나 소인(小人)의 말은 진실로 믿을 수 없으니 우두머리 왜를 불러서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금년에 예(例)대로 보낼 사선(使船)도 아직 보내지 못하고 있는데 경차관(敬差官)이 섬에 이르기를 기다렸다가 서서히 보고서야 조치한다고 하였으며, 지금 도주가 나를 부르는 것도 이 일 때문이 아니겠습니까?’라고 하였는데, 이라다라가 2월 24일에 들어가서 여태껏 돌아오지 않았습니다.’고 하므로, 신의 생각에는 문준이 이런 말을 듣고도 지금까지 보고하지 않았으니, 이는 사체(事體)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두사야문은 호부(豪富)하여 도주와 친밀하게 사귀는데 사신을 보낸다는 명(命)을 듣고 스스로 먼저 들어가 어량(魚梁)을 쟁투(爭鬪)한 일을 반드시 도주에게 호소하여 그로 하여금 노여움을 격동시켰을 것입니다.” 하니, 정원(政院)에 전교하기를,</p>	<p>○丁未/慶尙道觀察使李克均啓: “釜山浦僉節制使文俊言: ‘本浦頭倭而羅多羅將歸對馬島, 見我謂曰: 『島主招我, 不知爲何事。 前日濟浦頭倭沙頭沙也文亦歸對馬島, 還謂曰: 『我島主言: 《今聞朝廷待我輩, 漸不如初, 前此我島使倭到浦給料十日, 而今減五日, 客人往還之時, 沿路諸邑不令留連, 強使發遣有病之人, 往往而死, 然小人之言固不足信, 當招頭倭問之, 今年例遣使船, 姑不出送, 待敬差官至島, 徐觀而處之。》』 今島主招我, 無乃爲是事歟?’ 而羅多羅二月二十四日入歸, 時未還來矣。 臣謂文俊聞此言, 至今不告, 是不識事體也。 沙頭沙也文豪富, 與島主交親, 聞遣使之命, 先自入歸, 魚梁爭鬪之事, 必訴島主, 使之激怒矣。” 傳于政院曰: “文俊聞此事, 不卽馳啓, 豈邊臣之體? 逮捕而問可也。 且敬差官發遣之事, 島主何由知之? 欲究其發言之由。 何如?” 承政院啓曰: “臣等聞沙也文歸島</p>

	<p>“문준(文俊)이 이런 일을 듣고도 즉시 치계(馳啓)하지 않았으니, 어찌 변신(邊臣)의 체모(體貌)라고 하겠는가? 체포(逮捕)하여 물어 보는 것이 옳겠다. 또 경차관(敬差官)을 파견한다는 일을 도주가 어디로 해서 알았는지 그 발언(發言)한 연유를 추구해 보고자 하는데, 어떠한가?”</p> <p>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p> <p>“신(臣) 등이 듣건대 사두사야문이 섬으로 돌아간 것은 11월 13일에 있었고, 사신을 보낸다는 명령은 12월 3일에 있었는데 어떻게 미리 알았겠습니까? 아마도 간교하게 속이는 사람이 사신을 보낸다는 사실을 듣고 거짓으로 도주의 말이라 하면서 발설한 것입니다. 금년에 사신선(使臣船)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다 하는데 2월에 사신선이 재차 왔으니 이것도 헛말입니다.”</p> <p>하였다.</p>	<p>在十一月十三日，遣使之命在十二月初三日，則何以預知？恐奸詐之人聞遣使之事，詐爲島主之言而發也。今年欲不遣使臣船，而十二月使船再至，此亦虛語也。”</p>
<p>성종 288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弘治) 7년) 3월 20일 (기유) 5번째기사</p>	<p>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p> <p>“생원(生員) 정양보(鄭良輔)는 양산(梁山)에 살면서 군학(郡學)의 석전제(釋奠祭)27306) 를 맞아 헌관(獻官)이 되었는데, 자기집의 작은 염소를 제사에 쓸 큰 염소와 바꾸었으며 또 가죽을 벗기도록 하여 쓰게 하였으니, 정양보가 범한 것은 비록 사전(赦前)에 있었다 하더라도 마음씀이 간교하게 속이고 유자(儒者)의 행동이 전혀 없으니, 청컨대 영원히 정거(停舉)시켜 시험에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마소서.”</p> <p>하니,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와 한성부(漢城府)에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윤필상(尹弼商)·이극배(李克培)·노사신(盧思愼)·한치형(韓致亨)·유순(柳洵)·한한(韓僩)·이육(李陸)은 의논하기를,</p> <p>“정양보(鄭良輔)가 범한 것은 이미 대사(大赦)를 거쳤으므로, 이제 와서 지난 일을 책잡을 수 없습니다.”</p> <p>하고, 정괄(鄭恬)·송영(宋瑛)·김극검(金克儉)·신중호(申從濩)·이계남(李季男)·이집(李諱)·박원중(朴元宗)·김심(金諶)은 의논하기를,</p>	<p>○禮曹啓：“生員鄭良輔居梁山值郡學釋奠祭，良輔爲獻官，而以其家小羔易祭用大羔，又令剝皮用之。良輔所犯雖在赦前，用心奸譎，儒行掃地，請永永停舉，勿許赴試。”命議于領敦寧以上及議政府、六曹、漢城府。尹弼商、李克培、盧思愼、韓致亨、柳洵、韓僩、李陸議：“良輔所犯已經大赦，今不可追咎。”鄭恬、宋瑛、金克儉、申從濩、李季男、李諱、朴元宗、金諶議：“良輔以儒生，竊換釋奠犧牲，用心奸譎，取之何用？雖經赦，依所啓施行。”申浚、盧公弼、成健議：“良輔罪犯，雖已經赦，然停舉非</p>

	<p>“정양보가 유생(儒生)으로서 가만히 석전(釋奠)에 쓸 희생(犧牲)을 바꾸었으니, 마음씀이 간교하고 음흉한데 취(取)하여다 어디에 쓰겠습니까? 비록 대사(大赦)를 지냈다고는 하나 아뢰 바에 의하여 시행(施行)하도록 하소서.”</p> <p>하였으며, 신준(申浚)·노공필(盧公弼)·성건(成健)은 의논하기를,</p> <p>“정양보의 죄는 비록 이미 사령(赦令)을 거쳤다 하더라도 정거(停擧)시키는 것은 과죄(科罪)의 예(例)가 아니며, 유생(儒生)이 귀하게 여기는 바는 마음과 행실인데, 그 마음 쓰는 것이 이와 같으니 징계(懲戒)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영원히 정거(停擧)를 시키면 스스로 새롭게 할 길이 없게 되므로 연수를 한정지어 정거하게 하여 그로 하여금 허물을 뉘우치고 행동을 고치게 하소서.”</p> <p>하였다.</p>	<p>科罪之例，儒生所貴者心行耳，而其用心如此，不可不懲。但永永停擧，則無自新之路，限年停擧，使之悔過改行。”</p>
<p>성종 288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弘治) 7년) 3월 20일 (기유) 7번째기사</p>	<p>호조 판서(戶曹判書) 노공필(盧公弼)과 예조 판서(禮曹判書) 성현(成僎)이 아뢰기를,</p> <p>“왜인(倭人)의 물품은 나라의 용도에 긴절하지 않은데도 진상(進上)한다고 일컬으면서 바칩니다. 왜인이 오는 것은 한이 없는데 회사(回賜)할 물자는 한정되어 있으니, 국가(國家)에서 끝내 반드시 지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호초(胡椒)·정향(丁香)·주홍(朱紅) 등의 물품 같은 것은 모두 나라에 쓰임이 긴절하지 않기 때문에 전에 바친 물건은 쓸데가 없어 쌓아 두었으니, 지금 사사로이 바치는 물건은 일체 금지하게 하소서. 다만 서계(書契)에 부쳐 온 물건은 나라의 용도에 긴완(緊緩)을 따져서 그 값을 올리거나 내려서 왜인(倭人)으로 하여금 알게 한다면 진상(進上)하는 자도 반드시 많지 않게 될 것이고, 나라의 저축은 넉넉해질 것입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경(卿) 등의 말이 옳다. 다만 유구(琉球)나 일본(日本) 사신(使臣)은 사사로이 바치지 말라고 하면서 대마 도주(對馬島主)의 특송(特送)으로 사사로이 바치</p>	<p>○戶曹判書盧公弼、禮曹判書成僎啓曰：“倭人之物，不切於國用，稱爲進上而獻焉。倭人之來無窮，而回賜之物有限，國家終必難支矣。如胡椒、丁香、朱紅等物，皆於國用不切，故前所獻之物，積於無用，今私進之物，一切禁止，但以書契付物，計國用緊緩，上下其直，使倭人知之，則進上者必不多，而國儲有裕矣。”傳曰：“卿等之言是矣。但琉球、日本使臣，勿令私進，而對馬島主特送私進則許之乎？若獨許對馬主特送私進，則彼二國之使必缺望，竝令勿進耶？如蘇木等物，量減其價可也。”公弼等啓曰：“對馬主特</p>

	<p>는 것은 허락할 것인가? 만약 홀로 대마주(對馬主)의 특송으로 사사로이 바치는 것만을 허락한다면 저 두 나라의 사신은 반드시 결망(缺望)이 될 것이니, 함께 바치지 말라고 해야 할 것인가? 소목(蘇木)과 같은 유의 물품은 그 가격을 헤아려서 감(減)하는 것이 가하다.”</p> <p>하였다. 노공필(盧公弼) 등이 아뢰기를,</p> <p>“대마주(對馬主)의 특송(特送)은 본래 사사로이 바치는 것이 아니며 오직 일본국(日本國) 사람만이 사사로이 바치는 것이 많습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아울러 금지(禁止)시키는 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지금 만약 금지시키지 못한다면, 장차 계속 대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나의 뜻으로는 불가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의논이 이와 같으므로 따른다.”</p> <p>하였다. 노공필(盧公弼)이 말하기를,</p> <p>“청컨대 예조(禮曹)와 같이 의논하여 그 값을 더하거나 감하게 하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p> <p>“가하다.”</p> <p>하였다.</p>	<p>送，則本不私進，唯本國之人私獻多矣。臣等意并禁可也。今若不禁，後將難繼。”傳曰：“予意不可爲也。然群議如是，故從之。”公弼曰：“請與禮曹同議，加減其價。”傳曰：“可。”</p>
<p>성종 288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弘治) 7년) 3월 24일 (계축) 4번째기사</p>	<p>임금이 가감(加減)한 열세 가지 처방[十三方]을 친서(親書)하여 대궐 안에서 판(板)에 새기게 하고 30여 본(本)을 찍어서 의원(醫員) 송흠(宋欽) 등에게 각각 1본(本)씩 하사하시고는,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p> <p>“이 처방을 모든 재상(宰相)과 승정원(承政院)·홍문관(弘文館)의 늙은 어버이가 있는 자에게 반포해 주려고 하였었다. 그러나 외부에서 나더러 필적(筆跡)을 과시(誇示)한다고 할까 두려워서 일부러 반포하지 않았을 뿐이다.”</p> <p>하였다.</p>	<p>○上親書《加減十三方》，刊板于內，印三十餘本，賜醫員宋欽等各一本。傳于承政院曰：“此方欲頒于諸宰與政院、弘文館有老親者，然恐外間以予爲誇示筆跡，故不頒耳。”</p>
<p>성종 288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p>	<p>대마도 경차관(對馬島敬差官) 권주(權柱)가 하직하니, 예조(禮曹)에서 종정국(宗貞國)에게 치서(致書)하기를,</p>	<p>○乙卯/對馬島敬差官權柱辭。禮曹致書于宗貞國曰：“海途阻隔，未審動</p>

(弘治) 7년 3월 26일
(을묘) 1번째기사

“바다가 가로막혀 기거[動履]가 어떤가를 살피지 못했으나 멀리서 바라는 마음 진실로 간절합니다. 그 중에서도 귀도(貴島)의 사람이 삼포(三浦)에 와서 살면서 인구가 날로 번성하지만, 우리 국토에서 입고 먹으니 마땅히 그 임금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히 흑시라도 지나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가을에 제포(齊浦)의 사람이 우리 백성과 어량(魚梁)을 빼앗으려고 다투면서 그들의 욕심을 다 채우려고 하여 서민(庶民)을 침해하고 관차(官差)를 구타하였으니, 그들의 거리낌없이 멋대로 굴며 기강(紀綱)을 범한 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또 금년 4월 초 2일에는 적선(賊船) 4척(隻)이 전라도(全羅道) 지방 추산도(楸山島)에 정박(停泊)하면서 만난 공선(貢船)과 상박(商舶) 10여 척을 문득 방자하게 노략질하여 칼로써 사람과 가축(家畜)을 상(傷)하게 하고, 의복(衣服)·식량(食糧)·기계(器械)와 나라에 바칠 선물(繕物)까지 빠짐없이 약탈(掠奪)하였으며, 또 이달 초 9일에는 적선(賊船) 2척(隻)이 흑은 갑주(甲冑)를 입고 흑은 활과 화살을 가지고는 갑자기 제주(濟州) 대탈도(大脫島)에 이르러 변장(邊將)과 서로 오랫동안 싸우다가 물러갔는데, 그가 버리고 간 화살 두 개를 얻어 보았더니 귀국(貴國)의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통사(通事)로 하여금 보라고 하였더니, 곧 지세로지(知世老只)라고 이름을 일컫는 자이며, 앞뒤 적선(賊船)에 타고 있던 사람의 의복(衣服)과 형상(形狀)을 살펴보건대 모두 귀도(貴島)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변방을 소란스럽게 하고 겁탈(劫奪)한 죄는 진실로 주륙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예로부터 교린(交隣)하며 사대(事大)하는 데에 간혹 변경(邊境)의 가난하고 미천한 백성들이 교령(敎令)을 준수하지 않고 혼단(黷端)을 만들고 사고를 냄으로써 말미암아 좋은 사이가 끝을 맺지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귀도는 우리 나라에 귀부(歸附)하여 대대로 충심(忠心)을 다하는 것이 더함은 있고 쇠함이 없으므로 우리 전하(殿下)께서도 한집안처럼 보고 어루만져 사랑

履奚似，懸企良勤，就中貴島人來居三浦者，生齒日繁，衣食我土，宜其感懷聖恩，無敢或逾焉。去年秋，齊浦人乃與我民爭奪魚梁，求逞其欲，毒害齊民，毆傷官差，其橫恣干紀之罪，在所不赦。又今年四月初二日，賊船四隻留泊全羅道地方楸山島，所遇貢船商舶十餘隻，輒肆刼掠，刃傷人畜，衣糧器械，以至供進物膳，攘奪無遺。又是月初九日，賊船二隻或着甲冑，或帶弓箭，突至濟州大脫島，與邊將相戰良久而退，得其所遺箭二箇，刻以貴國之字，令通事視之，則乃知世老只稱名者，而前後賊船，審其衣服形狀，皆貴島人也。其擾邊刼奪之罪，固不容誅，自古交隣事大，或由邊境細民，不遵教令，構釁生事，以致和好之不終者多矣。貴島歸附我國，世輸忠款者，有加無替。我殿下視同一家，撫愛益篤，今此無賴之徒，不體足下事大之誠，或爭魚梁，或肆草竊，非但得罪於我國，亦足下所深恥而痛繩之也。今後若復有如此梗化之人，我當不容少貸，先捕治罪，然後通諭貴島，貴島念聖朝之恩，爲長久之計，有何少嫌於我國哉？

하기를 더욱 도탑게 하였는데, 지금 이 무뢰(無賴)한 무리들이 족하(足下)의 사대(事大)하는 정성을 본받지 않고 혹은 어량(魚梁)을 다투며 혹은 도둑질 [草竊]을 자행(恣行)하니, 우리 나라에 죄를 얻을 뿐만 아니라 또한 족하(足下)가 깊이 부끄럽게 여기며 엄하게 바로잡아야 할 바입니다.

이후로 만약 다시 이와 같이 교화에 막힌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조금도 용서하지 않고 먼저 잡아다 죄를 다스린 뒤에 귀도(貴島)에 유시(諭示)할 것입니다.

귀도는 성조(聖朝)의 은혜를 생각하여 장구(長久)한 계획을 한다면 어찌 조금이라도 우리 나라에 혐의가 있겠습니까? 지금 성지(聖旨)에 품(稟)하여 홍문관 부응교(弘文館副應敎) 권주(權柱)를 뽑아서 보내고 치서(致書)하여 상세히 이르는 것이니, 족하(足下)는 깊이 이 뜻을 알아서 소란스럽게 한 자를 잡아다 국문(鞫問)하여 함수(函首)하여 와서 바치고, 어량(魚梁)을 다투는 자는 쾌히 다스려서 그 죄상을 밝게 바로잡아 친분을 더욱 돈독히 하여 영원히 번위(藩衛)가 된다면, 다행함을 금할 수 없겠습니다. 가지고 갈 토물(土物)은 별폭(別幅)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였는데, 그 별폭(別幅)에는 백세면포(白細綿布) 7필(匹), 흑세마포(黑細麻布) 5필(匹), 백세저포(白細苧布) 5필, 표피(豹皮) 2장(張), 4장 부 유석(四張付油席) 2부(浮), 채화석(彩花席) 5장, 조미(糙米) 70석(碩), 황두(黃豆) 50석, 소주(燒酒) 30병(瓶), 청주(淸酒) 1백 병(瓶), 계(桂) 2통(桶), 다식(茶食) 2통, 건대구어(乾大口魚) 2백 미(尾), 송자(松子) 5석(碩), 건시자(乾柿子) 50첩(貼), 청밀(淸蜜) 10두(斗)이었다. 또 종 언칠 정수(宗彦七貞秀)에게 치서(致書)하고는, 인하여 흑세마포(黑細麻布) 2필(匹), 백세면포(白細綿布) 2필, 백세면주(白細綿紬) 2필, 채화석(彩花席) 2장(張), 계(桂) 1통(桶), 소주(燒酒) 10병(瓶), 송자(松子) 10두(斗), 다식(茶食) 1통(桶), 조미(糙米) 35석(碩), 황두(黃豆) 30석을 하사하였으며, 또 종 이예수 무승(宗伊豫守茂勝)에게 치서(致書)하고는,

今稟聖旨，差遣弘文館副應敎權柱，致書詳諭，足下深悉是意，捕鞠作耗者，函首來獻，快治爭梁者，明正其罪，益敦和好，永作藩衛，不勝幸甚。將去土物，具在別幅。白細綿布七匹、黑細麻布五匹、白細苧布五匹、豹皮二張、四張付油席二浮、彩花席五張、糙米七十碩、黃豆五十碩、燒酒三十瓶、淸酒一百瓶、桂二桶、茶食二桶、乾大口魚二百尾、松子五碩、乾柿子五十貼、淸蜜十斗。”又致書于宗彦七貞秀，仍賜黑細麻布二匹、白細綿布二匹、白細綿紬二匹、彩花席二張、桂一桶、燒酒十瓶、松子十斗、茶食一桶、糙米三十五碩、黃豆三十碩，又致書于宗伊豫守茂勝，仍賜黑細麻布二匹、白細綿紬二匹、白細綿布二匹、彩花席二張、桂一桶、茶食一桶、燒酒十瓶、松子十斗、糙米一十五碩。

	<p>인하여 흑세마포(黑細麻布) 2필(匹), 백세면주(白細綿紬) 2필, 백세면포(白細綿布) 2필, 채화석(彩花席) 2장(張), 계(桂) 1통(桶), 다식(茶食) 1통(桶), 소주(燒酒) 10병(瓶), 송자(松子) 10두(斗), 조미(糙米) 15석(碩)을 하사하였다.</p>	
<p>성종 288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3월 27일 (병진) 2번째기사</p>	<p>이조(吏曹)에 전교하기를, “진진(眞殿)의 참봉(參奉)을 모두 본도(本道)에 사는 사람으로 제수(除授)하였는데 대개 모두 용렬하고 어리석어 요즈음의 화재(火災)를 이룬 것이다. 지금 부터는 의관 자제(衣冠子弟)27344) 를 골라 뽑아서 보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만약 서울에 사는 자제(子弟)를 <참봉으로> 삼아 3개월마다 서로 교체하게 하면, 먼길에 양식을 싸가지고 왕래(往來)하여 폐단 또한 많을 것입니다. 조종조(祖宗朝)에서 본도(本道)의 자제로 제수하게 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럴 것 같으면 중하게 여기는 것은 참봉(參奉)이고, 진진(眞殿)은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어찌 조그마한 폐단을 계산하여 큰 일을 가볍게 여기겠는가?” 하였다. 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모든 도(道)의 도사(都事)는 반드시 1주년(周年)이 차면 체임됩니다. 모든 진(殿)의 참봉도 그 예(例)에 의하여 1주년이 찬 뒤에 도로 경참봉(京參奉)으로 제수하여 전의 출사(出仕)를 통계(通計)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주년(周年)이 되어 체임시키는 것도 이치가 있는 것 같다. 주년이 되어 능력이 있는 자면 천전(遷轉)시키고 능력이 없는 자면 출벌(黜罰)시키는 것이 가하다. 그 천전(遷轉)시키는 절목(節目)을 의논해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p>	<p>○傳于吏曹曰：“眞殿參奉，皆以本道居人除授，類皆庸愚，以致近日之災。自今擇衣冠子弟差遣何如？”吏曹啓曰：“若以居京子弟爲之，三朔相遞，則道途復遠，贏糧往來，弊亦多端，祖宗朝除本道子弟者以此也。”傳曰：“若然，則是重在參奉而輕眞殿也。豈可計小弊而輕大事乎？”吏曹啓曰：“諸道都事，必滿周年而遞，諸殿參奉亦依其例滿周年後還除京參奉，通計前仕，似爲便當。”傳曰：“周年而遞，似亦有理，滿周年而能者則遷轉之，不能則黜罰之可也。其遷輔節目議啓。”</p>
<p>성종 288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p>	<p>예조(禮曹)에서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이극균(李克均)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p>	<p>○禮曹據慶尙道觀察使李克均啓本啓：“丹城縣船軍成季文之女召史，其夫爲</p>

<p>(弘治) 7년) 3월 27일 (병진) 3번째기사</p>	<p>“단성현(丹城縣)의 선군(船軍) 성계문(成季文)의 딸 성 소사(成召史)는 그 남편이 호랑이에게 해를 당하자 애훼(哀毀)하기를 예법대로 하고 3년상을 지켰는데, 부모(父母)가 그의 뜻을 빼앗으려고 하자 소사가 들고는 밤을 틈타서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습니다.</p> <p>또 사직(司直) 이승창(李承昌)의 딸은 나이 19세에 유학(幼學) 정계형(鄭季亨)에게 시집가서 동거한 지 7년 만에 정계형이 죽자 상사(喪事)를 예법대로 하였는데, 부모가 그가 과부로 사는 것을 애처롭게 여겨 그 뜻을 빼앗으려고 하자 딸이 울부짖으면서 스스로 깊은 못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 형(兄)이 건져냈는데, 이에 말하기를, ‘본래 한 남편을 따르다가 죽는 것을 원했는데 부모가 그 뜻을 빼앗고자 하니, 죽지 않고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는, 음식을 끊은 지 열흘이 넘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울기를 멈추지 아니하니, 그 부모가 두려워하여 그만두었습니다. 시아비와 시어미는 모두 나이가 80이 넘었으므로 마음을 다하여 효성스럽게 봉양(奉養)하면서 의복과 음식을 갖추어 공대(供奉)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절의(節義)가 가상(可尙)합니다. 청컨대 《대전(大典)》에 의하여 성계문(成季文)의 딸에게는 그 문려(門閭)에 정표(旌表)하고, 정계형(鄭季亨)의 처(妻)에게도 물품으로 상(賞)을 주어 권장(勸獎)하게 하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 “옛일에 비교하면 《백주(栢舟)》편(篇)27345) 과 다름이 없으니, 정계형의 처(妻)도 정문(旌門)·복호(復戶)하는 것이 가하다.”</p> <p>하였다.</p>	<p>虎所害，哀毀如禮，守喪三年，父母欲奪其志，召史聞之，乘夜自縊而死。又司直李承昌女子，年十九歲嫁幼學鄭季亨，居七載季亨死，行喪如禮，父母哀其寡居，欲奪其志，女呼哭自投深淵，其兄拯之，乃言曰：‘本願從一而終，父母欲奪其志，不死何爲？’絕食旬餘，泣涕不止，其父母懼而止。舅姑年皆八十餘，專心孝養，衣食之具，無不供奉，節義可尙，請依《大典》，成季文女子旌其門閭，鄭季亨妻亦賞物獎勸。”傳曰：“比之古事，與《栢舟篇》無異。（鄭季亨）[鄭季亨]妻亦可旌門復戶也。”</p>
<p>성종 289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4월 1일 (기미) 1번째기사</p>	<p>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이극균(李克均)이 치계(馳啓)하기를, “신이 폐사(陛辭)27355) 하던 날에 왜사(倭使)의 배를 거짓으로 속이는 일에 대하여 아뢰었는데, 대마 도주(對馬島主)와 제주(諸酋)의 사신이 작은 배[小船]를 타고 와서 큰 배[大船]와 몰래 바꾸니, 비록 그 속이는 것을 분명히 안</p>	<p>○朔己未/慶尙道觀察使李克均馳啓曰：“臣陛辭之日啓倭使船冒詐之事，對馬島主及諸酋之使乘小船而來，暗換大船，雖明知其誣，終不敢詰，每給大船</p>

다고 하더라도 끝내 감히 힐문(詰問)하지 못하고, 매우 큰 배[大船]의 양식을 지급하게 되므로 나라의 저축을 좀먹어 없앨 뿐만 아니라, 점차 지탱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저들로 하여금 가만히 앉아서 교만한 마음을 일으키게 하니, 금일에 이르도록 법을 소홀히 함이 이와 같았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선척(船隻)을 자로 재는 것은 비록 조종조(祖宗朝)에서 항상 시행한 일이라고 하나, 대국(大國)에서 소이(小夷)를 대접하는 도리에는 또한 너그럽지 못한 것입니다. 이 앞서 대마 도주와 여러 거추(巨酋)의 사선(使船)을 정한 숫자가 있으나, 대선(大船)·중선(中船)·소선(小船)의 숫자를 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이 쌓이게 된 것입니다. 신은 원하건대 대마 도주에게 통유(通諭)하여 대선·중선·소선의 숫자를 적당하게 약정(約定)하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예조(禮曹)에서 이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여러 거추(巨酋)의 사선의 대선·중선·소선을 적당하게 약정한다면, 반드시 간사하게 속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극균이 폐사(陞辭)할 때에 아뢰기를, ‘삼포(三浦)27356의 왜선(倭船)과 우리 나라 연해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배에 모두 표(標)를 붙이도록 하고, 왜인을 불러 여러 가지로 물어 보면서 그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고 하였으니, 지금 이극균으로 하여금 시험삼아 물어 보아 편부(便否)를 계문(啓聞)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영둔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게 하니, 윤필상(尹弼商)·이극배(李克培)·노사신(盧思愼)·윤호(尹壕)·한치형(韓致亨)·정문형(鄭文炯)·유지(柳淸)가 의논하기를,
“예조(禮曹)에서 아뢴 바대로 하소서.”

하였다. 승정원에 명하여 이를 의논하게 하니, 김응기(金應箕)·이종호(李宗顥)·한사문(韓斯文)·강귀손(姜龜孫)·구치곤(丘致崐)이 의논하기를,
“전일에 이극균이 아뢰기를, ‘삼포의 왜선과 연해의 민선(民船)에 표를 붙이

之糧，蠹損國儲，漸不可支，使彼坐生驕心，致今日慢法如此。臣意尺量船艘，雖祖宗朝常行之事，然大國待小夷之道，亦爲不廣。前此對馬島主及諸巨酋使船有定數，而大中小之數不定，故積有此弊。臣願通諭島主，大中小之數酌宜約定。” 禮曹據此啓：“諸巨酋使大中小船，酌宜約定，則必無奸僞之事矣。李克均陞辭之時啓云：‘三浦倭船及我國沿海居民之船，欲並令着標，招倭人雜問，以觀其意。’今令李克均試問便否，啓聞後更議何如？” 命議于領敦寧以上及議政府。尹弼商、李克培、盧思愼、尹壕、韓致亨、鄭文炯、柳淸議：“依禮曹所啓。” 命承政院議之。金應箕、李宗顥、韓斯文、姜龜孫、丘致崐議：“前日李克均啓三浦倭船及沿海民船欲令着標，而今又啓云因勢不便，不與倭人相見云爾，則勢難施行矣。今雖着標，後日新造之船，其能一一盡刷乎？其奸僞亦復如前矣。《海東諸國紀》云：‘島主歲遣之船五十艘，諸酋之歲遣一、二船者四十人，遣一船者二十七人，受我國官職者歲一來朝，皆有定約。且船有大中小

도록 하고자 합니다.’고 하였는데, 지금 또 아뢰기를, ‘형세가 불편하기 때문에 왜인과 더불어 서로 만나 보지 못합니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형세가 시행하기 어렵겠습니다. 지금 비록 표를 붙인다고 하더라도 후일에 새로 만든 배를 하나하나 모조리 추쇄(推刷)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간사하게 속이는 것도 또한 다시 전과 같아질 것입니다.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에 이르기를, ‘대마 도주는 세견선(歲遣船)이 50척이요, 제주(諸酋)로서 세견선 1, 2척을 보내는 자가 40인이요, 세견선 1척을 보내는 자가 27인(27357) 이다. 우리 나라의 관직을 받은 자는 해마다 한 번씩 내조(來朝)하기로 모두 약속을 정한 바가 있다. 또 배도 대선·중선·소선의 3등급이 있으니, 선부(船夫)가 대선이며 40명, 중선이면 30명, 소선이면 20명으로 액수(額數)를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경술년(27358) 에 나온 왜선 1백 64척 가운데 대선이 1백 60척이고, 중선이 4척이었으며, 신해년(27359) 에 나온 왜선은 1백 65척 가운데 대선이 1백 62척이고, 중선이 3척이었습니다. 이로써 보건대 배에는 3등급의 약속이 있었는데, 간사한 무리들이 매양 대선의 양식을 받는 것은 정약(定約)의 본의가 아닙니다. 사선(使船)을 자로 재는 것은 또 대국이 소이(小夷)를 대접하는 체모가 아닙니다. 대선·중선·소선을 적당히 정한다면 반드시 간사하게 속이는 일은 없을 것이니, 이극균의 아뢰 바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대저 인정(人情)이란 전일에 하지 않던 일을 보면 반드시 의심하고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다. 마침 지금 어량(魚梁)의 사건 때문에 이미 경차관(敬差官)을 보냈는데, 또 수왜(首倭)를 불러서 이러한 일을 말한다면, 어찌 의심스러운 생각을 품지 않겠는가? 이 일을 시행하는 것은 진실로 마땅하나, 시기를 맞추어야 할 일이 아니니, 우선 천천히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내 뜻을 가

三等，船夫大船則四十，中船則三十，小船則二十以爲定額。’而去庚戌年出來倭船百六十四艘內大船百六十，中船四，辛亥年出來倭船百六十五內，大船百六十二，中船三，以此觀之，船有三等之約，而奸詐之徒每以大船受糧，非定約本意。 尺量使船，又非大國待小夷之體也。 大中小船，酌宜定約，則必無奸僞之事， 依李克均所啓施行爲便。” 傳曰：“大抵人情見前日所不爲之事， 則必生疑異。 適今以魚梁事， 既遣敬差官， 又招首倭語以此事， 則豈不懷疑耶？ 此事固當施行。 然非及期之事， 姑徐爲之何如？ 其將予意更問于前議宰相與承政院。” 承旨等啓曰：“上教允當。 然船有大中小之異， 而近來所遣之船類皆大船而無小船， 國家受弊， 終必不支。 今則適有他事， 不須兼舉， 姑徐爲之， 退考舊例， 待權柱回還之後， 曉諭倭人， 以除國家之弊幸甚。” 傳曰：“所啓已悉， 當待群議處之。”

	<p>지고 전에 의논한 재상과 승정원에 다시 물어 보도록 하라.”</p> <p>하니, 승지(承旨) 등이 아뢰기를,</p> <p>“성상의 하교(下敎)가 지극히 마땅합니다. 그러나 배에는 대선·중선·소선의 다름이 있는데, 근래에 보내 오는 배가 거의 모두 큰 배이고, 작은 배가 없으므로, 나라에서 폐해를 입으니, 끝내 반드시 지탱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은 마침 다른 사건이 있어서 아울러 거론할 필요가 없으니, 우선 천천히 시행하도록 하소서. 물러가서 구례(舊例)를 참고하고, 권주(權柱)가 돌아오기를 기다린 뒤에 왜인들에게 효유(曉諭)하여서 나라의 폐단을 없앤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p> <p>하자, 전교하기를,</p> <p>“아뢴 것이 이미 자세하니, 마땅히 여러 사람의 의논을 기다려서 이를 처리하겠다.”</p> <p>하였다.</p>	
<p>성종 289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弘治) 7년) 4월 5일 (계해) 4번째기사</p>	<p>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김사지(金四知)가 와서 아뢰기를,</p> <p>“청녕위(淸寧尉)의 집은 공역이 겨우 끝나자마자, 또 고쳐 짓도록 명하시니, 신 등은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만약 집을 짓는 것이 이미 완성되었는데,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문득 이를 고쳐 짓게 한다면, 공역이 어느때에 그치겠습니까? 하물며 금년은 흉년으로 농삿일이 한창 바쁜데,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고, 재물을 손상케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청컨대 빨리 정과(停罷)하게 하소서. 또 듣건대 집경전(集慶殿)의 행향사(行香使)인 강자순(姜子順)이 초계(草溪)·의령(宜寧) 등지에서 조상의 분묘(墳墓)에 참배(參拜)하기를 청하였는데, 이를 허락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근년에 연곡(年穀)이 잘 되지 못하였는데, 양전(量田)까지 더하게 되니, 한 도(道)가 소란합니다. 대신의 행차에는 노력과 비용이 반드시 많이 들 터인데, 하물며 친부모의 무덤이 아닌 것이겠습니까? 청컨대 빨리 내리신 명령을 거두도록 하소서.”</p>	<p>○司諫院正言金四知來啓曰：“淸寧尉之家，功役才畢，又命改作，臣等未知所由，若築室既成，少不如意，輒使改之，則功役何時而止耶？況今年凶，農務方興，而勞民傷財可乎？請亟停罷。且聞集慶殿行香使姜子順，請拜祖墳于草溪、宜寧等處，命許之。近年年穀不登，加之以量田，一道騷然，大臣之行，勞費必多，況非親父母之塚乎？請亟收成命。”傳曰：“予非欲其華侈，以其高大，故仍舊材改構，令伍微耳。姜子順，因事上塚，何妨？”四知更啓</p>

	<p>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그것을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게 지을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높고 크 기 때문에 옛 재목을 그대로 써서 고쳐 지어 낮고 작게 만들려는 것이다. 강 자순이 일로 인하여 무덤에 가는데,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였다. 김사지가 다시 아뢰기를, “그 당초에 공조에 명하여 집을 짓게 하신 것은 부득이한 일이었으나, 지금 이미 사가(私家)가 되었으니, 반드시 고쳐 짓고자 한다면, 마땅히 스스로 이 일을 하여야 하지, 어찌 백성들을 사역시켜서 이를 다시 짓겠습니까? 청컨대 빨리 정과(停罷)하도록 하소서. 또 강자순의 조상 분묘는 그가 경유(經由)하는 땅이 아니고, 영송(迎送)하는 데 접대하는 폐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으니, 청 컨대 내리신 명령을 거두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p>	<p>曰：“厥初命工營構，在所不得已，今 已爲私家，必欲改構，則當自爲之，豈 可役民以更構乎？請亟停罷。且姜子 順祖墳，非經由之地，迎送供億之弊， 不可勝道，請收成命。”不聽。</p>
<p>성종 289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4월 5일 (계해) 5번째기사</p>	<p>호조 판서(戶曹判書) 노공필(盧公弼)·참판 이집(李諱)이 와서 아뢰기를, “나라에서 당초부터 왜인에게 답례로 하사(下賜)할 때에 면주(綿紬)·면포(綿 布)·정포(正布)27363) 로써 세 가지로 나누어 주었는데, 만약 오로지 한 가지 물건만 준다면, 쉽게 물건이 고갈[匱竭]되기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면포는 저 들이 바라는 바이나, 한 차례의 행차에 소비되는 것이 많으면 1천여 동(同)에 이르니, 잇대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물건을 실어 나르는 데에도 폐단이 있 습니다. 지금 면주(綿紬)와 포자(布子)는 이미 고갈되고, 남아 있는 것은 오로 지 면포뿐입니다. 만약 오로지 면포만을 준다면 후일에 비록 세 가지로 나누 어 주고자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 등은 계책(計策)이 없 어서 옛날에 장사꾼[市人]에게 나누어 징수하던 예에 의거하여 계청(啓請)하 여 거행하였을 뿐입니다. 역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하는 바에 따라서 혹은 동철(銅鐵)을 주기도 하고, 혹은 주홍(朱紅)을 주기도 하고, 혹은 처자 (梘子)를 주기도 하고, 혹은 소목(蘇木)을 주기도 합니다. 또 해당 관사에서</p>	<p>○戶曹判書盧公弼、參判李諱來啓： “國家自初於倭人答賜以綿紬、綿布、 正布三分給之，若專以一物給之，則易 至於匱竭故也。綿布彼之所欲，然一 行所費多至千餘同，非徒難繼，輸轉有 弊。今綿紬、布子已匱，而所有者獨 蘇布，若專以綿布與之，則後雖欲三 分，不可得也。臣等計無所出，據古 者分徵市人之例，啓請舉行耳，非抑勒 爲之。從其所願，或給銅鐵，或給朱 紅，或給梘子，或給蘇木，又慮該司督 納，緩其期限，隨其所得而納之。臣 等非不知貧富之不均，然人多則所納者</p>

독촉하여 바치게 할까 걱정하여 그 기한을 늦추고, 그들이 물건을 얻는 대로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신 등은 빈부가 고르지 못한 것을 모르는 바 아니라, 사람이 많으면 바치는 자가 많기 때문에, 그 바치는 바가 비록 정한 숫자에 차지 않을지라도 또한 많이 얻을 수가 있었던 까닭에 이와 같이 하였을 뿐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포(布) 1필의 값이 동철 따위의 물건과 같다면, 1필을 도로 살 수 있을는지 그것을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노공필 등이 아뢰기를,

“왜인으로서 우리 땅에서 고기잡이하는 자도 세금을 내는데, 하물며 삼포(三浦)의 왜인은 우리 땅에서 농사지으니, 편氓(編氓)과 다를 바가 없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게 옳겠습니까? 지금 마땅히 이들에게 말하기를, ‘전지가 있으면 조세(租稅)를 내는 것은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고금(古今)의 상법(常法)이다. 너희가 이미 우리 땅에서 농사지으니, 편氓과 다름이 없는데, 어찌 오로지 너희에게만 세금을 물리지 않겠는가?’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지금 이미 양전(量田)하였으니, 이때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때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당초에 권주(權柱)로 하여금 대마 도주(對馬島主)에게 유시(諭示)하고자 하였는데, 권주가 말하기를, ‘이 일은 반드시 유시할 필요가 없습니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를 그만두었다. 전지가 있으면 조세를 내야 하는 것은 고금의 통법(通法)이다. 지금 사람들이 양전(量田)하였으니, 잘 타일러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 좋겠다. 저들이 만약 대마 도주에게 전(轉)하여 보고하면 그 연유를 물어 온 다음에 사유를 갖추어 이에 답하여야 할 것이니, 그 절목(節目)을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多，故其所納雖不滿定數，亦可多得，故如此爲之耳。”傳曰：“布一匹之價，如銅鐵等物，可以還買一匹乎？其考啓。”盧公弼等啓曰：“倭人釣魚於我地者亦稅魚，況三浦倭田于我土，與編氓無異，而無稅可乎？今當語之曰：‘有田則有租，非但我國，古今常法。爾既田于我土，無異編氓，何獨於爾不稅哉？’且今已量田，此其可言之時也。”傳曰：“予初欲使權柱諭島主，而柱言此事不必諭之，故止之。有田則有租，古今通法，今人量田，可開諭收稅矣。彼若轉報島主問其由，然後具由答之，其節目議啓。”

<p>성종 289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4월 7일 (을축) 2번째기사</p>	<p>호조 판서(戶曹判書) 노공필(盧公弼) 등이 와서 아뢰기를, “나라에서 왜인(倭人)이 사사로이 바치는 물건에 대한 답례로 하사하는 물자(物資)가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왜인의 물건을 내어 장사꾼들에게 화매(和賣)하는데, 동철(銅鐵) 같으면 사람들이 다투어 이를 사려고 하나, 치자(梔子)·소목(蘇木) 같은 것은 묵혀 두고 오랫동안 쓰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즐겨 사려고 하지 아니하니, 과연 그 폐단이 있습니다. 왜인이 사사로이 물건을 바치는 것은 이미 금지시켰으니, 이번에 일본 국사(日本國使)가 서울에 도착하거든 이제부터 비로소 예조로 하여금 그들에게 말하게 하기를, ‘너희들이 가지고 온 물건을 사사로이 바치지 말고, 장사꾼[市人]과 교역(交易)하는 것이 좋겠다. 나라의 법은 만약 한 번 세워지면 끝내 고칠 수가 없으니, 너희가 비록 진상(進上)하고자 하더라도 본조에서 어찌 너희의 말을 가지고 성상(聖上)께 전(轉)하여 계문(啓聞)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여 이와 같이 한다면 우리가 드는 비용(費用)이 없을 것이고, 저들도 사사로이 화매(和賣)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들이 어찌 감히 이러한 까닭으로써 원한을 품고 혼단(釁端)을 일으키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왜인이 사사로이 물건을 바치는 것을 지금부터 일절 금지시키고, 면주(綿紬)와 포자(布子)를 장사꾼[市人]에게서 독촉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p>	<p>○戶曹判書盧公弼等來啓曰：“國家以倭人私獻答賜之資不給，故不得已出倭物而賣於市人，如銅鐵則人爭貿之，如梔子、蘇木，則陳久不用，民不肯貿，果有其弊矣。倭人私獻，既令禁止，今者日本國使到京，自今而始，令禮曹語之曰：‘爾等齎來之物，其勿私進，與市人交貿可也。我國法若一立，終不可改，爾雖欲進上，本曹何可以爾之言轉聞于上哉？’如此則我無所費，而彼亦得爲私賣矣。彼安敢以此之故結怨生釁耶？”傳曰：“倭人私獻，自今一切禁之，綿紬、布子，勿督於市人。”</p>
<p>성종 289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4월 8일 (병인) 2번째기사</p>	<p>임금이 함천 군수(闔川郡守) 유희인(兪好仁)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유희인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일찍이 경연관(經筵官)을 지냈으니, 그에게 쌀·콩 아울러 15석, 유둔(油菴) 3사(事), 종이 70권, 석회(石灰) 20석을 부의(賻儀)하도록 하라.” 하였다.</p>	<p>○上聞陝川郡守兪好仁死，傳于承政院曰：“好仁非凡流，曾爲經筵官，其以米、豆并十五碩、油菴三事、紙七十卷、石灰二十碩賻之。” 【史臣曰：“好仁有文行，爲時輩所推，工於詩，格律雅古，久在經幄，爲親累</p>

	<p>사신이 논한다. 유호인은 문장(文章)과 행실(行實)이 있어서 시배(時輩)들의 추대를 받았는데, 시(詩)를 잘 지어 격률(格律)이 우아하고 옛스러웠다. 오래도록 경악(經幄)27374)에 있다가 친히 여러 번 외방에 보임(補任)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또 돌아가서 몸을 돌보겠다고 빌었었다. 임금이 그 재주를 아끼어 특별히 자급을 올려서 부근 군(郡)에 임명하였으나, 몇 달이 되지 아니하여 죽으니, 사림(士林)이 그를 아까와 하였다.</p>	<p>補外，至是又乞歸養，上愛惜其才，特陞級授傍郡，未數月而死，士林惜之。”】</p>
<p>성종 289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4월 8일 (병인) 3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지금 왜인(倭人)으로 하여금 사사로이 물건을 바치지 말게 하였는데, 다만 장검(長劍) 따위의 물건 같은 것은 장사꾼[市人]이 살 수 있는 것이 못되니, 공적으로 무역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유구국(琉球國)의 사신과 소이전(小二殿)의 사신이 조석(朝夕)으로 장차 이를 것인데, 그들이 바치는 물건 가운데 장검(長劍) 따위의 물건이 있을 것 같으면 공적으로 무역하여야 할 것이나, 물자가 넉넉하지 못할까 두려우니, 청컨대 부상 대고(大賈)의 사람으로 하여금 면주(綿紬) 10필을 바치도록 하여 이에 대비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다만 후추[胡椒]는 우리 나라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약이(藥餌)에 더욱 절실하니, 지금 만약 그 사사로이 바치는 것을 일절 금지시킨다면, 저들이 장차 이때부터 가지고 오지 아니하여 나라에서 이를 얻을 방법이 없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따위의 물건을 공적으로 무역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호조(戶曹)에 물어 보도록 하라.” 하였다.</p>	<p>○戶曹啓曰：“今令倭人勿私進，但如長劍等物非市人所可買也，則不可不公貿易。今琉球國使與小二殿使，朝夕將至，其所獻若有長劍等物，則公貿之資恐不給，請令富商大賈人納緜紬十匹以待。”傳曰：“可。但胡椒非我國產，而尤切於藥餌。今若一切禁其私進，則彼將自此不齎來，國家無由得之。如此等物公貿易何如？問于戶曹。”</p>
<p>성종 289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4월 8일 (병인) 4번째기사</p>	<p>임금이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윤은로(尹殷老)가 양친에게 헌수(獻壽)한다는 말을 듣고 내관(內官) 김처선(金處善)을 보내어 선은(宣醞)을 하사하고, 또 친히 율시(律詩)를 지어서 내려 주었다.</p>	<p>○上聞同知中樞府事尹殷老壽兩親，遣內官金處善賜宣醞，又親製律詩以賜之。</p>
<p>성종 289권, 25년</p>	<p>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강형(姜訥)과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김사지(金四</p>	<p>○辛未/司憲府持平姜訥、司諫院正言</p>

<p>(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4월 13일 (신미) 1번째기사</p>	<p>知)가 흥복사(興福寺)의 불사(佛事)를 수창(首唱)한 사람을 국문(鞫問)할 것을 청하니, 전교하기를, “옛날부터 옥송(獄訟)이 일어나면 원통하고 억울한 자가 반드시 많았으니, 진실로 고요모(臯陶謨)가 아니면 어찌 밝게 판결할 수가 있겠는가? 그대들이 비록 말하기를, ‘이를 추핵(推覈)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하나, 나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절에 올라간 부녀자는 그 숫자가 반드시 많을 것인데, 그 들추어내어 송정(訟庭)에 이르게 하여 그 정상을 모조리 자백받은 뒤에야 그만둘 것인가? 하물며 지금 농사일이 바야흐로 한창인데, 가뭄의 징후가 점점 치열해지지 않는가? 무고한 백성들을 내몰아서 유죄(有罪)의 처지에 빠뜨린다면, 성문(城門)에 실화(失火)하여 그 재앙이 연못의 고기에까지 미친 것[殃及池魚]27390) 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였다. 강형이 또 아뢰기를, “지금 가뭄의 징후가 있어서 양맥(兩麥)이 이미 메말랐는데, 비록 금주(禁酒)의 명령을 내렸다 하더라도 사후(射侯)27391) 에서 병주(瓶酒)를 주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니, 무지한 사람들이 이것을 빙자하여 술 마시기를 승상하고 비용을 써서 없애는 것이 옛날과 같습니다. 청컨대 일절 이를 금지시키소서. 또 근래 상참(常參)과 경연(經筵)을 폐지하여 오랫동안 여러 신하들을 접하지 않으시니, 미편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술을 금지하는 것은 마땅히 아된 바대로 따르겠다. 경연의 일은 전에 이미 유지하였는데, 그대가 알지 못하겠는가? 행해 가면서 적당히 하도록 하겠다.” 하였다.</p>	<p>金四知請鞫首唱興福寺佛事之人， 傳曰：“自古獄訟之起， 冤抑者必多， 苟非臯陶， 安能明決？ 爾等雖曰推之不難， 予以爲難也。 上寺婦女， 其數必多， 其可舉致訟庭， 盡輸其情而後乃已耶？ 況今農事方殷， 旱徵漸熾， 驅無辜之民， 納有罪之地， 與城門失火， 殃及池魚， 何異乎？” 姜訥又啓曰：“今有旱乾之候， 兩麥已枯， 雖下禁酒之令， 射侯與瓶酒勿禁， 無知之人憑此崇飲， 糜費如舊， 請一切禁之。 且近來廢常參、經筵， 久不接群臣未便。” 傳曰：“酒禁當依所啓。 經筵事， 前既諭之， 爾豈不知？ 行且爲之。”</p>
<p>성종 289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4월 15일</p>	<p>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김사지(金四知)가 와서 아뢰기를, “한재(旱災)가 너무 심하여 나라에서 바야흐로 금주(禁酒)하는데, 신금제(新及第)도 청컨대 유가(遊街)하지 말게 하소서.”</p>	<p>○司諫院正言金四知來啓曰：“旱災太甚， 國家方禁酒， 新及第請勿令游街。” 傳曰：“可。”</p>

<p>(계유) 3번째기사</p>	<p>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p>	
<p>성종 289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4월 16일 (갑술) 2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문소전(文昭殿)의 수리를 상당히 정교하고 치밀하게 하였는데, 이것은 반드시 감독한 자가 뜻을 기울여 한 것이니, 내가 매우 기쁘다. 지금은 또 일기가 청명(淸明)하여 제삿일이 매우 밝게 갖추어지니, 내 마음도 비로소 평안하다. 그 헌관(獻官)과 여러 집사(執事)를 승정원에 모아서 두루 4배(盃)의 술을 대접하겠다. 또 이안(移安)할 때 헌관과 여러 집사에게 이미 음식을 대접하였으니, 환안(還安)한 뒤에도 또한 음식을 대접하고자 하는데, 지금 가뭄이 극심한 때를 당하여 술을 쓸 수가 없으나, 이것은 대사(大祀)이므로 무방할 것 같다. 어가(御駕)를 호종(扈從)하는 여러 재상에게 그 가부를 물어보도록 하라.” 하니, 윤필상(尹弼商)·노사신(盧思愼)·신준(申浚)·성현(成俔)·유순(柳洵) 등이 아뢰기를, “이것은 다른 일과 같지 아니합니다. 선왕(先王)과 선후(先后)를 환안(還安)27397 하는 것이니, 신 등의 뜻으로는 음식 대접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였다.</p>	<p>○傳于承政院曰：“文昭殿修理頗極精緻，是必監督者用意爲之，予甚喜焉。今又日氣淸明，祀事孔明，予心載寧。其會獻官諸執事于承政院，遍飲四盃，且移安時獻官諸執事，既已饋之，還安後亦欲饋焉。今當旱甚，不可用酒，然此爲大祀也，似乎無妨，問其可否于扈駕諸宰。” 尹弼商、盧思愼、申浚、成俔、柳洵等啓曰：“此非如他事，爲先王、先后還安也。 臣等意，饋之無妨。”</p>
<p>성종 289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4월 18일 (병자) 4번째기사</p>	<p>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 권경희(權景禧)가 치계(馳啓)하기를, “왜선(倭船) 4척이 추자도(楸子島)에 웅거(雄據)하여 기다렸다가 제주(濟州)에서 진공(進貢)하는 물건을 탈취(奪取)하였는데, 이에 사람을 상하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니,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병조에 의논하게 하였다. 윤필상(尹弼商)·윤호(尹壕)·한치형(韓致亨)이 의논하기를, “그 도(道)의 절도사(節度使)로 하여금 수색하여 체포하도록 하소서.” 하고, 이극배(李克培)·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p>	<p>○全羅道觀察使權景禧馳啓：“倭船四艘據楸子島要奪濟州進貢之物，乃至傷人。” 命議于領敦寧以上及議政府、兵曹。 尹弼商、尹壕、韓致亨議：“令其道節度使搜捕。” 李克培、盧思愼議：“濟州人云：‘倭船四艘向甫吉島而去。’ 此島距海南、珍島皆不遠，倭船所向，猶可瞭望，且沿海居民，變爲倭</p>

	<p>“제주 사람이 이르기를, ‘왜선 4척이 보길도(甫吉島)로 향하여 갔다.’고 하였는데, 이 섬이 해남(海南)·진도(珍島)와 거리가 모두 멀지 아니하니, 왜선이 향하는 곳을 오히려 멀리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바닷가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왜인(倭人)의 모습으로 변장하여 검탈하기를 모의하는데, 시비(是非)와 자세한 일을 관찰사(觀察使)와 수군 절도사(水軍節度使) 등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추고(推考)해서 아뢰도록 하소서.”</p> <p>하고, 정괄(鄭恬)·신종호(申從濩)·허계(許誡)·박원종(朴元宗)은 의논하기를, “이 앞서 제주의 배가 왜선을 만나서 검탈당한 것이 간혹 있었습니니다. 그러나 이익을 얻으면 곧 가버렸는데, 지금 이 도적은 추자도에 웅거하여 여러 날 동안 출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머물면서 검탈한 배가 많으면 10여 척에 이릅니다. 오로지 의심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빈번히 와서 도둑질하는데, 그 형세가 반드시 이를 것이니, 본도의 관찰사·병마 절도사·수군 절도사에게 명하여 다방면으로 계책을 마련해서 기회를 틈타 포획(捕獲)하게 하소서. 또 전라도·경상도 연변의 여러 진(鎭)으로 하여금 수어(戍禦)하는 여러 가지 일을 배가(倍加)하여 조치(措置)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고, 정문형(鄭文炯)은 의논하기를, “본도(本道)와 경상우도 병마 절도사(慶尙右道兵馬節度使)·수군 절도사(水軍節度使)로 하여금 다방면으로 조치하여 기필코 포착(捕捉)하도록 하고, 조관(朝官)을 남해(南海) 등지에 보내어 왜선을 만나서 검탈당한 상황과 피해 인물(人物)의 숫자를 사실대로 추고(推考)해서 아뢰게 하소서.”</p> <p>하고, 윤효손(尹孝孫)은 의논하기를, “고기잡이를 하는 왜인[釣魚倭人]과 우리 나라 변민(邊民)이 간혹 서로 다투다가 옷과 양식을 검탈하는 것은 보통 흔한 일로서, 족히 괴이하게 여길 것이 없겠지만, 지금 추자도(楸子島)에서 왜적(倭賊) 59인이 진공(進貢)하는 물건을 검탈하다가 사람을 상하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방자하게 행동하여 거리낌이</p>	<p>形, 以謀劫奪, 是非細事, 令觀察使、水軍節度使等, 備細推考以啓。” 鄭恬、申從濩、許誡、朴元宗議: “前此濟州之船遭倭被奪者或有之, 然得利即去。今此賊據楸子島, 累日不發, 留連劫奪之船, 多至十餘, 專無疑畏之心, 頻來作賊, 勢所必至。命本道觀察使、兵馬節度使、水軍節度使 多方設策, 乘機捕獲。且令全羅、慶尙道沿邊諸鎭, 戍禦諸事, 倍加措置何如?” 鄭文炯議: “令本道及慶尙右道兵馬節度使、水軍節度使, 多方措置, 期於捕捉, 遣朝官于南海等處, 遭倭被奪之狀, 被害人物之數, 從實推考啓聞。” 尹孝孫議: “釣魚倭人與我邊民, 或相爭鬪, 衣糧劫奪, 常事不足怪。今於楸子島倭賊五十九人, 奪進貢之物, 以至傷人, 恣行不忌, 漸不可長。衣鞋木行器倭裝, 見在作賊之人, 終不可掩, 將此物三浦倭人處, 廣行訪問, 兼諭進告人褒賞節目, 且於島主處詳悉通諭搜捕, 以示國威。” 又命承政院議之。金應箕、李宗顯、韓斯文、權景祐、姜龜孫、丘致崐議: “倭寇五十餘人, 據楸子島要奪濟州進貢, 刺傷人</p>
--	---	---

없는데, 이러한 조짐은 자라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옷·신발·목행기(木行器)·왜장(倭裝)이 도적질을 한 사람을 나타내고 있으니, 끝내 숨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물건들을 가지고 삼포 왜인(三浦倭人)이 있는 곳에 널리 찾아서 물어 보도록 하고, 아울러 진고(進告)하는 사람에게 포상(褒賞)하는 절목(節目)을 유시(諭示)하도록 하소서. 또 도주(島主)가 있는 곳에 상세하게 통유(通諭)하여 수색 체포해서 나라의 위엄을 보이게 하소서.”

하였다. 또 승정원(承政院)에 명하여 이를 의논하게 하니, 김응기(金應箕)·이종호(李宗顥)·한사문(韓斯文)·권경우(權景祐)·강귀손(姜龜孫)·구치곤(丘致峴)이 의논하기를,

“왜구(倭寇) 50여 명이 추자도에 웅거하여 제주(濟州)의 진공(進貢)을 겁탈하고 인물(人物)을 자상(刺傷)하였는데, 우리 나라 사람들은 머리를 떨구고 정신을 잃어버린 채 감히 누구냐고 물어 보지도 못하였다 하니,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들은 반드시 마음으로 이익을 얻은 것을 달갑게 여겨서 다시 와서 도적질할 것이니, 이것이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연변의 진장(鎭將)으로 하여금 더욱 방비[隄備]를 더하게 한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그러나 계본(啓本)을 보건대 의심할 만한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왜놈[倭奴]들이 가벼운 배와 짧은 노[棹]를 가지고 편리한 때를 틈타 변경(邊境)을 침범하여, 이익을 얻으면 물러나고 하며 왕래하는데, 바람처럼 빠른 것이 진실로 보통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먼저 추자도에 웅거하여 5, 6일을 머물며 겁탈하기를 스스로 자행하고, 우리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피리를 불면서 의복을 증정하도록 하여 그들은 조용히 저절로 취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그 의심스러운 점의 첫째입니다.

왜놈들의 망혜(芒鞋)27405)·목기(木器)를 우리 나라 배 가운데에 남겨 두었는데, 신발은 몸에 딸린 물건이라 오히려 말할 만 하나, 목기는 표략(剽掠)할 만한 물건이 아니니, 어디에서 가져와 배 가운데 남겨두었겠습니까? 그 의심

物, 我國之人垂首喪魄, 無敢誰何, 可謂痛心。 彼必甘心得利, 更來作耗, 是可慮也。 令沿邊鎭將, 益加隄備幸甚。 然觀啓本可疑者非一。 倭奴以輕舟短棹乘便犯境, 得利具退, 往來飄忽, 固其常事, 而今者先據楸子, 留連五、六日, 劫奪自恣, 至使我人吹笛, 以衣贈之, 其從容自得如此, 其可疑者一也。 倭奴之芒鞋、木器, 遺之於我舟之中, 鞋則隨身之物猶可說也, 木器非剽掠之具, 何從而遺之於舟中乎? 其可疑者二也。 倭奴初七日向甫吉浦之北, 若然則甫吉距此邊不遠, 沿海之郡, 豈無聲息乎? 其可疑者三也。 濟州李順從等言, 倭賊之數五十九人, 蒼黃失措之中, 安能計賊之數如此其詳乎? 且高存性等到海南縣, 乘夜自逃, 其遇倭賊, 恐非眞也。 不然, 卽當奔告邊將, 追捕之可也, 而下陸旋逃, 其可疑者四也。 以雲山李砧被刺之狀觀之, 非倭則水賊也, 而以存性等逃亡之迹料之, 濟州之人自偷進貢之物, 托言倭變, 欺罔國家, 奸計難測, 其可疑者五也。 有此五可疑之迹, 而但以倭變備之, 則恐失其策也。 臣等以謂, 擇

	<p>스러운 점의 둘째입니다.</p> <p>왜놈들이 초 7일에 보길포(甫吉浦)의 북쪽으로 향하였으니, 그렇다면 보길포에서 이 변방과의 거리가 멀지 않은데, 연해의 군(郡)에서 어찌 성식(聲息)이 없었겠습니까? 그 의심스러운 점의 세째입니다.</p> <p>제주의 이순종(李順從) 등이 왜적의 숫자를 59인이라고 말하였는데, 창황(蒼黃)하여 조치하기에 실패한 가운데 어떻게 적의 숫자를 헤아릴 수가 있어서 이와 같이 그것이 자세하겠습니까? 또 고존성(高存性) 등이 해남현(海南縣)에 이르렀다가 밤을 틈타서 스스로 도망하였는데, 그가 왜적을 만난 것은 아마 진실이 아닌 듯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즉시 마땅히 달려가서 변장(邊將)에게 보고하였다면, 따라가서 그들을 체포하는 것도 가능하였을 것인데도 욱지로 내려서 곧 도망쳤으니, 그 의심스러운 점의 네째입니다.</p> <p>운산(雲山)의 이침(李砧)이 자상(刺傷)을 입은 상황을 보건대 왜인이 아니면 수적(水賊)입니다. 그런데 고존성이 도망한 자취를 헤아려 보건대 제주의 사람들이 스스로 진공할 물건을 탐내어서 왜변(倭變)이라고 핑계대어 말하고, 나라를 속이는 것인지 그 간교한 계책을 헤아리기가 어려우니, 그 의심스러운 점의 다섯째입니다.</p> <p>이러한 다섯 가지 의심스러운 흔적이 있는데, 다만 왜변(倭變)으로만 대비한다면, 그 방책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신 등은 생각하건대 조관(朝官)을 골라서 보내어 왜적을 만난 상황을 끝까지 추궁한다면,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변(分辨)할 수 있을 것입니다.”</p> <p>하니, 김응기 등의 의논에 따랐다.</p>	<p>遣朝官，窮推遇賊之狀，則其眞、其詐，可以辨矣。”從應箕等議。</p>
<p>성종 289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弘治) 7년) 4월 18일 (병자) 5번째기사</p>	<p>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를 명소(命召)하고, 전교하기를, “문소전(文昭殿)을 지은 것이 60년 전이어서 전우(殿宇)가 잔폐(殘敝)해졌다. 다시 신축하는 일을 마침 나의 시대에 당하게 되어, 지금 감독하는 관리들이 나라의 뜻을 본받고, 아래로 공장(工匠)에 이르기까지 또한 모두 힘을 다하</p>	<p>○命召領敦寧以上及議政府。傳曰：“文昭殿之構在六十年前，殿宇殘敝，重新之事，適丁予時。今監督之官，體國家之意，下逮工匠，亦皆戮力，不</p>

니, 며칠이 아니되어 이루어져 한결같이 그 제도가 새로와졌다. 선왕(先王)·선후(先後)의 신어(新御)가 오래 되지 아니하여 환안(還安)하게 되니, 그 공이 중대(重大)하므로, 상을 주지 아니할 수가 없다. 내가 논공 행상(論功行賞)을 하고자 하나, 독단(獨斷)할 수가 없으므로 경들과 함께 의논하는 것이다.

그것을 감독하는 데 공이 있는 자에게 자궁(資窮)27406) 을 논하지 아니하고 한 자급(資級)을 더하고, 모든 공장(工匠)은 매우 많으니 마땅히 쌀과 포묵으로써 상을 주어야 하겠는가? 또 기와[蓋瓦]가 정교하고 좋았는데, 감독하여 제조한 관원도 또한 논공하고자 한다. 옛말에 이르기를, ‘사유(赦宥)를 자주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였는데, 지난번의 사유는 경사(慶事) 때문이었으며, 지금 선왕(先王)·선후(先後)를 위하여 묘모(廟貌)27407) 를 다시 수리하였으니, 또한 큰 일이므로 사유를 반포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였다. 윤필상(尹弼商)·이극배(李克培)·윤호(尹壕)·윤효손(尹孝孫)이 의논하기를,

“감역관(監役官)으로서 자궁(資窮)한 자에게 자급(資級)을 더하면 과중(過重)하니, 마땅히 대가(代加)27408) 하도록 하소서. 기와를 구워서 만든 관원은 마땅히 감역관의 예에 의하여 시행할 것이며, 제색 장인(諸色匠人)의 논상(論賞)은 마땅히 미곡(米穀)을 사용하되, 다만 부역한 지 오래 되고 가까운 것이 같지 아니하고, 일의 공역(功役)도 정밀(精密)하고 정밀하지 못한 것이 또한 다르니, 마땅히 제조(提調)로 하여금 분간(分揀)하게 하여 논상하도록 하소서. 근래 대사(大赦)를 내린 지 얼마 안되는데, 또 사유한다면 대체(大體)에 있어서 미편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일의 공역(功役)이 이미 이루어지고 정교하고 치밀하여 실로 내 마음에 맞으니, 오로지 역사를 감독한 자가 뜻을 기울인 탓으로 그러한 것이다. 평상시에 혹은 공이 없으면서도 당상관(堂上官)에 오르는 자도 있는데, 이 일은 중대하

日成之，一新其制，先王、先后神御，不久而還安，其功重大，不可不賞。予欲論功行賞，然不可獨斷，與卿等共議之，其監督有功者，勿論資窮而加一資，凡工匠甚多，當賞以米布耶？且蓋瓦精好，監造官亦欲論功。古云赦不數下，向日之赦因慶事也，今爲先王、先后，而重修廟貌亦大事也。頒赦何如？”尹弼商、李克培、尹壕、尹孝孫議：“監役官資窮者，加資過重，宜令代加。蓋瓦燔造官員，當依監役官例施行。諸色匠人論賞，當用米穀，但赴役久近不同，事功精蠡亦異，宜令提調分揀論賞。近降大赦未幾而又赦，於大體未便。”傳曰：“事功已就而精緻，實協予心，專由董役者致意而然也。平時或有無功而陞堂上者，此事重大，加資無妨，誰有非之者？若曰此臣子職分之當爲，則何有論功之事乎？匠人令提調分等論賞可也。赦者，小人之幸，君子之不幸，卿等之言是矣。”

	<p>니, 가자(加資)하더라도 무방할 것이다. 누군가 이를 비난하는 자가 있어서 만약 말하기를, ‘이것은 신자(臣子)가 직분상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한다면, 논공하는 일이 어찌 있을 수가 있겠는가? 장인(匠人)은 제조(提調)로 하여금 등급을 나누어 논상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사유(赦宥)라는 것은 소인(小人)에게는 다행한 일이요, 군자(君子)에게는 불행한 일이니, 경 등의 말이 옳다.” 하였다.</p>	
<p>성종 289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弘治) 7년) 4월 19일 (정축) 7번째기사</p>	<p>정언(正言) 김사지(金四知)가 와서 아뢰기를, “지금 가뭄 때문에 금주(禁酒)하는데, 문소전(文昭殿)의 집사관(執事官)을 위하여 크게 공구(供具)를 준비하니, 하늘의 경계를 삼가는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감역관(監役官)에게는 특별히 명하여서 상을 더하고, 자궁(資窮)한 자는 마땅히 당상관(堂上官)에 승계(陞階)시키도록 하셨습니다. 비록 이 전(殿)을 창건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남다른 공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물며 옛날 그대로 수리한 것이야 말할게 있습니까? 당상관의 자금을 어찌 함부로 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지평(持平) 강형(姜訥)이 와서 아뢰기를, “지난 번에 김확(金確)이 경상도(慶尙道)에서 징병(徵兵)할 적에 행한 것이 광망(狂妄)하였으며, 하문(下問)할 때에도 사실대로 대답하지 아니하였는데, 이것은 신자(臣子)로서 차마 하지 못할 짓입니다. 이것으로 보건대 전라도(全羅道)에서 역마(驛馬)를 함부로 탄 사건은 진실로 거짓이 아닙니다. 관찰사 권경희(權景禧)가 친히 이 일을 설명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헛말이겠습니까? 청컨대 김확의 직임(職任)을 바꾸도록 하소서. 또 지금 가뭄이 심하여 양맥(兩麥)이 이미 메말랐으니, 마땅히 하늘의 경계를 삼가서 문소전(文昭殿)의 집사관에게 궤향(饋餉)하는 일을, 청컨대 정지하도록 하소서. 감역(監役)의 임무는 모두 신자(臣子)의 직분 안의 일이니, 비록 새로 묘모(廟貌)를 세웠다고 하더</p>	<p>○正言金四知來啓曰：“今者以旱禁酒，而爲文昭殿執事，大辦供具，謹天戒之意安在？且監役官特命賞加資窮者當陞堂上，雖創此殿，非特異之功，況因舊修葺乎？堂上之資，豈宜妄授乎？” 持平姜訥來啓曰：“向者金確徵兵于慶尙道，所行狂妄，及下問之時，不以實對，此臣子所不忍爲也。由是觀之，全羅濫騎驛馬之事，信不誣矣。觀察使權景禧親說此事，此豈虛語哉？請遞金確之職。且今旱甚，兩麥已枯，當謹天戒，文昭殿執事饋餉，請停之。監役之任，皆臣子分內事，雖新立廟貌，猶不可賞，況因舊修補乎？堂上之職，豈可以微勞而濫授哉？” 傳曰：“予不意爾等之來言也，事之重大，無踰於此，雖曰臣子職分，古之帝王亦有賞典，爾爲人臣而出此言何也？予非濫</p>

	<p>라도 오히려 상줄 수가 없는데, 하물며 옛날 그대로 수리 보수한 것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당상관의 직임을 어찌 조그마한 노고 때문에 함부로 줄 수가 있겠습니까?”</p> <p>하니, 전교하기를,</p> <p>“나는 그대들이 와서 말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 일이 중대하기로는 이보다 더한 것이 없다. 비록 ‘신자의 직분이다.’라고 하지만, 옛날의 제왕(帝王)도 상전(賞典)이 있었다. 그대들이 인신(人臣)이 되어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내가 함부로 상주는 것이 아니라, 선왕(先王)·선후(先後)를 위하여 수고하였는데, 만약 그 경중을 따진다면, 그 중한 것이 선왕·선후에 있겠는가, 양맥에 있겠는가? 김확(金確)의 일은 마땅히 전라도 감사(全羅道監司)에게 물어 보아야 하나, 변무(邊務)가 바야흐로 바쁘므로 오랫동안 비워둘 수 없으니, 우선 고쳐 임명하는 것이 좋겠다. 집사관(執事官)을 논공행상(論功行賞)하는 일은 다시 여러 말 하지 말라.”</p> <p>하였다. 강형·김사지 등이 다시 아뢰기를,</p> <p>“근자(近者)에 나라에서 일이 있으니, 다투어 은상(恩賞)을 받으려고 권문(權門)에 분경(奔競)27412) 하여서 집사관을 구하니, 사풍(士風)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또 당상관의 자급을 조그마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지금 바야흐로 하늘의 경계를 삼가야 하므로 집사관을 대접하는 일은 옳지 않으니, 청컨대 이를 정지하도록 하소서.”</p> <p>하였으나, 모두 들어주지 아니하였다.</p>	<p>賞，爲先王、先后而勞之也，若較其輕重，則其重在先王、先后耶？在兩麥耶？金確事，當問于全羅監司，然邊務方殷，不可久曠，姑改差可也。執事論賞事，更勿多言。”姜訶、四知等更啓曰：“近者國家有事，爭邀恩賞，奔競權門，以求執事，士風不美，且堂上之資，不當加於微勞之人也。今方謹天戒，饗執事不可，請停之。”皆不聽。</p>
<p>성종 289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弘治) 7년) 4월 20일 (무인) 2번째기사</p>	<p>문소전(文昭殿)을 수리한 관원과 환안 친제(還安親祭) 때의 여러 집사관(執事官)을 후원에 모이게 하고 술과 풍악을 내려 주고, 또 물건을 차등 있게 내려 주었다.</p>	<p>○會文昭殿修理官員及還安親祭時諸執事于後苑，賜酒樂，又賜物有差。</p>
<p>성종 289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p>	<p>전교하기를, “신급제(新及第)에게 유가(遊街)27413) 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연음(宴飲)하</p>	<p>○傳曰：“新及第不許遊街，爲宴飲也。然放榜後賜蓋賜花皆藏之，無奈</p>

<p>(弘治) 7년 4월 21일 (기묘) 2번째기사</p>	<p>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방(放榜)한 뒤에 사개(賜蓋)27414) 와 사화(賜花)27415) 를 모두 없애는 것은 불가하지 아니하겠는가? 연음을 금지하고, 유가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p> <p>하니, 우의정(右議政) 윤호(尹壕)가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下敎)가 윤당(允當)합니다.”</p> <p>하고, 도승지 김응기(金應箕)가 말하기를, “성명(成命)이 이미 하달되었으니, 가볍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p> <p>하였다. 임금이 전교하기를, “그렇다면 지금 유가할 필요도 없다.”</p> <p>하였다.</p>	<p>不可乎? 禁其宴飲, 而許令遊街何如?” 右議政尹壕啓曰: “上敎允當。” 都承旨金應箕啓曰: “成命已下, 不可輕變也。” 傳曰: “然則今不必遊街也。”</p>
<p>성종 289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4월 24일 (임오) 3번째기사</p>	<p>임금이 홍문관 응교(弘文館應敎) 황계옥(黃啓沃)이 길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전교하기를, “황계옥(黃啓沃)이 나라 일을 하다가 죽었으니 애석하다. 그에게 쌀·콩 아울러 15석(碩), 유둔(油菴) 3석, 회(灰) 20석, 종이 70권(卷), 관곽(棺槨)을 내려 주도록 하라.”</p> <p>하였다.</p> <p>사신은 논한다. 황계옥(黃啓沃)이 영안도(永安道)에 봉명 사신(奉命使臣)으로 나갔다가 길에서 병이 나니, 종자(從者)들이 서울로 돌아가기를 청하였으나, 대답하기를, ‘내가 죽거든 시체로써라도 명령을 봉행하라.’고 하고, 힘써 병을 참다가 견여(肩輿)가 거산역(居山驛)에 이르러 죽으니, 사람들이 모두 그를 불쌍하게 여겼다. 황계옥은 천성(天性)이 맑고 깨끗하며 준엄하고 강직한데다가 재행(才行)이 있었다. 그러나 집에 있을 때에는 가혹하고 박정하여 녹봉(祿俸)을 몸소 스스로 숫자를 파악하고 집 사람들이 감히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였다.</p>	<p>○上聞弘文館應敎黃啓沃道死。 傳曰: “啓沃死於王事, 可惜。 其賜米、豆并十五碩、油菴三石、灰二十碩、紙七十卷、棺槨。”</p> <p>【史臣曰: “啓沃奉使永安道, 道病, 從者請還京, 答曰: ‘我死以屍將命。’ 力疾肩輿, 到居山驛而死, 人皆憐之。 啓沃天性清介峭直, 有才行, 然處家苛刻, 祿俸親自知數, 家人不敢擅用。”】</p>
<p>성종 289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p>	<p>예조 판서(禮曹判書) 성현(成愼)이 와서 아뢰기를, “권주(權柱)가 2통의 글을 가지고 돌아간다면, 사체(事體)에 어찌 되었겠습니까</p>	<p>○禮曹判書成愼來啓曰: “權柱齎二書以歸, 於事體何如? 臣意爭魚梁事小,</p>

<p>(弘治) 7년 4월 25일 (계미) 2번째기사</p>	<p>까? 신의 생각으로서는 어량(魚梁)을 다루는 일은 작은 것이지만, 추자도(楸子島)의 왜변(倭變)은 큰 것이니, 이 사실을 앞서 글에 실어서 1통의 글로 통일하여 권주에게 붙이도록 하되, 권주가 만약 이미 돌아갔다면 따로 1통의 글을 만들어 뒤따라 들여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p>	<p>而楸子島倭變則大，載此事于前書，而通爲一書以付權柱，柱若已歸，則別爲一書，從後入送何如?” 傳曰：“可。”</p>
<p>성종 290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5월 2일 (기축) 2번째기사</p>	<p>전지(傳旨)하기를, “인사(人事)가 아래서 감동하면 천변(天變)이 위에서 응(應)하게 된다. 근년 [比年]에 오면서 가뭄이 잇달아 해마다 흉년을 구제하는 정치를 거행하였으며, 금년 봄에 또 가뭄이 들어 보리가 이미 추수할 것을 잃어버렸고 요즈음은 논밭을 갈거나 김을 매야 할 시기인데 달마다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 생각이 백성의 생계에 미치면 어찌 염려스럽고 두려움을 금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된 것을 깊이 생각하여 보면 그 책임은 실로 나에게 있으니, 반성하고 수양하는 도리를 내가 감히 조금이라도 해이하게 하겠는가? 옛사람이 말하기를, ‘한 여자의 원한이 3년 동안의 가뭄을 이루었다.’고 하였다. 나는 아마도 백성들의 마음에 억눌리거나 막히고 원통하거나 억울한 것을 펴지 못하여 이루어진 듯하니, 관직에 있는 모든 이들은 각자 그대들의 직분을 경계하고 서로 수양하여 허물이 없도록 해서 하늘의 견책(譴責)에 응답(應答)한다면, 재앙(災殃)이 변하여 상서가 되어 함께 태평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p>	<p>○傳旨：“人事感於下，則天變應於上，比年以來，旱乾連仍，歲舉荒政，今春又旱，麥已失秋，屬茲耕耘之時，連月不雨，念及民生，曷勝憂懼？深惟致此，責實在予，修省之道，予敢少施？古云：‘一女之怨，致三年之旱。’予恐下情抑滯，冤枉未伸而致然也。凡百在位，各警爾職，交修罔愆，用答天譴，變災爲祥，共享太平。”</p>
<p>성종 290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5월 3일 (경인) 2번째기사</p>	<p>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술을 비치(備置)하게 하고 일본국(日本國) 사신(使臣) 상관인(上官人) 중[僧] 원국(元菊)과 부관인(副官人) 선지(禪智) 등을 인견(引見)하였는데, 종재(宗宰)가 차례로 술잔을 올렸다. 그리고 또 원국과 선지 등에게 술잔을 올리도록 하고, 차등 있게 내려 주었다.</p>	<p>○上御仁政殿，置酒引見日本國使臣上官人僧元菊、副官人禪智等。宗宰以次進爵，又令元菊、禪智等進爵，賜物有差。</p>
<p>성종 290권, 25년</p>	<p>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송질(宋軼) 등이 상소(上疏)하기를,</p>	<p>○弘文館副提學宋軼等上疏曰：</p>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5월 5일
(임진) 5번째기사

“인군(人君)은 한 세대의 권력을 조종(操縱)할 수 있으니, 귀(貴)하게 하고 싶은 사람은 귀하게 할 수 있고, 부(富)하게 하고 싶은 사람은 부하게 할 수 있고, 죄주도록 하고 싶은 사람은 죄줄 수 있고, 용서하고 싶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서, 작상(爵賞)을 공정히 하고 사사로이 하는 것은 <인군의> 손에 달려 있으며, 법령(法令)을 낮추거나 올리는 것은 <인군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니, 무엇을 구한들 이루지 못하겠으며 무엇을 하려고 한들 이룩하지 못하겠습니까? 오직 전대(前代)의 경계를 거울로 삼고 후세(後世)의 비난을 두려워하면서, 위로는 하늘을 두려워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두려워하였는데, 이 때문에 하고 싶어도 감히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진실로 시비(是非)와 득실(得失)을 따지지 않고 오직 자기의 뜻만을 옳다고 여겨 행한다면 어느 곳엔들 이르지 않겠습니까? 옛날 부열(傅說)27561) 이 고종(高宗)을 경계하기를, ‘관직(官職)을 사사로이 친근(親近)한 자에게 미치지 말게 하시고 그 능력이 있는 자에게 맡기소서.’ 하였습니다. 서관(庶官)27562) 을 가려 뽑는데도 친근한 데 사사로이 하여 능력이 없는 자에게 맡길 수 없는데, 더구나 삼공(三公)이겠습니까? 삼공의 임무는 소중합니다.

한 사람을 보좌(補佐)하여 만민(萬民)을 다스려야 하며 천지(天地) 자연의 이치로 이루어지는 조화와 발육을 도우며, 세상 사람이 지켜야 할 도덕이 융성해지거나 쇠퇴하는 것을 말아야 하는 것이니, 음양(陰陽)이 조화되지 않거나 홍수와 가뭄이 재화(災禍)가 되거나, 해와 달이 서로 빛을 가리거나 혜성(彗星)27563) 과 패성(孛星)27564) 이 흘러다니거나, 이적(夷狄)27565) 이 업신여기거나 도적(盜賊)이 성하게 일어나거나, 군자(君子)가 초야(草野)에 묻혀 있거나 소인(小人)이 조정(朝廷)에 있거나 하는, 그 책임은 모두 삼공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윤호(尹壕)의 지식이 없고 도리에 어두운 자질로 이 임무를 감당해낼 수 있다고 여기십니까? 만약 전하께서 윤호(尹壕)가 불가하다는 것을 알

人君操一世之柄，所欲貴者貴之，所欲富者富之，所欲罪者罪之，所欲赦者赦之，爵賞公私在於手，法令低昂出於口，何求而不遂，何欲而不成，惟其鑑前代之戒，懼後世之譏，上畏天而下畏民，是以欲爲而不敢爲也。苟不計是非得失，而惟己意之是行，則亦何所不至？昔傅說戒高宗曰：“官不及私昵，惟其能。”擇庶官，猶不可私於所親而付之無能，況三公乎？三公之任重矣。佐一人、理萬民，贊天地之化育，任世道之盛衰，其有陰陽不和，水旱爲災，日月薄蝕，彗孛流行，夷狄侵陵，盜賊滋起，君子在野，小人在朝，其責盡歸於三公。殿下以壕之庸暗爲可以當此任乎？若殿下知壕之不可，而特憫其年老，欲及其生，授以台鼎之位，榮其身而慰其心也，則是以調元贊化之任，爲殿下私戚畹借恩之地，是何殿下待三公之卑也？卑三公，非所以尊朝廷也。殿下膺祖宗付托之重，爲朝廷擇三公，縱不得皋、夔、稷、契，亦當求一世之賢而任之，苟無其人，寧闕其位，以待賢可也。豈可使如此庸庸之輩，玷累廟堂，使後人得以議殿下也？況今臺

면서도 특별히 그가 연로(年老)한 것을 민망하게 여기시고 그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고 삼공[台鼎]의 지위에 임명하셔서 그 자신을 영광되게 하며 그 마음을 위로하신다면, 이는 임금을 조호(調護)하고 천지의 화육(化育)27566)을 돕는 직임(職任)으로 전하의 척완(戚畹)27567)에게 사사로이 하시며 은혜를 빌려 주는 바탕으로 삼는다면, 이것이 어찌 전하께서 삼공(三公)을 대우하심이 비하(卑下)하는 것이 아닙니까? 삼공을 비하하는 것은 조정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전하께서는 조종(祖宗)께서 부탁하신 중대한 <왕업을> 받으셨으니, 조정을 위하여 삼공을 가려서 뽑도록 하소서.

비록 고(皐)·기(夔)·직(稷)·설(契)27568) 과 같은 사람은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 세대의 어진 사람을 구하여 그에게 임무를 맡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진실로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차라리 그 지위를 비워두고서 어진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가합니다.

그런데 어찌 이와 같이 평범한 무리로 하여금 묘당(廟堂)의 흠이 되고 누(累)가 되어 후세 사람으로 하여금 전하를 의논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대간(臺諫)과 시종(侍從)의 탄핵[彈奏]이 서로 뒤섞여 윤호의 일신(一身)에는 못 비방이 모여 있습니다. 윤호가 만약 한 개의 방촌(方寸)27569) 이 있다면 전하께서 비록 윤호에게 명령하시더라도, 당연히 극력 사양하면서 굳게 피하기에도 겨를하지 못할 터인데, 바로 의기 양양(意氣揚揚)하게 묘당(廟堂)에 들어가 괴극(槐棘)27570)의 지위에 웅거하여 백료(百僚)의 위에 있으니, 윤호가 부끄러움이 없는 것은 여기서도 알 만합니다. 진신(搢紳)27571)·사대부(士大夫)로 누가 몰래 보고서 비웃지 않겠습니까?

신 등이 듣건대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영(令)을 내는 것은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며, 시행할 수 없다고 하여 막거나 거스리려는 것은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법(法)이 있으면서 시행하지 못하면 법이 없는 것만 못합니다. 월산 부인(月山夫人)이 어찌 부녀(婦女)가 절에 올라가는 것을 금하는 줄을 모

諫、侍從，彈奏交午，壕之一身，衆毀叢集，壕若有一箇方寸，殿下雖有命，壕宜力辭，固避之不暇，而乃揚揚入廟堂，據槐棘之位，處百僚之右，壕之無恥，此亦可知。搢紳士大夫，孰不竊視而非笑哉？臣等聞，《書》曰：“令出惟行，不惟反。”有法而不行，不如無法也。月山夫人，豈不知婦女上寺之禁，豈不見殿下之不崇佛教乎？身居貴近，上不敬殿下，下不畏法令，窮詣寺刹，齋佛飯僧，其虧婦道而累風教大矣。殿下雖以至親之故而不忍加罪，然使執法之吏，有如董宣治湖陽公主之罪者，則殿下猶不得爲夫人而撓法也，況彼士族婦女之與會者，則何難於鞫問而竝釋之乎？且彼婦女，豈無一家之長？爲家長，而不能制家人之邪縱，使與緇髡之流，雜沓山門，以至寺刹難容，依林麓結帷幕而經宿者有之，雖曰婦人無知不足責也，豈可不罪其家長乎？不但此也，鼓禍福之說，誑誘扇動，主張此會者，妖僧學祖也。學祖，前此以其術誣齊民久矣，值聖上崇吾道斥異端之時，不得售其術二十餘年，而其惑世誣民之意，未嘗斯須忘也。今

르겠으며, 어찌 전하께서 불교(佛敎)를 숭상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지 못하였겠습니까? 자신이 귀근(貴近)의 위치에 있으면서 위로는 전하를 공경하지 아니하며 아래로는 법령(法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몸소 절에 나아가 부처에게 재(齋)를 올리고 중들에게 음식을 지공하였으니, 그 부녀자가 지켜야 할 도리를 휴손(虧損)시키고 풍속과 교화에 누(累)가 됨이 큼니다.

전하께서 비록 지친(至親)인 연고로 차마 죄를 가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법을 집행하는 관리가 동선(董宣)이 호양 공주(湖陽公主)의 죄를 다스린 것(27572) 처럼 한 자가 있었다면, 전하께서는 오히려 부인(夫人)을 위하여 법을 흔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저들 사족(士族)의 부녀로 법회(法會)에 참여한 사람인 경우는 국문(鞫問)하기에 무엇이 어려워 그들을 함께 석방하셨습니까? 그리고 저 부녀들에게 어찌 한 집안의 어른이 없겠습니까? 집안 어른이 되어서 집안 사람의 부정하고 방종함을 제재하지 못하고 그들로 하여금 중의 무리들과 산문(山門)에서 분답(紛沓)하게 하였으며, 절에서 그들을 수용하기 어려워 임록(林麓)을 의지하여 장막을 치고서 밤을 지내는 자가 있는 데 이르렀으니, 비록 부인은 무지(無知)하니 책망할 것이 못된다고 말하더라도 어찌 그 집안의 어른을 죄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뿐만이 아닙니다. 화복(禍福)의 설(說)로 부추기고 속이며 유혹하거나 선동(扇動)하여 이 법회를 주장(主張)한 자는 요망한 중 학조(學祖)입니다. 학조는 이보다 앞서 그 술책(術策)으로 제민(齊民)(27573) 을 속여 온 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상(聖上)께서 오도(吾道)(27574) 를 숭상하시고 이단(異端)을 배척하는 시기를 만나 그 술책이 쓰여짐을 얻지 못한 것이 20여 년인데도, 그가 세상을 미혹(迷惑)하게 하고 백성을 속이려는 뜻은 잠시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멀리 경상도(慶尙道)에서 팔을 걷어올리고 와서 그 술책을 쉽게 미혹되고 깨닫기 어려운 부인(婦人)들에게 베풀며, 왕도(王都)(27575) 바깥 가까이서 크게 불사(佛事)를 일으켜 도하(都下)(27576) 에

又遠自慶尙攘臂而來，施其術於易惑難曉之婦人，迫近王都，大作佛事，自都下至開城百餘里之間，士女奔波，輻輳聞咽，用金帛如泥沙，踐飲食如土芥，以累殿下清明之治，是不有主威也，不有朝廷也，不有法令也，其罪不容誅矣。高麗之季，紀綱蕩然，猶能竄誅懶翁，以快衆憤，況堂堂聖朝，貸一妖儒，使爲聖化之蠹竦乎？臣等又聞，古之王者不示人以私，今以壕之庸暗陞爲三公，以月山夫人之故竝釋其餘，殿下之行事如此，雖曰殿下之心至公無私，其誰信之？矧今旱暵彌月，民庶嗷嗷，正當側身修行之時，置相如此，用法如此，而汲汲於禱祀山川，聚街童呼蜥蜴，以救旱災，可謂應天以實乎？殿下誠能祇畏天戒，以公滅私，則必自思曰：“壕國之舅也，三公國之望也，予不可以戚里之私而累國家之公器也。夫人予之至親也，法令朝廷之所守也，予不可以夫人之故而毀朝廷之法也。”則臺諫、侍從之言，不待煩瀆而自能易入也。伏願殿下，上畏天人，下副國論，退尹壕於政府，代以賢相；責夫人之罪，使之知戒，并鞫與會婦女，以罪

서부터 개성(開城)에 이르기까지 1백여 리(里) 사이에 사녀(士女)들이 파도가 밀려오듯 다투어 모였으며, 치변(輜輶)27577) 이 길을 메웠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금(金)과 비단 쓰기를 진흙처럼 하며 음식(飮食) 밟기를 토개(土芥)같이 하여, 전하의 청명(淸明)한 정치에 누(累)가 되도록 하니, 이는 임금의 위엄이 없는 것이며 조정(朝廷)이 없는 것이며 법령(法令)이 없는 것이니, 그 죄는 주벌(誅罰)하는 데 용납되지 않습니다.

고려(高麗) 말엽에 기강(紀綱)이 흐트러졌어도 오히려 나옹(懶翁)을 귀양보냈다가 주륙(誅戮)하여 여러 사람들이 분하게 여기던 것을 쾌하게 하였는데, 더구나 당당(堂堂)한 성조(聖朝)에서 한 사람의 요망한 중을 용서하여 그로 하여금 성화(聖化)27578) 의 채동(蝮蝮)27579) 이 되게 하시겠습니까?

신 등이 또 듣건대 옛날의 왕자(王者)는 사람들에게 사사로움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렬(庸劣)하고 사리에 어두운 윤호(尹壕)를 승진시켜 삼공(三公)을 삼으셨으며, 월산 부인(月山夫人) 때문에 그 나머지를 아울러 용서하셨는데, 전하께서 일을 행하심이 이와 같으면서 아무리 전하의 마음이 지극히 공정하고 사사로움이 없다고 말하더라도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더구나 지금은 가뭄이 달을 거둬서 백성들이 오오(嗷嗷)27580) 하고 있으니, 바로 측신(側身)27581) 하고 수행(修行)하기에 타당한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정승을 배치함이 이와 같고 법을 적용함이 이와 같으면서, 서둘러 산천(山川)에 기도하거나 제사지내며 거리의 아이들을 모아 석척(蜥蜴)을 부르면서 가뭄의 재해(災害)를 구제하려고 하지만, 하늘에 응답하기를 성실하게 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진실로 하늘의 경계를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공변된 것으로 사사로운 것을 없앨 수 있다면 틀림없이 스스로 생각하시기를, ‘윤호는 국구(國舅)이며 삼공(三公)은 나라에서 우러러보는 지위이니, 내가 척리(戚里)의 사사로움을 가지고 국가의 공기(公器)에 누(累)가 되게 할 수 없다 하시며, 부인(夫人)은 나의 지친(至親)이고 법령(法令)은 조정에서 지키는 바이

家長； 誅學祖以絕執左道誣民者之根株，國家幸甚。
傳曰：“不宜與臺諫竝立而論啓也。”

	<p>니, 내가 부인 때문에 조정의 법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하신다면, 대간(臺諫)과 시종(侍從)의 말이 번거롭게 모독함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저절로 쉽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p> <p>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위로는 천인(天人)27582) 을 두려워하시고 아래로 국론(國論)에 부응하셔서 윤호를 의정부(議政府)에서 물러나게 하여 현명한 정승으로 대신하도록 하시며, 부인의 죄를 책망하셔서 그로 하여금 경계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아울러 법회(法會)에 참여한 부녀(婦女)들을 추국하시어 가장(家長)을 죄주시고 학조(學祖)를 주벌(誅罰)하여 좌도(左道)27583) 를 고집하면서 백성들을 속이는 자의 근본[根株]을 끊어버리신다면 국가에 매우 다행이겠습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대간(臺諫)과 나란히 서서 논계(論啓)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다.”</p> <p>하였다.</p>	
<p>성종 290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5월 6일 (계사) 3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지난 날에 내가 정전(正殿)을 피하고 감선(減膳)하려고 하였었다. 그러나 반성하고 수양하지 않으면서 한갓 헛되게 꾸미는 것만 일삼는 것도 옳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날씨를 관찰하면서 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제 홍문관(弘文館)에서 이것으로 나를 책망하니, 그 구례(舊例)대로 정전을 피하고 감선(減膳)하도록 하겠다.”</p> <p>하였다.</p>	<p>○傳于承政院曰：“前日予欲避殿、減膳，然不修省而徒事虛文亦不可，故欲徐觀日候而爲之。今弘文館以此咎予，其依舊例避殿、減膳。”</p>
<p>성종 290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5월 6일 (계사) 6번째기사</p>	<p>판중주부사(判中樞府使) 손순효(孫舜孝)가 와서 아뢰기를, “신이 <성상께서> 일본국(日本國) 사신(使臣)을 인견(引見)하실 때에 술 석잔을 마시고서 자신이 취(醉)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대사헌(大司憲)을 돌아다 보니, 술을 이미 다 마셨으므로 신이 대사헌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여사 대부(御史大夫)로서 남들이 술마시는 것을 금지시켜야 할 터인데, 그대가 어떻게 이와 같이 마실 수 있는가?’라고 하고, 인해서 서로 권하면서 웃었고 특별</p>	<p>○判中樞府事孫舜孝來啓曰：“臣於日本國使臣引見之時，飲三盃不覺已醉，顧見大司憲，飲酒已訖，臣語大司憲曰：‘君以御史大夫，禁人飲酒，而君何能飲若是乎？’仍相侑而笑，別無他語，臣失儀如此，請待罪。”傳曰：“予非</p>

	<p>히 다른 말은 없었지만, 신이 위의를 잃은 것이 이와 같으니, 청컨대 대죄(待罪)하게 하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관중추부사(判中樞府使)를 그르다고 한 것은 아니다. 다만 대사헌(大司憲)이 잘못을 규탄하며 드러내지 못했다고 말하였을 뿐이다. 어찌 이것으로써 죄줄 수 있겠는가? 대죄(待罪)하지 말도록 하라.”</p> <p>하였다.</p>	<p>以判府事爲非也，只謂大司憲不能糾舉而已，安可以此罪之？其勿待罪。”</p>
<p>성종 290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弘治) 7년) 5월 9일 (병신) 1번째기사</p>	<p>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이세좌(李世佐)가 치계(馳啓)하기를, “도내(道內) 군현(郡縣)의 태반(太半)이 벼의 싹이 서지 않았으며, 양맥(兩麥)27615) 도 바싹 말라 농사가 의뢰할 바가 없고 계획도 낼 것이 없습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농가의 식량은 오로지 양맥에 달려 있는데 지금 이와 같은 데 이르렀으니, 진실로 염려할 만하다. 호조(戶曹)로 하여금 의논해서 아뢰도록 하라.”</p> <p>하였다.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이른 곡식도 익지 않은 즈음에 농가 식량을 이어갈 계책을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의계(議啓)하게 한 뒤에 헤아려서 지급하게 하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 “군자창(軍資倉)의 곡식을 활용하는 것은 가볍게 할 것은 아니나,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監司)로 하여금 의계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도록 하라. 그리고 경기(京畿)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도(道)에도 모두 이 뜻을 유지(諭示)하게 하라.”</p> <p>하였다.</p>	<p>○丙申/京畿觀察使李世佐馳啓：“道內郡縣，太半禾不立苗，兩麥亦焦枯，農無所資，計無所出。”傳曰：“農食專在兩麥，今至如此，誠可慮也。其令戶曹議啓。”戶曹啓曰：“早穀未熟之際，農糧可繼之策，令觀察使議啓後計給。”傳曰：“軍資倉穀，用之非輕，然不得不給，令監司議啓後更議之。非獨京畿，他道皆以此意諭之。”</p>
<p>성종 290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弘治) 7년) 5월 10일</p>	<p>경기(京畿)·황해도(黃海道)·강원도(江原道)·평안도(平安道) 관찰사(觀察使)에게 하서(下書)하기를, “농가의 식량은 전적으로 양맥(兩麥)에 의뢰하는데, 가뭄의 재변(災變)이 너무</p>	<p>○下書京畿、黃海道、江原道、平安道觀察使曰：“農食專賴兩麥，而旱災太甚，卑濕之地猶或可穫，高燥之處盡</p>

<p>(정유) 3번째기사</p>	<p>심하여 낮고 축축한 곳에는 그래도 더러 수확할 수 있겠으나, 높고 건조한 곳은 모두 말라버리게 되어 백성들이 의뢰할 바가 없는데, 어떻게 농사에 힘쓰겠는가? 내가 매우 염려스럽다. 이른 곡식이 익을 동안에 곡식 얼마를 흘려서 농가의 식량으로 지급해야 마땅하겠는가? 경(卿)은 참작하여 치계(馳啓)하라.” 하였다.</p>	<p>爲焦枯，民無所資，何以力農？予甚軫慮，早穀成熟間，當散穀幾許以給農糧乎？卿其斟酌馳啓。”</p>
<p>성종 290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5월 11일 (무술) 1번째기사</p>	<p>유구국(琉球國) 중산부주(中山府主) 사승(使僧) 천장(天章) 등이 내빙(來聘)하였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유구국(琉球國) 중산부주(中山府主)는 조선국(朝鮮國) 예조 대신 족하(禮曹大人足下)에게 받들어 올립니다. 대체로 삼한(三韓)은 만방(萬邦)의 우두머리이니, 많은 백성들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덕택(德澤)은 사이(四夷)27623)에게 두루 미치며, 인풍(仁風)은 이의(二儀)27624)와 같으니, 크도다 만복(萬福)이 진중(珍重)함이어! 그러나 몇 해 전부터 내려오면서 음문(音問)27625)은 통하지 못했지만 함께 맹세한 의리는 소홀하거나 간략하지 않고 온전했으며, 바다를 건너는 길이 너무 멀어서 찾아뵙는 것을 겨를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마주(對馬州) 사람 평피고삼보라(平皮古三甫羅)가 지난해부터 이 섬에 내려왔습니다. 들으니 저들 일족(一族)은 대대로 귀국(貴國)에 귀부(歸付)하여 신하로 벼슬자리에 끼었는데 이것을 다행으로 여긴다고 하며, 폐하(陛下)와 곤의(袞衣)27626)의 안부(安否)를 받들어 물은 다음에 말하기를, ‘근년(近年)에 이 나라의 사자(使者)라고 부르는 자가 공선(貢船)을 타고 건너와서 장사를 한다.’ 하니, 이것은 모서(謀書)27627)입니다. 그것이 어느 곳에서 나왔는가는 모르지만 전해 듣고서 놀랍고 두려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인해서 삼가 사승(使僧)을 보내어 빙문(聘問)하는 예(禮)를 이루도록 하였는데, 그 생각은 특별히 부합(符合)하게 하는 계약(契約)을 새로 내려 주셔서 뒷날 사선(使船)의 성신(誠信)을 삼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로 우리 나라에 오는 글 중에도 역시 이 인(印)이 아니면 감히 신임하지 않겠습니다. 예물로 바치는</p>	<p>○戊戌/琉球國中山府主使僧天章等來聘。其書曰：“琉球國中山府主奉呈朝鮮國禮曹大人足下。夫惟三韓者，爲萬邦首，榮兆民群，德澤遍四夷，仁風齊二儀，寔大矣哉！萬福珍重，抑先年以降，不通音問，於同盟義，全非踈略，渡海遼遠，不遑羽鱗也。爰對州人平皮古三甫羅，自去歲此島下向矣，聞說彼一族，世歸貴國，臣列官位，依斯爲幸。奉問陛下袞衣安否之次語曰：‘近年號此國使者，渡貢船爲商賣，是則謀書也。不知其出處，傳聞驚畏不少，仍而謹遣使僧，以致聘禮，其謂則新賜別符合契約，以爲他日使船之誠信者也。後來吾國之書中，亦是此印，莫敢信焉。獻禮方物，其數具在別紙，伏希頒賜。孔方一萬緡及絛紬、木綿，多幸仰蒙，大國恩露，潤小島窮竭而已。報謝期後音，恐惶頓首。別幅。木香苗小桶一箇、椰子苗二本、藤苗</p>

	<p>방물(方物)의 수는 별지(別紙)에 갖추어 있습니다.</p> <p>삼가 바라건대 공방(孔方)27628) 1만 민(緡)과 면주(縣紬)·목면(木綿)을 내려 주소서. 대국(大國)의 우로(雨露) 같은 은혜를 우리러 입어 소도(小島)의 물자가 떨어진 어려운 상황을 운택하게 하시면 다행스러울 뿐입니다. 은혜에 보답하고 사례하는 것은 뒷날 음문(音問)에 기약하게 되니, 황공하여 머리를 조아립니다.”</p> <p>하였는데, 별폭(別幅)에는 목향묘 소통(木香苗小桶) 1개, 야자묘(椰子苗) 2본(本), 등묘 소통(藤苗小桶) 1개, 호초 사당 부 소호(胡椒砂糖付小壺) 1개, 호초(胡椒) 30근(斤), 백단(白檀) 50근, 정자(丁子) 20근, 등석 대소(藤席大小) 2매(枚), 광엽석(桃葉席) 2매, 과자분(菓子盆) 10매, 남만 유리(南蠻琉璃) 1개, 청색 백쌍(青色白雙) 1지(地), 화문 일쌍(華紋一雙) 염부 일쌍(染付一雙) 합(合) 7개, 배옥 유리(盃玉琉璃) 1개, 염부 일쌍(染付一雙) 백색중 유문 일쌍(白色中有紋一雙) 합(合) 5개, 만년 보수(萬年寶數) 1백 15과(顆), 향(香) 1본(本) 14근(斤), 장 8척(長八尺) 청자 수기(靑瓷嗽器) 1개, 부수 다완(付嗽茶椀) 1개, 이상 16종(種)이었다.</p>	<p>小桶一箇、胡椒砂糖付小壺一箇、胡椒三十斤、白檀五十斤、丁子二十斤、藤席大小二枚、桃葉席二枚、菓子盆十枚、南蠻琉璃一箇、青色白雙一地、華紋一雙、染付一雙合七箇、盃玉琉璃一箇、染付一雙、白色中有紋一雙合五箇、萬年寶數百十五顆、香一本十四斤長八尺、靑瓷嗽器一箇、付嗽茶椀一箇、以上十六種。”</p>
<p>성종 290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5월 12일 (기해) 5번째기사</p>	<p>임금이 가뭃의 재해(災害)를 근심하여 낫수라의 반미(飯米)를 줄이도록 명하였다.</p>	<p>○上憂旱災，命減晝膳飯米。</p>
<p>성종 290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5월 13일 (경자) 2번째기사</p>	<p>도승지(都承旨) 김응기(金應箕) 등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가뭃 때문에 정전(正殿)을 피하고 반찬 가짓 수를 줄이셨는데, 이제 또 반미(飯米)를 줄이시니, 신자(臣子)의 마음에 매우 편치 못합니다. 또 들으니 하삼도(下三道)27650) 에는 비가 내렸다고 하니, 경기(京畿)가 비록 가물기는 하나 지금이라도 비가 내린다면 흉황(凶荒)27651) 에 이르지 않는 것이니 줄이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p>	<p>○都承旨金應箕等啓曰：“殿下以旱避殿、減膳，今又減飯米，於臣子之心甚未安。臣等又聞下三道有雨，京畿雖旱，今若雨，則可不至凶荒，不宜減也。”傳曰：“卿等之言亦是矣。然今當減省之時，當自上行耳。”</p>

	<p>“경(卿)들의 말도 옳다. 그러나 지금 감생(減省)27652) 하는 때를 당하여 마땅히 위에서부터 행할 뿐이다.” 하였다.</p>	
<p>성종 290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5월 13일 (경자) 3번째기사</p>	<p>설성 부수(雪城副守) 철정(鐵丁)이 영도(櫻桃)를 바치자, 전교하기를, “성의(誠意)가 가상할 만하니, 그에게 활 1장(張)을 내려 주도록 하라.” 하였다.</p>	<p>○雪城副守鐵丁獻櫻桃。傳曰：“誠意可嘉，其賜弓一張。”</p>
<p>성종 290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5월 13일 (경자) 4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서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이세좌(李世佐)가 아된 바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금년에는 양맥(兩麥)27653) 이 잘 여물지 못하여 종자를 준비하기가 어렵게 되었으니, 청컨대 민간(民間)에서 서로 바꾸도록 하되 그 값을 넉넉하게 지급하고, 관리(官吏)들에게 분명히 신칙하여 소요(騷擾)하지 않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승정원(承政院)에 하문하였다.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양맥을 서로 바꾸게 되면 틀림없이 백성들에게 폐단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양맥은 반드시 다 말라 없어지지 않으니, 백성들도 각각 살아갈 계책도 있을 것인데, 어찌 오로지 관에서 지급하는 것만 바라면서 스스로 저축하며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국가에서 비록 보리 종자를 지급한다 하더라도 민간에 두루 미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소요스럽기만 하고 보탬이 없습니다. 청컨대 서로 바꾸지 못하도록 하고 백성의 양식을 넉넉하게 주어 양맥의 환상(還上)을 예전대로 바치도록 독려하게 하소서.” 하니, 이것을 호조에 하문하도록 명하였다. 호조에서 아뢰기를, “관민(官民)이 서로 바꾸는 것은 과연 그 폐단이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백성의 식량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틀림없이 넉넉하지 못할 것인데, 만약 조그마한 폐단을 따져서 백성들로 하여금 새로 생산된 보리를 식량으로 하게 하여 다 없어지게 된다면,明年的 종자는 반드시 떨어질 것입니다.” 하자, 전교하기를,</p>	<p>○戶曹據京畿觀察使李世佐所啓啓：“今年兩麥不實，備種爲難，請於民間質換而優給其價，明勅官吏，不令騷擾。”上問承政院，承政院啓曰：“兩麥質換，必有民弊，且兩麥未必盡焦枯，民亦各有生生之計，豈專仰官給而不自儲備乎？國家雖給麥種，其能周於民間乎？徒騷擾而無益，請勿令質換，優給民食，而兩麥還上依舊督納。”命以是問于戶曹，戶曹啓曰：“官民質換，果有其弊。但雖給民食，必不贍足，若計小弊，而令民食新麥殆盡，則明年之種必絕矣。”傳曰：“其以此兩意，議于大臣。”尹弼商、鄭文燭議：“承政院所啓是矣。”李克培、韓致亨、尹壕議：“依戶曹所啓施行。”柳輕議：“依戶曹所啓施行。但抑勒質換，豈無民弊？臣意，聽民情願，優給京倉陳米，則民樂爲之矣。”尹孝孫議：“年</p>

	<p>“이 두 가지 의견을 대신(大臣)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윤필상(尹弼商)·정문형(鄭文炯)은 의논하기를,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이극배(李克培)·한치형(韓致亨)·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호조(戶曹)에서 아뢰는 바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고, 유지(柳輜)는 의논하기를, “호조에서 아뢰는 바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다만 억눌러서 바꾸게 하면 어찌 백성들의 폐단이 없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백성들의 정원(情願)을 들어 경창(京倉)의 묵은 쌀을 넉넉하게 지급한다면 백성들이 즐거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고, 윤희손(尹孝孫)은 의논하기를, “연곡(年穀)이 잘 여물지 않으면 민간에서明年的 종자를 바꾸는 것이 흉년에 백성을 구제하는 정치의 우선해야 할 바이니, 폐할 수 없습니다. 어찌 조그마한 폐단을 따지겠습니까? 호조에서 아뢰는 바에 의거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관찰사(觀察使)에게 유시(諭示)하여 백성들의 정원(情願)을 물어보고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p>	<p>穀不登，則與民質換，明年之種，荒政所先，不可廢也，豈計小弊乎？依戶曹所啓。” 傳曰：“諭觀察使，訪民情願以啓。”</p>
<p>성종 290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弘治) 7년) 5월 14일 (신축) 2번째기사</p>	<p>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이세좌(李世佐)가 아뢰기를, “기내(畿內)의 군현(郡縣)에 가뭄이 들어 벼가 거의 말라버렸으니, 이미 심한 곳은, 청컨대 다른 곡식을 다시 심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가뭄의 재해가 이렇게 극심한 데 이르니, 내가 매우 염려된다. 지금 다시 갈고 씨를 뿌리면 수확하는 데 미칠 수 있겠는가? 농사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물어 아뢰도록 하라.”</p>	<p>○京畿觀察使李世佐啓：“畿內郡縣旱暵，禾穀幾至焦枯，其已甚處，請令改種他穀。” 傳曰：“旱災至於此極，予甚軫慮，今更耕種可及於收穫歟？問于老農以啓。”</p>

<p>성종 290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5월 15일 (임인) 1번째기사</p>	<p>하였다.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송길(宋軼) 등이 차자(筓子)를 올리기를, “금년 2월부터 지금까지 비가 내리지 않아 모맥(麩麥)의 이삭이 껴지 못하고 벼모가 모두 말라 기근(饑饉)이 거듭 이르니, 이것은 바로 전하께서 재변(災 變)을 만나 두려워하며 쓰기를 존절히 하고 백성을 구휼하며 하늘의 견책(譴 責)에 보답하고 황정(荒政)27658) 을 가다듬을 때입니다. 제천정(濟川亭)은 특별히 한 번씩 유관(游觀)하는 곳이니, 중수(重修)하는 것 은 진실로 오늘날의 급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즈음 이미 낭관(郎官)으로 하여금 그것을 감시하게 하고, 또 당상관(堂上官)을 명하여 감독하게 하니, 재물을 허비하는 것이 많지 않은 것이 아닌데, 또 쌀 6백 석(碩)을 내려 주었 으며 항상 반승(飯僧)이 1백여 명이나 되니, 낭비가 더 심할 수 없습니다. 이 것으로 굶주린 백성을 구휼한다면 수천명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하 것은 생각하지 않으시고 쓸데없는 곳에다 허비하니, 신 등은 그것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성상(聖上)께서 가뭄의 재해를 깊이 염려하셔서 안팎의 쓸데없는 비용을 줄이 시어 비록 말[斗]과 되[升]에 이르는 <적은 양이라도> 모두 줄였는데, 유독 제천정의 역사만은 쌀을 지고 가는 승도(僧徒)가 잇달며 끊기지 않는 것은 무 엇 때문입니까? 그것을 완급(緩急)과 경중(輕重)의 차례를 살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요즈음 여러 곳의 영선(營繕)을 모두 정과(停罷)하도록 명하셨는데, 신 등이 삼가 전지(傳旨)를 보고 처음에는 기쁘게 여겼으나, 지 금 살펴보니, 정과한 것은 다만 경수(警守)·공해(公廩)의 소소(小小)한 곳일 뿐이고, 여러 군(君)과 부마(駙馬)의 집과 군자창(軍資倉)·독서당(讀書堂) 및 문외(門外)27659) 의 돌다듬는 역사는 모두 정과하지 않아 거기서 역사하는 수군(水軍)과 육군(陸軍)이 1천여 명에 밀돌지 않으니, 지난해 곡식이 다 떨 어져가는 때를 당하여 가산을 탕진하면서 양식을 싸가지고 몸이 야위도록 힘</p>	<p>○壬寅/弘文館副提學宋軼等上筓子曰: 今年自二月不雨, 以迄于今, 麩麥不 穗, 稻秧盡焦, 饑饉荐臻, 此正殿下遇 災而懼, 節用恤民, 答天譴、修荒政之 時也。 濟川亭特一遊觀之所, 重修固 非今日之急務。 今者既令郎官以監之, 又命堂上官而薰之, 糜費財貨不爲不 多, 而又賜米六百碩, 常飯僧百餘人, 浮費莫甚, 以此賑飢民, 可活數千人 矣。 不此之念, 費之無用之地, 臣等 不知其可也。 聖上深慮旱災, 減內外 冗費, 雖至斗升, 亦皆減省, 獨於濟川 亭之役, 負米僧徒, 絡繹不絕, 何哉? 其可謂審緩急輕重之序乎? 且近者, 諸 處營繕, 悉令停罷, 臣等伏觀傳旨, 初 以爲喜, 以今觀之, 所停者只警守公廩 小小處而已, 如諸君駙馬家、軍資倉、 讀書堂及門外伐石之役, 俱未停罷, 其 所役水陸軍, 不下千餘人, 當舊穀既沒 之時, 破產贏糧, 盡瘁供役, 加以期限 甚峻, 少有稽緩, 鞭撻罰懲隨之, 呼耶 之聲, 怨咨之狀, 耳目所不忍聞見, 在 平時尚且可哀, 況當旱暵之時乎? 匹夫 含冤, 尙且召災, 況此千百人乎? 若此</p>
--	--	---

	<p>을 다하여 역사에 이바지하며, 거기다 기한(期限)이 매우 엄격하여 조금만 늦어지면 채찍과 징벌(徵罰)이 따르므로, 호야(呼耶)하는 소리와 원망하고 한탄하는 모습은 귀와 눈으로 차마 듣거나 보지를 못합니다.</p> <p>평상시에 있어서도 오히려 애처로울 만한데, 더구나 대단한 가뭄을 당한 때이겠습니까? 필부(匹夫)가 원한을 품어도 오히려 재앙을 불러 들이는데, 더구나 이 천백(千百) 명이겠습니까? 이와 같다면 재변을 만나 두려워하며 쓰기를 존절히 하고 백성을 구휼하며 하늘의 견책에 보답하고 황정을 가다듬는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p> <p>하니, 전교하기를, “제천정(濟川亭)의 역사는 기한에 미치게 해야 할 일이 아니니, 정지시켜도 가하다. 다만 부마(駙馬)와 여러 군(君)의 집은 짓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역사를 정지시키면 재목이 아마도 썩을 것이다. 그리고 비록 역사하는 군사가 양식을 싸가지고 오는 것을 말하지만, 집에 있으면 먹지 않겠는가? 일이 어쩔 수 없는 데서 나온 것이다.”</p> <p>하였다.</p>	<p>則遇災而懼，節用恤民，答天譴修荒政之意安在？</p> <p>傳曰：“濟川亭之役，非及期之事，停之可也。但駙馬諸君家，不得不造，今若停役，則材木恐將腐朽，且雖以役軍贏糧爲言，然在家豈不食乎？事出於不得已也。”</p>
<p>성종 290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弘治) 7년) 5월 15일 (임인) 3번째기사</p>	<p>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송질(宋軼) 등이 차자(筭子)를 올리기를, “신 등이 아뢴 바 제천정의 역사를 정지하는 것은 이미 윤희를 받았으나, 여러 군(君)·부마(駙馬)의 집과 군자창(軍資倉)·독서당(讀書堂) 및 문외(門外)에서 돌을 다듬는 역사는 모두 정파(停罷)하지 않으시니, 신 등은 전하께서 생 각하시는 바를 자세히 모르겠습니다.</p> <p>옛날 성탕(成湯)이 가뭄을 만나 머리털을 자르고 손톱을 깎고 자신이 희생[犧]이 되어 상림(桑林)에서 비내리기를 기도하며 말하기를, ‘백성들이 직업을 잃었습니까? 궁실(宮室)이 높고 화려합니까?’라고 하였으니, 대개 백성들의 힘을 수고롭게 하고 궁실을 높고 화려하게 하는 것은 실로 화기(和氣)를 손상시키며 재앙을 불러 들이는 근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하께서는 하늘의</p>	<p>○弘文館副提學宋軼等上筭子曰： 臣等所啓濟川亭停役，既蒙俞允，諸君駙馬家、軍資倉、讀書堂及門外伐石之役，俱不停罷，臣等未審，殿下所謂也。昔成湯遇旱，剪髮斷爪，身自爲犧，禱雨桑林曰：“民失職歟？宮室崇歟？”蓋勞民力崇宮室，實傷和召災之根本，今殿下欲謹天戒而不去召災之根，何哉？殿下教之曰：“所役皆番上軍士，無害於供役，材木至腐朽，不宜</p>

경계를 조심스럽게 여기시면서 재앙을 불러 들이는 근본을 제거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전하께서 전교하시기를, ‘역사하는 사람은 모두 번상(番上)한 군사(軍士)이니 역사를 치르는 데 피해가 없으며, 재목은 썩는 데 이르므로 정파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신 등은 그옥이 생각하건대, 백성들이 먹는 데 고달프면 모든 일이 피폐하고 해이해지니, 이것은 옛날의 제왕(帝王)이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위로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지금 번상하여 역사에 나아가는 백성들을 비록 전리(田里)로 되돌려 보내어 미리 황정(荒政)에 대비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찌 토목(土木)의 역사에 몰아다 그들로 하여금 시름하며 탄식하고 원망하며 한탄하는 기운이 위로 하늘에 들끓게 하여 견책(譴責)을 거듭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선군(船軍)은 식량을 싸가지고 왕래(往來)하니, 그들이 원한을 품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비하여 백배(百倍)나 됩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어찌 아무렇지 않게 보시고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십니까? 지금 당장 여러 곳의 영선(營繕)은 가뭄이 대단한 때에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으니, 우선 두어 달 늦추어 가을에 가서 역사를 마쳐도 오히려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두어 달 사이에 재목이 흑시라도 썩는 것이 없음을 보장하는데,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백성 아끼기를 재목만도 못하게 여기십니까?

신 등의 망령된 생각으로는 재물도 손상되지 않게 백성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긴요하지 않은 일은 일체 줄이고 파하시어 두려워하고 수양하며 반성하기를 더욱 부지런히 하고 게으르게 하지 않는다면 거의 하늘의 견책에 조금은 응답하리라고 여깁니다.”

하니, 전교하시기를,
 “과연 그대들이 아뢴 바와 같다. 그러나 내가 어찌 참작하지 않고서 그렇게 하겠는가? 어쩔 수 없는 데서 나온 것이다. 그대들도 자녀(子女)가 있는데, 누가 집을 지어서 거기에 살게 하고 싶지 않겠는가?”

停之。” 臣等竊謂，民勤於食，則百事廢弛，此古之帝王敬天勤民之道也。今番上赴役之民，縱不能永還田里，預爲荒政之備，豈可驅之土木之役，使愁嘆怨咨之氣上騰于天，以重譴責乎？況船軍贏糧往來，其抱冤百倍於他，殿下何忍愒視而不之動念耶？今此諸處營繕，不必急急於旱暵之時，姑緩數月，徒秋畢役猶未晚也。且數月之間，材木保無或朽，則殿下何愛民不如材木乎？臣等妄意，不傷財、不害民，凡不繁之務，一皆蠲罷，恐懼修省，益勤不怠，則庶幾少答天譴矣。

傳曰：“果如爾等所啓，然予豈不斟酌而爲之，出於不得已也，爾等亦有子女，孰不欲造家而居之乎？”

<p>성종 290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5월 15일 (임인) 4번째기사</p>	<p>하였다. 경기(京畿)·황해도(黃海道)·강원도(江原道)·평안도(平安道) 관찰사(觀察使)에게 하서(下書)하기를, “금년에는 양맥(兩麥)이 여물지 않아 민간(民間)에서 종자를 준비하기 어려울 터인데, 앞으로 백성들에게 바꾸어 두었다가 그 때 가서 나누어 주겠는가? 백 성으로 하여금 각각 스스로 준비하도록 하겠는가? 경(卿)은 그것을 민간에 찾 아가 물어보고 빨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p>	<p>○下書京畿、黃海、江原、平安道觀察使曰：“今年兩麥不實，民間備種爲難，將質換於民，臨時分授歟？令民各自儲備歟？卿其訪問民間，急速以啓。”</p>
<p>성종 290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5월 16일 (계묘) 2번째기사</p>	<p>사옹원 제조(司饗院提調) 유자광(柳子光)이 와서 아뢰기를, “지난 날에 주반미(晝飯米)를 줄이도록 명하셨는데, 이것은 진실로 전하께서 경비를 줄이려는 뜻입니다. 비록 한 되[升]의 쌀을 줄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가의 비용에 무엇이 감소(減損)되겠습니까? 지금 취찬(炊爨)27660) 하는 일을 관찰하건대, 한 되의 쌀로 큰 솥에다 취사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청컨대 예전대로 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비록 하루에 한 되씩 저축한다 하더라도 남아도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취사하기가 정말 어렵다면 줄이지 말도록 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p>	<p>○司饗院提調柳子光來啓曰：“前日命減晝飯米，此誠殿下少費之意，雖不減一升之米，何損於國用？今觀炊爨之事，以一升米炊於大鼎甚難，請仍舊。”傳曰：“雖日儲一升，亦可以有羨也。然炊之果難，則可勿減也。”</p>
<p>성종 290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5월 16일 (계묘) 4번째기사</p>	<p>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 조위(曹偉)가 치계(馳啓)하기를, “군자창(軍資倉)의 곡식은 완급(緩急)에 대비하는 것인데, 해미현 창(海美縣倉) 의 곡식은 1만 석(碩)이 차지 않습니다. 그러니 도내(道內) 여섯 곳의 포 (浦)에다 연례(年例)로 소금을 굵게 하고 해미현으로 하여금 <그 소금으로> 곡식을 바꾸게 하고 2, 3만 석을 비축하게 하여 군수(軍需)를 준비하도록 청 합니다.” 하였는데, 호조(戶曹)에서 이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해미현은 병영(兵營)이 있는 곳이니, 군수를 비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p>	<p>○忠淸道觀察使曹偉馳啓：“軍資倉穀，所以備緩急，而海美縣倉穀未滿萬碩，道內六浦，年例煮鹽，請令海美質穀儲峙二、三萬碩，以備軍需。”戶曹據此啓：“海美縣兵營所在，軍需不可不畜，隣近諸浦煮鹽，限十年質穀，以補軍需。”從之。</p>

	<p>근(隣近) 여러 포(浦)의 소금 굽는 것을 10년 동안 기한하여 곡식과 바꾸도록 해서 군수에 보충하게 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성종 290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弘治) 7년) 5월 17일 (갑진) 1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지평(持平) 민이(閔頤)가 아뢰기를,</p> <p>“신 등이 요사이 가뭄의 재해 때문에 영선(營繕)을 정지하도록 청하였으나, 전하께서는 오히려 들어주지 않으셨는데, 토목(土木)의 역사로 화기(和氣)를 손상시키고 재해를 불러 들인 것은 많습니다. 그러니 정전(正殿)을 피하고 반찬을 줄이는 데 이른 것도 한갓 형식이 될 뿐입니다.”</p> <p>하고, 시독관(侍讀官) 권유(權瑠)는 말하기를,</p> <p>“금년의 가뭄은 을사년(27663) 보다 더 심하니, 여러 군(君)의 가사 영선(家舍營繕)을 우선 정지시키고 가을이 되기를 기다려 완성시켜도 늦지 않습니다. 신 등이 전하께서 재해를 조심스럽게 여기는 뜻이 극진하지 않음이 없는 것을 보고서도 돌을 실은 수레를 보거나 또 호야(呼耶)하는 소리를 들으면 측은(惻然)함을 깨닫지 못하는데, 더구나 전하의 경우이겠습니까? 청컨대 빨리 정과(停罷)하도록 하소서.”</p> <p>하고, 헌납(獻納) 남세담(南世聃)은 아뢰기를,</p> <p>“신이 앞서 경연(經筵)에서 급하지 않은 일은 정지하도록 청하였었습니다. 지금 아뢴 바 말은 들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영선하는 일은 이미 반이 지났으나, 아마도 비를 맞게 되면 재목이 썩을 것이며, 또 백성에게 폐단이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정지시키지 않았다. 만약 그렇다면 모두 정과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p> <p>하였다. 민이(閔頤)가 아뢰기를,</p> <p>“근년(近年)에 오면서 북경(北京)에 가는 사람들이 호초(胡椒)를 많이 가지고</p>	<p>○甲辰/御經筵。 講訖， 持平閔頤啓曰：“臣等近以旱災請停營繕， 而殿下猶不聽， 土木之役， 傷和召災者多矣。 至於避殿、減膳， 徒爲虛文耳。” 侍讀官權瑠曰：“今年之荒， 甚於乙巳年， 諸君家舍營繕姑停之， 待秋成爲之未晚。 臣等見殿下謹災之意， 無有不極， 而及見載石之車， 又聞呼耶之聲， 則不覺惻然， 況殿下乎？ 請亟令停罷。” 獻納南世聃啓曰：“臣前於經筵， 請停不急之務， 今所啓之言， 不可不聽。” 上曰：“營繕事已過半， 恐經雨則材木朽敗， 又生民弊， 故不停之。 若然則當悉令停罷。” 頤啓曰：“近年以來， 赴京之人多齎胡椒以往， 胡椒非我國之物， 恐中國之人以爲我國所產， 而又恐中朝疑與倭奴交通也。 且一家之用不過四、五升， 臣恐國家賜與過多也。” 上顧問左右曰：“胡椒非但賜與， 亦令和賣矣， 此則在人而已， 非國家賜與之故也。 銀乃禁物， 而猶有持往者， 監察不能檢舉， 歸罪於國可乎？” 領事尹</p>

합니다. 호초는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아닌데, 중국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여길까 두려우며, 또 중국 조정에서 왜노(倭奴)들과 교통(交通)한다고 의심할 듯합니다. 그리고 또 한 집안에서 소용되는 것은 4, 5되[升]에 지나지 않으니, 신은 아마도 국가에서 내려 주는 것이 지나치게 많은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左右)에 고문(顧問)하기를,
 “호초는 내려 줄 뿐만 아니라 화매(和賣)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사람들이 하기에 달려 있을 뿐이며, 국가에서 내려 준 까닭만은 아니다. 은(銀)은 금지하는 물건인데도 오히려 가져가는 자가 있으니, 그것은 감찰(監察)이 잘 단속하고 검거하지 못해서인데, 허물을 국가에다 돌리는 것이 가하겠는가?”

하였다. 영사(領事) 윤필상(尹弼商)이 아뢰기를,
 “내려 주는 것은 은수(恩數)에 달려 있는 것이니, 다시 논(論)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감찰이 잘 검찰(檢察)하는 데 달려 있을 뿐입니다.”

하고, 민이는 말하기를,
 “호초는 사가(私家)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 국가에서 내려 주는 것이 많지 않을 것 같으면 어디로부터 얻겠습니까?”

하고, 윤필상은 말하기를,
 “북경(北京)에 가는 여러 사람이 요동(遼東)에 도착하거던 감찰이 잘 상고하고 조사한다면, 누가 모람된 것을 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하고, 특진관(特進官) 이철건(李鐵堅)이 아뢰기를,
 “북경에 갈 때에 흥리인(興利人)27664 이 반드시 정해진 기일보다 먼저 가서 몰래 압록강(鴨綠江)을 건너므로, 좇아 규찰(糾察)할 수 없으니, 모름지기 강을 건너기 전에 금하여 못하게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고, 윤필상이 또 아뢰기를,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이극균(李克均)이 중신(重臣)을 파견하여 변방

弼商啓曰：“賜與在於恩數，不可復論，但在監察能檢察耳。” 頤曰：“胡椒非私家所有，若國家賜與不多，則何從而得焉？” 弼商曰：“赴京諸人到遼東，監察能考檢之，則誰有冒濫者乎？” 特進官李鐵堅啓曰：“赴京時，興利人必先期而往，潛渡鴨江，無由糾察，須於越江前禁斷可矣。” 弼商又啓曰：“慶尙道觀察使李克均啓請遣重臣措置邊事，又云可爲寒心，無乃南方過於虛疎，故如此云爾耶？近有倭變視古爲多，今見克均之啓，實爲可慮。” 世聘曰：“國家雖擇遣萬戶，無有體國家之意，兵船長泊於陸，未嘗浮水，請遣人擲奸。” 上曰：“如此則恐駭聽聞，觀察使所啓未知何意也，今則權柱已往對馬島，又復遣重臣，則彼必生疑矣。” 弼商曰：“大臣則固不可遣也，然克均常任大事，未有此言，今乃如此者，無乃欲待上問而別有所措置耶？若問之則可知矣。” 頤啓曰：“今年無兩麥救荒之事，不可不備，臣自開城府來，無立苗之處，不可忍見。” 上曰：“救荒之事，已令備之矣。”

	<p>의 일을 조치하도록 계청(啓請)하고 또 한심(寒心)스러울 만하다고 하였는데, 남방(南方)이 허술하기가 지나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즈음 왜변(倭變)이 옛날에 비교하여 많은 편입니다. 지금 이극균의 아뢰기를 보니, 실로 염려할 만합니다.”</p> <p>하고, 남세담(南世聃)은 말하기를,</p> <p>“국가에서 비록 만호(萬戶)를 가려뽑아 보내지만, 국가의 의도를 체득함이 없이 병선(兵船)을 육지에다 오래도록 정박시키고 물에 띄우지 않으니, 청컨대 사람을 보내어 척간(擲奸)하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이와 같다면 듣기가 두렵고 놀랍다. 관찰사가 아뢰는 바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지금은 권주(權柱)가 이미 대마도(對馬島)로 갔는데, 또다시 중신(重臣)을 파견한다면 저들이 틀림없이 의심을 낼 것이다.”</p> <p>하였다. 윤필상이 말하기를,</p> <p>“대신(大臣)은 참으로 파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극균이 늘 큰 일을 맡았지만, 이런 말은 있지 않았습시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성상의 하문(下問)을 기다렸다가 따로 조치할 바를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것을 하문하신다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p> <p>하고, 민이(閔頤)는 아뢰기를,</p> <p>“금년에는 양맥(兩麥)이 없으니, 구황(救荒)하는 일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이 개성부(開城府)에서부터 왔는데, 싹[苗]이 선 곳이 없어 차마 볼 수 없었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구황하는 일은 이미 대비하도록 하였다.”</p> <p>하였다.</p>	
성종 290권, 25년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이세좌(李世佐)가 와서 아뢰기를,	○京畿觀察使李世佐來啓: “臣問於老

<p>(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5월 17일 (갑진) 3번째기사</p>	<p>“신이 경험이 많은 농부에게 물어 보니, 말하기를, ‘절후가 늦으면 6월 초(初)에도 오히려 곡식을 심을 수 있지만 절후가 이르면 5월 하순(下旬)에 심더라도 미처 익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속언[諺]에 이르기를, ‘밤송이[栗殼]를 겨드랑이에 껴도 가시가 아프지 않으면 곡식을 심을 만하다.’고 하였습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곡식 종자를 저축하고 준비하는 일을 호조(戶曹)와 함께 의논하여 하도록 하라. 지금 비록 익는 데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뒷날의 경험을 삼도록 하는 것이 가하다.”</p> <p>하였다.</p>	<p>農，則云節晚則六月之初猶可種穀，節早則雖種於五月下旬未及熟也。又諺謂以栗殼挾於腋，而芒刺不痛，則可種穀。”傳曰：“穀種備儲之事，與戶曹同議爲之。今雖不及熟，以爲後日之驗可也。”</p>
<p>성종 290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5월 17일 (갑진) 7번째기사</p>	<p>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이세좌(李世佐)가 아뢰기를, “이제 듣건대 영선(營繕)을 정파하고 수군(水軍) 정병(正兵)을 놓아 보낸다 하시는데, 수군은 본래 양령(兩領)입니다. 지난해에 실농(失農)을 하였고 금년에 또 보리 싹이 없으니, 추수 때가 되면 국가에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수군을 역사시켜야 할 것입니다. 청컨대 3령(領)으로 나누어서 그 힘을 쉬게 하여 역사시키도록 하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 “해조(該曹)로 하여금 편리하고 편리하지 않은 것을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p> <p>하였다.</p>	<p>○京畿觀察使李世佐啓曰：“今聞停罷營繕而放水軍、正兵，水軍本兩領，前年失農而今年又無麥苗，秋成則國家不得已復役水軍，請分三領，以休其力而役之。”傳曰：“令該曹議便否以啓。”</p>
<p>성종 290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5월 19일 (병오) 1번째기사</p>	<p>예조(禮曹)에서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이극균(李克均)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김해부(金海府)의 향리(鄉吏) 허후동(許厚同)의 처(妻) 배성이(裴性伊)는 호장(戶長) 배수익(裴守義)의 딸인데, 나이 스물 한 살에 허씨에게 시집을 갔으며 두 달이 지나 허후동이 물에 빠져 죽자 3년 동안 음혈(泣血)27677) 하면서 옷음을 보이지 않고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누가 시아비</p>	<p>○丙午/禮曹據慶尙道觀察使李克均啓本啓：“金海府鄉吏許厚同妻性伊，戶長裴守義女也。年二十一歸許氏，閱兩月厚同溺死，泣血三年，未嘗見齒曰：‘一死不難，誰事舅姑?’以夫號牌作主以依神，朔望必祭，身自織布，每</p>

	<p>와 시어미를 섬기겠는가?’ 하면서 지아버의 호패(號牌)27678) 로써 신주(神主)를 만들어 신(神)이 의지하게 하고 초하루와 보름에는 틀림없이 제사를 지내며, 몸소 베를 짜서 기일(忌日)을 당할 때마다 옷을 지어 놓고 제사를 지냈으며 제사를 마치면 그것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지아버가 죽은 20여 년 동안 고기를 먹지 않으며 훈채(葷菜)를 먹지 않으면서 그 지조가 조금도 해이되지 않았습니니다.</p> <p>부모(父母)가 그가 일찍이 과부(寡婦)가 된 것을 민망하게 여겨 그의 뜻을 빼앗으려 하자, 딸이 말하기를, ‘제가 늘 칼을 차고 끈을 매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만일 저의 뜻을 뺏으려 하시면 곧바로 이것을 사용하여 자진(自盡)하려는 것입니다.’ 하므로, 부모가 두려워하여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시아버와 시어미를 잘 섬기며 정성과 공경을 다하여 예(禮)로써 스스로 처신하면서 일찍이 울타리 밖을 나가지 않아 조행(操行)이 특이(特異)합니다. 청컨대 《대전(大典)》에 의거하여 정문 복호(旌門復戶)27679) 하여 국가에서 절의(節義)를 숭상하고 장려하는 도리를 드러내게 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當忌日，縫衣以祭，祭訖焚之，夫亡二十餘年，不食肉、不茹葷，其操不少弛，父母問其早寡，欲奪其志，女曰：‘我常佩刀帶繩非他也，如欲奪我志，則用此自盡。’父母懼而止，孝事舅姑，竭盡誠敬，以禮自處，未嘗足涉藩籬，操行特異。請依《大典》，旌門復戶，以彰國家崇獎節義之道。”從之。</p>
<p>성종 290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弘治) 7년) 5월 20일 (정미) 1번째기사</p>	<p>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이극균(李克均)이 은일(隱逸)의 선비를 천거하여 아뢰기를,</p> <p>“창원(昌原) 사람 참군(參軍) 박시명(朴始明)은 부모(父母)를 잘 봉양하며 뜻을 받들어 어김이 없고 혼정신성(昏定晨省)27687) 하기를 한결같이 예(禮)대로 하며, 간혹 병이 들면 옷의 띠를 풀지 않고 밤낮으로 곁을 떠나지 않고, 직접 찬구(饌具)를 잡되 오래 되어도 게을리하지 않으며, 병이 처음과 같이 회복되면 비록 집안이 가난하더라도 칭대(稱貸)27688) 하여 맛있는 음식을 받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미는 나이 93세에 세상을 마쳤고 아버지는 96세에 세상을 마쳤는데, 모두 슬퍼하기를 예에 지나치게 하였으며, 복(服)을 마친 뒤에도 조식전(朝夕奠) 드리기를 폐(廢)하지 아니하고 아침 저녁으로 사당(祠</p>	<p>○丁未/慶尙道觀察使李克均舉隱逸之士以啓曰：“昌原人參軍朴始明，孝養父母，承順無違，昏定晨省，一如其禮，或有疾病，衣不解帶，日夜不離側，躬執饌具，久而不懈，疾已復初，雖家貧，稱貸而以奉滋味，母年九十三，父年九十六而終，皆哀毀過禮。服闋之後，亦不廢朝夕之奠，晨昏省謁如平生。善山人生員鄭鐵堅，正直有操，沈滯鄉曲，窮養自脩，年踰六十，氣力尙健，</p>

	<p>堂)에 참배하기를 지난날같이 하였습니다.</p> <p>그리고 선산(善山) 사람 생원(生員) 정철건(鄭鐵堅)은 정직하고 지조가 있으며, 시골 구석에 침체(沈滯)되었지만, 학문을 궁구하고 덕을 기르며 스스로 수양하여 나이가 60이 넘었어도 기력(氣力)이 오히려 건장하며, 그 재능과 행실이 임용(任用)하여도 감당할 만합니다.</p> <p>그리고 현풍(玄風) 사람 전(前) 개천 군수(价川郡守) 곽순종(郭順宗)은 본래 무인(武人)인데 시골에 살면서 구차스럽지 않고 뜻을 돈독하게 하여 아버이를 봉양하며 늙은 아버리를 위하여 벼슬하지 않았습니다.</p> <p>그리고 생원 김굉필(金宏弼)은 성리학(性理學)27689)에만 전일(專一)하게 마음을 집중하며 조행[操履]이 방정하여 굽혀서 기용되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p> <p>하니, 이조(吏曹)에 내리도록 명하였다.</p>	<p>其才行可堪任用。 玄風人前价川郡守郭順宗，本武人，居鄉不苟，篤意養親，爲老父不仕。 生員金宏弼，專精理學，操履居正，不曲爲求舉。” 命下吏曹。</p>
<p>성종 290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弘治) 7년) 5월 21일 (무신) 2번째기사</p>	<p>안산군(安山郡) 사람 어모 장군(禦侮將軍) 김응문(金應門)이 글을 올려 폐단을 진술하자, 전교하기를,</p> <p>“김응문은 무인(武人)인데도 국가의 일을 잘 말하였으니, 역시 가상할 만하다.”</p> <p>하고, 김응문을 명소(命召)하여 가문을 걱정하는 오언 율시(五言律詩)를 지어서 바치도록 하고, 호초(胡椒) 1말[斗], 활 1장(張)을 내려 주도록 명하면서 전교하기를,</p> <p>“지금 지은 것을 보니, 비록 모두 훌륭하지는 않았지만, 무사(武士)로서 이만한 자는 얻기가 쉽지 않다. 내가 습독관(習讀官)으로 차임(差任)하여 녹봉(祿俸)을 주면서 무사를 교회(教誨)시키고자 하는데 어떻겠는가?”</p> <p>하자, 도승지(都承旨) 김응기(金應箕) 등이 아뢰기를,</p> <p>“김응문은 나이가 지금 69세로 기거(起居)가 불편하니, 벼슬하기는 어렵습니다.”</p>	<p>○安山郡人禦侮將軍金應門上書陳弊。 傳曰：“應門武人而能言國家之事，亦可嘉也。” 命召應門令製憂旱五言律詩以進。 命賜胡椒一斗、弓一張。 傳曰：“今觀所製，雖不盡善，武士如此者不易得也。 予欲差習讀官，給祿俸教誨武士何如？” 都承旨金應箕等啓曰：“應門年今六十九，起居不便，仕官爲難。” 傳曰：“果如此則不可仕也。”</p>

	<p>하니, 전교하기를, “정말 이와 같다면 벼슬할 수 없다.” 하였다.</p>	
<p>성종 290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5월 24일 (신해) 4번째기사</p>	<p>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요즈음에 정전(正殿)을 피하시고 반찬을 줄이셨는데, 이제 비가 많이 내렸으니, 신 등의 즐거움 다함이 없습니다. 청컨대 평상시의 반찬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정전에 나아가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요즈음의 가뭄은 나의 부덕(不德)으로 이루어져 잘못이 없는 백성들에게 미쳤는데, 어찌 한 차례 비가 내렸다고 하여 정전에 나아갈 수 있겠는가?” 하였다.</p>	<p>○議政府啓: “近日避殿、減膳, 今大雨, 臣等歡喜無已, 請復常膳、御正殿。” 傳曰: “近日之旱, 以予不德之致, 延及於無辜之民, 豈可以一雨, 復御正殿乎?”</p>
<p>성종 290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5월 24일 (신해) 6번째기사</p>	<p>전라도 병마 절도사(全羅道兵馬節度使) 김서형(金瑞衡)에게 유시(諭示)하기를, “국가에서 연해(沿海)의 요해처(要害處)에다 수영(水營)을 설치하며 여러 포(浦)에다 병선(兵船)과 수군(水軍)을 배치하고 연대(煙臺)27696) 를 배열하여 후망(候望)27697) 하면서 변고를 보고하게 하였으니, 그 대비하고 방어하는 방법이 자세하게 다하지 않음이 없는데, 적왜(賊倭)가 이와 같이 일어나 다니니, 이것은 바로 변장(邊將)이 평상시에 오로지 마음을 다하여 조치하지 않은 까닭이다. 경(卿)이 지금 한 번 줌도독을 만나고는 공사(公私)의 천구(賤口)를 모아 변고에 대비하도록 주청하는 데 이르렀으니, 한갓 겁을 낼 뿐만 아니라 분잡하고 소요스러울 듯하여 결단코 할 수 없다. 그리고 군사를 매복시켜 변고에 대비하는 것은 변장이 그때그때의 형편에 따라 적당히 처리하는 데 달려 있을 뿐이다. 다만 고초도(孤草島) 등지는 고기 낚는 왜선(倭船)이 문인(文引)을 발급받아 내왕(來往)을 하는데, 간혹 풍랑의 변(變)을 인해서 표류하여 내지(內地)에 들어오는 자가 많다. 만약 식견이 없는 우리가 경솔하고 망령되게 행동하며 서로 공(功)은 구하려고 다투는 변방의 혼단(釁端)을 틀림없이 일으킬 것이니, 이것이 작은 사고가 아니다. 변경[邊圉]의 일은 멀리서 헤아</p>	<p>○諭全羅道兵馬節度使金瑞衡曰: “國家於沿海要害之處設水營, 諸浦兵船水軍列烟臺, 候望報變, 其備禦之方, 靡不詳盡, 而賊倭如此興行, 是乃邊將常時專不盡心措直故也。 卿今一遇草竊, 至請括公私賤口待變, 非徒怯懦, 似乎紛擾, 斷不可爲也。 伏兵待變, 在邊將臨機應變如何耳。 但孤草島等處鈞魚倭船, 受文引來往, 或因風變漂入內地者多。 若無識之徒, 輕舉妄動, 爭相邀功, 則邊釁必起, 此非細故, 邊圉之事, 難以遙度, 卿其善爲措置, 毋或踈虞。”</p>

	리기 어려우니, 경(卿)이 잘 조치하여 혹시라도 허술함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 290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5월 25일 (임자) 3번째기사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내가 양대비(兩大妃)에게 복선(復膳)하도록 청하였더니, 나더러 먼저 복선하 라고 하셨다. 그러니 지금부터 양전(兩殿) 및 대전(大殿)·중궁(中宮)에도 모두 복선하도록 하라.” 하였다.	○傳于承政院曰: “予請兩大妃復膳, 而令予先復, 自今兩殿及大殿、中宮皆 復膳。”
성종 290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5월 26일 (계축) 1번째기사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정언(正言) 김사지(金四知)가 아 뢰기를, “정승조(鄭崇祖)의 죄는 사건이 장오(贓汚)에 관계되었으니, 이는 바로 도신 (盜臣)인데도 지나치게 성상의 은혜를 입어 부처(付處)하는 데 그쳤다가, 얼마 되지 않아 그를 용서하게 하셨습니다. 더구나 사문(赦文)27702) 에 장오는 본래의 예(例)에 들어 있지 않은데, 지금 만약 석방하여 보낸다면 어디서 징 계가 되겠습니까?” 하고, 집의(執義) 민사건(閔師騫)은 말하기를, “정승조가 범(犯)한 것은 사람이 차마 하지 못할 바이니, 석방하여 보내는 것 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左右)에 하문(下問)하였다. 영사(領事) 윤호(尹壕)가 말하기 를, “대간(臺諫)의 말이 옳습니다.” 하고, 지사(知事) 어세겸(魚世謙)은 말하기를, “사건이 탐오(貪汚)를 범하면 사대부(士大夫)의 명예와 질개에 관계되는 것이 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태종조(太宗朝)에 김점(金漸)이 서경 감사(西 京監司)27703) 가 되어 장오(贓汚)를 범하였다가 끝까지 금고(禁錮)시키고 서 용하지 않았으며, 그의 아들도 사판(仕版)27704) 에 낄 수 없어 의술(醫術)을 업(業)으로 삼았었는데, 신도 그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癸丑/御經筵。講訖, 正言金四知啓 曰: “鄭崇祖之罪, 事干贓汚, 此乃盜 臣, 而過蒙上恩, 止於付處, 未幾宥之, 況赦文贓汚不在原例, 今若放遣, 何所 懲哉?” 執義閔師騫曰: “崇祖所犯, 人 所不忍爲也, 不宜放遣。” 上問左右。 領事尹壕曰: “臺諫之言是也。” 知事 魚世謙曰: “事干貪汚, 則關於士大夫 之名節, 不可不懲。太宗朝金漸爲西 京監司, 犯贓而終錮不赦, 其子亦不得 齒於仕版, 乃業醫術, 臣亦及見之。” 上曰: “予非以崇祖爲是也, 不可久竄, 故放之, 然勿放可也。” 特進官尹孝孫 曰: “慶尙道諸水鎮皆設倭樣船二艘, 然船無軍人, 脫有緩急, 將何用哉? 若 無軍可充, 請移給大猛船軍, 使習行 船。” 上問左右。尹壕曰: “是言善 矣。” 魚世謙曰: “軍士之保, 尙不能 充, 別船之卒, 何由可給? 且此船非常

	<p>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 “내가 정승(正丞)조를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오래 귀양살이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석방(石放)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석방(石放)하지 말게 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윤효손(尹孝孫)이 말하기를, “경상도(慶尙道)의 여러 수진(水鎭)에 모두 왜양선(倭樣船) 두 척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에 군인(軍人)이 없으니, 혹시라도 위급한 일이 있으면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만약 보충할 만한 군사가 없으면, 청컨대 대맹선군(大猛船軍)에 옮겨 지급하여 배의 운행을 익히게 하소서.” 하니, 임금(上)이 좌우(左右)에 하문(下問)하였다. 윤호(尹壕)가 말하기를, “이 말은 훌륭합니다.” 하고, 어세겸(魚世謙)은 말하기를, “군사(軍士)의 보(保)도 오히려 보충할 수 없는데, 별선(別船)의 군졸을 어디를 말미암아 지급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배는 언제나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대소선군(大小船軍)을 추이(推移)하여 활용하는 것은 절도사(節度使)와 만호(萬戶)가 그때그때 대처하고 조치하는 데 달려 있을 뿐입니다. 무슨 방해로움이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 “변장(邊將)이 절도(節度)하는 데 달려 있을 뿐이다.” 하였다. 윤효손(尹孝孫)이 말하기를, “배를 만드는 목재는 1백 년을 길러야 활용할 만하니 그것을 얻기가 어려움이 이와 같은데도, 무지한 백성들이 산림(山林)에다 불을 질러 태워버리니, 너무나 <적당함을 잃어버려> 할말이 없습니다. 청컨대 금지시키는 법을 엄격하게 세우소서. 그리고 국가 진관(津關)의 법은 오래 되었습니다. 요즈음 도망한 자를 체포하고 금지하는 것이 점점 풀어져 사민(徙民)27705) 3백여 명이 도망하여 그들의 고향으로 되돌아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오로지 도승(渡</p>	<p>常用之者也, 大小船軍推移用之, 在節度使、萬戶臨時處置耳, 有何妨焉?” 上曰: “在邊將節度耳。” 尹孝孫曰: “船材, 養之百年乃可用, 得之之難如此, 而無知之民火于山林, 以致焚燒, 甚無謂也, 請嚴立法禁。 國家津關之法舊矣, 近者捕亡之禁陵夷, 徙民三百餘名逃還其鄉, 此專由渡丞不道法令而闕防不嚴之故也。 請嚴立禁章。” 上曰: “申明舊法可也。” 特進官朴安性曰: “全羅道諸邑, 或無倉庫, 皆露積, 米穀腐朽, 請於農隙漸作倉庫。” 上曰: “可。”</p>
--	---	--

	<p>丞)27706) 이 법령(法令)을 따르지 않고 관방(關防)을 엄격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컨대 엄하게 금지시키는 법을 세우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옛법을 거듭 밝히는 것이 가하다.”</p> <p>하였다. 특진관(特進官) 박안성(朴安性)이 아뢰기를, “전라도(全羅道)의 여러 고을에 간혹 창고(倉庫)가 없어 모두 노적(露積)27707) 을 하다 보니, 미곡(米穀)이 썩습니다. 청컨대 농한기에 점차로 창고를 짓도록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p> <p>하였다.</p>	
<p>성종 290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弘治) 7년) 5월 26일 (계축) 3번째기사</p>	<p>현숙 공주(顯肅公主)의 비(婢) 청옥(靑玉)이王大妃(王大妃)에게 아뢰기를, “공주의 유모(乳母) 대이(大伊)와 보모(保母) 소비(小非)와 비(婢) 부거지(夫巨之)·옥매(玉梅)와 노(奴) 도치(都致), 유모의 아들 이근수(李根守)가 공주를 독살(毒殺)하려고 도모하였다가 시행하지 못했습니다.”</p> <p>하니, 임금이 즉시 영의정(領議政) 이극배(李克培), 우승지(右承旨) 권경우(權景祐)에게 명하여 대간(臺諫) 각 1원(員)과 더불어 의금부(義禁府) 당상(堂上)과 함께 그를 잡치(雜治)27708) 하도록 하고 전교하기를, “풍천위 공주(豐川尉公主)의 유모 대이가 공주를 살해하려고 도모하여, 몰래 심복의 사람들과 비상(砒礮)을 잘게 부수어 공주의 밥에다 타서 해치려고 하였는데, 그 사람이 차마 타서 올리지 못하자, 대이가 그가 오래 끄는 것을 책망했는데, 대비(大妃)가 듣고서 국문(鞫問)하도록 하였다. 부거지·청옥·이근수 등은 거의 그 실정을 실토하였으나, 간혹 고문[拷掠]을 당하는 자가 있으며, 대이와 부거지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이다. 비(婢)로서 주인을 살해하려고 도모한 것도 차마 하지 못할 바인데, 더구나 유모(乳母)로서 기른 자이겠는가?</p>	<p>○顯肅公主婢靑玉啓王大妃曰：“公主乳母大伊、保母小非，與婢夫巨之，玉梅奴都致乳母子李根守，謀毒殺公主未行。” 上卽命領議政李克培、右承旨權景祐與臺諫各一員同義禁府堂上雜治之。 傳曰：“豐川尉公主乳母大伊謀殺公主，陰與腹心之人，欲細屑砒礮和公主之食以毒之，其人不忍和進，大伊責其遲留，大妃聞而鞫之，夫巨之、靑玉、根守等幾吐其情，而或有被拷掠者，大伊、夫巨之，罪之魁也。以婢而謀殺主，所不忍爲，況以乳母長養者乎？此人不宜容於天地間，此人若死，則其與謀者難以得情，勿遽行刑訊。</p>

	<p>이런 사람이 하늘과 땅 사이에 용납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다. 그러나 이 사람이 만약 죽으면 그와 같이 모의(謀議)한 자의 실정을 알기 어려우니, 형신(刑訊)을 갑자기 행하지 말도록 하라. 대저 옥사(獄事)는 늦추면 조작하거나 꾸며서 대답하니, 서둘러 분명하게 결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내가 법으로 중하게 조치하겠다.”</p> <p>하였다.</p> <p>사신은 논한다. 집안에서 나온 초사(招辭)는 모두 어리석은 동비(童婢)가 공술(供述)한 것인데, 이를 근거로 추국(推鞠)하였으며, 서로 끌어들여 옥(獄)에 갇힌 자가 50여 명이나 되었으니, 사정은 비록 의심스럽지만, 이극배(李克培) 등이 임금의 엄한 책무를 받고 감히 허물이 없는 것을 분변하지 못하고 형신(刑訊)한 자가 40여 인이며, 목숨을 잃은 자가 10여 인이므로, 당시의 의논이 그것을 한스럽게 여겼다.</p>	<p>大抵獄事緩，則必造飾以對，宜急明斷，予將大置於法。”</p> <p>【史臣曰：“內出招辭，皆癡騃童婢所供也，而據此推鞠，授引囚繫五十餘人，情雖可疑，克培等承上嚴責，不敢分辨，無辜而刑訊者四十餘人，殞命者十餘人，時議恨之。”】</p>
<p>성종 290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弘治) 7년) 5월 27일 (갑인) 5번째기사</p>	<p>선공감 제조(繕工監提調) 한치형(韓致亨)·정문형(鄭文炯)이 아뢰기를, “신(臣) 등이 듣건대 중 지성(智性)이 제천정(濟川亭)의 역사를 정과(停罷)하지 말도록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신 등은 생각하기를 이 거사는 민력(民力)을 역사시키는 것이 아니고 중이 자진하여 와서 하는 것이니, 하늘의 건책을 삼가는 데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 중이 받는 미·포(米布)가 매우 많긴 하지만, 지금 만약 도망하여 숨으면 어디를 말미암아 찾겠습니까? 재목(材木)은 장마를 겪으면 썩어서 쓰기가 어려울 것이니, 청컨대 도로 역사하게 하소서. 그리고 여러 군(君)의 집도 이미 역사를 정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새로 짓는 것인데 손질하고 단장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장차 기울어져 위태롭게 될 것이니, 그렇게 되면 다시 백성들을 역사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금 또 비가 내렸으니, 청컨대 군인(軍人)을 헤아려 정하여 점차로 손질하고 단장하게 하소서.”</p> <p>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도록 명하였다.</p>	<p>○繕工監提調韓致亨、鄭文炯啓曰：“臣等聞，僧智性請勿罷濟川之役而不許，臣等意，此舉非役民力，僧自來趨，何關於謹天戒乎？此僧受米布甚多，今若逃匿，何由得焉？材木經霖雨，亦腐朽難用，請還役。諸君家既停役，然其家新建而不修粧，必將傾危，傾危則將復役民，今且下雨，請量定軍人，漸以修粧。”命依所啓。</p>
<p>성종 290권, 25년</p>	<p>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p>	<p>○傳于承政院曰：“今祈雨而得雨，其</p>

<p>(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5월 28일 (을묘) 4번째기사</p>	<p>“이제 기우(祈雨)하여 비가 내렸으니, 행향사(行香使)는 전례(前例)대로 말 [馬]을 지급하고 동자(童子) 무리(27712) 들도 쌀을 내려 주도록 하라.” 하였다.</p>	<p>行香使，依前例給馬，其童子輩亦賜米。”</p>
<p>성종 290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5월 29일 (병진) 4번째기사</p>	<p>경기 도사(京畿都事) 남세주(南世周)가 여러 고을의 고쳐서 경종(耕種)하는 상황을 와서 아뢰자, 전교하기를, “이제 아된 것을 관찰하니, 종자 환상(種子還上)은 수령(守令)도 그것을 나누어 주기를 싫어하고, 농민(農民)들도 받아내기를 꺼려한다고 한다. 그러나 금년은 오히려 우택(雨澤)이 있지만 다른 해에 지금보다 더 심함이 있을 줄을 어떻게 알겠는가? 그 종자(種子)를 지급하여 그들로 하여금 고쳐 심어서 징험하게 하고, 고쳐 심은 낱자와 결실(結實)하고 베어서 거둬들인 낱자를 상세히 적어서 아뢰도록 하라. 그리고 결실한 것이 아무리 많더라도 화리(花利)27713) 를 징수(徵收)하지 못하게 하고, 결실한 것이 비록 없더라도 종자(種子)를 도로 징수하는 것으로 기필하지는 못하게 하라.”</p>	<p>○京畿都事南世周，以諸邑改耕種之狀來啓，傳曰：“今觀所啓，種子還上，守令惡其分給，而農民亦憚於受出也。然今年猶有雨澤，安知他年有甚於今也？其給種子，使之改種以驗之，其改種日月及結實刈獲日月，詳書以啓，結實雖多，不徵花利，結實雖無，亦不必還徵種子。”</p>
<p>성종 290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5월 29일 (병진) 5번째기사</p>	<p>임금이 날씨가 매우 덥고 옥중(獄中)에 갇힌 자가 많다고 하여 그 구료(救療)하는 상황을 주서(注書)·사관(史官)으로 하여금 내관(內官)과 같이 의금부(義禁府)와 전옥(典獄)을 고험(考驗)27714) 하게 하였는데, 의금부에는 빙정(氷丁)과 육화탕(六和湯)27715) 이 없었으며, 전옥에는 빙정이 없었다. 전교하기를, “그것을 하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5월에 얼음을 받는 것은 횡간(橫看)에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이것을 계청(啓請)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육화탕은 호조(戶曹)에 세 차례 통보하였으나 지금까지 수송(輸送)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와 같이 혹독한 더위에 옥중에 갇혀 있는데 약(藥)으로 구료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병(病)이 날 것이다. 요컨대 모름지기 실정을 알아 내어 그 죄대로</p>	<p>○上以日候甚熱，獄中囚繫者多，其救療之狀，令注書、史官同內官考驗于義禁府、典獄。義禁府無氷丁、六和湯，典獄無氷丁。傳曰：“其問之。”義禁府啓曰：“五月受氷，橫看不載，茲不啓請耳。六和湯則三報戶曹，迄不輸送耳。”傳曰：“如此酷熱，囚繫獄中，若不救藥，必致生病，要須得情，以其罪罪之可也，不之救藥，以致於死，可乎？自今五月十五日以後，觀日候啓請受氷。戶曹當該官吏，令憲府鞠之。”</p>

	<p>처벌하는 것은 가하겠지만, 약으로 구료하지 않아 죽도록 하는 것이 가하겠는가? 5월 15일 이후부터는 날씨를 관찰하여 얼음을 받도록 계청하고, 호조의 해당 관리는 사헌부(司憲府)로 하여금 국문하도록 하라.” 하였다.</p>	
<p>성종 290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弘治) 7년) 5월 30일 (정사) 7번째기사</p>	<p>우승지(右承旨) 권경우(權景祐)가 의금부(義禁府)에서 와서 아뢰기를, “부거지(夫巨之)의 공초(供招)에 이르기를, ‘지난 3월에 대이(大伊)가 사람을 시켜 비상(砒礪) 1봉(封)을 주면서 나로 하여금 음식에 타서 공주(公主)에게 올리라.’고 하였는데, 그 뒤에 이근수(李根守)가 그 어미의 말로 나에게 이르기를, ‘너는 음식을 차리는 데 간여하지 않으니 그 약(藥)을 성금(性今)으로 하여금 타서 올리게 하는 것이 가하다.’고 하기에, 내가 성금에게 말하니, 대답하기를, ‘이것을 비록 할 수는 있으나 그 마지막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였으며, 성금은 공초에 이르기를, ‘지난날에 내가 무슨 일로 공주의 뜻을 거스려 공주의 미워하는 바가 되었는데, 지난 4월 초 5일에 도망하여 어미의 집에 숨어 있다가 이달 초7일에 자현(自見)27717) 하였지만, 나는 사실 부거지의 말을 듣지 못했으며 나는 또 부거지의 말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라고 하여, 부거지의 말이 성금의 말과 서로 어긋나니, 공주의 종[奴]에게 물어 보는 것이 가하겠기에 성금을 형신(刑訊)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승지(承旨)가 명(命)을 받고 가서 어떻게 이와 같이 하였는가?” 하자, 권경우가 아뢰기를, “성금은 처음에 모의(謀議)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월일(月日)을 상고하면 부거지가 성금으로 하여금 비상을 타서 올리게 했다는 말은 성금이 도망한 뒤에 있었기 때문에 진실과 거짓을 분변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만약 큰 옥사(獄事)를 다스림에 있어 반드시 끝까지 캐어서 한 곳으로 돌아가게 한 뒤에 사람을</p>	<p>○右承旨權景祐自義禁府來啓曰：“夫巨之招云：‘去三月大伊使人遺砒礪一封，令我和飲食進于公主，其後根守以其母之言謂予曰：『汝則不干於執饌，其藥令性今和進可也。』’我言於性今，答曰：『此雖可爲，其終何以爲之？』’性今招云：‘前日我以事忤公主意，爲公主所憎，去四月初五日逃隱母家，今月初七日自見，我實不聞夫巨之之言，我亦不與夫巨之有言矣。’夫巨之之言與性今之言相違，可問于公主之奴，故不刑訊。性今何以處之？”傳曰：“承旨受命而往，何以如是爲耶？”景祐啓曰：“性今，初不與謀，以日月考之，夫巨之使性今砒礪和進之說，在性今逃亡之後，故欲辨眞僞耳。若治大獄，必須窮詰歸一，然後罪人無辭于罰矣。”傳曰：“性今令刑而不刑，夫巨之令不刑而錄違端以啓，何也？初令臺諫不爲輪往者，欲知首尾而畢鞫也。爲臺諫者，雖人君過舉亦當言之，而如此之事</p>

	<p>죄주어야 죄주는 데 핑계가 없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성금은 형신하도록 하였는데도 형신하지 않고, 부거지는 형신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어긋난 단서를 기록하여 아뢰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처음에 대간(臺諫)을 윤번으로 가지 못하게 한 것은 처음과 끝을 알아서 국문을 마치도록 하려고 한 것이다. 대간이 된 자는 비록 인군(人君)의 과실이라도 당연히 말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일을 시비(是非)를 다스리지 못하니, 이는 틀림없이 사리를 밝게 아는 자가 아니다. 대사헌(大司憲) 정경조(鄭敬祖)를 대사간(大司諫) 윤민(尹愨)으로 대신하게 하고, 사헌부(司憲府)로 하여금 권경우(權景祐)를 국문하게 하고, 도승지(都承旨) 김응기(金應箕)에게 대신하도록 하라.” 하였다.</p>	<p>不爲是非，是必不解事者也。以大司憲鄭敬祖，大司諫尹愨代之，令司憲府鞫權景祐，以都承旨金應箕代之。”</p>
<p>성종 291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弘治) 7년) 6월 1일 (무오) 3번째기사</p>	<p>중부시 정(宗簿寺正) 이창신(李昌臣)이 상서(上書)하기를, “신(臣)이 해마다 병(病)을 앓을 때마다 곧 천은(天恩)을 입어 특별히 휴가를 내려 주시고 약(藥)을 내려 주시어 여생(餘生)을 보전토록 하시니, 사람들은 영화롭게 생각하나 신(臣)만은 홀로 두렵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이 심중(深重)하여 약이(藥餌)27719) 도 효험이 없습니다. 풍단(風丹)27720) 이 겨우 낫는 것 같았다가도 다른 증세가 덧붙여 발생합니다. 오른쪽 귀에는 부종(浮腫)이 나서 매미 소리가 거둑 들리고, 머리가 아프고, 눈이 어질어질하여 정신(精神)이 취(醉)한 것 같아 혹은 빙빙 돌아 넘어지고, 허리와 다리가 찌르는 듯이 아파 걷기가 어려우니, 지금 놓치고 치료하지 않으면 반드시 폐질(廢疾)이 될 것입니다. 간절히 생각하건대 본사(本司)27721) 는 종친(宗親)을 규찰(糾察)할 뿐만 아니라, 결송(決訟)할 일이 긴요하니, 다른 시(寺)·감(監)과는 크게 같지 않음이 있습니다. 신(臣)이 장관(長官)으로서 여러 달 직책을 비워 두었으니, 마음이 어찌 스스로 편안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마음을 줄여 병의 증세가 더욱 깊어져 나올 가망이 없습니다. 고향에 돌아가 편한 대로 병을 치</p>	<p>○宗簿寺正李昌臣上書曰： 臣連年患病，輒蒙天恩，特賜告、賜藥，俾全餘生，人以爲榮，臣獨知懼，然病深重，藥餌無效，風丹纔若小間，而他證加發，右耳浮腫，蟬鳴重聽，頭疼眼眩，精神如醉，或旋運僵仆，腰脚刺痛，步履艱難，失今不治，必成廢疾。切念，本司非惟糾察宗親，決訟事繁，與他寺監，大有不同，臣以長官，累朔曠職，心豈自安？用此憂煎，病證轉深，差愈無期，退還田里，隨便治病，臣之志也，而受告于朝，身猶繫官，願莫之遂，不勝至憫，伏望，命遞臣職，俾得投閑，安心治病。</p>

	<p>료함이 신(臣)의 뜻입니다마는, 조정에서 휴가를 받고 몸도 관직에 매여 있어 소원을 이루지 못하니, 지극히 민망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엿드려 바라건대 신의 직임을 체대(遞代)토록 명하시어 한가한 데 몸을 두어 안심하고 치병(治病)할 수 있게 하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p> <p>“이창신(李昌臣)은 쓸 만한 사람이다. 그러나 이제 병(病)이 있다고 말하니, 그를 송서(送西)27722) 하게 해서 준직(准職)27723) 을 제수(除授)하고 또 약(藥)을 주게 하라.”</p>	<p>傳曰：“昌臣，可用之人，然今言有病，其令送西，而准職除授，又給藥。”</p>
<p>성종 291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6월 1일 (무오) 5번째기사</p>	<p>의금부(義禁府)에 전지하기를,</p> <p>“본부(本府)에서 비록 죄인(罪人)을 나누어 가두어 둔다고 하더라도 말이 혹 서로 누설되기도 하고, 몰래 편간(片簡)27724) 을 식기(食器)에 넣어서 내외(內外)의 말을 통하는 자가 또한 간혹 있으니, 금후로는 엄격히 금방(禁防)을 더하여 이와 같이 하지 못하게 하라. 만일 혹 그렇게 하지 못하면 마땅히 죄책(罪責)이 있을 것이다.”</p> <p>하였다.</p>	<p>○傳旨義禁府曰：“本府雖分囚罪人，然言語或相漏洩，潛置片簡於食器，以通內外之言者，亦或有之，今後嚴加禁防，勿致如是，如或不爾，當有罪責。”</p>
<p>성종 291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6월 5일 (임술) 2번째기사</p>	<p>도승지(都承旨) 김응기(金應箕) 등이 아뢰기를,</p> <p>“전일(前日)에 일본국 사신(日本國使臣)을 접견(接見)하려고 하셨으나 비로 인해 중지하였고, 근자에 또 상체(上體)가 편안치 못하여서 중지하였는데, 지금은 더위가 바야흐로 치열(熾烈)하니 아마도 접견하실 수 없을 듯합니다. 또 이 무리들이 서울에 도착한 지가 이제 벌써 60일이 되었고, 격군(格軍)27726) 이 포구에 있으며, 날마다 그 양식(糧食)을 받으니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조(禮曹)로 하여금 접견(接見)할 수 없는 이유를 개유(開諭)토록 하여 예조(禮曹)에서 연향(宴饗)하고 예물(禮物)을 내려 주게 하소서. 만약 또 그렇지 못하면 그 연구(宴具)를 그 관(館)27727) 에 보내서 잔치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전교하기를,</p>	<p>○都承旨金應箕等啓曰：“前日欲接見日本國使臣，以雨而止，近又以上體未寧而止，今暑氣方熾，恐不可賜見，且此輩到京，今已六十日，格軍在浦，日受其糧，其弊不貲，令禮曹，開諭不得接見之由，而饗于禮曹，賜以禮物，若又不爾，則其宴具送于其館而饗之，何如?” 傳曰：“昔以雨止，今又以病而止，予心亦豈偶然哉? 然若有事故，則雖天子之使，猶不得見，況此輩乎? 且予嘗一見之矣，但恐彼輩自疑曰：‘昔</p>

	<p>“예전에는 비로 인해 중지하였고, 이제 또 병(病)으로 중지하였으니, 내 마음도 또한 어찌 우연(偶然)하겠는가? 그러나 만약 사고(事故)가 있다면 비록 천자(天子)의 사신이라도 오히려 접견할 수가 없거늘, 하물며 이 무리들이겠는가? 그리고 또 내가 일찍이 한 차례 접견하였다. 그러나 저 무리들이 스스로 의심하기를, ‘예전에는 항상 두 번 접견하였는데, 이제는 한 번의 접견에 그치니, 우리를 대접함이 박(薄)하여졌다.’고 할까 두렵다. 나의 서병(暑病)이 지금은 이미 나았으니, 마땅히 며칠 관망하였다가 처리하겠다.” 하였다.</p>	<p>常再見， 今則止於一見， 待我寢薄矣。’ 予暑病， 今則已愈， 當觀數日處之。”</p>
<p>성종 291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弘治) 7년) 6월 6일 (계해) 1번째기사</p>	<p>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 정괄(鄭恬)과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李宗顥(李宗顥)가 사조(辭朝)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인견(引見)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서증(暑症)을 앓아 그렇게 하질 못한다.” 하였다. 정괄(鄭恬)이 아뢰기를, “평안도(平安道)는 지경이 중국(中國)과 연(連)하여 사신의 왕래가 빈번(頻煩)하고, 방수(防戍)의 괴로움이 다른 도(道)의 배(倍)가 됩니다. 그리고 요즈음은 곡식이 영글지 않아 주군(州郡)이 잔폐(殘弊)한데 평양(平壤)이 더욱 심하고, 군호(軍戶)와 아전(衙前)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 되었는데, 이제 들으니, 여자신(呂自新)이 과(罷)할 것을 계청(啓請)하였다고 합니다. 영아(營衙)27728) 는 전에 본시 1천(千)이었는데, 병조(兵曹)에서 이를 감(減)하려고 하나, 대저 제읍(諸邑)은 아전(衙前)이 넉넉한 뒤에야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도 또한 평양(平壤)을 일컬어 아전(衙前)이 넉넉하다고 함은 일을 쉽게 이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 번 조잔(彫殘)한 데 이르면 소복(蘇復)하기 어려울 것이니, 신(臣)이 마땅히 여자신(呂自新)과 의논(議論)하겠습니다마는, 이 폐단을 듣고 감히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p>	<p>○癸亥/平安道觀察使鄭恬、全羅道觀察使李宗顥辭， 傳曰：“予欲引見， 適患暑未果耳。” 鄭恬啓曰：“平安道境連上國， 使命頻煩， 防戍之苦， 倍於他道。 近來年穀不登， 州郡殘弊， 而平壤尤甚， 軍戶、衙前， 其來已久。 今聞， 呂自新啓請罷之， 營衙， 前本一千， 而兵曹欲減之， 大抵諸邑衙前足， 然後可以成事， 中朝人亦稱平壤者， 以衙前足， 而事易濟也， 若一至彫殘， 難以蘇復矣。 臣當與呂自新議， 然聞此弊， 不敢不啓耳。” 傳曰：“外事， 予何以知之？ 予屢聞， 人皆投屬營衙前， 軍額日減， 卿與節度使， 同議以啓。”</p>

	<p>“외방(外方)의 일을 내 무엇으로써 알겠는가? 내가 여러번 듣건대 사람들이 모두 영아전(營衙前)으로 투속(投屬)하여 군액(軍額)이 날로 줄어든다고 하니, 경(卿)과 절도사(節度使)가 같이 의논하여서 아뢰라.”</p> <p>하였다.</p>	
<p>성종 291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6월 7일 (갑자) 3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 진교하기를, “전자에 한재(旱災)가 심(甚)함으로 인해, 병술[瓶酒]을 가진 자를 아울러 금(禁)하게 하였으나, 요즈음은 하늘에서도 비가 내렸고, 또 듣건대 도리어 폐(弊)되는 일이 있다고 하니, 병술을 금하지 않게 함이 어떻겠는가?”</p> <p>하니, 우승지(右承旨) 권경우(權景祐)와 동부승지(同副承旨) 송질(宋軼)이 아뢰기를, “이제는 한재(旱災)가 너무 심한 데는 이르지 않고 아울러 병술을 금한 것은 전에도 없었던 것이니, 상교(上教)가 진실로 마땅합니다.”</p> <p>하매, 명하여 병술을 금하지 않게 하였다.</p>	<p>○傳于承政院曰：“前因旱災之甚，持瓶酒者，竝令禁之，近來天且下雨，又聞，反有弊事，勿禁瓶酒，何如？”右承旨權景祐、同副承旨宋軼啓曰：“今旱災不至太甚，竝禁瓶酒，在前所無，上教允當。”命勿禁瓶酒。</p>
<p>성종 291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6월 8일 (을축) 3번째기사</p>	<p>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성세명(成世明) 등이 차자(筓子)를 올리기를, “제천정(濟川亭)을 개구(改構)하는 일은 옳지 못합니다. 신해년(27734) 여름에 본관(本館)에서 사유를 갖추어서 차자(筓子)를 올렸는데, 어서(御書)하기를, ‘쾌(快)히 아뢰는 대로 따르겠다.’고 하시어, 유악지신(帷幄之臣)의 중(重)함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전월(前月)에 신 등이 또 한재(旱災)로 인하여 정파(停罷)하기를 계청(啓請)하였더니, 진교하기를, ‘즉시 아뢰는 대로 따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으니, 간승(幹僧)27735 이 상언(上言)하여, 그 역사(役事)를 다시 일으키기를 청하므로 공조(工曹)에 내렸더니, 공조에서는 망령되게 이 승도(僧徒)가 말한 것을 따르기를 청하였다고 하는데, 성상께서 벌써 이미 정파하도록 하교하셨으니, 다시 역사를 일으키는 불가(不可)합니다.</p> <p>찬성(贊成) 한치형(韓致亨)·정문형(鄭文炯) 등은 인량(寅亮)의 직(職)27736에 있으면서 전하께서 한재(旱災)를 근심하시며 허저(虛佇)27737 하는 때를 당하여, 능히 그 아름다움을 따라 받들지 못하고, 다만 영선(營繕)하는 것을</p>	<p>○弘文館副提學成世明等上筓子曰：濟川亭，不宜改構事。在辛亥夏，本館具由上筓，而御書曰：“快從所啓。”示重帷幄之臣。前月臣等又因旱災，啓請停罷，傳曰：“卽依所啓。”今聞幹僧上言，請復其役事，下工曹，工曹妄是僧徒，請從所言，上教以既已停之，不可復役。贊成韓致亨、鄭文炯等居寅亮之職，當殿下憂旱虛佇之時，不能將順其美，但以營繕爲己任，力主僧言，興可已之役，糜不貲之粟，沮殿下修省之意，將焉用彼相哉？彼相則已矣，以殿下之明，知是役之非，而前年</p>

자기의 임무로 삼고 있습니다. 힘써 중의 말을 주장하여 중지할 수 있는 역사를 일으켜서 적지 않은 곡식을 허비하였고, 전하의 수성(修省)하는 뜻을 저지하였으니, 장차 어찌 저들 재상(宰相)을 쓰겠습니까? 저들 재상은 그만두고서라도 전하의 명감(明鑑)으로써 이 역사의 잘못을 알고 계실 터인데, 전년(前年)에는 정파하였다가 금년(今年)에 일으키고 어제 정지하였다가 오늘 다시 일으키니, 어찌 그 호령(號令)을 반복하시는 것입니까? 또 지금 새 정자(亭子)를 크게 증축하는 것은 수전(水戰)을 교열(教閱)하고자 하심입니다. 그러나 하류(下流)에 얽은 데가 많아 배[海舶]가 거슬러 올라오기가 어려우므로, 이 앞서 전하께서 교열하려고 하시었으나 능히 하지 못하셨습니다. 만약에 ‘사신(使臣)이 등람(登覽)하는 곳이다.’고 한다면, 옛 제도도 굉장(宏壯)하여 그 협애(狹隘)27738) 함을 보지 못하겠고, 동우(棟宇)27739) 가 완고(完固)하니, 어찌 반드시 고쳐 짓겠습니까?

이제 간승(幹僧)이 이 역사를 다시 일으키려고 천청(天聽)을 지극히 번거롭게 함은 영작(營作)을 빙자하여 국고(國庫)를 모손(耗損)하고 두해(蠹害)시키며, 쓸데없이 세월(歲月)이나 끝먼서 의식(衣食)의 자용(資用)을 도모함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찌 경영(經營)한 지 수년(數年) 동안에 한 장의 기와도 바꾸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바야흐로 대한(大旱)이 극심하여 비록 하루 이틀 비가 내리더라도 타는 가마솥에 물을 대는 것과 같아서 농사가 끝내는 망쳐질 것입니다. 가령 내일 비가 오더라도 흉년은 결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의 비를 기필할 수가 없는데도, 고취(鼓吹)의 의식(儀式)을 복구하고 병술[瓶酒]의 금(禁)함도 늦추며, 여러 제택(第宅)의 영선(營繕)을 간혹 그전대로 그냥 있게 하니, 천계(天戒)에 삼가고 민은(民隱)27740) 을 구휼하는 마음이 걸만 있을 뿐 실상이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요사이 내린 비로써 1년의 풍등(豐登)을 기약하시는 것입니까? 경사(京師)의 백성이 한 단(端)의 베를 가지고 겨우 쌀 석 되를 바꾸며 길에는 굶주리고 병든 이가 많아 백성들이 모

罷之, 今年興之, 昨日停之, 今日復之, 何反復其號令也? 且今增大新亭者, 欲以教閱水戰也, 然下流多淺, 海舶難遡, 故前此殿下, 欲閱而未能, 若曰使臣登覽之地, 則舊制宏壯, 未見其狹隘, 棟宇完固, 何必改作? 今幹僧欲復是役, 至煩天聽, 不過依憑營作, 耗蠹國廩, 虛引歲月, 以謀衣食之資耳. 不然, 何經營數載, 不易一瓦耶? 今方大旱之極, 雖一二日之雨如沃焦釜, 稼穡卒瘁, 假使明日有雨, 凶歉可決, 明日之雨未可必, 而復鼓吹之儀, 弛瓶酒之禁, 諸第營繕, 間有仍舊, 謹天戒恤民隱之心, 以文不以實, 殿下其以近日之雨, 期一年之豐登乎? 京師之民, 持一端布, 易米僅三斗, 途多餓病, 民皆嗷嗷, 安得一經重瞳乎? 非廟社不得已之役, 則固宜一切停罷, 況此亭, 特一遊觀之所乎? 一亭之費, 計前後, 不知其幾, 以此賑飢, 全活必多, 殿下何不思之至此也? 伏願, 亟罷是役, 以堅修省之意.

傳曰: “弘文館, 今以予爲非, 予果非矣. 議于大臣.” 尹弼商、尹孝孫議: “今旱災太甚, 宜從所啓.” 李克培議:

두 부르짖으니, 어찌 한 번이라도 중동(重瞳)을 거칠 수가 있겠습니까? 종묘(宗廟)·사직(社稷)의 부득이한 역사가 아니라면 진실로 일체(一切)를 정파(停罷)함이 마땅합니다. 하물며 이 정자(亭子)가 다만 한 번 유관(遊觀)하는 곳인 것이겠습니까? 한 정자의 비용이 전후(前後)를 계산하면 그 얼마인지도 알지 못하니, 이것으로 기민(飢民)을 진제(賑濟)하면 온전히 살아날 이가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어찌 생각하심이 여기에 이르지 않으십니까? 엿드려 원하건대 빨리 이 역사를 정파하시어서 수성(修省)의 뜻을 굳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홍문관(弘文館)이 이제 나더러 그르다고 하니, 내가 과연 그르다.”
하고, 대신(大臣)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윤필상(尹弼商)·윤효손(尹孝孫)은 의논하기를,
“지금은 한재(旱災)가 너무 심하니, 아뢴 대로 따르심이 마땅합니다.”
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홍문관(弘文館)에서 아뢴 것은 진실로 깊이 살피심이 마땅합니다. 제천정(濟川亭)의 역사를 정파하여 농사철의 끝남을 기다림이 마땅할 것이니, 어찌 반드시 급급하게 하겠습니까?”
하고, 노사신(盧思愼)·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한강(漢江)에 정자가 있는 것은 그 내력이 이미 오래 되었으니, 끝내 폐(廢)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재(旱災)가 심하니, 우선 정지하였다가 추성(秋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유지(柳輕)는 의논하기를,
“제천정(濟川亭)의 영선(營繕)은 지금의 급무(急務)가 아니니, 홍문관(弘文館)에서 아뢴 바를 따라 시행(施行)하소서. 다만 간사승(幹事僧)들이 받았던 물건은 모실(耗失)하는 폐단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사(有司)에게 달린 일입니

“弘文館所啓，誠宜深省，當罷濟川亭之役，以待農功之畢。何必汲汲乎？”
盧思愼、尹壕議：“漢江有亭，其來已久，終不可廢，然今旱甚，姑且停之，以待秋成爲便。”
柳輕議：“濟川亭營繕，非今急務，依弘文館所啓施行。但幹事僧人所受之物，不無耗失之弊，然有司存焉。”
傳曰：“非用民力，故初令改構，今群議如是，其令停罷。”

	<p>다.” 하니, 전교하기를, “민력(民力)을 쓰지 않았던 까닭으로 처음에 개구(改構)하도록 하였으나, 이제 여러 의논이 이와 같으니, 그것을 정파(停罷)하도록 하라.” 하였다.</p>	
<p>성종 291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6월 11일 (무진) 4번째기사</p>	<p>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윤은로(尹殷老)가 버린 첩(妾)인 관비(官婢) 경이(景伊)가 윤은로(尹殷老)를 헌부(憲府)에 고소(告訴)하기를, “10년 전에 중추(中樞)가 비(婢)를 첩(妾)으로 삼았다가, 2년 뒤에 나를 본가(本家)에 팔아서 면포(綿布) 1백 58필(匹)을 받았습니니다. 중추(中樞)는 시인(市人) 문장수(文長守)·정막동(鄭莫同)으로부터 면포(綿布) 각각 50필(匹)을 빌려, 중부(中部) 정선방(貞善坊)에다 집을 사서 살았는데, 그 뒤에 반인(伴人)27743) 박영생(朴永生)으로 하여금 사재감(司宰監)에 납부할 진주(晉州)의 대구어(大口魚)를 방납(防納)27744) 케 하여 면포(綿布) 8동(同)을 얻어, 1백 필(匹)은 문장수(文長守)·정막동(鄭莫同)에게 상환(償還)하고, 그 나머지 면포(綿布)는 박영생(朴永生)의 대구어(大口魚)의 값으로 쓰게 하였으니, 집을 산 자금(資金)은 모두 비가(婢家)와 방납 면포(防納綿布)이고, 중추(中樞)의 집 물건이 아닙니다. 중추가 전년에 나를 버리고 우리 집을 빼앗으려고 꾀하여 다 방면으로 침요(侵擾)하므로, 분간(分揀)하여 주도록 빌어 사헌부(司憲府)에서 안험(案驗)하였으나, 박영생(朴永生) 등은 모두 직초(直招)하지 않으니, 형추(刑推)하기를 계청(啓請)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윤은로(尹殷老)는 전에 이조 참판(吏曹參判)이 되어 방납(防納)으로 비방(誹謗)을 받았으니, 윤은로(尹殷老)가 비록 용렬(庸劣)하나 반드시 다시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경이(景伊)는 본시 창녀(娼女)이다. 조사(朝士)가 비록 창기(娼妓)에게 사사로이 함은 옳지 못하나, 누가 이를 첩(妾)이라 하지 않겠는가?</p>	<p>○同知中樞府事尹殷老棄妾官婢景伊 訴殷老于憲府曰：“在十年前，中樞以婢爲妾，後二年賣我本家，受緜布一百五十八匹。中樞從市人文長守、鄭莫同貸綿布各五十匹，買家于中部貞善坊而居，其後使伴人朴永生，防納司宰監納晉州大口魚，得綿布八同，以一百匹，償文長守、鄭莫同，其餘綿布，朴永生以大口魚之價用之矣。買家之資，皆婢家及防納緜布，非中樞家物也。中樞前年棄我，謀欲奪我家，多方侵擾，乞令分揀，司憲府案之，永生等皆不直招，啓請刑推。”傳曰：“殷老，前爲吏曹參判，以防納被謗，殷老雖庸劣，必不復爲矣。景伊，本娼女也，朝士雖不宜私於娼妓，然孰不以此爲妾乎？累年同居，夫妻之分已定，乃敢訴于憲府，謀欲陷害，其有關於風教，大矣。令漢城府，先正其罪，然後分揀可也。”</p>

	<p>여러 해를 동거(同居)하였으니, 부첩(夫妻)의 분수가 이미 정해졌거늘, 바로 감히 헌부(憲府)에 고소하여 함해(陷害)하려고 도모하였으니, 그 풍교(風敎)에 관계됨이 크다.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먼저 그 죄(罪)를 바로잡게 한 뒤에야 분간(分揀)함이 옳겠다.” 하였다.</p> <p>사신이 논평하기를, “경이(景伊)는 곧 경기(京妓) 탁문아(卓文兒)이다. 종실(宗室) 강양군(江陽君)의 첩(妾)이었는데, 윤은로(尹殷老)가 귀현(貴顯)하여지자 교만하고 거만하여, 빼앗아서 자기 소유로 삼으니, 강양군(江陽君)이 다룰 수가 없었다. 윤은로는 본시 가정 교육이 없는데다 또한 학식(學識)마저 없었다. 오직 이익만을 도모하여 승지(承旨)가 되고, 이조 참판(吏曹參判)이 되니, 회뢰(賄賂)와 포저(苞苴)27745) 를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었다. 또 방납(防納)으로 재화(財貨)를 얻어 집을 사서 탁문아(卓文兒)에게 주어 살게 하더니, 이에 이르러 사랑하는 마음이 사그라지고 뜻이 쇠하여, 또 소첩(小妾)을 얻어 탁문아의 집을 빼앗으려고 하니, 드디어 탁문아가 고소하게 되었다.” 하였다.</p>	<p>【史臣曰：“景伊卽京妓卓文兒也。爲宗室江陽君所畜，殷老既貴顯驕傲，奪而爲己有，江陽莫能爭之，殷老素無庭訓，亦無學識，惟利是圖，爲承旨，爲吏曹參判，賄賂苞苴，不可勝言，又防納得貨買家，給文兒以居，至是愛弛意衰，又得少妾，欲奪文兒家，遂爲文兒所訴。”】</p>
<p>성종 291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弘治) 7년) 6월 13일 (경오) 3번째기사</p>	<p>대사헌(大司憲) 정경조(鄭敬祖)·집의(執義) 민사건(閔師騫)·장령(掌令) 민이(閔頤)·지평(持平) 유인홍(柳仁洪)이 와서 아뢰기를,</p> <p>“만약 경이(景伊)의 일을 가지고 풍교(風敎)에 관계가 있다고 하면 본부(本府)에서 국문(鞫問)해야 마땅할 것인데, 명하여 한성부(漢城府)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박영생(朴永生)의 처(妻)는 신 등이 공정하지 않다고 허물하고, 또 ‘경이(景伊)는 바로 강양군(江陽君)이 버린 첩[棄妾]인데, 강양군(江陽君)은 바로 대사헌(大司憲) 정경조(鄭敬祖)의 처형(妻兄)이니 언어(言語)가 상통(相通)하여 혐의가 없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 등은 처형(妻兄)의 첩(妾)은 법(法)으로 상피(相避)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버린 첩이겠습니까? 이것은 본부(本府)를 꺼려 타사(他司)로 옮기고자 함입니다. 법으로 고문(拷問)함이 마땅한 까닭으로 신 등이 계청(啓請)하였는데 발락(發落)이 없으니, 신 등은</p>	<p>○大司憲鄭敬祖、執義閔師騫、掌令閔頤、持平柳仁洪來啓曰：“若以景伊之事，有關風敎，則本府之所當鞫也，而命移漢城府。朴永生妻，咎臣等爲不公，且云景伊乃江陽君棄妾，而江陽君乃大司憲鄭敬祖之妻兄也，言語相通，不無嫌焉。臣等謂，妻兄之妾，法相避，況棄妾乎？是憚本府而欲移他司也。法當拷問，故臣等啓請而無發落，臣等未知其由。慶由恭飲於路傍小家，爲吏卒所執，然若以爲宰相而棄</p>

	<p>그 연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p> <p>경유공(慶由恭)은 길가의 작은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졸(吏卒)에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재상(宰相)이라고 해서 내버려 두면, 그 고방(故放)27748) 의 죄(罪)도 또한 불소(不少)할 것이며, 이졸(吏卒)도 또한 업신여겨 범한 일이 없는데, 국문(鞫問)하도록 명하였습니다.</p> <p>윤탕로(尹湯老)는 윤대(輪對)27749) 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서원(書員)이 불러 이르기를, ‘윤대(輪對)하는 일을 윤탕로에게 고(告)했다고 하였으니, 윤탕로는 알고도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이를 가지고 안률(按律)하여 아뢰자 바로 간원(諫院)에 옮기었으니, 이는 모두 신 등이 직분을 다하지 못하여 전하(殿下)께서 족히 신임하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몇 가지의 잘못이 있는데 무릅쓰고 언사(言事)의 자리에 있으니 마음에 편하지 못합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윤탕로(尹湯老)는 재상(宰相)의 아들이며, 중궁(中宮)의 아우이다. 죄(罪)는 태(答) 40대이지만, 죄(罪)를 주고 안주고는 내게 달려 있다. 내가 추안(推案)을 보니, 서원(書員)이 말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만약 윤탕로가 알고서 들어오지 않았으면 죄가 윤탕로에게 있고, 그렇지 않다면 서원(書員)의 과실이다. 헌부(憲府)에서 추문(推問)하였으되, 그 고(告)하고 고(告)하지 않았음을 묻지 않은 것은 한갓 관원(官員)을 비호(庇護)한 것뿐이라고 말하나, 서원(書員)인들 어찌 관원(官員)이 장형(杖刑)받는 것을 즐겨하겠는가? 반드시 장차는 무복(誣服)할 것이다. 만약 헌부(憲府)에 내린다면 헌부는 이미 이로써 마음을 삼을 것이니, 또 어찌 다시 고치겠는가? 이에 간원(諫院)으로 옮겼을 뿐이다. 경유공(慶由恭)은 병든 첩(妾)이 피접하여 있는 곳에 가서 주인(主人)과 약주(藥酒)를 마셨을 뿐이니, 어찌 연음(宴飲)이라 할 수 있겠는가? 부리(府吏)가 헌부(憲府)의 위엄을 믿고 범람(泛濫)함이 이와 같은데, 경(卿) 등이 그르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윤은로(尹殷老)는 창녀(娼女)를</p>	<p>之，則其故放之罪，亦不少矣。 吏卒亦無陵犯之事，而命鞫之。 尹湯老不入輪對，書員招云：‘輪對之事，告于湯老，湯老知而不入。’ 以此按律以啓，而乃移諫院，此皆臣等不職，殿下以爲不足信也，有此數失，冒居言事之地，未安於心。” 傳曰：“尹湯老，宰相之子，中宮之弟，罪只答四十，罪與不罪，在予耳。 予見推案，有書員不言，若湯老，知而不入，罪在湯老，不然則書員之過也。 憲府推之，而不問其告與不告，徒曰庇護官員也。 然書員豈肯爲官員受杖哉？必將誣服矣。 若下憲府，則憲府既以此爲心，又何改易？茲移諫院耳。 慶由恭至病妾避寓之處，與主人飲藥酒耳，豈可謂宴飲歟？府吏仗府威，泛濫如此，卿等不以爲非，何耶？尹殷老，以娼女爲妾，是其失也。 景伊懷見棄之嫌，告舊家長，至爲薄惡，朴永生妻，指言大司憲有嫌，故不得已移漢城府，予非欲不推防納之事也。 今曰非漢城府所當推，若移憲府，則大憲其不避之乎？” 敬祖啓曰：“相避之法，載在《大典》，若不當相避，則何避之有？況臣等以執法之官，尤爲不</p>
--	--	--

첩(妾)으로 삼았으니, 이것이 그의 잘못이다. 경이(景伊)는 버림을 당한 데 혐의(嫌疑)를 품고 옛 가장(家長)을 고소하였으니, 지극히 박정(薄情)하고 악독하다. 박영생(朴永生)의 처(妻)는 대사헌(大司憲)에게 상피(相避)됨이 있다고 지적하여 말한 까닭으로 부득이하여 한성부(漢城府)로 옮겼다. 그러나 내가 방납(防納)의 일을 추문(推問)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다. 이제 마땅히 한성부에서 추국(推鞠)할 것이 아니라고 하여, 만약 헌부(憲府)에 옮기면 대사헌(大司憲)이 피혐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정경조가 아뢰기를,
 “상피(相避)하는 법(法)이 《대전(大典)》에 실려 있으니, 만약 상피하는 것이 부당(不當)하다면 어찌 피혐함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신 등은 법을 집행하는 관원으로 마땅히 피혐하지 않아야 하는 일에 인혐(引嫌)하는 것은 더욱 부당한 것입니다. 만약 본부(本府)에 내리시면 신은 마땅히 추국하겠습니다. 전일에 윤은로(尹殷老)의 방납(防納)한 일을 본부에서 추국하여 거의 마쳤는데, 상언(上言)하여 금부(禁府)에 옮기기를 청하였으므로, 일이 마침내 해이(解弛)해졌던 것입니다. 이제 또한 박영생(朴永生)이 소장(訴狀)을 올린 것은 반드시 본부(本府)를 꺼려서 타사(他司)로 옮기려는 것일 뿐입니다. 경이(景伊)가 가장(家長)을 고소한 것은 그른 것이나, 재상(宰相)의 불법(不法)한 일도 또한 풍교(風教)에 관계가 있습니다. 본부에서 만약 마땅히 추국할 수 없다면, 마땅히 간원(諫院)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신 등은 풍교에 관계되는 일을 한성부로 하여금 추국하게 하였다는 것은 아직 듣지 못하였습니다. 신(臣)이 승지(承旨)가 되었을 때에 전하(殿下)께서 재상에게 법에 있어서 피혐하는 것이 부당(不當)하다면 인혐(引嫌)할 수 없다고 하였고, 신도 또한 경연(經筵)에서 이를 아뢰었습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처의 오라비가 버린 첩의 일에 무슨 피혐(避嫌)할 것이 있겠습니까? 또 본부(本府)에서 탄핵하는 것은 방납(防納)의 일이며, 경이(景伊)에게는 더욱 관계되지 않으니, 갑자기 타사(他司)로 옮김은

當引嫌於所不當避之事也。若下本府，臣當推之。前日殷老防納事，本府推之幾畢，上言請移禁府，事終解弛。今亦永生呈狀，是必憚本府欲移他司耳。景伊告家長，非矣，而宰相不法之事，亦有關於風教，本府若不當推，則當移諫院，臣等未聞，關於風教之事，令漢城府推之也。臣爲承旨時，殿下令宰相，法不當避，則毋得引嫌，臣亦於經筵啓之，臣意謂妻兄棄妾之事，何避嫌之有？且本府所劾者，防納之事，尤不干於景伊，不宜遽移他司也。”傳曰：“卿等所言如是，可還鞠之。”

	<p>마땅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卿) 등의 말한 것이 이와 같으니, 다시 국문(鞫問)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p>	
<p>성종 291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6월 15일 (임신) 5번째기사</p>	<p>장원서 별좌(掌苑署別坐) 한우창(韓禹昌)의 비(婢)는 이름을 가섭(迦葉)이라 하였는데, 아름답고 요염하였다. 임광재(任光載)가 장원서 제조(掌苑署提調)가 되어 보고서는 기뻐하여, 함께 사통(私通)하려 하였으나 가섭이 따르지 않으니, 임광재가 두 사람으로 하여금 양쪽을 끼도록 하여 옷으로 그 입을 막고서 강간(強姦)하였다. 임광재는 또 술에 취(醉)해 인가(人家)에 투숙한 적이 있었는데, 주온(主媼)으로 하여금 물을 가져오게 하고는 더불어 사간(私奸)하려고 하였으나, 그 여인이 굳게 거절하니, 서로 판자(板子)를 차서 소리가 밖에서도 들렸다. 임금이 이러한 일을 보고 전교하기를, “풍천위(豐川尉)의 일은 말로 다할 수가 없다. 비록 보통 황음(荒淫)한 사람이라도 어찌 이보다 더하겠는가?” 하였다.</p>	<p>○掌苑署別坐韓禹昌之婢，名曰迦葉，美而艷，任光載爲掌苑署提調，見而悅之，欲與之私，迦葉不從，光載令二人挾持，以衣掩其口而強淫之，光載又醉投人家，令主媼將水而來，欲與之私，其人固拒，相與蹴板，聲聞于外。上覽此等事，傳曰：“豐川尉之事，不可勝言，雖庸人荒淫者，何以加此？”</p>
<p>성종 291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6월 20일 (정축) 3번째기사</p>	<p>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경기(京畿)는 한재(旱災)가 더욱 심하여 곡식이 모두 다 말라 이미 가을에 수확할 가망이 없으니, 청컨대 먼저 기우제(祈雨祭)를 행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가(可)하다.” 하였다.</p>	<p>○禮曹啓曰：“京畿旱災尤甚，禾稼盡枯，已失西成之望，請先行祈雨。”傳曰：“可。”</p>
<p>성종 291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6월 21일 (무인) 1번째기사</p>	<p>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부경력(府經歷) 김석견(金錫堅)이 전(前) 부장(部將) 이사준(李師準)을 보았더니, 이사준이 이르기를, ‘풍천(豐川)이 나더러 이르기를, 「내 첩(妾)이 진천(鎭川)에 있는데 여주(驪州)와 접경(接境)한 까닭으로 내가 때때로 여주 농사(驪州農舍)에 가서 첩(妾)을 불러 본다.’ 고 하였다.’ 하니, 청컨대 낭청(郎廳)</p>	<p>○(戊) [戊] 寅/義禁府啓：“府經歷金錫堅見前部將李師準，師準云：‘豐川謂我曰：『吾妾在鎭川，而與驪州接境，故吾時往驪州農舍，招妾見之。』’ 請分遣郎廳二員于驪州、鎭川，</p>

	<p>2원(員)을 여주(驪州)·진천(鎭川)에 나누어 보내어 잡아다 국문(鞫問)하고, 또 임광재(任光載)를 금부(禁府)에 불러다 신문(訊問)하게 하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p> <p>“가(可)하다. 그러나 임광재(任光載)를 금부(禁府)에서 신문(訊問)함은 마땅하지 못하다.”</p> <p>하였다. 이사준(李師準)이 아뢰기를,</p> <p>“풍천위(豐川尉)는 신(臣)의 집안이고, 어렸을 때에 일찍이 신에게 수업(受業)하였습니다. 지난달에 신의 집에 이르러 신(臣)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일 여주(驪州)로 돌아가는데, 그대도 나를 전송(餞送)하지 않겠는가?’ 하기에, 신(臣)이 인하여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신(臣)이 묻기를, ‘한창 심한 더위를 당하여 공(公)은 무엇 때문에 가는가?’고 하니, 이르기를, ‘여주(驪州)로부터 진천(鎭川)에 갔다가 돌아오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묻기를, ‘무엇 때문에 진천에 가는가?’고 하니, 말하기를, ‘진천(鎭川)에 농장(農莊)이 있고 첩(妾)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묻기를, ‘첩(妾)이라고 이르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고 하니, 말하기를, ‘그대가 어찌 다 알 수 있겠는가?’고 하여, 신이 다시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의 문답(問答)은 여기에 그쳤을 뿐입니다.”</p> <p>하고, 도승지(都承旨) 김응기(金應箕)가 아뢰기를,</p> <p>“이제 이미 낭청(郎廳)을 여주(驪州)·진천(鎭川)에 나누어 보내었으니, 만약 임광재를 불러다 신문하면 반드시 사실 그대로 고(告)할 것입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가(可)하다. 하지만 전자에 오부(五部)27760로 하여금 그 양첩(良妾)을 고(告)하게 하였는데, 그 고한 자는 모두 양첩이 아니었다. 지금 만약 경도(京都)의 호구(戶口)를 다 궁구[盡括]하여 모녀(某女)가 모부(某婦)가 되었음을 알면 거의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p> <p>하였다. 김응기(金應箕)·권경우(權景祐) 등이 아뢰기를,</p>	<p>捕鞫之。又招問光載于禁府。”傳曰：“可。然光載不宜於禁府問之。”師準啓曰：“豐川尉，臣之族也，少時嘗受業於臣，前月至臣家，語臣曰：‘吾明日歸驪州，汝不餞我乎？’臣因與飲酒，臣問曰：‘正當炎天，公何往焉？’曰：‘自驪州，欲向鎭川而返。’臣問曰：‘何因往鎭川？’曰：‘鎭川有農莊，又有妾。’臣問曰：‘所謂妾者，何人耶？’曰：‘汝安得盡知之乎？’臣不得更問之，臣之問答，止此而已。都承旨金應箕啓曰：“今已分遣郎廳于驪州、鎭川，若招問光載，則必以實告矣。”傳曰：“可。前者令五部，告其良妾，而其所告者，皆非良妾，今若盡括京都戶口，知某女爲某婦，則庶可得矣。”金應箕、權景祐等啓曰：“青玉招辭，有伊川戶長等語，無乃雜伊川、鎭川而混語之乎？今觀師準之語，似爲的實，待辨覈此事，依上教，令五部盡括戶口。”傳曰：“豐川尉，豈得盡諱乎？招問而處之，可也。”金應箕啓曰：“凡罪囚必無病，然後加拷訊，病雖輕，不加拷訊，例事也。今此獄辭，所關甚大，病輕者，命加拷訊，囚人受杖之餘，氣</p>
--	--	--

“청옥(靑玉)의 초사(招辭)에 이천 호장(伊川戶長) 등의 말이 있으니, 바로 이천(伊川)·진천(鎭川)을 섞어서 혼동해서 말함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사준(李師準)의 말을 보건대 적실(的實)한 것 같으니, 이 일을 변핵(辨覈)하기를 기다려, 상교(上敎)를 따라 오부(五部)로 하여금 호구(戶口)를 다 궁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풍천위(豐川尉)가 어찌 다 은휘(隱諱)할 수 있겠는가? 초문(招問)해서 처리함이 좋겠다.”

하였다. 김응기(金應箕)가 아뢰기를,

“무릇 죄수(罪囚)에게는 반드시 무병(無病)한 뒤에야 고신(拷訊)을 가(加)하니, 병(病)이 비록 가볍더라도 고신을 더하지 않음이 예사(例事)입니다. 이제 이 옥사(獄辭)는 관계되는 바가 심히 크니, 병이 가벼운 자는 명하여 고신(拷訊)을 더하고, 수인(囚人)으로 장(杖)을 받은 나머지 기운이 매우 쇠약하여 운명(隕命)할 자가 많을까 염려스러우니, 청컨대 예(例)에 따라 차도(差度)를 기다려 형신(刑訊)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의원(醫員)이 진찰할 때에 혹 수인(囚人)의 청(請)을 받아 가벼운 병을 무거운 병이라고 하는 폐단이 없지 않다. 이 일은 관계되는 바가 심히 크니, 그 가운데에 죄괴(罪魁)27761)는 끝내 전형(典刑)에 당하여 비록 옥중(獄中)에서 죽더라도 생각건대 아까울 것이 없다. 그러나 진찰할 즈음에 자세히 살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하니, 김응기가 아뢰기를,

“신(臣)이 아뢰는 것은 죄괴(罪魁)를 이름이 아니고, 다만 죄없는 자가 장하(杖下)에서 죽을까 염려한 것일 뿐입니다.”

하였다.

甚瘦弱，恐隕命者多矣。請依例待差刑訊。”傳曰：“醫員於診候之時，或受囚人之請，不無以輕爲重之弊，此事則所關甚大，其中罪魁，終當典刑，雖死於獄中，顧無所惜，但診候之際，不可不詳審也。”應箕啓曰：“臣之所啓，非謂罪魁也。但恐無罪者死於杖下耳。”

성종 291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6월 21일
(무인) 2번째기사

풍천위(豐川尉) 임광재(任光載)가 와서 아뢰기를,
 “신(臣)은 중외(中外)에 본시 양첩(良妾)이 없습니다. 진천(鎭川)에 사는 전(前) 죽산 현감(竹山縣監) 민오(閔悟)의 처(妻)는 바로 한백륜(韓伯倫)의 누이이며, 공주(公主)를 수양(收養)27762) 으로 삼았으므로, 지난해 겨울에 신(臣)이 민오(閔悟)의 처(妻)와 신의 소노(小奴) 2구(口), 비(婢) 1구(口)를 보고 돌아왔습니다. 신(臣)이 취(醉)하여 이사준(李師準)과 더불어 말하다가 이 일에 미쳐서 이르기를, ‘그 종이 아름답고 예뻐서 비록 함께 희롱(戲弄)하더라도 내 마음에 싫지를 았더라.’고 하였고, 신의 말은 여기에 그쳤을 뿐이며, 달리 말한 바도 없었습니다. 신이 비록 첩(妾)을 삼았더라도 어찌 이사준에게 다 말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경(卿)은 상인(常人)이 아니다. 경(卿)의 첩이 심히 많아서 취첩(娶妾)할 즈음에 위법(違法)한 일도 또한 많았다. 그 양첩(良妾)을 취(娶)한 사상(事狀)이 명백(明白)한데도 오히려 은휘(隱諱)하고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경(卿)의 한 집안 노복(奴僕)이 아울러 체포되어 간혔으니, 경이 와서 사죄하기를, ‘제가 가장(家長)으로서 이런 변(變)을 초치하였으니, 황공(惶恐)하여 대죄(待罪)합니다.’고 함이 마땅하거늘,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이미 잘못하였다. 이 모두가 내 살피서 알지 못한 소치(所致)이다. 양첩(良妾)의 일은 대비(大妃)께서 다 아시는 바이고 명백하여 숨기기가 어려운데, 경은 이미 대비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내 신문을 받는 데 미쳐서도 또 어찌 두려워하지 않고서 사실 그대로 대답하지 않는가? 경(卿)이 양첩(良妾) 때문에 유온(乳媪) 집에 간 것을 본 사람도 있으니, 끝내 은휘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卿)이 이제 만약 스스로 사실대로 말하면 수형자(受刑者)들은 모두 마땅히 방면(放免)될 것이다. 한창 심한 더위를 당하여 내가 어찌 사람을 형신하기를 좋아하겠는가? 진실로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다. 경은 반드시 ‘내가 부마(駙馬)인데

○豐川尉任光載來啓曰：“臣於中外，本無良妾，鎭川居前竹山縣監閔悟妻，乃韓伯倫之妹也，以公主爲收養，前年冬，臣歸見悟妻，與臣小奴二口、婢一口，臣乘醉，與李師準語及此事曰：‘其婢美好，雖與之戲弄，於吾心不厭。’臣言之止此而已，他無所說。臣雖爲妾，豈與師準盡言之哉？”傳曰：“卿非常人也，卿妾甚多，而娶妾之際，違法之事亦多，其娶良妾，事狀明白，而猶隱諱不實，何耶？卿一家奴僕，竝被逮繫，卿宜來謝云：‘吾以家長，致有此變，惶恐待罪。’而猶不爾，旣爲非矣，此皆予不諒所致也。良妾之事，大妃所悉，而明白難掩，卿旣不畏大妃，及承予問，又何不畏，而不以實對耶？卿以良妾往乳媪家，人有見之者，終難諱之，卿今若自實，則受刑者皆當放免，正當炎暑，予豈好刑人哉？誠出於不得已也。卿意必以爲，我是駙馬，安得拷訊，而固諱也，必須刑問，然後愧服耶？予平日待卿，無異同產，及至今日，卿何負予耶？卿其直言之。”光載啓曰：“臣伏聞上教，萬死無悔，然臣之鄙懷，不可不陳。臣本寒門小兒，

어찌 고신(拷訊)할 수 있겠느냐?’고 생각하여 굳이 은휘하려 하겠지만, 반드시 형문(刑問)한 뒤에야 수치스러워 복초(服招)하겠는가? 내가 평일에 경을 동기[同産]와 다름없이 대접하여 오늘에 이르렀는데, 경은 어찌 나를 저버리는가? 그러니 경은 직언(直言)토록 하라.”

하였다. 임광재(任光載)가 아뢰기를,
 “신(臣)이 엿드려 상교(上敎)를 들으니, 만 번 죽어도 후회됨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臣)의 비회(鄙懷)를 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은 본래 한미(寒微)한 집안의 소아(小兒)로서 유취(乳臭)함을 면하지 못하였는데, 그릇되게 천은(天恩)을 입어 날로 용광(龍光)을 가까이 한 지 거의 20년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천眷(天眷)27763 이 너무 지나쳐 항상 죽어서도 은혜를 갚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때로는 혹 조정(朝廷)에서 물러나와 공주(公主)에게 이르기 를, ‘상은(上恩)이 망극(罔極)하니 입으로는 다 진술(陳述)하기 어렵다.’고 하고, 혹은 계수(稽首)27764 하고 축수(祝手)하기를, ‘우리 주상(主上)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니, 공주도 또한 초연(愀然)히 감동함이 있어 해를 향하는 해바라기의 정성이 창창(蒼蒼)한 듯함이 있었습니다. 신이 어찌 감히 우리러 천聰(天聰)을 속이겠습니까? 취첩(娶妾)한 일은 벗과 희학(戲謔)할 즈음에 취중(醉中)에 잘못 범한 것입니다. 위법(違法)한 일은 비록 신의 소위(所爲)가 아니더라도 여러 사람이 장형(杖刑)을 두려워해서 무복(誣服)한 것입니다.

신은 더위를 앓은 지 여러 해이며, 올 여름에도 여주(驪州)로부터 돌아와서 늘 누운 채로 죽물[粥水]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가변(家變)을 들은 이래로는 더욱 한 잔(盞)의 물도 마실 수가 없어 꺾하(闕下)에 대죄(待罪)하려고 하였으나 촌보(寸步)도 스스로 걸을 수가 없었으며, 국가(國家)에서 또 변정(辨正)하는 까닭으로 이제까지 대죄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신이 죽을 땅에 이르지 못하고 추창하여 변정해서 아뢰지 못하였으니, 신은 만번 죽어도 회한

未免乳臭，謬蒙天恩，日近龍光，幾二十年，況天眷太過，常懷結草隕首之情，時或朝退，謂公主曰：‘上恩罔極，口難盡陳，或稽首祝手曰：『吾主上之恩，何以報之?』’公主亦愀然有感，向日葵誠，有如蒼蒼，臣何敢仰罔天聰乎？娶妾之事，朋友戲謔之際，醉中誤犯耳，違法之事，雖非臣之所爲，諸人畏杖而誣服也。臣病暈有年，今夏自驪州而還，長臥不準粥水，聞家變以來，尤不能飲一盞水，欲待罪闕下，而寸步不能自致，國家方辨正，故至今不待罪耳。但臣未至死地，而不趨啓辨正，臣萬死無悔。良妾之事，非臣所爲，如有所爲而後現，則臣罪不容誅，此專由臣家兒造作之辭，亦由臣之不肖，罪當甘受。乳媪家往來事，此亦臣家兒婢貴今誣飾之辭也。前年祖母死，哀毀之餘，不與外事，今年春，一往乳媪家而已，如有見者，與臣對面，以正是非，臣所望也。侍駙馬不畏拷訊，此臣夢寐所不料，安有是理乎？公主性素不和，而大伊亦奸暴，臣年十四五，男奴、女僕，皆受侵虐，訴於臣，臣覈之則果驗矣。臣即啓於大妃，其

(悔恨)은 없습니다. 양첩(良妾)의 일은 신의 소위(所爲)가 아닙니다. 만일 소위가 있어서 뒷날에 나타나면 신의 죄는 죽음도 용납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오로지 신의 집 아이가 조작(造作)한 말에 연유한 것이며, 또한 신의 불초(不肖)함에 연유함이니, 죄는 마땅히 감수(甘受)하겠습니다.

유온(乳媼)의 집에 왕래(往來)한 일 또한 신의 집 아비(兒婢) 귀금(貴今)이 거짓으로 꾸며낸 말입니다. 전년(前年)에는 조모(祖母)가 죽어 슬퍼한 나머지 밖의 일은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 봄에 한 번 유온(乳媼)의 집에 갔을 뿐인데, 만일 본 자가 있다면 신(臣)과 대면(對面)하여서 시비(是非)를 바로잡음이 신의 소망(所望)입니다. 부마(駙馬)임을 믿고 고신(拷訊)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함은 신이 몽매(夢寐)에도 헤아리지 못한 바이니, 어찌 이럴 이치가 있겠습니까? 공주(公主)의 성품은 본디 화합하지 못하며, 대이(大伊)도 또한 간사하고 포악합니다. 신(臣)의 나이 14, 5세 때에 남노 여복(男奴女僕) 모두가 침학(侵虐)을 받고 신에게 호소하였는데, 신이 핵실한즉 과연 증험이 있어 신은 즉시 대비(大妃)에게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신은 어리고 용렬하였고 대이(大伊)는 용사(用事)한 까닭으로 도리어 신의 노(奴)를 죄주었습니다. 그 뒤에 대이(大伊)가 부부(夫婦)가 화합(和合)하면 형세가 용사(用事)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여, 소비(小婢)와 동모(同謀)하여 신과 비(婢) 옥금(玉今)이 통간(通奸)하였다고 공주에게 고(告)하여 옥금을 나주(羅州)에 내치었으니, 이는 오로지 대이(大伊)의 소위에 연유한 것입니다. 신의 집 변고(變故)가 이 지경에 이르렀음은 일이 모두 신에게서 연유하였으니, 한번 죽어도 회한(悔恨)이 없습니다.”

하니, 승지(承旨) 권경우(權景祐)에게 전교하기를,
“임광재(任光載)가 아뢰었던 일을 마땅히 일일이 써서 아뢰어라. 임광재(任光載)의 말이 옳은가?”
하자, 권경우(權景祐)가 아뢰기를,

時臣則微劣，而大伊用事，故反罪臣奴，其後大伊意謂，夫婦和合則勢難用事，與小婢同謀，謂臣與婢玉今通奸，告于公主，斥玉今于羅州，此專由大伊所爲也。臣家變故，至於此極，事皆由臣，萬死無悔。”傳于承旨權景祐曰：“任光載所啓之事，宜一一書啓，光載之言，是乎？”權景祐啓曰：“光載多發不道之語，臣豈不知光載之言之非耶？”

	<p>“임광재는 부도(不道)한 말을 많이 발설하였습니다. 신이 어찌 임광재의 말이 그릇됨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하였다.</p>	
<p>성종 291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6월 24일 (신사) 2번째기사</p>	<p>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이세좌(李世佐)·도사(都事) 남세주(南世周)가 와서 아뢰기를, “신(臣)이 제읍(諸邑)으로 하여금 화곡(禾穀)의 상황을 신보(申報)하게 하였더니, 인천 부사(仁川府使)가 보고하기를, ‘화곡(禾穀)은 비록 먹을 만한 곳도 조금은 있기도 하나 거의 다 말라 죽어 다시 소생할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거주하는 백성으로 하여금 구황(救荒)할 물자(物資)를 예비(預備)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신은 이를 듣고 놀라고 두려워서 아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새 감사(監司)로 하여금 도계 진상(到界進上)을 제외하게 하고, 마땅히 즉시 발정(發程)하여 제읍(諸邑)을 순찰하면서 농사(農事)를 살펴보고 겸하여 수령(守令)의 말을 채집해서 황정(荒政)을 대비함이 좋겠다.” 하였다.</p>	<p>○京畿觀察使李世佐、都事南世周來啓曰：“臣令諸邑申報禾穀之狀，仁川府使報云：‘禾穀雖稍有可食之處，大率盡枯，無有復蘇之理，請令居民預備救荒之資。’ 臣聞之驚懼，不得不啓。” 傳曰：“令新監司，除到界進上，當即發程，巡按諸邑，審察農事，兼採守令之言，以備荒政，可也。”</p>
<p>성종 291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6월 27일 (갑신) 1번째기사</p>	<p>일본 국왕 사(日本國王使) 원국(元躬) 등이 하직하니, 그 답서(答書)에 이르기를, “삼가 일본 국왕(日本國王) 전하께 답장을 드립니다. 바닷길이 멀어서 전사(專使)의 간찰(簡札)로 체후(體候)가 청유(淸裕)하심을 살피었고, 인하여 좋은 선물을 받았으니, 위안이 됩니다. 우리 나라는 귀국(貴國)의 사개(使价)277777가 올 때에, 항상 그 관대(館待)를 융숭하게 하여 예(禮)로써 접우(接遇)하였고, 성신(誠信)하게 오래도록 인호(隣好)를 돈독히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온 사신은 한갓 사사로운 청탁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과인(寡人)이 연위(宴慰)하는 날을 당하여 거절하고서 나오지 않았고, 얼굴에 분(憤)한 빛을 띠고 말을 거칠게 하였으니, 이웃 나라에 무례(無禮)함이 어찌 이와</p>	<p>○甲申/日本國王使元躬等辭。 其答書曰： 奉復日本國王殿下。 海路復遠，專使辱簡，具審體履淸裕，仍承嘉貺，慰荷慰荷。 敝邦，於貴國使价之來，常隆其館待，接遇以禮，所以致誠信，永敦隣好也。 今此來使，徒以未遂私請，當寡人宴慰之日，拒而不赴，色憤言悖，無禮於隣國，安有如是之理？ 況銅鐵之價，分三色以給，國有成法，黃</p>

	<p>같은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동철(銅鐵)의 값은 3색(三色)으로 나누어서 주는 것이 나라의 법으로 정해져 있음이겠습니까? 황금(黃金)·주홍(朱紅)은 아울러 사무(私賈)를 하도록 이미 영칙(令飭)한 조문(條文)이 있습니다. 나라가 있고 법이 있음은 귀국(貴國)도 같은 바인데, 이로써 마음에 차지 않는다고 그 조급한 노여움을 발(發)하니, 어찌 사방(四方)에 사신으로 가서 군명(君命)을 욕(辱)되게 하지 않는 자라고 이르겠습니까? 비록 그러나 이것은 스스로 체통을 잃은 것이니, 두 나라의 수호(修好)에 어찌 혐의가 있겠습니까? 보이신 바 묘승사(妙勝寺) 조연(助緣)의 수용(需用)은 회사(回使)에게 붙여 보내며, 또 토의(土宜)를 가지고 아울러 별폭(別幅)에 기록하니,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오직 때에 순하여 진중(珍重)하시기 바라며, 드릴 말씀은 많으나 다하지 못합니다.”</p> <p>하였는데, 그 별폭(別幅)에는 백세면주(白世綿紬) 10필(匹), 백세주포(白細苧布) 10필(匹), 흑세마포(黑細麻布) 10필(匹), 인삼(人蔘) 1백 근(斤), 표피(豹皮) 5장(張), 호피(虎皮) 5장(張), 잡채화석(雜彩花席) 10장(張), 만화석(滿花席) 10장(張), 만화방석(滿花方席) 10장(張), 표피심 호피변 녹비리 좌자(豹皮心虎皮邊鹿皮裏坐子) 1사(事), 남사피(藍斜皮) 10령(領), 대요발(大鏡鉢) 1사(事), 중요발(中鏡鉢) 1사(事), 유쟁(鑰錚) 1사(事), 중경(中磬) 1사(事), 운판(雲板) 1사(事), 법고(法鼓) 1면(面), 납촉(蠟燭) 1백 병(柄), 해송자(海松子) 5백 근(斤), 청밀(淸蜜) 20두(斗), 후지(厚紙) 10권(卷), 조연 면주(助緣綿紬) 3백 필(匹), 면포(綿布) 3백 필(匹), 정포(正布) 40 필(匹)이었다.</p>	<p>金、朱紅，竝令私易，已有令條，有國有法，貴國所同，以此未慊，發其躁怒，豈所謂使於四方不辱君命者乎？雖然，此自失體，兩國修好，何嫌？所示妙勝寺助緣之需，就付回使，且將土宜，并錄別幅，切希領留，餘惟若時珍重，萬萬不宣。</p> <p>別幅。白細綿紬一十四、白細苧布一十四、黑細麻布一十四、人蔘一百斤、豹皮五張、虎皮五張、雜彩花席一十張、滿花席一十張、滿花方席一十張、豹皮心虎皮邊鹿皮裏坐子一事、藍斜皮一十領、大鏡鉢一事、中鏡鉢一事、鑰錚一事、中磬一事、雲板一事、法鼓一面、蠟燭一百柄、海松子五百斤、淸蜜二十斗、厚紙一十卷、助緣綿紬三百匹、綿布三百匹、正布四十四。</p>
<p>성종 292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弘治) 7년) 7월 3일 (기축) 2번째기사</p>	<p>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소이전(小二殿)의 사송(使送) 조수좌(照首座) 등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진상(進上)한 물건 값을 신정(新定)한 수(數)를 따라 감(減)하여 주었으니, 한 관(館)에 동접(同接)한 자로 그 법(法)을 시행하기 전에 온 자이면 모두 옛과 같이 값[價]을 받는데, 우리들만 홀로 감하여 줌은 어찌된 것인가?’ 하며, 그</p>	<p>○禮曹啓：“小二殿使送照首座等言：‘我輩進上物價，從新定數減給之，同接一館者，其法前來者，則皆如舊受價，我輩獨減給云何？’其怨言如是，雖給價物，亦不肯受，欲還所進，勢又</p>

원망하는 말이 이와 같으니, 비록 값을 준 물건이라 하더라도 또한 즐겨 받을 수가 없고 바친 것을 돌려주려고 하나 형세가 또 불가(不可)하니, 어떻게 이를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또 말하기를, ‘일찍이 이와 같음을 알았으면 이번에는 물건(物件)은 마땅히 다 서계(書契)27790)에 기재하여 왔을 것이다.’ 하였으니, 혹시라도 이와 같이 하면 후일(後日)에 또 지탱할 수가 없을 것이니, 이것도 염려할 만한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만약 소원(所願)을 따른다면 구령[溪壑]과 같은 욕심을 채우기가 어렵고, 만약 납부한 물건을 돌려주면 먼 곳에서 온 사람을 대접하는 의리가 아니다. 또 백단향(白檀香)·호초(胡椒) 등의 물건이 이제 우리 나라에 저장한 것이 많다 하여, 한결같이 모두 환급(還給)하다가 다른 날에 만약 저장한 것이 다하게 되면 갑자기 비축하기가 어려우니,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는가? 그것을 정부(政府)와 육조(六曹)에 의논하라.”

하였다. 노사신(盧思愼)·윤호(尹壕)·이극돈(李克墩)·성준(成俊)·성건(成健)·유순(柳洵)·한한(韓儻)·박안성(朴安性)·김극검(金克儉)·김극유(金克宥)·안우건(安友鵞)은 의논하기를,

“대저 천(賤)한 것은 소용(所用)이 없는 데서 생깁니다. 정향(丁香)·백단향(白檀香) 같은 것은 우리 나라에서 쓰이는 것이 매우 적으니 받을 수 없으며, 저들의 무용(無用)한 물건 때문에 우리의 유용(有用)한 재화를 허비하니, 이제 값을 감(減)하여서 장래(將來)의 폐단을 막음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제 값을 감한 수를 살펴보건대 구례(舊例)에 비하여 크게 서로 현절(懸絶)27791) 합니다. 구례(舊例)에는 정향(丁香) 8냥(兩)에 정포(正布)가 1필(匹)이었는데, 이제는 5근(斤)에 1필이며, 백단(白檀) 7냥(兩)에 정포(正布) 1필이었는데, 이제는 8근(斤)에 1필입니다. 이에 의거해서 논하면, 저들의 실망도 과연 그러합니다. 그러나 조정(朝廷)에서 이미 지금의 감(減)한 수(數)로써 답사(答賜)하였

不可, 何以處之? 又言: ‘早知如此, 今來物件, 固當盡載書契而來.’ 倘或如是, 則後日又不能支矣, 是又可慮也.” 傳曰: “若從所願, 則溪壑之欲難盈, 若還所納之物, 非待遠人之義, 且白檀、胡椒等物, 今以我國所儲之多, 一皆還給, 他日若所儲竭盡, 則難以卒備, 何以處之? 其議于政府、六曹.” 盧思愼、尹壕、李克墩、成俊、成健、柳洵、韓儻、朴安性、金克儉、金克宥、安友鵞議: “大抵賤生於無所用, 如丁香、白檀, 於我國所用甚微, 則不可受, 彼無用之物, 以費吾有用之貨, 今宜減價, 以杜將來之弊。但今審減價之數, 視舊例, 大相懸絶, 舊例丁香八兩正布一匹, 今則五斤一匹, 白檀七兩正布一匹, 今則八斤一匹, 據此而論, 則彼之失望果然。然朝廷, 既以今減之數答賜, 彼不肯受, 然後加數, 則於事體未穩, 當語之曰: ‘汝之某某物, 我國所不緊用, 其價自輕, 不可加數, 然既納官, 姑從汝願, 於舊例減半給之.’ 且語之曰: ‘今後雖載書契而來, 亦不能聽從也.’ 借曰國用竭盡, 則時所蓄多, 而彼之持此求

으니, 저들이 즐겨 받지 않은 뒤에야 수(數)를 더하게 되면 사체(事體)에 온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마땅히 저들에게 말하기를, ‘너의 아무아무 물건은 우리 나라에서 긴요하지 않은 것이니, 그 값이 스스로 경(輕)하여 수(數)를 더할 수 없다. 그러나 이미 관(官)에 납부하였으니, 아직은 너희 소원을 따라 구례(舊例)에 반을 감하여 주겠다.’ 하고, 또 말하기를, ‘금후로는 비록 서계(書契)에 기재하여 왔더라도 청종(聽從)할 수 없다.’고 하소서. 가령 국용(國用)이 다했다고 하면, 때로 저축하기를 많이 하여 저들이 이를 가지고 와서 값을 구할 것이니, 비록 금(禁)한다 하더라도 또한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 쓰임이 다함을 염려하겠습니까? 해사(該司)로 하여금 우리 나라에 긴요하지 않은 물건임을 역력히 들어서 삼포(三浦)27792)에 알리어 가지고 옴을 허락하지 마소서.”

하고, 윤효손(尹孝孫)은 의논하기를,

“대국(大國)이 먼 곳에서 온 사람을 대접하는 도리는 경솔히 구례(舊例)를 개정함이 옳지 못하니, 개정하는 것도 또한 미리 통지하여서 믿음을 보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신(臣)이 예조 정랑(禮曹正郎)이 되었을 때에, 제주 왜인(諸酋倭人)이 소목(蘇木)·동(銅)·납(鐵)·철(鐵) 등 다수(多數)를 진상(進上)하여 국가에서 답사(答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소목·동·납·철 등은 우리 나라에서 쓰지 않는 물건이기에 뒤로는 진상(進上)하지 말라는 일을 통유(通諭)한 뒤에 소목·동·철 등의 물건이 희귀(稀貴)하여졌습니다. 대종(大鍾)을 주조하기에 이르러서는 때로 무역(貿易)하여 썼습니다. 무릇 물건은 비록 때에 따라 귀(貴)하고 천(賤)하기도 하나, 미리 그 뜻을 통지하지 않고서 이제 한 관(館)에 동접(同接)한 객인(客人)에게 혹은 구례(舊例)에 의하여 값을 주고 혹은 신법(新法)을 따라 너무 감(減)하였으니, 저 사람들이 단지 구례만 있음을 알지 어찌 오늘날 물건이 천하여서 값이 경(輕)함을 알겠습니까? 그 실망(失望)함도 괴상하게 여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에게 말하기를, ‘입법(立法)하는

價, 雖禁之, 亦不絶矣, 何慮用之竭盡乎? 令該司歷學我國不緊之物, 知會三浦勿許持來。” 尹孝孫議: “大國待遠人之道, 不宜輕改舊例, 改之, 亦當預通以示信, 臣爲禮曹正郎時, 諸酋倭人蘇木、銅、鐵、鐵, 多數進上, 國家難於答賜, 蘇木、銅、鐵、鐵, 我國不用之物, 後勿進上事通諭, 後蘇木、銅鐵等物稀貴, 至鑄大鍾, 時貿易用之, 凡物雖隨時貴賤, 不預通其意, 而今於一館同接客人, 或依舊例給價, 或從新法太減, 彼人只知有舊例耳, 安知今日物賤而價輕乎? 其失望, 無足怪者, 今語之曰: ‘立法之初, 不宜輕變, 今聞汝言, 果不曾諭而減給, 未安, 姑從權典, 更啓從優答賜。’ 且於島主及諸酋處, 白檀香、丁香等物, 我國無用, 今後勿進事, 書諭。” 許琛、許誠、金諶、朴元宗議: “今考減價之數, 新舊懸絶, 彼之訴冤情亦宜然, 然既立其制, 又從而增損, 有妨大體, 但彼不知此法而賚來, 則遽減舊價, 非所以柔遠人之意也, 姑從權宜, 於定價外, 稱特賜, 量數給之, 以慰其心。 又諭以今後不問書契載不載, 一從國法之意, 爲便。

처음에 경솔히 변경함은 마땅하지 못하다. 이제 너희 말을 들으니, 과연 일찍이 효유하지 않고서 감하여 주었음은 미안(未安)하다. 아직은 권전(權典)을 따라 다시 넉넉히 답사(答賜)하도록 아뢰겠다.’ 하고, 또 도주(島主)27793) 와 제주처(諸酋處)에 백단향(白檀香)·정향(丁香) 등의 물건은 우리 나라에서 쓸모가 없으니, 금후로는 진상(進上)하지 말라는 일을 문서(文書)로 유시(諭示)하소서.”

하고, 허침(許琛)·허계(許誠)·김심(金諶)·박원종(朴元宗)은 의논하기를, “이제 값을 감한 수를 상고하건대 신(新)·구(舊)가 현절(懸絶)하니, 저들이 원정(冤情)을 하소연함도 또한 그러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 제도를 세웠으니, 또 따라서 증손(增損)함은 대체(大體)에 해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이 법(法)을 알지 못하고서 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예전의 값에서 감하여 주는 것도 먼 곳에서 온 사람의 뜻을 너그럽게 하는 소이(所以)가 아닙니다. 아직은 권의(權宜)를 따라 정한 값 외에 특사(特賜)라 일컫고 수(數)를 헤아려 주어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금후로는 서계(書契)에 기재하고 기재하지 않음을 불문(不問)하고, 한결같이 국법(國法)을 따르겠다는 뜻을 유시(諭示)하심이 편하겠습니다. 또 백단향(白檀香)·정향(丁香)은 쓰기에 긴요하지 않으며, 이제 저장한 것도 이미 많이 있으니 어찌 다함을 우려하겠습니까? 비록 혹 다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저들의 무용(無用)한 물건을 받으려고 우리의 유용(有用)한 재화를 허비하는 것보다는 더 나을 것입니다. 더구나 저들의 나라에서 생산되는 수(數)가 있으니, 이제 비록 값을 감하였더라도 저자[市]에서 이 물건을 구하게 되면 저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고, 권경희(權景禧)는 의논하기를, “정향(丁香)·백단(白檀)의 값은 처음에 이미 의논을 절충하여 정하였는데, 왜인(倭人)이 분원(憤怨)한다고 하여 먼저 값에 의하여 주는 것은, 이는 국법(國法)을 지킴이 견고하지 못함이며, 폐단도 또한 적지 않을 것입니다. 마땅히

且白檀、丁香，用之不緊，而今所蓄既多，則何憂乎竭盡？雖或竭盡，猶有愈於受彼無用之物，費吾有用之貨也，況彼土所產有數，今雖減價，求市此物，彼不得不爾。” 權景禧議：“丁香、白檀之價，初既擬議折定，而以倭人憤怨，依前價給之，則是不堅守國法，而弊亦不貲，當語之曰：‘此物件，國用不爲不足，然汝等既納，姑從汝願，量數加給，今後當依此數，勿更請加。’，則法約不至輕毀，而彼人之望亦不缺。” 傳曰：“白檀、丁香，雖曰不緊，然於國用，所不可無者也。今所以減價者，以其多積而無用也，然減之太過，彼之失望宜矣。當諭之曰：‘我國既已立法，不可輕改，但爾等之來，在法前，故今姑加給，且令戶曹，酌定其價，以爲經遠之法。’”

	<p>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물건(物件)은 국용(國用)에 부족하지 않으나 너희들이 이미 납부하였기에 아직은 너의 소원을 따라 수(數)를 헤아려 더 주겠다. 그러나 금후로는 이 수(數)에 의하여 다시는 청하지 말라.’고 하면, 법(法)의 약속이 가볍게 훼손하는 데 이르지 않으며, 저 사람들의 소망도 또한 이지러지지 않을 것입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백단(白檀)·정향(丁香)이 비록 긴요하지 않다고 하나, 국용(國用)에 없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 값을 감하는 까닭은 그것이 많이 쌓여서 쓸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減)함이 너무 지나치면 저들의 실망(失望)함도 의당한 것이니, 마땅히 효유하기를, ‘우리 나라에서 이미 입법(立法)하였으니, 경솔히 개정할 수 없으나, 다만 너희들이 온 것은 법을 정하기 전에 있었던 까닭으로 지금은 우선 더 준다.’ 하고, 또 호조(戶曹)로 하여금 그 값을 작정(酌定)하여 원대하게 경영하는 법(法)으로 삼도록 하라.”</p> <p>하였다.</p>	
<p>성종 292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7월 5일 (신묘) 4번째기사</p>	<p>대마도 경차관(對馬島敬差官) 권주(權柱)가 통사(通事)를 보내어 치계(馳啓)하기를,</p> <p>“신(臣)이 이달 24일에 본도(本島)27802) 구다포(仇多浦)에서 배[船]로 출발하여 26일에 완우라포(完于羅浦)에 돌아와 정박하고, 27일 묘시(卯時)27803)에 길을 떠나 바다를 건너서 이날 밤 8경(更)에 동래(東萊)의 부평포(富平浦)에 도착하여 듣고 본 사건을 동봉(同封)하여 올려 보냅니다.</p> <p>6월 초1일에 대마도(對馬島) 오온포(五蘊浦)에 도착(到泊)27804) 하니, 다음날 밤에 진강 오랑(津江五郎)이 도주(島主)의 서계(書契)를 가지고 와서 이르기를, ‘도주(島主)가 아무로 하여금 관인(官人)이 바다를 건너기 전에 나아가서찰을 바치게 하였는데, 오늘 길에서 차랑 구랑(次郎九郎)을 만나 벌써 본도(本島)에 정박하였음을 들은 까닭으로 여기에 왔습니다.’고 하고는 이어서 도</p>	<p>○對馬島敬差官權柱遣通事馳啓曰： “臣本月二十四日， 本島仇多浦發船， 二十六日， 完于羅浦回泊， 二十七日卯 時， 離發渡海， 是日夜三更， 到東萊富 平浦。 聞見事件， 同封上送。 六月初 一日， 對馬島五蘊浦到泊， 翼日夜， 津 江五郎持島主書契來云： ‘島主令某， 趁官人未渡海呈書， 而今日道逢次郎九 郎， 聞已泊本島， 故來此。’ 仍傳島主 之言曰： ‘下松浦發兵千艘， 來攻一岐 島， 恐因而作賊我境， 今當官人之行，</p>

주의 말을 전하기를, ‘하송포(下松浦)에서 출발한 군사 천수(千艘)가 와서 일기도(一岐島)를 공격하니, 인하여 우리의 지경에서 도둑질을 할까 두렵습니다. 이제 관인(官人)의 행차를 당하여, 혹 길이 막힐까 염려되기에 아무로 하여금 글을 바치게 하였습니다.’고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일기(一岐)의 일은 귀도(貴島)와 더불어 본시 서로 관계되지 않았으니, 반드시 귀도를 침범하지 않을 것인데, 하물며 나에게 침범하겠는가?’고 하니, 오랑(五郎)이 이르기를, ‘서로 싸운 지가 이미 오래 되었으니, 형세가 반드시 양식이 다하여 제도(諸島)에 흩어져 들어갔을 것입니다. 만약 대국(大國)의 배가 온다는 것을 들으면 반드시 모란(耗亂)할 마음이 일어날 것이니, 이것이 도주의 뜻입니다. 본도(本島)에서 사람을 일기(一岐)에 보내어 방금의 적변(賊變)을 탐지하겠으니, 원컨대 관인(官人)은 우선 여기에 머무소서.’ 하기에, 대답하기를, ‘일기(一岐)의 적(賊)이 어찌 여기에서 도둑질을 할 수 있겠는가? 가령 있다고 하면 귀도(貴島)에 있어서는 속히 내지(內地)로 영입(迎入)27805 함이 마땅한데 어찌 나를 바다 가운데 외로운 땅에 머물게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이어서 도주(島主)의 서찰에 답(答)하였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일기(一岐)의 변(變)은 보내 준 글을 받아 자세히 다 알았오. 그러나 저들이 스스로 혼단(釁端)을 만들어 병란을 연(連)하여 일으킬 뿐이며, 그가 귀도(貴島)에는 전연 서로 관계되지 않았으니, 진실로 귀경(貴境)에 깊이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깊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또한 감히 나에게 가까이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존찰(尊札)은 지난달 28일에 작성하였는데 어제 밤에야 이르렀으니, 만약 내가 이곳으로 오기 전에 와서 일찍이 서로 유시(諭示)를 보았으면 마땅히 이 뜻으로써 전하(殿下)께 계품(啓稟)하였을 것인데, 귀사(貴使)가 늦었으니, 이것이 한스러운 일입니다. 나머지는 직접 보고 말하겠습니다.’고 하였더니, 오랑(五郎)은 떠나고, 조국차(助國次)가 적변(賊變)을 염려하여 화포(火炮)를 가져왔는가 가져오지 않았는가를 물었습니다. 국차(國次)와 제왜인

慮或路梗，使某呈書。’ 臣答曰：‘一岐之事，與貴島，本不相干，必不犯貴島，況犯於我乎?’ 五郎曰：‘相戰已久，勢必糧盡，散入諸島，若聞大國船至，必有作耗之心，此島主之意也。本島送人一岐，方探賊變，願官人姑留此。’ 答曰：‘一岐之賊，何得竊發於此，假使有之，在貴島，宜速迎入內地，豈可留我於孤絕之地乎?’ 仍答島主書，其略曰：‘一岐之變，承示已悉，然彼自構釁連兵耳，其於貴島，絕不相干，固不深入貴境，縱使深入，亦不敢近我，但辱扎，成於前月二十八日，而昨夜乃至，若趁僕未來，早相見諭，則當以是意，啓稟殿下，而貴使遲緩，是可恨也。餘俟面宣。’ 五郎去，助國次慮賊變，問火炮來否，國次及諸倭人，各自守船，委遣帶行倭人，請使防衛。臣既聞一岐之事，又聞齊浦之人，潛來覘伺，不可不戒備，令軍官許城等，執弓劍竟夜，自是每夜戒嚴，率以為常。初七日，因平沙也門、助國次等，聞島主自四月有疾，至五月晦時增劇而得小愈，今五六日，方津江五郎之來，正當病劇，而謂臣尚未渡海，欲諱之，及渡

(諸倭人)이 각각 스스로 배를 지키고, 데리고 온 왜인(倭人)을 붙여 보내어 방위(防衛)하도록 청하였습니다. 신(臣)이 벌써 일기(一岐)의 일을 듣고, 또 제포(齊浦) 사람이 몰래 와서 엄담한 바를 들었으므로, 경계하고 방비하지 않을 수 없어, 군관(軍官) 허감(許臧) 등으로 하여금 궁검(弓劍)을 잡고 밤새도록 방비하게 하고, 이로부터는 밤마다 계엄(戒嚴)하기를 거의 상규(常規)로 하였습니다.

초7일에 평사야문(平沙也門)·조국차(助國次) 등으로 인해 도주(島主)가 4월부터 병(病)이 있어 5월 그믐까지 병이 더욱 심하였다가 조금 나은 지는 이제 겨우 5, 6일이 되었으며, 이제 진강 오랑(津江五郎)이 올 때에는 바로 병(病)이 중함을 당했다고 들었는데, 신이 아직 바다를 건너지 않았으면 은휘하려고 하다가 바다를 건너셨다고 하여 형세가 은휘할 수가 없어 사실대로 고(告)합니다.’ 하였습니다.

11일에 구다포(仇多浦)에 도착하여 정박하면서 왕명을 전하려고 하였더니, 도주(島主)가 사람을 보내어 청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병이 심하니, 청컨대 조금 덜하기를 기다려 왕명을 받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이렇게 왕복(往復)하기를 서너너덧 차례 하고서야 바로 허락하고, 인하여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예(禮)는 이와 같을 수 없으나 도주(島主)가 앓으므로 아직은 권도(權道)를 따랐다.’고 하였습니다.

12일에 도주(島主)의 사인(使人)이 이르기를, ‘새벽녘에 와서 조금 덜하더니 아침이 되어서는 다시 고통스러워하니, 명일(明日) 사이에 덜하기를 기다려서 왕명을 받겠습니다. 내가 이제 죽더라도 조정(朝廷)의 사신을 기다리게 함은 단지 한 번 뿐일 것입니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병의 경중(輕重)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병(病)을 얻은 지가 오래 되어 기운이 매우 지치고 약해져서 수일(數日) 사이에 혹은 위독하고 혹 덜하여 겨우 죽(粥)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2, 3일 동안 조금 덜하기를 기다려 와내(臥內)27806)에서 왕명을

海, 勢不能諱, 而告以實, 十一日, 到泊仇多浦, 欲傳命, 島主遣人請云: ‘今日病甚, 請待歇受命。’ 往復數四, 乃許之, 因語其人曰: ‘禮不可如是, 以島主病, 姑從權耳。’ 十二日, 島主使人曰: ‘曉來稍歇, 至朝復苦, 欲於明日間, 待歇受命。 吾今垂死, 待朝廷使, 只一度耳。’ 臣問病之重輕, 答曰: ‘得病日久, 氣甚羸弱, 而數日之間, 或劇或歇, 僅得啜粥, 今茲二三日, 待稍間, 欲於臥內受命。’ 十三日, 島主又使人云: ‘病未歇, 欲待歇, 雖臥內, 當受命。’ 臣答曰: ‘能冠帶受命耶?’ 曰: ‘轉側須人, 不得坐起, 焉得冠帶?’ 曰: ‘然則禮, 有君命, 加朝服拖紳, 若得出正廳, 雖不能行禮, 只加衣冠, 俯伏受命, 亦可也。 此不過答刻間耳。’ 曰: ‘病重必不能, 然當往稟。’ 十四日, 島主使宗大膳曰: “病日沈綿, 若必待差, 將久稽王命, 願、及生存之日, 令吾子貞秀, 代受賜物書契, 幸得間, 則當異日奉邀, 親聽宣旨。’ 臣答曰: ‘島主前云, 若得小差, 當出廳事, 親承上教, 故昨日, 語以加朝服拖紳, 是在暫刻間耳。 今不可行歟?’ 宗大膳曰: ‘臣子

받으려 합니다.’고 하였습니다.

13일에 도주(島主)가 또 사인(使人)에게 이르기를, ‘병이 아직 덜하지 않으니, 덜하기를 기다려서 비록 와내(臥內)에서라도 마땅히 왕명을 받으려 합니다.’고 하여, 신(臣)이 대답하기를, ‘관대(冠帶)를 하고 받을 수 있겠는가?’고 하니, 이르기를, ‘옆으로 돌아눕는 것도 사람을 기다려야 하므로 일어나서 앉을 수가 없으니, 어찌 관대(冠帶)를 할 수 있겠습니까?’고 하므로, 이르기를, ‘그러면 예(禮)에, 「군명(君命)이 있으면 조복(朝服)을 덮고 큰 띠를 위에 놓는다.」고 하였으니, 만약 정청(正廳)에 나올 수 있으면, 비록 행례(行禮)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단지 의관(衣冠)만 더하고 부복(俯伏)하여 왕명을 받는 것도 또한 옳을 것이다. 이는 잠깐 사이에 불과할 것이다.’고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병(病)이 중하여 반드시 할 수는 없으나, 마땅히 가서 아뢰겠습니다.’고 하였습니다.

14일에 도주(島主)가 종대선(宗大膳)으로 하여금 말하기를, ‘병을 앓은 날이 오래 되어 만약 반드시 차도가 있기를 기다리자면 장차 왕명을 오래 계류(稽留)하게 되니, 원컨대 생존(生存)한 날에 미치어, 이제 우리 아들 종정수(宗貞秀)가 사물(賜物)과 서계(書契)를 대신 받게 하고, 다행히 병이 덜하면 마땅히 다른 날에 맞이하여 모시고 몸소 선지(宣旨)를 들겠습니다.’고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도주(島主)가 앞서서 이르기를, 「만약 조금 차도가 있으면 마땅히 청사(廳事)에 나와 몸소 상교(上敎)를 받들겠다.」고 한 까닭으로, 어제는 조복(朝服)을 덮고 큰 띠를 위에 놓는 것으로써 이는 잠깐 사이일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이제 행할 수 없다는 것인가?’고 하니, 종대선(宗大膳)이 말하기를, ‘신자(臣子)가 군부(君父)를 위하는 마음을 어찌 다 말할 수 있습니까? 하오나 이제 종정수는 그 아버지의 수일(數日)의 명(命)이라도 연장시키려고 대신 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만약 억지로 해서 행례(行禮)하도록 하면, 형세가 반드시 죽기에 이를 것이니, 만일 대신 받는 것이 불가(不可)하다고 하면, 마땅

爲君父之心，何可勝言？今貞秀，欲延其父數日之命，願得代受，若令抑而行禮，勢必至死，如以代受爲不可，則當俟病歇，然茲病侵尋，不可以時日期也。況島主今既委事於貞秀，乞從代受之請。’ 問：‘自何時而然耶？’ 曰：‘自今春也。’ 曰：‘然則島中之事，貞秀得專斷乎？’ 曰：‘自島主病，皆得專斷矣。’ 問：‘島主病勢，竟何如？’ 曰：‘恐未得痊。’ 臣答曰：‘禮不當代受，然島主乞及生存受命，貞秀爲父之言，亦切當，宜從權。若行代禮，貞秀當代島主，四拜、跪、受書契，又四拜，然後自受書契，禮畢，授書契于島主臥內，可也。’ 宗大膳曰：‘唯唯。’ 臣更思之，今次代父行禮，實出於變，禮之當否，不暇論也，不如更嚴一節以折之也。 卽問公廳距臥內近遠，曰：‘甚近。’ 曰：‘然則貞秀可代島主，四拜、跪、受書契，入授島主，出復位，行四拜禮，然後自受書契，拜跪亦當如前，吾於小事，皆特從權，至大節，不可違也。’ 大膳答曰：‘將復于島主。’ 臣至島主家，使人先問行禮之儀，答曰：‘如儀。’ 臣入廳事，貞秀代島主，行前後

히 병이 덜하기를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병(病)은 차차 더해가니, 시일(時日)로써 기약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도주(島主)는 이제 이미 일을 종정수에게 위임하였으니, 대신 받게 하는 소청을 따르시기 바랍니다.’고 하므로, 묻기를, ‘어느 때부터 그랬는가?’고 하였더니, 말하기를, ‘올 봄부터입니다.’고 하므로, 이르기, ‘그러면 도중(島中)의 일은 종정수(宗貞秀)가 전단(專斷)할 수가 있는가?’고 하니, 말하기를, ‘도주(島主)가 병들면서부터 모두 전단(專斷)하였습니다.’고 하였습니다. 묻기를, ‘도주(島主)의 병세(病勢)가 마침내는 어떻겠는가?’고 하니, 이르기, ‘아마도 나올 수 없을 듯합니다.’고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예(禮)에는 대신 받음이 부당하나, 그러나 도주가 생존(生存)하여 왕명을 받겠다고 빌었고, 종정수가 아버지를 위하는 말도 또한 사리에 들어맞으니 권도를 따름이 마땅하다. 만약 대신 예(禮)를 행한다면, 종정수는 마땅히 도주(島主)를 대신하여 사배(四拜)하고 꿇어앉아 서계(書契)를 받되, 또 사배(四拜)한 뒤에 스스로 서계(書契)를 받아야 한다. 예(禮)를 마치면 서계를 도주의 와내(臥內)에 숨이 옳을 것이다.’고 하니, 종대선(宗大膳)이 말하기를, ‘예, 예.’ 하였습니다.

신이 다시 생각하건대 이번에 아버지를 대신하여 행례(行禮)함은 진실로 변고에서 나왔으니, 예(禮)의 옳고 그름은 논할 겨를이 없어서 다시 일절(一節)을 엄중하게 하여 절충(折衷)하는 것만 같지 못하였습니다. 즉시 공청(公廳)이 와내(臥內)와의 상거가 가깝고 몹을 물었더니, 말하기를, ‘매우 가깝습니다.’고 하기에, 이르기, ‘그렇다면 종정수는 도주(島主)를 대신하여 사배(四拜)를 하고 꿇어앉아 서계(書契)를 받아, 들어가 도주에게 주고 나와서 제자리로 돌아가 사배례(四拜禮)를 행한 연후에 스스로가 서계(書契)를 받고 절하고 꿇어앉기를 또한 마땅히 전과 같이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작은 일에는 모두 특별히 권도를 따랐으나, 대절(大節)에 이르러서는 어길 수가 없다.’고 하니, 종대선이 대답하기를, ‘장차 도주에게 복명하겠습니다.’고 하였습니다.

四拜，跪受書契，入授島主，皆如儀，貞秀又將受其書契，欲不行跪禮，臣曰：‘前拜跪，代島主也，今跪，自爲也。島主既跪，則足下不可不跪也。’答曰：‘古無跪禮，然爲島主而跪，今不可復行跪禮。’臣答曰：‘父既跪，子不可不跪也。’貞秀曰：‘奈無前例何?’臣曰：‘從前如是，烏得言無例?且今既受島主之跪，足下雖不跪，自失其禮，何損於我，父子之理，通天下，以情言之，烏有父跪而子不跪耶?’貞秀曰：‘雖無前例，今爲尊官勉行。’遂拜跪皆如儀。禮畢，將書契及事目，逐條開諭，答曰：‘已悉。’臣反譬曉至三，貞秀曰：‘屢悉尊教，當令管事者共議。’二十二日夜，宗大膳、職善來傳島主及貞秀書契，且致曲盡從命之意。臣見書，謂曰：‘吾所傳命者三事，而今書契不逐條，汎稱三事，語不分明，其中雖然，待病愈等語，皆不緊，與前日國次所傳，及爾等口傳之言，不同，何也?濟州賊倭，有名可辨，尙未聞搜捕，魚梁干紀者，三浦刷還事，可卽送人治之，而今不爾，何也?’答曰：‘賊倭不可的知所在，當聞見潛圖，不可猝

신(臣)이 도주(島主)의 집에 이르러 사람으로 하여금 행례하는 의식을 먼저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겠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청사(廳事)에 들어가니, 종정수(宗貞秀)가 도주를 대신하여 전후(前後) 사배(四拜)를 행하고, 꿇어앉아 서계(書契)를 받아, 들어가 도주에게 주기를 모두 의식과 같이 하였습니다. 종정수가 또 장차 그 서계(書契)를 받고는 꿇어앉는 예를 행하지 않으려 하기에, 신이 이르기를, ‘먼저 절하고 꿇어앉음은 도주를 대신 함이며, 지금 꿇어앉음은 스스로가 하는 것이다. 도주가 벌써 꿇어앉았으면 족하(足下)도 꿇어앉지 않을 수 없다.’고 하니, 대답하기를, ‘예전에는 꿇어앉는 예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주(島主)를 위하여 꿇어앉았지만, 이제는 다시례(禮)를 행할 수 없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대답하기를, ‘아버가 이미 꿇어앉았으면 아들도 꿇지 않을 수 없다.’고 하니, 종정수가 말하기를, ‘전례(前例)가 없으니 어찌하겠습니까?’고 하기에, 신이 이르기를, ‘중전에도 이와 같았는데, 어찌 전례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또 이제 이미 도주(島主)의 꿇어앉는 예를 받았으니, 족하(足下)가 비록 꿇어앉지 않더라도 스스로가 그 예를 잃음이니, 어찌 나에게 손상(損傷)됨이 있겠는가? 부자(父子)의 도리[理]는 천하(天下)에 공통된 정리(正理)로써 말하는 것이니, 어찌 아버지는 꿇어앉음이 있으되 자식은 꿇어앉지 않겠는가?’고 하였더니, 종정수(宗貞秀)가 말하기를, ‘비록 전례(前例)는 없더라도 존관(尊官)을 위하여 힘써 행하겠습니다.’고 하고는 드디어 절하고 꿇어앉기를 모두 의식과 같이 하고 예(禮)를 마쳤습니다. 서계(書契)와 사목(事目)을 가지고 조목을 따라 개유(開諭)하였더니, 대답하기를, ‘이미 다 자세히 알았습니다.’고 하므로, 신이 반복(反覆)하여 비효(譬曉)27807) 하기를 여러 차례 하니, 종정수가 말하기를, ‘여러 번 존교(尊敎)를 자세히 들었으니, 마땅히 관사자(管事者)로 하여금 함께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고 하였습니다.

22일 밤에 종대선 직선(宗大膳職善) 이 와서 도주(島主)와 종정수(宗貞秀)의

定日期。魚梁干紀者，或誅戮，或刷還，三浦之人，亦當刷還，當從尊命，一無違忤，不敢虛妄。島主之意丁寧，吾不解文，實未知作書契何如。若如尊官之言，則竊疑作書契者文短，不能盡島主之意也。其未即送人治之者，以島主方在疾病也，脫島主不幸，有貞秀在，何慮之有？貞秀性果決，尊官毋疑第還，不過數月，當了此事，吾等豈敢妄言？’臣再三詰之，答曰：‘當將尊意，更稟于島主。’二十三日朝，遣徐有山，問書契改否于宗大膳，宗大膳、職善等來曰：‘古無改書契之例，島主爲尊官欲改之，使某來聽命。’臣曰：‘書契三件事，宜逐條而答，但魚梁事，島主欲處以何罪？’曰：‘惟尊官命，可殺則殺，可刷還則可刷還。’臣答曰：‘使者不可擅斷，當於特送往治之日，或誅或竄，惟殿下之命，可也。’大膳曰：‘善’，即持前書契而去。有頃，職善將所改書契，來傳島主之言曰：‘既修書契而改之，古無此例，以尊官寬假弊島，愛憐吾兒，所言必聽，故勉遵尊命。’臣見其書，謂曰：‘所謂禁戢者，何謂也？’曰：‘禁戢者，亦是推鞠誅竄

서계(書契)를 전하고, 또 꼭진히 명령을 따라 행할 뜻을 나타내었습니다. 신이 글을 보고 이르기, '내가 왕명(王命)을 전한 것은 세 가지 일[三事]인데, 이제 서계(書契)에는 조목을 따르지 않고 세 가지 일을 범칭(汎稱)하였으니, 말이 분명(分明)하지 못하고, 그 내용은 비록 그렇다 하여도 병(病)이 낫기를 기다린다는 등의 말은 모두 긴요하지 않으며, 전일(前日) 조국차(助國次)가 전하였던 것과 너희들이 구전(口傳)한 말이 서로 같지 않으니 어찌서인가? 제주(濟州)의 적왜(賊倭)를 분변할 수 있다는 이름만 있고 수포(搜捕)하였다는 말은 아직도 듣지 못하였으며, 어량(魚梁)의 간기자(干紀者)27808) 와 삼포(三浦)의 쇄환(刷還)하는 일은 즉시 사람을 보내어 다스려야 할 것인데도 이제 그렇지 못함은 어찌서인가?'고 하니, 대답하기를, '적왜(賊倭)의 소재(所在)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 마땅히 보고 들어서 몰래 도모하여야 하니 갑자기 기일(期日)을 정할 수 없고, 어량(魚梁)의 간기자(干紀者)는 혹 주륙(誅戮)하거나 혹은 쇄환(刷還)하겠으며, 삼포(三浦)의 사람도 마땅히 쇄환할 것이며, 마땅히 존명(尊命)대로 따르고 하나도 여기거나 거스림이 없이 감히 거짓이 없다는 도주(島主)의 뜻이 정녕(丁寧)하운데, 제가 글을 해득하지 못하니 진실로 서계(書契)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만약 존관(尊官)의 말과 같으면, 의심컨대 서계(書契)를 작성한 자가 단문(短文)하여 도주(島主)의 뜻을 능히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즉시 사람을 보내어 다스리지 못한 것은 도주(島主)가 바야흐로 질병(疾病)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도주가 불행(不幸)하더라도 종정수(宗貞秀)가 있으니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종정수는 성질이 결단성이 있으니, 존관(尊官)은 의심하지 말고 돌아가시면 수월(數月)이 지나지 않아서 마땅히 이 일을 끝내겠습니다. 우리들이 어찌 감히 망언(妄言)을 하겠습니까?'고 하였습니다. 신이 재삼(再三) 힐책(詰責)하니, 대답하기를, '마땅히 존의(尊意)를 가지고 다시 도주에게 아뢰겠습니다.'고 하였습니다. 23일 아침에 서유산(徐有山)을 보내어 서계(書契)를 고쳤는지의 여부를 종대

之通稱也。’ 臣答曰：‘禁戢之意，只禁止之辭而已，無治罪之意，此與前書契，無甚相遠，當改之。’ 答曰：‘病中勢難屢稟，如之何？某等所傳島主之言，尊官已悉，不須又改。’ 臣答曰：‘吾當問於作書者，以詳禁戢之意。’ 遂抵書於古何職次曰：‘島主前書，泛稱三事，爭魚梁者，雖在其中，語不分明，似不及治罪之意，故還其書，使改之，島主問治罪輕重，予以爲，使者不可擅斷，當於特送往治之日，或輕或重，惟殿下之命也，島主深然之，復遣職善云：「魚梁事，一依尊教。」而云書契則，只稱堅加禁戢耳，與大膳、職善等語，大相牴牾，所謂禁戢者，禁止之辭而已，無推鞠致法之意，禁戢之辭，未審，何謂也，并更伴問，可卽開示。’ 職次答書曰：‘禁戢者，禁止之辭，計其罪之輕重，重者殺戮，輕者刷還遠流之，此是禁止也，惟審察之。’ 宗大膳等又言：‘島主若得痊，雖今朔，當卽送人治之矣。’ 一，一岐州事，島人及一岐人，言嘗一戰，兩軍魁首多死，遂議罷兵，然各慮背約，時猶相持，島主亦遣兵四五百，已助一歧，而業已

선(宗大膳)에게 물었더니, 종대선 직선(宗大膳職善) 등이 와서 말하기를, ‘예전에는 서계를 고친 예(例)가 없었으나, 도주(島主)가 존관(尊官)을 위하여 고치려고 아무[某]로 하여금 와서 청명(聽命)하게 하였습니다.’고 하여, 신이 이르기를, ‘서계(書契) 3건(件)의 일은 조목을 따라서 대답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어량(魚梁)의 일은 도주(島主)가 무슨 죄로써 처리하려고 하는가?’고 하니, 말하기를, ‘오직 존관(尊官)의 명(命)을 따라 죽일 만하면 죽이고, 쇄환(刷還)할 만하면 쇄환함이 옳겠습니다.’고 하여, 신이 대답하기를, ‘사자(使者)가 천단(擅斷)할 수 없으니, 마땅히 특송(特送)이 가서 다스리는 날에 혹 죽이고 혹은 귀양보내는 것을 오직 전하(殿下)의 명(命)을 따름이 옳을 것이다.’고 하니, 종대선(宗大膳)이 말하기를, ‘좋습니다.’고 하고는 즉시 먼저 서계를 가지고서 갔습니다.

잠시 후에 종직선(宗職善)이 고친 서계를 가지고 와서 도주의 말을 전(傳)하기를, ‘어미 서계(書契)를 닦고서 고치게 한 것은 예전에는 이 예(例)가 없었습니다마는, 존관(尊官)이 폐도(弊島)를 너그러이 용서하고, 내 아이를 사랑하시어 말한 바를 반드시 청납(聽納)한 까닭으로 존명(尊命)을 준수하는 데 힘썼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신(臣)이 그 글을 보고 이르기를, ‘금집(禁戢)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고 하니, 말하기를, ‘금집(禁戢)이라는 것은 역시 추국(推鞠)하고 주찬(誅竄)함의 통칭(通稱)입니다.’고 하여 신이 대답하기를, ‘금집(禁戢)의 뜻은 단지 금지(禁止)한다는 말이고 치죄(治罪)한다는 뜻이 없으니, 이것도 먼저 서계(書契)와 심히 상원(相遠)함이 없다. 마땅히 고치도록 하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병중(病中)이라 형세가 여러 번 아뢰기가 어려우니, 어찌하겠습니까? 아무 등이 전하였던 도주의 말은 존관계서 이미 아시었으니, 또 고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내가 마땅히 서계를 작성한 자에게 물어서 금집(禁戢)의 뜻을 자세히 하겠다.’ 하고, 마침내 고하 직차(古何職次)에게 저서(抵書)하기를, ‘도주가 먼저 글에는 세

戰，罷故皆即還來。 一， 臣在島中， 凡事皆依上旨， 務從寬假， 島主貞秀等， 每使人以謝感悅之意。”

가지 일을 범칭(泛稱)하고, 어량(魚梁)을 다룬 것이 비록 그 가운데에 있기는 하나 말이 분명(分明)하지 않아 치죄(治罪)하는 뜻[意]에 미치지 못한 것 같은 까닭으로 그 글을 돌려보내어 고치도록 하였더니 도주(島主)가 치죄하는 것의 경중(輕重)을 묻기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사자(使者)가 천단(擅斷)할 수 없고, 마땅히 특송(特送)이 가서 다스리는 날에 혹 경(輕)하게 하거나 혹은 중(重)하게 하는 것은 오직 전하(殿下)의 명(命)에 달려 있다고 하니, 도주(島主)도 깊이 그렇게 여겼는데, 다시 직선(職善)을 보내어 이르기를, ‘어량(魚梁)의 일은 한결같이 존교(尊敎)를 따르겠습니다.’ 하고서 서계(書契)에는 단지 금집(禁戢)을 굳게 더한다고 일컬을 뿐이어서 종대선 직선(宗大膳職善) 등의 말과 크게 서로 저오(牴牾)되었는데, 이른바 금집(禁戢)이라는 것은 금지한다는 말일 뿐, 추국(推鞠)하여 법대로 처리한다는 뜻이 없었으므로, ‘금집(禁戢)의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오. 아울러 다시 물어서 즉시 개시(開示)함이 옳겠오.’ 하니, 직차(職次)가 답서(答書)하기를, ‘금집(禁戢)이란 것은 금지(禁止)한다는 말이니, 그 죄의 경중(輕重)을 살피어 중한 자는 살륙(殺戮)하고, 경한자는 쇄환(刷還)하여 원류(遠流)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지(禁止)함이니 자세히 살피소서.’ 하고, 종대선(宗大膳) 등이 또 말하기를, ‘도주(島主)가 만약 병이 나오면 비록 이달이라도 마땅히 즉시 사람을 보내어 다스리게 하겠습니다.’고 하였습니다.

1. 일기주(一岐州)의 일은 도인(島人)과 일기인(一岐人)이 말하기를, ‘일찍이 한 번 싸워서 양군(兩軍)의 괴수(魁首)가 많이 죽어서 드디어 파병(罷兵)하기를 의논하였으나, 그러나 각각 약속을 배반할까 염려하여 아직 오히려 서로 고집하니, 도주도 또 군사 4, 5백을 보내어 이미 일기(一岐)를 도와서 이미 싸움도 파(罷)한 까닭으로 모두 즉시 돌아왔습니다.

1. 신(臣)이 도중(島中)에 있을 적에는 모든 일은 다 상지(上旨)를 따라 너그럽게 용서하는 데 힘썼더니, 도주(島主)·종정수(宗貞秀) 등이 매양 사람으로

	<p>하여금 감열(感悅)하는 뜻으로써 사례하였습니다.” 하였다.</p>	
<p>성종 292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弘治) 7년) 7월 7일 (계사) 2번째기사</p>	<p>대마도 경차관(對馬島敬差官) 권주(權柱)의 사목(事目)을 의논하니, 윤필상(尹弼商)·한치형(韓致亨)은 의논하기를, “이제 도주(島主)의 서계(書契)와 종정수(宗貞秀)의 말한 데에서 권주(權柱)와 더불어 대답한 말을 보면, 비록 확실하게 그 뜻을 알 수 없더라도 별로 불손(不遜)한 말이 없으니, 아직은 그 하는 것을 볼 따름입니다.” 하고, 노사신(盧思愼)·윤효손(尹孝孫)은 의논하기를, “이제 권주(權柱)의 사목(事目)을 보면, 도주(島主)가 칭병(稱病)함은 아마 반드시 속임은 아닌 듯합니다. 그 대답한 말이 대개 순종하는 것 같으니, 서서히 하는 것을 관망하소서.” 하고, 정문형(鄭文炯)은 의논하기를, “사목(事目)과 서계(書契)를 보면 저들이 권주(權柱)를 예(禮)로써 대접하였습니다. 유사한 세 가지 일[三事]은 비록 즉시 일일이 거행하지 않았더라도 말이 공순(恭順)하고 또한 이치에 합당하니, 깊이 책망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하고, 유지(柳淸)는 의논하기를, “아직은 권주(權柱)가 올라오기를 기다려 다시 의논하소서.” 하니,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도주(島主)가 칭병(稱病)하였으니, 아직은 병이 낫기를 기다리라고 전명(傳命)27811 함이 옳을 것이다. 이제 여러 재상의 헌의를 보건대 대략 가부(可否)가 없으니, 정원(政院)은 그것을 보도록 하라.” 하였다. 승지(承旨) 등이 아뢰기를, “도주(島主)가 조정(朝廷)에서 사신을 보냈음을 듣고 먼저 일기(一岐)의 병란(兵亂)으로써 보고한 것은 이는 응답(應答)하기가 어려워 그 사행(使行)을 저지하려 함입니다. 권주(權柱)가 11일에 들어가고, 14일에 왕명을 종정수(宗貞</p>	<p>○議對馬島敬差官權柱事目。 尹弼商、韓致亨議：“今觀島主書契及貞秀之言，與權柱所答之辭，雖未的知其意，別無不遜之語，姑觀其所爲而已。” 盧思愼、尹孝孫議：“今觀權柱事目，島主稱病，恐未必詐也，其所答之辭，大概似順，徐觀所爲。” 鄭文炯議：“觀事目及書契，彼待權柱以禮，所諭三事，雖未卽一一舉行，辭語恭順，亦合於理，不足深責。” 柳淸議：“姑待權柱上來，更議。” 傳于承政院曰：“島主稱病，則姑待病愈，傳命可也。今觀諸宰之議，略無可否，政院其視之。” 承旨等啓曰：“島主聞朝廷遣使，先以一岐兵亂報之者，是難於應答，欲沮其行也。 權柱十一日入歸，十四日傳命於貞秀，似乎太速，島主雖或稱病，爲權柱者，當待病差而傳之，不應遽傳於其子。 島主書契內禁戢二字，請改者非一，而終不果改，則柱當語之曰：‘足下既不親受殿下之命，又不肯從魚梁之事，今我奉使無效，將何以復命乎?’ 如是開說，彼猶不聽，則</p>

	<p>秀)에게 전한 것은 너무 빠른 것 같았습니다. 도주(島主)가 비록 칭병하였다 라도 권주(權柱)는 마땅히 병이 낫기를 기다려서 전하여야 하고 갑자기 그 아 들에게 전하는 것은 불응(不應)했어야 하며, 도주(島主)의 서계(書契) 안에 '금집(禁戢)'이란 2자(字)는 고치라고 청한 것이 한 번이 아닌데도 끝내 과연 고치지 않았으니, 권주(權柱)는 마땅히 그들에게 말하기를, '족하(足下)가 이 미 전하(殿下)의 명(命)을 몸소 받지 않았고, 또 어량(魚梁)의 일도 즐겨 따르 지 않으니, 이제 우리가 사명을 받들고 온 것이 무효(無效)가 되니, 장차 무 엇으로써 복명(復命)하겠는가?' 이와 같이 말하여도 저들이 오히려 듣지 않았 으면, 두 달의 양식을 이미 가지고 들어갔으니, 마땅히 수월(數月)을 머물러 서 그 하는 것을 관망했어야 하였으며, 또 군관(軍官)을 보내어 조정(朝廷)에 보고하고서 처치(處置)를 어떻게 하라는 것을 기다렸어야 할 것인데, 계교가 여기에 벗어나지 못하고 갑자기 돌아왔으니, 이것이 전대(專對)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 등이 대신(大臣)의 의논한 것을 보건대 과연 실책하였습니 다.” 하니, 전교하기를, “권주(權柱)가 올라오기를 기다려 추국(推鞠)하라.” 하였다.</p>	<p>二朔之糧，既已賚歸，當留數月，以觀其所爲，且遣軍官，具報朝廷，以待處置之何如，計不出此，遽爾回來，則是可謂之專對乎？臣等觀大臣之議，果失之矣。”傳曰：“待權柱上來，推鞠。”</p>
<p>성종 292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7월 11일 (정유) 2번째기사</p>	<p>명하여 정부(政府), 과평 부원군(坡平府院君)·육조(六曹)·한성부(漢城府)·대간 (臺諫)을 불러, 김지(金漬)의 정죄(定罪)하는 일을 의논하게 하고, 전교하기를, “《대관의두(對款議頭)》에는 속사죄지법(贖死罪之法)이 있으니, 그 살리기를 구하는 도리가 지극하다. 김호문(金好文)은 아버지를 위하는 정(情)이 이와 같은 데에 이르렀으니, 부자(父子)의 정(情)이 어찌 상하(上下)에 사이가 있겠는가? 내가 관가(觀稼)27834) 하였을 때에 몸소 김호문(金好文)을 보고 자못 측은 히 여겼지만, 그러나 《의두(議頭)》에 ‘아무 일은 속(贖)바치게 할 만하고 아 무 일은 속바치게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으니, 이제 만약 인정</p>	<p>○命召政府、坡平府院君、六曹、漢城府、臺諫，議金漬定罪事。傳曰：“《對款議頭》有贖死罪之法，其於求生之道，至矣。金好文爲父之情，至於如此，父子之情，何間於上下乎？予於觀稼時，親見好文，良用惻然，但於《議頭》，不明言某事爲可贖，某事爲不可贖，今若以情法可矜，而輕重之，</p>

(人情)과 법(法)으로 가궁(可矜)하다 하여서 법에 경중(輕重)을 따지면 인정(人情)의 좋아하고 미워함도 또한 반드시 따르게 되어 폐단이 장차 생길 것이다. 또 범장(犯贓)을 속사(贖死)하면, 탐리(貪吏)가 거리낌이 없어 백성이 장차 해를 받을 것이다. 내가 군의(群議)를 보고 스스로 결단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옳겠는가? 그것을 상의(商議)하여 아뢰라.”

하니, 윤필상(尹弼商)·이극돈(李克墩)은 의논하기를,
 “《대전(大典)》에는 단지 《대명률(大明律)》을 쓴다고 일컬었으니, 《율조소의(律條疏議)》와 《대관의두(對款議頭)》는 율문(律文)과 저오(抵牾)되는 데가 있어 행용(行用)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대관의두》는 관부(官府)에서 찬정(撰定)한 것이 아니고 바로 사사로이 신례(新例)와 율문(律文)에 실려 있지 않은 조목을 채집하여 용률지례(龍律之例)를 삼았으니, 우리 나라에서는 더욱 일일이 준용(遵用)할 수가 없습니다. 사죄속법(死罪贖法)과 같은 것에 이르러서는 《대명률》에도 또한 사죄속례(死罪贖例)가 있으니, 달리 저오(抵牾)되는 예(例)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9조(九條)는 모두 이 사죄(死罪) 중에 정상을 경(輕)하게 할 만한 것이니, 만약 특지(特旨)가 있어 인정과 법에 말감(末減)함을 의논할 자는 마땅히 이 조목으로써 속사(贖死)할 따름이고, 관리수재(官吏受財)27835 나 도창고전량(盜倉庫錢糧)27836 이나 도내부재물(盜內府財物)27837 등의 항목의 죄와 같은 것을 모두 사형(死刑)에 처하지 말고 반드시 속(贖)바치게 하라고 이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김지(金漬)의 죽음은 이 속(贖)하는 것으로 당(當)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옛적에 제영(緹縈)27838 이 아버지의 죄를 속(贖)하기를 청하니 문제(文帝)가 특별히 용서하였습니다마는, 그 아버지의 죄가 사형에 해당하지 않음이 아니고, 특별히 그 아버지를 구하려는 정을 청납(聽納)함이었으며, 또 그 죄를 의논할 만함이 있는 까닭으로 용서한 것이었습니다. 김지(金漬)의 죄(罪)는 법(法)으로 사형함이 마땅하니, 신 등은 감히 함부로 경중(輕重)을 의논하지 못하겠습니다.”

則人情好惡，亦必隨之，弊將生矣。且犯贓贖死，則貪吏無忌，民將受害，予觀群議，不能自斷，何以則可？其商議以啓。”尹弼商、李克墩議：“《大典》只稱用《大明律》，則《律條疏議》及《對款議頭》，與律文牴牾處，不可行用。況《對款議頭》，非官府所撰定，乃私採新例，及律文不載之條，以爲用律之例，我國尤不可一一遵用，至如死罪贖法，則《大明律》亦有死罪贖例，非他牴牾之例。但其九條，皆是死罪中情可輕者，若有特旨，議情未減者，則當以此條贖死而已，非謂如‘官吏受財’、‘盜倉庫錢糧’、‘盜內府財物’等項罪者，皆不置死而必贖也。今金漬之死，不可以此贖當之，昔緹縈請贖父罪，文帝特貴之，非爲其父之罪不當死，特聽其救父之情，又以其罪有可議，故貴之耳。金漬之罪，於法當死，臣等未敢擅議輕重。”盧思愼議：“觀《對款議頭》及《律條疏議》，則贖死乃中朝行用之法也。但(列) [例] 准贖死罪之九條，不著所用節目，其詳不可得而知也。其贖死九條內，惟‘官吏受贓’、‘盜倉庫錢糧’、‘盜

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대관의두(對款議頭)》와 《율조소의(律條疏議)》를 보면, 속사(贖死)함은 곧 중국 조정에서 행용(行用)하는 법(法)입니다. 다만 예준속사죄(例准贖死罪)의 9조(九條)는 소용(所用)되는 절목(節目)을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그 상세함을 얻어서 알 수는 없으나, 그 속사(贖死) 9조(九條) 안에 오직 관리수장(官吏受贓)이나 도창고전량(盜倉庫錢糧)이나 도용내부재물(盜用內府財物)의 3조(三條)는 인정과 법으로 용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두 국가(國家)의 강상(綱常)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한 개인의 탐오(貪污)에 관계된 까닭으로 속(贖)함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 행용(行用)하는 여부(與否)와 소용(所用)되는 절목(節目)은 입조 사신(入朝使臣)27839) 으로 하여금 상세히 다 문견(聞見)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심이 편하겠습니다. 김지(金漬)의 죄(罪)는 진실로 사형(死刑)에 합당하나 그 아들의 정상은 지극히 가궁(可矜)합니다.”

하고, 윤호(尹壕)·유지(柳輕)는 의논하기를,
 “김지(金漬)의 죄(罪)는 범장(犯贓)한 것이 과만(過滿)하여 해조(該曹)에서 법에 의거해서 아뢰는 까닭으로 신 등은 전의(前議)에 계목(啓目)대로 시행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이제 김호문(金好文)의 상언(上言)으로 인해 《율조소의(律條疏議)》에 의거하여 다시 신(臣)에게 물으시니, 신 등은 생각하건대 법(法)은 만세(萬世)에 드리우고 은혜는 일시(一時)에 나온 것이니, 고금(古今)을 참작(參酌)하여 인정과 법에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이 성인(聖人)의 정사라 여겨집니다. 이제 《소의(疏議)》의 뜻을 가지고 특별히 허락하여 속죄(贖罪)하면 또한 이것도 일시(一時)의 은혜이니, 뒷날에 어찌 일시의 은혜로써 감히 받드시 죽일 죄를 간구(干求)함이 있겠습니까? 그 일부러 범한 자에게는 이를 본받을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하고, 윤효손(尹孝孫)은 의논하기를,

用內府財物’三條,情法似不可貸,然皆非關國家綱常,只係一己貪污,故恐入於贖,其行用與否及所用節目,使入朝使臣,詳悉聞見後,更議施行爲便。金漬之罪,固合於死,其子之情,至爲可矜。”尹壕、柳輕議:“金漬之罪,犯贓過滿,該曹據法以啓,故臣等於前議,請依啓目,今因好文上言,據《律條疏議》,更問於臣,臣等謂,法垂萬世,恩出一時,參酌古今,情法不差,聖人之政也。今以《疏議》之意,特許贖罪,則亦是一時之恩,後豈有以一時之恩,敢干必死之罪乎?其無效此故犯者,明矣。”尹孝孫議:“聖人欽恤好生之德,寧失不經,好文救父罔極之心,願百其身以贖之,今《疏議》受贓贖罪之法,亦出於好生之德,而視監臨主守自盜者,則亦有間矣。《疏議》不言贖罪之由,今若以爲恒法,則奉法之吏,不無用情,出入受贓之徒,亦不無慢法害民之弊,誠如上教。大抵罪雖入於死,有議其可輕可重者,緣情定罪,裁自聖心,餘具前議。”成倪、韓僩、蔡壽議:“欲免父罪,人子之至情,欽恤好生,帝王之至德,但用法必堅如

“성인(聖人)이 흠휰(欽恤)하고 호생(好生)하는 덕(德)은 죄 없는 사람을 죽이기보다는 차라리 상법[經]을 집행하지 못하는 실수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김호문(金好文)이 아버지를 구(救)하는 망극(罔極)한 마음은 그 몸을 백 번 쪼개어서라도 속(贖)하기를 원(願)합니다. 그러니 이제 《소의(疏議)》의 수장속죄지법(受贓贖罪之法)도 또한 호생(好生)하는 덕(德)에서 나왔으며, 감림주수자도자(監臨主守自盜者)27840) 를 보면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소의》에는 속죄(贖罪)하는 연유를 말하지 않았으니, 이제 만약 항법(恒法)을 삼는다면 법을 봉행하는 관리가 사정을 씀이 없지 않을 것이며, 출입(出入)하여 수장(受贓)27841) 하는 무리도 또한 법(法)을 업신여기고 백성을 해치는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니, 진실로 상교(上教)와 같습니다. 대저 죄가 비록 사형(死刑)에 들더라도 그 경(輕)하게 하고 중(重)하게 함을 의논할 만한 자에 있어서는 인정(人情)과 법(法)에 연유하여 정죄(定罪)하는 것은 성심(聖心)으로부터 재단(裁斷)하시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의(前議)에 다하였습니다.”

하고, 성현(成俔)·한한(韓僴)·채수(蔡壽)는 의논하기를,
 “아버지의 죄를 면(免)하여 주고자 함은 인자(人子)의 지정(至情)이고, 흠휰(欽恤)하고 호생(好生)함은 제왕(帝王)의 지덕(至德)입니다. 하지만 법을 쓰는 데는 반드시 견고하기를 금석(金石)과 같이 하고, 믿기를 사시(四時)와 같이 한 뒤에야 사람이 두려워하고 피함을 알아서 죄고(罪辜)27842) 를 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대명률(大明律)》과 《대전(大典)》을 쓴 지가 이미 오래였습니다. 백성이 모두 익히고 들었는데도 오히려 범죄자(犯罪者)가 서로 이어지고 있으며, 《율조소의(律條疏議)》와 《대관의두(對款議頭)》가 비록 또한 시왕(時王)의 제도라 이르더라도 우리 나라에서는 지금도 아직 시용(施用)을 못하였으므로, 인민(人民)도 또한 듣고 알지 못하며, 중국(中國)에서 행용(行用)하는지의 여부(與否)도 또한 알 수 없는 것이겠습니까? 어찌 한 사람의 연고로써 《대명률》과 《대전》을 가볍게 변경할 수가겠습니까? 또

金石, 信如四時, 然後人知畏避, 而免於罪辜矣。我國用《大明律》及《大典》已久, 民皆習聞, 而猶犯罪者相續, 《律條疏議》、《對款議頭》, 雖云亦時王之制, 我國時未施用, 人民亦不聞知, 中國之行用與否, 亦未可知也, 豈可以一人之故, 輕變《大明律》及《大典》乎? 且法者雖人主不宜輕變, 況以人臣而議紛更乎? 依舊用《大明律》及《大典》, 爲便。” 朴安性、李淑城議: “《大明律》、《律條疏議》、《對款議頭》, 皆明皇帝所議定, 而於死罪數條, 改議以贖, 此於死罪之中, 酌其輕重情義而爲之, 此時王已行之制, 雖曰本朝曾未舉行, 自今行用, 有何不可? 若以輕變舊法爲言, 則昔周公制作禮樂, 而於父母喪, 具定爲斬衰三年, 至宋朱文公, 變爲齋衰、斬衰之法, 至今千載行之, 改舊法而合義, 亦何不可?” 金克儉議: “古人於大辟, 雖已獄成, 不忍遽決, 至於三覆、五覆, 以求生道者, 誠以死者不可復生, 斷者不可復續也。金潰之罪, 雖在《大明律》當坐以死, 於中朝行用《疏議》、《議頭》, 入於贖罪之例,

법(法)이란 것은 비록 인주(人主)라 하더라도 가볍게 변경함은 마땅하지 못한 데, 하물며 인신(人臣)으로써 어지럽게 의논하여 고치겠습니까? 예전대로 변함없이 《대명률》과 《대전》을 쓰는 것이 편합니다.”

하고, 박안성(朴安姓)·이숙감(李淑臧)은 의논하기를,
 “《대명률(大明律)》·《율조소의(律條疏議)》·《대관의두(對款議頭)》는 모두 명황제(明皇帝)가 의정(議定)한 것인데, 사죄 수조(死罪數條)에서는 속(贖)하는 것으로써 고치기를 의논하였으니, 이는 사죄(死罪) 가운데에 그 경중(輕重)과 정의(情義)를 참작해서 만든 것이며, 이는 시왕(時王)이 이미 행한 제도입니다. 비록 본조(本朝)에서는 일찍이 거행(舉行)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행용(行用)한다고 하여 무엇이 불가(不可)함이 있겠습니까? 만약 구법(舊法)을 가볍게 변경한 것으로써 말한다면, 옛적에 주공(周公)이 예악(禮樂)을 제작(制作)하고 부모(父母)의 상(喪)에 모두 참취(斬衰) 3년으로 정하였으나, 송(宋)나라 주문공(朱文公)에 이르러서 변(變)하여 재취참취지법(齊衰斬衰之法)으로 삼아서 이제까지 천년(千年)을 행하였으니, 구법(舊法)을 고쳐서 의리에 합하게 한다면 또한 무엇이 불가하겠습니까?”

하고, 김극검(金克儉)은 의논하기를,
 “옛사람이 대벽(大辟)27843)에, 비록 이미 옥사(獄事)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차마 갑자기 처결하지 못하고 삼복(三覆)27844)·오복(五覆)하기에 이르러서 살리는 길을 구(求)한 것은 진실로 사자(死者)는 다시 살릴 수 없고, 단자(斷者)는 다시 이을 수 없음으로써입니다. 김지(金漬)의 죄(罪)가 비록 《대명률》에 있어 사형(死刑)의 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중국 조정에서 행용(行用)하는 《소의(疏議)》·《의두(議頭)》의 속죄지례(贖罪之例)에 들어 있으니, 이에 따라서 의논하여 시행(施行)하여 인명(人命)을 관대(寬貸)27845) 하고, 이어서 이 글을 가지고 반행(頒行)해서 《대명률》의 흠점(欠點)을 보충함이 편하겠습니다.”

依此議施行，寬貸人命，仍將此書頒行，以補《大明律》之欠，爲便。”李諱、柳濱、許輯、宋汝諧、申用漑議：“《大典》用刑條，去用《大明律》，而無贖死之條，《律條疏議》、《對款議頭》，皆出於《大明律》之後，其贖死九條，未知何據。大抵用法，宜畫一勿撓，不宜別用本朝素所不行之法，況贓汚之科，歷代所嚴，本朝亦依律正斷，不少容貸，猶且犯者相踵，若寬其律，勢難禁戢。臣等以爲，當依舊用《大明律》，以嚴誅贓之法，勿開貪饕之門。”金克忸議：“漬濫取米與紙，擅用無忌，罪犯非輕，但《律條疏議》、《對款議頭》，准贖死罪數條，非十惡之比，酌其輕重情法，以爲定制，此中朝行用之法，豈獨不可行於我朝乎？況漬不送紙於近程本家，遠送任所，臣妄意情有可矜。”許誠、金諶、朴元宗議：“大辟之贖，古人譏之，中朝既頒贓滿八十貫者絞之律，又有贖議，未知其何所據也。今好文之欲贖父罪，情理雖迫，我國自祖宗朝只用《大明律》，況漬所犯，民多受害，以祖宗所未施行之法，遽贖其死，臣等未

하고, 이집(李諱)·유빈(柳濱)·허집(許輯)·송여해(宋汝諧)·신용개(申用漑)는 의논하기를,

“《대전(大典)》의 용형(用刑)하는 조목[條]에는 《대명률(大明律)》을 오래 행용(行用)하였어도 속사지조(贖死之條)는 없습니다. 《율조소의(律條疏議)》와 《대관의두(對款議頭)》는 모두 《대명률》의 뒤에 나왔으니, 그 속사(贖死) 9조(九條)는 무엇에 의거하였는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대저 법을 쓰는 것은 획일(劃一)하여 흔들리지 말아야 마땅하고, 별도로 본조(本朝)에서 본시 행하지 않았던 법을 쓰는 것은 옳지 못한데, 하물며 장오(贓汚)의 과죄(科罪)는 역대(歷代)로 엄격히 한 바이니, 본조(本朝)에서도 또한 율(律)에 의해서 정단(正斷)하여 조금도 용서하지 않았어도 오히려 또 범(犯)하는 자가 서로 이었는데, 만약 그 율(律)을 관대하게 하면 형세가 금집(禁戢)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신 등은 마땅히 예전대로 《대명률》을 써서 주장(誅贓)하는 법(法)을 엄히 하고, 탐도(貪饕)27846) 하는 문(門)을 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김극유(金克旿)는 의논하기를,

“김지(金漬)는 쌀과 종이를 함부로 취하여 멋대로 쓰면서도 거리낌이 없었으니, 범한 죄가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율조소의(律條疏議)》와 《대관의두(對款議頭)》의 준속사죄(准贖死罪) 수조(數條)는 십악(十惡)에 비유할 것이 아니며, 그 경중(輕重)과 인정과 법을 참작하여서 정제(定制)하였으니, 이것은 중국 조정에서 행용(行用)하는 법(法)입니다. 어찌 홀로 우리 조정에서만 행할 수 없겠습니까? 더구나 김지는 종이를 노정(路程)이 가까운 본가(本家)에 보내지 않고 멀리 임소(任所)에 보냈으니, 신의 망령된 생각으로는 정상에 가궁(可矜)함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고, 허계(許誠)·김심(金諶)·박원종(朴元宗)은 의논하기를,

“대벽(大辟)의 속(贖)은 옛사람도 이를 비평하였습니다. 중국 조정에서도 이미

知其可也。贓吏，非惟誅止其身，又錮子孫，猶且犯者相續，今一輕其律，恐難禁戢。”尹愨、洪洞、南世聃議：“爲囚求生道，雖聖人好生之至德，然犯贓應死者，竝從寬典，則貪饕之輩，將無所畏憚矣。大辟之贖，不可爲法於後世，《對款議頭》、《律條疏議》，所謂許贖死罪之法，乃出於一時權宜，非萬世之典，本朝亦不行用，好文欲贖父死罪，情雖可矜，法不可撓，請依《大明律》及《大典》施行。”傳曰：“古之帝王，見有罪當死者，泣而殺之，以其法不可撓也。予於觀稼時，見好文爲父哀號，惻然不忍，然不可以此而壞法貫死也。若此不懲，則後之贓吏，無所畏忌，民之受害，將不可救矣。予反覆思之，不得已從憲府議耳。”

장물(贓物)이 80관(貫)을 찬 자는 교형(絞刑)하는 율(律)을 반포하였는데, 또 속의(贖議)가 있음은 무엇에 의거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김호문(金好文)이 아버지의 죄를 속(贖)하고자 함에 정리(情理)가 비록 박절하더라도 우리 나라에서는 조종조(祖宗朝)로부터 단지 《대명률(大明律)》만을 썼습니다. 더구나 김지(金漬)가 범(犯)한 바는 백성들이 많이 해(害)를 입었으니, 조종(祖宗)께서 시행하지 않았던 법으로써 갑자기 그 사형을 속(贖)함은 신 등은 그 옳음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장리(贓吏)는 오직 주륙(誅戮)함이 그 자신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또 자손(子孫)까지 금고(禁錮)하여도 오히려 또 범하는 자가 서로 이었는데, 이제 한 번 그 율(律)을 가볍게 하면 금집(禁戢)하기 어려울까 두렵습니다.”

하고, 윤민(尹愨)·홍형(洪洞)·남세담(南世聃)은 의논하기를,

“죄수(罪囚)를 위하여 삶을 구(求)하는 도(道)는 비록 성인(聖人)의 호생(好生)하는 지덕(至德)이라고 하나, 그러나 장죄(贓罪)를 범하여 사형에 응할 자에게 아울러 관전(寬典)27847)을 따르게 하면 탐도(貪饕)하는 무리가 장차 두려워하고 꺼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대벽(大辟)을 속(贖)함은 후세에서도 본받을 수 없습니다. 《대관의두(對款議頭)》와 《율조소의(律條疏議)》의 이른바, ‘허속사죄지법(許贖死罪之法)’이란 것은 바로 일시(一時)의 권의(權宜)에서 나온 것이고, 만세(萬世)의 법이 아니기에 본조(本朝)에서도 또한 행용(行用)하지 않았습니다. 김호문(金好文)이 아버지의 사죄(死罪)를 속(贖)하고자 함은 정상이 비록 가금(可矜)하더라도 법(法)은 흔들리게 할 수 없으니, 청컨대 《대명률》과 《대전(大典)》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옛날의 제왕(帝王)은 죄(罪)가 사형에 해당하는 자를 보면, 울면서 죽었으니, 그것은 법(法)이 흔들리게 할 수 없는 까닭에서였다. 내가 관가(觀稼)할 때에, 김호문이 아버지를 위하여 애호(哀號)함을 보고는 측은(惻然)함을 참지 못하였

	<p>다. 그러나 이로써 법(法)을 무너뜨리고 사형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이를 징계하여 다스리지 않는다면 뒤에 오는 장리(贓吏)들이 두려워하고 꺼릴 것이 없어 백성이 해(害)를 입어도 구(救)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반복(反覆)하여 이를 생각하고 부득이 헌부(憲府)의 의논을 따를 뿐이다.” 하였다.</p>	
<p>성종 292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弘治) 7년) 7월 16일 (임인) 3번째기사</p>	<p>예조 판서(禮曹判書) 성현(成僎) 등이 와서 아뢰기를, “신 등이 특사(特賜)한 물건(物件)을 왜인(倭人)에게 유시(諭示)하여 주었더니, 저들은 반드시 전례(前例)에 준(准)하고자 하여 이를 거절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그중에 받아간 자는 한 사람뿐이었으니, 어찌 저들이 받지 않는다고 해서 더 줄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바쳤던 물건을 환급(還給)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빈청(賓廳)에 와서 모인 여러 재상(宰相)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윤필상(尹弼商)·노사신(盧思愼)·이극돈(李克墩)·홍귀달(洪貴達)은 의논하기를, “왜인(倭人)이 소지(所持)한 물건은 국용(國用)에 긴요하지 않은 까닭으로 이미 그 값을 양감(量減)하였더니, 저들이 구례(舊例)를 돈감(頓減)한 것으로 말한 까닭에 또 그 값을 더하였습니다. 그런데 구례(舊例)에 준(准)하려고 하니, 만약 그 말을 따라서 다시 더하여 주면 이것은 진퇴(進退)함이 저들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이니, 우리가 모욕을 받음이 이보다 더 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예조(禮曹)에서 개유(開諭)한 말을 보면 다시 말할 만한 일이 없으니, 그 물건을 환급(還給)하여 저들의 한없는 욕심을 꺾는 것만 못합니다.” 하고, 어세겸(魚世謙)은 의논하기를, “이제 예조(禮曹)에서 개유(開諭)한 말을 보니, 반복(反覆)하여 상세함을 다하였는데, 저들은 오히려 완연(頑然)히 듣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소원(所願)을 이루려고 하니 좃을 수 없습니다. 그 사사로이 바친 백단(白檀)·정향(丁香)은</p>	<p>○禮曹判書成僎等來啓曰：“臣等以特賜物件，諭給倭人，彼欲必準前例，拒之不受，其中受去者一人耳，豈可以彼之不受，而加給之乎？請還給所獻物。” 傳曰：“議于賓廳來會諸宰。” 尹弼商、盧思愼、李克墩、洪貴達議：“倭人所持之物，於國用不緊，故已量減其價，彼以頓減舊例爲言，故又增其價，又欲准舊例，若從其言而更加，則是進退在彼，而不在我也。我之受侮，莫甚於此。今見禮曹開諭之語，更無可言之事，不如還給其物，以折彼無厭之心。” 魚世謙議：“今見禮曹開諭之辭，反覆詳盡，彼猶頑然不聽，必欲遂其所願，不可從也。其私獻白檀、丁香，宜還給其主，以折貪黠之心。” 蔡壽議：“今既立法，因彼之言，輒復更改，則虧損國體，非細故也。且獻無用之物，而多給價，物亦難可繼。今宜還給其物，聽其私賣與還持去，爲</p>

	<p>마땅히 그 주인에게 환급(還給)하여 탐욕이 많고 교활한 마음을 꺾으소서.” 하고, 채수(蔡壽)는 의논하기를, “이제 이미 입법(立法)을 하고 저들의 말로 인해서 갑자기 다시 고치면 국체(國體)를 훼손(毀損)함이니, 작은 탈이 아닙니다. 또 무용(無用)한 물건을 바쳤는데도 값을 많이 주면 물건도 또한 잇대기가 어려우니, 이제 그 물건을 환급(還給)하고 그 사매(私賣)하는 것과 도로 가지고 가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니, 윤필상(尹弼商)의 의논을 따랐다.</p>	<p>便。”從弼商議。</p>
<p>성종 292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弘治) 7년) 7월 18일 (갑진) 1번째기사</p>	<p>이 앞서 장령(掌令) 민이(閔頤)가 아뢰기를, “부경(赴京)하는 자가 호초(胡椒)27884 를 가지고 가서 매매(賣買)하니, 청컨대 절약하여 내려 주어서 그 폐단을 없애소서.” 하였는데,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호초(胡椒)는 국용(國用)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비록 사여(賜與)하더라도 어찌 사람마다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부경하는 사람이 가지고 가서 무역(貿易)함을 신 등은 감히 알지 못하겠고, 민간(民間)에서 많이 쓰는 것도 또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호초는 약재(藥材)에 들어가 무릇 백성으로 약을 조제(調劑)하는 자는 매우 얻기 어렵습니다. 또 왜인(倭人)이 가지고 오는 호초는 다 공무역(公貿易)하도록 하였으니, 값을 면포(綿布)로 주어도 또한 넉넉히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무역(私貿易)하도록 허락하여서 상례(常例)를 삼고, 국용(國用)이 부족하기를 기다려서 다시 공무역(公貿易)하도록 함이 편하겠습니다.” 하니, 명하여 민이(閔頤)와 호조(戶曹)에서 아뢰었던 말을 가지고 의정부(議政府)에 의논하게 하였다.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요즈음 호초(胡椒)를 하사 받은 것이 많아서 이 때문에 민간(民間)에서 흥성(興盛)하게 쓰고, 더 나아가 중국과 무역하기에 이르렀는데, 이제 만약 사여</p>	<p>○甲辰/前此, 掌令閔頤啓: “赴京者, 賣胡椒買賣, 請節賜與, 以祛其弊。” 戶曹啓: “胡椒於國用, 不爲不足, 雖或賜與, 豈得人人而受之? 其赴京人賣行貿易, 臣等未敢知之, 民間多用, 亦未可知。但胡椒入於藥材, 凡民劑藥者, 甚難得之。且倭人賣來胡椒, 盡令公貿易, 則價給綿布, 亦難取贍, 自今許令私貿易, 例以爲常, 待國用不足, 更以公貿易爲便。”命以閔頤及戶曹所啓之言, 議于議政府。李克培議: “近者胡椒受賜者多, 以此民間興用, 延及於中朝貿易。今若賜與有節, 此等之弊, 自然絕無矣。此物, 非本國所產, 或有時乎乏絕, 不若預先多蓄, 以備國家他日之用。”盧思愼議: “本國與倭相隣, 其所買賣, 胡椒居多, 民</p>

(賜與)함에 절약이 있으면 이들의 폐단은 자연히 절무(絶無)할 것입니다. 이 물건은 본국(本國)의 소산(所産)이 아니기에 혹 때로는 절핍(絶乏)함이 있으니, 미리 많이 저축(貯蓄)하여 국가에서 다른 날의 용도에 대비함만 못합니다.”

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본국(本國)과 왜(倭)와는 서로 이웃하여 그 매매(賣買)하는 것은 호초(胡椒)가 많이 차지하므로, 민간(民間)이 이를 얻어 때로는 혹 중국에 가지고 가서 팔기도 합니다. 사여(賜與)는 한때의 특은(特恩)에서 나왔으며 사람마다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사여(賜與)함에 절약하지 않아 이 폐단이 생기게 되었다고 말하나, 아마도 그렇게 된 것은 아닌 듯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조회하러 들어가는 사신(使臣)이 가지고 가는 물건의 수량도 스스로 영갑(令甲)27885)에 나타나 있으니, 다만 범금(犯禁)하는 자만 죄줄 뿐입니다.”

하고, 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호초는 본국(本國)의 소산(所産)이 아니니, 국용(國用) 이외의 민간(民間)의 사용은 통렬히 금지하소서.”

하고, 한치형(韓致亨)은 의논하기를,

“호초(胡椒)를 가지고 중국에서 매매(賣買)하는 자는 통렬히 금지하소서.”

하고, 정문형(鄭文炯)은 의논하기를,

“호초를 하사받는 자가 많지 않은데, 그 부경(赴京)하는 사람이 가지고 가는 물건이 어찌 다 하사받는 데에서 나왔겠습니까? 호초는 여러 약에 많이 들어가니, 민간(民間)에서도 또한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국가(國家)에서 저축(儲蓄)함이 매우 많으면, 우선은 사무역(私貿易)을 허락함으로써 공무역(公貿易)의 폐단을 제거하여 민간의 약이용(藥餌用)으로 공급함이 편하겠습니다.”

하고, 윤효손(尹孝孫)은 의논하기를,

間得此，時或齎賣中朝，賜與出於一時特恩，非人人之所得與。今日，以賜與不節，致生此弊，恐未爲然。入朝使臣，所賣物數，自有著令，但犯禁者，罪之而已。”尹壕議：“胡椒，非本國所産，國用外，民間痛禁。”韓致亨議：“賣胡椒買賣中朝者，痛禁。”鄭文炯議：“胡椒受賜者不多，其赴京人賣去之物，安得盡出於受賜耶？胡椒多入於諸藥，民間亦不可無者也。如今國家儲畜甚多，姑許私貿易，以除公貿易之弊，以資民間藥餌之用爲便。”尹孝孫議：“胡椒，倭土所産，固不可興用往售中國。今許令私貿易，則興利之徒，不無潛輸犯法之弊。自今只令公貿易，以廣國儲，且禁賣赴中朝。”從尹孝孫議。

	<p>“호초는 왜국[倭土]의 소산(所産)이니, 진실로 흥용(興用)하고 중국(中國)에 가서 팔 수 없습니다. 이제 사무역(私貿易)하도록 허락하면 흥리(興利)하는 무리가 몰래 수입(輸入)하여 범법(犯法)하는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니, 이제부터는 단지 공무역(公貿易)만 하도록 하여 나라의 저축(儲畜)을 넓히고 또 중국[中朝]에 가지고 가는 것을 금(禁)하소서.”</p> <p>하니, 윤효손(尹孝孫)의 의논을 따랐다.</p>	
<p>성종 292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弘治) 7년) 7월 20일 (병오) 2번째기사</p>	<p>임금이 첨정(僉正) 이세경(李世卿)의 병증(病證)을 들으시고, 전교하기를, “이세경(李世卿)은 쓸 만한 사람이니, 그에게 급가(給假)27888) 하고 약(藥)을 주라.”</p> <p>하였다.</p>	<p>○上聞僉正李世卿病證，傳曰：“世卿，可用人，其給假、給藥。”</p>
<p>성종 292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弘治) 7년) 7월 23일 (기유) 1번째기사</p>	<p>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이극균(李克均)이 제포 첨절제사(齊浦僉節制使) 여승감(呂承堪)의 첩정(牒呈)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전자에 경차관(敬差官) 정석견(鄭錫堅)이 어량(魚梁)을 금지하는 일로 내려왔을 때에, 항거왜(恒居倭) 오도음소(吾道音所)가 첩사(僉使)에게 밀고(密告)하기를, ‘왜인의 성품은 본시 조급(躁急)하여 생사(生死)를 돌보지 않습니다. 경차관(敬差官)이 비록 금지(禁止)시킨다 하더라도 모름지기 거짓으로 응하는 체하니, 금하지 말도록 하여야 변환(邊患)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고, 또 고기잡는 왜인(倭人) 수계고라(愁戒古羅) 등 20여 인(人)이 왜관(倭館)에 모여서 의논하기를, ‘우리들 포어(捕魚)하는 17선(船)의 격인(格人)27896) 2백 34명(名)이 이제 내지(內地)에서 고기를 잡을 수 없게 되면 생리(生利)할 길이 없으니, 이 뜻을 도주(島主)에게 알림이 마땅하다.’고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어량(魚梁)을 금하는 것은 오로지 이는 첩사(僉使) 때문이므로 무리가 모두 분(憤)하게 여기어 원망하는데, 요즈음 대마도 경차관(對馬島敬差官)이 어량을 쟁탈한 왜인을 과죄해야 한다는 일로써 본도(本島)27897) 에 갔고, 왜인(倭人)들도 또한 섬에 들어가서 도주(島主)가 국가(國家)의 유서(諭書)를 받고 장차 전항인(前項人)을 수포(搜捕)하여 과죄(科罪)한다는 일을 듣고는 마음으로</p>	<p>○己酉/慶尙道觀察使李克均，據齊浦僉節制使呂承堪牒呈啓：“前者敬差官鄭錫堅，以魚梁禁止事下來時，恒居倭吾道音所密告僉使曰：‘倭性本躁，不顧生死，敬差官雖使禁止，須佯應勿禁，庶無邊患。’又有捉魚倭人愁戒古羅等二十餘人，聚倭館議云：‘我等捕魚十七船，格人二百三十四名，今不得內地捕魚，生利無由，當伸此意于島主。’且云：‘魚梁有禁，專是僉使之故，衆皆憤怨。’近日對馬島敬差官，賫魚梁爭奪倭人科罪事往本島，倭人等亦入島，聞島主承國家之諭，將搜捕前項人科罪事，心自恐動，慮或一朝生患，則熊川軍不能及救，請彼人安定間，除監鐵軍外，令左右領船軍合番，</p>

	<p>스스로 공동(恐動)합니다.’고 합니다. 혹 하루아침에 환(患)이 생기게 되면, 응천군(熊川軍)이 구원함에 미치지 못할까 염려되니, 청컨대 저 사람들이 안정(安定)하고 있는 사이에는 염철군(鹽鐵軍)을 제외한 좌령(左領)·우령(友領)의 선군(船軍)으로 하여금 합번(合番)하게 하소서. 또 비밀히 내지(內地)의 재주가 있는 군사(軍士)를 가려서 아울러 방수(防戍)하도록 하고, 바닷가에 사는 백성도 또한 은밀(隱密)한 곳에 옮겨 들여보내며, 연해(沿海) 각 고을 경내(境內)의 군사(軍士)도 또한 아울러 모아서 방수(防戍)하게 하여서 불우(不虞)에 대비하소서.”</p> <p>하니, 명하여 의정부(議政府)·병조(兵曹)와 과평 부원군(坡平府院君)을 불러 의논하게 하였다. 윤필상(尹弼商)·노사신(盧思愼)·윤호(尹壕)·한치형(韓致亨)·정문형(鄭文炯)·성준(成俊)·윤효손(尹孝孫)·허계(許誠)·박원종(朴元宗)은 의논하기를,</p> <p>“항거 왜인(恒居倭人)은 우리 나라 사람과 섞여 살고 있는 지 이미 오래였으니, 대저 일이 있으면 알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만약 군사(軍士)를 가려 방수(防戍)하고, 변민(邊民)을 옮겨 들리어 먼저 우리가 겁내고 나약한 형상을 보인다면 또 저들이 의혹(疑惑)하는 단서[端]를 열게 하면, 아마 가만히 앉아서 이기는 양책(良策)이 아닌 듯합니다. 이제 다만 마땅히 변장(邊將)에게 하유(下諭)하여 형적(形跡)을 드러내지 말고, 더욱 견고하게 방어(防禦)하여서 불우(不虞)에 대비할 따름이니, 다시 다른 계책은 없습니다.”</p> <p>하니, 어서(御書)하기를,</p> <p>“가(可)하다.”</p> <p>하였다.</p>	<p>且密抄內地有才軍士，并令防戍，濱海居民，亦於隱密處移入，沿海各官境內軍士，亦并聚防，以備不虞。” 命召議政府、兵曹與坡平府院君議。 尹弼商、盧思愼、尹壕、韓致亨、鄭文炯、成俊、尹孝孫、許誠、朴元宗議：“恒居倭人與我國人雜處已久，凡有事，無不知之。 今若軍士抄防，邊民移入，先示我劫弱之形，且啓彼疑惑之端，恐非坐勝之良策。 今但當下諭邊將，勿露形跡，益固防禦，以備不虞而已，更無他策。” 御書曰：“可。”</p>
<p>성종 292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弘治) 7년) 7월 23일</p>	<p>승정원(承政院)에서 말비(末非)가 치사(致死)한 일을 의논하니, 권경우(權景祐)·강귀손(姜龜孫)·구치곤(丘致岷)·송질(宋軼)은 의논하기를,</p> <p>“말비(末非)의 죽음은 정상이 의사(疑似)한 데 관계된 것이 하나가 아닙니다.</p>	<p>○承政院議末非致死事。 權景祐、姜龜孫、丘致岷、宋軼議：“末非之死，情涉疑似者非一，若李得男打死，則當</p>

<p>(기유) 2번째기사</p>	<p>만약 이득남(李得男)이 때려 죽었다고 하면, 당초에 형조(刑曹)에서 추문(推問)한 것과, 다음날 고장(告狀)에 어찌하여 여기에 언급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말비(末非)가 병(病)이 심하여 그 어머니가 술을 딸[女子] 성대(性代)의 집에서 구하면서 술의 유무(有無)만을 묻고 타상(打傷)한 일을 말하지 않았다가 그가 이미 죽는 데 미쳐서 마을 사람들이 그 연유를 물으니, 그 어머니가 더위를 먹음으로써 죽었다고 대답하였으니, 이는 모두 의심할 만한데, 더구나 그의 형(兄) 성대(性代)와 절린(切隣)인 돈이(敦伊) 등의 초사(招辭) 안에 하나도 타상(打傷)하였다는 말이 없었으며, 한성부(漢城府)에서 검험(檢驗)27898 할 때에도 또한 아무 물건[某物]으로 맞아 상하였다는 것을 가리키지 않았고, 그 상처(傷處)를 말한 것이 모두 허겁처(虛劫處)27899 가 아니니, 구타(毆打)하여 치사(致死)한 것으로써 논(論)함은 불가(不可)합니다. 비록 목을 잡아 휘두르고 담장 모퉁이에 부딪쳐 상하였다고 이르더라도 모두 증거로 상고할 수 없다면, 어찌 그 어머니가 이득남(李得男)을 원망하고 그 딸과 서로 싸웠다고 거짓 꾸며서 말할 줄 알겠습니까? 이것에 의거하여 자세히 참고하면, 말비(末非)는 그 후 별도로 다른 까닭이 있어 우연히 치사(致死)함인가 합니다.” 하였다.</p>	<p>初刑曹推問及翌日告狀，何不及此？且末非病極，其母索酒于女子性代家，問酒有無耳，不言打傷事，及其既死，里人問其由，其母答以中(署)〔署〕而死，是皆可疑。況其兄性代及切隣敦伊等招內，一無打傷之語，漢城府檢驗時，亦不指爲某物被打所傷，而其所謂傷處，皆非虛劫，則不可論以歐打致死。雖曰扼項揮置，墻頭觸傷，皆無證考，則安知其母怨得男與其女相鬪，誣構爲辭歟？據此參詳，則末非，其或別有他故，邂逅致死歟？”</p>
<p>성종 292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弘治) 7년) 7월 27일 (계축) 1번째기사</p>	<p>대마주 경차관(對馬州敬差官) 권주(權柱)가 와서 복명(復命)하였다. 종정국(宗貞國)이 예조(禮曹)에 치서(致書)하기를, “공손히 생각하건대 자조(紫詔)27917 를 관원에게 명하여 번복(蕃服)의 지경에 이르게 하였으니, 능히 양국(兩國)의 즐거움을 맺었습니다. 별폭(別幅)에 기록한 것을 살피건대 건건(件件)마다 지나치게 많이 내려 주시니, 이는 기뻐서 받드는 지극함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멀리서 듣건대 귀국(貴國)의 삼포(三浦)에 우리의 서민(庶民)이 소옥(小屋) 약간수(若干數)를 지었다고 하니, 참으로 불법(不法)입니다. 그리고 이에 여러 해 동안 정약(定約)한 어자(漁子) 등의 일은 이제 어량(魚梁)을 넘어서 간기(干紀)27918 하여 서로</p>	<p>○癸丑/對馬州敬差官權柱來復命。宗貞國致書于禮曹曰：恭惟紫詔，命官攸達蕃服之境，能結兩國之歡。就審錄于別幅，件件過優之賜，寔不勝欣戴之至。特羨聞，於貴國三浦，吾庶民作小屋若干數，實不法也。爰多歲定約漁子等事，今越于魚梁干紀，有相爭殘傷官差，爲不遜者，得書知諸焉。或今歲四月二日，賊船</p>

다투어 관에서 차견한 이를 상(傷)하게 한 불손(不遜)한 자가 있었음을 서찰을 받아 보고서 알았습니다.

또 금년 4월 2일에 적선(賊船)이 전라도(全羅道) 땅에 이르러서 만났던 공선(貢船)의 먹을 것[膳]과 상박(商舶)의 재산(財産)을 탈취(奪取)하고 인축(人畜)을 손상(損傷)한 연유를 듣고는 매우 가련하게 생각하였으며, 또 같은 달 초9일에 차례로 적선(賊船)이 제주(濟州)에 가서 변비(邊鄙)를 현혹(眩惑)하고 중장(重將)과 서로 싸웠는데 왜인(倭人)이 쏘고서 버렸던 화살 2개(箇)에 왜국(倭國)의 글자를 새기었으니 그 증거가 된다고 하였으나, 이 일은 자세하지 못합니다. 어느 섬으로부터 왔는지를 아십니까? 만약 우리 섬[我島]27919)의 학도(虐徒)가 한 짓이라면 그 죄(罪)는 도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섬 안을 수색(搜索)하여 범(犯)한 무리를 잡아내어 죄과(罪過)를 금집(禁戢)하지 않을 수 없으니, 청컨대 애오라지 허망된 거짓을 품고 있지 않음을 멀리서 살피소서. 신(臣)은 여러 날 깊은 병에 걸려서 배와 가슴이 치유되지 않으므로, 보국(保國)의 일은 용납되지 못하여 이 때문에 관사(官使)를 대면(對面)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천명(天命)이 편안한 날의 남음이 있으면, 시일(時日)을 옮기지 않고 삼포(三浦)의 쇄환(刷還)하는 일은 그 제(除)할 만한 자는 제(除)하고 쇄환(刷還)할 만한 자는 쇄환시켜, 어량(魚梁)을 넘어 간기(干紀)하여 불법(不法)을 초치(招致)한 자는 깊이 금집(禁戢)을 굳게 더하겠습니다. 적선(賊船)의 일은 섬 속을 수색하여서 혹 생포(生捕)하든가 혹은 머리[首]를 함(函)에 담아서 바칠 것을 기필하겠습니다. 우리는 조종(祖宗) 이래로 성은(聖恩)을 입었으며 번신(蕃臣)의 반열[列]에 처(處)하였습니다. 세간(細奸)27920)의 과죄(過罪)를 알고서 일부터 늦추는 것은 상천(上天)이 보고 계시니, 엿드려 바라건대 천충(天聰)에 능히 상달(上達)되면, 다행하고 또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至全羅道地，所遇貢船之膳，商舶之財產，奪取之焉，損傷人畜之由，聞以爲其感憐。又同月初九日，相次賊船，往于濟州，眩惑邊鄙，與重將相戰，而倭人所射棄之箭，二箇之銘以倭國字，爲其徵，斯事不詳，諳自何島州者乎？若有我島虐徒所作，厥罪難逃，然則搜索我島中，擗採所犯黨，不可不禁戢於罪過，請高察，聯無抱虛詐，臣累日罹沈痾，腹心未痊愈者，無容保國事，以茲剩，不對面於官使。若天命有餘息日，不移時日，三浦刷還事，除其可除者，刷還其可刷還者，越干魚梁干紀，致不法者，深堅加禁戢者，賊船事搜索島中，而或生捕，或函首以可獻者必矣。吾祖宗以來，蒙聖恩而處藩臣之列，細奸之過罪，知而故緩之者，上天監之，伏冀能達天聰者，幸又幸。

<p>성종 292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7월 27일 (계축) 2번째기사</p>	<p>대마주(對馬州) 평조신 형부 소보(平朝臣刑部小輔) 종정수(宗貞秀)가 예조(禮曹)에 치서(致書)하기를, “존후(尊候)의 동지(動止)가 강녕하고 복되시며 청녕(淸寧)하고 진중(珍重)하십니까? 공손히 생각하건대 내려 주신 칙서(勅書)는 삼가 잘 살피었으며, 별폭(別幅)의 물건(物件)은 다 배령(拜領)27921 하였습니다. 관명(寬明)하신 덕(德)과 인자(仁慈)하신 은혜는 감사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선례(先例)에 정약(定約)한 뜻을 배반한 제포(濟浦)의 서민(庶民) 등이 어량(魚梁)을 쟁탈(爭奪)한 나머지 관에서 차견한 이를 손상(損傷)한 것과 또 적선(賊船)의 무리가 같은 달 양일(兩日)에 혹 4척(隻)으로, 혹은 2척(隻)으로 전라도(全羅道)의 지경(地境)에 이르러서, 서울로 가는 공선(貢船)과 상선(商船)을 맞아 재물(財物) 이하(以下)를 탈취(奪取)하고 인축(人畜) 등을 잔인하게 상(傷)하게 한 것과 또 제주(濟州) 화탈도(火脫島)에 이르러 변장(邊將)과 서로 싸워 인민(人民)을 훼손(毀傷)한 자의 자세한 사정은 글을 받아보지 않았으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시일(時日)을 옮기지 않고 수색(搜索)하여서 혹 추포(追捕)하고 혹은 살륙(殺戮)하여 비록 그 죄를 심리할 만하나, 노부(老父)께서 지난 번 병으로 인하여 자상히 처리할 수 없었으므로 다른 날 병이 나은 뒤에, 이 뜻을 고(告)하여 그 실지 여부를 규명(糾明)하겠습니다. 비록 노부(老父)께서 비록 허소(虛疎)함을 이루었으나 신(臣)이 정평(政平)의 정성을 다하여서 충공(忠功)을 거두겠사오니, 밝게 상문(上聞)에 계달(啓達)하시면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p>	<p>○對馬州平朝臣刑部少輔宗貞秀致書于禮曹曰： 尊[侯] [候] 動止康祐，淸寧珍重？恭惟，所示賜勅宣，謹以審之，特別幅件物，悉拜領。寬明之德，慈仁之恩，不耐感謝之至。就中背先例定約之旨，濟浦之庶民等，爭奪魚梁剩損傷官差者，或賊船之徒，同月兩日，或四隻或二隻，至于全羅道地境，逢于京進之貢船，并商船奪取財物以下，忍傷人畜等者，或至于濟州火脫島與邊將相戰，毀傷人民者，委悉矣，不獲書，不可知之。不移時日搜索，而或追捕或殺戮，雖可審厥罪，因于老父，頃疾痛不能詳之，佗日醫愈之後，告于此旨，糾明實否，縱老父雖致虛疎，臣以致政平之誠，可抽忠功矣。亮達上聞，惟幸。</p>
<p>성종 292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7월 27일 (계축) 3번째기사</p>	<p>중 이에수 무승(宗伊豫守茂勝)이 치서(致書)하기를, “머리를 조아리고 조선국(朝鮮國) 예조 대인(禮曹大人) 족하(足下)에게 절하고 답장합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고맙게도[忝辱] 내려 주신 조서(詔書)를 삼가 절하고 받아보았는데, 이것은 양국(兩國)이 변비(邊鄙)를 평정(平政)하여 더욱</p>	<p>○宗伊豫守茂勝書曰： 稽首拜復朝鮮國禮曹大人足下。恭惟，忝所示賜詔書，謹以拜之，是則兩國之平政邊鄙，彌安枕基本也。特別幅件</p>

안침(安枕)하는 기본(基本)이었습니다. 특히 별폭(別幅)의 건건(件件)을 영광되게 내려 주시니, 아울러 배령(拜領)하여 재대(載戴)의 지극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유시하신 바 삼포(三浦)의 서민(庶民)들은 전의 약속에는 60호(戶)이었는데, 그 뒤에 혹 자손(子孫)이라든가 혹 생치(生齒)27922) 가 날로 더욱 번성(繁盛)하고 또한 죄를 짓고 도망한 간세(姦細)한 무리가 투우(投寓)하면서 변흔(邊釁)을 이름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이제 사절(使節)을 보내어 비록 쇠환(刷還)할 만하나, 과군(寡君)이 요즈음 질병(疾病)에 걸려서 통고(通苦)가 심히 절급(切急)합니다. 이러므로 모든 정사를 생략하여 보국(保國)의 일도 용납하지 못하니, 병이 치유되는 흔적을 내일이라도 얻으면 문득 급사(急使)를 보내어 쇠환(刷還)하여 구약(舊約)대로 제포지민(齊浦之民)을 책입지겠습니다.

선례(先例)의 정약(定約)을 어기고 마음대로 방자하게 어량(魚梁)에 간기(干紀)하여 분원(忿怨)을 일으키게 하고, 관에서 보낸 이를 손상(損傷)시킨 일은 글을 배독하여서 자세히 알았으니, 참으로 불법(不法)한 일입니다. 이 죄(罪)는 더욱 중(重)하니, 어찌 감히 용서하겠습니까? 또 적선(賊船)의 무리가 같은 달 양일(兩日)에 변비(邊鄙)를 현혹(眩惑)시키고, 공선(貢船)의 먹을 것과 상박(商舶)의 재산(財産)을 탈취한 것과 변장(邊將)과 서로 분쟁(忿諍)하여서 인축(人畜)을 훼손(毀傷)한 일은 조명(詔命)을 배문(拜聞)하고서 알았는데, 이 죄는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신 바 왜인(倭人)과 서로 싸울 때에 쏘았던 화살 2개(箇)에 본국(本國)의 글자로써 새겼다 하여 그 증거를 삼으시니, 이 일은 자세하지 못합니다. 어떤 섬으로부터 온 자인지를 아십니까? 만약 우리 섬의 사나운 무리가 한 것이면 그 죄(罪)는 도망할 수 없으니, 수색(搜索)하여서 혹 잡든가 혹은 살륙(殺戮)하여 부쳐 보내어 천청(天聽)에 상달하게 하겠습니다. 전에 아뢴 것과 같이 귀국(貴國)을 범한 적도(賊徒)에 그 증거가 있으면 유무(有無)를 논(論)하지 않고 주륙(誅戮)하여 보내겠습니다. 저는 원래 존명(尊命)

件榮賜，併拜領，不耐載戴之至者也。就中所示三浦之庶民，前約六十戶，其後或子孫或生齒，日益繁滋，亦逋逃姦細之徒，投寓而成邊釁尤多，今遣使節，雖可刷還，寡君，比頃罹于疾病，痛苦甚切，以是省諸政，無容保國之(之)事，痊愈蹤雖得來日便，遣急使刷還，以任舊約齊浦之民，違先例定約，橫恣魚梁干紀，爲發忿剩損傷官差之事，拜書而審知之，實不法也。斯罪尤重，豈敢赦之乎？或賊船之徒，同月兩日，眩惑邊鄙，奪收貢船之膳，商舶之財產，與邊將相忿諍，而毀傷人畜之事，詔命拜聞而審之，斯罪無何奈之，所示倭人相戰時所射之箭，二箇之銘，以本國字，爲其徵，斯事不詳，諳自何州島者乎？若有吾島虐徒所作，厥罪無所逃，搜索之，或擄採或殺戮，以乃寄送之，達天聽者也。于前如令啓犯貴國之賊徒，有其徵則不論有無，誅以送之，吾元無違尊命，于今豈有相渝乎？所示督責彼此三箇事，敢以不可緩之，寡君平復後，縱雖抱緩怠之心，臣審諭之，急究其事，彼此行戮，抽忠功者也。聊不可致虛踈矣，亮察。

	<p>을 위반함이 없었으니, 이제 어찌 변(變)함이 있겠습니까? 독책(督責)하여 보이신 피차(彼此) 3개사(三箇事)는 감히 늦출 수 없습니다. 과군(寡君)이 평복(平復)된 뒤에 비록 늦추거나 해태(懈怠)한 마음을 품었다 하더라도 신(臣)이 자세히 고(告)하겠으며, 급히 그 일을 궁구(窮究)하여 피차(彼此)를 행륙(行戮)하여 충공(忠功)을 뵈낼 것이니, 애오라지 허소(虛疎)할 수가 없음을 양찰(亮察)하소서.”</p> <p>하였다.</p>	
<p>성종 292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7월 29일 (을묘) 3번째기사</p>	<p>대마 도주(對馬島州)의 서계(書契)를 의논하니,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대마도 서계(對馬島書契)를 보니, 비록 곡진하게 좃는다는 언사(言辭)는 없더라도 또한 불손(不遜)한 말이 없으니, 서서히 하는 것을 관망함이 마땅합니다.”</p> <p>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이번의 수건(數件)의 서계(書契)를 살펴보니, 대개 어기고 거스리는 언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종정국(宗貞國)의 병(病)의 허실(虛實) 또한 알 수 없으니, 아직은 호송 왜인(護送倭人)을 기다려 자세히 물어 새행하소서.”</p> <p>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이제 종정국(宗貞國) 및 제인(諸人)의 서계(書契)를 보건대 모두 그 약속(約束)을 어기지 않았습니.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저 사람들이 한 섬의 척박(瘠薄)한 땅에 살면서 의식(衣食)의 소출(所出)이 없고, 오로지 우리 나라만 쳐다보며 자생(資生)하기 때문입니다. 왜인의 성품은 표급(標急)하고 삶을 가볍게 여기어 비록 한 사람이더라도 분노(忿怒)를 견디지 못하나, 갑자기 일이 생기면 그 도주(島主)와 포중(浦中)의 유식(有識)한 무리는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모름지기 지나치게 염려할 것은 없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도주(島主)의 처치(處置)하는 것을 관망함이 마땅하고, 국가(國家)에서도 또한 처치함이 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p>	<p>○議對馬島主書契。 尹弼商議：“觀對馬島書契，雖無曲從之辭，亦無不遜之語，當徐觀所爲耳。” 李克培議：“就審今次數件書契，大概無違忤之辭，然貞國病之虛實，亦未可知，姑待護送倭人，詳問施行。” 盧思愼議：“今觀宗貞國及諸人書契，皆不違其約束，所以如此者，彼人等居一島瘠薄之地，衣食無所出，專仰我國，以資生耳。 倭性標急輕生，雖一人，不耐忿怒，倉卒生事，其島主及浦中有識之徒，必不爾也，不須過慮。 臣意以謂，當觀島主處置，而國家亦當有處置矣。” 尹壕、韓致亨、尹孝孫議：“姑觀島主所爲。” 從弼商議。</p>

	<p>하고, 윤호(尹壕)·한치형(韓致亨)·윤효손(尹孝孫)은 의논하기를, “아직은 도주(島主)의 소위(所爲)를 관망하게 하소서.” 하니, 윤필상은 의논을 따랐다.</p>	
<p>성종 293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8월 4일 (경신) 2번째기사</p>	<p>사복시 제조(司僕寺提調) 노사신(盧思愼)·이계동(李季叟)이 와서 아뢰기를, “전자(前者)에 호조(戶曹)에서 연곡(年穀)이 흉년 들었다 하여 본시(本寺)에 바치는 고초(藁草)를 양감(量減)하였는데, 말을 사육(飼育)할 밀천이 넉넉하지 못할 듯하니, 청컨대 예전 그대로 감하지 않도록 하소서. 또 올해에는 들풀 [郊草]을 많이 축적(蓄積)하지 않을 수 없는데, 살곳이[箭串]의 들풀을 사취 (私取)하는 자가 많으니,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병조(兵曹)로 하여 금 이를 금하게 하소서.” 하고, 이계동이 또 아뢰기를, “어승마(御乘馬)27934) 는 종류가 모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신이 일찍이 야 인(野人)의 말을 보건대 몸집이 크고 좋은 것이 매우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야인의 말을 바치는 자가 있었는데, 그 후 무슨 까닭으로 중지되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야인의 강성함이 이때보다도 더한 적은 없는데, 군사가 굳세고 말이 좋은 것은 우리 나라의 이(利)가 아닐 것입니다. 신 이 들으니, 야인이 중국 조정에 갈 때에 양마(良馬)와 초피(貂皮)를 가진 자가 아니면 입관(入關)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신은 야인으로 하여금 말을 바치도록 허락하고 값을 넉넉하게 준다면, 나라에는 양마(良馬)가 있게 될 것이고, 야인의 강성한 세력 또한 점점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고초(藁草)와 들풀[郊草]의 일은 마땅히 아뢴 대로 하도록 하라. 야인의 말 바치는 것은 간(諫)하는 자가 말하기를, ‘우리 나라에도 또한 말이 있는데, 어 찌 야인에게 의뢰하겠습니까?’ 하였고, 《서경(書經)》 27935) 에 이르기를, ‘조그만 행동을 삼가지 않으면 마침내 큰 덕(德)에 누(累)를 끼친다.’ 하였으</p>	<p>○司僕寺提調盧思愼、李季叟來啓曰： “前者戶曹，以年穀不登，量減本寺所 納蒿草飼馬之資，恐未給也。請仍舊 勿減。且今年郊草，不可不多蓄也， 箭串郊草，私取者多，不可不禁。請 令兵曹禁之。”季全又啓曰：“御乘馬， 類皆非良。臣嘗觀野人之馬，體大良 善者頗多，古有野人獻馬者，其後不知 何以中止乎。臣謂，野人之強，莫盛 於此時，兵強馬良，非我國之利也。 臣聞，野人赴中朝之時，非持良馬、貂 皮者，不得入關，臣意以爲，許令野人 獻馬而與直優，則國有良馬，而野人強 盛之勢，亦稍弱矣。”傳曰：“藁草、 郊草事，當如所啓。野人獻馬，有諫 之者曰：‘我國亦有馬，何賴於野人哉？ 《書》曰：「不矜細行，終累大德。 。」’以此止之，若令獻馬，而弱野人 之勢則未也，安可以數匹之馬，而弱彼 之強哉？此必無之理也。” 【史臣曰：“國家馬政，至詳至盡，馬 籍所載，歲以滋息，則所不足者，非馬</p>

	<p>므로, 이 때문에 이를 멈춘 것이다. 말을 바치게 하여서 야인의 세력을 약하게 만든다는 것 같은 것은 그렇지 않다. 어찌 몇 필의 말을 가지고 그들의 강성함을 약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이는 반드시 그럴 이치가 없는 것이다.” 하였다.</p> <p>사신이 논평하기를, “국가의 마정(馬政)이 지극히 상세하고 지극히 방법을 다 하여서, 마적(馬籍)에 실린 바가 해마다 불어나고 있으니, 부족한 것은 말이 아니다. 또 양마가 없다 하여도 또한 나라의 해(害)가 아니다. 옛날에 이광리(李廣利)27936)가 이사(貳師)27937)를 정벌한 지 3년 만에 해골(骸骨)이 쌓이고 피를 뿌려 재앙이 만백성에게 미쳤으니, 진실로 무제(武帝)의 이물(異物)을 구하는 마음이 격발(激發)한 데에 말미암은 것이었다. 만일 임금께서 노사신(盧思愼) 등의 말을 채용(採用)하여서 마침내 동요(動搖)하였다면, 어찌 막북(漠北)27938)의 산물(產物)로 내구(內廐)를 모두 채우고자 하지 않았음을 알겠는가? 야인이 우리에게 공물(貢物)을 바치는 것은 바르고도 성실한 마음으로 상국(上國)을 받드는 뜻이 있거나, 죽어도 두 마음을 먹지 않는다는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편으로는 위세(威勢)를 두려워함이고, 한편으로는 재화(財貨)를 탐낼 뿐이니, 어찌 준마[駟駿]의 좋은 물건을 흠어서 양전(壤奠)27939)을 삼을 것인가? 이와 같은데도 양마를 얻어 어구(御廐)를 채울 수 있다고 일컬으니, 어리석음이 아니면 거짓이다. 이계동(李季叟)은 무인(武人)이지만, 노사신(盧思愼) 또한 이같은 논계(論啓)가 있었으니, 장차 어찌 저 정승(政丞)을 쓰겠는가?” 하였다.</p>	<p>也，且令無良馬，亦非國之害也。昔李廣利伐貳師三年，積骸灑血，禍延齊民，良由武帝求異物之心激之也。脫上納，用思愼等之說，而心遂蕩焉，則安知不欲使漠北之產，盡充內廐哉？野人之納貢于我者，非有端誠奉上，有死無二之心也。一以畏威，一以貪貨耳，其肯撤駟駿之材，爲之壤奠也哉？如是而謂得良馬，可充御廐者，非愚則詐也。季全武人也，思愼而亦有是啓，將焉用彼相？”】</p>
<p>성종 293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弘治) 7년) 8월 5일 (신유) 2번째기사</p>	<p>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윤장(尹璋)이 와서 아뢰기를, “존금(存今)이 스스로 풍천위(豐川尉)와 서로 간통한 것이 아니라, 풍천위가 그 어미와 함께 약속하여 이루어졌으니, 존금은 진실로 죄가 없습니다. 또 전지(傳旨)하시기를, ‘비록 풍천위의 첩을 찾더라도 나는 죄를 다스리지 않겠다.’ 하셨는데, 이제 죄준다면, 신은 전하(殿下)께서 백성에게 실신(失信)할까</p>	<p>○司憲府持平尹璋來啓曰：“存今，非自與豐川尉相奸也，豐川尉，乃與其母共約成之，則存今固無罪也。且傳旨云：‘雖得豐川之妾，予不治罪。’而今乃罪之，臣恐殿下失信於民也。且禮</p>

	<p>두렵습니다. 또 예빈시 관관(禮賓寺判官) 윤형로(尹衡老)를 이제 겸지평(兼持平)을 삼으셨는데, 윤형로는 이미 내력(來歷)이 없고, 또 물망(物望)이 없으니, 개차(改差)하기를 청합니다. 또 집의(執義) 이승건(李承健)으로 겸필선(兼弼善)을 삼으셨는데, 본부(本府)는 백관(百官)을 규찰(糾察)하므로, 동궁(東宮)의 요속(僚屬)과 섞여 있는 것은 마땅치 않으니, 청컨대 필선을 개차(改差)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p> <p>“필선(弼善)은 개차(改差)하도록 하라. 윤형로(尹衡老)는 비록 내력이 없다고 말하나, 이는 다만 창고(倉庫)의 곡식을 두량(斗量)하는 일뿐이니, 경차관(敬差官)으로서 어사(御史)를 겸대(兼帶)하는 것이 방해될 것이 없지 않겠는가? 존금(存今)의 일은 내가 이미 모두 말하였는데, 이제 어찌 다시 아뢰는가?” 하였다. 윤장(尹璋)이 또 아뢰기를,</p> <p>“법은 동요(動搖)시켜서는 안됩니다. 한 번 동요시키면 백성이 손·발을 들 곳이 없게 되니, 율 밖의 죄를 사람에게 더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필부(匹夫)도 오히려 실신(失信)할 수 없는데, 하물며 인군(人君)이겠습니까? 영안도(永安道)는 인심이 완우(頑愚)하여 창고의 곡식을 두량하는 것 또한 중한 일이 되니, 물망(物望)이 없는 자는 마땅히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p> <p>“윤형로(尹衡老)를 보낼 수 있는지 여부는 이조(吏曹)에 물어보도록 하겠다. 존금(存今)은 내가 만약 죄를 다스린다면 실신이라고 말하여도 가하나, 내가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닌데, 어찌 실신이라고 말하는가? 한 집안의 일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노비(奴婢)는 늘 한곳에 살지 못하고 오직 주인의 명에 따르니, 내가 존금으로 하여금 정읍(井邑)에 옮겨 살게 한 것이 죄준 것이 된단 말인가? 그대들이 감히 말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였다.</p>	<p>賓判官尹衡老，今爲兼持平，衡老既無來歷，又乏物望，請改差。且以執義李承健爲兼弼善，本府糾察百官，不宜與東宮僚屬混處也，請改弼善。” 傳曰：“弼善改差。衡老雖曰無來歷，此但倉穀斗量之事耳，以敬差官兼帶御史，無乃不妨乎？存今事，予既諭之盡矣，今何更啓耶？” 璋又啓曰：“法不可動，一動，民無所措手足，不可以律外之罪，加之於人也。且匹夫，尙不可失信，況人君乎？永安道，人心頑愚，而倉穀斗量，亦爲重事，無物望者，不宜遣也。” 傳曰：“衡老可遣與否，問于吏曹。存今，予若治罪，則謂之失信，可也，予非治罪，何謂失信耶？以一家之事言之，奴婢不常厥居，惟主之命，予使存今移居于井邑，是爲罪之乎？爾等敢言之意，何耶？”</p>
성종 293권, 25년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윤장(尹璋)이 와서 아뢰기를,	○司憲府持平尹璋來啓曰：“無罪而付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8월 6일
(임술) 3번째기사

“죄가 없는데도 부처(付處)하는 것은 옛부터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존금(存今)의 부처는 곧 율(律) 밖의 것이니, 이는 마땅히 들어주어야 할 일입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그대들이 한낱 존금(存今)을 위하여 이와 같이 여러 번 아뢰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존금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논할 필요가 없고, 그대들이 임금의 허물로 핑계대어 이를 아뢰는 것은 옳지 않다.” 하였다. 윤장이 다시 아뢰기를,
 “신 등은 한낱 존금을 위하여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대저 천사(遷徙)라는 것은 그 가장(家長)이 죽으면 그 집 식구는 마땅히 방환(放還)하여야 하며, 만약 죄주고자 한다면 마땅히 그 어미를 죄주어야 하지만, 그 어미도 오히려 죄가 없는데, 존금이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이제 전하(殿下)께서는 이미 사람들에게 실신(失信)하시고, 또 법(法) 밖의 율(律)을 쓰셨습니다. 믿음이란 임금의 큰 절도(節度)이니, 옛사람이 이르기를, ‘믿음이 없으면 백성을 부릴 수 없다.’ 하고, 또 이르기를,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서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한낱 존금의 일로써 두 가지 잘못이 있으시니, 신 등이 말을 그치지 않는 것은 천의(天意)를 돌이킬 것을 기약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신 등이 듣건대 영안도(永安道)의 여러 고을은 창고의 곡식이 휴흠(虧欠)이 많이 있어서 암련(諳練)하고 상밀(詳密)한 자가 아니면 아마 검핵(檢覈)할 수 없을 듯하니, 청컨대 빨리 개정(改正)하소서.”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윤형로(尹衡老)는 일찍이 수령(守令)이 되어 십고 십상(十考十上)으로 성적(聲績)이 있었다. 수령은 친민(親民)하는 직책으로서 임무(任務)가 막중(莫重)한데도 윤형로가 이를 능히 하였으니, 어찌 양곡(量穀)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바가 있겠는가? 그리고 내가 처음에 이르기를, ‘비록 양첩(良妾)을 얻었다 하더라도 죄를 더하지는 않으려 한다.’고 하였는데, 비상(砒霜)의 일은 크고,

處者, 自古無之, 存今付處, 乃是律外, 此則在所當聽之事也。” 傳曰: “爾等爲一存今, 而如此屢啓, 何哉? 存今之有罪、無罪, 不須論也。 爾等托以人君之過惡而啓之, 不可也。” 璋更啓曰: “臣等非爲一存今而啓之, 大抵遷徙者, 其家長死, 則其家口當卽放還, 若欲罪之, 當罪其母, 而其母尙且無罪, 則存今有何罪焉? 今殿下旣失信於人, 又用法外之律。 信者, 人君之大節也, 古人云: ‘無信, 無以使民。’ 又云: ‘人無信, 不立。’ 殿下以一存今之事, 而有兩失焉。 臣等所以言之不已者, 欲期於回天也。 臣等聞, 永安道諸邑倉穀, 多有虧欠, 非諳鍊詳密者, 恐不能檢覈, 請亟改正。” 傳曰: “衡老曾爲守令, 十考十上而有聲績, 守令親民之職, 任莫重焉, 而衡老能之, 則安有不堪量穀之事哉? 予初云: ‘雖得良妾, 不欲加罪者。’ 以砒礪之事大, 而良妾之事小也, 公主與光載大不協, 視如仇讎, 光載今雖付處, 後必有放還之時, 存今若在, 則當有復通之理, 故使遷居外方, 非罪之也, 何以云失信也?” 璋更啓曰: “衡老雖曰能於守令,

	<p>양첩의 일은 작기 때문이다. 공주(公主)가 임광재(任光載)와 크게 불화(不和)하여 보기를 원수같이 하는데, 임광재를 지금 비록 부처(付處)하였다 하더라도 후일에 반드시 방환(放還)할 때가 있을 것이니, 존금이 만약 있다면 마땅히 다시 서로 통할 도리가 있는 까닭에, 외방(外方)에 옮겨 살게 한 것이지, 죄준 것은 아니다. 무엇을 가지고 실신하였다고 이르는가?”</p> <p>하였다. 윤장이 다시 아뢰기를, “윤형로가 비록 수령의 일에 능하였다고 하나, 어사(御史)의 직임은 가리지 않을 수 없으니, 마땅히 물망(物望)이 있는 자를 가려서 보내야 합니다. 존금의 일은 상교(上固)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그러나 무릇 부처는 친척을 떠나고 토전(土田)을 버려야 하므로, 그 원통함이 작지 아니하니, 태장(笞杖)의 죄를 이것과 동등(同等)하게 논할 수 없습니다. 필부도 스스로 사는 도리를 다하지 못하면 성덕(聖德)에 누(累)가 될까 두려우니, 또한 천지의 화기(和氣)를 손상함이 있습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인물을 진퇴(進退)시키는 것을 진실로 이와 같이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존금은 단지 외지(外地)로 옮겨서 삶을 영위(營爲)하게 하였는데, 어찌 사는 도리를 얻지 못하였다고 이르겠는가? 그대들이 비록 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나도 또한 그대들의 논집(論執)이 이같이 극도에 이를 줄은 알지 못하였다. 일찍이 이미 대비(大妃)께 취품(取稟)하여서 하였으니, 고칠 수 없다.”</p> <p>하였다.</p>	<p>然御史之職，不可不擇，當選有物望者遣之。存今之事，上教固當，然凡付處，離親戚、棄土田，其冤不小，笞杖之罪，不可與此等論也。匹夫不獲自盡，恐累聖德，而亦有傷天地之和矣。”傳曰：“進退人物，固不可如此。存今只遷之於外，使遂生生，何謂不獲耶？爾等雖曰不知予心，予亦不知爾等論執至於此極也。曾已取稟於大妃而爲之，不可改也。”</p>
<p>성종 293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弘治) 7년) 8월 7일 (계해) 1번째기사</p>	<p>제도(諸道)의 관찰사(觀察使)에게 하서(下書)하기를, “무릇 약재(藥材)는 뿌리·줄기·꽃·열매가 각각 그 맛이 있는데, 채취(採取)하는데 시기를 잃고, 건정(乾正)하는 데 마땅함을 잃으면, 효험을 얻을 이치(理致)가 없으니, 이후로는 월령(月令)27945)에 따라 법대로 채취하도록 하라. 그</p>	<p>○癸亥/下書諸道觀察使曰：“凡藥材，根莖、花實各有其味，採取失時，乾正失宜，則取效無理。今後從月令，依法採取，不爾則非徒審藥，卿亦無辭于</p>

	<p>렇지 않으면 한갓 심약(審藥)뿐만 아니라, 경(卿) 또한 벌(罰)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p>	<p>罰。”</p>
<p>성종 293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8월 8일 (갑자) 2번째기사</p>	<p>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김삼준(金三俊)이 와서 아뢰기를, “윤형로가 비록 그 임무를 감당(堪當)할 수 있다고 하나, 본부(本府)에서 논박하여, 형세가 서로 용납하지 못하니, 개정(改正)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의 말이 옳다. 그러나 대간(臺諫)이 진실로 그 마음에 한 가지라도 맞지 않는 바가 있으면, 문득 이를 논박(論駁)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체직(遞職)당하게 하니, 이 풍습(風習)이 어느 때부터 그러하였는지 알지 못하겠다. 나의 말이 옳은가, 사헌부(司憲府)의 말이 옳은가?” 하였다. 김삼준이 다시 아뢰기를, “그 사람이 과연 어질다면 대간이 어찌 논하는 바가 있겠습니까? 이제 윤형로가 본부(本府)의 논박을 받고도 편안하게 사피(辭避)하지 않으니, 그 망령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가 윤형로를 망령되었다고 하지만, 나는 누가 망령된지 알지 못하겠다. 전일(前日)에 사헌부에서 다만 윤형로가 내력(來歷)이 없다는 것만 말하고, 망령되었다고 말하지는 아니하였다. 비록 내력이 없다고 하지만, 이미 친민(親民)의 직임을 거쳤고, 이제 겸 지평(兼持平)이 되었으나 오로지 두량(斗量)하는 일뿐이다. 수령(守令)의 임무(任務)와는 차이가 있다 하나, 전에 수령이 되었을 때에는 대간으로서 말하는 자가 없었는데, 어찌 오직 이 일에 대해서만 말하는가? 인물(人物)의 진퇴(進退)는 경이(輕易)하게 할 수 없으니, 내가 마땅히 의논하여서 처리(處理)하겠다.” 하고, 이어 대신(大臣)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p>	<p>○司諫院正言(全三俊) [金三俊] 來啓曰: “尹衡老雖曰能堪其任, 然本府論駁, 勢不相容, 請改正。” 傳曰: “爾言是也, 然臺諫苟於其心, 一有不協, 則輒論之, 使其人見遞, 未知, 此風自何時而然耶? 予之所言是耶, 憲府之言是耶?” 三俊更啓曰: “其人果賢, 則臺諫何論之有? 今衡老被本府論駁, 而恬不辭避, 可知其妄也。” 傳曰: “爾以衡老爲妄, 予未知誰是妄也。 前日憲府, 但云衡老無來歷, 而不謂之妄也, 雖曰無來歷, 已經親民之職, 今爲兼持平, 特斗量耳, 與守令之任, 有間矣。 然前爲守令, 臺諫無有言之者, 而何獨於此事言之耶? 人物進退, 不可輕易, 予當議而處之。” 仍命議于大臣。 尹弼商議: “衡老, 臣之堂叔尹坦子也。 雖無相避, 乃是切親, 事同一家, 議之爲難。” 李克培議: “衡老爲人, 臣未知其詳, 但雖曰兼職, 體貌與眞無異, 若(避) [被] 同僚論駁, 其不相容, 已成格例。” 盧思慎議: “兼持平, 雖假</p>

	<p>를, “윤형로는 신의 당숙(堂叔) 윤탄(尹坦)의 아들이니, 비록 상피(相避)가 없다 하더라도 곧 절친(切親)으로서 일이 한 집안과 같으므로, 의논하기 어렵습니다.” 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윤형로의 사람됨을 신이 상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다만 비록 겸직(兼職)이라고 말하나, 체모(體貌)가 본직(本職)과 다름없으니, 만약 동료(同僚)의 논박을 받는다면 서로 용납되지 못함이 이미 격례(格例)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검 지평이 비록 사헌부(司憲府)의 이름을 빌고 있으나, 참말 헌관(憲官)은 아닙니다. 그 임무가 단지 창고의 곡식을 두량(斗量)하여 그 수량을 알 따름이므로, 심상(尋常)한 사람도 모두 그 임무를 감당(堪當)하니, 윤형로로 이 직임을 삼은 것은 지나치지 않을 듯합니다.” 하고, 한치형(韓致亨)·정문형(鄭文炯)·윤효손(尹孝孫)은 의논하기를, “윤형로가 어찌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다만 대간(臺諫)이 논박하여 서로 용납될 수 없으니, 체차(遞差)하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두량하는 것은 한낱 산원(算員)의 일에 지나지 않는데, 일찍이 윤형로가 능히 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체차하지 말라.” 하였다.</p>	<p>憲府之名，非眞憲官，其任只斗量倉穀，知其數而已。尋常之人，皆堪其任，衡老之爲此職，恐未爲過。”韓致亨、鄭文炯、尹孝孫議：“衡老於此事，豈不能堪，但臺諫論駁，不可相容，遞差爲便。”傳曰：“斗量，不過一算員之事，而曾謂衡老不能耶？勿改。”</p>
<p>성종 293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弘治) 7년) 8월 9일 (을축) 1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 전교(傳敎)하기를, “이번에 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었으니, 민가(民家)가 무너지고 곡식[禾稼]이 손상(損傷)되지 않았겠는가? 중외(中外)로 하여금 두루 살펴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p>	<p>○(己) [乙] 丑/傳于承政院曰：“今者大雨以風，無乃民家頽圮，禾稼損傷耶？其令中外遍審以啓。”</p>
<p>성종 293권, 25년</p>	<p>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 박근손(朴謹孫)이 치계(馳啓)하기를,</p>	<p>○丙寅/義禁府都事朴謹孫馳啓：“任光</p>

<p>(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8월 10일 (병인) 1번째기사</p>	<p>“임광재가 강릉(江陵) 우계현(羽溪縣)에 이르러 문득 병에 걸려 숨이 끊어졌다가 다시 소생(蘇生)하였습니다.” 하니, 승정원(承政院)에 전교(傳敎)하기를, “임광재가 비록 죄가 있다 하나, 종신(終身)토록 폐기(廢棄)할 수는 없다. 근일(近日)에 근심하여 먹지 않고 오직 술만 마시다가 이런 증세를 불러 왔으니, 양의(良醫)를 보내어 약이(藥餌)를 가지고 가서 구료(救療)하게 하라.” 하고, 이어서 임광재(任光載)를 우계현(羽溪縣)에 부처(付處)하도록 하였다.</p>	<p>載至江陵羽溪縣， 忽疾作， 絕而復蘇。” 傳于承政院曰：“光載雖有罪， 不可終身廢棄也。 近日憂慮不食， 唯飲酒， 以致此證矣。 遣良醫， 賚藥餌往救之。” 仍命光載付處于羽溪縣。</p>
<p>성종 293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8월 10일 (병인) 2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 전교(傳敎)하기를, “이제 날씨가 점점 서늘해져서 농사(農事)가 이미 판가름났으니, 주금(酒禁)을 파(罷)하도록 하라.” 하였다.</p>	<p>○傳于承政院曰：“今日日氣漸涼， 農事已判， 其罷酒禁。”</p>
<p>성종 293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8월 10일 (병인) 3번째기사</p>	<p>박근손(朴謹孫)에게 하서(下書)하기를, “들으니 임광재(任光載)가 서울에 있을 때에 오직 술만 마시고 먹지 아니하였다고 한다. 이제 길에서 현기증[眩暈]으로 기절(氣絕)한 것은 조섭(調攝)을 삼가지 않은 때문이다. 위로는 대비(大妃)가 계시고 아래로는 부모(父母)가 있는데, 어찌 자중(自重)하지 아니하여서 이 지경에 이른단 말인가? 그래서 의원(醫員)을 보내어 약을 가지고 가서 구료(救療)하게 하는 것이니, 그대는 이 뜻으로 간곡하게 깨우쳐서 목숨을 잃는 일이 없게 하라.” 하였다.</p>	<p>○下書朴謹孫曰：“聞任光載在京， 唯飲酒不食， 今乃在途， 眩暈氣絕， 此不謹調攝故也， 上有大妃， 下有父母， 何不自重， 而至於此耶？ 故遣醫賚藥救之， 爾其敦諭此意， 使不滅性焉。”</p>
<p>성종 293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8월 10일 (병인) 4번째기사</p>	<p>사헌부(司憲府)에서 차자(筵子)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임광재(任光載)는 비록 죄줄 수 있다 하더라도 존금(存今)은 무슨 죄입니까? 중매장이[媒妁]가 이를 말하고, 친어미가 이를 허락하였는데, 시집가는 것을 허락한 일을 가지고 옳지 않다고 한다면, 단지 가장(家長)만 죄주면 족합니다. 서로 간통(奸通)한 것을 가지고 옳지 않다고 한다면, 단지 임광재만 죄주면 또한 가(可)합니다. 존금에게 죄줄 만한 것을 볼 수가 없는데, 멀리 외방으로 옮긴 것이 옳단 말입니까? 만약 다른 날에 상종(相從)할 것이 염려스럽</p>	<p>○司憲府上筵子， 略曰： 光載雖可罪， 存今何罪焉？ 媒妁言之， 親母許之， 以許嫁爲不可， 則只坐家長， 足矣， 以相奸爲不可， 則只罪光載， 亦可矣。 存今未見可罪， 而遠徙于外， 其可乎？ 若曰他日相從爲可慮也， 則豈宜料未然之事， 遽加不當施之罪？ 況勿</p>

	<p>다고 한다면, 어찌 미연(未然)의 일을 헤아려서 갑자기 마땅히 베풀지 아니하여야 할 죄를 더할 것이며, 하물며 죄주지 말라 하신 명령을 대소(大小)의 인원(人員)이 모두 들은 것이겠습니까? 필부(匹夫)도 오히려 남에게 실신(失信)할 수 없는데, 하물며 나라의 임금이겠습니까? 전하(殿下)께서는 유의(留意)하소서.”</p> <p>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조형(趙珩)이 아뢰기를, “올해의 농사가 크게 흉년들었습니다. 하물며 근일(近日)에 큰 바람이 있었으니, 반드시 곡식이 손상(損傷)된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주금(酒禁)은 다만 하늘의 경계를 삼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민간(民間)의 미비(糜費)27946)를 위한 것이니, 청컨대 주금을 파(罷)하지 마소서. 그리고 윤형로(尹衡老)는 허물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직임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며, 물망(物望)이 없다는 것일 뿐이니, 청컨대 개정(改正)하소서.”</p> <p>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p>	<p>罪之令，大小共聞，匹夫，猶不可失信於人，況國君乎？殿下留意焉。</p> <p>不聽。持平趙珩啓曰：“今年農事大不稔，況近有大風，必有禾稼傷損之患，酒禁非但謹天戒，亦爲民間糜費也，請勿罷酒禁。衡老非曰有痕咎也，非曰不能堪任也，以無物望耳，請改正。”</p> <p>皆不聽。</p>
<p>성종 293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弘治) 7년) 8월 12일 (무진) 2번째기사</p>	<p>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김삼준(金三俊)이 와서 아뢰기를, “올해는 삼농(三農)27948)의 달에 한재(旱災)가 매우 심한데, 근일(近日)에 풍재(風災)가 있었고, 어제에도 우박이 내렸습니다. 가만히 듣건대 고양(高陽)·부평(富平) 등지에는 또 충재(蟲災)가 있어서 곡식이 손상(損傷)되어 서성(西成)27949)이 가망(可望)없다고 하니, 구황(救荒)하는 일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대저 우박은 큰 재이(災異)이므로, 마땅히 천계(天戒)를 삼가야 하니, 주금(酒禁)을 파(罷)할 수 없습니다. 평소의 주금에서도 세력이 강한 자는 매양 빠져 나가고, 호소할 데 없는 자만이 문득 걸려드니, 무익(無益)한 듯하지만, 금망(禁網)이 있으면 너무 지나친 데에 이르지 않습니다. 전일(前日)에 여러 곳의 영선(營繕)을 정지(停止)시켰으나, 이제 다시 이를 하는데, 청컨대 영선을 파(罷)하고 급하지 않은 일을 덜어서 소민(小民)으로 하여금 구황을 대비(對備)할 수 있게 하소서.</p>	<p>○司諫院正言金三俊來啓曰：“今年三農之月，旱災太甚，近有風災，昨亦雨雹，竊聞，高陽、富平等處，又有蟲災，禾稼損傷，已失西成之望，救荒之事，不可緩也。夫雹，災異之大者，當謹天戒，酒禁不可罷也。常時酒禁，豪強者每漏，無告者輒罹，似爲無益，然有禁網，則不至於太濫矣。前日停諸處營繕，而今復爲之，請罷營繕，捐不急之務，使小民，得爲救荒之備。洪貴達、尹孝孫、李則皆稱病，辭避赴京，常時居官則不辭，而至於赴京則告</p>

그리고 홍귀달(洪貴達)·윤효손(尹孝孫)·이척(李則)이 모두 병을 칭탁하고 부경(赴京)하기에 이르러 병을 고(告)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일은 사대(事大)보다 중한 것이 없는데, 이제 대신(大臣)으로서 가기를 꺼린다면 사람마다 이를 본받을 것이니, 뒷날 병을 칭탁(稱托)하는 자를 장차 이루 금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청컨대 속히 추문(推問)하여 후일을 징계하소서.”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이제 우박의 재이(災異)를 만났으니 마땅히 천계(天戒)를 삼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천계(天戒)를 삼가는 것 또한 백성을 위하는 것이지만, 내가 듣건대 소민(小民)으로 혹시 술을 지닌 자가 만일 금란(禁亂)을 만나면, 반드시 사사로이 뇌물을 주고 면하고자 하는데, 오히려 면하지 못하면 벌징(罰懲)이 따르므로, 미비(糜費)를 금하려 하는 것이 도리어 백성을 해롭게 한다고 한다. 또 들으니, 세종(世宗) 때에는 가물면 곧 금하고 비가 오면 이를 과하였다고 하는데, 나의 시대에 이르러 또한 이와 같이 하는 까닭에 이제 또 이를 과하였다. 전자(前者)에 몹시 더운 때에 역사(役使)시키면 백성들이 매우 괴로와할 것이므로, 대간(臺諫)의 말로 인(因)하여 영선(營繕)을 정지(停止)하였던 것인데, 이제 가을에 서늘해질 때를 기다려 역사(役使)시키려는 것일 뿐이다. 만약 공역(公役)을 시작하였다가 중지한다면 그 재목(材木)이 반드시 썩어서 뒤에 마땅히 이를 고쳐야 할 것이니, 백성을 수로롭게 하고 재물(財物)을 손상(損傷)시키는 것이 도리어 오늘날보다도 더할 것이다. 또 대신(大臣)이 병이 있는데, 어떻게 억지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대신을 이와 같이 대우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였다. 김삼준(金三俊)이 다시 아뢰기를,

“재목이 비록 썩는다 하나, 재목을 백성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재목의 썩는 것이 비록 아깝다 하더라도 민생(民生)의 폐해(弊害) 또한 근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홍귀달(洪貴達) 등이 모두 멀리 가는 것을 꺼려하여 문득 병으로 사피

病, 可乎? 事莫重於事大, 而今以大臣而憚行, 則人人效尤, 後之托病者, 將不可勝禁矣。 請亟推之, 以懲其後。”

傳曰: “今值雨雹之災, 宜謹天戒。 然所以謹天戒, 亦爲民也。 予聞, 小民或有賣酒者, 如遇禁亂, 則必私賂之, 以求免而猶不得, 罰懲隨之, 求以禁糜費, 反以爲民害。 且聞, 世宗朝, 旱則立禁, 雨則罷之, 至於予時亦如此, 故今亦罷之。 前者以苦熱役民甚勞, 故因臺諫之言而停營繕, 今待秋涼復役耳, 若始構而中止, 則其材木必腐朽, 後當改之, 勞民傷財, 反勝於今日矣。 且大臣有病, 豈可強遣之耶? 待大臣, 不可如此也。” 三俊更啓曰: “材木雖朽, 然不可以材木換百姓也。 材木之朽, 雖可惜, 民生之弊, 亦可恤也。 洪貴達等皆憚於遠赴, 輒以病辭, 是大臣之體乎? 人情莫不惡勞而喜逸, 前有托病者, 而不深罪之, 旋復其職, 故如此耳。 請鞫之, 以杜後來之弊。” 皆不聽。

	<p>(辭避)하니, 이것이 어찌 대신의 체통(體統)이겠습니까? 사람의 정리(情理)는 수고로움을 싫어하고 편안함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전일에 병을 칭탁(稱托)한 자가 있었으나 깊이 죄주지 않고 곧 복직(復職)시킨 까닭에 이와 같을 뿐입니다. 청컨대 국문(鞫問)하여서 뒤에 오는 폐단을 막으소서.” 하였으나, 모두 들어주지 않았다.</p>	
<p>성종 293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弘治) 7년) 8월 17일 (계유) 1번째기사</p>	<p>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 조위(曹偉)가 치계(馳啓)하기를, “올해에는 가뭄으로 인하여 전지(田地)가 많이 황폐[荒蕪]해져서 이삭이 패지 못하였으므로, 평소의 농사(農事)를 게을리한 예(例)가 아니니, 청컨대 면세(免稅)하소서.” 하였다. 호조(戶曹)에서 이에 의거(依據)하여 아뢰기를, “정전(正田)27954) 은 간혹(間或) 묵혀서 황폐해졌을망정 모두 수세(收稅)하도록 허락한 것은 농사를 게을리하는 것을 징계하려는 까닭입니다. 이제 본도(本道)의 계본(啓本)을 보건대 각 고을의 화곡(禾穀)이 비록 혹시 영글지 못하였다 하나, 실농(失農)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만약 기경(起耕)하여 김만 뒤에 이삭이 패지 아니하였다면, 경차관(敬差官)27955) 이 복심(覆審)하였을 때에 자연히 재상(災傷)27956) 의 분수(分數)가 있게 마련이니, 가볍게 면세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대신(大臣)에게 보이도록 명하였다. 윤필상(尹弼商)·이극배(李克培)·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계목(啓目)대로 시행(施行)하소서.” 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호조(戶曹)에서 아뢰 바 재상(災傷)의 분수에 좃아 면세하는 일이 《경국대전(經國大典)》의 법에 합당합니다.” 하였다. 다시 승정원(承政院)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는데, 김응기(金應箕)·한사문(韓斯文)·권경우(權景祐)·강귀손(姜龜孫)·구치곤(丘致崐)·송질(宋軼)은 의논</p>	<p>○癸酉/忠淸道觀察使曹偉馳啓曰：“今年因旱，田多荒蕪，不發穗，非常時惰農之例，請免稅。”戶曹據此啓：“正田，間或陳荒，并許收稅，所以懲惰農也。今觀本道啓本，各官禾穀，雖或不實，不至失農，若起耕除草後，不發穗，則敬差官覆審時，自有災傷分數，不可輕易免稅。”命示大臣。尹弼商、李克培、尹壕議：“依啓目施行。”盧思愼議：“戶曹所啓，從災傷分數免稅事，合於《大典》之法。”又命承政院議之。金應箕、韓斯文、權景祐、姜龜孫、丘致崐、宋軼議：“災傷免稅之法，《大典》已悉，依啓目施行，爲便。”從之。</p>

	<p>하기를, “재상(災傷)을 면세하는 법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이미 갖추 나와 있으니, 계목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성종 293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8월 17일 (계유) 2번째기사</p>	<p>행 부호군(行副護軍) 황형(黃衡)이 상소하기를, “효(孝)라는 것은 임금을 섬기는 까닭이니, 만일 조금이라도 그 아버지를 잊는 마음이 있다면 어찌 임금에게 충성하여 조정(朝廷)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전에 신(臣)에게 경상도 수군 절도사(慶尙道水軍節度使)를 제수하자, 대간(臺諫)이 이를 논박(論駁)하였습니다. 신은 외람되게 천은(天恩)을 입어 다시 조정(朝廷)의 반열(班列)에 끼게 되었으니, 신의 감격함이 넓은 하늘처럼 끝없습니다. 대간이 만약 신을 변장(邊將)에 합당치 않다고 한다면, 신은 실로 분수를 달갑게 여기겠지만,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도리에 어긋난다고 논박하니, 신은 적이 마음 아픕니다. 대간의 논박이 이미 이와 같으니, 진실로 머리를 숙여야 마땅하겠지만, 스스로 변명(辯明)하지 아니하고 이 마음을 천일(天日) 아래에 드러내어 밝히지 않는다면, 신의 한 몸이 한갓 성명(聖明)의 죄인(罪人)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만세(萬世)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진실로 백행(百行)의 근원에 흠(虧)이 있다면 비록 재지(才知)가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족히 볼 것이 없으니, 어떻게 감히 종족(宗族)과 나란히 서겠습니까? 이미 종족과 나란히 설 수가 없다면 어떻게 감히 조정에 나란히 서겠습니까? 마땅히 하늘과 땅 사이에 용납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신은 무인(武人)으로서 비록 학술(學術)이 없으나, 의리(義理)를 조금 알아서 평소 충성(忠誠)과 효행(孝行)으로써 자부하였으며, 말 달리고 검을 시험하는 여가(餘暇)에 옛사람의 글을 배웠으니, 어찌 모자(母子)의 애정(愛情)을 모르겠습니까? 지난 정미년(27957) 봄에 신은 내승(內乘) 27958) 으로서 가까이 모시며 날마다 거마(車馬)를 관리하고, 신의 어머니는 강화(江華)의 농막에 있었</p>	<p>○行副護軍黃衡上疏曰： 孝者，所以事君也，如有一毫遺其親之心，則安能忠於君，而立於朝乎？日者除臣爲慶尙道水軍節度使，臺諫駁之，濫蒙天恩，復齒朝列，臣之感激，昊天罔極，臺諫若以臣不合邊將，則臣實甘分，駁以事親有乖，則臣竊痛心。臺諫之駁，既如此，固當垂首，不復自辨，如不暴白此心於天日之下，則臣之一身，非徒聖明之罪人，抑亦萬世之罪人也。人苟虧百行之源，則雖有才知，餘無足觀，安敢齒於宗族乎？既不敢齒於宗族，安敢齒於朝廷乎？宜無所容於覆載之間矣。臣武人也，雖無學術，稍知義理，常以忠孝自許，馳馬試劍之暇，學古人之書，豈不知母子之愛乎？去丁未春，臣以內乘，密侍日馭，臣母在江華野墅，定省已曠，思親之念，不能自己，而又聞微恙，卽達於天聰，特命給暇，蓋受暇，非呈辭，例也。法當陞辭，適其日有賀禮，故翌日乃辭，</p>

으므로, 정성(定省)27959) 을 오래 비웠으니, 아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버릴 수 없었는데, 또 미양(微恙)이 있음을 듣고는 곧 천청(天聽)에 품달(稟達)하자, 특명(特命)으로 말미를 주셨습니다. 말미를 받았으면 정사(呈辭)27960) 하지 않는 것이 관례(慣例)입니다. 법(法)에 마땅히 폐사(陞辭)27961) 하여야 하나, 마침 그날에 하례(賀禮)가 있었던 까닭에 이튿날에야 하직을 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승지(承旨)가 하례한 뒤에 조정(朝廷)에서 물러나와 기생(妓生)을 불러는데, 신이 거느리고 있던 기생도 그 불러들인 무리에 들어 있었으나,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분노(憤怒)하여 무함(誣陷)하여 엮어서 죄를 이루었습니다. 신이 실로 마음 아픈 것은 늙은 어머니가 병이 위중하면 곧바로 정사(呈辭)하는 것이 마땅한데, 무엇 때문에 말미를 받고 폐사할 계획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이 기생은 신의 첩(妾)이 되면서부터 늙은 어머니를 모시어 감지(甘旨)를 공궤(供饋)하였으니, 하루 저녁 술자리에서 희롱[調戲]하는 자와 같지는 않은데, 어찌 반드시 말미를 받고, 교묘하게 회피한 후에야 서로 볼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서울에 있는 날은 많고 귀향(歸鄉)하는 날은 적은데, 어찌 감히 하루를 머물면서 기생과 즐기고, 곧 달려가서 어머니의 병을 구료(救療)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절대 이런 이치는 없습니다. 신이 무상(無狀)하여 남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신을 가지고 배우지 못하여 아는 것이 없어 이와 같이 행실에 어긋난 일도 할 수 있다고 이를 말하는 자는 쉽게 하고, 이를 듣는 자는 믿었으니, 이것이 신이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무릇 사람으로서 부모의 상(喪)을 당하여 어떻게 줄곧 무덤만 지킨단 말입니까? 가족[家室]이 서울에 있으면 상복(喪服) 입고 왕래하는 자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신이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무덤을 지킬 때에 마침 송사(訟事)가 있어서 서울에 들어갔다 돌아왔는데, 신을 헐뜯는 자가 신이 사랑하는 기생을 서울 집으로 불러들이고, 인(因)하여 들어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생은 신의 집에 있는 지 이미 오래 되었고, 상(喪)을 당한 뒤에 불러들

有一承旨賀禮之後，退朝邀妓，臣所率妓，亦在招致之列，而不赴，以是積憤，羅[織]成罪痛心。若母病重，則直當呈辭，何必受暇爲陞辭計乎？況此妓，自爲臣妾，侍老母，調甘旨，非如一夕盃酒間調戲者，何必受暇巧避，然後得相見也？況在京之日多，歸鄉之日少，安敢留一日與妓歡娛，而不卽奔救母病乎？萬萬無是理也。臣無狀，不取信於人，必以臣不學無知，如此無行之事，亦可爲也。言之者易，而聽之者信，此臣所以痛心者也。凡人居父母之喪，豈盡守墳乎？有家室於京，則服喪往來者，滔滔有之，臣丁母憂，守墳之時，適有訟事，入京而還，有壞臣者，以臣愛妓，招致京家，因以入來，然此妓，臣之家畜已久，非喪後招致也，故其時終不以此罪臣，此實出於聖上之睿斷，而臣得蒙再造之恩也。不然，臣復舉何顏，自容於天地間乎？臣若實有不忠、不孝之罪，則萬被誅斬，何惜之有？今之論臣，以昔日臺諫之論，昔日臺諫之論，以其時承旨之構嫌也。其時謂臣，聞母病不卽往，非孝也，無病之母，詐稱有病，非忠也，以

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끝내 이것을 가지고 신을 죄주지 아니 하셨으니, 이는 진실로 정상(聖上)의 예단(睿斷)에서 나온 것으로서, 신이 재생[再造]의 은혜를 입은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신이 다시 어떻게 낫을 들고 스스로 천지 사이에 용납될 수 있었겠습니까? 신이 만약 진실로 불충(不忠)·불효(不孝)의 죄가 있다면, 만 번 주륙(誅戮)을 당한다 하더라도 무슨 애석(愛惜)한 바가 있었습니까?

오늘 신을 논하는 것은 지난날의 대간(臺諫)의 논하던 것으로써 하는 것이고, 지난날 대간이 논하던 것은 그 때 승지(承旨)가 맺은 혐의(嫌疑)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 때에 신에게 이르기를, ‘어미의 명을 듣고 곧 가지 아니하였으니 효(孝)가 아니고, 병이 없는 어미를 병이 있다고 사칭(詐稱)하였으니 충(忠)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무함(誣陷)하여 죄를 얹어 신을 중죄(重罪)에 빠뜨리고자 하였으나, 비록 하루에 열번 물었음만정 신이 끝내 불복(不服)하였으니, 그 묻는 바가 모두 그 실정(實情)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원통함을 품고도 신총(宸聰)에 신소(伸訴)하여 명백하게 분별하지 못한다면, 뒷날 신(臣)을 논하는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니, 신의 한탄(恨歎)을 머금은 바가 어떻게 그쳐지겠습니까? 이것이 신이 구구(區區)하게 우러러 천총(天聰)을 번거롭히는 까닭입니다.

옛날에 광장(匡章)이 맹자(孟子)를 만나지 못하였다면 끝내 불효(不孝)의 이름을 면치 못하였을 것이고, 27962) 등보(滕甫)가 소식(蘇軾)을 만나지 못하였다면 마침내 불충(不忠)의 기의(譏議)를 면키 어려웠을 것입니다. 27963) 만약 신의 추안(推案)을 고찰(考察)하여 신의 허위(虛僞)를 분별하여 주신다면, 신은 죽어도 유한(遺恨)이 없겠습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황형(黃衡)은 내가 아는 자이며, 또 무재(武才)가 있다. 그 때에 혐의하는 사람의 발언(發言)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받았으나, 그 후 첨사(僉使) 등의 벼슬

此二者，媒孽醜釀，欲陷臣重辜，雖一日十問，而臣終不服，以其所問，皆非其情也。若鬱抑舍冤，不伸於宸聰而明辨之，則後之論臣者不止，而臣之茹歎曷已，此臣所以區區仰煩天聰也。昔匡章不遇孟子，終未免不孝之名，滕甫不遇蘇軾，卒難逃不忠之譏，若考臣推案，辨臣虛僞，則臣死無遺恨。傳曰：“衡，予所知者也，且有武才，其時因有嫌人發言而被罪，其後見用於僉使等職，而憲府今又彈劾，其意何如？其議于大臣。”尹弼商議：“衡爲人，武才可用，終不可棄，若以已往之失，一概治之，恐亦不可。”盧思慎議：“臣聞，衡有武才，古之帝王用人，不考其素，豈可終棄不用哉？況武士與禮法之士不同，不可追咎既往之事，以失可用之才。”尹壕議：“衡受罪失職，久矣。今日上言發明，緩也，然有敵愾之才，終不可棄。”韓致亨議：“衡有武才可人，被罪已久，不宜永棄。”鄭文燭議：“衡所犯雖重，被罪已久，且武才卓越，終不可棄。況被罪後，非今日始劾，曾已見用於僉使乎？”尹孝孫議：“衡既以其失被罪久矣。當其

에 임용(任用)되었는데, 사헌부(司憲府)에서 이제 또 탄핵(彈劾)하니, 그 뜻이 어떠한가? 그것을 대신(大臣)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황형(黃衡)은 사람됨이 무재(武才)가 쓸 만하니, 끝내 버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미 지난날의 과실(過失)을 가지고 이를 일률적으로 다스린다면 아마도 옳지 않을 듯합니다.”

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신이 들으니 황형(黃衡)은 무재가 있다고 합니다. 옛날의 제왕(帝王)은 사람을 임용할 때 소행(素行)을 고찰(考察)하지 않았으니, 어찌 끝내 버려두고 쓰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무사(武士)는 예법(禮法)의 선비와는 다르니, 기왕(既往)의 일을 추구(追咎)하여서 쓸 만한 인재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고, 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황형(黃衡)이 죄를 받아 실직(失職)한 지 오래 되었는데, 오늘에 상언(上言)하며 발명(發明)함은 늦은 것입니다. 그러나 적개(敵愾)의 재질(才質)이 있으니, 끝내 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고, 한치형(韓致亨)은 의논하기를,
 “황형(黃衡)은 무재가 있어 쓸모 있는 사람입니다. 죄를 받은 지 이미 오래 되었으니, 영구히 버리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하고, 정문형(鄭文炯)은 의논하기를,
 “황형(黃衡)이 범(犯)한 바가 비록 중(重)하다 하나, 죄를 받은 지 이미 오래 되었고, 또 무재가 탁월(卓越)하니 끝내 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죄를 받은 후 오늘 비로소 서용(敍用)되는 것이 아니고, 일찍이 이미 첨사(僉使)에 임용(任用)된 것이겠습니까?”

하고, 윤효손(尹孝孫)은 의논하기를,
 “황형(黃衡)이 이미 그 과실(過失)로 죄를 받은 지 오래 되었는데, 그 때에 당

時不言，今乃欲引有嫌人以自明，何益？但臣聞，不可以二卵，棄干城之將。衡所失，雖非二卵之比，若有禦侮折衝之略，則亦可隨才適用，不宜棄之。”傳曰：“衡雖欲辨明，發言之人已死，實難更理。然衡非狂妄，且有武才，其諫于吏、兵曹，隨才敍之。”

	<p>하여 말하지 않고, 이제 혐의 있는 인물을 끌어대어 스스로 밝히고자 하나, 무슨 이익됨이 있겠습니까? 다만 신이 들으니, 두 개의 달걀을 가지고 간성(干城)의 장수를 버려서는 안된다(27964) 고 하였으니, 황형(黃衡)의 과실이 비록 두 개의 달걀에 비교할 것은 아니나, 만약 어모 절충(禦侮折衝)(27965)의 지략(智略)이 있다면, 또한 재능에 따라 적당하게 써야 하며, 이를 버려서는 마땅하지 않습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황형(黃衡)이 비록 변명(辯明)하고자 하나, 발언(發言)한 사람이 이미 죽었으니 실로 다시 다스리기 어렵다. 그러나 황형이 광망(狂妄)한 사람이 아니고 또 무재(武才)가 있으니, 그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 유시(諭示)하여 재능에 따라 서용(敍用)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성종 293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弘治) 7년) 8월 18일 (갑술) 2번째기사</p>	<p>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 김수손(金首孫)이 치계(馳啓)하기를, “8월 초8일부터 초9일에 이르기까지 큰 비바람으로 화곡(禾穀)이 물에 손상(損傷)되어 이삭이 팬 곡식이 거의 반이나 영글지 못하였습니다. 또 크기가 콩만한 우박이 내려 거의 모든 화곡을 손상시켰습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이제 황해 감사(黃海監司)의 아뢰는 바를 보니, 내가 매우 염려된다. 감사에게 유시(諭示)하여 다시 손상(損傷)된 곳을 순심(巡審)하여 개록(開錄)하여서 치계하도록 하라. 내가 다른 도(道)도 또한 그러할 것으로 염려스러우니, 여러 도의 감사에게 모두 유시하여 순심하여서 아뢰게 하라.”</p> <p>하였다.</p>	<p>○黃海道觀察使金首孫馳啓: “自八月初八日至初九日大風雨, 禾穀爲水所傷, 其發穗之穀, 大半不實, 又雨雹大如豆, 損傷禾穀殆盡。” 傳曰: “今見監司所啓, 予甚軫慮, 其諭監司, 更審損傷處, 開錄馳啓。 予慮他道亦然, 可并諭諸道監司, 巡審以啓。”</p>
<p>성종 293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弘治) 7년) 8월 19일 (을해) 2번째기사</p>	<p>영안도 관찰사(永安道觀察使) 이계남(李季男)이 치계(馳啓)하기를, “본도(本道)는 혹은 장맛비로 인(因)하여, 혹은 풍손(風損)으로 인하여 화곡(禾穀)이 영글지 못하였으니, 구황(救荒)의 일을 강구(講究)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체 구황의 초식(草食)은 모름지기 서리가 내리기 전에 때맞추어 예비</p>	<p>○永安道觀察使李季男馳啓: “本道或因霖雨, 或因風損, 禾穀不實, 救荒之事, 不可不講, 一應救荒草食, 須於霜降前, 趁時預備, 請築城、量穀、點</p>

	<p>(豫備)하여야 하니, 청컨대 축성(築城)·양곡(量穀)·점마(點馬) 등 무릇 백성을 부리는 일을 모두 정지[停寢]시켜서 민생(民生)을 구제하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 “점마·양곡 등의 일은 모두 정지하는 것이 옳다.”</p> <p>하였다.</p>	<p>馬，凡干役民之事，竝皆停寢，以救民生。” 傳曰：“點馬、量穀等事，皆可停也。”</p>
<p>성종 293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8월 21일 (정축) 1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상서(尙書)》의 서(序)를 강(講)하다가 ‘하늘을 말할 때에는 그 마음의 좃아 나온 바를 엄(嚴)히 하고, 백성을 말할 때에는 그 마음이 나와서 베푸는 바를 삼간다.’는 데에 이르러 시독관(侍讀官) 권유(權瑠)가 아뢰기를, “그 마음이 나온 바를 엄히 한다 함은 경천(敬天)하는 데 대해 주(主)로 말한 것이고, 그 마음이 나와서 베푸는 바를 삼간다 함은 근민(勤民)27968) 하는 데 대해 주로 말한 것입니다. 지금 말할 일이 매우 많으나, 경천·근민이 그 가장 큰 것이니, 올해의 농사를 전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은 흉년이 을사년27969) 보다 갑절이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이 을사년에 외직(外職)에 있으면서 목도(目覩)하였는데, 그 해는 비록 흉년이 들었다 하나, 늦곡식이 조금 영글었기 때문에 민간(民間)에서 겨울을 지나는 데 그다지 고생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올해에는 봄부터 가물어서 제때에 씨뿌리지 못하였고, 가을에는 바람과 우박으로 화곡(禾穀)이 손상(損傷)되었으므로, 민생(民生)을 돌아보면 진실로 가련하니, 국가(國家)에서 흉년을 대비하는 정치에 만전(萬全)을 기(期)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토목(土木)의 역사(役事)를 일으키고, 주금(酒禁)의 법령(法令)을 파(罷)하였으니, 흉년으로 백성을 대우하지 아니하여서 경천·근민의 뜻이 없는 것 같습니다.”</p> <p>하고, 이승건(李承健)은 말하기를, “올해의 농사는 과연 권유(權瑠)가 아뢴 바와 같습니다. 봄부터 비가 오지 아니한 것이 여름까지 이어졌으며, 7월에 조금 비가 내려 겨우 이삭이 껴서 내</p>	<p>○丁丑/御經筵。講《尙書》序，至：“言天則嚴其心之所自出，言民則謹其心之所由施。” 侍讀官權瑠啓曰：“嚴其心之所自出者，主乎敬天而言也，謹其心之所由施者，主乎勤民而言也。當今可言之事頗多，然敬天勤民，最其大者也。今年農事，於殿下意，何如？臣意，凶歉倍於乙巳年，臣於乙巳年，在外目覩之，其年雖曰凶歉，晚穀稍實，故民間過冬，不甚艱苦。今年自春早乾，種不以時，秋而風雹，禾穀損傷，顧念民生，誠爲可矜。國家於備荒之政，至矣盡矣，然猶興土木之役，罷酒禁之令，似不以凶年待民，而無敬天勤民之意。” 執義李承健曰：“今年農事，果如權瑠所啓。自春不雨，以迄于夏，而七月小雨，僅得發穗，庶幾備來歲之種，又連日寒風，加以蟲災雨雹，傷損晚穀，今年之凶，果倍於乙巳年。大概觀市價高下，可占歲之凶</p>

년의 종자(種子)를 준비할 수 있었는데, 다시 연일(連日) 찬바람이 분데다가
 충재(蟲災)와 우박(雨雹)의 재해가 있어서 늦곡식을 손상시켰으니, 올해의 흉
 년은 과연 을사년보다 배가 됩니다. 대개 시가(市價)의 고하(高下)를 보면 그
 해의 흉년을 점칠 수 있는데, 올해의 시가가 갑자기 싸졌으니 그 흉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왕자군(王子君)의 제택(第宅)을 영건(營建)하면서, 당령 수
 군(當領水軍)으로 부역(赴役)하는 자가 9백여 명인데, 각사(各司)의 이진(吏
 典)과 조례(皂隸) 같은 것은 모두 놓아 보내도록 허락하시면서 오로지 수군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청컨대 우선 역사를 정지시키고, 명년의 농사
 를 보아서 처리하소서.”

하니, 임금이 좌우(左右)를 돌아보고 물었다.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채
 수(蔡壽)가 대답하기를,
 “구황(救荒)의 모든 일은 지극히 상밀(詳密)합니다. 다만 바람과 우박의 재해
 (災害)는 경기(京畿)가 더욱 심하고, 경상도(慶尙道)·전라도(全羅道)·충청도(忠
 淸道)는 감사(監司)의 아뢰 바에 의거(依據)하여 보건대 을사년과 같이 심한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니다.”

하고, 이승건(李承健)은 말하기를,
 “신 또한 농사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헤아리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이달 보
 름날에 우연히 문밖에 나갔다가 이를 보고는 먹는 것이 입맛에 달지 않았습
 니다. 재상(宰相)이나 조사(朝士)는 늘 성(城) 안에 있어서 볼 수가 없으니,
 어떻게 백성의 일을 자세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박안성(朴安性)은 말하기를,
 “옛날에 이르기를, ‘백성이 만약 먹는 데에 힘쓴다면 백사(百事)를 폐(廢)한
 다.’고 하였으니, 무릇 급하지 않은 일은 정과(停罷)하는 것이 가(可)합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백성이 만약 굶주린다면 어찌 반드시 억지로 역사시키겠는가?”

歉。今年市價頓賤，則其歉可知。今
 營王子君第宅，當領水軍赴役者，九百
 餘名，如各司吏典、皂隸，皆許放遣，
 水軍獨不可然乎？請姑停役，以觀明年
 農事處之。”上顧問左右。同知事蔡
 壽對曰：“救荒諸事，至爲詳密，但風
 雹之災，京畿益甚，慶尙、全羅、忠淸
 道，據監司所啓而觀之，不至如乙巳年
 之甚也。”承健曰：“臣亦初不料農事
 之至此也，臣於月望，偶出門外見之，
 食不甘味，宰相朝士，長在城內，未得
 目覩，安能細知民事乎？”特進官朴安
 性曰：“古云：‘民勤於食，則百事廢’，
 凡不急之務，一切停罷，可也。”上
 曰：“民若飢餓，何必強役？”特進官柳
 子光曰：“邇來風雹相繼，殿下克勤天
 戒，以至避殿減膳，而下無有體上之意
 者，無知小民則已，有識者縱飲無所不
 至，憲府豈能一一檢舉哉？今日入侍臺
 諫，亦豈無聞見，若革此風，而君臣同
 心寅畏，則庶幾格天。”上曰：“憲府
 自當檢察也。”司諫洪洞曰：“若有禁
 酒之令，自不崇飲矣。”子光曰：“近
 日文昭殿祭肉偷用事，監察啓而推之。
 六位祭用之物，獐六口、生鮮四十尾、

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유자광(柳子光)이 말하기를,
 “근래에 바람과 우박(雨雹)의 재해가 계속되므로, 전하(殿下)께서는 천계(天戒)를 삼가셔서 피전(避殿)27970) 하고 감선(減膳)27971) 하시는 데 이르렀으나, 아래로 성상(聖上)의 뜻을 본받는 자가 없습니다. 무지(無知)한 소민(小民)은 그뿐이지만, 지식(知識)이 있는 자들도 제 마음대로 마시며 이르지 않는 바가 없으나, 사헌부(司憲府)에서 어찌 능히 일일이 검거(檢擧)하겠습니까? 오늘 입시(入侍)한 대간(臺諫) 또한 어찌 듣고 본 것이 없겠습니까? 만약 이 같은 풍습(風習)을 혁신(革新)하여 군신(君臣)이 마음을 같이하여 삼가고 두려워한다면 거의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헌부(司憲府)는 스스로 마땅히 검거하여야 한다.”
 하였는데, 사간원 사간(司諫院司諫) 홍형(洪炯)이 말하기를,
 “만약 금주(禁酒)의 명령이 있다면 스스로 마시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유자광(柳子光)은 말하기를,
 “근일에 문소전(文昭殿)의 제육(祭肉)을 훔쳐 쓴 일을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이 아뢰어서 추핵(推覈)하였는데, 6위(六位)의 제사에 쓰는 물건인 노루 6구(口), 생선(生鮮) 40미(尾), 생치(生雉) 13수(首)를 다른 물건으로 이것이라고 일컫기도 하고, 혹 염소를 가지고 노루를 대신하기도 하였습니다. 신이 듣건대 부유하게 사는 자가 미리 면포(綿布)를 반감(飯監) 등에게 주고 몰래 제육을 사서 썼으며, 관원(官員)인 설리(薛里) 등도 나누어 쓰는 폐단을 면치 못하였다고 하니, 청컨대 끝까지 추핵하여 죄주소서.”
 하고, 채수(蔡壽)는 말하기를,
 “지난번에 반감(飯監) 윤석을동(尹石乙同)이 제물(祭物)을 훔쳐 써서 의금부(義禁府)에서 추국(推鞠)을 당하였는데, 이것은 상사(常事)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生雉十三首，他物稱是，或以羔代獐。
 臣聞，富居者預給絲布于飯監等，竊買祭肉而用之，官員、薛里等，亦未免有分用之弊，請窮推抵罪。” 壽曰：“前者飯監尹石乙同竊用祭物，被推于禁府，此是常事。” 上曰：“被罪者相望，而犯法者不止，欲不怒，得乎？當詳推之。”

	<p>“죄를 받은 자가 서로 이어지는데도 법을 범하는 자가 그치지 않으니, 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땅히 상세히 추핵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성종 293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8월 21일 (정축) 4번째기사</p>	<p>의정부(議政府)에 전지(傳旨)하기를, “금주(禁酒)의 명령은 가을이 되면 곧 파(罷)하는 것이 예사(例事)이다. 그러나 올해에는 이미 심한 가뭄이 들어 연곡(年穀)이 영글지 못한데다가 또 바람과 우박의 재해가 있었으므로 기근(飢饉)이 반드시 이를 것이니, 진실로 걱정스럽다. 혼인(婚姻)·제사(祭祀)·헌수(獻壽)·복약(服藥) 등의 일들은 폐(廢)할 수 없으나, 일없이 모여서 술을 마시며 재물을 낭비하는 자가 또한 더러 있을 것이니, 이것이 어찌 옳겠는가? 중외에 효유(曉諭)하여서 금단(禁斷)을 엄하게 시행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傳旨議政府曰：“禁酒之令，至秋乃罷，例事也。然今年既遭旱暵，年穀不登，又有風雹之災，飢饉必至，誠可慮也。如婚姻、祭祀、壽服、藥等事，不可廢也，無事會飲，糜費其財者，亦或有之，是豈可乎？其曉諭中外，痛行禁斷。”</p>
<p>성종 293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8월 25일 (신사) 1번째기사</p>	<p>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성세명(成世明)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신 등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인주(人主)가 거(居)하는 바는 천위(天位)이고, 다스리는 바는 천직(天職)이고, 도맡게 해야 하는 바는 하늘이 베푸신 법[典]이고, 힘써야 하는 바는 하늘이 정하신 예(禮)이고, 밝혀야 하는 바는 하늘이 명하신 덕(德)이고, 써야 하는 바는 하늘이 벌하신 죄(罪)이고, 보전해야 하는 바는 하늘이 내신 백성인데, 한 몸으로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萬物)을 다스려야 하니, 다스리는 바가 하늘 일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진실로 혹시라도 법[典]과 예(禮)가 돈돈히 하고 힘쓰는 바에 어긋나거나, 덕(德)과 벌[刑]이 밝히고 쓰는 바에 어긋나서, 하늘이 내신 백성들이 그 거처할 곳을 얻지 못하게 되면, 천공(天工)이 폐절(廢絶)되고 천도(天道)가 어그러져서, 천견(天譴)을 이르게 하거나 천재(天災)를 불러 오니, 마침내 천위를 보전할 수 없게 된 자가 종종 있었으며, 이것은 인주가 마땅히 깊이 경계해야 할 바입니다. 신 등이 듣건대 한 가지 곡식이 익지 않은 것을 겸(歉), 두 가지 곡식이 익지 않은 것을 기(飢), 세 가지 곡식이 익지 않은 것을 근(饑), 네 가지 곡식이 익</p>	<p>○辛巳/弘文館副提學成世明等上疏曰：臣等竊惟，人主所居者天位，所治者天職，所惇者天敍之典，所庸者天秩之禮，所章者天命之德，所用者天討之罪，所保者天生之民，以一身而代天理物，所治者無非天事，苟或典禮失其惇庸，德刑失其章用，天生之民不得其所，則天工廢矣，天道乖矣，致天譴召天災，終至於不能保天位者，比比有之，此人主之所當深戒也。臣等嘗聞，一穀不升謂之歉，二穀不升謂之飢，三穀不升謂之饑，四穀不升謂之荒，五穀不升謂之大侵。以今年天所譴責者觀之，春不雨，以害牟麥，夏大旱，以害</p>

지 않은 것을 황(荒), 오곡(五穀)이 익지 않은 것을 대침(大侵)이라 일컫는다고 합니다. 올해의 하늘이 견책(譴責)하는 바를 보건대 봄에는 비가 오지 아니하여 모맥(牟麥)을 해쳤고, 여름에는 크게 가물어서 도양(稻秧)27980) 을 해쳤으며, 7, 8월의 사이에는 혹 비가 내리거나 우박이 내리거나, 서리와 눈이 때아니게 내렸고, 계속해서 큰 바람이 불었으며, 명특(螟蝥)27981) 이 겹쳐서, 서직(黍稷)27982) ·숙숙(菽粟)27983) 등 백곡(百穀)이 모두 손상을 입어서 대침(大侵)의 대침이라 이를 만하니, 무슨 천변이 이같은 극심한 지경에 이른단 말입니까? 지금 우리 전하께서는 삼가고 어질고 명철(明哲)하고 지모(智謀)가 있는 성스러운 덕(德)으로 조종(祖宗)의 어렵고도 큰 기업(基業)을 이어받아, 마음을 바르게 하여 수신(修身)하고, 하늘을 공경하여 백성의 일에 부지런하셨으며, 제치(制治)하는 방도(方道)가 대강(大綱)만 들면 세목(細目)을 환히 아셨으며, 성색(聲色)을 완호(玩好)하고 유전(遊畋)27984) 을 즐기는 바가 없으셨습니다. 마땅히 위로 천심(天心)에 순응하여서 자주 휴징(休徵)27985) 의 응보(應報)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하여 즉위하신 이래로 25, 6년 사이에 천견(天譴)이 거듭 이르고, 수해(水害)와 한재(旱災)가 계속되는 것입니까? 풍년은 없고 여러 번 흉년[凶歉]을 만났는데, 올해에 이르러 극도에 달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일이 감한(感恨)한 바가 있고 하늘이 이에 감응(感應)한 바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마땅히 공구 수성(恐懼修省)하셔서 재앙을 불러 온 까닭을 생각하시고, 재앙을 구제하는 방책(方策)을 강구(講究)하셔서 천견(天譴)에 답하셔야 가합니다. 신 등은 우선 근일의 일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해가 흉년들어 곡식이 영글지 않으면 취마(趣馬)27986) 는 말먹이를 주지 않았고, 사씨(師氏)는 군사를 쉬게 하였고, 선부(膳夫)27987) 는 절선(徹膳)27988) 하였으며, 좌우에 벌려 놓은 역사(役事)를 다스리지 않았으니, 이것이 옛날의 인주(人主)가 천계(天戒)를 삼가고 백성을 구휼(救恤)

稻秧, 七八月之間, 或雨或雹, 霜雪不時, 繼之以大風, 重之以螟蝥, 若黍稷若菽粟, 百穀俱傷, 可謂大侵之大侵, 是何天變之至此極也? 今我殿下, 以肅又哲謀聖之德, 承祖宗艱大之業, 正心修身, 敬天勤民, 制治之方, 綱舉目張, 無聲色之玩, 無遊畋之樂, 宜其上順天心, 屢獲休徵之應, 奈何自即位以來二十五六年間, 天譴荐臻, 水旱相仍? 年未大有, 屢遭凶歉, 以至今極矣, 此必事有所感, 天有所應而致然, 殿下所當恐懼修省, 思其致災之由, 講其救災之策, 以答天譴, 可也。 臣等姑以近日之事言之, 謹按歲凶, 年穀不登, 則趣馬不秣, 師氏弛兵, 膳夫徹膳, 左右布而不修, 此古之人主, 謹天恤民之道也。 去五月旱暵之際, 聖上敬謹天戒, 罷諸營繕, 停諸設局, 以待秋成, 及秋而天災疊至, 如火益熱, 大命近止, 已致靡有孑遺之漸, 此誠百職不舉, 八蜡不通, 汲汲於救荒之政之時也。 今日復諸君駙馬第役, 明日復濟川亨役, 呻吟之聲, 雜以呼邪, 凡有識者, 所不忍見, 以聖上如傷之心, 其忍聞之耶? 既復《綱目》、簡儀之廳, 又遣點馬于諸

하는 도리였습니다. 지난 5월 몹시 가물었을 때에 성상(聖上)께서 천계를 공경하고 삼가시어 모든 영선(營繕)을 정파(停罷)하시고, 관아를 설치하는 것을 정지하셔서 가을에 곡식이 영글 때를 기다리도록 하셨는데, 가을이 되자 천재(天災)가 겹쳐서 일어나 불이 더욱 뜨거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천명[大命]이 가까이 이르러 살아 남을 자가 없는 조짐을 불러 왔는데, 이는 진실로 백직(百職)이 거양(擧揚)되지 못하고, 팔사(八蜡)27989)가 불통(不通)한 것이니, 구황(救荒)의 정치에 급급(汲汲)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도 오늘은 여러 군(君)과 부마(駙馬)의 제택(第宅)을 짓는 역사(役事)를 회복시키고, 명일에는 제천정(濟川亭)의 역사를 회복시켜서 신음(呻吟)하는 소리에 영차 소리가 어우러지니, 무릇 식견(識見) 있는 자가 차마 보지 못하는 바인데, 성상(聖上)의 마치 다친 것같이 보는 마음으로 차마 이를 들으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미 강목청(綱目廳)과 간의청(簡儀廳)을 회복시켰고, 또 여러 도(道)에 점마(點馬)를 보내셨습니다. 《통감강목》과 간의 만드는 것이 오늘의 급무(急務)가 아니고, 점마는 백성을 소요(騷擾)시키는 바가 한이 없는데, 이 또한 부득이(不得已)한 바가 있는 것입니까? 제천정의 영건(營建)은 비록 중[緇徒]들을 역사시킨다고 하지만, 공궤(供饋)할 쌀과 쓰이는 베[布]가 모두 나라의 창고에서 나오니, 만약 이것을 옮겨 기근(飢饉)을 구제한다면 천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크게 험난(險難)한 해를 당하여 급하지 않은 역사(役事)를 일으켜서 천 사람의 목숨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 백성의 부모 되는 바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백성을 수고롭게 하는 바가 이와 같고, 재물을 소비(消費)하는 바가 이와 같으면, 장차 구렁텅이에 굴러 떨어져 죽게 된 백성이 어떻게 조금이라도 소생(蘇生)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천생(天生)의 백성이 살 곳을 얻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의 제도(制度)에 20년마다 양전(量田)27990)을 고치는 것은 양안(量案)27991)에서 목정밭[陳田]을 삭제(削除)하고 간전(墾田)을 기록하여 그 결

道, 《綱目》、簡儀, 非今日急務, 點馬則擾民不費, 此亦在所不得已乎? 濟川亭之營, 雖役緇徒, 所供之米, 所費之布, 皆出國倉, 若轉而救飢, 可活千人, 當大險之年, 興不急之役, 不顧千人之命, 則惡在其爲民父母也? 勞民如此, 費財如此, 將轉死溝壑之民, 寧有少蘇, 然則天生之民, 可謂得其所乎? 國制, 率以(三) [二] 十年改量田者, 蓋欲汰其陳而錄其墾, 正其結負, 均其賦役, 於國於民, 兩得其便, 法非不美也。 今朴安性之量田于全羅道也, 不體聖上愛民之心, 不恤積年刻民之害, 徒以虛張贏數爲務, 以私心抑減田形之等, 只用方直二形, 遍打千億之田, 或二三作, 或七八作, 紛紛眩擾, 率從多數, 雖陳荒年久, 而無樹木成林, 則盡爲正田, 由是一郡縣之田, 或贏二三千結者, 一州府之田, 或贏三四千結者, 考其所成之籍, 則班班可見。 蓋土地有膏瘠之不同, 故舊爲正田, 今廢爲荒地, 舊爲荒地, 今開爲正田, 或廢或開, 贏縮之數, 不甚懸絕, 今新打過贏之數, 較之舊籍, 則動以千萬計。 安性之心, 豈不知此制一行, 貢賦倍於前,

부(結負)27992) 를 바로잡고, 그 부역(賦役)을 고르게 하고자 하는 것이니, 나라와 백성에게 모두 편의(便宜)를 얻게 되어 법이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박안성(朴安性)이 전라도(全羅道)에서 양전(量田)하였는데, 성상(聖上)께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본받지 아니하고, 여러 해 동안 쌓인 백성을 가림주구(苛斂誅求)하여 괴롭힌 폐해(弊害)를 돌보지 아니하고, 한갓 헛되이 그 수량(數量)을 늘려서 베푸는 것만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사심(私心)을 가지고 전지(田地) 형세(形勢)의 등급을 억지로 감(減)하여, 다만 방전(方田)과 직전(直田)의 두 가지 형태만을 써서 수많은 전지를 두루 측량하되, 혹 2, 3번 하기도 하고, 혹 7, 8번 하기도 하면서 분잡하게 현혹시키고 소오스럽게 하였는데, 대개 수량이 많은 것에 따라 비록 묵혀서 거칠어진 지 해가 오래 되었어도, 나무가 자라 수풀을 이룬 바가 아니면, 모두 정전(正田)을 삼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한 군현(郡縣)의 전지(田地)가 혹 2, 3천 결(結)을 넘고, 주부(州府)의 전지가 혹 3, 4천 결을 넘었으니, 그 성적(成籍)을 보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대개 토지는 기름지고 메마른 것이 같지 않기 때문에, 전에 그 정전을 삼았던 것을 지금은 폐(廢)하여 황지(荒地)를 삼기도 하고, 전에 황지를 삼았던 것을 지금은 개간하여 정전을 삼기도 합니다. 혹 폐하거나 개간한다 하더라도 늘거나 줄어드는 것이 그다지 현절(懸絕)하지는 않은 법인데, 이제 새로 측량하여 지나치게 늘린 수량을 전의 문적에 비교해 보면 자칫 천만(千萬)을 헤아리게 됩니다. 박안성의 마음이 이 제도가 한 번 시행되면 공부(貢賦)가 전보다 갑절이나 되고, 요역(徭役)이 전보다 갑절이나 된다는 것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민생(民生)의 곤고(困苦)27993) 함과 각삭(刻削)27994) 함이 전일보다도 심한 바가 있는데도, 반드시 이를 하고자 하는 것은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었다는 이름을 사려는 데 지나지 않으니, 이것이 이른바 옛날 민적(民賊)이라고 일컬어졌던 가사도(賈似道)의 공전(公田)의 해(害)27995) 와 같은 바가 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의 전지에서 부(負)·속(束)이

徭役倍於前, 民生之困苦刻削, 有甚於前日, 而必欲爲此者, 不過曰富國售名耳。此所謂古之民賊, 而有同於賈似道公田之害也。若其一夫之田, 負束之贏者, 不能一一盡改, 若如結數之加倍者, 與夫以陳爲正者, 聽民訴冤, 改之不難, 不爾則自後數十年間, 起怨傷和, 無時而已。然則天生之民, 可謂得其生乎? 謹按《詩》曰: ‘鞠哉庶正, 疚哉冢宰, 靡人不周, 無不能止。’ 今之居廟堂之上者, 或非其人, 不能同寅協恭, 以調陰陽, 尸位枯寵, 旅進旅退, 卿相以下, 無一人開陳善道, 鋪張荒政, 以贊我聖上畏天恤民之意。鞠哉者無人, 疚哉者無人, 周救百姓者亦無人焉, 豈不痛心哉? 不特此也, 刑罰失中, 無辜籲天, 夫婦失道, 人倫乖亂, 宰相之責也, 而悠悠苟容, 無敢執秦, 然則殿下所章者, 可謂得天命之德乎? 謹按《易》曰: ‘無敢折獄。’ 《書》曰: ‘庶獄庶慎。’ 文王罔敢知于茲。蓋刑者刻人肌膚, 至可慘也, 戕人性命, 至可畏也, 故人主當折獄之際, 不逆詐, 不以私怒加之, 不以先入之言爲主, 付之有司, 參錯訊鞠, 非從惟從,

늘어난 경우에는 일일이 모두 고칠 수가 없지만, 결수(結數)를 배가(倍加)한 것이나 무릇 진전을 정전으로 삼은 것 등은 백성의 소원(訴冤)을 들어주어 이를 고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로부터 수십 년 사이에 원망을 일으키고 화기(和氣)를 손상시키는 것이 그치는 때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생(天生)의 백성이 그 삶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살펴보건대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서정(庶正)은 궁지에 몰렸고, 총재(冢宰)는 병이 났으니, 아무도 구하지 못하고, 가난을 막을 수도 없네[鞫哉庶正 疚哉冢宰 靡人不周 無不能止].’ 하였습니다. 오늘날 묘당(廟堂) 위에 있는 자가 더러 마땅한 사람이 아니므로, 함께 직무(職務)에 힘쓰면서 서로 공경하고 합심하여 음양(陰陽)을 조화(調和)시킬 수가 없으며, 하는 일 없이 자리만 차지하며 녹(祿)을 타먹으며 은총을 믿고 남이 나아가면 나아가고 물러서면 물러서곤 합니다. 그리고 경상(卿相) 이하 한 사람도 선도(善道)를 개진(開陳)하거나 황정(荒政)27996) 을 널리 펴서 우리 전하께서 하늘을 두려워하시고 백성을 구제(救濟)하시는 뜻을 돕는 자가 없습니다. 궁지에 몰린 사람이 없고, 병든 사람도 없는데, 백성을 구제하는 자 또한 없으니, 어찌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뿐만이 아닙니다. 형벌이 중도(中道)를 잃어서 무고(無辜)한 자가 하늘에 무죄(無罪)를 호소하고, 부부(夫婦)가 도리를 잃어서 인륜(人倫)이 어그러져 어지러워진 것은 재상(宰相)의 책임인데도, 유유(悠悠)하게 비위만 맞추면서 감히 고집하여 아뢰는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하께서 밝히셔야 하는 천명(天命)의 덕(德)을 밝히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고하건대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감히 옥사(獄事)를 처결하지 않는다.’ 하였고,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여러 옥사(獄事)와 여러 삼가야 할 일은 문왕(文王)도 감히 이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대개 형벌(刑罰)이란 것은 사람의 기부(肌膚)를 벗기는 것이므로 지극히 참혹하다 할 만하고, 사람의 성명(性命)을 죽이는 것이므로 지극히 두려워할 만합니다.

上服下服，雖得其情，哀矜勿喜，可矣。殿下以大舜欽恤之心，體文王愼罰之仁，凡折庶獄，矜存哀敬，無一人枉受非罪，好生之德，洽于民心，一國臣民，冒之如天，怙之如父，雖舜、文之聖，蔑以加矣，徂茲德崇之獄，震以天威，拷訊日數，不遵《大典》。今者謀害公主之獄，事干大變，推鞫得情，明正典刑，宜矣。然既命禁府訊鞫，則明愼折獄，有司是任，何必取招于內，兼于有司，使奉法之吏，惟上之意向，而不得自由乎？況光載卜妾之事，非有關於國家，雖置而不問，可也，必欲摘發，騷擾都中，逮繫三十餘人，亂加箠楚，隕命杖下者非一，而所謂良妾者放置于外，非徒遂公主妬忌之惡，抑亦殿下失信於朝廷也。殿下二十六載欽恤愼罰之德，不克有終，而一國臣民缺望深矣。然則殿下所用者，可謂得天討之罪乎？謹按《易》曰：‘輿脫輻夫妻反目。’傳曰：‘未有夫不失道，而妻能制其夫者。’今光載幼年尚主，驟登貴顯，驕淫成性，狂誕自恣，既不好合於公主，又不輯睦其家人，釀成大獄，孽自己作，然以綱常〔綱常〕大義

그래서 인주(人主)는 옥사(獄事)를 처결할 때를 당하여, 속일 것을 미리 헤아리지 않고, 사사로운 분노(忿怒)로써 형벌을 더하지 않고, 먼저 들은 말로써 주장(主張)을 삼지 않고, 유사(有司)에게 맡겨서 자세하게 신국(訊鞫)하게 하여 따르지 않는 자도 따르게 할 것이며, 무거운 형벌과 가벼운 형벌을 써서 비록 그 실정(實情)을 밝혔대 하더라도 불쌍히 여겨 기뻐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전하께서는 대순(大舜)의 흠휩지심(欽恤之心)27997) 을 가지고 문왕(文王)의 형벌을 삼가는 인의(仁義)를 본받으셔서, 무릇 옥사(獄事)를 처결하실 때 불쌍히 여겨 공경하는 데 힘쓰시면, 한 사람도 억울하게 무고(無辜)한 죄를 받지 않게 되어 호생지덕(好生之德)27998) 이 백성들의 마음에 젖어들 것이며, 온 나라의 신민(臣民)이 하늘과 같이 <은택을> 입게 되어 아버같이 믿을 것이니, 비록 대순과 문왕의 성덕(聖德)으로도 이에서 더할 바가 없을 것입니다.

지난번 이덕숭(李德崇)의 옥사(獄事)에서는 천위(天威)를 떨치시어 고신(拷訊)의 일수(日數)를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의 공주(公主)를 모해(謀害)한 옥사는 일이 대변(大變)에 관계되는 것이니, 추국(推鞫)하여 정상(情狀)을 밝혀서 전형(典刑)을 명백하게 바로잡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미 의금부(義禁府)에 명하여 신국케 하셨습니다. 명확하고 신중하게 옥사를 처결하는 것이 유사(有司)의 올바른 임무인데, 어찌 반드시 대내(大內)에서 취초(取招)해서 유사를 겸하여 국법(國法)을 봉행(奉行)하는 관리로 하여금 성상(聖上)의 뜻을 생각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더욱이 임광재(任光載)가 복첩(卜妾)27999) 한 일은 국가에 관계되는 바가 없으니, 비록 내버려 두고 묻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반드시 적발(摘發)하고자 하여 도성(都城) 안을 소요(騷擾)스럽게 하고, 30여 인을 잡아가두어 형벌[箠楚]을 어지러이 더하여서 장하(杖下)에 목숨을 잃은 자가 한 사람만이 아니며 이른바 양첩(良妾)이라는 자는 외방(外方)에

言之，則婦人之道，以夫家爲內，而有三從之義，雖以天子之女，下嫁匹夫，尙且戒以欽哉，況公主雖貴，亦人妻也，豈可以爲人妻而蔑其夫乎？昔唐廣德公主下嫁于琮，嘗從琮貶韶州，侍者纔數人，凡內外冠昏喪祭，主皆答勞，及琮爲黃巢所害，主泣曰：‘今日義不獨存。’乃自縊。宋荊國公主下嫁李遵勗，每燕集，主必親視饗饈，及遵勗出守許州，主亟欲馳視之，左右曰：‘須奏得報，乃可行。’主不待報而往。今公主視其夫如視路人，一入大內，動經旬朔，及光載遠謫，縱不能陳訴于上，以救夫罪，固宜蒼黃往慰之不暇，越視而不顧，夫婦之倫蔑矣。唐宣宗每誨萬壽公主曰：‘無鄙夫家，無忤時事。’由是諸公主莫不祇畏，爭爲可喜事，聖上亦宜諭以夫婦之典，綱常之禮，以成家法，可也。反以公主所爲是，而不以爲非，何哉？恐自今，諸公主、翁主，從而效尤，遂成風俗，則自祖宗以來扶植之綱常，從此而盡壞矣。妾婦乘其夫，致日食之變，豈不可懼之甚耶？然則殿下所庸、所惇者，可謂得天敘、天秩之典禮乎？臣等聞，

방치(放置)하였으니, 한갓 공주(公主)의 투기(妬忌)하는 악행(惡行)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전하(殿下)께서도 조정(朝廷)에 실신(失信)하신 것입니다. 전하께서 26년 동안 죄인을 신중하게 심의하고 형벌을 삼가시는 덕이 끝을 잘 맺지 못하여서, 온 나라 신민의 결망(缺望)됨이 깊으니, 그렇다면 전하께서 쓰신 바가 천토(天討)의 죄를 얻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살펴보건대 《주역(周易)》 28000) 에 이르기를, ‘수레 바퀴살이 벗겨졌다. 부부가 서로 반목한다[輿脫輻 夫妻反目].’ 하였고, 전(傳)에 이르기를, ‘지아비가 도(道)를 잃지 않았는데, 아내로서 그 지아비를 제어할 수 있는 자는 있지 않다[未有夫不失道 而妻能制其夫者].’ 하였습니다. 이제 임광재는 어린 나이로 공주에게 장가들어 별안간 귀현(貴顯)에 오르니, 교만하고 음란함이 습성(習性)을 이루어 미친 듯이 방종을 자행하였습니다. 이에 이미 공주와 화목[好合]하지 못하는데다가 또 그 가인(家人)과도 화목[輯睦]하지 못하여 대옥(大獄)을 양성(釀成)하였으니, 재앙은 자신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강상(綱常)의 대의(大義)를 가지고 말한다면, 부인(婦人)의 도리는 부가(夫家)로써 안을 삼아야 하는 삼종(三從)의 의리(義理)가 있으므로, 비록 천자(天子)의 딸로서 필부(匹夫)에 하가(下嫁)하였다 하더라도 오히려 공경하라는 말로써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공주가 비록 귀하다 하나, 또한 남의 아내인데 어찌 남의 아내가 되어서 그 지아비를 업신여길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당나라 광덕 공주(廣德公主)는 우중(于琮)에게 하가하고, 일찍이 우중을 따라 소주(韶州)로 귀양갔는데, 시자(侍者)가 겨우 몇 사람뿐였습니다. 그리고 무릇 안팎의 관혼상제(冠婚喪祭)에 공주가 모두 답례(答禮)하고 노고(勞苦)하였는데, 우중이 황소(黃巢)에게 해(害)를 입자, 울면서 말하기를, ‘오늘날 의리에 있어서 혼자 살아남을 수 없다.’ 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송(宋)나라의 형국 공주(荊國公主)는 이준옥(李遵勣)에게 하가하였는데, 잔치 때마다 공주가 친히 옹선(饗餼) 28001) 을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준옥이 나가서 허주(許州)를 지키게

木從繩則正, 后從諫則聖, 蓋人主處崇高之位, 萬鈞其勢, 雷霆其威, 開道而求諫, 和顏色而受之, 猶懼其不敢盡言, 況折之以辯乎? 古之帝王, 虛懷待物, 言可采, 則用其言而顯其身, 言不可用, 則恕其罪以來諫者, 是以得聞其過, 而終入於無過之地。 殿下近年以來, 好善從諫, 漸不如初, 臺諫持公論而獻可, 則不肯聽納, 一則曰: ‘隨人指嗾。’ 一則曰: ‘如此故, 我擇臺諫。’ 一則曰: ‘妄量。’ 一則曰: ‘若從汝言, 權歸臺諫。’ 此等聖教, 皆非帝王開言路、待臺諫之道也。 當是時, 大臣取媚而不言, 小臣畏罪而不言, 臺諫而又不得行其言, 反遭折讓, 臣等恐, 進言之路, 自此而塞矣。 臣等不避鈇鉞, 區區喋陳者, 非敢望保其既往也, 唯欲救其將來耳。 殿下若於天之所敍秩命討者, 惇之庸之, 如大舜之和衷, 章之用之, 如大舜之懋哉, 養民如大舜之善政, 取善如大舜之好問, 上享天心, 下協人望, 則教化旁達, 和氣融洽, 天災不期弭而自弭矣。 命抄書(流) [疏] 中大意以啓, 予當語于弘文館。” 仍召世明等教之曰: “諸

되자, 공주가 빨리 달려가 보고자 하니, 좌우의 사람이 말하기를, ‘모름지기 황제께 아뢰고, 회보를 받아야만 갈 수 있습니다.’ 하였으나, 공주는 회보를 기다리지 않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주는 그 지아비를 마치 길가는 사람 보듯이 하고, 한 번 대내(大內)에 들어가면 열흘을 지내곤 합니다. 임광재가 멀리 귀양가게 되자, 비록 성상께 진소(陳訴)하여 지아비의 죄를 구제(救濟)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진실로 급히 달려가서 위로하는 데 여념이 없어야 할 것인데, 남의 일 보듯 하며 돌아보지 않았으니, 부부의 윤리가 없는 것입니다. 당나라 선종(宣宗)은 매양 만수 공주(萬壽公主)를 가르치기를, ‘지아비의 집안을 알아보지 말고, 시사(時事)를 거역하지 말라.’ 하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여러 공주가 공경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바가 없어서 좋은 일을 다투어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성상(聖上)께서도 마땅히 부부의 법도와 강상(綱常)의 예절을 깨우쳐 주셔서 가법(家法)을 이루게 하는 것이 옳은데, 도리어 공주의 하는 바를 옳다 하고 그르게 생각지 않으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로부터 여러 공주와 옹주(翁主)가 따라서 이를 본받아 마침내 풍속을 이룬다면, 조종(祖宗) 이래로 부식(扶植)했던 강상(綱常)이 이에 따라 모두 무너지까 두렵습니다. 첩[妾婦]이 그 지아비를 업신여기면 일식(日食)의 변고를 이르게 하니, 어찌 몹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전하께서 도탑게 하고 힘써야 하는 하늘이 베풀고 정하신 법[典]과 예(禮)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 등이 듣건대 나무가 먹줄에 따르면 바르게 되고, 임금이 간언(諫言)을 좇으면 성스러워진다 하였습니니다. 대개 인주(人主)는 숭고(崇高)한 지위에 처하여 만균(萬鈞)의 권세(權勢)와 뇌정(雷霆)의 위엄을 가지고 언로(言路)를 열어 놓고 간언을 구하면서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여 이를 받아들이지만, 오히려 두려워하여 감히 다 말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변사(辯辭)로써 이를 좌절시키는 것이겠습니까? 옛날의 제왕(帝王)은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만물을 대접하여,

君、駙馬營第所役者，只番上正兵、彭排、隊卒與工匠耳。番上正兵，雖險年，不可退而備荒，彭排、隊卒亦有月俸，工匠，雖不役于公處，必自役于私處，以食其力也。濟川亭，非遊觀之所，簡儀廳，政丞監其事，綱目廳，宰相掌其事，事且垂畢，故爲之耳。若果勞民傷財，則政丞、宰相，何不言之，而爾等言之如此耶？點馬事，曾從臺諫言，擇其可遣處，遣之耳。朴安性事，予當分揀。廟堂之上，或非其人者，未知指誰而言也。人臣事君，當使之無過，而李德崇言予所不意之事，至曰：‘內間知之。’昔高皇帝時，我朝內官李得芬赴朝，皇帝問得芬我國之事，以至刑訊，而得芬至死不言，內官猶尙如此，況宰相乎？此不得不推，而爾等言之，何耶？李根守，公主乳媪子也，以乳媪子而謀害公主，任光載不有大妃，恣意宣淫，及承予問，又不實對，皆不可不推也。今爾等右光載而不愛予，何也？光載平時，視公主如仇讎，假使公主出見光載，光載其肯見耶？從諫漸不如初，予當受責，然後世自有是非。”世明等書啓曰：

그 말이 채납(採納)할 만하면 그 말을 채용(採用)하여 그 몸을 현달(顯達)하게 하였고, 말이 쓸 만하지 못하면 그 죄를 용서하여서 간언하는 자를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허물을 들어서 마침내 허물이 없는 지경에 몰입(沒入)할 수 있었습니다. 전하께서는 근년 이래로 선을 좋아하고 간언에 따르시는 것이 점점 처음과 같지 않게 되었으니, 대간(臺諫)이 공론(公論)을 가지고 헌가(獻可)하면 기꺼이 청납(聽納)하려 하지 않으시고, 어떤 것은 말씀하시기를, ‘남의 지주(指喉)에 따랐다.’ 하시고, 어떤 것은, ‘이와 같은 까닭에 내가 대간을 가리는 것이다.’ 하시고, 어떤 것은 ‘망령되게 헤아린다.’ 하시고, 어떤 것은 ‘만약 그대 말에 따른다면 권한이 대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런 성교(聖敎)는 모두 제왕(帝王)이 언로(言路)를 열어 놓고 대간을 대우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이때에 당하여 대신은 아첨하여 말하지 않고, 소신(小臣)은 죄를 두려워하여 말하지 않는데, 대간이 또 그 말이 시행되지 못하고 도리어 좌절되고 꾸지람을 받게 되면, 신 등은 진언(進言)의 길이 이로부터 막히게 될까 두렵습니다. 신 등이 부월(鈇鉞)을 피하지 아니하고, 구구하게 계속 진계(陳啓)하는 것은 감히 이미 지난 일이 보전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장래의 일을 구제(救濟)하고자 하는 것일 뿐입니다. 전하께서 만약 하늘이 베풀고 정하고 명하고 벌하시는 바를 도탑게 하고 힘쓰시기를 대순(大舜)이 화충(和衷)28002) 한 것과 같이 하시고, 밝히고 쓰기를 대순(大舜)이 힘쓴 것과 하시고,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대순의 선정(善政)과 같이 하시고, 선(善)을 취하기를 대순이 물기를 좋아하는 것과 같이 하셔서, 위로 천심(天心)에 통하고 아래로 인망(人望)에 맞는다면, 교화(教化)가 널리 미치고 융합(融合)하여, 천재(天災)가 그칠 것을 기약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쳐질 것입니다.”

하니, 명(命)하기를,
“소(疏) 안의 대의(大意)를 베끼어 써서 아뢰도록 하라. 내가 마땅히 홍문관

一, 歲饑, 百事廢弛, 雖止役正兵、隊卒, 其勞民起怨一也。 綱目等廳, 糜費不貲, 凶歉之道, 點馬有弊, 皆防於荒政, 臣等非以德崇爲無罪, 限內刑訊, 有乖《大典》, 人主不可乘怒而廢法也。 一, 謀害公主之獄, 事干惡逆, 所當窮鞫, 但不專付有司, 取招于內, 有傷大體。 一, 光載狂妄, 固不足道, 然夫雖不夫, 婦不可以不婦, 爲婦之道, 豈宜以夫之視我如仇讎, 亦視夫如仇讎乎? 臣等豈有一毫右光載之心乎? 一, 臣等所以區區敢陳者, 非彰君之惡, 欲納君於無過之地耳。 傳曰: “諸君、駙馬第宅, 事逼於予, 故爾等言之耳。 工匠雖不役於諸君等家, 豈皆游手乎? 爾等昵侍經幄, 如有顧問, 則當以直言, 不宜搜撻人君所無之過失。 京畿、忠淸、黃海三道, 凶歉已甚, 不遣點馬, 慶尙、全羅兩道, 不至飢荒, 而馬政亦大, 故遣之耳。 爾等當以德崇言予不意之事爲非, 而反畜嫌於心, 久而乃言, 豈侍從之道乎? 謀害公主事, 大妃取招于內, 以傳於予, 承大妃命, 令禁府推之耳。 今爾等似以大妃取招于內爲非也, 駙馬卜

(弘文館)에 말할 것이다.”

하고, 이어 성세명(成世明) 등을 불러 전교(傳敎)하기를,

“여러 군(君)과 부마(駙馬)의 제택(第宅)을 영건(營建)하는 데 역사(役使)시키는 자는 단지 번상(番上)한 정병(正兵)과 팽배(彭排)·대졸(隊卒) 및 공장(工匠) 뿐이다. 번상한 정병은 비록 흉년이라 하더라도 물러가서 흉년에 대비할 수 없고, 팽배·대졸은 또한 월봉(月俸)이 있으며, 공장은 비록 공처(公處)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스스로 사처(私處)에서 일하여서 노력(勞力)으로써 먹고 살게 마련이다. 제천정(濟川亭)은 유관(遊觀)하는 곳이 아니고, 간의청(簡儀廳)은 정승(政丞)이 그 일을 감독하고, 강목청(綱目廳)은 재상(宰相)이 그 일을 관장하는데, 일이 또 거의 끝나치게 된 까닭에, 이를 하는 것일 뿐이다. 만약 과연 백성을 수고롭게 하고 재물을 손상시킨다면 정승과 재상이 어찌 말하지 않고, 그대들이 이처럼 말하겠는가?

점마(點馬)의 일은 일찍이 대간(臺諫)의 말에 따라 보낼 만한 곳을 가려서 보냈을 뿐이다. 박안성(朴安性)의 일은 내가 마땅히 분간(分揀)하겠다. 묘당(廟堂)의 위에 더러 마땅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 인신은 임금을 섬기면서 마땅히 허물이 없게 해야 하는 것인데, 이덕승(李德崇)은 내가 뜻하지 않은 일을 말하면서, 심지어, ‘내간(內間)에서 이를 압니다.’라고 말하였다. 옛날 고 황제(高皇帝) 때에 우리 나라의 내관(內官) 이득분(李得芬)이 중국에 갔는데, 황제가 우리 나라의 일을 이득분에게 물으면서 형신(刑訊)하기에 이르렀으나, 이득분은 죽기에 이르기까지 말하지 않았었다. 내관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재상(宰相)이겠는가? 이에 추문(推問)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대들이 이를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근수(李根守)는 공주의 유모[乳媪] 아들인데, 유모의 아들로써 공주를 모해(謀害)하였으며, 임광재(任光載)는 대비(大妃)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방자하게 음행(淫行)을 저질렀는데, 나의 물음을 받들게 되자, 또 사실

妾, 自古所無, 予待豐川甚厚, 無異兄(第) [弟], 而乃敢狂縱如此, 大妃安知光載之行, 適在何日? 公主之相見, 不亦難乎? 安性果若抑減, 失在安性, 否則失在上疏者, 當令憲府分揀耳。廟堂之非人, 何不言耶?” 世明等曰: “工匠之游手與否, 今不必論, 但以今年, 凶旱災變疊至, 故欲廢百事, 請停點馬亦意也。 臣等非以德崇爲是, 但拷訊日限, 《大典》所載, 而上不遵行, 恐刑訊之失次, 而民有怨之者也。 刑罰重事, 凡罪囚必付有司, 參酌情法而決之, 可也。 近日公主之獄, 大妃雖或取招于內, 殿下不付有司, 使有司, 一從上意所向, 不得自由, 豈可乎? 光載雖狂妄, 公主豈宜以光載之狂妄, 而不盡婦道乎? 臣等所陳, 皆已往之事, 臣等非欲改其已往, 只欲救其將來耳。 廟堂之非人, 尹壕也, 壕乃國舅, 固當寵待, 然不宜付以三公之任也。 前日臺諫言之, 臣等亦言之, 故今又言之耳。” 傳曰: “《洪範》休咎徵之應, 先儒以謂膠固不通, 今不可謂因某事而致此變。 諸君第宅, 工役就訖, 故欲令彭排等, 畢其役耳, 然父子

대로 대답하지 않았으니, 모두 추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 그대들이 임광재를 도와서 나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임광재가 평시에 공주 보기를 원수같이 하는데, 가령 공주가 나가서 임광재를 본다고 해서 임광재가 기꺼이 보려 하였겠는가? 간언(諫言)을 좇음이 점점 처음과 같지 않다고 하였으니, 내가 마땅히 책망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후세(後世)에 저 절로 시비(是非)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성세명 등이 서계(書啓)하기를,

“1. 흉년이 든 해에는 백사(百事)가 폐이(廢馳)해지게 되므로, 비록 정병(正兵)과 대졸(隊卒)을 역사시키는 데에 그친다 하더라도 백성을 수고롭게 하여 원망을 일으키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강목청 등은 비용을 쓰는 것이 한이 없고, 흉년이 든 도(道)에 점마를 보내는 것은 폐단이 있으니, 모두 황정(荒政)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신 등은 이덕승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한(期限) 안에 형신(刑訊)하는 것은 크게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어긋나는 바가 있다는 것이니, 인주(人主)는 노여움으로 인하여 법을 폐할 수는 없습니다.

1. 공주를 모해한 옥사는 일이 악역(惡逆)에 관계되므로, 마땅히 끝까지 추국(推鞠)해야 합니다. 다만 전적으로 유사(有司)에게 맡기지 않고 대내(大內)에서 취초(取招)하는 것은 대체(大體)를 손상시키는 바가 있습니다.

1. 임광재의 광망(狂妄)한 바는 진실로 족히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아비가 비록 지아비답지 못하더라도 지어미는 지어미답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어미가 된 도리인데, 어떻게 지아비가 나를 원수같이 본다 하여 또한 지아비를 원수같이 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신 등이 어찌 일호(一毫)라도 임광재를 도우려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1. 신 등이 구구(區區)하게 감히 진달하는 까닭은 임금의 악(惡)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고, 임금을 허물 없는 지경에 들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之情，通于上下矣。古云：‘問國之富，數馬以對。’馬政之有關於國家，大矣。予若暴君，當致德崇于極刑，但以德崇曾經承旨，予所見知，故特赦耳。謀害公主，一家大變，不可不推也。光載若因他事而見謫，則公主猶當出見，此則因公主而見謫，公主安得從容往見乎？尹壕，一時同列，皆許出官，而又不論駁，爾等雖以予爲私，豈可黜無罪之人乎？”因以其疏示大臣。尹弼商議：“弘文館上疏激切，伏惟留意。”李克培議：“疏中所陳激切，有關事體，念茲在茲，幸甚。況以不言，歸咎大臣，固當甘心，臣不勝慙惶之至，其敢議之哉？”盧思慎、韓致亨、柳輕議：“弘文館上疏，誠爲切直，然臣等皆以無狀，忝居廟堂，斥以尸居枯寵，謂之非人，則安敢獻議？”尹壕議：“疏內居廟堂之上者，或非其人，不能同寅協恭，以調陰陽，以不才，居廟堂之列，與議爲難。”鄭文炯議：“弘文館疏語，正大激切。”傳曰：“人君有所議，皆忱於弘文館，以其言爲切直，而一無分辨，可乎？”

하였는데, 전교(傳敎)하기를,
 “여러 군(君)과 부마(駙馬)의 제택은 그 일이 나에게 가깝기 때문에, 그대들이 말하는 것일 뿐이다. 공장(工匠)이 비록 여러 군(君) 등의 집에서 역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찌 모두 손을 놓고 놀며 지내겠는가? 그대들은 경악(經幄)에 가까이 모시고 있으니, 고문(顧問)이 있을 것 같으면 마땅히 바른 말을 해야 하며, 인군(人君)의 없는 과실(過失)을 찾아 들추어내는 것은 마땅하지 못한 것이다. 경기(京畿)·충청도(忠淸道)·황해도(黃海道) 세 도(道)는 흉겁이 이미 심하므로, 점마(點馬)를 보내지 않았고, 경상도(慶尙道)·전라도(全羅道) 두 도는 기황(飢荒)에 이르지 않고 마정(馬政) 또한 큰 일이기 때문에 보냈을 뿐이다. 또 그대들은 마땅히 이덕송이 나의 뜻하지 않은 일을 말한 것을 그르게 여겨야 할 것인데, 도리어 마음에 혐의(嫌疑)을 쌓아 두었다가 오래 되어서 말하니, 이것이 어찌 시종(侍從)의 도리란 말인가? 공주를 모해한 일은 대비(大妃)께서 대내(大內)에서 취초(取招)하고 나에게 전하셨기 때문에, 내가 대비의 명을 받아 의금부(義禁府)로 하여금 이를 추국(推鞠)하도록 하였을 뿐인데, 지금 그대들은 대비께서 대내에서 취초하신 것을 그르게 생각하는 듯하다. 부마(駙馬)가 복첩(卜妾)하는 것은 예로부터 없었던 바이고, 내가 풍천위(豐川尉)를 대우함이 매우 두터워서 형제와 다름없었는데도 감히 광망(狂妄)하고 방중한 것이 이와 같았다. 대비께서 임광재가 길을 떠나가는 것이 어느 날에 있었는지 어떻게 아셨겠는가? 공주가 〈임광재와〉 서로 만나는 것 또한 어렵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박안성(朴安性)이 과연 〈전형(田形)의 등급을〉 억지로 감하였을 것 같으면, 과실(過失)이 박안성에게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상소(上疏)한 자에게 있는 것이니, 마땅히 사헌부(司憲府)로 하여금 분간(分揀)케 할 뿐이다. 또한 묘당에 마땅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어찌 그 사람을 말하지 않는 것인가?”
 하자, 성세명(成世明) 등이 말하기를,

“공장(工匠)이 손을 놓고 노는지 그 여부(與否)는 지금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올해에 흉년(凶年)과 한재(旱災)의 재변(災變)이 계속 잇따랐기 때문에 백사(百事)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니, 점마(點馬)를 정지(停止)하도록 청한 것도 이런 뜻이었습니다. 또 신 등은 이덕숭(李德崇)을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고신(考訊)의 일한(日限)이 《경국대전》에 실려 있는데, 성상(聖上)께서 준행(遵行)하지 않으시니, 형신하는 데 차례를 잃어서 백성으로서 원망하는 자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형벌은 중대한 일이니, 무릇 죄수는 반드시 유사(有司)에게 맡겨서 인정과 법을 참작(參酌)하며 결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근일에 공주의 옥사를 대비(大妃)께서 비록 대내(大內)에서 취초(取招)하셨다 하나, 전하께서는 유사에게 맡기지 않고, 유사로 하여금 한결같이 전하의 의향(意向)에 따르게 하셔서 자유롭게 할 수 없도록 하셨으니, 어찌 가한 것이겠습니까? 임광재가 비록 광망하다 하나, 공주가 어떻게 임광재의 광망함 때문에 마땅히 부도(婦道)를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 등이 진달하는 것은 모두 지난 일들이나, 신 등은 이미 지난 일들을 고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장래의 일들을 구제하고자 할 따름입니다. 묘당의 마땅하지 못한 사람은 윤호(尹壕)입니다. 윤호는 곧 국구(國舅)이니, 진실로 은총을 베풀어 대우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삼공(三公)의 직임을 맡기는 것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전일에 대간(臺諫)이 이를 말하였고, 신 등도 이를 말했었기 때문에, 이제 또 말할 따름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홍범(洪範)》 28003) 의 휴징(休徵)28004) 이 응하거나 구징(咎徵)28005) 이 응하는 것은 선유(先儒)가 교고(膠固)28006) 하여 불통(不通)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니, 지금 무슨 일로 인(因)하여 이 재변이 이르렀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러 군(君)의 제택은 공역이 거의 끝나게 되었기 때문에, 팽배(彭排) 등으로 하여금 그 역사(役事)를 마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그러나 부자

(父子)의 정리는 상하(上下)에 공통되는 것이다. 또 옛말에 이르기를, ‘나라의 부(富)를 물으면 말[馬]을 세어서 대답한다.’ 하였으니, 마정(馬政)은 국가에 관계되는 바가 큰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만약 폭군(暴君)이라면 마땅히 이덕승에게 극형을 내렸을 것이다. 다만 이덕승이 일찍이 승지(承旨)를 지냈으므로, 내가 보고 알기 때문에 특별히 용서하였을 따름이다. 또한 공주를 모해한 것은 한 집안의 큰 변고(變故)이니, 추국(推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임광재가 만약 다른 일로 인하여 귀양가게 되었다면, 공주가 오히려 마땅히 나가서 보겠지만, 공주 때문에 귀양가게 되었는데, 공주가 어떻게 조용하게 가서 볼 수 있었겠는가? 윤희는 한때 같은 반열(班列)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벼슬에 나오는 것을 허락하였고, 또 논박(論駁)하지도 않았었다. 그대들이 비록 내가 사정(私情)을 두었다고 하지만, 어찌 죄 없는 사람을 내쫓을 수 있겠는가?”

하고, 인하여 그 상소(上疏)를 대신(大臣)에게 보이도록 하였다.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홍문관(弘文館)의 상소가 격절(激切)하니, 엿드려 생각하건대 유의(留意)하십시오.”

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소 안에 진계(陳啓)한 바가 격절하여 사체(事體)에 관계되는 바가 있으니, 유념(留念)하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더구나 말하지 않은 것으로써 허물을 대신에게 돌리니, 진실로 달갑게 여겨야 마땅할 것입니다. 신은 몹시 부끄럽고 황공(惶恐)함을 금하지 못하니, 감히 의논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노사신(盧思愼)·한치형(韓致亨)·유지(柳淸)는 의논하기를,

“홍문관(弘文館)의 상소는 진실로 정성스럽고도 바릅니다. 그러나 신 등은 모두 무상(無狀)한 몸으로 외람되게 묘당에 있으면서 하는 일 없이 녹(祿)만 타 먹으며 은총을 믿는 것으로 배척하여 마땅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p>감히 헌의(獻議)하겠습니까?” 하고, 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소 가운데에 묘당 위에 있는 자로서 더러 마땅한 사람이 아니므로, 함께 직 무에 힘쓰면서 서로 공경하고 합심하여 음양(陰陽)을 조화(調和)시킬 수가 없 다고 하였는데, 재주 없는 몸으로 묘당의 반열(班列)에 있으니, 의논에 참여 하기 어렵습니다.” 하고, 정문형(鄭文炯)은 의논하기를, “홍문관에서 상소(上疏)한 말이 정대(正大)하고 격절(激切)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인군(人君)이 의논하는 바가 있는데, 모두 홍문관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정 성스럽고 바르다고 하고, 하나도 분변(分辨)함이 없으니, 가한가?” 하였다.</p>	
<p>성종 293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8월 27일 (계미) 1번째기사</p>	<p>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신종호(申從濩)가 서계(書啓)하기를, “1. 어느 면(面)은 비록 곡식이 영글지 않았다고 하나, 간혹 결실(結實)한 곳 이 있는데, 영글지 않은 것으로 논한다면 세금이 지극히 적어질 것이며, 어느 면은 비록 결실하였다고 하나, 재상(災傷)이 반을 넘는데, 결실한 것으로 논 한다면 민원(民怨)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청컨대 자등제(字等第)에 따라서 관 (官)과 백성 둘 다 편하게 하소서. 1. 강무장(講武場) 근처의 시초(柴草)를 금년에 한(限)하여 백성이 베어 들이 도록 허락하여 구황(救荒)하소서. 1. 올해에는 바람·우박·해충 등의 재해(災害)로 곡식이 결실하지 못하였는데, 만약 전례(前例)에 구애(拘礙)받아 으레 급재(給災)28011) 하지 아니한다면 백성이 그 병폐를 받게 될 것이니, 재상(災傷)이 이미 심한 곳을 분간(分揀)하 여 급재하게 하소서. 1. 산군(山郡)은 매우 가물어서, 수근(水根)이 없는 전지(田地)는 과종[付種]</p>	<p>○癸未/京畿觀察使申從濩書啓: 一, 某面雖曰不實, 間有結實處, 論以 不實, 則稅入至少, 某面雖曰結實, 災 傷過半, 論以結實, 則民怨不貲, 請隨 字等第, 要使官民兩便。 一, 講武場 近處柴草, 限今年, 許民刈取救荒。 一, 今年風雹蟲災, 穀不結實, 若拘前 例, 例不給災, 民受其病, 其災傷已甚 處, 分揀給災。 一, 山郡旱甚, 無水 根田地, 不得付種, 其山郡陳田, 限今 年免稅。 一, 失農各官書吏、皂隸, 一應在京役人, 爲先放送。 從之。</p>

	<p>할 수가 없었으니, 산군의 목정밭[陳田]은 올해에 한하여 면세(免稅)하소서. 1. 실농(失農)한 각 고을의 서리(書吏)와 조례(皂隸)로서 서울에서 일하는 사람을 모두 먼저 놓아 보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성종 293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8월 27일 (계미) 2번째기사</p>	<p>육조(六曹)의 당상(堂上)이 와서 아뢰기를, “홍문관(弘文館)에서 신 등을 가지고 경상(卿相)의 지위에 있으면서 능히 선도(善道)를 개진(開陳)하고 황정(荒政)을 펴지 못한다 하니, 신 등은 재직(在職)하기 미안(未安)합니다. 피험(避嫌)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한성부 당상(漢城府堂上)이 또한 와서 아뢰기를, “홍문관(弘文館)의 소(疏) 안에 경상 이하 한 사람도 선도를 개진하는 자가 없다 하니, 신 등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실로 미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허물은 과궁(寡躬)28012) 으로 말미암았으니, 경 등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홍문관(弘文館)에서 때로 이와 같이 발언(發言)하여서 재상(宰相)으로 하여금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데, 이는 내가 어질지 못한 탓이다. 피험하지 말라.” 하고, 이어 빈청(賓廳)에 술을 내려 주었다.</p>	<p>○六曹堂上來啓曰：“弘文館，以臣等居卿相之位，不能開陳善道，鋪張荒政，臣等在職未安，請避。”漢城府堂上亦來啓曰：“弘文館疏內，卿相以下，無一人開陳善道，臣等聞此言，心實未安。”傳曰：“過由寡躬，卿等有何所失？弘文館有時乎如此發言，使宰相動心，是乃予之無良也，其勿避嫌。”仍賜酒于賓廳。</p>
<p>성종 294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9월 7일 (임진) 1번째기사</p>	<p>전교(傳敎)하기를, “요사이 대비(大妃)께서 편찮으셨는데, 이제 이미 평복(平復)하시었으니, 내 기쁨을 어찌 헤아리겠느냐? 약(藥)을 조제한 의원에게 상을 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송흠(宋欽)과 김흥수(金興守)는 이미 당상관(堂上官)이 되었으니, 이제 만약 작위(爵位)로 상을 주면 대간(臺諫)이 반드시 공박할 것이다. 다만 신보종(申補宗)은 종사(從仕)한 지가 벌써 오래 되었으므로 특별히 한 자금(資級)을 더하려고 하는데 승정원(承政院)의 뜻은 어떠하냐?” 하니, 모두 대답하기를, “신보종(申補宗)은 자신이 서얼(庶孽)인데다 의술(醫術)에 특이(特異)함도 없</p>	<p>○壬辰/傳曰：“近日大妃未寧，今已平復，子喜何量？調藥之醫，不可不賞，宋欽、金興守既爲堂上，今若賞爵，臺諫必駁之，但申補宗從仕已久，欲特加一資，於政院意，何如？”僉對曰：“補宗身爲庶孽，醫術無特異，今若加資，卽爲堂上，官爵，豈不猥濫？”傳曰：“予當斟酌。”</p>

	<p>습니다. 이제 만약 자급을 더하면 곧 당상(堂上)의 관작(官爵)이 되니, 어찌 외람되지 않겠습니까?”</p> <p>하니, 전교하기를,</p> <p>“내가 마땅히 짐작(斟酌)하여서 처리하겠다.”</p> <p>하였다.</p>	
<p>성종 294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弘治) 7년) 9월 8일 (계사) 4번째기사</p>	<p>한성부(漢城府)에서 아뢰기를,</p> <p>“무지(無知)한 사람들이 앞날을 깊이 헤아려 보지도 않고 털끝만한 이익을 다 투어 양식을 가지고 내왕(來往)하니 어느 겨울에 흉년에 대비하겠습니까? 또 빛을 주는 사람은 모두 부유(富裕)하고, 빛진 사람은 한결같이 모두 빈한(貧寒)합니다. 바야흐로 죽음을 구하기에도 겨울이 없는데 독촉하여 징수하고 납부하도록 하니, 매우 가련합니다. 청컨대 을사년(28022)의 예(例)에 의하여 강상(綱常)에 관계되는 것과 잉집(仍執)28023)·거탈(據奪)28024) 등의 조항의 정리(情理)가 절박한 일 외는 명년 가을을 기한하여 아울러 청리(聽理)하지 마소서.”</p> <p>하니, 전교(傳敎)하기를,</p> <p>“대저 송사(訟事)는 강하여 탈취한 이는 덮어두고 오래 끌려고 하고, 약하여 강탈을 당한 이는 빨리 결단하려고 하니, 관리(官吏)가 된 이가 어찌 먼저 정지하도록 함이 마땅하겠느냐?”</p> <p>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p> <p>“금년은 비록 실농(失農)하였다 하더라도 을사년(28025)과 같게는 되지 않았으니, 송사를 정지함은 아마도 옳지 못한 듯합니다.”</p> <p>하니, 전교(傳敎)하기를,</p> <p>“원척(元隻)28026)이 모두 송사를 중지하려고 하는 경우 외에는 전례에 의하여 청리(聽理)하게 하라.”</p> <p>하였다.</p>	<p>○漢城府啓曰：“無知之人，不顧遠慮，錐刀之爭，贏糧來往，何暇備荒？且給債之人，皆是富實，負債之人，類皆貧寒，方救死不(暇) [暇]，而督令徵納，甚可憐也。請依乙巳年例，關係綱常及仍執據奪等項，情理切迫事外，限明年秋成，並不聽理。”傳曰：“大抵訟事，強而奪取者，欲淹延，弱而被奪者，欲速決，爲官吏者，豈宜先使停之乎？”承政院啓曰：“今年雖失農，不至如乙巳年，停訟，恐不可也。”傳曰：“元隻皆欲停訟者外，依前聽理。”</p>
<p>성종 294권, 25년</p>	<p>성절사(聖節使) 질정관(質正官) 성희안(成希顔)이 명(明)나라 서울로부터 돌아</p>	<p>○丁酉/聖節使質正官成希顔回自京</p>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9월 12일
(정유) 1번째기사

오니, 전교(傳敎)하기를,
“중국 조정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니, 성희안(成希顔)이 대답하기를,
“달리 들은 것은 없고, 다만 압마관(押馬官) 탁세경(卓世瓊)이 반송(伴送) 소경통(邵敬通)과 광녕 총병관(廣寧摠兵官) 이고(李杲)의 집에 나아갔더니, 한 어린 사내아이가 있었는데, 나이는 겨우 14세였다 합니다. 그런데 탁세경(卓世瓊)을 보더니 기쁜 빛을 띠고 손을 쥐며 말하기를, ‘나는 바로 그대 나라 사람인데 여기에 온지 벌써 6년이 되었오. 그대는 이제 돌아갑니까?’라고 하니, 소경통(邵敬通)이 꾸짖기를, ‘어찌 외인(外人)과 말하는가?’라고 하였다 합니다. 그러자 어린 사내아이가 노하기를, ‘우리 나라 사람과 말하는데 무슨 거리낄 것이 있습니까?’라고 하니, 탁세경(卓世瓊)이 이내 묻기를, ‘너는 우리 나라의 어느 지방에 있었느냐?’라고 하자, 이르기를, ‘우리는 평안도(平安道) 사람이오.’라고 하였다 합니다. ‘누구하고 여기에 왔는가?’라고 하니, 이르기를, ‘우리 할아버지께서 먼저 이르시었다가 돌아와 또 나를 데리고 오셨습니 다.’라고 하였다 합니다. 잠시 후에 한 중이 나오니, 동자(童子)가 가리키며 이르기를, ‘이분이 저의 할아버지입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서로 말을 하지 않고 곧 도로 들어가고, 동자(童子)가 탁세경(卓世瓊)에게 이르기를, ‘그대는 황제를 뵈었습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황제께서 병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나라에도 또한 황제가 있습니까?’라고 하였으나, 탁세경(卓世瓊)이 대답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고(李杲)가 주반(酒飯)을 갖추어 탁세경(卓世瓊)에게 매우 흡족하게 대접하고, 이르기를, ‘그대의 전하께서 나에게 활을 주셔서 펍 고마우나, 다만 활의 힘이 약합니다. 금년에 만약 달자(獐子)가 오면 마땅히 그대의 나라에 청병(請兵)하겠오.’라고 하였으나, 탁세경(卓世瓊)은 대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이 길에서 말을 탄 어떤 사람을 보았는데 우리 나라 말을 잘 해득하여, ‘나

師。傳曰：“中朝有何事?” 希顔對曰：“他無所聞，但押馬官卓世瓊與伴送邵敬通，詣廣寧摠兵官李杲家，有一童子，年纔十四歲，見世瓊，有喜色，執手而言曰：‘我是汝國人，來此已六年，汝今歸矣?’ 敬通叱曰：‘何與外人言?’ 童子怒曰：‘與我國人言，有何妨也?’ 世瓊仍問曰：‘汝在吾國何地?’ 曰：‘我平安道人也。’ ‘何以來此?’ 曰：‘吾祖已先至，還又率我來耳。’ 有頃一僧出，童子指之曰：‘此吾祖也。’ 其人不交言，即還入。童子謂世瓊曰：‘汝見皇帝乎? 人言皇帝有病，我國亦有皇帝?’ 世瓊不答。杲具酒飯，饋世瓊甚厚曰：‘爾殿下遺我弓，多謝，但弓力弱耳。今年若獐子來，當請兵于爾國。’ 世瓊不答，臣道見騎馬一人，能解我國語曰：‘我東寧衛百戶也。’ 臣問曰：‘何以解我國語乎?’ 答曰：‘東寧衛人，凡疾病，必祀本國鬼神，本國鬼神，何以知中原語音? 故自兒時學語者，兼學本國語耳。’ 仍問臣曰：‘聞汝國，役困賦重，民甚苦之，然乎?’ 臣答曰：‘不然，我國賦於民，則損上益下，役於民，則歲不過十日，民以耕田鑿井爲樂。’

는 동녕위(東寧衛)의 백호(百戶)28028) 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묻기를, ‘어찌하여서 우리 나라 말을 해득하느냐?’라고 하였더니, 대답하기를, ‘동녕위(東寧衛)의 사람은 무릇 질병(疾病)이 있으면 반드시 본국의 귀신에게 제사한다. 본국의 귀신이 어찌하여 중원(中原)의 어음(語音)을 알겠느냐? 그런 까닭으로 어릴 때부터 말을 배우는 이는 본국의 말을 겸하여 배운다.’라고 하고, 이내 신에게 묻기를, ‘들으니 그대의 나라는 역사가 고달프고 부세(賦稅)가 중(重)하여 백성이 매우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그러한가?’라고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그렇지가 않다. 우리 나라는 백성에게 세금을 받으면 위는 손해를 보고 아래는 이익이 되게 하며, 백성에게 역사를 시키면 1년에 10일이 넘지 않고, 백성은 밭을 갈고 우물을 파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대답하기를, ‘아니다. 우리 대국(大國)이 동녕위(東寧衛)의 사람을 대접함이 특별히 후(厚)하여 군역을 지는 사람이 있으면 한 달에 은(銀) 5전(錢)과 양미(糧米) 20두(斗)를 주고, 집에 열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종군(從軍)하면 나머지는 모두 역(役)이 없다. 우리 숙질(叔姪)이 열두 사람이 한집에 있으며, 경작하는 것이 매우 많은데도 부세(賦稅)가 없고 나만이 홀로 역(役)이 있을 뿐이다.’라고 하기에, 신이 이르기를, ‘들으니, 우리 나라 사람으로서 요동(遼東)에 와서 거주하는 이가 많다고 하던데 그러하냐?’라고 하였더니, 대답하기를, ‘그대가 어찌하여 알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이르기를, ‘내가 안 지가 오래인데 그대는 어찌하여 말하지 않느냐?’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그대의 나라 사람 7인이 요동(遼東)에 와서 산 지가 이제 벌써 6, 7년이 되었다.’라고 하였는데, 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에 또 그 사람과 서로 만나 천천히 묻기를, ‘그대가 말한 요동(遼東)에 와서 거주하는 우리나라 사람은 남자가 몇이고, 여자가 몇이냐?’라고 하였더니, 그 사람이 낮빛을 바꾸며, ‘나는 일찍이 보지 못하였고, 다만 들으니, 그대 나라 사람으로서 요동에 거주하려고 하는 이가 있으면 요동에서 면포(綿布) 1사(事)를 준다고

答曰：‘不也，我大國待東寧衛人特厚，有軍役人，月給銀五錢、糧二十斗，家有十人，而一人從軍，則餘皆無役。吾叔姪十二人在一家，所耕甚多而無賦，我獨有役耳。’臣曰：‘聞我國人來居遼東者多，然乎?’答曰：‘汝何以知之?’臣曰：‘吾知之久矣。汝何以不言乎?’答曰：‘汝國人七口，來居遼東，今已六七年。’臣不答，翼日又與其人相遇，徐問曰：‘汝言，吾國人來啓遼東，男幾人、女幾人乎?’其人變色曰：‘余不曾見，但聞汝國人有欲居遼東者，遼東給綿布一事耳。’傳曰：“明可更來。”

	<p>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내일 다시 오라.” 하였다.</p>	
<p>성종 294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9월 14일 (기해) 1번째기사</p>	<p>우의정(右議政) 이극배(李克培)가 상장(上狀)하기를, “신은 6월부터 병을 얻었는데, 7, 8월을 지나 9월에 이르러서야 병세(病勢)가 비록 덜하여졌으나 음식을 줄였기 때문에 원기가 약하여져 반열(班列)을 따라 나가고 물러가기가 진실로 어려우니, 엿드려 바라건대 신의 직책을 갈라고 명하시어 안심하고 조리(調理)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允許)하지 않고, 비답(批答)하기를, “군신(君臣)은 일체(一體)이니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를 두터이 함이 마땅하다. 그리고 집안과 나라는 기쁨을 같이하여야 하는 것이니, 어찌 거취(去就)28039)의 의리를 생각하지 않는가? 더구나 기구(耆舊)는 더욱 있고 없는데 관계됨이 있다. 생각건대 경은 명망(名望)이 무거운 중신(重臣)으로 으뜸가는 큰 공훈과 큰 덕(德)이 있으며, 전대(前代)에 역사(歷仕)하여 훈로(勳勞)를 일찍이 나타냈고, 과인(寡人)을 보필(補弼)하는 데 미처서는 진실로 의뢰(倚賴)함이 많아 다시 공태(公台)28040)의 자리를 밟아 오래도록 진신(縉紳)의 반열을 거느렸다. 바야흐로 노성(老成)함을 우러러보며 들에 있는 봉(鳳)의 울음을 듣기를 바랐는데, 잠깐 대단치 않은 병에 걸리어 어찌 갑자기 관직을 사직하는 봉장(封章)을 울리어 바쁘게 소보(召保)의 돌아가기를 구하여 주성(周成)의 도움이 없음을 본받는가? 나이가 더욱 많으며 덕이 더욱 높아 백성이 모두 바라보니, 술[酒]은 누룩으로 빚고 국[羹]은 매실(梅實)로 만든다. 내가 네 도움을 어기겠는가? 마땅히 서로 기다리는 도리를 다하여 무강(無疆)한 아름다움을 비승(丕承)하며 굳이 사직만을 고집하지 말고 그 직위를 힘써 편안히 하라.”</p>	<p>○己亥/右議政李克培上狀曰： 臣自六月得病，歷七八月，至于九月，病勢雖歇，而飲食減小，緣此氣弱，隨班進退，實爲艱難，伏望，命遞臣職，使之安心調理。 不允，批答曰：“君臣一體，宜敦終始之恩，家國同休，盍思去就之義？況在耆舊，尤關有無。惟卿，宿望重臣，元功巨德，歷仕前代，夙著勳勞，逮補寡躬，實多倚賴，再履公台之席，久押縉紳之班，方仰老成，庶幾聞在郊之鳴鳳，暫嬰微疾，何遽上乞身之封章，縱效召保之求歸，忍視周成之無助，年彌高而德彌邵，民具爾瞻，酒作孽而羹作梅，予違汝弼，宜盡相須之道，丕承無疆之休，毋執牢辭，勉安厥位。”</p>

<p>성종 294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9월 18일 (계묘) 2번째기사</p>	<p>하였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성현(成俔) 등이 와서 아뢰기를, “신 등이 일찍이 글로써 아뢰기를, ‘대마도(對馬島) 특송(特送) 종정신(宗貞信)·조국차(助國次) 등이 말하기를, 「도주(島主)가 말하기를, 『어량(魚梁)을 쟁탈(爭奪)한 일은 너희들이 가지고 가는 서계(書契)에 자세히 써두었다. 대국(大國)에서 혹 믿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마땅히 분명하게 통달(通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돌아옴에 못미처서 마땅히 급히 사람을 보낼 것이다』 하였는데, 지금까지도 오지 않으니, 도주(島主)의 병이 아직 낫지 않은 듯합니다. 우리들이 돌아갈 때 만약 암련(諳練)한 조관(朝官)을 보내신다면 포소(浦所)에 도착하는 바로 그날로 어량(魚梁)을 다투었던 사람 및 마땅히 쇄환(刷還)해야 할 자들을 마땅히 가려뽑아 부관인(副官人)에게 부쳐 보내 도주(島主)의 가부(可否)를 취(取)한 뒤에 마땅히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조국차(助國次)가 또 말하기를, 「종정신(宗貞信)은 바로 도주의 지친(至親)이며, 또 신임하는 사람이니, 다른 특송(特送)과는 비할 바가 아닙니다. 대국(大國)은 진실로 마땅히 후대(厚待)하소서. 경차관(敬差官)의 행차는 제가 진심으로 호위하여 갔고, 또 섬에서 머무를 때에도 아침저녁으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 다. 그리고 돌아오는 배가 거의 위태로울 뻔하였으나, 또한 힘을 다해 구원하였 습니다. 제가 지금 비록 연로(年老)하나, 직위(職位)를 더하고 품대(品帶)를 개정하며, 저의 호군직(護軍職)은 아들로써 대신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였 습니다.’ 하였는데, 성상(聖上)께서 ‘그렇다’ 하시고, 그 청(請)을 따라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신(臣) 등이 다시 생각해 보건대 저 무리들이 도주(島主)의 말을 직접 들었는지도 알 수 없으며, 가령 저들이 말한 것과 같이 한다면 부사(副使)가 갔다가 돌아오는 데 거의 몇 달이 걸릴 것이니, 저들은 반드시 이 일에 의탁(依托)해서 오래 머물고자 하는 심산(心算)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유시(諭示)하기를, ‘너희는 포소(浦所)로 돌아가되, 본도(本島)의</p>	<p>○禮曹判書成俔等來啓曰：“臣等嘗書啓，對馬島特送宗貞信、助國次等言：‘島主曰：『魚梁爭奪之事，爾之賫去書契詳盡。大國或不以爲信，爾當分明道達，及爾未還，當急遣人。』至今不來，島主之病，迨未痊也。我等之還，若送諳練朝官，到浦卽日，爭魚梁人，及所當刷還者，當抄付副官人，取島主可否後當還。’ 助國次又言：‘宗貞信乃島主至親，且信任者，非他特送之比，大國固當厚待。敬差官之行，我盡心護去，又於留島時，朝夕不離，及還船幾危，亦盡力救援。我今雖年老，願加職改帶，以子代我護軍職。’ 上以爲然，命從其請。 臣等更思，彼輩親聽島主之言，未可知也，假使彼如所言爲之，副使往還本島，幾至數月，彼必托此事，爲久留之計也。今當諭之曰：‘汝還浦所，本島之使，若未到，汝當速還，告于島主，劃卽回報。’” 傳曰：“予意，令朝士從彼而去，彼若遲留，不卽推刷，則當諭之曰：‘在國啓之如彼，今何若此?’ 云云，彼必不久留。” 俔等對曰：“副使往還，必</p>
--	---	---

	<p>사자(使者)가 만약 도착하지 않았으면, 너희가 마땅히 속히 돌아가서 도주(島主)에게 고(告)하고, 즉시 회보(回報)하도록 하라.’고 하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p> <p>“내 생각으로는 조사(朝士)로 하여금 저들을 따라가게 하되, 저들이 만약 지류(犀留)하고 즉시 추쇄(推刷)하지 않으면, 마땅히 효유(曉諭)하기를, ‘나라에 있어서는 저와 같이 아뢰더니, 지금은 어찌 이와 같으냐?’라고 하면, 저들이 반드시 오래 머물지 못할 것이다.”</p> <p>하였다. 성현(成俔) 등이 대답하기를,</p> <p>“부사(副使)가 갔다가 돌아오려면 반드시 열흘은 걸릴 것인데, 도주(島主)가 또 즉시 회보(回報)하지 않으면 그 사이 포소(浦所)에 머무르며 소비하는 것이 반드시 많을 것이므로 아뢰었던 것일 뿐입니다.”</p> <p>하니, 전교(傳敎)하기를,</p> <p>“조관(朝官)을 가려보내어 그 형세를 관망(觀望)하도록 하라. 조국차(助國次)는 첨지중추(僉知中樞)로 제배(除拜)할 만하다. 그리고 그 아들 오도음보(吾都音甫)는 승급(陞級)하여 사맹(司猛)을 제수하라.”</p> <p>하였다.</p>	<p>經旬日，而島主又不即回報，則其間留浦，所費必多，故啓之耳。” 傳曰：“擇遣朝官，使觀其勢，助國次可拜僉知中樞，其子吾都音甫陞授司猛。”</p>
<p>성종 294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弘治) 7년) 9월 22일 (정미) 1번째기사</p>	<p>어서(御書)로 가감(加減)한 13방(十三方)을 승정원(承政院)에 내리고, 이어 전교(傳敎)하기를,</p> <p>“인군(人君)의 필적(筆跡)은 널리 퍼는 것이 마땅하지 못하다. 그러나 내가 보니, 모든 약종(藥種)을 증세(證勢)에 따라 가감(加減)함이 자세하게 다 갖추어져 구급(救急)하는 데 간절하다. 그것을 파평 부원군(坡平府院君)·세 정승(政丞)·여섯 승지·주서(注書)·사관(史官)에게 내려 주라.”</p> <p>하였다.</p>	<p>○丁未/下御書《加減十三方》于政院，仍傳曰：“人君筆跡，不宜廣布，然予觀凡諸藥種，隨證加減，詳悉備具，切於救急，其賜坡平府院君、三政丞、六承旨、注書、史官。”</p>
<p>성종 294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弘治) 7년) 9월 28일</p>	<p>호조 판서(戶曹判書) 홍귀달(洪貴達)이 와서 아뢰기를,</p> <p>“신이 영릉(英陵) 향사(香使)28047) 로 길에서 기내(畿內)의 실농(失農)을 보니, 지난해보다 심하였습니다. 이 앞에는 흉년을 만나면 반드시 경창(京倉)을</p>	<p>○癸丑/戶曹判書洪貴達來啓曰：“臣以英陵香使，道見畿內失農，甚於去年。前此值凶歉，必發京倉以賑，今京倉所</p>

<p>(계축) 1번째기사</p>	<p>풀어서 진휼(賑恤)하였는데, 지금 경창(京倉)에 저장된 것이 또한 넉넉하지 않으니, 청컨대 금년의 전세(田稅)는 경창(京倉)을 납부하지 말고 구황(救荒)하는 밑천으로 보충하게 하고, 또 내년의 종자(種子)를 준비하소서. 그리고 사복시(司僕寺)·전생서(典牲署)·사축서(司畜署)에 응납(應納)하는 곡초(穀草)도 또한 헤아려 마땅히 감할 것이며, 잡초(雜草)로써 대신하게 하소서. 또 지금 면포(綿布) 1필(匹)의 값이 쌀 2말이라고 하는데, 만약 내년 봄이 되면 더욱 심할 것입니다. 내년 봄은 취사(取土)를 당하여 원방(遠方)의 유생(儒生)이 서울에 와서 모일 것이니, 무엇으로 식량을 갖추겠습니까? 신이 또 경기(京畿)의 역로(驛路)를 보건대 모두가 잔폐(殘敝)하였으며, 좌찬(佐贊)·분행(分行)의 두 역(驛)이 더욱 심하여 이졸(吏卒)이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해마다 도망하여 흩어지니, 청컨대 소복(蘇復)시킬 계책을 마련하게 하소서.”</p> <p>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수세(收稅)와 풀[草]을 감하는 일은 마땅히 경이 아된 것과 같이 할 것이나, 역로(驛路)가 조잔(凋殘)함은 오로지 찰방(察訪)에게서 말미암은 것이니, 소복(蘇復)하는 계책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라. 취사(取土)는 정지할 수 없으나, 마땅히 수의(收議)하여 처리하겠다.”</p> <p>하였다.</p>	<p>儲亦不敷，請今年田稅勿納京倉，以補救荒之資，且備來歲之種。 司僕寺、典牲署、司畜署，應納穀草，亦量宜減之，代以雜草。 且今綿布一匹直米二斗，若及明春尤甚，明春當取土，遠方儒生，來會京師，何以備食？ 臣又見京畿驛路，率皆殘敝，佐贊、分行兩驛尤甚，吏不堪苦，年年逃散，請預爲蘇復之策。” 傳曰：“收稅減草事，當如卿啓，驛路凋殘，專由察訪蘇復之策，令該曹議之。”</p>
<p>성종 294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弘治) 7년) 9월 28일 (계축) 3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홍귀달(洪貴達)이 아뢰었던 실농(失農)한 여러 고을에서 납부(納付)하는 마초(馬草)를 만약 조금 풍년(豐年)든 고을로 옮긴다면, 그 폐단(弊端)이 또한 심(甚)할 것입니다. 신(臣) 등이 생각하기에는 동서(東西)의 적전(籍田)의 곡초(穀草)가 매우 많으니, 청컨대 이것으로써 대용(代用)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혜택(惠澤)을 받게 하소서.”</p> <p>하니, 전교(傳敎)하기를, “해사(該司)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p>	<p>○政院啓曰：“洪貴達所啓失農諸邑所納馬草，若移稍稔之邑，其弊亦甚。 臣等意，東、西籍田，穀草甚多，請以此代用，使民受惠。” 傳曰：“令該司議啓。”</p>

<p>성종 294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9월 29일 (갑인) 2번째기사</p>	<p>하였다.</p> <p>사시(巳時) 초에 왕세자(王世子)가 관복(冠服)을 갖추고 인정전(仁政殿)에 이르러 동계(東階)로부터 올라서 남쪽에 가까이 서향(西向)하여 서니, 시연(侍宴)하는 종척(宗戚)과 재신(宰臣) 및 군노(群老)가 사배(四拜)를 하고 마치니, 왕세자(王世子)가 자리에 앉았으며, 종재(宗宰)와 군로(群老)가 차례로 자리에서 나갔다. 술이 다섯 번 도니, 관중추(判中樞) 손순효(孫舜孝)가 자리에서 나와 꿇어앉아 서연관(書筵官)을 보려고 하므로, 세자(世子)가 필선(弼善) 김수동(金壽童)으로 하여금 가서 듣게 하였다. 손순효(孫舜孝)가 이르기를, “손순효(孫舜孝)는 세 번 빈객(賓客)이 되었고, 또 이사(貳師)를 지내다가 요사이 노병(老病)으로 물러났는데, 이제 참연(參宴)함을 얻었습니다. 옛사람이 나그네[旅]에게 말하듯이, 노부(老夫)도 한 말씀을 올리려 합니다. 성탕(成湯)은 성스럽고 공경함을 날로 높이셨으며, 문왕(文王)은 끊임없이 공경하였습니다. 원컨대 세자(世子)께서는 이 말을 잊지 마소서.” 하니, 세자(世子)가 대답하기를, “삼가 알겠습니다.” 하였다. 술이 일곱 번 도니, 손순효(孫舜孝)가 또 자리에서 나와 꿇어앉아 서연관(書筵官)을 보려고 하니, 세자(世子)가 보덕(輔德) 이거(李据)로 하여금 가서 듣게 하였다. 손순효(孫舜孝)가 이르기를, “먼저 이미 말하였습니다마는, 또 한 말씀이 있습니다. 《대학(大學)》의 《탕지반명(湯之盤銘)》에 이르기를, ‘날마다 새롭고 또 날로 새롭다.’라고 하고, 성탕(成湯)은 화리(貨利)를 증식(增殖)하지 않고, 성색(聲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바로 날로 새롭게 하는 실지입니다.” 하니, 세자(世子)가 이르기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하였다. 손순효(孫舜孝)가 이르기를,</p>	<p>○巳初, 王世子具冠服, 至仁政殿前, 陞自東階, 近南西向立, 侍宴宗宰及群老四拜訖, 王世子就座, 宗宰、群老以次就位, 酒五行, 判中樞孫舜孝出座而跪, 欲見書筵官, 世子令弼善金壽童往聽之. 舜孝曰: “舜孝三爲賓客, 又經貳師, 頃以老病退, 今獲參宴, 古人於旅也語, 老夫欲進一言, 成湯聖敬日躋, 文王緝熙敬止, 願世子毋忘此言.” 世子答曰: “謹知之矣.” 酒七行, 舜孝又出座而跪, 欲見書筵官, 世子令輔德李据往聽, 舜孝曰: “前既言矣, 又有一言, 《大學》湯之盤銘曰: ‘日日新, 又日新.’ 成湯不殖貨利, 不邇聲色, 此乃日新之實.” 世子曰: “詳聞之矣.” 舜孝曰: “此非但世子知之, 亦可上達.” 世子答曰: “當上達矣.” 宴罷, 上召孫舜孝, 傳曰: “卿昔嘗進戒於予, 今又進戒世子, 予甚嘉之.” 特賜大紅匹段帖裏. 舜孝以手却之曰: “如有進言之者, 可能盡賜之耶? 臣不敢受.” 乃援筆大書曰: “成湯聖敬日躋, 文王緝熙敬止, 惟日孜孜, 配天無疆. 昔僧瑞巖, 每夜獨坐,</p>
--	---	--

	<p>“이것은 다만 세자(世子)만이 아실 것이 아니고, 또한 상달(上達)할 만합니다.”</p> <p>하니, 세자(世子)가 대답하기를,</p> <p>“마땅히 상달하겠습니다.”</p> <p>하였다. 연회(宴會)가 파하자, 임금(王)이 손순효(孫舜孝)를 불러 전교(傳敎)하기를,</p> <p>“경은 예전에도 일찍이 나에게 경계하라는 말을 올리더니, 이제 또 세자(世子)에게 경계하는 말을 올리었으므로, 내가 매우 가상(嘉尙)하게 여긴다.”</p> <p>하고, 특별히 대홍 필단 칠릭(大紅匹段帖裏)을 하사하니, 손순효(孫舜孝)가 손으로 물리치며, 아뢰기를,</p> <p>“만일 진언(進言)하는 이가 있으면 다 하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신은 감히 받지 못하겠습니다.”</p> <p>하고, 바로 붓을 잡고 크게 쓰기를,</p> <p>“성탕(成湯)은 성스럽고 공경함을 날로 높이고, 문왕(文王)은 끊임없이 공경하였습니다. 옛적에 중[僧] 서암(瑞巖)이 밤마다 홀로 앉아서 스스로 서로 문답하기를,</p> <p>‘성성(惺惺)28048) 한가?’라고 하고, ‘성성(惺惺)하다.’고 하였으니, 계사(啓事)하게 하고자 합니다.”</p> <p>하였다. 도승지(都承旨) 김응기(金應箕) 등이 이르기를,</p> <p>“지금 썼던 뜻은 벌써 아뢰었으니, 취중(醉中)의 난서(亂書)는 마땅히 올리지 못하며, 또 취한 때에 한 일이 어찌 후회(後悔)함이 없지 않겠습니까? 내사(內賜)의 물건은 의리에 사양할 수 없으니, 비록 사양하더라도 성상께서 반드시 청납(聽納)하지 않으실 것입니다.”</p> <p>하니, 손순효(孫舜孝)가 이르기를,</p> <p>“그대들은 법규(法規)만 지키고 있구려.”</p>	<p>自相問答曰：‘惺惺否?’ 曰：‘惺惺。’ 欲令啓之。” 都承旨金應箕等曰：“今所書之意已啓，醉中亂書，不宜進，且醉時所爲，無奈有後悔乎？內賜之物，義不可辭，雖欲辭之，上必不聽。” 舜孝曰：“君等規矩準繩也。” 乃退去。</p>
--	--	--

<p>성종 294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9월 30일 (을묘) 1번째기사</p>	<p>하고는 바로 물러갔다.</p> <p>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신종호(申從濩)가 구황 절목(救荒節目)을 써서 아뢰니, 전교(傳敎)하기를,</p> <p>“해조(該曹)에 내려 의논하여 아뢰라. 다만 이 전에 백성을 진휼(賑恤)함은 모두 다음해 봄에 있었으나, 올해는 흉년(凶年)이 심하여, 만약 내년 봄부터 하면 바로 늦지 않겠느냐?”</p> <p>하니, 신종호(申從濩)가 대답하기를,</p> <p>“추수(秋收)가 끝나지 않았으니, 모든 고을의 연분(年分)의 등계(等第)를 기다려서 마땅히 다시 아뢰겠습니다. 이 앞의 진휼(賑恤)은 1일마다 사람들에게 쌀 3홉을 주었는데, 어찌 하루에 3홉을 먹고 존명(存命)28049) 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사람마다 6홉을 주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p> <p>“이제 신종호(申從濩)의 말을 듣고 경기(京畿)의 기근(飢饉)이 매우 심함을 알았습니다. 지금 양절공(襄節公)28050) 의 비대석(碑臺石)28051) 을 운수(運輸)할 때에 역부(役夫) 1천 인은 당령 수군(當領水軍)이며 양식을 가지고 멀리서 왔습니다. 더구나 감독관(監督官) 한치례(韓致禮)·강양군(江陽君) 이숙(李瀾)·한중(韓宗)·한충순(韓忠順)·한위(韓偉)와 상지관(相地官)28052) 이 역마(驛馬)를 탐이 매우 많고, 또 공궤(供饋)하는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한이 급한 일이 아니니, 청컨대 우선 정지하소서.”</p> <p>하니, 전교(傳敎)하기를,</p> <p>“대비(大妃)의 효성(孝誠)이 돈독하고 지극하여 비(碑)를 세우려 하시니, 장차 취품(取稟)하여서 처리하겠다.”</p> <p>하였다. 얼마 있다가 전교(傳敎)하기를,</p> <p>“우선 비(碑) 세우는 것을 정지하라. 올해는 기진(畿甸)이 실농(失農)하여 사람들이 많이 굶주리니, 사복시(司僕寺)의 엽수(獵獸)도 을묘년28053) 의 양맥</p>	<p>○乙卯/京畿觀察使申從濩書救荒節目以啓。傳曰：“下該曹議啓。但前此賑民，皆在翼年春，然今年凶甚，若自明春，則無乃緩耶？”從濩對曰：“秋收未畢，待諸邑年分等第，當更啓。前此賑恤，每一日給米人三合，安有日食三合而存命乎？請人給六合。”從之。政院啓曰：“今聞從濩言知京畿飢饉太甚，今襄節公碑臺石輸轉時，役夫千人，皆當領水軍，贏糧遠赴，況監督官韓致禮、江陽君瀾、韓宗、韓忠順、韓偉，與相地官，乘驛馬甚多，且供饋之費不貲，此非急期之務，請姑停之。”傳曰：“大妃孝誠篤至，欲立碑，將取稟處之。”既而傳曰：“姑停立碑，今年(幾) [畿] 甸失農，人多飢饉，司僕寺獵獸，限乙卯年兩麥成熟，停之。”</p>
--	--	---

	(兩麥)이 성숙(成熟)할 때까지 정지하라.” 하였다.	
성종 295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10월 10 일(을축) 2번째기사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주연(酒宴)을 베풀어 야인(野人) 김주성가(金主成可) 등을 먹이고, 물건을 차등 있게 내려 주었다.	○上御宣政殿，置酒饋野人金主成可等，賜物有差。
성종 295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10월 11 일(병인) 5번째기사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 남세담(南世聘)이 와서 아뢰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인사(人事)가 아래에서 감(感)하면, 천변(天變)이 위에서 응(應)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크게 천둥하고 번개 치면서 비가 내렸는데, 순음(純陰)의 달에 이러한 변(變)이 있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니, 감(感)함이 있지 않고서야 어찌 그러하겠습니까? 금년에는 재변(災變)이 여러 번 나타나서 한재(旱災)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신 등이 전일(前日)에 제처(諸處)의 영선(營繕)을 제거하기를 청하였으며, 또 주금(酒禁)하기를 청하였는데도, 성상께서는 금주(禁酒)는 소민(小民)의 해(害)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단지 그 회음(會飲)만을 금하셨습니다. 그러니 법(法)으로 비록 엄금한다 하여도 숭음(崇飲)하는 것은 예전과 같습니다. 그리고 제처(諸處)의 영선(營繕)을 비록 이미 정침(停寢)시켰더라도, 압도(鴨島)의 갈대를 베는 일[刈藪]과 허중(許琮)의 조묘(造墓)는 이제까지 마치지 못하였으며, 제천정(濟川亭)은 비록 승도(僧徒)를 역사시킨다 하더라도 이 또한 하늘이 낸 백성입니다. 듣건대 홍문관(弘文館)에서 삼족계(三足雞)와 자수궁(慈壽宮)의 불사(佛事)로써 차자(筍子)를 올렸는데도 전하께서는 여러 번 명변(明辨)하시고 가납(嘉納)을 불허(不許)하셨다고 합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임금이 부인(婦人)의 말을 쓰면 계요(雞妖)가 있다.’고 함은 지금 이때를 이름이 아니라, 반드시 이 일이 있음으로 전하로 하여금 더욱 수성(修省)을 더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수궁(慈壽宮)의 불사(佛事)는 전하께서 진실로 추핵(推覈)하심이 마땅한데 도리어 말한 자를 그르다고 하셨으니, 신은 언로(言路)가 이로부터 막혀질까 합니다. 전번에 벌써 재	○司諫院獻納南世聘來啓曰：“古人云人事感於下，則天變應於上。今日大雷電以雨，純陰之月，不宜有是變，無乃有所感而然耶？今年災變屢見，有旱災，有風災，有蟲災，亦有雨雹之災，故臣等前日請除諸處營繕，又請酒禁，而上以爲禁酒爲小民之害，只禁其會飲，其法雖嚴，崇飲則猶古也。諸處營繕，雖已命停，鴨島刈藪，許琮造墓，迄今未畢，濟川亭雖役僧徒，亦是天民，聞弘文館以三足雞及慈壽宮佛事上筍，而殿下至再明辨，不許嘉納。古云：‘人君用婦人言則有雞妖’，非謂今時？必有此事，欲令殿下，益加修省，慈壽宮佛事，殿下固宜推覈，反以言者爲非。臣恐言路，自此塞矣。前既有災異而不謹，故疑亦有今日雷電之變也。”傳曰：“爾言是。今日之天譴，予豈不懼？當敬謹修省，但爾云。前有災變而不慎，故亦致此異，如此之

	<p>이(災異)가 있었는데도 삼가지 않은 까닭으로 또한 오늘날 뇌전(雷電)의 변이(變異)가 있음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그대의 말이 옳다. 오늘의 천견(天譴)28100) 을 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마땅히 경근(敬謹)하고 수성(修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이르기를, ‘전번에 재변(災變)이 있었는데도 삼가지 않은 까닭으로 또한 이 변이(變異)를 이루었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이와 같은 말은 어느 글에서 나왔는가? 술을 금지함은 해(害)가 백성에게 미치기 때문에 세울 수 없는 것이다. 갈대 풀은 양의(量宜)28101) 하여 베고 나머지는 사는 자[買者]의 말을 들어 스스로 베게 할 것이며, 허종(許琮)은 지위가 삼공(三公)에 있고 또 훈로가 있었으니, 조묘군(造墓軍)28102) 을 파(罷)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제천정(濟川亭)은 방금 의논하여 정역(停役)하였다. 삼족계(三足雞)의 변이(變異)는 이것이 요물(妖物)이니, 내 어찌 경계하고 삼가지 않겠는가? 자수궁(慈壽宮)은 선왕(先王)의 후궁(後宮)이니, 비록 지나친 거동이 있더라도 어찌 치죄(治罪)할 수 있겠는가? 길을 닦은 일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은 까닭으로, 내가 추문(推問)하려고 한다.”</p> <p>하였다. 남세담(南世聃)이 말하기를,</p> <p>“동자(董子)28103) 가 이르기를, ‘천심(天心)은 인애(仁愛)하는 인군(人君)에게 먼저 재이(災異)를 내어서 경고(警告)하는데도 오히려 깨닫지 못하고서 상패(傷敗)함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은(殷)나라> 중종(中宗) 때에 상곡(桑穀)이 조정에 함께 났는데, 하루아침에 합궁(合拱)28104) 이 되어, 태무(太戊)가 수성(修省)하고서야 곧 말라 죽었습니다.28105) 인군(人君)이 하늘에 실지로 응(應)하였는데도 이번의 재변(災變)이 이와 같았음은 아마도 전하(殿下)의 수성(修省)하시는 정성에 지극하지 못함이 있으신가 합니다. 주금(酒禁)이 비록 ‘백성에게 해롭다.’고는 이르더라도 그러나 금지하였던 것을 파(罷)한 까닭</p>	<p>言，出於何書？酒禁，害及於民，不可立也。亂草，量宜刈取，餘聽買者自刈。許琮位在三公，且有勳勞，造墓軍不可罷也。濟川亭方議停役。三足雞異，是妖物，予何不戒慎乎？慈壽宮，先王後宮，縱有過舉，何可治罪？治道之事，不出於予，故予欲推問。”</p> <p>世聃曰：“董子云：‘天心仁愛人君，先出災異以警告之，猶不覺悟而傷敗’，乃至中宗時，桑穀生於朝，一朝而合拱，太戊修省而乃枯，人君應天以實，而今之災變如此，恐殿下修省之誠，有未至也。酒禁雖曰小民之害，然以罷禁之故，至有動樂群飲者，今日天變，三公六卿固當警懼，詣闕待罪之不暇，而於訓練都試安然會坐，作樂飲酒，失大臣體。酒樂雖曰君賜，遇此天變，不宜若是愒也。許琮造墓，事功垂卑，亦宜速放軍也。”不聽。</p>
--	--	--

	<p>으로 풍악을 잡히고 군음(群飲)하는 자가 있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의 천변(天變)은 삼공(三公)과 육경(六卿)도 진실로 마땅히 경구(警懼)하여 대궐에 나아가 대죄(待罪)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하는데, 훈련원(訓練院) 도시(都試)28106) 에서는 안연(安然)히 모여 앉아서 풍악을 잡히고 술을 마셨으니, 대신(大臣)의 체통을 잃었습니다. 주악(酒樂)은 비록 임금이 내려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 천변(天變)을 만나 이와 같이 개연(愀然)함은 마땅하지 못하며, 허중(許琮)의 조묘(造墓)도 일이 거의 끝나 가니 또한 속히 방군(放軍)하심이 마땅할 것입니다.”</p> <p>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p>	
<p>성종 295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10월 12 일(정묘) 2번째기사</p>	<p>사간원 사간(司諫院司諫) 홍형(洪炯) 등이 차자(筓子)를 올리기를, “신 등이 재앙(災殃)을 만나 수성(修省)하는 뜻을 가지고 위로 천청(天聽)을 번독(煩瀆)하였으나 모두 윤택(允許)하지 않으시니, 신 등은 결망(缺望)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신 등은 들으니 하늘에 응하는 것은 성실로써 하며 형식으로써 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전하께서 실봉(實封)을 구(求)하고 도류(徒流)를 의논함은 모두 하늘에 응하는 걸치레입니다. 간쟁(諫諍)을 받아들이고 수덕(修德)에 힘써 한 가지 일을 하면 천시(天時)를 어길까 두려워하고, 한 역사를 일으키면 우리 백성을 상(傷)할까 염려해서 급하지 않은 일을 버리고 명목 없는 비용을 줄여야 할 것이니, 이것이 모두 하늘에 응하는 성실입니다. 제군(諸君)과 옹주(翁主)의 집은 참람함을 의방하여 법도가 없고, 돌을 파내고 나무를 베어 원독(怨讟)28129) 이 하늘에 넘치니, 대간(臺諫)과 시종(侍從)이 소장(疏章)을 연달아 올리고 독서(牘書)28130) 를 여러 번 올렸는데, 동역(董役)은 옛과 같고 어렵고 굶주리는 백성의 근심하고 탄식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으니, 이것이 천변(天變)을 불러들인 까닭입니다. 술은 마땅히 금(禁)하여야 하는데 금하지 않았고, 제천정(濟川亭)은 마땅히 고쳐 짓지 않아야 하는데 고쳐 지었습니다. 자수궁(慈壽宮)의 반불(飯佛)하는 비용과 수군(水軍)의 토목</p>	<p>○司諫院司諫洪炯等上筓子曰： 臣等將遇災修省之意，上瀆天聽，而皆不允許，臣等不勝缺望。 臣等聞應天，以實不以文，殿下求實封，議徒流，此皆應天之虛文。 納諫諍務修德，作一事則恐天時之違， 興一役則慮吾民之傷，捐不急之務，省無名之費，此皆應天之實也。 諸君翁主之家，僭擬無度，發石伐木，怨讟浮天，臺諫·侍從，連章累牘，而董役猶舊，阻飢之民，愁嘆無絕，此所以致天變也。 酒當禁，而不禁濟，訓亭不宜改作而改作，至於慈壽宮飯佛之費，水軍土木之勞，雖在康年，尚不可爲，況凶年乎？ 此亦所以致天變也。 君臣，當同寅協恭，側身修行，以答天譴之時也，政府大臣，乃於</p>

(土木)의 노역(勞役)에 이르러서는 비록 풍년이라도 오히려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흉년(凶年)이겠습니까? 이것도 또한 천변(天變)을 불러들인 까닭입니다. 군신(君臣)이 마땅히 한 가지로 인외(寅畏)28131) 하고 협공(協恭)28132) 하여, 수행(修行)함에 몸을 기울여서 천견(天譴)에 보답하여야 할 때인데, 정부 대신(政府大臣)은 바로 도시(都試)에 감히 육경(六卿)을 거느리고서 음주(飲酒)하고 작악(作樂)하여 조금도 경계할 줄을 알지 못했으니, 바로 이른바, ‘천변(天變)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28133) 는 것입니다. 이로써 보건대 천변의 일어남은 반드시 이 사람들에게서 말미암지 않음이 없으니, 옳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섭리(燮理)의 무상(無狀)한 자를 물리쳐 버리시고, 망령되게 재력(財力)을 허비하는 것을 아깝게 여기소서. 또한 마땅히 아침저녁으로 경계하고 두렵게 여기시어 통렬히 스스로 억제하고 두려워하기를, 〈은(殷)의〉 성탕(成湯)이 스스로를 꾸짖고, 중종(中宗)이 덕업(德業)을 닦으며, 주(周)의 선왕(宣王)이 〈수행(修行)함에〉 몸을 기울이고, 송(宋)의 경공(景公)이 자기를 죄(罪)하듯 하시되, 모두 실지로써 하시고 형식으로써 하지 않으시면, 천심(天心)을 돌이킬 수 있으며 재변(災變)을 멈추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나를 가지고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하니, 들어 주지 않았다고 이르는 것은 어떤 일인가? 자수궁(慈壽宮)의 불사(佛事)는 바로 선왕(先王)의 후궁(後宮)이 한 바이니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며, 또 꾸짖어서 다스릴 수 없는 것이다. 도시(都試)에 주악(酒樂)을 내려 줌은 예(例)인데, 그대들이 ‘두려워할 것이 없다[不足畏].’는 것이라고 이르는 것은 바로 왕안석(王安石)28134) 의 말이니,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하였다. 헌납(獻納) 남세담(南世聃)이 아뢰기를,

“제군(諸君)과 옹주(翁主)의 집은 제도(制度)가 지나치고 법도가 없습니다. 이

都試，敢率六卿，飲酒作樂，略不知戒，正所謂天變不足畏者也。由是觀之，天變之作，未必不由此人也。伏願殿下燮理無狀者去之，妄費財力者惜之，亦當夙夜兢惕，痛自抑畏，如成湯之自責，中宗之修德，周宣之側身，宋景之罪已，皆以實不以文，則天心可回，而災變可弭矣。”傳曰：“以予爲不聽言，所謂不聽者，何事歟？慈壽宮佛事，乃先王後宮之所爲，予所不知，又不可責而治之也。都試例賜酒樂，爾等所云不足畏者，乃安石之言，無乃太過乎？”獻納南世聃曰：“諸君翁主之家，過制無度。前此駙馬尹巖、姜子順之家，不如此。今以一家所入之材，比巖等家，奚啻二三？材木已盡，遠伐黃海，下民愁苦。今之災變，未必不由此也。慈壽宮佛事，上以爲：‘予所不知’，都中有是事，而殿下不知，可乎？臣不知所需出於何處，無乃出於內需司且歟？爲大臣當國家間暇之時，不能明其政刑，今遭天變，又不能待罪，安然作樂飲酒，是豈大臣之道乎？古有策免三公，請治罪。”傳曰：“諸君、駙馬之家，已定聞架，其材木，亦貿而

	<p>앞서 부마(駙馬) 윤암(尹巖)·강자순(姜子順)의 집은 이와 같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집에 소요된 재목을 윤암(尹巖) 등의 집에 비하면 어찌 2, 3배일 뿐이겠습니까? 재목(材木)이 이미 다하여 멀리 황해도(黃海道)에 가서 벌채하고, 하민(下民)이 근심하고 괴로워하니, 지금의 재변(災變)은 반드시 이에서 말미암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자수궁(慈壽宮)의 불사(佛事)를 성상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라 하시나, 도중(都中)28135) 에서 이 일이 있었는데 전하께서 알지 못하심이 옳겠습니까? 신은 수용(需用)한 것이 어느 곳에서 나왔는지를 알지 못합니다마는, 바로 내수사(內需司)28136) 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대신(大臣)이 되어서 국가의 한가(閒暇)한 때를 당하여 능히 그 정형(政刑)을 명백히 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천변(天變)을 만나고서도 또 능히 대죄(待罪)하지 않고 안연(安然)히 작악(作樂)하며 음주(飲酒)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대신(大臣)의 도리이겠습니까? 예전에도 삼공(三公)을 책면(策免)28137) 한 적이 있었으니, 청컨대 치죄(治罪)하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p> <p>“제군(諸君)과 부마(駙馬)의 집은 이미 간가(間架)를 정하였고, 그 재목(材木)도 또한 무역(貿易)해서 썼으며 백성으로 하여금 벌채시킨 것이 아니다. 자수궁(慈壽宮)의 불사(佛事)는 필시 사사로이 준비하였으며, 내수사(內需司)에서 나온 것이 아닐 것이다. 만약 내수사에서 나왔다면 내가 어찌 알지 못하였겠는가? 도시일(都試日)에 주악(酒樂)을 내려 줌은 예사(例事)이며, 미처 천변(天變)을 당하기 전에 이미 명하여 내려 주었으니, 대죄(待罪)하지 않았다 하여 여러 재상을 책망할 수는 없다. 지금의 재변(災變)은 모두가 나의 부덕(否德)함이 불러 일으킨 것이니, 또 누구를 허물하겠는가?”</p> <p>하였다.</p>	<p>用之，非使民伐之也。慈壽宮佛事，必是私備，非出於內需司也。若出於需司，則子何以不知？都試日賜酒樂，乃例事其未遭天變之前，已命賜之耳，不可以不待罪，責諸宰也。今之災變，皆予否德所召，又誰咎哉？”</p>
<p>성종 295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p>	<p>우의정(右議政) 윤호(尹壕)·병조 판서(兵曹判書) 성준(成俊)·형조 판서(刑曹判書) 성건(成健)·공조 판서(工曹判書) 유순(柳洵)·참판(參判) 한한(韓僞)·예조 참</p>	<p>○右議政尹壕、兵曹判書成俊刑曹判書成健、工曹判書柳洵、參判韓僞、</p>

<p>(弘治) 7년) 10월 12 일(정묘) 3번째기사</p>	<p>의(禮曹參議) 이숙감(李淑城)·병조 참의(兵曹參議) 박원종(朴元宗)이 와서 아뢰기를, “도시(都試)를 개장(開場)하면 주악(酒樂)을 내려 주는 것은 예사(例事)이고 신 등도 가서 참여하였습니다. 이제 사간원(司諫院)에서 신 등이 대죄(待罪)하여 하늘의 경계에 응답하지 않고서安然(安然)히 모이며 술을 마시었다고 탄핵(彈劾)하니, 대죄(待罪)하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윤호(尹壕)가 다시 아뢰기를, “신(臣)은 본시 용렬(庸劣)한데 지위가 삼공(三公)에 있으니, 마음이 진실로 편안하지 못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한(漢)나라가 재이(災異)를 가지고 삼공(三公)을 책면(策免)하였음을 어찌 본받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성건(成健)이 아뢰기를, “백성의 원억(冤抑)은 형옥(刑獄)으로 말미암음이 많습니다. 신이 형관(刑官)이 된 지 이제는 이미 주년(周年)28138)이 되었으니, 어찌 잘못된 일이 없겠습니까? 청컨대 사직(辭職)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체옥(滯獄)하는 일은 내가 감히 알지 못하나, 경(卿)은 그것을 빨리 명확하게 판결하여 원왕(冤枉)이 없도록 하라.” 하고, 사직하는 것은 윤허하지 않았다.</p>	<p>禮曹參議李淑城、兵曹參議朴元宗來啓曰：“都試開場，賜酒樂，乃例事，臣等往參，今司諫院，劾臣等不待罪以答天戒，而安然會飲，請待罪。”不許。壕更啓曰：“臣本庸劣，位在三公，心實未安。”傳曰：“漢以災異，策免三公，豈可法乎？”健曰：“民之冤抑，多由刑獄。臣爲刑官，今已周年，豈無誤事？請辭。”傳曰：“滯獄之事，予未敢知。卿其速明決，俾無冤枉。所辭，不允。”</p>
<p>성종 295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10월 13 일(무진) 1번째기사</p>	<p>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 남세담(南世聘)이 와서 아뢰기를, “삼공(三公)은 음양(陰陽)을 섭리(變理)하고 임금을 보좌하여 나아가 다스리니, 그 임무가 중대합니다. 전하께서 요즈음 뇌변(雷變)으로 인하여, 직언(直言)을 구(求)하시고 옥송(獄訟)을 의논하시어 그 공구(恐懼)하고 수성(修省)하심이 이르지 않는 곳이 없는데, 삼공(三公)은 음주(飲酒)하고 작악(作樂)하여</p>	<p>○戊辰/司諫院獻納南世聘來啓曰：“三公，變理陰陽，佐王出治，其任重矣。殿下，頃因雷變求言議獄，其恐懼修省，無所不至，而三公，飲酒作樂，略無警懼之心，請鞫之。不聽。世聘</p>

	<p>조금도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 청컨대 국문(鞫問)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남세담이 말하기를,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빛나고 번쩍이나 천둥과 번개는 불안하고 좋지 못한 징조로다.[燁燁震電 不寧不令]’ 하였고, 또 이르기를, ‘하늘의 노여움을 공경하여 감히 장난치며 놀지만 말라.[敬天之怒 無敢戲豫]’고 하였습니다. 이제 정부 대신(政府大臣)이 천계(天戒)에 혼미(昏迷)하여 술을 마시고 서로 희롱하였음은 이는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니, 국문(鞫問)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p>	<p>曰：“《詩》云：‘燁燁震電，不寧不令。’又云：‘敬天之怒，無敢戲豫。’今政府大臣，昏迷天戒，飲酒相謔。是不畏天，不可不鞫。”不聽。</p>
<p>성종 295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弘治) 7년) 10월 15일(경오) 2번째기사</p>	<p>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 남세담(南世聃)이 와서 아뢰기를, “10월의 천둥·번개[雷電]는 이것이 대변(大變)이니, 도하(都下)의 소민(小民)이 몹시 놀라고 분주(奔走)하지 않는 이가 없는데, 공경(公卿)의 대신(大臣)은 반락(盤樂)28141) 하기를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하여 조금도 경구(警懼)하는 마음이 없었으니, 청컨대 국문(鞫問)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남세담이 말하기를, “도시(都試)에 술을 내려 줌은 비록 예사(例事)라 하더라도 이제 뇌전(雷電)의 변(變)이 있으니, 공경(公卿)은 마땅히 섭리(變理)함이 무상(無狀)하였다고 와서 아뢰어야지 예사(例事)로 오락(娛樂)하면서 천계(天戒)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옛날 송(宋)의 인종(仁宗) 때에 바야흐로 새벽 조회[晨朝]에 들어가지 않고 대수(大水)의 재(災)가 있어 유지(有旨)로써 조회를 내치니, 군신(群臣)이 모두 물러갔는데, 홀로 왕증(王曾)만이 물러가지 않고 말하기를, ‘천변(天變)이 심히 괴이(怪異)하니, 어찌 물러가 사실(私室)에서 편안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는 그대로 청대(請對)하여 비재지도(備災之道)28142) 를 극진히 진달하니, 그 때에 먼저 물러간 자는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가 없었습니다. 재상(宰相)의 도리는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하는데, 근일(近日)에 있었던 공</p>	<p>○司諫院獻約南世聃來啓曰：“十月雷電，是大變。都下小民，莫不驚駭奔走，而公卿大臣，盤樂自如，略無警懼之心。請鞫之。”不聽。世聃曰：“都試賜酒，雖例事，今有雷電之變，公卿宜以變理無狀來啓，不可以例事而娛樂，以忽天戒也。昔宋仁宗時，方晨朝未入，有大水之災，有旨放朝，群臣皆退，獨王曾不退曰：‘天變甚異，豈可退安私室?’仍請對，極陳備災之道。其時先退者，莫不慙焉。宰相之道，當如是，近日公卿之事，有違於相遵。且以安石三不足之說，言之者，非謂當時宰相，盡如安石，其不畏天變則一也。”傳曰：“賜酒樂，乃是例事。及災異之見，予不及計料而止之，此予之</p>

	<p>경(公卿)의 일은 상도(相道)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또 왕안석(王安石)의 삼부족지설(三不足之說)로써 말한 것은 당시의 재상(宰相)이 모두 왕안석 같다는 것이 아니고 그 천변(天變)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주악(酒樂)을 내려 줌은 바로 이것은 예사(例事)이나, 재이(災異)가 나타나는데 미쳐서 내가 계료(計料)하여 중지시키는 데 미치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나의 잘못이다. 왕안석(王安石)을 믿고 쓴 이는 신종(神宗)이니, 내가 신종(神宗)의 책망[責]을 받아야 마땅하였는데 그대들은 다만 나만을 책망할 따름이다.”</p> <p>하였다. 남세담(南世聃)이 말하기를, “전하께서는 재이(災異)를 만나서 두려워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을 기다리지 않으시고서 직언(直言)을 구(求)하셨고 옥송(獄訟)을 의논하시어 이르지 않는 바가 없으셨으니, 그 하늘의 경계[天戒]를 삼감이 지극하셨는데, 공경(公卿)은 조금도 경구(警懼)함이 없었는데다 반락(盤樂)하기에 이르렀으니, 옳다고 하겠습니까? 왕안석(王安石)은 삼부족지설(三不足之說)로써 끝내 천하(天下)를 그르쳤습니다. 신 등은 지금의 공경(公卿)이 다 왕안석과 같다고 이름이 아닙니다. 이제 만약 징치(懲治)하지 않으면, 반락(盤樂)함이 게으르고 오만하여 점점 하늘을 경외(敬畏)하는 마음이 없어져서, 끝내 두려워함이 없는 데 이를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신종(神宗)을 자처(自處)하시니, 신(臣)은 황공(惶恐)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근일(近日)의 일은 모두 나의 잘못이니, 그대들은 다만 나만을 책망할 따름이다. 재상(宰相)은 국문(鞫問)할 수 없다.”</p> <p>하였다.</p>	<p>失也。信用安石者神宗也，予當受神宗之責。爾等但責予而已。”世聃曰：“殿下遇災而懼，不待人言，而求言議獄，無所不至，其謹天戒至矣。公卿略無警懼，以至盤樂，可乎？安石，以三不足之說，終誤天下，臣等非謂今之公卿，盡如安石，今若不懲，盤樂怠敖，漸無畏天之心，終於不足畏也。殿下以神宗自處，臣不勝惶恐。”傳曰：“近日之事，皆予之失也。爾等但當責予而已，宰相不可鞫也。”</p>
성종 295권, 25년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술자리를 베풀어 종정신(宗貞信) 등을 먹이	○上御宣政殿置酒饋宗貞信等。命禮

<p>(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10월 16 일(신미) 2번째기사</p>	<p>고, 예조 판서(禮曹判書) 성현(成俔)에게 명하여 종정신(宗貞信) 등에게 전교하기를, “너희 도주(島主)가 지성(至誠)으로 나를 섬기니, 진실로 기쁘게 생각한다.” 하니, 대답하기를, “이제 전교(傳敎)를 받으니, 감격(感激)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도주(島主)의 질병(疾病)은 이제 이미 3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신 등이 오는데 도주(島主)가 말하기를, ‘대국(大國)의 은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입어 신(臣)이 항상 마음을 다하여 섬기었으며, 신이 죽은 뒤에는 종정수(宗貞秀)가 도주(島主)의 직(職)을 계승할 것이니, 원하건대 전하께서 신과 같이 무휼(撫恤)하시면 또한 반드시 정례(情禮)를 다할 것입니다.’고 하였습니다.” 하매, 임금이 이르기를, “종정수(宗貞秀)가 만약 성심(誠心)으로 사대(事大)하기를 또한 그의 아버와 같이 한다면, 나의 무수(撫綏)함도 어찌 전후(前後)가 다르겠느냐?” 하니, 종정신(宗貞信)이 말하기를, “어량(魚梁)을 쟁탈(爭奪)한 사람을 치죄(治罪)하는 일과 삼포(三浦)28143)의 거민(居民)을 쇄환(刷還)하는 등의 일은 신 등이 포(浦)에 다달아서 부관인(副官人)을 보내어 도주(島主)에게 보고하게 하고 돌아왔으니, 마땅히 대국(大國)의 명(命)을 받들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사람의 옳은 자를 옳다고 여기고 그른 자를 그르다고 여기는 것은 모두 도주(島主)에게 있으니, 하인(下人)이 천단(擅斷)할 바가 아니다.” 하니, 종정신(宗貞信)이 말하기를, “조국차(助國次)가 말하기를, ‘삼포(三浦)에 사는 사람은 대국(大國)의 토전(土田)을 많이 점유(占有)하였으니 이는 심히 범람(泛濫)하다. 도주(島主)의 마음은 항상 이르기를, 「삼포(三浦)의 사람은 다만 움막[廬]만을 엮고서 조어(釣</p>	<p>曹判書成俱，傳于貞信等曰：“爾島主，至誠事我，良用嘉悅。”對曰：“今承傳敎，不勝感激。島主疾病，今已三年。臣等之來，島主曰：‘蒙大國恩萬萬，臣常盡心。臣死之後，貞秀繼職。願殿下撫恤如臣，則亦必盡情矣。’上曰：“貞秀，若誠心事大，亦如乃父，則予之撫綏，何異前後？”貞信曰：“漁梁爭奪人治罪，及三浦居民刷還等事，臣等抵浦，送副官人，報島主回，當奉大國之命。”上曰：“人之是者以爲是，非者以爲非，皆在島主，非下人所擅。”貞信曰：“豚國次言：‘三浦住人，多占大國土田’，此甚泛濫。島主之心，常謂三浦之人，但結廬釣魚而已，若聞此，必罪之請以此錄入書契，則當奉傳島主矣。”上曰：“島主久病，汝輩，豈不欲速往見之？且此事，皆在島主處分。”對曰：“然。”仍賜物有差。</p>
--	---	--

	<p>魚)28144) 할 따름이다。」고 하였으니, 만약 이것을 듣게 되면 반드시 죄줄 것이다.’고 하였으니, 청컨대 이로써 서계(書契)에 기록하시면 마땅히 받들어 도주(島主)에게 전할 것입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도주(島主)의 병(病)이 오래 되었으니, 너희들도 어찌 빨리 가서 보고 싶지 않겠느냐? 또 이 일은 모두 도주(島主)의 처분(處分)에 달려 있다.”</p> <p>하니, 대답하기를, “그러합니다.”</p> <p>하매, 인하여 물건을 차등 있게 내려 주었다.</p>	
<p>성종 295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10월 16 일(신미) 3번째기사</p>	<p>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윤민(尹愨) 등이 차자(筓子)를 올리기를, “신종(神宗)은 암약(闇弱)28145) 하고 결단성이 없어 소인(小人)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여 송실(宋室)의 화(禍)의 기본이 되는 인주(人主)가 되었으니 족히 취할 것이 없는데, 전하께서는 총명 강단(聰明剛斷)하시고 인성(仁聖)하신 인주로서 스스로 신종(神宗)에게 비유하시니, 신 등의 미혹(迷惑)함은 더욱 심합니다. 대간(臺諫)은 인주(人主)의 이목(耳目)입니다. 만약 말할 것이 있으면, 임금의 분노를 사고 옷자락을 당기며 오히려 감히 피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기타(其他)이겠습니까? 이제 정부(政府)와 육조(六曹)는 동뢰(冬雷)28146) 의 변(變)을 당하고서도 만홀히 경계할 줄을 모르고 거리낌없는 듯이 술을 마시고 풍악을 울리어, 천변(天變)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신 등이 여러 번 죄(罪)주기를 청하였으나 전하께서는 도리어 윗사람을 비방하기 좋아하고 감히 말하기를 좋아한다고 하시고서 억박지르고 언책(言責)을 맡긴 자는 모두 윗사람을 비방하고 과감히 말함으로써 혐의하셨은즉, 신은 의장(儀仗)에 참여한 말과 같이 말을 못한다는 기룡[仗馬之讖]과 울지 않는 매미라는 비방[寒蟬之謗]이 아울러 오늘날에 일어날까 저어하니, 앞드려 원하건대 용군(庸君)으로 자처(自處)하시어 지나치게 폄손(貶損)하지 마시고, 요(堯)·</p>	<p>○司諫院大司諫尹愨等上筓子曰： 神宗闇弱無斷，聽用小人，宋室基禍之主，不足取也。 殿下以聰明剛斷仁聖之主，而自比於神宗， 臣等之惑， 滋甚。 臺諫， 人主耳目。 若有言， 則批鱗牽裾， 尚不敢避， 況其他乎？ 今政府、六曹， 當冬雷之變， 慢不知戒， 肆然酣樂， 與天變不足畏者無異。 臣等累請罪， 而殿下反以爲好訕上好敢言， 以折之。 任言責者， 皆以訕上敢言， 爲嫌， 則臣恐仗馬之讖， 寒蟬之謗， 竝與於今日矣。 伏願殿下勿以庸君自處， 過爲貶損， 以堯、舜自期， 飭已正事， 以應天變。” 不聽。</p>

	<p>순(舜)으로 스스로 기약하시어 몸을 신칙하고 일을 바르게 하시어서 천변(天變)에 응(應)하소서.”</p> <p>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p>	
<p>성종 295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10월 17 일(임신) 2번째기사</p>	<p>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양인(良人) 장잉질동(張荊叱同) 등이 금령(禁令)을 어기고 해랑도(海浪島)에 들어가 수우포(水牛脯) 2천 70첩(帖), 가죽[皮] 1백 1장(張), 곡물[穀] 80석(碩)을 취(取)하여 실어온 죄는 율(律)이 수범(首犯)인 잉질동(荊叱同)에게는 교대시(絞待時)28149) 에 해당합니다.”</p> <p>하니, 정원(政院)에서 아뢰기를, “이 앞서 해랑도(海浪島)를 내왕(來往)한 자는, 다만 연변(緣邊)의 관새(關塞)를 넘어갔다고 하여 율(律)이 장(杖) 1백에, 도(徒) 3년으로 조율(照律)하였습니다. 이제 사죄(死罪)를 당(當)하여 범한 바는 같은데 조율(照律)함은 다릅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그것을 빈청(賓廳)에 모인 여러 재상에게 물어라.”</p> <p>하였다. 윤필상(尹弼商) 등이 아뢰기를, “바다 가운데의 창파(滄波)는 이 지경[疆]과 저 경계[界]가 됨을 그을 수 없는데, 무지(無知)한 소민(小民)이 무애(無涯)28150) 한 지경을 왕래함은 진실로 경외(境外)로 나가는 자의 비유가 아닙니다. 더구나 이러한 내왕자(來往者)는 이미 불사(不死)의 율(律)로써 안률(按律)하였으니, 지금의 논사(論死)는 아마도 과중(過重)한가 합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경외(境外)로 나간 죄(罪)는 진실로 용서할 수 없으나, 군의(群議)가 이와 같으니, 그를 감사(減死)28151) 하라.”</p> <p>하였다.</p>	<p>○義禁府啓：“良人張荊叱同等，違禁入海浪島，取水牛脯二千七帖、皮一百一張、穀八十碩輸來罪，律該爲首荊叱同絞待時。” 政院啓曰：“前此來往海浪島者，但照以越度緣邊關塞，律杖一百徒三年。今當以死罪，所犯同而照律異。” 傳曰：“其問于會賓廳諸宰。” 弼商等啓曰：“海中滄波，不可盡爲此疆彼界。無知小民，往來無涯之境，固非出境外者比也。況此來往者，已按以不死之律，今之論死，恐過重。” 傳曰：“出境之罪，固不可赦。然群議如是，其減死。”</p>
<p>성종 295권, 25년</p>	<p>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윤민(尹愨) 등이 상소(上疏)하기를,</p>	<p>○司諫院大司諫尹愨等上疏曰：</p>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10월 19
일(갑술) 3번째기사

“대개 듣건대 왕자(王者)는 아버지와 같이 하늘을 섬기고 어머니와 같이 땅을 섬기니, 정사가 합하여서 상서(祥瑞)가 이르고 도(道)를 잃어서 재앙[咎]이 옴은 자연(自然)의 응(應)함입니다. 그러나 난리[亂]가 이른다고 해서 능히 절상(絕祥)할 수 없고, 다스림이 성(盛)하다고 해서 재앙[咎]이 없을 수 없습니다. 편벽된 임금의 상서라 하여 스스로 태연하여서 화(禍)를 부르고, 어진 임금은 재앙이라 하여 덕을 닦아서 복[祉]을 입으니, 상서도 반드시 경사롭지 않고 재앙도 진실로 흉(凶)하지 않으니, 돌아보건대 소복(銷伏)의 여하(如何)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전하께서는 총명(聰明)하고 강의(剛毅)하시어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부지런하게 하심이 이르지 않는 바가 없는데, 근년 이래로 육기(六氣)가 불화(不和)하여 재앙이 거듭하여 자주 이르러서 봄에 흠비[土雨]가 내리고 여름에 심히 가물며, 가을에 큰 바람[大風]이 불고 우박(雨雹)이 내렸으며 또 명특(螟蝻)28155) 이 있어 이리저리 옮겨 다녀도 그대로 두고 보아 길들여 흉년[凶歉]을 초치하였으니, 하늘이 경계를 보임이 지극하였습니다. 또 계요(雞妖)가 민가(民家)에서 생기고 천둥과 번개가 겨울철[冬月]에 일어남이 있었으니, 신 등은 그 응(應)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은 듣건대 재앙은 망령되어 일지 않고 반드시 감소(感召)함이 있다고 합니다. 신 등이 엿드려 보건대 전하께서는 요즈음에 와서부터 종간(從諫)28156) 함을 중지하여 처음과 같지 않으시며, 형벌(刑罰)이 실중(失中)하고 용인(用人)함에 마땅함을 잃었습니다. 풍속이 부정(不正)하여 여알(女譎)28157) 이 장차 성하고 사송(詞訟)이 엄체(淹滯)하였으니, 신 등은 그옥이 천변(天變)이 일어남은 이에 말미암지 않음이 없다고 일렀습니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성탕(成湯)은 종간(從諫)함에 어기지 않았고 개과(改過)함에 인색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성인(聖人)이라 하더라도 과실[過]은 없을 수 없으나, 종간(從諫)함으로써 아름다움이 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즉위(卽位)하신 뒤로 엄공(嚴恭)하고 인외(寅畏)28158) 하시며 정

蓋聞王者， 父事天母事地， 政合而祥至， 道失而咎來， 自然之應也。 然至亂而不能絕祥， 盛治而不能無咎。 僻君以祥自教而速禍， 賢主以咎修德而蒙祉， 祥不必慶， 咎無固凶， 顧銷伏之如何耳。 殿下聰明剛毅， 敬天勤民， 無所不至。 而近年以來， 六氣不和， 災眚荐臻， 雨土於春， 旱暵於夏， 大風雨雹於秋， 而且有螟蝻。 轉轉相仍， 馴致凶歉， 天之示戒， 至矣。 又有雞妖生於民家， 雷電作於冬月。 臣等未知厥應何居。 臣聞， 災不妄作， 必有感召。 臣等伏觀， 殿下自邇以來， 從諫寢不如初。 刑罰失中， 用人失當， 風俗不正， 女譎將熾， 詞訟淹滯。 臣等竊謂天變之作， 靡不由是。 《書》云：‘成湯， 從諫弗拂， 改過不吝。’ 雖聖人不能無過， 以從諫爲美也。 殿下卽位之後， 嚴恭寅畏， 勵精圖治， 惟恐嘉言之或伏也。 今則聖德高明， 治化已洽， 自滿之志漸勝， 好善之心不篤， 臺諫、 侍從之言， 拒而不納。 曰有情， 曰措撫， 曰妄言， 曰訕上， 曰敢言， 百端折斥而窮之。 以難對之言， 又從而爲之辭， 此則從諫之實， 不如初也。

성을 다하여 정치에 힘쓰시어 오직 가언(嘉言)이 혹 숨겨질까 저어하시더니, 이제는 성덕(聖德)이 고명(高明)하고 치화(治化)가 이미 흠족하매, 자만(自滿)하는 뜻이 점점 이기고 호선(好善)하는 마음이 돈독하지 못하여, 대간(臺諫)과 시종(侍從)의 말을 거절하여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정실[情]이 있다.’ 하고, ‘주워 모았다.’ 하며, ‘망령된 말이다.’ 하고, ‘윗사람을 비방한다.’ 하며 ‘과감히 말한다.’ 하여, 백단(百端)으로 억박지르고 물리쳐서 대답하기 어려운 말로써 끝까지 힐문(詰問)하시고 또 따라서 사직하게 하시니, 이는 종간(從諫)하는 실상이 처음만 같지 못한 것입니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하늘이 죄 있는 자를 치는데 오형(五刑)28159) 으로 다섯 가지 형벌을 쓴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인군(人君)의 용렬한 것은 하늘이 치지 않음이 없으니, 어찌 감히 사사로움을 따라서 외람되겠습니까? 지난 여름의 대이(大伊)의 옥사[獄]는 그 주인을 모살(謀殺)함이니 일이 끝까지 치죄(治罪)함이 마땅합니다마는, 임광재(任光載)가 복첩(卜妾)한 것과 같은 것은 줄기를 구하고 뿌리를 찾아서 연체(連逮)28160) 하고 신국(訊鞠)하여, 득정(得情)28161) 하기를 힘써 구하였으되 일차(日次)28162) 를 한정하지 않았습니니다. 비록 대간(臺諫)이 말하고 대신(大臣)이 의논하더라도 전하께서는 마지못하여 따르셔서 혹 어기어 추초(筮楚)28163) 아래에서 그 목숨을 보전하지 못한 자가 두세 사람뿐이 아니었습니다. 홀로 이것만이 아니라, 존금(存今)의 부처(付處)는 율문(律文)에 의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형벌(刑罰)이 부중(不中)한 실상이었습니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삼공(三公)은 도(道)를 논하고 나라를 다스린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관직은 꼭 갖추지 아니하여도 그 사람만은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인군(人君)이 참여하여 천직(天職)을 다스리는 데 있어 원기(元氣)를 조화(調和)하고 교화(教化)를 돕는 자는 삼공(三公) 같은 이가 없으니, 진실로 신간(慎簡)하여서 여망(輿望)에 부응(副應)함이 마땅합니다. 하

《書》云：‘天討有罪，五刑五庸哉。’然則人君所庸，莫非天討，豈敢徇私而濫乎？去夏大伊之獄，謀殺其主，事當窮治也。如光載卜妾，株求根尋，連逮鞠訊，務求得情，而不限日次。雖臺諫言之，大臣議之，殿下勉從而或違之，箠楚之下，不保其命者，不啻二三人。非獨此也。存今付處，不依律文。此則刑罰不中之實也。書曰：‘三公論道經邦’又曰：‘官不必備，惟其人。’人君之所與治天職而調元贊化者，莫如三公，固宜慎簡，以副與望。今尹壕之爲人，中無執守，外多謬妄，每當大議，一無可否，唯唯諾諾。殿下遽以政府重器，付之，其不爲瘵官曠職而致天變乎？自拜相以來，群謗叢起，天災屢致，尙不知避，偃然戶位，今當雷變，乃與六卿，戲豫無忌。臣等聞迅雷甚雨必變，在平時，不可不變，況冬月乎？在凡人，不可不警，況變理陰陽如三公乎？臣等謂，事感於下，變應於上，災變之作，未必不由此人也。此則用人失當之實也。《管子》曰：‘禮、義、廉、恥，是謂四維。四維不張，國乃滅亡。’自古，

온데 이제 윤호(尹壕)의 사람됨은 충심으로 지킴이 없고 밖으로 어그러지고 망령됨이 많아, 때양 큰 의논을 당해서는 하나도 옳고 그름[可否]이 없고 유유 낙낙(唯唯諾諾)하는데, 전하께서는 갑자기 정부(政府)의 중기(重器)로써 부촉(付囑)하시니, 그 벼슬[官]이 비고 직책[職]이 비어서 천변(天變)을 초치함이 아니겠습니까? 정승을 제배(除拜)한 이래로부터 많은 사람의 비방이 떼지어 일어나서 천재(天災)를 여러 번 불러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할 줄을 알지 못하고 언연(偃然)히 시위 소찬(尸位素餐)28164) 하며, 이제 뇌변(雷變)을 당하고서도 바로 육경(六卿)과 즐겁게 놀기를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신 등이 듣건대 맹렬한 우레와 줄기차게 많은 비가 내리면 반드시 용모를 가다듬는다고 하였습니다. 평시(平時)에 있어서도 용모를 가다듬지 않을 수 없는데 더구나 겨울철이겠습니까? 평범한 사람에 있어서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데, 더구나 음양(陰陽)을 조화시키고 다스리는 삼공(三公)과 같은 자이겠습니까? 신 등은 생각하기를 일[事]은 아래에서 감촉(感觸)되고 변(變)은 위에서 응(應)하니 재변(災變)이 일어남은 반드시 이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았다고 못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이것은 용인(用人)함에 마땅함을 잃은 실상인 것입니다.

관자(管子)가 말하기를, ‘예(禮)·의(義)·염(廉)·치(恥) 이것을 사유(四維)라고 이르니, 사유(四維)를 펴지 않으면 나라가 곧 멸망(滅亡)한다고 하였습니다. 예로부터 제왕(帝王)의 다스림은 교화(教化)로써 일을 삼고 풍속(風俗)을 바르게 함으로써 급(急)함을 삼지 않은 것이 없는데도, 민속(民俗)이 미미(靡靡)하여 음식(飲食)이 호치(豪侈)28165) 하고 의복(衣服)이 화려(華麗)하며, 음란한 짓을 거리낌없이 마음대로 하고 뽑내고 자랑하여서 미천한 백성[細民]으로 하여금 군자(君子)를 능멸하게 하고, 조정(朝廷)에서는 서로 질투심(嫉妬心)으로 남을 모함하기에 이르렀으니, 부서(簿書)28166) 로써 서로 책망하고 사원(私怨)으로써 서로 보복합니다. 그래서 사대부(士大夫)가 서로 그 첩(妾)을 도둑

帝王之治，莫不以教化爲務，而以正風俗，爲急。民俗靡靡，飲食豪侈，衣服華麗，驕淫矜誇，至使細民凌君子，朝廷相傾軋，以簿書相責，以私怨相報。士大夫，相竊其妾，而不知愧，奴隸毆罵其主而無所忌。飯佛齋僧，恬不爲怪。風俗之日渝如此，而以太平自娛者，非保教之道也。上下嬉遊，自以太平爲悞，而不顧風俗之日渝，正如人之壯健，笑語嘻嘻，而不知心腹之受病矣。此則風俗之不可不正也。句陳九重，華蓋千乘，非深嚴，無以爲尊，非禁戒，無以爲備。闕入則罪，誤至者誅，所以限內外而肅官禁也。邇來威畹貴家，通籍問安，已爲不可，況官人下賤，或中弟或女奴，憧憧往來，坌集禁門，褻慢如此。此則女謁將熾之漸也。《易》曰：‘明瀆不留獄。’《大典》決訟條云：‘大事三十日，中事二十日，小事十日。’是欲其詞訟無滯也。奸詐之徒，對詞之際，矯飾誣罔，僥倖萬一，偶有一事，不利於己，巧摘微嫌，請移他司。殿下或從而移之，由是詞訟遲滯，奸僞日滋。近日尹殷老、景伊，亦可知也。臣等

질하고서도 부끄러운 줄을 알지 못하고, 노예(奴隸)가 그 주인을 구타하거나 꾸짖고서도 거리낌이 없으며, 반불(飯佛)과 재승(齋僧)이 마음 편하게 여기고 괴이(怪異)하게 여기지 않아, 풍속(風俗)이 날로 변함이 이와 같은데도 태평(太平)스럽게 스스로 즐기는 자이니, 태평을 보존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상하(上下)가 즐겁게 놀면서 스스로 태평(太平)한 것을 즐거움으로 삼아 풍속이 날로 변함을 돌아보지 않음은, 바로 사람이 장건(壯健)하여 농담[笑語]하고,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면서도 가슴과 배[心腹]에 병이 들었음을 알지 못함과 같음이니, 이는 풍속을 바르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진(句陳)의 구중(九重)과 화개(華蓋)의 천승(千乘)이 매우 엄격하지 않으면 존귀(尊貴)하게 여기지 않고, 금계(禁戒)하지 않으면 갖추어졌다고 여기지 않으므로, 난입(闖入)하면 죄를 주고, 잘못 이른 자는 주벌(誅罰)하니, 그것은 내외(內外)를 제한하고 궁금(宮禁)을 엄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즈음 외척(外戚)의 존귀한 집안[貴家]에서 통적(通籍)28167) 하여 문안(問安)하는 것도 이미 옳지 못한데, 더구나 궁인(宮人)의 하천(下賤)이 더러는 형제(兄弟), 더러는 여노(女奴)가 끊임없이 왕래하며 금문(禁門)에 떼지어 모여 설만(褻慢)함이 이와 같으니, 이것은 여알(女謁)이 장차 성하려는 조짐입니다.

《역경(易經)》에 말하기를, ‘명백하게 하고 신중하게 하여 옥사(獄事)를 머물러 두지 않는다.’고 하였고, 《대전(大典)》의 결송조(決訟條)에 이르기를, ‘무릇 대사(大事)28168)는 30일, 중사(中事)28169)는 20일, 소사(小事)28170)는 10일로 기한을 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그 사송(詞訟)의 지체함을 없애려고 함입니다. 간사(奸詐)한 무리가 송사를 대할 즈음에 사실을 속이고 거짓을 꾸며 만(萬)의 하나라도 요행(僥倖)을 바라고 우연히 한 가지 일이라도 자기에게 불리(不利)함이 있으면 교묘하게 미미한 혐의를 들추어내어 타사(他司)에 옮기기를 청하는데, 전하께서 혹 그대로 따르시고 옮기게 하면 이로 말미암아 사송(詞訟)이 지체(遲滯)되고 간위(奸僞)가 날로 불어나니, 근일에 윤

聞: ‘天遠乎哉? 祇在乎人.’ 在今日人心風俗如此, 則天意可知也。 災變之端, 正在於此。 若以天災, 爲適然之數, 而不之敬畏, 則是天乃蒼茫, 一廓然而已矣。 古之聖人, 何勞畏天之威, 而祇敬厥德乎? 中宗修德, 而桑穀乃死, 周宣側身, 而旱不爲災。 彼中宗、宣王, 一中主也, 尙且回天而弭災, 況殿下乎? 特在乎加之意而已。 伏願殿下日愼一日, 痛自抑畏, 則災變可銷, 而太平可保矣。 命示大臣。

	<p>은로(尹殷老)와 경이(景伊)의 경우로도 또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 등은 듣건대 ‘하늘이 멀다고 하겠는가? 다만 사람이 하기에 달려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인심(人心)과 풍속(風俗)이 이와 같다면 천의(天意)도 알 수 있는 것이며, 재변(災變)의 단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천재(天災)를 가지고 우연한 운수라고 여겨 경외(敬畏)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늘이 바로 창망(蒼茫)한 하나의 텅 빈 것일 따름입니다. 예전의 성인(聖人)은 어찌하여 천위(天威)를 두려워하고 그 덕(德)을 공경하고 조심했겠습니까? 중종(中宗)이 수덕(修德)하여 상곡(桑穀)이 바로 죽었고, 주선(周宣)이 몸을 신칙하여 가뭄도 재앙이 되지 않았으니, 저 중종(中宗)과 선왕(宣王)은 하나의 중주(中主)인데도 오히려 또 하늘의 뜻을 돌이키게 하여 재변을 그치도록 하였는데, 더구나 전하이겠습니까? 특별히 뜻을 더하심에 달려 있을 따름입니다. 엿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날로 근신하여 날로 새로와져서 통렬히 스스로 자만심을 누르시고 경계하고 근신하시면 재변(災變)이 사라질 수 있고 태평(太平)을 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p> <p>하니, 명하여 대신(大臣)에게 보이게 하였다.</p>	
<p>성종 295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弘治) 7년) 10월 20일(을해) 3번째기사</p>	<p>우의정(右議政) 윤호(尹壕)가 상장(上狀)하여 사직(辭職)하니, 전교하기를, “도시(都試)를 개장(開場)하고, 악(樂)을 베풀어 술을 마심은 본시 이는 예사(例事)이다. 또 그날 연석(宴席)에 참여한 자는 홀로 우의정(右議政)만이 아니었다. 그러나 굳게 사직함이 이와 같은 까닭으로 부득이 이를 들어주니, 이 뜻으로써 의윤(依允)하는 비답(批答)을 지어 답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右議政尹壕上狀辭職。傳曰：“都試開場，張樂飲酒，本是例事。且其日參宴者，非獨右議政也，然固辭至此，故不得已聽之。其以此意，製依允，批以答之。”</p>
<p>성종 295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弘治) 7년) 10월 28일(계미) 1번째기사</p>	<p>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의(李誼)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신(臣) 등이 삼가 살펴보니, 《서경(書經)》에 말하기를, ‘착한 일을 하면 온갖 상서로움을 내리고, 착하지 못한 일을 하면 온갖 재앙(災殃)을 내린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오직 길함과 흉함이 어긋나지 않고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은 오직 하늘이 재앙과 상서를 내리심이 덕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고 하였</p>	<p>○癸未/司憲府大司憲李誼等上疏曰：臣等謹按，《書》曰：“作善降之百祥，作不善降之百殃。”又曰：“惟吉凶不僭在人，惟天降災祥在德。”天人感應之理，微矣。天之與人，其勢雖遠，</p>

으니, 천인(天人)이 감응(感應)하는 이치가 은미(隱微)합니다. 하늘과 사람이 그 형세는 비록 멀다 하여도 그 이치는 사이가 없으니, 인사(人事)가 바르면 정기(正氣)가 응하여 상서(祥瑞)가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며, 인사(人事)가 바르지 않으면 사기(邪氣)가 응하여 재변(災變)이 말미암아 생기는 것입니다. 《홍범(洪範)》의 서징(庶徵)28182) 이 비록 억지로 끌어다 합치시켰다고는 하나 감소(感召)하는 이치는 거짓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달 11일(병인)에 하늘이 크게 천둥하고 번개가 치면서 우박이 내렸습니다. 이에 전하께서는 측은(惻然)히 경구(警懼)하시어, 전지(傳旨)를 내려 구언(求言)28183) 하시고 녹수(錄囚)28184) 하며 소방(疏放)하여 원왕(冤枉)28185) 함이 없도록 하시니, 그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걱정하시는 생각이 지극하셨습니다. 하오나 신 등은 언관(言官)으로 대죄(待罪)하면서 감히 끝내 잠자코 있을 수 없어, 삼가 본 바를 조목조목 진달(陳達)하겠습니다.

부열(傳說)이 말하기를, ‘나무는 먹줄을 따르면 곧아지고, 임금은 간쟁(諫諍)을 따르면 성스러워진다.’고 하였습니다마는, 대개 인주(人主)는 높이 깊은 궁중에 계시니, 듣는 것이 모자라고 보는 것이 막히어 비록 과실(過失)이 있더라도 어떻게 들으며 비록 빠뜨리고 잃어버림이 있더라도 어떻게 이를 아시겠습니까? 예전에 진선지정(進善之旌)28186) 을 세우고 비방지목(誹謗之木)28187) 을 설치하였던 것은 그 천하지선(天下之善)을 오게 하여서 자기의 덕(德)을 도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주(人主)의 위엄은 뇌정(雷霆)과 같으며 인주의 세력은 만균(萬鈞)을 범하면서 감히 말하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즉위(卽位)하신 이래로 묻기를 좋아하시고 간언(諫言)함을 즐거워하시어, 그 항소(抗疏)하는 자가 있으면 위엄을 풀고서 용납하시고 봉사(封事)하는 자가 있으면 칭찬하시고 받아들여 권장하셨으니, 사람들이 모두 다 말하기를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년(近年) 이래로 간혹 언사자(言事者)가 있으면 일마다 조목의 순서에 따라 번번이 힐문(詰問)을 더하여 반드시 언근(言根)의 출

而其理無間。人事正則正氣應之，祥瑞之所由起，人事不正則邪氣應之，災變之所由生也。《洪範》庶徵，雖曰：“牽合”，而感召之理，不誣。乃於本月十一日丙寅，天大雷電以雹。殿下惻然警懼，下旨求言，錄囚疏放，勿令有冤枉，其所以敬天憂民之念，至矣。臣等待罪言官，不敢終默，謹以所觀條陳焉。傳說曰：“惟木從繩則正，惟后從諫則聖。”蓋人主，高居深宮，虧聽阻明，雖有過失，何以聞之，雖有闕遺，何以知之？古之所以樹進善之旌，設誹謗之木者，欲其來天下之善，以助己德也。然人主之威，雷霆也，人主之勢，萬鈞也，苟不開導以求諫，和顏色以受之，誰不自愛，冒雷霆觸萬鈞而敢言乎？殿下卽位以來，好車樂諫，其有抗疏者，霽威以容之，封事者，褒納而獎之人，皆樂爲之盡言。近年以來，間有言事者，隨事逐條，輒加詰問，必究言根之所自出，臣等竊恐言事者，以言爲諱，而殿下不得聞五論也。李絳曰：“人臣盡言，豈易哉？欲陳十事，而去其五六，及至上前，削其八九。人臣進言之難，如此，而又縱天辯，動神機，

처[所自出]를 궁구(窮究)하시니, 신 등은 그옥이 언사자(言事者)가 말을 은회(隱諱)하여서 전하께서는 정론(正論)을 들으실 수 없을까 두렵습니다. 이강(李絳)28188) 이 이르기를, ‘인신(人臣)으로서 진언(盡言)하기가 어찌 쉽겠는가? 열 가지 일을 진달하고자 하면서 그 5, 6을 버리고, 상전(上前)에 이르러서는 그 8, 9를 깎아버린다.’고 하였으니, 인신(人臣)으로서 진언(進言)하기가 어려움이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또 천변(天辯)28189) 을 놓아 신기(神機)를 동(動)하여 대답하기 어려운 말로써 꺾박하면 위엄을 범하고 꺼리는 것을 촉범(觸犯)함은 비록 용감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잘할 수 없는데, 더구나 겁을 내는 사람이겠습니까? 엿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허심(虛心)으로 잘 살펴 받아들이소서.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하늘은 총명하시니 성군(聖君)은 이를 본받는다.’ 하였고, 《주역(周易)》에 말하기를, ‘오랑캐를 포용(包容)하고 맨몸으로 큰 물을 건넌다.’고 하였으니, 대개 인주(人主)의 덕(德)은 총명한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또한 포용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총명함이 지나치면 종핵(綜核)28190) 함에 가깝고 포용함이 지나치면 우유(優游)28191) 함에 가까우니, 종핵(綜核) 우유(優游)함은 진실로 제왕(帝王)의 미덕(美德)이 아닙니다. 총명하되 종핵함에 이르지 않고 포용하되 우유함에 이르지 않으면 제왕(帝王)의 덕(德)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하늘의 총명(聰明)함을 본받고 포용[包荒]하여 다스림을 본받으시어 즉위(卽位)한 이래로 서무(庶務)의 결단을 관대함으로써 임하시고 명확함으로써 살피시어, 천하가 평화롭게 다스려진 지가 이미 26년이 되었는데, 요즈음은 대체(大體)에 관계되지 않은 유사(有司)의 작은 일에 혹 몸소 검핵(檢核)을 더하시어 성려(聖慮)를 훼손(虧損)하시니, 이는 비록 전하께서 만물(萬物)에 두루 밝으시어 그러하시더라도 그 제왕(帝王)이 포용(包容)하는 덕(德)에 아마도 더러 해로움이 있을 듯합니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임금[元首]이 자질구레하고 번잡하면 신하

迫之以難對之辭，則犯威觸諱，雖勇者，尚不能，況怯者乎？”伏願殿下虛懷察納焉。書曰：“性天聰明，惟聖時憲。”《易》曰：“包荒用馮河。”蓋人主之德，莫大於聰明，而亦莫大於包容也。然聰明之過，近於綜核，包容之過，近於優游，綜劾優游，固非帝王之美德。聰明而不至於綜核，包容而不至於優游，則帝王之德，備矣。殿下，憲天聰明，體易包荒，卽位以來，庶務之斷，寬以臨之，明以察之，清明之治，已二十六年。而近者，非關係大體，有司細事，或親加檢核，虧損聖慮，此雖殿下，智周萬物而然也，其於帝王包容之德，恐或有妨。《書》曰：“元首叢脞哉，股肱惰哉，萬事隳哉。”伏惟殿下，潛心焉。《書》曰：“不貴異物，賤用物，民乃足。”又曰：“慎乃儉德，惟懷永圖。”蓋珠玉、錦繡，易悅於人之耳目，故古之聖君，必却而不玩者，以其侈吾心也。昔漢文帝專尚節儉，身衣弋綈，足履革舄，所幸慎夫人，衣不曳地。景帝，以錦繡纂組，妨女功，特詔除之，天下望風成俗，以致海內富庶之效。殿下，卽位以來，

[股肱]가 게을러져서 만사가 실패하리로드.’고 하였으니, 엿드려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마음을 가라앉혀 깊이 생각하소서.

《서경(書經)》에 말하기를, ‘특이한 물건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항상 쓰는 물건을 천하게 여기지 않으면 백성은 곧 넉넉하여진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검소한 덕(德)을 삼가하여 오직 영원한 계획만 생각하소서.’라고 하였으니, 대개 주옥(珠玉)과 금수(錦繡)는 사람의 이목(耳目)을 기쁘게 하기에 쉬운 까닭으로 예전의 성군(聖君)은 반드시 물리치고서 완상(玩賞)하지 않았던 것은 그것이 내 마음을 사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漢) 문제(文帝)는 오로지 절검(節儉)을 숭상하여 몸소 익제(弋緹)28192) 를 입고 발에는 가죽신을 신었으며 총애하는 신 부인(愼夫人)도 옷자락을 땅에 끌지 않았으며, 경제(景帝)도 금수(錦繡)로써 인끈 같은 것을 짚은 여공(女功)을 방해함이라 하여 특별히 조서(詔書)를 내려 없애게 하니, 천하(天下)가 멀리서 그리워하고 사모하여 풍속을 이루어 해내(海內)에 부서(富庶)한 효험을 초치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즉위하신 이래로 다스리는 도리를 번번이 준수하시고 검약(儉約)함을 돈독히 행하시어, 궁중(宮中)의 복어(服御)는 모두 순박(淳朴)함을 좋아하여 하나도 분수에 넘치는 사치가 없었고, 이웃 나라에서 바친 특이한 물건은 모두 여러 유사(有司)에게 부치어 내탕(內帑)에 들이지 않으셨으며, 무릇 혼인(婚姻)과 연회(宴會)에 지나치게 사치한 자는 별도로 조장(條章)을 세워서 이를 금지하시고, 왕자녀(王子女)의 혼계(婚禮)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전지(傳旨)를 내려, 그 사치함을 금지하셨습니다. 다만 요즈음은 부경 사개(赴京使介)28193) 의 행차를 당할 때마다 제용감(濟用監)의 포자(布子)를 많이 내어 당물(唐物)28194) 을 무역하도록 하여 구름 같은 무늬가 있는 금곡(錦穀)28195) 은 모두 정품(精品)만을 골라서 궁중의 소용을 삼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여항(閭巷)의 소민(小民)이 흡연(翕然)28196) 히 화(化)하여 무릇 혼구(婚媾)의 의복(衣服)과 음식(飲食)의 도구는 다투어 사치스럽고 화려함을 숭

動遵理道，敦行儉約，宮中服御，皆好淳朴，無一侈靡。隣國所獻異物，皆付諸有司，不入內帑。凡婚姻宴會之過侈者，別立條章，以禁之，至於王子女婚禮，屢降傳旨，以禁其侈。但近者，每當赴京使介之行，多出濟用監布子，令貿唐物，雲紋錦穀，皆擇精品，以為宮中之用。由此閭巷小民，翕然化之。凡諸婚媾衣服飲食之具，爭尚奢麗，傾財破產，以充其用。貧者不給，無以為禮，婚姻愆期，職競由此。上好下甚，高髻廣袖之語，蓋以此也。伏願殿下潛心焉。傳曰：“天子不問有無，諸侯不問多少，百乘之家，不畜聚斂之臣。”又曰：“人民藏於家，諸侯藏於國，天子藏於海內。”古之人君，不私財貨者，恐其生人心而開禍端也。殿下，即位以來，貴德賤貨，發政施仁，日以受民為事，凡諸道內需司之穀，一切輸入其官，不使取殖，民庶晏然。比年以來，復還其穀，付之奴僕，使殖焉。既遣委差，又使邑宰掌之，為委差者，率皆庸賤胥吏之輩，徒以營求為業。出入官府，有同使介，信宿閭閻，徵索萬端，憑藉官威，漁奪黎庶。不

상하여, 재산(財産)을 기울이고 가산을 탕진하면서 그 비용으로 충당하니, 가난한 자는 공급하지 못하여 예(禮)를 올리지 못하고 혼인(婚姻)의 기한을 어기면서도 오로지 이것을 거치려고 힘쓰니, 위에서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아래서는 더욱 심하게 되어, 상투를 높이고 소매를 넓힌다는 말은 대개 이 때문인 것이오니, 앞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마음을 가라앉혀 생각하소서.

전(傳)에 말하기를, ‘천자는 유무(有無)를 묻지 않고 제후(諸侯)는 다소(多少)를 묻지 않으며, 백승(百乘)의 가(家)에서는 취렴(聚斂)하는 신하를 기르지 않는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인민은 집에 간직하고 제후는 나라에 간직하며 천자는 해내(海內)에 간직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전의 인군(人君)이 재화(財貨)를 사사로이 하지 않은 것은 그 물욕[人心]이 생겨 화단(禍端)을 열까 두려워함입니다. 전하께서는 즉위하신 이래로 덕(德)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재화(財貨)를 천하게 여기시어, 정사를 일으키고 어짐을 베푸시어 날로 애민(愛民)하는 것으로써 일을 삼으셨습니다. 무릇 제도(諸道)의 내수사(內需司)의 곡식은 일체를 그 고을에 수입(輸入)하게 하고 식리(殖利)를 취하지 못하게 하여 백성이 안연(晏然)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년 이래로는 그 곡식을 다시 환곡(還穀)하게 하여 노복(奴僕)에게 이를 부치어 식리(殖利)하게 하여 이미 위차(委差)가 된 자는 거의 모두가 용천(庸賤)한 서리(胥吏)의 무리이므로 한갓 영구(營求)하는 것으로써 일을 삼아 관부(官府)를 출입(出入)할 적에는 사신[使介]과 같음이 있으며, 여염(閭閻)에서 여러 날을 유숙하면서 만단(萬端)으로 찾아서 징수하고 관위(官威)를 빙자(憑藉)하여 백성을 침탈[漁奪]하며, 풍년과 흉년을 돌아보지 않고 독촉하여 징수함이 날로 심하여, 화곡이 등장(登場)하지 못하였는데도 책포(責逋)하는 자가 먼저 이르러서 실가닥을 풀고 곡식을 두량(斗量)하여 상납(償納)하기에 겨를하지 못하니, 백성의 곤고(困苦)함이 어찌 이보다 심함이 있겠습니까? 화기(和氣)를 손상시키고 재앙(災殃)을 부름도 또한 받드시 여기에 말미암지 않음이 없습니다. 신 등은 또 듣건대 근자에는 제

顧年之豐歉，徵督日峻，禾未登場，責逋者先至，解絲量穀，償納不暇。民之困苦，孰於此？傷知召災，亦未必不由於此。臣等又聞近者，頻輸諸司米布，付之內需司。此雖出於內用之不獲已也。然不可以私奉而濫費也。《易》曰：“不傷財，不害民。”蓋傷財，心至於害民。伏願殿下，潛心焉。《易》曰：“危者，安其位者也，亡者保其存者也。”《孔子》曰：“不教民而戰，是謂棄之。”爲國者，雖當昇平之時，固不可忘戰也，尤不可不預養士卒也。古之治兵者，十年生聚，十年教訓。以其養之不素，則無以爲緩急之用也。殿下，卽位以來，念苞桑之戒，申明祖宗撫養之法，更迭番休，使之得以仰事俯育，又令習射鍊才，期至精銳，教養之道至矣。但近者，王子君第宅及一應營繕，輒發水軍步兵，以役之。彼見土木之役，篋楚之苦，富者，傾箱倒篋，厚給其價，期不趨事，以至於貧。貧者，稱貸膏糧，以赴其功，少有稽緩，則鞭撻以罰之，徵贖以督之，未納者，徵諸其邑之守邸，貽及鄉里，以充其贖，祖業田莊，

사(諸司)의 미포(米布)를 빈번하게 수송하여 내수사(內需司)에 부치게 한다고 하는데, 이는 비록 내전(內殿)의 소용으로 부득이한 데에서 나왔더라도 그러나 사사로이 받드는 것으로써 함부로 허비할 수는 없습니다.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재물을 상하지 않고 백성도 해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대개 재물을 손상하면 반드시 백성을 해롭게 됨을 이룸이니, 옳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마음을 가라앉혀 생각하소서.

《주역(周易)》 〈계사전(繫辭傳)에〉 말하기를, ‘위태로울까 하는 자는 그 지위를 편안하게 하는 자이며, 망할까 하는 자는 그 생존하는 것을 보존하는 자이다.’라고 하였고, 공자(孔子)는 말하기를, ‘가르치지 않은 백성을 활용하여 싸우게 하면 이는 백성을 버리는 것이다.’고 하였으니,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비록 승평(昇平)한 때를 당하더라도 진실로 싸움[戰]을 잊을 수 없으며, 더욱 미리 사졸(士卒)을 양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치병(治兵)한 자는 10년 동안 생취(生聚)28197) 하고 10년 동안 교훈(教訓)하였다.’고 하였으니, 그 양성함을 평소에 하지 않으면 완급(緩急)에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즉위하신 이래로 포상(苞桑)의 경계[戒]28198) 를 생각하시고 조종(祖宗)의 무양(撫養)하신 법(法)을 거둬 밝히시어, 교대하여 번휴(番休)하게 하여 부모를 봉양하고 처자를 보살피도록 하였으며, 또 습사(習射)하고 연재(鍊才)하여 정예(精銳)한 데에 이르기를 기약하시어 교양(教養)하는 도(道)가 지극하셨습니다. 하지만 근자에는 왕자군(王子君)의 제택(第宅)을 하나같이 영선(營繕)하게 되어서는 갑자기 수군(水軍)과 보병(步兵)을 징발하여 역사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 토목(土木)의 역사를 보면 추초(筮楚)의 괴로움이 있어, 부유한 자는 상자[箱]를 기울이고 행담[篋]을 뒤엎어 가면서 그 값을 후하게 주어 일에 나가지 않기를 기약하여 가난한 데에 이르르고, 가난한 자는 빌려서 양식을 가지고 그 일[功]에 나아가지만 조금이라도 더디고 늦어지는 것이 있으면 채찍으로 때려 벌(罰)하고 징속(徵贖)28199) 하도록 독촉하여 납부하

蕩無餘矣。於是，貪富皆困，爭爲逃避之不暇，況習其坐作進退之節乎？是，亦傷知召災之一端。伏願殿下，潛心焉。臣等聞災不妄作，有感而應。今年旱蝗，繼有風災，又有雷變，咎徵竝現，亦豈無自而然耶？或者，皇天仁受殿下，丁寧示譴，以警懼之也。殿下宜深加修省，日愼一日，以答天譴。夫修省之要，在於和民心。民心之知，特在殿下之一心。蓋天下萬事，皆自人主方寸中來，不可求諸外也。人主一心，攻之者衆，一有不正，則衆欲乘之，遂至心喪志耗。譬如以小銷膏，莫覺其融其發而爲政事，從可知矣。如是則民心其能和乎，和氣其能應乎？殿下但當澄澈本源，防意如城。思過不得，得則便改，闕政未聞，聞則輒修，一念毋怠，應天以實，則災可轉爲祥，禍可轉爲福矣。伏願殿下留心焉。傳曰：“爾等所言，有不不可施行者，予若唯唯而不行，則是誑汝也，不得已聞之耳。今爾等之言如此，予其不言歟？”掌令趙達生對曰：“非欲使殿下不言也。但以言事而句問其源，恐言路塞矣。”傳曰：“爾等以爲，多

지 못하는 자는 그 고을의 수령 <守鄕> 에게 징수하게 하므로 향리(鄉里)에까지 그 속전(贖錢)을 충당하기에 미치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장(田莊)을 탕진하여 남음이 없습니다. 이에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모두가 괴로워 다투어 도피(逃避)하기에 겨를하지 못하는데, 더구나 그 좌작 진퇴(坐作進退)28200) 의 절도를 익히는 것이겠습니까? 이것도 또한 화기(和氣)를 상하고 재앙을 부르는 하나의 단서이오니, 엿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마음을 가라앉혀 생각하소서.

신 등은 듣건대 재앙은 망령되이 일어나지 않고 감(減)함이 있어서 응(應)한다고 하였습니다. 금년(今年)에는 한황(旱蝗)28201) 에 이어서 풍재(風災)가 있고 또 뇌변(雷變)이 있어 재앙의 징조가 아울러 나타났으니 또한 어찌 비롯함이 없는데도 그러하겠습니까? 혹자는 황천(皇天)이 전하(殿下)를 인애(仁愛)하여 정녕(丁寧)하게 견책(譴責)을 보이어서 경구(警懼)하게 함이라고 하니, 전하께서는 깊이 수성(修省)을 더하시어 날로 조심하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어서 천견(天譴)에 보답함이 마땅합니다. 대저 수성(修省)하는 요체는 민심(民心)을 화(和)하게 함에 있으며, 민심을 화하게 하는 것은 특히 전하(殿下)의 일심(一心)에 달려 있습니다. 대개 천하(天下)의 만사(萬事)는 모두 인주(人主)의 마음속으로부터 오니, 밖에서 구(求)함은 불가(不可)한 것입니다. 인주의 한 마음은 공격하는 자가 많으니, 하나라도 부정(不正)함이 있으면 많은 욕심이 이를 타서 드디어 마음을 상(喪)하고 뜻을 어지럽히게 되는데, 비유하면 불로써 기름[膏]을 녹이고도 그 융합(融合)함을 깨닫지 못함과 같으니, 그것을 발휘해서 정사(政事)를 하면 따라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으면 그 민심이 화(和)할 수 있으며 화기(和氣)가 응(應)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다만 마땅히 본원(本源)을 정철(澄澈)28202) 하게 하여 뜻[意]을 수어(守禦)하기를 성(城)과 같이 하고, 잘못을 얻지 않도록 생각하여 얻으면 곧 고치고, 빠진 정사를 듣지 않도록 하시고 들으면 문득 수정하여 일념(一念)이라도 태

出濟用監布予，令質唐物，以爲官中之用。然本監，掌倭人衣服，尙衣院，掌宮中衣櫛，以至宰相藥材，不得已市于中朝，懋遷有無，自古而然。國家有事，必役水軍，豐年則役之，凶年則放之，此亦不得已也。爾雖言之，不可施行。諸君家華侈之事，予未之知也。但高其垣墻，故名人見之，以爲高大，中未必然也。已與政院，議定其制耳。天變，皆予闕政所致。然豈盡由於此？爾欲廢內需司，然其間細碎之事，爾豈知之？如兩殿供奉及兒輩賜與，其用多端。若將此事，盡煩諸司，爾亦必論啓矣。爾等所言，皆不可施行。爾謂予親細事，未知指何事歟。若指言則子當改之矣。” 達生曰：“臣未敢的指爲某事也，大抵細碎之事，親自檢核。恐虧聖慮以一事言之，前日馬價，親自點檢，是亦不可也” 傳曰：“爾言甚當。君行臣職，古人非之。自今，當付有司。”

만하지 마시고 하늘에 응답하기를 성실로써 하시면 재앙(災殃)이 바뀌어 상서가 되고 화(禍)가 바뀌어 복(福)이 될 수 있을 것이오니, 옆드려 원하건대 전하게서는 유심(留心)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이 말한 바는 시행(施行)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내가 만약 유유(唯唯)하면서 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대를 속임이니, 부득이하여 묻는다. 이제 그대들의 말이 이와 같으니, 내가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장령(掌令) 조달생(趙達生)이 대답하기를,
“전하(殿下)로 하여금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함이 아닙니다. 하지만 언사(言事)를 가지고 그 근원을 구문(句問)하시면, 언로(言路)가 막힐까 염려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은 제용감(濟用監)의 포자(布子)를 많이 내어서 당물(唐物)을 무역하도록 하여 궁중(宮中)의 소용을 삼는다고 하나, 본감(本監)으로 말하면 왜인(倭人)의 의복(衣服)을 관장하고, 상의원(尙衣院)은 궁중(宮中)의 의대(衣櫛)를 관장하고 있으며, 재상(宰相)의 약재(藥材)에 이르러서는 부득이 중국[中朝]에서 매매하여 있고 없는 것을 힘써 교역(交易)한 것은 예로부터 그러하였다. 국가에 일이 있으면 반드시 수군(水軍)으로 역사시켰다. 풍년(豐年)이면 역사시키고 흉년(凶年)이면 방환(放還)하였음은 이것도 또한 부득이한 것이니, 그대가 비록 말하더라도 시행(施行)할 수는 없다. 제군(諸君)의 집이 화려하고 사치하다는 일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 담장이 높은 까닭으로 외인(外人)이 보기에는 높고 크다고 생각하겠으나 속은 반드시 그렇지도 않아, 이미 정원(政院)으로 더불어 의논하여 그 제도를 정하도록 하였다. 천변(天變)은 모두 내가 정사를 잘못된 소치이다. 그러나 어찌 모두 여기에서 말미암았겠는가? 그대가 내수사(內需司)를 폐(廢)하려고 하지만, 그 사이의 자질구레한 일을 그

	<p>대가 어찌 알겠는가? 양전(兩殿)을 공봉(供奉)하는 것과 아이들에게 내려 주는 것과 같은 것은 그 소용이 다단(多端)하니, 만약 이 일을 가지고 제사(諸司)를 다 번거롭게 하면 그대 또한 반드시 논계(論啓)할 것이니, 그대들이 말하는 바는 모두 시행(施行)할 수가 없다. 그대가 내가 친히 자질구레한 일을 <검찰한다고> 이름은 알지 못하겠으나, 무슨 일을 지목함인가? 만약 지목하여 말하면 내 마땅히 고치도록 하겠다.”</p> <p>하였다. 조달생(趙達生)이 말하기를, “신(臣)은 감히 확실하게 아무 일이라고 지목하지 못합니다. 대저 자질구레한 일을 몸소 스스로 검핵(檢核)하시니, 성려(聖慮)가 휴손(虧損)될까 두렵습니다. 한 가지 일로써 말하면 전일에 말값[馬價]을 몸소 점검(點檢)하시었으니, 이것도 또한 옳지 못한 것입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그대 말이 매우 마땅하다. 인군(人君)이 신하의 직분을 행하면 옛사람도 이를 그르다고 하였으니, 이제부터는 마땅히 유사(有司)에 회부하겠다.”</p> <p>하였다.</p>	
<p>성종 295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弘治) 7년) 10월 29일(갑신) 2번째기사</p>	<p>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조달생(趙達生)이 와서 아뢰기를, “정민(鄭旻)의 일은 사간원(司諫院)에서 방금 아뢴 까닭으로 신 등은 이제까지 아뢰지 않았습시다마는, 상례(相禮)는 3품(三品)의 대관(大官)입니다. 정민은 공능(功能)이 없는데도 승수(陞授)하셨고, 박숙무(朴叔楸)는 정(正)으로 나주 목사(羅州牧使)를 제배(除拜)하여 직차(職次)가 사당(相當)한 까닭으로 처음에는 이를 아뢰지 않았습시다. 하오나 이제 다시 들으니 나주(羅州)는 큰 곳이라 합니다. 인기(人器)가 불합(不合)하여, 그 번극(煩劇)한 것을 전결(剴決)하여 다스리기에는 감당할 수 없을까 염려되오니, 청컨대 모두 개정하소서. 이 앞서 연소(年少)한 무신(武臣)은 내지(內地)에 불서(不敍)하라는 명(命)이 이미 계셨습니다. 이제 채윤혜(蔡允惠)를 면천(沔川)에 제배한 것은 미편</p>	<p>○司憲府掌令趙達生來啓曰：“鄭旻事，司諫院方啓，故臣等迄今不啓。相禮，三品大官，旻無功能而陞授。朴叔楸以正拜羅州牧使，職次相當，故初不啓之，今更聞之，羅州大處，人器不合，其於剴煩治劇，恐不能堪請皆改正。前此年少武臣，不敍內地，已有命矣。今蔡允惠拜沔川，未便。且京畿監司、都事、差使員在京時，騎驛馬，而馬料及驛子所食，令諸邑備送京畿，失</p>

	<p>(未便)하며, 또 경기 감사(京畿監司)·도사(都事)·차사원(差使員)이 서울에 있을 때에는 역마(驛馬)를 타는데 마료(馬料)와 역자(驛子)가 먹는 것은 여러 고을로 하여금 경기(京畿)에 갖추어 보내게 합니다. 하지만 실농(失農)이 극심하면 평상시는 조사(朝士)도 또한 사마(私馬)를 타니, 청컨대 이 예(例)에 의하여 폐단을 제거하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p> <p>“정민(鄭旻)의 일은 전례(前例)가 있으니, 내 뜻으로는 그대로 근무하게 함이 옳다고 생각한다. 박숙무(朴叔楸)의 인기(人器)가 상당(相當)하고 아니함은 내가 모른다. 그러나 별다른 흔구(痕咎)가 없으니 어찌 개정할 수 있겠는가? 채운혜는 연소(年少)한 무신(武臣)이니, 시험삼아 서북(西北) 방면의 변사(邊事)를 알도록 함이 옳으니, 그대 말을 따름이 마땅하다. 경기 감사(京畿監司) 등의 일은 구황(救荒)으로써 말하면 그대 말이 마땅한 것 같으나, 사체(事體)로써 말하면 그대 말이 마땅하지 못하다. 그러나 구황(救荒)과 사체(事體)로써 말하면 경중(輕重)의 사이가 있으니, 전례(前例)를 상고해서 처리함이 마땅하다.”</p> <p>하였다.</p>	<p>農大甚，常時朝士，亦騎私馬。請依此例除弊。” 傳曰：“旻事，有前例，予意謂仍職，可也；叔楸，人器相當與否，予未知也，然別無痕咎，何可改也；允惠，年少武臣，宜試之西北，使知邊事，當從爾言：京畿監司等事，以救荒言之，爾言似當，以事體言之，爾言不當。然以救荒與事體言之，則輕重有間，當考前例，而處之。”</p>
<p>성종 296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弘治) 7년) 11월 1일 (병술) 3번째기사</p>	<p>경상우도 병마 절도사(慶尙右道兵馬節度使) 신주(辛鑄)가 치계(馳啓)하기를,</p> <p>“왜인(倭人) 14명이 작은 배를 타고 영등포(永登浦)에 정박하였는데, 야시지(也時知) 등 6명이 청하리(淸河里) 백성 김생(金生)의 집에 돌입(突入)하여 콩[豆] 1석(碩)을 빼앗아 갔습니다. 울포 권패(栗浦權牌) 신석산(辛石山)이 군사(軍士)를 거느리고 뒤쫓아 가서 마침내 사로잡아 본포(本浦)에 가두었습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처치(處置)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병조(兵曹)와 예조(禮曹)의 당상(堂上)을 부르도록 하라.”</p> <p>하였는데, 잠깐 있다가 관찰사(觀察使) 김제신(金悌臣)의 계본(啓本)이 또 이</p>	<p>○慶尙右道兵馬節度使辛鑄馳啓：“倭人十四名，乘小船，泊永登浦也。時知等六名，突入淸河里百姓金生家，奪豆一碩而去。栗浦權牌辛石山，率軍士追逐捕獲，囚于本浦矣。” 傳曰：“處置甚難。其召兵、禮曹堂上。” 俄而，觀察使金悌臣啓本又到。傳曰：“事急，分遣翰林、注書，議于領敦寧以上及議政府。” 禮曹判書成倪、兵</p>

	<p>르니, 전교하기를, “일이 급하니, 한림 주서(翰林注書)를 나누어 보내어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에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성현(成俔)과 병조 판서(兵曹判書) 성준(成俊) 등이 이르니, 전교하기를, “왜적(倭賊) 6명을 이미 가두었으니, 장차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자, 성준 등이 아뢰기를, “상시(常時)로 고기잡이하는 왜선(倭船)은 반드시 사관(射官)28216) 을 주고 또 문인(文引)28217) 을 상고토록 하나, 간혹 사관(射官)과 문인(文引)이 없으면서 몰래 다니는 자가 있습니다. 감사(監司)가 비록 바야흐로 추국(推鞠)한다 하더라도 특별히 조관(朝官)을 보내어 왜인(倭人)이 거처(居處)하는 곳과 작적(作賊)하여 사람을 해친 등의 일을 상세히 모두 추고(推考)하여 계문(啓聞)하게 한 뒤에 처치(處置)를 의논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감사(監司)와 병사(兵使)가 지금 바야흐로 추국중이니, 처치(處置)하는 방법은 과연 경(卿) 등의 말과 같다.” 하고,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비록 본래 적왜(賊倭)는 아니더라도 육지(陸地)에 내려 작적(作賊)하였으면 진실로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거제(巨濟)에 가두었는데, 거제는 읍재(邑宰)와 만호(萬戶)가 있어서 저 사람들이 진실로 겁탈(怯奪)할 이치가 없으나, 왜인(倭人)의 성품이 본래 급하여 흑간 자진(自盡)할까 두려우니, 내지(內地)로 옮겨 가두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조금 있다가 수의(收議)하여 왔는데, 윤필상(尹弼商)·이극배(李克培)·한치형(韓致亨)·정문형(鄭文炯)·유지(柳輕)가 의논하기를, “작적(作賊)과 포착(捕捉)한 절차(節次) 및 사관(射官)과 문인(文引)의 유무(有</p>	<p>曹判書成俊等至。傳曰：“倭賊六名已囚，將何以處之？”俊等啓曰：“常時鈞魚倭船，必給射官，又考文引。然間有無射官、文引而潛行者。監司，雖方推鞠，特遣朝官。倭人所居處及作賊害人等事，詳悉推考啓聞後，議其處置何如？”傳曰：“監司、兵使，今方推之。處置之策，果如卿等之言。”傳于承政院曰：“雖本非賊倭，下陸作賊，則固當治之矣今囚于巨濟，巨濟有邑宰萬戶，彼人固無恟奪之理然倭性本急，恐或自盡，移囚內地可也。少頃，收議而來。”尹弼商、李克培、韓致亨、鄭文炯、柳輕議：“作賊捕捉節次及射官、文引有無，推考啓聞後更議。”盧思慎、尹孝孫議：“急擇諳鍊朝官，推考後更議處置。”從思慎等議遣侍講院弼善金壽童，鞠之。</p>
--	---	---

	<p>無)를 추고(推考)하여 계문(啓聞)한 뒤에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하고, 노사신(盧思愼)·윤효손(尹孝孫)은 의논하기를, “급히 암련(諳鍊)28218) 한 조관(朝官)을 가려서 추고(推考)한 뒤 다시 의논하여 처치(處置)하게 하소서.” 하니, 노사신 등의 의논을 따라 시강원 필선(侍講院弼善) 김수동(金壽童)을 보내어 국문(鞫問)하게 하였다.</p>	
<p>성종 296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弘治) 7년) 11월 1일 (병술) 7번째기사</p>	<p>경상우도 수군 절도사(慶尙右道水軍節度使) 이열(李烈)이 치계(馳啓)하기를, “영등포 만호(永登浦萬戶) 정인각(鄭麟角)이 군사를 거느리고 장포(場浦)를 에워싸고는 미처 잡지 못했던 왜인(倭人) 8명을 체포하였는데, 신(臣)이 국문(鞫問)하니, 이르기를, ‘국왕 사신(國王使臣)의 격왜(格倭)로서 장선목(裝船木)을 구(求)하러 와서 굶주려 고생하다가 결식(乞食)하였을 뿐입니다. 어찌 감히 도적질을 하였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신이 정인각(鄭麟角)으로 하여금 제포(濟浦)로 압송(押送)하여 웅천(熊川)에 옮겨 가두게 하고는 그 허실(虛實)을 캐도록 하였습니다.” 하였다.</p>	<p>○慶尙右道水軍節度使李烈馳啓：“永登浦萬戶鄭麟角，率軍圍場浦，捕得未獲倭人八名。臣鞫問，則云，以國王使臣格倭，求裝船木而來，因飢乏乞食耳。豈敢爲賊乎？臣令麟角押送濟浦，移囚于熊川，使質其虛實。”</p>
<p>성종 296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弘治) 7년) 11월 2일 (정해) 1번째기사</p>	<p>종정국(宗貞國)의 특송(特送) 정신(貞信) 등이 하직하였다. 예조(禮曹)의 답서(答書)에 이르기를, “요사이 사신의 돌아옴으로 인하여 조섭(調攝)함이 화기(和氣)를 어겼음을 알았으며, 글을 받아 봄에 미처 아직도 평선(平善)하지 못함을 알게 되니, 근심됨을 금할 수가 없오. 전에 가서 유시(諭示)한 바의 어량(魚梁) 및 작모자(作耗者)의 저죄(抵罪)하는 것과 쇄환(刷還)하는 등의 일은 족하(足下)가 청명(聽命)28225) 하겠다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지금껏 처치(處置)가 있었다는 것을 듣지 못했으니, 그욕이 의혹스럽소. 장차 족하(足下)가 병(病)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오? 삼포(三浦)28226) 에 살고 있는 사람은 우리 조종조(祖宗朝)에서 선도주(先島主)와 더불어 스스로 정약(定約)한 것이 있으니, 생치(生齒)28227) 가 점차 번성해졌으면 진실로 정약(定約)한 대로 쇄환</p>	<p>○丁亥/宗貞國。特送貞信等辭。禮曹答書曰： 近因使還，知調攝乖和。及承書，又知猶未平善，不勝慮慮。前所往諭爭魚梁及作耗者抵罪，與夫刷還等事。足下，報以聽命，迄今未聞有處置，竊感焉。將足下，以疾有待而然耶，三浦居人，我祖宗朝，與先島主，自有定約。生齒漸繁，則固當依約刷還。今其戶數，十倍於舊。足下，其可違先世之約，而不亟刷還乎？足下，其思累</p>

	<p>(刷還)하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지금 그 호수(戶數)가 예전보다 열 갑절이나 되었으니, 족하(足下)가 선대[先世]의 정약을 어기고서 빨리 쇠환하지 않는 것이 가하겠오? 족하가 누조(累朝)의 함육지인(涵育之仁)을 생각하여 속히 결단하면 매우 다행하겠오. 바친 바 예물(禮物)은 삼가 아뢰고서 거두었으며, 변변치 못한 토의(土宜)를 별폭(別幅)과 같이 갖추었오.” 하였다.</p>	<p>朝涵育之仁，速斷幸甚。 所獻禮物。 謹啓收訖。 不腆土宜，具如別幅。</p>
<p>성종 296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11월 4일 (기축) 2번째기사</p>	<p>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김제신(金悌臣)이 치계(馳啓)하기를, “제포 첨절제사(齊浦僉節制使) 여승감(呂承堪)이 보고하여 이르기를, ‘일본 국왕(日本國王)의 사신(使臣) 상관인(上官人)과 부관인(副官人)의 말이 「인국(隣國) 사신이 데리고 온 사람이 장선목(裝船木)의 작취(斫取) 때문에 바다를 건너다가 굶주려 곤궁함을 인하여 결식(乞食)하였는데, 도적[賊]이라 일컬어 수계(囚繫)28237 하였으니, 우리가 무슨 면목(面目)으로 여기에 있겠습니까? 웅천(熊川)으로 옮겨 가두려고 할 때를 당하여 갇힌 자 3, 4명을 직접 죽였으며, 우리도 자문(自刎)하였습니다.’고 하였다’ 합니다. 그리고 왜인(倭人)들이 안에는 갑옷[甲]을 받쳐 입고 <손에는> 창검(槍劍)을 쥐고서 길에 둔취(屯聚)하여 장차 적왜(賊倭)를 빼앗기를 요(要)하는 까닭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 가두지 못하고, 제포 성내(齊浦城內)에 구류(拘留)했었습니다. 또 정인각(鄭麟角)이 처음에 계루(繫累)28238 하지 않고서 왔는데, 지금 계계(械繫)로 다스릴 것 같으면 불측(不測)의 변(變)이 발생할 것입니다.” 하였다. 과평 부원군(坡平府院君) 및 의정부(議政府)·예조(禮曹)·병조(兵曹)의 당상(堂上)을 명소(命召)하였는데, 윤필상(尹弼商)·노사신(盧思愼)·한치형(韓致亨)·정문형(鄭文炯)·성준(成俊)·유지(柳輕)·윤효손(尹孝孫)·성현(成倪)·송영(宋瑛)·이숙감(李淑城)·박원종(朴元宗)이 이르니, 전교하기를, “국가(國家)의 처치(處置)는 마땅히 이 거사(擧事)에 달려 있다. 비록 적왜(賊倭)가 아니더라도 이미 우리 지경(地境)을 범(犯)하여 백성의 황두(黃豆)를 빼</p>	<p>○慶尙道觀察使金悌臣馳啓：“齊浦僉節制使呂承堪報云：‘日本國王使臣上官人言：「隣國使臣帶來人，以裝船木斫取渡海，因飢乏乞食，而稱賊囚繫，我何面目在此乎？」當於移囚熊川時，手殺被囚者三四人。我且自刎。倭人等，裹甲操槍劍，屯聚於路，將要奪賊倭，故不得移囚，拘留于齊浦城內。’且鄭麟角，初不繫累而來，今若械治，則變生不測矣。”命召坡平府院君及議政府禮曹、兵曹堂上尹弼商、盧思愼、韓致亨、鄭文炯、成俊、柳輕、尹孝孫、成倪、宋瑛、李淑城、朴元宗至。傳曰：“國家處置，當在此舉。雖非賊倭，既犯我境，奪民黃豆，論以賊倭可也。且使臣，雖云斬三四人。然刑殺，在島主處置，非使人所當擅也。今若以一國法斷之，則恐生邊釁，何以處之？”弼商等議啓曰：“觀</p>

았았으니, 적왜로 논하는 것이 가하다. 또 사신(使臣)이 비록 3, 4인을 참(斬)했다고 하나, 형살(刑殺)은 도주(島主)28239)의 처치(處置)에 달려 있으니, 사인(使人)이 마땅히 친단(擅斷)할 바가 아니다. 지금 만약 일국(一國)의 법(法)으로써 처단한다면 아마도 변흔(邊釁)이 생길 듯하니,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는가?”

하였다. 윤필상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김계신(金悌臣)의 아뢰 바를 살펴보건대 적왜(賊倭)가 아니고 바로 사신의 수종자(隨從者)임이 명백합니다. 다만 문인(文引)과 사관(射官)이 없이 깊이 촌(村)에 들어가 백성의 황두(黃豆)를 빼앗았으니, 국법(國法)에 있어 적(賊)으로 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무리는 항거 왜인(恒居倭人)28240)이 아닌데 어찌 금약(禁約)을 알겠습니까? 일체로 법을 가지고 책(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조정(朝廷)의 명(命)을 받들어 특별히 놓아보내게 하는 일을 여승감(呂承堪)으로 하여금 상관인(上官人)과 부관인(副官人)에게 세세히 유시(諭示)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열(李烈)이 감사(監司)에게 보고하지 않고 제멋대로 <웅천에> 옮겨 가둔 것은 특히 변장(邊將)의 체통을 잃은 것입니다. 청컨대 국문(鞫問)하소서.”

하므로, 전교하기를,
“내 생각에도 역시 그들이 적왜(賊倭)가 아님을 알겠다. 이 뜻을 가지고 관찰사(觀察使)에게 하서(下書)하라.”

하였다. 윤필상이 아뢰기를,
“신의 생각으로는 왜인(倭人)을 이미 방면하도록 하였다면 김수동(金壽童)은 돌아오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였는데, 노사신은 아뢰기를,
“김수동이 이미 갔습니다. 왜인이 황두(黃豆)를 빼앗은 것과 포획(捕獲)한 절차(節次)를 상세히 국문하게 한다면, 비단 이열(李烈)뿐 아니라 아마도 이열

悌臣所啓，明非賊倭，乃使臣隨從者也。但無文引、射官，深入村居，奪民黃豆，在國法，當以賊論。然此輩，非恒居之倭，安知禁約？不可一以法責之。承朝廷之命，特令放遣事。令呂承堪，細諭上副官人何如？李烈，不報監司，擅便移囚，殊失邊將之體，請鞫之。”傳曰：“予意亦知其非賊倭。其以此意，下書觀察使。”弼商啓曰：“臣意，倭人既放，金壽童可還來。”思慎啓曰：“壽童，既已往吳，倭人奪豆及捕獲節次，使之詳鞫，則非但李烈恐復有如烈者也。”傳曰：“以所啓，下書于壽童。”

	<p>같은 자가 다시 있을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바를 가지고 김수동에게 하서(下書)하라.” 하였다.</p>	
<p>성종 296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11월 6일 (신묘) 4번째기사</p>	<p>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김제신(金悌臣)·경상좌도 병마 절도사(慶尙左道兵馬節度使) 조숙기(曹淑沂)·경상좌도 수군 절도사(慶尙左道水軍節度使) 여윤철(呂允哲)·경상우도 병마 절도사(慶尙右道兵馬節度使) 신주(辛鑄)·경상우도 수군 절도사(慶尙右道水軍節度使) 황형(黃衡)·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 이종호(李宗顥)·전라도 병마 절도사(全羅道兵馬節度使) 김서형(金瑞衡)·전라좌도 수군 절도사(全羅左道水軍節度使) 이거인(李居仁)·전라우도 수군 절도사(全羅右道水軍節度使) 김훤(金萱)에게 하서(下書)하기를, “국가(國家)가 승평(昇平)한 날이 오래 되어, 변장(邊將)이 심상(尋常)한 데 익숙해져서 방어(防禦)의 조치(措置)가 혹시라도 소우(疏虞)할까 염려스럽다. 더구나 지금 제포 왜인(齊浦倭人)이 어량(魚梁) 등의 일로 조금 불평(不平)하는 마음이 있으니, 연변(沿邊)의 첨사(僉使)·만호(萬戶)는 마땅히 적합한 사람을 가려서 쓰도록 하라. 그리고 경(卿)은 형적(形迹)을 드러내지 말고 병마 절도사(兵馬節度使)와 더불어 평상시 순심(巡審)하는 예(例)에 의하여 경상도(慶尙道) 염포(鹽浦)에서의 서쪽과 전라도(全羅道) 진도(珍島)에서의 동쪽 여러 포(浦)의 첨사·만호의 방어(防禦)하는 형지(形止) 및 그 임무를 능히 감당하는가의 여부(與否)를 함께 살펴보고 상세하게 갖추어, 아무아무는 능히 감당하고 아무아무는 감당하지 못하며, 아무아무는 가히 내지(內地)와 더불어 서로 바꿀 만하다는 것을 개록(開錄)하여 치계(馳啓)하라.” 하였다.</p>	<p>○下書慶尙道觀察使金悌臣、左道兵馬節度使曹淑沂、水軍節度使呂允哲、右道兵馬節度使辛鑄、水軍節度使黃衡、全羅道觀察使李宗顥、兵馬節度使金瑞衡、左道水軍節度使李居仁、右道水軍節度使金萱曰：“國家，昇平日久，邊將狃於尋常，防禦措置，慮或疎虞。況今齊浦倭人，以魚梁等事，稍有不平之心。沿邊僉使、萬戶，當擇其人而用之。卿其不露形迹，與兵馬節度使，依常時巡審之例，慶尙鹽浦以西，全羅珍島以東，諸浦僉使、萬戶防禦形止，及能堪其任與否，備細同審，某某能堪，某某不堪，某某可與內地相換，開錄馳啓。”</p>
<p>성종 296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11월 11</p>	<p>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김자송(金自松) 등이 몰래 바다를 건너 해랑도(海浪島)에 들어가 물소[水牛]를 잡아 가죽과 고기를 싣고서 온 죄는 율(律)이 참부대시(斬不待時)28272)</p>	<p>○丙申/義禁府啓：“金自松等，潛渡海，入海浪島，捕水牛，載皮肉而來，罪律該斬不待時。”命議之。尹弼商、李</p>

<p>일(병신) 1번째기사</p>	<p>에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여 이를 의논하도록 하였다. 윤필상(尹弼商)·이극배(李克培)·노사신(盧思愼)·한치형(韓致亨)·정문형(鄭文炯)·유지(柳淸)가 의논하기를, “이 앞서 김비라(金飛羅) 등을 감사(減死)28273) 하였는데, 지금 김자송의 죄는 그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청컨대 감사(減死)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p>	<p>克培、盧思愼、韓致亨、鄭文炯、柳淸議：“前此金飛羅等減死。今自松之罪，與彼無異，請減死。”傳曰：“可。”</p>
<p>성종 296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弘治) 7년) 11월 15일(경자) 2번째기사</p>	<p>명하여 금일(今日) 의득(議得)한 재상(宰相) 및 입직(入直)한 제장(諸將)·도총관(都總管)·병조(兵曹), 사옹원(司饗院)·상의원(尙衣院) 제조(提調), 승정원(承政院)·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의 관원을 대접하도록 하였다.</p>	<p>○命饋今日議得宰相及入直諸將·都總管·兵曹、司饗院·尙衣院提調、承政院·弘文館·藝文館員。</p>
<p>성종 296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弘治) 7년) 11월 24일(기유) 3번째기사</p>	<p>형조(刑曹)에서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선산(善山)에 사는 양인(良人) 최밀동(崔密同)이 문서(文書) 지키는 역(役)을 싫어하고 괴롭게 여겨서 서원(書員) 김택(金澤)에게 청하여 패자(牌字)28359)를 받고는 강구지(姜仇知)·철손(哲孫)으로 이를 대신토록 하면서 아마도 신임을 받지 못할 듯하므로 인신(印信)을 위로(僞造)해 답하(踏下)한 것은 법(法)에 처참(處斬)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위조한 인신은 곧 나뭇가지로써 사면(四面)을 만들고 호초(蒿草)28360) 로써 붉은 빛을 칠하여 살짝 도화(圖畫)한 것과 같으니, 인문(印文)의 유(類)는 아닙니다. 사죄(死罪)로써 논(論)하는 것은 아마도 미온(未穩)한 듯합니다.” 하니, 명하여 대신(大臣)에게 의논하도록 하였다. 윤필상(尹弼商)이 의논하기를, “율(律)이 있는 본의(未意)는 인문(印文)이 형태를 이루고 행용(行用)하여 이득을 얻었으면 곧 참(斬)하는 것입니다. 최밀동(崔密同)이 범한 바는 서어(齟</p>	<p>○刑曹據慶尙道觀察使啓本啓：“善山居良人崔密同，厭若守文書之役，請于書員金澤，受牌字，以姜仇知、哲孫代之，恐不見信，僞造印信踏下，法當處斬。然其僞造印信，乃以木枝，作四面以蒿草塗朱，微似圖畫，不類印文，論以死罪，恐未穩。”命議于大臣，尹弼商議：“在律本意，印文成形，行用得利，乃斬。密同所犯，齟齬太甚，其情，亦不爲得財，只爲避役，以疑獄論斷何如？”李克培、盧思愼、尹壕、韓致亨、鄭文炯議：“密同罪，與印信僞造者有間，以疑獄論定何如？”尹孝孫議：“密同，欲免一時不緊之役，以</p>

	<p>齷)28361) 가 너무 심하니, 그 정상(情狀) 또한 재리(財利)를 얻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역(避役)하려 하였으니, 의옥(疑獄)28362) 으로 논단(論斷)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고, 이극배(李克培)·노사신(盧思愼)·윤호(尹壕)·한치형(韓致亨)·정문형(鄭文炯)은 의논하기를,</p> <p>“최밀동(崔密同)의 죄는 인신(印信)을 위조(僞造)한 자와 더불어 사이가 있으니, 의옥(疑獄)으로 논정(論定)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고, 윤효손(尹孝孫)은 의논하기를,</p> <p>“최밀동이 한때의 불건(不緊)한 역(役)을 면하려고 하여 나뭇가지와 쭉으로써 붉은 빛을 칠하여 사용하였으니, 특히 세민(細民)28363) 의 무지(無知)가 범한 것뿐입니다. 죄가 의심스러운 것은 가볍게 처벌하라 하였습니다. 엇드려 생각건대 성상께서 재단(裁斷)하소서.”</p> <p>하니, 명하여 감사(減死)28364) 하게 하였다.</p>	<p>木枝藁草，塗朱用之，特細民無知所犯耳。罪疑惟輕，伏惟上裁。” 命減死。</p>
<p>성종 296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11월 25 일(경술) 2번째기사</p>	<p>신승선(愼承善)을 대광 보국 승록 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 우의정(議政府右議政)으로, 정문형(鄭文炯)을 승정 대부(崇政大夫) 의정부 우찬성(議政府右贊成)으로, 이자견(李自堅)을 승의랑(承議郎) 사간원 정원(司諫院正言)으로, 이양(李良)을 통정 대부(通政大夫) 의주 목사(義州牧使)로, 조간(曹幹)을 가선 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삼았다.</p> <p>사신이 논평하기를, “신승선(愼承善)은 용렬[闕茸]하고 무능(無能)하며유유(唯唯)28366) 하여 구용(苟容)28367) 하니, 참으로 이른바 죽반승(粥飯僧)28368) 이다.” 하였다.</p>	<p>○以愼承善爲大匡輔國崇祿議政府右議政，鄭文炯崇政議政府右贊成，李自堅承議司諫院正言，李良通政義州牧使，曹幹嘉善同知中樞府事。</p> <p>【史臣曰：“承善，闕茸無能，唯唯苟容，眞所謂粥飯僧也。”】</p>
<p>성종 296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11월 30 일(을묘) 2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 전교하기를,</p> <p>“완원군(完原君) 이수(李暉)가 견성군(甄城君) 이돈(李惇)의 혼인을 주장하니, 쌀 40석(碩)과 콩 20석(碩)을 내리라.”</p> <p>하였다.</p>	<p>○傳于戶曹曰：“完原君暉，主甄城君惇之婚，其賜米四十碩，豆二十碩。”</p>
<p>성종 297권, 25년</p>	<p>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p>	<p>○傳于承政院曰：“今年凶歉太甚，遠</p>

<p>(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12월 2일 (정사) 2번째기사</p>	<p>“금년은 크게 흉년이 들었으니, 먼 지방의 우인(優人)28378) 이 양식을 싸가지고 와서 모이면, 반드시 간고(艱苦)한 폐단이 있을 것이다. 단지 역귀(疫鬼)만 쫓고 나희(儼戲)는 정지하도록 하라.” 하였다.</p>	<p>方優人贏糧來會，必有艱苦之弊，只逐疫，停儼戲。”</p>
<p>성종 297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12월 5일 (경신) 2번째기사</p>	<p>의금부 판사(義禁府判事) 이극균(李克均) 등이 와서 아뢰기를, “신 등이 생각하건대 경이(景伊)가 고한 바는 증험(證驗)할 만한 증거가 없고, 박연생(朴延生)과 송이(松伊)가 비록 경이에게 유혹당했다고 말하더라도 또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아울러 형신(刑訊)하기를 청한 것입니다. 또 일이 무신년(28383)에 있었고, 여러 번 대사(大赦)를 지냈는데, 사문(赦文)에 이르기를, ‘이미 결정(結正)된 것이나 아직 결정(結正)되지 아니한 것이나 모두 용서해 없앤다.’고 하였으니, 크게 신의(信義)를 펴는 바이므로, 추론(追論)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같은 추위에 혹시 자신의 허물이 아닌데도 죽는 자가 있다면, 이는 백성에게 신의를 잃는 것이며, 성덕(聖德)에 누(累)가 되는 것입니다.” 하였다는데, 전교하기를, “지금 만약 폐기한다면 윤은로(尹殷老)를 방납(防納)으로 논하는 것인가?” 하니, 이극균이 아뢰기를, “경이가 보복하기를 피하려고 하나 고하는 바가 진실되지 못합니다. 그 말에 이르기를, ‘면포 1백 필로 대구어(大口魚) 3천 1백 미(尾)를 사서 방납하였다.’고 하였지만, 신은 1백 필의 면포로 어떻게 3천 1백 미의 대구어를 살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납한 형상이 비록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사유(赦宥)를 거치면 마땅히 추론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드러나지 아니한 것이겠습니까?” 하자, 전교하기를, “일이 사전(赦前)에 있었으니 애초부터 청리(聽理)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헌부(司憲府)에서 ‘재상이 방납한 일을 가볍게 폐기할 수 없다.’고 말하</p>	<p>○義禁府判事李克均等來啓曰：“臣等意景伊所告，無證可驗。 延生、松伊雖曰被景伊教誘，亦無證，故請竝刑訊耳。 且事在戊申年，累經大赦，赦文云：‘已結正、未結正，咸宥除之。’ 所以布大信也，不宜追論。 況如此沍寒，或有死非其辜者，則是失信於民，而爲聖德之累也。” 傳曰：“今若棄之，則殷老，論以防納歟。” 克均曰：“景伊謀欲報復，而所告不實。 其曰：‘以緜布一百匹， 買大口魚三千一百尾防納。’ 臣意以謂：‘以百匹綿布，何以買三千一百尾魚乎?’ 防納之狀雖著，如經赦宥，不宜追論，況未著乎。” 傳曰：“事在赦前，初不當聽理，然憲府以爲：‘宰相防納之事，不可輕棄。’ 故令推鞠耳。 如此隆寒，或死杖下，則不可也，其竝棄之。”</p>

	였기 때문에 추국(推鞠)하게 한 것이다. 이같이 몹시 추운 때에 흑 장하(杖下)에서 죽는다면 옳지 못하니, 아울러 폐기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 297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12월 6일 (신유) 1번째기사	주서(注書)·사관(史官) 및 중관(中官)에게 명하여 술을 가지고 동빙고(東氷庫)와 서빙고(西氷庫)에 따로 가서 감역관(監役官)과 군인(軍人)을 먹이게 하고, 선온(宣醢)28385) 을 제조(提調)에게 내려 주게 하였다.	○辛酉/命注書、史官及中官齋酒， 分往東西氷庫，饋監役官及軍人，賜宣醢于提調。
성종 297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12월 7일 (임술) 4번째기사	선온(宣醢)을 승정원(承政院)과 홍문관(弘文館)에 내려 주었다.	○賜宣醢于承政院及弘文館。
성종 297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12월 10일(을축) 2번째기사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명년에는 마땅히 회례연(會禮宴)28412) 을 행하겠지만, 올해는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많이 굶주리니, 연수(宴需)28413) 가 부족할 것이므로 잔치를 정지하려고 하는데, 어떠하겠는가?” 하였는데, 승지(承旨)들이 아뢰기를, “금년에 제도(諸道)가 모두 흉년이 든 것이 아니고, 단지 경기(京畿)만이 농사가 부실(不實)할 뿐입니다. 그리고 연수(宴需)도 매우 많지 아니하고, 또 회례연(會禮宴)은 1년에 단 한 번뿐이며, 이는 진실로 큰 예식이므로, 행하는 것이 매우 옳겠습니다. 다만 두렵건대 성상의 몸이 비록 강녕(康寧)하시더라도 정조(正朝)를 계산하면 겨우 20일이 격하였는데, 수고로이 움직이시기가 어려우니, 정지하는 것이 적당할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비록 편찮더라도 나아갈 수는 있다. 다만 지금 흉년인데, 홀로 즐길 수 없으니, 이를 정지하도록 하라.” 하였다.	○傳于承政院曰：“明年當行會禮宴，但今年凶歉，民多飢饉，而宴需不貲，欲停宴何如？”承旨等啓曰：“今年諸道非盡凶歉，但京畿農事不實耳。宴需亦不甚多，且會禮宴一年只一度，此誠大禮，行之甚可。第恐上體雖康寧，計正朝只隔二十日，難以勞動，停之似便。”傳曰：“予雖未寧，猶可以御之。但今凶歉，不可獨樂，其停之。”

성종 297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12월 11
일(병인) 2번째기사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의(李誼) 등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윤민(尹愨) 등이 상소하기를,
 “인신(人臣)의 죄는 기망(欺罔)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른 것을 옳다고 하여, 인주(人主)의 이목을 덮고 가리며 인주의 심지(心志)를 현혹시키는데, 인주(人主)가 된 사람이 그 덮고 가리며 현혹시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일이 비록 그르다 하더라도 옳다고 하고 그 자취가 비록 옳다고 하더라도 그르다고 하여, 옳고 그름이 뒤바뀌고 선(善)과 악(惡)이 뒤섞이게 될 것이니,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윤은로(尹殷老)는 폐부(肺腑)의 지친(至親)으로 본래부터 염치(廉恥)가 없어서 기회를 이용하여 이(利)를 취하는 것은 상고(商賈)28415) 와 같고 좌우로 이(利)를 거두어 들이는 것은 농단(隴斷)28416) 하는 것보다도 심합니다. 몇해 전에는 선박(船舶)을 방납(防納)한 사실이 이미 드러났고, 추안(推案)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의금부(義禁府)로 옮겨서 <죄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윤은로를 위한 계책이란 마땅히 전의 잘못을 누우쳐서 조심하고 근신하여 변굉(樊宏)28417) 의 충근(忠謹)으로 자신을 지키는 것으로 법(法)을 삼고, 전분(田蚡)28418) 이 고을의 기물(器物)을 매매한 일을 경계로 삼아서 성은(聖恩)에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기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물(魚物)을 방납(防納)한 일이 발각된 때를 당하여 의당 전폐(殿階) 아래에 자수(自首)하여야 할 것인데, 도리어 명백한 일을 교묘히 엮어매고 꾸몄으며, 의금부로 옮기려고 아내로 하여금 상언(上言)하게 하여 천총(天聰)을 기망(欺罔)하였습니다. 이는 지난날 면죄(免罪)받은 것을 다행으로 여겨 지금 다시 이와 같이 한 것이니, 그 우악스럽게 탐하고 부끄러움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곧 의금부로 옮기게 하셨으니, 윤은로의 간사한 꾀가 이에 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의금부에서도 그 간사함을 끝까지 추궁하지 아니하고 성상의 뜻에 봉영(逢迎)하여 국문하고, 척리(戚里)에 아부하며 비호(庇護)하여 저

○司憲府大司憲李誼等、司諫院大司諫尹愨等上疏曰：
 人臣之罪莫大於欺罔。 以是爲非、以非爲是、蒙蔽人主之耳目、眩惑人主之心志、爲人主者不知蒙蔽眩惑、則其事雖非以爲是、其跡雖是以爲非、是非顛倒、善惡混雜、而莫之辨也。 今殷老以肺腑之親、素無廉恥乘時射利、有同商賈、左右罔利甚於隴斷。 頃年船舶防納、事跡已露、推案已成、移禁府得免。 爲殷老計者、固當悔前之非、小心謹慎、以樊宏之忠謹自持爲法、以田蚡之市買郡縣器物爲戒、圖報聖恩之萬一也。 今當魚物防納事發之時、固當自首於殿陛之下、顧將昭昭之事、構會巧飾、欲移禁府教妻上言、欺罔天聰。 是幸其前日之得免、而今復如此、其頑貪無恥可知、殿下卽移禁府、殷老之姦計於是又得矣。 禁府亦不窮竟其姦、逢迎聖意而鞠之、諂附戚里而庇之、舍彼已服之人、獨訊景伊至三至四、將欲滅其口、而掩其跡也。 豈意輦轂之下、有此欺罔之事乎? 中外之人必相謂曰：‘殿下私庇戚畹也、私有罪人也。’ 有勢者脫罪、無罪者罹辜、至於是非不

이미 승복(承服)한 사람은 버려두고 유독 경이(景伊)만 서너 차례 형신(刑訊) 하였으니, 장차 그 입을 완전히 막아 그 자취를 덮어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연곡(輦轂) 아래서 이와 같이 기망하는 일이 있을 것을 생각하였겠습니까? 중외(中外) 사람들이 반드시 서로 말하기를, ‘전하께서 척완(戚畹)을 사사로이 비호하여 죄인을 사사로이 용서하셨다.’고 할 것입니다. 세력이 있는 자가 죄에서 벗어나고 죄가 없는 자가 형벌에 걸려들어서 시비(是非)가 공정하지 못한 데 이르고, 형벌이 마땅하지 못한 데 이룬다면, 신 등은 사문(私門)이 날마다 열리고 공도(公道)가 모두 폐해질까 두렵습니다.

전교에 이르시기를, ‘일이 사유(赦宥) 전에 있었으면 본래 추국(推鞠)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비록 추국한다 하더라도 사면(赦免)에 해당하면 폐기한다.’고 하셨는데, 신 등은 무지한 소민(小民)의 일이라면 사유 전의 일이라 하여 버려두는 것이 좋겠지만, 대신(大臣)의 방납(防納)은 풍속에 관계되므로, 진실로 마땅히 끝까지 추국하여 중외에 밝게 펴서 사대부(士大夫)로 하여금 탐독(貪黷)의 수치스러움과 금방(禁防)의 넘을 수 없음을 알게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교에 이르시기를, ‘지금 만약 다시 추고(推鞠)하더라도 경이(景伊)는 원래 사죄(死罪)가 아니기 때문에 버려둔다.’고 하셨으니, 성상의 흠恤(欽恤)하시는 뜻이 지극하십니다. 그러나 경이의 진소(陳訴)가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관련되어 체포된 자가 날날이 말한 실정이 어찌 경이가 말한 바와 같겠습니까? 그리고 경이의 말이 이미 사실이라면 어찌 반드시 다시 형신(刑訊)한 뒤에야 그 실정을 알겠습니까? 맹헌자(孟獻子)28419)가 말하기를, ‘취렴(聚斂)하는 신하를 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도둑질하는 신하를 두는 것이 낫다.’고 하였으니, 취렴의 탐하는 것이 방납하는 죄만 같지 못합니다. <죄가> 이미 심한데 이제 또 기망하였으니, 다스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법은 천하의 공기(公器)이다. 법을 잘 집행하는 자는 친소(親疎)가 한결같아 행하지 아니하는 바가 없으니, 사람이 감히 믿고 법을 범하지 못한

公、刑罰不中，臣等恐私門日開、公道盡廢也。 教云：‘事在赦前則本不推之，雖推之，在赦則棄之。’ 臣等以爲無知小民之事，以赦前置之可也，大臣防納有關風俗，固當窮推昭布中外，使士大夫知貪黷之爲恥，而禁防之不可踰也。 教云：‘今若更推鞠，景伊元非死罪故棄之。’ 聖上欽恤之意至矣。 然景伊陳訴如非其實，則辭逮者，於憲府安有一一輸情，如景伊所言耶？ 景伊之言已實，何必更訊而後得其情乎？ 孟獻子曰：‘與其有聚斂之臣，寧有盜臣。’ 聚斂之貪，不如防納之罪，既已甚矣，今又欺罔，不可不治。 古人云：‘法者，天下之公器也，善持法者親疎如一，無所不行，則人莫敢有所恃而犯之也。’ 伏願殿下，勿以戚畹而私之，勿以大臣而貫之，痛治其欺罔逢迎之罪，以伸公道。

傳曰：“予出言，爾等輒以爲有私，予復何言？ 其更下憲府，使之成罪歟？ 今若更鞠，則當鞠某某人耶？ 其問義禁府堂上。”

	<p>다.’고 하였습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척완(戚畹)이라 하여 사사로이 하지 마시고 대신이라 하여 용서하지 마시어, 그 기망(欺罔)하고 봉영(逢迎)하는 죄를 엄하게 다스려 공도(公道)를 펴게 하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p> <p>“내가 말을 하면 그대들이 곧 사사로움이 있다고 하니, 내가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것을 다시 헌부(憲府)에 내려 죄(罪)를 이루도록 해야 하겠는가? 그리고 이제 만약 다시 국문한다면 누구누구를 마땅히 국문해야 할 것인가? 이를 의금부 당상(義禁府堂上)에게 묻도록 하라.”</p> <p>하였다.</p>	
<p>성종 297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12월 12 일(정묘) 1번째기사</p>	<p>의정부 좌의정(議政府左議政) 노사신(盧思愼) 등이 와서 아뢰기를,</p> <p>“요사이 성상께서 편찮으시어 오랫동안 군신(群臣)을 접견하지 아니하시니, 성체(聖體)가 어떠하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또 약이(藥餌)는 마땅히 여러 의원에게 널리 물으신 후에 올리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내가 과연 해수(咳嗽)와 설사 증세가 있었는데, 이제 나아 가므로 일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조금 바람과 추위를 당하면 기운이 불평(不平)한 듯하고, 또 다리의 힘이 마비되어 연약하고 살이 여위었으니, 만약 여러 신하에게 나아갈 때에 혹시 넘어지면 자못 체모가 없을 것이다. 이에 조보(調保)하여 평상으로 회복되기를 기다리려고 한다. 약이(藥餌)는 송흙(宋欽) 등에게 물어서 복용하니, 어찌 잘못 올릴 이치가 있겠는가? 또 양전(量田)28420) 은 어사(御史)를 아직 더 보내지 말고, 김율(金律) 등이 올라오기를 기다린 뒤에 대신을 보내어 개량(改量)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p> <p>하였는데, 노사신 등이 아뢰기를,</p> <p>“김율 등이 개량한 곳에 착오된 것을 알 수 있으니, 상교(上敎)가 진실로 마땅하십니다.”</p>	<p>○丁卯/議政府左議政盧思愼等來啓曰：“近日上違豫，久不接群臣，未審聖體何如。且藥餌當廣問諸醫，然後可進。”傳曰：“予果患咳嗽洩瀉證，今則向愈可以視事，然少遇風寒，氣似不平。且脚力痿軟肌膚消瘦，若御群臣之時，如或蹉跌殊無體貌，茲欲調保以待平常耳。藥餌已聞諸宋欽等服之，豈有誤進之理乎？且量田御史姑勿加遣，待金律等上來，然後遣大臣改量何如？”思愼等啓曰：“以金律等改量處，可以知錯誤矣。上教允當。”傳曰：“金律等勿加改量，斯速上來。”</p>

	<p>하니, 전교하기를, “김을 등은 더 개량하지 말고 속히 올라오도록 하라.” 하였다.</p>	
<p>성종 297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12월 12 일(정묘) 3번째기사</p>	<p>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의(李誼) 등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윤민(尹愨) 등이 상소하기를, “재물을 탐하고 이(利)를 좋아하는 것은 사류(士類)의 추행(醜行)이고 기망(欺罔)하고 봉영(逢迎)하는 것은 신하의 대악(大惡)인데, 임금이 만약 그 죄를 명백하게 바로잡지 않는다면, 법이 허물어지고 기강(紀綱)이 어지러워져서 나라가 그 나라의 구실을 못할 것입니다. 지금 윤은로(尹殷老)는 계급이 덕으로써 천거된 것이 아니고 작위(爵位)가 은혜로써 오른 것인데, 탐탁(貪濁)하여 재물을 좋아하는 욕심은 계학(溪壑)28421) 과 같고, 비린(鄙吝)하여 이익을 계산하는 마음은 호리(毫利)를 다투어서 이(利)가 있는 곳이면 무엇이든 하지 아니하는 바가 없습니다. 이미 선박(船舶)을 방납하여 그 집안에 이익을 더하였고, 또 어물(魚物)을 방납하여 첩(妾)의 집을 샀으므로 사람들의 더럽게 여기는 바가 되었으나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니, 금(金)을 보고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윤은로가 감히 방자하고 꺼림이 없는 것은 전하께서 사사로이 친밀하게 여기시는 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군현(郡縣)에서 순종하고 거스르지 못하는 것은 척리(戚里)의 불꽃 같은 세력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윤은로가 전하의 은혜와 세력으로써 한 집안의 이(利)를 취하는 바탕으로 삼으니, 비록 교만 방자하여 군현(郡縣)의 기물(器物)을 팔아먹은 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이보다 더할 수 있겠습니까? 대신은 한 가지 불의(不義)를 행하면 속으로 자책하는 것이 가하며, 만약 발각되면 실정을 말하여 죄를 승복(承服)하는 것이 또한 가합니다. 그런데 감히 명백한 허물을 교묘한 말로 꾸며대어 천청(天聽)을 모독하였는데도, 전하께서는 죄를 가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은유(恩宥)를 베푸셨으니, 누가 ‘전하께서 외척(外戚)을 사사롭게</p>	<p>○司憲府大司憲李誼等、司諫院大司諫尹愨等上疏曰： 貪財嗜利，士類之醜行。欺罔逢迎，人臣之大惡。人君苟不能明正其罪，則毀法亂紀，而國非其國矣。今者殷老階非德舉，爵以恩升，貪濁好貨之欲，有同溪壑。鄙吝計利之心，細入秋毫，利之所在，何所不爲？既防船舶，附益其家，又防魚物買卜妾舍，爲人所鄙而不知恥，何異乎見金而不見人也？殷老之敢肆無忌者，恃殿下私昵之恩也。郡縣之順從無忤者，畏戚里熏灼之勢也。是殷老以殿下恩勢，爲一家取利之資，雖驕橫自恣，市買〔郡〕縣器物者，何以加諸？大臣行一不義，則內自訟焉可也。苟有發覺，則輸情服罪亦可也。而敢以昭昭白過，巧飾其辭，冒干天聰，殿下罪則不加，反施恩宥，孰不謂：“殿下私於外戚，而墜殷老之邪謀乎？”人臣之罪莫大於欺罔，釋此不治，使長驕佚，則臣等恐梁冀、竇憲之惡，自此稔矣。《書》</p>

하여 윤은로의 간사한 꾀에 떨어졌다.’고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신하의 죄는 기망(欺罔)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는데, 이를 용서하고 다스리지 아니하여 교만 방자함을 자라나게 한다면, 신 등은 양기(梁冀)28422) 와 두헌(竇憲)28423) 의 악함이 이로부터 쌓이게 될까 두렵습니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은(殷)나라 백성이 죄가 있으면, 내가 벌하라고 하더라도 벌하지 말고, 내가 용서하라고 하더라도 용서하지 말며, 오로지 그것을 공정하게 하라.’고 하였으니, 옥사(獄事)는 진실로 공평무사[平恕]하게 하여야 마땅합니다. 또 이르기를, ‘양쪽의 소송인이 구비(俱備)되거든 옥관(獄官)은 다섯 가지 형벌에 관한 공사(供辭)를 듣는다.’고 하였으니, 추국(推鞠)은 마땅히 상밀(詳密)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윤은로의 죄는 사헌부의 추안(推案)에 이미 밝게 드러났는데, 의금부(義禁府)에서 공공연히 석방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윤은로가 초방(椒房)의 지친(至親)이 되므로 전하께서 사정을 두지 않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이(景伊)에게 조금도 어긋나는 단서가 없는데도 여러 번 형장(刑杖)을 가한 것은, 그 입을 완전히 막으려 한 것이며, 박연생(朴延生) 등은 어긋난 말이 있는데도 도리어 끝까지 힐문(詰問)하지 아니한 것은 실언[逸口]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사로운 뜻을 품고 그릇되게 언의(讞議)함이 이미 이와 같으니, 이른바 ‘옥사를 다스리기를 공평 무사하게 하고, 추국을 상밀(詳密)하게 한다.’는 것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경이(景伊)를 장신(杖訊)하게 하라는 명령을 한 번 내리자, 의금부에서는 세 차례 네 차례 더하기를 청하여 그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성상의 뜻을 교묘히 엿보아서 국법을 가볍게 여겨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윤은로를 비호하고 전하의 뜻을 봉영(逢迎)한 것이 어찌 명백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엿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사사로우므로 공도(公道)를 폐하지 마시고 은혜로써 허물을 덮지 마시어, 탐오(貪汚)한 사실을 끝까지 다스려서 사풍(士風)을 진작(振作)시키고 기망(欺罔)하고 봉영한 죄를 엄

曰：“殷民在辟，予曰辟勿辟，予曰宥勿宥，惟厥中。”則治獄，固當平恕也。又曰：“兩造俱備，師聽五辭。”則推鞠固當詳密也。殷老之罪於憲府推案，固已著明，禁府公然縱釋，是必以殷老爲椒房至親，謂殿下不得無私也。景伊略無違端，而累加刑杖者，欲滅其口也。延生等多有錯辭，而反不窮詰者，恐有逸口也。懷私錯讞既已如此，所謂：“治獄之平恕，推鞠之詳密，”果安在乎？今杖景伊之命一下，而禁府請加三四次而不已，是巧覘上意，而輕撓國典也。其私庇殷老，逢迎殿下之意，豈不白哉？伏願殿下，勿以私廢公，勿以恩掩過，窮治貪汚之狀，以振士風。痛繩欺罔逢迎之罪，以厲臣節。

傳曰：“議諸大臣，然後當處之。”

	<p>하게 처벌하여 신하의 절조(節操)를 가다듬게 하소서.”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대신(大臣)들에게 의논하게 한 뒤에 마땅히 처치하겠다.” 하였다.</p>	
<p>성종 297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12월 14 일(기사) 2번째기사</p>	<p>대간(臺諫)이 상소하기를, “신 등이 삼가 살펴보건대 윤은로(尹殷老)는 본래 쇠쇄(瑣瑣)한 천품(賊品)이 고 용렬한 하류(下流)인데도, 척리(戚里)에 인연하여 갑자기 2품에 올랐으니, 지위가 높지 아니한 것이 아니며 녹(祿)이 후하지 아니한 것이 아닙니다. 그 런데 오히려 추호(秋毫)의 이(利)를 계산하여 시정배(市井輩)와 교결(交結)하 여 선척(船隻)을 방납(防納)한 것이 이미 전에 발각되었었는데, 어물(魚物)을 방납한 것이 또 지금 발각 되었으니, 이는 평생 일삼는 바가 다른 데 있지 아 니하고 오로지 이(利)를 헤아리는데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법이 무릇 조관 (朝官)으로서 만약 장오(贓汚)를 범하면 용서하지 못할 죄라고 하여, 비록 사 유 전에 있었던 일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법에 저촉시켜 조금도 용서하지 아 니하였는데, 지금 윤은로는 높은 품계의 재상으로서 방납한 죄를 두 번이나 범하였으니, 그 죄가 장오보다 심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다스리지 아니하 면, 이는 장오의 법이 오로지 다른 사람에게만 시행되고, 윤은로에게는 시행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박연생(朴延生)과 송이(松伊)는 윤은로의 심복(心腹) 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정이 드러나고 거짓이 밝혀졌는데도, 그 악함 을 숨기려고 하였지만, 마침내 숨기지 못하게 되자 사헌부(司憲府)에서 추국 (推鞠)하던 날에 방납한 형상(形狀)을 날날이 승복(承服)하니, 두 사람의 말이 꺾이지 아니하였으나 일치하였습니다. 이에 윤은로는 그 죄를 피하기 어렵다 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백 가지 방법으로 교묘하게 꾸며대어 법관(法官) 에게 허물을 돌리고, 의금부(義禁府)로 옮겨서 천총(天聰)을 기망(欺罔)하였으 니, 죄로서 무엇이 이보다 크겠습니까? 그리고 의금부에서는 윤은로가 방납한</p>	<p>○臺諫上疏曰： 臣等謹按殷老本一瑣瑣賤品，庸庸下 流，夤緣戚里驟陞二品，位非不高，祿 非不厚，而猶且計利秋毫，交結市井， 船隻防納，既發於前。魚物防納，又 發於今，是平生所業，不在於他，而專 在計利也。國法，凡朝官苟犯贓汚， 則以爲不赦之罪，雖在赦前，必抵於 法，曾不少寬，今殷老以崇秩宰相，再 犯防納之罪，其罪有甚於贓汚。今若 不治，是贓汚之法獨行於他，而不行於 殷老也。延生、松伊，殷老腹心之人， 然情現詐明，欲掩其惡而卒不可掩，於 憲府推鞠之日，防納形狀一一承服，二 人之辭不謀而同，於是殷老自知其罪之 難逃，巧飾百端歸咎法官，移於禁府， 欺罔天聰，罪孰大焉？禁府不覈殷老防 納眞僞，而獨於景伊，以訴告無證累加 杖訊，臣等未知有何疑端，而拷掠至此 乎？當初事干拿致之時，殿下已下拷訊 景伊之命，臣等未審何謂也。禁府堂</p>

진위(眞僞)는 핵실하지 아니하고 오직 경이(景伊)에게만 소고(訴告)28424) 에 증거가 없다 하여 여러 번 장신(杖訊)을 더 하였으니, 신 등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의심스러운 단서가 있어서 고략(拷掠)이 이에 이르렀던 것입니까? 당초 일에 관계된 사람을 나치(拿致)할 때에 전하께서 이미 경이를 고신(拷訊)하라는 명령을 내리셨는데, 신 등은 무엇을 이르는 것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의금부 당상(義禁府堂上)은 모두 대신(大臣)이니 전하의 이 명령이 마땅한지 아니한지를 어찌 알지 못하겠습니까마는, 아첨하며 순종함이 이에 이르렀으니, 이를 대신이라고 일컬을 수 있겠습니까? 박연생과 송이가 사헌부에 이미 승복(承服)하였으니, 의금부 당상도 귀가 있다면 어찌 듣지 못하였겠습니까? 그런데 즉시 사헌부 국안(鞫案)을 취하여 상고하지 아니한 것은 바로 윤은로의 방납한 사실을 덮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 추안(推案)의 말을 보건대 아이들의 장난과 같으니, 어찌 조옥(詔獄)으로 조정을 우롱(愚弄)하는 것이 이와 같이 심할 줄 생각하였겠습니까? 또 박연생과 송이는 전일에 승복(承服)한 것은 경이(景伊)가 꾀는 말에 협박을 받아 거짓으로 이웃 사람을 끌어대어 증거를 삼았다고 하였으나, 이웃 사람이 모두 알지 못한다고 말하였으며, 문장수(文長守)가 공초(供招)한 바 면포(綿布)의 출처는 앞뒤가 서로 어긋나니, 거짓으로 꾸민 것이 더욱 드러난 것입니다. 무릇 이와 같은 것을 의금부에서는 모두 폐기한 채 묻지 아니하고, 곧 사유 전의 일이므로 추국하기 어렵다는 말로써 취품(取稟)하였으니, 봉영(逢迎)함이 심합니다. 그리고 전하께서 하문(下問)하시던 날에 이르러서는 또 따라서 말하기를, ‘윤은로가 어찌 백 필(匹)의 면포를 위하여 방납하였겠습니까?’ 하였으나, 윤은로는 비부(鄙夫)이므로, 이(利)가 있는 곳이면 하찮은 것도 계산하고 탕화(湯火)28425) 에도 뛰어 들어갈 자입니다. 그 탐탁(貪濁)함은 사대부(士大夫)뿐만 아니라, 여항(閭巷)의 세민(細民)들도 모두 아는데, 어찌 이극균(李克均)·이계동(李季全)·박건(朴健)이

上皆大臣也，豈不知殿下是命之當否，而阿諛順從，至於如此，是可謂大臣乎？延生、松伊已服於憲府，禁府堂上亦有耳焉，豈不聞之而不卽取考憲府鞫案者，是欲掩殷老防納之實也。觀其案辭有同兒戲，曾謂詔獄而愚弄朝廷，若是甚乎？且延生、松伊以爲前日之服，乃迫於景伊教誘之言，誣引隣人爲證，而隣人皆曰不知，文長守所供綿布出處，前後牴牾，其爲詐飾益者矣。凡此之類，禁府皆棄而不問，乃以赦前難推之說取稟，其爲逢迎甚矣。至於殿下垂問之日，又從而爲之辭曰：“殷老安有爲百匹綿布，爲防納乎？”殷老鄙夫利之所在，錙銖計焉湯火赴焉。其爲貪濁，非徒士夫，閭巷細民亦皆知之，豈以克均、季全、朴健而不知乎？然且曲爲之說，其爲面謾亦甚矣。季全浮浪無節，唯知固寵。朴健觀望左右，依違苟容，不足多責。克均亦靡然從之，附下罔上，殿下乃以此數人，爲大臣而不爲逢迎，臣等不勝痛憤。人臣之罪，莫大於欺罔、莫甚於逢迎，伏願殿下，明正其罪。傳曰：“殷老之陷於財利，予何知之？

	<p>알지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왜곡하여 말하였으니, 면전에서 아침함이 또한 심한 것입니다. 이계동은 부랑(浮浪)하여 절조(節操)가 없고 오직 은총(恩寵)을 굳게 하는 것만 아는 자이고, 박건은 좌우를 관망(觀望)하며 우물쭈물 남의 비위를 맞추니, 족히 많이 책(責)할 것이 못되는 자이며, 이극균도 불쫓아 따라서 아래에 아부하고 위를 속인 자인데, 전하께서는 이 몇사람을 대신이 되어 봉영(逢迎)하지 아니한다고 하시니, 신 등은 통분(痛憤)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신하의 죄는 기망(欺罔)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고, 봉영하는 것보다 심한 것이 없으니, 옳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그 죄를 명백하게 바로잡으소서.”</p> <p>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윤은로가 재리(財利)에 빠진 것을 내가 어찌 알겠는가? 상언(上言)한 것을 바야흐로 분변하는 때에 있어서 기망(欺罔)으로 논할 수는 없다. 박건(朴楬)과 이계동(李季全)을 배척해 말하여 반드시 경알(傾軋)28426) 하려고 하니, 이것이 어찌 옳겠는가? 내가 그웁이 마음이 아프다.”</p> <p>하였다.</p>	<p>其上言方在分辨之時，不可論以欺罔也。斥言朴楬、李季全，必欲傾軋，是豈可乎？予竊痛心。”</p>
<p>성종 297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弘治) 7년) 12월 16일(신미) 3번째기사</p>	<p>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의(李誼) 등과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이자견(李自堅) 등이 와서 아뢰기를, “어제 천교(天教)가 정녕(丁寧)하시었으나, 신 등이 반복해 생각하건대 윤은로(尹殷老)가 은혜를 무시하고 기망(欺罔)한 것과 의금부(義禁府)에서 성명(聖明)을 속이고 은총을 굳게 한 죄는 신하로서 차마 할 바가 아니니, 엄하게 다스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좋아하고 미워하시는 데 편벽됨이 없으시고, 형벌과 정사에 치우침이 없으셨는데, 근래에 유사(有司)가 명을 받들어 순종하며 형옥(刑獄)이 마땅함을 잃은 것은 또한 성상께서 통촉하시는 바입니다. 윤은로의 방납(防納)은, ‘썩은 나무는 조각을 할 수 없다.’는 것과 같으니, 족히 책(責)할 것이 못되나, 이른바 대신(大臣)은 도(道)</p>	<p>○司憲府大司憲李誼等、司諫院正言李自堅等，來啓曰：“昨日天教丁寧，臣等反覆思量，殷老狎恩欺罔，禁府欺明固寵之罪，臣子所不思爲，不可不痛治。殿下卽位，以檢好惡無偏刑政無諛，近來有司承順刑獄失中，亦聖上所洞照也。殷老防納，朽木不雕，不足多責，所謂大臣以道事君，繩愆糾違與國咸休，豈可苟容竊寵巧伺迎合，以中上意乎？承善、季全、朴楬皆以大臣，</p>

로써 임금을 섬겨서 허물을 다스리고 어긋남을 규찰(糾察)하여 나라와 더불어 아름다움을 함께 할 것인데, 어찌 남의 비위를 맞추고, 은총을 바라고, 교묘히 엿보고, 영합(迎合)하여 성상의 뜻을 맞추는 것이 옳겠습니까? 신승선(慎承善)·이계동(李季同)·박건(朴健)은 모두 대신으로서 국가의 대체(大體)를 헤아리지 아니하고서 사람의 죄를 내고 들었으며, 이극균(李克均)은 간사한 의논에 붙어서 휩쓸려 위를 속였으니, 그 죄가 이미 지극하여 조금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람을 삼공(三公)으로 삼고 대신으로 삼아서 신임하시니, 신 등은 나라 일이 장차 그릇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대간(臺諫)이 상소한 대략에 이르기를, “신하의 도리는 마땅히 충직(忠直)으로써 임금을 섬겨야 하는 것인데, 만약 임금의 뜻을 엿보고 영합(迎合)하여 자기의 죄를 비호하며 꾸민다면, 이는 바로 공자(孔子)가 이른바, ‘비루한 사람과 함께 임금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齊)나라 신하가 아대부(阿大夫)를 칭찬하므로 위왕(威王)이 이를 삶아 죽였고, 28428) 고윤(高允) 28429) 이 죄를 짓고 사실을 자수하자 위(魏)나라 태무제(太武帝)가 이를 용서하였습니다. 진실로 기망(欺罔)하는 것은 신하의 큰 죄이니, 임금이 용서할 수 없는 바입니다. 윤은로는 그 죄를 숨기고자 하여 교묘하게 꾸며대어 진소(陳訴)하였으니 죄가 진실로 큰데, 의금부에서는 옳고 그름을 논하지 아니한 채 오직 성상의 뜻만 엿보고, 하문(下問)할 때에 이르러 어물(魚物)의 값이 낮고 높은 것으로써 핑계대었으니, 그 헤아리는 공교(工巧)함이 윤은로의 기망하는 것보다 심합니다. 수(隋)나라 배운(裴蘊)은 임금의 은미한 뜻을 잘 살피서 죄주고자 하는 자는 그 죄를 꾸며만 들고 용서하고자 하는 자는 가벼운 법에 붙여서 따랐는데, 지금 의금부에서도 바로 배운과 같이 옥사(獄辭)를 가볍게 하거나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전하께서 성지(聖智)의 자질(資質)으로써 윤은로의 기망하는 것과 의금부의 봉영(逢迎)하는 것을 어찌 알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도리어 명백한 죄를 면제하

不計國家大體，出入人罪。克均附會邪議靡然罔上，其罪已極不容少寬。殿下以如此人，爲三公爲大臣，而倚任，臣等以爲國事將日非矣。”不聽。臺諫上疏略曰：人臣之道當以忠直事君，若窺伺主意而迎合之，掩護己罪而修飾之，此正孔子所謂：“鄙夫不可與事君者也。”昔齊臣譽阿大夫，威王烹之，高允有罪首實，魏武原之。誠以欺罔人臣之大罪，而人主所不容寬也。殷老欲掩其罪，巧飾陳訴罪固大矣，禁府不論是非，惟上意是覘，至於垂問之時，以魚價低昂誘之，其揣度之工計慮之巧，甚於殷老之欺罔。隋之裴蘊，善候伺其主微意，所欲罪者，則鍛成八罪。所欲宥者，則附從輕典，今禁府正如裴蘊之輕重獄辭。殿下以聖智之資，豈不知殷老之欺罔、禁府之逢迎？而反除白罪，此臣等累日守闕，陳疏而不已者也。伏願殿下，痛治逢迎欺罔之罪。不聽。臺諫更啓曰：“禁府堂上諂附戚里，揣度上意，防納之迹一皆掩覆，彼豈不知獄辭之差、物議之喧？其志不過寧欺殿下，勢之家不可忤也。寧負

	<p>시니, 이것이 신 등이 여러 날 대궐을 지키면서 진소(陳疏)하여 그치지 아니하는 까닭입니다. 엿드려 원하건대 봉영하고 기망하는 죄를 엄하게 다스리소서.”</p> <p>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대간(臺諫)이 다시 아뢰기를, “금부 당상(禁府堂上)이 척리(戚里)에게 붙어서 아침하며 성상의 뜻을 헤아려서 방납(防納)한 자취를 일체 모두 덮고 감추었으나, 저들이 어찌 옥사(獄辭)가 그릇되고 물의(物議)가 떠들썩한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 뜻은 차라리 전하를 속이더라도 권세 있는 집은 거스를 수 없으며, 차라리 물의를 저버리더라도 은총(恩寵)을 굳게 하는 계책은 세밀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데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망하고 봉영하는 것이 이보다 심함이 없으니, 청컨대 그 죄를 밝혀 바로잡으소서.”</p> <p>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p>	<p>物議，固寵之計不可不密也。其欺罔逢迎無甚於此，請明正其罪。”不聽。</p>
<p>성종 297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弘治) 7년) 12월 20일(을해) 1번째기사</p>	<p>내의원 제조(內醫院提調) 윤은로(尹殷老) 등이 문안하니, 전교하기를, “배꼽 밑에 작은 덩어리가 생겼는데, 지난 밤부터 조금씩 아프고 빛깔도 조금 붉다.”</p> <p>하였는데, 윤은로 등이 아뢰기를, “광양군(廣陽君) 이세좌(李世佐)가 항상 이 증세로 앓았으니, 반드시 치료하는 방법을 알 것입니다. 불러서 물어 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자, 전교하기를, “세조(世祖)께서 병환이 나셨을 때에 노사신(盧思愼) 등이 시약(侍藥)하였으니, 반드시 약의 이치를 자세히 알 것이다. 윤필상(尹弼商)·노사신(盧思愼)·임원준(任元濬)·이세좌(李世佐)를 부르도록 하라.”</p> <p>하였다. 이세좌가 와서 아뢰기를, “신이 이 병을 얻은 지 이미 15여 년인데, 별다른 치료하는 방법이 없고 다만 수철(水鐵)과 천년와(千年瓦)를 불에 구워 <그 부위에> 문질렀을 뿐입니</p>	<p>○乙亥/內醫院提調尹殷老等問安，傳曰：“臍下積成小塊，自去夜稍痛，色亦微赤。”殷老等啓曰：“廣陽君李世佐常患是證，必知治理之方，召問何如？傳曰：“世祖不豫時，盧思愼等侍藥，審知藥理，其召尹弼商、盧思愼、任元濬、李世佐。”世佐來啓曰：“臣得此病已十五餘年，別無治理之方，但用水鐵及千年瓦，灸火熨之耳。”</p>

	다.” 하였다.	
성종 297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12월 22 일(정축) 2번째기사	임금이 24일에 장차 사은(謝恩)하는 표문(表文)과 전문(箋文)을 직접 전하러 고 하자,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요즈음 날씨가 춥고 성상께서 아직 회복되지 못하셨으니, 청컨대 대신 전하 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임금이 본래 이질(痢疾)로 편찮은데다가 또 부종(浮腫)을 앓아 진선 (進膳)하지 못한 지 오래 되었는데, 이날 밤 2고(鼓)부터 증후(證候)가 더욱 심하였다.	○上以二十四日， 將親傳謝恩表、箋， 承政院啓曰：“近來日氣寒沍， 上體迨 未平復， 請攝傳。” 傳曰：“可。” 上 素患痢疾又加浮腫， 未進膳久矣， 自是 日夜二鼓， 證候尤劇。
성종 297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12월 23 일(무인) 2번째기사	밤 4고(鼓)에 내의(內醫) 송흠(宋欽)이 승정원(承政院)에 보고하기를, “성상께서 저녁부터 번만(煩懣)28440) 이 조금 더해지셔서 청심원(淸心元)을 올리도록 명하셨습니다.” 하므로 입직(入直)한 승지(承旨) 한사문(韓斯文)·구치곤(具致崐) 등이 새벽[黎 明]에 문안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음식을 먹지 못하여 이로 인해 밤에는 조금 열(熱)이 있었다. 자세한 것은 송흠(宋欽)이 알 것이다.” 하였다. 이때 윤은로(尹殷老)가 마침 와서 문안하고, 중궁(中宮)에게 아뢰기 를, “성상을 위하여 기도(祈禱)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나도 기도하고 싶지만 성감(聖鑑)을 두려워하여 감히 하지 못한다. 마땅히 양대비전(兩大妃殿)에 계품하도록 하라.” 하였다. 조금 있다가 양전(兩殿)이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주상께서 여러 달 편찮으시다 요사이 점점 더하시니, 종묘(宗廟)·사직(社	○夜四鼓， 內醫宋欽報承政院曰：“上 自夕稍加煩懣， 命進淸心元。” 入直承 旨韓斯文、丘致崐等， 黎明問安， 傳 曰：“予未得進食， 緣此中夜稍熱。 其 詳則宋欽知之。” 時尹殷老適來問安， 啓中宮曰：“爲上祈禱何如?” 傳曰： “予亦欲禱， 然畏聖鑑未敢耳。 當啓稟 于兩大妃殿。” 有頃兩殿傳于承政院 曰：“主上累月未寧， 近日轉劇， 其禱 于宗廟、社稷。” 承旨等啓曰：“遍禱 于名山大川何如?” 兩殿傳曰：“依前例 祈禱可也。” 【凡祈禱等事， 皆稟于兩 殿。 餘倣此。】 承旨等啓曰：“祈禱祭 文， 請令世子署名。” 傳曰：“可。”

	<p>稷)에 기도하도록 하라.” 하였는데, 승지(承旨)들이 아뢰기를, “명산 대천(名山大川)에 두루 기도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양전이 전교하기를, “전례(前例)에 의하여 기도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무릇 기도 등의 일은 모두 양전(兩殿)에 품(稟)하였다. 나머지도 이와 같았다.】 승지 등이 아뢰기를, “기도 제문(祭文)에 세자(世子)로 하여금 서명(署名)하게 할 것을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p>	
<p>성종 297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12월 23 일(무인) 3번째기사</p>	<p>의정부(議政府)와 육조(六曹)에서 빈청(賓廳)에 나아가서 문안하니, 전교하기를, “내 증세는 송흙(宋欽)이 알 것이다.” 하였다. 윤필상(尹弼商)과 윤호(尹壕)가 함문(閤門)28441) 안에 나아가서 문안하고, 인하여 송흙 등으로 하여금 들어가서 진후(診候)하도록 할 것을 청하였다. 진시(辰時)28442) 에 송흙이 안에 들어가서 진후하고 나와서 말하기를, “성상의 몸이 몹시 여위셨고, 맥도(脈度)가 부상(浮數)하여 어제는 육지(六指)였는데, 오늘은 칠지(七指)였습니다. 그리고 얼굴빛이 위황(痿黃)하고 허리 밑에 적취(積聚)가 있고, 내쉬는 숨[呼]은 많고 들이쉬는 숨은 적으며, 입술이 또 건조(乾燥)하십니다. 성상께서 큰 소리로 약을 물으시므로, 아뢰기를, ‘청심연자음(淸心蓮子飲)·오미자탕(五味子湯)·청심원(淸心元) 등의 약은 청량(淸涼)한 재료가 들어 있어서 갈증(渴證)을 그치게 할 수 있으니, 청컨대 이를 진어(進御)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또 성상의 몸을 보건대 억지로 참으시면서 앉으신 듯하기 때문에 마침내 물러나왔습니다.”</p>	<p>○議政府六曹詣賓廳問安，傳曰：“予證宋欽知之。” 尹弼商、尹壕詣閤門內問安， 仍請令宋欽等入(診) [診] 候。 辰時宋欽入內(診) [診] 候。 出言曰：“上體瘦困，脈度浮數，昨日六指，今則七指。 面色痿黃，腰下積聚，呼多吸少，唇又乾燥。 上厲聲問藥，啓曰：‘淸心蓮子飲、五味子湯、淸心元等藥，所入淸涼，可以止渴，請進之。’ 且觀上體似乎強忍而坐，故遂退。”</p>

<p>성종 297권,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12월 23 일(무인) 10번째기사</p>	<p>하였다.</p> <p>미시(未時)28447) 에 명하여 파평 부원군(坡平府院君) 윤필상(尹弼商)·영의정(領議政) 이극배(李克培)·좌의정(左議政) 노사신(盧思愼)·우의정(右議政) 신승선(愼承善)·영돈녕(領敦寧) 윤호(尹壕)를 부르게 하였는데, 윤필상 등이 이르자, 전교하기를,</p> <p>“내가 경 등을 오랫동안 보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인견(引見)하고 겸하여 병증(病證)을 보이려고 한다.”</p> <p>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p> <p>“승지(承旨)와 주서(注書)·사관(史官)이 따라 들어가기를 청합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도승지(都承旨)만 들어오라.”</p> <p>하였다. 신시(申時)28448) 에 윤필상·이극배·노사신·신승선·김응기(金應箕) 등이 침전(寢殿)에 들어가니, 임금(上)이 곤룡포(袞龍袍)를 입고 앉았고, 세자(世子)와 한 소환(小宦)이 모시고 있었다. 임금이 말하기를,</p> <p>“이 병은 내가 처음에 대수롭게 여기지 아니하였는데, 점점 음식을 먹지 못하여 살이 여위어졌다.”</p> <p>하자, 이극배가 아뢰기를,</p> <p>“원하건대 성상께서는 공사(公事)를 생각하지 마시고, 군신(群臣)을 접견하지 못하시는 것을 생각하지 마소서. 그리고 모든 생각을 잊으시고 힘써 스스로 조섭(調攝)하시면, 봄날이 화창하고 따뜻해질 때에 마땅히 저절로 나으실 것입니다.”</p> <p>하고, 노사신은 아뢰기를,</p> <p>“원하건대 생각과 걱정을 버리시고, 평온한 마음으로 조섭하시면, 마땅히 점점 나으실 것입니다.”</p> <p>하고, 신승선은 아뢰기를,</p>	<p>○未時，命召坡平府院君尹弼商、領議政李克培、左議政盧思愼、古議政愼承善、領敦寧尹壕。弼商等至，傳曰：“予久不見卿等，茲欲引見兼示病證。”承政院啓曰：“承旨及注書、史官，請隨入。”傳曰：“都承旨獨入。”申時，弼商、克培、思愼、承善、應箕等，入詣寢殿，上御袞龍袍而坐，世子與一小宦侍。上曰：“此病予初不以爲緊，漸不進食，肌膚消瘦。”克培啓曰：“願上勿以公事爲念，勿以未接群臣爲念，都忘百慮，勉自調攝，春和日暖，當自愈矣。”思愼啓曰：“願去思慮，平心調攝，則當漸差矣。”承善啓曰：“臣於年前十月，亦患是證，至三四月風和日暖，自然而愈矣。”弼商啓曰：“若去渴證，自然漸差，臣聞醞醐膏止渴，請進之。”遂俯伏良久，上命退，世子願謂弼商等曰：“上命退矣。”弼商等趨出。</p>
--	---	--

	<p>“신이 몇 해 전 10월에 또한 이 증세로 앓았는데, 3, 4월에 이르러 바람이 온화하고 날씨가 따뜻해지자 저절로 나았습니다.”</p> <p>하고, 윤필상이 아뢰기를,</p> <p>“만약 갈증(渴證)을 없애면 저절로 점점 나으실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제호고(醞醐膏)가 갈증을 그치게 한다고 하니, 청컨대 이를 올리게 하소서”</p> <p>하고, 마침내 부복(俯伏)하였는데, 조금 지나서 임금의 물러가도록 명하였다. 세자가 윤필상 등을 돌아보면서 말하기를,</p> <p>“성상께서 물러가도록 명하십니다.”</p> <p>하니, 윤필상 등이 추창(趨蹌)하여 나왔다.</p>	
--	---	--

2. 연 산 군 일 기 기 사 자 료 집

연산군일기 기사자료집

출처	내용	원문
<p>1. 연산 1권, 즉위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12월 26 일(신사) 1번째기사</p>	<p>밤을 녀에 왕세자가 전교하기를, “내가 두 대비(22) 와 왕비전(王妃殿)께 잡수시기를 여러 번 청하였으나 듣지 않으시니, 정승들이 곧 함께 청해야 할 것이다.” 하였는데, 때가 아직 일러서 정승은 모두 아직 오지 않았다. 승정원(承政院)이 아뢰기를, “정승이 어제 아뢰어 죽을 권하였다고 합니다. 임금의 효도는 사서인(士庶人)과는 다르오며, 신 등이 또 의궤(儀軌)를 상고하니, 세종(世宗)께서 일찍이 이르시기를 ‘세자는 깊은 궁중에서 생장(生長)하여 거처나 음식이 여느 사람과 다르니, 상(喪)을 당한 이튿날에는 죽을 권해야 할 것이다.’ 하시어 교훈이 명백하므로, 신 등의 생각으로는, 세자께서 먼저 스스로 죽을 잡수시고서 삼전(三殿)께 청하시면 청을 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나는 그만두고, 삼전께 청하라.” 하매, 승지들이 아뢰기를, “마땅히 정승이 오기를 기다려 함께 의논하여 아뢰어 청하겠사오나, 신 등의 생각으로는, 세종께서 소헌 왕후(昭憲王后)(23) 의 초상에 세자에게 이튿날 죽을 먹기를 권하였음이 의궤에 분명히 실렸사오니, 아마도 세자는 거처와 음식이 여느 사람과 다르므로 문득 음식을 철폐하면 몸을 상하지나 않을까 염려</p>	<p>辛巳/黎明, 王世子傳曰: “予於兩大妃、王妃殿, 累請進粥, 不聽。 政丞等宜卽共請。” 時尙早, 政丞皆未至。 承政院啓: “政丞, 昨日啓請勸粥云: ‘帝王之孝, 異於士庶人。’ 臣等又按《儀軌》, 世宗嘗曰: ‘世子生長深宮, 居處飲食, 異於平人, 遭喪翌日, 宜可勸粥。’ 聖訓昭昭。 臣等意世子先自進粥, 乃請于三殿, 則庶可得請矣。” 傳曰: “予則已矣, 宜請于三殿。” 承旨等啓: “當待政丞之來, 共議啓請。 然臣等意世宗於昭憲王后之喪, 勸世子翌日進粥, 明載《儀軌》, 豈以居養異常, 遽撤飲食, 則慮或傷生, 故有此訓也。 請先進粥, 仍請三殿, 則豈不從之乎?” 傳曰: “如不得請, 則予當先之。”</p>

	되기 때문에 이런 교훈이 계셨을 것입니다. 청컨대 먼저 죽을 잡수시고 삼전께 청하시면, 어찌 좃지 않으시오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청하여 듣지 않으시면 내가 먼저 먹겠다.” 하였다.	
2. 연산 1권, 즉위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12월 27일(임오) 1번째기사	송정원이 아뢰기를, “세종 대왕의 유교에 ‘사흘 뒤에는 밥을 먹게 하라.’ 하셨으니, 이 유교를 따르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나는 이미 죽을 먹었으니 밥 먹는 것은 성빈(成殯)하고 나서 알아 하겠다.” 하매, 다시 아뢰기를, “만약 수라를 들지 않으시면, 왕비께서 또한 어찌 수라를 드시겠습니까. 선왕의 유교를 어기지 마시고, 왕비를 위하여 억지로 잡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선왕의 유교가 중하니, 내가 힘써 따르리라.” 하였다.	壬午/承政院啓: “世宗大王遺教曰: ‘三日後可進食。’ 請從是教。” 傳曰: “予已歠粥。進食則當待成殯後酌爲之。” 更啓, “若不進膳, 則王妃亦豈肯進膳? 請勿違先王遺教, 爲王妃強進。” 傳曰: “先王遺教大矣, 予勉從之。”
3. 연산 1권, 즉위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12월 28일(계미) 8번째기사	(전략) 동평관(東平館)에 다다른 왜인(倭人)이 우리 나라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을 보고 그 까닭을 물으므로, (후략)	倭人之到館者, 見我人衣白、不食肉, 問其故, 對之以實。
4. 연산 1권, 즉위년 (1494 갑인 / 명 홍치 (弘治) 7년) 12월 29일(갑신) 4번째기사	(전략) 일찍 일어나고 수라를 늦게 잡수시며 정신을 가다듬어 정치에 애쓰시기에 26년이었도다.(후략)	[旰]食, 勵精圖治, 蓋二十有六年于茲矣。
5. 연산 2권,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전략) 상선(常膳)에는 친히 별미(別味)를 조리(調理)하시되 그 즐기시는 것은 반드시 벽에다 써 붙여 두고서 바치며, 항상 대비께서 적적하실 것을 생각하	且於常膳, 親調別味, 其所嗜, 則必寫貼於壁, 以進。 常念大妃居常索寞,

8년) 1월 2일(병술) 3 번째기사	여 특별한 잔치를 여러 번 올리고, 또 곡연(曲宴)60) 을 자주 청하여 허락을 얻으면 기뻐하셨다 (중략) 두 대비에게 효도로 봉양하는 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아 수라상을 친히 보살피기를 폐하지 아니하였으며, 늙은 부모가 있는 재상(宰相)에게는 매양 음식물을 내리셨다.”	屢進別宴。(중략) 奉孝兩 大妃，終始如一，不廢視膳。 宰相有老親者，每賜食物。
6.연산 2권,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1월 4일(무자) 1 번째기사	사용원(司饗院)에서 먹이는 원수(員數)도 너무 많은데 재상(宰相)은 할 수 없거니와 그 나머지는 승정원(承政院)으로 하여금 임시로 참작하여 먹이도록 하소서.” 하였다.	司饗院所饋員數，過多，宰相則已矣。其餘，令承政院臨時酌量饋之。”
7.연산 2권,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1월 7일(신묘) 4 번째기사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중국 사신의 접대에 쓸 것을 각도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지난해 실농(失農)하였는데 접대하는 데 쓸 물자를 모두 백성에게 내게 하는 것은 염려가 된다. 백성이 바친 물자가 다 사용원(司饗院)에 있으니, 배정할 수효를 참작해 덜어서 민폐를 없게 하라.”(후략)	承政院啓：“天使支用，令各道預備。” 傳曰：“去年失農，支待之物，皆出於民，是可慮也。 歲時所貢物膳，皆在司饗院。 量除分定之數， 以祛民弊(후략)
8.연산 2권,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1월 11일(을미) 1번째기사	(전략)대군의 무덤을 옮기되 마땅히 예장(禮葬)을 할 것이요, 또 부인(夫人)의 집도 헐어야 할 것인데, 국가에서 일이 많아 관가에서 지어 줄 수는 없으니, 목면(木綿) 1천 필·정포(正布) 7백 50필·쌀 2백 석·황두(黃豆) 1백 석을 주라.”	遷大君塚，當用禮葬。 且夫人之家應撤，國家多事，不可官造。 其賜木綿一千匹、正布七百五十四、米二百碩、黃豆一百碩。”
9.연산 2권,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1월 13일(정유) 2번째기사 성종의 행장	(전략)3월에 왕의 조모인 혜장 왕비(惠莊王妃)가 훙(薨)하매, 왕이 애통하여 병이 되었다. 대신이 술을 들기를 청하니, 왕이 이르기를, “애통을 잊고 술을 마시는 것은 내가 차마 하지 못하겠다.” 하고, 굳이 청하여도 듣지 않았다.(중략) 왕이 일찍이 한재(旱災)로 인하여 각도에 진상(進上)하는 물건을 감하게 하니, 경상도 관찰사가 아뢰기를, “해물(海物) 같은 것은 구하기가 심히 쉬우니, 전과 같이 진상하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기를, “신자(臣子)가 임금을 받드는 정(情)은 비록 정성스러우나 임금이 백성을 생	王祖母惠莊王妃薨。 王哀毀成疾，大臣請進酒。 王曰：“忘哀飲酒，予所不忍也。” 固請，不聽(중략) 王嘗因旱，命減諸道供進之物， 慶尙道守臣啓：“如海錯之類， 得之甚易， 請依舊以進。” 王曰：“臣子奉上之情雖勤， 人君恤下之情亦切， 其勿進”(중략) 嘉悅曰：“今觀爾等所進之辭， 蓋欲納君於

	<p>각하는 정도 또한 간절하니, 바치지 말라.” 하였다.(중략) , 왕이 기뻐하여 이르기를, “지금 그대들이 바친 글을 보니, 대개 임금을 허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니, 그대들이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을 어찌 잊을 수 있으랴!” 하고, 궁온(宮醞)124) 을 주고 밤에 궁촉(宮燭)125) 을 보내었다.(중략) 8월에 왕이 성균관에 이르러 선성(先聖)에게 제사지내고 유생 및 백관을 크게 먹이 면서 이르기를, “술을 정신없이 마셔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오늘 일은 유(儒)를 숭상하고 도 (道)를 중히 여기는 뜻이니, 각기 취하고 배부르도록 먹으라.”(중략) 6월에 왕 이 병이 들었는데, 의원이 말하기를, “즉어(鯽魚)가 약이 됩니다.” 하니, 왕이 근시(近侍)에게 이르기를, “지금 바야흐로 장마철에 그것을 잡는 사람이 물에 빠질 염려가 있으니, 어찌 내가 먹으려고 폐를 끼칠 수 있겠는가.” 하였다.</p>	<p>無過之地也。爾等愛君之誠，寧可忘耶，賜以宮醞，至夜，撤宮燭送之。(중략)王至成均館，祀先聖，大饗儒生及百僚，謂曰：“飲酒固不可及亂，然今日之事，實崇儒重道之意，其各醉飽。(중략)六年六月，王有疾，醫云：“鯽魚可治。”王謂近侍曰：“今方雨潦，採捕之人，恐罹沒溺之患，豈可以口腹累人乎?”</p>
<p>0.연산 2권,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1월 17일(신축) 3번째기사</p>	<p>(전략) 방에 이문(移文)하여 어육을 진상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후략)</p>	<p>移文外方，令進魚肉何如?</p>
<p>11.연산 2권, 1년 (1495 을묘 / 명 홍치 (弘治) 8년) 1월 19일 (계묘) 2번째기사</p>	<p>일본국 기내 섭진주 병고진(日本國畿內攝津州兵庫津) 평방식(平方式)·도위(都尉) 원충능(源忠能)·대마주 태수(對馬州太守) 중정국(宗貞國)이 사람을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p>	<p>日本國畿內攝津州兵庫津平方式都尉源忠能、對馬州太守宗貞國遣人來獻土宜。</p>
<p>12.연산 2권, 1년 (1495 을묘 / 명 홍치 (弘治) 8년) 1월 24일</p>	<p>활아간 울적함(闊兒看兀狄哈) 이눌공오(李訥公吾) 등 8인과 울량함(兀良哈) 파가대(波可大) 등 7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p>	<p>闊兒看兀狄哈李訥公吾等八人，兀良哈波可大等七人，來獻土宜。</p>

(무신) 4번째기사	<p>13. 연산 2권, 1년 (1495 을묘 / 명 홍치 (弘治) 8년) 1월 26일 (경술) 12번째기사</p> <p>산릉의 금한(禁限) 안에 묘(墓)가 있어 옮겨야 할 것은, 당상관(堂上官) 및 당상관의 부모(父母)·처(妻)·조부모(祖父母)의 것이면 쌀·황두(黃豆) 아울러 15석(碩)을, 그 나머지에는, 쌀 2석과 황두 1석을 전례에 따라 제급(題給)하고, (후략)</p>	<p>山陵禁限內, 有墓當遷者, 堂上官及堂上官父母、妻、祖父母, 米、黃豆并十五碩, 其餘, 米二碩、黃豆一碩, 依前例題給, (후략)</p>
<p>14. 연산 2권, 1년 (1495 을묘 / 명 홍치 (弘治) 8년) 1월 28일 (임자) 3번째기사</p>	<p>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인혜 대왕 대비(仁惠大王大妃)와 왕대비(王大妃) 양전(兩殿)께서는 이제 이미 복(服)이 다 끝나셨으므로, 신 등이 오늘 고기를 권하고자 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매, 좌의정 노사신(盧思愼) 등이 창경궁(昌慶宮)에 나아가 아뢰기를, “양전(兩殿)께서 복이 이미 다 끝나셨고, 또 인수 대비(仁粹大妃)께서 편찮으시니 고기를 드소서.” 하니, 양전이 전교하기를, “조식(朝夕)의 음식도 들고자 하지 않는데, 어찌 차마 고기를 먹겠는가.” 하매, 다시 아뢰었으나, 듣지 않았다. 집의(執義) 김울(金瑛)이 유생을 죄주는 것이 타당치 못함을 논계하였으나, 듣지 않았고, 대간이 상차하여 논하였으나, 듣지 않았다.</p>	<p>議政府啓: “仁惠大王大妃、王大妃兩殿, 今已服盡。 臣等欲於今日, 勸肉。” 傳曰: 知道。” 左議政盧思愼等詣昌慶宮啓: “兩殿服既盡。 且仁粹大妃違(詣) [豫], 請進肉。” 兩殿傳曰: “朝夕之食, 猶不欲進, 何忍食肉?” 更啓, 不聽。 執義金瑛, 論啓罪儒未便, 不聽。 臺諫上劄論之, 不聽。</p>
<p>15. 연산 3권, 1년 (1495 을묘 / 명 홍치 (弘治) 8년) 2월 2일 (병진) 1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이 아뢰기를, “전일에 의정부(議政府)가 양전(兩殿)께 육선(肉膳)을 드시도록 청하였으나, 굳이 거절하고 윤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여러 종재(宗宰)들도 이미 개소(開素)하였고 복(服)도 역시 다했으니, 다시 청함이 어떠하리까?”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승지 한사문·권경우·강귀손·구치곤(丘致崑) 등이 창경궁(昌慶宮)에 나아가 인수 대비(仁粹大妃)와 인혜 대비(仁惠大妃)께 아뢰기를, “이제는 이미 복도 다 마치셨으니, 육선을 드소서.” 하니, 전교하기를,</p>	<p>丙辰/承政院啓曰: “前日, 議政府請進肉膳於兩殿, 而(宰) [宰] 拒不允。 今則諸宗宰, 既已開素, 而服亦已盡。 更請何如?” 傳曰: “可。” 承旨韓斯文、權景祐、姜龜孫、丘致崑等, 詣昌慶宮, 啓仁粹、仁惠兩大妃殿曰: “今已服盡, 請進肉膳。” 傳曰: “我食性本不厭素, 且非老病, 何忍食肉乎?” 更啓: “情雖無盡, 禮制不可過也。”</p>

	<p>“나는 식성이 본시 소식(素食)을 싫어하지 않고 또한 늙고 병든 몸이 아닌데, 어찌 차마 육식을 하겠는가.”</p> <p>하매, 다시 아뢰기를,</p> <p>“정은 비록 한정이 없을지라도 예제(禮制)는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무릇 일이란 비록 예문(禮文)에 실려 있는 것이라도 간혹 예문과 같이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하물며 내 나이 노쇠하지 아니하고 또 음식을 잘함에랴. 단연코 들을 수 없다.”</p> <p>하였다.</p>	<p>傳曰：“凡事雖載禮文，然或有不得如禮文者。況我年且不衰，又能飲食。斷不可聽。”</p>
<p>燕山 3卷, 1年(1495) 乙卯 / 명 홍치(弘治) 8年) 2月 8日(壬戌) 5 번째기사</p>	<p>전교하기를,</p> <p>“평안도(平安道)의 진상은 무신(戊申)·임자(壬子) 양년의 예에 의하여 봉진(封進)하지 말라.”</p> <p>하였다</p>	<p>傳曰：“平安道進上，依戊申、壬子兩年例，勿封進。”</p>
<p>연산 3권,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2월 13일(정묘) 2번째기사</p>	<p>옛날의 밝은 임금은 부귀로써 낙을 삼지 아니하고, 용(用)을 절약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마음으로 삼아서, 백성의 굶주림을 생각하여 자기의 나물밥을 편안히 여기며,</p>	<p>故古之明王，不以富貴爲樂，而節用愛民爲心，念民之飢也，而寧己之非食；</p>
<p>연산 3권,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2월 14일(무진) 2번째기사</p>	<p>“전일에 대전(大殿)께 육즙(肉汁)을 드시기를 두 차례나 청했으나, 허하지 아니하시기에 오늘 새벽에 죽에 타서 드시기를 굳이 청하였더니, 대전께서 따르셨다.”</p>	<p>“前日，再請進肉汁于大殿，而不許。今曉，強請和饘粥以進，大殿已從之矣。”</p>
<p>연산 3권,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2월 14일(무진) 3번째기사</p>	<p>노사신(盧思愼)·신승선(愼承善) 등이 아뢰기를,</p> <p>“전일에 양 대왕 대비전(兩大王大妃殿)께 육선(肉膳)을 드시기를 청하였더니, 전교에 ‘칠칠일이 지난 뒤에 그렇게 하겠다.’ 하셨는데, 이제 칠칠일이 지났으니, 육찬을 드시기를 다시 청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盧思愼、愼承善等啓：“前日，請進肉膳于兩大王大妃殿，傳曰：‘過七七日後，當從之。’今七七日已過，宜更請肉膳。”傳曰：“予昨親自勸進，而不允。卿等今可更請。”尹弼商、盧思</p>

	<p>“내가 어제 친히 드시기를 권했는데 윤희를 아니하시니, 경들이 지금 다시 청하는 것이 옳겠다.”</p> <p>하매, 윤희상·노사신·신승선·중추부(中樞府)·육조(六曹)·한성부(漢城府) 당상 등이 함께 양전(兩殿)에게 아뢰기를,</p> <p>“전자에 ‘칠칠일이 지난 뒤에 육선을 들겠다.’는 명령이 계셨는데, 지금 칠칠일이 지났으니, 육선을 드소서. 지금 주상께서 증세가 가볍지 않으시니, 이는 반드시 애통이 지나쳐서 허약해지신 까닭인데, 지금 육선을 들기 시작하셨으니 반드시 평복되실 것입니다. 청컨대 양전께서도 중요 사직의 대계를 위하여 빨리 육선을 드소서.”</p> <p>하니, 양전이 전교하기를,</p> <p>“어제 대전(大殿)께서 엎드려 계셨기 때문에 보시지 못한 것이요. 우리들은 이미 들었소.”</p> <p>하매, 필상(弼商) 등이 왕에게 환계(還啓)하기를,</p> <p>“양전께서 이미 육찬을 드셨으니, 계속해서 드시고 비록 회복되지더라도 바로 중지하지 마소서.”</p> <p>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p> <p>이에 앞서 왕이 이미 육선을 들었다. 신수근이 일찍이 근방의 강에서 생선을 구해 올렸는데, 외정(外廷)에서는 알지 못한 것이다.</p>	<p>愼、愼承善，中樞府、六曹、漢城府堂上等，俱啓于兩殿曰。“前者，有過七七日後，進肉膳之命。今七七日已過，請進肉膳。今主上證勢非輕，此必過於哀毀，虛弱所致。今進肉膳，平善必矣。請兩殿亦爲宗社大計，須進肉膳。”兩殿傳曰：“昨日，大殿俯伏，故未見耳。予等已食之矣。”弼商等還啓于王曰：“兩殿既進肉膳矣，請連續進之。雖(止)〔至〕平善，勿遽止。”傳曰：“知道。”前此，王已進肉膳，愼守勤嘗於近江，索鮮魚以進，外廷不知。</p>
<p>연산 3권,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2월 17일(신미) 2번째기사</p>	<p>대마주(對馬州) 평조신 형부소보 종 정수(平朝臣刑部小輔宗貞秀)·일본국 비전주 전평우진(日本國肥前州田平寓鎭) 원조신탄정소필 홍(源朝臣彈正少弼弘)·대마주 대관(對馬州代官) 평조신 이에수 종 무송(平朝臣伊豫守宗茂勝)·일본국 상송포과다도(日本國上松浦波多島) 원납(源納)·서해로 주방주 산구(西海路周防州山口)에 사는 대내진량다다랑 조신 교지(大內進亮多多郎朝臣教之)·서해도 비전주하송포(西海道肥前州下松浦) 삼물야태수(三栗野太守) 원만(源萬)이 사람을 보내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p>	<p>對馬州平朝臣，刑部小輔。宗貞秀、日本國肥前州(田平寓鎭)〔田平寓鎭〕源朝臣(彈)〔彈〕正少弼弘、對馬州代官平朝臣。伊豫守宗茂勝、日本國上松浦波多島源納、西海路周防州山口居住大內進亮多多郎朝臣教之、西海道肥前州下松浦三栗野太守源滿，遣人</p>

		來獻土宜。 【태백산사고본】
연산 3권,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2월 22일(병자) 3번째기사	대마주입석장인위(對馬州立石莊人尉) 평국행(平國幸)이 사람을 보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對馬州立石莊人尉平國幸, 遣人來獻土宜。
연산 3권,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2월 26일(경진) 5번째기사	“세자 빈객(世子賓客)이 죽을 경우에는 부조로 쌀·콩 아울러 20 석과 종이 20 권을 내려 주는 것이 준례입니다(후략)	“世子賓客死, 則賻米、太并二十碩、紙四十卷, 例也
연산 4권,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3월 2일(을유) 3 번째기사	일본국 살마주(日本國薩摩州) 이집원(伊集院) 우진(隅鎮)·우주 태수(隅州太守) 등희구(藤熙久)와 관서로 비·축 이주 태수(關西路肥築二州太守) 국지 등원 조신 중조(菊池藤原朝臣重朝)와 대마주 좌호군 대관(對馬州佐護郡代官) 평 조신 종 번마수 국구(平朝臣宗幡摩守國久)와 대마주 평 조신 종 능등수 성준(宗能登守盛俊)과 대마주 복리산 국분선사 주지(福利山國分禪寺主持) 신승(臣僧) 승통(崇統)과 대마주 평 조신 종 형부 소보(刑部少輔) 정수(貞秀)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日本國薩摩州伊集院寓鎮隅州太守藤熙久、關西路肥、筑二州太守菊池藤原朝臣重朝、對馬州佐護郡之代官平朝臣宗、幡摩守國久、對馬州平朝臣宗、能登守盛俊、對馬州福利山國分禪寺住持臣僧崇統、對馬州平朝臣宗刑部少輔貞秀等、遣人來獻土宜。
연산 4권,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3월 5일(무자) 5 번째기사	전교하기를, “대궐 안에서 이미 육미(肉味)를 쓰고 늙고 병든 재상들도 역시 육식한다. 민간에는 어찌 늙고 병든 자가 없으랴. 육미를 금하지 말라.” 하매,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이렇게 육식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너무 지나칠 듯하오니, 금령(禁令)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傳曰: “闕內皆已用肉, 老病宰相亦開素。 閭閻之中, 豈無老病者乎? 其勿禁肉。” 承政院啓: “如此開端, 則民間興用, 恐必太濫, 不可弛禁。” 傳曰: “可。”
연산 4권, 1년(1495)	각처에서 역사하러 온 군인으로서 굶주리고 병들고 지친 자를 왕래하면서 진	各處赴役軍人飢病勞困者, 往來診之。

<p>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3월 16일(기해) 1번째기사</p>	<p>찰하여 주리고 병든 자가 있거든 끓인 술과 모주(母酒)를 먹이고, 지친 자가 있거든 쉬게 할 것,</p>	<p>有飢病者以煮酒、母酒饋之。有勞困者休力。</p>
<p>연산 4권,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3월 16일(기해) 3번째기사</p>	<p>왕이 비로소 윤씨가 죄로 폐위(廢位)되어 죽은 줄을 알고, 수라(水刺)를 들지 않았다.</p>	<p>王，始知尹氏，以罪廢死，爲輟膳。</p>
<p>연산 4권,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3월 21일(갑진) 2번째기사</p>	<p>아침부터 소선(素膳)을 드신다고 들었습니다. 주상(主上)의 몸이 회복이 안 되셨는데, 더구나 중국 사신이 장차 나오면 전하께서 반드시 괴롭게 움직여야 할 것이오니, 미리 몸을 충실히 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발인·졸곡 날이 머지 않으므로 소선을 들었다.” 하매, 다시 아뢰기를, “큰 병환 끝에 문득 육미를 그치심은 심히 불가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p>	<p>院相尹壖及承旨等啓：“聞自朝進素膳，上體時未平復。況今天使出來，殿下必勞動，不可不預養氣體。”傳曰：“發引、卒哭將近，故素膳耳。”更啓曰：“大病之後，遽止肉膳，甚不可。”傳曰：“知道。”</p>
<p>연산 4권,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3월 23일(병오) 2번째기사</p>	<p>일본국 비전주 하송포지좌(肥前州下松浦志佐) 일기주 태수(一岐州太守) 원의(源義)·대마주 인위군(對馬州仁位郡) 평 조신 종 직가(平朝臣宗職家)·대마주 태수 종정국(宗貞國)·대마주 평 조신 종 국승(對馬州平朝臣宗國勝)·일본국 일기주 상송포 염진유(上松浦鹽津留) 송림원(松林院) 원 실차(源實次)·비전주 소성 천엽개(小城千葉介)·평 조신 원윤(元胤)·비전주 상송포 구사도주(九沙島主) 등원 조신 축후수 의영(藤原朝臣築後守義永) 등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p>	<p>日本國肥前州下松浦志佐、一岐州太守源義，對馬州仁位郡平朝臣宗職家，對馬州太守宗貞國，對馬州平朝臣宗國勝，日本國一岐州上松浦鹽津留松林院源實次，肥前州小城千葉介平朝臣元胤，肥前州上松浦九沙島主藤原朝臣筑後守義永等，遣人來獻土宜。</p>
<p>연산 4권,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p>	<p>왜 사과(司果) 도두마두마(都豆馬豆馬)·사맹(司猛) 성중(盛重)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p>	<p>倭司果都豆馬豆馬，司猛盛重，來獻土宜。</p>

8년) 3월 23일(병오) 3번째기사		
연산 4권,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3월 25일(무신) 4번째기사	경기 관찰사에게 전교하기를, “약에 쓸 곰은 민폐를 끼치지 말고 잡아서, 큰 것은 가죽을 벗기고 사지를 쪼개어 가닥[條]을 만들고, 작은 놈은 전체를 얼음에 채우고 아울러 그 가죽은 이어서 봉진하라.” 하였다.	傳于京畿觀察使曰：“藥用熊，無弊捉獲。大者去皮、剝四肢作條，小者全體照冰，并其皮連續封進。”
연산 4권,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3월 28일(신해) 3번째기사	왜 첨지(僉知) 평송이라(平松而羅)·왜문(灑文)·가계(家繼) 세 사람이 와서 방물(方物)을 바쳤다.	倭僉知平松而羅、灑文、家繼三人，來獻土宜。
연산 4권,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4월 7일(경신) 2 번째기사	영의정 노사신이 능으로부터 와서 아뢰기를, “부역(赴役)하는 군인들이 거의 주리고 지쳐서 능히 일을 하지 못하오니, 만일 특별히 음식을 주어 날마다 한 번씩 먹이면 일을 반드시 쉽게 마칠 것입니다.” 하니, 해사(該司)로 하여금 쌀·술 및 장(醬)을 운반하여 먹이게 하였다.	領議政盧思愼，自山陵來啓：“赴役軍人，率多飢羸，不能趨事，若給餼廩，日一食之，則功必易畢。”命該司，運米、酒及醬，饋之。
연산 4권,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4월 15일(무진) 1번째기사	사축서 제조(司畜署提調) 윤은로(尹殷老)가 소·염소·돼지·오리들에게 먹이는 소금·콩·겨의 수량을 적어서 아뢰기를, “먹이가 넉넉하지 못하므로 몹시 여위어서, 중국 사신이 오게 되면 진공하기에 알맞지 않사오니, 먹이를 배로 늘려 주소서.” 하니, 그 청에 따르매, 원상(院相) 정괄과 승지들이 의계하기를, “각사(各司)에서 만약 아될 일이 있으면 먼저 해조(該曹)에 보고하여 위에 전달(轉達)하게 해야 하는데, 이제 각사의 제조(提調)가 긴하지 않은 일이라도 반드시 다 친계(親啓)하고 있습니다. 윤은로의 아뢴 바와 같은 것이 어찌 친계해야 할 일입니까. 저 한 말 되 따위 작은 일은 임금으로서 아셔야 할 바가 아니오니, 이 뒤로는 모조리 해조(該曹)에 보고하고 직계(直啓)하지 말게 하소	戊辰/司畜署提調尹殷老，書牛、羊、豬、鴨喂養，鹽、豆、糟糠之數以啓曰：“所飼不敷，因此疲瘦。天使之來，不合支供。請倍飼之。”從之。院相鄭恬、承旨等議啓：“各司如有所啓，則當先報該曹，轉達于上。今各司提調，雖不繁事，必皆親啓。如殷老所啓，豈宜親啓者乎？彼斗升細事，非人主所當知。請今後，悉報該曹，勿令直啓。”

<p>연산 4권,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4월 18일(신미) 1번째기사</p>	<p>서.”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명일 졸곡을 지난 뒤에는 대비전(大妃殿)에 육선(肉膳)을 드시기를 청할 터 인데, 고례(古例)를 상고하라.” 하매, 승지들이 아뢰기를, “정희 왕후(貞熹王后)께서나 인혜 왕후(仁惠王后)께서도 모두 백 일 뒤에는 육선을 드셨습니다. 이제 또한 백 일이 지났으니 육선을 드시는 것이 당연합 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명일에 육선을 권하겠으니, 대신과 여러 군(君)도 역시 모여야 한다.” 하였다.</p>	<p>辛未/傳于承政院曰：“明日卒哭後，請 進肉膳于大妃殿，其考古例。”承旨等 啓：“貞熹王后、仁惠王后，皆於百日 後，進肉膳。今亦過百日，進肉膳當 矣。”傳曰：“明日當進，大臣、諸君， 亦可來會。”</p>
<p>연산 4권,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4월 18일(신미) 2번째기사</p>	<p>하였다.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명일에 졸곡(卒哭)을 지내고서는 재상(宰相)들에게 육식을 권하고자 하니, 구 례(舊例)를 상고하라.” 하매, 승정원에서 서계(書啓)하기를, “대행 왕조(大行王朝)에 있어서도 예종(睿宗)의 졸곡이 지난 뒤에 명하여 정2 품인 종친(宗親)과 육조의 당상 및 입직(入直)한 여러 장수·승지(承旨)들에게 승문당(崇文堂) 바깥 뜰에서 술과 고기를 하사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 예에 의하여 시행하라.” 하였다.</p>	<p>“明日卒哭後，欲勸肉于宰相，其考舊 例。”承政院書啓： 在大行王朝，睿宗卒哭後，命正二品宗 親、六曹堂上及入直諸將、承旨等，於 崇文堂外庭，賜酒肉。 傳曰：“其依此例。”</p>
<p>연산 4권,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4월 19일(임신) 1번째기사</p>	<p>“신(臣)들이 모두 대비전에 육선을 드시기를 권하려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오늘 아침에 친히 육선을 드시기를 권하였으나, 대비께서 윤택하지 않으시 니, 경들도 역시 힘껏 청하는 것이 옳겠다.”</p>	<p>“臣等咸欲進肉膳于大妃殿。”傳曰： “今朝，親勸進，而大妃不允。卿等亦 可力請。”弼商等啓于大妃曰：“今卒 哭已過，且有先王遺教。不可不進肉 膳。”大妃傳曰：“主上旣(勤) [勸]，</p>

	<p>하였다. 필상(弼商) 등이 대비께 아뢰기를, “이제 졸곡이 지났고, 또 선왕(先王)의 유교(遺敎)도 계시니, 육선을 들으셔야 하겠습니까.” 하니, 대비가 전교하기를, “주상께서 이미 근엄하시고 경들이 또 청하니 따라야 마땅하겠으나, 안심하고 고기를 먹는 것은 나로서는 차마 못하겠다.” 하매, 필상(弼商) 등이 아뢰기를, “상례(喪禮)는 당연히 선조(先祖)를 따라야 하옵니다.” 하니, 대비께서 전교하기를, “정희 왕후(貞熹王后)께서는 연령이 높아 기운이 쇠약해지기 때문에, 백 일이 지난 뒤에는 곧 육선을 드셨지만, 나는 나이가 아직 젊으니 비록 육선을 들지 아니하여도 무슨 해가 있겠는가?” 하고, 윤허하지 않았다.</p>	<p>卿等又請，當從之。然安心食肉，予不忍也。” 弼商等啓：“喪禮，當從先祖。” 傳曰：“貞熹王后，年高氣衰，故百日後乃進。予則年齒尙富，雖不肉膳，何害？” 不允。</p>
<p>연산 4권,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4월 20일(갑술) 2번째기사</p>	<p>(전략) 경중(京中)에서 바치는 상각궁(常角弓), 석청밀(石淸蜜)·백청밀(白淸蜜)·경미(粳米) 같은 것은 비록 극히 정하게 갖추었다더라도 끝내 바쳐지지 못하고, 반드시 10배의 값을 준비해서 전노(典奴)에게 주고서야 바치게 되니, 그 폐습의 넷째입니다.(중략) 선부(膳夫)가 좌우로 있다.’ 하였는데, 지금의 사옹원(司饗院)은 바로 옛날의 선부입니다. 임금께서 드시는 선물(膳物)300) 은 모두 여러 내시들에게 맡겨져 굴러서 저자의 물건으로 되고 있사오니, 그 폐습의 여덟째입니다.(후략)</p>	<p>如京中所納常角弓、石淸蜜、白淸(密) [蜜]、粳米，雖極精備，終不得納。必備價十倍，以授典奴，而後得納。其弊，四也。(중략)“膳夫左右。” 今司饗院，卽古之膳夫也。進御膳物，皆委諸宦官，轉爲市物。其弊，八也。(후략)</p>
<p>연산 5권,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5월 3일(을유) 2 번째기사</p>	<p>신의 어머니가 본디 남원에 거처하였는데, 신이 돌아가 봉양하기를 청원하니, 성종 대왕께서 특별히 병조에 명하여 군인을 내어 주시어 서울로 모셔 오게 하고 매양 어주(御廚)의 진찬(珍饌)을 나누어 주셨습니다.</p>	<p>臣母，本居南原。臣請歸養，成宗大王特命兵曹，調給軍人，輿致京師。每分御廚之珍，臣母死時，</p>
<p>연산 5권,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p>	<p>위에 공상(供上)에 관한 일일지라도 사옹원(司饗院)의 제조와 더불어 정원에 고하여 아뢰어야 할 것인데, 검정의 말을 듣고 경솔하게 직계하니, 그 조짐이</p>	<p>雖供上之事，當與司饗院提調，告政院以啓，而聽檢丁之言，率爾直啓。其</p>

8년) 5월 6일(무자) 2 번째기사	장차 제어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漸，將至於難制。
연산 5권,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5월 11일(계사) 1번째기사	(전략)아뢴 것이 정말 당연하다. 각각 쌀 30석을 하사하라.”	“所啓固當。 其各賜米三十碩。”
연산 5권,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5월 16일(무술) 2번째기사	전교하기를, “궁궐 안에 잡인(雜人)의 출입을 막지 않아서 요란하게까지 된다. 건양문(建陽門)부터 경양문(景陽門)까지는 양전(兩殿)의 진상품을 가지고 오는 사람 외에는 모든 문안 비자(婢子) 및 잡인들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라.”	傳曰： “闕內雜人出入無防， 至爲擾亂。 自建陽門， 至景陽門， 兩殿進上齋持人外， 凡問安婢子及雜人等， 勿令出入。
연산 5권,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5월 16일(무술) 5번째기사	전 첨지(僉知) 심미(沈湄)가 바야흐로 국상 증인데 잇달아 소 2마리를 잡았으므로, 사헌부가 패상안(敗常案)에 기록하고 장 1백, 도(徒) 1년 반으로 안률(按律)343 하여 입계(入啓)하고,(후략)	前僉知沈湄， 方在國恤， 連宰二牛。 司憲府， 按律以錄敗常案， 杖一百、徒一年半， 入啓。(후략)
연산 5권,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5월 28일(경술) 1번째기사	시[宦寺]는 궁궐에 출입하는 신분으로 모든 음식이나 소제하는 일들을 맡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교묘하게 안색을 엿보고 뜻과 취미를 잘 알아맞추니, 그들의 달콤한 말과 아첨하는 태도가 집요하고 꾀절하여 임금의 시청(視聽)을 혹하게 함이 있어, 마침내는 군왕의 권위를 의지하여 국가에 화를 미치는 자가 많습니다.	宦寺出入宮禁， 凡饗膳、灑掃之事， 靡不任之。 巧伺候顏色， 善承迎志趣， 其甘言佞態， 浸潤膚受， 有以惑君上之視聽， 卒之憑依城社， 以禍國家者， 多矣。 今嚴用善， 以一熏腐之餘， 不畏朝廷， 不憚法憲。 以庖人訴怨細事， 敢爾直啓。 其心， 豈不以殿
연산 5권,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5월 28일(경술) 5번째기사	(전략) 토지 소출의 다과를 참작하여 진상(進上)을 삭감하고 몸소 절약하고 검소해서 좋아하고 숭상하는 것을 삼가실 것입니다. 신이 보기에는 각 지방에서 진상하는 공물 중에 토산물 아닌 것이 많아서 관리들이 관출할 능력이 없어서 민간에게 강제로 할당시키면 민간은 베[布]·조[粟]를 가지고 소산지를 찾아다니면서 곱절이 넘는 값을 주고 사게 되니, 진상할 물건은 언제나 말	

[斗]로 주고 되로 받고 섬으로 주고 말로 받게 되며, 또한 대소 관리들은 장부에 의거하고 침탈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니, 민간이 어찌 곤궁하지 않겠습니까. (중략) 명년부터 인자하고 너그러운 중앙 관원을 각 지방에 파견시켜서 토산물을 자세히 조사한 다음 공안(貢案)을 작성하소서. 각도의 진상으로 말하면 가까운 곳에서는 날로 바치고 먼 곳에서는 달로 바쳐서 육해(陸海) 생산물이 모두 바쳐지지 않는 것이 없으니, 당초에는 한두 가지 생산물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어떤 감사가 생각하기를, 신 자신은 먹고 나라에 올리지 않을 수 없다 해서 바쳤던 것이 이미 바친 뒤에는 으레 바칠 품목으로 지정되니, 생산된 것이 떨어져 지탱할 수 없어 다른 것을 팔아 바꾸어서 충당하느라고 수레가 없어지고 말이 쓰러져 가면서 사옹원(司饗院)에 바치면 엄인(閹人)390)·선부(膳夫)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니, 어찌 모두 백성들의 피와 기름인 줄을 알겠습니까. 소자첨(蘇子瞻)391)의 시에 ‘우리 임금의 군색한 것이 어찌 이 물건인가. 구체(口體)를 기르는 것이 어찌 이다지 누(陋)한가.’라고 하였으니, 이 뜻이 매우 좋습니다. 신이 요동(遼東)의 위치를 살펴보았더니, 산을 등지고 강에 닿아서 생산물이 또한 솔하나, 공물 바치는 것은 다만 인삼과 오미자뿐인데, 그것은 약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폐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하에는 은어(銀魚)가 나서 매우 흔한 것인데 어떤 환관이 가져다가 황제에게 바쳤더니, 지금 황제가 먹어 보고 맛이 좋아서 궁내의 돈으로 사들이도록 하고, 백성에게 공물로 바치라는 조서(詔書)는 내려지지 않았으니, <이것이> 바로 송 인종(宋仁宗)이 구운 양[燒羊]을 들이지 말게 한 뜻과 같습니다. 종묘에 설만(褻慢)한 음식을 올리는 것은 남제(南齊)의 실례(失禮)인데, 지금에 설만한 음식을 올리는 사실이 이미 많으니, 또한 예가 아닙니다. 신은 원하건대, 전하께서 몸소 검소하고 절약하여 자세히 살펴서 처분하시어 사방에서 구하기 어려운 물건을 기어코 구하여 바치려고 애쓰지 말도록 하소서. 요즘 사대부들이 제 몸 봉양이 너무 사치스러워서 토지는 척박하건만 풍

	<p>속은 사치스러워지며, 백성은 가난한데 조세는 촉급하니, 진실로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그 원인은 위에 있으니, 먼저 전하께서 음식 의복에 좋아하는 것을 삼가서 백관에게 본을 보이소서. 신은 들으니, 적삼 깃을 밖으로 접은 것은 옛적에는 이러한 풍습이 없었던 것인데, 세종께서 어느날 저녁에 바깥으로 접은 것을 여러 신하가 본받고 사방이 따라서 지금까지 폐지되지 않았으니, 임금의 한 번 좋아한 것이 미세한 것이라도 한때에 법이 되며 만세에 본받는 것이 이같으니, 어찌 삼가지 않아서 되겠습니까.</p>	
<p>연산 6권,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6월 3일(갑인) 1 번째기사</p>	<p>(전략) 오후에 왕은 태평관에 거둥하여 하마연(下馬宴)을 베풀었다. 왕이 술잔을 돌릴 적에 왕 사신은 말하기를,(중략) 왕이 술잔 돌리기를 마치고 나서 술이 세 순배를 돌때, 중국 사신들은 주정(酒亭)에 나아가서, 상사는 술잔을 잡고 부사는 술병을 들어 잔에 따르고, 삼사는 일제히 왕의 앞에 나아가 아울러 한 잔을 올리니, 왕은 받아 마시고 나서 서로 읍하며 남쪽 섬돌 아래서 작별했다. (후략)</p>	<p>王幸(大平館) [太平館], 設下馬宴。王, 行酒時,(중략) 王, 行酒訖, 酒三巡。 天使等, 詣酒亭。 上使執酒杯, 副使執瓶斟酒, 三使從之, 齊詣王前, 兼進一杯。 王飲訖, 相揖, 別于南階下,</p>
<p>연산 6권,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6월 8일(기미) 1 번째기사</p>	<p>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신종호(申從濩)가 와서 아뢰기를, “세 중국 사신과 두목(頭目)461)에게 하루 바치는 생선이 2백 여 마리에 달합니다. 이것이 모두 민간에게 나오는데, 이제 영접 도감(迎接都監)이 반드시 일정한 척량(尺量)에 달해야 받습니다. 이제 큰비로 인하여 강물이 한창 불어 있으므로 고기잡이가 어려워져 백성들이 괴로우니, 잡어(雜魚)를 써서 민폐를 덜으소서.”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p>	<p>己未/京畿觀察使申從濩來啓: “三天使、頭目, 一日所饋生鮮, 至二百餘尾, 皆出於民戶。 今迎接都監, 必尺準, 然後受之。 今因大雨, 江水方漲, 捕魚爲難, 民間困苦。 請用雜魚, 以除民弊。” 傳曰: “可。”</p>
<p>연산 6권,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6월 17일(무진) 1번째기사</p>	<p>영의정(領議政) 노사신(盧思愼)이 아뢰기를, “예전에는 중국 사신[天使]을 대접하는 잔치에 재상이 술잔을 돌려 그 잔이 먼저 중국 사신에게 가면 중국 사신이 서서 받아 마시고 나서 왕의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왕은 읍(揖)하고 중국 사신에게 앉으라고 한 다음에 왕은 재상이 올리는 잔을 받는 것이 준례로 되었는데, 근일에 잔치를 베풀어 재상이 잔을 돌릴 적에 중국 사신이 받아 마시니, 이는 예모(禮貌)에 어긋난 것입</p>	<p>戊辰/領議政盧思愼啓曰: “在前, 天使設宴時, 宰相行酒, 先於天使。 天使, 立而受, 飲訖, 至於王前, 王揖天使, 勸坐後, 王受宰相進爵, 例也。 近日設宴, 宰相行酒時, 天使坐而受飲, 有失禮貌。 非以自尊也, 於朝廷禮貌,</p>

	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조정의 예모로 보아 불가하오니, 앞으로는 이런 예를 고치소서.”	不可。今後，請改此禮。”
연산 7권,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7월 3일(갑신) 2 번째기사	고정지(藁精紙)는 바로 성종 대왕께서 상공(常貢) 외에 또 어전(魚箭)490) 을 주어 준비시켜 널리 경적(經籍)을 박아내어 사방에 퍼려 하신 것입니다	“藁精紙，乃成宗大王於常貢外，又賜(魚)〔漁〕箭而備之，欲廣印經籍，以布四方者也。
연산 7권,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7월 3일(갑신) 3 번째기사	일본국(日本國) 평방식부위(平方式部尉) 원충능(元忠能)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日本國平方式部尉(元忠能)〔源忠能〕遣人獻土宜。
연산 7권,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7월 29일(경술) 2번째기사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가뭄이 너무도 혹심하니, 감선(減膳)561) 하고, 술을 금하고, 사면령(赦免令)을 반포하는 것이 옳겠다.”	傳于承政院曰：“旱氣太甚，可減膳、禁酒、頒赦。”
연산 8권,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8월 1일(신해) 1 번째기사	전교하기를, “이제 비가 내렸으니, 금주령(禁酒令)을 파하라.” 하였다.	朔辛亥/傳曰：“今既下雨，其罷酒禁。”
연산 8권,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8월 3일(계축) 1 번째기사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비가 흠족히 왔으니, 반찬을 줄이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癸丑/承政院啓：“雨澤已洽，請勿減膳。”從之。
연산 8권,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8월 7일(정사) 1	전평 우진(田平寓鎭), 원 조신 탄정 소필 홍(源朝臣彈正小弼弘)564) 이 사람을 보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丁巳/田平寓鎭源朝臣彈正少弼弘遣人，來獻土宜。

번제기사		
연산 8권,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8월 8일(무오) 2 번째기사	선릉 수릉관(宣陵守陵官) 박안성(朴安性)이 치계(馳啓)하기를, “삭망제 집사(朔望祭執事)들의 공궤(供饋)에 고기를 쓰기 때문에 혹 닭을 잡 고 혹은 천렵(川獵)하여 냄새가 재실(齋室) 부엌에 풍기니, 이제부터는 제관 (祭官)은 순전히 소식(素食)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宣陵守陵官朴安性馳啓曰: “朔望祭執 事供饋用肉, 故或(役) [殺] 雞、或川 獵, 臭徹齋廚。 今後祭官全素食何 如?” 傳曰: “依所啓。”
연산 8권,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8월 9일(기미) 2 번째기사	(전략) 음식상을 의정부·충훈부에 하사하시고, 또 선은(宣醞)567) 을 하사하시 기도 하였는데, 이제 국상을 당한 때이니, 마음에 매우 미안합니다.”(후략)	。 賜床于議政府、忠勳府, 又賜宣醞, 今當國恤, 心甚未安。”
연산 8권,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8월 14일(갑자) 1번째기사	전교하기를, “명일은 폐비 윤씨의 기일(忌日)이니, 사옹원(司饗院)으로 하여금 소찬을 들이 도록 하라.” 하매,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만일 소찬을 드신다면 아랫사람들이 감히 육식을 못하며, 또 기제(忌祭)를 지내신다면 반드시 재계하여야 하는데, 재계를 하면 형옥(刑獄) 관계 판결 문 서도 아릴 수 없습니다. 신 등은, 대신과 예관(禮官)에게 의논함이 마땅하다 고 생각합니다.” (후략)	甲子/傳曰: “明日乃廢妃尹氏忌日, 令 司饗院進素膳。” 承政院啓: “若進素 膳, 則下不敢食肉。 且行忌祭, 則必 齋戒, 齋戒則刑決文書亦不得啓。 臣 等以爲, 議于大臣及禮官爲便。”(후 략)
연산 8권,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8월 15일(을축) 1번째기사	어서(御書)로 승정원에 교시(敎示)하기를, “폐후(廢后)가 덕이 부족하여 부왕(父王)의 버림을 받았으니, 나는 골육의 정 을 잊지 못하여 차마 고기를 먹지 못하지만, 여러 신하들이야 어찌 소식을 하 려 하느냐.”(후략)	乙丑/御書示承政院曰: 廢后以菲薄, 爲父王所棄, 予不忘骨肉 之情, 不忍食肉, 群臣何爲欲素也?” (후략)
연산 8권,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전 동지중추부사 최경례(崔景禮)가 예궐(詣闕)하여 숙배(肅拜)하고 또 좋은 말 한 필을 바치매, 왕이 명하여 술을 하사하고 또 활 한 개, 표범 가죽 한 벌을	○癸酉/前同知中樞府事崔景禮詣闕肅 拜, 又獻良馬一匹, 上命饋酒, 又賜弓

8년) 8월 23일(계유) 1번째기사	내렸다.(후략)	一張、豹皮一領。(후략)
연산 8권,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8월 26일(병자) 1번째기사	전교하기를, “내가 세 대비전에 드리려 하니, 쌀 3백 석을 내수사(內需司)로 보내라.” 하였다.	丙子/傳曰: “予欲獻于三大妃殿, 米三百碩送于內需司。”
연산 9권,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9월 1일(신사) 1 번째기사	일본국 압타원영(鴨打源永)이 사람을 보내어 와서 토산물[土宜]을 바쳤다.	朔辛巳/日本國鴨打源永遣人來獻土宜。
연산 9권,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9월 6일(병술) 1 번째기사	(전략) 뱃삿[船價]·수레삿[車價]는 목은 쌀로 주어야 하는데도 험쌀로 주고, (후략)	船價、車價, 當給以陳米, 而以新米給之。
연산 9권,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9월 27일(정미) 1번째기사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영응 대군(永膺大君) 부인이 병풍 및 잡물을 드렸는데, 명하여 면포 5백 필, 정포(正布) 2백 50필, 쌀 1백 석을 하사하였다고 합니다.	丁未/承政院啓: “永膺大君夫人進屏風及雜物, 命賜絺布五百匹、正布二百五十匹、米百碩。
연산 9권,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10월 5일(갑인) 2번째기사	일본국 평지평(平持平)이 사람을 보내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日本國平持平遣人來獻土宜。
연산 9권,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10월 9일(무오) 2번째기사	(전략)왜인(倭人)이 충주(忠州) 단월역(丹月驛)에 도착하여 역리(驛吏)를 책망하여 닭을 잡아 대접하라고 하였는데, 역리가 국상중이므로 좃지 않으니, 왜인이 이르기를 ‘너희 나라에는 상사가 있지만 우리 도주(島主)는 건강하다.’고 하면서 강제로 취하여 먹었으며, 충주읍에 당도하여서는 잔치상을 차려 대접	倭人到忠州丹月驛, 責驛吏令殺雞饋之, 驛吏以國恤不從, 倭人云: ‘汝國雖有喪, 我島主無恙.’ 遂強取而食。到忠州責辦宴享, 州官終不設。

	하라고 독촉하는 것을 주의 관원이 끝내 베풀어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후략)	
연산 10권,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11월 5일(갑신) 1번째기사	졸곡(卒哭)이 겨우 지나면 일체 복을 벗고, 술 마시며 고기 먹기를 평시와 다름 없이 하니, 지금 복을 도로 입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예에 어긋나는 것이 심합니다. 또 공자(孔子)는 그날 곡을 하였으면 노래를 부르지 않았는데, 지금 백관들은 영사전(永思殿)에서 배제(陪祭)649) 한 뒤에 상복을 몸에 걸치고서도 태연히 고기를 먹으니, 곡읍(哭泣)한다는 것이 다만 가식[虛文]일 뿐입니다. 신이 근일 배제하는 반열에 섰다가 이런 것을 보고 마음에 견디지 못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삭망일에는 고기를 사용하지 말도록 금령(禁令)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조종조로부터 그렇게 해 온 것이니, 새로 금령을 만들 수는 없다.” 하였다.	卒哭纔過，一切釋服，飲酒食肉，無異平時。今雖不可還服，然其悖禮甚矣。且孔子於是日哭則不歌。今百官於永思殿陪祭之後，衰麻在身，而恬然食肉，其所以哭泣者，特虛文耳。臣近日立於陪祭之列，而見其如是也，心有所不忍。請於朔望日，勿令用肉事，立禁何如?” 傳曰：“自祖宗朝已然，不可新立禁條。”
연산 10권,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11월 15일(갑오) 2번째기사	또 영사전(永思殿) 다례(茶禮)에는 소선(素膳)을 쓰면서 대신[宰樞]들에게 술을 줄 때에는 고기를 쓰는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하오니, 이제부터 고기를 쓰지 마소서.” 하였으나, 들어 주지 않았다.	且永思殿茶禮，用素膳，而於宰樞饋酒之時用肉，甚未穩。請自今勿令用肉。”不聽。
연산 10권,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11월 18일(정유) 1번째기사	공안(貢案)696) 에 정한 것이 흔히 그 지방 생산이 아니므로 반드시 포목과 미곡을 날라다 생산지에 가서 사서 바쳐야 합니다.(중략)이제 좀 한가한 해를 기다려서 별도로 조관(朝官)을 보내어 순행하며 지방 산물을 조사하여 공안을 다시 정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요(需要)는 해조(該曹)에만 책임 지우고 정원으로 하여금 따로 전지를 내리지 않게 하시면 다행이겠습니다.(중략) , 초하루 보름에는 도로 상복을 입고 곡읍(哭泣)하면서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것은 정리에 온당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제도를 정하여 백관은 초하루 보름에 술·고기를 쓰지 말도록 하면 이것이 예전의 준례는 아니지만 역시 때에 적합하게 마련하는 일입니다.	然百爾上供之物，賦於稅外，科斂名色不一而足。貢案所定，多非土產，必抱布運米，轉貿於產地而納之，(중략)今宜待閑暇之年，別遣朝官，巡問土產，更定貢案，而凡有需索[需要]，專責該曹，勿令政院別下有旨幸甚。(중략)然朔望則反衰哭泣，而飲酒食肉，情實未安。自今定制，百官於朔望，勿用酒肉。雖非舊例，亦可義起。(후략)

연산 10권,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11월 20일(기해) 2번째기사	대마주 태수(對馬州太守) 평 조신 종정국(平朝臣宗貞國)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對馬州太守平朝臣宗貞國, 遣人獻土宜。
연산 10권,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11월 29일(무신) 1번째기사	백관이 혼전(魂殿)에서 배제(陪祭)한 뒤에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태연히 거리끼는 것이 없으니, 공자의 「곡하는 날에는 노래하지 않는다.」는 뜻에 어긋납니다. 삭망일에는 일체 주육을 금하소서.	百官於魂殿陪祭之後, 飲酒、食肉恬莫之忌, 有乖孔子哭則不歌之意。請於朔望日一禁酒肉,
연산 11권,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12월 6일(을묘) 3번째기사	일본국(日本國) 미주태수(尾州太守) 원 조신 번(源朝臣幡)이 사람을 보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日本國海州太守源朝臣幡, 遣人來獻土宜。
연산 11권,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12월 18일(정묘) 2번째기사	사옹원(司饗院)이 반감(飯監)을 의망(擬望)하였는데, 임금께서 박마지(朴爾只)의 이름을 써서 내리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반감은 바로 각사(各司)의 노자(奴子)인데, 그 사람됨을 상께서 어떻게 아십니까? 천인을 상(上)으로 하여금 아시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청탁을 들은 것이 아니다. 내가 동궁(東宮)에서 시선(視膳)737 할 적에 늘 그 사람됨을 보았기 때문이다.” 하였다.	司饗院擬飯監望, 御書朴爾只之名以下。承旨等啓: “飯監乃各司奴子, 其賢否, 上何由知之? 以賤人而使上知之可乎?” 傳曰: “予非聽請, 予在東宮視膳時, 常見其爲人故耳。”
연산 11권,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12월 25일(갑술) 1번째기사	왜인(倭人) 성구(盛久)가 사자(使者)로 보낸 사만로유(沙萬老有) 등 3사람과 야인(野人)의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낭고다지(浪固多只) 등 7 사람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甲戌/倭人盛久使送沙萬老有等三人, 野人同知中樞府事浪固多只等七人, 來獻土宜。
연산 12권, 2년(1496) 병진 / 명 홍치(弘治)	승정원(承政院)에 내수사(內需司)의 단자(單子)를 내리고 전교하기를, “유점사(楡岾寺)와 낙산사(洛山寺)에 소금을 공급하라는 분부에 선왕의 수결	下內需司單子于承政院, 仍傳曰: “楡岾、洛山給鹽之教, 有先王親押, 今不

9년) 1월 1일(경진) 2 번째기사	이 있으니, 이제 와서 폐기할 수 없다.(후략)	廢也
연산 12권, 2년(1496 병진 / 명 홍치(弘治) 9년) 1월 2일(신사) 4 번째기사	홍문관 교리(校理) 이수언(李粹彦)이 사명을 받들고 가다가 황해도(黃海道)에 서 병으로 죽으니, 명하여 관곽(棺槨)·미두(米豆)·지지(紙地) 등속을 주게 하였 다.	弘文館校理李粹彦奉使， 病死于黃海 道， 命給棺槨、米豆、紙地等物。
연산 12권, 2년(1496 병진 / 명 홍치(弘治) 9년) 1월 10일(기축) 1번째기사	승지들이 아뢰기를, “전일에 국상(國喪) 때문에 대내(大內)의 농작(農作)을 정지하였사온데, 지금 도 역시 국상의 3년 안이웁기에 감히 품달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단지 동궁(東宮)에서 간략히 베풀도록 하라.” 하였다.	己丑/承旨等啓：“前日以國喪， 停內農 作。 今亦國恤三年內， 敢稟。” 傳曰： “只於東宮略設。”
연산 12권, 2년(1496 병진 / 명 홍치(弘治) 9년) 1월 13일(임진) 5번째기사	홍문관 수찬(修撰) 이관(李寬)이 모친의 상을 당하매, 호조(戶曹)에 명하여 청 밀(淸蜜) 5말·진유(眞油) 5말·진말(眞末) 15말·쌀과 콩 아울러 10섬·정포(正 布) 10필을 주게 하였다.	弘文館修撰李寬遭母喪， 命戶曹賜淸蜜 五斗、眞油五斗、眞末十五斗、米豆 并十碩、正布十匹。
연산 12권, 2년(1496 병진 / 명 홍치(弘治) 9년) 1월 18일(정유) 3번째기사	왜인(倭人) 오라(五羅)·구라(仇羅) 등 4인과 야인(野人) 도만호(都萬戶) 이처허 내(李處虛乃) 등 7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倭人五羅、仇羅等四人， 野人都萬戶李 處虛乃等七人， 來獻土宜。
연산 12권, 2년(1496 병진 / 명 홍치(弘治) 9년) 1월 22일(신축) 5번째기사	“승양의 말은 그러하나, 성근을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는 알 수 없으니, 아울 러 성근을 심문하는 것이 어떠한가? 또 온 조정의 재상·조사(朝士)가 무릇 고 기를 먹는 것이 어찌 선왕에게 박하게 하는 것이라. 골육 지친과 대신들도 오 히려 먹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지금 성근이 고기를 먹지 않는다니 역시 매 우 괴이하다. 옛날에도 역시 이러한 사람이 있었는가? 경들의 뜻도 내 뜻과 서로 같은지 묻고자 한다.”	“承陽之言如是， 其未見誠謹與否， 未 可知也。 并問誠謹何如？ 且滿朝宰 相、朝士凡食肉者， 豈薄於先王哉？ 骨 肉、大臣尙不得不食， 今誠謹不食肉， 亦甚詭異。 古亦有如是之人乎？ 當觀 卿等之意， 與予意相合與否。” 承旨金

	<p>하매, 승지 김응기(金應箕)·권경우(權景祐)·구치곤(丘致峴)이 아뢰기를, “성근이 이 말을 들으면 그 역시 반드시 자백하려고 할 것이오니 아울러 심문하는 것이 매우 합당하며, 또 모든 일은 예문(禮文)에 따라야 하는 것인데, 성근이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과연 이상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성근을 잡아 와서 국문하라.” 하였다.</p>	<p>應箕、權景祐、丘致峴啓：“誠謹聞此，則亦必欲自白矣，并問甚可。且凡事宜從禮文，而誠謹之不食肉，果異常。”傳曰：“誠謹其拿來鞠之。”</p>
<p>연산 12권, 2년(1496 병진 / 명 홍치(弘治) 9년) 1월 23일(임인) 3번째기사</p>	<p>땅을 개간하여 이랑을 만들고, 바닷물을 달여서 소금을 만드는 것이라, 소금 고는 괴로움이 농상(農商)보다 고되므로 비록 국용(國用)만으로도 소민(小民)이 오히려 원망하옵는데, 하물며 저 승도(僧徒)에게 공급함에리까.</p>	<p>墾地爲畦。煮海爲鹽。亭竈之弊，苦於農商。雖只國用，小民猶怨，況供彼僧徒乎</p>
<p>연산 12권, 2년(1496 병진 / 명 홍치(弘治) 9년) 1월 24일(계묘) 2번째기사</p>	<p>야인(野人) 중추(中樞) 동상시(童尙時) 등 17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p>	<p>野人中樞童尙時等十七人，來獻土宜。</p>
<p>연산 12권, 2년(1496 병진 / 명 홍치(弘治) 9년) 1월 25일(갑진) 3번째기사</p>	<p>송질(宋軼)이 아뢰기를, “정성근의 공사(供辭)에, ‘유승양과는 상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명과 안면도 역시 알지 못하는 바이니, 무슨 상통할 까닭이 있겠습니까. 신은 성종조에 홍문관으로서 10여년을 시종하는 동안에 특별히 천은(天恩)을 입었사오나, 보은할 길이 없사옵기에 지금까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하였습니다.”</p>	<p>宋軼啓曰：“誠謹供云：‘與柳承陽非但不相從，名面亦所不知，何緣交通？臣在成宗朝，以弘文館，侍從十餘年，別蒙天眷，報恩未由，故至今不啖肉。’”</p>
<p>연산 12권, 2년(1496 병진 / 명 홍치(弘治) 9년) 1월 26일(을사) 2번째기사</p>	<p>의대(衣帶)를 하사 받은 자도 역시 성근만이 아니며, 술도 역시 어찌 성근에게만 하사하셨으랴. 하물며 정성으로 말하면 골육지친은 종신토록 오히려 고기를 먹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나, 성근이 고기를 먹지 않은 것은 반드시 속셈이 있을 터인데, 어찌 끝내 곧바로 말하지 않는가.”</p>	<p>衣帶受賜者亦非獨誠謹，酒亦豈獨賜誠謹耶？況以誠而言，則骨肉之親，雖終身尚不欲食肉。誠謹之不食肉必有情，其終不直言乎</p>
<p>연산 12권, 2년(1496 병진 / 명 홍치(弘治)</p>	<p>강원도(江原道) 전역이 토지가 척박하여 백성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형편이운데, 그들을 마구 부려 소금을 고아내니 백성의 힘이 일차로 피곤하고</p>	<p>江原一道土地磽确，民不聊生，而驅使煮鹽，民力一困也</p>

9년) 1월 29일(무신) 2번째기사		
연산 12권, 2년(1496) 병진 / 명 홍치(弘治) 9년) 2월 4일(임자) 4 번째기사	서울에 올라온 야인(野人)이 서울에 사는 귀화한 사람들과 부동하여 부의(賻儀)를 보낸다고 칭탁하고 마구 미면(米麪)과 유밀(油蜜)을 받아서 나누어 쓰고 있으니, 국고를 허비하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上京野人，與京居向化等符同，托以致賻，冒受米麪、油蜜而分用，其虛耗國廩不貲。請今後親父母、同生外，勿許致奠。”
연산 12권, 2년(1496) 병진 / 명 홍치(弘治) 9년) 2월 19일(정묘) 1번째기사	어서(御書)를 승정원(承政院)에 내리기를, “사당(沙糖)·채단(綵段)·주독(酒毒)을 푸는 빈랑(檳榔)·괘향(掛香)824) ·각양의 전용(氈絨)·각양의 감리(甘梨)·용안(龍顏)825) 등속의 물건을 성절사(聖節使)의 내왕편에 사가지고 오게 하라.” 하였다.	丁卯/下御書于承政院曰： 沙糖、綵段，解酒毒檳榔、(掛) [櫝] 香，各樣氈絨，各樣甘梨、龍(顏) [眼]、荔枝等物，聖節使之行貿來。
연산 12권, 2년(1496) 병진 / 명 홍치(弘治) 9년) 2월 23일(신미) 2번째기사	건너편 가까운 땅에 살게 하고서 때때로 소금·간장 같은 것을 지급하여 무휼(撫恤)하는 뜻을 보이는 것이 편의하겠습니다.	使處越邊近地，時給鹽醬，
燕山 13卷, 2年(1496) 丙辰 / 명 홍치(弘治) 9年) 3月 4日(壬午) 2 번째기사	(전략) 성종조에 있어 내시 이효지(李孝智)가 상감 앞에서 얼음을 먹다가 일이 불경에 걸리자 성종께서 장(杖)을 쳐서 외지로 귀양을 보내셨는데(후략)	李孝智飲冰上前，事涉不敬，成宗杖流于外
연산 13권, 2년(1496) 병진 / 명 홍치(弘治) 9년) 3월 4일(임오) 6 번째기사	(전략) 내수사의 노비(奴婢)나 곡식 등의 일이라면 직계(直啓)하여도 좋으나, 조정의 경비(軍費)는 내시가 간여할 바가 아니며, 무릇 아뢰는 일은 반드시 승정원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여러 조정을 시종한 김효강(金孝綱)으로서 모를 리가 없는데, 제 마음대로 직계한 것은 불가합니다.”(후략)	若內需司奴婢、穀食等事，則直啓宜矣 朝廷經費，非宦寺所知。且凡啓事，必由承政院。孝江累朝侍從，非不知之，而率意直啓不可。
연산 14권, 2년(1496) 병진 / 명 홍치(弘治) 9년) 윤3월 26일(계)	지평(持平) 이세인(李世仁)이 아뢰기를, “지금 가물 징조가 있는데 민간에서 잔치하여 술 마시기를 도(度)가 없이 하오니, 금주(禁酒)하소서.”	癸酉/持平李世仁啓：“今有旱徵，而民間宴飲無度，請禁酒。”傳曰：“可。”

유) 1번째기사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연산 14권, 2년(1496 병진 / 명 홍치(弘治) 9년) 윤3월 26일(계 유) 3번째기사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가 치계(馳啓)하기를, “웅천(熊川) 주민들이 부인당포(夫仁堂浦)·만산도(滿山島) 등지에서 굴[石花] 을 캐서 먹고 중독되어 죽었사온데, 그 고을 늙은이들의 말을 들으면, 지난 계축년(959) 에도 주민들이 역시 이곳에서 굴을 캐 먹고 남녀가 중독되어 죽 었다고 하오니, 금후로는 이 섬 등지에서는 채포(採捕)를 금하소서.” 하니, 죽은 사람의 집에 쌀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慶尙道觀察使馳啓: “熊川居民等, 於 夫仁堂浦、滿山島等處, 採石花而食, 中毒致死。 縣父老云: ‘去癸丑年春, 居民等亦採食於此, 男女毒死。’ 今後 同島等處, 請禁採捕。” 命給米于致死 人家。
연산 14권, 2년(1496 병진 / 명 홍치(弘治) 9년) 4월 6일(계미) 3 번째기사	(전략) 왕실(王室)과 인척이 된 자는 다투어 화려함을 숭상하매 아랫사람들까 지도 서로 본받아서 부인이 돈피 갖옷이 없으면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고, 집 에 진수 성찬이 없으면 손님 접대도 못하며,(후략)	連姻王室者, 爭尙華麗。 下之人轉相 慕效, 婦人無貂裘, 則不與會; 家家非 珍羞, 則不接賓,
연산 14권, 2년(1496 병진 / 명 홍치(弘治) 9년) 4월 9일(병술) 1 번째기사	경기도는 밀·보리가 말라가고 있으니, 기우제(祈雨祭)를 지내게 하소서.”	京畿則兩麥將枯, 請令祈雨
연산 14권, 2년(1496 병진 / 명 홍치(弘治) 9년) 4월 29일(병오) 1번째기사	근자에 가뭄이 매우 심하여 밀보리가 다 말라 죽고,	近者旱氣太甚, 兩麥盡枯
연산 15권, 2년(1496 병진 / 명 홍치(弘治) 9년) 5월 13일(기미) 2번째기사	지금 비가 아직 흠족하지 못하였는데 명하여 주금(酒禁)을 파하는 것은 온편 치 못합니다.”	且今雨澤尙未周洽, 命罷酒禁未便
연산 15권, 2년(1496 병진 / 명 홍치(弘治) 9년) 6월 7일(임오) 3	정원에 선운(宣醞)1004) 를 내리시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임금은 백성의 부모이니, 본디 백성이 좋아하는 바를 좋아하고, 백성이 싫어 하는 바를 싫어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비가 흠족하게 와서 온갖 곡식이 무성	下宣醞于政院, 仍傳曰: “君者, 民之 父母, 固當所好好之, 所惡惡之。 今 者雨澤周足, 百穀茂盛, 予甚喜之。

번제기사	하니, 내가 매우 기뻐서 이에 궁중(宮中)의 술을 내린다.”	茲賜宮醴。
연산 15권, 2년(1496) 병진 / 명 홍치(弘治) 9년) 6월 13일(무자) 2번째기사	홍문관 부제학 박처륜(朴處綸) 등이 상소하기를, “어서(御書)를 보오매, 친절하게 타이르셔서 충성을 장려하고 궁중의 술을 하사하셔서 은혜와 영광이 겹쳐지매 감격과 부끄러움이 함께 솟구칩니다.	弘文館副提學朴處綸等上疏： 伏觀御書，聖諭丁寧，獎之以忠款，賜之以宮醴，恩榮橫加，感愧交集
연산 16권, 2년(1496) 병진 / 명 홍치(弘治) 9년) 7월 2일(정미) 8 번째기사	만약 부득이하여 반드시 그 전대로 종향하려 한다면 익안대군의 신주는 대묘(大廟) 앞 향실(享室)에 그대로 두고, 봄·가을 및 설달[臘] 대제(大祭)에 출취(出就)1031 하여 배식(配食)하면 또한 사체(事體)에 해롭지 않겠습니다.”	如不得已而必欲仍舊從享，則益安大君神主，仍置大廟前享室，春秋及臘大祭，出就配食，亦不害事體。
연산 17권, 2년(1496) 병진 / 명 홍치(弘治) 9년) 8월 9일(계미) 2 번째기사	금 탐지하는 사람이 사로잡힌 일을 보니, 8, 9월 사이에 야인들이 인삼(人蔘)을 캐고 혹은 벌꿀을 찾아서 산골짜기에 널려 있을 때입니다.	今觀體探人被虜之事，八九月之間，野人等或採人蔘，或採蜂蜜，
연산 18권, 2년(1496) 병진 / 명 홍치(弘治) 9년) 9월 10일(계축) 1번째기사	용안(龍眼)·여지(荔枝)·생리(生梨)·감자(柑子)를 서울에 갈 때마다 사오는데, 약재(藥材)나 궁각(弓角)은 소용이 요긴하니 부득이한 일이지만, 여지 등 물건은 원래 이것이 완호(玩好)의 물건인데, 반드시 가져 오려고 하니, 그 조짐을 기를 수 없습니다.”	又龍眼、荔枝、生梨、柑子，赴京每行買來。如藥材、弓角用緊，不可得已，若荔枝等物，固是玩好之物，必欲致之，其漸不可長也。
연산 18권, 2년(1496) 병진 / 명 홍치(弘治) 9년) 9월 27일(경오) 1번째기사	(전략)강원도는 주민이 적으며 각 관아와 각역의 노비도 적어서, 진상품(進上品)을 운반할 때에는 어린이들까지 찾아내서 간신히 수송합니다. (후략)	“江原道居民鮮少，各官、各驛奴婢亦少，進上轉運時，則至括童稚，艱難輸送。
연산 18권, 2년(1496) 병진 / 명 홍치(弘治) 9년) 10월 21일(갑오) 1번째기사	전교하기를, “폐비(廢妃)의 어머니 신씨(申氏)에게, 영둔녕(領敦寧)의 집에 의하여, 해마다 쌀 30석과 황두(黃豆) 20석을 하사하라.”	甲午/傳曰：“廢妃母申氏，依領敦寧(家)〔例〕，歲賜米三十碩、黃豆二十碩。”
연산 19권, 2년(1496)	승지 강귀손(姜龜孫)·송질(宋軼)이 아뢰기를,	承旨姜龜孫、宋軼啓：“曾命八道進月

<p>병진 / 명 홍치(弘治) 9년) 11월 5일(무신) 2번째기사</p>	<p>“일찍이 팔도에 명하여 월령 진공(月令進貢)1152) 에 속하지 않은 수산물(水産物) 중에 먹을 것을 진상하는 것은 양진(兩殿)을 위한 것입니다.(후략)</p>	<p>令，不付水族可食之物者，蓋爲兩殿也。</p>
<p>연산 19권, 2년(1496 병진 / 명 홍치(弘治) 9년) 11월 6일(기유) 1번째기사</p>	<p>(전략)“동청례는 무슨 공이 있어 가자하는 것입니까. 또 월령의 진상에 합당한 해산물을 봉진(封進)하지 않은 일로 황해 감사를 국문하게 명하였는데, 각도에서 이 말을 듣고 다투어 서로 봉진하여 피해가 장차 백성에게 미칠까 두렵습니다.” 하였는데 들어 주지 않았다.</p>	<p>童淸禮有何功，而加資乎？且以月令外進上，可當海物不封進事，命鞫黃海監司，恐各道聞之，爭相封進，弊將及民。”不聽。</p>
<p>연산 19권, 2년(1496 병진 / 명 홍치(弘治) 9년) 11월 6일(기유) 3번째기사</p>	<p>대마주 태수 평 조신 종익성(對馬州太守平朝臣宗杳盛)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p>	<p>對馬州太守平朝臣(宗杳盛) [宗材盛] 遣人來獻土宜。</p>
<p>연산 19권, 2년(1496 병진 / 명 홍치(弘治) 9년) 11월 8일(신해) 3번째기사</p>	<p>월령 외의 진상하는 일은 가령 송어(松魚)·연어(鰻魚)를 잡다가 우연히 다른 고기를 얻는다면 그것을 백성들 자신이 먹는 것보다 군상(君上)에게 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 것인가.”</p>	<p>月令外進上事，假使捉松魚、鰻魚，而偶得他魚，與其民自食之，寧不獻於君上乎？”</p>
<p>연산 19권, 2년(1496 병진 / 명 홍치(弘治) 9년) 11월 19일(임술) 2번째기사</p>	<p>우리 나라는 국토가 편소(褊小)하고 산물이 많지 않지만 시절과 현납하는 것이 월령(月令) 중에 매우 자세하게 드러나 있어 이것으로 넉넉히 종묘(宗廟)를 받들고 위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한 지 이미 오래인지라, 백성에게 미치는 피해가 간혹 있습니다. 더구나 평상의 공납 외에 다시 여러 도에 유시를 내리어 일시 용도에 충당한다면 선왕의 법전을 바꾸는 것이나 다름 없고, 백성이 감당하지 못함이 있을 것입니다.</p>	<p>我國家壤地褊小，所産不敷。時節水土之獻，著在月令，已極纖悉，足以奉宗廟、給供上。然行之既久，弊及於民者，間或有之。況常貢之外，下諭諸道，以濟一時之用，則先王之典，其不變易者無幾，而民力有所不堪。</p>
<p>연산 19권, 2년(1496 병진 / 명 홍치(弘治) 9년) 11월 20일(계해) 1번째기사</p>	<p>각 고을 수령들이 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반드시 다른 물건을 구하려고 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백성에게 폐를 끼칠까 염려된다. 토산물로 진상할 만한 것이 있으면 얻는 대로 진상하고, 폐가 백성에게 미치게 하지 말라.” 하였다.</p>	<p>甚善。”下書八道監司曰： 各官守令等，未知予意，必欲求得異物，則恐貽弊於民。如有土産可進之物，隨所得以進，毋令弊及於民。</p>

연산 19권, 2년(1496) 병진 / 명 홍치(弘治) 9년) 11월 22일(을축) 6번째기사	대마주 평 조신 종대선 양국행(對馬州平朝臣宗大膳亮國幸)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對馬州平朝臣宗大膳亮國幸遣人來獻土宜。
연산 19권, 2년(1496) 병진 / 명 홍치(弘治) 9년) 11월 23일(병인) 1번째기사	, 전교하기를, “월령 외의 진상은 지금 너희들의 말에 의하여 정지한다. 신손은 개정하게 하라.” 하였다.	傳曰：“月令外進上，今因爾等之言停之。新孫其改正。”
연산 19권, 2년(1496) 병진 / 명 홍치(弘治) 9년) 11월 30일(계유) 1번째기사	정언 남곤(南袞)이 질정관(質正官)으로 명(明)나라 서울에서 돌아와서 아뢰기를, “후추[胡椒]는 무역에 이익이 많기 때문에 명나라 서울에 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많이 가지고 가며 또 끼워 가기에 편리하므로 서장관(書狀官) 역시 미처 찾아내지 못합니다. 후추는 우리 나라 산물이 아니오니, 청하옵건대 통절히 금하여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소서.	癸酉/正言南袞以質正官，還自京師，啓：“胡椒利於貿易，故赴京之人必多齎去，又便於挾持，故書狀官亦未及檢察。胡椒非我國之產，請痛禁，毋使齎去。
연산 20권, 2년(1496) 병진 / 명 홍치(弘治) 9년) 12월 8일(신사) 3번째기사	일본국 기내 섭진주 병고진(畿內攝津州兵庫津)의 방식부위(方式部尉) 원충능(源忠能)이 사람을 보내 와서 토산품을 바쳤다.	日本國畿內攝津州兵庫津〔平〕方式部尉源忠能遣人來獻土宜。
연산 20권, 2년(1496) 병진 / 명 홍치(弘治) 9년) 12월 11일(갑신) 3번째기사	(전략) 충청도의 역마(驛馬)가 조잔(凋殘)하기 막심합니다. 이때 그 폐단을 물은즉, 생물(生物)을 진상할 때에는 도루묵[銀口魚] 같은 것이 10여 개만 되어도 반드시 상등 말에 얼음군[永丁]까지 실려서, 몽그러지지 않도록 길을 배나 달려 몰아갑니다. 그러므로 이로 인하여 말이 병들거나 죽어버려, 말 한 마리의 값이 무명 1백여 필까지도 이르니 빈한한 역리(驛吏)로서 갑자기 마련할 수가 없어 가산을 탕진하게 되어 역로(驛路)가 다 조잔해졌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만일 도루묵이 경기(京畿) 부근에서 나지 않는다면 진상하는 일을 폐할 수는 없지만, 〈서울〉 부근 여러 냇물에서도 이 고기가 많이 나고 있으	(전략) 忠淸道驛馬，彫殘無甚此時。問其弊則當生物進上時，若銀口魚雖十餘箇，必於上等馬，兼載氷丁，不使毀爛，倍道促驅，故因此或病或斃。一馬之價，綿布或至百餘匹，貧寒驛吏不能卒辦，蕩盡家產，驛路盡爲彫殘。臣意以謂，若銀口魚不產於京畿附近之地，則進上之事，不可廢也，附近諸川

	니, 무엇 때문에 백성을 손상하고 말을 죽여가며 먼 도에서 가져오겠습니까. 먼 도에서 나는 고기는 소금에 저려 상납하여 역로의 폐단을 덜게함이 어떻습니까?”	多産此魚，何以傷民斃馬，取於遠道乎？遠道所産之魚，沈鹽上納，以革驛路之弊何如？”
燕山 20卷, 2年(1496 丙辰 / 명 홍치(弘治) 9年) 12月 13日(丙戌) 4번째기사	대마주 복리산국(對馬州福利山國) 분선사 주지(分禪寺住持) 신(臣) 승통(僧統)이 사람을 보내어 와서 토산품을 헌납하였다.	對馬州福利山國分禪寺住持臣僧 〈崇〉統遣人來獻土宜。
연산 20권, 2년(1496 병진 / 명 홍치(弘治) 9年) 12월 14일(정해) 3번째기사	일본국 서해도 축전(築前)·대마(對馬) 두 주수대관(州守代官) 평조신(平朝臣) 종삼랑무가(宗三郎茂家)가 사람을 보내어 와서 토산품을 헌납했다.	日本國西海道筑前・對馬兩州守代官 平朝臣宗三郎茂家遣人來獻土宜。
연산 20권, 2년(1496 병진 / 명 홍치(弘治) 9年) 12월 16일(기축) 3번째기사	대마주 태수(對馬州太守) 평조신(平朝臣) 종익성(宗杳盛)이 사람을 보내어 와서 토산품을 헌납했다.	對馬州太守平朝臣宗杳盛遣人來獻土 宜。
연산 20권, 2년(1496 병진 / 명 홍치(弘治) 9年) 12월 22일(을미) 2번째기사	일본국 비전주 상송포(肥前州上松浦)의 압타 원영(鴨打源永)이 사람을 보내어 와서 토산물을 헌납했다.	日本國肥前州上松浦鴨打源永遣人來 獻土宜。
연산 20권, 2년(1496 병진 / 명 홍치(弘治) 9年) 12월 24일(정유) 3번째기사	대마주 풍당이군 태수 평조신 중 능등수 성준(對馬州豊唐二郡太守平朝臣宗能登守盛俊)이 사람을 보내 와서 토산품을 헌납했다.	對馬州豊・唐二郡太守平朝臣宗能登 守盛俊遣人來獻土宜。
연산 20권, 2년(1496 병진 / 명 홍치(弘治) 9年) 12월 25일(무술)	일본국 일기주(壹岐州)의 수호대관 진궁병부 소보 원 무(守護代官眞弓兵部少輔源武)가 사람을 보내 와서 토산물을 헌납했다.	日本國壹岐州守護代官眞弓兵部少輔 源武遣人來獻土宜。

3번째기사		
연산 20권, 2년(1496) 병진 / 명 홍치(弘治) 9년) 12월 26일(기해) 3번째기사	대마주 평조신 종언칠 성순(宗彦七盛順)이 사람을 보내어 와서 토산품을 헌납했다.	對馬州平朝臣宗彦七盛順遣人來獻土宜。
연산 21권, 3년(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1월 8일(경술) 1번째기사	전라도와 충청도에 글을 내려보내, 강요주(江瑤柱)1288) 를 드리지 말라 하였다.	庚戌/下書全羅、忠淸道， 令勿進江瑤柱。
연산 21권, 3년(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1월 8일(경술) 4번째기사	대간(臺諫)이 아뢰기를, “지금 전지를 내리어, ‘무릇 혼인하는 집에서 잔치하여 술마시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 풍속은 혼인하는 날이 되면 술과 고기를 많이 준비하고 다투어 가며 호사로움을 숭상하니(중략) 하니, 전교하기를, “우리 나라에서 혼인하는 날 밤에 친족을 모아 잔치하고 술마시는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다. 습속이 이러한데 모두 엄격히 금지시키는 것은 가혹하지 않으나?”	臺諫啓：“今降傳旨：‘凡婚姻家宴飲勿禁。’國俗當婚姻之夕，多辦酒肉，爭尙豪侈(중략) 傳曰：“我國婚姻之夕，會族宴飲，其來已久。習俗如此，而一切痛禁，無乃苛察耶?”
연산 21권, 3년(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1월 20일(임술) 10번째기사	전교하기를, “황두(黃豆) 백 석을 내수사(內需司)로 실어 보내라.” 하였다.	傳曰：“黃豆一百碩，輸送于內需司。
연산 21권, 3년(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1월 21일(계해) 4번째기사	호조에 전교하기를, “청어와 조기를 잡는 어전(魚箭)을 내수사(內需司)에 주라.” 하였다.	傳于戶曹曰：“青魚、石首魚魚箭，其給內需司。
연산 21권, 3년(1497)	최응현이 아뢰기를,	崔應賢啓：宗廟、社稷祭，同是大祀，

<p>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1월 24일(병인) 2번째기사</p>	<p>“종묘 사직의 제사는 다 같이 큰 제사입니다. 그런데 사직 제사에는 염소로 양을 대신합니다. 국초에는 양이 본국의 소산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대신 썼는데, 지금은 많이 번식되어 국가에서 쓰기도 남으니, 종묘의 예에 따라 양을 쓰십시오.”</p>	<p>而社稷則以羔代羊。 國初以羊非本國所產， 不得已代用。 今則滋息既繁， 國用有餘， 請依宗廟例用羊</p>
<p>연산 21권, 3년(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1월 24일(병인) 3번째기사</p>	<p>《오례의(五禮儀)》 주에는 ‘양과 돼지를 7체(體)로 나눈다.’고 하였는데, 7체는 곧 두 다리[髀], 두 어깨, 두 갈비와 등허리를 합하여 일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에는 ‘등허리는 가운데 있다.’고 하였는데, 지금 문리를 모르는 자들이 ‘다만 등 허리를 쓰는 것이다.’ 하면서 머리와 꼬리를 쓰지 않으니, 예문의 뜻을 심하게 잃은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머리와 꼬리를 버리지 말고 두 허리에 잇달아 쓰게 함이 어떻겠습니까?”</p>	<p>《五禮儀》註：‘羊豕分七體。’ 七體即兩髀、兩肩、兩脅並脊而爲七。 其註曰：‘脊居中。’ 今不知文理者以謂：‘但用脊， 而頭尾不用。’ 甚失禮文之意。 自今毋去頭尾， 連脊用之何如?”</p>
<p>연산 21권, 3년(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1월 26일(무진) 1번째기사</p>	<p>근자에 충의위(忠義衛) 홍식(洪植)이 혼인하는 날 저녁 잔치에 유밀과(油密果)를 써서 금령을 범하였는데 특명으로 버려 두게 했으며, 또 법을 마련하여 사용을 허가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혼인하는 예에는 모두 규정된 격식이 있는데, 유밀과는 신부가 시부모[舅姑]를 뵈올 때에만 쓰는 것입니다.</p>	<p>近者忠義衛洪植於婚夕之宴， 用油密果犯禁， 特命棄之， 又立法許用。 我國婚姻之禮， 皆有定式， 油密果只用於新婦見舅姑之時</p>
<p>燕山 21卷, 3年(1497 丁巳 / 명 홍치(弘治) 10年) 2月 1日(癸酉) 1번째기사</p>	<p>예조가 서계(書啓)하기를, “《문헌통고(文獻通考)》 중 종묘고(宗廟考)의 주에 이르기를, ‘변(邊)1340) 앞의 조(俎)1341) 가 두 줄[重]이다. 첫째 줄은 소의 날고기 체(體)로 채우니 두 다리[髀]·두 갈비[脅]·두 어깨와 등허리인데, 두 다리가 양쪽 끝에 있고 두 어깨·두 갈비가 그 다음이요, 등허리는 가운데에 둔다. 둘째 줄은 양의 날고기 7체로 채우는데, 그 순서는 소와 같고, 두(豆)1342) 앞의 조는 돼지 날고기 7체로 채우는데 그 순서는 양과 같다. 그리고 머리 오른쪽의 조는 세 줄이 되는데, 첫째 줄은 소와 양과 돼지의 머리 하나씩으로 한다.’고 하였으며, 아조(我朝) 《오례의(五禮儀)》 주에는 이르기를, ‘변 앞의 조는 하나를 소의 날고기로, 하나는 양의 7체로 채우는데, 두 다리 두 어깨 두 갈비와 등허리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리가 두 끝에 있고 어깨 갈비가 그 다음이요 등허리가 가운데 있고, 두 앞의 조에는 돼지의 날고기 7체로 채</p>	<p>朔癸酉/禮曹書啓曰： 《文獻通考》宗廟考註云：“邊前之俎爲二重， 第一重實以牛腥七體， 兩髀、兩脅、兩肩、並脊， 而兩脾在兩端， 兩肩、兩脅次之， 脊在中。 第二重實以羊腥七體， 其載如牛。 豆前之俎實以豕腥七體， 其載如羊。 頭右之俎爲三重， 第一重牛、羊、豕首各一。” 我朝《五禮儀》註云：“邊前俎一實牛腥， 一實羊七體， 兩髀、兩肩、兩脅、并脊， 而脾在兩端， 肩脅次之， 脊在中。 豆前俎實豕腥七體， 其載如羊， 而牛、</p>

	<p>우는데, 그 순서는 양과 같다. 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와 양과 돼지의 머리를 말한 것이 없으니, 옛 글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 본 뜻을 자세히 생각하여 보았지만 그 자세한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양과 돼지의 머리를 등허리 꼬리에 이어서 하나로 하여 쓰는 것이 어떻습니까? 또 염소와 양은 한 종류입니다. 그러나 양은 본국의 소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절을 마련할 때, 사직(社稷)과 납일(臘日)과 봄 가을 큰 제사에 친행(親行)할 때에는 양 네 마리로 정하였고, 섭행(攝行)할 때에는 양 한 마리로 정했습니다. 이에 의하면 섭행할 때에는 염소를 썼습니다. 지금 양이 많이 번식하였으니 섭행할 때에라도 양을 쓰는 것이 어떻습니까?”</p> <p>하니, 전교하기를, “의논하게 하라.”</p> <p>하자, 율필상(尹弼商)이 의논드리기를, “지금 양이 번식하였으니 쓸 수는 있겠지만 염소를 쓴 지가 이미 오래였으니 예조와 홍문관에서 널리 제도를 상고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p> <p>하고, 노사신(盧思愼)·신승선(愼承善)은 의논드리기를, “예문에 보면 모든 제사의 희생(犧牲)1343은 소와 양과 돼지를 쓰고, 염소를 쓴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종묘에는 양을 쓰고 사직에는 염소를 쓰는데 그것이 그렇게 된 유래를 알 수는 없지만 종묘와 사직은 일체(一體)이므로 다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종묘에서 하는 대로 양을 쓰게 하는 것이 예법에 맞을까 합니다.”</p> <p>하고, 어세겸(魚世謙)·한치형(韓致亨)·정문형(鄭文炯)·이극돈(李克墩)·유지(柳輕)는 의논드리기를, “큰 제사에 희생[牢]으로 쓰이는 것은 소와 양과 돼지입니다. 선왕조에서 종묘에는 양을 썼고, 사직에는 염소에 썼던 것이 어디에 근거하여 그렇게 한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양과 염소가 같은 희생이니 어찌 구별됨이 있겠</p>	<p>羊、豕首無稱，與古文小異。詳究本意，未知其詳。今後羊、豕首連脊尾爲一體薦之何如？且羔、羊一類，然羊非本國所產。故詳定時，社稷臘、春、秋大祭，親行羊四口，攝行羊一口。緣此，攝行時用羔。今羊多蕃息，雖攝行之時，用羊何如？</p> <p>傳曰：“議之。”尹弼商議：“今羊蕃息可繼之，但用羔已久，令禮曹、弘文館廣考古制。”盧思愼、愼承善議：“禮文凡祭祀之牲，用牛、羊、豕，而無用羔之文。我國宗廟用羊，社稷用羔。雖未知其所以然，宗廟、社稷一體，不可有異，依宗廟用羊恐爲得禮。”魚世謙、韓致亨、鄭文炯、李克墩、柳輕議：“大祀用牢，則牛、羊、豕。先王朝宗廟用羊，社稷用羔，未知何據而然。但羊與羔，等是牲耳，豈有別乎？先王舊章，不可輕改，令禮官詳考祖宗朝制禮之意，參酌古制，更啓後擬議施行。”成俊議：“以羔代羊之由，臣未得知。然均是大祀，依宗廟禮，用羊似當。”王從俊議。</p>
--	---	--

	<p>습니까. 선왕의 옛 법을 가볍게 고칠 수는 없으니, 예관(禮官)에게 조종조에서 예법 만든 뜻을 자세히 상고하게 하고 옛 제도를 참작하여 다시 아뢰게 한 후에 의논을 보아 시행하게 하소서.”</p> <p>하고, 성준(成俊)은 의논드리기를, “염소로 양을 대신한 이유를 신은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같은 큰 제사이니 종묘의 예절에 따라 양을 쓰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p> <p>하였는데, 왕이 성준의 논을 좇았다.</p>	
연산 21권, 3년(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2월 1일(계유) 5번째기사	<p>사복시 제조가 아뢰기를, “돼지 1백 마리를 내구(內廐)에서 기르라고 명하였습니다. 만일 우리를 짓지 않으면 반드시 말 구유를 더럽히고 대궐 안을 돌아다닐 것입니다. 선공감(繕工監)에게 공지에 우리를 짓도록 명하고, 그 먹일 양곡은 호조에서 문서를 적어 주도록 명하소서.”</p>	司僕寺提調啓: “猪一百口, 命畜于內廐。若不築牢, 則必汚穢馬槽, 奔突闕內。令繕工監於空地築之, 其喂養米料, 令戶曹題給。”從之。
연산 21권, 3년(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2월 3일(을해) 1번째기사	<p>백관이 권정례(權停例)1346) 로 인정전(仁政殿)에서 하례를 올리고, 여러 도의 특산물[方物]을 드렸다. 종친(宗親) 2품 이상과 의정부 육조 당상, 영돈녕(領敦寧) 이상, 공신 및 기로(耆老) 2품 이상, 승정원·홍문관·예문관(藝文館)·대간·실록청의 여러 집사와 거가를 따르는 여러 장수, 입직(入直)한 여러 장수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고, 또 술을 궁궐 안의 각 관사 및 입직한 군사들에게 하사하였다.</p>	百官以權停例, 陳賀于仁政殿。進諸道方物。賜宴于宗親二品以上, 議政府、六曹堂上, 領敦寧以上, 功臣及耆老二品以上, 承政院、弘文館、藝文館、臺諫、實錄廳(祭) [諸] 執事、隨駕諸將、入直諸將。又賜酒于闕內各司及入直軍士。
연산 21권, 3년(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2월 18일(경인) 2번째기사	<p>또 음식이 절제가 없어 보통 연회에도 많은 종류를 자랑하여 벌려놓고, 한 사람이 열 사람의 몫을 먹고 하루에 열흘의 비용을 다 쓰니, 물건을 마구 버리는 것이 이와 같이 심한 적은 없습니다</p>	且飲食無節, 尋常宴集, 誇長百品, 一人而兼十人之食, 一日而兼十日之費, 暴殄之物, 莫此爲甚
연산 21권, 3년(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2월 22일(갑오)	<p>중미(中米) 각 1백 석과 청밀(淸蜜) 각 1석, 참깨[眞荏子] 각 3석을 세대비전 본궁으로 보내라.”</p> <p>하였다.</p>	中米各一百碩、淸蜜各一碩、眞荏子各三碩, 送于三大妃殿本宮。”

1번째기사		
연산 21권, 3년(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2월 22일(갑오) 2번째기사	전교하기를, “선릉(宣陵)의 수능관(守陵官)·시릉관(侍陵官)과 영사전(永思殿)의 차비 내관(差備內官)에게 잔치와 풍악을 인정전(仁政殿) 동쪽 행랑 아래에서 베풀어주고, 각 색장(色掌)까지도 음식을 주라.”	宣陵守陵官、侍陵官，永思殿差備內官等，賜宴樂于仁政殿東廊下，至各色掌亦饋之。”
연산 21권, 3년(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2월 27일(기해) 5번째기사	호조에 전교하기를, “중미(中米) 60석을 사옹원(司饗院)으로 들이라.” 하였다.	傳于戶曹曰：“中米六十碩，其進于司饗院。”
연산 21권, 3년(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2월 29일(신축) 2번째기사	일본 국왕이 사신을 보내어 와 토산품을 바쳤는데,	日本國王遣使來獻土宜。
연산 22권, 3년(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3월 12일(갑인) 8번째기사	전교하기를, “기름 10석을 내수사로 실어 보내라.” 하였다.	傳曰：“油十碩輸送于內需司。”
연산 22권, 3년(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3월 16일(무오) 1번째기사	전교하기를, “호초(胡椒) 20석을 대궐 안으로 들이라.” 하매, 의영고(義盈庫)가 아뢰기를, “남아 있는 것이 그 수가 못 됩니다.” 하니, 다시 명하여 5석을 들이게 하였다. 성종조에는 창고가 가득 찼는데, 이때와서 모자라게 되었다.	戊午/傳曰：“胡椒二十碩入內。”義盈庫啓：“遺在不滿其數。”更命入五碩。在成宗朝庫積盈溢，至是告匱。
연산 22권, 3년(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3월 18일(경신)	일찍이 성화(成化)1448) 갑오년(1449) 가을에 성종 대왕께서 옛 도읍지에 순림(巡臨)하실 때 학궁에 행행하시어 유생들에게 술을 내려 주시고, 겸해서 쌀·베도 하사하시어 유학을 권장하시니 이것은 진실로 오도(吾道)에 큰 다행	歲在成化甲午之秋，成宗大王巡臨故都，仍幸學宮，饋儒生酒，兼賜米布，以惠斯學，此誠吾道之一大幸也。

3번째기사	이었습니다.	
연산 22권, 3년(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3월 24일(병인) 2번째기사	예전의 계석이 화려하지 않으니 선왕의 검소한 덕을 본받고 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불가함이요, 사옹원(司饗院)에서 공궤하는 경비가 적지 않사오니, 이것이 셋째 불가함이요,	。 舊砌不麗， 先王儉德， 可效可法， 此二不可也。 司饗供饋， 經費不貲， 此三不可也。
연산 22권, 3년(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3월 26일(무진) 1번째기사	호조에 전지(傳旨)하여, 콩 1백 석과 쌀 50석을 내수사(內需司)로 실어 보내게 하였다.	戊辰/傳旨戶曹， 黃豆一百碩， 白米五十碩， 輸送于內需司。
연산 22권, 3년(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3월 26일(무진) 3번째기사	전교하여 이르기를, “응방(鷹坊)의 비둘기 기르는 사람 네 명을 사옹원(司饗院)에서 공궤(供饋)하게 하라.” 하였다.	傳曰：“鷹坊鳩子看養人四名， 令司饗院供饋。”
연산 22권, 3년(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4월 5일(병자) 1번째기사	전교하기를, “참새 잡는 사람들을 월봉(月俸)을 주지 말고 9품 녹직(祿職)을 제수하라.” 하였다.	傳曰：“捕雀人等勿給月俸， 其授九品祿職。”
연산 22권, 3년(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4월 7일(무인) 4번째기사	호조에 전교하기를, “백청밀(白淸密) 20말, 청밀(淸密) 15말, 잣·개암 각각 20석, 호도 15말을 대내(大內)로 들이라.”	傳于戶曹曰：“白淸蜜二十斗， 淸蜜十五斗， 栝、榛·子各二十碩， 胡桃十五斗入內。”
연산 22권, 3년(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4월 14일(을유) 2번째기사	“근래에 내전으로 들어가고 내수사(內需司)로 실어 보낸 쌀과 콩이 3천여 석이요,(중략) 또 뜯사온즉 상의원(尙衣院)에서 어공(御供)에 합당하지 않은 물건을 다 내전으로 들여갔다 하운데, 이것은 선왕조에서 없었던 일로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후략)	議政府啓：“近來入內及輸送內需司米豆， 三千餘碩，(중략)又聞， 尙衣院不合供御物盡入內。 此先王朝所無， 不勝驚駭
연산 22권, 3년(1497)	예조가 아뢰기를,	禮曹啓：“孝思廟三時進膳當否， 臣等

<p>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4월 20일(신묘) 3번째기사</p>	<p>“효사전(孝思殿)에 삼시(三時)로 진膳(進膳)하는 것이 마땅한지 여부를 신 등이 아직 고례(古例)를 상고하지 못하였으니, 청컨대 홍문관으로 하여금 상고하게 하옵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p>	<p>未考古例，請令弘文館考之。” 傳曰：“可。”</p>
<p>연산 23권, 3년(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5월 9일(경술) 1번째기사</p>	<p>전교하기를, “숫물소 네 마리를 내수사(內需司)로 보내라.” 하였다.</p>	<p>庚戌/傳曰：“雄水牛四隻，其送于內需司。”</p>
<p>연산 24권, 3년(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6월 2일(임신) 1번째기사</p>	<p>(전략) 어서(御書)하기를, “말이 비록 둔하더라도 길들이면 탈 수 있고, 사람이 비록 불초하더라도 재주가 있으면 쓸 수 있는 것이다.” 하고, 이어 선온(宣醞)을 하사하였다. 다시 아뢰기를,(중략) 지금 선온(宣醞)을 내려주라고 명하였는데, 신 등이 성상의 뜻을 돌리지 못하고 선온만 마시는 것을 마음에 실로 부끄러운 일이오니 사양하겠습니다.” 하였는데, 들어 주지 않았다. 이어 전교하기를, “술은 마시도록 하라.” 하였다.</p>	<p>御書曰： 馬雖鈍，馴則可乘；人雖不肖，有才則可用。 仍賜宣醞。 更啓(*중략)且今命賜宣醞，臣等不能回天，而飲宣醞，心實愧赧，請辭。” 不聽，仍傳曰：“酒則當飲。”</p>
<p>연산 24권, 3년(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6월 2일(임신) 2번째기사</p>	<p>내관(內官)은 술을 마시지 못하게 이미 법을 세워 놓았는데도 인손이 제가 감히 이러하니, 이것은 명령을 거역한 것이다. 금부(禁府)에 내리어 국문하게 하라.” 하였다.</p>	<p>內官不得飲酒，已令立法，而仁孫乃敢如此，是逆命也，其下禁府鞠之。”</p>
<p>연산 24권, 3년(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6월 3일(계유)</p>	<p>응방(鷹房)에서 돼지를 기르는 것은 그 유래가 오래이다.</p>	<p>且鷹房畜豕，其來已久。</p>

2번째기사		
연산 24권, 3년(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6월 29일(기해) 2번째기사	전번에 풍저창(豐儲倉)의 백미 5백여 석을 사용원(司饗院)으로 실어 들었었는데, 이때 와서는 도로 풍저창으로 돌려 보냈다.	前此豐儲倉白米五百餘碩輸入司饗院，至是還下豐儲倉。
연산 25권, 3년(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7월 7일(병오) 5번째기사	정원에 전교하기를, “각 명절에 진상하는 물膳(物膳) 및 주膳(晝膳)은, 감膳(減膳)하는 날까지 진상하지 말라.” 하였다.	傳于政院曰：“各名日進上物膳及晝膳，限減膳勿進。”
연산 25권, 3년(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7월 8일(정미) 7번째기사	7. 안일과 탐욕을 경계하고, 절약과 검소를 숭상하는 것입니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나라에 안일과 탐욕을 가르치지 마소서.’ 하였으니, 대개 안일과 탐욕이란 인정상 생기기 쉬운 것입니다. 그 궁실(宮室)은 드높게 하려 하고, 그 음식은 화려하게 하려 하고 비빈(妃嬪)·잉첩(媵妾)의 받들고 유전(遊畋)·익렵(弋獵)의 놀음과 유화(幽花)·야초(野草)의 완상과 진금(珍禽)·기수(奇獸)의 기름이, 모두 사람의 정서를 흐리게 하고 사람의 성품을 해치는 것입니다(중략)	七曰，戒逸慾，崇節儉。《書》曰：“無教逸欲有邦。”蓋逸欲者，人情之所易生者也。欲峻其宮室，欲麗其飲膳，妃嬪媵妾之奉，遊畋弋獵之戲，幽花野草之玩，珍禽奇獸之畜，皆足以蕩人情，而伐人性也。
연산 25권, 3년(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7월 11일(경술) 4번째기사	전하께서는 구중(九重) 안에 계시어 팔진(八珍)의 음식을 누리시니 어찌 한창고에 낱알 하나가 모두 백성 지고(脂膏)와 혈육(血肉)인 것을 알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어진 정사를 베풀며 부세(賦稅)를 적게 받고 요역(徭役)을 가볍게 하소서. 법에 없는 염출을 혁파하고 전조(田租)의 수납(收納)을 경감하여 몸소 절약과 검소를 실행하되, 주(周)의 성왕(成王)·강왕(康王)과 한(漢)의 문제(文帝)·경제(景帝) 같이 하시면 돈궤미가 썩고 곡식이 묵어서 백성이 모두 부유할 것입니다.	殿下處九重之內，享八珍之食，豈知一廩寸粒，皆民之脂膏、血肉也？伏願殿下，發政施仁，薄稅輕徭，罷非法之斂，減田租之收，躬行節儉，如成、康、文、景，則貫朽粟陳，民皆富庶矣。
연산 25권, 3년(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7월 12일(신해)	“전하께서 천변(天變)에 순응하기 위하여 감膳(減膳)하시고 정전(正殿)을 피하시며 몸을 기울여 행실을 닦으시는데, 재하자들이 위의 뜻을 따르지 않아 각시(各寺)의 관원들은 때로 모여서 술을 마십니다. 옛날에는 별이 방(房)에 모	“殿下爲天變，減膳、避殿，側身、修行，而在下者不遵上意，如各(寺) [司] 官員群聚會飲。古者辰不集于

1번째기사	이지 아니하면 썩부(齧夫)가 달리고 서인(庶人)이 분주하였는데, 오늘날은 하늘의 경계를 삼가지 않는 것이 이같습니다. 또 근일에 바람이 불어서 화곡(禾穀)을 손상하였으니, 청컨대 금주령(禁酒令)을 내리소서.”	房，齧夫馳、庶人走，今不謹天戒如是。且近日風損禾穀，請禁酒
연산 25권, 3년(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7월 28일(정묘) 2번째기사	각도 감사에게 유시하여 식물(食物)을 치료할 수 있는 녹미설(鹿尾舌)을 계속 봉진(封進)하게 하였다.	諭各道監司，食治鹿尾舌，連續封進。
연산 26권, 3년(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8월 1일(경오) 1번째기사	우참찬 윤효손(尹孝孫)과 예조(禮曹)가 아뢰기를, “신 등이 복찬[復膳]할 것을 청하려 하였으나, 여러 날을 두고 못했습니다. 지금 달(月)로 따지면 3개월이고, 날짜로 말하자면 30일 하고 더 되었습니다. 또 3개월이면 천도(天道)도 조금 변하는 계절이오니, 복찬[復膳]과 복전(復殿)을 하시는 것이 어떠하옵니까?”(중략) 지금 비상한 재변을 만나서 선뜻 복찬할 수 있겠느냐?” 하매, 다시 아뢰기를, “감찬[減膳]하고 피전(避殿)하는 것은 바로 헛된 형식입니다. 주(周)나라 선왕(宣王)이 재앙을 만나자 몸을 경계하고 행실을 닦아서 중흥(中興)의 업을 이룩했으나, 당시에 감찬하고 피전한 일이 있었다는 것은 듣지 못했으며, 송왕(宋王)이 비록 재앙을 만나 피전한 일이 있었으나, 석달까지 가지는 않았습니 다. 지금 삼전(三殿)을 봉양하는 일과 조회를 보는 일이 중대하오니, 청컨대 복찬과 복전(復殿)을 하옵소서.” 하였다.	右參贊尹孝孫與禮曹啓：“臣等欲請復膳者有日，而未果矣。今以月言之，至於三月；以日言之，三十有餘日。且三月天道小變之節，復膳、復殿何如?”(중략) 今遇非常之災，而遽復膳乎?更啓：“減膳、避殿是虛文，周宣遇災，側身修行，致中興之業，然其時未聞有減膳、避殿之事。宋王雖遇災避殿，而未至於三月。今奉養三殿、視朝等事爲大，請復膳、復殿。”
연산 26권, 3년(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8월 6일(을해) 2번째기사	좌의정 어세겸(魚世謙)·우참찬 윤효손(尹孝孫)·예조 판서 박안성(朴安性)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피전(避殿)하신 지가 이미 3개월이 되었습니다. 상전(上殿)께서도 상께서 피전과 감선(減膳)을 하심으로 역시 복전(復殿)·복선(復膳)을 못하십니다. 더구나 절일(節日)이 가까워지니, 의례적으로 헌수(獻壽)를 해야 하오니,	左議政魚世謙、右參贊尹孝孫、禮曹判書朴安性啓：“殿下避殿已三月，上殿以上避殿、減膳，亦未復殿、復膳。且節日將近，例當上壽，請爲上殿從之。”傳曰：“可。”

	청컨대 상전을 위해서 좇으옵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연산 26권, 3년(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8월 14일(계미) 1번째기사	전교하기를, “내관(內官) 박인손(朴仁孫)이 어제 선운(宣醞)1766) 을 가지고 노사신의 집을 갔었는데 이튿날 복명(復命)할 적에 술이 취하여 말아 어눌하였다. 필시 다른 곳에서 마시고서 사신이 술을 권했다고 칭탁하는 모양이다. 그리고 내관들은 술을 취하게 마시지 않는 것이 법으로 이미 서 있는데 이렇게 과음을 하였으니 금부(禁府)에 내려 국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癸未/傳曰: “內官朴仁孫, 昨日齋宣醞, 往盧思愼第。 翌日復命時, 醉酒語澁, 必飲於他處, 托以思愼勸酒也。 且內官等不至亂飲, 已有其法, 而如此過飲, 其下禁府鞠之。”
연산 26권, 3년(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8월 22일(신묘) 4번째기사	금년에 소맥(小麥)이 흉년들었는데 충청·전라도 역시 모두 그러해서 백성이 비록 중한 값을 주고 구입하려 해도 구득할 곳이 없습니다. 청하옵건대 전세(田稅)를 수납할 때에 전미(田米)로 대납하게 하여 민생을 소생하게 하옵소서.	今年小麥不實, 忠淸、全羅道皆然。 民雖欲以重價買之, 無處可得, 請於田稅收納時, 以田米換納, 以蘇民生。
연산 27권, 3년(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9월 7일(을사) 2번째기사	하니, 전교하기를, “무릇 사람이 비록 어른에게 술잔을 드릴 경우라도 반드시 손을 씻고 드리는 법인데, 더구나 성묘를 참배함에 있어서 그럴 수가 없다. 명년 봄에 경서(經書)를 펴놓고 어려운 뜻을 질문하는 것과 대사(大射)를 한꺼번에 거행하겠노라.”	傳曰: “凡人雖進酌於長者, 必盥水而行之, 況謁聖乎? 當於明春, 并行橫經問難、大射禮。”
연산 27권, 3년(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9월 8일(병오) 3번째기사	풍원위(豐原尉) 임승재(任崇載)에게 청밀(淸蜜) 20두(斗)와 정포(正布) 50필과 중미(中米) 10석과 조미(糙米)1781) 10석을 하사하였다.	賜豐原尉任崇載淸蜜二十斗, 正布五十匹, 中米十碩, 糙米十碩。
연산 27권, 3년(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9월 9일(정미)	기영연(耆英宴)1782) 을 훈련원(訓鍊院)에 설치하고 승지를 보내어 술과 풍악(風樂)을 내려 주었다.	設耆英宴于訓鍊院, 遣承旨賜酒樂。

2번째기사		
연산 27권, 3년(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9월 12일(경술) 3번째기사	(전략)이제 술과 고기를 내려 주노니, 아무쪼록 실컷 마시고 돌아가라.”(후략)	今賜酒肉，其極飲而歸。
연산 27권, 3년(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9월 22일(경신) 3번째기사	심미(沈澗)는 졸곡(卒哭) 안에 소[牛]를 잡았으니, 죄가 확실히 가볍지 않으나 다만 시추(時推)1810) 로써 율(律)을 참조한다면 애매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澗實爲卒哭內宰牛，則罪固非輕。但以時推照律，不無曖昧之情。
연산 27권, 3년(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9월 23일(신유) 3번째기	사냥을 하는 것은 장차 종묘에 헌금(獻禽)을 하려는 것이니 진실로 정성과 공경만 다한다면 비록 한 마리를 나누어 올릴지라도 가하다. 어찌 반드시 온 마리를 올려야 하느냐.’ 하셨는데, 신 등은 그렇지 않다고 여기옵니다. 무릇 천금(薦禽)을 하는 데 반드시 온 마리를 올려야 하는데, 하루사이에 어찌 많은 수의 금수(禽獸)를 얻어 모두 온 마리로 올리겠습니까. 옛말에 이르기를 ‘완성되지 못한 짐승은 올리지 못한다. 천모(淺毛)도 올리지 못한다.’ 하였으니, 비록 얻는다고 해도 토끼와 같은 작은 유의 짐승이야 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 등은 그욕이 생각하옵건대 전하는 천금을 하시려는 것이 아니오라 사냥놀이를 하시려는 것입니다.”	令趙珩、正言權達手論啓韓忠仁事及大妃拜陵事，且曰：“教云：‘打圍將欲獻禽。苟盡誠敬，雖分獻可也，何必體薦乎?’臣等以爲不然。凡薦禽，必須具體以薦，一日之內，安得許多禽獸皆爲體薦乎?古云：‘不成禽不獻，淺毛不獻，雖得之如兔類小獸，不足獻也。’臣等竊意，殿下非欲薦禽，乃欲遊畋也。
연산 27권, 3년(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9월 28일(병인) 3번째기사	경기 관찰사 강귀손(姜龜孫)이 아뢰기를, “국가에서 바닷가에 있는 여러 고을로 하여금 소금을 급게 하여 산 고을에 수송하여 곡식과 바꾸어 군자(軍資)에 충당하고 있는데, 이는 실로 아름다운 법입니다. 그러나 민가에서 소금을 쓰는 시기가 봄 3, 4월과 가을 7, 8월이 가장 용도에 적절한데, 염분 차사원(鹽盆差使員)이 군소금의 숫자를 감사(監司)에게 보고해서 감사가 계준(啓准)을 해야 여러 고을에 나누어 수송하게 되므로 항상 적절한 시기에 미치지 못하니, 이 때문에 백성들이 즐겨 사지 않아 결과적으로 백성에게 강매를 해서 그 값을 거둬가니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京畿觀察使姜龜孫啓：“國家令海邊諸郡煮鹽，輸於山郡貿穀，以充軍資，此實美法也。然民之用鹽，春則三、四月，秋則七、八月，方切於用，而鹽盆差使員報煮鹽數於監司，監司啓准然後，分輸諸郡，故常不及於用之之時。以此，民不肯買，乃抑買於民，以收其直，其弊不貲。且輸運時，日寒冰凍，

	<p>다.</p> <p>더구나 실어 보낼 때에 날이 차서 얼음이 얼면 백성으로 하여금 길어 가게 하니 백성이 또 괴롭게 여깁니다. 청컨대 금년 가을에 주어야 할 소금은 명년 봄을 기다려서 주고, 명년 봄에 주어야 할 소금은 또 가을을 기다려서 주어, 길이 상례로 삼으시면 백성의 소금받는 것이 적절하게 쓸 시기에 미칠 수 있습니다. 또 ‘무우 4백 석을 각관(各官)에서 채전(菜田)에 심었던 것으로 폐단 없이 상납하라.’ 하였으나, 각관에는 본시 채전이 없으므로 반드시 백성에게 분차하여 거두어 들여야 하니,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사포서(司圃署)의 채전이 심히 많사옵고 또 차비(差備)한 종도 1백 20여 명이 있으니 그 많은 종들로 하여금 많은 채전에 심어 가꾸게 하오면 어찌 부족할리가 있습니까.</p> <p>지금은 그렇지 아니하여, 그 밭에다 콩이나 보리를 심고 채소를 심지 아니하면서 진상할 무우가 부족하다 하며 각관에서 거두어 들이면 가하겠습니까. 지난번에 또 역시 경기 백성으로 하여금 무우를 사포서(司圃署)에 들이라 하고, 본서(本署)에서 검사하여 퇴각하고 받지 않는 바람에 겨울이 넘도록 백성들이 능히 바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포서의 종들이 서로 방납(防納)1843) 하겠다고 나서, 무우 한 말의 댓가가 면포(綿布) 3필까지 되었으니,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청컨대 무우를 서울 가까운 고을에서 수집하여 서원(署員)으로 하여금 와서 받아가게 하옵소서. 또 전에 제향에 소용할 무우가 부족하여 봉상시(奉常寺)의 오래 묵은 면포로 무역한 일이 있는데, 만일 부득이할 경우에는 이 예에 의한 것을 청하옵시다.</p> <p>또 금년에 경기도 과원(果園)에서 생산된 대추 10여 말을 이미 봉상시(奉常寺)에 납입하였으나, 용도에 부족되므로 예조에서 또 10여 말을 더 납입하려고 독촉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은 과물(果物)이 부실하여 모두 바칠 길이 없으니 청컨대 감해 주옵소서. 또 경상도의 전세(田稅)를 실은 조선(漕船)이</p>	<p>則令民馱載，民又苦之。請今秋應給之鹽，待明年春給之；明春應給之鹽，又待秋給之，永爲恒式，則民之受鹽，可及於切用之時矣。且菁根四百碩，令各官菜田所種，無弊上納。各官本無菜田，必分斂於民，其弊不少。臣意以謂，司圃署菜田甚夥，又有差備奴百二十餘人。使許多奴，種許多田，則安有不足之理乎？今則不然，種菽粟於其田，而不種菜茹曰：‘進上菁根不足，令各官收納。’可乎？前者亦令京畿之民，納菁根于司圃署，本署點退不受，以至過冬而民不能納，則署奴等自相防納，菁根一斗之直，至於縣布三匹，其弊不貲。請收菁根于近京之邑，令署員來受。且前者祭享所用菁根不足，以奉常寺久陳縣布貿易，如不得已，則請依此例。且今年京畿果園所植大棗十餘斗，已納于奉常寺，不足於用，故禮曹又責納十餘斗。今年果物不實，無由備納，請減之。且慶尙道田稅漕船，敗于楊根地面，其沈水之米，已分給于民。其中五十餘碩，甚濃腐不可食，而亦給民以收其價，民弊亦大，請竝蠲減。”傳曰：“皆依所</p>
--	--	--

	<p>양근(楊根) 지방에서 칩몰되어 그 칩수(洗水)된 쌀을 이미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그 중 50여 석이 너무나 썩어서 먹을 수 없음에도 역시 백성에게 주어서 그 값을 거둬들이고 있으니 민폐가 역시 대단하온즉, 청컨대 아울러 탕감하여 주옵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 “모두 아뢰 바에 의해서 하라. 다만 무우에 대하여는 3백 석만 감하고 1백 석은 본도에 소장된 오래 묵은 면포로서 값을 주고 무역해 들이도록 하라.”</p> <p>하였다. 그리고 주서(注書)와 사관(史官)을 보내어 사포서(司圃署) 채전(菜田)에 대한 것을 조사하게 하였다.</p>	<p>啓。 但菁根減三百碩， 其一百碩以本道所在久陳縣布， 給價貿納。” 命遣注書、 史官， 擲奸于司圃署菜田。</p>
<p>연산 27권, 3년(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9월 29일(정묘) 2번째기사</p>	<p>전교하기를, “이 뒤로 중국가는 사신 편에 용안육(龍眼肉)1846) 과 여지(荔枝)를 많이 사가지고 오게 하라.”</p> <p>하였다.</p>	<p>傳曰： “今後赴京使之行， 多貿龍眼、 荔枝。”</p>
<p>연산 28권, 3년(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10월 4일(임신) 2번째기사</p>	<p>경상도·전라도 감사에게 어서(御書)를 내리기를, ‘유자(柚子)는 가지를 붙여 진상하라.’ 하였다.</p>	<p>下書于慶尙、 全羅道監司曰： 柚子連枝以進。</p>
<p>연산 28권, 3년(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10월 6일(갑술) 4번째기사</p>	<p>호조에 전교하기를, “중미(中米) 2백 석을 내수사(內需司)로 수송하라.”</p> <p>하였다.</p>	<p>傳于戶曹曰： “中米二百碩， 輸送于內需司。</p>
<p>연산 28권, 3년(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10월 8일(병자) 2번째기사</p>	<p>“쌀을 내수사(內需司)로 실어보내라 하셨는데, 어느 곳에 쓰실려고 하십니까?”</p>	<p>“輸米于內需司， 不審用之何處。</p>
<p>연산 28권, 3년(1497)</p>	<p>진膳(進膳)이 때를 잃고 삼전(三殿)의 문안이 또한 크게 늦어진다. 그러니 대</p>	<p>進膳失時， 三殿問安亦大晚。 其諭臺</p>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10월 13일(신사) 3번째기사	간에게 일러서 이후에는 이렇게 말도록 하라.”	諫，後勿如是。”
연산 28권, 3년(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10월 14일(임오) 6번째기사	시간이 넘어도 나가지를 아니하여 이 때문에진찬[進膳]과 문안이 간혹 제때를 잃게 된다.’ 하셨는데, 신 등도 진선은 제 때에 앓을 수 없으며, 문안도 또한 늦추어서는 안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외간에서 들으면 전하께서 대간의 말이 괴롭고 싫증이 나서 이 교서를 내린 것으로 알까 두렵습니다.	移時不出，以致進膳、問安或失其時，臣等固知進膳不可不時，問安亦不可緩也。然外間若聞，則恐以殿下爲苦厭臺諫之言，而有此教也。
연산 28권, 3년(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10월 20일(무자) 2번째기사	조종조에서 종재(宗宰)가 죽으면 1품관은 예장(禮葬)을 해 주고 2품관은 부물(賻物)을 줌에 일정한 숫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횡간(橫看)1875) 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숫자를 주어, 유밀(油蜜)이 더욱 부족합니다.	祖宗朝宗宰之卒，一品則禮葬，二品則賻物有定數。今則加給橫看不載之數，油蜜尤貴，
연산 28권, 3년(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10월 20일(무자) 3번째기사	임실(任實)에서 범함 바 진상하는 포육(脯肉)에 개고기와 염소고기를 섞어 놓았으니, 신자(臣子)로서 차마 못할 바이온즉 청컨대 잡아 올려서 국문하시옵소서.” 하니, 좃았다.	“任實所犯進上脯，雜以犬、羊之肉，臣子所不忍爲也，請拿來鞫之。”從之。
연산 28권, 3년(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11월 15일(임자) 5번째기사	전교하기를, “경기에서 물선(物膳)으로 진상하는 생선을 반드시 1자가 되는 것만 봉상(封上)하게 하여 그 폐단이 없지 아니하니, 이제부터는 비록 한 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라도 봉상을 허하도록 하라.” 하였다.	傳曰：“京畿物膳生鮮，必以滿尺封進，不無其弊。今後雖不滿尺，許令封進。”
연산 28권, 3년(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11월 18일(을묘) 3번째기사	지평 신복의(辛服義)를 불러 묻기를, “네가 지난번 아뢰바, 각포(各浦)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건을 분정(分定)한 일은 해조(該曹)에게 물은즉 없다 하는데, 어찌서 아뢰는 것이냐?” 하매, 복의(服義)가 대답하기를, “신이 일찍이 함평 현령(咸平縣令)을 지냈사온데, 그 경내에 임치포(臨淄浦)가 있습니다. 수사(水使)가 노루고기포·녹피(鹿皮) 등의 물건을 상납하라고 독촉	召持平辛服義問曰：“爾前所啓各浦不產物分定事，問于該曹則曰：‘無矣。’其何以啓之?”對曰：“臣曾守咸平縣，境內有臨淄浦。水使責納獐脯、鹿皮等物，萬戶分定水軍，收合綿布買納，其弊不費，故啓之。”命問于其道監

	을 하니 만호(萬戶)는 수군(水軍)에게 분정하여 면포(綿布)를 수합해서 사가지고 상납했습니다. 그 폐단이 적지 않기로 아뢰된 것이옵니다.” 하니, 명하여 그 도의 감사(監司)와 수사(水使)에게 묻게 하였다.	司、水使。
연산 28권, 3년(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11월 23일(경신) 2번째기사	주효(酒肴)와 호피(虎皮)·각궁(角弓) 등 물건을 승정원(承政院)에 내려 주며 이르기를,	賜酒肴及虎皮、鹿皮、角弓等物于承政院曰
연산 28권, 3년(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11월 25일(임술) 1번째기사	왕은 세분 대비전(大妃殿) 축연(祝宴)을 올렸다. 그리고 명하여 종친(宗親)·재상(宰相) 2품 이상과 실록청(實錄廳)·홍문관(弘文館)·육조 당상(六曹堂上)·대간(臺諫)·승정원(承政院)·예문관(藝文館)에 입직(入直)한 제장(諸將)들에게 명정전(明政殿) 앞뜰에서 음식을 먹였다.	王進宴于三大妃殿，命饋宗宰二品以上、實錄廳、弘文館、六曹堂上、臺諫、承政院、藝文館、入直諸將于明政殿庭。
연산 28권, 3년(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12월 29일(병신) 2번째기사	밤에 여러 승지(承旨)에게 명하여 모여 자며 수세(守歲)1937) 하게 하고, 따라서 주효(酒肴)와 궁시(弓矢)와 피물(皮物)을 내려주어 내기를 하게 하였다.	夜命諸承旨，會宿守歲。仍賜酒肴及弓矢皮物，使賭之。
연산 29권, 4년(1498) 무오 / 명 홍치(弘治) 11년) 1월 24일(경신) 1번째기사	경기(京畿)는 지역이 좁고 백성이 가난하운데, 연례(年例)의 진상(進上) 이외에 별도의 진상이 많습니다 손순효(孫舜孝)가 감사(監司)가 되어 대일차(大一次)를 설치하고 윤계겸(尹繼謙)이 또한 소일차(小一次)를 설치하여, 경기의 백성이 폐해를 너무도 심하게 받았습니다. 대저 아들이 부모를 봉양하는 심정이야 의당 이르지 않은 바가 없어야 합니다. 지금 주물(晝物)1957) 은 실로 삼전(三殿)을 봉양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기한을 정해 놓지 않고서 그때그때 갑자기 조정하기 때문에 백성이 능히 자력으로 준비하지 못하고 월리(月利)로 빚을 얻어 시장에서 사가지고 간신히 준비해서 진상합니다	圻甸地狹、民貧，而年例進上之外，多有別進上。孫舜孝爲監司，設大宴一次，尹繼謙亦設小宴一次，圻甸之民受弊已甚。大抵人子養親之情，宜無所不至。今者晝物實爲奉養三殿，而然不立期限，臨時卒定，故百姓不能自備，稱貸月利，轉買於市，艱備以進。
연산 29권, 4년(1498) 무오 / 명 홍치(弘治)	황해도(黃海道)에는 도둑이 흥행(興行)하고 또 밀보리가 익지 아니하여 인민이 빈곤(貧困)하오니, 도둑을 막고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을 관찰사(觀察使)로	: “黃海道盜賊興行，又兩麥不熟，人民貧困。弭盜恤民之方，請令觀察使

11년) 5월 3일(무술) 1번째기사	하여금 조처하게 하옵소서.”	措置。
연산 29권, 4년(1498) 무오 / 명 홍치(弘治) 11년) 5월 19일(갑인) 1번째기사	지금 금주(禁酒)하게 하는 것은 비록 민간에게 재물을 낭비하기 때문이오나, 천계(天戒)를 삼가하는 뜻이 더욱 큰데, 지금 근밀지(近密地)와 도성 아래에서 술을 마시고 스스로 방자합니다. 대저 입법하는 것이 반드시 가까운 데로부터 먼 데로 미치는 것이온데, 대궐 안이 이러하니, 아무래도 외간에서 술마시는 것을 금하지 못할 것입니다.	“今之酒禁，雖爲民間費財，而謹天戒之意爲尤大。今也近密之地、輦轂之下，飲酒自恣。大抵立法，必自近及遠，闕內如此，則恐不得禁外間飲酒也
	(전략) 12.각관의 사라(紗羅)와 능단(綾緞)으로 만든 장막과 요[帳褥]·안석(案席)1980) 과 유개아(鍮蓋兒)1981) 는 예조가 아뢰는 대로 할 것이며,(중략) 제 16조. 유밀과(油蜜果)1984) 와 금·은 그릇과 청화백자기(靑畫白磁器)와 행과반(行果盤)에 대하여는 《대전》에 이미 금제를 두었으니 사헌부로 하여금 거듭 밝혀 통절하게 금단할 것이며,	。第十二條各官紗羅綾段帳褥、案席、鍮蓋兒，依禮曹所啓(중략) 第十六條油蜜果、金銀靑畫白磁器、行果盤，《大典》已有禁令，司憲府申明痛禁
연산 31권, 4년(1498) 무오 / 명 홍치(弘治) 11년) 8월 20일(계미) 3번째기사	소요건(逍遙巾)2054) 을 준비하고 술과 안주를 싸가지고 동대문 밖에 모이기를 약속하여 성 밑 죽림(竹林) 속에서 그 두건(頭巾)을 쓴 다음 효온이 우두머리가 되고 유손이 차석이 되어 수천정·무풍정·우선언·조자지·한경기와 칠현(七賢)이 되었는데, 명양정(明陽正) 현손(賢孫)·노섭(盧燮)·유방(柳房)이 뒤늦게 와서 서로 대해 몇 순배를 마시고, 도소주(屠蘇酒)2055) 를 마시는 예에 의해서 젊은 자에서 윗사람까지 스스로 노래하고 스스로 춤추다가 날이 저물어서야 파했다.’	各備逍遙巾，齎酒馔，約會東大門外城底竹林間，着其巾。孝溫作頭，裕孫次之，秀泉正、茂豐正、禹善言、趙自知、韓景琦爲七賢。明陽正賢孫、盧燮、柳房後至，相對酒巡，依屠蘇飲，自少達上，自唱自舞，日暮而罷。
연산 31권, 4년(1498) 무오 / 명 홍치(弘治) 11년) 8월 23일(병술) 2번째기사	농사 구경할 적에 내가 마침 돌아보니 수가(隨駕)한 인원들이 말 위에서 반찬(盤饌)을 봉공(奉供)하고 있었다.	觀稼時，予適顧視隨駕人員，於馬上奉盤供饌。
연산 31권, 4년(1498) 무오 / 명 홍치(弘治) 11년) 9월 22일(정사)	왕이 친히 광릉(光陵)에 제사하고 봉선전(奉先殿)에 이르러 승려에게 쌀·콩 30석과 면포(綿布)·정포(正布) 각 1백 필을 하사하였다.	王親祭于光陵，至奉先殿，賜寺僧米豆三十碩，絁布、正布各一百匹。

1번째기사		
연산 31권, 4년(1498) 무오 / 명 홍치(弘治) 11년) 10월 30일(임진) 2번째기사	명하여 화박(火迫)을 표시한 인전(印篆)을 만들어서 사옹원(司饗院)에 비치하여 공상(供上)하는 물건을 독촉하는 데 사용하게 하였다.	命鑄火迫印篆，置司饗院，以督供上之物。
연산 31권, 4년(1498) 무오 / 명 홍치(弘治) 11년) 윤11월 2일(계해) 1번째기사	왕은 친히 모화관(慕華館)에서 사열식을 가졌는데, 검열(檢閱) 하계증(河繼曾)이 임금이 내려주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해서, 명하여 의금부에서 하옥시키고 국문하게 하였다. 이로부터 미미한 과실을 지적해내는 것이 점점 세밀하였다.	王親閱于慕華館。檢閱河繼曾以不飲宣醞，命下義禁府鞫之。自是，糾摘細過漸密。
연산 31권, 4년(1498) 무오 / 명 홍치(弘治) 11년) 12월 28일(기미) 6번째기사	병이 나는 것은 젊고 늙고의 차이가 없사오니, 모름지기 국가의 대계를 생각하시어 먼저 육선(肉膳)을 드옵소서. 양전(兩殿)께서도 역시 따르실 것입니다.”	“疾病之生，無少老之異。須念國家大計，先進肉膳，則兩殿亦必從之。”
연산 31권, 4년(1498) 무오 / 명 홍치(弘治) 11년) 12월 29일(경신) 1번째기사	어세겸(魚世謙) 등이 육선(肉膳)을 드릴 것을 청하니, 전교하기를, “경들이 굳이 청하고 말지 아니하기 때문에 억지로 따른다.”	庚申/魚世謙等請進肉膳，傳曰：“卿等固請不已，故勉從之
연산 32권,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1월 8일(무진) 2번째기사	일본국 5도의 우구자 원승(宇久字源勝)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헌납하였다.	日本國五島宇久(字) [守] 源勝遣人來獻土宜。
연산 32권,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1월 10일(경오) 2번째기사	“유자광(柳子光)이 명을 받들어 함경도에 나갔을 적에, 각 관서를 침독(侵督)하여 생전복과 굴조개를 채취하게 하고, 또 상등 역마를 마음대로 끌어내어 이를 실고와서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신하로서는 사진(私進)2110) 하는 예가 없으며, 또 토산물의 작공(作貢)2111) 과 각도의 진상(進上)2112) 이 연락 부절하운데, 하필 유자광이 사진해야만 공상이 됩니까. 유자광의 소위는 반드시	持平權世衡、正言尹殷輔啓：“柳子光奉使咸鏡時，侵督各官，採取生鰓、石花，又擅發上等驛馬，馱來獻之。人臣無私進之禮，且任土作貢，各道進上，絡繹不絕，何必待子光私進，然後

	<p>그러한 정실이 있을 터이니 국문(鞫問)하시기를 청하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유자광이 어찌 다른 정이 있겠는가. 좋은 물건을 보고 진상하고 싶었을 뿐이리라.” 하였다. 은보가 또 아뢰기를, “심회(沈澮)가 융동(隆冬)2113) 에 서울로 와서 죽순 10개를 얻어 헌납하매 정희 왕후(貞熹王后)께서 이를 보시고 환급하시면서 이르기를, ‘내 이미 보았노라.’ 하셨으니, 정희 왕후께서는 반드시 장래의 폐단을 염려하여 그러하십니까, 또 정난종(鄭蘭宗)이 성종조에 필묵을 사진하매, 그것이 비록 문방의 물건이요, 생전복·굴조개엔 비교될 것이 아니었지만 오히려 대신(臺臣)의 탄핵을 받았습니다.</p>	<p>供上乎? 子光所爲, 必有其情, 請鞫之傳曰: “子光豈有他情? 見美物欲進耳。” 殷輔又啓: “前者沈澮當隆冬赴京, 得竹筍十箇以獻, 貞熹王后見而還給曰: ‘予已見矣。’ 貞熹王后必慮將來之弊而然也。 且鄭蘭宗於成宗朝私進筆墨。 此是文房之物, 非生鰓、石花之比, 而尙被臺駁。</p>
<p>연산 32권,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1월 10일(경오) 3번째기사</p>	<p>일본국 일기주(壹岐州)의 수호 대관(守護大官)인 진궁(眞弓)과 병부 소보(兵部少輔)인 원무(源武)가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헌납하였다.</p>	<p>日本國壹岐州守護代官眞弓、兵部少輔源武遣人來獻土宜。</p>
<p>연산 32권,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1월 11일(신미) 3번째기사</p>	<p>일본국 비전주(肥前州) 소성 천엽개(少城千葉介)의 평조신 원윤(平朝臣元胤)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헌납하였다.</p>	<p>日本國肥前州(少城) [小城] 千葉介平朝臣元胤遣人來獻土宜。</p>
<p>연산 32권,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1월 12일(임신) 1번째기사</p>	<p>무령군 유자광이 아뢰기를, “신이 사옹원(司饗院)의 제조로서 맛있는 것을 보오면, 헌상하고 싶은 마음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연고로 사리를 헤아리지 못하고 헌납하였사운데, 지금 대간(臺諫)의 논박이 이토록 심하므로 황공 대죄하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피혐(避嫌)하지 말라.” 하였다.</p>	<p>/武靈君柳子光啓: “臣以司饗提調, 見美味而獻上之心, 不能自己, 故未及計較而來獻。 今臺諫駁之, 惶恐待罪。” 傳曰: “勿避嫌。”</p>

<p>연산 32권,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1월 12일(임신) 5번째기사</p>	<p>일본국 살마주(薩摩州) 일향 태수(日向太守) 등원 조신 성구(藤原朝臣盛久)가,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헌납하였다.</p>	<p>日本國薩摩州日向太守藤原朝臣盛久遣人來獻土宜。</p>
<p>연산 32권,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1월 12일(임신) 5번째기사</p>	<p>일본국 살마주(薩摩州) 일향 태수(日向太守) 등원 조신 성구(藤原朝臣盛久)가,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헌납하였다.</p>	<p>日本國薩摩州日向太守藤原朝臣盛久遣人來獻土宜。</p>
<p>연산 32권,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1월 13일(계유) 3번째기사</p>	<p>대마주 태수 평조신 종익성(宗杳盛)이, 사람을 시켜 새 토산물을 보내어 왔다.</p>	<p>對馬州太守平朝臣宗杳盛遣人來(新) [獻] 土宜。</p>
<p>연산 32권,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1월 17일(정축) 1번째기사</p>	<p>유자광의 일을 정승들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윤필상(尹弼商)·어세겸(魚世謙)·정문형(鄭文炯)·한치형(韓致亨)·성준(成俊)이 의논드리기를, “조종(祖宗) 때로부터 사사로운 진상을 금지함은 후폐를 방지하고자 함이운데, 지금 유자광이 특별히 해물을 진상하기 위하여 역마를 발송하기에 이르렀으니, 대간이 논박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유자광은 사옹원 제조로서 함경도에 도착하여 생전복과 굴조개의 싱싱함을 보고 상시에 진상한 맛과는 다르리라 여겨 특별히 진상하고자 한 것뿐이오며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하니,</p>	<p>命議柳子光事于政丞等。 尹弼商、魚世謙、鄭文炯、韓致亨、成俊議：“自祖宗朝禁私進上，欲防後弊也。 今子光別進海物，至發驛騎，臺諫論駁宜矣。 然子光以司饗提調，到咸鏡道，見生鰻、石花之新，異於常時進上之味，欲別進而已，恐無他情。” 議入</p>
<p>연산 32권,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1월 17일(정축) 3번째기사</p>	<p>지금 이 생전복과 굴조개는 이미 각도의 공물이 있고 천주(天廚)2127)의 공선(供膳)이 충분하지 못한 것도 아닌데, 유자광이 역마를 급하게 발하여 위에 바친 것은, 전하의 얕고 깊음을 엿보아 은총을 바란 것에 불과하옵니다. 또 신자로서 군현에 출사하였다가 신선한 물종을 보게 되면 누구인들 바치고 싶은 정성이 없겠습니까마는 진실로 군주를 받드는 길은, 으레 있는 정당한 공상(供上)이 있을 뿐이요, 사람마다 사사로이 바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p>	<p>今此生鰻、石花，既有諸道之貢，天廚供膳未有不給，而子光之急發驛騎，馳獻於上者，不過欲窺殿下之淺深，而希恩寵耳。 且臣子之出使郡縣也，得諸鮮味，誰不有芹曝之誠？ 誠以王者之奉，自有萬民惟正之供，不可人人而私</p>

		獻也。
연산 32권,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1월 24일(갑신) 9번째기사	김극검은 경상도 사람으로, 그 시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터이오니, 그 소재지 관아에 명하여 쌀과 콩 10석을 지급하도록 함이 어떠하오리까?”	克儉慶尙道人也。 其屍必歸於本土, 令所在官, 給米豆十碩何如?”
연산 32권,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2월 2일(임진) 5번째기사	일본국 비전주(肥前州) 상송포(上松浦) 나호야(那護野) 보천사(寶泉寺) 원우위(源祐位)가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헌납하였다.	日本國肥前州上松浦那護野寶泉寺源祐位遣人來獻土宜。
연산 32권,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2월 3일(계사) 1번째기사	“성종의 상사에 왕자군이 졸곡 후 최복을 벗고 육식을 하매, 외인(外人)들이 모두 불가하다 하였으며,	: “成宗之喪, 王子君於卒哭後, 脫袞食肉, 外人皆以爲不可
연산 32권,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2월 3일(계사) 8번째기사	일본국 비전주 하성포 산성 태수 원길(源吉)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헌납하였다.	日本國肥前州下松浦山城太守源吉遣人來獻土宜。
연산 32권,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2월 4일(갑오) 3번째기사	천안(天安) 사람 박원성(朴元成)에게 쌀 3석을 하사하였다.	賜天安人朴元成米三碩。
연산 32권,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2월 4일(갑오) 5번째기사	일본국 관서로 비축이주 태수 국지 등원 조신 중조(關西路肥筑二州太守菊池藤原朝臣重朝)가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헌납하였다.	日本國關西路肥、筑二州太守菊池藤原朝臣重朝遣人來獻土宜。
연산 32권, 5년(1499)	대마주 태수 평조신 종익성(平朝臣宗杳盛)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헌납하	對馬州太守平朝臣宗杳盛遣人來獻土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2월 7일(정유) 2번째기사	였다.	宜。
연산 32권,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2월 9일(기해) 2번째기사	일본국 비전주 상송포 구사 도주(上松浦九沙島主) 등원 조신 축후수 의영(藤源朝臣筑後守義永)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헌납하였다.	日本國肥前州上松浦九沙島主(藤源朝臣) [藤原朝臣] 筑後守義永遣人來獻土宜。
연산 32권,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3월 1일(경신) 2번째기사	대마주 대관(對馬州代官) 평조신 중 병부 소보 성친(平朝臣宗兵部少輔盛親)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헌납하였다.	對馬州代官平朝臣宗兵部少輔盛親遣人來獻土宜。
연산 32권,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3월 2일(신유) 4번째기사	대마주 풍·당 2군 태수(對馬州豊唐二郡太守) 평조신 중 능등 태수 성준(平朝臣宗能登太守盛俊)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헌납하였다.	對馬州豊·唐二郡太守平朝臣宗能登守盛俊遣人來獻土宜。
연산 32권,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3월 3일(임술) 1번째기사	시(詩)를 지어 승정원에 내리기를, 어찌 이날 그대들에게 선운하기를 사양하리까	仍製詩， 下承政院曰：“那辭此日伴宣醞
연산 32권,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3월 3일(임술) 2번째기사	일본국 비전주 전평우진 원 조신 탄정소필 홍(肥前州田平寓鎭源朝臣彈正少弼弘)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헌납하였다.	日本國肥前州田平寓鎭源朝臣彈正少弼弘遣人來獻土宜。
	지난해의 횡간(橫看)2241) 외의 별용물을 적어 상고하건대, 쌀·콩이 2천 9백여 석, 면포가 3천 6백여 필. 황포가 1천 9백여 필, 기름·꿀이 90여 석이며, 기타 부비(浮費)는 헤아리기도 어렵습니다. 비축한 물량이 간혹 꺾절되면, 후	竊考去年橫看外別用之物， 米、豆二千九百餘碩， 絁布三千六百餘匹， 正布一千九百餘匹， 油蜜九十餘碩， 其他浮

년의 공물을 인납(引納)하라고 별도로 청합니다. 대저 항산(恒産)을 갖고 있는 백성이 늘 적어 당년의 공물을 내기도 어려운 일이운데, 하물며 인납(引納)이겠습니까. 청컨대 경상비 이외의 기타 부비(浮費)는 일체 줄여서 민폐를 제거하시고 국용을 충족하게 하옵소서.(중략) 경기는 사방의 근본이 되는 지역으로 모든 부역이 각도에 비하여 배중하며, 게다가 연해 각군의 백성에게는 생선을 진상하게 하니 그 폐가 더욱 심합니다.

지금 1년간 진상하는 수량을 계산하면, 각전의 탄신 및 이름 있는 날에 진상하는 총수가 7백 18미, 대일차(大日次)·소일차(小日次)의 총수 4천 8백 미, 또 수시로 진상하는 곡연(曲宴)2249) 또한 2천여 미에 달합니다/ 이것은 모두 감사(監司)가 각읍·각포에 책출하고, 각읍·각포는 또 소재 백성들에게서 거두는데 백성들이 스스로 주선하지 못하면 반드시 그 값을 내고 생선가게에서 구입하게 됩니다. 이익만을 노리는 장사꾼은 남의 급한 사정을 노리고 그 값을 더욱 올리므로 1미의 값이 많은 것은 면포 3~4필에 이릅니다. 대저 한 마리의 값이 이에 이른다면, 그 고기의 귀함을 가히 알 수 있고 이를 사서 공납하는 자의 괴로움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살피옵건대 대일차(大日次)·소일차(小日次)는 조종 때에는 없었던 것인데 지난번 한두 감사가 시작한 것을 그대로 답습하여 하나의 전례로 되어 오늘에 이르러서는 백성들의 고통거리로 된 것입니다. 연안의 백성들이 지탱하지 못하는 것은 실로 작은 사고가 아닙니다. 조종조에는 일차(日次)의 진상이 없었어도, 그 부족함을 보지 못하였으며, 더구나 지금 사옹원(司饗院) 소속 어부들이 날마다 공상하는 수량이 결코 옛날보다 감소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대일차·소일차 중 그 하나만은 감하여 경기의 고을 백성들을 소생케 하옵소서.외방 각도와 기현(畿縣)의 관계는 사지(四肢)와 사람에 비교됩니다. 한 손가락이 아파도 마음이 오히려 아프거늘 하물며 사지가 다 병들어겠습니까. 지금 각도가 다같이 병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봉상시(奉常寺)의 제포(祭脯)는 1년

費, 有難校數。儲峙支用, 間或匱乏, 後年之貢, 別請引納。夫民有恒産者常少, 當年之貢尙且艱備, 況能引納乎? 請於常費之外, 其他浮費, 一切裁省, 以祛民弊, 以裕國用(중략) 一, 京畿四方根本之地, 而賦役視他道倍重。加以沿海諸邑之民鮮魚供進, 其弊尤甚。今計一年所進之數, 各殿誕辰及有名日, 總七百十八尾。大日次、小日次總四千八百尾。又無時晝物, 若曲宴所需, 亦不下二千餘尾。此皆監司責辦於諸邑、諸浦, 諸邑、諸浦又取辦於民, 民不能自辦, 必須出其直, 質諸魚肆。射利之徒, 乘人之急, 增益其價, 一尾之直, 多至縣布三四匹。夫一尾之魚而其直至此, 則魚之貴可知, 買而供之者, 其苦可想。按, 大日次、小日次, 祖宗朝所無。頃者, 一二監司始開其端, 繼之者因循, 以爲恒式, 至此而民困極矣。濱海徧氓, 勢將不支, 非細故也。祖宗朝未有日次之進, 不見其不足。況今司饗院所屬漁夫逐日之供, 不減於古。大日次、小日次中, 請減其一, 以蘇畿縣之民。外方諸道, 比之畿縣, 猶人之有

	<p>간 수납하는 수량이 총 6백 50점이며, 사옹원(司饗院)의 1년간 진상은 전라도 편포(片脯) 1천 8백 개·장포(長脯) 84점, 경상도가 편포 1백 80개·장포 78점, 충청도가 쾌포(夫脯) 1천 4백 96근, 황해도가 장포 1백 점, 강원도가 쾌포 2천 1백 27근, 함경도가 2천 8백 51근인데, 이는 모두 노루와 사슴이 아니면 만들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대저 노루와 사슴은 생산되는 곳도 있고 생산되지 아니하는 곳도 있으며, 옛날보다 지금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것인데, 각 고을의 공납은 피차·금석의 차이도 없으며 이미 고정된 수량이 정해져 1개 1근이라도 부족되게 바칠 수는 없습니다. 또 수령은 이것이 전최·출척(殿最黜陟)에 관계되므로 반드시 그 백성들을 강압하여 공납하게 합니다. 물산은 한정이 있는데 원액은 줄지 않으며, 민력은 곤폐하였는데 수렵은 한이 없습니다. 대저 먼 길을 가는 자가 휴식할 때가 없다면 장차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반드시 죽고야 말 것입니다 각도의 민폐가 여기에 이르렀으니, 만약 이를 경장(更張)하지 아니하오면 유망(流亡)하지 아니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제포(祭脯)는 감할 수 없지마는, 사옹원에 봉진(封進)하는 각종 포물(脯物)은 그 수량을 감소시켜 각도의 백성들을 소생케 하옵소서.(후략)</p>	<p>四肢。一指之病而心猶痛楚，況四肢之皆病乎？今諸道之所共病者有一焉，奉常寺祭脯一年之納，摠六百五十貼。司饗院一年之進，全羅道片脯一千八百箇、長脯八十四貼，慶尙道片脯一千八十箇、長脯七十八貼，忠淸道夫脯一千四百九十六斤，黃海道長脯一百貼，江原道夫脯二千一百二十七斤，咸鏡道二千八百五十一斤，皆非獐鹿不可爲。夫獐鹿有產處，有不產處，或有優於昔，損於今者，而各邑供進，則無有彼此今昔之殊。既定恒數，雖一箇一斤，闕進不可，守令殿最、黜陟繫焉，故必刻迫其民，而責辦焉。物產有盡，元額不減，民力困弊，獵獲無際。夫起長路者，苟無休息之時，則將何以堪之？必斃而已矣。各道民弊至此，若不更張，則幾何不得而流亡哉？祭脯不可減省，司饗封進各色脯物，請須量減其數，以蘇各道之民。(후략)</p>
<p>연산 33권,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4월 1일(경인) 2번째기사</p>	<p>일본국 대내방장 풍축 사주 태수(大內防長豊筑四州太守) 다다량 조신 의흥(多多良朝臣義興)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쳤다.</p>	<p>日本國大內防·長·豊·筑四州太守 多多良朝臣義興遣人來獻土宜。</p>
<p>연산 33권, 5년(1499)</p>	<p>승지 박원종(朴元宗)이 아뢰기를,</p>	<p>承旨朴元宗啓: “命入胡椒二十碩。今</p>

<p>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4월 12일(신축) 1번째기사</p>	<p>“호초(胡椒) 20석을 들이라고 명하시므로 지금 의영고(義盈庫)에 있는 것을 조사하니, 겨우 8석뿐입니다. 이 물품은 다만 왜국(倭國)에서 생산될 뿐인데, 만일 왜인들과 혼단이 생기면 국용(國用)이 반드시 동나게 될 터이니, 어떻게 하오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우선 5석을 들이라.” 하였다.</p>	<p>考義盈庫所在數，僅八碩，此物只產於倭國。萬一倭人生鬻，則國用必至罄竭，何以爲之？”傳曰：“姑入五碩。”</p>
<p>연산 33권,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4월 17일(병오) 1번째기사</p>	<p>주금(酒禁)은 인간으로 하여금 비용을 절약하여 넉넉지 못한 사정을 대비코자 함이니, 그 주금(酒禁)을 해제하지 말라.”</p>	<p>酒禁欲使民間節費，以備不給，其勿酒禁。</p>
<p>연산 33권,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4월 17일(병오) 3번째기사</p>	<p>일본국(日本國) 일기주 포해 반전출우수 원집(壹岐州浦海飯田出羽守源集)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쳤다.</p>	<p>日本國一岐州浦海飯田出羽守源集遣人來獻土宜。</p>
<p>연산 33권,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4월 19일(무신) 2번째기사</p>	<p>일본국(日本國) 풍주수 대우 원조신 친번(豊州守大友源朝臣親繁)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쳤다.</p>	<p>日本國豊州守大友源朝臣親繁遣人來獻土宜。</p>
<p>연산 33권,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4월 22일(신해) 5번째기사</p>	<p>일본국 비전주(肥前州) 평호우진 비주 태수(平戶寓鎮肥州太守) 원풍구(源豊久)가 사람을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쳤다.</p>	<p>日本國肥前州平戶寓鎮肥州太守源豊久遣人來獻土宜。</p>
<p>연산 33권,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5월 13일(임신)</p>	<p>전교하기를, “면포(縣布)·정포(正布) 각 2백 필과 쌀 50석을 하성 부원군(河城府院君) 정현조(鄭顯祖)에게 사급하라.”</p>	<p>傳曰：“縣布、正布各二百匹，米五十碩，賜河城府院君鄭顯祖。” 【태백산사고본】</p>

1번째기사	하였다.	
연산 33권,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5월 27일(병술) 1번째기사	전교하기를, “홍귀달 및 승지·홍문관의 관원 등은 각각 관수·포어(捕魚)·선온(宣醞) 의 뜻 으로써 칠언율(七言律)2316) 을 제술하여 올리고, 정승은 나이가 많으니 제술 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傳曰: “洪貴達及承旨、弘文館員等, 各以觀水捕魚宣醞意, 製七言律以進。 政丞則年高, 其勿製。”
연산 33권,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6월 3일(신묘) 1번째기사	호조에 전지하기를, “면포 1백 50필, 백청밀(白淸蜜) 20두를 궐내에 들이도록 하라.” 하였다.	/傳旨戶曹曰: “縣布一百五十匹, 白淸 蜜二十斗入內。”
연산 34권,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7월 2일(경신) 6번째기사	일본국 관서로(關西路) 축·풍·비 3주 태수 태재부 도독 사마 소경(築豊肥三州 太守太宰府都督司馬少卿) 등원 조신 정상(藤原朝臣政尙)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日本國關西路筑·豊·肥三州太守太 宰府都督司馬少卿藤原朝臣政尙遣人 來獻土宜。
연산 34권,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7월 4일(임술) 5번째기사	대마주 평 조신 종언칠 성순(平朝臣宗彦七盛順)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對馬州平朝臣宗彦七盛順遣人來獻土 宜。
연산 34권,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7월 6일(갑자) 1번째기사	승지 이세영·권주·박원종(朴元宗)을 명하여 홍문관 독서당에 먼저 가도록 하 고 이어서 내관 안중경(安仲敬)에게 술과 고기를 가지고 가서 공궤(供饋)하도 록 하였다.	甲子/命承旨李世英、權柱、朴元宗, 先往弘文館、讀書堂, 仍遣內官安仲 敬, 齋酒肉饋之。
연산 34권,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7월 6일(갑자) 2번째기사	대마주 좌호군 대관(佐護郡代官) 평 조신 종 번마 수국구(平朝臣宗幡摩守國 久)가 사람을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對馬州佐護郡代官平朝臣宗幡摩守國 久遣人來獻土宜。 【태백산사고본】

연산 34권,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7월 8일(병인) 1번째기사	홍문관 관원(館員)에게 선운(宣醞)2368) 을 하사하니, 사은하였다. 전교하기를, “그 사은의 뜻으로써 배울 10운을 지어 올리도록 하라.” 하였다.	丙寅/賜宣醞于弘文館館員，謝恩。傳曰：“其以謝恩之意，作排律十韻以進。”
연산 34권,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7월 10일(무진) 2번째기사	대마주 태수 평 조신 종익성(平朝臣宗杳盛)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對馬州太守平朝臣宗杳盛遣人來獻土宜。
연산 34권,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7월 11일(기사) 2번째기사	지금 경기는 비록 흉년이 들었으나, 강원도 및 하삼도(下三道)는 조곡(早穀)도 약간 풍년이요, 만곡(晚穀)도 또한 풍성하니	今京畿雖歉，江原道及下三道，則早穀稍稔，晚穀亦盛。
연산 34권,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7월 11일(기사) 4번째기사	일본국 상송포 호자(上松浦呼子) 일기주 대관(壹岐州代官) 목산 십랑 원정(牧山十郎源正)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日本國上松浦呼子壹岐州代官牧山十郎源正遣人來獻土宜。
연산 34권,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7월 14일(임신) 2번째기사	일본국 상송포 파다도(上松浦波多島) 원납(源納)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日本國上松浦波多島源納遣人來獻土宜。
연산 34권,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7월 16일(갑술) 3번째기사	대마도 평 조신 종무국(平朝臣宗茂國)이 사람을 보내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對馬島平朝臣宗茂國遣人來獻土宜。
연산 34권, 5년(1499)	호조에 전지하기를,	傳旨戶曹曰：“綾一匹、水紬二十四、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7월 19일(정축) 2번째기사	“능주(綾紬) 1필, 수주(水紬) 20필, 당분(糖粉) 2근을 궐내에 들이라.” 하였다.	唐粉二斤入內。”
연산 34권,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7월 19일(정축) 3번째기사	대마주 입석장인위(立石藏人尉) 평국행(平國幸)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對馬州立石藏人尉平國幸遣人來獻土宜。
연산 34권,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8월 2일(기축) 1번째기사	전교하기를, “내시들이 사음(私飲)할 수 없음은 법령에 드러나 있는데, 최희(崔熙)가 궐내에서 사음하였으니	傳曰: “宦者毋得私飲, 已有著令, 而崔熙私飲於闕內
연산 34권,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8월 20일(정미) 5번째기사	항상 냇가에서 손을 대해 술을 마시고 고기를 잡아 회를 쳐서 손을 접대하였으니 그 삼가지 못함이 이와 같았다.	常於川邊, 對客飲酒, 捕魚作膾以侑客, 其不謹多類此
연산 34권,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8월 20일(정미) 6번째기사	월산 대군(月山大君)의 처 박씨에게 쌀과 콩 50석, 정포(正布)·면포(綿布) 3백 필을 사급하였다.	賜月山大君妻朴氏米豆五十碩, 正布、綿布三百匹。
연산 34권,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8월 29일(병진) 2번째기사	호조에 전지하기를, “쌀 2백 석을, 두 대비전(大妃殿)의 본궁에 실어보내라.” 하였다.	傳旨戶曹曰: “米二百碩, 輸送兩大妃殿本宮。”
연산 35권,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9월 1일(무오)	전교하기를, “포도와 목통(木通) 열매 등을 상강(霜降) 후에 외방에서 채취하여 대궐 안으로 들어되 해마다 늘 하도록 하라.”	傳曰: “葡萄、木通實等物, 霜降後, 令外方採取入內, 歲以爲恒。”

2번째기사	하였다.	
연산 35권,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9월 2일(기미) 1번째기사	전교하기를, “상의원(尙衣院)으로 하여금 흰 고래 수염 20개를 사서 대궐 안으로 들이게 하라.”	傳曰: “令尙衣院買白鯨鬚二十枚入內。”
연산 35권,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9월 10일(정묘) 1번째기사	경이 아뢴 대로 하고, 내수사에서 양곡 무역하는 것도 또한 정지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쌀 3백 석(石)을 내수사에 보내라.”	“依卿所啓。 內需司貿穀亦停之。” 傳曰: “米三百碩，送于內需司。”
연산 35권,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9월 12일(기사) 1번째기사	전교하기를, “각종 산나물은 강원도에서 연속 봉진(封進)하게 하라.” 하였다.	傳曰: “各色山蔬， 令江原道連續封進。”
연산 35권,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10월 4일(경인) 1번째기사	전교하기를, “호초(胡椒) 5석을 대궐 안으로 들이라.” 하매, 승지 박원종(朴元宗)이 아뢰기를, “현재 있는 호초가 5석 10두이온데 1년 중 양전(兩殿)께 공상(供上)하는 것이 27근이요, 각사에서 술 다리는 데 쓰는 것이 20근이며, 또 불시의 수요가 있사운데, 만일 5석을 들이게 된다면 남아 있는 것이 10두입니다. 이것이 우리 나라 토산품이 아니라 갑자기 얻기 어렵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두 섬만을 들이라.” 하였다.	傳曰: “胡椒五碩入內。” 承旨朴元宗啓: “時在胡椒五碩十斗耳。 一年內兩殿供上二十七斤， 各司煮酒所用二十斤， 又有不時之需。 若入五碩， 則遺在僅十斗。 此非我國土產， 難以卒得。” 傳曰: “只納二碩。”
연산 35권,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10월 7일(계사)	전교하기를, “사슴 꼬리와 사슴 혀를 계속하여 봉진(封進)할 일로, 생산되는 각 고을에 급히 글을 보내라.”	傳曰: “鹿尾、鹿舌連續封進事， 馳書于所產各官。”

2번째기사	하였다. 전교하기를, “산양(山羊)의 가죽을 각도로 하여금 봉진하게 하라.” 하니, 승정원이 아뢰기를, “근래 평안도에는 변방 경보가 끊이지 않아 각 고을이 소란하기 때문에, 상정된 공물도 그 도 감사가 또한 감해 주기를 청하오니, 나누어 배정하지 마옵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傳曰：“山羊皮令各道封進。”承政院啓：“近來平安道邊警不絕，郡縣騷擾。故雖常貢之物，其道監司亦請減，請勿分定。”傳曰：“可。”
연산 35권,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10월 12일(무술) 4번째기사	일본국 관서로 비축이주 태수 국지등 원조신 중조(關西路肥筑二州太守菊池藤原朝臣重朝)가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드렸다.	日本國關西肥・筑二州太守菊池藤原朝臣重朝遣人來獻土宜。
연산 35권,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10월 14일(경자) 6번째기사	대마주 평조신 종월 중수 성홍(對馬州平朝臣宗越中守盛弘)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드렸다.	對馬州平朝臣宗越中守盛弘遣人來獻土宜。
연산 35권,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10월 15일(신축) 3번째기사	일본국 상송포 호자일기수 원몽(上松浦呼子壹岐守源蒙)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드렸다.	日本國上松浦呼子(堂歧)〔壹歧〕守源蒙遣人來獻土宜。
연산 35권,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11월 4일(경신) 2번째기사	호조에 전지(傳旨)하기를, “보리 2백 석과 기름 6석을 내수사(內需司)에 보내라.” 하였다.	傳旨戶曹曰：“麥二百石、油六碩，其送于內需司。

연산 35권,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11월 7일(계해) 2번째기사	강원도 관찰사에게 생 문어(文魚)를 잡고 그 먹일 물건을 많이 구하여 들이라고 하였다.	命江原道觀察使，捕生文魚，并其所食之物，盛水以進。
연산 35권,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11월 7일(계해) 3번째기사	일본국 비전주 하송포 지좌일기 태수(肥前州下松浦志佐壹岐太守) 원의(源義)가 사람을 보내와 토산물을 드렸다.	日本國肥前州下松浦志佐一岐太守源義遣人來獻土宜。
연산 35권,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11월 8일(갑자) 2번째기사	제주(濟州)의 추복(槌馘)2524 을 각도에 나누어 보내고 관찰사에게 하유하기를, “격식대로 쪄서 말리어서 바치게 하라.” 하였다.	分送濟州槌馘于各道， 諭觀察使曰：“依樣曝乾以進。”
연산 35권,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11월 14일(경오) 4번째기사	“제주(濟州)에서 진상하는 감자(柑子) 등 물건이 지금까지 오지 않으니, 급히 글을 보내어 문책하라.” 하였다.	傳曰：“濟州所進柑子等物，至今不來，其卽馳書問之。”
연산 35권,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11월 24일(경진) 6번째기사	일본국 석견주 주포좌근장감(石見州周布左近將監) 등원 조신 화겸(藤原朝臣和兼)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日本國石見州周布左近將監藤原朝臣和兼〔藤原朝臣和兼〕遣人來獻土宜。
연산 35권,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11월 26일(임오) 1번째기사	호조에 전교하기를, “뽕쌀[粳米] 7석을 대궐 안으로 들이라.” 하였다.	傳旨戶曹曰：“粳米七碩入內。”
연산 35권,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전교하기를, “나배(螺杯)2551) 3백~4백 개를 생산되는 곳에서 채취하여 들이게 하라.”	傳曰：“螺杯三四百箇，令產處採進。”

12년) 12월 9일(계사) 2번째기사	하였다.	
연산 35권,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12월 15일(기 해) 5번째기사	특히 강양군(江陽君) 이숙(李瀟)에게 부의(賻儀)로 쌀·콩 합하여 80석, 마포(麻布) 40필, 저포(苧布) 6필과 석회 40석을 하사하였다.	特賜江陽君瀟賻米豆竝八十碩、麻布四十四匹、苧布六匹、石灰四十碩
연산 36권, 6년(1500) 경신 / 명 홍치(弘治) 13년) 1월 8일(계해) 3번째기사	<p>또 산짐승과 물고기의 진상은 역고(驛路)로 운수하는 폐단이 적지 않으므로, 조종조에서부터 모든 건물(乾物)의 진상을 그 생산되는 곳에 따라 그 수효를 정하였습니다. 지금 들짐승과 물고기를 그 물건의 형체를 보시려고 하여 잡아서 산 채로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종조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승검초[辛甘菜]2561) 는 아무데나 있는 것이 아니요 반드시 적당한 토질에 있는데 그 채취 운송하는 폐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적변(賊變)이 매우 치열하여 부득이 응하는 것이니, 서정(西征)은 비록 작은 폐해가 있더라도 거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사 나들이를 금한 법은(중략) 오래되었습니다. 갑오년2562)</p> <p>“각도의 토산(土產)인 산짐승과 물고기는 감사와 수령이 모두 먹고 있으니, 고기잡고 짐승 사냥하는 폐단이야 공사간에 무엇이 다르겠는가. 또 이것은 언제나 봉진(奉進)하는 것이 아니요, 얻는 대로 진상하는 것이다. 그것을 수송하는 것도 다른 진상품과 함께 오면 따로이 무슨 폐단이 있겠는가. 내가 대비전(大妃殿)을 위하여 이 명을 낸 것이다. 들짐승과 물고기는 형체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진상하라고 명한 것이요, 역시 이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승검초 역시 대비전을 위하고 또 약 짓는데 소용되기 때문에 캐어 진상할 것을 명하였다. 대저 사람이 누구나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백성을 확대한 일이 있더라도 나는 꼭꼭 다 알지 못할 것이다. 무릇 지금 백성을 확대하</p>	<p>。且生物進上，驛路輸轉之弊不貲。自祖宗朝凡乾物進上，隨其所產，以定其數。今野獸水族，欲觀其物形，其令生捕以進，然祖宗朝未有此事。辛甘菜非處處有之，必有土宜，其採掇轉輸之弊，不可勝言。且賊變甚熾，則不得已應之。西征雖有小弊，不可不舉。禁私行，其法尙矣。甲午年《大典》云：‘私出入官府者斬。’今則只杖一百，徒三年。雖有此法，守令等專不奉行，以致其弊。若申明禁止，其弊少祛。”傳曰：“各道土產生物，監司、守令皆得而食之。其漁獵之弊，公私何異？且非常封進，隨所得以進耳。其轉輸亦與凡例進上偕來，則別有何弊耶？予爲大妃殿，有是命耳。野獸、水族欲見形體，故命進，亦非以此爲恒例也。辛甘菜亦爲大妃殿，且有用於劑藥，故命採進耳。大抵人皆</p>

	는 것은 무슨 일인가 정승들에게 물어 보라.” 하였다.	不自知其所爲，雖有虐民之事，我必不自知也。 凡今虐民者何事耶？ 其問政丞。”
연산 36권, 6년(1500) 경신 / 명 홍치(弘治) 13년) 1월 9일(갑자) 4번째기사	사사로이 드나드는 것을 금하는 일은 그 법을 거듭 밝히면 옳겠다. 생물(生物)의 진상은 상례(常例)로 하는 것이 아니니, 민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대저 작은 백성들의 폐해를 어찌 일일이 제거할 수 있겠는가.”	傳曰：“禁私行，申明其法可也。 生物進上，非常例，不可謂有民弊也。 大抵小民之弊，何可一一祛之?”
연산 36권, 6년(1500) 경신 / 명 홍치(弘治) 13년) 1월 14일(기사) 2번째기사	정언 홍수(洪脩)가 우경(禹荊) 및 승검초의 일로 아뢰었는데, 들어 주지 않았다.	正言洪脩啓禹荊及辛甘菜事，不聽。
연산 36권, 6년(1500) 경신 / 명 홍치(弘治) 13년) 1월 20일(을해) 2번째기사	강원도에 명하시어 당귀(當歸) 뿌리 30석을 캐어 들이라 하시었는데, 강원도는 토지가 메마르고 백성이 적어 채취하는 폐해가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청하옵건대 모두 정지하소서.”	又命江原道採進當歸根三十碩，江原土瘠民稀，採取之弊必多，請皆停之。
연산 36권, 6년(1500) 경신 / 명 홍치(弘治) 13년) 2월 4일(무자) 1번째기사	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기를, “낙정미(落庭米)2580) 1백 석을 내수사(內需司)에 실어 보내라.” 하였다.	傳旨戶曹曰：“落庭米四百碩，輸送于內需司。”
연산 36권, 6년(1500) 경신 / 명 홍치(弘治) 13년) 2월 5일(기축) 4번째기사	후추[胡椒] 한 섬과 당백사(唐白絲) 한 근을 쉼내에 들이라.”	胡椒一碩，唐白絲一斤入內
연산 36권, 6년(1500) 경신 / 명 홍치(弘治) 13년) 2월 5일(기축)	전일 회례연(會禮宴) 때에도 대신이 역시 친히 어榻(御榻)에 올라가서 술잔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술잔을 드린 후에는 회사배(回賜盃)가 있으니 더욱 탑에 오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前日會禮宴時，大臣亦不親陞御榻而進爵，進爵後有回賜盃，尤不可不陞榻

1번째기사		
연산 36권, 6년(1500) 경신 / 명 홍치(弘治) 13년) 2월 5일(기축) 4번째기사	대간이 이르기를, ‘풍악을 듣고 고기를 사용한 다음 상복(喪服)으로 제사드리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나로 하여금 이 일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잔치하여 술마시면서 풍악을 들은 후에 선조를 위하여 그 풍악을 사용하지 못할 것인가. 먼저 길제를 드리고 후에 영소전에 제사드리는 것이 무슨 방해가 될 것인가. 또 시제(時祭)를 당하여 집사(執事)들을 모두 고기를 먹지 않는가	臺諫云：‘聽樂、用肉後，以喪服祭之未穩。’是不欲使予爲此舉。因宴飲聽樂之後，則不可爲先祖用樂，先吉祭而後，祭永昭殿何妨乎？且當時祭執事，皆不食肉乎？
연산 36권, 6년(1500) 경신 / 명 홍치(弘治) 13년) 2월 13일(정유) 1번째기사	새끼 노루·사슴을 천신(薦新) 진상하는 것 외의, 망패(網牌)의 사냥을 일제 정파(停罷)하고, 생산(生産)되는 각 고을로 하여금 봉진(封進)하게 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請兒獐鹿薦新進上外，網牌之獵，一切停罷，令所產各官封進爲便。
연산 36권, 6년(1500) 경신 / 명 홍치(弘治) 13년) 2월 13일(정유) 3번째기사	전교하기를, “구급주(救急酒) 1백 병을 내주방(內酒房)으로 들이라.” 하였다.	傳曰：“救急酒一百瓶，其進于內酒(坊) [房] 。
연산 36권, 6년(1500) 경신 / 명 홍치(弘治) 13년) 2월 29일(계축) 4번째기사	명하여 개 먹이 낙정미(落庭米) 40석을 좌우 응방에 주게 하였다.	命給狗料，落庭米四十碩于左右鷹坊。
연산 37권, 6년(1500) 경신 / 명 홍치(弘治) 13년) 3월 3일(정사) 4번째기사	승정원에 술을 하사하고, 시(詩) 절운(絶韻)한 수를 지어 내려보내기를,	賜醞于承政院，御製一絶以下曰
연산 37권, 6년(1500) 경신 / 명 홍치(弘治) 13년) 3월 8일(임술)	호조에 전지하기를, “백청밀(白淸蜜) 40말을 대궐에 들여오라.” 하였다.	傳旨戶曹曰：“白淸蜜四十斗入內。”

2번째기사		
연산 37권, 6년(1500) 경신 / 명 홍치(弘治) 13년) 3월 13일(정묘) 1번째기사	호조에 전지하기를, “쌀 1백 석을 내수사(內需司)에 실어 보내라.” 하였다.	丁卯/傳旨戶曹曰: “米一百碩, 輸送于內需司。”
연산 37권, 6년(1500) 경신 / 명 홍치(弘治) 13년) 3월 13일(정묘) 2번째기사	전교하기를, “벌통 30개를 대궐 안에 들여오라.” 하였다.	傳曰: “蜂桶三十入內。”
연산 37권, 6년(1500) 경신 / 명 홍치(弘治) 13년) 3월 25일(기묘) 1번째기사	호조에 전지하기를, “콩 3백 석을 내수사(內需司)에 실어 보내라.” 하였다.	己卯/傳旨戶曹曰: “黃豆三百石, 輸送于內需司。”
연산 37권, 6년(1500) 경신 / 명 홍치(弘治) 13년) 4월 2일(을유) 1번째기사	전교하기를, “포도·개암·잣 각각 3석을 대궐로 들여오라.” 하였다.	“葡萄、榛子、栢子各三碩入內。”
연산 37권, 6년(1500) 경신 / 명 홍치(弘治) 13년) 4월 12일(을미) 2번째기사	전교하기를, “호초 1섬과 단목(丹木) 1백 50근, 나무 빗 백 개를 대궐로 들여오라.” 하였다.	傳曰: “胡椒一碩、丹木一百五十斤、木梳百介入內。”
연산 37권, 6년(1500) 경신 / 명 홍치(弘治) 13년) 4월 18일(신축) 1번째기사	전교하기를, “즁채(叢菜)2616) 흙 달린 것 20석을 오는 8~9월간에 생산지 각도에서 채취하여 들이게 하라.” 하였는데, 후원에 심으려는 것이다.	傳曰: “叢菜戴土二十碩, 來八九月間, 令所在各道, 掘取以進。” 將欲種之後苑也。
연산 37권, 6년(1500)	밤에 전교하기를,	, 傳曰: “淸酒二十瓶及騎馬二匹、載

경신 / 명 홍치(弘治) 13년) 4월 19일(임인) 4번째기사	“청주 20병과 타는 말 2필, 짐 싣는 말 3필을 즉시 들여오라.” 하였다.	持馬三匹，卽時進來。”
연산 37권, 6년(1500) 경신 / 명 홍치(弘治) 13년) 5월 28일(신사) 3번째기사	뇌록(磊綠) 1백 말, 주토(朱土) 15말, 정분(丁粉) 40말, 송연(松烟) 50근, 향분(鄉粉) 8근, 아교(阿膠) 50근을 내수사(內需司)로 실어 보내라.” 하였다.	磊綠一百斗，朱土十五斗、丁粉四十斗、松烟五十斤、鄉粉八斤、阿膠五十斤輸送于內需司。”
연산 38권, 6년(1500) 경신 / 명 홍치(弘治) 13년) 6월 22일(갑진) 2번째기사	활짝 핀 연꽃 세 송이를 승정원에 내려주고 어제(御製)로 절구(絕句)한 수를 지었는데, 그 시에 이르기를, “고요한 은대(銀臺)2648) 에 낮이 지겨운데 무더위를 견디지 못해 졸고 앉아 있노라 연꽃을 꺾어서 은근히 주니 잔에 가득한 술 싫어하지 말게나” 하였다. 승정원에 명하여 이 뜻으로 율시(律詩)를 지어 바치게 하고 자소주(紫燒酒)와 참외 등 음식물을 내렸다.	下爛開荷花三朶于政院，御製一絕曰： “寂寂銀臺晝漏遲，不堪薰暑坐眠時。 池荷折賜慙勸賞，莫厭紅醪滿滿卮。” 命政院，其以此意，製律詩以進，賜紫燒酒、牯瓜等物。
연산 38권, 6년(1500) 경신 / 명 홍치(弘治) 13년) 6월 25일(정미) 3번째기사	전교하기를, “치자(梔子) 30두(斗)를 궤내로 들이라.” 하였다.	傳曰：“梔子三十斗入內。”
연산 38권, 6년(1500) 경신 / 명 홍치(弘治) 13년) 7월 4일(병진) 3번째기사	전교하기를, “후추[胡椒] 2석을 궤내로 들이라.” 하였다.	傳曰：“胡椒二石入內。”
연산 38권, 6년(1500) 경신 / 명 홍치(弘治) 13년) 7월 29일(신사)	전교하기를, “의빈부 경력(儀賓府經歷) 신수영(愼守英)에게 중미(中米)2689) 20섬을 내려 주라.”	傳曰：“儀賓府經歷愼守英賜中米二十碩。”

2번째기사	하였다.	
연산 38권, 6년(1500) 경신 / 명 홍치(弘治) 13년) 8월 1일(계미) 2번째기사	였다. 이어 술과 안주를 내려 주면서 이르기를, “이 시로써 풍월(風月)을 완상(玩賞)하고 적막한 심정(心情)을 한 번 풀었으니, 이 운(韻)자로 답시(答詩)를 지어 들어라.”	仍賜酒餼曰：“以此賞風月，一破寥情。用此韻和進。”
연산 38권, 6년(1500) 경신 / 명 홍치(弘治) 13년) 8월 3일(을유) 1번째기사	호조에 전지(傳旨)하기를, “낙정미(落庭米)2693) 3백 섬을 내수사(內需司)로 실어 보내라.” 하였다.	○乙酉/傳旨戶曹曰：“落庭米三百碩，輸送于內需司。”
연산 38권, 6년(1500) 경신 / 명 홍치(弘治) 13년) 8월 9일(신묘) 1번째기사	호조에 전교하기를, “중미(中米) 1백 섬·전미(田米)2699) 50석·황두(黃豆) 2백 섬과 백색 세면포(細綿布) 50필·중면자(中綿子) 1백 근·정주(鼎紬) 2백 필·수주(水紬) 50필, 보통 면포(綿布) 1천 필과 벼[稻] 1천 섬·참기름[眞油] 5섬을 내수사(內需司)로 실어 보내고, 세면포(細綿布) 15필은 궐내로 들어라.” 하였다.	辛卯/傳于戶曹曰：“中米一百碩、田米五十碩、黃豆二百碩、白細綿布五十匹、中綿子一百斤、鼎紬二百匹、水紬五十匹、常綿布一千匹、稻一千碩、眞油五碩輸送于內需司，細綿布十五匹入內。”
연산 38권, 6년(1500) 경신 / 명 홍치(弘治) 13년) 8월 20일(임인) 3번째기사	으름[木通實]을 승정원에 내리면서 이르기를, “승지들은 이것은 함께 맛보고 이것으로써 농담의 시[戲詩]를 지어 바치라.” 하였다.	下木通實于承政院曰：“承旨等共嘗之。以此製戲詩以進。”
연산 38권, 6년(1500) 경신 / 명 홍치(弘治) 13년) 8월 29일(신해) 3번째기사	경기 관찰사(觀察使)에게 하서(下書)하기를, “약에 쓰는 우렁이 40개를 연달아 봉해 바치라.” 하였다.	下書于京畿觀察使曰： 藥用陸螺四十，連續封進
연산 38권, 6년(1500) 경신 / 명 홍치(弘治)	성중관(成衆官)2723) 도 모두 그러하여 겨우 신관(新官)이 되어 발이 관문(官門)에 미치기도 전에 먼저 주효(酒肴)를 그 집에서 가져오는데 많은 경우는	成衆官皆然，才爲新官，足未及門，先取酒肴於其家，多至十餘度，名曰徵

<p>13년) 8월 29일(신해) 4번째기사</p>	<p>10여 회나 되니 이를 징구(徵求)라 하고, 또 억지로 직숙(直宿)하도록 하여 혹은 열흘이나 한 달까지 연속되는데, 이를 초도(初度)라 명칭하니, 신관(新官)의 고통은 다 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생기(省記)2724)는 어전에서 아뢰는 것인데, 번번이 한 사람의 이름으로써 서계(書啓)하니 무례함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으며, 또 행례(行禮)하도록 꾀박하여 그들로 하여금 술과 안주를 많이 준비하도록 하니, 이를 면신(免新)이라 하는데, 이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배척하고 소외(疎外)하여 좌석의 끝자리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하므로 차라리 자기의 재산을 망치더라도 꼭 풍성하게 많이 준비하게 됩니다.</p>	<p>求。又逼令直宿，或連旬月，名爲初度，新官之苦，有不足論。其省記，上前所啓，而每以一員之名書啓，無禮孰甚？又迫之行禮，使大辦酒饌，謂之免新。有不如意，則斥而外之，不得參於席末，故寧亡己之財，而務要豐厚</p>
<p>연산 39권, 6년(1500 경신 / 명 홍치(弘治) 13년) 10월 10일(신묘) 1번째기사</p>	<p>상참을 받고 경연에 납시었다. 장령 신숙근(申叔根)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구중(九重) 궁궐에 들어 앉아 계시는데, 진실로 아래에 있는 폐단을 어떻게 아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옹원(司饗院)에서 각도(各道)의 모든 물선(物膳)을 감독하여 받아 들일 때에 품질이 좋고 나쁜 것은 가리지 않고서 오로지 뇌물이 있고 없는 것으로써 받고 안 받고 합니다. 이런 까닭으로 도회계(都會計)의 관원이 으레 면포(綿布)를 각 고을에서 받으면서 인정을 쓰는 물건이라 하여 수뢰(受賂)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물선(物膳)이 비록 신선(新鮮)하더라도 물리치게 됩니다. 또 진상(進上)하는 희귀한 물건도 구득하지 못하게 되면 더러는 서울의 반감(飯監)2754) 이나 각 색장(色掌)2755)의 집에서 사서 바치는데 이것은 바로 어주(御廚)의 물건을 훔쳐낸 것으로 환관(宦官)들이 권세를 부리는 까닭입니다. 청컨대 사옹원 제조(司饗院提調)로 하여금 번갈아 입직(入直)하여 단속하고 살피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기를, “진실로 마땅히 금지해야 할 것이지만, 다만 제조(提調)가 날마다 와서 보는 것도 또한 폐단이 있겠다.” 하였다.</p>	<p>辛卯/受常參，御經筵。掌令申叔根曰：“殿下深居九重，凡在下之弊，何由知之？今司饗院凡各道物膳監納之時，不擇美惡，專以賄賂進退之。以故，都會官例收綿布於各官，稱人情之物而賂之，否則物膳雖新鮮退之。且進上稀貴之物，求之不得，則或轉買於京中飯監、各色掌家納之。此乃偷取御廚之物，宦官用事之故也。請令司饗院提調，分番入直檢察。”王曰：“固當禁之。但提調日日來見，亦有弊也。”</p>
<p>연산 39권, 6년(1500</p>	<p>마유포도(馬乳葡萄) 한 가지를 승정원에 내리시면 이르기를,</p>	<p>下馬乳葡萄一枝于政院曰：“爾等嘗味，</p>

경신 / 명 홍치(弘治) 13년 10월 14일(을미) 2번째기사	“너희들이 이것을 맛보고 각기 시(詩)를 지어 바치라.” 하니, 승지들이 사은(謝恩)하기를, “신 등이 이전에 맛보지 못하던 것입니다. 산중에 비록 더러 있기는 했으나, 서리와 눈 속에 그 맛이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各製詩以進。” 承旨等謝恩曰：“臣等前此所未得嘗。山林雖或有之，霜雪中其味，豈得類此乎？”
연산 39권, 6년(1500) 경신 / 명 홍치(弘治) 13년 10월 21일(임인) 1번째기사	월산 대군(月山大君) 집에 찾아들어가 면포(綿布)·정포(正布) 각 2백 50필, 정주(鼎紬) 50필, 수주(水紬) 30필, 쌀 1백 석, 참기름[眞油] 3석, 꿀[淸蜜] 2석, 호초(胡椒) 1석을 내려 주었다.	歷入月山大君家，賜綿布、正布各二百五十四匹，鼎紬五十四匹，水紬三十四匹，米一百碩，眞油三碩，淸蜜二碩，胡椒一碩。 【태백산사고본】
연산 39권, 6년(1500) 경신 / 명 홍치(弘治) 13년 10월 27일(무신) 3번째기사	사옹원(司饗院)에서 천인(賤人)들에게 대접한 수효도 대단히 많아 하루 동안에 소비되는 수량이 거의 여러 백 냥에 달하는데 공궤(供饋)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한 일이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 수가 없으니, 진실로 작은 폐단들이 아니어서 신 등이 그욕이 의혹됩니다.	司饗院賤人供饋之數猥多，一日所費，幾至數百。未審供饋者何人，所爲者何事？誠非小弊，臣等竊有感焉。
연산 39권, 6년(1500) 경신 / 명 홍치(弘治) 13년 10월 28일(기유) 1번째기사	설리(薛里)2785)·나연(那衍)·주방(酒房)·반감(飯監) 등은 성복(成服)한 후에는 창경궁(昌慶宮) 안과 대궐 밖에서는 또한 모두 임시로 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에 천담복(淺淡服)을 입고, 별감(別監)은 창경궁 안에서는 백의(白衣)에 백건(白巾)을 쓰고, 시녀(侍女) 이하의 사람은 졸곡(卒哭) 지낸 후에 상복(喪服)을 벗으며,	薛里、那衍、酒房、飯監等成服後，昌慶宮內及闕外，亦皆權着烏紗帽、黑角帶、淺淡服。
연산 39권, 6년(1500) 경신 / 명 홍치(弘治) 13년 11월 11일(신유) 2번째기사	영웅 대군(永膺大君)의 부인 송씨(宋氏)가 양주(楊州) 석도(石島)의 뽕나무 밭 7결(結)을 바치므로, 쌀 80석을 내려 주게 하였다.	永膺大君夫人宋氏獻楊州石島桑田七結，命賜米八十碩。
연산 39권, 6년(1500) 경신 / 명 홍치(弘治) 13년 11월 17일(정묘) 2번째기사	구국 사신이 숙배(肅拜)하였는데, 그 국왕의 글에 이르기를, “유구국 중산왕(中山王) 상진(尙眞)은 삼가 조선 국왕 전하께 아뢰입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중략)예물(禮物)은, 유청귀승단화금(柳靑龜勝團花錦) 1단(段), 대홍편지금단(大紅遍地金段) 2필, 금황목단화단(金黃牧丹花段) 1필, 천축상등	琉球國使臣肅拜。其國王書云：琉球國中山王尙眞謹啓朝鮮國王殿下。伏以，推誠結信(중략)禮物，柳靑龜勝團花錦一段、大紅遍地金段二

	<p>오채수건(天竺上等五彩手巾) 1조(條), 서번상호이양수건(西番上號異樣手巾) 1조, 상아(象牙) 2조, 서각(犀角) 6개, 우각(牛角) 4개, 석(錫) 2천 근(觔), 소목(蘇木) 1천 근(觔), 호초(胡椒) 1천 근(觔), 목향(木香) 2백 근(觔), 단향(檀香) 2백 근(觔), 정향(丁香) 2백 근(觔), 금결속요도(金結束腰刀) 2자루, 천축백호주(天竺百花酒) 1정(埧)2790) 이었다. 왕이 즉시 술 1병을 승정원에 내려주며 이르기를, “맛보라.” 하였는데, 맛이 지극히 향기가 풍기고 온화하며 순순하였다.</p>	<p>匹、金黃牧丹花段一匹、天竺上等五彩手巾一條、四番上號異樣手巾一條、象牙二條、犀角六箇、牛角四箇、錫二千觔、蘇木一千觔、胡椒一千觔、木香二佰觔、檀香二佰觔、丁香二佰觔、金結束腰刀二把、天竺白花酒一埧【埧其盛酒器也。】王卽下一壺于政院曰：“其嘗之。”味極香烈溫醇。</p>
<p>연산 40권, 7년(1501 신유 / 명 홍치(弘治) 14년) 1월 10일(기미) 1번째기사</p>	<p>호초 1백 50근, 조미(糙米) 5백 60근을 주어 보냈으니</p>	<p>胡椒一百五十斤、糙米五百六十斤以遣</p>
<p>연산 40권, 7년(1501 신유 / 명 홍치(弘治) 14년) 1월 12일(신유) 2번째기사</p>	<p>도승지 이세영(李世英)이 아뢰기를, “형조 참판 정광세(鄭光世)는 평소부터 병이 있었는데, 지금 부친상을 만나서 위태롭게 되었으니, 하교로써 고기 먹기를 권하옵기를, 청합니다.” 하니, 내관(內官) 엄용선(嚴用善)과 대교(待敎) 김말문(金末文)을 보내어, 고기를 가지고 가서 권하도록 명하고, 또 고기를 권하는 뜻으로 절구(絶句)를 지어 바치게 했다</p>	<p>都承旨李世英啓：“刑曹參判鄭光世素有疾病，今遭父喪，漸至危殆，請以上敎勸肉。”命遣內官嚴用善、待敎金末文，持肉往勸之，又以勸肉之意，製絶句以進。</p>
<p>연산 40권, 7년(1501 신유 / 명 홍치(弘治) 14년) 1월 25일(갑술) 1번째기사</p>	<p>일본국의 등원 정성(藤原貞成)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土産物)을 바쳤다.</p>	<p>甲戌/日本國藤原貞成遣人來獻土宜。</p>
<p>연산 40권, 7년(1501 신유 / 명 홍치(弘治) 14년) 2월 9일(무자)</p>	<p>대마주 태수 평조신 종익성(對馬州太守平朝臣宗杳盛)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土産物)을 바쳤다.</p>	<p>戊子/對馬州太守平朝臣宗杳盛〔平朝臣宗材盛〕遣人來獻土宜。</p>

1번째기사		
연산 40권, 7년(1501 신유 / 명 홍치(弘治) 14년) 3월 27일(을해) 1번째기사	전교하기를, “서강(西江) 마포(麻浦) 등지의 화재를 입은 1백 3호(戶)에 쌀 3말씩을 내려 주라.” 하였다.	/傳曰: “西江、麻浦等處失火一百三家, 其賜米各三斗。”
연산 40권, 7년(1501 신유 / 명 홍치(弘治) 14년) 3월 29일(정축) 1번째기사	호조에 전지(傳旨)하기를, “호초 10석(石)을 내전으로 들여보내라.” 하였다.	傳旨戶曹曰: “胡椒十碩入內。”
연산 40권, 7년(1501 신유 / 명 홍치(弘治) 14년) 4월 5일(임오) 2번째기사	월산 대군(月山大君) 부인에게 면포·정포 각 2백 필과, 쌀 50석, 콩 30석을 내려 주라.” 하였다.	月山大君夫人賜絺布、正布各二百匹, 米五十碩、黃豆三十碩。”
연산 40권, 7년(1501 신유 / 명 홍치(弘治) 14년) 4월 28일(을사) 1번째기사	참을 받고 경연(經筵)에 납시었다. 지평 김습(金燭)이 아뢰기를, “평안도에 흠비가 내렸고 별뿔이 떨어졌으니, 재변이 적지 않으며, 가뭄의 징조가 이미 나타나서 보리와 밀이 익지 않으니, 술을 금하기를 청합니다.”	/受常參, 御經筵。持平金燭曰: “平安道雨土、隕石, 災變不小。旱兆已萌, 兩麥不熟, 請禁酒。”
연산 40권, 7년(1501 신유 / 명 홍치(弘治) 14년) 5월 6일(계축) 1번째기사	여러 곳에 사는 사여(賜與)한 어살[魚箭]은 모두 당연히 국용(國用)에 환속해야 하오니, 해주(海州) 어살 또한 내수사(內需司)에 소속시키지 마옵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사여(賜與)한 어살은 마땅히 국용에 소속되어야 하겠지마는, 해주(海州) 어살은 내수사 관원(官員)들이 또한 사용(私用)한 것이 아니다.”	致亨等又啓: “諸處賜與魚箭, 請竝還屬國用, 而海州魚箭, 亦勿屬內需司。” 傳曰: “賜與魚箭, 當屬國用, 而海州魚箭, 則內需司官員亦非私用, 不允。”
연산 40권, 7년(1501 신유 / 명 홍치(弘治) 14년) 5월 6일(계축) 2번째기사	일본국 반전출우수 원집(飯田出羽守源集)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土產物)을 바쳤다.	日本國飯田出羽守源集遣人來獻土宜。

연산 40권, 7년(1501 신유 / 명 홍치(弘治) 14년) 5월 13일(경신) 1번째기사	전교하기를, “땀쌀 5석과 비단 5필을 내전으로 들여오라.” 하였다.	庚申/傳曰: “粳米五碩、段子二匹入內。”
연산 40권, 7년(1501 신유 / 명 홍치(弘治) 14년) 5월 25일(임신) 2번째기사	사용원이 왕명을 받아 동강(東江)·서강(西江) 고기잡이를 금했는데, 무릇 산림과 천택(川澤)은 백성들과 더불어 이익을 함께 나누는 것이니, 금하지 말기를 청합니다. 또한 가뭄이 매우 심하니, 지금 바야흐로 감선(減膳)2878) 을 할 때입니다. 공물(貢物)의 수량을 정하는 일은 급한 일이 아니니 또한 정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수청(水淸)과 합덕(合德)의 제방은 백성들로 하여금 살 곳을 잃고 떠돌아 다니게 하는 일은 아니다. 상정(詳定)하는 일은 마땅히 넉넉하고 부족함을 빨리 계산해서 한도를 정하기 위한 것이다. 동강(東江)·서강(西江)의 고기잡이를 금한 것은 나에게서 나온 일이 아니니, 그것을 물어 보고 아뢰라.” 하였다.	且司饗院承傳, 禁獵東、西江。 凡山林、川澤, 與民共之, 請勿禁。 且旱氣太甚, 今方減膳之時, 詳定非所急, 亦請停之。” 傳曰: “水淸、合德堤堰, 非使民流離失所之事。 詳定事, 當速計其足不足, 爲之定限也。 東、西江禁獵, 非出於予, 其問以啓。”
연산 40권, 7년(1501 신유 / 명 홍치(弘治) 14년) 6월 3일(기묘) 1번째기사	전교하기를, “날전복[生鰓] 30말[斗]을 산지에서 봉진하라.”	傳曰: “生鰓三十斗, 令產處封進。”
연산 41권, 7년(1501 신유 / 명 홍치(弘治) 14년) 8월 5일(경술) 1번째기사	활 만드는 장인(匠人) 30여 명을 뽑아 내궁방(內宮房)에 들어오게 했는데, 그 조식의 음식 비용이 매우 많으므로, 유사(有司)에게 분부하여 별도의 장인을 쓰지 못하게 하기를 청합니다.”	弓匠三十餘人選入內弓房, 其朝夕供饋之費甚不貲。 請付之有司, 勿用別匠。
연산 41권, 7년(1501 신유 / 명 홍치(弘治)	전교하기를, “학교는 인재를 양육하는 곳이므로 비록 흉년을 만났지만, 아무 하는 일 없이 먹기만 하는 예가 아니니, 유생(儒生)들에게 음식 먹이는 비용을 줄이지 말	傳曰: “學校養育人材之所, 雖值凶歉, 非冗食之例。 儒生供饋之費, 其勿減省。”

14년) 8월 6일(신해) 1번째기사	라.” 하였다.	
연산 41권, 7년(1501 신유 / 명 홍치(弘治) 14년) 8월 21일(병인) 2번째기사	산국화 화분 하나를 승정원에 내리고 이어 선은(宣醞)2941) 을 내려주면서 어서(御書)하였다. 가을 바람은 곳곳마다 맑은데 황국의 향기 뜰에 가득하여라 적막한 승정원 안에는 내려준 술잔에 그 꽃이 뜨리	下山菊一盆于承政院，仍賜宣醞。 御 書曰： 金風無處淡，黃菊滿階香。 寂寞銀臺 裏，須浮賜酒觴。
연산 41권, 7 년(1501 신유 / 명 홍 치(弘治) 14년) 8월 27일(임신) 2번째기사	양대비전(兩大妃殿)은 이미 국가의 비용으로 봉양하는 것인데, 어찌 별도로 진상(進上)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래에 들건대, 쌀과 콩 1백여 석을 내수사 (內需司)에 보냈다 하니, 또한 매우 불가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대비전(大妃殿)에 진상하는 일은 성종(成宗) 때에도 또한 그 예가 있으니, 이 것은 대간(臺諫)이 마땅히 말할 것이 못되는 일이다.” 하였다.	且兩大妃殿，則既以一國奉養，何用別 進？近聞，米豆百餘碩輸於內需司，亦 甚不可。” 王曰：“大妃殿進上事，成 宗朝亦有其例， 此則臺諫所不當言 也。”
연산 41권, 7년(1501 신유 / 명 홍치(弘治) 14년) 9월 12일(정해) 1번째기사	쌀 50석과 콩 30석을 월산 대군(月山大君)의 처 박씨(朴氏)에게 내려주라.” 하였다.	米五十碩、黃豆三十碩，賜月山大君妻 朴氏。”
연산 41권, 7년(1501 신유 / 명 홍치(弘治) 14년) 9월 29일(갑진) 2번째기사	전일에 하늘의 변괴가 있었는데도 양로연(養老宴)을 정지하지 않았으니, 군주 가 재이를 만나면 마땅히 풍악을 거두고 수라의 가짓수를 줄여야 하는 것인 데, 어찌 이와같이 하시옵니까?” 하였다.	前日有天變，而不停養老宴。 人君遇 災，則當撤樂、減膳，豈若是乎?”
연산 41권, 7년(1501 신유 / 명 홍치(弘治) 14년) 10월 21일(병	호조에 전지하기를, “쌀 30석과 콩 20석을 제안 대군(齊安大君) 현(瑄)에게 내려주라.” 하였다.	傳旨戶曹曰：“米三十碩、黃豆二十碩， 賜齊安大君瑄。”

연산 41권, 7년(1501) 11월 16일(경인) 1번째기사	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기를, “벼 1천 석, 쌀 2백 석, 콩 1백 석, 참쌀 50석, 숨 1백 근, 명주 1백 필, 세면포(細綿布) 50필을 양대비전(兩大妃殿)에 진상하라.” 하였다.	/傳旨戶曹曰: “租一千碩、米二百碩、黃豆一百碩、粘米五十碩、緜子一百斤、綿紬一百匹、細緜布五十(匠) [匹] 進兩大妃殿。”
연산 41권, 7년(1501) 11월 22일(병신) 3번째기사	한치형(韓致亨)이 아뢰기를, “대간이 홍문관과 더불어 유자광이 전복[鰓]을 진상한 일을 가리켜 소인이라고 말하나, 신 등의 생각으로는 별도 다른 뜻이 없었다고 여겨지므로 의논해서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홍문관이 유자광을 배척해 말하기를 ‘간사하고 음해하다.’ 하므로 신 등의 생각으로는 유자광이 필시 크게 간사한 일이 있으리라고 여겨졌는데, 지금 홍문관의 초사(招辭)를 살펴보니, 별로 다른 의논도 없었는데 오히려 또한 이와 같이 운운한 것입니다.	○致亨啓: “臺諫與弘文館指子光獻鰓事, 斥言小人。 然臣等意謂, 子光以別無他意議啓耳。 其後, 弘文館斥言子光奸邪陰賊。 臣等意謂, 子光必是大有奸邪之事也。 今觀弘文館招辭, 別無他議, 而猶且如此云云。”
연산 41권, 7년(1501) 11월 25일(기해) 2번째기사	전교하기를, 너새[鶉] 한 쌍을 경기도에 명하여 산 채로 잡아 진상하게 하라.” 하였다.	傳曰: “鶉雌雄令京畿生獲以進。”
燕山 41卷, 7年(1501) 12月 5日(己酉) 2번째기사	포백(布帛)·미면(米淸)3032) ·채단 같은 물건들은, 해당 관사(官司)로 하여금 대내(大內)에 들여오게 하는 일을 사알(司謁)의 구전(口傳)에만 의거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 “布帛、米淸、綵段等物, 令該司入內事, 只憑司謁口傳未便
연산 42권, 8년(1502) 1월 3일(병자) 3번째기사	사용원(司饗院)의 관원에게 명하여 공사(公私)의 어부(漁父)를 모두 징발하여 노량(鷺梁)·한강(漢江)·서강(西江)·용산강(龍山江)에서 고기를 잡도록 하고, 말[馬]을 내주어 그물을 운반하게 하였다.	命司饗院官員, 盡發公私漁夫, 漁于鷺梁、漢江、西江、龍山江, 給馬以輸網具。
연산 42권, 8년(1502) 1월 3일(병자) 3번째기사	일본국 비전주 소성 천엽개 평 조신 원렵(肥前州小城千葉介平朝臣元獵)과 일본국 서해로 주방주 산구거주(西海路周防州山口居住) 대내진량(大內進亮)과	日本國肥前州小城千葉介平朝臣元胤、日本國西海路周防州山口居住大

15년) 1월 3일(병자) 6번째기사	다다랑 조신(多多良朝臣) 교지(敎之)와 일본국 일기주 수호대관(一岐州守護代官) 진궁(眞弓)과 병부 소보(兵部小輔) 원무(源武) 등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內進亮多多良朝臣敎之、日本國一岐州守護代官眞弓兵部小輔源武等遣人來獻土宜。
연산 42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1월 7일(경진) 4번째기사	황해도 관찰사 민휘(閔暉)에게 빨리 글을 보내었다. “먹어서 치료가 되는 생조개[生蛤]를 얼음이 풀린 후에 봉진(封進)하겠다는 일은 경의 아뢴 대로 하라.”	馳書黃海道觀察使閔暉曰：“食治生蛤，解冰後封進事，依卿所啓。”
연산 42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1월 9일(임오) 2번째기사	상정청(詳定廳)3068) 이 아뢰기를, “사용원(司饗院)에서 날마다 쓰는 생선을 본청(本廳)3069) 으로 하여금 작성(酌定)하게 하였는데, 사용원이 날마다 드리고 있는 장부를 도薛리(都薛里)3070) 가 내보이려고 하지 않으니, 상고하게 해주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사용원에서 날마다 출납을 기록한 장부는 모두 자질구레한 일만 기록하고 있으니, 상고할 필요는 없다. 생선은 비록 하사(下賜)하는 데는 쓰지 않지만, 주물상(晝物床)3071) 과 연향(宴享)·제향(祭享) 같은데는 모두 쓴다. 이를 한 가정에 비교하면 향례(享禮)가 있을 적에 시장에서 물건을 사서 쓰는 것과 같으니, 처음부터 일정한 수량이 없으므로 쓰이는 바에 따라 가감(加減)하는 것으로 작성하는 것이 옳겠다.”	詳定廳啓：“司饗院日次生鮮，令本廳酌定，而司饗院日次所納置簿，都薛里不肯出示，請相考。”傳曰：“司饗院日次置簿，皆記猥瑣之事，不必相考。生鮮雖不用於賜送，如晝物、宴享、祭享皆用之。比之一家，如有享禮，則尚且貿市用之。初無定數，隨所用而加減之，以此酌定可也。”
연산 42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1월 13일(병술) 3번째기사	어주(御廚)3106) 의 진수(珍羞)를 하사하여 채식[藿食]하는 위장(胃腸)을 조섭(調攝)하게 하였으므로 백골에 도로 살이 붙어 다시 잠간 사이에 죽을 목숨을 연장시켰으며, 꺼진 재에 불이 되살아나니, 우러러 도건(陶甄)3107) 의 덕화를 입게 되었습니다. (중략)성현(成愼)이 병을 앓는데 의약(醫藥)과 주찬(廚饌)3110) 을 하사하였으므로 전문(箋文)을 올려 사은(謝恩)한 것이다.	兼賜御廚之珍，以調藿食之胃。白骨還肉，更延晷刻之淹。死灰復燃，仰被陶甄之化。顧深恩之曠蕩，實窮巷之光華。倪患疾，賜醫藥、廚饌，故上箋謝恩。
연산 42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1월 15일(무자)	호조에 전지하기를, “휘순 공주(徽順公主)의 혼례(婚禮) 때에 쌀가루[米淸]가 다 없어졌으니, 쌀 8백 석(石)을 주혼(主婚)의 집으로 운반해 보내라.”	傳旨戶曹：“徽順公主婚禮時，米?乏盡，米八百石輸送于主婚家。”

<p>5번째기사</p> <p>연산 42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1월 19일(임진) 5번째기사 상정청 당상 성준 등 이 선상의 개혁과 용 도를 줄이기를 건의하 다</p>	<p>하였다.</p> <p>사용원(司饗院)의 물선(物膳)과 피물(皮物)을 군기시(軍器寺)·제용감(濟用監)·공조(工曹) 등의 관사(官司)로 나누어 보내어 국용(國用)에 공급했기 때문에 외국(外貢) 피물의 수량을 이로 인하여 걱정했는데, 지금은 모두 궁방(弓房)에 바치게 한 까닭으로 공조 등 관사에 소용이 모자라게 되었으니, 궁방에 바치지 말아서 국가의 용도를 넉넉하게 하기를 청합니다. 또 사용원의 물선과 생선은 지금 본청(本廳)3129)에 명하여 걱정한 것이므로 함부로 줄이기가 어려우므로 상의 재가를 청합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선상(選上) 등의 일은 아된 대로 할 것이며, 습독관(習讀官)을 폐지해야 되는지 여부는 내의원(內醫院)에 물을 것이며, 피물(皮物)의 절반은 공조 등 관사로 보내고, 생선은 너무 큰 것을 사용하지 말라.”</p> <p>하였다.</p>	<p>且司饗院物膳生鮮，今命本廳酌定，擅減爲難，請上裁。”傳曰：“選上等事依所啓。習讀官當罷與否，問內醫院。皮物半送工曹等司，生鮮勿用過大者。”</p>
<p>연산 42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1월 21일(갑오) 3번째기사 대마주 태수 종익성 등이 사람을 보내와 토산물을 바치다</p>	<p>대마주 태수(對馬州太守) 종익성(宗杳盛)과 일본국 살주 이집원 우진우주 태수(日本薩州伊集院寓鎮隅州太守) 등조구(藤照久)와 대마주 인위군 종민부소보 직가(對馬晝仁位郡宗民部少輔職家) 등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p>	<p>對馬州太守(宗杳盛) [宗材盛]、日本國薩州伊集院寓鎮隅州太守藤照久、對馬州仁位郡宗民部少輔職家等遣人來獻土宜。</p>
<p>연산 42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1월 23일(병신) 4번째기사 내자시의 술 2백 병을 주방으로 보내도록 하</p>	<p>전교하기를, “내자시(內資寺)의 술 2백 병을 주방(酒房)3153) 으로 보내라.”</p> <p>하였다.</p>	<p>傳曰：“內資寺酒二百瓶，送于酒房。”</p>

다		
연산 42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1월 24일(정유) 2번째기사 영의정 한치형 등이 흠비로 인하여 사피와 용도를 절약하기 등을 청하다	근래에는 용도(用度)가 대단히 많아져서 풍저창(豐儲倉)3159) 이 텅 비어 일체의 국용(國用) 조달과 각 관사(官司)의 무역하는 대가가 모두 군자창(軍資倉)3160) 에서 나오게 됩니다. 세종(世宗)의 재위한 30년 동안에 군자창 저축이 30만 석이 넘었는데, 근래에는 개국한 지가 거의 백년이나 되었는데도 백만 석도 차지 못하니 생각하건대, 용도를 절약하는 방법이 아직 미진해서 그런 것이옵니다.	近來用度浩繁，豐儲倉告罄，一應調度及各司貿易之價，皆出於軍資倉。世宗三十年之間，軍資積畜，餘三十萬碩。邇來開國幾百年，而未滿百萬碩，意者節用之道，未盡而然也。 封
연산 42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1월 26일(기해) 4번째기사 예조 좌랑 정인겸이 대사례 등의 일을 아 뢰다	작헌례는 포해(脯醢)3172) 가 각각 한 변두(邊豆)3173) 뿐이며 또 음악도 사용하지 않는데, 지금 대례(大禮)를 거행하면서 다만 이 예(例)만을 쓴다면 너무 간략한 듯하오니	今更思之，酌獻禮則脯醢各一籩豆而已，且不用樂。今舉大禮，只用此例，似乎太略，
연산 42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1월 27일(경자) 1번째기사 승지 장순손이 습항에 소속된 어살을 내수사 에 개속하는 것이 부 당함을 아뢰다	습항(濕項)에 소속된 어살[魚箭]은 내수사(內需司)에 개속(改屬)하기를 청하였는데, 다만 습항에 소속된 어살은 모두가 민간의 사유 어살로 해주(海州)에서는 이를 힘입어 진상(進上)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 빼앗아 내수사에 주게 된다면 폐해가 백성들에게 미치게 되며, 해주에서도 또한 진상하지 못할 것이니, 예전 그대로 두고 내수사에 소속시키지 말기를 청합니다.	濕項所屬魚箭，請改屬內需司。但濕項所屬魚箭，皆是民間私箭，而海州賴以爲進上。今若奪給內需司，則弊及於民，而海州亦不得供上，請仍舊勿屬內需司。
연산 42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전교하기를, “청밀(淸蜜) 20두(斗)를 다방(茶房)으로 보내라.”	傳曰：“淸蜜二十斗送茶房。”

<p>15년) 2월 3일(병오) 1번째기사 청밀 20두를 다방으로 보내라 하다</p>	<p>하였다.</p>	
<p>연산 42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2월 8일(신해) 4번째기사 제용감의 백색 정포 4 필 등을 대내로 들이 라 하다</p>	<p>호조에 전교하기를, “제용감(濟用監)의 백색 정포 4필과 저초리(沮肖里) 25근을 대내로 들이라.” 하였다.</p>	<p>傳于戶曹曰：“濟用監白正布四匹、沮肖里二十五斤入內。”</p>
<p>연산 42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2월 20일(계해) 1번째기사 영응 대군의 집에 청 밀 1석 등을 보내게 하다</p>	<p>전교하기를, “영응 대군(永膺大君)의 집에 청밀(淸蜜) 1석(石)과 기름 2석을 내려주라.” 하였다.</p>	<p>傳曰：“永膺大君家賜淸蜜一碩、油二碩。”</p>
<p>연산 42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2월 28일(신미) 6번째기사 승지 신용개가 전례의 술잔 수효를 상고하다</p>	<p>지 신용개(申用漑)가 아뢰기를, “전례의 술잔[爵] 수효를 사옹원(司饗院)에 기록하지 않았고 또 홍상(洪常) 등이 다섯 잔[五爵]이라고 하기에 다섯 잔으로써 아뢰었는데, 지금 그때의 《일기(日記)》를 상고해 보니 ‘술을 세 순배한다.[酒三遍]’고 하니, 의주(儀注)가 옳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의주에 의거해 하고, 대선(大膳)·소선(小膳)과 세 가지 음식물[三味]을 겸하여 올리는 일은, 예조(禮曹)에서 아뢴 대로 하라.”</p>	<p>承旨申用漑啓：“前例，爵數司饗院不錄。且因洪常等五爵之言，啓以五爵。今考其時《日記》云：‘酒三遍。’《儀註》是矣。”傳曰：“依《儀註》，大小膳三味兼進事，依禮曹所啓。”</p>

<p>연산 42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2월 28일(신미) 6번째기사</p> <p>승지 신용개(申用漑)가 전례의 술잔 수효를 상고하다</p>	<p>하였다.</p> <p>승지 신용개(申用漑)가 아뢰기를, “전례의 술잔[爵] 수효를 사옹원(司饗院)에 기록하지 않았고 또 홍상(洪常) 등이 다섯 잔[五爵]이라고 하기에 다섯 잔으로써 아뢰었는데, 지금 그때의 《일기(日記)》를 상고해 보니 ‘술을 세 순배한다.[酒三遍]’고 하니, 의주(儀注)가 옳습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의주에 의거해 하고, 대선(大膳)·소선(小膳)과 세 가지 음식물[三味]을 겸하여 올리는 일은, 예조(禮曹)에서 아뢴 대로 하라.”</p>	<p>承旨申用漑啓: “前例, 爵數司饗院不錄。 且因洪常等五爵之言, 啓以五爵。 今考其時《日記》云: ‘酒三遍。’ 《儀註》是矣。” 傳曰: “依《儀註》, 大小膳三味兼進事, 依禮曹所啓。”</p>
<p>연산 43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3월 1일(계유) 4번째기사</p> <p>일본국 관로냉천진(日本國關露冷泉津) 신중 등이 사신을 보내와 토산물을 바치다</p>	<p>일본국 관로냉천진(日本國關露冷泉津) 가선 대부 동지중추부사(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 신중(信重), 대마주 태수(對馬州太守) 종익성(宗杳盛), 일본국 상송포 호자 일기수(上松浦呼子壹岐守) 원의(源義), 일본국 예주 해적 대장(藝州海賊大將) 등원 조신(藤原朝臣) 촌상 비중수(村上備重守) 국중(國重), 일본국 비전주 평호 우진 비주 태수(肥前州平戶寓鎮肥州太守) 원의(源義), 일본국 비전주 상송포 구사도주(九沙島主) 등원 조신 축후수(筑後守) 의영(義永), 일본국 서해로 살마주도(西海路薩摩州島) 휘(諱) 등원 조신 지구(持久) 등이, 사신을 보내와 토산물을 바쳤다.</p>	<p>日本國關露〔關西路〕冷泉津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信重、對馬州太守(宗杳盛)〔宗材盛〕、日本國上松浦呼子一岐守源義、日本國藝州海賊大將藤原朝臣村上備中守國重、日本國肥前州平戶寓鎮肥州太守源義、日本國肥前州上松浦九沙島主藤原朝臣筑後守義永、日本國西海路薩摩州(島諱)〔島津〕藤原朝臣持久〔藤原朝臣持久〕等遣使來獻土宜。</p>
<p>연산 43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3월 2일(갑술) 3번째기사</p> <p>대사례 마친 후 죄를 지은 최응현을 국문하게 하고, 낙정미를 좌</p>	<p>전교하기를, “어제 대사례를 마친 후 벌주(罰酒)를 마실 때에 침을 흘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 짐작에 최응현(崔應賢)인 듯하니 국문하라.”</p> <p>하였다. 호조에 전교하기를, “낙정미(落庭米)3274) 까분 것[吹正] 30석을 좌옹방(左鷹坊)으로 실어 보내라.”</p> <p>하였다.</p>	<p>傳曰: “昨日大射禮畢後, 飲罰觥時, 有唾涎者。 予意崔應賢也, 其鞫之。”</p> <p>傳于戶曹曰: “落庭米吹正三十碩, 輸送左鷹坊。”</p>

<p>응방에 보내라 하다</p>	<p>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대사례(大射禮) 때에 이미 회례연(會禮宴)을 거행하고 오늘 또 기영회(耆英會)3275) 를 베풀어 주시니, 성상의 은혜가 지극히 흠족합니다. 내일 또 음식상을 내려주시려고 경비를 많이 쓴다 하니, 신 등은 듣자옵건대, 일본 국왕(國王)의 사신이 장차 오고 내년 봄에는 중국 사신이 또한 온다 하니, 국가에 서는 진실로 경비를 줄여야 하겠습니다. 또 민간에서는 빈곤하여 근심하고 탄식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데, 여러 신하들이 잔치하고 술마시는 것이 어찌 옳겠습니까. 정지하소서. 또한 전자에는 음식상을 하사할 때 혹은 각 신하의 집에 내리신 때도 있었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p>	<p>議政府啓: “大射禮時, 既行會禮宴, 今日又設耆英會, 上恩至渥, 明日又賜床破費。 臣等聞, 日本國王使臣將至, 來春天使亦來, 國家固當省費。 且民間貧困, 愁嘆不絕, 而群臣燕飲豈可乎? 請停之。 且前此賜床, 或有分賜各第之時。” 不聽。</p>
<p>연산 43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3월 3일(을해) 3번째기사 의정부에서 남은 음식을 입직하는 군사에게 나누어 주도록 건의하다</p>	<p>정부에서 다시 아뢰기를, “내일 음식상을 내릴 때, 승정원·홍문관·병조·도총부(都摠府)·사옹원 제조(司饗院提調)가 모두 참석하니, 이는 온 조정이 모두 참석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지금 밥먹기가 어렵고, 각도에서는 바야흐로 기근을 구제하고 있으니, 대사례(大射禮)와 기영회(耆英會) 같은 예문에 실린 것은 폐지할 수 없지마는, 이것은 폐지할 수 있는 일로서 연일 잔치를 베풀어 즐기는 것은 마음에 실로 미안합니다. 만약 남은 음식상이 많아서 반드시 비용을 많이 쓰게 된다면, 입직(入直)하는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또한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정승들의 아뢴 말이 매우 옳으니, 마땅히 받아들이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정승들의 말은 진실로 그렇다. 내가 성대한 예식(禮式)을 거행한 뒤에 특별히 술과 풍악을 내리는 것이니, 사양하지 말고 가서 참석하라.”</p>	<p>議政府更啓: “明日賜床, 承政院、弘文館、兵曹、都摠府、司饗院提調皆參, 是舉朝皆參。 民今艱食, 各道時方救荒。 如大射禮、耆英會, 禮文所載, 不可廢, 此則可廢, 而連日燕樂, 心實未安。 若以餘床數多, 必須破費, 則分賜入直軍士, 亦何妨?” 不聽。 承政院啓: “政丞所啓甚是, 請宜採納。” 傳曰: “政丞之言固然。 予舉盛禮之後, 特賜酒樂, 毋辭往參。”</p>

	하였다.	
연산 43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3월 4일(병자) 8번째기사 대마주 고아 산성 수 직차가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對馬州(古阿山城) [古河山城] 守藤原朝臣職次來獻土宜。	對馬州(古阿山城) [古河山城] 守藤原朝臣職次來獻土宜。
연산 43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3월 8일(경진) 2번째기사 혼인이나 제사와 노병 에 쓰는 약 이외에는 술을 금하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혼인이나 제사와 노병(老病)에 약으로 쓰는 것 이외는 비록 병(瓶)술이라도 한결같이 금하라.” 하였다.	傳曰: “婚姻、祭祀、老病服藥外, 雖瓶酒一禁。”
연산 43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3월 10일(임오) 4번째기사 사간원에서 경연 등에 관한 왕의 잘못 8가지 를 상소하다	호조에 전지하기를, “황두(黃豆) 10석을 대내(大內)로 들여오라.”(후략)	傳旨戶曹曰: “黃豆十碩入內。”
연산 43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3월 11일(계미) 3번째기사	제주 목사(濟州牧使) 남궁찬(南宮璨)에게 하서(下書)하기를, “귤[柑子]과 유감(乳柑)은 비록 이미 철이 지났지만, 따서 저장한 것이 있으면 봉하여 올리고, 나무에 달린 것이 있으면 가지[枝]에 붙어 있는 채로 올리라.”	下書于濟州牧使南宮璨曰: “柑子、乳柑雖已背節, 若有摘藏者封進, 在樹者連枝以進。”

<p>굴과 유감을 진상하도록 하다</p>	<p>하였다.</p>	
<p>연산 43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3월 11일(계미) 5번째기사 일본에서 토산물을 바치고 면포와 호피를 청하다</p>	<p>일본국에서 사신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고, 이내 면포 5천 필과 표범 가죽 5백장을 청했다.</p>	<p>日本國遣使來獻土宜，仍請縣布五千匹、虎·豹皮五百張。</p>
<p>연산 43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3월 15일(정해) 4번째기사 호초 5섬을 대내로 들이라 하다</p>	<p>호조에 전교하기를, “호초(胡椒) 5섬을 대내(大內)로 들이라.” 하였다.</p>	<p>傳于戶曹曰：“胡椒五碩入內。”</p>
<p>연산 43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3월 19일(신묘) 5번째기사 영웅 대군 부인에게 면포 2백 필 등과 구수영에게 면포 1백 50 필 등을 하사하다</p>	<p>호조에 전지하기를, “영웅 대군(永膺大君) 부인에게 면포 2백 필, 중미(中米) 50섬, 호초 1섬을, 구수영에게 면포 1백 50필, 호초 1섬을 내려주라.” 하였다.</p>	<p>傳旨戶曹曰：“永膺大君夫人縣布二百匹、中米五十碩、胡椒一碩，具壽永縣布一百五十匹、胡椒一碩賜給。”</p>
<p>연산 43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3월 22일(갑오)</p>	<p>전교하기를, “거창 부원군(居昌府院君) 신승선(愼承善)에게 쌀 50섬과 면포 1백 50필을 내려 주라.”</p>	<p>傳曰：“居昌府院君愼永善米五十碩、綿布一百五十匹賜給。”仍傳曰：“前日臺諫及政丞言費用之弊，然此則因主</p>

<p>3번째기사 신승선에게 쌀 50섬 등을 하사하다</p>	<p>하고, 이내 전교하기를, “전일에 대간(臺諫)과 정승들이 비용에 관한 폐단을 말했지마는, 이것은 휘순공주(徽順公主)의 길례(吉禮)를 치르기 위하여 별도로 준 것이다.” 하였다.</p>	<p>徽順公主吉禮，而別賜之也。”</p>
<p>연산 43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3월 25일(정유) 3번째기사 영의정 한치형 등이 경연과 정사 등에 관 한 시폐 10조목을 올 리다</p>	<p>10. 경기 지방에 때 없는 진상으로 백성에게 폐가 많은 일입니다. 진상은 매우 많고 기한은 심히 촉박하므로 수령들이 사람을 시켜 미리 물건 값을 가지고 오랫동안 서울에 있다가 명령이 내리면 물건 값을 배로 주고 다투어 시장에서 사 바치는데, 그 배정한 관문(關文)이 더러는 물품을 봉해 올린 5, 6일 뒤에야 비로소 그 고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또한 그 값이 어디로부터 나오겠습니까? 백성들에게서 거두니 백성들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신 등의 생각으로는, 한 달 동안의 것이 만약 정해진 수량이 있으면 각고을에게 미리 그 기한을 알고 예비하여, 백성들이 소요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종 때에는 또 한 세 대비전(大妃殿)이 계셨으니 효성이 전하와 어찌 달랐겠습니까. 그러나 주물(晝物)3330) 이 지금과 같은 수량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니다. 이 몇 가지 일들은 매양 아뢰고자 했으나 황송해서 감히 하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으니 유의(留意)하소서.”</p>	<p>其十曰，京畿無時進上，民弊不貲。進上頗多，期限甚迫。以此守令等使人預持價物，長在京中，令下則倍給價物，爭貿市上以進。其所分定關文，往往封進五六日之後，始到其邑，且其價從何出乎？收斂於民，民其可堪？臣等謂，一朔之間，若有定數，各官預知期限，備之有素，民不至騷擾矣。成宗朝有亦三殿 誠孝與上何異？然晝物不至如今之數也。茲數事，每欲啓之，惶悚不敢者久矣，請留意。</p>
<p>연산 43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3월 26일(무술) 5번째기사 호초 5섬을 대내로 돌 여 오도록 하다</p>	<p>호조에 전교하기를, “호초(胡椒) 5섬을 대내(大內)로 들여오라.” 하였다.</p>	<p>傳于戶曹曰：“胡椒五碩入內。”</p>
<p>연산 43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4월 7일(무신) 3번째기사</p>	<p>강원도 감사 이복선(李復善)이 치계(馳啓)하기를, “강릉(江陵) 연곡(連谷) 사는 백성이 한 배에 사내아이 둘과 계집아이 하나를 낳았습니다.” 하니, 쌀과 콩을 내려주도록 하였다.</p>	<p>江原道監司李復善馳啓：“江陵連谷居民一乳產二男一女。”令賜米豆。</p>

감사 이복선이 연곡의 백성이 한 배에 사내 아이 둘과 계집아이 하나를 낳았다고 치계하다		
연산 43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4월 8일(기유) 1번째기사 참기름 15말을 대내에 들이라 하다	호조에 전지(傳旨)하기를, “참기름 15말[斗]을 대내(大內)로 들여오라.” 하였다.	傳旨戶曹曰: “眞油十五斗入內。”
연산 43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4월 12일(계축) 2번째기사 원자를 배종하는 사람에게 줄 면포 2백 필 등을 대내로 들이도록 하다	호조에 전지하기를, “원자(元子)를 배종(陪從)하는 사람들에게 줄 면포(綿布) 2백 필, 정포(正布) 1백 50필, 수주(水紬)3358) 30필, 백면포(白綿布) 30필, 목화 30근, 호초 5섬을 대내로 들여오라.” 하였다.	傳旨戶曹曰: “元子陪從人等所給絺布二百匹、正布一百五十四、水紬三十四、白絺布三十四、常絺子三十斤、胡椒五碩入內。”
연산 43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4월 12일(계축) 3번째기사 우참찬 윤효손에게 쌀 20섬을 하사하다	우참찬 윤효손(尹孝孫)에게 쌀 20섬을 내려주었는데, 이때 원자(元子)를 그 집에서 양육했다.	賜右參贊尹孝孫米二十碩。 時元子養于其家。
연산 43권, 8년(1502)		賜月山大君妻朴氏米五十碩、絺布一

<p>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4월 14일(을묘) 2번째기사 월산 대군의 아내 박씨에게 쌀 50섬 등을 하사하다</p>	<p>월산 대군(月山大君)의 아내 박씨(朴氏)에게 쌀 50섬, 면포 1백 50필, 정포(正布) 1백 필을 내려주고,</p>	<p>百五十匹、正布一百匹。</p>
<p>연산 43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4월 14일(을묘) 3번째기사 승정원에서 순채에 대한 진상의 폐단을 아뢰다</p>	<p>승정원이 아뢰기를, “순채(蓴菜)를 각도(各道)에 진상하도록 했는데, 경상도와 전라도 같은 먼 도는 물에 담아 오게 되니 다만 녹아버리기 쉬울 뿐 아니라, 폐단이 또한 적지 않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것이 어찌 역로(驛路)에 폐단이 있겠는가? 공상(供上)에 대한 일을 이와 같이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였다.</p>	<p>承政院啓: “蓴菜令各道封進。如慶尙、全羅遠道, 貯水盛來, 非但易消, 弊亦不少。” 傳曰: “此豈有弊於驛路? 供上之事, 不當如是言也。”</p>
<p>연산 43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4월 17일(무오) 5번째기사 미면이 모자라니 함경도 노복이 받는 잡곡과 경창의 쌀을 바꾸어 쓰도록 건의하다</p>	<p>내수사(內需司)에서 아뢰기를, “언제나 대내(大內)에서 쓰는 미면(米麪)이 모자라니, 함경도 소속 노복(奴僕)3363) 들이 받을 잡곡 5천 1백 90섬을 관창(官倉)에 바치게 하여 경창(京倉)3364) 의 쌀과 바꾸어 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좃았다.</p>	<p>內需司啓: “常時內用米麪乏少, 請於咸鏡道司奴子所受雜穀五千一百九十碩, 納于官倉, 以京倉米回換以用。” 從之。”</p>
<p>연산 43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4월 26일(정묘) 3번째기사</p>	<p>호조에 전지(傳旨)하기를, “백청밀(白淸蜜)·상청밀(淸淸蜜) 각 20말[斗]과 참기름 6말을 대내(大內)로 들여오라.” 하였다.</p>	<p>傳旨于戶曹曰: “白淸蜜·淸淸蜜各二十斗、眞油六斗入內。</p>

백청밀 등을 대내로 들이라 하다		
연산 44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5월 3일(갑술) 1번째기사 대마주 태수 종익성 등이 사자를 보내와 토산물을 바치다	대마주 태수(對馬州太守) 평조신 종익성(平朝臣宗杳盛), 일본국 비전주 상송포 지좌 일기주 태수(肥前州上松浦志佐臺岐州太守) 원의(源義), 대마주 대관(對馬 州代官) 평조신 병부 소보 종성친(平朝臣兵部少輔宗盛親), 일본국 오도우구수 (五島宇久守) 원승(源勝), 일본국 서로 처도수(西路妻島守) 좌근장감 평조신 산전 순치(左近將監平朝臣山田順治) 등이 사자(使者)를 보내와 토산물을 바쳤 다.	/對馬州太守平朝臣宗杳〈材〉盛、日 本國肥前州上松浦志佐壹岐州太守源 義、對馬州代官平朝臣宗兵部少輔盛 親、日本國五島宇久守源勝、日本國 西〈海〉路妻島守山田左近將監平朝 臣順治等遣使來獻土宜。
연산 44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5월 14일(을유) 2번째기사 호초 6섬을 대내로 들 이라 하다	호조에 전지(傳旨)하기를, “호초(胡椒) 6섬을 대내(大內)로 들여오라.” 하였다.	傳旨于戶曹曰：“胡椒六碩入內。”
연산 44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5월 16일(정해) 2번째기사 북방의 진을 옮겨 설 치하는 일에 대한 정 승들이 의논드리다	지금 고흥산의 말을 듣건대, 정승파오달 근처는 쌓인 눈이 4월이 되어도 오 히려 녹지 않으므로 다만 구맥(瞿麥)3413) 이나 경작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와 같다면 군사와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기	今聞荊山之言，政丞波吾達近處，積雪 至四月猶未消，只可耕瞿麥。
연산 44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5월 17일(무자) 4번째기사	전교하기를, “소환(小宦) 양천수(梁壽千)가 향운(香醞)을 훔쳐 마셨으니 자자(刺字)하여 아 주 먼 변방의 종으로 보내라.” 하였다.	傳曰：“小宦梁壽千盜飲香醞，刺字， 極邊爲奴。”

<p>소환 양수권을 벌하다 연산 44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5월 18일(기축) 3번째기사 죽은 현숙 공주에게 중미 70섬 등을 부의 하도록 하다</p>	<p>호조에 전교하기를, “죽은 현숙 공주(顯肅公主)3416) 에게 별도로 중미(中米) 70섬, 황두(黃豆) 30섬, 청밀(淸蜜) 10말, 참기름[眞油] 15말, 참밀[眞麥] 3섬, 석회(石灰) 50섬을 부의하라.” 하였다.</p>	<p>傳于戶曹曰: “卒顯肅公主別致轉中米七十碩、黃豆三十碩、淸蜜十斗、眞油十五斗、眞麥三碩、石灰五十碩。”</p>
<p>연산 44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5월 21일(임진) 2번째기사 사학의 유생들이 먹는 미면을 더 주도록 하 다</p>	<p>호조에 전교하기를, “사학(四學)의 유생들이 먹는 미면(米麵)을 더 주도록 하라.” 하였다.</p>	<p>傳于戶曹曰: “加給四學儒生所饋米羹。”</p>
<p>연산 44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5월 29일(경자) 3번째기사 거창 부원군의 상장에 관하여 어서를 내리다</p>	<p>해산이 임박할 일과 소선(素膳)에 관한 일은 비록 국상을 당했더라도, 만약 산월(産月)이라면 대신(大臣)이 고기 반찬 들기를 청하는 것이니, 이번이 비록 친상(親喪)이지마는, 고기 반찬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臨産素膳事, 雖遭國恤, 若産月則大臣請進肉膳。 此雖親喪, 不得不進肉膳。” 傳曰: “不學哀, 餘事當臨時定之。”</p>
<p>연산 44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5월 29일(경자) 4번째기사 주금을 폐지하도록 하</p>	<p>주금(酒禁)을 폐지하도록 하였다.</p>	<p>命罷酒禁。</p>

<p>다</p> <p>연산 44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5월 29일(경자) 5번째기사</p> <p>죽은 거창 부원군 신승선에게 특별히 부의 하도록 하다</p>	<p>호조에 전교하기를, “죽은 거창 부원군 신승선에게 특별히 부의로, 쌀·콩 각 1백 섬, 종이 2백 30권, 백정포(白正布) 30필, 백면포(白綿布) 30필, 정포(正布) 1백 필, 석회(石灰) 50섬, 저포(紵布) 10필, 청밀(淸蜜)·참기름·밀가루 각 2섬, 황밀(黃蜜) 70근, 6장(張)을 붙인 유석(油席) 2개, 면포(綿布) 1백 필을 내려주라.”</p> <p>하였다.</p>	<p>傳于戶曹曰：“卒居昌府院君愼承善別致賻，米豆各一百碩、紙二百三十卷、白正布三十四、白綿布三十四、正布一百匹、石灰五十碩、紵布十匹、淸蜜·眞油·眞末各二碩、黃蜜七十斤、六張付油席二、絁布一百匹賜給。”</p>
<p>연산 44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6월 1일(신축) 1번째기사</p> <p>대마주 태수 종익성 등이 사자를 보내와 토산물을 바치다</p>	<p>대마주 태수(對馬州太守) 평조신 종익성(平朝臣宗杳盛), 굴씨 입석 우경량국장(橘氏立石右京亮國長) 평조신 종언칠 성순(平朝臣宗彦七盛順), 일본국 상송포 호자 일기주 대관(上松浦呼子臺岐州代官) 목산 십랑 원정(牧山十郎源政), 비전주 상송포 방호야 보천사(肥前州上松浦邦護野寶泉寺) 원우위(源祐位), 비전주 상송포 압타(肥前州上松浦鴨打) 원영(源永), 대마주 능등수(對馬州能登守) 평조신 종성준(平朝臣宗盛俊), 평조신 종송수 친차(平朝臣宣松壽親次) 등이 사자(使者)를 보내와 토산물을 바쳤다.</p>	<p>/對馬州太守平朝臣宗杳盛 [平朝臣宗杳盛]、橘氏立石右京亮國長、平朝臣宗彦七盛順、日本國上松浦呼子壹岐州代官牧山十郎源政、肥前州上松浦邦護野 [那護野] 寶泉寺源祐位、肥前州上松浦鴨打源永、對馬州平朝臣宗能登守盛俊、平朝臣宗松壽親次等遣使來獻土宜。</p>
<p>연산 44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6월 4일(갑진) 3번째기사</p> <p>수주 50필 등을 대내로 들이라 하다</p>	<p>호조에 전지(傳旨)하기를, “수주(水紬) 50필, 당분(唐粉)·당주홍(唐朱紅) 각 10근, 면연지(綿臙脂) 1백 장(張), 호초 10섬을 대내(大內)로 들여오라.”</p> <p>하였다.</p>	<p>傳旨于戶曹曰：“水紬五十四、唐粉·唐朱紅各十斤、絁臙脂一百張、胡椒十碩入內。</p>
<p>연산 44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6월 4일(갑진) 4번째기사</p>	<p>형조가 아뢰기를, “소와 말을 도살한 자는 양민(良民) 여부를 논할 것이 없이 온 가족을 각 고을이나 역(驛)의 길가에 옮겨졌는데도 스스로 죄가 가볍다 여겨, 법을 범하는 사람이 있게 되므로, 다시 수교(受教)하여 범한 사람은 장(杖) 1백 대를 치고</p>	<p>刑曹啓：“宰殺牛馬者，勿論良民，全家徙路邊各官各驛，而自謂罪輕，犯法者有之。 故更受教， 犯者決杖一百，全家徙爲絕島官奴婢，許接人內， 土族</p>

<p>형조에서 소와 말을 도살한 자에게 중죄로 처벌할 것을 건의하다</p>	<p>온 가족을 옮겨 외딴 섬의 관노비(官奴婢)를 삼게 하고, 의탁을 허용하는 사람 중에 사족(士族)으로서 관직이 있는 사람은 직첩(職牒)을 회수하여 영구히 서용(敍用)하지 않고, 관직이 없는 사람은 장 1백 대를 쳐 외방(外方)에 부처(付處)하고, 서인(庶人)은 장 1백 대를 쳐 먼 변방의 군사에 편입시키며, 실정을 알면서 고발하지 않은 가까운 세 겨린과 관령(官領)은 제서를 어긴 형률[制書有違律]로써 죄를 논하고, 잡아서 고발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 1마리와 면포 5필에서 30필까지 주고, 검거하지 못한 거주지 관리는 중죄(重罪)로 논단하도록 하였는데, 근래에 받들어 수행하지 않고 형률에 의거하여 경죄(輕罪)로 논하기 때문에 쉽사리 범하게 되니, 수교를 거듭 밝히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좃았다.</p>	<p>有職人則收職牒，永不敍用；無職人則決杖一百，外方付處；庶人則決杖一百，邊遠充軍。知情不告三切隣、管領則以制書有違律，論斷；有能捕告人則牛一隻，給縣布五匹至三十匹而止；不能檢舉所居部官吏則重論，而近不奉行，依律輕論，以致易犯，請申明受教。”從之。</p>
<p>연산 44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6월 4일(갑진) 7번째기사 지평 윤은보 등이 주금의 폐지와 인사의 잘못을 아뢰다</p>	<p>지평 윤은보(尹殷輔), 정언 윤경(尹耕)이 아뢰기를, “주금(酒禁)은 단지 가뭄 때문만이 아니고 흉년이 들어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니, 폐지하지 말도록 하소서.</p>	<p>持平尹殷輔、正言尹耕啓：“酒禁非但爲旱乾，爲年歉省費耳，請勿罷。</p>
<p>연산 44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6월 9일(기유) 1번째기사 천신하는 미곡과 소물을 내불당에 보내지 말도록 하다</p>	<p>전교하기를, “천신(薦新)3438) 하는 미곡(米穀)과 소물(素物)3439) 을 지금부터 내불당(內佛堂)에 보내지 말라.” 하였다.</p>	<p>傳曰：“薦新米穀素物，今後勿送內佛堂。”</p>
<p>연산 44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p>	<p>각처(各處)의 어살[魚筭]을 진상한다고 거의 모두 빼앗아 차지하므로, 주·부(州府)에서는 도리어 달라고 빌어서 겨우 진상을 합니다. 내수사(內需司)에 소</p>	<p>各處魚筭，托云進上，舉皆奪占，州府反爲請乞，僅供進上。內需司屬人一</p>

<p>15년) 6월 12일(임자) 1번째기사 윤필상 등이 김극정이 철금의 난언을 고발한 일 등에 대해 아뢰다</p>	<p>속된 사람의 한 해 동안 바치는 어물(魚物)이 반드시 많지 않으므로 양민(良民) 중에 세력있는 부자들이 무사(無事)함을 좋아하여 하는 사람이 많으니, 어찌 국가에 이익이 되겠습니까?</p>	<p>歲所獻魚物必不多，良民之豪富者，樂其無事，率多投屬，何益於國家？</p>
<p>연산 44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6월 18일(무오) 2번째기사 호초 5섬을 대대로 들 이라 하다</p>	<p>호조에 전지(傳旨)하기를, “호초 5섬을 대대로 들여오라.” 하였다.</p>	<p>傳旨戶曹：“胡椒五碩入內。”</p>
<p>연산 44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6월 19일(기미) 2번째기사 중미 50섬 등을 내수 사에 실어 보내라 하 다</p>	<p>호조에 전지하기를, “중미(中米) 50섬과 황두(黃豆) 50섬을 내수사(內需司)로 실어 보내라.” 하였다.</p>	<p>傳旨戶曹曰：“中米五十碩、黃豆五十碩輸送于內需司。”</p>
<p>연산 44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6월 21일(신유) 3번째기사 백저포 20필 등을 대 내로 들이라 하다</p>	<p>호조에 전지하기를, “백저포(白紵布) 20필, 만화석(滿花席)3449) 1백 40장, 호초 10섬을 대대로 들여오라.” 하였다.</p>	<p>傳旨戶曹曰：“白紵布二十四、滿花席一百四十張、胡椒十石入內。”</p>
<p>연산 44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p>	<p>호조에 전지하기를, “수주(水紬) 1백 필, 소목(蘇木) 2백 근, 백청밀(白淸蜜) 10말, 황랍(黃蠟) 50</p>	<p>傳旨戶曹曰：“水紬一百匹、蘇木二百斤、白淸蜜十斗、黃蠟五十斤入內。”</p>

<p>15년) 6월 22일(임술) 7번째기사 수주 1백 필 등을 대 내로 들이라 하다</p>	<p>근을 대내로 들여오라.” 하였다.</p>	
<p>연산 45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7월 2일(임신) 3번째기사 대마주 태수 종익성 등이 사자를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치다</p>	<p>대마주 태수(對馬州太守) 평조신 종익성(平朝臣宗杳盛)·종언칠성순(宗彦七盛順)과 일본국 관서로(日本國關西路) 비주(肥州)·축주(筑州) 이주(二州)의 태수(太守)인 등원 조신 국지 중조(藤原朝臣菊池重朝)와 일본국 송포단후 태수(松浦丹後太守) 원성(源盛) 등이 사자(使者)를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쳤다.</p>	<p>對馬州太守平朝臣(宗杳盛) [宗杳盛]、宗彦七盛順、日本國關西路肥·筑二州太守菊池藤原朝臣重朝、日本國松浦丹後太守源盛等遣使來獻土宜。</p>
<p>연산 45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7월 4일(갑술) 1번째기사 친부모의 상사에 후궁 은 어떤 상을 해야 하 는가를 묻다</p>	<p>“쌀 1백 석(石)을 내수사로 실어 보내고, 흰 베 10필을 내전으로 들이라.” 하였다.</p>	<p>傳于戶曹曰：“米一百碩輸送于內需司，白布十匹入內。”</p>
<p>연산 45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7월 6일(병자) 1번째기사 윤필상 등이 사치품의 무역 금지와 무역을 줄이기를 건의하다</p>	<p>지금 무역(貿易)하는 물건 가운데 사탕·용안(龍眼)3467) ·여지(荔枝)3468) 같은 것은 어선(御膳)으로써 진상하는 것이니, 이것들은 무역해도 오히려 옳지 마는,</p>	<p>“今貿易物件，如沙糖、龍眼、荔枝則御膳所進，貿之猶可</p>
<p>연산 45권, 8년(1502</p>	<p>호조에 전교하기를,</p>	<p>傳于戶曹曰：“粳米五碩入內。”</p>

<p>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7월 9일(기묘) 4번째기사 맷쌀 5석을 내전으로 들이라 하다</p>	<p>“맷쌀 5석을 내전으로 들이라.” 하였다.</p>	
<p>연산 45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7월 11일(신사) 2번째기사 쌀 2백 석을 양 대비전의 본가에 나누어 주도록 하다</p>	<p>호조에 전교하기를, “쌀 2백 석을 양 대비전(兩大妃殿)의 본가에 나누어 보내고, 맷쌀 6석을 내전으로 들이라.” 하였다.</p>	<p>傳于戶曹曰: “米二百碩分送于兩大妃殿本家, 粳米六碩入內。”</p>
<p>연산 45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7월 14일(갑신) 2번째기사 장흥 부부인 신씨에게 쌀 20석 등을 하사하다</p>	<p>장흥 부부인(長興府夫人) 신씨(申氏)에게 쌀 20석과 콩 10석을 하사(下賜)하였다.</p>	<p>賜長興府夫人申氏米二十碩、黃豆十碩。</p>
<p>연산 45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7월 15일(을유) 4번째기사 대마주 태수 종익성 등이 사자를 보내와 토산물을 바치다</p>	<p>대마주 태수(對馬州太守) 평 조신 종익성(平朝臣宗棧盛)·중 언칠 성순(宗彦七盛順)·중 선량 국성(宗膳亮國成)과 일본국 비전주(肥前州) 전평우진(田平寓鎭) 원 조신 탄정 소필홍(源朝臣彈正少彌弘)·살마주(薩摩州) 일향 태수(日向太守) 등원 조신 성구(藤原朝臣盛久)·오도우구 수(五島宇久守) 원승(源勝)이 사자(使者)를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쳤다.</p>	<p>對馬州太守平朝臣宗棧盛 [平朝臣宗材盛]、宗彦七盛順、宗膳亮國成、日本國肥前州田平寓鎭源朝臣彈正少彌弘、薩摩州日向太守藤原朝臣盛久、五島宇久守源勝遣使來獻土宜。</p>

연산 45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7월 20일(경인) 1번째기사 전미 50석을 내수사로 보내도록 하다	호조에 전교하기를, “전미(田米) 50석을 내수사로 실어 보내라.” 하였다.	傳于戶曹曰：“田米一百碩輸送于內需司。”
연산 45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7월 23일(계사) 5번째기사 예조가 신여문이 가지 고 온 후추 등의 물건 을 공무역하기를 건의 하다	경상도 감사에게 공문을 보내어 신여문이 가지고 온 후추 등 물건을 공무역하여 도주의 마음을 위로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정승들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請移文于慶尙監司，公貿信汝文齋來胡椒等物，以慰島主之心。”傳曰：“議于政丞。”
연산 45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7월 23일(계사) 6번째기사 후추 10석을 내전으로 들이라 하다	호조에 전교하기를, “후추 10석(石)을 내전으로 들이라.” 하였다.	傳于戶曹曰：“胡椒十石入內。”
연산 45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7월 24일(갑오) 1번째기사 윤필상 등이 신여문 등에게 별도의 부의를	윤필상(尹弼商)·한치형(韓致亨)이 의논드리기를, “신여문 등이 가지고 온 물건들은 일일이 수량을 헤아려 공개해 써서 통사로 하여금 배를 같이 타고 온 사람에게 주어 보내야 할 것입니다. 후추는 국가에서 이미 법을 제정했으니, 죽은 사람을 위해 법을 가벼이 고칠 수는 없습니다.”	○甲午/尹弼商、韓致亨議：“信汝文等所持物色，一一計數開寫，令通事給付同船人以送。胡椒則國家既已立法，不可爲死人輕易更改。”

<p>하도록 건의하다</p> <p>연산 45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7월 24일(갑오) 2번째기사 현미 30석을 우옹방으 로 보내라 하다</p>	<p>호조에 전지하기를, “현미(玄米) 30석을 우옹방(右鷹坊)으로 실어 보내라.” 하였다.</p>	<p>傳旨于戶曹曰: “糙米三十碩輸送于右鷹坊。”</p>
<p>연산 45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7월 27일(정유) 3번째기사 면포 등을 내전으로 들이라 하다</p>	<p>호조에 전교하기를, “면포·정포 각 1백 50필을 내전으로 들고, 현미(玄米) 2백 석을 내수사로 보내라.” 하였다.</p>	<p>傳于戶曹曰: “縣布、正布各一百五十匹入內, 糙米二百碩送內需司。”</p>
<p>연산 45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7월 28일(무술) 1번째기사 후추 10석을 내전으로 들이라 하다</p>	<p>호조에 전지하기를, “후추 10석을 내전으로 들이라.” 하였다.</p>	<p>傳旨于戶曹曰: “胡椒十碩入內。”</p>
<p>연산 45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8월 8일(정미) 2번째기사 예조가 효사묘에 제사 를 거행하는 제도를 아뢰다</p>	<p>예조가 효사묘(孝思廟)에 친제(親祭)할 때와 아침저녁의 상식(上食)에 응당 거행할 의례의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1. 친제에는 백관(百官)들이 <임금을> 모시고 함께 제사지내는 것을 그만두고, 찬례(贊禮)하는 근시(近侍)와 통례(通禮)로써 행사할 것. 1. 아헌관(亞獻官)과 종헌관(終獻官)은 1품 종친(宗親)과 집사관(執事官)이 예에 따라 할 것. 1. 제찬(祭饌)은 각전(各殿)의 예에 따를 것.</p>	<p>禮曹啓孝思廟親祭時及朝夕上食應行儀制。 一, 親祭除百官陪祭, 只以贊禮、近侍、通禮行事。 一, 亞、終獻官一品宗親、執事官依例。 一, 祭饌依各殿。 一, 除晝茶禮, 只行朝、夕上食。 一, 祭素物以文昭殿各道進上用餘, 令司饗院掌進。 一, 朝、夕上</p>

	<p>1. 낮에 올리는 다례(茶禮)는 그만두고 다만 아침저녁의 상식(上食)만 거행할 것.</p> <p>1. 제소물(祭素物)은 문소전(文昭殿)3532) 에 쓰기 위하여 각도(各道)로부터 진상하여 쓰다 남은 것을 사옹원(司饗院)에서 관장하여 나오게 할 것.</p> <p>1. 아침저녁의 상식 때 반주(飯酒)와 잡물(雜物)은 봉상시(奉常寺)3533) 에서 올리는 것을 그만두고, 각사(各司)로 하여금 진배(進排)케 할 것.</p> <p>1. 아침저녁의 상식 때 잔을 드리는 일은 당하관(堂下官)인 3품 종친이 차례로 번을 들게 할 것.</p> <p>1. 참봉(參奉) 2명을 둘 것.”</p>	<p>食飯酒、雜物， 除奉常寺， 令各司進排。 一， 朝、夕上食時奠爵， 堂下官三品宗親輪次入番。 一， 參奉二員。</p>
<p>연산 45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8월 14일(계축) 2번째기사 술 1백 병을 내전으로 들이라 하다</p>	<p>“술 1백 병을 내전으로 들이라.” 하였다.</p>	<p>傳曰：“酒一百壺入內。”</p>
<p>연산 45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8월 20일(기미) 2번째기사 영춘현에서 생산되는 대추를 해마다 헌납하도록 하다</p>	<p>전교하기를, “영춘현(永春縣)에서 생산되는 대추를 해마다 헌납하라.” 하였다.</p>	<p>傳曰：“永春縣產大棗其歲獻。”</p>
<p>연산 45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8월 29일(무진) 1번째기사</p>	<p>영평(永平)·포천(抱川)·가평(加平) 등 고을에 하서(下書)하기를, “전에 보낸 내관(內官) 박인손(朴仁孫)이 따서 보낸 것과 같은 송심(松葶)3575) 을 형편에 따라 따서 진상하라.” 하였다.</p>	<p>下書于永平、抱川、加平等縣曰：前去內官朴仁孫採送一樣松葶，隨宜採進。</p>

영평·포천·가평 등 고을에 송이를 따서 진상하도록 하다		
연산 45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8월 30일(기사) 1번째기사 윤효손에게 쌀 30석 등을 내려주다	윤효손(尹孝孫)에게 쌀 30석(石)과 황두(黃豆) 10석을 내려주었다.	賜尹孝孫米三十碩、黃豆十碩。
연산 46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9월 7일(병자) 1번째기사 곡연때 하사해 줄 후추를 내전으로 들이라 하다	전교하기를, “9일의 곡연(曲宴)3585) 때 하사해 줄 후추를 내전(內殿)으로 들이라.” 하였다.	傳曰: “初九日曲宴時, 賜與胡椒入內。”
연산 46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9월 8일(정축) 2번째기사 곡연뒤에 종친과 재상들에게 음식을 내려주고 이등악을 하사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곡연(曲宴)뒤에 명정전(明政殿) 뜰에서 종친(宗親)과 재상들에게 음식을 내려주고 이등악(二等樂)을 하사(下賜)하라” 하였다.	傳曰: “曲宴後, 明政殿庭饋宗宰, 賜二等樂。”
연산 46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경기 감사에게, 산포도와 다래[獼猴桃]를 서리가 내린 뒤에 가지와 덩굴이 달린 채로 봉진(封進)하라고 명하였다.	令京畿監司, 山葡萄、獼猴桃, 經霜後, 連枝蔓封進。”

<p>15년) 9월 8일(정축) 3번째기사 경기 감사에게 산포도 등을 봉진하도록 하다</p>		
<p>연산 46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9월 11일(경진) 1번째기사 일본국 등원 조신 위 행 등이 사자를 보내 와 토산물을 바치다</p>	<p>일본국 관서로(關西路) 비후주수(肥後州守) 국지 등원 조신 위행(菊池藤原朝臣爲幸)·비전주(肥前州) 구사도주(九沙島主) 원 차랑 영씨(源次良永氏)·서해도(西海道) 비후주(肥後州) 팔대태수(八代太守) 원 조신 교신(源朝臣教信)·왕도우구수(王島宇久守) 원승(源勝)·비전주(肥前州) 평전우진(平田寓鎭) 원 조신 탄정소필홍(源朝臣彈正少弼弘)·송포지좌(松浦志佐) 일기주 태수(壹岐州太守) 원의(源義)·일본국 관서로(關西路) 비축이주 태수(肥筑二州太守) 국지 등원 조신 중조(菊池藤原朝臣重朝)·비전주(肥前州) 상송포압타(上松浦鴨打) 원영(源永)·풍주수(豊州守) 대우 원 조신 친려(大友源朝臣親黎)·대마주(對馬州) 좌호군 지대관(佐護郡之代官) 평 조신 종번(平朝臣宗幡)·마수국(摩守國) 구립석장인위(久立石蔣人尉) 평국행(平國幸) 등이 사자(使者)를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쳤다.</p>	<p>/日本國關西路肥後州守菊池藤原朝臣爲幸、肥前州九沙島主源次郎永氏、西海道肥後州八代太守源朝臣教信、王島宇久守源勝、肥前州平田寓鎭源朝臣彈正少弼弘、松浦志佐壹岐州太守源義、日本國關西路肥、筑二州太守菊池藤原朝臣重朝〔菊池藤原朝臣重朝〕、肥前州上松浦鴨打源永、豊州守大友源朝臣親黎〔大友源朝臣親黎〕、對馬州佐護郡之代官平朝臣宗幡摩守國久、立石藏人尉平國幸遣使來獻土宜。</p>
<p>연산 46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9월 15일(갑신) 3번째기사 월산 대군 박씨에게 면포 등을 내려주다</p>	<p>월산 대군(月山大君) 부인 박씨(朴氏)에게 면포·정포·각각 2백 50필과 쌀 1백 석, 후추 3석을 내려주었다.</p>	<p>賜月山大君夫人朴氏絁布、正布各二百五十匹，米一百碩、胡椒三碩。</p>
<p>연산 46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9월 18일(정해) 6번째기사</p>	<p>일본국 관서로(關西路) 구주 도원수(九州都元帥) 원정교(源政教)·대지하도 수호(大知賀島守護) 겸 미주태수(兼尾州太守) 원 조신 번(源朝臣幡)·대마주 태수(對馬州太守) 평 조신 종익성(平朝臣宗杳盛)·인위군(仁位郡) 평 조신 종 민부 소보직가대관(平朝臣宗民部輔小職家代官) 평 조신 종병부소보 성친(平朝臣宗盛) 仁位郡平朝臣宗民部少輔職</p>	<p>日本國關西路九州都元帥源政教、大知賀島守護兼海州太守源朝臣幡、對馬州太守平朝臣宗杳盛〔平朝臣宗材盛〕、仁位郡平朝臣宗民部少輔職</p>

<p>일본국 구주 도원수 원정교 등이 사자를 보내와 토산물을 바치다</p>	<p>兵部小輔盛親이 사자(使者)를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쳤다.</p>	<p>家、代官平朝臣宗兵部少輔盛親遣使來獻土宜。</p>
<p>연산 46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9월 22일(신묘) 1번째기사 우의정 이극균이 하늘의 뜻을 경계하여 사직하기를 청하다</p>	<p>(전략)월산 대군 집에 잔치를 베풀어주는 일은 반드시 세자를 양육했기 때문이지마는, 이미 쌀 1백 석(石)과 면포(綿布) 5백 필을 내려 주었으니, 다시 잔치를 베풀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옛날에 노산군(魯山君)3605) 이 한진(韓晉)의 집에서 자랐으므로, 세종께서 한진에게 약간의 물건을 내려주니, 그때 사람들이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대체로 군주는 사람들에게 상을 줄 적에 지나치게 할 수 없으니, 잔치를 베풀어 주지 마소서.(후략)</p>	<p>전략)且月山大君家賜宴事，必因保養世子故耳。然既賜米百碩、緜布五百匹，不須更賜宴也。(하략)</p>
<p>연산 46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9월 22일(신묘) 2번째기사 장령 서극철 등이 월산 대군의 집에 잔치를 베푸는 일의 부당함을 아뢰다</p>	<p>(전략)전일에 이미 대군의 집에 쌀과 면포와 후추 등의 물건을 내려주었으니 잔치를 베풀어줄 필요는 없습니다.”(후략)</p>	<p>(전략)前已賜大君家米、布、胡椒等物，不必賜宴。”(후략)</p>
<p>연산 46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9월 23일(임진) 1번째기사 장령 서극철 등이 월산 대군의 집에 잔치를 베푸는 일 등을 논</p>	<p>장령 서극철, 정언 윤경이 월산 대군의 집에 잔치를 베풀어주는 일과 박원종·신승복의 일을 논계(論啓)하였으나 들어주지 않고,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대간이 주금(酒禁)의 일은 말하지 않으니 그것을 기록하여 후일의 참고에 대비하라.” 하매, 서극철 등이 다시 아뢰기를,</p>	<p>壬辰/掌令徐克哲、正言尹耕論啓月山大君家賜宴、朴元宗·愼承福事，不聽。傳于承政院曰：“臺諫不言酒禁事，其書之，以備後考。”克哲等更啓：“酒禁事，臣等以賜宴日迫，先啓之，故忘了，請竝禁之。”傳曰：“酒禁主於糜費，會禮宴主於謹災，本是二</p>

<p>계하다</p>	<p>“주금(酒禁)의 일은 신 등이 잔치를 베풀어주는 날짜가 촉박하므로 먼저 이 일을 아뢰느라 잊어버렸으니, 아울러 금지하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p> <p>“주금은 그 소비하는 비용 때문에 주장한 것이요, 회례연은 재이를 조심하는 뜻에서 주장했는데, 본래 이 두가지 일은 전일에 계사(啓事)할 적에는 다만 주금만 아뢰고 회례연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후일에 다시 조목별로 아될 적에는 이를 물으니 ‘주금(酒禁) 속에는 회례연도 들어 있습니다.’고 말하였다. 지금 또 4가지 일만 들어 말하고 주금은 아뢰지 않으니, 적은 일도 오히려 이려한데, 하물며 큰일이겠느냐? 그들을 국문하라.”</p> <p>하였다.(후략)</p>	<p>事。前此啓事時，只啓酒禁，而不及會禮宴，後又條啓，問之云：‘酒禁則會禮宴在其中也。’今又只舉四事，而不啓酒禁，小事尙然，況大事乎？其鞫之。”(후략)</p>
<p>연산 46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9월 25일(갑오) 3번째기사 전라도 등지에 석류를 별례방으로 봉진하도록 하서하다</p>	<p>전라도와 경상도에 하서(下書)하기를, “맛이 단 석류(石榴)를 별례방(別例房)3608) 으로 봉진(封進)하라.”</p> <p>하였다.</p>	<p>下書于全羅道、慶尙道曰： 石榴別例封進。</p>
<p>燕山 46卷, 8年(1502 壬戌 / 명 홍치(弘治) 15年) 9月 25日(甲午) 3번째기사 전라도 등지에 석류를</p>	<p>전라도와 경상도에 하서(下書)하기를, “맛이 단 석류(石榴)를 별례방(別例房)3608) 으로 봉진(封進)하라.”</p> <p>하였다.</p>	<p>下書于全羅道、慶尙道曰： 石榴別例封進。</p>

<p>별례방으로 봉진하도록 하소서하다</p>		
<p>연산 46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10월 3일(임인) 4번째기사 대사간 민휘 등이 신승복과 주금의 일을 논계하다</p>	<p>대사간 민휘(閔暉) 등이 신승복(愼承福)과 주금(酒禁)의 일에 대하여 논계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듣건대, 옷칠 잘하는 사람을 삼포(三浦)3635)의 왜인(倭人) 및 대마도(對馬島)에서 구한다고 하니, 기명(器皿)을 위하여 멀리 다른 나라 사람을 구하는 것은 다만 성덕(聖德)에 누(累)가 될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이 말을 듣는다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기이한 짐승을 외국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옹원(司饗院)의 기명이 칠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즉시 저절로 벗겨지기 때문일 뿐이다.” 하였다. 민휘(閔暉) 등이 다시 논계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p>	<p>大司諫閔暉等論啓愼承福及酒禁事，不聽。又啓：“聞，求善漆人于三浦倭及對馬島。爲器皿，遠求異國之人，非但有累聖德，於外國聽聞何？”傳曰：“予非求奇獸於外國，司饗院器皿，漆之未久，旋即漫剝故耳。”暉等更論，不聽。</p>
<p>연산 46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10월 7일(병오) 1번째기사 다래를 봉진하도록 하다</p>	<p>전교하기를, “다래[獼猴桃]가 서리를 맞아 저절로 익은 것을 경기의 각 고을로 하여금 봉진(封進)하게 하라.” 하였다. 이때에 내충(內寵)이 점점 성하여 먼 지방의 진기한 음식물을 구함이 한정이 없으니, 각 고을이 능히 지탱할 수 없었다.</p>	<p>傳曰：“獼猴桃經霜自熟者，令京畿各官封進。時內寵漸盛，遐方異味，求之無厭，郡縣不能支。</p>
<p>연산 46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10월 9일(무신) 2번째기사 낙정미 2백 석 등을 내수사로 보내라 하다</p>	<p>호조에 전지하기를, “낙정미(落庭米) 2백 석, 벼 3백 50석, 콩 50석, 소금 50석을 내수사로 실어 보내라.” 하였다.</p>	<p>傳旨戶曹曰：“落庭米二百碩、租三百碩、黃豆五十碩、鹽五十碩輸送于內需司。”</p>
<p>연산 46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p>	<p>호조에 전지하기를,</p>	<p>傳旨戶曹曰：“粳米五碩入內。”</p>

<p>15년) 10월 11일(경술) 5번째기사 맷쌀 5석을 내전의로 들이라 하다</p>	<p>“맷쌀 5석을 내전으로 들여보내라.” 하였다.</p>	
<p>연산 46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10월 12일(신해) 2번째기사 의정부가 쌀 2백 석 등을 내수사로 옮기지 말 것을 건의하다</p>	<p>의정부가 아뢰기를, “지금 듣건대, 쌀 2백 석과 벼 3백 석을 내수사(內需司)로 운반하려고 했는데, 우리 나라의 용도(用度)가 매우 번거롭고 낭비가 이와 같은 것은 매우 옳지 못합니다. 조종(祖宗) 때로부터 조정의 경비를 옮겨서 사저(私儲)3645)에 수송하는 일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p>	<p>議政府啓: “今聞, 米二百碩、租三百碩輸內需司。我國用度浩繁, 濫費若此, 甚不可。自祖宗朝, 未有移朝廷經費, 輸之私儲。” 不聽。</p>
<p>연산 46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10월 14일(계축) 3번째기사 휘순 공주가 출가할 때 쌀 1백 석 등을 주도록 하다</p>	<p>호조에 전지하기를, “휘순 공주(徽順公主)가 출가할 때에 쌀과 콩 각 1백 석을 특별히 내려주라.” 하였다.</p>	<p>傳旨戶曹曰: “徽順公主出閣時, 別賜米、豆各一百碩。”</p>
<p>연산 46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10월 20일(기미) 3번째기사 후추 5석을 내전으로 들이라 하다</p>	<p>호조에 전지하기를, “후추 5석을 내전으로 들이라.” 하였다.</p>	<p>傳旨戶曹曰: “胡椒五碩入內。”</p>
<p>연산 46권, 8년(1502</p>	<p>대마도 평 조신 중 월중수 성홍(平朝臣宗越中守盛弘)·일본국 오도명주(五島鳴</p>	<p>對馬島平朝臣宗越中守盛弘、日本國</p>

<p>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10월 22일(신유) 4번째기사 대마도 평 조신 성흥 등이 사자를 보내와 토산물을 바치다</p>	<p>主) 원번(源繁)·상송포 나구야능등수(上松浦那久野能登守) 등원 조신 너영(藤原朝臣賴永)·일향대우살마삼주태수(日向大隅薩摩三州太守) 도진 등 조신 무구(島津藤朝臣武久) 등이 사자(使者)를 보내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p>	<p>五島鳴主源繁、上松浦那久野能登守藤原朝臣賴永、日向・大隅・薩摩三州太守島津藤〈原〉朝臣武久遣使來獻土宜。</p>
<p>연산 46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10월 23일(임술) 5번째기사 경상도 감사 등에게 반쯤 마른 대구어를 별례방으로 봉진하도록 하다</p>	<p>경상도 감사 안윤덕(安潤德), 함경도 감사 민효증(閔孝曾), 강원도 감사 박원종(朴元宗)에게 하서(下書)하기를, “반쯤 마른 대구어(大口魚)를 별례방(別例房)으로 봉진(封進)하라.” 하였다.</p>	<p>下書于慶尙道監司安潤德、咸鏡道監司閔孝曾、江原道監司朴元宗曰： 半乾大口魚，別例封進。</p>
<p>연산 46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10월 25일(갑자) 2번째기사 일본국 관음사간주 종수 등이 사자를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다</p>	<p>일본국 일기주 상송포염진류 관음사간주(壹岐州上松浦鹽津留觀音寺看主) 종수(宗殊)·비전주 하송포 산성태수(肥前州下松浦山城太守) 원길(源吉)·일기주 수호대관(壹岐州守護代官) 진궁병부 소보(眞弓兵部少輔) 원무(源武)·대마주 태수(對馬州太守) 평 조신 종익성(平朝臣宗杳盛)·대관 평 조신 중병부소보 성친(代官平朝臣宗兵部少輔盛親)이 사자(使者)를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p>	<p>日本國壹岐州上松浦鹽津留觀音寺看主宗殊、肥前州下松浦山城太守源吉、壹岐州守護代官眞弓兵部少輔源武、對馬州太守平朝臣宗杳盛〔平朝臣宗材盛〕、代官平朝臣宗兵部少輔盛親，遣使來獻土宜。</p>
<p>연산 46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10월 29일(무진) 2번째기사 멥쌀 3석을 휘순 공주</p>	<p>전교하기를, “멥쌀[粳米] 3석을 휘순 공주(徽順公主)의 집에 내려주라.” 하였다. 승지 등이 아뢰기를,</p>	<p>傳曰：“粳米三碩賜徽順公主家。”承旨等啓：“粳米只用於供上，不可用於下也。向又命賜畫龍樽，臣等意，天使時尙不用，況賜公主家乎？凡公主之家，雖不若此，末流將有奢僭之弊，況</p>

<p>의 집에 내려주도록 하다</p>	<p>“뭍쌀은 다만 공상(供上)에만 쓰는 것이요, 아랫사람들에게는 쓸 수 없습니다. 전일에 또 화룡준(畫龍樽)3696) 을 내려주라고 명했으니, 신 등은, 중국 사신이 올때에도 오히려 쓰지 않는 것인데, 하물며 공주의 집에 하사(下賜)할 수 있겠는가 생각했습니다. 대체로 공주의 집에는 비록 이와 같이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는 장차 사치와 분수에 넘치는 폐단이 있을 것인데, 하물며 사여(賜與)가 이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신 등이 이 두 가지 물건을 아끼는 것은 아니나, 등급이 분별 없게 될까 염려스럽습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그렇다면 하사할 필요는 없다. 양대비전(兩大妃殿)에 드릴 뭍쌀 각 1석과 중궁(中宮)에 드릴 3석을 내전으로 들이라.”</p> <p>하였다.</p>	<p>賜與若此乎? 臣等非愛此兩物, 將恐等威無別也。” 傳曰: “然則不必賜也。兩大妃殿粳米各一碩, 中宮三碩入內。”</p>
<p>연산 46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10월 30일(기사) 3번째기사 오래 묵은 면포 1백 50필을 내전으로 들이라 하다</p>	<p>호조에 전지하기를,</p> <p>“오래 묵은 면포 1백 50필을 내전으로 들이고, 조미(糙米)3698) 10석을 사용원(司饗院)으로 실어보내라.”</p> <p>하였다.</p>	<p>傳旨戶曹曰: “久陳緜布一百五十匹入內。糙米十碩輸送于司饗院。”</p>
<p>연산 47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11월 4일(계유)</p>	<p>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기를,</p> <p>“조미(糙米) 50석을 내수사(內需司)로 수송하라.”</p>	<p>傳旨戶曹曰: “糙米五十碩輸送于內需司。”</p>

3번째기사 조미 50석을 내수사로 수송하라 하다	하였다.	
연산 47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11월 14일(계 미) 1번째기사 일본국에서 암 원숭이 를 바치니, 돌려줄 것 을 전교하다	판서 이세좌(李世佐)와 참의(參議) 안호(安瑚)가 아뢰기를, “호초를 무역하는 일은 상의 하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또 신 등이 지금 어 서(御書)를 보건대, 성교가 지극하니 먼 지방의 사람들이 들으면 누가 기꺼이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어서의 뜻으로 도주(島主)에게 전해 알리기를 청합니 다.”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判書李世佐、參議安瑚啓：“胡椒貿易 事，上教允當。且臣等今觀御書，聖 教至矣。遠人聞之，孰不悅服？請以 御書之意，通諭島主。”傳曰：“可。”
연산 47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11월 16일(을 유) 2번째기사 윤대를 받다	제사 때 쓴 포육(脯肉)은 그대로 도로 바칠까 두려우니, 곧 제감(祭監)을 시켜 서 고기를 끊고 자르는 것을 몸소 감시하게 하여 다시 쓰는 것을 방지하소서. 그러나 각종 찬물(饌物)은 곧 철거하지 않고 진설한 대로 두는데, 아침까지 가면 냄새가 나게 되어 설만(褻慢)함이 매우 심하게 되니, 예문(禮文)의 ‘철상 (撤床)하는 것을 늦추지 않는다.’는 뜻에 참으로 어긋나게 됩니다. 삼가 원하 건대, 제사 후에는 곧 제감을 시켜 제찬(祭饌)을 철상하는 것을 감시하게 하 여, 신어(神御)3749) 을 정(正)하게 하소서.”	且祭用脯肉，恐其還納，卽令祭監親監 斷折，以防後用。然各種饌物未卽撤 去，因仍陳設，以至日明，致有臭，褻 慢滋甚。其於禮文廢撤不遲之義，實 爲違焉。伏願祭後卽令監祭，兼監撤 膳，以正神御
연산 47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11월 18일(정 해) 4번째기사 내수사에서 되돌려 온 조미를 중미로 바꾸어 주도록 하다	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기를, “내수사(內需司)에서 되돌려 온 조미(糙米)3760) 4백 석(石)을 중미(中米)로 바꾸어 주라.” 하였다	傳旨戶曹曰：“內需司回換糙米四百碩， 以中米換給。”
	호조에 전지하기를,	戊子/傳旨戶曹曰：“咸鏡道回換粟米內 需司題給時，以糙米准給。”

<p>연산 47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11월 19일(무 자) 1번째기사 함경도에서 받은 좁쌀 을 내수사에 제공할 때에 조미의 수량에 준하여 주도록 하다</p>	<p>“함경도에서 되돌려 받은 좁쌀[粟米]을 내수사(內需司)에 제급(題給)할 때에는 조미(糙米)의 수량에 준하여 주라.” 하였다.</p>	
<p>연산 47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12월 12일(경 술) 4번째기사 호초 20석 등을 대내 로 들이라 명하다</p>	<p>호초(胡椒) 20석(石)과 황초(黃綃) 20필을 대내(大內)로 들이라고 명했다.</p>	<p>命胡椒二十碩、黃綃二十四匹入內。</p>
<p>연산 47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11월 27일(병 신) 1번째기사 장령 김천령 등이 신 수근 등의 일을 아뢰 다</p>	<p>장령(掌令) 김천령(金千齡)이 아뢰기를, “신수근(愼守勤) 형제의 무덤 지키는 곳에, 경기 감사(京畿監司)로 하여금 다섯 달에 한 번씩 술과 소물(素物)을 주게 하는데, 어찌 신하로서 감히 한 도(道)의 공물(供物)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명(成命)을 거두시기를 청합니다</p>	<p>/掌令金千齡啓: “愼守勤兄弟守墳處, 令京畿監司五日一給酒與素物, 豈可以人臣而敢受一道之供乎? 請收成命。</p>
<p>연산 47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12월 4일(임인) 2번째기사</p>	<p>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지금 북경(北京)으로 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수박을 구해 오게 하라.” 하였다.</p>	<p>傳于承政院曰: “令赴京人求西苺來</p>

<p>북경으로 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수박을 구해 오게 하다</p>		
<p>연산 47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12월 9일(정미) 1번째기사 대사간 민휘 등이 충신·효자의 여문에 세운 정표를 수리하는 일 등을 건의하다</p>	<p>지금 듣건대, 북경(北京)에 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수박을 구해 오도록 했다고 하는데, 그 종자를 얻으려고 한 것이겠으나, 대체로 먼 곳의 기이한 음식물도 억지로 가져오는 것이 불가하운데, 하물며 중국에서 구하는 일이겠습니까? 신이 일찍이 북경에 갔을 적에 들으니, 중국의 수박이 우리 나라 것과 그다지 서로 다른 점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수개월이 걸리는 노정(路程)에 반드시 상하게 될 것이니, 우리 나라에는 이익이 없고 저쪽 나라에게 비방만 받을 것입니다.”</p>	<p>聞，令赴京者求西瓜。欲其取種，凡遐方異味，不可強致，況求之中原乎？臣嘗赴京，聞唐瓜與我國無甚相殊。且數朔之程，必致爛毀，無益於國，而取譏於彼。”</p>
<p>연산 47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12월 13일(신해) 1번째기사 장령 김천령이 세자가 빈사를 접견하는 일 등을 아뢰다</p>	<p>상참을 받고 경연에 납시었다. 장령(掌令) 김천령(金千齡)이 아뢰기를, “태자(太子)는 나라의 근본이니 교양(教養)의 방도를 지극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태자가 탄생하면 유사(有司)가 목욕 재계를 시켜 현단복(玄端服)3822) 으로 남쪽 교외[南郊]에서 하늘을 보게 하고, 대궐 앞을 지날 때는 말에서 내리게 하고, 사당(祠堂)을 지날 때는 추주(趨走)3823)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세자는 책봉된 지가 벌써 오래되었는데, 빈사(賓師)3824) 를 접견하지도 않았으며, 국기일(國忌日)에 고기 반찬을 드시고 계시니, 보양(輔養)하고 성취(成就)시키는 뜻이 아닙니다. 《역경(易經)》에 이르기를 ‘어릴 때에正道(正道)로 교양함은 군주의 덕행이기 때문이다.’고 하였으니, 대체로 세자를 교양함에는 마땅히 일찍 보도(輔導)하여 덕성(德性)을 함양(涵養)시켜야 합니다.”(후략)</p>	<p>辛亥/受常參，御經筵。掌令金千齡曰：“太子國本，教養之方不可不至。古者太子乃生，有司齋沐端冕，見之南郊，過闕則下，過廟則趨。今世子冊封已久，而不接賓師，國忌日，使進肉膳，非所以輔養成就之意也。(후략)</p>
<p>연산 47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12월 13일(신</p>	<p>전교하기를, “세자가 나이가 어리고 기질이 허약한 까닭으로 지난번에 소선(素膳)을 들지 말도록 하교를 했는데, 지금 대간(臺諫)의 말을 들으니 매우 옳다. 지금부터</p>	<p>傳曰：“世子年幼氣弱，故向者下教勿進素膳。今聞臺諫之言甚是，今後國忌日進素膳。</p>

<p>해) 2번째기사 세자에게 국기일에는 소찬을 들게 하다</p>	<p>는 국기일(國忌日)에는 소찬을 들게 하라.” 하였다.</p>	
<p>연산 47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12월 16일(갑 인) 1번째기사 두 대비전에게 진연하 고, 종친과 재상에게 공궤하도록 하다</p>	<p>두 대비전에게 진연(進宴)하고, 종친(宗親)과 재상(宰相)들은 공궤하도록 하였 다.</p>	<p>甲寅/進宴于兩大妃殿，命饋宗宰。</p>
<p>연산 47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12월 24일(임 술) 1번째기사 전곶의 장전과 포전의 일을 전교하다</p>	<p>전교하기를, “전곶(箭串)의 장전(場田)3843) 은 말[馬]을 위한 것이요, 포전(圃田)3844) 은 진상(進上)을 위한 것이니, 말을 기르는 것도 진실로 중요한 일이지만, 진 상에 비교하면 자연히 경중(輕重)이 있는 것이다. 그때에 마침 일의 대체를 알지 못하는 대간이 잘못 말했을 뿐이니, 지금부터는 농포(農圃)에 주어라.” 하였다.</p>	<p>傳曰：“箭串場田，嘗折給內農圃，而 因臺諫之啓而停之。蓋場田爲馬也， 圃田爲進上也。牧馬固是重事，然視 進上自有輕重。其時適有不識事體臺 諫，謬言之耳，今後其給農圃。”</p>
<p>연산 48권, 9년(1503 계해 / 명 홍치(弘治) 16년) 2월 9일(병오) 5번째기사 충청 관찰사 등에게 꿩을 진상하는 것에 대해 어서를 내리다</p>	<p>충청·강원·경기 관찰사들에게 어서(御書)를 내리기를, “대체로 꿩을 잡을 때는 상처를 내지 않을 수 없는데, 꺾질이 파손되면 봉하 여 진상하기 못하므로, 민폐가 아주 많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 지금부터 는 혹시 꺾질이 파손되더라도 빛깔이나 맛이 변하지 않은 것은 모두 봉하여 진상하게 하라.” 하였다.</p>	<p>下書于忠淸道、江原道、京畿觀察使 曰： 凡獲雉，不得不毀傷，而皮破則不得封 進，民弊不貲，言者有之。今後，雖 或皮膚破傷，而色味不變，則竝令封 進。</p>
<p>연산 48권, 9년(1503 계해 / 명 홍치(弘治) 16년) 2월 11일(무신)</p>	<p>술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대간이 힘껏 청하므로 마지못해 좇기는 했으나, 궁중에서 음탕하게 즐기는 일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p>	<p>立酒禁，因臺諫力請，強從之，然宮中 荒樂，不小損。</p>

5번째기사 주금의 법을 제정하다		
연산 48권, 9년(1503 계해 / 명 홍치(弘治) 16년) 2월 13일(경술) 2번째기사 쌀 1백 석을 내수사로 보내도록 하다	호조에 전지하기를, “쌀 1백 석을 내수사로 수송하라.” 하였다.	傳旨戶曹曰：“米一百碩，送內需司。”
연산 48권, 9년(1503 계해 / 명 홍치(弘治) 16년) 2월 15일(임자) 2번째기사 대간이 낙정미를 내수 사에 수송해서는 안 된다는 말에 대해 전 교하다	전교하기를, “대간이 말하기를 ‘낙정미(落庭米)는 내수사(內需司)에 수송해서는 안 된다.’ 고 하지만, 온 천하가 임금의 신하 아닌 사람이 없는데, 저 혼자만 임금의 신 하가 아닌가? 하물며 경창(京倉)과 내수사가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혹시 진 홀하려고 하면 저쪽 것을 옮겨서 이쪽으로 가져오거나, 이쪽 것을 옮겨서 저 쪽으로 가져가야 할 것이다.(후략)	傳曰：“臺諫云：‘落庭米不宜輸送內需 司。’然率土之濱，莫非王臣，彼獨非 王臣耶？況京倉與內需司，何間耶？若 或賑之，固當移彼而及此；移此而及彼 矣。(후략)
연산 48권, 9년(1503 계해 / 명 홍치(弘治) 16년) 2월 18일(을묘) 3번째기사 대마도 왜인들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대마도의 왜인 6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對馬島倭六人，來獻土宜
연산 48권, 9년(1503 계해 / 명 홍치(弘治) 16년) 2월 25일(임술) 4번째기사	전교하기를, “전미(田米) 1백 석을 내수사로 수송하라.” 하였다.	傳曰：“田米一百碩，送內需司。”

전미 1백 석을 내수사로 보내도록 하다		
연산 49권, 9년(1503) 계해 / 명 홍치(弘治) 16년) 3월 1일(무진) 6번째기사 휘순 공주가 출가하자 벼를 호조에서 마련하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휘순 공주(徽順公主)가 근일 출함(出閤)3956) 하게 되니 준례대로 벼 8천 섬을 주어야겠다. 전일에 내수사(內需司)에서 주도록 하였는데, 지금 저장된 것이 없으니 호조에서 마련하여 주도록 하라.” 하였다.	傳曰: “徽順公主近當出閤, 例賜租八千碩。 前此令內需司給之, 今無所儲, 令戶曹備給。
연산 49권, 9년(1503) 계해 / 명 홍치(弘治) 16년) 3월 2일(기사) 3번째기사 성준·이극균·유순 등이 구황에 대해 논하다	구황(救荒)에 관해 의논한 것을 내리며 이르기를, “의논이 한결같지 않으니, 다시 정승들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성준·이극균이 의논드리기를, “지금 호조(戶曹)의 구황 계목(啓目)을 보니 자세하게 되어 빠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주리고 피곤한 사람이 거친 밥을 단번에 과식하면 병나게 되는 일도 없지 않을 것이니, 쌀·콩·소금·장을 모두 절반으로 감하여 주어 기운이 약한 사람은 먼저 미음과 죽으로 구제하여 기운이 충실해진 뒤에 더 주게 하되 남용하는 사람은, 감수(監守)하는 자가 도둑질한 율[監守自盜律]’에 의하여 죄를 논하게 하소서. 그러나 범람이 더욱 심한 자는 이 율이 경할 것 같으니, 온 가족을 입거(入居)3961) 시키는 것이 어떠하리까?” 하고, 유순(柳洵)은 의논드리기를, “16세 이상 사람의 먹는 것이, 횡간(橫看)3962) 을 보면 한때 것이 조미(造米)3963) 와 황두(黃豆)가 각각 5홉씩인데, 지금 그 과식하여 병나고 혹시 감고(監考)가 남용할 것을 염려하여 절반으로 감해 준다면, 지금 해가 긴 때이므로 장정들이 반드시 배를 채우지 못하여 진제장(賑濟場)3964) 에 들어가지 않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횡간의 법은 원래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적의	下救荒議曰: “論議不一, 其更議于政丞。” 成俊、李克均議: “今觀戶曹救荒啓目, 詳悉無遺。 但飢困人麤飯一時過食, 致傷非無, 米豆鹽醬, 竝減半給之; 氣弱人先以糜粥賑救, 氣實後加給; 濫用人依監守自盜律論罪, 然汎濫尤甚者, 此律似輕, 全家入居何如?” 柳洵議: “十六歲以上人所食, 橫看每一時糙米、黃豆各五合。 今慮其過食致傷, 或監考濫用, 而減半給之, 正當日長時, 壯丁必不充腹, 有不入賑濟場者。 橫看之法, 本欲救民, 酌宜磨鍊, 今不可裁減。 且衣食自足人及有主可依人, 根脚取招還本事, 則若自可食者, 豈以來就賑濟場爲樂, 而詐稱飢民, 托食於此哉? 今若立法如此, 則監

	<p>하게 마련한 것이니, 지금 재량하여 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 의식이 넉넉한 사람이나 의지할 만한 주인이 있는 사람을 근각(根脚)을 진술 받아 본곳으로 돌려낸다는 일은 만일 제 스스로 먹고 지낼 만한 자라면 어찌 진제장에 들어오는 것을 즐겁게 여겨 거짓말로 기민(飢民)이라 하고 거기에서 끼를 의탁하겠습니까? 지금 만일 법을 이렇게 만든다면, 감고하는 사람이 주린 백성을 많이 받지 않으려고 하여 혹은 사망하게도 될 것이며, 강제로 조사하여 본곳으로 돌려보내다 핑계하게 되어 반드시 도로에서 주려 죽는 자가 있을 것이니, 백성을 진휼(賑恤)하고 구제하는 뜻에 어긋나 시행하지 못할 듯합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집에서 제각기 의논하고 서로 면대할 수 없으니, 이 의논을 여러 정승들에게 두루 보이라.”</p> <p>하였다.</p>	<p>考不欲多受飢民， 或致死亡， 抑勒推調， 名爲還本， 而必有餓死於道路者矣， 有乖賑濟救民之意， 似不可施行。” 傳曰：“在家各議， 不得相見， 其以此議， 遍示政丞。”</p>
<p>연산 49권, 9년(1503 계해 / 명 홍치(弘治) 16년) 3월 17일(갑신) 3번째기사 사도시에서 시녀의 품계에 대해 묻는 것은 불가함을 승정원에서 아뢰다</p>	<p>사도시(司禦寺)에 명하여 5품 시녀(侍女)의 요(料)를 들이게 하였다. 시원(寺員)이 사옹원(司饗院)에 문의하기를, “시녀의 품계(品階)를 올려야 하는가, 더 두어야 하는가?”</p> <p>하니, 사옹원에서 중궁전(中宮殿) 설리(薛里)3983)에게 물었는데, 설리가 알지 못하여 승전색(承傳色) 김자원(金子猿)에게 물으니, 자원이 위에 전달하였다. 정원(政院)에 전교하기를, “궁궐 안의 일은 승전(承傳)에 따라 진배(進排)하면 되는 것인데, 어찌하여 품계의 승진과 더 두는 것을 묻느냐?”</p> <p>하자,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사도시에서 묻지 않을 것을 물었으니 매우 불가하며, 사옹원에서도 역시 내관(內官)에게 물어 상달하게 할 일이 아닙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命司禦寺， 供進五品侍女料。 寺員問於司饗院曰：“侍女陞品歟？ 加設歟？” 司饗院問於中宮薛里， 薛里不知， 問於承傳色金子猿， 子猿轉達於上。 傳于政院曰：“宮禁之事， 但依承傳進排而已， 何問其陞品與加設耶？” 承政院啓：“司禦寺非所當問而問之， 甚不可。 司饗院亦不當問於內官， 而使之上達也。” 傳曰：“其鞫司禦寺當該官。”</p>

	“사도시의 해당 관원을 국문하라.” 하였다.	
연산 49권, 9년(1503 계해 / 명 홍치(弘治) 16년) 3월 18일(을유) 3번째기사 맷쌀을 사옹원에 보내 게 하다	호조에 전지하기를, “맷쌀[粳米] 5석을 사옹원으로 보내라.” 하였다.	傳旨戶曹曰：“粳米五碩送于司饗院。”
연산 49권, 9년(1503 계해 / 명 홍치(弘治) 16년) 3월 21일(무자) 2번째기사 놋동이와 놋화로를 들 이게 하다	전교하기를, “놋동이[鍬盆] 2개와 놋화로 5개를 지어 들이라.” 하였다.	傳曰：“鍬盆二、鍬鑪五造入。”
연산 49권, 9년(1503 계해 / 명 홍치(弘治) 16년) 3월 26일(계사) 3번째기사 호초와 초주지를 대내 로 들이게 하다	전교하기를, “정제한 호초(胡椒) 10 석과 초주지(草注紙) 2백 권을 대내(大內)로 들이라.” 하였다.	傳曰：“吹正胡椒十碩、草注紙二百卷內入。”
연산 49권, 9년(1503 계해 / 명 홍치(弘治) 16년) 4월 1일(정유) 6번째기사 일본에서 토산품을 바 치다	일본국(日本國) 서해도 비전주 상송포 신전 능등수(西海道肥前州上松浦神田能登守) 원덕(源德)·관서로 안예주 미작수(關西路安藝州美作守) 소조천 평지평(小早川平持平)·일기주 본성 거주(壹岐州本城居住) 원일(源壹)·비전주 평호우진 비주 태수(平戶寓鎮肥州太守) 원풍구(源豐久)·서해로 축전주 종상군 지수(西海路筑前州宗像郡知守) 종상 조신 씨향(宗像朝臣氏鄉)·비전주 상송포 좌지(肥前州上松浦佐志) 원차량(源次良) 등이 사람을 보내와 토산물을 바쳤다.	日本國海西道肥前州上松浦神田能登守源德、關西路安藝州美作守小早川平持平、壹岐州居住本城源壹、肥前州平戶寓鎮肥州太守源豐久、西海路筑前州宗像郡知守宗像朝臣氏鄉、肥前州上松浦佐志源次良等遣人來獻土

<p>연산 49권, 9년(1503 계해 / 명 홍치(弘治) 16년) 4월 7일(계묘) 1번째기사 손중돈이 외방의 공물 을 함부로 걷고 있음 을 아뢰다</p>	<p>경연에 납시었다. 대사간 이자견(李自堅)과 장령 손중돈(孫仲墩)이, 김수말·이 팽동의 일을 논계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중돈이 아뢰기를, “외방(外方)의 공물(貢物)을 고자(庫子)들이 방납(防納)4000) 하는 것을 이롭 게 여겨 그때그때 저지하고 받지 않으므로 공리(貢吏)들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갑절이나 백성에게 징수하니, 백성들이 매우 괴로워합니다. 그 중에도 사축서(司畜署)와 전생서(典牲署) 두 서가 더욱 심한데, 양 한 마리의 값이 〈무명〉 70필이나 되고, 돼지 한 마리 값은 40필이나 되어 범람함이 극도에 달했으니, 통렬히 금하도록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기를, “전에도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자, 중돈이 아뢰기를, “역로(驛路)를 소생시키라는 영을 여러 번 내렸는데도 병사·수사·군관 등이 검열한다는 이름 아래 실지는 자신들의 사사 일로 말타고 짐신고 다니는 일 이 길에 서로 잇따르니, 각도에 유시하여 금하도록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기를, “벌써부터 금법이 있지만 받들어 거행하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 자견이 아뢰기를, “경연관(經筵官) 서너 사람만을 택하여 진강(進講)하게 하니 사체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대체로 공경하고 조심하는 마음이 지극하기 때문에 혹 잘못 읽고 또 어음(語音)이 분명하지 못하기도 하는 것이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닙니 다. 성종 때에 교리(校理) 성담년(成聃年)은 매우 박식(博識)하였으나 음운(音 韻)의 고저가 분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종께서 항상 진강하게 하셨으 니, 신의 생각으로는 지금 역시 모두 진강하게 함이 가할까 합니다.”</p>	<p>宜。 癸卯/御經筵。 大司諫李自堅、掌令 孫仲墩論啓金守末、李彭同事，不聽。 仲墩曰：“外方貢物庫子， 利於防納， 輒阻不納。 故貢吏不勝其苦， 倍徵於 民， 民甚苦之。 如司畜、典牲兩署尤 甚， 一羊之直， 至七十四； 一豬之直， 至四十四， 其濫極矣， 請痛禁。” 王 曰：“前亦有言者。” 仲墩曰：“驛路蘇 復之令屢下， 而如兵、水使軍官等， 名 爲點閱， 實挾己私， 騎載相續於路， 請 諭各道禁戢。” 王曰：“已有法禁， 但 不奉行耳。” 自堅曰：“經筵官但擇數 三人進講， 不合事體。 大抵敬謹之至， 或誤讀、或語音不分明， 非故爲之也。 成宗朝校理成聃年頗博識， 猶不能高低 音韻， 然成宗每令進講。 臣意， 今亦 皆令進講可也。” 王曰：“成宗學問高 明， 故如此耳。 然進講之人若不分明 讀過， 則何能曉解其義耶？ 且雖不得與 進講者， 若有所疑問， 則亦各以其意啓 之耳。”</p>
---	---	---

	<p>하니, 왕이 이르기를, “성종께서는 학문이 고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나 진강하는 사람이 분명하게 읽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그 뜻을 알 수 있을 것인가? 또 함께 진강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의문되는 것이 있으면 또한 각각 그 뜻을 아뢰면 된다.” 하였다.</p>	
<p>연산 49권, 9년(1503 계해 / 명 홍치(弘治) 16년) 4월 27일(계해) 4번째기사 대마도에서 토산물을 바치고 모시를 요구하 다</p>	<p>대마주 태수(對馬州太守) 평 조신(平朝臣) 종 형부 소보 익성(宗刑部小輔杳盛)이 사신을 보내어 와서 토산품을 헌납하고, 이어 흰 모시베 1천 필을 요구하였다. 그 회답 서계(書契)의 대략에, “우리 조정의 경비가 제한이 있고, 저축이 얼마 안 되므로 특별히 30필을 하사하여 온 사신에게 부쳐 보낸다. 또 연전에 보낸 사신 원정선(源貞宣)이 은 1천 냥을 청구하였는데, 은은 우리 나라 산물도 아닌데 경솔하게 청구하였으니 꼭 무례한 일이었다. 그러나 전하께서 사소한 허물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무명 1백 필을 하사하도록 하셨으니, 실로 특수한 은혜인데, 정선(貞宣)이 포구에 가서는 버리고 갔으니 이것이 무슨 의리이냐? 군상(君上)이 하사하시는 것은 지푸라기같은 적은 물건이라도 오히려 감사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인데, 하물며 홀만(忽慢)히 여겨 버릴 수 있느냐? 족하(足下)가 우리 조정을 공경하여 섬겨 다른 마음이 없으니, 이것은 우연히 잘못된 일일 것이다.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섬 백성들로 하여금 위를 공경하는 예절을 알게 한다면 이만한 다행이 없겠다.” 하였다.</p>	<p>對馬州太守平朝臣宗刑部小輔杳盛 〔平朝臣宗刑部小輔材盛〕遣使獻土宜，仍索白苧布一千匹。書(啓)〔契〕回答，略曰： 我朝經用有制，所儲無幾，特賜三十匹，付來使。且年前，貴价源貞宣請銀一千兩。銀非我國之產，率爾求之，頗涉無禮。殿下不較區區之過，命賜絺布一百匹，實是異恩。(貞聖)〔貞宣〕到浦，棄之而去，此何義耶？君上有賜，雖草芥之微，猶知感戴，況可慢而置之乎？足下敬事我朝，無有異心。此則偶出於謬計耳，更勿如是，使島民知有敬上之禮幸甚。</p>
<p>연산 49권, 9년(1503 계해 / 명 홍치(弘治) 16년) 5월 1일(병인) 3번째기사</p>	<p>호조에 전지(傳旨)하기를, “두 대비전(大妃殿)에 각각 호초(胡椒) 2섬, 맵쌀 2섬을 들이라.” 하였다.</p>	<p>傳旨于戶曹曰：“兩大妃殿各進胡椒二碩、粳米二碩。”</p>

두 대비전에 호초와 멧쌀을 들이게 하다		
연산 49권, 9년(1503 계해 / 명 홍치(弘治) 16년) 5월 7일(임신) 2번째기사 은을 들이게 하다	전교하기를, “은 소반 3개와 은 80냥을 대내(大內)로 들이라.” 하였다.	傳曰: “銀盤三面、銀八十兩入內。”
연산 49권, 9년(1503 계해 / 명 홍치(弘治) 16년) 5월 8일(계유) 4번째기사 창기들이 궁중 일을 누설하지 못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양전(兩殿)께 곡연(曲宴)을 드리던 날 궁중에서 일보는 사람들에게 모두 술 마시는 것을 허용하였는데, 창기(娼妓)들이 취해서 떠들며 술을 엇질러 옷을 적신 자도 있었다. 이 사람들이 궁중에서 한 일을 보고 만일 말을 밖에 누설 한다면, 그 관리까지 죄준다는 것을 알리라.” 하였다.	傳曰: “兩殿曲宴日, 大內執役之人, 皆許飲酒, 娼妓等因醉喧譁, 有傾酒沾 衣者。 此人等觀禁中所爲, 若漏言于 外, 則竝其官吏科罪事, 教之。”
연산 49권, 9년(1503 계해 / 명 홍치(弘治) 16년) 5월 10일(을해) 2번째기사 식용 돼지를 전생서에 서 기르게 하다	전교하기를, “식치(食治)에 쓸 저장(猪腸)은 전생서(典牲署)에서 기른 것으로 쓰게 하라.” 하였다.	傳曰: “食治猪腸, 用典牲署所畜。”
연산 49권, 9년(1503 계해 / 명 홍치(弘治) 16년) 5월 13일(무인) 1번째기사 유자광에 대한 인물평	사용원 제조 유자광(柳子光)이, 밥바리 두 개에 하나는 높이, 하나는 평평하 게 담고, 또 밥 담은 그릇에 쌀을 담아, 상전(尙傳)에게 부탁하여 아뢰게 하 되, “조종조(祖宗朝)에 당상관(堂上官)은 높이 담고 당하관은 평평히 담게 하였는 데, 상정(詳定)된 뒤로 당상·당하를 가릴 것 없이 모두 쌀 한 되씩으로 하였 기 때문에 대궐 안의 대소(大小) 인원으로 선반(宣飯)4045 을 받는 자들이 모두 <밥을> 높이 담지 않는다고 까다롭게 책망하므로, 이 때문에 반공(飯	/司饗院提調柳子光盛飯二鉢, 一高一 平, 又以量飯之盂盛米, 請尙傳啓: “祖宗朝堂上官高飯, 堂下官平飯, 自 詳定後, 不辨堂上堂下官, 率米一升。 以闕內大小人員應宣飯者, 皆苛責不高 盛, 以此飯工不支, 多逃散。 闕庭之 內, 有如此之冤, 敢啓。” 尙傳持飯器

	<p>工)들이 감당하지 못하여 거개 도망해 흩어집니다. 대궐 안에 이런 원통한 일이 있으므로 감히 아뢰입니다.”</p> <p>하니, 상전이 밥그릇을 가지고 들어가 아뢰었다. 전교하기를, “원래 상정한 것이 있으니 다시 고칠 수 없다. 반공을 침해하는 자를 금단하는 규정[事目]을 의논하여 아뢰라.”</p> <p>하였다. 유자광이 전교를 받고 기쁜 안색을 하며, 사옹원 낭청(郎廳)들을 손짓하여 불러 말하기를, “지금부터는 정승이라도 전교대로 하여야 한다.”</p> <p>하니, 좌우 사람들이 낯빛을 변하며 서로 눈짓만 하였다.</p>	<p>入啓，傳曰：“自有詳定，不可更改。飯工侵暴者，禁斷事目議啓。”子光承教，喜動於色，手招司饗院郎廳語之曰：“自今雖政丞，當如傳教。”左右變色相目而已。</p>
<p>연산 50권, 9년(1503계해 / 명 홍치(弘治) 16년) 6월 12일(정미) 1번째기사 호조로 하여금 쌀과 밀을 내수사로 보내게 하다</p>	<p>호조에 전지(傳旨)하기를, “쌀 3백 섬과 밀[眞麥] 1백 섬을 내수사(內需司)로 실어 보내라.”</p> <p>하였다.</p>	<p>○丁未/傳旨戶曹曰：“米三百碩、眞麥一百碩、輸送內需司。”</p>
<p>연산 50권, 9년(1503계해 / 명 홍치(弘治) 16년) 6월 13일(무신) 2번째기사 간관이 재변이 있으므로 절약하기를 청하다</p>	<p>장령 이계맹(李繼孟), 정언 황맹헌(黃孟獻)이 아뢰기를, “금년에는 초봄에 굶은 비가 내리고, 여름철에 두 번이나 우박이 내리는데도 궁중에서 오히려 잔치를 거행하고 어제는 또 지진이 있었는데 오늘 궁중에서 잔치가 있으니, 너무도 재앙을 두려워하는 도리가 아니며, 또 창기(娼妓)가 편복 차림으로 궁중에 들게 하니, 역시 조종 때에 있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비용을 절약할 때를 당하여 혹은 응방(鷹坊)에서, 혹은 양전(兩殿)에서 쌀을 쓴 것이 적지 않으며, 지금 또 쌀 3백 섬과 밀 1백 섬을 내수사(內需司)로 실어 보내는 것은 매우 합당하지 못합니다.”</p>	<p>掌令李繼孟、正言黃孟獻啓：“今年春初苦雨，夏月再雹，猶行內宴。昨日地震，今日內宴，殊非弭災之道。又令娼妓便服入內，亦非祖宗故例也。今當省費之時，或於鷹坊，或於兩殿用米不費，今又米三百碩、麥一百碩輸于內需司，甚未便。”不聽。</p>

	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 50권, 9년(1503 계해 / 명 홍치(弘治) 16년) 6월 28일(계해) 1번째기사 은어를 바치게 하다	전교하기를, “은어[銀口魚]가 생산되는 각도에서, 매해 진상하는 마른 고기를 제하고, 생선으로 봉하여 올리게 하라. 또 2천 마리에 구애하지 말고 철이 늦더라도 잡히는 대로 다소간에 그때그때 봉하여 올리게 하라.” 하였다.	傳曰: “銀口魚令產出各道, 除每年進上乾魚, 而以生魚封進。 且不拘二千尾, 雖節晚, 隨所得多少, 輒卽封進。”
연산 50권, 9년(1503 계해 / 명 홍치(弘治) 16년) 7월 5일(기사) 2번째기사 맷쌀을 대내에 들이도록 하다	맷쌀[粳米] 5섬을 들여오도록 하였다.	命入粳米五碩。
연산 50권, 9년(1503 계해 / 명 홍치(弘治) 16년) 7월 13일(정축) 1번째기사 호초와 도롱이를 들이도록 하다	호초 10섬과 도롱이[蓑衣] 10벌을 들이도록 하였다.	丁丑/命入胡椒十碩、蓑衣十部。
연산 50권, 9년(1503 계해 / 명 홍치(弘治) 16년) 7월 13일(정축) 3번째기사 도승지 김감에게 도롱이·삿갓 등을 하사하다	도승지 김감(金勘)을 소동문(小東門) 안으로 불러, 도롱이·삿갓[笠帽]·호초 및 여러 가지 약을 하사하였다.	召都承旨金勘於小東門內, 賜蓑衣、笠帽、胡椒及諸種藥。
연산 50권, 9년(1503	도승지 김감(金勘)에게 쌀·콩 각 10섬을 하사하였는데, 이때 대군이 감의 집	賜都承旨金勘米、豆各十碩。 時, 大

계해 / 명 홍치(弘治) 16년) 7월 18일(임오) 2번째기사 도승지 김감에게 쌀과 콩을 하사하다	에 있었다.	君在勘第。
연산 50권, 9년(1503 계해 / 명 홍치(弘治) 16년) 7월 21일(을유) 1번째기사 사신에게 인정전에서 다례를 베풀다	부천사(副天使) 이진(李珍)이 대궐에 나아가 배사(拜辭)하니, 왕이 인정전으로 맞아들여 다례(茶禮)를 베풀고, 이어 술을 돌렸다. 사신이 배사하니, 왕이 인 정전 문 밖까지 전송하였다.	乙酉/副天使李珍詣闕拜辭, 王迎入仁 政殿, 行茶禮, 仍行酒。 天使拜辭, 王送至仁政門外。
연산 50권, 9년(1503 계해 / 명 홍치(弘治) 16년) 7월 30일(갑오) 2번째기사 쌀을 유자광에게 하사 하다	전교하기를, “쌀 10섬을 유자광(柳子光)의 집에 보내라.” 하였다.	傳曰: “米十碩送柳子光家。”
연산 50권, 9년(1503 계해 / 명 홍치(弘治) 16년) 8월 13일(정미) 2번째기사 술을 대내에 들이게 하다	전교하기를, “술 2백 병을 대궐로 들이라.” 하였다.	傳曰: “酒二百瓶入內。”
연산 50권, 9년(1503 계해 / 명 홍치(弘治) 16년) 8월 14일(무신)	도승지 김감이 중국 사신을 의주(義州)에 가서 선위(宣慰)하고 돌아오니, 왕이 내관(內官)을 시켜 선운(宣醞)을 가지고, 도성 문 밖에서 맞아 위로하게 하였 다.	○都承旨金勘宣慰天使于義州而還, 王 命內官, 齎宣醞, 迎慰都門外。

4번째기사 김감이 중국 사신을 의주에서 선위하고 돌아오다		
연산 50권, 9년(1503) 계해 / 명 홍치(弘治) 16년) 8월 15일(기유) 3번째기사 호초와 수주를 들이게 하다	호초(胡椒) 20섬과 수주(水紬) 20필을 들이게 하였다.	命入胡椒二十碩、水紬二十匹。
연산 50권, 9년(1503) 계해 / 명 홍치(弘治) 16년) 8월 18일(임자) 2번째기사 목공과 석공을 사옹원에서 먹이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목공(木工)·석공(石工) 각 10명과 감역관(監役官) 2인을 사옹원(司饗院)에서 공궤하도록 하라.” 하였다.	傳曰：“木工、石工各十名，監役官二人，令司饗院供饋。”
연산 50권, 9년(1503) 계해 / 명 홍치(弘治) 16년) 8월 21일(을묘) 1번째기사 소목을 들이게 하다	소목(蘇木) 1백 근을 들이게 하였다.	乙卯/命入蘇木百斤。
연산 50권, 9년(1503) 계해 / 명 홍치(弘治) 16년) 8월 21일(을묘) 3번째기사 소목을 들이게 하다	소목 3백 근을 들이게 하였다	命入蘇木三百斤。

연산 50권, 9년(1503) 계해 / 명 홍치(弘治) 16년) 9월 4일(정묘) 2번째기사 쌀과 콩을 유자광에게 보내다	전교하기를, “쌀과 콩 각 10섬을 유자광(柳子光)의 집으로 보내라.” 하였다.	傳曰: “米豆各十碩, 送柳子光家。
연산 50권, 9년(1503) 계해 / 명 홍치(弘治) 16년) 9월 9일(임신) 4번째기사 면포와 호초를 대내에 들이게 하다	전교하기를, “제용감(濟用監)의 정포(正布)와 면포 각 1백 50필과 사첨시(司瞻寺)의 정포 1백 필, 면포 2백 7필, 의영고(義盈庫)의 호초(胡椒) 6섬을 대궐로 들이라.” 하였다.	傳曰: “濟用監正布、縣布各一百五十 匹, 司瞻寺正布一百匹、縣布二百七 匹, 義盈庫胡椒六碩入內。”
연산 50권, 9년(1503) 계해 / 명 홍치(弘治) 16년) 9월 12일(을해) 4번째기사 장흥 부부인에게 쌀과 면포를 보내다	전교하기를, “쌀 20섬과 면포·정포 각 50필을 장흥 부부인 신씨 집에 보내라.” 하였다.	傳曰: “米二十碩、綿布·正布各五十 匹, 送長興府夫人申氏家。”
연산 50권, 9년(1503) 계해 / 명 홍치(弘治) 16년) 9월 13일(병자) 1번째기사 양로연에서 하사할 호 초와 면포를 들이게 하다	전교하기를, “중궁에서 양로연(養老宴)할 때 하사할 호초 9말, 면자(綿子) 5근과 오래 묵 은 면포·정포 등을 대궐로 들이라.” 하였다.	○丙子/傳曰: “中宮養老宴時賜與, 胡 椒九斗、縣子五斤、久陳縣布·正布 等入內。”
연산 50권, 9년(1503)	전교하기를,	丁丑/傳曰: “賜長興府夫人申氏米一年

<p>계해 / 명 홍치(弘治) 16년) 9월 14일(정축) 1번째기사 장흥 부부인 신씨에게 쌀을 1년에 4번 주도 록 하다</p>	<p>“장흥 부부인 신씨에게 쌀을 1년에 네 번씩 주되, 정한 준례로 하라.” 하였다.</p>	<p>四度, 以爲恒例。”</p>
<p>연산 50권, 9년(1503 계해 / 명 홍치(弘治) 16년) 9월 16일(기묘) 1번째기사 승지 허집 등이 이세 좌의 일을 변명하다</p>	<p>전교하기를, “이세좌의 초사(招辭)에 ‘숨이 헐떡여 진정하지 못하고, 신체가 비둔(肥鈍)하 기 때문에 공경하고 조심하기를 너무하다가 <술잔을> 엮지르는 줄도 몰랐 다.’ 하였는데, 이 말이 사실이 아니다.” 하니, 승지 허집(許輯) 등이 아뢰기를, “동료들 가운데서라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찌 일부러 마시지 않았겠습 니까?” 하였다.</p>	<p>己卯/傳曰: “李世佐招辭, 雖曰: ‘喘急 未定, 身體肥鈍, 故敬謹之至, 不覺傾 注.’ 此言非實。” 承旨許輯等啓: “雖於同僚中, 不得如此, 豈故不飲 乎?”</p>
<p>연산 50권, 9년(1503 계해 / 명 홍치(弘治) 16년) 9월 26일(기축) 3번째기사 평안도와 함경도의 쌀 을 풍저창으로 보내다</p>	<p>전교하기를, “평안·함경 등도의 내수사(內需司)에 들어올 쌀[回換米]을 풍저창(豐儲倉) 쌀 로 제급(題給)하라.” 하였다.</p>	<p>傳曰: “平安、咸鏡等道內需司回換米, 以豐儲倉米題給。”</p>
<p>연산 50권, 9년(1503 계해 / 명 홍치(弘治) 16년) 9월 27일(경인) 2번째기사 서리 맞은 포도와 다 래를 들이게 하다</p>	<p>전교하기를, “서리 맞은 포도와 다래를 따서 들이도록 하라.” 하였다.</p>	<p>傳曰: “帶霜葡萄、獼猴桃摘進。”</p>

연산 51권, 9년(1503 계해 / 명 홍치(弘治) 16년) 10월 11일(갑 진) 5번째기사 들기름을 들이게 하다	법유(法油)4129) 10말을 들이게 하였다.	命入法油十斗。
연산 51권, 9년(1503 계해 / 명 홍치(弘治) 16년) 10월 25일(무 오) 5번째기사 민효증과 이자견에게 은어를 계속 바치게 하다	함경도 관찰사 민효증(閔孝曾), 강원도 관찰사 이자견(李自堅)에게 효유하 기를, “은어를 계속해 봉진(封進)하라.” 하였다.	諭咸鏡道觀察使閔孝曾、江原道觀察 使李自堅曰：“銀魚連續封進。”
연산 51권, 9년(1503 계해 / 명 홍치(弘治) 16년) 10월 28일(신 유) 2번째기사 반쯤 마른 노루를 계 속 바치게 하다	어서(御書)를 내리기를, “반쯤 마른 노루[牙獐]를 생산지에서 계속해 봉진토록 하라.” 하였다.	下御書曰： 半乾牙獐，令所產處連續封進。”
연산 51권, 9년(1503 계해 / 명 홍치(弘治) 16년) 10월 28일(신 유) 3번째기사 쌀을 내수사에 보내게 하다	호조에 전지하기를, “쌀 2백 섬을 내수사로 보내라.” 하였다.	傳旨戶曹曰：“米二百碩送內需司。”
연산 51권, 9년(1503 계해 / 명 홍치(弘治)	후추 10곡(斛)을 들이게 하였다.	命入胡椒十斛。

16년) 11월 5일(무진) 3번째기사 후추를 들이게 하다		
연산 51권, 9년(1503) 계해 / 명 홍치(弘治) 16년) 11월 6일(기사) 6번째기사 유기를 들이게 하다	유기 함(榘) 두 개를 들이게 하였다.	命入鎡榘二。
연산 51권, 9년(1503) 계해 / 명 홍치(弘治) 16년) 11월 8일(신미) 5번째기사 아가를 만들게 하다	전교하기를, “큰 아가(阿架)와 술그릇 아가 보(袱)를 특별히 만들어 들이라.” 하였다.	傳曰: “大阿架及酒器阿架袱, 別製以入。”
연산 51권, 9년(1503) 계해 / 명 홍치(弘治) 16년) 11월 22일(을유) 2번째기사 허집과 권균에게 호피를 하사하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어젯밤 내전으로 들게 하시어 술을 하사하셨으니 사은(謝恩)합니다. 또 어제는 밤이니, 깊고 날이 찼는데 성체(聖體)가 어떠하신지 아뢰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사은할 것이 없다. 다만 내가 실수나 없었는가?” 하매, 승지들이 아뢰기를, “신 등의 소견으로는 실수하신 것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하니, 호피(虎皮) 두 장을 허집(許諶)과 권균(權鈞)에게 하사하였다.	承政院啓: “昨夜命入內殿, 賜酒, 謝恩。 且昨日夜深日寒, 未審聖體何如?” 傳曰: “勿謝。 但予無乃有失耶?” 承旨等啓: “以臣所見, 似無失度。” 下虎皮二張, 賜許輯、權鈞。
연산 51권, 9년(1503) 계해 / 명 홍치(弘治) 16년) 11월 22일(을유) 4번째기사 정승들이 성상의 은혜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 이창신(李昌臣)이 아뢰기를, “어젯밤 신의 부자를 불러 내전에 들게 하시니, 성상의 은혜가 높고 중하시어 감동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하고, 영의정 성준은 아뢰기를, “어젯밤 호피(虎皮)를 하사하시고 또 어의(御衣)를 하사하시며, 또 외손 한형	同知敦寧府事李昌臣啓: “昨夜召臣父子, 命入內殿, 上恩隆重, 不勝感動。” 領議政成俊啓: “昨夜賜虎皮, 又賜御衣。 又與外孫孫亨允命入大內, 聖恩稠重。” 左議政李克均啓: “昨夜

에 감사드리다

윤(韓亨允)을 대내(大內)에 들게 하시니, 성상의 은혜가 주밀하고 중하십니다.”

하고, 좌의정 이극균(李克均)은 아뢰기를,
“어젯밤 신을 불러 대내에 들게 하시고 여러 번 술잔을 하사하시며 또 어의를 하사하여 입히시매, 신이 혼미하여 취한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젊었을 때에는 취한 중에 한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는데, 지금은 늙어서 어제 성상의 하교를 받고도 도무지 살피지 못하고 오늘 아침에야 하사하신 어의를 보온즉, 토한 흔적이 임리(淋漓)하였습니다. 생각건대, 반드시 성상의 앞에서 이렇게 무례하였을 것이니, 죄가 만 번 죽어도 마땅하여 놀라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하고, 참의 한형윤(韓亨允)은 아뢰기를,
“어젯밤 신을 벗어 하사하시고 지근(至近)한 곳까지 들게 하시어 성상의 은총이 더할 수 없었습니다.”

하고, 참지(參知) 이과(李穎)는 아뢰기를,
“신 부자가 함께 성상의 은혜를 입어 내전 뜰까지 불러들이셨으니, 감히 사은 하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사례하지 말라. 어제 과음해서 취한 뒤의 일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 하였다. 성준(成俊)이 아뢰기를,
“신의 소견으로는 아무것도 실수하신 것이 없었습니다. 세조 때에도 자주 대신들을 소대(召對)하시기를 그렇게 하셨는데, 어제 입은 성상의 은혜는 죽더라도 어찌 감히 잊겠습니까? 이는 천 년에 한 번 있는 행복입니다.”

하고, 이극균은 아뢰기를,
“군신간에 때로 소대(召對)를 하는 것이 어찌 의리에 해롭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召臣入內，累賜卮酒，又賜御衣衣之，臣不覺迷醉。臣少時醉中事，無不記憶，今既老耄，昨聞上教，摠不知省。今朝見蒙賜御衣，有嘔吐痕淋漓，意必於上前如此無禮，罪當萬死，不覺驚動。”參議韓亨允啓：“昨夜脫靴賜之，命入至近之地，天眷不次。”參知李穎啓：“臣父子俱蒙上恩，召入內庭，敢謝恩。”傳曰：“勿謝。昨日過飲，醉後之事了不知省。”俊啓：“以臣所見，頓無失儀。世祖朝，數召對大臣如此。昨蒙上恩，雖死豈敢忘也？此千載一時之幸也。”克均啓：“君臣之間，時賜召對，何妨於義？”傳曰：“昨日過飲失度，人君敗德，莫過於此；污穢史冊，亦莫過於此。君臣之間當以禮接之，其可如此乎？明日當御經筵，然慙見大臣。”成俊、李克均啓：“帝王接大臣，當或如是。昨日臣等亦醉，安知殿下所失？但見酒酣而已，無他過舉也。臣等意以謂，君臣之間，不可一以儼敬待之，時於便殿，私見大臣，有何過耶？成宗嘗接見群臣，其時鄭麟趾爲首相啓：‘君臣之間，當以禮接之。然不可一於禮，亦有以和待之時。’成

	<p>“어제 과음하여 실수하였으니, 인군의 패덕(敗德)이 이보다 더할 수 없고 역사를 더럽힘도 이보다 더할 것은 없으리라. 군신간에는 의당 예절로 대해야 하는 것인데, 이래서야 되겠는가? 내일 경연(經筵)에 나가야 하겠으나 대신들 보기가 부끄럽다.”</p> <p>하였다. 성준·이극균이 아뢰기를,</p> <p>“제왕(帝王)이 대신 접대를 혹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제 신 등 역시 취하였으니, 어찌 전하의 실수를 알겠습니까? 다만 술이 취하셨을 뿐, 다른 잘못하신 일은 없으셨습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군신간에도 한결같이 엄하고 공경하는 것으로만 대할 수 없는 일이니, 때로 편전(便殿)에서 사사로이 대신을 보시는 것이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성종께서도 일찍이 여러 신하들을 접견하셨는데, 그때 정인지(鄭麟趾)가 수상으로 있으면서 아뢰기를 ‘군신간에는 의당 예절로 접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예절로만 할 수는 없는 것이요, 역시 온화하게 대할 때도 있어야 합니다.’ 하였습니다. 성종께서 술이 취하자, 바로 정전에서 일어나 춤추시며 이어 여러 신하들도 춤추게 하셨던 것입니다. 인군으로서 대신을 접하는 데는 역시 화흡(和洽)한 때가 있어야 하는데, 어제일이 무슨 실례가 되겠습니까?”</p> <p>하고, 이자건은 아뢰기를,</p> <p>“어제일은 근대에 보고 듣지 못한 일입니다. 전하께서 위로는 양전(兩殿)4177) 을 모시고, 아래로는 대신·시종(侍從)·대간(臺諫)을 불러 중심을 보이시며 성의로 대하셨으니, 무슨 잘못이신 일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제왕(帝王)의 도량이십니다.”</p> <p>하고, 성준은 아뢰기를,</p> <p>“신이 세조 때에도 모셨었는데, 세조께서도 자주 이렇게 하셨습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자전(慈殿)의 은혜에 감격하고 대신을 사랑하여 대하기를 예로 하지 않았으</p>	<p>宗酒酣，乃於正殿起舞，仍命群臣起舞。人主待大臣，亦當有和洽之時。昨日之事，有何失儀?” 自健啓：“昨日之事，近代所未見聞之事。殿下上爲兩殿，下召大臣、侍從、臺諫，示以中心，誠以待之，有何過舉? 眞帝王之量也。” 俊啓：“臣及侍世祖朝，世祖常常如是。” 傳曰：“感慈恩、愛大臣而待之不以禮，心自愧悔。予見《史記》，有人被酒當誅，有一臣進曰：‘此人被誅，則後何敢用酒耶?’ 其人免誅。且《書》曰：‘欲敗度，縱敗禮。’ 古人戒酒至矣。昨日事，予不知何如爲也。” 俊、克均啓：“昨日之事，甚非聖德之累。” 許輯等啓：“殿下待大臣以和，非失道也。” 自健啓：“每以累史筆爲教，不勝仰賀。上爲慈親，下待大臣，有何過耶? 然而心自愧悔，《詩》《賓之初筵》，乃衛武公飲酒悔過之作。殿下無甚過舉，而悔之如此? 此聖德增光於史冊。” 傳曰：“昨日之事，反覆思之，非但取笑一時，亦恐貽譏萬世。《酒誥》亦以酒爲戒，然如紂之酗酒則不可，若不至甚則亦似無妨。” 俊啓：“《酒誥》本以商紂酗酒</p>
--	---	--

	<p>니, 마음에 스스로 부끄럽다. 내가 《사기(史記)》를 보니, 한 사람이 술이 취하여 배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한 신하가 나서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배임을 당하면 뒤에 어찌 감히 술을 쓰겠습니까?’ 하여 그 사람이 죽음을 면하였었고, 또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욕심으로 법도를 어지럽히고 방종으로 예의를 무너뜨린다.’ 하였으니, 옛사람들의 술에 대한 경계가 지극하였다. 어제 일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를 모르겠다.”</p> <p>하였다. 성준·이극균이 아뢰기를, “어제일은 그다지 성덕의 누가 되지 않습니다.”</p> <p>하고, 허집(許諱) 등은 아뢰기를, “전하께서 대신 대하기를 화목으로 하셨으니, 도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p> <p>하고, 이자건은 아뢰기를, “매양 사필(史筆)의 누가 된다고 하교하시니, 우러러 하례하는 마음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위로는 자전을 모시고 아래로는 대신을 대접하셨으니, 무슨 허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마음속으로 부끄러워하시고 뉘우치시니, 《시경(詩經)》 빈지초연(賓之初筵)장은 위(衛)나라 무공(武公)이 술을 마시고서 과실을 뉘우치며 지은 것인데, 전하께서 심한 잘못이 없는데도 뉘우치기를 이렇게 하시니, 이는 성덕(聖德)이 사책(史冊)에 빛을 더할 일입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어제일을 반복해서 생각해보니, 한때의 웃음거리뿐만 아니라 또한 만 대에 조롱을 살까 염려된다. 주고(酒誥)4178) 에도 술을 경계하였다. 그러나 주(紂)4179) 와 같이 술에 빠지면 안될 것이요, 심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다면 역시 무방할 것 같다.”</p> <p>하였다. 성준이 아뢰기를, “주고(酒誥)는 원래 은(殷)나라 주(紂)가 술에 빠졌기 때문에 지은 것이요, 이런 일을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p>	<p>而作也，非指此等事也。” 賜俊(故) [胡]椒一袋，亨允玉貫子一，仍傳曰：“昨夜已許賜之，雖醉中事，不可負言，故賜之。” 俊等拜謝曰：“雖教云：‘酒酣。’如此之事，未嘗遺忘，臣未知殿下之失儀。” 傳曰：“古人有剪葉爲書而爵人者。昨日已教云：‘金勘加資憲，知成均館事。’今不可失言。亨允亦可人，特加嘉善，拜吏曹參判。若不肖小人聞之，則必曰：‘以私恩濫爵也。’然彼皆賢良，且昨已言之，不可改也。” 仍傳于俊曰：“亨允黃金橫帶，卿意何如？” 俊泣曰：“臣濫蒙天恩，方欲待死之際，得見亨允爲嘉善，上恩至此，不勝感泣。” 克均在傍亦泣曰：“臣見俊泣下，臣亦不覺泣下。” 傳曰：“亨允拜職，政丞何泣謝耶？”</p>
--	--	--

	<p>하였다. 성준에게 호초(胡椒) 한 자루, 한형운에게 옥관자(玉貫子) 하나를 하사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어젯밤에 준다고 하였으니, 취중의 일이지만 한 말을 저버릴 수 없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p> <p>하였다. 성준 등이 절하고 사례하며 아뢰기를, “하교에 이르시기를 ‘술이 취하였다.’ 하시지만 이런 일을 잊지 않으시니, 신은 전하께서 실수하신 것을 모르겠습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옛날 사람은 나뭇잎을 오려 글을 써서 사람을 벼슬 준 자(4180)도 있었다. 어제 하교하기를, ‘김감(金勘)을 자헌(資憲)으로 계품을 올려 지성균관사(知成均館事)를 시킨다.’고 하였으니, 지금 빈 말이 되게 할 수 없다. 형운(亨允) 역시 쓸 만한 사람이니 특별히 가선(嘉善)으로 올리고 이조 참판에 임명한다. 불초한 소인들이 들으면 반드시 말하기를 ‘사사 은혜로 범람하게 벼슬시킨다.’ 할 것이다. 그러나 저들이 모두 현량(賢良)한 사람이고 또 어제 벌써 말한 것이니 고칠 수 없다.”</p> <p>하였다. 이어 성준에게 전교하기를, “형운의 황금 띠가 경의 생각에는 어떤가?”</p> <p>하니, 준이 울며 아뢰기를, “신이 외람되게 성상의 은혜를 입고 지금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형운이 가선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상의 은혜가 이러하시니, 감격의 울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p> <p>하고, 이극균(李克均)이 곁에 있다 역시 울며 아뢰기를, “신이, 준의 눈물 흘리는 것을 보니, 신 역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흐릅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	---	--

	“형윤이 관직에 임명되는데 정승이 어찌 울며 사례하는가?” 하였다.	
연산 51권, 9년(1503 계해 / 명 홍치(弘治) 16년) 11월 22일(을 유) 10번째기사 후추·무명 등을 들이 게 하다	후추 4섬, 무명·정포(正布) 각 1백 필, 수주(水紬) 40필을 들이게 하였다.	命入胡椒四碩、繇布・正布各一百匹、水紬四十匹。
연산 51권, 9년(1503 계해 / 명 홍치(弘治) 16년) 11월 23일(병 술) 3번째기사 좁쌀과 콩을 내수사로 보내게 하다	호조에 전지하기를, “전미(田米)4182) 2백 섬, 황두(黃豆) 1백 섬, 녹두 20섬을 내수사(內需司)로 실어보내라.” 하였다.	傳旨戶曹曰：“田米二百碩、黃豆一百碩、綠豆二十碩，輸送內需司。”
연산 51권, 9년(1503 계해 / 명 홍치(弘治) 16년) 11월 24일(정 해) 1번째기사 상의원에 옥 술잔을 만들게 하다	전교하기를, “내전에서 잔치할 때 옥 술잔이 좋지 않았으니, 상의원(尙衣院)에서 아름다운 옥을 구해서 만들어 들이게 하라.” 하였다.	傳曰：“內宴時，玉杯不好，令尙衣院求美玉造入。
연산 51권, 9년(1503 계해 / 명 홍치(弘治) 16년) 12월 4일(정유) 2번째기사 저사·호초 등을 들이 게 하다	당직(唐織) 남색 저사(紵絲) 2필, 초록색 저사 1필과 송이[香蕈] 1섬, 개암과 잣 각 1섬, 호초(胡椒) 10말을 들이게 하였다.	命入唐織藍紵絲二匹、草綠紵絲一匹、香蕈一碩、榛・栝子各一碩、胡椒十斗。

<p>연산 51권, 9년(1503) 계해 / 명 홍치(弘治) 16년) 12월 7일(경자) 2번째기사 승검초를 승정원에 내 리다</p>	<p>승검초[辛甘菜]를 승정원에 내려 보내며 어서(御書)하기를, “봄날 소반에 생채가 가늘다.[春日春盤細生菜]’ 하였는데, 이로 보면 청엽(靑葉) 위에 반드시 여덟 구가 있을 것이니, 입직(入直)한 홍문관(弘文館) 관원과 함께 지어 바치라.” 하였다.</p>	<p>下辛甘菜于承政院，御書曰： 春日春盤細生菜，以此觀之，靑葉上必有八句，其與入直弘文館製進。</p>
<p>연산 51권, 9년(1503) 계해 / 명 홍치(弘治) 16년) 12월 8일(신축) 4번째기사 휘순 공주의 집 짓는 장인들에게 줄 베를 들이게 하다</p>	<p>호조에 전지하기를, “렘쌀 3섬을 대궐로 들고, 휘순(徽順) 공주의 집을 짓는 장인(匠人)들에게 상으로 줄 베 3백 58필을 그 집으로 실어보내라.”</p>	<p>傳旨戶曹曰：“粳米三碩入內。 徽順公主家造成匠人所給賞布， 三百五十八匹，輸送其家。”</p>
<p>연산 51권, 9년(1503) 계해 / 명 홍치(弘治) 16년) 12월 18일(신 해) 1번째기사 윤구가 화로를 만들어 들이지 못함을 아뢰다</p>	<p>승지 윤구(尹邁)가 아뢰기를, “전에 하교하신 화로(火爐) 1백 20건은 물이 차져서 지어들이지 못합니다.” 하였다.</p>	<p>辛亥/承旨尹邁啓：“前敎火爐百二十件，因水冷，未得造入。”</p>
<p>연산 51권, 9년(1503) 계해 / 명 홍치(弘治) 16년) 12월 19일(임 자) 2번째기사 호초·무명 등을 들이 게 하다</p>	<p>전교하기를, “호초 4섬, 주(紬) 1백 50필, 무명 5백 75필, 흰 모시 6필, 정포(正布) 2백 50필과 여기(女妓)에게 줄 무명 75필을 대궐로 들이라.” 하였다.</p>	<p>傳曰：“胡椒四碩、紬一百五十匹、綿布五百七十五匹、白紵布六匹、正布二百五十匹及賜女妓絁布七十五匹入內。”</p>
<p>연산 52권, 10년</p>	<p>사옹원 제조(司饗院提調) 유자광(柳子光)이 아뢰기를,</p>	<p>司饗提調柳子光啓：“進膳大盤甚重難</p>

<p>(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1월 1일 (계해) 2번째기사 음식을 두 소반에 나누어 차릴 것을 청한 유자광을 국문케 하다</p>	<p>“음식을 올리는 큰 소반이 매우 무거워 들기 어려우니, 두 소반에 나누어 차려 드리기를 편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신하로서 인군 앞에서 공경하고 조심한다면 어찌 들기 어려우랴? 자광이 말할 것이 아니요, 승지 역시 아뢴 것이 아니다. 자광을 국문하도록 하라.” 하였다.</p>	<p>學，請分盛二盤，以便進止。”傳曰：“人臣於君前，若敬謹則豈難學之？子光不當言，承旨亦不當啓，其鞫子光。”</p>
<p>연산 52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1월 8일 (경오) 1번째기사 월산 대군 이정(李靖)의 아내 박씨(朴氏)가 상사를 당하였으므로, 쌀 40섬, 황두(黃豆) 20섬, 삼베·무명 각 1백 필, 밀가루 3섬, 기름·꿀 각 1섬, 황납(黃蠟) 20근을 주도록 하였다.</p>	<p>월산 대군(月山大君) 이정(李靖)4195) 의 아내 박씨(朴氏)가 상사를 당하였으므로, 쌀 40섬, 황두(黃豆) 20섬, 삼베·무명 각 1백 필, 밀가루 3섬, 기름·꿀 각 1섬, 황납(黃蠟) 20근을 주도록 하였다.</p>	<p>以月山大君婷妻朴氏遭喪，命賜米四十碩、黃豆二十碩、麻布·綿布各一百匹、麥末三碩、油·蜜各一碩、黃蠟二十斤。</p>
<p>燕山 52卷, 10年 (1504 甲子 / 명 홍치 (弘治) 17年) 1月 8日 (庚午) 3번째기사 박열이 인수 대왕 대비를 문안하고 돌아오다</p>	<p>승지 박열(朴說)이, 인수 대왕 대비에게 문안하고 돌아와 아뢰기를, “대비께서 하교하기를 ‘내가 나이 이미 늙었고, 본 것도 많으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다. 다만 주상(主上)이 본래 소찬[素膳]을 들지 못하니, 내가 만일 죽게 되더라도 3일 안에 육찬[肉膳]을 드리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하였다.</p>	<p>承旨朴說問安于仁粹大王大妃，還啓曰：‘大妃教云：‘予年齒既暮，所見又多，雖死何惜？但主上性不能素膳，予若不諱，三日之內，可進肉膳。’</p>
<p>연산 52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1월 9일 (신미) 2번째기사 일본에서 토산물을 바</p>	<p>일본국 상송포 나구야 능등 태수(日本國上松浦那久野能登太守) 등원 조신 너영(藤原朝臣賴永)이 사람을 보내와 토산물을 바쳤다.</p>	<p>日本國上松浦那久野能登太守藤原朝臣賴永遣人來獻土宜。</p>

치다		
연산 52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1월 10 일(임신) 1번째기사 대비전과 중궁에 쌀을 보내게 하다	전교하기를, “인수 대비전에 쌀 50섬, 자순(慈順) 대비전에 쌀 40섬, 중궁(中宮)에 쌀 40 섬을 당장 실어 들이라.” 하였다.	壬申/傳曰: “仁粹大妃殿米五十碩, 慈 順大妃殿米四十碩, 中宮米四十碩, 及 時輸入。”
연산 52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1월 14 일(병자) 3번째기사 홍시와 계를 들이게 하다	장원서(掌苑署)에 저장한 수박[西瓜]을 다 다방(茶房)4199) 에 들이고, 또 홍 시(紅柿) 및 언 계[凍蟹]를 생산되는 지방에서 봉하여 올리게 하였다.	命盡納掌苑署所藏西瓜于茶房。 且紅 柿及凍蟹, 令產處封進。
연산 52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1월 16 일(무인) 2번째기사 중미와 황두를 제안 대군 이현의 집으로 보내다	전교하기를, “중미(中米) 30섬과 황두(黃豆) 10섬을 제안 대군(齊安大君) 이현(李瑁)의 집 으로 실어 보내라.” 하였다.	傳曰: “中米三十碩、黃豆十碩, 輸送 于齊安大君瑁家。”
연산 52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1월 16 일(무인) 6번째기사 일본에서 토산물을 바 치다	일본국 대지하도 수호 겸 미주 태수(大知賀島守護兼尾州太守) 원 조신 반(源 朝臣幡)이 사람을 보내와 토산물을 바쳤다.	日本國大知賀島守護兼海州太守源朝 臣幡遣人來獻土宜。

<p>연산 52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1월 17 일(기묘) 2번째기사 맷쌀을 사옹원으로 실 어 보내게 하다</p>	<p>전교하기를, “사도시(司隲寺)의 맷쌀 10섬을 사옹원(司饗院)으로 실어 보내라.” 하였다.</p>	<p>傳曰： “其輸司隲寺粳米十碩于司饗院。”</p>
<p>연산 52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1월 19 일(신사) 2번째기사 이극균이 아내가 죽자 사위 성수재가 호상할 수 있도록 상경하기를 청하다</p>	<p>좌의정 이극균(李克均)이 아뢰기를, “신의 아내가 어제 죽었는데, 호상할 애들이 없습니다. 사위 고성 현령(固城縣令) 성수재(成秀才)가 임기가 차 갈릴 것인데, 추고(推考)할 일이 있어 전임 되지 못하였으니 올라와서 호상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된 대로 하라.” 하고, 또 쌀 20섬, 황두(黃豆) 10섬, 백지 1백 50권과 제용감(濟用監)의 무 명·삼베 각 50필, 기름·꿀 각 1섬, 황납(黃蠟) 20근, 안팍 널[棺槨] 1벌을 하 사하였다.</p>	<p>左議政李克均啓： “臣妻昨日死， 無子 弟可護喪。 女壻固城縣令成秀才考滿 當遞， 而以推考未遷， 乞令上來護 喪。” 傳曰： “依所啓。 且賜米二十 碩、黃豆十碩、白紙一百五十卷， 濟用 監緜布、麻布各五十四、油·蜜各一 碩、黃蠟二十斤、棺槨一件。”</p>
<p>연산 52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1월 21 일(계미) 2번째기사 죽은 성현에게 쌀·종 이 등을 하사하다</p>	<p>졸(卒)한 지중추부사 성현에게, 석회(石灰) 30섬, 숯 15섬, 좋은 칠[全漆] 6 되, 쌀·팥 합쳐 15섬, 종이 80권, 6장 붙인 유둔(油苧) 2장을 하사하였다.</p>	<p>賜卒知中樞成倪石灰三十碩、炭十五 碩、全漆六升、米·豆竝十五碩、紙 八十卷、六張付油苧二張</p>
<p>연산 52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1월 30 일(임진) 4번째기사 일본에서 토산물을 바</p>	<p>일본국 관서로 냉청진(關西路冷泉津) 가선 대부 동지중추부사(嘉善大夫同知中 樞府事) 신중(信重)이 사람을 보내와 토산물을 바쳤다.</p>	<p>日本國關西路冷泉津嘉善大夫同知中 樞府事信重遣人來獻土宜。</p>

<p>치다</p> <p>연산 52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2월 5일 (정유) 2번째기사 호초·수주를 들이게 하다</p>	<p>전교하기를, “호초 10섬, 수주(水紬) 1백 필을 대궐로 들이라.” 하고, 이어 정원(政院)에 묻기를, “인군은 절약하여 써야 하는 것이나, 부득이 쓸 데가 있으면 어찌할 것인가?” 하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부득이하면 쓰는 것이 가합니다.” 하였다.</p>	<p>○傳曰: “胡椒十碩、水紬一百匹入內。仍問政院曰: “人主須當節用, 然有不得已而用之, 則奈何?” 承旨等啓: “不得已則用之可也。”</p>
<p>연산 52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2월 5일 (정유) 5번째기사 일본에서 토산물을 바 치다</p>	<p>일본국 비전주 소성 천엽개(肥前州小城千葉介) 평 조신 원윤(平朝臣元胤)이 사람을 보내와 토산물을 바쳤다.</p>	<p>日本國肥前州小城千葉介平朝臣元胤 遣人來獻土宜。</p>
<p>연산 52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2월 7일 (기해) 6번째기사 일본에서 토산물을 바 치다</p>	<p>일본국의 서해도 비전주 하송포 삼률야 태수(西海道肥前州下松浦三栗野太守) 원만(原滿)이 사람을 보내와 토산물을 바쳤다.</p>	<p>日本國西海道(肥全州) [肥前州] 下松 浦三栗野太守(原滿) [源滿] 遣人來獻 土宜。</p>
<p>연산 52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2월 8일 (경자) 3번째기사 호초와 명주를 들이게 하다</p>	<p>전교하기를, “호초 10섬과 명주 1백 필을 대궐로 들이라.” 하였다.</p>	<p>傳曰: “胡椒十碩、紬一百匹入內。”</p>

<p>연산 52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2월 11 일(계묘) 2번째기사 일본에서 토산물을 바 치다</p>	<p>일본국 관서로 구주 도원수(關西路九州都元帥) 원정(元政)이 사람을 보내와 토산물을 바쳤다.</p>	<p>日本國關西路九州都元帥元政〔源政教〕遣人來獻土宜。</p>
<p>연산 52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2월 14 일(병오) 2번째기사 대마도에서 토산물을 바치다</p>	<p>대마주 태주(對馬州太州) 평 조신 종익성(平朝臣宗杙盛)이 사람을 보내와 토산물을 바쳤다.</p>	<p>對馬州太(州)〔守〕平朝臣宗杙盛〔平朝臣宗材盛〕遣人來獻土宜。</p>
<p>연산 52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2월 19 일(신해) 3번째기사 일본에서 토산물을 바 치다</p>	<p>일본국 관서도 살마주 도진(關西道薩摩州島津) 등원 조신 지구(藤原朝臣持久)가 사람을 보내와 토산물을 드렸다.</p>	<p>日本國關西道薩摩州島津藤原朝臣持久遣人來獻土宜。</p>
<p>연산 52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2월 21 일(계축) 2번째기사 멥쌀을 대내에 들이게 하다</p>	<p>전교하기를, “멥쌀 3섬을 대궐로 들이라.” 하였다.</p>	<p>傳曰：“粳米三碩入內。”</p>
<p>연산 52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p>	<p>전교하기를,</p>	<p>傳曰：“輸送米各三十碩于兩大妃本宮，米五十碩、黃豆二十碩于內需司。”</p>

<p>(弘治) 17년) 2월 26일(무오) 2번째기사 쌀 등을 두 대비에 보내다</p>	<p>“쌀 30섬씩을 두 대비의 본궁으로, 쌀 50섬과 황두(黃豆) 20섬을 내수사로 실어보내라.” 하였다.</p>	
<p>연산 52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2월 28일(경신) 4번째기사 일본에서 토산물을 바치다</p>	<p>일본국 비전주 상송포 나호야 보촌사(肥前州上松浦那護耶寶泉寺) 원우위(源祐位)와 서해로 풍축수(西海路豊筑守) 대우 팔랑 원 조신 사능(大友八郎源朝臣師能) 등이 사람을 보내와 토산물을 바쳤다.</p>	<p>日本國肥前州上松浦(那護耶) [那護野] 寶泉寺源祐位, 西海路豊筑守大友八郎源朝臣師能等遣人來獻土宜。</p>
<p>연산 52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3월 1일(임술) 1번째기사 호초를 들이게 하다</p>	<p>전교하기를, “호초 20섬을 대궐로 들이라.” 하였다.</p>	<p>朔壬戌/傳曰: “胡椒二十石入內。”</p>
<p>연산 52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3월 6일(정묘) 9번째기사 일본에서 토산물을 바치다</p>	<p>일본국 서해도 비전주 고구 군수(西海道肥前州高久郡守) 유마원정(有馬源政) 과 오도 우구수(五島宇久守) 원승(源勝) 등이 사람을 보내와 토산물을 드렸다.</p>	<p>日本國西海道肥前州高久郡守有馬源政, 五島宇久守源勝等遣人來獻土宜。</p>
<p>연산 52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3월 7일(무진) 5번째기사 황두·청마 등을 내수</p>	<p>전교하기를, “말장(末醬) 50섬, 황두(黃豆) 3백 섬, 청마(靑麻) 50다발을 내수사로 실어보내라.” 하였다.</p>	<p>傳曰: “末醬五十碩、黃豆三百碩、靑麻五十束, 輸送于內需司。”</p>

사에 보내게 하다		
연산 52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3월 8일 (기사) 4번째기사 두 대비전에 쌀을 보 내다	전교하기를, “인수 대비전(仁粹大妃殿)에 중미(中米) 2백 섬, 자순(慈順) 대비전에 중미 1 백 섬을 본궁(本宮)으로 실어 보내라.” 하였다.	傳曰: “仁粹大妃殿中米二百碩, 慈順 大妃殿中米一百碩輸送于本宮。”
연산 52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3월 8일 (기사) 5번째기사 돌 줍는 군사들에게 줄 황두와 소금을 사 용원에 보내게 하다	전교하기를, “돌 줍는 군사들에게 공급할 좌반(佐飯)으로, 황두(黃豆) 20섬과 소금 2섬을 사용원(司饗院)에 실어 보내라.” 하였다.	傳曰: “拾石軍供饋佐飯, 黃豆二十 碩、鹽二碩輸送于司饗院。”
연산 52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3월 8일 (기사) 6번째기사 곡식을 들이게 하다	전교하기를, “사도시(司導寺)의 멍쌀 5섬, 중미(中米) 10섬, 황두 10섬을 대궐로 들이라.” 하였다.	傳曰: “司導寺粳米五碩、中米十碩、 黃豆十碩入內。
연산 52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3월 9일 (경오) 2번째기사 내관 임세무 등을 심 문하다	전교하기를, “내관(內官) 임세무(林世茂) 등이 대내(大內)의 고양이로 사용원(司饗院)에서 쥐를 잡다가 고양이를 놓쳤으니, 금부(禁府)에서 형장 심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傳曰: “內官林世茂等, 以大內猫兒, 捕鼠于司饗院猫逸, 其令禁府刑訊。”
연산 52권, 10년	대마주 태수(對馬州太守) 평 조신 종익성(平朝臣宗杳)과 대관(代官) 평 조신	對馬州太守平朝臣宗杳 [平朝臣宗

<p>(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3월 9일 (경오) 5번째기사 대마도에서 토산물을 바치다</p>	<p>종 병부 소보 성친(宗兵部少輔盛親) 등이 사람을 보내와 토산물을 드렸다.</p>	<p>材盛]、代官平朝臣宗兵部少輔盛親等遣人來獻土宜。</p>
<p>연산 52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3월 10일(신미) 3번째기사 박성림·박순장 등에게 곡식을 하사하다</p>	<p>전교하기를, “박성림(朴成林)에게, 쌀·황두(黃豆) 합하여 10섬, 박순창(朴順昌)·김계창(金繼昌)에게 쌀·황두 합하여 4섬씩을 주라.” 하였다.</p>	<p>傳曰：“其賜朴成林米黃豆并十碩，朴順昌、金繼昌米黃豆并各四碩。”</p>
<p>연산 52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3월 11일(임신) 5번째기사 대궐에서 뽕을 기르다</p>	<p>예조가 아뢰기를, “지금 날씨가 아직도 차니, 친잠(親蠶) 때에 뽕잎이 아직 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대궐에서 뽕을 토와(土窩)에 길렀다.” 하였다.</p>	<p>禮曹啓：“今日候尙寒，恐親蠶時桑葉未生。” 傳曰：“已於大內養桑於土窩。”</p>
<p>연산 52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3월 14일(을해) 16번째기사 일본에서 토산물을 바치다</p>	<p>일본국 사해도 비후주 팔대 태수(西海道肥後州八代太守) 원 조신 교신(源朝臣教信)이 사람을 보내와 토산물을 바쳤다.</p>	<p>日本國西海道肥後州八代太守源朝臣教信遣人來獻土宜。</p>
<p>연산 52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3월 16</p>	<p>일본국 관서로 비후주(關西路肥後州) 국지 등원 조신 위행(菊池藤源朝臣爲幸)과, 살주 이집원 우진 우주 태수(薩州伊集院寓鎮隅州太守) 등희구(藤熙久) 등이 사람을 보내와 토산물을 바쳤다.</p>	<p>日本國關西路肥後州菊池藤源朝臣爲幸 [菊池藤原朝臣爲幸]、薩〈摩〉州伊集院寓鎮隅州太守藤熙久等，遣人</p>

일(정축) 9번째기사 일본에서 토산물을 바 치다		來獻土宜。
연산 52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3월 17 일(무인) 12번째기사 일본에서 토산물을 바 치다	일본국 관서로(關西路) 축·풍·비삼주 총태수(筑豊肥三州總太守)의 태재부 도독 사마 소경(太宰府都督司馬小卿) 등원 조신 정상(藤原朝臣政尙)이 사람을 보내 와 토산물을 바쳤다.	日本國關西路筑、豊、肥三州總太守 太宰府都督司馬小卿藤原朝臣政尙 〔藤原朝臣政尙〕遣人來獻土宜。
연산 52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3월 21 일(임오) 4번째기사 제용감의 무명과 베를 들이게 하다	전교하기를, “제용감의 무명·삼베 각 1백 50필, 사섬시의 명주[綿紬] 50필, 의영고(義盈 庫)의 호초 5섬을 대궐로 들이라.” 하였다.	○傳曰：“濟用監緜布、麻布各一百五 十四，司贍寺綿紬五十四，義盈庫胡椒 五碩入內。”
연산 52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3월 25 일(병술) 9번째기사 멥쌀을 들이게 하다	전교하기를, “멥쌀 2섬을 대내로 들이라.” 하였다.	傳曰：“粳米二碩入內。”
연산 52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3월 29 일(경인) 5번째기사 매산을 봉해 올리게 하다	전라도 관찰사 김영정(金永貞)에게 유시하기를, “매산(莓山)을 맛이 좋은 것으로 가려 많이 봉해 올리라.” 하였다.	諭全羅道觀察使金永貞曰：“莓山擇其 味好者多封進。”

<p>연산 52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4월 8일 (기해) 1번째기사 젊고 광패하거나 늙고 용렬한 관리를 파직시 키게 하다</p>	<p>전교하기를, “상수리잎 떡[橡葉餅]을 어찌하여 지금껏 올리지 않느냐?” 하였는데, 좀 있다가 내자시 주부(內資寺主簿) 최급(崔偈)이 가져다 드리며, 아뢰기를, “금년엔 날이 차서 상수리잎이 아직 피지 않았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하니, 전교하기를, “이것이 무슨 관원이기에, 그 말이 이러하나? 빨리 도태(陶汰)해 버려야 하겠 다. 또 사헌부로 하여금 〈일없는 관원〉 도태하는 법을 시행하게 하라. 무릇 용렬한 자가 관직에 있으면서 하는 일이 없으면서 혹은 재상의 어질고 어질 지 못함을 의논하고, 혹은 시정(時政)의 득실을 논란하는데, 이는 매우 불가 하니, 그중에서 나이 젊고 광패(狂悖)한 자와 늙고 용렬 혼암한 자를 모두 도 태해 버리라.” 하였다.</p>	<p>傳曰：“橡葉餅何至今不薦乎?” 俄而, 內資寺主簿崔偈持獻曰：“今年日寒, 橡葉未抽, 故致晚耳。” 傳曰：“此何 等官, 其言乃如是? 當亟汰去。 且令 司憲府, 行沙汰之法。 凡庸劣者在官 無所事, 或議宰相賢否, 或論時政得 失, 此甚不可。 其年少狂悖者及年老 庸暗者並汰去。”</p>
<p>연산 52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4월 14 일(을사) 2번째기사 추호자의 시를 내리고 뜻을 풀이하게 하다</p>	<p>(전략)소선은 서울의 해당 관사(官司)에서 진공하게 하고 외방의 것은 감하여 야겠다.”(후략)</p>	<p>(전략) 且素膳只令京中該司供進, 而 外方則可減。”(후략)</p>
<p>연산 52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4월 29 일(경신) 6번째기사 일본에서 토산물을 바 치다</p>	<p>일본국 관서로 안예주 미작수(關西路安藝州美作守) 소조천 평 지평(小早川平 持平)과 서해로 축전주 종상군 지수(西海路筑前州宗像郡知守) 종상 조신 씨경 (宗像朝臣氏卿) 등이 사람을 보내와 토산물을 바쳤다.</p>	<p>日本國關西路安藝州美作守小早川平 持平、西海路筑前州宗像郡知守宗像 朝臣氏卿等遣人來獻土宜。 燕山君日記卷第五十二</p>
<p>연산 53권, 10년</p>	<p>승정원이 아뢰기를,</p>	<p>承政院啓：“大妃昇遐日久, 上體有未</p>

<p>(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윤4월 2 일(임술) 2번째기사 승정원에서 소찬의 중지를 청하다</p>	<p>“대비께서 승하하신 지 오래이고, 상체(上體) 미령하신 징후가 있으니 소찬[素膳]을 드실 수 없습니다. 신들이 벌써부터 계청(啓請)하고 싶었지만 아직 성복을 못하였기 때문에 감히 청하지 못하였습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상전(上殿)4320) 께서 반찬 드시기를 기다려 들겠노라.”</p> <p>하였다.</p>	<p>寧之候，不可進素膳。 臣等固欲啓請，因未成服，故未敢請耳。” 傳曰：“竣上殿進膳，行當御之。”</p>
<p>연산 53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윤4월 2 일(임술) 3번째기사 유순 등이 소찬의 중지를 청하다</p>	<p>유순(柳洵) 등이 아뢰기를, “지존(至尊)의 지위에서는 오래도록 소찬을 드실 수 없습니다. 또 대행 대비 유교(遺敎)에 이르기를 ‘3일 내로 육찬[肉膳]을 권하여야 한다.’ 하셨기에 감히 아뢰나이다.”</p> <p>하니, 전교하기를, “정승의 말은 의당 이러하여야 한다. 내가 비위 병[脾證]이 있어, 지금은 약을 쓰고 상전 역시 이 징후가 있어 나보다도 더하다. 또 대행 대비 역시 이 병으로 하여 날로 점점 쇠약해져서 큰일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무릇 효도는 애통함을 위주한다 하지만, 그로 하여 몸을 상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만일 병을 무리하여 상사를 거행하다가 몸을 상하면 후회해도 미치지 못한다. 또 아버지와 어머니로 말한다면 한몸 같다고는 하지만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중하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도 차등이 있는데, 더구나 조모이겠느냐? 그러나 상전(上殿)께서 아직도 육찬을 드시지 않으니 내가 혼자 들 수는 없다.”</p> <p>하였다. 순 등이 아뢰기를, “전하께서는 온갖 일을 보시는 노고가 계시니, 상전과는 다릅니다. 또 대행 대비 유교에 이르기를 ‘3일 안에 육찬을 권하여야 한다.’고 하셨으니, 대비께서 어찌 예사로 생각하여 이런 유교를 전하셨겠습니까? 기체를 보양(保養)하여, 효도를 마침이 있게 하셔야 합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柳洵等啓：“至尊之位，不可久行素膳。 且大行遺教云：‘三日之內，當勸肉膳。’ 故敢啓。” 傳曰：“政丞言當如是，予有脾證，時方進藥。 上殿亦有此證，尤深於予。 且大行大妃亦以此證，日漸(疲) [瘦] 弱，以至大故。 凡爲孝，雖云主哀，然毀不滅性。 若強疾持喪，則後悔何及？ 以父母言之，則雖爲一體，而父重於母。 父母之間尙有差等，況祖母乎？ 然上殿時未進肉膳，予不可獨御。” 洵等啓：“殿下有萬機之勞，與上殿有異。 且大行大妃遺教云：‘三日之內，當勸肉膳。’ 大妃豈偶然計之，而傳此教哉？ 當保養氣體，以終其孝。” 傳曰：“然則予當御之。”</p>

	“그렇다면 내가 들겠다.” 하였다.	
연산 53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윤4월 4 일(갑자) 2번째기사 좋은 용안육과 여지를 사오게 하다	전교하기를, “앞서, 용안육(龍眼肉)과 여지(荔枝)를 무역해 왔는데, 모두 좋지 못하니 성절 사(聖節使) 가는 편에, 좋은 것으로 선택해서 사오게 하라.”	傳曰: “前此買來龍眼、荔枝皆不好, 其令聖節使之行, 擇好買來。”
연산 53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윤4월 4 일(갑자) 3번째기사 각도에 육찬을 바치게 하다	승지 이의손(李懿孫)이 아뢰기를, “각도로 육찬을 봉하여 바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承旨李懿孫啓: “請令各道, 封進肉 膳。” 傳曰: “可。”
연산 53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윤4월 7 일(정묘) 3번째기사 일본에서 토산물을 바 치다	일본국 상송포호자(上松浦呼子) 일기주 대관(壹岐州代官) 목산 십랑 원 정(牧 山十郎源正)이 사람을 보내어 와서 토산물을 드렸다.	日本國上松浦呼子壹岐州代官牧山十 郎源正遣人來獻土宜。
연산 53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윤4월 20일(경진) 12번째기 사 술과 고기를 승정원에	선운(宣醞)4333) 과 육찬을 승정원에 하사하고, 이때부터 고기를 쓰기 시작하 였다.	下宣醞及肉饌于承政院, 自是始用肉。

<p>내리다</p> <p>연산 53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윤4월 27일(정해) 7번째기사 허침 등이 승전색이 더디 드나든 일 등을 간한 자들을 아리다</p>	<p>(전략)전곶전(箭串田)은 본시 무예를 사열하는 곳으로서 밭갈이를 못하게 한 것은, 최숙생(崔淑生)이 지평(指平)이었을 때, 아뢰는 것입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무예를 사열하는 장소는 나라 땅이다. 내농포(內農圃)이 넣어, 외나 과일을 심어 바치게 하는 것도 역시 위를 위하는 일인데, 무슨 경하고 중한 것이 있어 이렇게 아뢰는단 말이나? 반드시 정실이 있을 것이니, 잡아다 국문하라.”(후략)</p>	<p>琛等又考啓: “箭串田本闕武之地, 勿令耕墾事, 崔淑生爲持平時所啓。” 傳曰: “闕武之場, 國土也。 屬於內農圃, 而種瓜菓供進, 亦爲上也。 有何輕重, 而如此啓之乎? 其必有情, 拿來鞠之。” 政丞等又書啓:</p>
<p>연산 53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5월 3일 (임진) 3번째기사 성준을 정승과 의금부 당상으로 하여금 국문 케 하다</p>	<p>(전략) 전일 이극균(李克均)이 병들었을 때에, 혹은 별감(別監)을 보내고 혹은 중사(中使)를 보내어 줄을 이어 문병하고, 여러 번 음식을 하사하였었다. 또한 인군의 녹을 먹으니 은혜 역시 지극한데, 도리어 흉악하고 사특한 마음을 가지고 무사들을 집에 불러들였으니, 변방의 준비를 위한 것이라면 가한 일이지만, 집에 있으면서 무인들을 모아들였으니, 이는 다름 아니라 인심을 수합하여 반역을 하려 한 것이다. 너도 극균의 술책 속에 빠져 그런 짓을 하였느냐? 신하로서 인군 섬기기를 진실하게 하여야 하는데, 밖으로는 인군을 섬기는 체 하면서, 안으로는 그렇지 않다면 될 일이나. 너를 정승이 되게 한 것이 누구냐?”(후략)</p>	<p>(전략) 前日李克均病時, 或遣別監, 或遣中使, 絡繹問病, 累賜食物。 且食君之祿, 恩亦至矣。 反懷凶邪之心, 招接武士於家, 若防禦邊備猶可也, 在家而聚武夫, 是無他, 欲收人心, 爲不軌也。 爾亦入克均術中, 而爲此乎? 人臣當事君以實, 外爲事君之容, 而內則不然可乎? 使汝爲三公, 誰所致也?”(후략)</p>
<p>연산 53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5월 7일 (병신) 2번째기사 장흥 부부인 신씨에게 곡식과 면포를 하사하 다</p>	<p>명하여 신씨(申氏)에게 쌀·콩 각 50섬, 면포·정포 각 2백 50필을 주었다.</p>	<p>命賜申氏米、豆各五十碩, 綿布、正布各二百五十匹。</p>
<p>연산 53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p>	<p>전교하기를,</p>	<p>傳曰: “輸田米一百碩于內需司。”</p>

<p>(弘治) 17년) 5월 7일 (병신) 5번째기사 쌀을 내수사로 보내게 하다</p>	<p>“전미(田米) 1백 섬을 내수사(內需司)로 실어 보내라.” 하였다.</p>	
<p>연산 53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5월 7일 (병신) 5번째기사 쌀을 내수사로 보내게 하다</p>	<p>전교하기를, “전미(田米) 1백 섬을 내수사(內需司)로 실어 보내라.” 하였다.</p>	<p>傳曰：“輸田米一百碩于內需司。”</p>
<p>연산 53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5월 11일(경자) 4번째기사 내관들의 금주령에 대해 논하다</p>	<p>전교하기를, “근시 내관들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법을 전에 이미 세웠는데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지금도 기어이 마시는 자가 있으니, 이 역시 왕명을 거역하고 위를 능멸하는 일이다. 지금 풍속을 고치는 때이니, 모두 중한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어떠한가? 재상들에게 물어보라. 금법을 범한 내관 이공신(李公信)·김새(金璽)를 사죄(死罪)로 가두라.” 하고, 또 승정원에 묻기를, “이렇게 죄주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국가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였는데 기어코 마시니, 그 죄가 큼니다. 그러나 사형은 중한 것 같습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어찌 내관을 비호하는가? 국문하라. 지금 풍속을 고치는 때이니, 의당 중형을 주어야 한다. 행형할 때 내관은 모두 가서 차례로 서서 보라. 또 재상들도 마시라고 하면 마시지 않고 경연(經筵)에는 마시고 들어오니, 이도 모두 잘못</p>	<p>傳曰：“近侍內官等，勿令飲酒。曾已立禁，而猶不知懼，今有強飲者，是亦逆命、陵上也。今當革俗之時，皆置重刑何如？問于宰相。其犯禁內官李公信、金璽以死罪囚之。”又問于承政院曰：“如此科罪何如？”承旨等啓：“國家勿令飲酒，而強飲之，其罪甚矣。然死刑則似重。”傳曰：“何庇護內官？其鞫之。今當革俗之時，固當重刑。行刑時，內官皆往序立。且宰相亦有命飲則不飲，而於經筵則飲而入，此皆非也。”柳洵等啓：“金璽等以近侍之人，不從上教而飲酒，其罪重矣，然極刑則似重。”臺諫閔暉等啓：“飲酒之人前已科罪，而金璽等逆命強</p>

	<p>이다.” 하였다. 유순(柳洵) 등이 아뢰기를, “김새 등이 가까이 모시는 사람으로서 하교를 따르지 않고 술을 마셨으니, 그 죄가 중합니다. 그러나 극형은 과중한 것 같습니다.” 하고, 대간 민휘(閔暉) 등은 아뢰기를, “술 마시는 사람을 전에도 이미 죄주었는데, 김새 등이 명을 거역하고 기어이 마셨으니, 중형을 내리는 것이 지당합니다.” 하였는데, 순(洵) 등에게 전교하기를, “명을 거역한 사람을 둔들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아뢰는 것인가. 제서를 기훼한 율[制書棄毀律]로 조율(照律)하되, 삼복(三覆)하여 아뢰라.” 하니, 순 등이 아뢰기를, “지금 성상의 하교를 들으니 지당하십니다.” 하였다.</p>	<p>飲，重刑允當。” 傳于洵等曰：“逆命之人存之何用，而如此啓之耶？其以棄毀制書照律，啓三覆。” 洵等啓：“今聞上教，允當。”</p>
<p>연산 53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5월 14 일(계묘) 5번째기사 은 쟁반을 들이게 하 다</p>	<p>전교하기를, “발 있는 은 쟁반[銀椌] 10개를 지어 대궐로 들이라.” 하였다.</p>	<p>傳曰：“造有足銀椌十坐入內。”</p>
<p>연산 53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5월 18 일(정미) 4번째기사 관원이 혜안전의 대제 후 남은 고기를 바치</p>	<p>혜안전(惠安殿)에 여름 대제(大祭)를 모신 뒤에 관계 관원이 번육(燔肉)4387)을 바치니, 전교하기를, “혜안전은 한 위(位)뿐이요, 전체를 올리는 것도 아니니, 그 올리고 남은 고기는 사옹원(司饗院)에 바치라.” 하였다.</p>	<p>惠安殿夏享大祭後，該員進燔肉，傳曰：“惠安殿只一位，而非體薦，其薦餘犧牲，進于司饗院。”</p>

<p>다</p> <p>연산 53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5월 26 일(을묘) 5번째기사 잔치 때 대비전에 드 릴 물품을 들이게 하 다</p>	<p>전교하기를, “진연(進宴)할 때 대비전에 드릴 수주(水紬) 30필, 무명 1백 필, 정포(正布) 1 백 2필, 흰 모시 베 20필, 오래 묵은 무명 베 1백 필, 호초 2섬을 대궐로 들 이라.” 하였다.</p>	<p>傳曰: “進宴時, 大妃殿供進水紬三十 匹、絺布一百匹、正布一百二匹、白 苧布二十四、久陳絺布一百三十三 匹、胡椒二碩入內。”</p>
<p>연산 53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5월 29 일(무오) 1번째기사 대초와 호초를 들이게 하다</p>	<p>전교하기를, “상의원·제용감의 남색 수주(水紬) 각 2백 필과 흰색 대초(大綯) 각 50필, 의 영고(義盈庫) 호초 10섬을 대궐로 들이라.” 하였다.</p>	<p>傳曰: “尙衣院、濟用監藍水紬各二百 匹、白代綯各五十四匹、義盈庫胡椒十碩 入內。”</p>
<p>연산 54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6월 4일 (계해) 1번째기사 김천령·민휘 등을 사 형에 처하다</p>	<p>(진략) 전교하기를, “이는 오로지 곧 천령의 짓인데, 전일에 재주를 믿고 마음을 오만(傲慢)히 한 자이다. 내가 일찍 중국의 서고(西菰)4432) 를 보고 싶어하였거늘, 그때에 천 령이 크게 주장하여 막았다. 과연 임금이 다른 나라의 진기한 물건을 구하면 말하여 막아야 하는가? 이것이 어찌하여 그르다고 감히 말하는가? 이로 말미 암아 이 사람이 반드시 하였으리라는 것을 안다. 아뢰 대로 능지·적몰하고, 그 자식은 결장(決杖)하여 종을 만들고, 그 나머지 민휘 등은 처음부터 사수 (死囚)로 가두라. 또 천령·덕승은 효수(梟首)하여 전시(傳屍)하고, 권헌 등의 소(疏)는 삭제하여 버리라.” 하였다.</p>	<p>傳曰: “此專是千齡所爲, 而前日恃才 傲心者也。 吾嘗求見中朝西瓜, 其時 千齡大唱止之。 果若人君求他國珍怪 之物, 則可言而止之。 是何爲非而敢 言也? 由是知此人必爲也。 其依所啓, 凌遲、籍沒, 其子決杖爲奴。 其餘閔 暉等始以死囚囚之。 且千齡、德崇梟 首、傳屍, 權憲等疏其削去。”</p>
<p>연산 54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p>	<p>명하여 수주(水紬)4462) ·백저포(百苧布)4463) 각 30필(匹), 쌀 50석(碩)을 대비전(大妃殿)의 본궁(本宮)으로 날라 보내게 하였다.</p>	<p>命入水紬、白苧布各三十四, 米五十 碩, 輸送大妃殿本宮。</p>

<p>(弘治) 17년) 6월 5일 (갑자) 3번째기사 모시와 쌀을 대비전에 보내다</p>		
<p>연산 54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6월 7일 (병인) 2번째기사 왕후 족친의 잔치를 위해 각도에서 물품을 거두다</p>	<p>전교하기를, “인양전(仁陽殿)의 가가(假家)4468) 는 기일을 정하여 짓기를 마치되 천 사람이 앉을 만하게 하라. 왕후 족친의 잔치는 풍족하지 않아서는 안되니, 각도(各道)로 하여 금 물선(物膳)을 많이 봉진(封進)하게 하라.” 하였다.</p>	<p>傳曰: “仁陽殿假家, 刻日畢造, 令可坐千人。 且王后族親宴, 不可不豐, 令各道物膳多數封進。</p>
<p>연산 54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6월 10일(기사) 1번째기사 경기·강원도 등에 잔치 때 쓸 생선을 바치게 하다</p>	<p>경기·강원·황해도 관찰사에게 일러 진연(進宴) 때에 쓸 생선 1천 5백 마리[尾]를 봉진(封進)하게 하였다.</p>	<p>己巳/諭京畿、江原、黃海道觀察使, 進宴時所用生鮮一千五百尾封進。</p>
<p>연산 54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6월 12일(신미) 6번째기사 비단을 들이게 하다</p>	<p>명하여 황견(黃絹) 2백 50필(匹), 호초(胡椒) 50 석을 들이게 하였다.</p>	<p>命入黃絹二百五十四、胡椒五十碩。</p>
<p>연산 54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6월 13</p>	<p>일본국 서해도(日本國西海道)의 축전·대마 양주 수호대관(筑前對馬兩州守護代官) 평 조신 중 삼랑무가(平朝臣宗三郎茂家)가 사람을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p>	<p>○日本國西海道筑前、對馬兩州守護代官平朝臣宗三郎茂家遣人來獻土宜。 對馬州平朝臣宗彥七盛順遣人來</p>

일(임신) 6번째기사 일본과 대마도에서 토 산물을 바치다	치고, 대마주의 평 조신 종언칠성순(宗彦七盛順)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獻土宜。
연산 54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6월 18 일(정축) 3번째기사 대마도에서 토산물을 바치다	대마주 태수(對馬州太守) 평 조신 종익성(平朝臣宗杙盛)이 사람을 보내와 토 산물을 바쳤다.	對馬州太守平朝臣宗杙盛 [平朝臣宗 材盛] 遣人來獻土宜。
연산 54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6월 21 일(경진) 4번째기사 규화배와 앵무배를 만 들게 하다	전교하기를, “규화배(葵花盃) 1천, 앵무배(鸚鵡盃) 1백을 구워 만들라.” 하였다.	傳曰: “葵花盃一千、鸚鵡盃一百燔 造。”
연산 54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7월 7일 (을미) 10번째기사 은구어를 더 바치게 하다	전교하기를, “경상도로 하여금 은구어(銀口魚) 1만 마리[眉]를 별례(別例)로 바치게 하 라.” 하였다.	傳曰: “令慶尙道別進銀口魚一萬尾。
연산 54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7월 15 일(계묘) 7번째기사 산누에고치를 바치게	팔도(八道)에 유서(諭書)하기를, “산누에 고치를 채집하여 바치되, 해마다 상례(常例)로 하라.” 하였다.	諭書于八道曰: 採山繭以進, 歲以爲常。

<p>하다 연산 54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7월 22 일(경술) 4번째기사 들깨를 대내에 들이게 하다</p>	<p>전교하기를, “임자(荏子)4587) 5석(石)을 대내(大內)에 들이라.” 하였다.</p>	<p>傳曰: “荏子五石入內。”</p>
<p>연산 54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7월 24 일(임자) 3번째기사 장원서에 민가에서 구 해서 바친 과일의 값 을 묻다</p>	<p>전교하기를, “장원서(掌苑署)가 일찍이 민가에서 절과(節果)를 구해 바쳤는데, 그 값으로 얼마를 주었는지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p>	<p>傳曰: “掌苑署嘗取節菓於民間以獻, 給其價幾許乎? 考啓。”</p>
<p>연산 54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7월 28 일(병진) 11번째기사 소의 내장을 대내에 들이게 하다</p>	<p>전교하기를, “식치우(食治牛)의 비(脾)4617) 와 신(腎)4618) 각 1부(部)를 대내에 들이 라.” 하였다.</p>	<p>傳曰: “食治牛脾、腎各一部內入。”</p>
<p>연산 54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7월 29 일(정사) 6번째기사 일본에서 토산물을 바 치다</p>	<p>일본국 상송포(日本國上松浦) 나구야 능등수 등 조신 뇌영(那久野能登守藤朝 臣賴永)·비전주(肥前州) 평호 우진주 태수 원풍구(平戶寓鎮州太守源豊久) 등이 사람을 보내와 토산품을 바쳤다.</p>	<p>日本國上松浦那久野能登守藤<原> 朝臣賴永、肥前州平戶寓鎮〔肥〕州 太守源豊久等遣人來獻土宜。 燕山君日記卷第五十四</p>

<p>연산 55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8월 3일 (경신) 1번째기사 서교에서 농사를 관람 하고 망원정에 이르러 종재들을 공궤하고, 술 을 하사하다</p>	<p>왕이 서교(西郊)에서 농사를 관람하고 망원정(望遠亭)에 이르러 종재(宗宰)·홍문관·사헌부·사간원 및 제장(諸將)을 공궤(供饋)하고, 아래로 팽배(彭排)·대졸(隊卒)에 이르기까지 모두 술을 하사하였다. 이어 호종(扈從)한 문신에게 명하여 ‘화선은 돌아가고 어주만 남아 있네[畫船既去有漁舟]’라는 시구를 제목으로 시를 지어 올리도록 하였다. 시를 지어 올리니, 전교하기를, “성희안(成希顔)이 지은 것은 제목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니, 환궁(還宮)하여 다시 지으라.” 하고, 수영(遊泳)하는 자들을 헤엄치도록 하여 차등 있게 상주었으며, 병조좌랑 이부(李頰)로 하여금 헤엄칠 자들을 북쪽 언덕에서 남쪽 언덕으로 가도록 하였는데, 헤엄치는 사람들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갔으므로, 왕이 명령을 어겼다 하여 이부를 국문하였다. 환궁한 뒤에 승정원이 문안하니, 전교하기를, “무릇 거동에는 승정원뿐만 아니라, 의정부·육조(六曹)·홍문관·대간(臺諫)들도 모두 문안하도록 하라.” 하였다.</p>	<p>○庚申/王觀稼于西郊，至望遠亭，命饋宗·宰、弘文館、臺諫及諸將，下至彭排隊卒並賜酒。仍命扈從文臣，以畫船歸去有漁舟爲題，製詩以進。及製進，傳曰：“成希顔所製，不合題意，還宮更製。命善游者游水，賞之有差。使兵曹佐郎李頰教游者，自北岸游至南岸，而游者自南岸而北，王以爲違命鞫頰。還宮後，承政院問安，傳曰：“凡行幸，非惟承政院，議政府、六曹、弘文館、臺諫並令問安。”</p>
<p>연산 55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8월 10일(정묘) 7번째기사 경릉 수릉관 한위가 능이 금표 안에 있어 채소 대기가 어렵다고 아뢰다</p>	<p>경릉(敬陵) 수릉관(守陵官) 한위(韓偉)가 아뢰기를, “능이 금표 안에 들어 있어 사람이 통하지 못하므로 공상하는 채소를 대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다른 관사(官司)에서 진배(進排)하도록 하라.” 하였다.</p>	<p>敬陵守陵官韓偉啓：“陵入禁標，人物不通，供上菜蔬難繼。”傳曰：“令他司進排。”</p>
<p>연산 55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p>	<p>전교하기를, “쌀 2백 섬을 내수사로 실어보내고, 면포 2백 50필과 정포(正布) 2백 필을</p>	<p>傳曰：“米二百碩輸送于內需司，絁布二百五十四、正布二百匹入內。”</p>

<p>(弘治) 17년) 8월 11일(무진) 2번째기사 내수사에 쌀 2백 섬을 보내고, 대내에 면포 2백 50필 등을 들이게 하다</p>	<p>대내에 들이라.” 하였다.</p>	
<p>연산 55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8월 11일(무진) 7번째기사 호초 20섬을 궐내로 들이게 하다</p>	<p>전교하기를, “호초 20섬을 궐내에 들이라.” 하였다.</p>	<p>傳曰：“胡椒二十碩入內。”</p>
<p>연산 55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8월 14일(신미) 9번째기사 윗사람을 능멸한다 하여 궐정의 공궤 및 별례의 전교 외에 선운을 내리지 말게 하다</p>	<p>전교하기를, “무릇 재상의 모임에 반드시 선운(宣醞)을 내리는 것은 재상을 중하게 여김인데, 이와 같이 존대하므로 교만 방종하게 윗사람을 능멸하기까지 한다. 이 뒤로는 궐정(闕庭)의 공궤(供饋) 및 별례(別例)의 전교 외에는 선운을 내리지 말라.” 하였다.</p>	<p>傳曰：“凡宰相會，必下宣醞，重宰相也。如此尊待，故遂致驕縱，以至陵上。今後闕庭供饋及別例傳教外，勿賜宣醞。”</p>
<p>연산 55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8월 19일(병자) 10번째기사 청밀 10섬을 사옹원에 실어 보내게 하다</p>	<p>전교하기를, “청밀(淸蜜) 10섬을 사옹원(司饗院)으로 실어보내라.” 하였다.</p>	<p>傳曰：“淸蜜十碩，輸送于司饗院。”</p>

<p>연산 55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8월 26 일(계미) 1번째기사 경미 5섬과 중미 10섬 을 궐내에 들이게 하 다</p>	<p>“경미(粳米) 5섬과 중미(中米) 10섬을 궐내에 들이라.” 하였다.</p>	<p>癸未/傳曰: “粳米五碩、中米十碩入 內。”</p>
<p>연산 55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8월 29 일(병술) 2번째기사 충청·전라·경상 3도에 홍시를 보내올리게 하 고, 김불 등을 장형에 처하다</p>	<p>전교하기를, “충청·전라·경상 3도에서 형체가 등근 연하 홍시(紅柿)를 봉해 올리도록 하고, 사용원 각 색장(色掌) 김불(金佛)·석산로(石山老) 등은 게[蟹]를 잡아 올리지 아니하였으니, 형조로 내려 장 80에 처하고, 풍저창(豐儲倉)의 쌀 30석을 좌 응방에 실어 보내라.” 하였다.</p>	<p>傳曰: “令忠淸、全羅、慶尙三道, 封 進體圓軟紅柿子。 司饗院各色掌金 佛、石山老等, 不捕蟹以進, 下刑曹, 決杖八十。 豐儲倉米三十碩, 輸送于 左鷹坊。”</p>
<p>연산 55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9월 8일 (을미) 1번째기사 팔도로 하여금 각각 산 기러기 3백 수를 진상하도록 하다</p>	<p>전교하기를, “팔도로 하여금 각각 생안(生雁) 3백 수를 진상하도록 하라.” 하였다.</p>	<p>乙未/傳曰: “令八道各進生雁三百 首。”</p>
<p>연산 55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9월 8일 (을미) 3번째기사</p>	<p>전교하기를, “호초 30섬을 궐내에 들이라.” 하였다.</p>	<p>傳曰: “胡椒三十碩入內。”</p>

호초 30섬을 궐내에 들이게 하다		
연산 55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9월 11 일(무술) 1번째기사 외방에 노루 그물 3백 벌을 더 마련하도록 전교하다	전교하기를, “사복시(司僕寺)로 하여금 노루 그물[獐綱] 1백 벌을 좌옹방(左鷹坊)으로 보 내고, 또 외방으로 하여금 3백 벌을 더 마련하도록 하라.” 하였다.	戊戌/傳曰: “令司僕寺, 獐綱一百, 送 左鷹坊。 又令外方加備三百領。”
연산 55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9월 21 일(무신) 5번째기사 국기일에 대비전과 세 자에게도 육선을 쓰도 록 하다	전교하기를, “명일은 국기(國忌)인데, 대비께서 나와 중궁에게 육선(肉膳)을 권하시니, 대 비전과 세자에게도 육선을 쓰도록 하라.” 하였다.	傳曰: “明日國忌, 大妃勸予及中宮肉 膳。 大妃殿及世子, 并用肉膳。”
연산 56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10월 15 일(임신) 3번째기사 진공하는 물건을 사용 원이 판별하게 하여, 나쁜 것은 국문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무릇 진공(進供)하는 물건은 그 즉시 봉진(封進)하여 부패하지 않도록 하고, 녹미(鹿尾)는 모름지기 꼬리가 있는 것으로 봉진하도록 하라. 관찰사도 부엌 반찬의 좋고 나쁨을 보아 포핍(褒貶)을 하는데, 하물며 진공하는 물건이겠는 가. 이 뒤로는 사용원에서 그 맛과 색을 고찰하여, 그 나쁜 것은 아뢰어 국문 하도록 하고, 이조에서는 장부에 기록하여 6개월 안에 세 차례 국문 당하는 자가 있으면, 비록 관찰사가 전최(殿最)에 상등으로 하였더라도 파면토록 하 라.” 하였다.	傳曰: “凡供進之物, 其趁時封進, 毋 令腐毀, 鹿尾須擇有尾者封進。 觀察 使視廚饌善惡爲褒貶, 況供進之物乎? 今後司饗院考其味色, 其惡者啓鞠之。 於吏曹錄簿, 六朔內有被鞠至三者, 則 雖觀察使置最, 而罷黜之。”
연산 56권, 10년	어서를 내리기를,	下御書曰:

<p>(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10월 18일(을해) 6번째기사 은어를 별에 말려 봉해 올리라 전교하다</p>	<p>“은어(銀魚)를 별에 말려 봉해 올리라.” 하였다.</p>	<p>銀魚曝乾封進。</p>
<p>연산 56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10월 20일(정축) 6번째기사 제향을 위한 동빙고가 금표 안에 들어가서 서빙고 왼쪽으로 옮기게 하다</p>	<p>예조 판서 김감(金勘)이 아뢰기를, “동빙고(東氷庫)는 오로지 제향(祭享)을 위한 것인데, 지금 금표 안에 들었으니, 청컨대 군사를 주어 얼음이 얼기 전에 서빙고(西氷庫) 왼쪽으로 옮기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리하라.” 하였다.</p>	<p>禮曹判書金勘啓: “東氷庫專爲祭享,而今入標內。 請給軍人及氷凍前移西氷庫之左。” 傳曰: “可。”</p>
<p>연산 56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10월 25일(임오) 6번째기사 쌀 1백 석을 대비전 본궁으로 실어보내게 하다</p>	<p>전교하기를, “쌀 1백 석을 대비전 본궁으로 빨리 실어보내라.” 하였다.</p>	<p>傳曰: “米一百碩, 其亟輸送于大妃殿本宮。”</p>
<p>연산 56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11월 1일(정해) 14번째기사 살찐 꿩을 진공하지</p>	<p>전교하기를, “살찐 꿩을 어찌 지금까지 진공하지 아니하는가? 물어보아 아뢰라.” 하였다.</p>	<p>傳曰: “膏雉何至今不供進? 其問以啓。”</p>

<p>아니한 까닭을 묻다</p> <p>연산 56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11월 5 일(신묘) 10번째기사 동짓날 내시객에게 줄 후추 30섬을 궐내에 들이게 하다</p>	<p>어서를 내려 이르기를, “동짓날 내시객(內侍客)에 줄 후추 30섬을 궐내에 들이라.” 하였다.</p>	<p>下御書曰： 冬至日，內侍客所賜胡椒三十碩入內。</p>
<p>연산 56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11월 6 일(임진) 3번째기사 죽은 장흥 부부인에게 전례대로 물품을 하사 하다</p>	<p>전교하기를, “죽은 장흥 부부인에게 부의하는 것을 전례를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쌀과 콩 각 1백 석, 종이 2백 권, 백정포(白正布) 20필, 6승 백면포(六升白 綿布) 20필, 정포(正布) 50필, 석회(石灰) 50석, 저포(苧布) 10필, 청밀(淸蜜) 1석, 황밀(黃蜜) 30근, 참기름 1석, 진말(眞末) 2석, 6장 붙이 유둔(油菴) 2 장, 각종 과일 8두, 이것이 예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포 50필과 면포 1백 필을 더 주라.” 하였다.</p>	<p>傳曰：“卒長興府夫人致賻，考例以 啓。”承政院啓：“米豆各一百碩、紙 二百卷、白正布二十四、六升白緜布 二十四、正布五十四、石灰五十碩、 苧布十四、淸蜜一碩、黃蜜三十斤、 眞油一碩、眞末二碩、六張付油菴 二、各色實果八斗，此例也。”傳曰： “其加給正布五十四、緜布一百匹。”</p>
<p>연산 56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11월 8 일(갑오) 7번째기사 제주에 금궐 1천 개를 속히 봉하도록 유시하 다</p>	<p>전교하기를, “제주(濟州)에 유시하여 금궐(金橋) 1천 개를 속히 봉진하되, 얼어 상하지 않 도록 하라.” 하였다.</p>	<p>傳曰：“諭濟州金橋一千箇急速封進， 勿令凍傷。”</p>
<p>연산 56권, 10년</p>	<p>(전략)승김초[辛甘菜]에 관한 일은 성희철(成希哲)·홍수(洪修)가 논계한 것인</p>	<p>辛甘菜事，成希哲、洪脩所啓，而希哲</p>

<p>(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11월 9일(을미) 7번째기사 춘추관이 하계증 등의 형 집행에 대해 상세히 아뢰다</p>	<p>데, 희철은 다른 죄로 태 40에 처하여 장흥(長興)에 유배되었고, 수는 진보현감(眞寶縣監)으로 있습니다. 알성(謁聖)하는 날 비를 무릅쓰고 지레 돌아온 일은 곽종번(郭宗蕃)이 논계한 것인데, 이미 참형(斬刑)되었고 아들은 장 60에 처하여 먼 외방에 충군(充軍)되었으며, 소릉(昭陵) 복위에 관한 상소는 남효온(南孝溫)이 한 것인데, 아버지는 남전(南愴), 아들은 남충서(南忠恕)이며, 형제간은 없습니다.” 하였다.</p>	<p>坐他罪，決笞四十，配長興，脩爲眞寶縣監。謁聖日冒雨徑還事，郭宗蕃所啓，已斬，子決杖六十，遠方充軍。復昭陵疏，南孝溫所爲，父愴、子忠恕，無兄弟矣。”</p>
<p>연산 56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11월 17일(계묘) 2번째기사 봉진에 대한 지방 수령들의 원망을 의식하여 알아보게 하니, 승정원이 없다 하다</p>	<p>전교하기를, “공진(供進)하는 물품을 더 봉진(封進)하게 하되, 진상을 지체하는 자를 처벌한다면 관찰사나 수령이 혹 원망이 없겠는가?” 하니, 승정원이 아뢰기를, “신하로서 공상하는데 무슨 원망이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만무합니다.” 하였다.</p>	<p>傳曰：“供進之物令加封進，而稽緩供進者罪之。觀察使、守令無奈或有怨言乎?”承政院啓：“人臣供上，何有怨言? 萬無是理。”</p>
<p>연산 56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11월 19일(을사) 3번째기사 군신 관계를 시로 지어 내리고 차운하여 올리게 하다</p>	<p>어제 곡연(曲宴) 때 궐내에 들어왔던 재상들을 명소(命召)하여 어제시를 내리기를, 경을 대하매 마음이 도움을 바라니 나라를 다스리되 태평에 뜻 두오 취한 김에 말을 많이 함은 충성스런 신하 얻고 싶어서네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대비께서 나의 강무(講武)로 하여 술상을 내려 위로하여 주시므로, 비록 본성은 잘마시지 못하지만 간신 이세좌(李世佐)와 같이 하사하는 술을 거꾸로 쏟을 수 없었노라. 신하가 임금에게와 자식이 어버이에게, 존경이 다를 수 없</p>	<p>命召昨日曲宴時入內宰相等，下御製詩曰：“對卿心欲輔，治國意留平。感醉言多放，深思得忠誠。”仍傳曰：“大妃以予講武，賜床酒以勞之。雖性不能飲，不可如奸臣李世佐逆注賜酒也。臣之於君，子之於親，尊敬無異，故盡心倒飲，以至於醉，遂便服接見群臣，無奈失耶? 上所製之詩。非不知無平側，但醉裏言志而已。”左議政許琛、右議政朴崇質及入侍諸宰、承旨等啓:</p>

	<p>으므로 마음을 다하여 넘어지도록 마시고 취하게 되어 드디어 편복(便服)으로 군신(群臣)을 접견하였으니 실수가 아니하겠는가? 위에서 지은 시가 고저가 맞지 아니함을 모른 것은 아니나, 다만 취중에 뜻을 말한 것뿐이로다.”</p> <p>하니, 좌의정 허침, 우의정 박승질 및 입시한 모든 재신(宰臣)과 승지들이 아뢰기를,</p> <p>“신 등이 삼가 듣건대, 대비전에서 술을 하사하였다 하시니 이는 실로 훌륭한 일입니다. 또 편복으로 인견(引見)하셨다 하여 무엇이 예에 어긋나겠습니까. 군신 사이는 반드시 이와 같이 온화하게 통하여야 하므로 신 등이 스스로 영광스럽기 비할 데 없다 여깁니다.”</p> <p>하자, 전교하기를,</p> <p>“어제 내가 지은 시를 정승들은 이미 차운하여 올렸으니, 그 나머지 모든 재신들도 모두 읊시로 지어 올리라.”</p> <p>하고, 이어 술을 공궤(供饋)하도록 하였다.</p>	<p>“臣等伏聞大妃殿賜床酒，此實盛事。且便服引見，有何違禮？君臣之間，必須如此和通，臣等自以爲榮幸無比也。”傳曰：“昨予所製，政丞等已廢進矣。其餘諸宰皆以律詩廢進。”仍命饋酒。</p>
<p>연산 56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弘治) 17년) 11월 28일(갑인) 4번째기사 유자를 상하지 않고 봉해 올리게 하다</p>	<p>전교하기를,</p> <p>“유자(柚子)를 많이 봉해 올리되, 얼어서 상하지 않도록 하라.”</p> <p>하였다.</p>	<p>傳曰：“柚子多封進，勿令凍傷。”</p>
<p>연산 56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弘治) 17년) 12월 1일(정사) 2번째기사 장 숙용의 집에 물품을 하사하다</p>	<p>어서를 내려 이르기를,</p> <p>“장 숙용(張淑容)의 집에 쌀 30석, 황두 20석, 면포·정포 각 1백 50필, 후추 1석, 백포(白布) 20필을 하사하되, 관장하는 각 관사의 제조(提調) 및 관원이 직접 숙용의 집으로 나아가서 감독하여 진배하고, 만약 주는 것이 있으면 사양하지 말라.”</p> <p>하였다. 전교하기를,</p>	<p>下御書曰： 張淑容家賜米三十碩、黃豆二十碩、絺布正布各一百五十四、胡椒一碩、白布二十四，該掌各司提調及官員，躬親監進，淑容家如有贈物勿辭。 傳曰：“淑容出門時，烏杖差備八人差</p>

	<p>“숙용이 출입할 때에 오장 차비(烏杖差備)4745) 8인을 차정하되, 이 뒤로는 숙원(淑媛)들이 출입할 때 이로써 법식을 삼으라.” 하였다.</p>	<p>定。今後淑媛等出入時，以此爲式。”</p>
<p>연산 56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12월 2 일(무오) 2번째기사 간택한 여자들의 의복 과 음식을 공비로 지 급하게 하다</p>	<p>전교하기를, “전일에 간택한 여자들의 의복과 음식을 모두 공비로 공급하라.” 하였다. 이어 승정원에 묻기를, “무릇 인군이 후궁을 많이 두는 것은 후계를 넓히려는 것인데 불초한 무리들 이 망령되어 황음(荒淫)에 가깝다고 논의한다. 대저 주색(酒色)이 어찌 반드시 나라를 그르치겠는가. 《시경(詩經)》 4746) 에 이르기를, ‘윙윙거리는 파리가 울타리에 앉았도다 의정한 군자여 참소를 믿지 말지어다[營營青蠅 止于樊 豈弟君子 無信讒言]’라고 하였으니, 대체로 나라를 상실함은 오직 군자를 멀리하고 소인을 가까이 하여 참소하는 말에 미혹되는 데 있을 뿐이요, 여색으로 나라를 그르친 일은 또한 많지 않은 것이 다.(후략)</p>	<p>傳曰：“前揀擇女等衣服飲食，皆令公 供。”仍問承政院曰：“凡人君多後宮， 欲以廣繼嗣也，而不肖之徒妄議以爲： ‘近於荒淫。’ 夫酒色豈必誤國也？ 《詩》曰：‘營營青蠅，止于樊。 豈弟 君子，無信讒言。’ 大抵喪國只在遠君 子、近小人，惑讒言而已，以色誤國， 亦不在多。(후략)</p>
<p>연산 56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12월 10 일(병인) 5번째기사 입으로 소리를 내어 노루와 사슴을 잘 잡 는 산간 고을 사람을 올려보내도록 하다</p>	<p>전교하기를, “산간 고을[山郡] 사람으로, 입으로 소리를 내어 노루와 사슴을 잘 잡는 자가 있으니, 경기에서 올려보내도록 하라.” 하였다.</p>	<p>○傳曰：“山郡人有能口吹作聲，能捕 獐鹿者，令京畿上送。”</p>
<p>연산 56권,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 (弘治) 17년) 12월 24 일(경진) 1번째기사</p>	<p>전교하기를, “함흥 본궁(咸興本宮) 소속 인원을 조종조(祖宗朝)에서 많이 둔 것은 내선(內 膳)을 공상(供上)하도록 함인데, 지난번 간신(奸臣)의 상주로 감원되었으니, 그 도 감사로 하여금 도로 충원하도록 하라.”</p>	<p>○庚辰/傳曰：“咸興本宮所屬人，自祖 宗朝多定，以供內膳。頃爲奸臣啓減， 令其道監司還充數。”</p>

<p>함흥 본궁 소속 인원을 그 도 감사로 하여금 충원하도록 하다</p>		
<p>연산 57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 (弘治) 18년) 1월 1일 (정해) 5번째기사 유감이 생산되는 곳에 서는 많은 수를 봉진 하게 하다</p>	<p>전교하기를, “유감(乳柑)이 생산되는 곳에서는 많은 수를 봉진(封進)하라.” 하였다.</p>	<p>傳曰: “乳柑產出處, 多數封進。”</p>
<p>연산 57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 (弘治) 18년) 1월 1일 (정해) 9번째기사 의영고의 호초 등의 물품을 대내로 들이게 하다</p>	<p>전교하기를, “의영고(義盈庫)의 호초(胡椒)4779) 20석(碩), 제용감(濟用監)의 수주(水紬)4780) 30필, 면포(綿布)4781) ·정포(正布)4782) 각 1백 필을 대내(大內)로 들이라.” 하였다.</p>	<p>傳曰: “義盈庫胡椒二十碩, 濟用監水紬三十四、緜布正布各一百匹入內。”</p>
<p>연산 57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 (弘治) 18년) 1월 3일 (기축) 9번째기사 호조에 취홍원 2인마다 물품을 정하여 제 급하라 전교하다</p>	<p>호조에 전교하기를, “취홍원 2인마다 정(鼎)4787) 1, 과(鍋)4788) 각 1, 반안구(飯案具)4789) 1, 노(爐)4790) 각 1, 토로(土爐)4791) 각 1, 유분(鑪盆)4792) 1, 도분(陶盆)4793) 각 1, 관유(盥鑪)4794) 1, 관분(盥盆) 1, 반(盤)4795) 대·소(大小) 각 4, 유노기(鑪溺器)4796) 각 1, 채도(菜刀) 1, 사(篩)4797) 1, 추(筴)4798) 각 1, 등경(燈檠)4799) 각 1, 침석(寢席)4800) 각 1, 침인(寢茵)4801) 각 1, 목면욕(木緜褥)4802) 각 1, 묵화 병풍(墨畫屏風) 각 1, 등유(燈油) 하루 2홉(合), 소목(燒木)4803) 하루 70근(斤), 탄(炭)4804) 하루 1석(石)을 제급(題給)하라.”</p>	<p>傳于戶曹曰: “聚紅院每二人鼎一、鍋各一、飯案具一、爐各一、土爐各一、鑪盆一、陶盆各一、盥鑪一、盥盆一、盤大小各四、鑪溺器各一、菜刀一、篩一、筴各一、燈檠各一、寢席各一、寢茵各一、木緜褥各一、墨書屏風各一、燈油日二合、燒木日七十斤、炭日一石題給。”</p>

	하였다.	
연산 57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 (弘治) 18년) 1월 4일 (경인) 12번째기사 풍저미 30석 등의 물 품을 대내로 들이게 하다	전교하기를, “풍저미(豐儲米) 30석(碩), 제용감(濟用監)의 면포(綿布) 4백 25필(匹), 정포 (正布) 50필, 목면 유의(木綿襦衣)4810) 89령(領), 목면유소오자(木綿襦小襖 子)4811) 23을 대내(大內)에 들이라.” 하였다.	傳曰: “豐儲米三十碩, 濟用監綿布四 百二十五匹、正布五十四、木綿襦衣 八十九領、木綿襦小襖子二十三入 內。”
연산 57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 (弘治) 18년) 1월 10 일(병신) 8번째기사 내수사에 지난 갑자년 의 회환가 조미 내에 서 4백 석을 중미로 제급하라 전교하다	전교하기를, “내수사(內需司)에, 지난 갑자년 함경도의 회환가(回換價) 조미(糙米)4824) 내 에서 4백 석(石)을 중미(中米)로 제급(題給)하라.” 하였다.	傳曰: “內需(寺) [司] 去甲子年咸鏡 道回換價糙米內四百石, 以中米題 給。”
연산 57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 (弘治) 18년) 1월 14 일(경자) 2번째기사 입궐한 자는 술을 금 하되, 하사할 때는 마 시게 하다	전교하기를, “입궐(入闕)하는 사람은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심기(心氣)가 방탕하고 언어 가 빗나가게 되어 쉬이 실례에 이르게 되므로 전에 이미 법을 세웠으니, 더욱 밝혀서 엄금하도록 하라. 그러나 술을 하사할 때에는 마시지 않아서는 안 되 니, 이 뜻도 아울러 유지하라.” 하였다.	傳曰: “入闕之人不可飲酒, 以致心氣 放蕩, 言語差滑, 易至失禮。故曾已 立法, 可申明痛禁, 然如賜酒之時, 則 不可不飲, 竝諭此意。”
연산 57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 (弘治) 18년) 1월 16	전교하기를, “대비전(大妃殿)에 쌀 1백 석(碩)을 진상(進上)하고, 휘순 공주(徽順公主) 처 소에 쌀 1백 석, 월산 대군 부인(月山大君夫人) 처소에 쌀 50석을 내려 주	傳曰: “大妃殿米一百碩進上, 徽順公 主處米一百碩、月山大君夫人處米五 十碩賜給。”

<p>일(임인) 5번째기사 대비전·휘순 공주 등 에게 쌀을 내리게 하 다</p>	<p>라.” 하였다.</p>	
<p>연산 57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 (弘治) 18년) 1월 18 일(갑진) 9번째기사 중미 20석·조미 30석 을 대사동 녹수의 집 에 보내게 하다</p>	<p>전교하기를, “중미(中米) 20석(碩)·조미(糙米) 30석을 대사동(大寺洞)에 실어 보내라.” 하였는데, 곧 녹수(綠水)의 집이다.</p>	<p>○傳曰：“中米二十碩、糙米三十碩輸 送于大寺洞。” 卽綠水家。</p>
<p>연산 57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 (弘治) 18년) 1월 22 일(무신) 1번째기사 명정전에 나아가 음복 례를 행하다</p>	<p>왕이 명정전(明政殿)에 납시어 음복례(飲福禮)4854) 를 행하였다.</p>	<p>戊申/王御明政殿，行飲福禮。</p>
<p>연산 57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 (弘治) 18년) 1월 24 일(경술) 1번째기사 음복연 때 신하와 술 을 내려 즐긴 것에 대 해 정원의 생각을 묻 다</p>	<p>전교하기를, “22일 음복연(飲福宴) 때에 편전(便殿)에 재신(宰臣)을 불러 들여서 술을 내 려 즐겼거니와, 임금과 신하 사이에 때로 특별히 이례(異禮)로 만남이 크게 통한 것이 아니라. 또한 제왕(帝王)의 일은 규모(規模)를 같이하지 않는 것이 어서, 성종조(成宗朝)에 정전(正殿)에서 재신을 접대하여 함께 즐기시되 일어 나 춤추신 때가 있기도 하였으니, 상례(常禮)에 얽매이지 않음을 알 만하다. 옛적에 ‘욕심대로 하면 재난(災難)을 이루고, 즐거움이 극진하면 슬픔이 된 다.’ 하였으나, 즐거움에 절도가 있으면 어찌 주색에 빠져 절도가 없기에 이르 라. 내 뜻으로는 이런 일은 의리에 해로움이 없다고 여기거늘, 변변치 못한</p>	<p>庚戌/傳曰：“二十二日飲福宴時，召入 宰臣于便殿，賜酒爲歡。君臣之間， 有時乎別接異禮，無奈大通乎？且帝王 之事，不同規模。如成宗朝接待宰臣 于正殿，與之歡洽，或有起舞之時，其 不拘常禮可知。古云：‘縱欲則成災， 樂極則成哀。’然歡樂有節，則豈至於 荒淫無度乎？予意以謂如此之事，無害 於義。在下不肖之徒，應有非議之者，</p>

	아랫것들은 비방하는 자가 있으리라. 정원(政院)의 생각에는 어떠한가? 하매, 승지(承旨)들이 아뢰기를, “임금과 신하 사이에 특별히 은혜(恩禮)를 보임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거늘, 아랫사람으로 어찌 감히 비방하는 자가 있으리까.” 하였다.	於政院意何如?” 承旨等啓: “君臣之間, 別示恩禮, 誠爲美事。 在下之人, 豈敢有非議之者?”
연산 57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 (弘治) 18년) 1월 26 일(임자) 3번째기사 갱미 5석을 대내에 들 이게 하다	전교하기를, “갱미(粳米)4857) 5석(碩)을 대내(大內)에 들이라.” 하였다.	傳曰: “粳米五碩入內。”
연산 57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 (弘治) 18년) 2월 1일 (정사) 1번째기사 종재 2품 이상을 명정 전 뜰에서 공궤하다	종재(宗宰) 2품 이상을 명정전(明政殿) 뜰에서 공궤(供饋)하였다.	朔丁巳/饋宗宰二品以上于明政殿庭。
연산 57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 (弘治) 18년) 2월 2일 (무오) 4번째기사 제용감의 명주 68필 등 여러 물품을 대내 에 들이게 하다	전교하기를, “제용감(濟用監)의 명주[紬] 68필, 백면포(白綿布) 38필, 면포 1백 75필, 주 유의(紬襦衣) 2, 의영고(義盈庫)의 호초(胡椒) 2석(碩) 4두(斗)를 대내에 들이 라.” 하였다.	傳曰: “濟用監紬六十八匹、白絺布三十八匹、絺布一百七十五匹、紬襦衣二, 義盈庫胡椒二碩四斗入內。”
연산 57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	전교하기를, “갱미(粳米) 6석(碩)을 대내(大內)에 들이라.”	傳曰: “粳米六碩入內。”

<p>(弘治) 18년) 2월 7일 (계해) 3번째기사 갱미 6석을 대내에 들 이게 하다</p>	<p>하였다.</p>	
<p>연산 57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 (弘治) 18년) 3월 12 일(정유) 3번째기사 승정원에 선운을 내리 고 어제시를 내려, 화 답해 바치게 하다</p>	<p>승정원에 선운(宣醞)을 내리고 어제시(御製詩)를 내리기를, 초록 돋는 막걸리 빛과 맛이 어울려 잔 안엔 언제나 풍성한 봄 은혜를 생각하여 실컷 마시렵 올바르고 삼가매 후대하는 거니 하고, 이 뜻으로 화답해 바치게 하였다. 하였다.</p>	<p>賜宣醞于承政院，下御製詩曰：“凝綠 香醪色味凝，盃中長在不殘春。思恩 莫厭沈酣飲，厚待都由獻直諫。”以此 意和進。”</p>
<p>연산 57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 (弘治) 18년) 3월 15 일(경자) 2번째기사 풍저창의 쌀 30석을 대내에 들이게 하다</p>	<p>전교하기를, “풍저창(豐儲倉)의 쌀 30석을 대내에 들이라.” 하였다.</p>	<p>○傳曰：“豐儲倉米三十碩入內。”</p>
<p>연산 57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 (弘治) 18년) 3월 22 일(정미) 2번째기사 경기에서 진상하는 대 일차 등에 폐단이 있 다고 아뢰는 자를 상고 하여 죄주게 하다</p>	<p>전교하기를, “전일 경기(京畿)에서 진상(進上)하는 대일차(大日次)·소일차(小日次)가 폐단 이 있다 하여 줄이기를 청한 자가 있었으니, 상고하여 죄를 다스리라.” 하였다.</p>	<p>傳曰：“前日有以京畿進上大日次、小 日次爲有弊，而請減者，其考治罪。”</p>
<p>연산 57권, 11년</p>	<p>전교하기를,</p>	<p>傳曰：“濟用監縣布、正布各一百五十</p>

<p>(1505 을축 / 명 홍치 (弘治) 18년) 3월 22일(정미) 4번째기사 제용감의 면포 등의 물품을 자순 왕대비에 게 진상하게 하다</p>	<p>“제용감(濟用監)의 면포(綿布)·정포(正布) 각 1백 50필, 수주(水紬) 50필, 의영고(義盈庫)의 후추 3곡(斛)4901) 을 자순 왕대비전(慈順王大妃殿)에 진상하라.” 하였다.</p>	<p>匹、水紬五十匹，義盈庫胡椒三斛，進上于慈順王大妃殿。</p>
<p>연산 57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 (弘治) 18년) 3월 23일(무신) 3번째기사 사도시의 갱미 5석, 중미 10석을 대내에 들이게 하다</p>	<p>전교하기를, “사도시(司藥寺)의 갱미(粳米) 5석, 중미(中米) 10석을 대내에 들이라.” 하였다.</p>	<p>傳曰：“司藥寺粳米五碩、中米十碩入內。”</p>
<p>연산 57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 (弘治) 18년) 3월 25일(경술) 3번째기사 각도로 하여금 채소를 봉진하게 하다</p>	<p>경기 감사(京畿監司)에게 명하여 순나물[蓴菜]·파[葱]·마늘[蒜]·상치[萵苣]를 봉진(封進)하게 하고, 모든 채소는 각도(各道)로 하여금 뿌리채로 흙을 얹어서 마르지 않도록 하여 봉진하게 하였다. 각도는 드디어 우리[檻]를 만들어서 흙을 넣고 심었다가 끊임없이 번갈아 들어 날랐으나, 서울에 이르러서는 말라서 바칠 수 없으며 드디어 저자에서 사게 되니, 그 값이 뛰어올라서 재력(財力)을 다하여도 갚아낼 수 없었다. 또 내관(內官)을 각도에 나누어 보내어 산나물 및 민간의 여러 채소를 채취하게 하였다.</p>	<p>命京畿監司封進蓴菜、葱、蒜、萵苣，一應菜蔬，令各道具根戴土，使不至枯槁封進。各道遂作檻，置土封植，相遞昇運，絡繹不絕，及至京中，枯槁不得納。遂於市裏買之，其價踴貴，雖罄財莫能償之。又分遣內官於各道，採取山菜及民間雜蔬。</p>
<p>연산 57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 (弘治) 18년) 4월 6일(신유) 1번째기사 성절사 가는 길에 용안·여지 등의 과일을</p>	<p>전교하기를, “이번 성절사(聖節使) 가는 길에 용안(龍眼)4911) ·여지(荔枝)4912) 를 많이 사오고, 서과(西瓜)4913) ·감과(甘瓜)4914) 및 각종 과일을 많이 구해 오라.” 하였다.</p>	<p>辛酉/傳曰：“今聖節使之行，多買龍眼、荔枝以來。西瓜、甘瓜及各種果多覓來。”</p>

사오게 하다		
연산 57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 (弘治) 18년) 4월 6일 (신유) 2번째기사 의금부가 봉진한 것을 논핵한 간관 안윤덕 등은 공죄속에 해당한 다고 아뢰다	의금부(義禁府)가 아뢰기를, “유자광(柳子光)이 사사로이 석화(石花)4915)·생복(生鰓)4916) 을 바친 것을 논핵(論劾)한 간관(諫官) 중 앞장선 안윤덕(安潤德)은 율(律)이 장(杖) 80에, 김계행(金係幸)·윤은보(尹殷輔)·이곤(李坤)은 장 70에 해당하니, 모두 공죄속 (公罪贖)에 해당합니다.” 하였다.	義禁府啓: “論柳子光私獻石花、生鰓 諫官, 爲首安潤德律當杖八十, 金係 行、尹殷輔、李坤杖七十, 竝公罪 贖。”
연산 57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 (弘治) 18년) 4월 9일 (갑자) 1번째기사 공상 물선을 옛 규례 대로 봉진하라 전교하 다	전교하기를, “요사이 간신들이 공상 물선(供上物膳)을 줄이자고 아뢰나, 앞으로도 옛 규례 대로 봉진(封進)하라. 또 간사한 자가 세운 법이 혹시라도 있거든 곧 혁파(革 罷)하라.” 하였다.	甲子/傳曰: “近者奸臣等啓減供上物 膳, 今後仍舊封進。 且奸人所立之法 容或有之, 其卽罷之。”
연산 57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 (弘治) 18년) 4월 9일 (갑자) 2번째기사 장원서 등에 명하여 철쪽을 많이 바치게 하다	전교하기를, “장원서(掌苑署) 및 팔도에 영하여 왜척축(倭躑躅)4918) 을 많이 찾아내어 흙 을 붙인 채 바치되 상하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이로부터 치자[梔子]·유자(柚子)·석류(石榴)·동백(冬栢)·장미(薔薇)에서 여느 화초에 이르기까지 모두 흙을 붙여서 바치게 하매, 당시 감사(監司)들이 견책 (譴責)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종류마다 혹 수십 주(株)를 바치되 계속 날라 읍 기니, 백성이 지쳐서 길에서 죽는 자가 있기까지 하였다.	傳曰: “令掌苑署及八道, 多索倭躑躅, 帶土以進, 使不損傷。” 自是, 如梔 子、柚子、石榴、冬栢、薔薇, 以至尋 常花草, 皆令帶土以進。 當時監司畏 譴, 每種或進數十株, 輸轉相繼, 民困 至有路斃者。
연산 57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	전교하기를, “단오 진연에 쓸 꿀[淸蜜] 24석(石), 기름[油] 17석을 각도(各道)에 배정하여	傳曰: “端午進宴所用淸蜜二十四碩、 油十七碩, 分定各道, 令刻日上納。”

<p>(弘治) 18년) 4월 15일(경오) 3번째기사 단오 진연에 쓸 꿀 등을 각도에 배정하여 바치게 하다</p>	<p>일한(日限)을 정해서 바치게 하라.” 하였다.</p>	
<p>연산 57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 (弘治) 18년) 4월 20일(을해) 1번째기사 연향하는 때에 쇠고기를 쓰게 하니, 백성들이 물건 실은 소까지 다 빼앗기다</p>	<p>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앞서 연향(宴享) 때에 쇠고기를 쓰지 않았음은 농사를 위해서이나, 중국에서는 우리 나라 사람을 공궤(供饋)함에는 오히려 쇠고기를 쓰니, 이제 쓸 수 있으며, 더구나 연향은 어느 일과 다르니 써도 무방하리라. 아울러 정승 및 예관(禮官)에게 물으라.” 하매, 승지들이 아뢰기를, “어리석은 백성이 농사의 근본이 여기에 있는 줄 모르고 함부로 잡으므로 그것을 금지하였으나, 공상(供上)에는 써도 무방합니다.” 하고, 정승 및 예조는 아뢰기를, “상의 분부가 윤당하십니다.” 하니, 또 전교하기를, “앞서 까닭없이 소를 잡은 자는 전가 사변(全家徙邊)하고, 나라에서 법금(法禁)이 있는데, 승복(承服)하지 않으면 형신(刑訊)까지 하기에 이르렀으나, 그 중에는 어찌 범법(犯法)이 없겠으며, 애매한 자가 없으랴! 앞으로는 소가 병들거나 늙어서 농토에서 일할 수 없는 것을 본주(本主)가 고하거든, 서울에서는 한성부(漢城府)가 외방에서는 소재관(所在官)이 검험(檢險)하여 낙인(烙印)해 주고, 잡아서 가죽을 벗긴 뒤에 또 관가에 신고하면, 다시 검험하여 가죽에 낙인하여 절계(節季)마다 본주의 이름 및 소의 수를 개록(開錄)4940) 하여 아뢰라. 또 모든 연향에 모두 쇠고기를 쓰라.” 하매, 정승 및 예조가 아뢰기를,</p>	<p>乙亥/傳于承政院曰: “前此宴享時, 不用牛肉, 爲農事也。 然中朝饋我國人, 尙用牛肉, 今可用之。 況宴非常事, 用之無妨。 竝問政丞及禮官。” 承旨等啓: “愚民不知農事之本在此, 而妄爲屠殺, 故禁之。 然於供上, 用之無妨。” 政丞及禮曹啓: “上教允當。” 又傳曰: “前此無故屠牛者, 全家徙邊, 國有法禁, 不服則至於刑訊。 然其間豈無犯法, 又豈無曖昧者乎? 今後牛或病或老, 不能服事田畝者, 令本主進告, 京則漢城府, 外則所在官檢驗烙印, 宰(剝) [殺] 後, 又申官更驗, 皮張烙印, 每節季, 主名及牛數開錄以啓。 且一應宴享, 竝用牛肉。” 政丞及禮曹啓: “老病之牛無可用, 畜之勢難, 告官宰殺甚可。 且宴享時用牛肉, 則獐鹿不必多用, 此亦良法。 上教允當。” 自是, 常時供饋興清, 皆用牛肉, 日屠十餘頭, 車載以入。 行路駕</p>

	<p>“늑거나 병든 소는 쓸데 없고 먹이기에 형세가 어려우니, 관가에 신고하여 잡는 것이 매우 옳으며, 또 연향 때에 쇠고기를 쓰면 노루·사슴을 많이 쓸 것 없으니, 이 또한 좋은 법입니다. 상의 분부가 윤당하십니다.”</p> <p>하였다.</p> <p>이로부터 여느 때의 흥청을 공궤하는 데에도 다 쇠고기를 쓰니, 날마다 10여 두(頭)를 잡아 수레로 실어들었다. 노상에 수레를 끌거나 물건을 실은 소까지도 다 빼앗아 잡으니, 백성이 다 부르짖어 곡(哭)하였고, 또 군현(郡縣)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바치되, 가까운 도(道)에서는 날고기로, 먼 도에서는 포(脯)를 만들게 하였다. 또 왕이 소의 태(胎)를 즐겨 먹으므로 새끼를 낳은 배가 부른 소는 태가 없을지라도 잡히지 않은 것이 없었다.</p>	<p>車載物之牛，皆奪而屠之，民皆號哭。</p> <p>又令郡縣續進，近道則生肉，遠道則作脯。且王好食牛胎，故乳牛之脹腹者雖不胎，無不見屠。</p>
<p>연산 57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弘治) 18년) 4월 20일(을해) 2번째기사</p> <p>강혼이 모든 과실을 계절이 아니더라도 잘 저장하여 쓰일 수 있도록 하기를 청하다</p>	<p>승지들에게 감자(柑子) 8매(枚)를 내리며 이르기를,</p> <p>“경 등이 먹으라.”</p> <p>하고, 이어 전교하기를,</p> <p>“앞으로 모든 과실을 계절이 아니더라도 잘 저장하며 갑작스런 쓰임에 대비하라.”</p> <p>하매, 강혼(姜渾)이 팔도에 효유(曉諭)하기를 청하니, 전교하기를,</p> <p>“좋다.”</p> <p>하였다.</p>	<p>賜柑子八枚于承旨等曰：“卿等食之。”</p> <p>仍傳曰：“今後凡果實雖背節，善儲藏，以待不時之用。” 姜渾請諭八道，傳曰：“可。”</p>
<p>연산 57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弘治) 18년) 4월 23일(무인) 2번째기사</p> <p>팔도의 과실 중 오래 견딜만한 것은 갑작스런 쓰임을 위해 따지</p>	<p>전교하기를,</p> <p>“팔도의 과실 중에서 오래 견딜만한 것은 따지 말고 온 나무로 싸두었다가 갑작스런 쓰임에 대비하라.”</p> <p>하였다.</p>	<p>傳曰：“八道果實可以耐久者勿摘取，全木包裹，以待不時之用。”</p>

말게 하다		
연산 57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 (弘治) 18년) 4월 23 일(무인) 5번째기사 조야가 무사함에 단오 로 대비전에 진연하고, 여러 왕후 친족에게 공궤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이번에 간흉(奸兇)이 모조리 제거되어 조야(朝野)가 무사하매, 이에 5월 5일 로 대비전(大妃殿)께 진연(進宴)하고, 여러 왕후의 친족에게 공궤(供饋)하여, 위로 자전(慈殿)을 받들고 아래로 구족(九族)을 돈독히 하려 하니, 이 뜻으로 글 잘하는 문신으로 하여금 상대별곡체(霜臺別曲體)에 따라 곡을 짓게 하여, 운평(運平)으로 하여금 익혀서 연주하게 하라.” 하였다.	傳曰: “今者奸兇盡去, 朝野無事。 玆 以五月初五日進宴于大妃殿, 仍饋諸王 后族親, 上奉慈殿, 下敦九族。 其以 此意, 令能文文臣, 依《霜臺別曲》體 製曲, 令運平習奏之。”
연산 57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 (弘治) 18년) 4월 23 일(무인) 7번째기사 혜장 39인에게 일이 끝나기까지 두 때 공 궤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혜장(鞋匠) 39 인에게 일이 끝나기까지 두 때 공궤하라.” 하였다.	傳曰: “鞋匠三十九, 限事畢饋兩時。”
연산 57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 (弘治) 18년) 4월 24 일(기묘) 4번째기사 저망 3백을 각 고을에 서 장만하여 바치게 하다	전교하기를, “저망(猪網) 3백을 각 고을에서 장만하여 바치라.” 하였다.	傳曰: “猪網三百, 各官備進。”
연산 57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 (弘治) 18년) 4월 26	전교하기를, “풍저창(豐儲倉)의 쌀 30석을 대내에 들이라.” 하였다.	傳曰: “豐儲倉米三十碩入內。”

일(신사) 5번째기사 풍저창의 쌀 30석을 대내에 들이게 하다		
연산 58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 (弘治) 18년) 5월 1일 (을유) 7번째기사 사도시의 갱미 2석을 대내에 들이게 하다	전교하기를, “사도시(司導寺)의 갱미(粳米)4961) 2석(碩)을 대내(大內)에 들이라.” 하였다.	傳曰: “司(導) [導] 寺粳米二碩, 入內。
연산 58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 (弘治) 18년) 5월 5일 (기축) 2번째기사 진연 등에 드는 비용 이 많고 화려하다. 여 객의 가슴에 이름을 달아 고움을 표시하다	자순 왕대비전(慈順王大妃殿)에 진연하는데 한 상에 든 비용의 밀가루[麥末]가 40여 석(碩)이나 되게 많고, 다른 물건도 이와 겨를 만하였으며, 채화(綵花)를 꽂고 금은으로 꾸며서 정교하고 화려함을 다하였다. 이어 7왕후의 족친에게 공궤(供饋)하였는데, 여객(女客)은 인양전(仁陽殿) 뜰에 들고 남객(男客)은 양화문(陽華門) 안에 드니, 남객이 1천여요, 여객이 2백 80여 인이었다. 여족(女族)은 겹옷[表衣] 가슴께에 어느 사람의 아내 아무 씨(氏)라고 써 달았는데, 그 곱고 추함을 식별하고자 하여 표시한 것이다.	進宴于慈順王大妃殿, 一卓之費, 麥末多至四十餘碩, 他物稱是, 插以綵花金銀爲飾, 窮極巧麗。 仍饋七王后族親, 女客入仁陽殿庭, 男客入陽華門內, 男客千餘, 女客二百八十餘人, 女族表衣當胸, 書某人妻某氏, 欲別其妍媸以識之也。
연산 58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 (弘治) 18년) 5월 9일 (계사) 4번째기사 풍저창의 쌀 30석을 대내에 들이게 하다	전교하기를, “풍저창(豐儲倉)의 쌀 30석을 대내에 들이라.” 하였다.	傳曰: “豐儲倉米三十碩, 入內。”
연산 58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 (弘治) 18년) 5월 21	전교하였다. “사도시(司導寺)의 갱미(粳米) 5석(碩), 중미(中米) 5석을 대내에 들이라.” 하였다.	傳曰: “司(導)寺粳米五碩, 中米五碩, 入內。

<p>일(을사) 2번째기사 사도시의 갱미 5석, 중미 5석을 대내에 들 이게 하다</p>		
<p>연산 58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 (弘治) 18년) 5월 24 일(무신) 3번째기사 의영고의 호초 30석을 대내에 들이게 하다</p>	<p>전교하기를, “의영고(義盈庫)의 호초(胡椒) 30석을 들이라.” 하였다.</p>	<p>傳曰: “義盈庫胡椒三十碩, 入內。”</p>
<p>연산 58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 (弘治) 18년) 6월 13 일(병인) 5번째기사 주·정포 등 여러 물품 을 대내에 들이게 하 다</p>	<p>전교하기를, “주(紬)·정포(正布)·면포(綿布) 각 1백 필, 호초(胡椒) 1석을 대내에 들이라.” 하였다.</p>	<p>傳曰: “紬正布絺布, 各一百匹, 胡椒一碩, 入內。”</p>
<p>연산 58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 (弘治) 18년) 6월 15 일(무진) 2번째기사 삼정승 등으로 물 경 치를 보고 시를 지어 아뢰게 하고, 물품을 하사하다</p>	<p>전교하기를, “옛 시(詩)에, 물리를 잘 미루어 행락을 할 일이지 어찌하여 이 몸을 뜰이름에 묶으랴 라 하였으니, 대저 천지의 조화(造化)를 감상하지 않아서는 안 되니, 오늘 삼 정승·육조 판서·신수근(愼守勤) 3형제는 사관(史官)·진독 당상(進讀堂上) 및 낭청(郎廳)·승지(承旨) 4원을 벗삼아 망원정(望遠亭)에 가서 물 경치를 보고 시를 지어 아뢰라.” 하고, 따라서 운평(運平) 15, 광희(廣熙) 10인, 향온(香醞) 10병을 내렸다. 어</p>	<p>傳曰: “古詩云: ‘細推物理須行樂, 何 用浮名絆此身?’夫天地造化, 不可不 賞。 今日三政丞、六曹判書、愼守勤 三兄弟(友) [及] 史官、進讀堂上及郎 廳、承旨四員, 往望遠亭, 觀水製詩以 啓。” 仍賜運平十五, 廣熙十人, 香醞 十瓶。 乘昏乃罷還, 啓所製詩, 各一 首以進。 唯李季童, 以武人辭, 愼守 勤三兄弟、韓斯文, 以不學辭。</p>

	두어서야 파하고 돌아와, 지은 시 각 1수를 바쳤는데, 오직 이계동(李季叟)은 무인(武人)이라 하여 사양하고, 신수근 3형제와 한사문(韓斯文)은 배우지 못하였다 하여 사양하였다.	
연산 58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 (弘治) 18년) 6월 21 일(갑술) 9번째기사 풍저창의 쌀 30석을 대내에 들이게 하다	전교하기를, “풍저창(豐儲倉)의 쌀 30석을 대내에 들이라.” 하였다.	傳曰: “豐儲倉米三十碩, 入內。”
연산 58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 (弘治) 18년) 7월 8일 (신묘) 2번째기사 용안·여지를 좋은 것 으로 다시 사 오게 하 다	전교하기를, “전일 사 온 용안(龍眼)·여지(荔枝)는 좋지 않으니, 이번 가는 길에 다시 좋은 것을 구하여 사 오라.” 하였다.	傳曰: “前日買來龍眼、荔枝不好, 今 行更求好者, 買來。”
연산 58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 (弘治) 18년) 7월 9일 (임진) 3번째기사 중궁에게 공덕이 있다 하여 금정을 내리게 하다	전교하기를, “공덕이 있는 자는 이정(彝鼎)5082) 에 명(銘)하는 것이 옛 법이다. 이제 중 궁의 덕이 금정(金鼎)에 새길 만하니, 존숭(尊崇)하고 옥책(玉冊)을 내릴 때에 아울러 금정을 내리라. 정을 황금으로 부어 만들되 1천 냥을 써야 한다.” 하였다. 그때 국고[國儲]가 이미 비어서 크게 장사군의 금을 뒤져내는데, 유사(有司) 가 엄히 독촉하여 마구 매질하니, 금이 없는 자는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 여, 혹 목매어 죽은 자도 있었다.	傳曰: “有功德者, 銘彝鼎, 古也。 今 中宮之德, 可鑄金鼎, 尊崇賜玉冊時, 竝賜金鼎。 鑄鼎黃金, 當用一千兩。” 時國儲已罄, 大索商賈之金, 有司嚴 督, 鞭笞狼藉, 無金者不堪其苦, 或有 縊死者。
연산 58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	전교하기를, “풍저창(豐儲倉)의 쌀 30석을 대내에 들이라.”	傳曰: “豐儲倉米三十碩, 入內。”

<p>(弘治) 18년) 7월 10일(계사) 2번째기사 풍저창의 쌀 30석을 대내에 들이게 하다</p>	<p>하였다.</p>	
<p>연산 58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 (弘治) 18년) 7월 14일(정유) 10번째기사 어선에 쓸 노루를 미쳐 공진하지 못한 과천 현감 장유를 추국하게 하다</p>	<p>어선(御膳)에 쓸 노루를 미쳐 공진(供進)하지 못했다고 하여, 과천 현감(果川縣監) 장유(張維)를 추국(推鞠)하도록 명하였다. 그때 공진을 조금이라도 늦추면 왕이 반드시 중하게 죄주고 백에 하나도 용서하지 않으므로, 수령(守令)들이 죄를 두려워하여 오로지 침탈(侵奪)하여 바치기에 바빠서 백성을 돌볼 생각을 하지 않으므로, 생업을 보존하는 백성이 10집에서 9은 도망하며, 마을이 텅 비게되어 죽대밭만 눈에 가득했다.</p>	<p>以御膳筭未及供進， 命鞠果川縣監張維。 時供進小或稽緩， 王必深罪， 百不一貸， 守令畏罪， 專以侵漁供獻爲急， 無意恤民。 民之存業者， 十室九亡， 村里爲墟， 蓬蒿彌目。</p>
<p>연산 58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 (弘治) 18년) 7월 20일(계묘) 4번째기사 장원서·사포서 등으로 하여금 겨울에도 흙집을 쌓고 채소를 기르게 하다</p>	<p>전교하기를, “시금치[辛甘菜] 따위 여러 가지 채소를 장원서(掌苑署)·사포서(司圃署)로 하여금 흙집을 쌓고 겨울내 기르게 하라.” 하였다.</p>	<p>傳曰：“如辛甘菜等諸種蔬菜， 令掌苑署司圃署， 築土宇， 過冬培養。”</p>
<p>연산 58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 (弘治) 18년) 7월 24일(정미) 1번째기사 왜전복 등 맛나고 특이한 것을 구해서 바</p>	<p>전교하기를, “왜전복(倭全鰓)이 있다 하니, 사서 바치도록 하라. 이 물건 뿐 아니라 모든 특이하게 맛난 것은 널리 구해서 바치라.” 하였다.</p>	<p>丁未/傳曰：“聞有倭全鰓， 可令質進。 非但此物， 凡異味， 廣索以進。”</p>

치계 하다	<p>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오늘 대비를 모시고 경회루(慶會樓)에 가서 연꽃을 구경하고자 하니, 긴급한 일 외에는 모든 공사(工事)를 입계(入啓)하지 말고, 연꽃 구경과 축수 올리는 뜻으로 절구(節句)를 지어 바치라. 승지·사관(史官) 각 1원(員)만 궁에 머무르고 그 나머지는 다 경복궁(景福宮)으로 가라.” 하였다.</p> <p>승정원이 그때 원중(院中)에 수정 포도(水精葡萄)한 덩굴이 익었으므로 승지들이 따서 얼음 넣은 쟁반에 담아 왕에게 바치니, 어제(御製) 한 절구(節句)를 내리기를, 얼음 채운 파랑 알이 달고 시원해 옛 그대로인 성심에 절로 기쁘네 몹시 취한 주독만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병든 위 상한 간도 고쳐 주겠네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시는 뜻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줄(拙)함을 모르고서, 지금 시장(詩章)을 내렸는데, 불만한 데에 가까운가?” 하매, 승지들이 아뢰기를, “특별히 내리신 천장(天章)5102) 의 뜻이 높고 아름다우매, 신 등은 감격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하였다.</p>	<p>戊申/傳于承政院曰: “今日欲奉大妃, 往慶會樓賞蓮, 除緊急事外, 凡公事毋得入啓, 以賞蓮獻壽之意, 製絕句以進。 承旨、史官, 各一員留宮, 其餘皆詣景福宮。” 承政院, 時院中水精葡萄一架熟, 承旨等摘盛水盤以獻王, 下御製一絕曰 水盤濃碧味聒寒, 自喜誠心賴舊完。 不啻可消沈酒毒, 應和病胃與傷肝。 仍傳曰: “詩言志, 不知其拙, 今下詩章, 近於可觀乎?” 承旨等啓, 特賜天章, 意甚隆美, 臣等無任感激。”</p>
연산 58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 (弘治) 18년) 7월 27 일(경술) 1번째기사	전교하기를, “풍저창(豐儲倉)의 쌀 30석을 대내에 들이라.” 하였다. 우승지(右承旨) 한순(韓恂)에게 명하여 경회루(慶會樓)에 가서 섬돌을 보수하는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	庚戌/傳曰: “豐儲倉米三十碩, 入內。” 命右承旨韓恂, 往慶會樓, 監督補階之役。

<p>풍저창의 쌀 30석을 대내에 들이게 하고, 우승지 한순에게 경회루 섬돌 보수 공사를 감독하게 하다</p>		
<p>연산 59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弘治) 18년) 8월 2일 (갑인) 3번째기사 사슴 꼬리와 혀를 봉진하며 수효를 쓰지 않은 함경도 관찰사 박건을 국문하게 하다</p>	<p>사슴의 꼬리와 혀를 봉진(封進)하는 서장(書狀)에 그 수효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함경도 관찰사(咸鏡道觀察使) 박건(朴健)을 국문하도록 명하였다. 왕이 사슴의 꼬리와 혀를 즐겨 먹으므로 별례(別例)로 팔도에서 거두되 한 달도 빠짐 없으며, 각도가 미쳐 수효를 채워 봉진하지 못하고 설리 내관(薛里內官)5107)에게 청해서 사들이므로 서장에 그 수효를 쓰지 못했으며, 사슴 꼬리 한 개의 값은 베[布] 30필이었다.</p>	<p>以鹿尾舌封進書狀內，不書其數，命鞠咸鏡道觀察使朴健。王好啖鹿尾舌，別徵八道，無虛月，各道未及備數封進。求買於薛里內官，故書狀不書其數，鹿尾一箇，直布三十匹。</p>
<p>연산 59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弘治) 18년) 8월 6일 (임오) 2번째기사 사도시의 갯미 5석, 중미 10석을 대내에 들이게 하다</p>	<p>전교하기를, “사도시(司稾寺)의 갯미(粳米)5111) 5석(碩), 중미(中米) 10석을 대내에 들이라.” 하였다.</p>	<p>傳曰：“司(導) [稾] 寺粳米五碩·中米十碩，入內。”</p>
<p>연산 59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弘治) 18년) 8월 12일(갑자) 1번째기사 태평 시대라 하여, 장의문 밖 신정에서 잔</p>	<p>전교하기를, “대사례 시사관(大射禮侍射官) 및 사옹원 제조(司饗院提調)에게 오늘 장의문(藏義門) 밖 신정(新亭)에서 잔치를 내리리라. 또한 시를 잘 짓는 자는 지어 바치라. 이러한 일을, 변변치 못한 자는 임금과 신하가 향락에 빠진다고 하겠지만, 태평한 때에 상하(上下)가 서로 화목하고 조야(朝野)가 무사하니, 비록 화려한 연석(宴席)을 자주 베풀든 무슨 안 될 일이 있으랴. 하물며 옛 제왕</p>	<p>甲子/傳曰：“大射禮侍射官及司饗院提調，今日於藏義門外新亭賜宴。且能製詩者製進。如此事，不肖者以爲君臣耽樂，然太平之時，上下相和，朝野無事，雖頻設華筵，以報昇平，有何不可? 況古之帝王，皆有離宮，以爲燕閒</p>

<p>치를 내리고 시를 지어 바치게 하다</p>	<p>(帝王)이 다 이궁(離宮)이 있어 한가히 쉬는 곳으로 하기를, 당(唐)이 피서를 여산(驪山)에서 하듯 함에라! 전조(前朝)5116) 에도 장원정(長源亭)이 있었으니, 지금의 신정(新亭) 또한 무슨 방해가 되랴.” 하였다.</p>	<p>之所，如唐之避(署) [暑] 驪山。前朝亦有長源亭，今之新亭，亦何妨害?”</p>
<p>연산 59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弘治) 18년) 8월 13일(을축) 1번째기사 승지 강혼 등을 보내어 채홍준 체찰사 임홍재를 맞이해 위로하도록 하다</p>	<p>승지 강혼 등을 보내어 선온(宣醞)5118) 을 가지고 우찬성(右贊成) 이계동(李季叟)과 함께 노량(鷺梁)5119) 에 가서 채홍준 체찰사(採紅駿體察使) 임승재(任崇載)를 맞이해 위로하도록 명하였다.</p>	<p>乙丑/命遣承旨姜渾等，賚宣醞。與右贊成李季叟，往路梁，迎慰採紅駿體察使任崇載。</p>
<p>연산 59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弘治) 18년) 8월 13일(을축) 3번째기사 광릉 봉선전의 제물을 수호군 없이 역마로 날라 옮기게 하다</p>	<p>전교하기를, “이제부터 광릉(光陵) 봉선전(奉先殿)의 제물(祭物)은 수호군(守護軍) 없이 역마(驛馬)로 날라 옮기라.” 하였다. 그때 광릉이 금표(禁標) 안에 들었으므로, 삭망제(朔望祭)에는 봉선사(奉先寺)의 주지승(住持僧)으로 하여금 행향(行香)하게 하였다.</p>	<p>傳曰：“自今光陵奉先殿祭物，除守護軍，以驛馬輸轉。”時光陵入標內，故朔望祭，令奉先寺住持僧行香。</p>
<p>연산 59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弘治) 18년) 8월 15일(정묘) 6번째기사 풍저창의 쌀 30석을 대내에 들이게 하다</p>	<p>전교하기를, “풍저창(豐儲倉)의 쌀 30석을 대내(大內)에 들이랴.” 하였다.</p>	<p>傳曰：“豐儲倉米三十碩，入內。”</p>
<p>연산 59권, 11년</p>	<p>왕이 대비에게 진연(進宴)하고, 양화문(陽華門) 안에서 종재(宗宰) 2품 이상을</p>	<p>己巳/ 王進宴于大妃，饋宗宰二品以上</p>

<p>(1505 을축 / 명 홍치 (弘治) 18년) 8월 17 일(기사) 1번째기사 대비에게 진언하다. 어 제시를 내리고 술을 취하도록 마시게 하다</p>	<p>공궤(供饋)하였는데, 사악(賜樂)하고 분국(盆菊)을 내렸다. 어제시 세 절구(節句)를 내리기를, 태평한 때 가을 관광 꺼리지 말라 국화 떨기 금빛 품고 향기 아직 안 토했네 푸른 술 향그러우니 궁온에 띄워라 서리내린 후 온 가지가 누렇게 할 것 없네 조야가 편안하여 태평한 이때 잔치를 허했으니 취할 만하다 언제나 용렬한 나 영덕 없음 부끄러운데 오늘은 군영 많음 되려 즐거우이 큰 은혜 정말 느껴 즐기기를 꺼려 말라 낮 닭이 한창 조니 해가 어찌 기우라 대궐 술 다시 받기 사양치 말라 호방한 임금 나라 편케 하도록 힘쓰면 되네 하고, 승전색(承傳色) 김새(金璽)에게 특별히 한 잔을 내리고서 전교하기를, “취하도록 마셔라.” 하였다.</p>	<p>于陽華門內，賜樂賜盆菊。 下御製詩三絕曰 清時莫厭賞秋光， 叢菊含金未吐芳。 青蘂可香宮醞泛， 不須霜落滿枝黃。 朝安邊謐屬昇平， 恩許華筵可醉觥。 每愧庸予無令德， 還欣今日濟群英。 眞感鴻恩不厭歡， 午雞方睡日何闌。 莫辭更受黃門酒， 都勉豪君欲國安。 命承傳色金璽， 別賜一爵， 而傳曰：“期於必醉。”</p>
<p>연산 59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 (弘治) 18년) 8월 19 일(신미) 4번째기사 제용감 등의 물품을 천과 흥청악 한 사람의 부모에게 날라다 주게 하다</p>	<p>전교하기를, “제용감(濟用監)의 면포(縣布) 50필, 정포(正布) 50필, 백저포(伯苧布) 10필, 명주 10필, 의영고(義盈庫)의 호초(胡椒) 3두(斗)를 천과 흥청악(天科興清樂) 한 사람의 부모에게 날라 보내라.” 하였다.</p>	<p>○傳曰：“濟用監縣布五十四、正布五十四、白苧布十四、紬十四、義盈庫胡椒三斗， 天科興清樂一人父母家輸送。”</p>

<p>연산 59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 (弘治) 18년) 8월 29 일(신사) 3번째기사 사용원으로 재상 및 춘궁관들에게는 공궤 하지 말고 각사로 지 공하게 하다</p>	<p>전교하기를, “사용원(司饗院)의 지공(支供)이 많고도 번잡하여 감당해내지 못하니, 이제부 터 재상(宰相)·빈객(賓客) 및 춘궁관(春宮官)들에게는 모두 공궤(供饋)하지 말 라. 만약 회의로 재상이 종일 예궐(詣闕)하거든 각각 그 사(司)로 하여금 지공 하게 하라.” 하였다. 그래서 재상이 갑자기 부름을 받고 종일 예궐하면, 혹 때를 놓쳐서 굶어 지치기에 이르는 자도 있었다.</p>	<p>傳曰: “司饗院支供浩繁, 莫之能堪, 自今宰相賓(容) [客] 及春宮官等, 竝勿供饋。 如會議宰相, 終日詣闕, 則各令其司支供。” 宰相不時承召, 終日詣闕, 或有失時, 以至飢困者。</p>
<p>연산 59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 (弘治) 18년) 9월 1일 (임오) 5번째기사 술과 국화를 내리고 시를 지어 바치게 하 다</p>	<p>술과 국화 두어 떨기를 회의(會議)하는 재상(宰相)과 승정원(承政院)에 내리고 이르기를, “국화를 띄워 즐겁게 마시고 각기 시(詩)를 지어 바치라.” 하였다.</p>	<p>賜酒及菊花數叢于會議宰相、承政院 曰: “泛菊歡飲, 各製詩以進。”</p>
<p>연산 59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 (弘治) 18년) 9월 2일 (계미) 3번째기사 밤 늦게 도승지 권균 을 불러 술을 내리고 활쏘다</p>	<p>밤 2고(鼓)에 도승지(都承旨) 권균(權鈞)을 불러 대내로 들어오게 하여, 수없 이 술을 내린 다음 활을 쏘고, 승정(崇政)으로 높이고, 내시 안중경(安仲敬)의 서대(犀帶)5232) 을 풀게 하여 그것을 띠게 하였으며, 또 내관 김새(金璽)를 당상(堂上)으로 올리도록 명하였다.</p>	<p>夜二鼓, 召都承(首) [旨] 權鈞入內, 賜酒無算, 射的, 陞崇政, 命脫內侍安仲敬犀帶帶之。 又命內官金璽, 陞堂上。</p>
<p>연산 59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 (弘治) 18년) 9월 5일 (병술) 4번째기사</p>	<p>왕이 인정전(仁政殿)에 임어(臨御)하고,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종친부(宗親府)·의빈부(儀賓府)·충훈부(忠勳府)가 진연(進宴)하였는데, 대비·왕비의 남족(男族) 중 동성 팔촌(同姓八寸)·이성 육촌(異姓六寸) 이상을 아울러 반열에 따르게 하여 공궤(供饋)하고, 아울러 양로연(養老宴)을 베풀고서 노인에게 각각</p>	<p>王御仁政殿, 議政府、六曹、宗親府、儀賓府、忠勳府、忠翊府進宴。 大妃、王妃男族同姓八寸, 異姓六寸以上, 竝令隨班供饋, 兼行養老宴。 老</p>

<p>진연하는데 대비 등의 축친으로 공궤하게 하고, 운평 등에게 면포를 내리다</p>	<p>1자급을 더하되, 수직(授職)할 수 없는 자에게는 면포(縣布)를 내렸으며, 운평악(運平樂)·광희악(廣熙樂) 2백 60인에게도 각각 면포 1필을 내렸다.</p>	<p>人各加一資，不應授職者，賜縣布，運平樂、廣熙樂二百六十人，各賜縣布一匹。</p>
<p>연산 59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 (弘治) 18년) 9월 6일 (정해) 4번째기사 풍저창의 쌀 30석을 대내에 들이게 하다</p>	<p>전교하기를, “풍저창(豐儲倉)의 쌀 30석을 대내에 들이랴.” 하였다.</p>	<p>傳曰：“豐儲倉米三十碩，入內。”</p>
<p>연산 59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 (弘治) 18년) 9월 11일(임진) 6번째기사 풍저창의 쌀 30석을 대내에 들이게 하다</p>	<p>전교하기를, “풍저창(豐儲倉)의 쌀 30석을 대내에 들이랴.” 하였다</p>	<p>傳曰：“豐儲倉米三十碩，入內。”</p>
<p>연산 59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 (弘治) 18년) 9월 13일(갑오) 7번째기사 풍저창의 쌀 50석을 대내에 들이게 하다</p>	<p>전교하기를, “풍저창(豐儲倉)의 쌀 50석을 대내에 들이랴.” 하였다.</p>	<p>傳曰：“豐儲倉米五十碩，入內。”</p>
<p>연산 59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 (弘治) 18년) 9월 15일(병신) 6번째기사</p>	<p>전교하기를, “궁인의 빈(殯)에는 으레 반상(飯床)을 써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하고, 낮에는 다례(茶禮)를 지내되, 각사(各司)로 하여금 갖추어 들이게 하고, 내관(內官)이 제사지내라.”</p>	<p>傳曰：“宮人之殯，例用飯床，祭朝夕，晝則行茶禮，令各司備納，而內官祭之。”</p>

궁인의 빈에 제사하는 형식에 대해 전교하다	하였다.	
연산 60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 (弘治) 18년) 10월 15일(병인) 6번째기사 장 숙용이 헌수할 때에 여러 물품을 본가에 보내게 하다	전교하기를, “장 숙용(張淑容)이 헌수(獻壽)할 때에 백면포(白緜布)·면포(縣布)·정포(正布) 각각 1백 필과 후추 한 섬을 본가에 보내라.” 하였다. 왕이 때때로 숙용과 더불어 그 집을 갔었는데, 그 어머니가 나와 보면 왕은 어머니라고 불렀으며, 숙용은 옆에서 태연히 말하고 웃어 여느 부부와 같았다.	傳曰: “張淑容獻壽時, 白縣布、縣布、正布, 各一百匹, 胡椒一碩, 送本家。” 王時與淑容, 往其家, 其母出謁, 王以母呼之, 淑容從傍言笑自若, 如凡人夫婦。
연산 60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 (弘治) 18년) 10월 16일(정묘) 3번째기사 풍저창의 쌀 3백 석을 대내에 들이게 하다	전교하기를, “풍저창(豐儲倉)에 있는 쌀 3백 석을 대내(大內)로 들이라.” 하였다.	傳曰: “豐儲倉米三碩, 入內。
연산 60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 (弘治) 18년) 10월 20일(신미) 3번째기사 경기와 해사에 무예를 강할 때 군사 5명에게 술과 안주를 마련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무예(武藝)를 강할 때에 군사 5명에 술과 안주를 공궤하겠으니, 경기와 해사(該司)에게 미리 마련하게 하라.” 하였다.	傳曰: “講武時, 軍士五萬, 供饋酒肴, 令京畿及該司預辦。
연산 60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	전교하기를, “풍저창(豐儲倉)의 쌀 30석을 대내로 들이라.”	傳曰: “豐儲倉米三十碩, 入內。

<p>(弘治) 18년) 11월 8일(기축) 2번째기사 풍저창의 쌀 30석을 대내에 들이게 하다</p>	<p>하였다.</p>	
<p>燕山 60卷, 11年 (1505 乙丑 / 명 홍치 (弘治) 18年) 11月 19日(庚子) 5번째기사 사도시의 멥쌀 5석을 대내에 들이게 하다</p>	<p>전교하기를, “사도시(司禦寺)의 멥쌀[粳米] 5석을 대내로 들이라.” 하였다.</p>	<p>傳曰: “司禦寺粳米五碩, 入內。”</p>
<p>연산 60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 (弘治) 18년) 12월 1일(신해) 6번째기사 각도에서 바치는 물건은 횡간의 식례에 구애하지 말고 연속 봉진하게 하다</p>	<p>전교하기를, “각도에서 바치는 물선(物膳)은 횡간(橫看)의 식례(式例)에 구애될 것 없이 절후에 따라 연속 봉진(封進)하도록 하라.” 하였다.</p>	<p>傳曰: “各道物膳, 不拘橫看式例, 隨節連續封進。”</p>
<p>연산 60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 (弘治) 18년) 12월 4일(갑인) 1번째기사 사도시의 멥쌀 10석, 중미 10석을 대내로 들이게 하다</p>	<p>전교하기를, “사도시(司禦寺)의 멥쌀[粳米] 10석, 중미(中米) 10석을 대내로 들이라.” 하였다.</p>	<p>甲寅/傳曰: “司禦寺粳米十碩, 中米十碩, 入內。”</p>
<p>연산 60권, 11년</p>	<p>전교하기를,</p>	<p>傳曰: “大妃殿本宮, 豐儲倉米二百碩</p>

<p>(1505 을축 / 명 홍치 (弘治) 18년) 12월 8일(무오) 3번째기사 대비전과 본궁에 풍저창의 쌀 2백 석을 실어 보내게 하다</p>	<p>“대비전(大妃殿)과 본궁에 풍저창(豐儲倉)의 쌀 2백 석을 실어 보내라.” 하였다.</p>	<p>輸送。”</p>
<p>연산 60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 (弘治) 18년) 12월 13일(계해) 3번째기사 쌀과 서적전의 종자를 내수사로 보내게 하다</p>	<p>전교하기를, “쌀 6백 석과 서적전(西籍田)5363) 의 종자 올벼[早稻] 13석을 내수사(內需司)로 보내라.” 하였다.</p>	<p>傳曰: “米六百碩及西籍田種子早稻十三碩, 送內需司。”</p>
<p>연산 60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 (弘治) 18년) 12월 15일(을축) 6번째기사 풍저창의 쌀 30석을 대내로 들이게 하다</p>	<p>전교하기를, “풍저창의 쌀 30석을 대내에 들이라.” 하였다.</p>	<p>傳曰: “豐儲倉米三十碩, 入內。”</p>
<p>연산 60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 (弘治) 18년) 12월 16일(병인) 2번째기사 내자시의 찹쌀 10석을 대내로 들이게 하다</p>	<p>전교하기를, “내자시(內資寺)의 찹쌀[粘米] 10석을 대내에 들이라.” 하였다.</p>	<p>傳曰: “內資寺粘米十碩, 入內。”</p>
<p>연산 60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p>	<p>전교하기를, “사도시(司樂寺)의 맷쌀 5석을 대내로 들이라.”</p>	<p>傳曰: “司樂寺粳米五碩, 入內。”</p>

<p>(弘治) 18년) 12월 20일(경오) 3번째기사 사도시의 뱀쌀 5석을 대대로 들이게 하다</p>	<p>하였다.</p>	
<p>연산 60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 (弘治) 18년) 12월 23일(계유) 2번째기사 성종의 기신에 고기 반찬 아닌 소찬을 올린 사옹원의 관계 관원을 국문하게 하다</p>	<p>전교하기를, “임금이 이미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였으니, 오늘은 마땅히 고기 반찬을 올려야 할 것인데 감히 소찬[素膳]을 올렸으니, 사옹원(司饗院)의 관계 관원을 국문하라.” 하였다는데, 이날이 바로 성종 기신 재계(忌辰齋戒)의 날이었다. 이보다 앞서 왕에게 진계(進戒)하는 자가 성종을 본받으라고 많이 말했는데 왕이 듣기를 싫어하였으며, 그 소행이 무도하여 항상 성종과 반대되므로 성종을 매우 미워하고 원망하였다. 하루는 내관 박성림(朴成林)이 세자의 처소로부터 왔다. 왕이 ‘세자가 얼마나 성취하였던가?’ 하며, 성림은 대답하기를 ‘세자의 기상이 꼭 성종을 닮았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왕은 노하여 칼을 잡고 쳐서 거의 죽였다가 다시 살아났다. 또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왕이 궁중에서 성종의 반신(半身) 영정(影幀)을 가져다가 표적으로 삼아 활을 쏘기도 하고, 혹 크게 취하여 미쳐서 부르짖으며, 좌우에 명하여 선릉(宣陵)5372) 을 파가지고 오라 했다.’고 하였다.</p>	<p>傳曰：“國君既令勿行，則今日當用肉膳，而敢進素膳，其鞫司饗院該員。”是日乃成宗(忌辰) [忌辰] 齋戒也。前此進戒于王者，多以請法成宗爲言，王惡聞之，其所行不道，常反於成宗，疾怨成宗甚。一日內官朴成林，自世子所來。王曰：‘世子成就何如?’成林對：‘世子氣象，正類成宗。’王怒手劍擊之，幾死甦。且人云：‘王於宮中，取成宗半影幀，爲的而射之，或大醉狂叫，命左右破取宣陵。’</p>
<p>연산 60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 (弘治) 18년) 12월 23일(계유) 4번째기사 길이가 3자 되는 다리꼭지 5만 개를 팔도에 배정하여 봉진하게 하</p>	<p>전교하기를, “길이가 3자 되는 다리꼭지 5만 개를 팔도에 배정하여 봉진(封進)하게 하라.” 하였다.</p>	<p>○傳曰：“長三尺鬚子五萬，分定于八道封進。”</p>

<p>다</p> <p>연산 60권, 11년 (1505 을축 / 명 홍치 (弘治) 18년) 12월 25 일(을해) 3번째기사 서운을 경상도에 보내 어 진기한 새 등을 올 리게 하고, 겸하여 불 법을 살피게 하다</p>	<p>내관 서운(徐溫)을 경상도에 보내어 매와 개 및 기이한 새·괴이한 짐승·해채(海菜)·과실나무와 잡물들을 모아 배에 실어 보내게 하고, 겸하여 도내의 죄인과 수령의 불법 등을 살펴보도록 하였다. 또 감사(監司)에게 효유하여 서운과 더불어 함께 살피도록 하였다.</p> <p>그때 진기한 새·괴이한 짐승과 아름답고 이상한 나무들을 짚어지고 실은 것이 길에 잇달고 끊어지지 않아, 군민을 징발하기 때문에 민간이 소요하였다. 그래도 부족하면 길 가는 사람을 또한 이고 지게 하였으며, 만약 말을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영솔해 가는 자가 ‘진상(進上)하는데 말이 범했다.’고 하여, 매질하고 때리며 의복을 겁탈하므로, 동서로 길가는 자가 감히 쳐다보지 못하였다.</p>	<p>遣內官徐溫于慶尙道，採鷹犬及奇禽、怪獸、海菜、果木與雜物，載船上送，兼察道內罪人及守令不法事。且諭監司，與溫同行審考。時珍禽、怪獸、佳木、異樹，擔載於途，相續不絕，調發軍民，民間騷擾。如有不足，行路之人，亦令擔負，如有騎馬過行者，領來者以謂：‘進上犯馬。’鞭笞毆掠，規奪衣服，東西行路，莫敢仰視。</p>
<p>연산 61권, 12년 (1506 병인 / 명 정덕 (正德) 1년) 1월 3일 (계미) 1번째기사 쌀 1백 석을 대비전 본궁으로 수송하게 하 다</p> <p>연산 61권, 12년 (1506 병인 / 명 정덕 (正德) 1년) 1월 3일 (계미) 1번째기사 쌀 1백 석을 대비전 본궁으로 수송하게 하 다</p>	<p>전교하기를, “쌀 1백 석을 대비전(大妃殿) 본궁으로 수송하게 하라.” 하였다.</p>	<p>癸(巳) [未] /傳曰：“米一百碩，輸送大妃殿本宮。”</p>
<p>연산 61권, 12년 (1506 병인 / 명 정덕</p>	<p>전교하기를, “지금 용도가 호변하니, 각도에서 진상하는 물선(物膳)을 더 정하라.”</p>	<p>傳曰：“今用度繁浩，各道凡進上物膳加定。”</p>

<p>(正德) 1년) 1월 16일 (병신) 8번째기사 각도에서 진상하는 물 건을 더 정하게 하다</p>	<p>하였다.</p>	
<p>연산 61권, 12년 (1506 병인 / 명 정덕 (正德) 1년) 1월 25일 (을사) 1번째기사 어서시를 정원에 내리 고 화답하여 지어 바 치게 하다</p>	<p>어서시(御書詩)를 정원에 내리기를, 참새는 가지를 다투다가 떨어지고 비충도 원에 가득히 노니고 있네. 막걸리야 너를 누가 만들었더냐 한 잔으로 천 가지 근심을 잊어버리네 하고, 이 뜻으로 화답시를 지어 바치게 하였다.</p>	<p>乙(卯) [巳] / 下御書詩于政院曰: 掉雀爭枝墮, 飛蟲滿院遊。 濁醪誰造 汝? 一酌散千憂。 以此意和進。</p>
<p>연산 61권, 12년 (1506 병인 / 명 정덕 (正德) 1년) 2월 3일 (계축) 3번째기사 승지 김준손이 금표 지도를 올리니, 송이가 난다고 백운산까지 금 표 안에 넣게 하다</p>	<p>승지 김준손(金俊孫)이 금표 지도(禁標地圖)를 올리니, 전교하기를, “듣건대 백운산(白雲山)에서 송이버섯[松蕈]이 난다 하니, 모두 금표 안에 들 게 하라.” 하였다. 준손(俊孫)은 미천한 출신으로 늙어서 승지가 되었는데, 술 마시기만 좋아하 여 국사가 날로 글러지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매양 주상의 덕분이라고 일컫 고 스스로 ‘은총을 오래도록 보전할 것이다.’ 하여, 때로는 성낸 기운으로 낭 속(郎屬)들을 욕하고 꾸짖었다.</p>	<p>承旨金俊孫, 進禁標地圖, 傳曰: “聞 白雲山產松蕈, 并入禁標。” 俊孫起自 微賤, 老爲承旨, 喜飲酒, 不知國事日 非。 每稱上德, 自謂 ‘恩眷可長保’, 時發怒氣, 詬罵郎屬。</p>
<p>연산 61권, 12년 (1506 병인 / 명 정덕 (正德) 1년) 2월 4일 (갑인) 1번째기사 대비에게 진연하고 빈 의 친족을 공궤하다. 술에 취하여 희롱하며</p>	<p>왕이 경복궁에 납시어 대비에게 진연(進宴)을 하고, 명하여 승정원과 빈(嬪)의 친족을 공궤하였다. 그리고 친히 김감(金勘)·김수동(金壽童)과 승지 등을 내전 으로 인견(引見)하고 술을 내렸다. 왕이 술이 취하여 희롱하며 춤추는 것이 배우(優人) 같았으며, 명하여 김준손(金俊孫)의 모자를 벗기고 머리를 두드리 게 하였으니, 준손은 나이 늙어 머리가 벗어졌으므로 희롱한 것이다. 밤중이 되어 모두 취하여 붙들고 나갔다.</p>	<p>甲(子) [寅] / 王如景福宮, 進宴于大 妃, 命饋承政院及嬪族親。 引見金 勘、金壽童、承旨等于內殿, 賜酒。 王醉戲舞, 如優人, 命金俊孫。 脫帽 扣頭, 俊孫年老頭童, 故戲之。 夜分 皆扶醉而出。</p>

<p>놀다</p> <p>연산 61권, 12년 (1506 병인 / 명 정덕 (正德) 1년) 2월 10일 (경신) 1번째기사 금포 안에 경작할 만 한 땅을 내수사 등으 로 경작하게 하다</p>	<p>전교하기를, “금포 안에도 기름져서 경작할 만한 땅에는, 올벼[早稻]를 심되 내수사(內需司)가 적전관(籍田官)과 함께 제조와 수확을 하여, 많고 적음을 계산하여 승부를 결정하여 상과 벌을 주라.” 하였다.</p>	<p>庚(午) [申] /傳曰: “禁標內沃饒可耕之地, 種早稻, 內需司同籍田官, 除草收(獲) [穫], 計多少勝負賞罰。”</p>
<p>연산 61권, 12년 (1506 병인 / 명 정덕 (正德) 1년) 2월 14일 (갑자) 3번째기사 어울어 나무를 각 고 을에 심게 하고, 장원 서로 하여금 감찰하게 하다</p>	<p>전교하기를, “어울어 정과(於乙於正果)의 맛이 좋으나, 각 고을에 명하여 어울어 나무를 많이 심게 하고, 장원서(掌苑署)에서는 배식(培植)한 것을 검찰하여 말라 죽은 조수(條數)는 사유를 갖춰 계달하라.” 하였다.</p>	<p>傳曰: “於乙於正果味好, 令各官多栽於乙於木, 掌苑署檢察培植, 枯死條數, 具由啓達。”</p>
<p>연산 61권, 12년 (1506 병인 / 명 정덕 (正德) 1년) 2월 19일 (기사) 7번째기사 햐쌀이 부족하여 각도 에 더 상납하게 하다</p>	<p>전교하기를, “햐쌀[粳米]이 부족하니, 각도에 더 나눠 정하여 상납하게 하라.” 하였다.</p>	<p>傳曰: “粳米不足, 各道加分定上納。”</p>
<p>연산 61권, 12년 (1506 병인 / 명 정덕 (正德) 1년) 2월 27일 (정축) 1번째기사</p>	<p>전교하기를, “사용원(司饗院)의 감납 물선 부제조(監納物膳副提調) 통정 당상(通政堂上) 4원, 통훈(通訓) 3원, 4품 3원을 모두 문관으로 차임하고, 통정 제조(通政提調)</p>	<p>丁(亥) [丑] /傳曰: “司饗院監納物膳副提調通政堂上四員, 通訓三員, 四品三員, 並以文官差任, 通政提調, 有故遞任, 次次陞授。”</p>

<p>사옹원의 감납 물선 부제조 등을 모두 문관으로 차임하게 하다</p>	<p>가 유고하거나 체임되었을 경우에는 차례차례 올려서 제수하라.” 하였다.</p>	
<p>연산 61권, 12년 (1506 병인 / 명 정덕 (正德) 1년) 2월 27일 (정축) 12번째기사 사기·목기를 진상하지 않는 상인을 국문하게 하다</p>	<p>전교하기를, “오는 3월 2일에 홍청·운평 등 2천 명을 공궤할 사기(沙器)·목기(木器)를 거부하고 진상하지 않으니, 시장 사람을 국문하라. 그리고 한성부 낭청을 시켜, 아전을 많이 데리고 밀위청 낭청과 함께 상인의 집을 수색하여 진상하게 하라. 만약 거부하는 자가 있거든 장 80으로 직단(直斷)하라.” 하였다.</p>	<p>傳曰: “來三月初二日, 興清、運平等二千供饋沙、木器, 拒不進排, 其鞫市人。且令漢城府郎廳, 多率衙前, 與密威廳郎廳, 搜索市利人家進排。若有拒者, 杖八十直斷。”</p>
<p>연산 61권, 12년 (1506 병인 / 명 정덕 (正德) 1년) 3월 4일 (갑신) 1번째기사 정랑 이희보 등을 승진시키고 술을 내리니, 크게 취하여 예도를 벗어나다</p>	<p>정랑 이희보(李希輔), 주서 송인수(宋仁粹), 판서 김수동(金壽童)을 대내로 명소(命召)하여 술을 하사하고, 특히 희보는 통훈(通訓)으로 올려 돈령 부정(敦寧副正)을 제수하고, 인수는 4품으로 올리고, 수동에게는 채단 첩릭[帖裏]으로 안장을 갖춘 말을 내리고, 희보·인수에는 말 한 필씩 내렸는데, 모두 친히 말을 끌고 머리를 조아리며 사례하게 하였다. 인수는 본래 술을 잘 마셨으므로 왕이 큰 그릇으로 수도 없이 내렸으나, 인수는 곧 고래가 빨아들이듯 하므로, 왕이 매우 장하게 여겼다. 희보는 상의 앞에서 크게 취하자, 왕은 장난삼아 밀감[柑子]을 희보에게 던지니, 희보는 널름 주워 소매자락에 넣으면서 말하기를, “돌아가서 노모(老母)에게 주겠습니다.” 하고, 거지(擧止)가 예절에서 벗어났다. 왕이 인수에게 이르기를, “희보가 취했다.” 하니, 인수가 곧 붙들고 문밖으로 나와서 내관을 시켜 지키게 하였는데, 희보는 되돌아 들어가려 하였다. 문지기가 말렸더니, 희보는 취하여 부르짖기를, “다시 들어가 금대(金帶)5500) 를 보겠다.”</p>	<p>甲(午) [申] /命召正郎李希輔、注書宋仁粹、判書金壽童于內, 賜酒。特陞希輔通訓, 除敦寧副正, 仁粹陞四品階, 賜壽童綵段帖裏鞍具馬, 希輔、仁粹馬一匹, 皆令親牽叩頭以謝。仁粹素善飲, 王以大器無算, 仁粹卽如鯨吸, 王甚壯之。希輔於上前大醉, 王戲投柑于希輔, 希輔輒取諸袖中曰: “歸遺老母。”舉止失容。王謂仁粹曰: “希輔醉矣。”仁粹卽扶出門外, 令內官守之, 希輔欲還入。闔者止之, 希輔醉叫曰: “更入覩金帶。”闔寺駭愕曳出。</p>

<p>연산 61권, 12년 (1506 병인 / 명 정덕 (正德) 1년) 3월 14일 (갑오) 2번째기사 쇠고기 먹기를 좋아하 여, 사축서에 소를 많 이 길러 바치게 하다</p>	<p>하므로, 혼시(閹寺)5501) 들이 깜짝 놀라 끌어냈다. 편 송아지[蒸牛兒]를 내리고 전교하기를, “사축서(司畜署)를 시켜 소를 많이 길러 위에 바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물건은 희생(犧牲)5516) 뿐만이 아니라 상용(常用)에도 편리하다.” 하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상고가 진실로 지당하옵니다.” 하였다. 왕이 쇠고기 먹기를 좋아하여, 매양 대내에서 잔치할 때에는 불시(不時)에 올 리라 하므로, 사축서에서 미처 준비하지 못할 때는, 길가는 소를 빼앗아 때려 잡아서 바치니, 원망하는 자가 길에 가득하였다.</p>	<p>下蒸牛兒于承政院，傳曰：“令司畜署， 多畜牛，供上何如？此物非但犧牲，常 用爲便。”承旨等啓，“上教允當。” 王好食黃牛肉，每於內宴，不時供進， 司畜署未能及備，奪行路牛隻，椎殺而 進，怨呼者盈路。</p>
<p>연산 61권, 12년 (1506 병인 / 명 정덕 (正德) 1년) 3월 23일 (계묘) 4번째기사 어울어 밀장을 승정원 에 내리고, 어제시를 내려 차운하여 바치게 하다</p>	<p>어울어 밀장(於乙於蜜醬)을 승정원에 내리고 어제시(御製詩)를 내리기를, 빛은 단사보다 나아 목마른 폐를 적서주고 맛은 앵두 열매 같아 늙어가는 얼굴을 새롭게 하네 누가 알았으리 산중에서 가장 친한 과일이 천금 가치를 지녀 대궐까지 바쳐질 줄을 하고, 명하여 차운하여 바치게 하였다.</p>	<p>賜於乙於蜜漿于承政院，下御製詩曰 色勝丹砂霑渴肺，味堪櫻實改衰容。 誰知最賤山中菓，價直千金獻九重。 命賡進。</p>
<p>연산 61권, 12년 (1506 병인 / 명 정덕 (正德) 1년) 3월 29일 (기유) 1번째기사 어제시를 내려 차운하 여 바치게 하고, 최해 등을 참석시켜 망원정 에 가서 놀다</p>	<p>전교하기를, “이제 이미 봄이 다하였으니, 정원은 한강에 나가 놀라.” 하고, 주악(酒樂)을 하사하였다. 그리고 어제시(御製詩)를 내리기를, 봄이 애뜻하여 푸른 강에서 놀기를 허하노니 술잔 속에서 많은 시름 잊으리라 취하여 생각을 들으니 돌아갈 뜻이 느슨하이 다시 화류가 어여빠서 오래 머물고 싶네 하고, 명하여 차운하여 바치게 하였다. 이어서 망원정(望遠亭)에 가서 놀았다.</p>	<p>己(未) [西] /傳曰：“今已春盡，政院 出遊漢江。”賜酒樂。下御製詩曰 惜春恩許碧江遊，盃裏能消萬斛愁。 醉聽笙歌歸意緩，更憐花柳可遲留。 命賡進。仍命往遊望遠亭。且龍廡 內乘及曹繼衡、崔濯竝參，判書金勘， 齋宣醞亦參。</p>

	그리고 용구 내승(龍廐內乘) 조계형(曹繼衡)·최해(崔澮)도 참석하였고, 판서 김감(金勘)도 선운(宣醞)5540) 을 가지고 또한 참석하였다.	
연산 61권, 12년 (1506 병인 / 명 정덕 (正德) 1년) 3월 29일 (기유) 3번째기사 명하여 호초 5석을 들 이다	명하여 호초(胡椒) 5석(碩)을 들었다.	命入胡椒五碩。
연산 62권, 12년 (1506 병인 / 명 정덕 (正德) 1년) 4월 25일 (갑술) 13번째기사 여지를 연경에서 사들 이고, 호초를 왜인에서 사들이게 하다	전교하기를, “달인 꿀과 같은 여지(荔枝)를 연경에서 사들이고, 호초(胡椒)는 다수를 왜인 에게 사들이라.” 하였다.	傳曰：荔枝甘如蜜煎者，令買於燕京， 胡椒多買倭人。”
연산 62권, 12년 (1506 병인 / 명 정덕 (正德) 1년) 4월 26일 (을해) 3번째기사 호초 24석을 들이게 하다	호초 24 석을 들이게 하였다.	命入胡椒二十四碩
연산 62권, 12년 (1506 병인 / 명 정덕 (正德) 1년) 5월 9일 (무자) 2번째기사 의정부 등을 한강에	의정부·육조·승정원을 한강에서 나가 놀이하도록 하고, 술과 풍악을 내렸다. 전교하기를, “무릇 장의 신정(藏義新亭)·망원정(望遠亭)·한강과 같은 데를 거둥하게 될 때 는, 각기 수용할 잡물(雜物)을 가져다 두고 내수사 종으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라.”	命議政府、六曹、承政院，遊賞漢江， 賜酒樂。傳曰：“凡舉動如藏義新亭、 望遠亭、漢江等處，各置需用雜物，令 內需司奴守之。”

나가 놀이하게 하고 술과 풍악을 내리다	하였다.	
연산 62권, 12년 (1506 병인 / 명 정덕 (正德) 1년) 5월 17일 (병신) 13번째기사 후추를 들이도록 명하다	후추 5석 10두를 들이도록 명하였다.	命入胡椒五碩十斗
연산 62권, 12년 (1506 병인 / 명 정덕 (正德) 1년) 6월 17일 (을축) 4번째기사 잠령에서 의정부 등에 술과 풍악을 주게 하다	전교하기를, “잠령(蠶嶺)에서 의정부·육조 판서·승정원에 술과 풍악을 주라.” 하였다.	傳曰: “議政府、六曹判書、承政院, 賜酒樂于蠶嶺。”
연산 62권, 12년 (1506 병인 / 명 정덕 (正德) 1년) 6월 17일 (을축) 3번째기사 종친부 등을 내연에 참여시키고자 하다	전교하기를, “진연(進宴)할 때 참여하는 사람이 스스로 연수(宴需)5632) 를 마련하는 것은 곧 그 성의를 보이는 것이다. 옛날에도 구족(九族)5633) 을 친(親)하는 것을 중하게 여겼으니, 종친부(宗親府)·의빈부(儀賓府)를 내연(內宴)에 참여하게 함이 어떠한가?” 하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매우 지당하십니다.” 하였다.	傳曰: “進宴時入參人員, 自備宴需, 乃取其誠意。 古者以親九族爲重, 宗親、儀賓, 令赴內宴何如?” 承旨等啓, “上教甚當。”
연산 62권, 12년 (1506 병인 / 명 정덕 (正德) 1년) 6월 23일	각도에 유사하여, 쇠고기 포를 진상하되 만약 날씨가 차면 생육(生肉)으로 진상하게 하였다. 이에 앞서 소 도살의 금령(禁令)을 풀었고, 또 공연(公宴)에는 쇠고기를 쓰도	諭各道進牛脯, 若日寒進生肉。 前此弛殺牛之禁, 又令公宴用牛肉, 自此闕內用之無忌, 內人私辦宴具以進, 至一

<p>(신미) 4번째기사 각도에 쇠고기를 진상 하되 날씨가 차면 생 육으로 진상하게 하다</p>	<p>록 하므로 이때부터 궐내에서는 쇠고기를 꺼림없이 쓰고, 나인이 사사로이 잔 치를 마련해 드리는 데에도 한꺼번에 8,9마리의 소를 잡았으며, 다른 비용도 이와 맞먹었다.</p>	<p>殺八九牛，他費稱是。</p>
<p>연산 63권, 12년 (1506 병인 / 명 정덕 (正德) 1년) 7월 9일 (병술) 3번째기사 진상을 조심스럽게 하 지 않은 자는 장치고 파직시키게 하다</p>	<p>전교하기를, “진상(進上)을 조심스럽게 하지 않는 사람은 아울러 장(杖)을 치고 파직시키 라.” 하였다.</p>	<p>傳曰：“進上不謹人，竝決杖罷職。</p>
<p>연산 63권, 12년 (1506 병인 / 명 정덕 (正德) 1년) 7월 16일 (계사) 4번째기사 각도의 진상품을 수송 할 때 갑사 등으로 호 송토록 하게 하다</p>	<p>전교하기를, “각도의 진상품을 수송할 때에는 연로(沿路)의 각 고을로 하여금 활 잘 쏘는 갑사(甲士) 및 무사(武士)를 선발하여 호송토록 하되, 만약 도둑을 만나 능히 체포한 사람은 별사(別仕)5649) 를 주라.” 하였다.</p>	<p>傳曰：“各道進上輸轉時，其令沿路各 官，擇能射甲士及武士護送，若遇盜 賊，能捕捉者，給別仕。</p>
<p>연산 63권, 12년 (1506 병인 / 명 정덕 (正德) 1년) 7월 21일 (무술) 4번째기사 연꽃과 술을 승정원에 내려 구경하게 하다</p>	<p>연꽃과 술을 승정원에 내리며 전교하기를, “술을 마시면서 연꽃을 구경하라. 나 역시 구경하겠다.” 하였다.</p>	<p>下蓮花及酒于承政院，傳曰：“飲酒兼 賞蓮花。予亦賞之。”</p>
<p>연산 63권, 12년 (1506 병인 / 명 정덕</p>	<p>왕이 미행(微行)하여 경복궁에 이르러 대비전에 잔치를 올리고, 승정원 녹고 관(錄考官)에게 음식을 공궤하도록 하였다.</p>	<p>癸卯/王微行，至景福宮，進宴于大妃 殿，命饋承政院錄考官。</p>

<p>(正德) 1년) 7월 26일 (계묘) 1번째기사 대비전에 잔치를 올리고 승정원 녹고관에게 음식을 공케하도록 하다</p>		
<p>연산 63권, 12년 (1506 병인 / 명 정덕 (正德) 1년) 8월 1일 (무신) 11번째기사 각도의 진상은 수령이 직접 호송하여 바치게 하다</p>	<p>전교하기를, “이뒤부터 각도에서 진상할 때에는 수령이 호송하여 바치는 것이 옳다.” 하였다. 각역(各驛)이 조간 피폐하여 무릇 진상한 때에 중도에서 지체되어 기일 안에 도착하지 못하므로 이와 같은 전교를 한 것이다.</p>	<p>傳曰：“今後各道進上，令守令押領上納可也。”各驛殘弊，凡進上留滯中道，未能及期上來，故有是傳。</p>
<p>연산 63권, 12년 (1506 병인 / 명 정덕 (正德) 1년) 8월 12일 (기미) 1번째기사 수려정에서 대비께 잔치를 올리고 공주 등 여자들만 참여시키다</p>	<p>왕이 미행(微行)하여 수려정(秀麗亭)에 이르러 대비(大妃)께 잔치를 올렸다. 내시객(內侍客)으로 공주(公主)·옹주(翁主)·대군(大君)·왕자군(王子君)의 부인과 사대부의 처가 모두 참여하였는데, 그들이 출입할 때 모두 여종이 말을 끌었다. 승지 한순(韓恂) 등은 모두 정자 두어 리(里) 밖에 머물고 있고, 강혼(姜渾)만이 잔치하는 곳에 들어가 음식을 감독하였다.</p>	<p>己未/王微行，至秀麗亭，進宴大妃。內侍客公主、翁主、大君、王子君夫人、士大夫妻并參。其出入，皆以女奴牽馬，承旨韓恂等，皆止亭數里外，唯姜渾入宴所監膳。</p>
<p>연산 63권, 12년 (1506 병인 / 명 정덕 (正德) 1년) 8월 27일 (갑술) 4번째기사 쌀·면포 등을 대내로 들이게 하다</p>	<p>전교하기를, “쌀 1백 석을 대비전 본궁(大妃殿本宮)으로 실어보내고 면포 5백 필, 정포(正布) 1천 5백 필과 주(紬) 3백 필을 대내로 들이랴.” 하였다.</p>	<p>傳曰：“米一百碩，輸送于大妃殿本宮，絺布五百匹，正布一千五百匹，紬三百匹入內。”</p>

<p>연산 63권, 12년 (1506 병인 / 명 정덕 (正德) 1년) 9월 2일 (기묘) 1번째기사 중종이 경복궁에서 즉위하고 연산군을 폐하여 교동현에 옮기다</p>	<p>금상(今上)5694) 이 경복궁에서 즉위하고 왕을 폐(廢)하여 교동현(喬桐縣)으로 옮겼다. 처음에 왕의 어머니 폐비 윤씨(廢妃尹氏)가 성질이 모질고 질투하였다. 정희(貞喜) 5695) · 소혜(昭惠) 5696) · 안순(安順) 5697) 세 왕후가, 윤씨의 부도(不道)한 짓이 많음을 보고 매우 걱정하여 밤낮으로 훈계하였으나, 더욱 순종하지 않고 악행(惡行)이 날로 심하므로, 성종(成宗)이 할 수 없이 의지(懿旨)5698) 를 품(稟)하여 위로 종묘에 아뢰고 <왕비를> 폐하였었다. 왕은 그때 아직 강보(襁褓) 속에 있었는데, 자라남에 미쳐 성종은 그가 어머니 여윈 것을 불쌍히 여기고, 또 적장(嫡長)이기 때문에 왕세자(王世子)로 세웠다. 그런데 시기와 모집이 그 어미와 같고 성질이 또한 지혜롭지 못하므로 성종은 당시의 단정한 선비들을 골라 뽑아 동궁(東宮)의 관원으로 두어 훈회(訓誨)하고 보도(輔導)함을 특별히 지극하게 하였다. 왕이 오랫동안 스승 곁에 있었고 나이 또한 장성했는데도 문리(文理)를 통하지 못했다. 하루는 성종이 시험삼아 서무(庶務)를 재결(裁決)시켜 보았으나 혼암하여 분간하지 못하므로 성종이 꾸짖기를 ‘생각해 보라. 네가 어떤 몸인가. 어찌 다른 왕자들과 같이 노는 데만 힘을 쓰고 학문에는 뜻이 없어 이같이 어리석고 어둡느냐.’ 하였었는데, 왕이 이 때문에 부왕(父王) 뵈기를 꺼려 불러도 아프다고 핑계하고 가지 않은 적이 많았다. 하루는 성종이 소혜 왕후에게 술을 올리면서 세자를 명소(命召)하였으나, 또한 병을 칭탁하고, 누차 재촉해도 끝내 오지 않으므로, 성종이 나인(內人)을 보내어 살피게 하였더니, 병이 없으면서 이르기를 ‘만약 병이 없다고 아뢰면 뒷날 너를 마땅히 죽이겠다.’ 하매, 나인은 두려워서 돌아와 병이 있다고 아뢰었다. 성종은 속으로 알고 마음에 언짢게 여기며 그만두었었다. 이로부터 <세자를> 폐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으나 금상(今上)이 아직 어리고, 다른 적</p>	<p>己卯/今上即位于景福宮, 王廢遷于喬桐縣。 初, 王母廢妃尹氏, 性悍戾妬忌, 貞熹、昭惠、安順三王后, 見尹氏所爲, 多不道, 甚憂之, 日夜警訓, 愈不順, 惡行日甚。 成宗不得已稟懿旨, 上告宗廟而廢之。 王時尚在襁褓中, 及長, 成宗憐其失母, 且長嫡, 立爲王世子。 猜忌剛戾, 類所出, 性又不慧, 成宗妙選一時端正之士, 備東宮官屬, 訓誨輔導特至。 王久就師傅, 年且長矣, 猶不通解文理。 一日, 成宗試令裁決庶務, 闇不能辨。 成宗責之曰: ‘試思汝身。 是何等身? 寧可與諸子, 同爲優游, 不加意學問, 若是愚暗乎?’ 王以此憚見父王, 其召也, 多稱病不往。 一日, 成宗進酌昭惠王后, 命召世子, 又托疾, 屢促之竟不進, 成宗遣內人視之, 故無疾, 謂曰: ‘爾若不以疾白, 後當殺爾。’ 內人懼, 還以病啓。 成宗心知之, 內不樂而罷。 自是多有廢之之心, 而以今上尙幼, 他無嫡子, 且憫王少弱無恃, 竟不忍也。 及成宗薨, 王在喪疚中, 無戚容, 射殺後苑馴鹿而啗之, 戲遊如平日。 至見群臣, 下教命, 務隱掩矯飾, 外人不知也。</p>
---	---	---

	<p>자(嫡子)가 없으며, 또한 왕이 어리고 약하여 의지할 곳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 차마 못하였다.</p> <p>성종이 승하하자 왕은 상중에 있으면서도 서러워하는 빛이 없으며, 후원의 순록(馴鹿)을 쏘아 죽여 그 고기를 먹으며 놀이 즐기기를 평일과 같이 하였고, 심지어 군신(群臣)들을 접견(接見)하고 교명(敎命)을 내리면서도 숨기고 가리며 거짓 꾸미기를 힘썼는데, 외부 사람들은 알지 못했었다. 그러나 그 초년에는 선조(先朝)의 옛 신하들이 많이 남아 있어 아직 조정이 완전하므로 정령(政令)이 문란하지 않았는데, 무오년 주륙(誅戮)이 있는 뒤부터는 왕의 뜻이 점차 방자해져, 엄한 형벌로 아랫사람들을 억제하매, 선비의 기개가 날로 꺾여져 감히 정언(正言) 극론(極論)을 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왕이 더욱 꺼릴 것 없어 멋대로 방탕해졌다.(후략)</p>	<p>然其初年，先朝舊臣，多有存者，朝廷尚完，政令不至荒紊，自戊午誅芟之後，王志漸肆，務以嚴刑制下，士氣日索，無敢有正言極論者，王益無所憚，多縱荒慾。(후략)</p>
--	---	---